전근대 수원 자료집(2)

조선왕조실록(국역·원문)

2015. 3. 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일러두기

1. 수록 지역

행정 구역상 현재의 수원은 역사 전통과 유리된 구획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수원의 역사 자료를 집성하기 위하여 ‘수원 문화권’ 개념을 설정하여 현 행정 구역상 화성, 오산, 남양 지역까지 포함하였다.

2. 수록 범위

본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는 국역『조선왕조실록』의 검색결과를 토대로 『태조실록』부터 『순종실록』까지를 포괄한 것이다.

3. 수록 방식

⑴ 기사를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다시 분류 안에서는 시간순서로 배열하였다.
⑵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2줄 이내로 요약문을 달아 기사의 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주요 어휘와 구절에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였다.
⑷ ‘수원 문화권’과 관련 없는 내용은 생략한 뒤 ‘(…)’ 표시하였다.
⑸ 『광해군일기』의 경우는 중초본과 정초본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기사의 출처를 표기한 부분에 이를 명기하였다.

4. 분류 방식

수집된 자료는 기왕의 연대기 자료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수원 문화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항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역
1	정치	왕실	국왕	종사	행행(능행·온행·강무)	의식	산릉·천릉
		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인사(선발, 임면, 관리)
		사법	재판	행형	치안	정변·민란	파면
		군사	군정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	금화(禁火)	군역	병참(兵站)	통신(通信)[봉수]	관방	전쟁.
		인물	수원인, 수원부사(유사)

2	경제	재정	재정일반 ㅣ 전세 ㅣ 공물(貢物) ㅣ 역(役) ㅣ 진상 ㅣ 잡세 ㅣ 창고 ㅣ 국용(國用) ㅣ 군자 ㅣ 상공(上供) ㅣ 전매(專賣)
		상업	상업일반 ㅣ 상인 ㅣ 시장 ㅣ 상품 ㅣ 무역(貿易)
		교통	육운 ㅣ 수운 ㅣ 마정(목장) ㅣ역참 ㅣ역원
		농수산업	○양전 ㅣ 경영형태 ㅣ 토지매매 ㅣ 권농 ㅣ농사 ○농업기술 ㅣ 수리 ㅣ 개간 ㅣ 농작 ○임업 ㅣ 목축 ㅣ 양잠 ㅣ 면작 ㅣ 과수원예 ㅣ 특용작물 ○어업 ㅣ 염업
		광공업	○광산 ㅣ 채광 ㅣ 제련 ○관청수공 ㅣ 사영수공 ㅣ 농촌수공 ㅣ 장인 ㅣ 수공업품
		건설	건축 ㅣ 토목 ㅣ 보수
3	사회	가족	가족 ㅣ 친족 ㅣ 가산 ㅣ 성명 ㅣ 호구 ㅣ 호적
		신분	양반ㅣ 중인 ㅣ 상민 ㅣ 신량역천 ㅣ 천인 ㅣ 신분변동
		향촌	취락 ㅣ 지방자치 ㅣ 사회조직 ㅣ 장지(葬地)
		의식주	○관복 ㅣ 상복 ㅣ 예복 ㅣ 장신구 ○주부식 ㅣ 주류 ㅣ 기호식품 ㅣ 기명제물 ○가옥 ㅣ 가구ㅣ 택지 ㅣ주거
		윤리·풍속	강상 ㅣ 사회기강
			예속 ㅣ 풍속ㅣ 연회 ㅣ 구휼(진휼)
4	문화	사상	유학 ㅣ 불교 ㅣ 교육(서원·향교·과거) ㅣ토속신앙
		과학	자연재해(가뭄·홍수) ㅣ 의학 ㅣ 약학 ㅣ 보건 ㅣ 수레
		지리·경관	산천 ㅣ 여정 ㅣ 역사지리
		예술	음악 ㅣ 미술 ㅣ문학 ㅣ 서예
5	화성	성문	長安門, 八達門, 蒼龍門, 華西門, 華虹門
		시설	西將臺, 東將臺, 東北角樓(=訪花隨柳亭) 西南角樓(=華陽樓), 東北鋪樓(=角巾臺)
		행궁	○新豊樓(鎭南樓), 左翊門, 中陽門(重鑰門), 奉壽堂(壯南軒)○洛南軒[藏春閣], 得中亭[得閒門], 老來堂[難老門, 歌風門]○長樂堂, 景龍館[3판문 至樂門], 福內堂[동행각 維福門, 서별당의 九如門, 외행각 북쪽 求福門], 維與宅[초명 隱若軒, 拱晨樓, 附舍門. / 向春門(서), 延暉門·維與門(북), 嘉漁門·慶華門(남), 賓曦門(동)] 未老閑亭(일명六面亭). ○于華館(八達館), 講武堂, 華請館(동헌), 祝釐堂(내아) 臥護軒, 內鋪舍[미복원], 分奉常寺 ○華寧殿, 壯勇營(壯勇衛) 禦牧軒(영조글씨), 拱樓屢
		원행	○穩穩舍(과천) 萬安橋(안양), 彌勒峴(지지대고개, =遲遲峴, =沙斤峴), 遲遲臺, 槐木亭橋, 만석거, 芰荷洞, 大有坪, 觀吉野 ○梅橋(초명 梅山橋), 上柳川, 萬和峴, 建章洞, 眞木亭(橋), 下柳川, 皇橋, 甕峰, 大皇橋, 逌瞻峴, 安寧里, 逌覲橋, 만년제
		제언	祝萬堤(서호), 萬年堤, 萬石渠, 坤申堤 杵池(=方下池, 남곡면) 南池, 北池

목 차

2. 경제(經濟) ····· 1

⑴ 재정 ····· 1

⑵ 상업 ····· 50

⑶ 교통 ····· 58

⑷ 농수산업 ····· 68

⑸ 광공업 ····· 86

⑹ 건설 ····· 88

3. 사회(社會) ····· 115

⑴ 가족 ····· 115

⑵ 신분 ····· 119

⑶ 향촌 ····· 120

⑷ 윤리·풍속 ····· 121

4. 문화(文化) ····· 165

⑴ 사상 ····· 165

⑵ 과학 ····· 181

⑶ 지리·경관 ····· 199

5. 화성(華城) ····· 213

⑴ 시설 ····· 213

⑵ 행궁 ····· 215

⑶ 원행 ····· 252

⑷ 제언 ····· 262

Ⅱ. 남양(南陽)

1. 정치(政治) ····· 263

⑴ 왕실 ····· 263

⑵ 행정 ····· 279

⑶ 사법 ····· 327

⑷ 군사 ····· 370
⑸ 인물 ····· 408

2. 경제(經濟) ····· 413
⑴ 재정 ····· 413
⑵ 상업 ····· 424
⑶ 교통 ····· 426
⑷ 농수산업 ····· 431
⑸ 광공업 ····· 442

3. 사회(社會) ····· 444
⑴ 가족 ····· 444
⑵ 향촌 ····· 445
⑶ 윤리·풍속 ····· 446

4. 문화(文化) ····· 455
⑴ 사상 ····· 455
⑵ 과학 ····· 458
⑶ 예술 ····· 465

2. 경제(經濟)

⑴ 재정

경제/재정

수원 부사 이지강이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고 구제할 방법을 아뢴 상서문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지강(李之綱)이 도당(都堂)에서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지강이 지난해 6월부터 이 고을에 수령으로 와서, 밀·보리[兩麥]부터 늦곡[晩穀]까지 친히 답험(踏驗)하였는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로 손상된 곡식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온 집이 실농(失農)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 4월에 이르러 사민(四民)의 남녀가 연달아 달려와서 날마다 관문(官門)에 모여 먹을 것이 없다고 다투어 말하고, 혹은 울면서 말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지강은 백성의 생활이 이처럼 궁핍(窮乏)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며, 소민(小民)의 먹을 것이 없다고 고하는 정상이 진정인지 거짓인지 쉽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물캐는 사람이 산야(山野)에 널려 있고, 창름(倉廩)에서 주는 말[斗]·되[升]의 곡식을 사족(士族)의 집에서도 다투어 와서 주기를 바라니, 이는 백성의 생활이 곤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창고의 곡식을 내어 구제하지 아니하면, 유망(流亡)하거나, 굶주려 죽는 사람이 의당 길에 잇닿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밀·보리가 거의 익었으나, 굶주린 백성이 먼저 익은 이삭을 골라서 혹은 볶기도 하고, 혹은 찌기도 하여 겨우 그 생명을 이어가는데, 하물며 한 번 배불리 먹는 기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밀·보리를 답험(踏驗)하는 관리가 비록 늠급(廩給)을 받는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접대하는 즈음에 어찌 전연 폐단이 없겠습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도리어 답험의 접대에 분주(奔走)하게 되면, 원망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전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한창 봄철에 그해 전조(田租)의 반(半)을 미리 주었으니, 이는 농사를 정성스레 장려하고, 영세민(零細民)의 힘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에 전하여 아뢰어서, 문제(文帝)가 미리 전조(田租)의 혜택을 준 것을 본받아, 이들 농민에게 금년의 양맥(兩麥) 세(稅)를 내려 주어 기민(飢民)의 마음을 위로하면, 어찌 다만 창름(倉廩)의 곡식을 내어서 궁핍한 백성을 구제하는 데 비하겠습니까? 지강은 또 생각건대, 답험(踏驗)을 면제할 수 없다면, 늦곡[晩穀]을 답험(踏驗)하는 날, 보리밭[麥田]에 다시 다른 곡식을 심은 것은 조세를 거두는 데 과식(科式)을 감하지 말고, 다만 보리만을 수확하는 것은 다른 전제(田制)에 따르는 것이 또한 편리하고 유익하겠습니다." 도당(都堂)에서 아뢰니,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도당(都堂)에서, 보리는 국용(國用)이니 전감(全減)할 수 없다고 말하니, 일이 드디어 행해지지 못하였다.

○水原府使李之綱上書都堂. 書曰: 之綱自去年六月, 來守是邑, 自兩麥至于晩穀, 親自踏驗, 水旱之傷, 不爲不多, 然亦無擧家失農者. 至今年三四月以來, 四民男女奔走絡繹, 日聚官門, 爭言匱乏, 或有垂泣而言者. 之綱未知民生若此匱乏之由, 且小民告匱之情, 眞僞固未易知也. 然採菜之人, 遍於山野, 倉廩所給斗升之穀, 士族之家, 爭來仰給. 是則民生之艱, 槪可見矣. 若非國家發倉賑之, 流亡餓莩, 當相繼於道矣. 今雖兩麥垂熟, 飢民擇其先熟之穗, 或焦或煮, 僅活其生, 況望一飽之懽乎? 兩麥踏驗之官, 雖云廩給, 民間支對之際, 豈盡無弊! 以僅活之民, 反奔走於踏驗支對, 則怨咨不少矣. 昔漢文帝方春預賜今年田租之半, 此其所以誠於悶農, 而寬細民之力也. 伏望轉聞于上, 法文帝預賜田租之惠, 賜農民今年兩麥之稅, 以慰飢民之心, 則奚啻發倉廩以賑窮乏乎? 之綱又以謂: "如不可蠲除踏驗, 則晩穀踏驗之日, 麥田更種他穀者, 收

租不減科式; 只收麥者, 從他田制, 亦爲便益." 都堂以聞, 上命擬議. 都堂言: "麥乃國用, 不可全減." 事遂不行.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4월 22일(갑자) 3번째기사>

경제/재정

호조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는데 수원부사도 건의하다

호조에서 중외(中外)의 공법(貢法)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논을 갖추어 아뢰기를, (…) 경기(京畿)의 수령(守令) 29명과 품관(品官)·촌민(村民) 등 1만 7천 76명은 모두 가하다 하고, 수령 5명과 품관·촌민 합계 2백 36명은 모두 불가하다 하고, 도관찰사 최사의(崔士儀)·도사(都事) 양수(楊修)·**수원 부사(水原府使) 윤처성(尹處誠)**·원평 부사(原平府事) 오영로(吳寧老)·해풍 군사(海豐郡事) 황득수(黃得粹)·이천 현사(利川縣事) 김훤(金晅)·고양 현령(高陽縣令) 유흥부(柳興阜)·가평 현감(加平縣監) 김위(金偉) 등은 아뢰기를, **'전답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좋은 토지를 부치고 있는 자는 10두의 조세가 너무 경하고, 나쁜 땅을 부치고 있는 자는 10두의 조세가 비록 적다해도 오히려 그 수량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각 관사(官司)의 위전(位田)과 외방 관서의 늠록전(廩祿田) 등 1년의 경비를 참작해 헤아려서 이를 떼어 주어서 풍년으로 보고 조세를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온데, 공법을 시행할 것 같으면 반드시 2분(分)은 늘어나게 되어 군국(軍國)의 수용량이 이로 말미암아 삭감될 것이니, 종전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 공법을 정하려 하신다면 토지의 비옥 척박을 변별하여 3등급으로 나누게 하소서.' 하고, (…)

○戶曹具中外貢法可否之議以啓: (…) 京畿守令二十九·品官村民一萬七千七十六人皆以爲可, 守令五·品官村民幷二百三十六人皆以爲不可. 都觀察使崔士儀·都事楊修·水原府使尹處誠·原平府使吳寧老·海豐郡事黃得粹·利川縣事金晅·高陽縣令柳興阜·加平縣監金偉等以爲: "田地膏堉不一, 執良田者, 十斗之租過輕, 執薄田者, 十斗之租雖少, 猶未充數. 且各司位田與外方公衙廩祿田, 一年經費, 酌量折屬, 從實收租, 尙且不足, 若行貢法, 則必加二分, 軍國之需, 由玆以減, 莫若仍舊. 如欲更定貢法, 則辨其土地膏堉, 分爲三等." (…)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10일(무인) 5번째기사>

경제/재정

이조 참판 김익정이 소나무의 작벌 금지와 공부 문안을 정하는 것에 관해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조 참판 김익정(金益精)이 아뢰기를, "소나무[松木]는 전함(戰艦)을 만드는 재목이온지라, 국가에서 일찍이 법을 세워 그의 작벌(斫伐)하는 것을 금하고, 해마다 연말에는 각도의 주(州)·현(縣)으로 하여금 그 그루 수를 계산하여 아뢰게 하였사온데, 이를 번거롭게 여기어 중도에 폐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기로, 이로부터 금하고 막는 것이 적이 해이(解弛)하여져서,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사오니 진실로 미편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구와 전적(田籍)을 계산하여 공부(貢賦)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수령이 공부를 정할 때에 혹시 호구의 대소와 경작(耕作)하는 전토의 다과(多寡)를 계산하지 않는 까닭으로 공부가 고르지 못하옵고, 또 공부를 받아들일 때 감고(監考)에게 맡기고 친히 검수(檢收)하지 아니하므로, 수납(收納)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긁어 받아들여서 민간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신이 일찍이 충청도의 경력(經歷)이 되었을 때에 하윤(河

崙)이 신에게 이르기를, ‘그전에 박은(朴訔)이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어 호구의 쇠잔하고 흥성함과 경작하는 전토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밝게 문안(文案)을 두고 공부를 정하였더니, 백성들이 거의 편케 여겼다. 그대가 충주(忠州)에 가거든 그것을 준수(遵守)하는지의 여부(與否)를 살피라. 만일 그 법을 준수할 것 같으면 진실로 어진 수령이라 할 것이다.’ 하므로, 신이 가서 살피온즉, 이미 폐하고 시행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조계생(趙啓生)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때에 그 공부(貢賦)를 정하되, 박은(朴訔)이 한 것과 같이 하였더니, 백성들도 편하게 여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뒤의 수령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것을 폐하였사온데,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박은과 조계생의 법이 비록 백성들에게는 편하나, 관(官)에게는 불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道)로 하여금 호구(戶口)의 대소와 경작하는 전토의 다과(多寡)를 밝게 문안(文案)을 꾸며 두고 거기에 따라 공부(貢賦)를 정하시와 백성으로 하여금 두루 어진 혜택을 입게 하옵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박은이 이 뜻을 가지고 태종께 아뢰는 것을 나도 들은 바있는데, 경의 말이 옳도다.” 하였다. 익정(益精)이 물러 나가매, 임금이 대언 들에게 이르기를, “익정(益精)의 말은 매우 옳으나, 당(唐)·우(虞)·삼대의 공부(貢賦)의 법을 후세에 시행할 수는 없으니, 당나라[李唐] 때의 조(租)·용(庸)·조(調)의 법을 행함이 어떠뇨. 다만 신법(新法)이 쉽사리 시행되지 못할까 염려되노라.” 하니,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좌대언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수령을 지냈사온데, 그 대·중·소의 호구에 따라 공부(貢賦)를 정하오면 매우 백성에게 편하였습니다. 익정(益精)의 말은 조(租)·용(庸)·조(調)의 법을 가리킴이 아니오라, 바로 호구와 전적(田籍)을 계산하여 밝게 문안(文案)을 꾸며 두고 일정한 법을 정하여 탐리(貪吏)로 하여금 과중한 세(稅)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익정(益精)으로 하여금 사목(事目)을 초안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癸卯/受常參, 視事. 吏曹參判金益精啓: “松木, 戰艦之材, 國家曾立法, 禁其斫伐. 每當歲季, 令各道州縣計其條數以啓, 以爲煩數, 中廢不行. 從此禁防稍弛, 松木殆盡, 誠爲未便.” 上曰: “卿言是矣.” 又啓曰: “計戶口田籍, 以定貢賦, 國家之法美矣. 然守令之定貢賦, 或不計戶口大小·所耕多寡, 故貢賦不均. 且貢賦之納, 付之監考, 不自親檢, 收納之際, 漁取多端, 民間之弊, 不可勝言. 臣嘗爲忠淸道經歷, 河崙謂臣曰: ‘往者朴訔爲忠州牧, 計戶口殘盛·所耕多寡, 明立文案, 以定貢賦, 民庶便之, 汝往忠州, 審其遵守與否. 若遵守其法, 則誠爲賢守令矣.’ 臣往審之, 已廢不行矣. 又聞趙啓生爲水原府使, 定其貢賦如訔, 民亦便之, 其後守令未幾而廢之. 此無他, 訔·啓生之法, 雖便於民, 而不利於官也. 伏望殿下, 令諸道編戶口大小所耕多寡, 明立文案, 以定貢賦, 使民徧蒙仁澤, 幸甚.” 上曰: “昔者朴訔將此意, 陳于太宗, 予亦聞之, 卿言然矣.” 益精出, 上謂代言等曰: “益精之言甚善. 唐·虞·三代貢賦之法, 不可行於後世, 李唐(祖)〔租〕庸調之法, 行之如何? 但恐新法未易擧行.” 知申事安崇善啓: “上敎至當.” 左代言金宗瑞啓: “臣曾經守令, 因其大中小戶, 以定貢賦, 則甚便於民. 益精之言, 非指言租庸調, 乃欲以戶口田籍, 明置文案, 以定一定之法, 使貪吏不得過取也.” 上曰: “令益精草事目以啓.”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2월 18일(계묘) 1번째기사>

경제/재정

예조에서 1년 동안 제수로 소용되는 소를 수원부 홍원곶 등에서 보내게 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구서(典廐署)에서 1년 동안 소용되는 제수(祭需)로 종묘제 때의 검은 송아지 5두(頭), 영녕전제(永寧殿祭) 때의 검은 송아지 5두, 사직제 때의 검은 큰 소 3두, 문선왕 석전제(文宣王釋奠祭) 때의 큰 황소 2두, 문소전 별제(文昭殿別祭) 때의 누런 송아지 2두를 매양 봄·가을에 점우 별감(點牛別監)이 선택해 올렸사온데, 이제 점우 별감을 혁파하였사오니, **수원부(水原府) 홍원곶(弘原串)**과 양성현(陽城縣) 괴태길곶(槐台吉串)에 **방목하는 소에서 수에 따라 골라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典廐署一年所需: “宗廟祭黑犢牛五頭·永寧殿祭黑犢牛二頭·社稷祭黑大牛三頭·文宣王釋奠祭黃大牛二頭·文昭殿別祭黃犢牛二頭, 每於春秋, 點牛別監選揀以送. 今革點牛別監, **請以水原府弘原串·陽城縣槐台吉串所放里牛, 依數揀送**. 從之.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2월 6일(을묘) 3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도호부사 안기가 흰 꿩을 바치니 서울의 군신이 전문을 올려 하례하다

수원 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안기(安起)가 흰 꿩[白雉]을 바치니,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군신(群臣)들이 전문(箋文)을 올려서 하례(賀禮)하였다. (…)

○水原都護府使安起獻白雉, 留都群臣進箋以賀. (…)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24일(을유) 2번째기사>

경제/재정

양전의 실시 등을 의논하여 양전과 전분을 수원부 등에서 먼저 시험하고자 하다

황희(黃喜)·신개(申槪)·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권제(權踶)·정인지(鄭麟趾)를 불러 공법(貢法)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기를, “각도의 전지(田地)를 1, 2년 동안에 고쳐 측량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직은 구전안(舊田案)을 가지고 그 전품(田品)을 살펴서 먼저 5등으로 나누되, 결(結)·복(卜)·속(束)·파(把)를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고쳐 만들어 9등으로 조(租)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가하다면 금년에 하삼도의 전지를 전부 심사하게 할 것인가. 전라도만 심사하게 할 것인가, 또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낼 경우에는 보는 것이 각각 달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이 한결같지 않을까 염려되니, 따로 대신 한 사람을 보내어 도맡아 그 일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데 또한 어떻겠는가. **또 양전(量田)의 일은 가볍지 않으니, 금년에는 아직 금천(衿川)·수원(水原) 등지에만 시험하고자 하는데 또한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삼도(三道)에 모두 공법을 행하였으니, 지금 전지의 품등을 나누는 것을 단지 전라도에만 행하고 경상도·충청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수조(收租)의 법이 피차 한결같지 않으니 삼도를 아울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옵니다. 다만 흉년을 당하여 따라 대신을 보내는 것이 실은 폐단이 있으니, 지금 경차관(敬差官)을 위임하여 보내어 감사로 하여금 그 일을 겸하여 맡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시험하여 양전(量田)하고자 한다면 금천(衿川)의 전지는 5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수원부(水原府)를 시험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록 금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또 대사헌 민신(閔伸)·집의 임인산(林仁山) 장령 조자(趙孜)·지평 신자수(申自守)·좌사간 신기(愼幾)·지사간(知司諫) 신자근(申自謹)·헌납 김순(金淳)·좌정언 윤면(尹沔)·우정언 우계번(禹繼蕃)·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직전(直殿) 이계전(李季甸)·김문(金汶), 응교 정창손(鄭昌孫)·노숙동(盧叔仝), 교리(校理) 어효첨(魚孝瞻)·수찬 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송처검(宋處儉), 박사 이개(李塏)·이예(李芮)를 불러

이르기를, “수손급손(隨損給損)의 제도를 고쳐 공법으로 하였으니, 삼도에 시행(試行)하겠지만, 교왕과직(矯枉過直)이 되어서 백성들이 혹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내가 이미 공법의 불편한 것도 알았고, 또 처음에 공법을 편하다고 한 것은, 공법을 행하고자 하면 전제(田制)를 바루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해는 9등을 나누고 전지는 5등으로 나누어 그 조(租)를 거두려고 하니, 또한 염려되는 것은 토전(土田)을 고쳐서 측량하는 것이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매,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우선 구전적(舊田籍)을 가지고 전품(田品)을 살펴 헤아려서 먼저 5등으로 나누게 하고, 결(結)·복(卜)·속(束)·파(把)를 고쳐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만들어서 해[年]의 상등·하등을 보아 9등의 세를 거두려는 것이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니, 모두 가하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전품(田品)을 나눈다면 8도가 다 그러하지마는, 금년은 우선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우선 수원(水原)·양주(楊州) 등지에 시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가**.” 하니, 신(伸)이 아뢰기를, “양전(量田)을 고치면 실은 편익하오나 갑자기 행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선 양전하기 전에 먼저 전품(田品)을 나누어 세(稅)를 거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기·인산·자근·자·자수·계번은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좋은 법이니, 그 법을 행하고자 하면 어찌 작은 폐단을 헤아릴 것입니까.” 하고, 순은 말하기를, “해를 9등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이 앞서 각도에서 해의 등급을 나누는데 대개는 하등 해를 중등 해로, 중등 해를 상등 해로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나누어 9등으로 만들게 하더라도, 누가 능히 연분(年分)을 정하여 살피어 9등을 만들겠습니까.” 하고, 면은 말하기를, “이것은 비록 좋은 법이라도 흉년 때에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만리·계전·문·창손·숙동·효첨·위지·성지·처검·개·예는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여 급급히 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풍년을 기다리고, 또 해를 9등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하니 다만 3등 혹은 5등으로 나누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戊申/召黃喜·申槪·河演·皇甫仁·權踶·鄭麟趾, 議貢法便否曰: “各道之田, 一二年之間, 未易改量, 姑將舊田案, 審其田品, 先分五等結卜束把, 改作頃畝步法, 以收九等之租何如? 若以爲可, 則今年將畢審下三道之田乎? 抑將只審全羅乎? 且分遣敬差官則所見各異, 慮恐分等不一, 欲別遣大臣一人, 摠治其事, 是又何如? 且量田, 其事匪輕, 欲於今年姑試衿川·水原等地, 亦何如?” 僉曰: “已於三道, 皆行貢法, 今分田品, 只行於全羅, 而不及慶尙·忠淸, 則收租之法, 彼此不一, 竝審三道爲便, 但當年歉, 別遣大臣, 實爲有弊. 今委遣敬差官, 令監司兼掌其事可也. 若欲試量田, 則衿川之田, 不備五等, 宜試於水原府. 雖今年未畢, 未爲不可.” 又召大司憲閔伸·執義林仁山·掌令趙孜·持平申自守·左司諫愼幾·知司諫申自謹·獻納金淳·左正言尹沔·右正言禹繼蕃·集賢殿副提學崔萬理·直殿李季甸·金汶·應敎鄭昌孫·盧叔仝·校理魚孝瞻·修撰河緯地·梁誠之·宋處儉·博士李塏·李芮謂曰: “改隨損給損之制爲貢法, 試行於三道, 但慮矯枉過直, 百姓或有愁嘆, 予已知貢法之不便. 且初以貢法爲便者以爲: ‘欲行貢法, 不可不正田制.’ 今欲年分九等田, 分五等以收其租, 又慮改量土田, 非一二年所能爲, 欲分遣敬差官, 姑將舊田籍, 審量田品, 先分五等, 改結卜束把爲頃畝步法, 視年上下, 以收九等之稅, 議諸政府六曹, 皆以爲可, 爾等以爲何如? 若分田品, 則八道皆然, 然今年先試於下三道何如? 且欲姑試於水原·楊州等地, 是又何如?” 伸啓曰: “改量田, 實爲便益, 然未易遽行, 姑於未量田之前, 先分田品, 以收其稅爲便.” 幾·仁山·自謹·孜·自守·繼蕃曰: “此乃便民良法, 欲行其法, 何計小弊?” 淳曰: “年分九等, 似爲不可. 前此各道分年等, 率以下等年爲中等, 中等年爲上等. 今縱使分爲九等, 孰能精察年分, 以爲九等乎?” 沔曰: “此雖良法, 不可行於凶歉之時.” 萬理·季甸·汶·昌·孫·叔仝·孝瞻·緯地·誠之·處儉·

愷·芮曰: “今當年歉, 不宜汲汲, 宜待豐年. 且年分九等不可, 但分爲三等或五等爲便.”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7일(무신) 1번째기사>

경제/재정

의창이 실질적으로 백성을 진휼할 수 있게 할 방도를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의창(義倉)으로 진대(賑貸)함은 참으로 좋은 법이다. 그러나, 수령들이 빈부(貧富)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차등을 두지 않아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여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게 되니, 그것이 진대(賑貸)하는 본의에 어떻겠느냐. 내가 들으니 백성들의 빈곤한 것이 병진년 이후로 금년이 더 심하다고 한다. 오늘날의 의창은 국초에 비하여 10배 뿐만이 아니로되, 백성은 쌀을 먹지 못한다 하니, 만일에 2, 3 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되면 반드시 진휼을 못할 것이다. 내가 심히 염려되니, 경 등은 정부와 의논해서 곡진하게 하라.” 하니, 호조 판서 박종우(朴從愚)·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 등이 아뢰기를, “의창의 곡식이 옛날 보다 갑절이나 되옵되, 백성들의 저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구황하는 것이 잘못되어 절용(節用)하는 법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함길도 의창은 본디의 수량이 8만여 석에 불과하오나 오히려 구황하옵는데, 그 나머지 타도의 곡식은 많은 데는 40만 석이나 되오니 수령된 자가 전심으로 구황하여 그 궁민(窮民)을 골라 따로 문서를 만들어 먼저 진대(賑貸)한다면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대사헌 권맹손은 아뢰기를, “평안도·함길도의 의창은 다른 도에 비해 10분의 1이오니 구황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곡식을 옮기는 것만 같지 못하오며, **곡식을 옮기는 방법은 가령 광주(廣州)의 백성은 수원(水原)에서 받아가지고 광주(廣州)에 바치게 하되, 각각 가까운 곳으로 〈이처럼〉 차례로 수송하게 한다면,** 백성도 수고롭지 않고 수년 안에 의창의 곡식이 타도(他道)만 못하지 않을 것이오니, 그렇게 되면 구황하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庚午/視事. 上謂諸臣曰: “義倉賑貸, 誠良法也. 然守令不分貧富, 無有差等, 貧者益貧, 幾至於死, 其於賑貸之意何如? 予聞民之貧困, 丙辰年以後, 今年爲甚. 今之義倉, 比國初不啻十倍, 而民未粒食, 脫有二三年之凶歉, 必不賑恤矣, 予甚慮焉. 卿等議諸政府, 曲盡措置.” 戶曹判書朴從愚·禮曹判書金宗瑞等啓: 義倉之粟, 倍蓰於前, 而民之儲蓄不古若者, 無他, 救荒失策, 不知節用之道也. 咸吉道義倉元額, 不過八萬餘石, 尙且救荒. 其餘他道之粟, 多至四十萬石, 爲守令者專心救荒, 擇其窮民, 別置於籍, 爲先賑貸, 則可以無飢矣.” 大司憲權孟孫啓: “兩界義倉, 比之他道, 十分之一, 救荒難矣, 莫如預先移粟. 移粟之術, 假如廣州之民, 糶於水原而納於廣州, 各以旁近, 以次輸之, 民亦不勞, 而數年之內, 義倉之粟, 不下他道. 然則救荒何難?” 上曰: “卿等之言然矣.”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 5월 21일(경오) 1번째기사>

경제/재정

의정부에서 구휼 진대책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국가에서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꾸어 주고, 만일 부족하면 또 군자(軍資)를 내어 보충하니 민생을 넉넉하게 하여 주는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받은 자가 세월을 지연시켜 환납하지 않고 수령도 예사[常事]로 보고 살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환납을 재촉하는 법을 베풀어서 관리가 혹은 가두고 혹은 때리고, 혹은 받은 자가 도망하면 그 일가에게 물리니 근심과 원망이 없

지 못한데, 근년 이래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감사가 청하는 의창의 곡식 수량은 한 도에 6, 7만 석에 이르러 의창(義倉)과 군자(軍資)가 모두 탕갈하였으니, 병진년에 충청도의 흉년 같은 것도 다행히 전라도의 저축이 있어서 백성이 살아 날 수 있었지, 만일 전라도의 저축이 없었다면 어떻게 진휼 구제하였겠습니까. 또 갑자년에 경기(京畿)의 흉재(凶災)로 하도(下道)이 미곡을 수운하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군인 수십 명과 쌀·콩 수만 석이 표몰(漂沒)하였으므로, 또 서울 창고의 미곡을 내어서야 진휼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재앙을 만나도 오히려 이러하거든, 어찌 3년의 저축을 바라겠습니까. 만일 혹시 군려(軍旅)의 창졸의 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그 구폐(救弊)할 조건을 뒤에 열거합니다. (…)

1. **경기(京畿)의 광주(廣州)·양주(楊州)·수원(水原)·여흥(驪興), 충청도의 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홍주(洪州), 전라도의 전주(全州)·남원(南原)·나주(羅州)·무진(茂珍) 등 각 관(官)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윗 항목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乙丑/議政府據戶曹呈啓: "國家設義倉, 以貸貧民, 如有不足, 則又出軍資以補之, 其裕民生矣. 然受者遷延不納, 守令視爲常事, 亦不之察, 國家不得已設催納之法, 官吏或拘囚, 或鞭撻, 或受者逃則徵其族, 不無愁怨, 近年以來, 其弊尤甚. 監司所請義倉之數, 一道至六七萬石, 義倉軍資俱竭. 如丙辰忠淸之饑, 幸有全羅道畜積, 故民得以活, 若無全羅畜積, 則豈能賑救乎? 又甲子京畿之災, 漕轉下道米穀, 遭風破船, 軍人數十名·米豆數萬石漂溺, 又出京倉米穀, 乃能賑之. 一遇災異, 尙且如此, 何望於三年之畜哉! 倘有軍旅倉卒之變, 將何以支? 其救弊之條, 具列于後.(…) 一, "京畿廣州·楊州·水原·驪興·忠淸道忠州·淸州·公州·洪州·全羅道全州·南原·羅州·茂珍等各官, 始自今年, 試行上項之法." 從之.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8월 24일(을축) 1번째기사>

경제/재정

호조에서 연분의 고원등제에 관해 의정부와 여러 조에서 의논하기를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전주 부윤(全州府尹) 윤효손(尹孝孫)이 아뢴 바에 의거하여 연분(年分)에 있어서의 고원 등제(庫員等第)【토속어로 전지(田地)가 있는 곳을 고(庫)라 한다. 하나의 면(面) 안에도 땅의 기름지고 척박함이 다르므로, 그 지품(地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의 타당하고 타당하지 못함을 의정부(議政府)와 여러 조(曹)에서 함께 의논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신숙주(申叔舟)·노사신(盧思愼)·김교(金嶠)·한치례(韓致禮) 등이 의견을 말하기를, (…) 이극증(李克增)이 의견을 말하기를,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공법(貢法)에 토지의 품질이 1등이나 2등이면 그 면적이 좁고, 5등이나 6등이면 면적이 넓어서, 수확되는 곡물도 비슷하므로, 연분법(年分法)은 법과 실정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농사일을 잘 아는데, 기름진 땅은 그 면적이 좁아 노력이 적게 들면서도 수확은 두 배로 많고, 척박한 땅은 면적이 넓어 노력이 많이 들면서도 수확은 기름진 땅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토지의 정형(定形)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면(面)의 토지를 모두 중하(中下) 이상으로 연분(年分)하면 척박한 땅의 납세(納稅)가 너무 무거워지고, 또 하상(下上) 이하로 연분하면 기름진 땅의 납세가 너무 가벼워 집니다. 가벼워지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무거워진 경우는 진실로 딱합니다. 또 의견을 말하기를, '한 가호(家戶)의 땅에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비록 이쪽 땅의 수세(收稅)가 무겁게 되었다 하여도 저쪽 땅에서는 가볍게 되므로 벌충이 될 수

있다.’ 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부유한 농부라면 그 전지(田地)가 많아서 연분(年分)이 합당하게 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 농민과 같이 단지 1경(頃)의 땅을 경작할 뿐일 경우에 지세(地稅)가 무거우면 빈민(貧民)이 받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京畿)의 광주(廣州)와 수원(水原)은 그 땅의 사정이 서로 같습니다만,** 광주는 읍내(邑內)와 상도(上道)·중도(中道)·하도(下道)를 각각 하나씩의 등제(等第)로 나누었는데, 다른 고을에 비하여 볼 때 한 고을을 다섯 등제로 나눈 것은 간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수원은 직촌(直村)과 19개의 임내(任內)를 각각 등제로 나누었으므로, 고원(庫員)·연분(年分)의 제도에 비하여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고을은 연분(年分)의 간략하고 세분된 것이 각기 다르고 백성의 납세도 고르지 못하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법(貢法)을 의논하여 실행할 때 한 고을을 하나의 등제(等第)로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여 읍내(邑內)와 4개 면(面)을 각각 다른 등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비록 고원 등제법(庫員等第法)으로 바꾼다 하여도, 전분 6등(田分六等)과 연분 9등(年分九等)의 제도에 무엇이 저촉되겠습니까? 그 전지(田地) 위치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등제를 둘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눈 후 어느 마을[里] 어느 자수(字數)의 결복(結卜)인지를 명백히 명부에 기록하고, 그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 등제(等第)를 높이거나 낮춘다면, 관(官)이나 민(民)이 모두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

○戶曹據全州府尹尹孝孫所啓, 年分庫員等第【俗以田之所在謂庫. 如一面之內, 膏堉有異, 隨其地品而等第之也】 便否, 請與議[政]府·諸曹同議, 從之. 申叔舟·盧思愼·金嶠·韓致禮議: (…) 李克增議: “議者皆云, 貢法田品一二等則地小, 五六等則地廣, 所收之穀 相當, 以之年分則於情法, 不甚相遠. 臣熟知農事, 膏腴處則地雖小, 用功簡而收穫倍多, 堉薄處則地雖廣, 用功多而收穫不及膏腴地. 萬萬是不可以一概田形論也. 如是而以一面之地, 例從中下以上年分, 則堉薄者納稅太重, 例從下上以下年分, 則膏腴者納稅太輕. 太輕者猶之可也, 太重者誠爲可矜. 議者云: ‘一戶之田, 肥磽相雜, 雖重於此, 或輕於彼, 可以推移充納矣’, 是大不然. 上農夫則其田多, 年分給不中, 尙或如是, 如匹夫匹婦, 止耕一頃之田, 而地重納稅, 則貧民受弊不貲. 今京畿廣州·水原, 地境相同, 廣州則邑內及上道·中道·下道, 各分爲一等, 其視他官, 一邑五分之制爲略. 水原則(身材)〔直村〕及十九任內, 各分等第, 其視庫員·年分之制爲詳. 兩邑年分詳略各異, 而民之納稅不均, 此又不可不慮. 且當初貢法議行之時, 欲以一邑爲一等第, 不得已變, 而爲邑內四面各分等第. 則今雖變而爲庫員等第, 有何妨於田分六等年分九等之制乎? 莫若隨其地面遠近, 或分爲二, 或分爲三, 某里某字結卜, 明白錄簿, 因其禾稼, 低昂等第, 則其於官民, 實爲兩便.”(…)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신축) 5번째기사>

경제/재정

지평 이원간이 흉년이므로 급하지 않은 공물은 호조가 마련하여 감하기를 건의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이원간(李元幹)·정언 이원화(李元和)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원간이 또 아뢰기를, “올 흉년은 경기가 더욱 심하니, 긴급하지 않은 공물(貢物)은 호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감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듣건대, 경기에서는 명년 종자를 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올해에 더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나,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명년 종자를 마련하는 까닭인데, 이 역시 시끄러울 것입니다. 충청도·황해도·전라도 등지의 농사가 다소 잘 되었습니다. 그러

나 관창(官倉)의 곡식을 경기의 명년 종자로 쓴다면 이들 도내의 종자가 혹시 넉넉하지 못할까 싶으니, 충청도·전라도·황해도 등의 노비들의 신공(身貢)인 면포 및 어전(漁箭)에서 받는 세를 모두 곡물로 대신 바치도록 하되, 충청 좌도(忠淸左道)는 금탄(金灘)에서 흘러내려 여주(驪州)로 실어들이고, **전라도는 수원(水原)으로 실어들이고 황해도는 임진강에서 흘러내려 고양(高陽)으로 실어들여 명년 종자를 대비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乙未/御朝講. 持平李元幹·正言李元和啓前事, 不允. 元幹又曰: "今年凶險, 京畿尤甚, 不緊貢物, 令戶曹磨鍊蠲減何如? 聞京畿明年種子, 得之無由, 雖今年或有可食之處, 守令禁民不得食焉. 欲備明年種子故也, 此亦騷擾矣. 忠淸·黃海·全羅等道, 農事稍稔. 然官倉之穀, 以用於京畿明年種子, 則此等道內種子, 恐或不裕. 忠淸·全羅·黃海等道奴婢身貢緜布及魚箭收稅, 幷代納穀物, 忠淸左道, 則於金灘流下, 輸入驪州, 全羅道則輸入水原, 黃海道則於臨津流下, 輸入高陽, 以備明年種子何如?"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24일(을미) 1번째기사>

경제/재정

영사 정광필이 실농한 농가의 조세의 등급을 '하지하'로 책정할 것을 건의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금년의 한발은 근래에 없던 일로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지극히 우려스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땅히 각별한 조처가 있어야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발로 인하여 파종도 못한 전지가 있을 뿐 아니라, 파종하고 김매기를 한 곳도 한발 때문에 완전히 버린 곳이 많습니다. 모름지기 조세(租稅)를 너그럽게 해야만 곤궁한 백성들을 소복(蘇復)시킬 수 있습니다. 농삿일을 게을리하여 경작에 힘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령이 있으니 면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매기를 하고서도 한발로 수확하지 못하게 된 곳이라면 면세(免稅)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경기 관찰사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금년 면세지가 단지 2천 2백여 결(結)뿐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수원군(水原郡)만 계산해도 반드시 이 숫자에 밑돌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한 도내의 결수(結數)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령들이 호조(戶曹)의 본의(本意)를 모르고 만약 재상(災傷)을 주면 중한 견책을 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모두 재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부터 모두 그렇게 해 온 바 큰 폐단입니다.

금년의 가뭄은 을사년의 가뭄보다 훨씬 심합니다. 을사년에는 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갈(枯渴)되지는 않았으므로, **수원(水源)이 있어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과 제언(堤堰)이 있는 곳의 농사는 폐기되지 않고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과거에 수원이 있던 곳도 모두 말라 버려 수확할 수 있는 전지가 백에 두셋밖에 안됩니다. 이런데도 각 고을의 수령들은 재상에 관해서는 전연 마음을 쓰지 않았고 경기 역시 그러하니, 백성들의 살아갈 일이 진실로 애처롭습니다. 연분(年分)의 등급을 매길 때 더욱더 감면해 주어 모두 하지하(下之下)를 매긴다면 일이 제대로 될 듯합니다." 하니, (…)

○丁丑/御朝講. 領事鄭光弼曰: "今年之旱, 近古所無. 農事不稔, 民生至爲可慮, 所當各別措置. 今年田地, 以旱不得付種處, 非但有之, 雖付種, 除草, 以旱專棄之處, 亦多有之, 須寬收稅之事, 庶蘇窮民之困矣. 惰農自安, 不(暋)〔務〕耘耔者, 則國有令法, 不當免稅, 若除草而以旱不食之處, 則豈不爲之免稅乎? 臣見京畿觀察使啓本, 今年免稅, 只二千二百餘結. 臣意以水原郡計之, 必不止此數. 況一道之內, 豈止此乎? 守令等不知戶曹之意, 若給災傷, 則恐被重譴, 以此全不給災. 自前皆然, 此其大弊也. 今年之旱, 甚於乙巳. 乙巳年, 則春而雨水, 故不

甚枯渴, 其有水根引水之處及堤堰處, 皆不棄而食之. 今年, 則雖昔年有水根之處, 皆爲枯渴, 其得食田地, 百無二三, 而各官守令, 其於災傷之事, 全不用意爲之, 京畿亦爲如此. 生民之事, 良可哀矜. 其爲年分等第之時, 當倍加省念, 皆以下之下給之, 則其亦庶乎其可矣." (…)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8월 14일(정축) 1번째기사>

경제/재정

경기 감사 한덕원이 수원부의 재실 장계에 따른 세금 징수 문제로 아뢰다

경기 감사 한덕원(韓德遠)이 치계(馳啓)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최산립(崔山立)의 정문(呈文)에 '연분(年分)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데 여주(驪州)와 광주(廣州)의 세입(稅入)이 10석(石)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부(本府)는 지난해의 재실(災實)을 십분 참작한 결과 세입의 숫자가 미태(米太)를 합쳐 모두 2백 2석 6두(斗)였는데,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고을이라 하여 이를 개정(改正)해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있으니 매우 애매한 일이다.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이 잇따라 유망(流亡)하고 있으니 원통한 것 같다. 분간(分揀)해 달라는 장계(狀啓)를 올려 일분이나마 은택을 입게 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수원부는 남쪽으로 연해(沿海)에 닿아 있고 일로(一路)의 곁에 있는 큰 고을로 요역(徭役)이 다른 고을보다 몇 배나 되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숫자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데 다시 개정하여 추가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진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다시 상량(商量)하여 개정하지 말게 하소서."

○京畿監司韓德遠馳啓曰: "水原府使崔山立呈內, 年分收稅, 國之重事. 驪州·廣州稅入, 不滿十石, 本府則上年災實, 十分參酌, 稅入之數, 米太幷三百二石六斗, 則例以報不以實之官, 改正收稅, 極爲曖昧. 孑遺殘民, 相繼流亡, 似爲冤悶, 分揀狀啓, 俾蒙一分之惠云. 水原爲府, 迤南沿海, 路傍巨邑, 徭役倍蓰, 民不堪苦. 稅入之數, 比他稍優, 改正追稅, 誠爲冤抑. 更加商量, 俾勿改正事."
<선조실록 123권, 선조 33년 3월 1일(갑진) 3번째기사>

경제/재정

호조에서 징병 군사들의 군량 조치 문제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비국의 계사를 인하여, 징병된 군사들이 머지않아 올라올 테니 군량을 조치해두라고 분호조 당상 및 각도 감사에게 이미 하유하였습니다.

각도의 군사를 점검하여 보낼 때에는 으레 초면(初面) 고을의 점고를 받게 되는데, 가령 공홍도(公洪道)는 직산(稷山)에서, 전라도는 여산(礪山)과 익산(益山)에서 점고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군대는 은진(恩津)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공홍도의 군대는 수원(水原)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경상도의 군대는 영동(嶺東)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해(平海)에서 급료를 주거나 공홍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황연도(黃延道)의 군대는 양덕(陽德)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안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강원도의 군대는 고산(高山)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는 것으로, 을사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미 이렇게 예가 굳어졌으니, 이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평안도 군대의 경우 역시 그 때 가서 변경에 도착하면 급료를 주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원수가 군대를 모아 조련시키는 곳의 경우는 꼭 일정한 규정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분호조로 하여금 원수의 분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이 많이 들어간 뒤에는 조금이라도 허비되는 폐단이 없도록 방량관(放糧官)이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분조(分曹)가 알아서 처치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방량관은 윤수겸(尹守謙)으로 하여금 도내의 강명(剛明)한 문관이나 경관(京官)인 문음(文蔭) 중에서 엄선하여 자벽(自辟)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戶曹啓曰: "頃因備局啓辭, 徵兵軍, 近當上來, 糧餉措置事, 分戶曹堂上及各道監司處, 已爲下諭矣. 各道之軍點送時, 例於初面官逢點如公洪之稷山·全羅之礪山·益山, 是也. 全羅之兵, 到恩津放料, 公洪之軍, 到**水原**放料, 慶尙之軍, 由嶺東入, 則平海放料, 或到公洪道放料. 黃延之軍. 由陽德入, 則到平安道放料, 江原之軍, 則到高山放料. 乙巳年大發兵時, 已成此例, 似當依此爲之. 至如平安之軍, 則亦當臨時, 到邊上放料矣. 第於元帥聚操之處, 則必不拘常規, 令分戶曹, 聽元帥分付施行. 軍兵多入之後, 則不可無放糧官支放之規, 俾無一毫花消之弊, 此在分曹處置中矣/耳. 放糧官, 令尹守謙, 極擇道內剛明文官或京官文蔭中, 使之自辟宜當. (…)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21일(무인) 7번째기사>(중초본)

경제/재정

호조가 양호의 조운·부세·녹봉 등의 일을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평상시 조운하는 일은 으레 늦가을까지 모두 경창(京倉)에 도달하게 하였는데, 금년은 7월 이후부터 양호(兩湖)에서 쌀을 전연 운반해 와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쌀을 실을 배가 없다고 핑계대고, 혹은 병사를 뽑는 일로 소란스러워서라고 핑계 대다가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름 정도가 그냥 지나게 되면 반드시 얼음이 얼게 될 것이니, 이미 출발한 중간에서 지체될 것이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배는 실던 것을 멈추고 노를 돌릴 것입니다. 지방에 운반할 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먼 곳에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가까운 곳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으니,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황연도(黃延道)의 바다에 가까운 고을과 경기의 전세(田稅)와 삼수량(三手糧)은 으레 그 해 안에 본조가 취해다 쓰는 것이 이미 요즈음의 관례가 되었는데, 밭에 있는 곡식을 미리 계산하여 해를 이어갈 계획을 세우는 것을 10여 알의 염주를 헤아려 근근이 빼 쓰는 것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서쪽 변방의 일 때문에 황연도의 곡식을 취해 쓸 수가 없고, 강화(江華)의 경우는 나라의 방벽이 되는 지역이며, 파주(坡州)에는 산성이 있고, 광주(廣州)에는 남한 산성이 있으며, 영평(永平)과 포천(抱川)에는 진영을 설치하는 거조가 있고, **수원(水原)과 죽주(竹州)는 모두 중요한 지역에 관계되므로 모두 전세와 삼수량을 납부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쌀로 녹봉을 나누어 주고 무슨 곡식으로 군사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엔 경상비의 지출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도 **독성(禿城)**과 촉석(矗石) 등처에 여러 해 동안 저축해 놓은 양식을 모조리 운반해다가 서울의 비용에 제공했는데, 하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반적 부세까지 아울러 해당 고을에 남겨 두도록 허락한단 말입니까. 아마도 계속하기 어려운 정사가 될 것입니다. (…)"

○戊午九月二十二日丁未戶曹啓曰: "常時漕運之擧, 例趁秋末, 使之准到京倉, 而今年則自七月以後, 兩湖運米, 絶不來納. 或稱無船可載, 或稱調兵騷屑, 馴至冬深. 蹉過旬望之後, 則必致氷凍, 則已發者難免於中滯, 未發者輟載而回棹. 外方非無可運之米, 而遠水不救近火, 誠爲渴悶. 且黃延道近水之官及京畿田稅·三手糧, 例於其年內取用, 已成近例, 而預指棲畝之穀, 以爲嗣歲之圖, 如算十介念珠, 堇堇支用. 今年以西事之故, 黃延道米糧, 不得取用, 江華則以保障之所, 坡州有山城, 廣州有南漢, 永平·抱川有設營之擧, **水原**·竹州俱係重地, 竝不納田稅·三手糧. 則不知以何米頒祿, 以何粟給軍乎? 曩時經用之繁, 不至如今日之甚, 而**禿城**·矗

石等處, 積年儲峙之禮/糧, 沒數搬運, 以供京用. 況今何時而竝與恒賦而許留本官? 恐爲難行之政. (…)"
<광해군일기 132권, 광해군 10년 9월 22일(정미) 1번째기사>(중초본)

경제/재정

관리들의 녹을 지급하기 위해 경창과 강화·수원에서 제급하게 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금년 춘등(春等)의 백관들에 대한 반록(頒祿)과 삼수(三手)의 양식 및 각 아문 원역(員役)의 식료를, **반은 경창(京倉)에서 제급하고 반은 강화(江華)·수원(水原) 두 고을에서 제급할 것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케 하여 정탈(定奪)하라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경중에 미곡이 아주 귀해서 상하 〈대소의〉 인원들이 어렵게 먹고 지내기 때문에 〈목전의 일이 급하여〉 사세가 멀리 얼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외방에서 반록하는 것은 사체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허다한 조관(朝官)과 금군(禁軍)의 것을 어떤 인력으로 운반해 올 수 있겠는가. 반은 이미 반급하였으니, 나머지는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 경강(京江)으로 실어다가 추후에 다주어도 해롭지 않다.' 하고 있으며, 대신의 뜻도 그러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쌀과 콩의 부족한 수를 계산해 보니, 쌀 8천 석과 콩 3천 석을 즉시 운반한 다음에야 거의 2월까지 지탱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서(安西)의 무오조(戊午條) 세미(稅米)와 수미(收米) 1천 6백 76석, 콩 1천 3백 53석, 창상미(倉上米) 1천 석, 콩 5백 석과, 연안(延安)의 무오조 세미·수미 모두 1천 9백 72석, 콩 5백 73석, 창상미 2백 석과, 배천(白川)의 무오조 세미·수미 모두 7백 33석, 콩 2백 34석, 창상미 1백 석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강화도의 〈창상미 1만 2천 8백 석 안에서〉 3천 석을 덜어내고, 콩 5천 4백 84석 안에서 5백 석을 덜어내어 미리 먼저 실어놓았다가 얼음이 풀리는 즉시 발선(發船)하여 오는 2월 15일 안으로 경창에 운반해 올 것을 경기·황연도의 감사에게 특별히 하유하여 〈제때에 맞추지 못하는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수원의 쌀과 콩은 비단 저축된 것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소(船所)가 매우 멀어서 실어나르기가 불편하며, 강화도는 바로 요새지로 중요한 곳인데 저축한 쌀과 콩에서 많은 수량을 덜어내어 쓰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만** 안서·연안·배천 세 고을은 비록 황연도라 하더라도 수운(輸運)하는데 편리한 것이 경기 고을보다 낫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련한 것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따랐다.

○戶曹啓曰: "今年春等百官頒祿三手糧及各衙門員役料食, 一半題給於京倉, 一半題給於江華·水原兩官之事, 議大臣定奪蒙允. 蓋京中米穀極貴, 上下大小人員, 未免艱食之患, 故目前事急, 勢難遠待解氷, 爲此不得已之計故也. 今則群情皆以爲: '外方頒祿, 非但事體乖當. 許多朝官·禁軍等, 以何人力運來而爲食乎? 一半卽已頒給, 則待解氷, 運致京江, 追爲畢給不妨'云云. 大臣之意亦然, 據此打算米·太不足之數, 則必須米八千石·太三千石, 趁卽運來, 然後庶可支過二月. (安西戊午條稅米·收米, 竝一千六百七十六石·太一千三百五十三石·倉上米一千石·太五百石; 延安戊午條稅米·收米, 竝一千九百七十二石·太五百七十三石·倉上米二百石; 白川戊午條稅米·收米, 竝七百三十三石·太二百三十四石·倉上米一百石.) 請江華(倉上)米一萬二千八百石內, 三千石除出, 太五千四百八十四石內, 五百石除出,及安西延安白川米太 預先裝載, 解氷卽時, 作速發舡, 來二月十五日內, 運到京倉事, 京畿·黃延道監司處, 別爲下諭, (俾無後時之患何如? 水原米·太, 非但所儲不敷, 船所甚遠, 輸運非便, 江華則方以保障爲重, 所儲米太多數除用, 似非得計, 安西·延安·白川三邑則雖黃延道, 輸運之便易, 愈於

畿邑, 故如是磨鍊矣, 敢啓.)” 從之.
<광해군일기 148권, 광해군 12년 1월 8일(정해) 3번째기사>(중초본)

경제/재정

호조에서 징병 군사들의 군량 조치 문제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비국의 계사를 인하여, 징병된 군사들이 머지않아 올라올 테니 군량을 조치해두라고 분호조 당상 및 각도 감사에게 이미 하유하였습니다. 각도의 군사를 점검하여 보낼 때에는 으레 초면(初面) 고을의 점고를 받게 되는데, 가령 공홍도(公洪道)는 직산(稷山)에서, 전라도는 여산(礪山)과 익산(益山)에서 점고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군대는 은진(恩津)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공홍도의 군대는 수원(水原)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경상도의 군대는 영동(嶺東)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해(平海)에서 급료를 주거나 공홍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황연도(黃延道)의 군대는 양덕(陽德)을 통해 들어올 경우 평안도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고, 강원도의 군대는 고산(高山)에 도착했을 때 급료를 주는 것으로, 을사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미 이렇게 예가 굳어졌으니, 이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평안도 군대의 경우 역시 그때 가서 변경에 도착하면 급료를 주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원수가 군대를 모아 조련시키는 곳의 경우는 꼭 일정한 규정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분호조로 하여금 원수의 분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戶曹啓曰: “頃因備局啓辭, 徵兵軍, 近當上來, 糧餉措置事, 分戶曹堂上及各道監司處, 已爲下諭矣. 各道之 點送時, 例於初面官逢點 如公洪之稷山, 全羅之礪山·益山, 是也. 全羅之兵, 到恩津放料, **公洪之軍, 到水原放料**, 慶尙之軍, 由嶺東入, 則平海放料, 或到公洪道放料. 黃延之軍. 由陽德入, 則到平安道放料, 江原之軍, 則到高山放料. 乙巳年大發兵時, 已成此例, 似當依此爲之. 至如平安之軍, 則亦當臨時, 到邊上放料矣. 第於元帥聚操之處, 則必不拘常規, 令分戶曹, 聽元帥分付施行. (…)” 傳曰: “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21일(무인) 6번째기사>(정초본)

경제/재정

호조가 양호의 조운·부세·녹봉 등의 일을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평상시 조운하는 일은 으레 늦가을까지 모두 경창(京倉)에 도달하게 하였는데, 금년은 7월 이후부터 양호(兩湖)에서 쌀을 전연 운반해 와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쌀을 실을 배가 없다고 핑계대고, 혹은 병사를 뽑는 일로 소란스러워서라고 핑계 대다가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름 정도가 그냥 지나게 되면 반드시 얼음이 얼게 될 것이니, 이미 출발한 중간에서 지체될 것이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배는 실던 것을 멈추고 노를 돌릴 것입니다. 지방에 운반할 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먼 곳에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가까운 곳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으니,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황연도(黃延道)의 바다에 가까운 고을과 경기의 전세(田稅)와 삼수량(三手糧)은 으레 그 해 안에 본조가 취해다 쓰는 것이 이미 요즈음의 관례가 되었는데, 밭에 있는 곡식을 미리 계산하여 해를 이어갈 계획을 세우는 것을 10여 알의 염주를 헤아려 근근이 빼 쓰는 것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서쪽 변방의 일 때문에 황연도의 곡식을 취해 쓸 수가 없고, 강화(江華)의 경우는 나라의 방벽이 되는 지역이며, 파주(坡州)에는 산성이 있고, 광주(廣州)에는 남한 산성이 있으며, 영평(永平)과 포천(抱川)에는 진영을 설치하는 거조가

있고, **수원(水原)과 죽주(竹州)는 모두 중요한 지역에 관계되므로 모두 전세와 삼수량을 납부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쌀로 녹봉을 나누어 주고 무슨 곡식으로 군사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엔 경상비의 지출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도 **독성(禿城)**과 촉석(矗石) 등처에 여러 해 동안 저축해 놓은 양식을 모조리 운반해다가 서울의 비용에 제공했는데, 하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반적 부세까지 아울러 해당 고을에 남겨 두도록 허락한단 말입니까. 아마도 계속하기 어려운 정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丁未/戶曹啓曰: "常時漕運之擧, 例趁秋末, 使之准到京倉, 而今年, 則自七月以後, 兩湖運米, 絶不來納. 或稱無舡可載, 或稱調兵騷屑, 馴至冬深. 蹉過旬望之後, 則必致氷凍, 則已發者, 難免於中滯, 未發者, 輟載而回棹外方非無可運之米, 而遠水不救近火, 誠爲渴悶. 且黃延道近水之官及京畿田稅三手糧, 例於其年內取用, 已成近例, 而預指棲畝之穀, 以爲嗣歲之圖, 如算十介念珠, 堇堇支用. 今年以西事之故, 黃延道米糧, 不得取用, 江華, 則以保障之所, 坡州有山城, 廣州有南漢, 永平·抱川有設營之擧, **水原**·竹州, 俱係重地, 竝不納田稅三手糧, 則不知以何米頒祿, 以何粟給軍乎. 曩時, 經用之繁, 不至如今日之甚, 而**禿城**·矗石等處, 積年儲峙之糧, 沒數搬運, 以供京用, 況今何時, 而竝與恒賦而許留本官? 恐爲難行之政. (…)" 傳曰: "允."

<광해군일기 132권, 광해군 10년 9월 22일(정미) 1번째기사>(정초본)

경제/재정

관리들의 녹을 지급하기 위해 경창과 강화·수원에서 제급하게 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금년 춘등(春等)의 백관들에 대한 반록(頒祿)과 삼수(三手)의 양식 및 각 아문 원역(員役)의 식료를, 반은 경창(京倉)에서 제급하고 반은 강화(江華)·수원(水原) 두 고을에서 제급할 것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케 하여 정탈(定奪)하라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경중에 미곡이 아주 귀해서 상하 인원들이 어렵게 먹고 지내기 때문에 사세가 멀리 얼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외방에서 반록하는 것은 사체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허다한 조관(朝官)과 금군(禁軍)의 것을 어떤 인력으로 운반해 올 수 있겠는가. 반은 이미 반급하였으니, 나머지는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 경강(京江)으로 실어다가 추후에 다 주어도 해롭지 않다.' 하고 있으며, 대신의 뜻도 그러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쌀과 콩의 부족한 수를 계산해 보니, 쌀 8천 석과 콩 3천 석을 즉시 운반한 다음에야 거의 2월까지 지탱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강화도의 3천 석을 덜어내고, 콩 5천 4백 84석 안에서 5백 석을 덜어내어 미리 먼저 실어놓았다가 얼음이 풀리는 즉시 발선(發船)하여 오는 2월 15일 안으로 경창에 운반해 올 것을 경기·황연도의 감사에게 특별히 하유하소서." 하니, 따랐다.

○戶曹啓曰: "今年春等百官頒祿三手糧及各衙門員役料食, 一半題給於京倉, 一半題給於江華·**水原**兩官事, 議大臣定奪蒙允. 蓋京中米穀極貴, 上下人員, 未免艱食, 勢難遠待解氷故也. 今則群情皆以爲: '外方頒祿, 事體乖當. 許多朝官禁軍, 以何人力運來乎? 一半卽已頒給, 則待解氷運致京江, 追爲畢給不妨.' 云, 大臣之意亦然, 據此打算米太不足之數, 則必須米八千石·太三千石, 趁卽運來然後, 庶可支過二月. 請江華米三千石, 太五百石及安西·延安·白川米太, 預先裝載, 解氷卽時, 作速發舡, 二月十五日內, 運到京倉事, 京畿·黃延道監司處, 別爲下諭." 從之.

<광해군일기 148권, 광해군 12년 1월 8일(정해) 3번째기사>(정초본)

경제/재정

비국의 청에 따라 수원 군병이 수납할 곡식을 감해 주다

비국이, 수원 군병이 군량을 준비하여 종군하여 공름(公廩)을 받지 못했으니 1결분의 수납할 곡식을 특별히 견감하여 그들만이 겪은 수고를 위로해 주자고 청하니 허락하였다.

○備局請水原軍兵, 備糧從軍, 不食公廩, 特蠲其一結所納收米, 以慰偏苦, 許之.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3월 18일(을유) 3번째기사>

경제/재정

참찬관 윤지가 전분 육등, 연분 구등의 법에 관해 아뢰다

주강에 『서전(書傳)』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자 참찬관 윤지(尹墀)가 나아와 아뢰기를, "전분(田分)은 육등(六等), 연분(年分)은 구등(九等)으로 되어 있는데, 전분은 전안(田案)에 기재되어 있고 연분은 수령이 먼저 답험(踏驗)하고 도사(都事)가 다시 살펴서 수시로 높낮추는 것이 구제(舊制)입니다. 해조에서는 진실로 미리 등급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토질이 너무 척박하여 곡식이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전(量田)할 적에 비록 4, 5등으로 된 곳이더라도 연분은 하하(下下)로 정하여 1결(結)의 세금을 매양 4두(斗)씩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이 조금 잘 여물었다고 해서 갑자기 등급을 올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지난번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신(張紳)이 등급을 올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조에 보고하자, 해조에서는 기내(畿內)에 어찌 하지중(下之中)이 되는 전품(田品)이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이 한번 나가자 백성들이 실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해조에서 기필코 부세를 더 올릴지의 여부는 신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세를 더 올릴 의향이 없다면 등급을 올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당 해조로 하여금 모두 원래의 등급을 다르게 하도록 다시 의논하여 정하소서." 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甲寅/晝講『書傳』. 講訖, 參贊官尹墀進曰: "田分六等, 年分九等, 而田分則載在田案, 年分則守令先驗之, 都事覆審之, 隨時上下之, 其制舊矣, 該曹固不可預定等第也.且畿土甚瘠, 穀實不蕃, 故量田時, 雖有四五等之處, 而年分則定以下下, 一結之稅, 每收四斗. 今者謂年穀稍實, 而遽下加等之令. **頃日水原府使張紳, 以不可加等之意, 報該曹**, 則該曹答以 '畿內豈無下之中田品也?' 斯言一出, 民實驚懼. 該曹之必欲加賦與否, 臣雖不知, 若無加賦之意, 則不當有加等之語. 宜令該曹, 悉從元等, 更議以定." 上令該曹稟處.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8월 7일(갑인) 1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부사 윤지가 돈의 주조를 청해서 허락을 받다

황해 감사 남선(南銑)이 해주(海州)에서 돈을 주조토록 할 것을 청하고, **수원 부사 윤지(尹墀)도 민간에게 돈 주조를 허락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였다.**

○黃海監司南銑, 請於海州鑄錢; 水原府使尹墀, 亦請許民鑄錢, 上許之.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월 16일(정묘) 3번째기사>

경제/재정

현종이 수원부사에 제수된 이수창을 불러 흉년으로 군졸이 연습할 겨를이 없음을 당부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승지에게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고 옥당 역시 입시하게 하였다. (…) 파할 무렵에 상이 승지 김수흥(金壽興)에게 이르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수창(李壽昌)이 기다리고 있는가? 불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수창에게 이르기를, **"수원은 물산도 많고 땅이 크며 군졸이 1만여 명에 가까운데 연달아 흉년을 만나 연습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 문신을 보내지 않고 경을 보내는 것은 밭갈이는 농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은 생각한 바가 있는가." 하니,

수창이 아뢰기를, "신이 본부의 일은 아직 부임하지 않아서 아뢸 만한 것이 없으나 신이 일찍이 경상 병사로 있으면서 본도의 속오군에게 급보(給保)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감사 이상진(李尙眞)의 계문으로 인하여 궐액(闕額)을 보충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정이 옛 제도가 아니어서 한 부대 중에 화병(火兵)은 단지 한 사람뿐이어서 군대가 일어나 먼 곳으로 행군하게 되면 형세가 그 장비를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도(道)는 비록 일시에 변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도는 이미 정하여 준 보인(保人)이 있으니 그 보인을 화병에게 1명을 더 급여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내일 2품 이상 및 삼사를 명초하여 빈청에 와서 모이게 하라." 하였다.

○上御養心閤, 命承旨持公事入侍, 玉堂亦令入侍. (…) 臨罷, 上謂承旨金壽興曰: "水原府使李壽昌留待乎? 使之召入." 上謂壽昌曰: "水原物衆地大, 軍卒近萬, 而連値凶歲, 不遑練習, 今不送文臣而送卿者, 耕當問奴之義也. 卿有所懷耶?" 壽昌曰: "臣於本府事, 則時未赴任, 無可仰達者, 而臣曾任慶尙兵使, 見本道有束伍給保之規. 而今春因監司李尙眞啓聞, 有有闕勿補之令. 我國軍政非古制, 而至於一隊之中, 火兵只是一人, 軍興遠赴, 則勢難運其資裝. 他道雖不可一時變通, 本道旣有定給保人, 以其保人, 加給火兵一名, 則似便矣." 上曰: "言于該曹." 上謂承旨曰: "明日命招二品以上及三司, 使之來會於賓廳."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10월 14일(임신) 2번째기사>

경제/재정

은행이후 경기 고을의 역을 감면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좌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이번에 온천에 다녀오신 일에 대하여 신은 삼가 지나친 염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천지 신명의 도움에 힘입어 안질과 부스럼이 모두 나으셨으니 종사 신민의 경사를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모든 일을 시행할 때마다 인심에 부합되기 때문에 원근의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다 하니, 이는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유하였던 경기 고을의 역을 감해 주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태화가 이르기를, "크고 작은 고을에 따라 역을 부과한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만, 부역을 감해 주는 데에 있어서는 구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과천·광주·수원·진위·양성 등 다섯 고을은 직산과 천안의 예에 의거하여 쌀과 콩 각 1두씩을 감하라."** 하였다. (…)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 "還宮之後, 未知玉體何如?" 上曰: "姑無他患." 太和曰: "當此少愈之時, 酬應若煩, 則必有添傷之患, 凡干文書, 何必親覽? 若使承旨, 或內官, 讀而決之, 則可矣. 左議政洪命夏曰: "今此浴溫之擧, 愚臣竊不勝過慮矣, 賴天地默祐, 眼候·瘡患, 皆得快復, 宗社·臣民之慶, 可勝仰達? 且聞凡百擧措, 動合人心,

遠近莫不聳動, 此尤可幸." 上曰: "所過畿邑, 蠲役何以則可?" 太和曰: "大小邑差役, 苦歇雖殊, 而蠲賦則似不可區別矣." 上曰: "果川·廣州·水原·振威·陽城等五邑, 依稷山·天安例, 減收米及大豆各一斗." (…)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5월 22일(정미) 4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부사 유계가 수원부의 속오군의 숫자를 줄여 정예화할 것을 건의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남양 현감(南陽縣監) 민시중(閔蓍重)의 상소에 '양민의 신역이 매우 중하여 견디어내지 못한다. 지금 호적이 새로 완성된 기회를 이용하여 상중하 세 등급으로 호구를 나누어 호마다 베를 내게 함으로써 경비를 충당하게 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 참판 유계가 올린 상소의 뜻과 대략 같으며, 옛 정승 김육도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신이 좌상 홍명하와 상의했더니, '호적이 막 완성되었는데 또 호구에 대한 베를 받아들인다면 필시 백성의 원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그 법은 좋기는 하지만 경솔하게 변통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명년 가을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민시중의 상소 끝에 '부사 윤계(尹棨)가 병자년의 난리에 순절하자 휘하의 병사와 장교들이 모두 무너져 흩어졌으나, 군관 송후경(宋後璟), 고을의 아전 김택(金澤)·홍언인(洪彦仁)·홍신(洪信), 관노(官奴) 명길(命吉)과 그의 집종 한 명이 끝까지 지키다가 순절하였고, 후경만 난도질을 당할 때 목숨이 끊기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포상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의가 가상하니 증직·복호 등의 일을 해조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송후경은 해조로 하여금 수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에게 적당한 벼슬을 제수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兪瑒)의 상소에 '본부의 속오군은 누차 증가시켜서 현재 6천여 명이나 되지만 그 중에는 노약자나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도 많으니, 만일 수를 줄이고 가려 뽑는다면 정예병(精銳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부(府)에 병력이 6천 명을 초과하였으니 너무 많지 않은가. 병력은 정예롭게 만들어야지 숫자만 많이 늘리는 법이 아니니, 노약자는 모두 면제해 주고 정예하고 건장한 자만을 뽑아내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군(馬軍)은 10초(哨)로 한정하고 보군(步軍)은 30초로 한정하되, 영구히 확정된 액수로 삼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相鄭太和曰: "南陽縣監閔蓍重陳疏以爲: '良民身役甚重, 不能保存. 今因戶籍新成, 分上中下三等之戶, 戶各出布, 以爲經用.' 云. 此與故參判兪棨疏意略同, 故相金堉亦爲此說. 而臣與左相洪命夏相議, 則以爲戶籍纔成, 又收戶布, 則必有民怨云矣. 諸臣皆言: '法非不善, 而不可率爾變通.' " 上命待明秋更議. 太和曰: "蓍重疏末言: '府使尹棨, 死節於丙子之亂, 手下兵校, 無不潰散, 而軍官宋後璟·縣吏金澤·洪彦仁·洪信·官奴命吉及其家奴一人, 終始相守以身殉焉, 獨後璟喉息未絶於亂斫時, 至今生存, 宜示褒奬之意.' 云. 此人等, 節義可尙, 贈職復戶等事, 請令該曹稟處." 上從之. 洪命夏曰: "後璟則令該曹收用似宜矣." 上曰: "相當職除授, 以爲激勸之地." 太和曰: "水原府使兪

瑒疏言: ‘本府束伍, 逐年加增, 至於六千餘人, 而其中多老弱逃故, 若減額抄擇, 則可得精鍊.’ 云矣.” 上曰: “一府之兵, 至過六千, 不已多乎? 兵務精不務多, 其除老弱留精壯者. 馬兵十哨·步兵三十哨, 永爲定額, 無得加減.”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1월 6일(임오) 2번째기사>

경제/재정

비변사가 경기 고을의 진휼을 위해 강도의 콩을 풀고 수원 군병에게 지급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일찍이, 강도(江都)의 해묵은 콩 1만 섬을 경기 고을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또 6백 섬을 수원의 군병들에게 나누어 지급할 것을 청했었는데,** 강도의 저축이 부족하여 숫자에 맞추어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자, 원수(元數) 안의 1천 6백 섬은 경창(京倉)의 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가 가을에 다시 경창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였다.

○朔日辛亥/備邊司曾請以江都陳豆一萬石, 分給畿邑之民, 又以六百石, 分給水原軍兵矣. 江都所儲不足, 有難準給, 元數內一千六百石, 則請以京倉豆分給, 待秋還捧於京倉, 上允之.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5월 1일(신해) 1번째기사>

경제/재정

가뭄에 따른 대동법의 개정에 관해 논의하다

대신(大臣)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고, (…) 이상진이 말하기를, “**대동(大同)의 법규(法規)가 균등(均等)하지 못하여**, 금천(衿川)·과천(果川) 같은 곳에서는 관수(官需)가 5, 6석이고, **수원(水原)은 고을이 큰데도 10석에 그칩니다.** 그런데 호서(湖西)에서는 작은 고을이 오히려 12석이 되고, 호남(湖南)에서는 또 호서보다 더하며, 기타 물종(物種)의 값도 또한 너무 많습니다. 전선가(戰船價)에 이르러서는 새로 건조(建造)할 때에는 3백 석을 주고, 개수(改修)할 때에는 1백 50석을 주는데,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모두 줄여야 합니다.”
하였다. (…)

○乙亥/引見大臣·備局諸宰. (…) 壽恒曰: “敏叙疏又陳兩南大同, 物價定式過多, 宜令該廳量減矣.” 尙眞曰: “大同之規, 甚不均. 如衿·果川則官需五六石, 水原邑大而止十石, 湖西則小邑猶爲十二石, 湖南則又勝於湖西, 其他物種價亦過濫. 至於戰船價, 新造則給三百石, 改槩則給百五十石, 此等宜皆裁減矣.” (…)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5월 23일(을해) 1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부사 민진원이 군정 등의 폐단에 대해 진달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민진원(閔鎭遠)이 본부(本府)의 군액(軍額) 이전(移轉) 및 경계를 넘어 잡역(雜役)하는 것 등, 세 가지 폐단을 조목별로 진달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서 변통(變通)하라고 명하였다.

○水原府使閔鎭遠, 條陳本府軍額移轉及越境雜役等三弊, 上命廟堂變通.
<숙종실록 36권, 숙종 28년 4월 9일(경신) 2번째기사>

경제/재정

김덕기의 공초 내용에서 수원에서의 행적을 언급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김덕기(金德基)·한영휘(韓永徽)·이동언(李東彦)의 일로 언의(讞議)를 올리니, 임금이 명하여 모두 놓아주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세 사람이 지평(持平) 조태억(趙泰億)의 삭판(削版)하라는 논핵(論劾)을 받아 의금부 관리에게 내려 구핵(究覈)하게 하였는데, 김덕기가 공초(供招)하기를, "쌀자루[米帒]의 일은 집에 양친(兩親)이 있으므로, 과연 요(料)를 보낸 일이 있는데, 혹시 고을이 멀어서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을이 쇠잔(衰殘)하고 길이 멀어서 또한 달마다 요(料)를 보내지는 못하였는데, 사정(私情)이라고 일컬어 이로써 효도(孝道)로 다스리는 때에 죄를 받으니, 어찌 감히 한 마디 말로 억지로 변명하겠습니까? 면사(綿絲)를 거둔 일은 관아(官衙)의 이속(吏屬)이 그 삭료(朔料)를 가지고 누에고치를 사들여 관비(官婢)로 하여금 실을 만들게 하여 거둔 것으로 이는 각 고을에서 통행(通行)하는 일에 불과(不過)한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갑자기 대신(臺臣)의 소장(疏章)에 넣었으니, 진실로 이 몸의 죄가 되나, 과독(課讀)이 매우 엄하다는 말은 도리어 한번 웃을 만합니다. 누룩[麴子]의 일은 더욱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제멋대로 탐도(貪饕)하고자 한다면 어찌 계책이 없음을 근심하여 바로 이런 지극히 졸렬(拙劣)하고도 천박(淺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은화(銀貨)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모두 장부의 기록이 있고, 또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며, 은을 속에 싸서 누룩을 밟는 것은 또 마땅히 사람을 시켜하여야 하니, 여기에서 은휘(隱諱)할 수 없는데, 도리어 가져갈 때에 은휘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누룩이 비록 크다 하더라도 만약 열 몇 조각의 은을 속에 싼다면 결코 밟아서 누룩을 굳게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고, 설령 겨우 모양을 이룬다 하더라도 길이 멀고 짐이 무거워서 결코 많이 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이같은 별양(別樣)의 큰 누룩은 보는 사람이 반드시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니, 은휘(隱諱)하고자 하는 계책에서 벗어난다고 이를 만합니다. 금·은은 본래 가벼운 재화(財貨)인데, 이제 도리어 바꾸어 무겁고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을 만들면 저절로 발각될 것이니,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臺臣)이 비록 극도로 구함(構陷)하려고 하였으나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졸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룩은 몇차례 올려 보낸 때가 없지 않았으나, 누룩을 만든 사람과 받아 가지고 온 관복(官僕)에게 묻는다면 추악한 무함을 씻을 수 있습니다. 동래부(東萊府)에서 새로운 은이 나온 뒤로 은의 유통(流通)의 길이 매우 좁아지고, 또 그것이 다른 물건과 다르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사사롭게 쓴 정상(情狀)이 없음을 천지 귀신에게 질정(質正)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불의 일은 부모의 나이가 높지만 이른바 백세 의금(百歲依衾)을 가난하여 일찍이 만들어 두지 못하였는데, 삭봉(朔俸)이 넉넉해졌으므로 비단을 사들여서 이불 네 채와 두루마기·바지 각각 한 벌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늙은 아비가 추은(推恩)을 받아 자급(資級)이 올랐으므로, 홍단령(紅團領)과 흑단령(黑團領) 두 가지를 또한 비단을 사서 갖추었는데, 지금 이 대계(臺啓)에서 네 채의 이불을 억지로 그 수량을 갑절로 늘리면서 단령은 어찌 거론(擧論)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모를 위한 은전(恩典)을 사치스럽게 하는 도구와 귀후(歸厚)의 물자(物資)는 인자(人子)의 그만둘 수 없는 정리(情理)라고 생각하였으니, 진실로 숨기고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전(移轉)하여 조곡(糶穀)을 나누어 준 일은 모두 곡절(曲折)이 있습니다. 대동미(大同米)는 광주(廣州)에 획급(劃給)할 때에는 그 허소(虛疎)함을 염려하여 일일이 휘[斛]로 되었는데, 광주 백성이 처음에는 남은 곡식을 가져온 것이라 하여 받지 않다가 뒤에 전체의 수량을 모두 받아갔으며, 조곡(糶穀)은 나누어 줄 때에 백성

의 원에 따라 헤아려 주었더니, 남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비운 뒤에 또 향색(鄕色)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소제하고 키질하여서 5, 6월 무렵에 굶주린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전후로 헤아려 준 것이 모두 전해오며 두루 쓰이는 말과 휘를 썼으니, 어찌 작은 말로 바뀌썼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향색(鄕色)과 고자(庫子)가 모두 있으니, 실상(實狀)을 분변(分辯)하여 밝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헤아려 주고 남은 그 수량이 얼마나 되며, 쥐가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잗단 것인데, 이것으로써 백성을 괴롭혀서 내 몸을 살찌게 하는 자료(資料)로 삼겠습니까? 장사(庄舍)의 일은 금천(衿川)의 박장(薄庄)을 계해년에 샀는데, 50여 두락(斗落)의 땅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초가(草家) 7간(間)과 와가(瓦家) 3간이 있는데, 원래 서까래 하나도 새로 보수한 일이 없으므로, 해가 오래되어 썩고 무너진 것을 모두 자가(自家)에서 요리(料理)하여 사들였습니다. **과연 수원(水原)에 있을 때에 마련한 것이라면 지급한 값은 반드시 관고(官庫)에서 나오고 가져다 준 사람으로 반드시 관속(官屬)이 있을 것이니,** 엄중히 조사할 때에 과연 일분(一分)이라도 대계(臺啓)에 근사(近似)한 것이 있다면 비록 만번 죽임을 받더라도 마음에 달갑게 여기겠습니다. 염문(廉問)할 때의 일은 계속하여 그 피사(避辭)를 보건대, 곧 오두성(吳斗成) 및 유성(柳姓)의 아전을 증인으로 삼아 대신(臺臣)이 말하기를, '오두성과 서로 친하다면 반드시 뇌물을 써서 죄를 면할 계책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나, 서로 소원(疏遠)하다고 한다면 어사(御史)의 주의(主意)가 어떠한지 모른 채 어찌 감히 갑자기 쌀짐을 곧장 보냈겠습니까? 인정(人情)과 사세(事勢)로 참작하여도 절대로 이치에 가깝지 못한데 그가 이미 들은 바가 참되고 틀림없음을 증명하였으니, 이것이 누누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곧 그 무함(誣陷)을 분변(分辨)할 수가 있습니다. 만단의 조어(措語)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절박(切迫)함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세상에 어찌 부모 없는 사람이 있기에 청조(淸朝)의 효도(孝道)로써 다스리는 때에 차마 이런 아주 패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친정(親庭)에 음식물을 보낸 것을 핑계하여 어버이를 봉양하는 예절에 죄를 구(求)하다가 뒤에는 곧 소홀(疏忽)하였다는 죄로써 단정(斷定)하였는데, 다만 불효(不孝)하고 무상(無狀)한 것으로 인하여 평일(平日)의 언행(言行)이 남에게 신임받지 못하여서 이러한 망극(罔極)한 말을 이르게 하였으니, 다시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義禁府獻讞金德基·韓永徽·李東彦事, 上命竝釋之. 先是, 三人等, 被持平趙泰億削版之論, 下吏究覈. 德基供曰: "米伻事, 家有兩親, 果有送料之事. 或因遠邑難致, 貿錢以送, 而邑殘程迫, 亦不得逐朔送料, 以稱私情. 以此受罪於孝理之下, 則何敢一言强辨? 收絲事, 衙屬以其朔料, 貿得蠶繭, 使官婢作絲收捧, 不過各邑通行之事. 此等微細, 遽入臺章, 固爲身罪, 而課讀甚嚴之說, 還可一笑. 麵子事, 尤不近理. 欲肆貪饕, 何患無策, 而乃爲此至拙至淺之擧乎? 銀貨出入, 皆有薄記, 又有典守之人, 而胎銀踏麵, 又當使人爲之, 則不能隱諱於此, 反欲隱諱於持去之際者, 已不成說. 且麵子雖大, 若胎十數片銀, 決難踏堅成麵. 設令僅成貌樣, 遠路卜重, 決難多致, 而況如許別樣大麵, 見者必爲疑怪, 其於欲爲隱諱之計, 可謂遠矣. 金銀, 本是輕貨, 而今反變作重大難運之物, 自致敗露, 人雖至愚, 必不爲此. 臺臣雖欲極構, 可謂欲巧反拙, 而麵子則不無數次上送之時. 問諸造麵者及領來官僕, 則可雪醜誣矣. 萊府, 自新銀之後, 銀路甚窄, 且以其異於他物, 不欲染指. 分銖無私用之狀, 可質於天地鬼神. 錦衾事, 父母年高, 所謂百歲衣食, 貧不曾造置, 而朔捧餘優, 故貿得錦匹, 造衾子四件及襖裳各一. 適於其時老父, 被推恩陞資, 紅黑團領二件, 亦以錦段貿備矣. 今此臺啓四衾, 勒倍其數, 團領何不擧論? 爲父母侈恩之具, 歸厚之資, 竊謂人子情理之所不可已, 則固非欲掩之事. 移轉及分糶事, 俱有曲折. 大同米劃給廣州之時, 慮其虛踈, 一一斛量, 廣民初謂之取剩不受, 後乃盡數受去. 糶穀分給時,

從民願量給, 所餘無多, 而傾庫之後, 又令鄕色監掃簸揚, 五六月之間, 白給飢民, 而前後量給, 皆用流來行用之斗斛. 豈有換用小斗之理乎? 鄕色·庫子俱在, 實狀不難辨明矣. 量給之剩, 其數幾何, 鼠殘之餘, 何等鄙細, 而以爲虐民肥己之資乎? 庄舍事, 衿川薄庄, 癸亥所買, 不過五十餘斗落種之地. 中有草家七間·瓦家三間, 元無一椽新補之事, 年久朽傷, 而皆自家中, 料理買取. 果是水原時所辦, 則所給之價, 必出官庫, 持給之人, 必有官屬. 嚴查之際, 果有一分近似於臺啓者, 則雖萬戮甘心矣. 廉問時事, 續見其避辭, 則乃以吳斗寀及柳姓吏爲證. 臺臣以爲, 與斗寀相親也, 則必無行賂免罪之計, 謂之相踈也, 則不知御史主意之如何, 何敢直送米駄於猝然之頃乎? 參以人情事勢, 萬不近理, 而彼旣證所聞之眞的, 此則不待縷縷自明, 可以立辨其誣. 至若末梢措語, 不覺痛迫. 世豈有無父母之人, 而淸朝孝理之下, 忍發此等絶悖之言? 始則稱以親庭送饋, 求罪於養親之節, 終則直斷以踈忽之罪. 只緣不孝無狀, 平日言行, 無以見信於人, 致此罔極之言, 更無所達" 云, 馬尿·水草等事, 亦皆據實以對.(…)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8월 10일(정축) 3번째기사>

경제/재정

경기 도사가 전정 문제로 수원 부사 윤취상의 파직을 청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 예조 참판 민진원(閔鎭遠)이 기민(圻民)을 진휼(軫恤)하는 방도를 진달하고, 최석정이 봄 가을의 대동미(大同米)를 각각 1두(斗)로 감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기 도사(京畿都事)가 전정(田政) 때문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취상(尹就商)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윤취상은 일찍이 대장(大將)을 거쳤으므로 수원에 부임케 하였던 것이고,** 또한 수거(修擧)할 일이 있다 하여 잉임(仍任)시키려고 하자, 최석정이 찬성하였으므로 드디어 잉임시키라고 명하였다. 사간(司諫) 이하원(李夏源)이 다투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引見大臣·備局諸臣. (…) 禮曺參判閔鎭遠, 陳圻民軫恤之道, 錫鼎請春秋大同米, 各減一斗, 從之. **京畿都事, 以田政, 啓罷水原府使尹就商**. 上以就商曾經大將, 赴水原, 亦有修擧, 欲仍任, 錫鼎贊之, 遂命仍任. 司諫李夏源爭之, 不聽.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11월 13일(신유) 2번째기사>

경제/재정

연분의 실수 감정을 잘못한 도회관 전 수원부사 이교악 등을 파직시키다

간원(諫院)에서 전에 계달한 것을 아뢰고, 또 말하기를, "각 고을에서 연분(年分)의 실수(實數)를 감정(勘定)한 뒤에도 도회관(都會官)을 정하여 그 실제 결수(結數)에 따라 문안(文案)을 만들어 해조(該曹)에 보내는 것은 전부터 제도(諸道)에서 통행하여 온 규례입니다. 지금 열 고을에서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 실수가 감축되었으니, 이는 각 고을 수령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때에 도회관도 잘 검찰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세자가 다만 정수송(鄭壽松)과 소장의 말단에 기록된 일만을 따랐다. **도회관으로서 좌죄(坐罪)되어 파직당한 자는**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조명겸(趙鳴謙)·전 춘천 부사(春川府使) 신광하(申光夏)·부평 부사(富平府使) 최석필(崔錫弼)·**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교악(李喬岳) 등 4인이었다.**

○諫院申前達. 又言: "各邑年分實數勘定之後, 定都會官, 從其實結, 送成案于該曹者, 自是諸道通行之規. 今此十邑收稅實數之減縮, 非但各邑守令之責, 其時都會官, 難免不能檢察之失.

請竝罷職.” 世子只從鄭壽松及末端事. 都會官坐罷者, 前江陵府使趙鳴謙·前春川府使申光夏·富平府使崔錫弼·前水原府使李喬岳等四人.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1월 10일(기미) 2번째기사>

경제/재정

송수형이 호조의 수원 언전을 궁가 차인을 보내 점유한 일 등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지평 송수형(宋秀衡)이 상소하여, **호조(戶曹)의 수원(水原)의 언전(堰田)을 궁가(宮家)의 차인(差人)이 멋대로 점유(占有)한 폐해를 말하고**, 또 연해(沿海) 고을들의 군향(軍餉)이 허술한 폐단을 말하여, 절반은 창고에 머물러 두는 법을 엄중하게 하기를 청하고, 또 추쇄관(推刷官)의 폐단을 논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持平宋秀衡上疏, **言戶曹水原堰田宮差橫占之弊**, 又言沿海邑軍餉虛踈之弊, 請嚴折半留庫之法, 又論推刷官之弊, 上嘉納.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윤3월 16일(계유) 3번째기사>

경제/재정

좌의정 송인명이 내수사가 수원의 목둔을 절수하였다고 하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강화도의 군량미가 성을 쌓는 역사에 많이 쓰였다고 하여 선혜청(宣惠廳)의 미곡 3만 석을 강화도에 지급하여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국가에서 목둔(牧屯)의 정사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여러 도에 목둔을 설치하고 조세를 거두어 나라의 용도(用度)에 보태었느데, **근래에 목둔이 많이 절수(折受)하는 데로 돌아가게 되어 수원(水原)의 목둔이 또 내수사(內需司)의 절수하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목마(牧馬)하는 곳이 없고 단지 조세만 거두는 곳은 비록 절수하는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목마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다가 방목하도록 하고 절수하는 전지로 만드니, 이것은 전대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목둔의 정사가 이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大典)』을 수정하여 바로잡는 때에 어찌 이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중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左議政宋寅明, 以江都軍餉, 多用於城役, 請劃給宣惠廳米三萬石于江都, 以爲緩急之備, 從之. 寅明又言: “國家以牧政爲重, 設屯諸島, 收稅補用, 而近來牧屯, 多歸折受, 水原牧屯又入於內司折受矣. 無牧馬而只收稅處, 則雖有折受之例, 至於有牧馬處使之移放他處, 而折受作田, 前所未有也. 來頭牧政, 恐因此廢壞矣.” 上曰: “修明『大典』之日, 何可爲此? 其寢之.” (…)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11월 12일(을유) 2번째기사>

경제/재정

이조참판 김상로가 수원의 쌍부창을 권세로 점유하기 위해 장사를 지내다

(…) **수원(水原)의 쌍부창(雙阜倉)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승지(勝地)로 이름났기 때문에 종전에 권귀(權貴)의 집에서 군침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으나, 국초부터 창고를 설치한 땅을 감히 옮기지 못한 것은 진실로 국법을 두려워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조 참판 김상로(金尙魯)가 스스로 권세를 믿고 감히 점유할 계책을 내어 은밀하게 지방 수령에게 부탁하고 이익으로 시골 백성을 꼬드겨서 민원(民願)을 가탁(假托)하여 억지로

하소연하도록 하였습니다. 60여 칸의 창해(倉廨)를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고 이어서 입장(入葬)하니, 무릇 몇 백 년 동안 설치된 창사(倉舍)가 지금까지 폐해가 없이 거듭 새롭게 하였다고 귀로 들어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김상로가 산을 점유할 즈음에야 민폐가 된단 말입니까? 관의 명령이 이미 엄하고 부민(富民)이 협조하여 턱으로 지시하고 눈으로 시킴에 위풍에 쏠려 옮겨졌으니, 경영함이 교밀(巧密)하여 전하는 이야기가 낭자하니 해괴하여 탄식하고 분하여 꾸짖는 이가 없지 않으나 대세에 눌려 감히 누구도 어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도 감히 위에 알리는 자가 없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사심을 부려 법을 능멸하고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죄는 진실로 논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수재(守宰)가 되어 가지고 그 좋아하는 바에 아부하고 공기(公基)를 가벼이 허락하기를 마치 사물(私物)을 빌리듯이 하는 자가 또한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조 참판 김상로와 그 지방관을 아울러 나문(拿問)하여 핵처(覈處)하도록 명하소서. (…)

○ (…) **水原雙阜倉之設**, 其來久矣. **以勝地得名, 從前權貴之家, 莫不流涎, 而自國初設倉之地, 不敢移動者, 固出於畏國法之意**. 而廋者吏曹參判金尙魯, 自恃權勢, 敢生圖占之計, 密囑土倅, 利誘村氓, 假托民願, 勒令呈訴. 六十餘間倉廨, 一朝毁撤, 而仍爲入葬, 夫幾百年設置之倉舍, 流來無弊, 重新屬耳, 何故忽爲民弊於尙魯占山之際乎? 官令旣嚴, 富民挾助, 頤指目使, 望風移遷, 營爲巧密, 傳說狼藉, 無不駭歎憤罵, 而大勢所壓, 莫敢誰何. 尙無一人敢以上聞者, 誠可寒心. 逞私蔑法, 放肆無忌之罪, 固無論已. 身爲守宰, 阿其所好, 輕許公基, 如假私物者, 亦豈可無罪乎? 請吏曹參判金尙魯及其地方官, 幷命拿問覈處. (…)

<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2월 22일(무인) 1번째기사>

경제/재정

영조가 대동미 200석을 수원 등에 획급하여 관용에 보태게 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특별히 대동미(大同米) 2백 석(石)씩을 양주(楊州)와 수원(水原)에 각각 획급(劃給)하여 관용(官用)에 보태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두 고을에서 모두 은결(隱結)을 사실대로 자백하여서 관용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였는데,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청하여 드디어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上引見大臣·備堂, 命別劃大同米, 給楊州·**水原**各二百石, 以補官用. 時, 二邑皆以隱結首實, 官用難支, 道臣狀聞, 大臣筵請, 遂有是命.

<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12월 21일(신축) 2번째기사>

경제/재정

영의정 김상철이 수원과 광주가 방영이라 결전을 면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임금이 〈효종(孝宗)이 승하한 해의〉 60주(周)가 거듭 돌아왔다 하여, 장차 영릉(寧陵)에 가을 전알(展謁)을 행하고자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좌의정 서명선(徐命善)·수어사(守禦史) 서명응(徐命膺)·경기 관찰사 정창성(鄭昌聖)을 소견(所見)하여 행행(行幸)하는 일을 강정(講定)하였다. 김상철이 총융사(摠戎使) 김효대(金孝大)가 병이 있다 하여 체직(遞職)을 윤허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조련(操鍊)을 정지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거의 가을 농사가 잘 여물 희망이 있으니, 수군(水軍)·육군(陸軍)의 윤조(輪操)·합조(合操)를 정식(定式)대로 설행(設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 두 영(營)이 행행(行幸)의 시기가 가깝다 하여 조련을 정지하였으므로, 곧 삼남(三南)에 명하여 조련을 정지하게 하였다. 김상철이 또 아뢰기를, "**혜청 당상(惠廳堂上)이 수어청(守禦廳)의 급대미(給代米) 4백 30석을 영구히 출급(出給)하지 말 것을 아뢰어 윤허받았는데 수원(水原)·광주(廣州)는 방영(防營)이라 하여 특별히 결전(結錢)을 면제하였습니다.** 그 뒤에 **수원**은 군액(軍額)을 죄다 파하고 결전을 거두어 총융청에 보내어 급대(給代)의 비용으로 삼았고, 광주는 유수(留守)가 또한 이 상황을 원인(援引)하여 균청(均廳)에서 그 결전을 거두어들이고 4백 30석을 본부(本府)에 출급하여 장사(將士)에게 지방(支放)할 밑거리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이제 영구히 이 쌀을 폐지하면 지방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니, 쌀을 혜청에 머물러 두되 받아들인 결전을 액수에 준하여 수어청에 도로 갚은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寅/上以舊甲重回, 將行秋謁于寧陵, 召見領議政金尙喆·左議政徐命善·守禦使徐命膺·京畿觀察使鄭昌聖, 講行幸事. 金尙喆以摠戎使金孝大有病, 請許遞. 從之. 又啓言: "諸道操鍊, 停廢已久, 秋事庶有登熟之望, 水陸輪操·合操, 依定式設行." 從之. 守·摠兩營, 以行幸期近, 停操, 旋命三南停操. 尙喆又啓言: "惠廳堂上, 以守禦廳給代米四百三十石, 永不出給事, 陳達蒙允, 而**水原**·廣州, 以防營獨免結錢. 其後**水原**盡罷軍額, 以結錢收送摠廳, 以爲給代之費. 廣州留守, 亦引此狀, 請自均廳, 收納其結錢, 而以四百三十石, 出給本府, 以爲將士支放之資. 今若永罷此米, 則支放專闕米, 則留置惠廳所捧結錢, 準數還報守廳爲宜." 從之.

<정조실록 8권, 정조 3년 7월 8일(경인) 1번째기사>

경제/재정

호조판서 정민시가 수원 등 10고을에서 쌀이 도감되었으니 해당 수령을 나문하라고 청하다

차대(次對)하였다. (…) 호조 판서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각도(各道) 군작미(軍作米)의 회안(會案)을 상고하여 보니, 경기의 수원(水原) 등 10고을에서 신묘년 부터 을미년까지 분등(分等)에 따라 도감(盜減)된 쌀이 8백여 석(石)이고 조(租)가 1천 7백여 석입니다.** 각 해당 읍(邑)의 회안을 마감(磨勘)한 수령을 나문(拿問)하고, 도감된 곡물은 청컨대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받아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丁酉/次對. (…) 戶曹判書鄭民始啓言: "考見各道軍作米會案, 則京畿**水原**等十邑, 自辛卯至乙未, 逐等盜減米, 爲八百餘石, 租爲一千七百餘石. 各該邑會案磨勘守令拿問, 盜減穀物, 請詳覈畢捧." 從之. (…)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8월 27일(정유) 1번째기사>

경제/재정

원역고를 화성에다 설치하다

원역고(園役庫)를 화성(華城)에다 설치하였다. 하교하기를, "원소(園所)와의 정도(程道)가 서울에서 꼭 1백여 리(里)도 넘으므로 향(香)을 전달하기 위해 왕래하는 일도 오히려 먼곳에 있는 능(陵)의 규례를 쓰게 된다. 또 본원(本園)의 제반 일에 대해서는 모두 폐단을 줄이려고 하는 판국인데, 더구나 석물(石物)을 다듬거나 석회를 바르며 비가 새는 집을 고치는 따위의 사소한 일들은 더욱이 탁지(度支)에 그 책임을 지움으로써 경공인(京貢人)들에게 허다한 폐해를 끼칠 필요가 없다. 경기 관찰사가 친히 연교(筵敎)를 받들어 본 지방에서 원관(園官)의 입회 아래 함께 편리한 대로 거행을 하라. 물력(物力)을 저장해 두는 곳도 양주(楊州)의 전례에 의하여 이름을 '원역고(園役庫)'라고 하고, 도백(道伯)이 관할하면서 연

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장계(狀啓)로 보고하라.
또한 해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공물에 따라 공사를 구획하되, 묘당에서는 자세히 헤아려 초기(草記)를 올리고, 호조 선혜청의 당상관과 경기 관찰사는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가지고,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뒤에 써서 장계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폐단은 즉시 제거하고 공사는 반드시 견실하게 하려는 뜻을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置園役庫于**華城**. 敎曰: "園所程道, 去京恰過百餘里, 傳香往來, 猶用遠陵之例. 且於本園凡事, 皆欲省弊, 況些少修改, 如石物塗灰雨漏等事, 尤不必責之度支, 以貽京貢人許多弊端. 畿伯親承筵敎, 自本地方與園官眼同, 從便擧行. 物力儲置, 亦倣楊州例, 名之曰園役庫, 道伯句管, 歲終勘簿狀聞. 亦依惟正之供, 事役區劃, 廟堂詳量草記. 戶惠堂·畿伯, 就議大臣, 成節目, 令畿營後錄狀聞, 以示弊則除, 而事工則必欲堅緻之意."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1790) 2월 19일(경오) 7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새 고을의 토지의 조세를 제 1등급의 규례대로 면제해 주게 하다
수원 새 고을의 민호에게 토지 5백 결에 대한 조세를 제 1등급의 규례대로 면제해줄 것을 명하고, 하교하기를,
"봄에 **현륭원**을 참배하고 숙소에 돌아와 머물면서 새 고을의 민호에 대해 그 살림살이와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려는 정사에 마음이 간절하여 윤음을 불러 쓰게 하느라 촛불을 여러 번 갈아대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밤을 새웠다. 또 환궁한 뒤에도 특별히 윤음을 내렸는데, 그중 한 조목은 바로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이고 부역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새 고을 백성들의 살림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근래에 호조에서 아뢰는 말을 들으니 제 1등급으로 희망하는 **수원** 백성들의 마음에 실망하는 한탄이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대체로 결세를 면제하는 규례는 일정하지 않다. 왕릉 토지의 면세도 있고, 역참토지의 면세도 있고, 아전들 토지의 면세도 있고, 효자 열녀 토지의 면세도 있고, 기타 잡다한 면세도 있다. 결세·대동세·마초·쌀 등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세라고 불리는 것을 전부 면제해주는 것이 1등급이 된다. 그 다음은 혹 세만 면제하고 공물은 면제하지 않으며, 또 혹 공물만 면제하고 잡비는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단계가 매우 많다. 지금 **수원**의 백성들에게 중등이나 하등의 규례를 적용한다면 이것이 어찌 내가 처음부터 돌보아주려고 애쓴 본의이겠는가. **수원**부 새 고을의 민호에게 5백 결에 대한 세를 면제해주되, 특별히 제1등급의 규례에 의하여 거행하라.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 부사에게 공문을 보내 이 전교를 민중에게 반포하여 토지에서 바치는 것은 없고 혜택은 고루 미치게 하였다는 뜻을 환히 알게 하라." 하였다.
○甲寅/命**水原**新治民戶, 給復五百結, 依第一等例. 敎曰: "春謁園寢, 還住宿次, 惓惓於新治民戶裕産足食之政, 呼宣十行, 不知蓮燭屢跋, 而坐夜向曙. 又於廻鑾之後, 別下綸音, 其中一條, 卽給復之以稅, 不以役也, 意謂大有裨益於新治民産. 近聞度支之臣, 警咳之說, 以水民希其第一等之心, 得無觖鬱之歎乎? 大抵結復, 其例不一. 有陵復焉, 有驛復焉, 有人吏復焉, 有孝烈復焉, 有雜復焉. 與田稅·大同·草米等出於土而名以稅者, 竝蠲爲第一等, 其次或蠲稅不蠲貢, 又或蠲貢不蠲雜費, 層節甚多云. 今於水民, 用中下等之例, 則是豈自初辛勤之本意乎? 本府新治民戶給復五百結, 特依第一等之例擧行. 卽令廟堂行會該府, 使以此傳敎, 頒布民衆, 曉然知土無所納, 惠則徧被之意."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12월 8일(갑인) 1번째기사>

경제/재정

광주와 용인 등 고을에 있는 지방 창고를 수원부 소재지로 옮겨 세우도록 명하다

광주(廣州)와 용인(龍仁) 등 고을에 있는 지방 창고를 수원부 소재지로 옮겨 세우도록 명하였다. 대신 채제공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命廣州·龍仁等邑外倉, 移建于水原府治. 用大臣蔡濟恭之請也.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3월 11일(을유) 2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지역의 게 진공을 영구히 면제시키다

경기 고을의 올해 공해(貢蟹)를 중지시키고 이어 **수원의 공해는 영구히 면제시킬 것을 명했는데, 장마 때문이었다.**

○停畿邑今年貢蟹, 仍命水原貢蟹, 永許蠲免. 以水潦故也.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7월 24일(정유) 2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부의 오래 전부터 묵힌 토지에 급대하는 일로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조정에서 수원부(水原府)를 도성의 오부(五部)처럼 보는 처지에서 그곳에 고통이 있다면 어찌 범연히 볼 수가 있겠는가**. 해당 부사의 말을 들으니 오래 묵은 밭이 백여 결이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설사 금년에 새로 결정한 재결(災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당연히 전부터 묵혀 버려진 토지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그 혜택을 입을 것이며 토지가 어찌 그 세금을 감면받겠는가. 그렇다면 본부 지방은 비록 재해로 인한 혜택을 받는 대열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니, 이 어찌 조정에서 본부를 위하는 뜻이겠는가. **수원부의 오래 전부터 묵힌 토지는 그 실제 수효만큼 즉시 면제시켜주도록 하라.**

본부에서 비용으로 쓰는 것도 역시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 있다. 옛날에는 세금을 거두었더라도 지금은 중요한 곳이라 하여 부세를 면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며, 그밖에 햇수를 제한해 세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조건으로 부의 비용을 줄여준 것이 또한 얼마나 되는가? 비록 다른 고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급대(給代)를 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본부이겠는가. 조정이 경황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니 좌상은 전 부사와 현 부사에게 물어 연한을 정해 급대할 것과 햇수를 따져 추후로 급대할 것과 영원히 급대할 것을 차등을 나누어 구분해서 아뢰도록 하라."

○敎曰: "朝廷之視水原府如部內, 凡有疾苦, 豈可泛視乎? 聞該府使言, 有舊陳百許結云. 設令今年有新執之災結, 皆當盡歸於流來陳棄之土, 民何以食其效, 土何能蠲其稅? 然則本府地方, 雖謂之不入於俵分之列, 非過語, 是豈朝家爲本府之意乎? 水原府舊陳田土, 從實數卽令免給. 本府支應之需, 亦有別般區劃者. 昔之收稅而今爲所重, 免其賦, 果幾許乎? 外此如限年給復等各項條件, 府用之減縮, 亦果幾許乎? 雖在他邑, 猶當給其代, 況本府乎? 朝家未遑, 至今無措處. 左相問于前府使·時府使, 限年給代者, 計年追給代者, 永爲給代者, 分等區劃以啓."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8월 24일(병인) 2번째기사>

경제/재정

경기도와 수원의 전·현직 관리에게 원행시의 음식 마련에 정례를 바로잡게 하다

경기 관찰사 서정수(徐鼎修), 수원 부사 이경무(李敬懋), 전 부사(府使) 조심태(趙心泰)·김사목(金思穆)에게 명하여 정례(定例)를 바로잡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저 먼 길을 행차할 때 임금의 음식물 마련은 여러 고을에서 담당하는데 만약 서울 관청에서 한다면 실어 나르는 폐단이 또한 갑절이나 될 것이다. 더구나 **수원**은 서울에서 1백 리나 되는 거리이고 또 더구나 해마다 행차하니 제도를 정할 때에 마땅히 서울과 지방이 모두 편리한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금번의 행차는 규정을 정한 초기이니 십분 엄격하게 조목을 세운 뒤라야 영구히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생선 1마리나 과일 1개라도 혹 정한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사적으로 바치는 것이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마땅히 적발되는 대로 중히 다스릴 것이니 이를 **본부(本府)의 장남헌(壯南軒)**에 써서 게시하라." 하였다.

○丁酉/命京畿觀察使徐鼎修與水原府使李敬懋·前府使趙心泰·金思穆釐正定例. 敎曰: "凡遠道行幸, 御膳支應, 列邑當之, 若自京司, 則輸載運致, 其弊亦倍. 況水原距京爲百里地, 又況年年臨幸, 則其所定制, 宜念京外俱便之方. 今行定例之初也, 十分嚴立科條, 然後可以永久遵守. 雖一鮮魚一果品, 或有違越於定制者, 是私獻也, 其罪不輕. 當隨現重繩, 書揭于本府壯南軒."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7일(정유) 1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부의 공물로 게를 바치는 것을 면제하다

수원부와 과천현(果川縣)에서 공물(貢物)로 게[蟹]를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었다.

○庚申/蠲水原府果川縣蟹貢.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7월 29일(경신) 1번째기사>

경제/재정

우의정 이병모가 화성 역성의 타당성을 널리 자문할 것을 건의하다

묘당에 명하여 **화성** 성역에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널리 자문하여 보도록 하였는데,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무릇 국가에 공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민력(民力)을 쓰는 것은 유사가 비용을 아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공사(公事)에 앞다투어 부역하는 의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으로, 국조에서 이미 시행한 일들을 볼 때 역력히 입증됩니다. **오늘날 화성의 성역이야말로 그 소중함이 어떠하고 관계가 어떠합니까.** 그러나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는 성상의 고심(苦心)과 지극한 뜻에서 공역을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부역을 자원하는 무리들까지도 일체 부역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어찌 성상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자식이 어버이의 일에 달려 나가는 도리는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큰 공역이 있는데도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모르게 한다면, 외양으로 논할 때는 백성에게 편의를 주는 일인 듯 하나 대체로 볼 때는 폐단을 끼치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대저 백성을 적절한 시기에 부려서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 것이 바로 성인이 민력을 사용하는 공명 정대한 원칙입니다.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부려서 농사철을 빼앗지 말라는 말이, 어찌 백성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부려서 좋은 시기를 빼앗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에서 백성을 부리지 않은 지가 몇 해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날의 너무도 중대한 공역에 한결같이 백성을 사용

하지 않는다면 공명정대한 원칙이 크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백성이 타성에 젖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삼가 두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투입해야 될 역정(役丁)을 감안하여 규례에 따라 모든 도에 분배하는 일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여러 대신 및 비변사 재신(宰臣)들에게 널리 물어보아서 처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러한 사리를 어찌 모르겠는가마는, 대저 성왕(聖王)의 정치란 사람을 사랑하면서 백성을 부리는 것이 그 전부이다. 사랑하면서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때에 맞게 부리면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은혜와 사랑을 극진히 하였는데도 풍속과 습성이 퇴폐해지고 있다. 지금의 모양에서 지금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니, 이 공역에 이 백성을 부린다는데 어찌 반드시 윤허를 아끼겠는가. 그럼에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먼저 대민(大民)·소민(小民)으로 하여금 신중히 하고 있는 본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누누이 힘껏 청하였으니, 본사에서 널리 물어보아서 초기(草記)하라." 하였다.
○命廟堂, 博詢**華城**役民當否. 右議政李秉模啓言: "凡有國役, 必用民力, 非爲有司之惜費. 蓋欲範民於趨事赴公之義, 觀於國朝已行之事, 歷歷可徵矣. 顧今**華城**城役, 所重何如, 關係何如, 而以聖上不煩民力之苦心至意, 始役已久, 竝與願赴之類, 而一切不許. 臣豈不知聖意所在, 而第念子趨父事, 秉彝之所同然. 國有大役, 而使民不知, 則論其外面, 雖似便民, 揆以大體, 適足流弊. 大抵使民以時, 不奪農時, 卽聖人用民之大經大法. 必曰以時, 曰不奪者, 豈不以民不可不用, 而必也使以時·時不奪乎? 朝家之不役民, 不知其爲幾許年矣. 今於莫重莫大之役, 一例不用, 則不但經法之大壞, 竊恐民習積狃, 率歸於無用之地. 臣意則爲先酌量其容入役丁, 依例分排諸道, 斷不可已. 請博詢諸大臣及備局諸宰而處之." 敎曰: "此箇事理, 亦豈不知? 大抵聖王之政, 不過曰愛人而使民而已. 愛之能勿勞乎? 使之以時則可. 況今恩竭而愛克, 俗弊而習頑. 由今之樣, 矯今之宜, 是役是用, 何必斬許, 而曾所難愼者, 欲使大民小民, 先知所以難愼之本意也. 旣縷縷力請, 自本司博詢草記."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1794) 6월 28일(계미) 5번째기사>

경제/재정
관서 지방에 회부된 절미 1만 석을 화성에 나누어 주다
관서(關西) 지방의 회부(會付)된 절미(折米) 1만 석을 화성(華城)에 나누어주어 성을 쌓는 공사와 행행할 때의 비용을 돕게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의 말을 따른 것이다.
○劃給關西會付折米一萬石于**華城**, 以資城役及幸行時所用, 從右議政李秉模之言也.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1794) 11월 24일(무신) 4번째기사>

경제/재정
정리소의 남은 돈을 정리곡과 탐라의 진휼곡, 화성의 둔전 설치에 쓸 것을 명하다
정리소(整理所)에서 쓰고 남은 돈을 삼도(三都)와 팔도(八道)에 나누어 보내 을묘년 정리곡을 만들게 하는 한편 탐라(耽羅)의 진휼(賑恤) 곡식을 보태주고 **화성(華城)의 둔전(屯田)을 설치케 하라고 명하였다.**【경기에 2천 냥(兩), 호서(湖西)·호남(湖南)·관서(關西)에 각각 3천 2백 냥, 영남(嶺南)에 4천 냥, **화성(華城)**·관동(關東)·해서(海西)·관북(關北)에 각각 1천 냥, 개성(開城)·강화(江華) 양도(兩都)에 각각 2백 냥씩 보내었다】
○庚戌/命整理所用餘錢, 分送三都八道, 作爲乙卯整理穀, 仍補耽羅賑資, 設**華城**屯田.【京畿二千兩, 湖西·湖南·關西各三千二百兩, 嶺南四千兩, **華城**·關東·海西·關北各一千兩, 松·沁兩都各二百兩】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28일(경술) 1번째기사>

경제/재정

외정리소에서 올린 절목

외정리소(外整理所)에서 절목(節目)을 올렸다. “정리란 이름은 탁지(度支)에서 시작되었는데, 대개 상의 행차가 행차 도중 밤을 지내는 곳에 탁지가 기일 전에 가서 모든 행전(行殿)의 방롱(房櫳)·완점(莞簟), 장악(帳幄)·궤안(几案) 등속에 관계된 것들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로서 법을 제정한 뜻이 근엄하였다. 그런데 원(園)을 옮긴 뒤로는 화성에 행행하여 이틀밤을 지내고 돌아오는 것이 해마다 상사가 되어, 비로소 탁지에 명하여 항례에 구애받지 말고 경비를 본부에 조치해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전교하기를 ‘여기에도 비용을 쓰는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하고 별도로 경영하게 해서 이름을 ‘정리곡(整理穀)’이라 하였다. 또 비로소 장용 외영(壯勇外營)으로 하여금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하게 하였다. 을묘년 봄에 이르러서는 상께서 자전을 받들고 화성에 행행하였을 때 위로 어주(御廚)에 공급하는 비용에서부터 아래로 백관·군병·아전·하인의 노자와 호궤하는 비용에 이르기까지의 총 10여만 냥을 국가의 경비에서 덜어내지 않고 모두 내영(內營)에서 관장하게 하고서 이름을 정리소(整理所)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이미 대궐 안에 설치하고 또 외소(外所)를 설치하였는데 외소는 화성 유수가 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륭원 행행 때의 반전과 호궤하는 양식 이외에 다리를 수리하거나 길을 닦는 등의 일과 거탄(炬炭), 시초(柴草)의 비용과 금고(金鼓)·기치(旗幟)·화구(火具) 등 군에 사용하는 물건 등을 모두 이로써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품(膳品)과 기명(器皿)·포백(布帛)·저관(楮管)·서적(書籍)·궁시(弓矢) 따위까지도 또한 탕고(帑庫)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에 대비하게 하였으니, 대체로 안으로는 영사(營司)의 비용을 없애고 밖으로는 민읍(民邑)의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외영에서 절목을 만들어 올리면서 총명칭을 ‘외정리소 절목(外整理所節目)’이라고 하였다.

그 조목 가운데 교량 절목(橋梁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전에는 교량을 기영(畿營)에서 주관하여 근방에 사는 백성들이 계(稧)를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정리소에 부쳐 거행하도록 한다. 외탕고 절목(外帑庫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는 수원부에 있고 하나는 시흥현에 있어, 유무(儒武)의 권과(勸課)와 시상(施賞)의 비용에 응한다**. 내용고 절목(內用庫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용고는 다섯이 있는데, 첫째는 관천고(莞千庫)로서 원소(園所)의 일체 수용에 대비하고, 둘째는 일용고(日用庫)로서 지선(紙扇)과 필묵(筆墨)을 보관하는 곳이며, 셋째는 월용오(月椿廒)로서 서적과 무기를 저장하여 문무가 서로 보완이 되게 한 것이고, 넷째는 무진장(無盡藏)으로서 축수하는 뇌작(罍爵)과 유행하는 화보(貨寶)를 간직하며, 다섯째는 불영탕(不盈帑)으로서 포면(布綿)·금백(錦帛)을 저장한다. 외별고 절목(外別庫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행행 때 어주(御廚)를 마련하는 곳이다. 별잉고 식례(別剩庫式例)는 군교(軍校)의 지방(支放)을 지급하는 것이다.”

○丁亥/外整理所進節目: “整理之名, 昉于度支, 蓋於幸行經宿之地, 度支先期進詣, 凡係行殿房櫳·(莞)〔莞〕簟·帳幄·几案之屬, 整而齊之, 理而新之, 制法之意謹矣. 粵自遷園之後, 華城幸行, 信宿回鑾, 歲以爲常. 始命度支, 勿拘恒例, 劃送支費於本府, 旣又敎曰: ‘是亦經費, 非予本意’, 乃別爲經紀, 名曰整理穀. 又始以壯勇外營, 兼行宮整理使, 及乙卯春, 上奉慈駕幸華城, 上自御廚內用供給之需, 下逮百官軍兵吏隷盤纏犒饋之費, 凡十萬有奇, 而無煩經費, 皆自內營句管, 名曰整理所. 旣置於內, 又設於外, 外所者華留所兼也. 凡園幸時盤纏犒餉

外, 如治橋·治道之役, 炬炭·柴草之需, 金鼓·旗幟·火具之屬於軍物者, 莫不於此而辦焉. 至若膳品·器皿·布帛·楮管·書籍·弓矢之類, 亦皆別設帑庫, 以待用焉, 蓋欲使內祛營司之費, 外弛民邑之勞者也. 於是, 外營成節目以進, 總名之曰外整理所節目. 其條目曰橋梁節目, 在前橋梁, 畿營主管, 以傍近居民, 設稧作橋, 至是, 付整理所擧行. 曰外帑庫節目, 一在水原府, 一在始興縣, 以應儒武勸課施賞之費. 曰內用庫節目, 內用庫有五, 一曰筵千庫, 備園所一應需用; 二曰日用庫, 紙扇筆墨之所藏也; 三曰月樁廐, 儲書籍戎器, 互爲弛張也; 四曰無盡藏, 祝壽之麕脯·流行之貨寶在焉; 五曰不盈帑, 布綿·錦帛在焉. 曰外別庫節目, 幸行時御廚之所辦也. 曰別剩庫式例, 給軍校支放也."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11일(정해) 1번째기사>

경제/재정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 경비를 조달할 것을 이시수에게 이르다

상이 비국 유사 당상 이시수(李時秀)에게 일렀다. "재용(財用)은 백성과 나라의 근본이다. 『대학』에서는 재물을 다루는 것을 천하를 평정하는 중요한 도리로 삼았으니, 재용이 다스려져야만 근본을 바로잡아 정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대개 거두어들이는 명색이 적어야만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될 수 있는 법이다. 우리 나라의 건국 초기에는 호조 하나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세 군문(軍門)이 생겨나고 또 균역청이 생겨났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쪼들리지 않을 수 있겠으며 국가의 경비가 어떻게 넉넉할 수 있겠는가. 대개 나라의 경비를 축내는 것으로는 군량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훈국(訓局)의 군료(軍料)만 하더라도 좁쌀이 변하여 쌀이 되고 겸사복(兼司僕)에게 주는 요미가 점점 많아지는 등으로 해서 국가의 경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미 정해진 인원을 갑자기 감축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이미 먹던 요미(料米)를 갑자기 덜기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어찌 점차적인 방편으로 필요 없는 인원을 줄이고 지나친 지출을 절감하는 방법마저 없기야 하겠는가. **또 지난날의 효과를 가지고 말해보자면, 화성(華城)의 성을 쌓는 공사를 3년 만에 완공시키면서도 백성들을 번거롭게 동원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경비를 축내지도 않았었다**. 이는 비록 종전부터 내탕고에 비축해 두었던 저축 덕분이기는 하지만, 그중 40만은 바로 금위군 10여 초(哨)의 번을 10년 동안 중지함으로 얻은 효과였다. 10초의 번을 10년간 중지해서 40만이 남은 것을 보면 우리 나라 경비가 대부분 군인을 양성하는 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학문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고, 우주의 일은 모두 내 직분안의 일이며, 전곡(錢穀)과 군대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이름난 석학인 김육(金堉)·민유중(閔維重) 같은 자는 다 경제를 자신의 일로 삼았었고, 근세의 이성중(李成中) 같은 이도 재물을 다스리는 것을 급무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풍토는 자기만 알고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심지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쓸데없는 일로 여기고 있기까지 하니, 이래서야 나라가 무엇을 믿겠는가."

○上謂備局有司堂上李時秀曰: "財用者, 民·國之本也. 『大學』以理財爲平天下之要道. 財用然後, 方可以端本而出治. 大抵捧納之名色小, 然後民業可安, 而我國之初, 只有一戶曹而已, 其後又有三軍門, 又有均役廳, 民安得不窘, 國安得裕用乎? 蓋耗國之用, 莫甚於兵食. 雖以訓局軍料言之, 小米變爲大米, 兼司僕之加料, 漸次加厚, 國用漸縮, 而旣定之額, 固難猝減, 旣食之料, 亦難遽損, 亦豈無漸次方便汰冗節濫之道耶? 且以已然之效言之, 華城城役, 三年告成, 而不煩民力, 不費經用者, 雖緣內帑之從前儲蓄, 而其中四十萬, 卽禁衛軍十餘哨之限十年停番

之效也. 十哨之十年停番, 能爲四十萬之剩, 我國經用之多歸於養兵, 從可知矣. 蓋學問者, 有體有用, 宇宙事, 皆吾分內, 錢穀·甲兵, 闕一不可. 我東名碩之如金堉·閔維重者, 莫不以經濟爲己任, 至如近世李成中, 亦知以理財爲急務. 今世風俗, 只知有己, 不知有國, 至如富國安民之術, 視若弁髦. 如此而國安有所恃哉?"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10월 22일(갑오) 2번째기사>

경제/재정
채제공의 말에 따라 화성의 성을 수축하는 경비를 각출하게 하다
안악군(安岳郡)의 직환(稷還)으로서 상평창의 회계에 든 것과 창고에 남아 있는 1만 8천 석 남짓, 영남(嶺南)의 화산(華山)에 성을 쌓기 위해 내준 쌀 5천여 석, 남창(南倉)의 돈[錢] 2만 냥, 전 도신(道臣) 이태영(李泰永)이 스스로 준비한 돈 1만 냥, 조창(漕倉)의 돈 2만 냥, 평안 감영이 별도로 준비한 돈 1만 냥, **어영청(御營廳)과 금위영(禁衛營)의 회계 외의 돈 5천 냥을 화성(華城)에 떼어주어 성을 수축하는 경비로 삼으라고 허락하였는데,**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許劃安岳郡稷還常平會錄及留庫條一萬八千石零, 嶺南華山築城還米五千餘石, 南倉錢二萬兩, 前道臣李泰永自備錢一萬兩, 漕倉錢二萬兩, 平安觀察營別備錢一萬兩, 御營廳·禁衛營會外錢各五千兩于華城, 俾作修城之需, 從左議政蔡濟恭言也.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6월 18일(정해) 2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등지의 묵은 환곡에 대해 특지로 감면하다
명하여 영남·호남·해서의 묵은 환곡은 모두 정봉(停捧)하게 하고, 경기의 강화·광주와 호서·관서·관북의 묵은 환곡은 근년의 조목만 거두어들이게 하였으니, 우의정 이병모의 말을 따른 것이다. **수원의 묵은 환곡은 논하지 말고, 북관의 묵은 환곡은 무술년 조목의 6천 석을 감면케 하였으니, 특지(特旨)였다.**
○命嶺南·湖南·海西舊還竝停捧, 京畿江華·廣州, 湖西·關西·關北舊還, 以近年條收捧, 從右議政李秉模言. 水原舊還勿論, 北關舊還, 戊戌條六千石蠲減, 特旨也.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9월 18일(갑신) 2번째기사>

경제/재정
화성은 호조의 전세를, 호조는 태안의 전세를 가져다 쓰게 하다
호조 판서 김화진(金華鎭)이 아뢰기를, "**화성의 수신이 태안(泰安)의 전세(田稅)를 이속(移屬)시켜 달라고 청하였는데, 일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 화성부(華城府)로 하여금 본부(本府)의 전세(田稅)를 가져다 쓰되 삼도(三都)의 사례처럼 하게 하고,** 호조에서 태안의 전세를 가져다 쓰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戶曹判書金華鎭啓言: "華城守臣, 有泰安田稅移屬之請, 而事多不便, 請令華城, 取用本府田稅, 如三都之例, 地部則取用泰安田稅." 從之.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1797) 12월 28일(계해) 3번째기사>

경제/재정
현륭원 행행으로 경기의 여러 읍에 조세를 감면에 주다

현륭원(顯隆園)에 행행할 연로(輦路)를 새로 닦게 하되, 길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토지를 계산하여 지적(地積) 10보(步)마다 1부(負)의 조세를 면제해주도록 명하였다. 상이 연로 백성들의 길 닦고 눈 쓰는 고통스러움을 민망하게 여기어 사람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돌아와서 아뢰기를, "매양 눈이 올 때마다 남녀 노약자들이 크고 작은 비를 손에 들고서 관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해서 일제히 나와 눈을 쓸어 치웠습니다." 하니, 상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어조(御竈)에 바치는 땔나무를 감하게 하고, 이르기를, "내가 다습게 거처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다." 하였다.

그리고는 경기(京畿)의 도신(道臣)과 양도(兩都)의 유수(留守)에게 하유하기를, "**화성(華城) 연로의 제읍(諸邑)은 해마다 어가(御駕) 맞이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힘이 매우 극심한데, 그중에서도 길 닦고 눈 쓰는 일이 가장 괴로운 일이다. 팔도의 백성들을 위하여는 삼백(三白)의 풍년들 조짐을 진실로 기뻐하지만, 눈발이 공중에 휘날릴 적에 손을 불며 발을 동동 구르는 고통을 겪는 연로의 농부들을 위하여 이 마음이 먼저 미친다."

하고는, 마침내 그들을 견휼(蠲恤)할 계책을 확의(確議)하도록 명하였다.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민역(民役)에는 신포(身布)·호요(戶徭)·결세(結稅)가 있는데, 본부(本府)는 신포의 경우 양반집이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입역(立役)된 군졸로서 신포를 납부하지 않은 자도 있기 때문에 견제(蠲除)의 정사를 고르게 펼 수 없고, 호요의 경우는 1호당 닭 한 마리로서 그 숫자가 매우 적은 데다가 그 중에는 면제 대상이 된 자도 많으니, 모두가 고르지 못합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니, 그 보수(步數)와 결복(結卜)을 따져 각 전부(田夫)들에게 잘 헤아려 고루 분배하기를 일체 천사 복호(遷徙復戶)의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내의 연로를 따라 마을마다 보수를 헤아리되, **지지현(遲遲峴)에서부터 유첨현(迫瞻峴) 화소(火巢)**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35리 가운데서 성읍(城邑)과 촌방(村坊)을 제외하고 나머지 길의 양편을 아울러 계산하니, 모두 2만 3백 14보였습니다. 이를 15보마다 1부의 조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헤아려보니, 모두 13결(結) 54부(負) 2속(束)이 됩니다."

하였고,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 홍억(洪檍)은 의논드리기를, "호역에 대해서는 원래 본부(本府)가 징수한 예가 없고, 신역의 경우는 이쪽을 옮겨 저쪽에 충당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한쪽만 치우치게 고통을 주는 폐단이 있으니, 결역(結役)을 3년으로 분수(分數)하여 감면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경비에 관계된 것이므로, 본부의 치도 전조(治道錢條)에 남아 있는 저축을 적당히 마련하여 각 면리(面里) 방군(防軍)의 신역을 방납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고, 경기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은 의논드리기를, "신역의 경우는 양반과 천인이 서로 뒤섞여 있어 이미 고루 감면해줄 수 없는 형편인데, 군정(軍丁)마저 극히 충원하기 어려워 또한 옮겨 정할 수도 없습니다. 호역의 경우는 시흥(始興) 백성들은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과천(果川) 백성들은 본래부터 거두는 것이 없으므로 비록 골고루 감면해주고자 하여도 실로 방도가 없습니다. 결역의 경우 또한 편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결(田結)에서 수납한 것은 이미 경상비에 관계된 것이고 보면, 이것을 가지고 감면해주는 것은 상의 뜻을 우러러 몸받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고을 노변에 있는 민전(民田)의 결수(結數)를 가지고 논하더라도, 시흥 지경은 19리에 14결 35부 5속이고, 과천 지경은 11리에 15결 74부 8속입니다. 그런데 시흥의 도리(道里)가 과천보다 더 많으나 결복은 과천이 시흥보

다 많은 것은, 대체로 복수(卜數)의 많고 적음이 토질의 비옥함과 척박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고을의 결수가 이와 같이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나니, 조세를 견감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고루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토지가 각기 주인이 있고 보면 견감해 주는 혜택이 토지 주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진전(陳田)과 기전(起田)이 서로 같지 않고 보면 진전이 똑같은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사리가 본디 그러한 것입니다. 화성의 연로에 보수(步數)를 따져 결복을 적용시켜서 타당하게 헤아려 조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신 것은 정히 신의 어리석은 견해와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고을의 이수(里數)와 보수를 헤아려 결복을 적용하자면, 시흥 지경 19리와 과천 지경 11리 중에서 읍내의 빈 취락들을 제외하고, 연로의 양편을 아울러 계산할 경우 모두 합하여 1만 8천 9백 88보인데, 15보마다 각각 1부씩을 적용하자면 시흥이 8결 41부이고 과천이 4결 25부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읍의 면세례(免稅例)에 의거하여 결마다 돈 8냥(兩)으로 대체해서, 각 전부(田夫)들에게 작정 배분하되, 일체 많고 적음이 타당하게 처리된 복호(復戶)의 관례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복호의 구획 또한 경상비에 관계됩니다. 지난 임자년에 도내 각 고을에 설치한 무조(貿租)는 오로지 현륭원 행행 때의 갖가지 수용(需用)을 위한 것인데, 해마다 모조(耗條)를 돈으로 바꾸었는바, 수입을 헤아려 경비를 절약한 나머지 그 잉여분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이 복호할 12결 66부를 돈으로 환산하면 1백 1냥 남짓하니, 이 돈으로 획급(劃給)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명하여 10보마다 1부의 조세를 면제해주되, 화성의 경우는 원결(元結)로 획급하고, 두 고을은 궁결(宮結)로 획급하고, 광주(廣州)도 화성의 관례에 따라서 또한 급복(給復)하도록 하였다.

○己巳/命園幸輦路治道, 計民田十步, 給復一負. 上, 憫念輦路民人治道掃雪之苦, 遣人視之, 回奏言: “每雪下, 老弱男婦, 擁篲執箒, 不待官令, 齊出掃治.” 上, 聞之, 爲減御竈供柴曰: “意無安於暖居也.” 諭京畿道臣兩都留守曰: “華城輦路諸邑, 歲當迎駕之役, 勞民甚劇, 而最是治道掃雪, 苦楚萬端. 爲八道民人, 固喜三白豐徵, 而爲輦路田夫, 點雪飄空, 此心先及於呵手頓足之狀.” 遂命確議蠲恤之策. 水原府留守徐有隣議曰: “凡民役, 有身布·戶徭·結稅, 而本府則身布非但班戶之參錯, 亦有立役軍兵之不爲納布者, 故蠲除之政, 無以均施, 戶徭則一戶一鷄, 數甚零星, 而其中亦多應免者, 則均爲不均. 給復一款, 最爲良策, 故計其步數及結卜, 酌量均分於各其田夫等處, 一依遷徙復戶例, 施行爲宜. 從境內輦路, 逐里解步, 自遲遲峴, 至迨瞻峴火巢境三十五里, 除却城邑村坊, 而幷計路之兩邊, 爲二萬三百十四步. 每十五步, 給復一負酌量, 則合爲十三結五十四負二束.” 廣州府留守洪檍議曰: “戶役則本府元無徵斂之例, 身役則移此充彼之際, 反有偏苦之弊, 以結役分數減給, 最似得宜. 而亦係經費, 故以本府治道錢條之貯留者, 量宜磨鍊, 以防面里防軍之役爲便.” 京畿觀察使李在學議曰: “身役則班賤相雜, 旣不可均減, 軍丁極艱, 亦無以移定. 戶役, 則始興之民, 或有或無, 果川之民, 本無所收, 雖欲均蠲, 實無其路. 結役亦有難便者. 田結所納, 旣係經用, 則以此蠲減, 有非仰體之道. 雖以兩邑路邊民田結數論之, 始興境十九里爲十四結三十五負五束, 果川境十一里, 爲十五結七十四負八束. 始興之道里, 較加於果川, 而果川之結卜, 反多於始興者, 蓋以卜數多寡, 在於土品厚薄. 兩邑結數, 若是相懸, 則蠲稅亦難均排. 且田各有主, 則蠲惠之徒歸田主, 勢所難免, 陳起不一, 則陳者之未蒙均施, 理所固然. 華城之計步執卜, 酌量給復, 正與臣之愚見, 無甚參差. 計量兩邑里數步數, 以結卜磨鍊, 則始興境十九里, 果川境十一里, 除邑閭虛聚, 而幷計道之兩邊, 合爲一萬八千九百八十八步, 而每十五步, 各一負磨鍊, 始興八結四十一負, 果川四結二十五負. 依本邑免稅例, 每結代錢八兩, 酌定分俵於各其田夫處, 一如復戶例, 多寡得宜, 最爲便好. 而復戶區劃, 亦關經用. 道內各邑壬子貿租之設置, 專爲園幸時各樣需用, 而每年耗條之作

錢者, 量入爲出, 頗有剩餘. 今此復戶十二結六十六負, 代錢一百一兩零, 就此劃給, 恐宜." 命以十步復一負, 華城以元結, 兩邑以宮結劃給, 廣州依華城例, 亦給復.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1월 4일(기사) 1번째기사>

경제/재정
화성의 백성들에 대해 환곡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하다
제신이 안부를 묻고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을묘년, 정리곡을 설치할 적에 이것을 화성에 붙여서 모곡을 면제해주려고 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를 각도에 나누어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자혜를 널리 펴는 뜻이라고는 하나, 3백여 주군에서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즈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대단히 나의 본의가 아니다. 지금 이 곡식을 모조리 본부에 붙여서 **화성부**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신 이하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서경(西京) 시대는 옛 시대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베푸는 데 있어 매양 전조(田租)의 절반을 감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달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거개가 부호이기 때문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서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사세로 말하자면 반드시 모곡을 면제해주는 것만이 오로지 서민의 혜택이 될 것이다." 하였다.
○丁酉/諸臣承候入侍. 上曰: "乙卯整理穀設置也, 欲屬之**華城**, 仍除其耗, 因諸議不一, 分給各道. 雖曰廣慈惠之意, 三百州郡, 斂散之際, 不無貽弊, 大非予本意. 今以此穀, 盡屬本府, 使**華城**一府, 永無還穀之耗何如?" 大臣以下皆稱善. 上曰: "西京去古未遠, 故爲民施惠, 輒減田租之半. 今則異於是, 有田者率多豪富, 故減租之惠, 不及於小民. 以今言之, 必除其耗, 然後還耗之除, 專爲小民之惠矣."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3일(정유) 1번째기사>

경제/재정
화성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다
전교하였다. "**화성 성지(城址)의 가기(家基)로서 납세(納稅)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납세를 해온 곳 및 화소(火巢)에 추가로 경계가 정해진 전토로서 관천고(筦千庫)에 소속되고도 미처 면세를 받지 못한 곳을 아울러 면세해주도록 하라.**"
○敎曰: "**華城**城址家基之不當納稅而出稅者, 及追定界火巢田土之屬於筦千庫而未及免稅處, 竝免稅."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4일(무술) 2번째기사>

경제/재정
화성 이외의 제도에 유치한 정리곡(整理穀)들을 모두 상진청에 소속시키다
명하여 화성 이외의 제도(諸道)에 유치한 정리곡들을 모두 상진청(常賑廳)에 소속시켜, 해당 청으로 하여금 관례대로 조적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비변사의 아뢴 말에 따른 것이다. 【심도(沁都)의 경우는 상진청이 없으므로, 군향(軍餉)을 더 만들도록 명하였다】
○命**華城**外諸道所置整理穀, 屬之常賑穀, 令該廳, 依例糶糴, 從備邊司啓也. 【沁都則無常賑穀, 故命添作軍餉】.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4일(무술) 3번째기사>

경제/재정

정리곡의 일을 빙자해 농간을 부린 경상도 관찰사 이형원을 죄주다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도(諸道)에서 정리곡(整理穀)을 빙자하여 농간을 부린 곡절에 대하여 그 실상을 조사해서 올린 장계를 가져다 보니, 경상도 관찰사 이형원(李亨元)이 일 거행을 가장 만홀하게 하여 대충대충 미봉한 꼴이 마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자인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암행 어사의 계본을 인하여 마침 나문(拿問)하라는 명이 내렸으므로 우선 감히 율명(律名)을 우러러 주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정리곡으로 명칭된 것을 모조리 화성(華城)에 붙였으니, 이는 자못 옛말의 '가죽이 없는데 털이 어디에 나겠는가**.[皮之不存毛將安傅]'라는 것과 같은 격이다. 건더기가 없는데 무슨 비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열읍에서 죄과를 범한 것이 있고 없음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그때의 거조(擧條)에 대한 비지(批旨)가 그 얼마나 엄절했던가. 그런데 이른바 이형원이란 자는 은권(恩眷)을 후히 입어 누차 감사직을 역임했건만, 그의 일 거행하는 것을 살펴보니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장계 내용의 무상함과 사건을 조사한 데 대한 부실함은 곧 팔도의 도신이 다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감영의 막료를 놓아서 열읍을 침학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면서 도리어 이 막중한 정리곡의 명칭을 골치를 썩히는 자료로 간주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죄 위에 죄를 더한 것이다. 그러나 맥추(麥秋)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를 처분하자는 말이 이미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나왔으므로,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새 도백이 이미 부임하였으니, 만일 이형원에게 혹시라도 용서를 해준다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다. 그를 잡아오기를 기다려서 엄히 가두고 신문해야 할 것이니, 해부(該府)에 분부해서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찬 윤익렬(尹益烈)이 청하기를, "이형원에게는 엄수(嚴囚)의 예로 체포해 와 공초를 받아 속히 해당된 형률을 시행하고, 정리곡에 죄과를 범한 수령들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하나 조사해내도록 해서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감죄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右議政李秉模啓言: "取見諸道整理穀幻弄委折査實狀啓, 則慶尙道臣李亨元, 其所擧行, 最極慢忽, 草草彌縫, 有若不知嚴畏者然. 而因繡啓, 有拿問之命, 姑不仰請律名." 敎曰: "今則以整理穀爲名者, 都屬**華城**, 便同 '毛將焉傅.' 列邑犯科之有無, 姑無論, 其時擧條批旨, 何等嚴截? 而所謂李亨元者, 厚蒙恩眷, 屢叨藩臬, 而夷考擧行, 全沒懼怮. 狀辭之無狀, 査事之無實, 卽八道道臣所未敢爲者. 縱其營裨, 侵虐列邑, 民莫不嗷嗷, 反以莫重穀名, 看作疾首蹙頞之資者, 眞所謂罪上添罪. 待麥秋處分, 旣出爲民之意. 今則新伯已辭朝, 若於亨元, 一或寬假, 國有法乎? 待其拿來, 嚴囚嚴問, 分付該府, 卽爲擧行." 修撰尹益烈請: "亨元, 以嚴囚例拿來, 捧口招, 亟施當律, 整理穀犯科守令, 更令一一査出, 拿問嚴勘." 允之.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5월 29일(임진) 2번째기사>

경제/재정

사창법의 시행에 대해 논의하다

차대가 있었다. 상이 이르기를, "다른 곡종(穀種)으로 대신 파종하자는 본의는 다만 이앙(移秧)하지 못한 논에만 파종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 모든 천맥(阡陌)·구릉(丘陵) 등의 불모지에 두루 파종해서 각각 수확하는 것이 있게 되면 논농사를 비록 끝내 실패하더라도 거의 지리(地利)를 못 취하는 땅이 없게 하는 정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읍

(畿邑)에서는 허다히 대신 파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 경기 지방 백성들은 대체로 농사에 게으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나, 삼남(三南) 지방의 민심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이 종자(種子) 운반하는 방도가 가장 어려우니, 만일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실어가게 한다면 그들이 원치 않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 근래에 재황(災荒)이 잇달은 것은 대체로 수리(水利)를 강구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호남의 벽골제(碧骨堤)는 만일 더 깊게 파내기만 하면 이같은 한재(旱災)는 염려할 것이 못 되는데, 그곳이 지금은 다 막혀서 예전의 언저리를 거의 다시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이 벽골제는 길이가 12읍(邑)에 걸쳐 있으니, 호서와 호남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방죽을 만드는 것은 곧 백성을 위해 이익을 조성하는 일이니, 백성들을 부려서 만드는 것이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근래에 민력이 과연 매우 어려우니, 만일 사창(社倉)의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각각 재력(財力)을 저축하여 방죽 파내는 비용에 대비하도록 한다면 편리한 정사가 될 듯하다. **내가 항상 이 일을 먼저 화성(華城)에서부터 시험해보고자 하나 또한 오래도록 폐단이 없을 것은 보장하기가 어렵다.**"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사창의 법은 고 상(相) 최흥원(崔興源)이 일찍이 영남에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선조도 지평(砥平)에 이를 시행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폐해졌습니다. 그 이루어지고 폐해지는 것은 오직 인재를 얻고 못 얻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호조 판서 조진관에게 하교하기를, "금화(金貨)를 몰래 들여온 숫자가 극히 많다고 하니, 기왕 이를 일체 금단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세금을 조금 받고 그 길을 터주어서 이권(利權)이 귀속되는 곳이 있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 백성들과 이끗을 다투는 일은 참으로 할 수 없으니, 고인도 말하기를 '기찰만 하고 세금은 받지 않는다.[譏而不征]' 하였다. 그러니 산림(山林)이나 천택(川澤)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만일 전혀 관리하지도 않고 살핀다는 기(譏) 자까지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이런 정령(政命)이 있겠는가."

하니, 조진관이 말하기를, "통역(通譯)하는 무리들도 많이 그것을 원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논의가 많습니다." 하였다.

○乙未/次對. 上曰: "代播本意, 非欲只使播種於未移秧之水田而已, 凡阡陌·丘陵不毛之地, 隨處遍播, 各有所收, 則水田雖畢竟失稔, 庶可爲地無遺利之政. 畿邑則頗不願代播云, 畿民蓋多懶農故如是, 而三南民情, 未知如何. 最是種子輸運之道爲難, 若使民自輸去, 則亦無怪其不願也. 且近來災荒之頻仍, 蓋由於水利之不講. 湖南之碧骨堤, 若加疏鑿, 則如此旱災, 不足爲慮, 而今盡湮塞, 舊時週遭, 殆不可復識云, 寧不可惜? 此堤延袤橫跨十二邑, 湖西南之稱, 卽以此也. 堤堰是爲民興利之事, 則役民爲之, 事固當然. 而近來民力, 果爲甚難, 若創社倉之制, 使民間各儲財力, 以需疏鑿之費, 則似爲便利之政. 常欲先自**華城**試之, 而亦難保其經久無弊也." 秉模曰: "社倉之法, 故相崔興源嘗行之嶺南云. 臣之先祖, 亦行於砥平, 今已廢矣. 其成其廢, 惟在得人與否耳." 敎戶曹判書趙鎭寬曰: "金貨潛入之數, 極爲夥然云, 旣不能一切禁斷, 則曷若薄其稅而通其路, 使利權有所歸屬乎? 與民爭利, 誠不可爲之, 而古人亦曰, 譏而不征.' 至於山林川澤, 固當與民共之, 而若漫不照管, 竝與譏之一字而不爲, 則亦豈有如許政令乎?" 鎭寬曰: "象譯輩, 亦多願之, 而以其前未有之事, 故多有持難之論矣."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6월 3일(을미) 1번째기사>

경제/재정

5 읍에서 화성에 납부하는 돈의 총수

5 읍에서 화성(華城)에 납부하는 돈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납포 양군(納布良軍) 2천 2백 96명이 2냥씩 내는 돈 4천 5백 92냥 · 납포 사군(納布私軍) 2천 2백 74명이 1냥씩 내는 돈 2천 2백 74냥 · 각 아문노(各衙門奴) 2백 4구(口)가 2냥씩 내는 돈 4백 8냥 등 도합 7천 2백 74냥 가운데, 1천 1백 30냥【전에 이미 떼어서 **화성**에 붙여 주었음】 · 2백 44냥을【내영(內營)에 납부하는 것임】 제외, 실제 총수는 5천 9백냥【5백 40냥은 **화성**에서 특별히 거두어 들이고 5천 3백 60냥은 외영(外營)에 비축해 둠】임.

1. 용인(龍仁):납포 양군 8백 11명에 속한 7백 19명이 내는 돈과【1명당 2냥씩 내는 돈 1천 4백 38냥 중에서 88냥을 수둔 아병(守屯牙兵) 신역(身役)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준 만큼 실제 액수는 1천 3백 50냥임】 92명이 내는 돈【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백 84냥인데 장용 향군(壯勇鄕軍) 이정대(移定代)로 내영에서 급대(給代)함】 · 납포 사군 7백 50명이 내는 돈【1명당 1냥씩 내는 돈 7백 50냥 중에서, 4백 1냥을 수둔아병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백 92냥을 여정(餘丁)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백 57냥임】 · 각 아문노 17구(口)가 내는 돈【1구당 2냥씩으로 합계 34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1천 7백 25냥임.

1. 진위(振威):납포 양군 6백 26명이 내는 돈【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천 2백 52냥 중에서, 80냥을 수청둔 아병(守廳屯牙兵)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으므로 실제 액수는 1천 1백 72냥임】 · 납포 사군 5백 69명이 내는 돈【1명당 1냥씩으로 합계 5백 69냥이나, 이 가운데 2백 22냥을 수둔아병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9냥을 여정보(餘丁保)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므로 실제 액수는 3백 28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1천 5백냥임.

1. 안산(安山):납포 양군 2백 35명 중에서 1백 40명이 내는 돈과【1명당 2냥씩 합계 2백 80냥임】 95명이 내는 돈【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백 90냥인데 장용 향군(壯勇鄕軍) 이정대(移定代)로 내영(內營)에서 급대(給代)함】 · 납포 사군 2백 48명이 내는 돈【1명당 1냥씩으로 합계 2백 48냥이나, 이 가운데 1백 25냥을 장초군(壯抄軍)의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으므로 실제 액수는 1백 23냥임】 · 각 아문노 1백 33구가 내는 돈【1구당 2냥씩 2백 66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8백 59냥임.

1. 시흥(始興):납포 양군 2백 79명 중에서 2백 3명이 내는 돈과【1명당 2냥씩으로 합계 4백 6냥임】 76명이 내는 돈【1명당 2냥씩으로 합계 1백 52냥인데 장용 향군의 이정대로 내영에서 급대함】 · 납포 사군 2백 29명이 내는 돈【1명당 1냥씩 2백 29냥이나, 이 가운데 1백 32냥을 장초군의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5냥을 장용 여정보의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82냥임】 · 각 아문노 13구가 내는 돈【1구당 2냥씩으로 합계 26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6백 66냥임.

1. 과천(果川):납포 양군 3백 45명 중에서 2백 45명이 내는 돈과【1명당 2냥씩으로 합계 4백 90냥임】 1백명이 내는 돈【1명당 2냥씩으로 합계 2백냥인데 장용 향군 이정대로 내영에서 급대함】 · 납포 사군 4백 78명이 내는 돈【1명당 1냥씩으로 합계 4백 78냥이나, 이 가운데 82냥을 수둔아병의 신역으로 전에 이미 **화성**에 떼어 주었고, 18냥을 감액 아병(減額牙兵)의 신역으로 내영에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액수는 3백 78냥임】 · 각 아문노 41구가 내는 돈【1구당 2냥씩 합계 82냥임】 등 실제 납부 총액은 1천 1백 50냥임.

이상 5천 9백냥 중에서 5백 40냥을【노공(奴貢) 및 유청 군관(有廳軍官) · 충익위(忠翊衛) 등의 신포를 **화성**에서 별도로 거두어 들임 ○ 노공 및 유청 군관 · 충익위는 혹 허액(虛額)

이 많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여 늘고 주는 등 일정치가 않으므로 모두 비축해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제외하고 실제 납부 총액 5천 3백 60냥을 외영에 비축해 둠.
〔○〕五邑所納**華城**錢摠數. 納布良軍二千二百九十六名, 每名二兩, 合錢四千五百九十二兩. 納布私軍二千二百七十四名, 每名一兩, 合錢二千二百七十四兩, 各衙門奴二百四口, 每口二兩, 合錢四百八兩, 都合錢七千二百七十四兩內, 一千一百三十兩 · 【前已劃屬**華城**】二百四十四兩, 【納于內營】實五千九百兩.【五百四十兩**華城**別爲收捧, 五千三百六十兩貯置外營】龍仁納布良軍八百十一名內, 七百十九名,【每名二兩, 合一千四百三十八兩內, 八十八兩, 以守屯牙兵身役, 前已劃屬**華城**, 實一千三百五十兩】九十二(兩)〔名〕,【每名二兩, 合一百八十四兩, 以壯勇鄕軍移定代, 自內營給代】納布私軍七百五十名,【每名一兩合七百五十兩內, 四百一兩, 以守屯牙兵身役, 前已劃屬**華城**, 一百九十二兩, 以餘丁身役, 納于內營, 實一百五十七兩】各衙門奴十七口,【每口二兩, 合錢三十四兩】實納錢一千七百二十五兩. 振威納布良軍六百二十六名, 【每名二兩, 合一千二百五十二兩內, 八十兩以守廳屯牙兵身役, 已劃屬**華城**, 實一千一百七十二兩】納布私軍五百六十九名,【每名一兩, 合五百六十九兩內, 二百二十二兩, 以守屯牙兵身役, 前已劃屬**華城**, 十九兩以餘丁保身役, 納于內營, 實三百二十八兩】實納錢一千五百兩. 安山納布良軍二百三十五名內, 一百四十名,【每名二兩, 合二百八十兩】九十五名,【每名二兩, 合一百九十兩, 以壯勇鄕軍移定代, 自內營給代】納布私軍二百四十八名,【每名一兩, 合二百四十八兩內, 一百二十五兩, 以壯抄軍身役, 前已劃屬**華城**, 實一百二十三兩】各衙門奴一百三十三口,【每口二兩, 合二百六十六兩】實納錢八百五十九兩. 始興納布良軍二百七十九名內, 二百三名,【每名二兩, 合四百六兩】七十六名, 【每名二兩, 合一百五十二兩, 以壯勇鄕軍移定代, 自內營給代】納布私軍二百二十九名,【每名一兩, 合二百二十九兩內, 一百三十二兩, 以壯抄軍身役, 前已劃屬**華城**, 十五兩, 以壯勇餘丁保身役, 納于內營, 實八十二兩】各衙門奴十三口, 【每口二兩, 合二十六兩】實納錢六百六十六兩. 果川納布良軍三百四十五名內, 二百四十五名, 【每名二兩, 合四百九十兩】一百名, 【每名二兩, 合二百兩, 以壯勇鄕軍移定代, 自內營給代】納布私軍四百七十八名,【每名一兩, 合四百七十八兩內, 八十二兩, 以守屯牙兵身役, 前已劃屬**華城**, 十八兩, 以減額牙兵身役, 納于內營, 實三百七十八兩】各衙門奴四十一口,【每口二兩, 合八十二兩】實納錢一千一百五十兩. 以上錢五千九百兩內, 五百四十兩,【以奴貢及有廳軍官 · 忠翊衛身布, 自**華城**別爲收捧. 奴貢及有厲軍官 · 忠翊衛或多虛額, 或有雜頉, 加減無常, 故幷不入於貯置中】實納錢五千三百六十兩, 貯置外營.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10월 19일(기유) 11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부에서 쓰고 남은 쌀을 선혜청에서 마감하도록 하다
수원부에 저축해 둔 쌀 가운데서 쓰고 남은 것을 경기 감영에서 관리하지 말고 해당 부(府)가 곧장 선혜청(宣惠廳)에서 마감하게 하였다. 유수 서유린(徐有隣)의 아룀을 따른 것이다.
○辛未/命**水原**府儲置米, 用遺在, 勿爲句管於畿營, 直令該府磨勘惠廳. 從留守徐有隣啓言也.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 11월 12일(신미) 1번째기사>

경제/재정
화성에 소속된 다섯 고을의 곡물을 상평창의 곡식으로 환작하다
화성에 소속된 다섯 고을의 곡물을 호조와 상평창(常平倉) 등 곡식으로 환작(換作)하고『통편(通編)』의 법에 따라 모곡(耗穀)을 받아 본읍의 공적인 비용으로 보충할 것을 명하였다.

○命**華城**所屬五邑穀物, 換作戶曹常平等穀, 依『通編』法, 取耗以補本邑公用.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1800) 윤4월 17일(기사) 2번째기사>

경제/재정

임금의 당부에 따라 360여 일 갈이의 땅을 개간한 수원 판관 김사희 등을 포상하다

앞서 수원 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에게 하유하기를, "번갈아 돌아가는 오행(五行) 가운데 토공(土功)이 크고 팔괘의 순서를 매길 때는 감궁(坎宮)이 앞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주(周) 문왕(文王)이 기읍(岐邑)을 다스릴 때 토지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조세를 정하는 법을 세웠고 한나라 고제(高帝)는 관중(關中)을 안정시킨 뒤에 조세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조정이 화성(華城)을 보는 비중도 주나라의 기읍이나 한나라의 관중과 다름없으니, 백성의 생활 터전을 중시하는 정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만 석의 물이 흐르는 도랑을 성 북쪽에 뚫고 아홉 길 높이의 보를 성 서쪽에 쌓음으로써 관개 용수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 마침내는 온 경내에 미치고 다시 그 경내에서 멀리 팔도에까지 두루 미쳐간다면 그로 인한 이로움이 어찌 넓고 크지 않겠는가.

팔달문(八達門) 밖에서부터 유천(柳川) 이포(泥浦)까지 그 토지가 넓은데도 경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경기 백성들이 농사에 게을러 힘들게 노력하려 하지 않아서이지만 대체로 그 마음과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漢)나라 선비의 말에 '능히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그 힘을 다할 수 없고 능히 그 힘을 다하지 못하면 그 공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것은 곧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이다. 충분히 황무지를 개척할 만한 마음과 힘이 있더라도 재력이 없으면 해낼 수 없고 충분히 땅을 일구어낼 만한 재력이 있더라도 관력(官力)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높고 메마른 땅은 물을 끌어가기가 어렵고 시골백성은 함께 모여 농사짓는 방법에 어두운 상황이 아닌가. 밭모양이 이미 갖추어져 씨를 부리면 당장 거두어 먹을 땅이라 해도 명을 내걸어 대중에게 고하기를 '백성들이 마음대로 경작하여 먹게 하고 고을 관아에서 조세를 거두지 않는다.'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인심으로는 그렇더라도 용기를 내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래먼지만 부옇게 날리고 있으니 비록 10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부름에 응해 나와서 아침에 밭을 갈고 저녁이면 거두어 노적가리가 즐비한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것인가. 한나라 때 조과(趙過) 등 여러 사람이 백성을 위해 농사를 장려하면서 농기구와 소를 모두 관가에서 마련해 주었고 수령으로 있는 자가 삼태기며 삽을 들고 밭두둑을 밟고 다님으로써 묵혔던 땅이 옥토가 되고 놀던 사람이 농부가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함께 더불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옛법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오늘의 계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둔전(營屯田)을 인부를 모집해 경작하는 법에 따라, 본부(本府)에서 재력을 들여 땅을 일구고 그 역사가 끝난 뒤에 일정한 면적의 밭을 나누어주어 관용(官用)에도 보태고 백성의 식량을 넉넉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는 곡물을 바치면 벼슬을 주는 법에 따라, 며칠갈이의 면적을 개간했는가를 보아서 당나라 때의 공명 고신(空名告身)이나 송나라 때 적공랑(迪功郞) 이하의 품계를 줬던 사례와 같이 각자의 소원대로 향품(鄕品)은 향임(鄕任)을 시키고 교리(校吏)는 빈 벼슬자리를 주되, 한달갈이 면적을 넘어 쌀 백 석을 수확할 만한 경우에는 중추부 직함이나 변방 장수 자리에 그 공로를 따져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묵은 땅이 날로 개간이 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수구(水口)가 크고 넓으면 백성이 요족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마디로 말해

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먼저 수구에 관한 설을 볼 때 도회지나 고을과는 관계가 없으니 풍수에 관한 책에서 찾아보면 분명하다. 만일 성 밖에 산을 만든다면 그 형편이 성 안을 내려다 보기가 쉬울 것이고 물 아래쪽에 제방을 만든다면 물길을 가로막기가 편할 것인데, 앞서의 경우는 성 주변에 초루(譙樓)를 배치하는 뜻에 어긋나고 뒤의 경우는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명당(明堂)의 금기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과거 명사들의 큰 계책을 참고해 보면 평양(平壤)의 성이 설치되었을 때 강 오른쪽에 길게 잇닿은 숲을 길렀고 선산(善山) 고을이 완성되었을 때도 시내 왼쪽에 역시 거대한 숲을 설치하였다. 옛말에 ‘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둘러야 한다.’ 는 것이 곧 그것이다. 우선 금년부터 나무를 심되 버드나무 · 뽕나무 · 개암나무 · 밤나무 등 아무 것이나 가리지 말고 많이 심어 숲을 만들어서 경관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먼저 조처해야 할 일이다. 부읍(府邑)과 역마을에 집집마다 나무를 심으라고 예전에 여러 번 지시한 적도 있지만, 집안에 나무를 심지 않을 경우 구실을 징수한 것은 곧 주관(周官)에서 정한 법이다. 경은 부디 편할 대로 잘 조처하여 조정이 화성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개간하는 문제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채집하여 조리있게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유린(有隣)이 3백 60일 갈이의 면적을 권장해 개간하였다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농업을 중시하는 정사는 개간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 있겠는가. 본부(本府)는 다른 지방의 본보기가 되는데 3백 60여 일 갈이의 면적을 특별히 유시한 뒤에 개간했다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우선 그 당사자부터 포상한다는 도리로 볼 때 장려하는 조처가 없을 수 없으니 판관(判官) 김사희(金思羲)에게 내하(內下)한 녹피(鹿皮) 1령(令)을 내려주라. 관가에서 개간한 것 이외에 또 30일 갈이를 사적으로 개간한 자가 있다 하니 더욱 가상하다. 해조로 하여금 가선(嘉善) 품계인 위장(衛將)을 임명하게 하라.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묘당으로 하여금 각도에 유시하되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서로 힘써 공을 세우게 하고 만일 그 공이 뛰어나 장려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실적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壬子朔/先是, 諭水原留守徐有隣曰: “五行迭運, 土功爲大, 八卦分序, 坎宮居先. 故周文王治岐而建任土之法, 漢高帝定關而立租賦之制, 朝家之視華城, 有如周之岐, 漢之關, 則元元重本之政, 不可以少緩. 萬石之渠, 開於城北, 九仞之埭, 築於城西, 自西而南, 遂及一境, 自一境而遠, 遍至於八路, 則不言所利之利, 豈不淵乎博哉? 自八達門外, 至柳川 · 泥淵之間, 厥土廣斥, 耕犂不及者, 畿民懶於農, 不欲昏作, 蓋其心力, 不能及也. 漢儒之言曰: ‘不能盡其心則不能盡其力, 不能盡其力則不能成其功’ 云者, 政謂此也. 雖有心力, 足以闢荒, 而無財力則不能焉, 雖有財力足以墾土, 而無官力則不遂焉, 況高燥之地, 難於引水, 沿野之民, 昧於結耦乎? 雖以田形已具, 布種卽食之土, 揭令而號於衆曰: ‘任民耕食而縣官不收稅.’ 以今人心, 尙不欲勇前. 今者茫然風涉, 雖許以十年免稅, 有誰應募而出, 朝耕暮穫, 有如櫛(如)比之美乎? 自漢之趙過諸人爲民勸耕, 田器農牛, 皆有官備, 爲長吏者, 操畚鍤履畎畝, 而汚萊爲膏沃, 遊手爲農夫, 此所謂可與樂成者也. 事不師古, 曷云食效? 今之爲計, 有二. 一則依營屯募耕之規, 而自本府捐財起墾, 待其告功, 限田分授, 以爲補官用裕民食之資, 一則依入粟拜官之式, 墾土爲幾日耕者, 如唐之空名告身, 宋之由功以下之階, 鄕品之爲鄕任, 校吏之爲任窠, 一循其願, 而若過一朔之耕, 可以收百石者, 樞銜邊將, 計勞塡差, 則庶有日闢之效矣. 水口虛廣, 民不饒富, 或者有云然之說, 蔽一言曰, 不經也匪彝也. 先看水口之論, 不在都邑, 求之堪輿, 而如執左契. 若造山於城外, 勢將俯瞰, 若設堰於水下, 理便橫遮, 由前而失於周遭樓櫓之(而)義, 由

後而違於澄淸明堂之戒. 以名碩之宏謨參之, 則平壤之城說, 而養長林於江右, 善山之治完, 而置巨藪於溪左. 古語不云乎, '百家之聚, 十室之市, 亦必依山帶溪者是也.' 先從今年, 種以樹木, 無論楊樫桑柘榛栗, 廣植而成林, 俾有蔚然改觀之盛, 亦屬先務. 若府治驛村, 逐戶種樹, 前已屢飭, 而宅不毛則有征, 自是周官成憲. 卿須便宜從事, 毋負朝家爲華民夙夜憧憧之至意, 起墾一款, 博採衆見, 論理登聞." 有隣以勸闢三百六十日耕啓, 敎曰: "重農之政, 豈有過於勸闢? 本府爲諸路之所取則, 而三百六十餘日耕之起墾於別諭之後者, 極爲可嘉. 其在先從隗始之道, 不可無奬勸之擧, 判官金思羲, 內下鹿皮一令賜給. 官耕外, 又有自墾三十日耕者, 尤爲嘉尙. 令該曹, 付嘉善衛將. 將此意令廟堂, 下諭諸道, 視此競相趨功, 如有超異之可合勸奬者, 考其實績狀聞."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6월 1일(임자) 1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부 · 영남 · 호남 에 기근이 심한 고을 등에 새 환미를 정퇴하다

수원부(水原府)와 영남(嶺南) · 호남(湖南)에서 가장 기근이 심한 고을에 새 환미(還米)를 면(面) · 리(里)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정퇴(停退)하게 하고, 호서(湖西)의 아산(牙山) 등 열 고을에는 새 환미 및 신역(身役)에 따른 미(米) · 포(布) · 전(錢)을 아울러 전부 정퇴하게 하였다.

○水原府及嶺 · 湖兩南尤甚邑, 新還面里分等停退, 湖西之牙山等十邑, 新還及身米 · 布 · 錢, 竝全數停退.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10월 29일(신유) 4번째기사>

경제/재정

제도의 당년 급재 19만 4천 3백 82결의 내용

제도(諸道) · 제도(諸都)의 당년(當年) 급재(給災)가 19만 4천 3백 82결(結)이었다.【경기가 1만 1천 3결(結)이고, **수원(水原)이 2천 6백 75결이고, 광주(廣州)가 6백 50결이고**, 강화(江華)가 88결이고, 호서(湖西)가 4만 2천 7백 51결이고, 호남(湖南)이 9만 2천 9백 80결이고, 영남(嶺南)이 3만 9천 96결이고, 해서(海西)가 4천 3백 95결이고, 관동(關東)이 4백 53결이고, 관서(關西)가 2백 91결이다. ○호남의 우심(尤甚)한 고을은 대동목(大同木) · 순전(純錢) · 대동미(大同米) 3분의 1은 가을을 기다려 수봉(收捧)하고, 지차(之次) 고을의 대동목은 절반을 돈으로 대봉(代捧)하게 한다. 도내(道內)의 신환(新還)은 우심한 고을을 절반, 지차의 고을은 3분의 2를 정퇴(停退)시킨다. 삼군문(三軍門)의 보미(保米)는 우심한 고을과 지차의 고을은 돈으로 대봉하게 하고, 각 아문(衙門)의 보포(保布)는 우심한 고을은 절반, 지차의 고을은 3분의 1을 정퇴시킨다. 당연히 봉납해야 하는 조항은 아울러 돈으로 대봉하게 하고 진상(進上)하는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및 어염선세(魚鹽船稅)는 내년 가을까지 정봉(停封)한다. 경기 · 호서 · 영남의 신환(新還) · 군미(軍米) · 전포(錢布)는 아울러 숫자를 나누어 정퇴(停退)시킨다. 의당 봉납해야하는 조항은 돈으로 대봉케 하고, 호서의 진상 방물(方物)과 어염선세는 호남의 예(例)에 의거하여 하며, **수원** · 광주의 신환은 숫자를 나누어 정퇴하며, 광주의 구환(舊還) 3천 석(石)은 탕감(蕩減)시킨다. ○진자(賑資)에 관한 것은 아래에 보인다】

○給諸道 · 諸都當年災, 十九萬四千三百八十二結.【京畿一萬一千三結, **水原**二千六百七十五結, 慶州六百五十結, 江華八十八結, 湖西四萬二千七百五十一結, 湖南九萬二千九百八十結,

嶺南三萬九千九十六結, 海西四千三百九十五結, 關東四百五十三結, 關西二百九十一結. 湖南尤甚邑大同木·純錢·大同米三分一, 待秋收捧, 之次邑木折半代錢. 道內新還甚邑折半, 之次邑三分二停退. 三軍門保米, 尤甚·之次邑代錢, 各衙門保布, 尤甚邑折半, 之次邑三分一停退. 當捧條竝代錢, 進上三名日方物·物膳及魚·鹽船稅, 限明秋停封. 京畿·湖西·嶺南新還·軍米·錢布, 竝分數停退. 當捧條代錢, 湖西之進上·方物·魚·鹽船稅, 依湖南例, 水原·廣州新還, 分數停退, 廣州舊還三千石蕩減. 賑資見下】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10월 29일(병진) 3번째기사>

경제/재정

여러 도의 당년의 재결 8만 7천 7백 86결의 세를 면제해 주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에 당년의 재결(災結) 8만 7천 7백 86결(結)의 세를 면제해 주었다.【경기(京畿) 5천 9백 결, 광주(廣州) 1백 71결, 강화(江華) 2백 38결, **수원(水原) 7백 65결, 호서(湖西) 1만 4천 결,** 호남(湖南) 4만 3천 3백 68결, 영남(嶺南) 1만 3천 2백 결, 해서(海西) 6천 6백 결, 관동(關東) 2백 30결, 관서(關西) 3천 3백 14결이었다】

○丁未/給諸道諸都當年災八萬七千七百八十六結.【京畿五千九百結, 廣州一百七十一結, 江華二百三十八結, 水原七百六十五結, 湖西一萬四千結, 湖南四萬三千三百六十八結, 嶺南一萬三千二百結, 海西六〔千〕十六百結, 關東二百三十結, 關西三千三百十四結】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 10월 30일(정미) 1번째기사>

경제/재정

여러 도의 당년에 재해를 입은 6만 1천 44결의 세를 면제해 주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당년(當年)에 재해를 입은 6만 1천 44결(結)의 세를 면제해 주었다.【경기 6천 2백 결, **수원(水原) 1천 8백 87결**, 광주(廣州) 1백 90결, 강화(江華) 4백 22결, 호서 1만 4천 2백 결, 호남 2만 4천 결, 영남 8천 4백 18결, 해서 4천 2백 결, 관동 50결, 관서 1천 3백 77결이다】

○庚午/給諸道諸都當年災, 六萬一千四十四結. 【京畿六千二百結, 水原一千八百八十七結, 廣州一百九十結, 江華四百二十二結, 湖西一萬四千二百結, 湖南二萬四千結, 嶺南八千四百十八結, 海西四千二百結, 關東五十結, 關西一千三百七十七結】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10월 29일(경오) 1번째기사>

경제/재정

송도 유수가 경용이 부족하다 하여 가까운 고을의 전결을 떼주기를 청하다

이에 앞서 묘당에서 송도 유수(松都留守)가 올린 경용(經用)이 부족하다는 장계로 인하여 **화성(華城)의 사례대로 가까운 고을의 전결 1천 5백 결을 떼어주라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이른바 경각사(京各司)의 면세란 것은 곧 건국 초기의 늠전(廩田)·직전(職田)·둔전(屯田)·채전(菜田) 등의 유래(流來)된 옛 규례이고, 또 혹은 가경(加耕) 으로 입안(立案)을 받은 곳들을 그대로 면세한 곳도 있으나, 이 밖에는 애당초 따로 전지(田地)를 떼어 주어 유토 면세(有土免稅)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논할 만한 사례의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수의 장계에 화성의 사례대로 가까운 고을의 전세(田稅)를 떼어 주라는 말이 있었으나, 화성이 유수로 승격한 뒤에 또한 세결(稅結)을 떼어 준 적이 없었고,** 다만 강도(江都)에 세를 내던 태안(泰安)의 전결을 **화성**으로 넘겨 주

었습니다. **이는 화성의 전세는 호조에 바치고 태안의 전세는 화성으로 옮겨 오는 일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쓰도록 한 것이고 보면,** 이번에 송도에 떼어 주라고 하는 말은 또한 의거할 만한 사례가 없습니다. 비록 저축이 많아 쓰고 남은 것이 있는 때라 하더라도 대농(大農)의 수령은 전결의 정세(正稅)는 정상적인 경비 이외에는 변통을 논의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처럼 전결이 점차 줄어들어 조세(租稅)가 항상 모자랄 때이겠습니까? 밖으로 군읍(郡邑)에는 묵은 전결이 많아진 반면 다시 일구는 땅은 매우 적으며, 안으로 궁방(宮房)에는 구결(舊結)의 세는 받지도 못하는데 신결(新結)은 도처에서 증가하여 호조의 형편이 거의 여지가 없으니, 비록 명을 내리셨지만 받들어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묘당과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先是, 廟堂因松留狀啓言: "經用不足, 請近邑田結, 依**華城**例劃給一千五百結." 從之. 戶曹啓言: "今所謂京各司免稅, 卽國初廩田·職田·屯田·菜田之流來舊規, 而又或有加耕立案等處之仍免稅者, 此外初無別劃, 有土免稅之事. 今豈有援依其例之可論? 而且守臣狀啓, 雖有便近邑田稅, 依**華城**例劃給之語, **華城**陞留之後, 亦未嘗劃給稅結, 只有泰安田結之稅納江都者, 移劃本府. 而以本府田稅則上納地部, 泰安田稅則移納本府, 事涉不便, 許其互換取用而已, 則今玆劃給, 究亦無例可依. 雖在積儲存贏之時, 正稅田結之領于大農者, 固未或議其出入於經費之外, 矧今田結漸致耗減, 租稅常患匱乏? 外而郡邑永災, 猥多而還起絶少, 內而宮房舊結, 未收而新結隨劃, 地部事勢, 殆無餘地, 成命之下, 無以奉行." 敎曰: "與廟堂商處."
<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1823) 7월 1일(정묘) 2번째기사>

경제/재정
4도 및 경기·호서의 신환곡을 숫자를 나누어 정퇴하다
4도(都) 및 경기·호서의 신환곡(新還穀)을 아울러 숫자를 나누어서 정퇴(停退)하였다. 진자(賑資)는 경기에 절미(折米) 1만 2천 석과 공명첩(空名帖) 7백 장, 호서에 절미 1만 1천 석, **수원에 절미 2천 5백 석과 각종 곡식 2천 석·공명첩 2백 장**, 광주에 절미 1천 5백 석, 강화에 절미 1천 5백 석, 송도에 각종 곡식 4백 석을 조치해 주었다.
○四都及京畿湖西新還, 幷分數停退, 賑資. 京畿折米一萬二千石, 空名帖七百張, 湖西折米一萬一千石, **水原**折米二千五百石, 各穀二千石, 空名帖二百張, 廣州折米一千五百石, 江華折米一千五百石, 松都各穀四百石劃給.
<순조실록 27권, 순조 25년 10월 30일(계미) 2번째기사>

경제/재정
각도와 여러 도시에 당년재 8만 9천 3백 70결을 주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에 당년재(當年災) 8만 9천 3백 70결(結)을 주었다.【경기 1만 3천 4백 81결, 호서 2만 90결, 호남 2만 2천 5백 결, 영남 8천 5백 68결, 해서 1만 8백 결, 관동 1백 89결, 관서 1천 53결, **수원부 1천 6백 결, 광주부 4백 43결**, 강화부 1천 4백 14결, 개성부 3백 20결이다】
○給諸道諸都當年災, 八萬九千三百七十結.【京畿一萬三千四百八十一結, 湖西二萬九十結, 湖南二萬二千五百結, 嶺南八千五百六十八結, 海西一萬八百結, 關東一百八十九結, 關西一千五十三結, **水原**府一千六百結, 廣州府四百四十三結, 江華府一千四百十四結, 開城府三百二十結】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10월 30일(임신) 2번째기사>

경제/재정

화성에 환곡 7백 석을 탕감하도록 명하다

화성(華城)의 유망(流亡) 또는 절호(絶戶)에서 받지 못한 환곡(還穀) 7백 석을 탕감(蕩減)하도록 명하였는데, 대신이 복명(復命)하고 아뢴 바에 인한 것이었다.

○命華城流亡·絶戶未捧還穀七百石蕩減, 因大臣復命後所奏也.

<헌종실록 3권, 헌종 2년(1836) 4월 5일(정사) 2번째기사>

경제/재정

화성부의 봉부동전(封不動錢)을 환곡으로 바꾸어 쓰게 하다

화성부(華城府)의 봉부동전(封不動錢) 1만 5천 냥을 환곡(還穀)으로 바꾸어 취모(取耗)하자는 청을 시행하도록 윤허하였다.

○許施華城府封不動錢一萬五千兩, 作還取耗之請.

<철종실록 1권, 철종 즉위년(1849) 11월 15일(무신) 4번째기사>

경제/재정

비변사에서 수원 군영의 관속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조달을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남병길(南秉吉)의 장계(狀啓)를 보니, '감영(監營)의 관속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부족분이 매년 3,000냥(兩)이나 되니 무슨 항목의 돈이든지 1만 냥쯤 한도로 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획하(劃下)해서 원금은 두고 이자를 불려 쓰게 하고, 동시에 외탕고(外帑庫)에 해마다 밀봉해 놓는 돈 1,600냥도 가져다 쓰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연례로 모곡(耗穀) 분을 돈으로 만들어 징수하던 것이 이미 탕감해 주는 항목 안에 들어간 것이니, 지조(支調)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은 형편상 응당한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끌어다 메울 도리도 없습니다. 몇해 전에 본사(本司)에서 따로 둔 돈 가운데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다 꾸어준 돈 7,000냥(兩)을 이획(移劃)하도록 해영(該營)에 분부하고 외탕고에 밀봉해 놓은 돈 1,600냥도 가져다 쓰도록 허락하여 본전을 두고 분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備邊司啓: "卽見水原留守南秉吉狀啓, 則以爲'營屬支放不足, 每年爲三千兩. 某樣錢限一萬兩, 趁卽劃下, 立本取殖, 外帑庫每年封椿錢一千六百兩, 亦許取用事, 請令廟堂稟處'矣. 年例耗作, 旣入於蕩還之中, 則支調不繼, 勢固容然, 而且無從他彌縫之道. 年前本司別置錢中南漢山城貸下七千兩, 使之移劃之意, 分付該營, 外帑封椿錢一千六百兩, 亦許取用, 以爲立本分排何如?" 允之.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1월 21일(계해) 6번째기사>

경제/재정

경기 감사 유치선이 장계를 올려 환곡의 관리를 잘하게 하도록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의 장계(狀啓)에, '환곡(還穀)을 다 받아들인 다음 각종 용하(用下)를 제감(除減)하였습니다. 올해 가을의 군향(軍餉) 및 대전(代錢)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써 각종 곡식이 모곡(耗穀)까지 합쳐 실

지 수량이 미(米)는 3만여 석(石) 남짓, 태(太) 3,470여 석, 모(麰) 1,060여 석이었는데 전부 찧어서 보관하여 임시 비용에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쓸 모조(耗條)는 본 감영에서 무슨 무슨 항목에 쓸 돈 3만 냥(兩)을 골고루 분배하여 구획(區劃)하고, 올 가을에 돈으로 대신 받을 5,800냥의 돈과 함께 규례대로 도로 나누어주어 내년 가을에 가서 쌀을 사들이는 데 쓰도록 하며, 그 나머지는 대장에 올라 있는 총 수량에 통합하여 내후년부터 절반은 보관하고 절반은 나누어주는 것을 해마다 정상적인 규례로 하게 할 것입니다.

충융청(總戎廳)과 수원(水原), 광주(廣州), 개성(開城) 등 네 관청의 곡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모비(耗費)가 돈으로 합치면 4,400여 냥 남짓인데, 매년 본 감영의 세입(歲入) 중 구획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네 관청의 곡식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자를 늘여서 호조(戶曹) 곡식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3만 포(包)나 되는 곡식을 전부 찧어서 보관하는 것은 실로 위급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입니다. 명년부터 모조에 쓸 몫에 대하여 이미 대책을 취하여 균등하게 나누어주도록 하였으니 1, 2년이면 그것이 과연 앞날을 생각한 계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관청의 곡식과 함께 다같이 계(啓)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대체로 환곡(還穀)에 대한 보관 관리는 비단 수령(守令)의 책임뿐만 아니라 역시 도신(道臣)이 어떻게 단속 통제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쪽에 많고 저쪽에 적다고 하여 혹 옮겨가고 옮겨오도록 허락한다면 아전(衙前)들이 쉽게 농간을 부려 폐단의 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봄에 환미(還米)를 내주고 가을에 환미를 받을 때에 이전(移轉)하지 못하도록 하며, 혹 부득이 많은 것을 덜어 적은 것을 보태주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도신이 사실대로 보고한 다음 시행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정식(定式)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감영에서 석 달에 한 번씩 편보(褊補)들을 위임해 보내어 조사 검열하고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했거나 축난 것을 차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이후에 본 고을에 대한 적간(摘奸)에서 발각되는 경우, 해당 수령은 엄하게 감처(勘處)함을 그칠 수 없으며, 도신 역시 잘 신칙하지 못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兪致善狀啓, 以爲: '還穀畢糴後, 除減各樣用下. 今秋, 軍餉及代錢收捧條則各穀竝耗實數, 米爲三萬餘石零; 太爲三千四百七十餘石零; 麰爲一千六十餘石零, 竝全數樁留, 以俟不恒之資. 至於明年應用耗條, 則以本營某樣措辦錢三萬兩, 均排區劃, 竝與今秋代捧錢五千八百兩, 如例還分, 待明秋責糴用於應下. 以其剩餘, 統合元總, 自再明年半留·半分, 歲以爲常. 總廳水原·廣州·開城四衙門穀則自明年竝耗費, 合錢四千四百餘兩零, 每於本營歲入中區劃, 以爲恒式. 各邑所在四衙穀, 逐年滋耗, 陞作戶曹穀事, 請令廟堂稟處' 矣. 三萬包之全數樁留, 實爲緩急之備. 而自明年應用耗條, 已有所措辦均派者, 則一年·二年可見經遠之策. 竝與四衙門穀, 而依狀請許施. 大抵還穀之典守, 不但爲守令之責, 亦在道臣操束之如何. 若以此多·彼少, 或許移去·移來, 則吏奸易生, 弊源可滋. 從今以往, 春糶秋糴, 毋令移轉, 設有不得不裒益之時, 道臣據實狀聞後, 施行之意, 著爲定式. 繼自巡營, 間三朔委送褊裨, 查閱報來. 而若或指虛爲實, 以欠爲完, 現發於日後本府摘奸, 則該守令重勘, 在所不已, 而道臣亦難免不飭之失. 以此申飭何如?" 允之.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2월 14일(기해) 3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유수 이재원이 환곡과 향곡의 포흠 문제를 비변사에서 품처하게 하라고 청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이,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을 옮겨 대출하였다가 오랫동안 포흠이 나서 한갓 빈 장부만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 해결 방법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중앙에서는 각영(各營)과 각사(各司), 지방에서는 각 도와 각 영에서 범범하게 옮겨 대출했다고 하나 끝내 빈 장부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책임지고 관리하는 도리인가. 추쇄(推刷)하기 곤란한 수량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탕감하라.

그러나 이것은 한두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며 그 당시의 치적을 들추면 얼마든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선정(善政)을 하였다고 하여 비석을 세워준 것이 있으면 모두 묻어버림으로써 뒷사람들의 경계가 되게 하고, 또한 묘당에서는 각 영과 각 사에 감결(甘結)을 보내고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행회(行會)하여 이런 내용을 벽에 게시하여 경계로 삼게 하여 두려워할 줄 알고 수치를 알게 하라." 하였다.

水原留守李載元以"還·餉挪貸, 便成舊逋, 徒擁虛簿, 措劃之方, 令廟堂稟處"啓. 敎曰: "內而各營·各司, 外而各道·各營, 汎稱挪貸, 畢竟鬼錄者, 此豈典守之道乎? 難刷之數, 依狀請蕩減. 而此非一二人所犯, 其時治績, 可以推知. 如或有善政立碑者, 竝卽埋置, 以爲後來者戒, 亦自廟堂捧甘各營·各司, 行會四都·八道, 將此辭意, 揭壁鑑戒, 使之知懼知恥."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5월 22일(계사) 3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유수 이재원이 누락된 토지면적을 많이 찾아내어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각 면에서 조사해 낸 토지가 770여 결(結)인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 모집한 정군(正軍)에게 공급하는 비용에 보태 쓸 수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누락된 토지를 이렇게 많이 찾아낸 것은 참으로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水原留守李載元狀啓, 則'本府各面查得結七百七十餘結, 自明年爲始, 以添補於新募正軍接濟之需, 請令廟堂稟處'矣. 漏結查得, 至於此多, 誠爲萬幸.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12월 16일(계축) 3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의 조세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은 돈으로 만들어 외탕고에 이송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에서 먼저 조사하여 낸 전결(田結)은 779결(結)남짓인데 이미 지난해 겨울에 장계로 보고하였으며, 그 이후에 조사한 것은 11결 남짓인데 묵은 면적에다가 보충하였습니다. 나머지가 111결 남짓인데 그 중에서 바친 돈과 쌀은 또한 획하(劃下)하여 새로 모집한 정군(正軍)이 접제(接濟)하는 비용에 쓰도록 보충해 주었고, 나머지의 돈과 쌀은 매년 12월에 쌀은 작전(作錢)하여 나머지의 돈과 함께 외탕고(外帑庫)로 이송하여 봉해놓고 옮기지 않는 몫으로 만드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하니,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조세에서 누락된 전결이 이미 이와 같이 많은데 추후에 세밀하게 조사하여 조세를 받아낸 것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니, 접제에 보충하는 것과 쓰고 남은 것은 작전하여 계속 이처럼 차례차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六日. 議政府啓: “卽見水原留守李載元狀啓, 則‘本府先査得結爲七百七十九結零, 已於昨冬狀聞. 而伊後査執, 又爲十一結零, 充補於舊陳. 餘在一百十一結零中, 而所捧錢米, 則亦爲劃下添補於新募正軍接濟之需用; 餘錢米, 每年終朔, 米則作錢, 竝與零餘錢, 移送外帑庫, 作爲封不動, 永爲定式, 恐合事宜. 竝令廟堂稟處’矣. 先査漏結, 旣至此多, 追檜執稅, 亦甚可幸. 接濟之添補, 用餘之作錢, 繼此而次次封椿, 竝依狀請許施何如?” 允之.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5월 26일(신묘) 1번째기사>

경제/재정
황해도의 사창곡을 수원과 광주 등에 구제물자로 나누어 주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봄철로 접어든 이후 도하(都下)에서 식량을 마련하기 어려운 근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경기(京畿) 안 여러 곳에서 진휼(賑恤)하고 구제하는 물자를 마련할 길이 없어 번갈아가며 답답한 사정을 고하고 있으므로, 지난번에 이미 해서(海西)에 관문(關文)을 띄워 사창곡(社倉穀)의 절미(折米) 2만 석(石)을 배로 운반해오게 하였습니다.
그 배가 경기 감영(監營)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5,000석에 한하여 추가로 획하(劃下)하여 수원(水原)·광주(廣州)·강화(江華)에 각각 500석씩 나누어 획하하여 보내고 나머지 1만 3,500석은 선가(船價)로 계감(計減)하여 모두 혜청(惠廳)에 소속시키며 공가(貢價)를 지급하는 것을 참작해서 배급하되, 여러 곳에 나누어 획하하는 일도 역시 해청(該廳)에서 담당하여 거행하게 하고 이후에 입본(立本)하는 조(條)의 6만 냥(兩)은 본청(本廳)에 상납(上納)하는 돈 중에서 우선 해도(該道)의 유치(留置)하는 양을 제외하고 전말을 본부(本府)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九日. 議政府啓: “開春以後, 都下艱食之憂, 日甚一日, 且畿內諸處賑救之資, 末由措辦, 迭相告悶. 故向已發關海西, 就社倉穀, 折米二萬石, 使之船運以來矣. 待其到泊, 畿營限五千石加劃, 水原·廣州·江華, 各五百石分劃以送, 其餘一萬三千五百石, 計減船價, 竝屬惠廳, 參酌排給於貢價上下. 而諸處分劃之節, 亦令該廳句檢擧行, 嗣後立本條六萬兩, 以本廳上納錢中, 姑令除留該道, 形止報府之意, 一體分付何如?” 允之.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2월 29일(을묘) 1번째기사>

경제/재정
광주유수 김보현이 수원과 개성의 규례대로 광주부 공도회의 인원을 늘려달라는 장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또 아뢰기를, “방금 광주 유수(廣州留守) 김보현(金輔鉉)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부 공도회(公都會)의 해액(解額)이 일 년에 세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수원(水原)과 개성(開城)은 해마다 뽑는 인원이 여덟 사람이니, 문치(文治)를 장려하는 정사에 있어서 마땅히 피차간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과 개성의 규례대로 똑같이 돌보아주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부(府)는 중요한 곳으로서 모든 제도를 두는 데에 있어서 진실로 화

성(華城)이나 개성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다만 공도회의 액수가 두 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경내의 많은 선비들이 울분을 품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수(留守)가 진술한 바를 허락하여 이제부터 두 도(都)의 규례대로 시취(試取)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二十七日. 次對. (…) 又曰: "卽見廣州留守金輔鉉狀啓, 則以爲: '本府公都會解額, 歲不過三人, 而水原·開城, 每年取額爲八人, 則其在揆文之政, 宜無彼此之異同. 依水原·開城例, 冀蒙一視之澤事, 請令廟堂稟處矣.' 是府重地也. 凡厥制置, 固無遜乎華城·開城. 而第惟都會之額, 未居兩府之半, 闔境多士之齎菀, 亦無怪矣. 特許守臣所陳, 從今以往, 依兩都例, 試取八額, 著式施行何如?" 允之. (…)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8월 27일(갑진) 1번째기사>

경제/재정

해당 도신의 장계에 따라 수원부의 재결을 수량대로 획급해주다

황해도(黃海道)의 잡세는 철폐하고 **수원부(水原府)의 재결(災結)은 수량대로 획급(劃給)해 주며,** 광주부(廣州府)의 진결(陳結)은 수량대로 획급해 주고 향곡(餉穀)은 수량대로 거두며, 경상도(慶尙道)에서 병조(兵曹)와 각영(各營)에 바치는 포(布)는 5분의 1만 대납(代納)하게 하고, 충청도(忠淸道)에서 병조와 각 영에 바치는 포는 5분의 1만 대납하게 하며, 각사(各司)에는 순전(純錢)으로 바치게 하고, 서천(舒川) 등 7개 고을에서 모시로 바치는 것은 일체 대납하도록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각 해당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이 장계(狀啓)로 청함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二十六日. 命許施黃海道雜稅撤罷, 水原府災結準劃, 廣州府陳結準劃, 餉穀準捧, 慶尙道兵曹各營納布, 限五分一許代, 忠淸道納布, 兵曹各營, 限五分一, 許代各司純錢. 舒川等七邑苧納, 一體許代. 因各該道守臣狀請, 政府覆啓也.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0월 26일(무술) 1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 유수 민영상이 소란을 일으킨 원군의 군사를 사핵하라고 계문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영상(閔泳商)의 계본을 보니**, '원군(園軍)의 군사들이 일으킨 소란을 맨 처음 제창한 자를 사핵(査覈)하여 남김없이 논하였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맨 먼저 제창한 자에 대해서는 죄수들의 공초(供招)에서 명백히 지적하였으므로 특별히 판부하였는데, 감영(監營)에서 조사하여 다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 又啓: "卽見水原留守閔泳商啓本, 則'園軍作鬧首倡, 査覈論跋, 請令廟堂稟處'矣. 首倡所歸囚供指的, 特判乃降, 營覈更徹. (…)" 允之.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5월 14일(신미) 3번째기사>

경제/재정

고종이 대신들과 동학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하교하기를, "요충지의 길은 대체 몇 곳인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수원(水原)과 용인(龍仁)은 바로 직로입니다."** 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안성(安城)도 직로이고 큰 길로써 광주(廣州)와 용인이 서로 접해 있는 곳입니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심영(沁榮)과 기영(箕營)의 군사를 우선 수원과 용인 등지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서울의 군사는 형편을 보아가며 조용(調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서울의 군사는 아직 파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 쓰는 것은 역시 각 나라마다 전례가 있는데, 어찌 군사를 빌려다 쓰지 않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그것은 안 됩니다. 만일 쓴다면 군량은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진배(進排)해야 합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군사를 빌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군사를 빌려 쓰는 문제를 어찌 경솔히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중국에서는 일찍이 영국(英國) 군사를 빌려 쓴 일이 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이것이 어찌 중국 일을 본받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여러 나라에서 빌려 쓰려는 것이 아니라 청(淸) 나라 군사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청나라 군사를 빌려 쓰는 것은 비록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다르다고 하여도 어찌 애초에 빌려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二十五日. 次對. (…) 敎曰: “要衝之地, 凡幾路乎?” 舜澤曰: “水原·龍仁, 是直路也.” 範朝曰: “安城亦直路大道, 廣州與龍仁相接之地也.” 舜澤曰: “沁營·箕營兩營兵丁, 先爲派駐水原·龍仁等地, 京軍觀勢調用爲好矣.” 敎曰: “京軍姑不可派送矣. 借用他國兵, 亦有各國之例也. 何不借兵耶?” 舜澤曰: “此則不可矣. 若用之, 則軍餉不得不自我國進排矣.” 秉世曰: “不必借兵矣.” 範朝曰: “借用何可遽議乎?” 敎曰: “中國曾有借用英國兵之事矣.” 範朝曰: “此豈可效中國事乎?” 敎曰: “非欲借各國也. 淸兵可用, 故言之矣.” 範朝曰: “淸兵借用, 雖異於各國, 而曷若初不借之爲好乎?” (…)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25일(정미) 1번째기사>

경제/재정

수원부, 광주부의 진전답에 따라 조세를 면제해 주고 농사형편을 보고하라고 명하다

평안도(平安道)에서 도로 기경(起耕)하는 진전(陳田)과 화전(火田)의 총면적에 대한 조세를 정지하거나 면제하고, 함경남도(咸鏡南道)의 포락전(浦落田)으로 원대장에 올라 있거나 속대장에 올라 있는 토지 3결(結) 74부(負)에 대한 조세를 정지하며, 함경북도(咸鏡北道) 명천(明川) 이남의 진봉리(進捧吏)를 정지하고, **수원부(水原府)의 옛 진전 99결 46부을 조사하여 채우고**, 광주부(廣州府)에 이전부터 강으로 되어버린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총괄하였으나 충당하지 못한 105결 37부는 특별히 준획(準劃)을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각 해도(該道)의 수신(帥臣)과 안무사(按撫使)의 연분 장계(年分狀啓)로 인해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命關西陳田火田還起執總停免, 咸南浦落元續田三結七十四負停稅, 咸北·明川以南進捧吏停止, 水原府舊陳九十九結四十六負查充, 廣州府流來成川之查括未充一百五結三十七負, 特許準劃. 因各該道守臣按撫使年分狀啓, 政府覆啓也.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11월 30일(갑신) 2번째기사>

⑵ 상업

경제/상업

수원 부사 조심태가 새 고을 시정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본부의 새 고을 시정(市井)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대신들과 여러 재상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신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물어보았더니, 본부는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요로이기는 하나 물산이 본디 적어서 비록 부호(富戶)를 많이 모으고 점포를 설치하려 하더라도 갑자기 생각대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반드시 본고장 백성들 중 살림밑천이 있고 장사물정을 아는 사람을 골라 읍부근에 자리잡고 살게 하면서 그 형편에 따라 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하니, 이 의견이야말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어떤 관청을 막론하고 이자(利子)가 없는 돈 6만 냥을 떼어내 고을 안에서 부자라고 이름난 사람 중에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 해마다 그 이익 나는 것을 거두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본전과 함께 거두어들인다면 백성들을 모집하고 산업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가서 응모하는 사람들과 구획하게 되면 점포란 명칭의 설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쌀 때 사 비쌀 때 팔면서 시기에 따라 꾸려가게 한다면 새 읍치(邑治)도 완전히 형성될 가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포사(造泡寺) 중들의 생활이 빈약합니다. 그들에게도 다같이 참작해 나누어주고 지혜(紙鞋)를 만드는 본전으로 삼게 한다면 반드시 혜택을 입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니, 대신에게 가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말하기를,

"운영에 매우 조리가 있으니 마땅히 진술한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전물(錢物)은 균역청과 금위영·어영청 두 군영의 관서별향고(關西別鄕庫)에서 적당히 분배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종수는 아뢰기를,

"수원 부사가 아뢴 말은 정말 헛점을 잘 맞혔습니다. 6만 냥의 돈이 적지 않은 것 같으나 3년 내에 본전을 돌려갚는 조건에서 좌의정의 말대로 균역청과 금위영·어영청 두 군영의 관서별향고에서 참작하여 많은 데서 덜어내어 적은 데에 보태게 하소서. 그중 균역청의 돈은 비록 그 사안이 중한 것 같으나, 여러해 동안 남거나 부족된 수량이 처음에 비하여 몇 곱절이 될뿐 아니라, 서울 각 관청에서 차용하고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은 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관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더없이 중요한 일에 들어간 수량을 수년 내에 본전으로 도로 들여놓는데 있어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균역청의 돈으로 떼어주도록 명하였다.

○**水原**府使趙心泰啓言: "本府新邑市廛事, 大臣諸宰已收議, 而臣博詢物議, 則本府雖是三南要路, 物産素乏, 雖欲廣集富戶, 設立市廛, 猝難如意. 須於本土民人中, 擇其有食根, 解商業者, 奠居於邑底, 從多少受本錢, 興利資生爲良策云, 此議亶合一試. 毋論某衙門, 劃得無邊錢六萬兩, 付都下有富名願受者, 歲收利條, 定以三年之限, 幷本錢收納, 則募民制産之方, 庶爲一大助. 趁此時區劃於應募之類, 不必設立廛名. 貿賤賣貴, 隨時料理, 則新治亦期完聚矣. 造泡寺僧徒, 生涯凋殘, 一體酌量分排, 作爲紙鞋, 本錢則合有沾漑之道矣." 命就議大臣. 左議政蔡濟恭曰: "經紀極有條理, 當依所陳施行. 錢物似於均廳及禁御兩營, 關西別餉庫, 酌量分排矣." 右議政金鍾秀曰: "**水原**倅所奏, 儘皆中窾. 六萬錢貨, 雖似不些, 三年之內, 還他原數, 依左相言, 就均廳及禁御兩營, 關西別餉庫, 斟量裒益. 其中均廳錢, 雖似體重, 不但多年

贏縮之數, 比初累倍而已, 京各司借用, 限十年還償, 自昔年已有成例, 則況此莫重所須之數, 年內還本, 似無持難之端矣." 命以均廳錢劃給.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5월 17일(정유) 2번째기사>

경제/상업

육의전 철폐에 항의하는 일에 대해 수원 유수 채제공이 기강 확립을 청하다

차대하였다. **수원 유수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은 저자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팔 수 있게 한 일에 대하여 개탄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연전에 이를 실시하던 처음에 수백 명의 저자 백성들이 신이 조정에 나오는 길을 막고 호소하기에, 신이 타이르기를 '지금 성명하신 군주가 위에 계시고 온 나라 백성은 똑같이 군주의 자식이다. 그렇다면 행상(行商)이건 좌판(坐販)이건 서로 있고 없는 것을 무역하는 것은 진실로 떳떳한 일이다. 그런데도 저자의 가게 자리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을 구속하거나 내쫓아서 도성(都城)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겠는가. 너희들도 백성이고 저들도 백성인데, 조정에서 다독여 구휼하는 도리에 있어서야 어찌 피차의 차이를 두겠는가.' 하고 엄한 말로 나무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갑자기 다시 소요를 일으켜 저자 백성 70여 명이 수원까지 와서 호소하기에 모두 바로 쫓아보냈습니다. 나라의 기강과 백성의 풍습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시정의 백성들이 무엄하게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기려는 풍습에 흔들리어 바른 도리를 굳게 지키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조정의 위신을 높이고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말들이 하도 많고 비방과 칭찬이 반반이라서 그 이해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없었는데, 이제 경이 아뢴 말을 듣고 보니 백성들의 풍습이 놀랍다. 대저 공인(貢人)과 시인(市人)은 바로 도성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진실로 다독여 구휼해야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당연히 기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다." 하였다.

○癸卯/次對. 水原留守蔡濟恭啓言: "臣於市民通同發賣事, 有所慨歎者. 年前設始之初, 數百市民, 要臣赴朝之路, 遮擁呼訴, 故臣曉諭曰: '方今聖明在上, 匝域之民, 均是赤子, 則行商坐販, 有無貿遷, 固是常事, 而苟非編名市廛, 則人之持己物買賣者, 縛之驅之, 使不得接跡於輦轂之下者, 寧有如許道理? 爾亦民彼亦民, 在朝家撫恤之道, 豈有彼此之殊?' 仍爲嚴辭呵斥矣. 近來忽復騷擾, 市民七十餘人, 至於來訴水原, 故幷卽逐送, 而國綱民習, 誠不勝慨歎. 今若以市井小民無嚴自私之習, 有所撓改, 不能固守, 則將何以尊朝廷振紀綱乎?" 上曰: "此事論說多端, 毁譽相半, 無以的知其利害, 而聞卿所奏, 民習可駭矣. 大抵貢·市人,卽都下根本, 固宜撫恤, 而此等處, 則予以爲當以紀綱爲重矣."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3월 10일(계묘) 1번째기사>

경제/상업

호남 위유사 서영보가 별단을 올리다

(…) 1. 흥양현의 계축년 조세로 낸 대두(大豆)는 전생서(典牲署)에서 지방에서 직접 받아가는 세로 떼어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막 대대적인 진휼을 겪은 다음이라 백성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대두 1석에 2냥 5전으로 값을 쳐서 쌀을 사서 대신하는 예에 따라 가을이 되거든 쌀 1석에 가모(加耗) 분까지 아울러 갖춰서 납입하기를 원

했습니다. **그 후 화성(華城)에서 공인(貢人)에게 쌀을 사들였는데,** 금년에 갑자기 전에 없던 흉년을 당하였으니, 선운(船運)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쌀을 갖추어 바칠 가망이 만무합니다. 비록 내년 이후에 크게 풍년이 들더라도 곡식으로 상납케 한다면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관전(官錢)은 2할의 이식을 받는 예에 따라 2냥 5전에 5전을 더하여 합쳐서 3냥을 거두어들여 올려보내게 하여 민폐를 쾌히 제거하소서. 비단 흥양현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능주(綾州) 등 몇 개의 고을도 역시 이러한 명색의 곡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결같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 一, 興陽縣癸丑條稅大豆, 自典牲署劃得外受, 而其時新經大賑, 而民勢倒懸. 民願大豆一石價二兩五錢, 代以貿米例, 待秋成米一石竝耗備納矣. 其後自**華城**貿得於貢人, 而今年猝當無前之歉, 船運姑舍, 以米備納, 萬無其望. 雖明年以後大登之歲, 以穀上納, 則民弊滋甚. 依官錢什二例, 二兩五錢加以五錢, 合三兩收捧上送, 夫除民弊. 非特興陽爲然, 道內綾州等數邑, 亦有此名色穀物云, 竝爲一體施行, 恐合事宜.(…)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1794) 12월 25일(무인) 3번째기사>

경제/상업

연경에 갈 때 은화 대신 모자와 가삼을 가져가는 방안을 논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연초에 현륭원에 행차하였을 때 **화성의 성안을 부실(富實)하게 하라는 전교를 내렸는데**, 간곡하고 자세하였습니다. 명을 받들어 이행하여 주상의 뜻을 선양하는 일은 낭묘(廊廟)의 책임인데, 지금 시행할 만한 한두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혈(帽穴)에 관한 일이며 또 하나는 가삼(家蔘)에 관한 일입니다. 모자(帽子)는 공물(公物)이기는 하나 이미 개인 장사꾼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산매(散賣)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화성에 그 권한을 주어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사오거나 의주(義州)의 점포에서 사들여 화성의 시가에 따라 산매한다면 각처의 장사꾼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입니다.**

가삼은 사사로운 물화이기는 하나 본래부터 부호(富戶)들이 전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도 화성에 예속시켜 화성 시장에 모이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이윤이 생기는 곳이므로 물주(物主)와 부호들이 틀림없이 앞다투어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 거리가 저절로 들어차게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유사 당상 정민시(鄭民始) 등을 불러 그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상이 이르기를, "모자와 가삼의 두 가지 건에 대하여 곧 시행하라고 허락하려 한다. 연경에 갈 때 가져가는 은화(銀貨)를 삼으로 대신 충당하도록 허락한다면 역관들의 폐단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편도 될 듯하다. 경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니, 민시가 아뢰기를, "연경에 갈 때 가져가는 물건은 원래 인삼을 썼는데, 이 일이 『통문관지(通門館志)』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은으로 바꾼 것은 삼은 귀하고 은은 넉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은화가 품귀해져 역관들이 그들의 포대를 채울 수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삼은 집에서 심기 때문에 숨겨 가지고 가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금법을 무릅쓰고 숨겨 가지고 가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옛날의 예에 따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양쪽 다 편리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은이 귀하면 삼을 가져가고 삼이 귀하면 다시 은을 가져가게 하여 무역의 권한이 우리 나

라에 있게 하는 것이 실로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획책하는 좋은 계책이다. 그리고 약조(約條) 중의 금제(禁制)와도 무관하니, 올해부터 사행(使行)이 갈 때 다시 삼포(蔘包)를 쓰더라도 불가한 줄을 모르겠다.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이와 같이 제도를 정한다면 반드시 부호를 화성에 옮겨서 무역의 권한을 주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성을 쌓은 것도 백성을 보살펴 주기 위한 방도이고 보면, 이미 쌓았으니 이를 알차게 할 방법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이 이미 행하였던 예로 말하더라도 한(漢) 무제(武帝)는 10만의 부호(富戶)를 무릉(茂陵)에 옮겼었다. 진실로 이익을 일으키고 생업을 안정시켜 성안을 부실(富實)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미 모집해 들였으면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의당 발탁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중에 지위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근실한지의 여부를 보아 별도로 수용(收用)하여야 할 것이다. 경들은 이로써 효유하여 각자 즐거이 모여들게 하라."
하고, 드디어 비변사의 초기(草記)를 윤허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참으로 시험하여 보고자 한다면 먼저 중신(重臣)의 말대로 구례(舊例)를 다시 살려 팔포삼(八包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화성에 성을 쌓은 것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한나라 때 무릉에 부호가(富豪家)를 이주시켰는데 더구나 이 성의 소중함은 선침(仙寢)을 호위하고 행궁(行宮)을 옹호하는 데에 있으니, 그 체모(體貌)의 존엄하기가 무릉에 비하여 더욱 다른 바가 있는 것이다. 경외(京外) 사방의 부호(富戶)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 앞다투어 모여들게끔 하되, 마치 물이 아래로 내리흘러 밤낮으로 쉴 틈이 없는 것처럼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여들어 서로 앞다투어 직업을 권면하고 자기 일을 즐기며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이득을 이롭게 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소중함으로 인해 이 성을 쌓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성실하고 근실하게 하였는가를 살펴서 차례로 발탁하여 임금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리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니, 경들은 잘 알아서 분부하라."
하니, 민시가 아뢰기를,
"**화성에 새로 모집하는 부호는 먼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생활을 풍족히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삼계(尾蔘契)를 만든 뒤에 종없이 이속(移屬)된 바람에 별로 긴하게 여기는 곳이 없으니, **이를 화성에 예속시키**되, 새로 모집하는 부호는 20인으로 계를 만들어 항업(恒業)을 삼게 하고 혹 옮겨가는 자가 있으면 계 중에서 빼어버리고 다른 축실(築實)한 자로 대충하게 하소서. 그리고 약간의 공화(公貨)를 빌려주어야만 재물의 밑천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상 감영의 소관인 남창(南倉)의 돈 5만 냥과 평안 병영에 있는 비국의 관리하는 것과 해영(該營) 소관의 돈 중에 5만 냥을 한도로 모두 화성에 이속(移屬)시켜 편의에 따라 변통하여 쓰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癸巳/備邊司啓言: "歲初園幸時, 以**華城**城內富實事, 十行絲綸, 丁寧諄複. 祗奉成命, 圖所以對揚, 卽廊廟之責, 而今有一二可行之策. 其一帽穴事也, 其一家蔘事也. 帽子雖云公物, 旣給私商, 任其散賣. 今若專付之**華城**, 或貿燕市, 或買灣肆, 自**華城**從時價散賣, 則各處商賈, 自當駢闐矣. 家蔘雖是私貨, 自來富戶專其興販, 若又屬之**華城**, 如非聚會於華市, 俾不得賣買, 則利之所在, 物主富戶, 必將應募爭趨. 如此則井閭自然有櫛比之效, 居民自然獲滲漉之惠矣. 請成節目遵行." 上, 召有司堂上鄭民始等, 詢便否. 上曰: "帽蔘兩條, 旣將許施矣. 若許赴燕銀貨, 以蔘代充, 則在象譯, 亦可爲抶弊之一端. 卿等之意如何?" 民始曰: "燕行入也, 本用人蔘, 此載『通天館志』. 而中間以銀代蔘, 職由蔘貴而銀裕也. 近因銀貨翔貴, 譯官無以充其包, 未免空還. 蔘則以家種之故, 潛越漸多, 與其冒禁而潛越, 無寧遵舊而許入之爲兩便矣."

上曰: “銀貴則用蔘, 蔘貴則還用銀, 使貿遷之權, 在於我國, 實爲籌邊之長策. 且不關於約條中禁制, 自今年使行, 復用蔘包之式, 未知其不可. 其議大臣以聞.” 上, 又曰: “旣如是定制, 則必須移富戶於**華城**, 使主其貨遷之權. 大抵築城之役, 爲拱護之方, 則旣已築之, 不可不思所以實之. 雖以古人已行之例言之, 漢武帝徙十萬富戶於茂陵. 苟可以興利安業, 富實城內, 則何事之可靳? 旣已募入, 則其在激勵之道, 宜有奬拔之擧, 其有地處履歷人, 當觀其勤怠, 另加收用. 卿等以此曉諭, 俾各樂赴.” 遂允備邊司草記. 且敎曰: “苟欲試之, 先從八包蔘復舊例, 如重臣言爲可. 大抵城于華, 爲所重也. 漢時徙豪富戶於茂陵, 況此城所重, 在於拱衛仙寢, 環護行宮, 其體貌之尊嚴, 比茂陵尤有別焉. 使京外四方之富戶, 聞風爭集, 若水趨下, 日夜無休時, 不召而自來, 不求而自至, 爭相勸其業樂其事, 安其土利其利, 然後始可言爲所重築斯城之效. 當觀誠實勤恪之如何, 次第拔擢, 以示信王言之義, 卿等知悉, 分付.” 民始啓言: “**華城**新募之富戶, 宜先有以悅其心厚其生. 尾蔘作契之後, 移屬無常, 別無關緊處, 請屬之**華城**, 新募富戶, 以二十人作契, 俾作恒業, 而或有遷居者, 拔之契中, 以他築室者代充. 且以若干公貨許貸, 然後可以添補貨本. 請以慶尙監營所管南倉錢五萬兩, 平安兵營所在備局句管及該營錢中限五萬兩, 幷移屬**華城**, 從便區處.” 從之.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2월 22일(계사) 1번째기사>

경제/상업

이병모가 상차하여, 화성부를 발전에 장애가 되는 6가지 절목을 아뢰다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가 차자를 올리기를, “**화성부는 첫째로는 원릉(園陵)을 옹호하고, 다음으로 경기의 요새지이고, 끝으로 배와 수레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3, 4년 만에 대농(大農)의 경비를 쓰지 않고 어느덧 성곽이 완성되었으니, 신기(神機)와 묘운(妙運)이 마치 귀신이 도운 듯합니다. 이것은 정말 만세토록 끄떡없는 기반입니다. 지금 우선 할 일은 백성들이 많이 들어와 잘살게 하는 것이므로 묘당에 명하여 훌륭한 계책을 강구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신이 그 절목(節目)을 취하여 나라의 체통에 관계되고 원대한 계획에 지장이 있는 것을 뽑아 보니, 잘못된 것이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고 부호(富戶)는 빈민의 바탕입니다. 지난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무릉(茂陵)에 부호를 옮겼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삼대(三代)와 같은 시대를 만회하려는 전하의 포부로써 어찌 이런 방편적인 구차한 정치를 본받는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간혹 거기에 가 살기를 자원하는 가호(家戶)들이 있다면 굳이 법을 만들어 금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단코 조정에서 모집하는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첫번째 불편한 것입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땅이 있으면 거기에 재물이 나고, 재물이 나면 그것을 쓸 수 있다.’ 고 하였으니, 민호(民戶)를 모집하고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는 길은 땅을 널리 개간하고 재물을 유통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 북쪽에 새로 개간한 토지가 이미 그 요점을 얻었으니, 여기에 널리 무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서도·북도·호서·호남·영남·영동의 물산이 모여들게 해야만 비로소 부실(富實)의 효과를 책임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와 삼 두 가지만으로 통화(通貨)의 근원을 삼고 있으니, 모자와 삼의 효과만으로는 한 부(府)의 생활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식자가 아니더라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불편한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각각 주객(主客)이 있는데, 주객이 뒤바뀌고 성취된 일은 없습니다. **화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주인이고 서울의 부호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도리어 주인이 되어 재산의 실권을 잡아 부내에 사는 백성들을 부린다면 그 백성들이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서로 헤매며 떠들기를 ‘우리가 원침(園寢)을 옹호하고 경기의 방어를 해 온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지금 수십 호의 부호에게 점거당하여 주인이 나그네의 말을 듣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삼켜버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전파하며 모두들 흩어져버리고 말 것이 필연적인 사세입니다. 이것이 그 세 번째 불편한 것입니다.

전부터 삼을 판매하는 유는 본래 그 철에 사두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사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사기 전에 돈을 풀었다가 때가 되면 삼을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올 가을에 쓸 것은 벌써 지난해 가을에 마련하여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호를 위해 이익을 독점하게 한다면 시기 전에 돈을 풀어놓은 저들은 제때에 삼을 거두어들이는 이득을 그냥 앉아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득을 잃어버린 자도 우리 백성이고 그 이익을 독점하는 자도 우리 백성이라 다같은 백성으로서 득실이 맞먹는다 하더라도 선후와 다소에 따른 효과와 지장이 판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네 번째 불편한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부호들이 앞다투어 입주를 원하면서 행여나 뒤질세라 걱정하는 것은 예외로 뽑아서 등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장 실직(邊將實職) 등의 벼슬은 본래 의관(醫官)이나 역관들이 통상적으로 갖는 직책이므로 그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보다 과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치와 범람한 습속이 되어 더구나 키울 수 없으므로 마침내는 은혜가 다함에 실망하여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섯 번째 불편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절목이 유리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부호가 이익을 독점하게 만들어 준 행위입니다. 이는 왕도정치에서 통렬히 금하여야 할 일인데 이처럼 방편적으로 허락하면서 이익을 독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처음에 계획을 잘 짜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기본 방침을 소중히 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여섯 번째 불편한 점입니다.

신은 원래 재능이 없고 세상의 모든 일에 까마득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렵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예로부터 폐단을 말하는 자가 반드시 그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조정에서 그 말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피고 나서 담당관에게 명하여 잘 생각해서 조처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런 점에 대해 가부를 논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경이 이미 그 불편한 여섯 가지 단서를 말하였으니, 어찌 억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좌상이 이 일에 참여하였으니, 그와 함께 다시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조처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判中樞府事李秉模上箚曰: “**華城**一府, 上爲園陵之拱衛, 中爲畿輔之保障, 下爲舟車之都會. 經始三四年, 不煩大農之經費, 居然百雉之告完, 神機妙運, 若有神助. 是誠萬世不拔之基也. 在今先務, 惟在於庶而富之, 爰命廟堂講其長策. 臣謹就節目, 撮其關國體妨遠圖者, 其失有六. 京師, 四方之根本, 富戶, 貧民之綱紀. 考之前史, 雖有茂陵徙豪富之文, 以殿下挽回三代之志, 何必倣此權宜苟且之政乎? 渠輩小或有自願就居之戶, 雖不必設法禁之, 決不可自朝廷而開其募入之路. 此其不便一也. 傳曰: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募戶足民之道, 不過曰廣其墾通其財而已. 城北新墾之土, 旣得其要, 是宜廣開貿遷, 西北湖嶺之産, 繈輸輻輳, 然後始可責富實之效. 而今乃以帽蓼二條, 爲通貨之源, 帽蓼之爲效, 不足以厚一府之生, 不待知者而不難決矣. 此其不便二也. 天下萬事, 有主有客, 主客倒置, 未有能集其事者. **華城**之民, 主也, 京城之富戶, 客也. 客反爲主, 執其財權, 反使府內之民, 局外傍觀, 將倀倀然相告曰: ‘吾屬控護園寢, 保障畿輔, 爲何如也? 而今爲數十富戶占據, 以主聽客, 以富呑貧.’ 互相傳說, 人皆解

體, 必至之勢也. 此其不便三也. 自前以蔘料販之類, 本非當節, 而貿置又非隨賣而隨貿也. 莫不先期而散緡, 及時而收蔘, 今秋所用, 已是昨年之經紀. 今爲二十戶專利之地, 使彼先期散緡之類, 坐失及時收蔘之利. 雖曰失其利者吾民, 專其利者吾民, 均之爲民, 得矢相當, 先後多少, 效害判異. 此其不便四也. 顧今富戶之爭先願入, 惟恐或後者, 蓋在於拔例奬用. 而邊將實職等官, 自是醫譯輩所常有之職, 未必在渠爲榮. 如欲過此, 則侈濫之習, 又不可長, 畢竟失望恩渴而怨. 此其不便五也. 今此節目, 雖不曰利, 要其歸則一言蔽之曰富戶榷利也. 王政之所當痛禁, 而姑此許之, 謂非權利云爾, 則是豈爲所重謀始經遠之宏謨遠猷也哉? 此其不便六也. 臣素無才具, 一切世務, 茫不知其所措, 極知說之則易, 措之甚難. 第伏念從古說弊者, 未必捄其弊, 亦在朝家察其言之當否, 申命有司之臣, 發慮措處之爲如何耳." 批曰: "此等處曰可曰否, 甚是美事. 卿旣陳六條不便之端, 豈可强令行之? 左相與聞是事, 須與之更究好道理措處也."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2월 25일(병신) 3번째기사>

경제/상업

현방 시민의 폐단에 관한 하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현방(懸房) 시민(市民)의 폐단에 대해 선조(先朝) 때에 진휼(軫恤)을 심히 더하여 앞뒤로 내린 처분이 엄절(嚴截)할 뿐이 아니었는데, 궁속(宮屬)들이 어려움 없이 범법(犯法)함이 또다시 이와 같으니, 나라 기강의 해이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과세(過歲)한 뒤에는 마땅히 내시부(內侍府)에서 엄히 조사하여 몹시 다스릴 것이니, 이후부터는 무역(貿易)은 표(標)를 지닌 노자(奴子) 이외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삼사(三司)의 하속(下屬)에게 분부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죄를 범한 자는 경중에 따라서 매섭게 다스리도록 하며, 외상 방전(外上防錢)을 일일이 찾아서 내어주도록 하라. **현방 시민의 일로 말한다면 더 중요할 수 없는 아침 저녁의 제향(祭享) 및 화성(華城)에 보낼 물종(物種)을 철시(撤市)하였다고 핑계하며 응납(應納)하지 않으니** 이렇게 미련하고 사나운 백성의 습성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 휼민(恤民)하는 방도에 있어서 참작하는 정사(政事)가 없을 수 없겠다. 만일 다시 전습(前習)의 뒤를 잇는다면, 또한 형배(刑配)를 면치 못한다는 뜻을 세후에 비국(備局)에서 엄히 밝히도록 분부하라. 이로 인하여 생각하건대 이 일이 이와 같으니 다른 일을 알 수 있겠다. 옛날에는 시민의 못된 병폐를 없애 버리고자 하여 누누이 하교한 외에도 동가(動駕)하는 길목에서 어가를 멈추고 친히 물었었는데, 지금은 사정을 호소할 길이 없으니, 어찌 억울한 마음이 없겠는가? 또한 비국에서 말을 만들어 평시서(平市署)에 공문(公文)을 받게 하여 당상(堂上)·낭관(郎官)으로 하여금 각 가게의 시민을 불러와서 못된 병통을 상세하게 묻게 하되, 공가(公家)나 사가(私家)를 논할 것 없이 만일 외상을 오래도록 바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범한 자를 초기(草記)로 죄를 논하여 해조에 이송해서 역시 일일이 봉급(捧給)하도록 하라. 또 근일에 삼사(三司)의 풍문(風聞)을 들으니, 도리어 백성을 뒤흔드는 단서가 된다고 하는데, 아! 우리 적자(赤子)들이 여러 곳에 침탈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는 대신(大臣)이 각별히 살피고 신칙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법도가 아닌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듣는 대로 즉시 청죄(請罪)하여 징계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壬申/大王大妃敎曰: "懸房市民之弊, 先朝深加軫恤, 前後處分, 不啻嚴截, 而宮屬之無難犯科, 又復如是, 國綱之解弛, 莫此爲甚. 過歲後當自內侍府, 嚴査痛治, 此後則貿易持標之奴子外, 勿爲買賣事, 分付三司下屬, 令該曹査出犯者, 從輕重猛治, 外上防錢, 一一推給. 以懸房市民言之, 莫重朝夕祭享及華城所送物種, 稱以撤市, 不爲應納, 如許頑悍之民習, 不可不嚴懲,

而其在恤民之道, 不可無參酌之政. 若復踵前習, 則亦不免刑配之意, 歲後自備局, 嚴明分付. 因此思之, 此事如此, 他事可知. 昔日欲除市民之弊瘼, 縷縷下敎之外, 動駕之路, 至於駐輦親問矣, 今則呼訴無路, 豈無抑鬱之心? 亦自備局, 措辭捧甘於平市署, 使堂·郎招致各廛市民, 詳問弊瘼, 無論公家·私家, 若有外上久未捧者, 犯者草記論罪, 移送該曹, 亦令一一捧給. 又聞近日三司風聞, 反爲撓民之端云, 噫! 吾赤子侵漁多門, 何以聊生? 此則大臣各別察飭, 萬一如有非法之事, 隨聞趁卽請罪, 以爲懲戢之地, 可也."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1801) 12월 30일(임신) 1번째기사>

⑶ 교통

경제/교통

수원부에서 조운하던 배가 침몰하여 경기의 조운을 폐하고 육로를 이용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기 수원부(水原府)에서 지난 갑진년에 조운(漕運)하던 곡식이 배가 파선되어 모두 침몰하였는데,** 이제 또 바람을 만나 전복되어 익사한 자가 6명이나 되오니, 청컨대 경기의 수로(水路)로 조운하던 각 고을들은 이제부터 다 육로로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啓: "京畿水原府去甲辰年漕運之穀, 船敗沒溺, 今又遭風滄沒, 死者六人. 請自今京畿水路漕轉各官, 竝令陸輸." 從之.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1월 20일(정묘) 10번째기사>

경제/교통

공조에서 광주·수원 등의 고을에 속한 배를 한 척씩 감해줄 것을 건의하다

공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본조에 명하여 공선(貢船)과 참선(站船)의 수(數)를 적당하게 감하라고 하셨사오나, 지금 각도 공선의 수를 상고하옵건대, 1년에 12척에 불과하온바, 경상도 공선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많기 때문에, 지난 정미년 수교(受敎)에, '5척을 감하라.' 하였사온즉,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오며, 좌도(左道)의 참선의 수는 우도(右道)의 4배(倍)가 되므로,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는 수가 너무 많아서 소나무를 많이 허비하게 되오니, 그 폐단이 크고, 우도는 배 15척에 수부(水夫) 88명을 정하였사오니, 수부의 수가 배 수의 배(倍)가 되므로 구실치르기[立役]가 어렵지 아니하오나, 좌도는 배 90척에 수부 1백 9명을 정하여, 수부의 수 가 배 수의 배(倍)가 되지 못하므로 농삿달을 불계(不計)하고 연번(連番)으로 구실을 치르게 되며, 그 받은 바 선척(船隻)도 잘 간수(看守)하지 못하여 썩고 허물어지게 되오니, **청컨대 좌도에 소속된 배에서 광주(廣州)·양주(楊州)·수원(水原) 등 고을에 각각 한 척씩**, 충주(忠州)에 한 척, 원주(原州)에 한 척, 양근(楊根)·포천(抱川)에 각 한 척씩,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에 아울러 한 척, 양지(陽智)·진위(振威)도 아울러 한 척을 감하여 백성의 폐를 덜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工曹啓: "曾命本曹, 量減貢船·站船之數. 今考各道貢船之數, 一年不過十二隻, 而慶尙道貢船, 視他道最多, 故去丁未年受敎減五隻, 今宜仍舊. 左道站船之數, 則四倍於右道, 故分定各官之數過多, 多費松木, 其弊已鉅. 右道則於船隻十五, 定水夫八十八人, 水夫之數, 倍於船隻, 故立役不難. 左道則船隻九十, 定水夫一百九人, 水夫之數, 未倍於船隻, 故不計農月, 連番立役, 其所受船隻, 未能看守, 以致朽敗. 請減左道所屬船, 廣州·楊州·水原等官各一隻·忠州一隻·原州一隻·楊根·抱川各一隻·衿川·果川竝一隻·陽智·振威竝一隻, 以(祛)〔祛〕民弊." 從之.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11일(경진) 3번째기사>

경제/교통

의정부에서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田制)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 와 같이 기록합니다. (…)

1. **공수 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중·소로(小路)로 나누어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

都護府)·목관(牧官)의 대로(大路)는 30결, 중로(中路)는 25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의 대로는 25결, 중로는 15결, 소로는 10결을 절급(折給)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은 모두 다 혁파(革罷)하여 없앨 것. 함길도(咸吉道)·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하고 6도(道)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을 대·중·소로 나누는데, 전주(全州)·청주(淸州)·충주(忠州)·공주(公州)·상주(尙州)·성주(星州)·황주(黃州)·수원(水原)·원평(原平)·회양(淮陽)·선산(善山)·양주(楊州)·천안(天安)·여산(礪山)·봉산(鳳山)·용인(龍仁)·죽산(竹山)·진위(振威)·금성(金城)·금화(金化)·함창(咸昌)·문경(聞慶)·개령(開寧)·포천(抱川)은 대로(大路)로 하고, (…)

○乙酉/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一, 公須位田, 今分大中小路, 留守府大都護府牧官, 大路則三十結, 中路二十五結. 都護府知官, 大路二十五結, 中路二十結, 小路十五結. 縣官, 大路二十結, 中路十五結, 小路十結折給. 各官任內公須位田, 竝皆革除, 除咸吉·平安道外六道州府郡縣, 分爲大中小路. 全州·淸州·忠州·公州·尙州·星州·黃州·水原·原平·淮陽·善山·楊州·天安·礪山·鳳山·龍仁·竹山·振威·金城·金化·咸昌·聞慶·開寧·抱川爲大路. (…)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3일(을유) 1번째기사>

경제/교통

재주 있는 말 1백필을 가리어 수원부 홍원곶에 기르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경기(京畿)와 하삼도(下三道) 목장의 망아지와 제주(濟州)의 공마(貢馬) 중에서 매년 악선(惡旋)이 없고 훌륭한 재주가 있는 것 1백 필을 가리어 수원부(水原府) 홍원곶(弘原串)에 목양(牧養)하고, 사복 겸관(司僕兼官) 2인을 시켜 목축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申: "京畿及下三道牧場兒馬·濟州貢馬內, 每年擇無惡旋有良才者一百匹, 牧養於水原府弘原串, 令司僕兼官二人監牧." 從之.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27일(신해) 3번째기사>

경제/교통

병조에서 전국의 역의 정비에 대한 일로 아뢰니 따르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여러 역(驛)에 역승(驛丞)을 없애고 찰방(察訪)을 두고서 혹은 한 도, 두 도, 세 도, 네 도를 아울러서 하나의 도로 하였으나, 역로(驛路)가 너무 멀어서 때때로 순시(巡視)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하는 자가 한 도라고 생각하여 원근(遠近)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수일정(數日程)을 달려서 지나가다가 인마(人馬)가 함께 곤폐(困弊)하여지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경기(京畿)와 하삼도(下三道) 여러 역(驛)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도를 나누소서. 경기(京畿)의 중림도(重林道) 소관(所管)인 인천부(仁川府)의 중림역(重林驛)·경신역(慶新驛), 금천현(衿川縣)의 반유역(盤乳驛), 양천현(陽川縣)의 남산역(南山驛), 통진현(通津縣)의 종생역(種生驛), 부평부(富平府)의 금륜역(金輪驛), 안산군(安山郡)의 석곡역(石谷驛)과, 동화도(同化道)의 소관(所管)인 수원부(水原府)의 동화역(同化驛)·청호역(靑好驛)·장족역(長足驛), 남양부(南陽府)의 해문역(海門驛), 양성현(陽城縣)의 가천역(加川驛), 안성군(安城郡)의 강복역(康福驛)과, 양재도(良才道)의 소관(所管)인 금천현(衿川縣)의 양재역(良才驛), 광주(廣州)의 낙생역(樂生驛), 용인현(龍仁縣)의 구흥역(駒興驛)·금령

역(金嶺驛), 죽산현(竹山縣)의 좌찬역(佐贊驛)·분행역(分行驛), 이천부(利川府)의 아천역(阿川驛)·오천역(吾川驛), 음죽현(陰竹縣)의 유춘역(留春驛)·무극역(無極驛) 총 23역(驛)을 합하여 한 도로 하고 경기좌도(京畿左道)라고 칭하여 경기좌도 찰방(京畿左道察訪)으로써 이를 맡아 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啓: "諸道諸驛革丞置察訪, 或幷一二三四道爲一道. 然驛路遼遠, 不得以時巡視. 且乘馹往來者, 謂爲一道, 不計遠近, 馳過數日程, 人馬俱困, 其弊不貲. 請以京畿及下三道諸驛量遠邇分道, 以京畿重林道所管仁川府重林驛·慶新驛·衿川縣盤乳驛·陽川縣南山驛·通津縣種生驛·富平府金輪驛·安山郡石谷驛, 同化道所管水原府同化驛·靑好驛·長足驛·南陽府海門驛·陽城縣加川驛·安城郡康福驛, 良才道所管衿川縣良才驛·廣州樂生驛·龍仁縣駒興驛·金嶺驛·竹山縣佐贊驛·分行驛·利川府阿川驛·吾川驛·陰竹縣留春驛·無極驛, 摠二十三驛合爲一道, 稱京畿左道, 以京畿左道察訪掌之.(…)" 從之.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5일(임자) 4번째기사>

경제/교통

사복시 제조가 기축년에 징집했어야 할 말을 여러 도에서 방목시키는 일로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기축년에 여러 도(道)의 목자(牧子)가 마땅히 징집(徵集)했어야 할 말 중에서 충청도(忠淸道)의 1백 14필은 면천(沔川)의 창택곶이[倉宅串]에 방목(放牧)하고, **경기(京畿)의 2백 2필은 수원(水原)의 양야곶이[陽也串]에 방목(放牧)하고**, 전라도(全羅道)의 3백 54필은 나주(羅州)의 안창도(安昌島)·기좌도(其佐島)에 방목하고, 경상도(慶尙道)의 1백 98필은 웅천(熊川)의 가덕도(加德島)에 방목하고, 황해도(黃海道)의 85필과 평안도(平安道)의 15필은 평안도의 군사 중에 말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하사(下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僕寺提調啓: "己丑年諸道牧子當徵馬: 忠淸道一百十四匹, 請放于沔川倉宅串; 京畿二百二匹, 放于水原陽也串; 全羅道三百五十四匹, 放于羅州安昌其佐島; 慶尙道一百九十八匹, 放于熊川加德島; 黃海道八十五匹, 平安道十五匹, 分賜平安道軍士無馬者." 從之.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8일(정해) 8번째기사>

경제/교통

원상 신숙주 등이 수원 지방에서 일어난 배의 사고를 조사할 것을 청하다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 등이 아뢰기를, "고(故) 봉교(奉敎) 방귀원(房貴元)의 아내 윤씨(尹氏)가 그의 아산(牙山) 전장(田莊)으로부터 **수원(水原)의 오미곶이[吾未串]에 이르렀는데, 나루를 지나 중류(中流)에서 배가 파선되어** 죽은 자가 19인이었으며, 홀로 사공[篙工]만이 죽지 않고 배를 몰아 언덕에 대어 놓고서 사람이 모래 가운데 서서 있는 것을 보고는 구원해 줄 것을 소리쳐 불러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필시 배 가운데 도둑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컨대 조정의 관리를 보내어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강명(剛明)한 자를 가려 보내어, 저 교동 행대(喬桐行臺)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감찰(監察) 허황(許荿)에게 교동 현감(喬桐縣監) 탁신지(卓愼志)의 탐묵(貪墨)한 것을 국문하게 하였는데, 실상을 캐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하교(下敎)가 있은 것이었다.

○院相申叔舟等啓曰: "故奉敎房貴元妻尹氏, 自其牙山田莊, 行到水原吾未串, 過津中流船破

死者十九人，獨蒿工不死，艤舟於岸，見人立沙中，呼援而不救，必是舟中有盜也．請遣朝官鞫之．” 傳曰: “當擇剛明者遣之，毋使如喬桐行臺也．” 前此，監察許篁，鞫喬桐縣監卓愼志貪墨，不得實，有是敎．
<성종실록 8권, 성종 1년 10월 25일(기사) 3번째기사>

경제/교통

조석문이 사복시의 말을 수원의 홍원곶이에 나누어 기르게 한 폐단을 지적하다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曺錫文)이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말[馬]을 홍원곶이[洪原串]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겸사복(兼司僕) 한 사람을 배치하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니, 제읍에서 공억(供億)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제읍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이로 인하여 허갈(虛竭)이 되었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호곶이[壺串]에서 말[馬]을 분양(分養)하는 것을 파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파하소서.”
하고,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는 아뢰기를, “홍원곶이[洪原串]에 분양한 것은 폐단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경기(京畿)에서 사복시(司僕寺)에 납부하는 고초(藁草)를 감(減)하였으나 기르는 데는 또한 폐단이 있으니, 아울러 본시에서 기르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수원(水原) 홍원곶이에 분양하는 말은 여름이면 예전대로 방양(放養)하고 겨울이면 도로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라**.” 하였다.
○昌寧府院君曺錫文啓曰: “司僕寺馬分養于洪原串，以兼司僕一員監養之，諸邑供億之弊不貲．京畿諸邑所儲黃豆，因此虛竭．在世祖朝，罷壺串，分養馬，請依此例罷之.” 領議政申叔舟啓曰: “分養洪原串欲除弊也．雖減京畿納司僕寺藁草，養之亦有弊，不如竝養於本寺之爲便也.” 傳曰: “水原洪原串分養馬，夏則仍舊放養，冬則還養于司僕寺.”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6월 23일(병오) 4번째기사>

경제/교통

수원 홍원관의 일 등을 사헌부에서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근래 기강이 문란해지고 염치가 크게 무너져 모든 작폐(作弊)의 일은 사대부가 먼저 하고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본받아 이미 고질병이 되었으니 구제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고금은 사의(事宜)가 다른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변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水原)에 홍원관(洪原串)을 설치한 것은 양마(養馬)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마에 필요한 콩은 본고을에서 회계(會計)를 줄여 지급하게 하고 양마에 드는 풀은 민간에게 할당시켜 바치게 하여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직접 이를 받들게 한 것은 상납(上納)의 폐를 없애고 양마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무지한 사복시의 무리들이 그 이(利)가 많은 것을 탐해서 차견(差遣)되기를 앞다투어 도모하는데, 권문(權門)의 자제가 아니고서는 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권문의 자제들은 부형(父兄)의 세력을 빙자하여 제 마음대로 자행하며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말 먹이는 콩을 모두 가져다가 사용(私用)으로 삼고 황초(黃草)를 거두지 않고는 그 값을 거두니 기르고 있는 말이 30~40필에 불과한데도 모두 말라 비틀어져서 병들어 죽는 말이 많으므로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10여 필이 넘고 그중에 다행히 살아 남는 것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몰골입니다. 그러니 양마하는 것이 아니고 살마(殺馬)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고을의 백성들은 마초(馬草) 값에 시달리고 축장(築場)하는 일에 지쳐 가산을 파하고 모두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니 그 폐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르는 말을 편의에 따라 나누어 기르게 하여 살마의 폐를 없애는 것이 편리하고 온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말기르는 땅이 매우 기름지니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한다면 도리어 권문의 싸움거리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포(金浦)의 이생지(泥生地)를 성균관에 지급하였으나 이것 또한 장구한 땅이 아닙니다. 하물며 요즘 소고기를 금지하는 것이 매우 엄하여 제생들이 고기 없는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전복(典僕)들도 모두 궁핍하여 공궤(供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옮긴 후에 호조로 하여금 전지(田地)의 결복(結卜) 수를 측량하여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나누어 지급하게 해서 숭유 중도(崇儒重道)하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사복시 제조로 하여금 그 가부를 살피어 헤아려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율부(律賦)에 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홍원관의 일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마정(馬政)을 매우 중하게 여겨 왔는데 한때의 폐단 때문에 이를 폐한다면 조종조에서 마정을 중히 여긴 뜻에 대해 어떻게 되겠는가?** 성균관의 전지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사복시 제조와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癸卯/憲府啓曰: (…) 又啓曰: "近來紀綱板蕩, 廉恥大壞, 凡所作弊之事, 士大夫唱之, 在下者效之, 已成弊痼, 將不可救. 況古今異宜, 尤不可不變而通之. 水原洪原串之設, 所以養馬也. 養馬之菽, 本官減會計而給之, 養馬之草, 則分定於民間, 而使司僕親捧之, 所以除上納之弊, 而且便於養馬也. 近來無知司僕之輩, 貪其利重, 爭圖差遣, 苟非權門之子弟, 不得與焉. 權門子弟, 憑藉父兄之勢, 恣行胸臆, 無所忌憚. 盡取馬菽爲私用, 不捧黃草, 反納其價, 其所養之馬, 不過三四十匹, 而盡爲羸瘠, 多至病死. 年年所失, 每過十餘匹, 其中幸存者, 亦不忍見. 然則非以養馬, 乃所以殺馬也. 況一邑之民, 困於馬草之價, 且疲於築場之役, 傾家破産, 盡爲流離, 其弊不可勝言. 今將所養之馬, 隨便分養, 以除殺馬之患, 似爲便當. 但設場之地, 極爲沃饒, 若令許民耕作, 則反爲權門之所爭. 頃者金浦泥生之地, 雖給成均館, 亦非長久之地. 況近來牛肉之禁甚嚴, 諸生未免無魚之(難)〔歎〕, 典僕亦皆窮殘, 不能供饋. 移馬之後, 令戶曹, 打量結卜之數, 分給成均館及四學, 以示崇儒重道之意, 亦爲便當. 請令司僕寺提調, 察其可否, 商度施行." 答曰: "律賦事如啓. 洪原串, 自祖宗朝以來, 馬政甚重. 以一時之弊而廢之, 則於祖宗重馬政之意何如耶? 成均館田地, 非不是也. 司僕提調及大臣處, 其議之."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5월 4일(계묘) 1번째기사>

경제/교통

사복시가 마정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여 차출한 감목관 명단

사복시가 마정(馬政)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병조와 같이 논의하여 특별히 감목관(監牧官)을 차출하여 그에게 감목하는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하여 그 번식의 다과(多寡)를 관찰하여 출척(黜陟)하게 하였다. 그리고 따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입계(入啓)하면서 우선은 마필(馬匹)이 많은 곳에 먼저 시험토록 했다. 문무관(文武官)과 문음(門蔭)을 막론하고 가려 차임하고, 파산인(罷散人)은 무록 군직(無祿軍職)을 주고, 긴요하지 않은 경직(京職)은 그대로 띠고 부임하게 하였는데, 인천(仁川)의 이성남(李誠男), 남양(南陽)의 이몽상(李夢祥), 강화(江華)의 민건(閔健), **수원(水原)의 장언년(張彦年),** 홍주(洪州)의 노극제(魯克濟), 강령(康翎)의 정흡(丁翕), 장기(長鬐)의 김경눌(金景訥), 동래(東萊)의 도원량(都元亮), 거제(巨濟)의 조명(趙銘), 진주(晉州)의 안희(安憙), 순천(順川)

의 이응시(李應時), 흥양(興陽)의 조사겸(趙思謙), 해남(海南)의 조영규(趙英珪), 여주(驪州)의 최시망(崔時望), 영광(靈光)의 최희열(崔希說), 단천(端川)의 이응호(李應虎), 철산(鐵山)의 강의봉(康儀鳳)이다.

○庚辰/司僕寺, 以馬政虛踈, 與兵曹同議, 別出監牧官, 使之專掌監牧, 限三年觀其孳息多少, 而黜陟之. 別爲事目入啓, 姑於馬匹多在處先試. 勿論文武官及門蔭擇差, 罷散人, 則付無祿軍職, 不緊京職, 則仍帶赴任, 仁川 李誠男, 南陽李夢祥, 江華閔健, 水原張彦年, 洪州魯克濟, 康翎丁滃, 長鬐金景訥, 東萊都元亮, 巨濟趙銘, 晋州安熹, 順天李應時, 興陽趙思謙, 海南趙英珪, 羅州崔時望, 靈光崔希說, 端川李應虎, 鐵山康儀鳳.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2월 21일(경진) 1번째기사>

경제/교통

온천 행행에 대가의 호위는 수원 군병을 기용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 허적이 아뢰기를, "양사가 온천에 가는 일에 대하여 아뢰던 것을 중지하였으니 반드시 먼저 택일한 뒤라야 바야흐로 분부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일기가 오히려 차가우니 날씨를 보아서 택일하고자 한다. 응당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미리 헤아려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필요한 군병의 숫자를 병판에게 먼저 정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대가를 호위하는 군병은 편리한 것으로 말한다면 마땅히 수원군을 기용해야 하는데 상년에 이미 대가를 호위하였으므로 편파되게 수고를 끼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영(營)인 경우엔 연로(沿路)와 가까운 읍이 아니므로 조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도 군병의 예에 의하여 각영을 써서 들여서 낙점을 받아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甲戌/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 積曰: "兩司旣停溫幸之啓, 必先擇日, 然後方有分付之事矣." 上曰: "近來日氣猶寒, 欲觀日候擇日. 至於應行之事, 預令料理可也." 積曰: "軍兵容入之數, 令兵判先爲定奪何如?" 洪重普曰: "扈駕軍兵, 以便近言之, 則當用水原軍, 而上年旣經扈駕, 不可使偏勞. 而但他營則皆非沿路近邑, 調發難便矣." 上曰: "依留都軍兵例, 書入各營, 受點調用, 可也." (…)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7년 2월 23일(갑술) 1번째기사>

경제/교통

사복시 관원의 하인들이 점마할 때 목장의 목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다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기내(畿內)에서 점마(點馬) 하였는데, 거느린 하인들이 각 목장(牧場)의 목자(牧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먼저 수기(手記)를 받아 독촉을 심히 하니, 목자들이 가산(家産)을 전당(典當)하면서 연달아 경중(京中)에 실어다 두게 되어 원성이 여염 마을에 가득찼다. 영상(領相) 서종태(徐宗泰)가 마침 그런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 형조(刑曹)로 하여금 사복시의 하인과 목자로 돈을 싣고 서울에 들어온 자를 수금(囚禁)하여 추문(推問)해 취복(取服)케 하였는데, **남양(南陽)의 목자 수기는 5백 냥(兩)이고, 수원(水原) 목자의 수기는 4백 50냥이었다. 비국에서 계청하기를**, "서리(書吏)·이마(理馬) 등을 2차 엄형(嚴刑)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전물(錢物)은 낱낱이 목자들에게 돌려보내며, 해당 사복 정(司僕正) 홍호인(洪好人)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律)이 도배(島配)에 그치니,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별양(別樣)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의계(議啓)하라.” 하였다. 비국에서 다시 청하기를, “유사(有司)에게 당부하여 다시 엄핵(嚴覈)을 더해 확실함을 얻어 법에 의해 논단(論斷)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는데 얼마후 사유(赦宥)를 만나 방송(放送)되고 말았다.

○丙辰/司僕寺官員, 點馬于畿內, 所率下人, 索賂於各牧場牧子輩. 先受手記, 督迫甚急, 牧子輩典當家産, 陸續輸置于京中, 怨號遍於閭里. 領相徐宗泰適聞之大駭, 令刑曹, 囚禁司僕下人及牧子之載錢入京者, 推問取服. 南陽牧子手記五百兩, 水原手記則四百五十兩. 備局啓請書吏·理馬等, 嚴刑二次, 絶島定配, 錢物一一推還於牧子, 當該司僕正洪好人罷職. 上以爲律止島配, 寧有此理? 不可不別樣處斷, 更爲議啓. 備局更請付之有司, 更加嚴覈究得, 依法論斷, 許之, 未幾遇赦見放.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2월 2일(병진) 1번째기사>

경제/교통

사헌부가 수원의 마장에 대해 아뢰다

삼사(三司)에서 전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니, 비답하기를, “속히 정지하라.”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지평(持平) 한계진(韓啓震)이다】 전계를 거듭 진달하고, (…) 또 아뢰기를, “**일전에 연중(筵中)에서 수원(水原)의 마장(馬場)을 창의궁(彰義宮)에 나누어 붙이라는 명이 있었으니**, 신은 개탄(慨歎)과 미혹(迷惑)의 지극함을 적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목장은 곧 마정(馬政)에 중대 관계가 있는데도 경계(境界)를 분변하지 않고 궁가(宮家)에 떼어 붙인다면 다른 날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삼무사(三無私)를 받드시니 어찌 궁가(宮家)를 위하여 편벽되고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만, 알지 못하는 자가 만일 전하께서 경계의 어떠함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곧장 태복시(太僕寺)의 목장을 떼어 궁가에 붙였다고 한다면, 그 성상(聖上)의 지극히 공정(公正)하신 덕(德)에 누(累)를 끼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수원의 목장을 반을 나누어 궁가에 붙이라는 명을 거두시고, 이어 경계를 밝게 정하게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목장은 뒤에 태복시의 초기(草記)로 인해 태복시에 붙이라고 명했다.

○三司申前合啓, 批亟停. 憲府【持平韓啓震】申前啓, (…) 又啓曰: “日昨筵中, 有水原馬場分屬彰義宮之命. 臣竊不勝慨惑之至. 牧場, 卽係馬政之大者, 而不分境界, 割屬宮家, 則他日之弊, 有不可勝言者矣. 伏想殿下, 奉三無私, 豈有爲宮家偏私之意, 而不知者, 如以爲殿下, 不顧境界之如何, 直割太僕之牧場, 屬之宮家云爾, 則其貽累於聖上至公之德, 爲如何哉? 請還收水原牧場分半屬宮之命, 仍令明定境界, 以杜後弊.” 幷不允. 牧場後因太僕草記, 命屬太僕.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 1월 25일(무오) 2번째기사>

경제/교통

미륵당에 원을 설치하고 창고를 세워 조적하다

미륵당(彌勒堂)에 원(院)을 설치하고 창고를 세워 조적(糶糴)하였다. 경기 관찰사 서유방이 아뢰기를, “**과천(果川)에서 수원까지는 두 참(站) 길인데 그 사이에 미륵당참이 있으니**, 영릉(寧陵)을 옮겨 모신 뒤에 이천(利川)의 참에 행궁(行宮)을 설치한 전례를 준용하여 **미륵당참에 하나의 원을 설치해서 이번에는 영구(靈柩)를 봉안하여 낮참을 쉬고 지나간다면**

후일에 어가가 머무르시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점(店) 근처에 사는 광주(廣州) 백성들이 산성(山城)과 거리가 1백여 리나 떨어졌기 때문에 조적의 정사가 절박한 피해가 된다고 하니, 원을 설치한 뒤에 따로 하나의 창고를 세우고, 창고 밑의 민호(民戶)에게 연한을 정하거나 혹은 영원히 부역을 면제해 준다면 수년 안에 응모(應募)해 들어오는 자가 매우 많을 것이다. 혹 산성의 군량을 성외의 창고로 옮겨 두는 것을 곤란하게 여긴다면, 각 아문(衙門)에 곡식이 본래 여유가 있으니 비록 산성의 군량이 아니더라도 조치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設院于彌勒堂, 置倉糶糴. 京畿觀察使徐有防曰: "自果川抵水原爲二站, 其間有彌勒堂站, 用驪州遷奉時利川行宮已例, 彌勒堂站設置一院. 今番則奉安靈幄, 如以晝停行過, 則日後便於駐駕矣." 上曰: "廣州民之在此店近處者, 距山城爲百餘里, 糴政爲切瘼云. 設院之後, 別置一倉, 倉底民戶, 限年或永爲除役, 則數年之內, 募入者當甚多. 或以城餉之移置外倉爲難, 則各衙門穀, 本自有裕, 雖非城餉, 亦可措置矣."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3일(정유) 3번째기사>

경제/교통
한강을 건너기에 편한 배다리에 관한 어제 『주교지남(舟橋指南)』의 내용
배다리[舟橋]의 제도를 정하였다. **상이 현륭원(顯隆園)을 수원(水原)에 봉안하고 1년에 한 번씩 참배할 차비를 하였는데**, 한강을 건너는 데 있어 옛 규례에는 용배[龍舟]를 사용하였으나 그 방법이 불편한 점이 많다 하여 배다리의 제도로 개정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그 세목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상의 뜻에 맞지 않았다. 이에 상이 직접 생각해내어 『주교지남(舟橋指南)』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
○己卯朔/定舟橋之制. 上旣奉顯隆園於水原, 將歲一展省, 以江路渡涉, 舊典用龍舟, 而其法多不便, 改用舟橋之制, 命廟堂撰進節目, 未稱上旨. 上乃親自運思, 爲『舟橋指南』, 其書曰: 舟橋之制, 載之『詩』, 見於史, 昉之久矣. 我國僻陋, 未之能行, 予於燕閒之暇, 漫錄如左. 廟堂撰進舟橋司節目, 爲之論辨, 仍以御製文, 弁其首, 名曰『舟橋指南』.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7월 1일(기묘) 1번째기사>

경제/교통
주교사가 주교 절목을 올리다
주교사(舟橋司)가 주교 절목(舟橋節目)을 올렸다.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봄 가을로 능원(陵園)을 배알할 적에 나루를 건너야 할 때를 만나면 선창에서 물을 건너는 데에 쓰이는 크고 작은 선박의 숫자가 4, 5백 척에 달하므로, 서울과 지방에서 배를 찾아 구하다 보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뱃사람들이 받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현륭원(顯隆園)을 수원으로 옮긴 뒤로는 해마다 한번씩의 행행에 나루를 통해 건너야 했으므로**, 이에 성상께서 뱃사람의 폐단을 깊이 진념하시어 특별히 배다리[舟橋]의 제도를 만듦으로써 배를 찾아 다니는 일은 영원히 혁파하고 단지 경강(京江)의 큰 배들만을 가져다가 연결시켜 교량을 만들어 놓으니, 폐단은 사라지고 일은 간단해졌으며, 공력이 줄고 비용도 적어져서, 실로 이것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도구인지라 이에 영구한 법으로 삼는 바이다.(…)
○舟橋司進舟橋節目. 【一, 春秋陵園展謁, 若値越津之時, 則船艙渡涉所用大小船數, 不下四五百艘. 京外搜覓, 中間操縱, 船人, 受弊去而益甚. 園所移奉水原之後, 歲一行幸, 當由津渡, 聖上深軫船人之弊, 特創舟橋之制, 捉船之事, 永爲革罷, 只取京江大船, 聯成橋梁, 弊除而事

簡, 工省而費少, 實是利濟之具, 仍作永久之法. (…)】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1일(을사) 2번째기사>

경제/교통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가 중국 칙사를 대접할 때 제신의 공급을 면제토록 아뢰다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수원부를 독립 관아로 나눈 뒤로는 홍제원(弘濟院)에서 하던 중국 칙사(勅使) 접대를 옮겨 소속시킬 곳이 없습니다**. 이 뒤에는 중국 칙사를 접대할 때 정부의 승지·내시와 관찰사·원접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을 모두 면제해 주고 부리는 역관과 역졸에게는 건량(乾粮)을 지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京畿觀察使徐龍輔啓言: "水原分司後, 弘濟院支勅, 移屬無處. 請此後支勅時, 政府承旨·中使·觀察使, 遠接使支待, 竝蠲除, 任譯驛卒給乾糧." 從之.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8일(병신) 3번째기사>

경제/교통
화성의 직로에 파발참을 설치하다
화성(華城)의 직로(直路)에 파발참(擺撥站)을 설치하였다.
○庚辰/設華城直路撥站.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3월 29일(경진) 1번째기사>

경제/교통
임자도의 목장에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다
임자도(荏子島)의 목장에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고 **그곳의 말들을 도내의 여러 목장으로 옮기고 새로 개간하는 데 따른 세입은 화성(華城)의 내용고(內用庫)에 귀속시키도록 명하였다.** 호조 판서 이시수의 아룀으로 인하여 호남의 도신에게 관문(關文)으로 물은 후에 본도의 민정에 의거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命荏子島牧場, 許民耕墾, 移其馬於道內諸牧場, 新墾稅入, 屬之華城內用庫. 因戶曹判書李時秀啓, 關問湖南伯後, 依本島民情, 有是命.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8월 1일(계유) 3번째기사>

경제/교통
양재역을 영화역으로 고치고 우치를 화성 북문 밖에 옮겨 설치하다
양재역(良才驛)을 영화역(迎華驛)으로 고치고 우치(郵治)를 화성 북문 밖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改良才驛爲迎華驛, 移設郵治於華城北門之外.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8월 29일(신축) 2번째기사>

경제/교통
사무관 하야시 조타로를 수원군에 보내어 이왕직의 종마목장 예정지를 시찰하게 하다
사무관(事務官) 하야시 조타로 [林丈太郎] 를 수원군(水原郡)에 보내어 이왕직(李王職)의 종마 목장 예정지를 시찰하도록 하였다.
遣事務官林文太郎于水原郡, 視察本職種馬牧場豫定之地.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11월 16일(양력) 2번째기사>

⑷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남양, 수원 등 연해 14고을에 해일이 일어 농사에 피해를 입히다

김포(金浦)·통진(通津)에서 **남양(南陽)·수원(水原)과 연안(延安)·배주(白州) 등에 이르기까지 연해(沿海) 14고을에, 조수(潮水)가 창일하여 화곡을 손상**시켰다.

○甲寅/自金浦·通津至南陽·水原及延安·白州等沿海十四州, 海潮漲溢, 損禾穀.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3일(갑인)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경기 수령관 김명리에게 수원 등지의 곡식 이삭의 상태를 묻다

경기 수령관(京畿首領官)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곡식의 이삭이 말라 죽은 상황을 묻고 명하기를, "내가 들으니, **수원부(水原府) 등지에 화곡(禾穀)이 모두 말랐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화곡이 비록 무성하지는 못하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말한 사람은 수원 사람이니, 그대는 함께 가서 질정하여 거짓이거든 곤장을 때리라.**"

○己巳/召京畿首領官金明理, 問苗槁之狀. 命曰: "予聞水原府等處禾穀盡槁, 然乎?" 對曰: "禾穀雖不盛茂, 不若是之甚也." 上曰: "言之者, 水原人也. 汝偕往質之, 誣則杖之."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0일(기사)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목장으로 할만한 곳을 찾아 소를 기르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소는 국가에 있어 그 용도가 심히 큰 것이온데, 관에서 이를 길러 번식하지 않는 것은 실로 궐전(闕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생곡초(生穀草)를 납부하는 경기의 각 고을을 제외하고 유수(留守)·대도호부·목(牧) 등의 고을에는 암소[牸牛] 6두(頭)와 황소[雄牛] 3두를, 도호부와 지군사 등 고을에는 암소 4두와 황소 2두를, 현령(縣令)·현감(縣監) 등의 고을에는 암소 2두와 황소 1두를 배정하여 국고의 요두(料豆)로 길러 번식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실려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제조(諸曹)와 같이 이를 의논하게 한바, 모두 말하기를, "관이나 민이나 번식시키는 데는 다를 것이 없사온데,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되면 기르는 사이에 백성들이 반드시 그 폐해를 받을 것이오니, 각도의 목장(牧場)을 설치할 만한 곳을 물색해 놓고 소를 교역하여 놓아 길러서 국가 수용에도 충당하고 혹은 민간과의 교환도 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이내 본조와 사복시 제조에게 명하기를, "**목장으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해 찾으라**." 하여, 지난 정미년에 혁파한 목장을 상고한바, 경기 양성현(陽城縣)의 괴태길관(槐台吉串), **수원부(水原府)의 홍원관(弘原串),** 인천군(仁川郡)의 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도(**仙甘**彌島), 강화부(江華府)의 주문도(注文島)와 황해도 해주(海州)의 수압도(睡鴨島)와 충청도 당진현(唐津縣)의 맹관(孟串), 태안군(泰安郡)의 다리관(多利串), 남포현(藍浦縣)의 진관(津串)과 오래 전에 혁파한 바 있는 함길도 안변부(安邊府)의 압융(押戎)과 용진현(龍津縣)의 반상사눌(反上四訥), 홍원현(洪原縣)의 마랑이도(馬郎耳島), 북청부(北靑府)의 나만북도(羅萬北島) 등은 모두 놓아 기를 만한 곳이며, 또 경상·전라도에서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여 방

목(放牧)할 만한 곳을 찾아서 목장으로 만들게 하고, 소를 구입하는 데는 각도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과 각영의 공물(公物)로서 이를 바꾸게 하자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啓: "牛之於國, 其用甚大, 不於公處畜養孳息, 誠爲闕典. 請自今除納生穀草京畿各官外, 留守·大都護府·牧官·授牸牛六首·雄牛三首, 都護府知官, 牸牛四首·雄牛二首, 縣令縣監牸牛二首·雄牛一首, 養以國庫料豆孳息, 載之會計, 令司僕寺掌之." 命與政府諸曹同議, 僉曰: "在官在民, 孳息無異, 各官分養, 則喂養之際, 民必受弊. 宜訪各道可作牧場處, 換牛隻放養, 以充國用, 或聽民間貿易." 命依所啓, 仍命曹與司僕寺提調, 議訪牧場處, "今考去丁未年牧場革除, 京畿陽城縣槐台吉串·水原府弘原串·仁川郡龍流島·無衣島·南陽府仙甘彌島·江華府注文島·黃海道海州睡鴨島·忠淸道唐津縣孟串·泰安郡多利串·藍浦縣津串及曾革咸吉道安邊府押戎·龍津縣反上四訥·洪原縣馬郎耳島·北靑府羅萬北島, 皆可放養. 又於慶尙·全羅道, 訪得水草俱足, 可以放牧處, 使之入牧. 其買牛隻, 則以各道魚鹽所出及各營公物貿易." 從之.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임진) 4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철원과 수원에 수차를 설치한 일에 대해 논의하다
지인(知印) 이극강(李克剛)이 아뢰기를, "**신이 철원과 수원에 가서 수차(水車)를 설치(設置)한 상황을 살펴보니, 기계는 모두 갖추어졌으나, 사람을 시켜서 물을 올리게 하니, 즉시 새어 버려 관개(灌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지신사 안숭선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태종 때에 우희열(禹希烈)이 제방(堤防)을 감독해 쌓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여러 사람의 질책을 무릅쓰고 하므로 태종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뒤에 쌓은 제방이 완실하지 못한 것이 퍽 많았으나, 관개에 이용할 만한 곳도 많아서 백성들이 많은 이익을 받았다. 지금 국가의 일에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는 자가 적으니 진실로 탄식할 일이로다. 수차의 설치는 원래 한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받들어 행하는 관리가 모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자갈땅에 설치하여 쓰지 못하게 되니 심히 부당하다.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아래로는 왜국(倭國)에까지 모두 수차의 이익을 받는데, 어찌 우리나라에서만 행하지 못한단 말인가.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잊지 못하는 것은 급하게 백성들에게 이익을 보게 하려고 함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 것이니 꼭 이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각도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경차관(敬差官)으로 전 호군(護軍) 이온(李韞)을 경기·강원·함길도에 보내고, 전 서령(署令) 오치선(吳致善)을 충청·전라도에, 경력 박결(朴絜)을 경상도에, 호군 조곤(趙昆)을 평안·황해도에 보냈다.
○知印李克剛啓: "臣到鐵原·水原, 觀排設水車之狀, 機械皆具. 令人激水, 隨卽滲漏, 不得灌溉." 上御思政殿, 引見知申事安崇善曰: "太宗時禹希烈, 以監築堤堰爲己任, 不避衆責, 太宗稱之. 厥後所築堤防, 頗多不實, 然可用灌溉處亦多, 民受其利. 今於國家事, 夙夜盡心者蓋寡, 良可嘆也. 水車之設, 本以備旱, 奉行官吏, 皆不用心, 排置沙石之地, 以至無用, 甚爲不當. 上自中國, 下至倭邦, 皆受水車之利, 豈於我國, 獨不能行, 予之拳拳於此, 匪棘其欲, 視民利耳. 予欲必收成效, 宜選可任此事者, 分遣各道." 遂遣敬差官前護軍李韞于京畿·江原·咸吉道, 前署令吳致善于忠淸·全羅道, 經歷朴絜于慶尙道, 護軍趙昆于平安·黃海道.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5월 17일(경진) 6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흉년의 피해 상황과 진휼 상황

작년에 봄·여름이 가물어 시내와 우물이 모두 말랐다. 경기남도(京畿南道)와 동남쪽의 네 도가 모두 농사를 실패하였는데, 충청도가 더욱 심하고, 경상·전라 두 도는 바닷가의 두어 고을이 조금 결실되었다. **대개 경기도는 40읍 중에서 수원과 용인 등 아홉 고을이**, 충청도는 54읍 중에서 임천과 한산 등 18읍이, 전라도는 55읍 중에서 익산(益山)과 용안(龍安) 등 11읍이, 경상도는 66읍 중에서 안동(安東)과 진보(眞寶) 등 32읍이, 강원도는 26읍 중에서 원주와 영월 등 여덟 고을이 전연 농업을 잃었다. 그 중에서 심한 곳은 끝내 파종도 하지 못했고, 혹은 곡식 싹이 한 자도 자라지 못했으며, 초목이 무성하지 못했고, 보리가 성숙하지 못했으며, 콩을 심었으나 나지 아니하여 흙을 헤치고 도로 줍기도 하였다. 10두를 파종한 데서 7, 8두를 주웠는데, 볶은 것과 같아서 먹을 만하여 주린 백성들이 주워 먹었다. 경기도의 안성과 충청도의 공주(公州)·신창(新昌)·아산(牙山)·회덕(懷德)·직산(稷山)·전라도의 전주(全州)·함열(咸悅)·임피(臨陂) 등 고을은 모두 황충(蝗蟲)의 피해를 입었고, 또 마전포(麻田浦)는 여울이 급하여 한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으며, 얼음이 비록 얼어도 건널 수 있는 것이 3, 4일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이 해의 겨울에는 얼음이 단단하여 사람과 말이 통행한 것이 20여 일이나 되었으니, 오랫동안 추웠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얼고 주린 백성들이 서로 길에 연하였고, 금년 봄에 이르러서는 역질이 크게 유행하여 주린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곧 죽었다.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소와 말을 잡고, 나무껍질을 벗기고, 보리 뿌리를 캐어 먹이를 하며, 처자를 보전하지 못하여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도 있고, 혹은 아이를 길에 버리어 아이가 쫓아가면 나무에 잡아매고 가는 자도 있고, 닭과 개가 저절로 죽기도 하였다. 경기북도(京畿北道) 이북의 각도는 오곡(五穀)이 조금 풍년들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폐와 베[布]를 가지고 북도에서 쌀을 사서 남도에 파는 자가 길에 잇달았고, 충청도 공주 등처에서는 쌀 두 말 값이 면포 한 필인데도, 다투어 면포를 가지고 미곡을 구하는 자가 오히려 미처 사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부터 주린 백성들이 진대(賑貸)만 쳐다보고 있으므로, 각도의 창고가 바닥이 나서 국가에서 곡식을 옮겨다가 진휼하고, 또 조관들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진제 경차관을 삼았는데, 특별히 안순(安純)을 충청도에 보내어 진휼사로 삼아서 각 고을 수령의 기민(飢民)을 진휼하는 일을 시찰하게 하여, 만일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죄를 수령에게 주어 곧 곤장을 때리도록 하고,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의 주민들에게 죄를 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법령이 엄한 것을 두려워하여 서로서로 숨기어, 굶어 죽어도 나타나지 않는 자가 열에 보통 여섯 일곱은 되었다. 그러나 수령들이 감고(監考)의 무리를 거느리고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몸소 친히 먹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서 살아난 자가 많았다.

○去年春夏旱乾, 川井皆涸, 京畿南道及東南四道, 皆失農業, 忠淸道尤甚, 慶尙·全羅兩道濱海數郡稍稔. 大率京畿四十邑內水原·龍仁等九邑·忠淸道五十四邑內林川·韓山等十八邑·全羅道五十五邑內益山·龍安等十一邑·慶尙道六十六邑內安東·眞寶等三十二邑·江原道二十六邑內原州·寧越等八邑, 全失農業. 其中甚者, 或竟不播種, 或苗不滿尺, 草木不茂, 麰麥不熟, 種豆不生, 撥土還拾, 十斗所播, 其拾七八斗, 如炒可食, 飢民拾而食之. 京畿安城·忠淸道公州·新昌·牙山·懷德·稷山·全羅道全州·咸悅·臨陂等邑, 皆蝗害穀. 且麻田浦灘急, 隆冬不氷, 氷雖合, 可度者不過三四日. 是冬氷堅, 人馬行者二十餘日, 其久寒可知. 凍餒之民, 相望於道, 至今年春大疫, 飢者得病輒死. 民自殺牛馬, 剝木皮, 採麥根以爲食. 不保妻子, 或有棄妻子而逃者, 或有棄兒於道, 兒從之則繫於樹而去者. 雞犬或有自斃者. 京畿北道以北各道, 五穀稍登, 商賈之徒, 以貨布買米於北, 賣米於南者, 相繼於道. 忠州道公州等處米二斗直緜布

一匹, 爭持緜布, 求米穀者, 猶恐不及, 自去年夏秋, 飢民仰給賑貸, 各道倉廩虛竭, 國家移粟以賑之. 又分遣朝官于各道, 爲賑濟敬差官, 特遣安純于忠淸道, 爲賑恤使, 俾察各官守令賑飢之事, 如有多致飢死者, 罪及守令, 直行鞭扑; 路有餓死者, 則罪其旁近居民. 故人畏令峻, 交相隱匿, 飢死不見者十常六七. 然守令率監考之徒, 盡心布置, 躬親饋食, 故人民賴以得蘇者多.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9일(기사) 4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묵은 벼를 심어 싹이 트는지 시험하게 하다

충청도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의 각 고을에 볍씨가 부족하기 때문에 묵은 볍씨를 시험한즉, 현시(現時)에 서 있는 모[苗]는 햇곡[新穀]과 같으니, 지금은 절후도 크게 늦지 아니하오매, 물이 있는 논을 묵힐 수는 없으니, 청컨대, 묵은 벼를 주어, 갈아 심어서 시험하게 하소서." 하매, 의정부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상고하건대, 경기 감사의 관자(關子)에서도, **'수원부(水原府)에서 1년 묵은 벼를 심어서 모두 싹이 섰다**' 고 합니다. 이제 아뢴 바가 또한 같사오니, 국고에 저축한 한 해 묵은 벼를 적당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己丑/忠淸道監司啓: "道內各官稻種不足, 故試以陳稻種而驗之, 當時立苗, 與新穀如一. 如今節候, 亦不大晩, 有水水田, 不可陳荒, 請給陳稻耕種試驗." 議政府據此啓: "今考京畿監司關內, 亦云: '水原府用一年陳稻種之, 皆立苗.' 今所啓亦同, 宜以國庫所儲一年陳稻, 量宜分給." 從之.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30일(기축)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 상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을 하였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작벌(斫伐)하여 혹은 사사 배를 짓고, 혹은 집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여러 섬[島]과 각 곶(串)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경기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仙甘**彌)·대부(**大部**)·연흥(鳶興) 세 섬과 거재곶(巨才串), 인천군(仁川郡)의 자연도(紫鳶島)와 용류도(龍流島), 부평부(富平府)의 문지도(文知島)와 보지곶(甫只串), 안산군(安山郡)의 오질이도(吾叱耳島), 강화부(江華府)의 금음북(今音北)·미법도(彌法島)·말도(末島)·정포(井浦) 이북의 망산(網山)·남건동을산(南巾冬乙山)·사도(蛇島), 교동현(喬桐縣)의 서빙장곶(西憑將串), **수원부(水原府)의 둑삼곶(纛三串)**·형두산(荊頭山)·홍원곶(弘原串)·광덕성산(廣德城山)·통진현(通津縣)의 고리곶(古里串)·대명곶(大明串)·어모로(於毛老),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의 영진(迎津)·대산(大山), 풍천군(豊川郡)의 귀림곶(貴林串)·초도(椒島)·석도(席島), 장련현(長連縣)의 사곶(蛇串)·가을곶(加乙串), 장연현(長淵縣)의 보구장령(甫仇長嶺)·백령도(白翎島)·장산곶(長山串), 해주(海州)의 둔다산(屯多山)·추적곶(槌赤串), 황주(黃州)의 모곶(茅串), 강령현(康翎縣)의 사장곶(沙匠串)·등산곶(登山串)·허사포(許沙浦) 배 대는 곳과, 서령(西嶺) 오차포(吾叉浦)·육사외도(六沙外島)·용매갈곶(龍媒葛串)·가을포(茄乙浦)·무지곶(無知串)·소강(所江) 금물여곶(今勿餘串)·백암곶(白岩串)·아랑포(阿郎浦), 옹진현(甕津縣)의 서장곶(西粧串), 강

원도(江原道) 강릉부(江陵府)의 빈지(賓之), 울진현(蔚珍縣)의 어물리(於勿里)·북산(北山)과 약사산(藥師山), 통천군(通川郡)의 소산(所山)·마산(馬山)·총석정(叢石汀), 충청도(忠淸道) 면천군(沔川郡)의 장택곶(藏宅串)·천곡(泉谷) 등처, 서산군(瑞山郡)의 파치도(波治島)·대야도(大也島)·안면곶(安眠串)·광지곶(廣知串), 홍주(洪州) 임내(任內)의 신평현(新平縣)의 명해곶(明海串)과 내도(內島)·진두(津頭)·웅도(熊島)·초도(草島)·연륙곶(連陸串), 당진현(唐津縣)의 당진포(**唐津浦**)·북산(北山)·탕자도(湯字島)·난지도(難知島), 결성현(結城縣)의 용생두산(龍生頭山)·동산산(東山山), 해미현(海美縣)의 훤길곶(喧吉串)·승선산(勝善山)·선현산(扇峴山), 보령현(保寧縣)의 능성곶(陵城串)·송도(松島)·우현(牛峴)·고만도(高巒島), 비산현(庇山縣)의 도둔곶(都芚串), 서천군(舒川郡)의 개야조도(開也助島), 함길도(咸吉道) 안변부(安邊府)의 압융곶(押戎串)과 여도(女島) 낭성포(浪城浦) 등처, 덕원부(德原府)의 신도(薪島)·서현(西峴)과 대모성(大母城), 용진현(龍津縣)의 가퇴도(加退島)·조지포(曹至浦)·북봉(北峯), 영흥부(永興府)의 영인사(寧仁社)·구리지(仇里池)·백안포곶(白安浦串) 등처, 함흥부(咸興府)의 보청사(甫靑社)·퇴조사(退潮社)·동명사(東溟社)·선덕사(先德社) 등처, 북청부(北靑府)의 장진포 해정(長津浦海汀)·속후해정(俗厚海汀), 길주(吉州)의 고다포리(古多布里) 해변곶(海邊串), 경성부(鏡城府) 남황가진곶(南黃加津串), 회령부(會寧府)의 호음야곶(好音也串)·쌍포곶(雙浦串), 경흥부(慶興府)의 두이산(豆伊山)·녹둔도(鹿屯島), 평안도(平安道) 박천군(博川郡)의 덕안곶(德安串)·대장산(大藏山) 등처, 가산군(嘉山郡) 남미동음리(南未冬音里), 정주(定州)의 잉박곶(仍朴串) 등처, 수천군(隨川郡)의 진해곶(陳海串) 등처, 곽산군(郭山郡)의 금로곶(金老串)·우리곶(亏里串) 등처, 선천군(宣川郡)의 검산굴곶(撿山屈串) 등처, 철산군(鐵山郡)의 서소곶(西所串)·다지도(多只島)·대곶(大串), 용천군(龍川郡)의 석곶(石串)·신지도(信知島) 덕천산(德泉山), 인산군(麟山郡)의 창포곶(倉浦串), 의주(義州)의 진병곶(鎭兵串) 등처, 안주(安州)의 고맹산(古孟山)·청천강변(淸川江邊) 등처, 숙천부(肅川府)의 검음산(檢音山), 영유현(永柔縣)의 유원소산(柔遠所山)·대선곶(大船串) 등처, 함종현(咸從縣)의 백석산(白石山), 삼화현(三和縣)의 오음산(吾音山), 용강현(龍崗縣)의 가을곶산(加乙串山), 강서현(江西縣)의 동부(東部) 금정량산(金丁梁山), 전라도(全羅道) 부안현(扶安縣)의 외도(猬島)·구도(鳩島)·화이도(火伊島), 영광현(靈光縣)의 모야도(毛也島)·매음점도(每音岾島)·고이도(古耳島)·증도(甑島)·사도곶(沙島串)·창두곶(槍頭串)·구수산(九岫山)·임치도(臨淄島), 함평현(咸平縣)의 해제곶(海際串)·서발포(西鉢浦)·아사라산(阿士羅山)·석포곶(石浦串)·김포곶(金浦串), 나주(羅州)의 가야산(可也山)·다리도(多利島)·비시도(飛示島)·도초도(都草島)·암태도(巖泰島)·안창도(安昌島)·자은도(慈恩島)·기좌도(其佐島)·팔시도(八示島)·하의도(河衣島)·이시도(伊示島)·송도(松島), 영암(靈巖) 임내(任內)의 귀산(貴山)·갈두산(葛頭山)·보길도(甫吉島)·두와두산(豆臥頭山)·노도(露島)·해제곶(海際串), 당진(唐津)의 월이곶(月伊串)·좌곡곶(佐谷串)·산달도(山獺島)·완도(莞島)·고시도(古示島)·선산도(仙山島), 해남현(海南縣)의 진산곶(珍山串)·백야포(白也浦)·백방산(百房山)·초도(草島)·평도(坪島)·가아도(加兒島), 장흥부(長興府)의 대이매도(大伊每島)·우두곶(牛頭串)·장내곶(帳內串), 순천부(順天府)의 송도(松島)·장성포곶(長省浦串)·삼일포곶(三日浦串)·경도(京島)·금오도(金鰲島), 광양현(光陽縣)의 묘도(猫島), 낙안군(樂安郡)의 장도(獐島)·용두곶(龍頭串), 보성군(寶城郡)의 초라산(草羅山), 무장현(茂長縣)의 이진곶(梨津串), 옥구현(沃溝縣)의 천방산(千方山), 흥양현(興陽縣)의 송곶(松串)·주포곶(舟浦串)·우두곶(牛頭串)·망지곶(望智串)·황산곶(荒山串)·장암곶(場巖串)·박길곶(朴吉串)·이로도

(伊老島)·협도(俠島)·정도(井島)·주도(酒島)·경죽도(頃竹島)·사포곶(蛇浦串)·가라포(加羅浦)·수덕산(愁德山)·유주산(楡朱山)·소흘라곶(所訖羅串)·말개도(末介島)·기화도(其火島)·팔전산(八巔山)·천등산(天燈山)·재산도(災山島)·성두곶(城頭串), 진도군(珍島郡)의 가사도(加士島)·평도(坪島)·초도(草島), 무안현(務安縣)의 고철금산(古鐵金山)·유달산(鍮達山)·모두곶(茅頭串), 흥덕현(興德縣)의 소요산(所要山), 임파현(臨陂縣)의 성산(城山), 함열현(咸悅縣)의 성산(城山), 경상도(慶尙道) 영해부(寧海府)의 봉송평(奉松坪)·오항곶(烏項串), 동래현(東萊縣)의 소과정산(蘇菓亭山)·절영도(絶影島)·염포(鹽浦) 이북 삭장포곶(朔長浦串) 등처, 울산(蔚山)의 장생포곶(長生浦串)·가리곶(加里串)·남해도(南海島)·망소흘산(望所訖山)·장도(場島), 고성현(固城縣)의 임포곶(林浦串)·어리도(於里島)·초도(草島)·오비도(吾非島)·곤이도(昆伊島)·상박도(上樸島)·하박도(下樸島)·추도(楸島)·자란도(自亂島)·국정도(國正島)·신이도(申伊島)·노대도(爐大島)·욕지도(欲知島)·두밀도(豆密島)·질법길곶(叱法吉串)·소비포(所非浦)·고반계곶(古反溪串)·행랑암곶(行廊巖串)·미을가조음곶(彌乙加助音串)·고가배량(古加背梁)·안도(鞍島)·종해도(終海島)·심수도(深水島)·개도(介島)·미륵산(彌勒山), 거제현(巨濟縣)의 사화곶(沙火串)·거대곶(巨大串)·송용곶(松茸串)·적을도(赤乙島)·오시항곶(吾時項串)·주원도(朱元島)·소좌리도(小左里島)·대좌리도(大左里島)·송도(松島)·송곶(松串)·굴량곶(崛梁串), 사천현(泗川縣)의 초영도(初永島)·초도(草島)·백야도(白也島)·저도(楮島)·구랑도(仇郎島)·김해부(金海府)의 우음도(亏音島)·벌도(伐島)·수도(水島)·가덕도(加德島)·명지도(鳴旨島)·마도(馬島)·감물도(甘勿島), 진주(晉州)의 부화곡리(夫火谷里), 곤양군(昆陽郡)의 비도리곶(非刀里串)·영덕현(盈德縣)의 사동포(沙冬浦)·남역포(南驛浦)·하저포(下渚浦)·오보포(烏保浦), 남해현(南海縣)의 고독절도(孤獨絶島)·금산(錦山)·소흘산(所屹山)·호을포(呼乙浦)·우물포(亏勿浦)·소가도(小柯島)·양가도(兩柯島), 영일현(迎日縣)의 삼사랑(三士郎) 등처, 창원부(昌原府)의 사도(蓑島), 기장현(機張縣)의 금음말곶(今音末串)·냉정산(冷井山), 양산군(梁山郡)의 대저도(大渚島) 등 상항(上項) 주현(州縣)의 도(島)와 곶(串)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守令) 만호(萬戶)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辰/議政府據兵曹呈申: "兵船, 國家禦寇之器, 造船松木, 使不得私自斫伐, 已曾立法, 無識之徒, 潛相斫伐, 或造私船, 或爲屋材, 松木殆盡, 實爲可慮. 今以沿海州縣諸島各串宜松之地, 訪問置簿.京畿**南陽府仙甘**彌·**大部**·鷹興三島·巨才串·仁川郡紫鷹·龍流島·富平府文知島·甫只串·安山郡吾叱耳島·江華府今音北·彌法島·末島·井浦以北·網山·南巾冬乙山·蛇島·喬桐縣西憑將串·水原府麛三串·荊頭山·弘原串·廣德城山·通津縣古里串·大明串·於毛老.黃海道安岳郡迎津·大山·豐川郡貴林串·椒島·席島·長連縣蛇串·加乙串·長淵縣甫仇長嶺·白翎島·長山串·海州屯多山·槌赤串·黃州茅串·康翎縣沙匠串·登山串·許沙浦船泊處·西嶺吾叉浦·六沙外島·龍媒葛串·茄乙浦·無知串·所江·今勿餘串·白巖串·阿郎浦·瓮津縣西粧串.江原道江陵府賓之·蔚珍縣於勿里. 北山及藥師山·通川郡所山·馬山·叢石汀.忠淸道沔川郡藏宅串·泉谷等處·瑞山郡波治島·大也島·安眼串·廣知串·洪州任內新平縣明海串·內島·津頭·熊島·草島·連陸串·唐津縣**唐津浦**北山·湯字島·難知島·結城縣龍生頭山·東山山·海美縣喧吉串·勝善山·扇峴山·保寧縣陵城串·松島·牛峴·高巒島·庇山縣·都芚串·舒川郡開也助島.咸吉道安邊府押戎串及女島·浪城浦等處·德原府薪島·西峴及大母城·龍津縣加退島·曹至浦北峯·永興府寧仁社·仇里池·白安浦串等處·咸興府甫靑社·退

潮社・東溟社・先德社等處・北靑府長津浦海汀・俗厚海汀・吉州古多布里海邊串・鏡城府南黃加津串・會寧府好音也串・雙浦串・慶興府豆伊山・鹿屯島.平安道博川郡德安串・大藏山等處・嘉山郡南未冬音里・定州仍朴串等處・隨川郡陳海串等處・郭山郡金老串・亏里串等處・宣川郡撿山屈串等處・(鉄山郡)〔鐵山郡〕西所串・多只島・大串・龍川郡石串・信知島・德泉山・麟山郡倉浦串・義州鎭兵串等處・安州古孟山・淸川江邊等處・肅川府檢音山・永柔縣柔遠所山・大船串等處・咸從縣白石山・三和縣吾音山・龍崗縣加乙串山・江西縣東部金丁梁山.全羅道扶安縣猬島・鳩島・火伊島・靈光縣毛也島・每音岾島・古耳島・甑島・沙島串・槍頭串・九岫山・臨淄島・咸平縣海際串・西鉢浦・阿士羅山・石浦串・金浦串・羅州可也山・多利島・飛示島・都草島・巖泰島・安昌島・慈恩島・其佐島・八示島・河衣島・伊示島・松島・靈巖任內貴山・葛頭山・甫吉島・豆臥頭山・露島・海際串・唐津・月伊串・佐谷串・山獺島・莞島・古示島・仙山島・海南縣珍山串・白也浦・百房山・草島・坪島・加兒島・長興府大伊每島・牛頭串・帳內串・順天府松島・長省浦串・三日浦串・京島・金鰲島・光陽縣猫島・樂安郡獐島・龍頭串・寶城郡草羅山・茂長縣梨津串・沃溝縣千方山・興陽縣松串・舟浦串・牛頭串・望智串・荒山串・場巖串・朴吉串・伊老島・俠島・井島・酒島・頃竹島・蛇浦串・加羅浦・愁德山・楡朱山・所訖羅串・末介島・其火島・八巖山・天燈山・灾山島・城頭串・珍島郡加士島・坪島・草島・務安縣古鐵金山・鍮達山・茅頭串・興德縣所要山・(臨波縣)〔臨陂縣〕城山・(減悅縣)〔咸悅縣〕城山.慶尙道寧海府奉松坪・烏項串・東萊縣蘇苳亭山・絶影島・鹽浦以北・朔長浦串等處・蔚山長生浦串・加里串・南海島・望所訖山・場島・固城縣林浦串・於里島・草島・吾非島・昆伊島・上撲島・下撲島・楸島・自亂島・國正島・申伊島・爐大島・欲知島・豆密島・叱法吉串・所非浦・古反溪串・行廊巖串・彌乙加助音串・古加背梁・鞍島・終海島・深水島・介島・彌勒山・巨濟縣沙火串・巨大串・松茸串・赤乙島・吾時項串・朱元島・小左里島・大左里島・松島・松串・崛梁串・泗川縣初永島・草島・白也島・楮島・仇郎島・金海府亏音島・伐島・水島・加德島・鳴旨島・馬島・甘勿島・晋州夫火谷里・昆陽郡非刀里串・盈德縣沙冬浦・南驛浦・下渚浦・烏保浦・南海縣孤獨絶島・錦山所屹山・呼乙浦・亏勿浦・小柯島・兩柯島・迎日縣三士郎等處・昌原府蓑島・機張縣今音末串・冷井山・梁山郡大渚島. 上項州縣島串, 前此有松木之處, 則嚴禁樵採, 無木之處, 令其道監司差官栽植, 使旁近守令萬戶監掌培養, 以待有用." 從之.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8월 27일(경진)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양주·수원에서 바치는 소맥을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종자를 보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 양주(楊州)·수원은 이제 양맥(兩麥)이 동해(凍害)로 인하여 여물지 않았으니, 청컨대 기사년의 예에 의하여 두 고을에서 바치는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인순부(仁順府)·소격전(昭格殿)과 내수소(內需所)의 소맥(小麥)을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서 종자(種子)를 보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戶(書)〔曹〕呈啓: "京畿楊州·水原, 今年兩麥, 因凍損不熟. 請依己巳年例, 兩官所納內資·內贍寺·仁順府·昭格殿·內需所小麥, 納于州倉, 以補種子." 從之.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5일(병진) 7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경기의 수원과 평안도의 증산 등에 명충이 일다

경기(京畿)의 가평(加平)·수원(水原)·연천(漣川), 평안도(平安道)의 증산(甑山)·순안(順安)·함종(咸從)·강서(江西)·순천(順天)·자산(慈山)·안주(安州)·평양(平壤)에 명충(螟蟲)이 일었다.

○壬辰/京畿加平·水原·漣川·平安道甑山·順安·咸從·江西·順川·慈山·安州·平壤螟.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7일(임진)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경기 수원부에 비바람이 불어 벼가 손상되다

경기(京畿) 수원부(水原府)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벼를 손상시켰다.

○京畿水原府大風雨, 傷禾稼.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8일(계사)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제도 관찰사에게 수원과 남양에서 물소를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에 물소[水牛]를 기르는데, 사람을 받아서 상해(傷害)하였다고 한다.** 이는 소가 성질이 사나워서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상시로 마음을 더하여 길들이지 아니하고, 혹은 들판에 놓아두어서 들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어 사람을 꺼리게 한 때문이다. 사람을 상해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죽여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 뒤로는 지키는 자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壬午/下書諸道觀察使曰: "今有水原·南陽畜養水牛, 抵觸傷害人, 非徒此牛性惡而然, 守者常時不加意擾習, 或放于原野, 與野獸無異, 以致忌人故也. 其傷害人者, 不得已殺之, 使不得蕃息, 是豈可乎? 今後令守者, 朝夕調習, 使之馴擾可也."

<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임오)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제주의 소를 육지에 내다가 무역할 수 있게 하다

경기 관찰사 이자견(李自堅)이 수원(水原) 사람 어모 장군(禦侮將軍) 박장손(朴長孫)이 고하는 말에 따라 제주(濟州) 농우(農牛)를 육지에 내다가 사사로이 무역할 것을 허락하여 경작(耕作)에 편리하게 할 것을 주청하니,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

○京畿觀察使李自堅請: "依水原人禦侮將軍朴長孫所告, 濟州農牛, 許令出陸私貿, 以便耕作." 啓下戶曹.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1월 18일(갑자) 6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경기 수원부에서 민가의 소가 암수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다

경기 수원부에서 민가(民家)의 소가 암수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京圻水原府民家, 有牛産雌雄二犢.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8월 1일(을사)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수원 부사 이언기가 강도미 등을 백성 진구의 자료로 삼기를 청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언기(李彦紀)가 상소하여, 강도미(江都米) 1만 석(石),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면포(綿布) 20동(同), 어영청(御營廳)과 금위영(禁衛營)의 보미(保米) 및 각 아문(衙門)의 둔곡(屯穀)의 본부(本府)에 있는 것을 백성 진구(賑救)의 자료(資料)로 삼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인민의 입장(入葬)하는 땅이 모두 징세(徵稅)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계축년의 진전(陳田)과 새로 개간한 전지를 사핵(査覈)할 때에 진전으로 현록(懸錄)된 것은 해마다 반드시 그 신기(新起)로 추정(推定)하고, 기전(起田)으로 실린 것은 뒤에 비록 진폐(陳廢)되어도 진전(陳田)으로 허급(許給)하지 않으며, 한전(旱田)의 움푹 들어가고 낮은 것을 고쳐 수전(水田)으로 만들어도 전(田)으로써 재록(載錄)하는 까닭에 급재(給災)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합니다. 전지를 측량할 때에 진전으로 현록된 결복(結卜)이 원전(元田)보다도 많으나, 한번 보습[犁]으로 갈기만 하면 문득 신기(新起)로 만들고 곧 다시 진황(陳荒)하여도 또한 요역(徭役)을 면치 못하는 까닭에, 비록 기름진 토양(土壤)이 있어도 감히 개간(開墾)하지 못하니, 모두 변통(變通)을 내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내렸다. 묘당에서 남한 산성의 면포 15동을 획급(劃給)하고, 묘진(墓陳)으로 들어간 것은 적간(摘奸)한 뒤에 호조(戶曹)에 알려서 시행하며, 진황(陳荒)의 땅은 또한 거민(居民)을 효유(曉諭)하여 경종(耕種)을 권과(勸課)케 하기를 청하였다.

○水原府使李彦紀上疏, 請得江都米一萬石·南漢綿布二十同·御營·禁衛保米及各衙門屯穀之在本府者, 以爲賑民之資, 又言: 人民入葬之地, 皆在徵稅之中. 癸丑陳起査覈時, 以陳懸錄者, 每年必推其新起, 以起見載者, 後雖陳廢, 不許給陳, 旱田之汚下者, 釀爲水田, 而以田載錄, 故不得蒙給災之恩. 量時以陳懸錄者, 結卜多於元田, 而一番犁土, 便作新起, 旋復陳荒, 亦不免徭役, 故雖有膏沃之壤, 不敢開墾, 請竝賜變通. 上下廟堂. 廟堂請劃給南漢綿布十五同, 入墓陳則摘奸後, 報戶曹施行, 陳荒處亦令曉諭居民, 勸課耕種.

<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 9월 24일(계미)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사헌부에서 수원의 홍원 등의 목장을 본래대로 남양의 목관에 소속시키자고 청하다

양사兩司【장령(掌令) 이경열(李景說), 지평(持平) 김홍석(金弘錫), 정언(正言) 정수기(鄭壽期)·이진순(李眞淳)이다】에서 합계(合啓)하여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를 안율(按律)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홍원(洪原) 등의 목장(牧場)은 원래 남양(南陽)의 목관(牧官)에 소속된 것인데, 한 번 따로 목관을 설치한 이후부터 폐단이 특별히 몹시 많아졌습니다.** 목장 안에 염분(鹽盆)을 많이 설치하여 우마(牛馬)를 몰아내고 그 풀을 길러 소금을 굽는 재료로 쓰니, 수백 마리의 우마(牛馬)가 이미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목장을 빠져 나와 민전(民田)을 짓밟고 벼를 뜯어먹어 목장 주위의 여덟 개 면(面)의 수십 리나 되는 땅이 그 해(害)를 참혹하게 입었습니다. 전(前) 감목관(監牧官) 정치(鄭治)는 역적 김창집(金昌集)의 사주를 받고 목장 안에 있는 수초지(水草地)를 떼내어 태반을 역적 김창집을 위해 논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도 역시 이익을 같이 얻으므로 역사(役事)를 엄중하고 급하게 독촉하여 매질이 낭자하니, 둔민(屯民)과 목자(牧子)들이 모두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흉(權凶)에게 아첨하여 붙좇아 백성을 학대하며 이익을 노린 죄를 엄하

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홍원(洪原)의 목장을 전처럼 남양(南陽)의 목관(牧官)에 소속시키고, 전 감목관(監牧官) 정치(鄭治)는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말단의 일은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兩司【掌令李景說·持平金弘錫·正言鄭壽期·李眞淳】合啓, 請健命·泰采, 按律處斷, 不從. 憲府申前啓, 又啓曰: "水原·洪原等牧場, 本屬南陽牧官, 一自別設牧官以後, 爲弊特甚, 多設鹽盆於場內, 驅去牛馬, 長其草蘇, 以作煮鹽之資. 累百牛馬, 旣不得食, 逸出場外, 蹂躪民田, 嚼吃禾稼, 環牧場八面數十里地, 慘被其害. 前監牧官鄭治, 受集賊指使, 割場內水草地, 太半爲集賊作沓. 渠亦同利, 督役嚴急, 鞭扑狼藉, 屯民·牧子, 皆不堪命. 其諂附權凶, 虐民規利之罪, 不可不嚴懲. 請洪原牧場, 依前屬之南陽牧官, 前監牧官鄭治, 拿問定罪." 末端事從之, 餘不從. 諫院申前啓, 竝不從.

<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5월 12일(병신)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영의정 김상로가 수원 전지 측량의 어려움에 대해 아뢰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경기 감사·수원 부사·북도 어사(北道御史)를 소견하였다. 영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수원의 전지(田地)를 측량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김효대(金孝大)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온 경내(境內)를 두루 답험(踏驗)할 수 없어서 부득불 임장(任掌)의 손에 맡겨야 하는데, 사람을 잘 얻으면 측량이 잘되고 사람을 잘 얻지 못하면 측량이 잘못될 것이므로, 도신도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온 고을을 통틀어서 의심 가는 곳이 있을 경우에 조사를 하여 바로잡고 인하여 마감하도록 한다면, 분란스런 폐단을 끊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上御熙政堂, 召見大臣京畿監司·水原府使·北道御史. 領議政金尙魯曰: "水原改量, 誠難矣. 金孝大擔當此事, 而亦不能遍踏一境, 不得不付之任掌之手, 而得人則量善, 不得人則量不善, 道臣尙未究竟. 臣意則通一州, 有疑端處, 行査釐正, 仍令磨勘, 可絶紛紜之弊矣." 上可之.

<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 1월 29일(을해)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원인손과 수원 부사에게 본부의 양전을 간심토록 명하다

원인손(元仁孫)을 보내어 수원 부사(水原府使)와 함께 본부의 양전(量田)을 간심(看審)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命遣元仁孫, 與水原府使, 看審本府量田.

<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 3월 4일(기유)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원인손이 수원의 양전에 관한 일을 아뢰자 사정만 하고 승등은 하지 말라 명하다

임금이 원인손(元仁孫)에게 수원(水原)의 양전(量田)에 관한 일을 물었는데, 원인손이 말하기를, "무인년 개량(改量)이 백징(白徵)의 폐단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김효대(金孝大)가 개량할 때에는 1천여 결(結)이 감해졌는데, 5백 결이 백징의 탕감에 들어 있었고, 윤동승

(尹東昇)이 개량할 때에는 2백여 결이 남았는데, 더러는 신기(新起), 더러는 승등(陞等)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등은 지나친 일이다. 아래에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책이 도리어 윗사람에게 이익을 더해 주는 방도가 되었으니, 사정(査正)만 하고 승등은 하지 말라." 하였다.
○上問元仁孫, **水原量田事**, 仁孫曰: "戊寅改量, 出於白徵之弊, 金孝大改量時所縮, 爲千餘結, 而五百結, 入於白徵蕩減中. 尹東昇改量時, 所贏爲二百餘結, 而或以新起或以陞等, 得之矣." 上曰: "陞等過矣. 益下之政, 反爲益上之道矣. 只爲査正, 勿爲陞等."
<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 3월 12일(정사)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홍봉한의 진달에 따라 수원부의 결전을 전지 개량 비용으로 쓰도록 하다
(…) **또 홍봉한의 진달로 인하여 수원부(水原府)에서 바친 결전(結錢) 1천 2백 냥(兩)을 내주어서 본부의 〈전지〉 개량(改量) 때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 因洪鳳漢之所陳, 劃給**水原**所納結錢一千二百兩, 以爲本府改量時物力.
<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 6월 3일(을해)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장령 정의조가 수원이 함흥처럼 지형이 평평하니 수레의 활용을 강구할 것을 청하다
장령 정의조(鄭毅祚)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좁아서 수레로 짐을 운반하는 것이 편리하지 못하고 오직 북도의 함흥(咸興) 등 여러 곳에서만 백성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부(水原府)는 지형이 평평하여 함흥과 다를 바가 없으니 지금 함흥과 똑같이 수레로 운반하는 제도를 창안하여 강과 바다에서 나는 산물과 남쪽과 북쪽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손쉽게 수송하여 유통하게 하면 틀림없이 고을의 수용(需用)과 주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수레 제도를 강구하고 백성들을 지휘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掌令鄭毅祚啓言: "我國山多野狹, 不利車運, 惟北道之咸興諸處, 民皆習用. **水原**一府, 地形之平衍, 與咸興無異, 今若創用車運, 一如咸興之制, 使江海之産·南北之貨, 往來委輸, 貿遷無難, 則必有益於營邑需用·居民資生之道. 請令廟堂, 講究車制, 指揮設施." 從之.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0월 5일(을축)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전 좌랑 이우형이 수차의 제도를 통용시킬 것을 아뢰다
전 좌랑 이우형(李宇炯)이 아뢰기를, "축적하려면 곡식을 생산해야 하고 곡식을 생산하려면 물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차(水車)로 물을 푸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물을 두고도 관개(灌溉)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차로 물을 푸는 방법은 길고(桔槔)에서 시작되었는데, 동한(東漢) 때에 이르러 비로소 번차(翻車) 제도가 생겨났고 조송(趙宋) 이후로 그 법이 성행했다는 것을『관개도보(灌溉圖譜)』등의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이 기구를 만들도록 명하여 토질이 메마른 곳에서 시험

해 보도록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는 양서(兩西)에 습지가 많기 때문에 수전(水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하교하시어 제도를 상고해서 수차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또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일찍이 연경(燕京)과 심양(瀋陽)에서 수차를 이용하여 논에 물을 대는 법을 보시고는 수차 열 개를 만들게 하여 팔로(八路)에 반포하려 하셨는데 지금 그 기계가 호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英宗) 경신년에는 고 상신 유척기(兪拓基)와 고 판서 김시형(金始炯)의 말을 채택하여 장차 우리 동방에 만세토록 이익을 끼쳐주려 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은 탓으로 그 일이 마침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대체로 보건대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우선 용미차(龍尾車)를 쓸 수 있고 용골차(龍骨車)를 다음으로 쓸 수 있으며 물이 멈춰 있는 곳에서는 항승차(恒升車)를 쓸 수 있는데 옥형(玉衡)이나 고전(高轉) 같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광범하게 경외(京外)에 자문을 구하시고 널리 적임자를 구하신 뒤 재목을 구비하여 기계를 만들게 해서 온 나라에 통행되는 제도로 삼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수차의 제도야말로 어찌 그 이익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수리(水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근본을 삼았는데, 정착(鄭鑿)이나 사인(史引)이라고 해도 어찌 별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지난 겨울에 윤음(綸音)을 내려 수원 산성(水原山城) 밖의, 대략 1백 포(包)를 파종할 수 있는 빈 땅을 개간, 광교산(光敎山)의 물을 끌어들여 관개하게 했던 것도 수리 사업을 일으켜 보려는 뜻에서였다.**

지금처럼 재능있는 이가 쓰여지지 못하는 때가 없었는데 그대가 이 일을 입을 열어 말을 했으니 호조의 신하로 하여금 그대와 면담케 하고, 또 기막힌 생각을 가진 자로 하여금 만들어서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모두가 편리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백성들에게 이익을 끼쳐주는 일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前佐郎李宇炯上疏曰: 蓄積在乎生穀, 生穀在乎興水利. 我國不知以車戽水之法, 咫尺有水, 不得灌溉. 蓋以車戽水, 昉於桔槹, 至于東漢, 始有翻車之制, 趙宋以後, 其法盛行, 觀乎『灌溉圖譜』等編可知. 昔我世宗大王命作此器, 其試在於土性浮踈處, 未及見效. 文宗大王以兩西多沮洳之地, 可作水田下敎, 攷制造車. 孝宗大王嘗於燕·瀋見以車灌畦之法, 令造十具, 將頒八路, 今其器藏于地部. 英宗庚申, 用故相臣兪拓基·故判書金始炯言, 將爲東方萬世之利, 廷議不一, 其事遂寢. 蓋流水處, 龍尾車可用, 而龍骨次之, 止水處恒升車可用, 而玉衡·高轉之屬, 亦非一端也. 伏願廣詢京外, 博求其人, 庀材造器, 以爲一國通行之制焉. 批曰: "水車之制, 其利可勝言哉? 古人以興水利爲利用厚生之本, 鄭鑿·史引亦豈有別術? 去冬綸音, 水原山城外, 開墾曠土於約播百包之地, 導光敎水以溉之者, 亦出於興水利. 才不見用, 莫今時若, 爾能開口言之, 許令度支之臣, 面詰於爾, 又使巧思者, 造出試之, 咸以爲便, 則可爲生民一大蒙利之端."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2월 18일(경오)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화성부에 제방을 쌓을 때 농지에 댈 보의 물을 뺏은 감교에게 가형하다

화성부(華城府)가 신천군(信川郡)에서 흙을 사들여 제방을 쌓으려 하면서, 감교(監校)가 백성들의 농지에 댈 보(洑)의 물을 빼앗았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니, 관찰사 서매수(徐邁修)가 사실을 밝혀 보고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조사하라고 한 명은, **한편으로는 일이 화성부와 관계되어 하나의 민폐라도 끼치지 않으려 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궁(宮)의 제방뿐만이 아니라 정히 백성들의 전답을 위해서였다.

수령이 된 자가 금단하지 못하고 도신(道信)이 된 자가 상세히 조사하지 못하니 감영과 고을의 일에 제각기 직분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찮은 차인(差人)이 제멋대로 폐단을 만들고 있는데도, **화성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서는 감영과 고을이 그 사이에서 가부에 대한 언급을 하려들지 않았다.** 조정의 본의와 고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해당 수령은 비록 혹시라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감사가 어찌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가. 해당 도신은 추고하고 해당 수령은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처치하게 하라.
앞으로는 이 도나 저 도를 논할 것 없이 **화성부** 소관의 일이라고 칭탁하고서 하나라도 폐단이 있는데도 즉시 보고하지 않는 경우 도신과 수령은 엄중한 문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 이른바 감교(監校)는 감사로 하여금 장형(杖刑)을 가하여 정배하게 하라."
하였다.
○**華城**府買土於信川郡, 將築垌, 監校奪民田洑水. 上聞之, 命使本道行査. 觀察使徐邁修究覈以聞, 敎曰: "行査之命, 一則事關**華城**, 不欲貽一民弊, 一則非但宮垌, 政爲民畜. 爲邑倅者, 不能禁斷, 爲道臣者, 不爲詳査, 營邑事, 其可曰盡其職乎? 幺麽差人, 恣意作弊, 而聞**華城**二字, 則營邑不欲開口可否於其間. 朝家本意苦心之不然. 該倅雖或不知, 該伯其可泛忽? 該道臣推考, 該守令令該府拿問處之. 此後無論此道彼道, 名以**華城**所管之事, 一有爲弊, 而不卽轉聞者, 道臣·守令, 難免重勘. 各別嚴飭, 俾有實效. 所謂該監, 令道伯, 加杖定配."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6월 25일(기해)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호조에서, 올해는 풍년이므로 급재에 대해 거론하지 말자고 아뢰다
이해에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호조가, 올해 농사의 형편이 각종 곡식이 골고루 익었는데 모든 곳이 다 그러하니 급재(給災)하는 한 가지 조항을 아울러 거론하지 말자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올해 농사가 다행히 재해를 면했는데, 또 최근 동풍이 불어오던 끝에 오늘 단비가 내렸으므로 추수할 희망에 마음속으로 홀로 기뻐하였다. 그러나 팔도 3백 6주(州)의 논밭 가운데 낮은 땅이나 협소하고 경사진 땅까지 이것 저것 구분 없이 어찌 다 그러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경술년의 풍년 때에도 오히려 표결(俵結)을 하였는데, 올해의 연분(年分)을 단지 원총(原摠)만을 기준으로 하여 1부(負) 1속(束)도 급재하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것을 덜어 아래를 더해주는 정사에 어긋난다. 경은 계목(啓目)을 자세히 상고하여 부표(付標)하여 계하(啓下)한 후에 각도에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경기·삼남·관동·해서·수원·광주에 2천 8백 결을 급재해 주었다.**
○是歲熟. 戶曹以今年農形, 各穀均熟, 諸路同然, 給災一款, 竝不擧論, 啓聞, 敎曰: "今年農事, 幸免災損, 今日甘雨, 又獲於近日東風之餘, 有秋之望, 心竊獨喜, 而八路三百六〔十〕州, 旱田水田之汚邪(篩窪)〔甌窶〕, 無彼無此, 何可一一取必? 且況庚戌之豐, 尙有俵結, 今年年分之只準原摠, 不給一負一束, 有非損上益不之政. 卿則推考啓目, 付標啓下後, 行會諸道", 乃給京畿·三南·關東·海西·**水原**·廣州災二千八百結.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8월 13일(을유)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벌레 잡는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시상하도록 명하다

상이 또 수원부 유수 서유린(徐有隣)에게 하교하기를, "더위가 이러한데 벌레 줍는 일을 장차 시작하게 되었는지라, 각읍 수령들이 숲속을 왕래하면서 뜨거운 볕을 받고 벌레에 쏘이어 살이 부르트곤 할 것을 생각하니, 그 모양이 안 봐도 눈에 선하고, 그 수고로움을 완연히 내가 겪는 듯하다. 더구나 피폐한 고을의 이례(吏隷)와 교졸(校卒)들은 봄이면 나무 심는 일, 여름이면 벌레 줍는 일, 가을이면 집짓는 일로 해마다 노역이 끝이 없어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으니, 더욱 잠시도 내 마음에서 놓을 수 없다. 이것은 모두 조정에서 몸소 나가 친히 검독하고자 한 일인데, 수신에게만 맡겨두고 보니, 수신이 오히려 미처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리고 10읍의 수령들과 10읍의 이례와 교졸들의 과외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찌 그들을 진념하는 거조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특별히 제조한 제중단(濟衆丹) 1천 정(錠), 광제단(廣濟丹) 3천 정, 청심원(淸心元) 1백 환(丸)을 내리노니 이것을 수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제중단 3천 정, 향유산(香薷散) 4백 첩은 이례와 교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경이 이를 지수(祗受)한 후에는 이 전령(傳令)을 등사(謄寫)하여 10읍의 수령들에게 반시(頒示)해서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그들에까지 미쳤음을 알게 하고, 또 내영(內營)의 교졸들을 보내서 양식과 약물을 지급하여 수령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서유린이 별단(別單)을 갖추어 보고하니, 명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차등 있게 시상하도록 하였다.

○上, 又敎**水原府留守**徐有隣曰: "日熱如此, 而拾蟲之役將始, 言念各邑守宰, 往來林木之中, 衝炎負暄, 冒螫生繭, 其狀長如在目, 其勞宛若在己. 何況殘邑吏隷校卒之春而植役, 夏而拾役, 秋而搆役, 役役年年偏苦者爾曺, 爾曺之效力至此, 尤不勝暫釋. 此皆朝家所欲躬莅而親檢之事也, 委之守臣, 尙有靡及之懷. 如十邑守宰, 十邑吏隷校卒科外役身, 豈無軫念之擧乎? 今下別製濟衆丹一千錠, 廣濟丹三千錠, 淸心元一百丸, 分給守宰等處, 濟衆丹三千錠, 香薷散四百貼, 分給吏隷校卒等處. 卿其祗受後, 謄出此傳令, 頒示十邑守宰, 俾知爲所重之思, 暨于渠輩, 又遣內營校卒, 給糧資藥物, 與守宰分力." 役旣訖, 有隣具別單以聞, 命効勞人等, 施賞有差.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4월 25일(기미)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농사를 권장하고 농서를 구하는 구언 전지에 대한 배의 등 27명의 상소문

(…) **농서(農書)를 올린 자는 40인이었는데**, 남원(南原) 유학 장윤(張㬊)·허호(許顥)·허질(許耋)·노익원(盧翼遠), 공주(公州) 생원 유진목(柳鎭穆), 공주 유학 임박유(林博儒), 양주(楊州) 유학 안성탁(安聖鐸), 서울에 사는 서민 이필충(李必忠), 홍천(洪川) 유학 이광한(李光漢), 고성(高城) 유학 권현(權炫)·노재황(盧再煌), 흡곡(歙谷) 유학 조지영(趙之榮)·정치일(鄭致一)·표헌정(表憲正), 보은(報恩) 유학 이동응(李東膺), 덕산(德山) 유학 이의주(李宜璹), **수원(水原)의 절충(折衝) 원재하(元在夏),** 정산(定山) 유학 김훈(金勳), 서울에 사는 유학 이만록(李晩祿), 교하(交河) 유학 이문철(李文哲), 나주(羅州)의 유학 나민휘(羅敏徽)·나학신(羅學愼), 순창(淳昌) 유학 신보권(申輔權), 영광(靈光) 진사 이대규(李大奎), 전주(全州) 유학(幼學) 김상직(金尙直)·이여효(李汝孝)·송상휘(宋相彙)·이장렬(李章烈), 진안(鎭安) 유학 박종혁(朴宗赫), 고부(古阜) 유학 박도흠(朴道欽), 능주(綾州) 진사 남익(南熤), 광주(光州) 진사 이의우(李宜禑), 유학 박문찬(朴文燦)·정윤국(鄭潤國), 무장(茂長) 유학 강석운(康錫運)·강순(康洵), 남원(南原) 전 현감 장현경(張顯慶), 장련(長連) 진사 박재설(朴載卨), 해주(海州) 유학 김호(金皓)·이훈(李薰)이었다.(…)

○(…) 進農書者四十人, 南原幼學張㬊·許顥·許耋·盧翼遠, 公州生員柳鎭穆, 公州幼學林博

儒, 楊州幼學安聖鐸, 京居庶民李必忠, 洪川幼學李光漢, 高城幼學權炫·盧再煌, 歙谷幼學趙之榮·鄭致一·表憲正, 報恩幼學李東膺, 德山幼學李宜璹, 水原折衝元在夏, 定山幼學金勳, 京居幼學李晩祿, 交河幼學李文哲, 羅州幼學羅敏徽·羅學愼, 淳昌幼學申輔權, 靈光進士李大圭, 全州幼學金尙直·李汝孝·宋相彙·李章烈, 鎭安幼學朴宗赫, 古阜幼學朴道欽, 綾州進士南熠, 光州進士李宜貺·幼學朴文燦·鄭潤國, 茂長幼學康錫運·康洵, 南原前縣監張顯慶, 長連進士朴載卨, 海州幼學金皓·李薰也.(…)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 11월 30일(기축)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여러 도(道)·도(都)의 재해에 대해서 급재하다

여러 도(道)와 여러 도(都)의 올해의 재해 6만 4천 2백 82결에 대하여 급재(給災)하였다. 【경기는 4천 1백 22결, 호서는 1만 9천 결, 호남은 1만 8천 결, 영남은 1만 3천 5백 결, 해서는 4천 7백 72결, 관동은 7백 70결, 관서는 3천 1백 14결, **수원은 6백 25결,** 광주(廣州)는 94결, 강화는 2백 85결이다】

○給諸道諸都當年災六萬四千二百八十二結.【京畿四千一百二十二結, 湖西一萬九千結, 湖南一萬八千結, 嶺南一萬三千五百結, 海西四千七百七十二結, 關東七百七十結, 關西三千一百十四結, 水原六百二十五結, 廣州九十四結, 江華二百八十五結】
<순조실록 17권, 순조 13년 10월 30일(계해)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여러 도에서 당년에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하여 급재하다

여러 도(道)와 도(都)에서 당년에 재해를 입은 10만 7천 4백 86결에 대하여 급재(給災)하였다.【경기가 5천 4백 10결, 호서가 1만 5천 2백 56결, 호남이 4만 6천 결, 영남이 3만 7백 17결, 해서가 5천 5백 결, 관동이 2백 71결, 관서가 2천 8백 63결, 수원이 8백 38결, 광주(廣州)가 3백 30결, 강화가 3백 1결이었다】

○給諸道諸都當年災十萬七千四百八十六結.【京畿五千四百十結, 湖西一萬五千二百五十六結, 湖南四萬六千結, 嶺南三萬七百十七結, 海西五千五百結, 關東二百七十一結, 關西二千八百六十三結, 水原八百三十八結, 廣州三百三十結, 江華三百一結】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0월 30일(신사)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제도의 당년 재해를 입은 7만여 결에 대하여 급재하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당년 재해를 입은 7만 1천 75결(結)에 대하여 급재(給災)하였다.【경기 3천 8백 50결, **수원 5백 30결,** 광주 1백 40결, 강화 1백 34결, 호서 1만 5천 결, 호남 2만 7천 5백 결, 영남 1만 7천 7백 64결, 해서 4천 5백 결, 관동 4백 결, 관북 1천 2백 57결이었다】

○給諸道諸都, 當年災七萬一千七十五結.【京畿三千八百五十結, 水原五百三十結, 廣州一百四十結, 江華一百三十四結, 湖西一萬五千結, 湖南二萬七千五百結, 嶺南一萬七千七百六十四結, 海西四千五百結, 關東四百結, 關北一千二百五十七結】
<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 10월 29일(기해)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의정부에서 광주이나 수원 등지의 소의 도살에 대해 금령을 강조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연석(筵席)에서 우금(牛禁)에 대해 신칙한 것을 아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각부(各部) 내의 사포(私庖)를 아직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교외에도 아직 소도둑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 조정의 법령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광주(廣州)나 수원(水原) 등지에서 사사로이 도축하는 소굴이 있는데도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관리하지 못하여 법사(法司)와 포청(捕廳)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눈길을 피하여 소를 잡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도살(屠殺)을 금지하는 것은 농사일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라에 큰 역사(役事)가 있어 육지의 운반은 오로지 수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해가 바뀔 무렵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버려두는 것은 한 번 내놓은 법령을 실행시켜야 하는 원칙에 참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선 법사와 두 포청에서 각별히 염탐하여 붙잡는 대로 곧바로 형배(刑配)를 시행하게 하고 경기 감영과 수원, 광주 등지에도 따로 공문을 내어 신칙할 것입니다. 만일 종전처럼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向以牛禁事, 有所筵奏提飭. 而連聞部字內, 尙有未撤之私庖, 郊坰外, 尙有恣行之牛賊, 徒煩朝令. 至於廣州·水原等地, 自是私屠之窩窟, 而畿營所不管, 法司捕廳所不到, 亭堠之間, 椎宰相續. 夫禁屠殺, 所以重農功也. 況國有大役, 陸運之力, 專藉車夫. 又況値此歲時, 一毫放過, 萬萬非令出惟行之義也. 先自法司·兩捕廳, 各別探察隨所捉, 直施刑配, 畿營及廣州·水原等處, 另行關飭, 萬一有如前不悛之弊, 則自當責有所歸. 請以此行會.” 允之.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12월 24일(을묘)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제주에서 200마리 말을 공납했는데 여러 관청에 나누어 주다

제주(濟州)에서 공납한 말 200필 중에서 삼군부(三軍府)에 10필, **수원부(水原府)에 30필, 강화부(江華府)에 46필,**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12필, 금위영(禁衛營)에 12필, 어영청(御營廳)에 12필을 제하고 실제 받아들인 것은 73필이었다.

濟州貢馬二百匹中, 三軍府十匹·水原府三十匹·江華府四十六匹·訓局十二匹·禁衛營十二匹·御營廳十二匹除, 實納七十三匹.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월 30일(을묘)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경기감사가 각 능의 나무를 찍는 등의 변고에 대해 해당 수신을 신문하게 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명진(金明鎭)이 장계(狀啓)하기를, “각 능원(陵園)에 함부로 나무를 찍고 몰래 장사지내며 농지를 개간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계미년(1883) 이후부터 병술년(1886) 봄까지 해마다 봄가을에 봉심(奉審)하였습니다. 가승지(假承旨)와 지방관들인 파주 목사(坡州牧使) 이주흥(李周興)·윤홍대(尹弘大)·심의홍(沈宜弘)·민상능(閔相能),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동현(李東鉉)·이응진(李應辰)·임상호(任尙鎬)·이인만(李寅晩)·현제보(玄濟普), 풍덕 부사(豐德府使) 이문영(李文永)·박난수(朴蘭壽), 양주 목

사(楊州牧使)　신태운(申泰運)·신석년(申錫年)·이태진(李泰鎭)·조영하(趙榮夏)·박정화(朴鼎和)·윤성진(尹成鎭)·박희방(朴熙房)·임순헌(林淳憲), 죽산 부사(竹山府使) 이동수(李東洙)·방천용(方天鏞), 남양 부사(南陽府使) 조희순(趙羲純), 이천 부사(利川府使) 이긍주(李兢柱), 통진 부사(通津府使) 서형순(徐珩淳)·심헌지(沈憲之), 부평 부사(富平府使) 허진(許璡) 등이 봉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흐리멍덩하게 검속(檢束)하지 못한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개성(開城)·광주(廣州)·수원(水原)의 각 해당 유수들은 의례적으로 봉심하나 이미 본영 관할이 아니어서 일체 현고(現告)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모두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처결하게 하라. 살피지 않은 해당 수신(守臣)은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현고를 받고 일체로 잡아다가 신문하고 처결하게 하라." 하였다.

京畿監司金明鎭狀啓: "以爲各陵·園亂斫犯葬·起墾, 有此無前之變. 癸未以後, 丙戌春至, 各年春秋奉審, 假承旨與地方官坡州牧使李周輿·尹弘大·沈宜弘·閔相能·長湍府使李東鉉·李應辰·任尙鎬·李寅晩·玄濟普·豐德府使李文永·朴蘭壽·楊州牧使申泰運·申錫年·李泰鎭·趙榮夏·朴鼎和·尹成鎭·朴熙房·林淳憲·竹山府使李東洙·方天鏞·南陽府使趙義純·利川府使李兢柱·通津府使徐珩淳·沈憲之·富平府使許璡等, 其在奉審之地, 矇然失檢之罪, 固難參恕. 開城·廣州·水原各該留守, 例爲奉審, 則旣非臣營之管轄, 不得一體現告." 敎曰: "竝令該府, 拿問勘處. 不審之當該守臣, 令政院捧現告, 一體拿問勘處."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1월 30일(무오)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수원과 용인의 토지 측량을 다시 하도록 하다

지계아문 총재(地契衙門總裁) 이용익(李容益)이 아뢰기를, "**수원(水原)과 용인(龍仁) 두 군(郡)을 전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서 이미 측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측량한 토지의 결수를 함부로 늘렸다는 취지로 두 군(郡)의 군보(郡報)와 민소(民訴)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의 부세(賦稅)와 민폐를 걱정하여 장차 다시 측량하려고 토지 측량 비용을 탁지부(度支部)에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해부(該部)의 대신(大臣) 김성근(金聲根)의 회답에 의하면, '토지를 측량하여 문건을 만드는 일은 공평(公平)함에 힘써야 하는데, 해당 두 군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군보와 민소는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다. 형편상 다시 측량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 1만 냥을 기준대로 획급(劃給)하도록 하겠지만 지난번에 측량한 감리(監理)와 파견원들에게 응당 견책이 없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토지를 측량하는 항목은 위로는 누락된 조세를 바로잡고 아래로는 숨겨진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측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 이토록 그르쳐 놓았으니 다시 측량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니, 윤허하였다.

地契衙門總裁李容翊奏: "水原·龍仁兩郡, 在前量地衙門, 已經行量. 而以其時量地結數濫增之意, 兩郡郡報·民訴遝至. 爲念國課·民瘼, 行將更量, 量地費額, 請求於度支部矣. 現接該部大臣金聲根照覆內開: '打量成案, 務圖公平, 而該兩郡謂有做錯, 民訴·郡報確有可據, 則勢將更量歸正. 故該費額一萬兩, 認準劃撥, 而曾前打量之監理與派員, 不應無警責等因.' 竊伏念量地一款, 上以正漏稅, 下以抶隱瘼, 其所關係, 何等緊重? 而不善行量, 致此濫誤, 則不容不更量歸正. 以前量務監理李鍾大論之, 職在董率, 不能公平, 致有民冤, 揆以事體, 萬萬駭然. 令法部照律懲辦. 其時所耗量費, 徵捧於當該監理, 俾充公貨何如?" 允之.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9월 25일(양력)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하야시 분타로에게 이왕직의 목장 경영 및 화산 산림을 불하하는 일을 조사하게 하다

사무관(事務官) 하야시 분타로〔林文太郎〕에 명하여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서 이왕직(李王職)의 목장 경영 협의 및 **화산(花山) 산림(山林)을 불하하는 일을 조사하기 위해 수원군(水原郡)에 출장가게 하였다.**

十四日. 命事務官林文太郎出張水原郡. 爲本職牧場經營協議於勸業模範場及花山山林拂下事, 調査也.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4월 14일(양력)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곤도 시로스케를 경기도와 황해도에 보내 산림보호를 위한 사무와 시찰을 하게 하다

사무관(事務官)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에게 명하여 **경기도(京畿道) 고양(高陽), 양주(楊州), 수원(水原), 개성(開城)의 4군(郡)과 황해도(黃海道) 금천군(金川郡)에 수시로 출장 가서 산림보호를 위한 사무와 시찰을 하도록 하였다.**

七日. 命事務官權藤四郎介隨時出張於京畿道高陽·楊州·水原·開城四郡·黃海道金川郡. 爲山林保護事務視察也.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12월 7일(양력)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고쿠분 쇼타로 등을 수원, 개성 등지로 보내 목장 및 삼림 상황을 시찰하고 오라고 하다

이왕직 차관(李王職次官)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 및 사무관(事務官)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에게 수원(水原), 김포(金浦), 개성(開城) 금천(金川) 등의 군(郡)의 목장(牧場) 및 삼림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출장하라고 명하였다.

十二日. 命本職次官國分象太郎及事務官權藤四郎介出張水原·金浦·開城·金川等郡, 視察牧場及森林狀況.

<순종실록부록 8권, 순종 10년 9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⑸ 광공업

경제/광공업

수원에서 나는 옥으로 악기를 제작했으나 단단하지 못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 고려 때에 원(元) 세조(世祖)에게 옥띠[玉帶]를 바치었더니, 원나라 관리가 진짜 옥이 아니라 하여 죄주기를 청해 아뢴즉, 세조가 말하기를, ‘해외(海外)의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바쳤으니 무슨 죄가 있느냐. 죄주지 말라.’ 하였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당(唐) 고종(高宗)에게 홍옥띠[紅玉帶]를 바쳤더니 세상에 드문 보물이라고 창찬하였는데, 그 뒤 나라에 한재(旱災)가 생기매 모두들 이르기를, ‘나라의 세전(世傳)할 보배를 가벼이 내보낸 탓으로 그리 된 것이라.’ 고 하였다. 내 일찍이 말한 일이 있거니와, 이 옥대들을 다른 나라에서 얻어온 것이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옥이 난 일이 없다. 지금 수원(水原)에서 나는 옥으로 악기(樂器)를 만들어 보았으나 단단하고 정확하지 못하니**, 이것은 돌로서 옥과 유사한 것이지 옥은 아니고 **성천(成川)·의주(義州)와 황해도에서 나는 청옥·황옥·백옥은 수원의 옥에 비하면 조금 낫고**, 지금 서울·김포(金浦)·청주(淸州)에 옥 나는 곳이 꽤 많으나, 그 품질이 청옥·백옥·벽옥(碧玉)과는 아주 다르다. 내 생각으로는 청주에서 나는 것이 진짜로 여겨지나, 그러나 앞서 의정부에서 옥 채굴을 금하는 수교(受敎)에 ‘진옥(眞玉)’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참으로 진짜 옥이면 ‘진옥(眞玉)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진짜가 아니면 어찌 후세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진옥(眞玉)’ 이라는 문구를 고쳐서 ‘옥같은 돌[似玉之石]’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과연 이것이 진짜 옥일진대 뒷사람들이 보고서 비록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역시 해로울 것은 없다.” 하였다.

○上謂承政院曰: “昔高麗之時, 獻玉帶於元世祖, 有司以非眞玉, 奏請治罪, 世祖曰: ‘海外之人, 不知而獻, 有何罪乎? 其勿罪.’ 又昔我國獻紅玉帶於唐高宗, 稱爲稀世之寶, 後國有旱災, 皆以爲傳國之珍, 輕以進獻之致然也. 予嘗謂此玉帶得於他國, 非我國所産. 今以水原所産玉, 作爲樂器, 然未堅確, 此石之似玉者, 非玉也. 成川·義州·黃海道所産靑玉黃玉白玉, 比諸水原之玉, 稍有間. 今又京城金浦·淸州産玉處頗多, 然其品, 與靑玉白玉碧玉頓異, 予意謂出於淸州者乃爲眞. 然前者議政府禁防受敎, 有眞玉之文, 此誠眞玉, 則謂之眞玉可也, 若非眞, 則豈非取笑於後世乎? 當改眞玉之文, 爲似玉之石可也. 儻此爲眞玉, 則後人見之, 雖謂不知, 亦未爲害也.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26일(신미) 2번째기사>

경제/광공업

환관 이중근을 보내 광주·수원 등의 아전 이졸에게 채금하게 하다

환관(宦官) 이중근(李重斤)을 경기(京畿)에 보내어, 광주(廣州)·**수원**(水原)·양근(楊根)·지평(砥平)·천녕(川寧)·이천(利川)·음죽(陰竹)·용인(龍仁)·금천(衿川)·과천(果川)·양천(陽川)·양주(楊州)·양지(陽智)·죽산(竹山)·가평(加平) **등 고을의 아전 이졸(衙前吏卒)을 2번으로 나누어 매 1번(番)마다 각각 2백 인이 채금(採金)하게 하였다**.

○遣宦官李重斤于京畿, 抄發廣州·水原·楊根·砥平·川寧·利川·陰竹·龍仁·衿川·果川·陽川·楊州·陽智·竹山·加平等邑衙前吏卒, 分二番, 每一番各二百人採金.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3월 16일(병자) 3번째기사>

경제/광공업

수원에서 옥을 캐게 하다

옥바치[玉匠]를 수원(水原)에 보내어 옥을 캐게 하였다.

○癸卯/命遣玉匠于水原採玉.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 9년 12월 10일(계묘) 1번째기사>

경제/광공업

백옥을 채취하는 옥장에게 말을 주어 가게 하다

전교하기를, **"옥장(玉匠) 1인이 백옥(白玉)을 채취(採取)하는 일로 수원(水原)에 가니, 말을 주라."** 하였다.

○傳曰: "玉匠一人, 以白玉採取事, 往水原, 其給馬."

<연산군일기 58권, 연산군 11년 5월 18일(임인) 2번째기사>

⑹ 건설

경제/건설

전 수원부사 홍경손 등에게 태안 굴포의 개착을 살피도록 하다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를 충청도 도체찰사(忠淸道都體察使)로, 호조 참의(戶曹參議) 안철손(安哲孫)을 부사(副使)로,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홍경손(洪敬孫)을 종사관(從事官)을 삼아서, 태안(泰安) 굴포(堀浦)의 개착(開鑿)**이 편리하지 아니 한 것을 가서 살피게 하였다. 이 먼저 신숙주가 아뢰기를, "조선(漕船)을 끌고 온 사람이 공로(功勞)가 있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후하게 음식을 먹이고 위로해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고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신숙주와 안철손에게 명하여 영선(領船) 등 공로가 있는 1백 60여 인에게 대궐 뜰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丁巳/以左議政申叔舟爲忠淸道都體察使·戶曹參議安哲孫副使, 前水原府使洪敬孫從事官, 往審泰安堀浦, 開鑿便否. 先是, 叔舟啓: "漕船押來人有勞者多, 請厚饋慰遣." 上曰: "可." 至是, 命叔舟·哲孫饋領船等有功勞者百六十餘人于闕庭.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19일(정사) 1번째기사>

경제/건설

윤휴가 직접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상소한 수원 유생 이계상을 장려하자고 하다

(…) 윤휴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근심은 오직 정금(鄭錦)이 해변에 갑자기 닥치고 청로(淸虜)가 서로(西路)에 가득 찬 데에 있으며, 지난 가을의 헛 경보도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니 이것을 청국(淸國)에 고급(告急)하여 군사를 정비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또 우리가 청국을 섬기는 것이 정금이 전에 의심하여 분노하던 것인데 이제는 오삼계(吳三桂)와 힘을 합쳐 그 형세가 매우 확장되었으므로 세상에 대고 죄를 말하고 치러 올 걱정이 있을 듯하니 한 사신이 바다를 건너가서 성심(誠心)을 보이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접때 수원(水原)의 유생(儒生) 이계상(李啓祥)이 상소하여 스스로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청하였는데, 이러한 사람을 특별히 아름답게 여겨 장려하면 반드시 잇달아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망(瞭望)하는 한 가지 일도 신칙(申飭)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허적이 말하기를, "주청(奏請)하는 일을 앞으로 사행(使行) 때에 붙여 보낼 수 있고, 연변에서 요망하는 것도 이미 분부하였으나, 정금(鄭錦)으로 말하면 그 할아비 정지룡(鄭芝龍)이 처음에 명(明)나라에 반역하여 해도(海島)에 몰래 웅거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적이 되는데, 어떻게 서로 교통하겠습니까?"

하고, 윤휴가 말하기를, "저들은 이미 주씨(朱氏)를 함께 도우므로 의리로 거사하여 우리를 침범할 뜻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이제 통호(通好)하면 앉아서 10만의 군사를 물리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허적이 말하기를, "정금(鄭錦)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넓디넓은 바다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청국 땅에 잘못 배를 대면, 큰 화(禍)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또 조정에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사신을 보낼만 하다면 어찌 한낱 유생(儒生)이 스스로 청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계상(李啓祥)도 조정이 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감히 스스로 청한 것입니다."

하고, 윤휴가 말하기를, "휘종(徽宗)·흠종(欽宗) 때에 주변(朱弁)이 금(金)에 사신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청하여 사절의 임무를 다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거니와 한 사신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권대운이 말하기를, "이것은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토록 굳이 다투는 것입니까?" 하고, 윤휴가 말하기를, "품은 뜻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대신과 서로 다투겠습니까?" 하였다. 허적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계상의 소(疏)는 누설될까 두려우니,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고 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김만기(金萬基)가 총융사(摠戎使)의 직임을 힘껏 사퇴하여 말이 매우 간절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고 승지(承旨)를 시켜 빈청(賓廳)에서 밀부(密符)를 전수(傳授)하게 하였다.
○(…) 鑌曰: "今日之憂, 唯在於鄭錦之猝迫海邊, 淸虜之充斥西路, 前秋虛警, 亦非無根之事. 以此告急於淸國, 請得繕治兵事, 且我服事淸國, 鄭錦之所嘗疑而忿之者也. 今與吳三桂合力, 其勢甚張, 恐有聲罪致討之患. 一介浮海, 以致誠心, 似不可已. 頃者水原儒生李啓祥上疏, 自請渡海. 如此之人, 特加嘉奬, 則必有繼起之人. 瞭望一事, 亦宜申飭." 積曰: "奏請一款, 前頭使行, 可以付送. 沿邊瞭望, 亦已分付, 而至於鄭錦則其祖芝龍, 初叛大明, 竊據海島, 在我爲賊, 何以相通?" 鑌曰: "彼旣共扶朱氏, 必有仗義侵我之意. 我今通好, 則是坐却十萬兵矣." 積曰: "鄭錦不知何如人, 亦未知的在何許. 萬頃滄波, 何處可尋乎? 若誤泊於淸國之界, 則必生大禍. 且朝廷雖乏人, 若可通使, 則寧許一儒生之自請乎? 李啓祥亦知朝廷之不送, 故渠敢自請矣." 鑌曰: "徽·欽時, 朱弁自請使金, 全節而還. 聞其所居, 與我國不遠. 一介相通, 何害之有?" 大運曰: "此非一人之私事, 何爲强爭至此?" 鑌曰: "只陳所懷而已, 何敢與大臣相爭乎?" 積白上曰: "啓祥之疏, 漏泄可怕, 留中不答可矣." 金萬基力辭摠戎使之任, 言甚懇切, 上不聽, 令承旨傳授密符於賓廳.
<숙종실록 2권, 숙종 1년 1월 24일(계미) 2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방법에 대해 채제공 등이 아뢰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일전에 수원(水原)의 새 고을에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일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여 아뢰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본부(本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원래 가난하게 살아오던 터이어서, **옛 고을의 1천여 호에 가까운 집들이 달팽이집처럼 생긴 오두막뿐입니다.** 이번에 고을을 옮기고 나서도 만약 또 예전과 같다면, 거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몰아 큰 집을 억지로 지으라고 한다면, 비록 을러대고 권고해도 결코 해내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길거리를 정연하고 빽빽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방(廛房)들을 따로 짓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선 서울의 부자 20, 30호를 모집하여 무이자로 1천 냥을 주어서, 새 고을에다가 집을 마주보도록 지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는 재미가 있게 한 다음, 몇 해를 기한으로 차차 나누어 갚게 한다면, 조정에도 별로 손해가 없고 새 고을에는 부락을 이루고 도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은 바로 기와입니다. 옛날 당(唐)나라 위단(韋丹)이 강남(江南)의 서도 관찰사(西道觀察使)로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와집을 짓도록 하였는데, 재목은 산에서 가져오고 도공(陶工)을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기와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재목과 기와를 마당에다 모아놓고 그 비용을 헤아려 값을 정하되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밥과 간장을 싣고 친히 가서 살펴보니, 기와집을 1만 3천 7백 채나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재력이 중국과 같을 수는 없으므로 비록 위단이 한 일을 따르기는 어렵더라도,

만약 1만 냥 안팎의 돈을 시험삼아 본 고을에 내주어 기와를 굽게 하여, 사려는 사람들에게 팔되 절대 이익은 취하지 말고 본전만을 받는다면, 기와집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고 나라 돈도 축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백과 본 고을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마련하는 데는 별다른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을의 근방에다가 한 달에 시장을 여섯 번 세우고 한 푼이라도 절대 세를 거두지 말고 단지 서로 장사하는 것만을 허락한다면, 사방의 장사치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떼처럼 모여들어서 전주(全州)나 안성(安城) 못지 않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저절로 살림에 재미를 붙일 것이고, 비록 다른 고을의 백성들이라도 필시 모아들이기를 기다릴 것이 없이 제발로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고을의 모양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여러 재상들에게 물으니, 사직(司直) 김화진(金華鎭)·이문원(李文源), 형조 판서 김사목(金思穆)은 다 제공의 말이 옳다고 하였고, 사직 서유린(徐有隣)은 아뢰기를,

"부자들을 이주시키고 시장을 옮기는 것은, 참으로 백성들을 모아들여 잘살게 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전방(廛房)을 따로 짓는 것은, 누원(樓院) 등의 이전의 실례로 미루어 보더라도 서울 시장의 전방과 서로 방해가 될 염려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였고, 사직 정창순(鄭昌順)은 아뢰기를,

"한(漢)나라 때에도 무릉(茂陵)에다가 군국(郡國)의 호걸(豪傑)들을 이주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백성들을 옮겨 이주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만약 평양(平壤)·송도(松都)·함흥(咸興)과 같이 장사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자원(自願)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주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틀림없이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급복(給復)해 주기로 하였으니 간간이 과거(科擧)도 설행한다면, 유생이나 무사들 중에도 필시 가서 살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사람들에게는 장사하는 이익이 있다면, 비록 전방을 따로 세우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여러 가게들을 벌여놓고 번화한 거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경기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은 아뢰기를,

"전방에 대한 한가지 문제는 혹시 서울과 지방이 서로 지장을 줄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은 아뢰기를,

"부락을 정연하고 빽빽하게 만드는 일은 부유한 백성들을 모아들이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고, 그들을 모아들이는 방도는 그들을 고무하여 용감하게 그곳에 달려들도록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주(移住)한 백성들 중에서 사람의 됨됨이와 문지(門地)를 보아 적당한 벼슬자리에 특별한 규례로 등용을 한다면, 팔도의 부호들이 마땅히 소문을 듣고 몰려올 것입니다. 전방이나 시장도 설치하게 하여 살림 밑천을 마련하게 한다면, 몇 해 안가서 큰 도회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부사직 홍수보(洪秀輔)는 아뢰기를,

"백성들을 모아들이고 풍족하게 하는 근본은, 부역을 가볍게 하고 조세를 적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사의 이익이 생기는 바탕을 마련하여 쏠려들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백 결(結)에 대해 급복(給復)해 주어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조세가 없는 토지를 지어먹게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유례가 없는 큰 혜

택입니다만,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서로 엇갈릴 염려가 있으니, 본읍(本邑)에 신칙하여 무릇 분표(分俵)할 때는 충분히 조사하여 고르고 자세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한다면, 백성들의 살림을 유족하게 하는 데에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고, 모아들이는 방법도 자연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을 모아들이는 계책을 시임·전임 고을 수령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의 말도 경의 말과 같았다. 지금 이 연석의 여러 의견들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큰 줄기는 그다지 다른 것이 없다. 경은 연석에서 물러나간 뒤에 이 개략(槪略)을 가지고서 척도(尺度)를 정하여, 묘당에서 편할 대로 거행을 할 것은 즉시 결정을 해주고, 품지(稟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즉시 품처함으로써, 영구히 전할 수 있는 실효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左議政蔡濟恭啓言: "**日前以水原新治募入事, 有令廟堂講究以奏之命矣**. 本府居民, 自來窮貧, 舊邑近千戶, 只是蝸殼樣子. 今於移邑之後, 若又如前, 則不幾近於不成貌樣乎? 然勒令所持狹者, 强起大屋, 則雖威之勸之, 決知其行不得矣. 街巷櫛比之要, 莫如別立廛房. 今且募京師富人數三十戶, 給無邊錢一千兩, 就新邑相對起屋, 使有賣買興利之樂, 然後限幾年鱗次還納, 則在朝家別無所損, 在新治有成聚成都之漸. 然而私力之所不可造成者, 瓦子是已. 昔唐韋丹爲江南西道觀察使, 敎人爲瓦屋, 取材於山, 召陶工敎人陶. 聚材瓦於場, 度其費以爲估, 不取贏利. 載食與漿, 親往觀之, 爲瓦屋萬三千七百. 我國財力, 不可比同中國, 韋丹之事, 雖難追躡, 然試以萬兩左右之錢, 出付本州, 燔就瓦子, 賣之於願買者, 切勿取利, 只捧本價, 則瓦屋庶幾可立, 公貨亦不虧本. 都在於道伯與本官措置之如何, 若其生利, 非有別般道理. 邑治旁近, 命一月六場, 雖一分銅, 切勿收稅, 只許交易, 則四方商賈之聞風雲集, 未必多讓於全州·安城之盛. 如此則居民自當樂生, 雖他邑之民, 必不待募而自來矣. 如欲邑治改觀, 恐無出於此." 上問諸宰, 司直金華鎭·李文源·刑曹判書金思穆皆以濟恭言爲是. 司直徐有隣曰: "徙富民, 移場市, 誠爲募民厚生之道, 而至於別立廛房, 以樓院等已例推之, 恐不無京市肆相妨之慮矣." 司直鄭昌順曰: "漢時, 茂陵有徙郡國豪傑之事. 今雖不可徙民移居, 若於平壤·松都·咸興等商賈湊集之處, 募其自願, 許令移居, 則必多有願從之人. 旣令給復間又設科, 儒武之中, 亦宜有願居者. 地是通衢, 人有商利, 則雖不別立廛房, 亦必有列肆繁華之美矣." 京畿觀察使徐有防曰: "廛房一款, 或不無京外相妨之弊." 行副司直鄭好仁曰: "成聚櫛比之要, 莫如募入富民; 募入之道, 莫如使之興起勇赴. 就其先徙之民, 觀其人地, 以相當職拔例調用, 則八方富戶, 固當聞風而來. 廛房場市, 又令設置, 俾得資生, 則不數年, 成大都矣." 副司直洪秀輔曰: "募民裕民之本, 在於輕徭薄賦, 而又資貨利之源, 以爲輻湊之地者, 尤爲要務. 且今番五百結給復, 可使邑民, 耕食十年無稅之土, 則此實無前之大惠, 而但有虛實相蒙之慮, 申飭本邑, 凡於分俵之際, 十分詳覈均精, 俾有實效, 則厚民之力, 無過於此, 而募入之道, 自在其中矣." 上曰: "募民之策, 問於時任前任邑倅, 其說輒如卿言. 今筵僉議, 略有參差, 大體無甚異同. 卿於筵退後, 以此槪略, 作爲尺度, 自廟堂從便擧行者, 須卽決給, 不可不經稟者, 亦卽稟處, 俾有實效, 可傳永久."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9일(경오) 4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부의 득정·진남루 등의 창고와 행랑이 완성되다
수원부의 득중정(得中亭)·진남루(鎭南樓)·좌익문(左翊門)·강무당(講武堂)·와호헌(臥護軒) 및 창고와 행랑이 완성되었으니, 모두 3백 40여 칸이었다. 연악(宴樂)을 내려주어 낙성

을 축하하게 하였다.
○水原府得中亭·鎭南樓·左翊門·講武堂·臥護軒及倉廒·廊宇成, 凡三百四十餘間. 賜宴樂以落之.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5월 7일(정해) 2번째기사>

경제/건설

진휼청의 돈으로 화성의 궐리사가 완공되다.

화성(華城)의 궐리사(闕里祠)가 완공되었다. 진휼청의 창고에 유치된 돈 2천 민(緡)을 떼어 보내서 사우(祠宇)를 세우는 데 든 비용을 갚게 하였는데, 이는 비변사가 아뢴 말을 따른 것이다.
○華城闕里祠成. 劃送賑恤廳留庫錢二千緡, 俾報營建之費. 從備邊司啓也.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5월 12일(계묘) 4번째기사>

경제/건설

시임·원임 대신과 각신, 전 수원 부사 조심태를 불러 접견하다

시임·원임 대신과 각신 그리고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를 불러 접견하였다. 상이 심태에게, 수원에 성을 쌓는데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물었다. 심태가 아뢰기를,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두 군영에 딸린 향군(鄕軍)을 10년 동안 1개 초(哨)를 줄이면 해마다 근 1만 냥의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향군에 있어서는 번들러 올라오는 폐단이 없어지고 본영으로서는 폐단이 될 근거가 없어지는 일이니, 우선 대강 수효를 충분히 토의해 보고 다시 여쭙도록 하라." 하였다.
○乙巳/召見時原任大臣·閣臣·前水原府使趙心泰. 上問心泰, 水原築城物力, 當何以拮据? 心泰奏: "禁御兩營鄕軍, 限十年停減一哨, 則每年可得近萬財." 上曰: "在鄕軍除上來之弊, 在本營無爲弊之端. 先以大綱數爻爛商, 更稟也."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1월 16일(을사) 1번째기사>

경제/건설

영중추부사 채제공, 비변사 당상 정민시·심이지 등을 소견하다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비변사 당상 정민시(鄭民始)·심이지(沈頤之)·윤행임(尹行恁)·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였다. 상이 제공에게 이르기를, "**수원(水原)의 성 쌓는 역사를 경이 그곳의 유수(留守)로 있을 때 경영하다가 중간에 정승에 임명됨으로 인하여 중지하고 말았다.** 나는 생각하기에 10년 정도면 완공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만일 감독으로 적임자를 얻으면 어찌 꼭 10년이나 끌겠는가. 모든 일은 규모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는 미리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영은 또 적임자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경들을 특별히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나무·돌·재물·인력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원래 국가의 경비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예컨대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 속한 정번군(停番軍)이 무는 돈을 가져다가 쓰면 공사간에 조금도 구애될 것이 없을 듯한데 경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본부에 관계되는 일에 반드시 국가의 경비를 쓰지 않으려는 성상의 뜻을 신들이 언제나 흠앙하는 바입니다. 정번군이 무는 돈을 가져다가 쓰는 것은 정말 지극히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정번군이 무는 돈이 몇 꿰미나 되겠느냐고 물으니, 심태가 아뢰기를, “한 해에 2만여 냥은 될 것이니 10년을 한정하여 계산하면 25만 냥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컨대 40, 50만 냥 정도의 재물이 있으면 넉넉히 준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제공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30만 냥이면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고, 심태는 아뢰기를, “이 역사에 들어갈 물력을 아직 헤아릴 수 없지만 신의 생각에는 30만 냥을 가지고는 부족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선 이 액수에 따라 이리저리 애써 모아보겠지만 적임자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누가 적합하겠는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훈련대장 외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을을 옮길 때부터 바친 공로가 이미 많았고 또 감독하는 일에도 익숙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에 있으면서 감독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곳에 가 머물면서 시설하는 일을 주관해야 되겠는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주인(主人)이 되어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제공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사체가 중대하여 대신이 총괄해서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일은 경 말고는 적임자가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돌 뜨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데 돌 뜨는 곳이 고을 소재지에서 몇 리나 되는 거리에 있는가?” 하니, 심태가 아뢰기를, “바로 3리나 7리 정도의 지점인데 길이 평탄하여 운반하기가 쉽습니다.” 하고, 제공은 아뢰기를, “**팔달산(八達山) 건너편의 지역은 읍과의 거리가 3리에 지나지 않고 석재(石材)가 많으면서도 좋아서 무진장하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바로 **공석면(空石面)**이기에 신은 항상 신명이 이를 감춰두었다가 오늘을 기다린 것은 모두가 전하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마침내 심태를 감동 당상(監董堂上)으로 삼고 제공에게 총괄하여 살피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 딸린 번상군(番上軍)에게 10년을 한정하여 매번(每番)에 1초(哨)씩을 감해서 번서는 대신 내는 돈을 성 쌓는 역사에 쓰도록 하였다. 심태가 아뢰기를, “성을 쌓는 데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의당 먼저 강론하여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대략 남쪽과 북쪽은 석성(石城)으로 할 것과 동쪽과 서쪽은 토성(土城)으로 할 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모아져 결정되어야만 앞으로의 공사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성의 제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성가퀴와 문루(門樓)는 마치 새의 날개나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성터는 산세가 험준하지 않고 들이 평평하기 때문에 곡성(曲城)과 문루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이니 대신에게 자문하소서.”

하니, 상이 제공에게 물었다. 제공이 아뢰기를, “동쪽과 서쪽도 남쪽과 북쪽의 구조에 따라 똑같이 돌로 쌓아야 되고, 성은 있는데 성가퀴와 문루를 설치하지 않으면 성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이 심태에게 명하여 수원에 달려가서 지형을 살펴보고 그 성터를 정하게 하였다.**

○乙丑/召見領中樞府事蔡濟恭·備邊司堂上鄭民始·沈頤之·尹行恁·趙心泰. 上謂濟恭曰: “**水原**築城之役, 卿居留時, 有所經紀, 而間因拜相, 未免中止. 予則以爲限十年可以告訖, 而若監董得人, 則何必拖至十年? 凡事莫如先定規模, 規模莫如預爲經紀, 經紀又莫如得其人. 今日特召卿等者, 此也. 木石財力, 予意本不意煩費經用. 若以禁御兩營停番軍錢取用, 則於公於私, 少無所礙. 卿等以爲何如?” 濟恭曰: “凡係本府事, 必欲不煩經費之聖意, 臣等之常所欽仰者. 停番錢取用, 果極便好.” 上問停番錢當爲幾緡, 心泰曰: “一年當爲二萬餘兩, 限計十年, 則爲二十五萬兩.” 上曰: “如得四五十萬財, 則優可告功耶?” 濟恭曰: “臣意則三十萬兩, 足

可經紀矣.” 心泰曰: “所入物力, 姑未可料度, 而臣意則三十萬兩, 似不足矣.” 上曰: “姑依此數拮据, 而得人最難. 誰可合者?” 濟恭曰: “訓將外, 無可合者. 此人自移邑時, 效勞旣多, 且慣熟於監董之事.” 上曰: “當在京監董乎? 抑或往留而主管設施乎?” 濟恭曰: “莫如作爲主人矣.” 上頷之, 復謂濟恭曰: “事體重大, 不可無大臣摠察. 此則卿外無人矣.” 上曰: “浮石最爲急務. 浮石之所, 距邑治幾里?” 心泰曰: “卽三里七里之地, 而道路平坦, 易於運輸.” 濟恭曰: “八達山越邊之地, 自邑相距, 不過三里, 而石材旣優且好, 可謂無盡藏矣. 其地名卽空石面. 臣常以爲, 神慳鬼秘, 以待今日者, 皆是聖孝格天而然矣.” 上遂命心泰爲監董堂上, 濟恭主管摠察, 禁御兩營番上軍, 限十年, 每番各減一哨, 以其費用於城役. 心泰啓言: “設築凡節, 宜先講定. 槪南北邊石城及東西邊土築, 歸一停當, 然後來頭工役, 可無掣礙之端. 且以城制言之, 雉堞譙樓, 便若鳥翼車輪, 不可或廢. 今此城址, 山勢不峻, 郊野案平, 曲城譙樓, 尤宜得力. 請下詢大臣.” 上詢濟恭, 濟恭曰: “東西邊亦當依南北邊, 一體石築有城, 而不設雉堞譙樓, 則與無城同, 不可闕.” 上命心泰, 馳詣**水原**, 看審形便, 定其基址.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2월 6일(을축) 1번째기사>

경제/건설

감동 당상 조심태와 경기 관찰사 서용보를 소견하다

감동 당상(監董堂上) 조심태(趙心泰)와 경기 관찰사 서용보(徐龍輔)를 소견하였다. 상이 심태에게 이르기를, “성의 제도에 대하여 옛부터 경륜이 있는 선비들의 논란이 많았지만 취사하고 마름질하는 것은 오직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대저 성을 쌓는 법은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기초가 견고하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나머지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에 성가퀴가 없으면 이는 쓸모없는 성이니 성가퀴는 결코 쌓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들은 옹성(甕城)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성문에 옹성이 없는 것도 쓸모없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옹성도 쌓지 않을 수 없다. 한갓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고 견고하게 쌓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옳지 않지만,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적을 방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병법(兵法)에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하(蕭何)는 미앙궁(未央宮)을 크게 지었고, 또 말하기를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루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꺾이게 하는 것도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안(懸眼)의 제도에 대해서 혹자는 벽돌로 축조한 성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벽돌로 된 성에 이미 현안을 설치하였다면 돌로 쌓은 성이라 하여 어찌 그곳에만 현안을 설치할 수 없겠는가.”

하니, 심태가 아뢰기를, “성에 성가퀴가 없거나 성가퀴가 있는데도 현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성을 지키는 좋은 제도가 아니므로 현안은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에 수원의 읍치(邑治)를 북평(北坪)으로 옮기고 성지(城池)를 건축해야 한다는 논설이 있다**. 1백 년 전에 마치 오늘의 이 역사를 본 것처럼 미리 이런 논설을 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하였다.

○丁卯/召見監董堂上趙心泰·京畿觀察使徐龍輔. 上謂心泰曰: “城制, 自古經綸之士, 多有論難, 取舍裁度, 惟在述者之能. 大抵築城之法, 莫如堅築基址, 基址固然後方可及於其餘制度矣. 城而無雉, 是無用之城, 雉城決不可不築也. 古人莫不以甕城爲重, 門無甕城, 亦可謂無用之城, 甕城又不可不築也. 徒爲觀瞻之美, 而不念堅緻之方, 固不可, 而觀瞻之美, 亦有助於禦敵. 兵

法貴乎先奪人之氣, 故蕭何大治未央宮, 亦曰: '非壯麗, 無以重威.' 然則城樓雄麗, 使觀者奪氣, 亦爲守城之大助. 懸眼之制, 或曰非甓城不可爲, 此則不然. 甓旣懸眼, 則石何以獨不得懸眼乎?" 心泰曰: "城而無雉, 雉而不懸眼, 俱非守城之良制, 懸眼不可不爲矣." 上曰: "柳馨遠『磻溪隨錄補遺』, 有移水原邑治于北坪, 建築城池之論. 百年之前, 預爲此論, 若覩今日事者, 誠亦異矣."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2월 8일(정묘) 1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성 축조에 대해 하명하다

상이 높은 곳에 올라 고을터를 바라보고 곁에 모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본디 허허벌판으로 인가가 겨우 5, 6호였었는데 지금은 1천여 호나 되는 민가가 즐비하게 찼구나. 몇 년이 안 되어 어느덧 하나의 큰 도회지가 되었으니 지리(地理)의 흥성함이 절로 그 시기가 있는 모양이다."

하였다. 인하여 **팔달산(八達山)**에 올라 성 쌓을 터를 두루 살펴보고 상이 이르기를,

"이곳은 산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잡았으니 먼 곳을 살피기에 편리하다. 기세가 웅장하고 탁트였으니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장대(將臺)**라고 이를 만하다. 지금 깃발을 꽂아놓은 곳을 보니 성 쌓을 범위를 대략 알겠으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인가를 철거하자는 의논은 좋은 계책이 아닌 것 같다.

현륭원이 있는 곳은 화산(花山)이고 이 부(府)는 유천(柳川)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堯)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華城)이라고 하였는데 화(花)자와 화(華)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백 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둥그렇게 둘러싸 보호하는 형세가 마치 꽃송이와 같다 하여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천성(柳川城)은 남북이 조금 길게 하여 마치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제 화성과 유천의 뜻을 이미 영부사에게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성을 좁고 길게 하여 이미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고 나면 북쪽 모퉁이의 인가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에 세 굽이로 꺾이어 천(川) 자를 상징한 것이 더욱 유천에 꼭들어맞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아(貳衙)**에 이르러 배종하는 시임과 원임의 대신 홍낙성 등을 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까 팔달산에서 멀리 바라보니 영부(營府)가 웅장하고 여염(閭閻)이 즐비하여 참으로 큰 도회지였다. 5, 6년 안에 취락을 이루고 도회지를 형성하는 것이 이렇듯 빨랐으니 내 마음의 기쁨은 진실로 한량없다. 성터의 형세에 대해서는 이제 막 감독하는 당상관에게 하교하였다. 이 성을 쌓는 것은 장차 억만 년의 유구한 대계를 위함에서이니 인화(人和)가 가장 귀중한 것이다. 또 먼 장래를 생각하는 방책을 다해야 하는데, 아까 성터의 깃발 세운 곳을 보니 성 밖으로 내보내야 할 민가가 있었다. 어찌 이미 건축한 집을 성역(城役) 때문에 철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인화를 귀중히 여기는 뜻이 아니다. 성지(城池)의 남쪽과 북쪽 사이의 거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가까운 결점이 있으니, 먼 장래를 생각하는 방도에 있어 더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산과 유천이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억만 년 유구한 태평 시대를 여는 기업이 될 것이다. 성을 쌓을 때 버들잎 모양을 본뜨고 내천 자의 형태를 모방하여 구불구불 돌아서 기초를 정하고 인가들도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해야 할 터인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낙성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계책은 신들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이아의 뒤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평지 가운데서 이 언덕이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이아의 터를 만들었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하였다. 이어서 일자문성(一字文星)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이 의논드리기를, “이곳의 일자문성은 겹으로 되어 있고 **용연(龍淵)**의 모래 삼각주[砂角]가 왼쪽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옷깃을 여민 형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문성(內文星)에 성을 쌓되 성의 형태를 조금 축소하여 모래 삼각주에 뒤지게 하고 외문성(外文星)에는 따로 토성(土城)을 쌓아 내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유수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이 성을 곧장 외문성에 쌓되 용연의 모래 삼각주와 내문성을 넘어가게 해서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인하여 용연에 나아가 **귀봉(龜峰)**을 가리키면서 심태에게 이르기를, “오른쪽은 귀봉이고 왼쪽은 용연이어서 거북과 용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니 그 이름 역시 우연하지 않다.”
하였다. 대체로 용연 기슭은 앞면이 석벽(石壁)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작은 소(沼)가 있는데, 그 물은 **광교산(光敎山)**에서 흘러나와 석벽 아래에 이르러 물이 돌아흐른다. 이곳에서 휘돌아나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읍치(邑治)를 경과하는데, 기슭을 따라가다가 꺾여지는 곳에 장차 다리를 걸쳐놓고 성을 쌓아 수문(水門)을 만들려는 것이다. 상이 심태에게 이르기를, “일자문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 더욱 두껍고 공고한 기상을 보겠고, 용연의 기슭이 용의 머리로 되어 있고 석벽이 웅크린 것처럼 솟아 있으니 풍기(風氣)가 응결되어 매우 활기찬 기상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겸하여 수해(水害)를 막는 공이 있게 되었으니 마치 이 성쌓는 역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인 듯하다. 지리와 지세가 매우 좋아서 오늘 살펴본 뒤로 나의 마음은 매우 만족스럽다. 성을 쌓는 역사의 큰 줄거리는 이러하니, 예컨대 여기에 윤색(潤色)을 더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를 맡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미륵당 고개[彌勒堂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쉬면서 승지에게 이르기를, “언제나 현륭원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나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더디어지고 **배양재[陪養峙]**를 지나 이 고개에 이르면 절로 고개를 들고 서성거리게 된다.”
하였다. **사천(沙川) 행궁**에 이르러 잠시 쉬고 과천 행궁에 이르러 오늘밤부터 내일밤까지 통행금지를 완화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성문은 관광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기다려 빗장을 잠그라고 명하였다. 망해정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환궁하니 밤 2경이 넘었다.
○癸卯/上登覽邑基, 謂左右曰: “此地本是空曠大野, 人家僅爲五六戶, 而今則千餘民戶, 屋舍櫛比, 不出數年, 居然一大都會. 地理之興旺, 自有其時矣.” 仍登八達山, 周覽築城基址. 上曰: “此地占得山頂最高處, 便於瞭望. 氣勢雄爽, 可謂天造地設之將臺矣. 今見揷旗處, 則築城範圍, 可以領略, 而至於北里人家毁撤之論, 終非計之得者. 園所, 花山也; 此府, 柳川也. 取華人祝聖之意, 名此城曰**華城**, 花與華通. 花山之義, 蓋以八百峰巒, 拱護一岡, 圓正如花瓣之謂也. 然則柳川之城, 南北稍長如柳葉, 則實有意義矣. 昨以**華城**·柳川之義, 已有諭及於領府事者, 而此城挾而長, 旣似柳葉, 則於北角人家相錯處, 三曲折以象川字, 豈不尤襯於柳川耶?.” 至貳衙, 召見陪從時原任大臣洪樂性等. 上曰: “俄於八達山瞭望, 則營府之雄偉, 閭閻之櫛比, 眞大都會也. 五六年之內, 成聚成都, 如是之速, 予心欣喜, 實爲不淺. 城址形便, 才有下敎於監董堂上者, 築斯城也, 將以爲億萬年悠久之計, 人和爲貴, 且當務盡經遠之謨, 而俄

見城址竪旗處, 則民家之當出城外者, 豈可以已建之家舍, 因城役撤去乎? 此非人和爲貴之意也. 至若城池, 南北之相距, 亦有太近之歎. 經遠之道, 尤不當若是. 花山與柳川相望, 爲我家萬億年太平悠久之業. 築城之時, 象柳葉之形, 倣川字之樣, 逶迤定基, 而人家亦宜入諸城內, 卿等以爲如何?" 樂性等曰: "聖籌非臣等所及也." 登衙後小園, 謂諸臣曰: "平地中忽起此阜, 爲貳衙之基, 豈不異哉?" 遂至一字文星, 諸議皆曰: "此處一字文星爲兩重, 龍淵砂角自左內入爲合襟. 築城於內文星, 少縮城形以讓砂角, 而外文星則別築土城, 以護內城爲宜." 上謂留守趙心泰曰: "此城直築於外文星, 跨越龍淵之砂, 與內文星幷入城裏, 則好矣." 仍詣龍淵, 指龜峰, 謂心泰曰: "右爲龜峰, 左爲龍淵, 龜龍相對, 名亦不偶矣." 蓋龍淵之麓, 前面爲石壁, 下臨小潭, 水自光敎山來, 至石壁下滙焉. 迤出自北而南過邑治, 其循麓屈折處, 將跨橋築城爲水門者也. 謂心泰曰: "(文)〔一?〕字文星之兩重, 益見完厚鞏固氣像, 龍淵之麓爲龍頭, 而石壁之蹲峙, 可見風氣鍾結, 甚有精神, 兼有捍水之功, 有若爲此役設施者然. 地理地勢, 十分恰好. 今日看審之後, 予心充然有得矣. 城役之大綱領如此, 若夫潤色之, 則在述者之能耳." 至彌勒堂峴, 下馬少憩, 謂承旨曰: "每於園幸回鑾, 不覺吾行之遲遲, 過陪養峙及此峴, 自爾延佇矣." 至沙川行宮少憩, 至果川行宮, 命今夜至明夜弛禁. 仍命城門, 待觀光人畢入後下鑰. 至望海亭少憩, 還宮, 夜已二鼓矣.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1794) 1월 15일(계묘) 1번째기사>

경제/건설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수원성을 쌓는데 승군을 사용하자 건의하다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국가에 큰 역사(役事)가 있을 경우 백성을 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통용되어 온 관례입니다. 공자(孔子)도 역시 '백성을 시기 적절하게 부린다.'고 하였지 언제 백성을 부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은 국가의 대사이므로, 일의 체모로 말한다면 나라가 백성들에게 역사를 맡기지 않을 수 없고 도리로 말한다면 백성이 나라를 위하여 부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상께서 백성을 너무 아낀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노역에 지치는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백성을 적절히 부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계시니, 이는 벌써 '사랑한다면 수고롭게 시키려 해야 한다.'는 의리를 저버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승군(僧軍)의 경우 더더욱 이런 일에 쓰기에 합당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백성과 승군을 묘당으로 하여금 그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감안하고 그 수효의 많고 적음을 균등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며칠동안 성역에 부역하도록 조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사세가 이러함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본부의 성역에 기어코 한 명의 백성도 노역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하였다.

○領中樞府事蔡濟恭啓言: "國有大役, 則不得不使民, 有國通行之例也. 聖人亦曰: '使民以時.' 曷嘗曰勿使民乎? 今番**華城**城役, 國之大事也. 以事體言之, 國不可不使民知役, 以道理言之, 民不可不爲國趨事, 而我聖上, 以如傷若保之意, 恐有一夫勞頓之弊, 尙不下量宜使民之令, 已有違於愛之欲其勞之義, 而至若僧軍, 尤是合用於此等處者. 臣意則民與僧, 竝令廟堂, 量其道里近遠, 均其數爻多寡, 使之限幾日調赴於城役, 恐是不可已之事." 上曰: "不待卿言, 豈不知事面之若此, 而本府城役, 必欲不勞一民, 予意有所在矣."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1794) 5월 22일(무신) 2번째기사>

경제/건설

더위를 씻어주는 척서단(滌暑丹) 4천 정을 수원성 쌓는 곳에 내려주다

새로운 처방의 척서단(滌暑丹) 4천 정(錠)을 화성(華城)의 역소(役所)에 내려주고, 전교하기를, "불볕 더위가 이 같은데 성역처(城役處)에서 공역을 감독하고 공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끙끙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밤낮으로 떠오르는 일념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 이러한데 어떻게 밥맛이 달고 잠자리가 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축여 주고 더위먹은 자의 열을 식혀 주는 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따로이 한 처방을 연구해 내어 새로 조제하여 내려보내니, 장수(匠手)·모군(募軍) 등에게 나누어 주어서 속이 타거나 더위를 먹은 증세에 1정 또는 반 정을 정화수에 타서 마시도록 하라. 이 밖의 구료할 처방도 각별히 유의하여 구중궁궐에서의 염려를 덜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頒新方滌暑丹四千錠于華城役所. 敎曰: "炎熱如此, 言念城役處董役赴役人衆之矻矻喘喘之狀, 宵旰一念, 不能晷刻暫弛, 而食豈甘·寢豈便乎? 然雖如是懸念, 而何益於中暍者之潤肺, 飮暑者之滌熱乎? 另究一方, 新造下送, 分給匠手·募軍等處, 中暍·飮暑之類, 或調一錠·半錠於井華水喫之. 外此救療之方, 各別留意, 以紓九重之念."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1794) 6월 28일(계미) 4번째기사>

경제/건설

경모궁에 전배한 뒤 차대하여 화성 쌓는 문제를 논의하다

경모궁에 전배한 뒤에 재실에서 차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들을 인견한 것은 수원의 성쌓는 공사에 대해 묻고자 해서이다.** 당초 성 쌓는 공사를 시작한 것은 본부가 소중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결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인데,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전에 없던 흉년을 만나 백성들 사정의 황급함이 가을, 겨울에도 이와 같으니 내년 봄의 사정을 알 만하다. 지난번 위에서 스스로 어공(御貢)을 절감하는 일을 가지고 연석에서 하문하였던 것은 대개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방도를 다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성쌓는 공사를 정지하는 것이 현재 황정(荒政)의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공사는 민력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니, 흉년에 먹을 것 없는 백성들이 도리어 이에 힘입어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중지한다면 일꾼들의 실망이 오히려 클 것이다. 또 이 성은 소중한 점이 있으니 사소한 일로 갑자기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고 한다.

그러나 내 뜻은 그렇지 않다. 소중한 것으로 말하자면 실로 원소(園所)의 공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값을 주고 일꾼을 고용하기 때문에 비록 민사(民事)에 방해가 없다고는 말하나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한결같이 공사를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여름 동안 특명으로 공사를 정지했던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이제 생각해보건대, 여러 도시에서 흉년을 알리고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부세를 견감하고 보호해줄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를 일으켜 운반하고 쌓는 일을 행한다면 결국 이는 행해질 수 없는 정사가 될까 걱정된다. 하물며 백관의 녹봉과 군인들의 봉급에 드는 앞으로의 경비가 구차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성쌓는 공사가 비록 경비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것을 미루어 저것에 보태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른바 공사를 정지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공사를 정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들으니 남문과 북문의 공사는 자못 두서가 잡혔다고 하니 내년 봄 현륭원에 행차할 시기까지 거의 공

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사를 마친 뒤에 일단 정지하여 감독과 일꾼과 공장들로 하여금 1, 2년 동안 휴식하게 하고, 재력이 모아져 여유가 생기거든 그런 뒤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들과 공장들은 옛날 맡았던 일을 그대로 시켜서 시종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니,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의 공장과 모집한 일꾼들은 팔도에서 모은 사람들인데, 지금 만약 돌려보낸다면 몇 년 후에 다시 모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 자원하여 공사에 나와 입에 풀칠하고 몸이나 겨우 가리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명줄이 관계된 것인데, 공사를 중지하고 돌려보낸다면 그 낭패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성쌓는 공사도 흉년을 구제하는 한 가지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를 세내어 돌을 운반하고 시설한 것이 적지 않은데 갑자기 중지한다면 훗날 물력의 소비는 반드시 처음보다 배가 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성쌓는 공사는 반드시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유수도 큰 공사를 이미 시작했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그만두면 사람들이 듣고 좋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재력이 결핍된 시기를 당하여 급하지 않은 일에 관계된 것으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공사를 어찌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마는 당초 이미 10년을 기한으로 잡았으니 반드시 시일이 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인과 모집한 일꾼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니, 좌의정 김이소,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성 쌓는 공사는 비단 소중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일의 형세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중지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나누어줄 녹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근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것과 이것은 각기 다른 일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성쌓는 공사는 흉년에 조금도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癸酉/展拜于景慕宮, 次對于齋室. 上曰: "今日引見卿等, 欲問**華城**城役事也. 當初城役之創施, 爲本府之有所重也. 故決意始役, 而顧今歉荒無前, 民情遑急, 秋冬如此, 則來春可知. 向者以上自御供節減之事, 詢及筵中, 蓋出於苟利於民, 靡不用極之意. 予則以爲城役之停止, 爲目下荒政之一大先務, 人皆曰: '是役也, 不煩民力, 給價雇軍, 荒歲無食之民, 乃反賴此而糊口, 今若中止, 則役夫輩之失望, 反有甚焉. 且是城也, 所重有在, 不可以些少事端, 遽然停止.' 予意則不然. 以所重言之, 則實有間於園所之役, 且給價雇軍, 雖曰無妨於民事, 而祈寒盛暑, 有難一例董役, 夏間之特命停役, 良以此也. 顧今諸路告歉, 民情遑急, 一邊講蠲減懷保之策, 一邊行興作運築之役, 終恐是行不得之政. 況百官之頒祿·軍兵之支放, 前頭經用, 苟簡可知. 今此城役, 雖不關於經費, 而亦不無推此補彼之道. 予所謂停役者, 非謂卽今停役也. 聞南北門役, 頗有頭緖云, 趁明春園幸之時, 則庶可訖工. 此役訖後, 姑爲停止, 使看役及役軍工匠輩, 休息一二年, 以待財聚力裕之後, 更爲始役, 而董役人及工匠, 仍舊任使, 蒙終始之惠, 不亦宜乎?" 領中樞府事蔡濟恭曰: "此役之中止甚重難. 目今工匠募軍, 自八路來聚, 今若放遣, 則數年之後, 恐難復合. 且自願赴役, 餬口庇身者, 在渠輩命脈所關, 停役遣歸, 則狼狽當如何? 城役亦爲救荒之一端, 且貰牛運石, 施設不少, 而遽然中止, 則日後物力之費, 必倍於初矣." 上曰: "民皆曰: '城役必不可止.' 留守亦以爲: '大役旣始, 遽爾中撤, 則亦有妨於聽聞.' 予則曰: '今當公私匱乏之時, 凡係不急之務, 可已則已.' 此役豈可曰不急之務, 而當初旣限以十年, 則不必時日爲急, 且工募輩之旣往還來, 何難之有哉?" 左議政金履素·右議政李秉模曰: "城役非但所重之有在, 雖以事勢言之, 中止實難. 頒祿之不足, 非不可悶, 而區劃各異. 以臣愚見, 城役少無害於荒年矣."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1794) 10월 19일(계유) 1번째기사>

경제/건설

화성의 공사를 정지하는 일에 관해 윤음을 내리다

수원성의 공사를 정지하는 일에 대한 윤음을 내렸다. "**수원성의 공사가 중요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정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아, 선왕의 원침(園寢)을 이곳에 모시면서부터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켜 체모를 높였고 행궁을 두어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았다. 성과 못을 설치한 것은 이곳이 기호 지방의 요충지이기 때문이 아니고 5천이나 되는 많은 병마가 있기 때문도 아니다. 이에 경사(卿士)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재용의 형편을 묻지도 않은 채 경영하기 시작하여 성을 쌓고 못을 팠는데, 남북으로 지은 누각과 망루가 이제 바야흐로 준공을 고하게 되었다. 만일 흉년이 들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면 이 공사는 미루는 일 없이 계속 진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남과 경기 지역은 가을이 되어서도 백성들이 잇따라 굶주림에 쓰러지고 있으며 서북 지역의 변방 고을들도 양곡을 대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궁과 자전에 바치는 어공조차도 오히려 자전의 분부를 받들어 정지했고 보면 성 쌓는 공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연 차례가 있는 법이니, 이것은 정지하면서 저것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견이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옳지 않음을 알 것이다. 더구나 어용으로 바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재물에 불과한데도 백성들과 동고 동락한다는 의리를 따라 지출을 절제함으로써 백성의 재물로 백성을 돕도록 하였다. 하물며 축성 공사에 드는 물력은 매우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성 쌓는 공사에 드는 비용은 없으면 만들어 내면 되고 황정(荒政)에 필요한 것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진휼해 주면 되니, 판연히 다른 두 가지 일로 각기 상관이 없다.' 고 말하지 말라. 한 나라의 재화는 일정한 수가 있어서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밖에 있지 않으면 안에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이는 농민들이 한 해를 꾸려나갈 양식이 아니면 백성들에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도록 진휼해 주어야 할 밑천이다.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으며, 백성들을 진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우선 너희들의 농사짓는 것과 진휼하는 일은 놔두고 나의 성 쌓는 일에 종사하라.' 한다면 인화(人和)와 지리(地利)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 경중의 구분이 아마도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은 다른 해와는 다르니 함께 경하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널리 베푸는 데 힘써서 세금과 조적(糶糴)을 평년의 반으로 줄이고자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볍게 해주고 덜어주어 백성의 힘을 늦추어주면서 한편으로는 백성의 고혈을 긁어내고 발라내어서 그 이익을 구한다면 비록 관중(管仲)으로 하여금 재화를 유통시키고 유안(劉晏)으로 하여금 부세를 관리하게 하더라도 백성을 병들게 하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다. 이것이 어찌 자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도리이겠는가.

설사 돈과 곡식을 특별히 마련해 내어서 골격이 며칠 되지 않아 훌륭하게 이루어지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우환이 온 나라에 한창 급하고 공사의 구령 소리가 온 부(府) 안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저 처자를 부양하는 잔약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눈흘기면서 '우리 임금은 어찌하여 성 쌓는 데 쓰는 마음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베풀지 않으며, 성 쌓는 데 드는 재물을 백성들을 살리는 데로 옮겨 쓰지 않는가.'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구중궁궐의 광명한 불빛이 헐벗은 백성들은 비추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가퀴만 비추는구나.' 라고도 말하지 않겠는가. 또 '성은 올해도 쌓을 수 있고 내년에도 쌓게 할 수가 있으며 10년

까지 끌 수도 있지만 백성들은 하루 굶기고 이틀 굶기어 한달까지 참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성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응대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감히 옛날 선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서 행차하는 길에 곡식을 밟지 말도록 했던 뜻을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은 '흉년에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구휼을 겸하는 것이니,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행한 고사와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 지역을 다스린 행적에서 살펴서 실행할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다만 일개 수령이나 장수로서 한 고을, 한 진을 구제할 수 있는 정사였을 뿐이다. 지금 나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까이는 도성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멀리는 아득한 바다와 변방 지대에 이르기까지 노약자나 부녀자 · 절름발이 · 귀머거리 · 벙어리 할 것 없이 다 나의 적자가 아닌 이가 없다. 이미 저 목을 빼고 바라는 천만이나 되는 무리들로 하여금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는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일개 성 쌓는 노역에서 품팔이 하는 댓가나 받아 먹고 살게 한다면 그곳에 이르러서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토목 공사를 일으키지 않고 제사에도 하등의 희생을 쓴다는 것을 『예기』에서 들었고, 흉년에는 대사(臺射)에 장식을 하지 않고 도로를 닦지 않는다는 것을 『춘추전』에서 들었다. 크고 작은 일이나 권도(權道)든 상도(常道)든 간에 처지에 따라 방도를 달리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오늘날의 방도는 황정(荒政)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는 것이 제일 나으니, 비록 한 톨의 쌀이나 한 치의 베와 같은 하찮은 물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서 혹은 농사짓는 데에 대주고 혹은 진대할 밑천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병약한 백성들이 다 회복되고 나 또한 자리에서 편안할 것이며 하늘도 또한 편안함을 내리어 풍년이 들 것이다. 노나라는 삼수(三遂) 지역의 백성들까지 스스로 이르렀고 주나라는 백도(百堵)를 다 지었으되 인부들은 즐거워하며 담장을 높이 쌓았다.

조처를 온당하게 하면 기상이 편안해지는 법이니 인심이 향하는 바가 성과 함께 굳건해질 것이다. 어찌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백 대의 수레로 실어나르고 천 마리의 소로 운반해가며 더위와 추위도 가리지 않고 넉넉하고 모자라는 것도 돌보지 않은 채 백성들의 힘과 재력을 다 소모해가며 미치지 못할 듯이 독촉하고 내몰아야만 하겠는가.

어공으로 바치는 것을 정지한 것은 우리 자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요, 성 쌓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원침(園寢)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성인이 다시 나오더라도 결코 그가 내 말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본부의 흉년을 구제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요량해둔 것이 있다. 성의 뒷대는 마치 나무에 뿌리가 얽혀 있는 것이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아 견고하고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년 봄 지맥이 풀릴 즈음에 북쪽 성 밖의 가깝고 척박한 땅 중에 그 깊이를 살펴봐서 한 길이나 반 길쯤 파내는데 대략 백 곡(斛) 정도의 씨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헤아려 정하고, 그런 뒤에 그 진흙을 거두어서 성 몸체에다 붙여서 5마리의 말과 2대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땅을 종횡으로 구획을 정리한 다음 깊이 갈고 김매어 다스린다면 척박한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 수 있어서 정국(鄭國)이 경수(涇水)를 끌어댄 것과 사기(史起)가 다스린 업(鄴) 지역5733) 처럼 몇천 경이나 되는 성곽 근처의 좋은 땅을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한두 해도 안 되어서 장차 사람들이 삽을 메고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저수지를 터서 물을 내리는 좋은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공사를 할 때에는 품삯을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짐을 단위로 해서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둔다면 강한 자는 넉넉히 백전을 취할 것이요 약한 자도 제 한몸 가리기에는 족할 것이다. 이 어찌 다만 부민(府民)뿐이겠는가. 동서 남북의 적당한 거처없이 품팔이 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소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이들이 혹은 움집을 짓고 혹은 가게를 차려 술이나 밥을 팔아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꾼다면 이 또한 홀아비와 과부의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성은 만세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정해질 것이고, 백성은 만여 호가 기름진 땅을 얻을 것이며, 창고에는 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니, 일거에 모든 이익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어찌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너희 수원의 성 공사를 감독하는 신하들은 이 유시를 조용히 따라서 모두 잘 살피기 바란다.**"

○乙酉朔/停**水原**城役. 綸音. 若曰: 華城城役, 有所重也, 而其停亦爲所重也. 粵自妥奉園寢, 陞留府, 以尊體貌; 置行宮, 以寓瞻依. 城池之設, 非爲畿湖要衝之地, 非爲五千兵馬之衆也. 於是謀不及卿士, 財不問出入, 經之營之, 築斯鑿斯, 南北樓櫓, 行將告功. 苟使歲不荒民不饑, 是役也有進無退而已. 顧今三南·畿甸, 方秋顚連, 西北邊郡, 亦奏艱食矣. 殿宮獻御, 猶且奉慈敎而停免, 則城役雖重, 自有層節, 此停而彼不停, 不待識者, 而知其不可矣. 況玆獻御之用, 恰不過百包千緡, 特循投醪之義, 撙節支計, 以民補民, 何況城役物力之以萬萬計者乎? 莫曰城役所費, 將無作有, 荒政所需, 發倉振廩, 判若兩岐, 各無相關. 一國財貨, 只有此數, 不在上則在下, 不在外則在內. 若非耕民嗣歲之糧, 卽且賑民糊口之資, 不耕胡穫, 不賑胡活, 而今乃曰姑舍汝耕賑, 只從我城役云爾, 則人和地利之分, 恐不當若是. 明年異於他年, 同慶之心, 務欲博施, 稅糴之減, 幾半常年矣. 一邊輕之蠲之, 以紓其力; 一邊榷之剔之, 以求其益, 雖使管仲通貨, 劉晏治賦, 其不厲民者幾希, 此豈予以慈心爲心之道乎? 設令錢穀特地辦出, 楨幹不日完美, 丘壑之憂, 方急於八路; 呼邪之聲, 不撤於一府, 則惟彼盼盼然保抱瑣尾之民, 其不曰吾君何不以築城之心, 施之保民; 築城之財, 移之活民云乎? 又其不曰九重光明之燭, 不照於鶉衣鵠形, 而偏照乎粉樓雉堞云乎? 又其不曰城可使今年築明年築, 拖至十年, 民不可使一日饑二日飢, 忍及三旬云乎? 到此予雖欲以所重應之, 亦曷敢不仰體昔年愛恤元元, 勿踐輦路禾麥之德意乎? 議者以爲歉年作興, 實兼賙恤, 朱夫子南康故事·范仲淹浙西已跡, 可按而復也. 此特一守一帥, 救得一郡一鎭之政耳. 今予以一國之君, 臨一國之民, 邇而王都甸服, 遐而溟渤塞漠, 老穉婦孺·跛躄喑聾, 莫非予赤子. 旣不能使彼百千萬顒頷之類, 不農不商, 離土離鄕, 纔至坌集, 受傭仰食於一城之役, 則所至而所活者, 當爲幾箇人口? 力役不興, 祀以下牲, 予聞於『禮』; 臺榭不塗, 道途不除, 予見於『傳』. 小大權經之間, 隨處異用, 有若是矣. 爲今之道, 莫如聚會精神於荒政一事, 雖毫米寸帛之微, 可蠲者蠲, 可取者取, 或資於耕, 或歸之賑, 瘡痍畢起, 衽席快安, 而天又降康, 多黍多稌. 魯邦之三遂自至, 周原之百堵皆作, 役夫欣欣, 崇墉屹屹. 使做措便當, 氣象舒泰, 衆心所向, 與城俱固, 何必朝運百車, 暮輸千牛, 不問寒暑, 不顧饒乏, 竭民力秏民財, 督之迫之, 有若不及也哉? 獻御之停, 爲我殿宮而敷惠也; 城役之停, 爲我園寢而敷惠也. 聖人復起, 決知其不易予言. 然本府捄荒之策, 予亦有料量者. 夫城之有後托, 猶木之蟠根, 屋之築址, 不可不堅且厚也明矣. 容待來春地脈融解之際, 若於北城外咫尺斥鹵之壤, 相其淺深, 鑿得一丈或半丈, 量定約播百斛之經界, 然後收其土粘付城身, 俾容五馬兩軌. 卽其地橫縱東南之畝, 深耕而易耨, 則瘠可使肥, 磽可使沃, 而贏得如鄭涇·史鄴之幾千頃負郭良田, 不出一二年, 將見荷鍤成雲, 決渠降雨之美, 而方其役也, 雇直不以日而以負立表, 計遠近而差等, 則强者優取百錢, 弱者足庇一身, 此豈特府民? 南北東西之不適有居, 傭保資生者, 皆可以聞風爭趨, 而或窖或肆, 爲酒爲食, 以其所有, 易其所無, 亦矜寡之利. 夫如是則城則奠萬世不

拔之基, 民則獲萬家如膏之地, 倉則貯萬人足食之糧, 一擧而衆美具, 豈不誠休且美哉? 咨爾華城城役董工之臣, 靜聽此諭, 咸須諦悉.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1월 1일(을유) 1번째기사>

경제/건설

화성의 축성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다

화성(華城)의 축성 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다. 총리사(摠理使)인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호피(虎皮)를 하사하고, **감독한 신하로서 당상관인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는 가자(加資)해 주고**,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에게는 안에서 갑주(甲冑)를 하사하고, **책응한 도청인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동협(鄭東愜)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특별히 감독한 독성 중군(禿城中軍) 김후(金煦)는 곤수로 의망(擬望)케 하고, 부사(府使) 이방운(李邦運) 등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施賞華城城役董工諸臣. 摠理使右議政蔡濟恭賜虎皮, 監董堂上水原留守趙心泰加資, 都廳李儒敬內賜甲冑, 策應都廳水原判官鄭東協準職除授, 別監董禿城中軍金煦閫帥差擬, 府使李邦運等施賞有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3일(을미) 4번째기사>

경제/건설

행궁을 보수하는 물력을 ' 화성 행궁 정리 수성곡' 이라 이름하여 마련하도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행궁(行宮)을 보수하는 물력(物力)을 응당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행(幸行)하실 때의 포진(鋪陳)이나 도배(塗褙) 등의 일을 일단 탁지(度支)에 맡기지 않은 이상 본부(本府)에서 거행케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성첩(城堞)을 수선하고 군영에 보급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서 내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일정량의 곡물을 구획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사(本司)에서 관장하는 곡물 중에서 정곡(正穀) 1만 석(石)과 피곡(皮穀) 2만 석을 기준으로 하고 그곳의 토산물과 곡총(穀摠)에 따라 적당히 마련하여 '**화성 행궁 정리 수성곡(華城行宮整理修城穀)**'이라고 이름붙인 뒤 팔로(八路)에 나누어 배치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조적(糶糴)하여 모곡(耗穀)을 취하는 방도나 이를 팔아 수요에 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로 하여금 본사와 왕복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낸 뒤 영구히 준행케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癸巳/備邊司啓言: "行宮修補物力, 在所當設, 而幸行時鋪陳·塗褙等事, 旣不付度支, 則當自本府擧行. 外此城堞之修繕, 營樣之補給, 皆從此出, 則區劃穀物, 就本司管穀中, 以正穀一萬石·皮穀二萬石爲準, 隨其土産與穀摠, 酌量磨鍊, 名曰華城行宮整理修城穀, 分排八路, 而若其糶糴取耗之方, 發賣需用之道, 請令行宮整理使, 往復本司, 成出節目, 永久遵行. 允之.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4월 13일(계사) 1번째기사>

경제/건설

비변사가 화성 행궁 정리수성곡의 조적 절목을 올리다

비변사가 화성 행궁 정리 수성곡(華城行宮整理修城穀)의 조적 절목(糶糴節目)을 올렸다. 【절목은 다음과 같다. "**화성에 유수(留守)를 두고 나서 또 정리사(整理使)를 겸하게 한 것은 장차 행궁의 수리를 위임하고 성지(城池)의 수선을 책임지우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재력에 대해 아직 조치해 주지 못한 결과 형식과 내용이 서로 부응하지 못하니 사체(事體)로 볼 때 미안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은 건물이 낙성되고 누각과 망루가 완성을 본 뒤이니 더더욱 제때에 강구하여 억만년토록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화성의 일과 관련해서는 경비를 축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 성상의 의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백 칸 되는 건물을 짓거나 몇 천 보(步) 되는 곳을 뚫고 쌓아 올릴 때 일찍이 조금이라도 대농(大農)의 자본을 가져다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행(幸行)하실 때의 접대 비용이나 유생과 무인을 시험보이고 나서 상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별도로 비축해 두었다가 수시로 들여와 쓰곤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행궁을 수리하고 성지를 수선하는 하나의 일로 인해 그만 거꾸로 그동안 해오던 데에 따라 유사에게 마련하여 쓰도록 하거나 이웃 고을의 창고에서 끌어다 쓰도록 한다면 성상의 뜻을 받드는 도리가 결코 못될 것입니다. 삼가 품(稟)하여 떼어주기로 결재를 받은 3만 석의 곡물을 팔로(八路)의 주현(州縣)에 배정한 뒤 그 모곡(耗穀)을 취하여 돈으로 만들고 창고를 설치해 보관하게 하면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가령 곡물을 조적(糶糴)하고 돈으로 만들어 주선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절목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정곡(正穀) 1만 석과 피곡(皮穀) 2만 석을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곡물 중에서 떼어주어 팔로에 골고루 나눠주되 육진(六鎭)과 삼수(三水)·갑산(甲山)은 물론이고 주현의 규모를 감안하여 차등있게 배정한 뒤 그 곡식을 내주고 받아들이면서 모곡(耗穀)을 취하는 한편 이를 내다 팔아 수요에 대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이 곡식은 그 의미가 소중할 뿐더러 수요 역시 모두 정수(定數)가 있으니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늘거나 감축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흉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정퇴(停退)시키거나 견감(蠲減)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은 절대로 거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대로 받아들인 상황을 매년 말에 비변사에 보고하고 **화성부에 공문을 발송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내다 팔 즈음에 차인(差人)이 왕래하다 보면 자연히 폐단이 생길 것이니, 이 곡식에 대해서는 본부(本府)의 교리(校吏)를 보내지 말고 각기 그 도의 감영에서 주관하여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읍(列邑)에서는 내다 파는 데에 따라 편리할 대로 감영에 수송하고 태가(駄價)를 마련해서 모두 모아 **화성부에 옮겨 납입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 이 곡물을 설치한 것은 지극히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 돈으로 만들어 올려보낸 뒤에는 별도로 창고 하나에 쌓아두고 엄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쓸 데에만 쓰면서 수요를 절약하여 새어나가는 폐단을 막음으로써 기필코 저축하는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쓰고 남은 것들은 그 수효를 매년 말에 낱낱이 기록하여 장부를 만든 뒤 비변사와 내영(內營)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궁에서 임금이 사용하는 기용(器用)·집물(什物) 및 도배하고 자리를 깔고 장막을 치는 일 등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종전에 호조에서 거행하던 것들을 일체 정지시키고 본부(本府)에서 가능성있는 수입을 헤아려 전담해서 조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하거나 바꾸는 연한(年限)에 대해서는 일체 정해진 규례(規例)를 따라 시행하게 함으로써 어긋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각종 물품은 원래 공가(貢價)와 시가(時價)가 다른 만큼 참작하여 절충해서 융통성있게 가격을 정해야 할 것인데, 각각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미리부터 경영하여 조치해 둠으로써 써야 할 시기를 당하여 군색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궁을 수리하거나 성첩(城堞)을 보수할 때에는 해야 할 일이 생기는 대로 장계로 보고하거나 연석(筵席)에서 품(稟)한 뒤 회답을 기다려서 거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히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감히 연한을 넘기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유수가 직접 집행하여 단속하면서 가능한 한 절약하게 하고 혹시라도 지나치게 쓰는 폐단이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1년에 들어올 수입을 적당히 헤아려 마련해서 3천 냥(兩)은 행궁의 물력에 소속시키고 2천 냥은 성역(城役)의 물력에 소속시키되, 수리하고 보수할 즈음에 피차간에 족하고 부족한 상황을 살펴서 서로들 조정하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한쪽에만 편중되게 쓰는 걱정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돈으로 환산되는 원래의 숫자가 일단 일정하게 매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치도 대부분 햇수를 띄워 거행하게 되어 있고 보면 지출한 금액을 빼고도 남는 돈이 자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숫자를 계산해서 제해 두었다가 소상하게 기록하여 연말에 장부로 작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원소(園所)의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의 수리 및 홍전문(紅箭門) 내외의 공해(公廨)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완천고(筦千庫)에서 거행하게 하되 역시 수리하는 물력(物力)과는 뒤섞여 쓰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10년마다 행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되 정리소(整理所)의 물력을 따로 책정하여 거행하고 본고(本庫)의 물력은 가져다 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전체 숫자를 회록(會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물품 가격과 수리 및 보수한 연한(年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따로 책자를 만든 뒤 이를 본부에 내주어 영구히 준행토록 하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궁을 수리하고 성지를 보수할 때 감독한 편장(褊將)·비장(裨將) 및 교리(校吏)·공장(工匠)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해 둠으로써 뒷날 근무 태도를 상고해 장려하고 징계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乙未/備邊司進**華城**行宮整理修城穀糶糴節目.【節目: **華城**之設置留後, 又兼整理使者, 將以任行宮葺理, 責城池修繕, 而所需財力, 尙未措置, 名實不副, 事體未安. 顧今棟宇奏功, 樓櫓就完之後, 尤宜及時講究, 俾作億萬年鞏固悠久之圖, 而竊伏念, **華城**凡事之不煩經費, 聖意有在. 幾百間營建, 累千步鑿築, 曾無纖毫之取資於大農, 而以至幸行時供億·儒武試賞格, 亦皆別爲蓄貯, 隨時入用, 則乃於葺理修繕之一事, 反致因循於有司之辦備, 牽連於隣邑之倉厥者, 甚非所以仰體之道. 謹稟睿裁, 劃得三萬石穀物, 分置八路州縣, 取耗作錢, 設庫典守, 以爲需用之地, 而若其穀物糶糴, 錢貨拮据等條件, 別成節目, 永久遵行. 正穀一萬石·皮穀二萬石以備局句管劃出, 均排於八路, 而六鎭·三甲外, 隨其州縣大小, 差等分置, 以爲斂散取耗, 發賣需用之地. 一, 此穀不但有所重, 且其需用, 皆有定數, 不可以豐歉, 有所盈縮, 雖値災歲, 切勿擧論於停減之中, 而準捧形止, 每歲末修報備邊司, 文移**華城**府. 一, 發賣之際, 差人往來, 自有弊端. 此穀則勿送本府校吏, 令各其道監營, 主管擧行, 而列邑則隨其發賣, 從便輸送於監營, 磨鍊駄價, 都聚運納於**華城**府. 一, 今此設置所關至重, 作錢上來之後, 別峙一庫, 嚴其典守. 務從稱當, 節其需用, 以防滲洩之弊, 期有蓄貯之效, 而其用遺在數爻, 每於歲末枚擧, 修成冊報于備局及內營. 一, 行宮所御器用·什物, 塗褙鋪陳·屛帳等屬, 勿論大小, 從前戶曹擧行者, 竝爲停止, 自本府量其容入, 專擔措備, 而新備及改備年限, 一從定例施行, 俾無違越之弊. 一, 諸般物種, 自有貢價時直之不同, 參量折衷, 推移定價, 各隨年限久近, 預先經紀措備, 俾無臨時窘束之弊. 一, 行宮葺理·城牒修補等事, 狀聞或筵稟, 待回下擧行, 雖微細事, 毋敢擅便, 亦無敢違越年限, 而工役之費, 該留守親執句檢, 務從節約, 毋或有恣濫之弊. 一, 一年應入酌量磨鍊, 三千兩屬之行宮物力, 二千兩屬之城役物力, 當其葺理修繕之際, 察其彼此足不足, 互相推移, 毋或有偏用之患. 一, 作錢元數, 旣有每歲恒定, 諸種措備, 且多間年擧行, 則其所用下, 自有剩餘. 此則計數除置, 消詳入錄於歲末成冊. 一, 園所丁字閣·碑閣修理及紅箭門內外公廨, 依前自筦千庫擧行, 亦勿混用於修理物力. 一, 每十年行宮大修理, 別劃整理物力擧行, 本庫物力, 勿爲取用, 仍爲全數會錄. 一, 物種價直·修補年限, 作爲定規, 別成冊子,

頒之本府, 以爲永久遵行, 毋改違越之地. 一, 行宮修理及城役修補時, 監董褊·裨及校吏·工匠姓名, 詳細錄置, 以爲日後考勤慢勸懲之地】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4월 15일(을미) 1번째기사>

경제/건설

화성의 성역 및 물역과 관련한 별단

비변사가 아뢰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 및 물역(物役)과 관련하여 직접 획급(劃給)한 것과 꾸어온 것과 도로 갚아야 할 것 등의 수효를 조목별로 구별하여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대로 거행할 뜻을 화성 본부(本府) 및 경외(京外)의 각 해당 아문에 통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획급한 것. 평안 병영의 2만 냥(兩), 관서(關西)의 소미(小米)를 작전(作錢) 한 2만 5천 냥, 본부(本府) 기부(記簿)의 1만 6천 냥, 각도(各道)에서 을묘년에 가분(加分)한 모조(耗條) 8천 석(石)을 돈으로 대신 낸 2만 4천 냥, 영남(嶺南) 병영의 별별비(別別備) 2만 냥, 기영(箕營)의 별별비 2만 냥, 완영(完營)의 별비(別備) 1만 5천 냥 등 13만 냥. ○꾸어온 것. 장용영(壯勇營)의 25만 냥, 균역청(均役廳)의 30만 냥, 어영청(御營廳)의 4만 냥, 금위영(禁衛營)의 4만 냥 등 63만 냥으로 직접 획급해 준 것과 합치면 도합 76만 냥. ○도로 갚아야 할 것. 1. 장용영의 25만 냥. 5만 냥은 영남 병영의 남창(南倉) 별비전(別備錢)을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5천 냥씩 10년 기한으로 갚고, 7천 냥은 금위영의 을묘년 반 년 동안의 정번전(停番錢)으로 갚고, 6만 3천 냥은 금위영의 정번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임술년까지 매년 9천 냥씩 7년을 기한으로 하고, 4백 냥은 금위영의 계해년 정번전으로 갚고, 7천 냥은 어영청의 을묘년 반 년 동안의 정번전으로 갚고, 5만 6천 냥은 어영청의 정번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계해년까지 매년 7천 냥씩 8년 기한으로 하고, 5천 냥은 통영(統營)의 연례(年例) 별비전(別備錢)으로 갚되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5백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1만 8천 냥은 4 영문(營門)의 월과미(月課米)를 돈으로 대신 내게 해서 갚되 병진년에서 경신년까지 매년 3천 6백 냥씩 5년 기한으로 하고, 1만 냥은 선혜청(宣惠廳)의 별하고전(別下庫錢)으로 갚되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1천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5천 냥은 호조 작지색전(作紙色錢)으로 갚되 을묘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5백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1만 냥은 기영(箕營)의 을묘년 별비전(別備錢)으로 갚고, 1만 2천 6백 냥은 기영의 연례 별비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1천 4백 냥씩 9년을 기한으로 하고, 6천 냥은 각도(各道)의 을묘년 가분(加分) 모조(耗條) 2천 석을 돈으로 대신 내게 하여 갚음. 2. 균역청의 30만 냥. 10만 냥은 완영(完營)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곡식을 돈으로 대신 내게 하여 갚되 8년 기한으로 하고, 7만 7천 4백 냥은 기영(箕營)의 연례(年例) 별비전(別備錢)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갑자년까지 매년 8천 6백 냥씩 9년 기한으로 하고, 3만 5천 냥은 금위영의 정번전(停番錢)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임술년까지 매년 5천 냥씩 7년 기한으로 하고, 1만 3천 6백 냥은 금위영의 계해년 정번전으로 갚고, 7만 냥은 어영청의 정번전으로 갚되 병진년에서 을축년까지 매년 7천 냥씩 10년 기한으로 하고, 4천 냥은 어영청의 병인년 정번전으로 갚음. 3. 금위영의 4만 냥. 1만 4천 냥은 해영(該營)의 갑인년 정번전(停番錢)으로 이미 갚았고, 1만 4천 냥은 어영청의 정번전으로 갚되 갑자년에서 을축년까지 매년 7천 냥씩 2년 기한으로 하고, 1만 4천 냥은 어영청의 병인년 정번전으로 갚고, 8천 냥은 어영청의 정묘년 정번전으로 갚음. 4. 어영청의 4만 냥. 1만 4천 냥은 해영(該營)의 갑인년 정번전으로 이미 갚았고, 1만 2천 냥은 해영의 정번전으

로 갚되 병인년에서 정묘년까지 매년 6천 냥씩 2년 기한으로 하고, 1만 2천 냥은 해영의 무진년 정번전으로 갚음】

○備邊司啓言: "**華城**城役物役, 直劃貸來還報數爻, 秩秩區別, 別單書入. 待啓下, 依此擧行之意, 請知委於**華城**本府及京外各該衙門." 允之.【直劃條: 二萬兩平安矢營, 二萬五千兩關西小米作錢, 一六千兩本府記簿, 二萬四千兩各道乙卯加分耗條八千石代錢, 二萬兩嶺營別別備, 二萬兩箕營別別備, 一萬五千兩完營別備, 以上十三萬兩. 貸來條: 二十五萬兩壯勇營, 三十萬兩均役廳, 四萬兩御營廳, 四萬兩禁衛營, 以上六十三萬兩, 都以上七十六萬兩. 還報條: 壯勇營二十五萬兩內五萬兩, 嶺營南倉別備錢, 自乙卯, 甲子至, 每年五千兩式, 限十年; 七千兩, 禁衛營乙卯半年停番錢; 六萬三千兩, 禁衛營停番錢, 自丙辰, 壬戌至, 每年九千兩式, 限七年; 四百兩, 禁營癸亥停番錢; 七千兩, 御衛營廳乙卯半年停番錢; 五萬六千兩, 御營廳停番錢, 自丙辰, 癸亥至, 每年七千兩式, 限八年; 五千兩, 統營年例別備錢, 自乙卯, 甲子至, 每年五百兩式, 限十年; 一萬八千兩, 四營門月課米代錢, 自丙辰, 庚申至, 每年三千六百兩式, 限五年; 一萬兩, 惠廳別下庫錢, 自乙卯, 甲子至, 每年一千兩式, 限十年; 五千兩, 戶曹作紙色錢, 自乙卯, 甲子至, 每年五百兩式, 限十年; 一萬兩, 箕營乙卯條別備錢; 一萬二千六百兩, 箕營年例別備錢, 自丙辰, 甲子至, 每年一千四百兩式, 限九年; 六千兩, 各道乙卯加分耗條二千石代錢. ○均役廳三十萬兩內十萬兩, 完營償債穀代錢限八年; 七萬七千四百兩, 箕營年例別備錢, 自丙辰, 甲子至, 每年八千六百兩式, 限九年; 三萬五千兩, 禁衛營停番錢, 自丙辰, 壬戌至, 每年五千兩式, 限七年; 一萬三千六百兩, 禁衛營癸亥條停番錢; 七萬兩, 御營廳停番錢, 自丙辰, 乙丑至, 每年七千兩式, 限十年; 四千兩, 御營廳丙寅條停番錢. ○禁衛營四萬兩內一萬四千兩, 該營甲寅條停番錢已報; 一萬四千兩, 御營廳停番錢, 自甲子, 乙丑至, 每年七千兩式, 限二年; 一萬四千兩, 御營廳丙寅條停番錢; 八千兩, 御營廳丁卯條停番錢. ○御營廳四萬兩內一萬四千兩, 該營甲寅條停番錢已報; 一萬二千兩, 該營停番錢, 自丙寅, 丁卯至, 每年六千兩式, 限二年; 一萬二千兩, 該營戊辰條停番錢】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 7월 15일(갑자) 2번째기사>

경제/건설

화성의 둔전이 완성되어 성 밖의 진전 개발과 품삯 등의 일로 윤음을 내리다

화성(華城)의 둔전(屯田)이 완성되었다.

이에 앞서 갑인년에 **화성의 축성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신하들에게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성이 뒷날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은 마치 나무에 뿌리가 서리고 집지을 때 터를 다지듯이 견고하고 두텁게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내년 봄에 얼었던 땅이 녹을 때를 기다렸다가 북쪽성 밖의 거리가 가깝고 척박한 땅에다 깊이를 헤아려 1장(丈)이나 반 장 정도 땅을 파고 대략 백 곡(斛)쯤 되는 씨앗을 파종할 만한 경계를 적당히 정한 뒤 그 흙을 거두어 성벽에 달라붙게 하되 말 다섯 필이나 수레 두 채가 그 지역을 종횡으로 달릴 수 있게 하고 그 동남쪽 이랑을 깊이 파 경작하며 쉽게 김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자갈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어 마치 정경(鄭涇)이나 사업(史黽)의 경우처럼 성곽을 등진 좋은 토지를 몇천 경(頃)이나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니, 1,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비 내린 논에 물꼬를 트는 아름다운 광경을 장차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시킬 때에 품삯은 날수로 계산하지 말고 실적을 기준으로 삼되 원근

(遠近)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힘이 센 자는 넉넉히 백 전(錢)을 가져가고 약한 자도 한 몸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부(府)의 백성들만 혜택을 받는 일이겠는가. 동서 남북 어디를 가도 마땅한 거처를 정하지 못한 채 품팔이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들 모두가 바람결에 소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올 것인데, 움집이나 상점을 차리고 술도 팔고 밥도 팔며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꾸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대저 이와 같이 하면, 성은 만세토록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백성은 1만 가구가 기름진 땅을 얻게 될 것이며, 창고에는 1만 사람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될 것이니, 이 일 하나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이다. 이 어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 둔(屯)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을 본부의 유수에게 떼어주었는데, 전후에 걸쳐 떼어준 돈이 모두 2만 관(貫)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별단(別單)으로 아뢰기를, "본성(本城)의 장안문(長安門) 밖 북쪽 들판에 새로 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이 떼어주신 돈을 공경히 받아 시설하고 경영하면서 혹 매입(買入)하기도 하고 혹 새로 개간하기도 하여 두 항목의 논에 1백 석(石)을 파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도랑을 파 물을 대고 제방을 설치해 물을 담아놓기 위해 토목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토지는 비옥하고 척박한 토질이 서로 섞여 있고 새로 개간한 토지는 시기가 조금 늦었던 관계로 옛날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서 생산된 것이 20두(斗)짜리 전석(全石)으로 7백 66석(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 든 비용·새로 개간하는 데 따른 물력(物力), 수확한 수량, 종자와 세곡(稅穀)으로 덜어둘 양, 둔전 소속 원역(員役)에 지급한 요미(料米), 도랑을 파고 제방을 축조하는 데 지출된 비용 등을 모두 정연하게 구별한 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내영(內營)에 올려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먼저 교리(校吏)들과 군졸·관예(官隷)부터 그 형세를 헤아리고 다소(多少)를 짐작하여 토지를 나누어주고 경작하게 함으로써 농사짓는 이로움을 알게 하는 동시에 기필코 실효를 거두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빈한하여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자와 게을러서 진작시킬 수 없는 자를 권유하며 신칙하고, 조금 나은 자들에게는 대략 정전(井田)의 조법(助法)을 모방하여 두 사람씩 짝을 지운 뒤 혹시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혜택이 넓혀질 수 있는 방도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華城**屯田成. 先是甲寅, 以**華城**城役事, 下綸音于董工諸臣曰: "城之有後托, 猶木之蟠根, 屋之築址, 不可不堅且厚也明矣. 容待來春, 地脈融解之際, 若於北城外咫尺斥鹵之壤, 相其淺深, 鑿得一丈或半丈, 量定約播百斛之經界, 然後收其土粘付城身, 俾容五馬兩軌, 卽其地橫縱東南之畝, 深耕而易耨, 則瘠可使肥, 磽可使沃, 而贏得如鄭涇·史鄴之幾千頃負郭良田, 不出一二年, 將見荷鍤成雲, 決渠降雨之美, 而方其役也, 雇直不以日, 而以負立表, 計遠近而差等, 則强者優取百錢, 弱者足庇一身, 此豈特府民? 往南北東西之不適有居, 傭保資生者, 皆可以聞風爭趨, 而或窖或肆, 爲酒爲食, 以其所有, 易其所無, 亦矜寡之利也. 夫如是, 則城則奠萬世不拔之基, 民則獲萬家如膏之地, 倉則貯萬人足食之糧, 一擧而衆美具, 豈不誠休且美哉?" 仍劃下設屯錢于本府留守, 前後劃下者, 摠二萬貫. 至是, 留守趙心泰別單啓言: "本城長安門外北坪, 新設屯田. 臣所祗受劃下錢, 設施經紀, 或買得或新墾, 兩項水田, 準爲百石下種, 開渠灌溉, 築堰儲水, 使之大興土功, 而舊土沃瘠相錯, 新土墾闢稍晩, 新舊所出, 不過二十斗全石七百六十六石. 故買得價錢·新墾物力·收獲數爻·種稅應下·屯屬料條·開梁築堰等財力, 竝秩秩區別, 修正成冊上送內營. 明年則先自校吏輩·軍卒·官隷, 量其形勢, 斟酌多少, 分授頃

畝, 使之耕作, 俾知稼穡之利, 期有食實之效, 而其中貧不得自力者, 懶不能振起者, 勸諭誨飭, 使其稍勝者, 略倣井田助法, 兩人作耦, 毋或怠忽, 以爲一分沾漑之道."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 11월 7일(갑인) 3번째기사>

경제/건설

재변에 대해 이를 소멸시킬 방법을 논의하다

차대하였다. (…)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천심이 편치 못해서 작년 겨울 이래로 이미 삼백(三白)의 조짐이 없었고, 삼춘(三春)의 날씨가 또 어긋나는 현상이 많아 꽃이 피지 않은 것으로써 보리가 되지 않을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성교와 같습니다. 근래에 듣건대 양남 지방의 보리는 비록 조금 나아질 조짐이 있으나 기호 지방의 가을 보리는 이미 큰 흉작으로 판가름났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화성(華城)의 토목 역사를 우선 정지하였다가 보리가 나오고 가을 농사가 잘 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묘당에 자문하여 나라의 비용을 저축해서 뜻밖의 일에 대비하고, 백성들의 힘을 늦춰주어서 농상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말이 매우 옳다. 요컨대 올가을에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데, 네가 있는 생각을 숨김 없이 말하였다. 일을 감독하는 신하로 하여금 이런 뜻을 알게 하여 정지할 만한 곳은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대신(臺臣)의 이 말은 참으로 귀하다. **화성의 성역(城域)은 본디 중한 바가 있지만 이런 큰일에 어찌 찬반의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옛날 조 풍원 부원군(趙豊原府院君)이 전주성(全州城)을 쌓을 때에 원망을 무릅쓰고 쌓았으므로 사람들이 못할 말이 없었으나, 선조에서 위임하여 완성하기를 책임지웠기 때문에 전주부의 성문에 '명견문(明見門)'이란 편액을 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재작년에 임제원(林濟遠)이 말을 잘했는데, 이제 또 이 대신의 말이 있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학(邪學)이 날로 기승을 부려 영남·호남 사이에 점차로 더욱 치성해지고 있으니, 청컨대 물든 자들을 한결같이 모두 사형에 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학이 점차로 치성해지는 것은 정학(正學)이 밝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금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요컨대 교인(敎人)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그 책을 불태우는 것이 곧 이단(異端)을 토벌하는 방도이다. 어찌 한결같이 사형에 처할 수 있겠는가. 만약 윤상(倫常)을 무너뜨리는 무리가 있으면 적발되는 대로 이미 사형을 시행했으니, 연전의 일이 이것이다. 이제 대신의 말이 이와 같은데, 근래에는 과연 어떻다고 보는가?"

하므로, 김이소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어리석은 백성들 사이에 서로 전해서 만연되고 있으므로 심히 우려됩니다."

하였다. 장령 박서원(朴瑞源)이 아뢰기를, "근래에 금령을 설시하였기 때문에 소위 대간의 상소라는 것은 말의 시비와 일의 곡직을 막론하고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치고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병조의 당상과 낭관에게 분부하여 대간

의 상소를 막지 말게 해서 언로를 열어 성총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옳은 말과 곧은 일이 모두 궁문에서 저지된다면 도리어 금령을 설치한 뜻이 아니니, 이는 병조에 신칙하겠다."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직언을 구한 것은 직언을 구한 것이고 거조는 거조일 뿐이다. 대신 신귀조는 체차하고, 현중조 역시 유경유(柳慶裕)의 일을 번거롭게 아뢰었으니 체직하라."하였다.
○次對.(…) 又所懷: "今天心不豫, 昨冬以來, 旣無三白之兆, 三春日候, 又多乖沴之象, 無花之可推無麥, 誠如聖敎. 近聞兩南牟麥, 雖有差勝之漸, 畿湖秋牟, 已判大歉云. 臣以爲華城土木之役, 姑爲停止, 以待牟麥登場, 秋農得稔, 更始未晩. 伏願下詢廟堂, 以爲儲國用以備不虞, 紓民力以專農桑, 似爲得宜." 批曰: "言甚是矣. 要之, 今秋可以告成云, 而以其有所重, 人莫敢言, 爾能有懷無隱. 其令董事之臣, 知此意, 可停處姑停." 又敎曰: "臺臣之有是言, 誠貴矣. 華城城役, 固有所重, 而如此大事, 烏可得無異同之言也? 記昔趙豐原之築全州城也, 任怨爲之, 人言靡所不有, 而先朝委任而責成之, 故完府城門, 至以明見爲扁云矣. 再昨年林濟遠能言之, 今又有此臺臣之言, 予所嘉者此也." 又啓言: "邪學日肆, 嶺湖之間, 轉益熾蔓. 請染習者, 一皆施以大辟." 上曰: "邪學之轉熾, 由於正學之不明. 予所禁止, 靡不用極, 而人其人火其書, 卽力攻異端之要道也. 豈可一以大辟從事乎? 若有斁倫悖常之類, 則從現發已施大辟, 年前之事是也. 今臺臣之言如此, 近來果何如云耶?" 履素等曰: "臣等雖未詳知, 而以愚民之轉相滋蔓, 多有深憂遠慮矣." 掌令朴瑞源啓言: "近以設禁之故, 名以臺疏, 無論言之是非, 事之曲直, 不得入門, 事之寒心, 莫此爲甚. 臣謂分付兵曹堂郎, 勿阻臺疏, 以開言路, 以達聖聰宜矣." 批曰: "言之是者, 事之直者, 竝在阻閽之科, 反非設禁之意, 此則申飭兵曹." 上曰: "求言自求言, 擧措自擧措. 臺臣申龜朝遞差, 玄重祚亦以柳慶裕事, 煩奏, 遞."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3월 26일(임신) 3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부의 성이 완성되다
수원부(水原府)의 성이 완성되었는데, 둘레가 모두 4천 4백 보였다.
○辛卯/水原府城成. 周凡四千四百五步.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8월 19일(신묘) 1번째기사>

경제/건설
『화성성역의궤』가 완성되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 상이 화성 유수(華城留守)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성을 쌓는 데에 든 비용이 거의 80만에 가까운데, 소중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본래 생각이었다. 이 책을 간행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의 공사에 관한 본말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華城城役儀軌』成. 上謂華城留守趙心泰曰: "城役所費, 幾近八十萬. 爲所重, 不欲有一毫苟簡者, 卽予本意也. 此書刊行, 使擧世人, 曉然知城役本末, 可也."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11월 9일(경술) 2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 유수 조윤대가 능원 밖에 대황교를 세웠다 아뢰니, 감동관 이하에게 시상하다
수원 유수 조윤대(曹允大)가 능원(陵園)의 북쪽 산기슭 밖에 대황교(大皇橋)를 세웠다고 아

뢰니, 【경비(經費)는 전(錢) 1만 9천 냥 영이고, 다리의 길이는 1백 척이고, 너비는 20척이며, 높이는 11척이었다】 감동관(監董官) 이하에게 시상하였다.
○水原留守曺允大, 以陵園所北麓外新建大皇橋, 啓.【費用錢一萬九千兩零, 橋長一百尺, 廣二十尺, 高十一尺】監董以下施賞.
<순조실록 5권, 순조 3년 5월 21일(갑인) 2번째기사>

경제/건설

건릉 이장을 수원 옛날 향교로 정하다

건릉을 이장할 곳을 수원 옛날 향교 터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산릉을 살펴본 대신 이하 천릉 도감 당상을 여차에서 불러 보고 또, 상지관(相地官)인 사과(司果) 남양진(南陽進)·김경인(金景寅)·최상일(崔相一), 사용(司勇) 신희(申熙), 교수 방경국(方慶國)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상지관은 차례대로 주달하라."
하니, 남 양진이 말하기를, "교하(交河)의 장릉(長陵) 재실(齋室) 뒤는 내려오는 산맥이 길고 멀며 곱고 아름다우며, 자리[穴處]가 안온(安穩)하고 명당(明堂)으로 넓고, 평평하니, 이는 지리서(地理書) 가운데 귀격(貴格)으로 치는 것입니다. **수원의 옛날 향교 터는 산맥의 형세가 웅장하고 존엄한 가운데 또 아름답고 곱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풍향양(藏風向陽)하여 혈성(穴星)이 십분 뚜렷하며 수구(水口)가 막히고 조회하는 산과 안산(案山)이 모여들었는데 수풀 사이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차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최상의 길지 입니다. **이 두 곳을 가지고 논하면 수원이 교하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김경인·최상일·신희 등의 아뢴 바도 같았다. 판부사(判府事) 한용귀가 말하기를, **"신 등이 이번에 교하의 장릉 재실 뒤와 수원의 옛날 향교 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산세의 웅장함과 혈성의 풍후함과 좌우 산맥의 모여듬과 안산의 수려함은 두곳이 똑같은데 매우 좋은 땅인 듯합니다. 또 상지관의 말을 듣건대, 역시 똑같이 찬미하면서 **'만약 수원을 교하에 비교하면 매우 귀하고 매우 길한 품격은 매우 차등이 난다.'** 고 하였습니다. 이 만 년의 무궁한 터를 원침(園寢)의 가까운 안에서 얻었으니 지난해에 선침(先寢)을 가까이 하시려는 성상의 뜻에 진실로 부합된 것으로서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고, 판부사 김사목은 말하기를, **"수원의 옛날 향교 터는 풍수가의 말뿐만 아니라 살펴본 여러 신하들이 너나없이 찬미하였습니다."**
하고, 총호사 남공철은 말하기를, **"교하의 장릉 재실 뒤의 터는 웅장 수려하고, 수원 옛날의 향교 터는 안온 풍후 하니 모두 대단히 길한 자리라고 할 만합니다.** 여러 대신과 여러 당상관의 소견도 이의가 없고 상지관 등도 극구 칭찬하면서 모두 최상의 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장하겠다는 명이 있을 때부터 신 등이 매양 서로 대하여 이에 대해 논하기를, '**수원에서 만약 길지를 얻지 못할 경우 그만이지만 만일 길지가 있을 경우 진실로 신도(神道)와 인정에 합치한다.**' 고 하면서 더욱 이를 밤낮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좋은 자리를 수원 안에서 얻었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고, 관상감 제조 김조순은 말하기를, **"신이 교하에 두 번 나가고 수원에 세번 나갔는데,** 여러 풍수가들이 모두 찬미하고 서로 어긋나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비록 보통 안목으로 말하더라도 모두 최상의 좋은 자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실로 감히 피차의 고하(高下)를 따져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수원이 교하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말 논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길지라면 천리와 인정에 부합되는 데에 따라 어느 곳을 취하거나 버려야 할지 저절로 쉽게 결정될 것입니다. 오직 성상께서 결정하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 입니다."

하고, 천릉 도감 당상 김이양은 말하기를, “**신은 여러 풍수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 수원을 최상의 길지라고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신들의 아뢴 바도 천리와 인정을 참작한 것이니 오직 성상께서 단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산릉 도감 당상 이상황은 말하기를, “이번에 두 곳을 살펴 본 상지관들의 논의가 모두 지극히 좋고 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에 있어서는 원침의 국내(局內)에 이 같은 최상의 길지를 만났으니**, 천리와 인정으로 참작하건대 진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고, 예조 판서 김노경은 말하기를, “신이 연전에 원관(園官)으로 있을 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지(園志)를 상고해 보니 역시 성상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택한 산등성이가 과연 서로 부합되었으니, 자못 천지가 묵묵히 도운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더군다나 상지관이 모두 대단히 길하여 교하보다 낫다고 하니, 다시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옛날 향교 터로 결정하겠다.”
하였다. 총호사 남공철이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상고해 보니, 기유년에 원(園)을 옮길 때 재실(梓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모로 극진하게 한다는 뜻에서 미리 준비하여 대령해 놓았습니다. 이미 기유년의 전례가 있으니, 장생전(長生殿)에 분부하여 기일 전에 비갑(椑匣)을 만들게 하고, 재궁(梓宮)도 기유년의 사례에 의하여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준비하여 대령해 놓으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命健陵遷奉, 定于華城舊舊鄕校基. 是日, 召見山陵看審大臣以下, 遷陵都監堂上于廬次, 又命相地官司果南陽進·金景寅·崔相一, 司勇申熙, 敎授方慶國, 使之入侍. 上曰: “相地官以次奏達也.” 陽進曰: “交河·長陵齋室後, 則來龍長遠妍美, 穴處安穩, 明堂寬平, 此地家書中貴格也. **水原**舊舊鄕校基, 則龍勢雄偉, 尊嚴之中, 又爲端麗. 兼之以藏風向陽, 穴星十分眞的, 水口關鎖, 朝對拱揖, 林木之間, 可見佳氣之蔥鬱, 此是無上吉地. 而以兩處論之, **水原**有勝於交河矣.” 景寅·相一·熙等所奏, 亦同. 判府事韓用龜曰: “臣等今番交河·長陵齋室後及華城舊舊鄕校基, 竝看審, 而山勢之雄偉, 穴星之豐厚, 龍虎之拱挹, 案對之明麗, 兩處同然, 似是極吉之地. 而且聞相地官之言, 亦皆一辭贊美, 而 ‘若以華城較彼交河, 則品格之極貴極吉, 不啻隔等’ 云. 得此萬年無疆之基於園寢密邇之內, 允叶, 昔年密邇先寢之聖意, 誠非偶然矣.” 判府事金思穆曰: “**水原**舊舊鄕校基, 則不但地師之言, 看審諸臣, 莫不贊美矣.” 摠護使南公轍曰: “交河·長陵齋室後基, 雄渾秀麗, 華城舊舊鄕校基, 安穩豐厚, 俱可謂大吉之地. 諸大臣及諸堂之見, 皆無異辭, 相地官等極口贊揚, 皆以爲無上吉地矣. 自有遷奉之成命, 臣等每相對論, 此以爲 ‘華城, 如不得吉地則已, 如有吉地, 則允叶於神理人情.’ 尤以此日夜企望. 得此大吉之地於華城之內, 萬萬喜幸矣.” 觀象監提調金祖淳曰: “臣再進交河, 三詣華城矣, 諸地師竝皆讚美, 無參差之論. 而雖以凡眼言之, 俱知爲上吉之地, 誠不敢以彼此高下, 質言仰對, 而華城如或不及於交河, 則固無可論. 等是吉地, 則天理人情之所符, 取捨自可易定矣. 惟在自上裁斷焉.” 遷陵都監堂上金履陽曰: “臣竊聞諸地師輩, 皆以華城爲無上吉地, 一辭同然. 諸大臣所奏, 又參之以天理人事, 惟望睿志之斷定焉.” 山陵都監堂上李相璜曰: “今番兩處看審, 相地諸人之論, 皆以爲極吉無欠. 以至於華城則園寢局內, 遇此無上吉地, 參之以天理人事, 實非偶然矣.” 禮曹判書金魯敬曰: “臣於年前, 待罪園官時, 有仰承於昔日者, 今番考見園志, 亦載聖敎. 而叶吉之岡, 今果相符, 殆若天地之默相者然矣.” 上曰: “卿等之言, 旣甚允當. 況諸相地官, 皆謂其大吉, 而勝於交河, 則更有他〔議〕乎? 以舊舊鄕校基完定.” 摠護使南公轍啓言: “謹稽謄錄, 則己酉遷園時, 不爲改梓室, 而以靡不用極之意, 預爲備待矣. 旣有己酉已例, 分付長生殿, 使之先期治椑匣, 梓宮, 亦依己酉年例, 毋論入用與否, 使之備待

之意, 分付." 從之.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 4월 21일(신축) 2번째기사>

경제/건설

총호사 남공철이 천릉 도감의 당상관 등을 차출하다

총호사 남공철이 아뢰기를, **"천릉 도감의 당상관과 낭관을 수원 유수와 판관으로 차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정한 산릉이 또 수원부 내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으니 돈장(敦匠)을 겸하게 하면 거행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을 것이고 백성의 폐단도 덜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수원 유수 김시근(金蓍根)을 산릉 도감 당상으로 추가 차출하고, 판관 김원근(金元根)을 산릉 도감 낭청으로 추가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울러 관장해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摠護使南公轍啓言: "遷陵都監堂郎, 以水原留守判官差下. 而新定山陵, 又是一府內至近之地, 俾兼敦匠, 則擧行自多便好, 民弊亦不無省除之端. 水原留守金蓍根, 山陵都監堂上加差下, 判官金元根, 郎廳加差下, 使之兼管擧行." 從之.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 5월 1일(경술) 4번째기사>

경제/건설

현륭원 이장할 때의 예에 따라 이장시의 공사비용에 대하여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기유년에 현륭원을 옮길 때 고을을 옮기는 것부터 공사의 비용까지 모두 내탕고(內帑庫)에 저축된 것을 내려 주었으니, 이는 선왕의 무궁한 효성으로서, 성상의 뜻도 부여되었다. **이번 이장하는 예는 기유년과 사체가 같지 않으나, 옛날을 생각해 볼 때 수원에 관계된 일일 경우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셨던 선왕의 마음을 또한 유사(有司)가 있다고 하여 계술(繼述)의 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내탕고의 은 1만 냥을 내리고 또한 영돈녕에게 직접 유시한 바가 있으니, 역사(役事)에 수응하고 백성을 부리는데 관계된 일들은 이것으로 분배하여 보충해 쓰도록 하라. 그리고 각 도감의 교리(校吏)들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일을 아는 몇 사람 이외에 서울 이교(吏校)는 많이 데리고 가지 말고 모두 본영(本營)의 교리를 부리도록 하라. 이 밖에 각 고을에서 물품을 받칠 때에 도감의 하리들이 농간을 부려 수탈하는 폐단을 각별히 엄금하도록 하라. 앞으로 특별히 염탐해 볼 것인데 만약 그러한 일이 발각될 경우 먼저 도감의 당상관과 낭청부터 엄중한 처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각각 명심하도록 승정원이 도감 당상과 낭청 및 수원 유수에게 하유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己酉遷園時, 自遷邑, 以至凡百工役之費, 皆以帑儲內下, 此蓋先朝無窮之睿孝, 而聖意亦有所寓也. 今番遷奉之禮, 事體雖與己酉, 又自不同, 然仰想昔年, 事係華城, 不欲一毫貽弊之聖心, 亦不可以, 則有司存, 不思繼述之道. 今下內帑銀一萬兩, 亦有所面諭於領敦寧者, 凡係應役勞民之事, 以此分排補用. 至於各都監校吏之屬, 勤幹解事若干人外, 京吏校, 勿爲多數率去, 皆以本營校吏使役. 外此各邑進排時都監下屬作奸侵漁之(弊)〔弊〕, 各別嚴禁. 而從當有別般廉察之擧, 若或見發, 先自都監堂郎, 當不免嚴勘. 俾各惕念事,令政院,下諭于都監·堂郎·水原留守處."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 6월 4일(임오) 2번째기사>

경제/건설

건릉의 보토 역사가 끝나다

건릉(健陵)의 보토(補土) 역사가 끝났다. **당상인 수원 유수 이하의 사람들에게 시상하였다.**

○癸未/健陵補土畢役. 堂上水原留守以下, 施賞.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윤3월 8일(계미) 1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부에서 행궁, 성벽 및 두 둔의 공사를 진행하는 곳에 구제미를 보내주라고 명하다

수원부(水原府)에서 행궁(行宮)과 성첩(城堞) 및 서둔(西屯)과 북둔(北屯)의 공사를 진행하는 곳에 진제미(賑濟米) 2,000석(石)을 획하(劃下)하라고 명하였으니, 해당 유수(留守)가 장계(狀啓)로 청한 일로 인하여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命水原府行宮城堞及西北兩屯工役處, 賑濟米二千石劃下. 因該守臣狀請, 有廟啓也.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9월 6일(무진) 3번째기사>

경제/건설

곤도 시로스케를 수원군에 보내어 화산의 조림 등을 위한 재목을 시찰할 것을 명하다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를 **수원군(水原郡)으로 출장 보내어 화산(花山)의 조림을 준비하는 것과 육군 병영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할 재목의 인도 상황에 대하여 시찰할 것을 명하였다.**

七日. 命本職事務官權藤四郎介出張于水原郡. 爲花山造林準備及陸軍兵營建築用材引渡狀況視察也.

<순종실록부록 8권, 순종 10년 4월 7일(양력) 1번째기사>

경제/건설

수원 신사를 건설하는 보조금을 하사하다

수원 신사(水原神社)를 건설하는 데 특별히 보조금 50원을 하사하였다.

八日. 特賜水原神社建設費補助金五十圓.

<순종실록부록 8권, 순종 10년 12월 8일(양력) 1번째기사>

3. 사회(社會)

⑴ 가족

사회/가족

비변사가 올린 화성의 부호에 대한 모삼절목

비변사가 **화성**의 부호(富戶)에 대한 모삼절목(帽蔘節目)을 올렸다. 【1. 모집해 들인 자들이 비록 부실(富實)하다고는 하지만 새로 옮길 때 많이 팔아서 쓸 것이니, 먼저 가산을 제재하여야 한다. 미삼(尾蔘)의 무역이 아직 영구히 예속된 곳이 없으니, **부실한 자 20인을 선발하여 계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성에 이주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 1. 관모(官帽)는 산매(散賣)하게 된 뒤로 별달리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화성에 이거(移居)할 부실한 가호에게 주관하도록 하여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무역하거나** 의주의 저자에서 사오게 하되, 청포전(靑布廛)의 면세분(免稅分) 1백 척(隻)은 전인(廛人)에게 내주고 그 나머지는 물주가 주관하여 각처에서 매매하도록 한다. 1. 양남(兩南) 지방의 집에서 심는 삼은 근래에 점차 풍성해져서 교역과 매매가 하나의 생업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거하는 자들은 대부분 전에 물주(物主) 노릇을 하던 자들인데, **관모(官帽)와 가삼을 막론하고 화성의 물주와 차인(差人)이 아니면 본지(本地)에서 직접 사지 못하도록 하고 각처의 장사꾼들도 모두 화성에서 교역하도록 한다**. 1. 연경에 가는 자들이 가지고 가는 팔포(八包)는 원래 인삼으로 채워 주었는데, 그 사이 삼이 귀하게 되자 은포(銀包)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이제 가삼으로 옛 제도를 복구하여 원포(元包)로 정하였으니, 들여보내는 삼은 집에서 심은 것이므로 사모아 채워 넣는 절차를 가삼의 물주가 저절로 주관하게 된다. **이 역시 화성의 미삼계인(尾蔘契人)이 맡아서 거행하게 한다.** 1. 집을 짓고 들어와서 살 계인들을 구차스럽게 초가에 살게 할 수는 없으므로, 대로(大路)의 남북쪽에다 각각 기와집을 연달아 지어서 성취(成聚)의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1. 삼과 모자를 무역하는 일은 물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차인(差人)과 수종(隨從)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한 물주의 차인이나 수종은 많으면 5,6인, 적어도 2,3인 이상으로 하되, 각처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차출하여 고용하게 한다면 20인 이외에는 달리 가호(家戶)를 늘릴 방도가 없으므로, 20인의 계인(契人)이 각자 차인과 수종을 데리고 가서 물주가 물력(物力)을 도와 주어서 각각 집을 짓게 하여 호구를 늘리는 방편으로 삼는다. 1. 삼과 모자가 비록 원래 정한 주된 물화(物貨)이지만, 오가는 사이에 참으로 무역하여 판매할 물건이 있으면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1. 계인이 처음 옮겨서 시작할 때 물화를 크게 무역하려면 개인의 힘으로는 반드시 자본이 부족할 것이므로, 영남 감영 소관의 남창(南倉)에 있는 돈 5만 냥과 평안 병영의 창고에 유치해 둔 돈 5만 냥을 기한을 정하여 빌려주어서 밑천을 삼도록 하고 그 이자를 받아서 성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한다. 1. 집을 지을 때 재목을 갑자기 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기의 선재(船材)로 지정되지 않은 송전(松田)과 사적으로 나무를 길러 놓고 팔기를 원하는 자는 벌채를 허가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1. 응모하는 자가 모두 대대로 서울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살던 집을 버리고 가족이 모두 이사하게 된다면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아들이나 아우들 중에서 원하는 자가 있으면 대신 보낸다. 1. 계인(契人)이 매매할 때에 공문(公文)이 없으면 외도(外道)의 여러 고을이 마음을 써서 돌보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상(私商)이나 잡살뱅이들이 쉽게 그 사이에 파고들게 될 것이니, **화성부에서 공문을 만들어 준다**. 1. 응모하는 자들 중에서 의원(醫員)

이나 역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로 먹고 사는 자들은 옮겨서 본업을 폐지해서는 안 되므로, 의원이나 역관은 전과 같이 업을 수행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은 그 자제들이 이를 맡아서 점검하도록 한다. 1. 가호를 옮겨 살도록 하는 것은 성 안의 민호(民戶)가 많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그들도 덕의(德意)를 받들 줄 알아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권계(勸誡)하며 성실하고 각근(恪勤)한 자는 특별히 뽑아서 등용하겠다고 이미 초기(草記)의 비답에 말하였다. 만약 부랑(浮浪)하고 어긋난 습관이나 사람을 속이고 이익만 독점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 계중에서 적발하여 관에 알리도록 하고, 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엄히 다스린다. 1. 응모인을 이미 20호로 정원을 정하였으나, 후일 만약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경우 반드시 잡다한 폐단이 생길 것이므로 20인 이외에는 1인도 더 정하지 못하게 한다. 혹시 탈이 생기든가 죄를 짓든가 하여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자를 가려서 유부(留府)에 고하게 함으로써 본사(本司)에 보고하여 문안에 기록하도록 한다. 1. 부호를 모집해 들여 삼과 모자의 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사실 성안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성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만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나 삼을 막론하고 그 이익을 매년 1천 냥씩 본부(本府)의 교리청(校吏廳)에 떼어주어서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하는 바탕을 삼는다】

○備邊司進**華城**富戶帽蔘節目.【一, 募入之類, 雖云富實, 新移之際, 自多費用, 宜先制産. 尾蔘貿易, 姑無永屬處, 抄擇富實二十人作契, 以其人移居**華城**, 使之築室奠業. 一, 官帽散賣之後, 別無主管之人, 今以**華城**移居富實戶, 作爲主管, 或貿燕布, 或貿灣肆, 靑布廛免稅一百隻, 出給廛人, 其餘物主主管, 買賣各處. 一, 兩南家植蔘, 近漸豊盛, 交易買賣, 作一生業. 今此移居人, 多是自前爲物主者, 無論官帽家蔘, 非**華城**物主與差人, 毋得直買於本地, 各處商賈, 亦皆交易於**華城**. 一, 赴燕人八包, 本以人蔘充給者, 而間因蔘貴, 代以銀包. 今以家蔘復舊制, 而定元包, 則入送之蔘, 是家植者, 貿聚充入之節, 家蔘物主, 自當主管. 亦令**華城**尾蔘契人次知擧行. 一, 契人之築室集居者, 不可苟且草率, 使各搆瓦屋於大路南北, 修治比接, 俾有成聚之效. 一, 蔘帽貿遷, 非一物主所可獨辦, 必待差人隨從之夾助. 一物主差人隨從, 多或五六人, 少不下數三人, 若或以各處在者, 任其差雇, 則二十人外, 更無增戶之道, 二十契人, 各其差人隨從, 竝爲率去, 物主助給物力, 各成屋子, 以爲增益戶口之地. 一, 蔘帽, 雖是元定主管物貨, 而去來之際, 苟有貿遷料販之物, 則許其隨意賣買. 一, 契人新接之際, 廣貿物貨, 私力必多不達, 以嶺營所管南倉錢五萬兩, 平安兵營留庫錢五萬兩, 使之限年許貸, 爲〈■資〉賴之地, 收其利殖, 作修城之需. 一, 築室之際, 材木猝難辦得, 畿內無船材松田, 及私養山願賣人處許斫, 以爲拮据之地. 一, 應募者, 皆世居京城之人, 若使捨家舍盡室移徙, 則不無難便, 以其子與弟中, 從所願代送. 一, 契人〈■〉出貿販之際, 若無公文, 則外道諸邑, 未必着意看顧. 私商〈■雜〉類易致徒中侵奪, 自**華城**府成給關文. 一, 應募人中, 或以醫譯爲業, 貢物資生者, 不可以移居廢其本業, 醫譯從前隨行, 貢物使子弟次知看檢. 一, 〈■家〉戶移接之擧, 要使一城之內民戶殷庶, 渠亦知奉承德意, 毋但以利爲心. 交相勸戒, 誠實恪勤者, 拔例擢用, 旣有草記批旨. 如或有浮浪乖亂之習, 欺人專利之弊, 自契中摘發告官, 自官廉察嚴繩. 一, 應募人, 旣以二十戶定額, 日後若有漸次加數, 則必有衆多雜亂之弊, 二十人外更勿加定一人. 如或有頉有罪, 至於除案, 使渠輩擇可合人, 告于留府, 以爲轉報本司錄案之地. 一, 募入富戶蔘帽區劃, 實爲城內殷庶之方. 城內原居人, 亦得霑溉然後, 可爲朝家一視之政. 毋論帽蔘利條, 每年一千兩劃給於本府校吏廳, 以爲均被惠澤之地】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2월 22일(계사) 3번째기사>

사회/가족

채제공이 화성 절목의 취소를 청하니, 삼포 건은 중지할 수 없다고 하다

차대를 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이 화성의 실호 절목(實戶節目)에 대하여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성지(城池)의 역사가 끝나면 민호(民戶)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호를 뽑아 보내고 아울러 모자와 삼 두 가지로 이익을 얻을 바탕을 삼아준 것입니다. 신이 처음 그에 관한 말을 듣고 마음속에 곤란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판부(李判府)의 차자가 올라온 다음 신이 민간에서 일을 잘 아는 자들에게 여러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절목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도 하였는데, 대체로 편리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의논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조정이 화성의 큰 역사(役事)에 대해 조금이라도 구차히 한 정사가 없다고 여깁니다.** 1만여 냥을 관에 바치고 역사를 돕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모두 물리쳤으니, 나라의 본뜻이 정정당당하다는 것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자와 삼에 관한 일로 후일의 말썽거리를 불러온다면 전공(前功)이 아깝게 되지나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대신이 차자에서 이(利) 자 한 글자로 대체(大體)를 들어 말한 것은 매우 좋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새로 만든 화성의 절목을 도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상이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절목은 이미 취소하였지만, 삼포(蔘包)에 관한 일은 역관들이 원한 것이므로 굳이 싸잡아 중지할 것이 없다. 대체로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 옛날에도 우형(虞衡)의 관리가 있었고 보면 산림과 천택에서 나는 것은 응당 나라에서 관리할 것이다. 삼화(蔘貨)로 말하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히 막았다면 모르거니와, 지금 이미 밀매가 낭자하니 이를 금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둘 바에야 차라리 이로 인하여 삼포를 채우도록 해서 재화의 권한을 조정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도리어 국가의 체통을 보존하는 도리일 것이다." 하였다.

○庚子/次對. 左議政蔡濟恭啓言: "臣於**華城**實戶節目, 有可以仰達者矣. 城池旣已完役, 則民戶之實其中, 卽不可已之事, 所以有抄送富戶, 兼以帽蔘兩件事, 爲利益之資. 臣始聞其事, 不無持難於中矣. 李判府箚出後, 臣問於閭巷解事之人者, 亦多矣. 聞自中之議, 或以爲節目有窒礙處, 或以爲如是行之, 亦無所妨, 蓋便與不便之論, 互相參錯矣. 竊念朝家於**華城**大役, 無一毫苟且之政. 自願以萬餘金納官助役者, 不止一二而亦皆退斥, 朝家本意, 正正堂堂, 人孰不知? 今乃以帽蔘之事, 若致日後辭說之端, 則或近於前功可惜. 況大臣之箚, 以一利字, 擧似大體甚好. 臣意則**華城**新成節目還寢, 恐宜." 從之. 上, 謂濟恭曰: "節目雖已還寢, 蔘包事, 旣是象譯輩所願, 不必混置勿施之科. 大抵山林川澤, 古亦有虞衡之官, 則山澤之産, 固朝家之所句管. 雖以蔘貨言之, 自初一切防塞則已, 今旣潛越狼藉, 與其不可禁而任其所爲, 無寧因而充包, 使貨泉之權, 歸於朝家, 亦爲存國體之道矣."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2월 29일(경자) 1번째기사>

사회/가족

황해도의 대청도와 소청도의 호적을 수원 유수영에 이속시킬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영상(閔泳商)의 보고를 보니**, '황해도(黃海道)의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 두 섬은 정묘조(正廟祖) 때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모집해 잡역을 면제시켜 주고 본영(本營)에 이속시킨 다음, 기

패관(旗牌官)과 별무사(別武士)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둔전을 감독하며 섬의 백성들을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호(家戶)가 100여 호에 불과하고 물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집하는 것으로 겨우 생계를 꾸리는데, 모리배(牟利輩)들이 백령진(白翎鎭)에 사주하여 관례(官隷)들과 한통속이 되어 제멋대로 침탈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본 영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하고 신칙하였으나 갈수록 더욱 심하여 마침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폐단을 막고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할 방도는 다만 이적(移籍)하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섬은 서쪽의 먼 바다 가운데 있는데, 토양이 소금기가 많고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니 이미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고, 대개 둔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한 것도 조정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하여 그 진(鎭)의 관속들이 침탈하여 끝없이 횡포를 부린단 말입니까?

저 불쌍하고 하소할 곳이 없는 잔약한 백성들이 소장을 안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길가에서 헤매고 있으니 참으로 매우 불쌍합니다. 이에 마땅히 속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니 **이제부터 두 섬의 장적(帳籍)을 모두 수원 유수영(水原留守營)에 이속시켜서 백성들을 위무하여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水原留守閔泳商所報, 則'海西大小靑兩島, 正廟朝設屯募民, 蠲除雜役. 移屬本營, 使旗牌官·別武士, 輪回屯監, 統率島民. 而戶不過百餘, 僅以漁採資生. 牟利輩嗾囑白翎鎭, 符同官隷, 橫侵不一其端, 自營屢次禁飭, 愈往愈甚, 竟至渙散之境. 其所杜弊安接之方, 惟在移籍一款'云矣. 兩島處在極西大洋之中, 壤土之斥鹵, 民物之凋敝, 已所悶憐. 而蓋其設屯募民, 亦由朝家深筭矣. 柰其鎭屬之侵索恣橫, 罔有限節? 哀彼無告殘氓, 抱狀呼屈, 棲遑道路, 誠甚可矜. 此宜有趁速通變之方. 從今以往, 兩島帳籍, 竝移屬華營, 俾爲撫摩安奠之地何如?" 允之.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2월 1일(갑인) 2번째기사>

⑵ 신분

사회/신분

포작인에 대해 논의하다

(…) “연해(沿海)의 포작인(鮑作人)은 이미 본토(本土)를 싫어하여 유이(流移)해 왔으니, 지금 비록 강제로 본토로 돌려보내다 하여도 사세(事勢)가 진실로 행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소재처(所在處)에서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게 하고 무휼(撫恤)함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이미 배[舟楫]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所在官]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분치(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대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적(籍)에 올려 군사를 만들고, 수군(水軍)의 제도와 같게 하되 번들고 교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며, 보인(保人)의 수(數)를 넉넉하게 하고, 만약에 묵은 땅과 주인(主人)이 없는 전지(田地)는 점차로 절급(折給)해서, 이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짓게 하고, 혹은 해물(海物)도 채취하게 하여 살아나가게 하면, 만일 변방(邊方)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유이(流移)한 것과 새로 들어와 거주하는 수(數)를 몰라서는 아니되니,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해마다 세초(歲抄)에 수를 갖추 아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는 했으나 절목(節目)이 세쇄(細碎)하고 여러 재상(宰相)들의 의논도 분운(紛紜)하여 한결같지 않으니, 나의 뜻은 요탁(遙度)하기가 어렵다고 여긴다. 좌의정(左議政)이 이미 순찰(巡察)하여 목격(目擊)하고 왔으니, **마땅히 그 의논과 같이 가령 광주(廣州)에 살던 자가 수원(水原)으로 옮겨 살 것 같으면 수원의 관리가 존휼(存恤)하고**, 또 교하(交河)로 옮겼으면 교하의 관리가 또한 존휼하여, 소재해 있는 곳에 따라서 무휼(撫恤)하여 도산(逃散)하지 말게 할 뿐이다. 이 뜻을 여러 도(道)에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 金升卿 · 柳洵議: “沿海鮑作人, 旣厭本土流移而來, 今雖欲强之還本, 勢固難行. 當於所在, 安業撫恤可也. 但此輩旣以舟楫爲生, 用以防海, 乃國家之利也. 所在官萬戶傍近處分置, 旣已立法. 仍令本官着籍爲兵, 如水軍之制而疎其番遞, 優其保數, 如陳荒無主之田, 漸次折給, 使之或力農或採海, 以資其生, 則萬一邊上有警, 此輩最爲水上可用之兵也. 但流移他處及新寓之數, 不可不知, 令諸道監司, 每歲抄具數以聞何如?” 傳曰: “兵曹雖啓, 節目細碎, 諸宰之議, 紛紜不一, 予意難以遙度. 左議政旣巡察目擊而來, 當如其議. 假如居廣州者移寓水原, 則水原官吏存恤之;又移交河, 則交河官吏亦存恤之. 隨其所在而撫之, 勿令逃散而已. 其以此意, 下諭諸道.”

<성종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4월 19일(기해) 3번째기사>

⑶ 향촌

사회/향촌

팔달산에 있는 이고(李皐)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그 후손 이운행을 등용하다

이운행(李運行)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운행은 고 처사 이고(李皐)의 후손으로, 집이 팔달산(八達山)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 수원(水原)의 새 읍치(邑治)를 팔달산에다 정하였다**. 그리하여 향교를 운행의 선영 곁에 세우게 되었는데, 상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3세(三世) 다섯 분묘가 한꺼번에 모두 옮겨지게 된 점을 가엾게 여기어,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장례 물품을 넉넉하게 지급토록 하고, 인하여 운행을 등용하라고 명한 것이다.

○庚申/命調用李運行. 運行, 故處士李皐之後, 家在八達山下. 時, **水原新邑, 定於八達, 而鄕校營基於運行先塋之側**. 上聞之, 憫其三世五塚之一時竝移, 命畿伯, 優給葬需, 仍命調用運行.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8월 7일(경신) 1번째기사>

⑷ 윤리·풍속

사회/윤리·풍속

판도판서 표덕린의 딸 표씨가 수원부사 조계생에게 시집가다

사헌부(司憲府)가 상소하여 평성군(平城君) 조견(趙狷)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조견이 과부(寡婦) 표씨(表氏)의 뜻을 빼앗고자 하였으니, 조금도 재상(宰相)의 뜻이 없습니다. 중매한 자인 사직(司直) 박지(朴枝)는, 빌건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문죄하소서."

박지는 안율(按律)하여 과죄(科罪)하고, 조견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공신이었기 때문이다. 표씨(表氏)는 고(故) 판도 판서(版圖判書) 표덕린(表德麟)의 딸이요, 오건(吳虔)의 아내인데, 집이 부유하고 일찍 과부가 되었다. 박지가 일찍이 조견에게 중매하였는데, 표씨가 허락하였었다. 혼인 날 저녁이 되어 표씨는 조견이 늙어서 수염이 흰 것을 엿보고 도망하여, 드디어 헌부(憲府)에 호소하기를 조견이 강제로 장가들려고 한다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비방하였다. **얼마 아니 되어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계생(趙啓生)에게 시집갔다**.

○司憲府上疏請平城君趙狷罪. 疏曰: "狷欲奪寡婦表氏志, 殊無宰相之意, 爲媒者司直朴枝. 乞收告身問罪." 命枝按律科罪, 狷則勿論, 以功臣也. 表氏, 故版圖判書德麟之女, 吳虔之妻也. 家富早寡, 枝嘗媒狷, 表氏許諾, 及婚夕, 表窺見狷年老鬚白而逃, 遂訴于憲府, 謂狷强娶, 時人譏之. 未幾嫁于水原府使趙啓生.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1일(정사) 5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에 안치된 이방 등 외방의 죄인을 용서하다

외방의 죄인을 용서하였다. **수원(水原)에 안치(安置)한 이방(李倣),** 강화(江華) 수군(水軍)에 정속(定屬)한 이군세(李君世)·노인(盧仁), 율학 청직(律學廳直)에 정속(定屬)한 김사혁(金思奕), 충청도(忠淸道) 수군에 정속한 화척(禾尺) 김가물(金加勿), 이산진(尼山鎭)에 정속한 김득현(金得玄), 안주(安州) 수군에 정속한 장을생(張乙生)·이을신(李乙臣)·이위(李葳), 평양(平壤) 수군에 정속한 지영수(池永守)·지을생(池乙生), 이성 제군소(異姓諸君所) 청직(廳直)에 정속한 손을창(孫乙昌)·강호(姜浩), 강원도(江原道) 김화(金化) 수군에 정속한 달달(韃靼) 조금(趙金), 동북면(東北面) 수군에 정속한 박숭(朴崇)·전길(全吉), 경상도(慶尙道) 수군에 정속한 안거도(安居道), 충청도(忠淸道) 수영(水營)에 부처(付處)한 임회(林璯), 북청주(北靑州)에 부처한 이성구지(李聖仇知), 경상도(慶尙道) 영해(寧海)에 부처한 곽숭우(郭承祐), 동래(東萊)에 부처한 한기(韓奇)·최득수(崔得壽)·서치(徐致), 사주(泗州)에 부처한 한영부(韓永富)·김학년(金鶴年), 전라도(全羅道) 해진(海珍)에 부처한 정의(鄭義)·박실(朴實)·이귀원(李龜原), 낙안(樂安)에 부처한 김입(金立) 등을 경외 종편(京外從便)하였다.

○宥外方罪人: 水原安置李倣, 江華水軍定屬; 李君世·盧仁, 律學廳直定屬; 金思奕, 忠淸道水軍定屬; 禾尺金加勿, 尼山鎭〔定〕屬; 金得玄, 安州水軍定屬; 張乙生·李乙臣·李葳, 平壤水軍定屬; 池永守·池乙生, 異姓諸君所廳直定屬; 孫乙昌·姜浩, 江原道金化水軍定屬; 韃靼趙金, 東北面水軍定屬; 朴崇·全吉, 慶尙道水軍定屬; 安居道, 忠淸道水營付處; 林璯, 北靑州付處; 李聖仇知, 慶尙道寧海付處; 郭承祐, 東萊付處; 韓奇·崔得壽·徐致, 泗州付處;

韓永冨·金鶴年, 全羅道海珍付處; 鄭義·朴實·李龜原, 樂安付處; 金立等, 京外從便.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월 18일(계묘)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우승지 조극관이 수원부사 시절 불효자 사건에 대해 아뢰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양맹규(楊孟糾)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우승지 조극관(趙克寬)·좌부승지(左副承旨) 김조(金銚) 등이 아뢰기를, "맹규(孟糾)가 비록 불효하지마는, 그 어미가 지금 말하기를, '일찍이 불효하지 않았다.' 고 하니, 불효의 죄가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극관(克寬)이 이내 아뢰기를, **"신(臣)이 일찍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적에 최산(崔山)이란 사람이**, **'나의 아들 최도치(崔都致)가 불효하게 합니다.' 라고 고(告)하므로**, 최산의 말과 기색을 보매, 참소(譖訴)로 인하여 고(告)하는 듯하므로, 신이 진정(眞情)을 시험하고자 하여 대답하기를, '불효의 죄는 마땅히 참형(斬刑)에 처하여야 한다.' 고 하니, 최산이 낯빛을 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건장한 이속(吏屬) 4, 5인을 불러 도치(都致)를 결박하고 거짓으로 목을 베는 것처럼 하여, 이속이 칼을 가지고 들어오니, 최산이 놀라 일어나서 몸으로 아들을 가리면서 말하기를, '다만 하나뿐인 외아들이니 지금 어찌 목을 벨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울어서 목소리가 쉬게 되었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도치가 그 누이[妹]와 서로 때리며 싸웠는데, 누이가 나에게 호소하므로, 그 화목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려고 한 때문이고, 실상은 나에게 불효한 것은 아닙니다.' 하므로, 신이 웃으면서 놓아주었더니, 최산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무릇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그 참소를 듣는 사람이 혹시 있게 됩니다." 하였다. (…)

○上謂承政院曰: "楊孟糾之事, 何以處之?" 都承旨趙瑞康·右承旨趙克寬·左副承旨金銚等啓曰: "孟糾雖不孝其母, 今言未嘗不孝, 不可加以不孝之罪." 克寬仍啓曰: "臣嘗爲水原府使, 有崔山者告其子都致不孝於我, 觀山辭氣, 似因讒訴而發. 臣欲試眞情, 答曰: '不孝之罪當斬.' 山變色不言, 卽呼壯吏四五人, 縛都致佯斬之. 吏持劍入, 山驚起, 以身蔽子曰: '唯一獨子, 今奈何斬之?' 哭泣失聲, 臣問其故, 對曰: '今朝都致與其妹相歐, 妹訴于予, 欲治其不和之罪, 實非不孝於我也.' 臣笑而釋之, 山叩頭而退. 凡母子之間, 聽其讒訴者或有之." (…)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2일(무신)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도민이 감사 허후의 교체를 반대하는 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경기의 수원(水原)·안산(安山) 등처에 사는 부정(副正) 최의(崔義) 등 1천 34인이 상언(上言)하기를, "갑자년의 한재는 병자년보다 심하여 모든 곡식이 다 타서 백성의 생활이 걱정스러웠사온데, 감사 허후(許詡)가 민간을 순시하면서 궁한 사람을 진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유식한 사람을 뽑아서 진휼관(賑恤官)으로 삼고는 구휼하는 일을 곡진(曲盡)하게 계획하여, 쌀·콩·소금·간장 등을 진휼관이 날짜를 계산하여 고루 나누어 주어,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모두 그 주는 것을 받아 굶주림을 면하였습니다. 또 약재와 구황(救荒)하는 잡물을 갖추어 성심으로 구료하고, 타도의 미곡을 폐 없이 배로 운반하여 각 고을 부근에 나누어 쌓아 두었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받아내어 오고가는 노고를 면하게 하였으며,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성덕(盛德)을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살 곳을 얻게 하였사

온데, 이제 갈리는 기일이 닥쳤사오매 백성의 부모를 잃을까 두렵사오니, 비옵건대, 명년 밀·보리가 익을 때까지 한하여 갈지 말아 주시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영구히 생생(生生)하는 데에 오르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지난해는 경기에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후(詡)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진휼하기를 게을리 아니하고 작은 것도 모두 거행하여, 백성들이 소생함을 얻었다.

○京畿·水原·安山等處住副正崔義等一千三十四人上言曰: 甲子之旱, 甚於丙辰, 百穀盡憔, 民生可慮. 監司許詡巡視閭閻, 賑窮賙乏, 選擧有識人, 差爲賑恤官, 救恤之事, 曲盡布置. 米豆鹽醬, 賑恤官計日均給, 匹夫匹婦, 咸得其賜, 以免飢饉. 且備藥材及救荒雜物, 誠心救療, 他道米穀, 無弊漕轉, 分積各官附近之地, 使民朝夕受出, 以免往來之勞, 夙夜匪懈, 宣布聖德, 使民得所. 今遞期日逼, 恐失父母, 乞限明年兩麥成熟間勿遞, 俾我黎庶永登生生之域.不允. 去歲京畿旱荒, 詡展心力, 賑恤不懈, 纖微畢擧, 民得以蘇.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12일(을유)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 사람 박자수의 딸이 세번 시집간 일을 『대전』에 따라 조율한 사헌부의 청에 따르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 사람인 박자수(朴自秀)의 딸이 나이 11세에 사성(司成) 김구(金鉤)의 아들 김종안(金終安)에게 시집갔었는데, 김종안이 죽은 뒤에는 첨지(僉知) 황기곤(黃起崐)에게 시집갔으며, 황기곤이 사망한 뒤에는 전 현감(縣監) 진승각(陳承恪)에게 시집갔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의 금제(禁制)하는 조문(條文)을 살펴보건대,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녹안(錄案)하고 이조(吏曹)·병조(兵曹)와 사간원(司諫院)에 이문(移文)한다.' 하였고, 주(註)에는 이르기를, '세 지아비에게 고쳐 시집간 자도 같다.' 하였으니,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憲府啓: "水原人朴自秀之女, 年十一, 嫁司成金鉤子終安, 終安死後嫁僉知黃起崐, 起崐身死後嫁前縣監陳承恪. 謹按『大典』禁制條, '士族婦女失行者錄案, 移文吏·兵曹·司諫院.' 註云, '更適三夫者同.' 請依『大典』施行." 從之.

<성종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26일(기해) 6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신숙문이 황효원이 아무 까닭없이 처를 버렸다고 수원부에 소송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와 동부승지(同副承旨) 홍귀달(洪貴達)이 황효원(黃孝源)이 발명(發明)한 문기(文記)와, 정원(政院)에서 초출(抄出)한 믿을 만한 것과 의심할 만한 것의 조목과, 헌부(憲府)에서 논핵(論劾)한 조목을 가지고 정창손(鄭昌孫) 등과 의논하였는데, 윤자운(尹子雲)이 말하기를, "황효원이 일찍이 임씨(林氏)의 부도(婦道)에 대하여 말하기를, '한 가지도 취할 만한 것이 없고, 공궤(供饋)조차 못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사나와서 어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자 곧 쫓아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윤자운이 또 말하기를, "**신씨(申氏)의 오라비 신숙문(申肅文)은 초명(初名)이 숙옹(肅雍)인데, 황효원이 아무 까닭없이 처를 버렸다 하여 수원부(水原府)에 소송(訴訟)하였었습니다.** 신씨가 쫓겨 난 것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헌부(憲府)에서 다시 합(合)한 혼서(婚書)가 없다고 하지만, 어찌 반드시 다시 합하였다고 다시 혼서를 만들겠습니까? 장적(帳籍)은 나 또한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혹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정창손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부부(夫婦) 사이는 다른 사람들의 예(例)가 아닙니다. 문서를 만드는 것은 마땅히 단단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실로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또 대사헌(大司憲)이 말하기를, ‘충훈부(忠勳府)의 공신 자손록(功臣子孫錄)에는 그 처를 처 신씨라고 썼는데, 그 아들은 범칭(泛稱)하였다.’ 하니, 이 또한 크게 의심할 만합니다. 더욱이 정원으로 하여금 분변하게 한 것은 친문(親問)하는 것과 같은데, 인주(人主)는 청송(聽訟)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니, 유사(攸司)에 내리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마침내 윤자운과 함께 아뢰기를, “헌부에서 국문한 말과 황효원이 발명(發明)한 말이 모두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니, 유사로 하여금 변정(辨正)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
○都承旨玄碩圭 · 同副承旨洪貴達, 將黃孝源發明文記及政院抄出可疑可信條 · 憲府論劾條, 與鄭昌孫等議之. 尹子雲曰: “孝源嘗言: ‘林氏於婦道, 無一可取, 非惟不能主饋, 性惡不順於母, 故生子便逐爾.’” 子雲又曰: “申氏娚肅文, 初名肅雍, 以無故棄妻, 訟于水原府. 申氏之見出, 余亦知之. 今憲府云無復合婚書, 何必復合而更成婚書也? 帳籍則吾亦無矣, 不可以是爲疑.” 鄭昌孫曰: “斯人夫婦之間, 非他人例. 當牢固成文而不爾, 是固可疑. 且大司憲言: ‘『忠勳府功臣子孫錄』書其妻曰妻申氏, 而其子則泛稱’, 是亦大可疑也. 況使政院辨之, 則似親問也, 人主不宜聽訟, 莫若下攸司.” 遂與子雲啓曰: “憲府鞫辭及孝源發明之言, 俱有可疑處, 令攸司辨正何如?” (…)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1일(임진)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농사철에 관할 지역 밖에서 관기와 놀아난 수원 부사 김사원을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은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주육(酒肉)을 싣고 본부 관기[府妓] 10여 인을 거느리고,** 매제[妹壻]인 김종계(金宗桂)의 금천(衿川) 농장[農舍]에 나아가 관할 지역 밖에서 이틀 밤이나 묵으며 관기[府妓]와 상간(相奸)하기에 이르렀으니, 방자한 행실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청컨대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憲府啓: “水原府使金嗣源, 當農月, 載酒肉, 率府妓十餘人, 赴妹壻金宗桂衿川農舍, 越境信宿, 至與府妓相奸, 恣行無忌. 請遣行臺監察鞫之.” 從之.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9월 20일(경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누이의 아들을 고공으로 삼아 기르다 구타하여 죽인 김희에 대한 논단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형조(刑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 사람 김희(金希)가 그 누이의 아들 장손(長孫)을 고공(雇工)으로 삼아 어릴적부터 기르다가 구타하여 그를 죽게 하였는데,** 율(律)에 ‘소공친(小功親)을 살해하면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손의 어미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모두 고공을 길러 준 은혜도 있으며 가장(家長)의 분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청컨대 고공을 구타하여 죽인 율로 논단(論斷)하게 하소서.”
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 · 노사신(盧思愼) · 한치형(韓致

亨)·정문형(鄭文炯)·윤효손(尹孝孫)·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형조에서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생질[甥]을 살해한 죄는 중하고 고공(雇工)을 살해한 죄는 가벼운데, 지금 형조(刑曹)에서 유독 고공을 구타하여 살해한 것으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 "생질과 외삼촌은 천륜(天倫)의 친족이니 의(義)가 더욱 중한데도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으면서 고공으로 논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刑曹)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성건(成健)이 아뢰기를, "천륜의 친족은 그 의가 아무리 중하여도 구타하여 살해한 죄는 가볍고, 가장(家長)과 고공은 종과 주인의 분수가 있으니 그 죄가 중하기 때문에, 신 등이 이것으로 논단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에서 이미 실수하였다. 그런데 대신의 의논이 또 이와 같으니, 오늘 대궐에 나온 신료(臣僚)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철견(李鐵堅)·신준(申浚)·이계동(李季仝)·박건(朴楗)·박숭질(朴崇質)은 의논하기를, "동거(同居)한 생질을 고공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조익정(趙益貞)·채수(蔡壽)·박안성(朴安性)·윤은로(尹殷老)·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김제신(金悌臣)은 의논하기를, "장손(長孫)은 본래 김희(金希)의 생질이며 고공으로 그를 부렸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존장(尊長)이 소공친(小功親)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고공을 구타하여 살해하면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입니다. 김희가 장손을 살해한 것은 두 가지 율(律)을 범한 것이니, 청컨대 종중(從重)하여 논하게 하소서."

하고, 민사건(閔師騫)·민이(閔頤)·안윤덕(安潤德)은 의논하기를, "장손이 비록 김희의 생질이기는 하나 사증(辭證)이 모두 고공으로 여기니, 생질을 살해한 것으로 논단(論斷)함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군(人君)이 된 자는 살리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관사에서 율(律)을 상고하여 옥사(獄事)를 의논하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형조(刑曹)로 하여금 개정(改正)하도록 하라." 하였다.

○乙巳/刑曹據京畿觀察使李世佐啓本啓: "水原人金希, 以其妹子長孫爲雇工, 自少長養而歐殺之. 律殺小功親當坐死, 然長孫之母及事干人, 皆以爲雇工有鞠養［鞠養］之恩, 有家長之分, 請以歐殺雇工律論斷." 命議于大臣. 尹弼商·盧思愼·韓致亨·鄭文炯·尹孝孫·柳輊議: "依刑曹所啓施行." 傳于承政院曰: "殺甥之罪重而殺雇工之罪輕, 今刑曹獨以歐殺雇工論斷何也?" 都承旨金應箕等啓曰: "甥舅天屬, 義尤重矣. 捨而不論, 以雇工論斷未便." 傳曰: "問于刑曹." 刑曹判書成健啓曰: "天屬之親, 其義雖重, 而歐殺之罪輕, 家長與雇工有奴主之分, 其罪重, 故臣等以此論斷." 傳曰: "刑曹旣失之矣, 而大臣之議又如此, 更議于今日詣闕臣僚." 李鐵堅·申浚·李季仝·朴楗·朴崇質議: "同居之甥, 不可以雇工論." 趙益貞·蔡壽·朴安性·尹殷老·權健·申從濩·金悌臣議: "長孫本金希之甥, 以雇工役之. 『大明律』尊長歐小功親至死者絞, 歐殺雇工則杖一百·徒三年. 金希之殺長孫犯二律, 請從重論." 閔師騫·閔頤·安潤德議: "長孫雖金希之甥, 然辭證皆以爲雇工, 則以殺甥論斷似過." 傳曰: "爲人君者固當生道也. 然該司按律議獄, 不宜如是也. 其令刑曹改之."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8일(을사)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인민에게 콩 1만 석을 내리다

경기 관찰사 정미수(鄭眉壽)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 해 본도에 곡식이 흉작인데, 콩은 더욱 심했습니다. **수원(水原)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경기 지방의 3분의 1이나 되지만 역시 저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밭갈고 씨뿌릴 때가 되어 농우(農牛)가 주리고 지쳤지만 먹일 콩이 없으니, 밭갈고 씨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년에 비가 고르고 흡족하다 하더라도 어찌 풍작을 바라겠습니까. 청하옵건대 경창(京倉)의 콩 2만 석을 내어 경기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1만 석을 주라." 하였다.
○甲寅/京畿觀察使鄭眉壽來啓: "去年本道禾穀不登, 黃豆尤甚. 水原地廣民稠, 居京畿三分之一, 而亦無所畜. 今方耕種之時, 農牛飢疲, 無豆可飼, 未得耕種. 如此則雖今年雨水調洽, 何望其豐登乎? 請發京倉黃豆二萬碩, 分給京畿人民." 傳曰: "其給一萬碩."
<연산군일기 36권, 연산군 6년 2월 30일(갑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관찰사 김수동이 구휼 대책 등을 아뢰다

경기 관찰사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京畿)의 각 고을은 모두 실농(失農)을 해서 봄에는 적지(赤地)에 종자를 뿌리지 못했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 흘러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근(飢饉)이 겹쳐 이를 뿐 아니라, 명년에는 반드시 종자가 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군량(軍糧)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피곡(皮穀)으로 거두어들여서 종자를 지급하도록 계청했는데, 윤허하시므로 신이 각 고을의 종자와 전결(田結)의 수효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효는 많고 곡식의 수량은 부족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혜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만약 전량(全量)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안하므로, 다만 재해(災害)가 가장 심한 고을만 골라서 아뢰옵니다. **수원(水原)·안산(安山)·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과 같은 고을은 재해가 가장 심하고,** 파주(坡州)·장단(長湍)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고을은 네 갈래 길의 요충지(要衝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입거(入居)하는 백성들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백성들의 재력(財力)이 갑절이나 곤궁하게 된데다가, 명년에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더욱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적은 각 고을들은 금년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경창(京倉)으로 올리지 말고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고, 명년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지난 을묘년에 파선된 남양(南陽)의 조세는 지금 당연히 경창으로 징수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수동(金壽童)이 또 아뢰기를,
"광주(廣州) 백성 이옥산(李玉山)이 그 형을 구타한 것은 진술한 증거가 명백하며 또 은(銀)으로 뇌물을 주어 그 일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엄폐(掩蔽)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간사합니다.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실정을 다 말할 때까지 형장(刑杖)을 받은 것이 15차례나 되고, 비록 문초(問招)에 승복(承服)하더라도 죄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으니, 또 형신을 가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까닭으로 감히 품의(稟議)합니다."
하니, 수의(收議)하기를 명했다.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이 옥산이 비록 문초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드러난 증거와 초사(招辭)가 명백하여 일이 애매하지는 않으니, 증거에 의거하여 형벌을 정하여 온 가족을 변방으로 보내는 것이 일의

대체에 적합합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京畿觀察使金壽童啓: “今年京畿各官皆失農. 春則赤地千里, 種不入土; 夏則大水漂流, 堤堰潰決. 非徒飢饉荐臻, 明年種子必無一粒. 臣前啓請軍儲所需, 竝以皮穀收之, 以給種子, 命許之. 故臣磨鍊各官種子及田結之數, 田結數多, 穀數不足, 雖盡給之, 種子太半不足, 何以處之? 京畿根本之地, 理宜優恤, 然一道貢稅, 若全數不納, 則於心未安, 只抄其災傷尤甚郡縣以啓. 若水原·安山·富平·金浦·通津則災傷尤甚, 坡州·長湍則不至甚焉. 然此二郡介於四途之衝, 今年入居之民, 皆輻輳於此, 民力倍困, 明年天使之來, 則又有甚焉. 上項各官今年貢稅, 請勿上京, 納於州倉, 以除轉運之弊, 以給明年之種. 去乙卯年敗船南陽漕稅, 今當徵納京倉, 請納州倉, 以給他縣種子.” 從之. 壽童又啓: “廣州民李玉山毆其兄, 辭證明白. 又以銀賂事干各人, 使之掩覆, 其情甚奸. 事關綱常, 限輸情刑訊, 於律爲宜. 但玉山受刑十五次, 雖服招, 罪不至死. 又加刑焉, 於心未安, 故敢稟.” 命收議. 尹弼商·成俊·李克均議: “玉山雖不服招, 公証·招辭明白, 事非曖昧. 據証定罪, 全家入送, 實合大體.” 從之.
<연산군일기 47권, 연산군 8년 11월 3일(임신)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의 효자 최세호의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복호를 내리다
경기 수원부(水原府)에 사는 최세호(崔世湖)는 그 어미가 항상 풍질(風疾)을 알았는데, 혹 병세가 위급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므로 세호가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널리 약이(藥餌)를 물어서,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그 병이 조금 나았다. 이일이 위에 들리매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복호(復戶)하도록 명하였다.
○京畿水原府居崔世湖, 其母常患風疾, 或至病急, 絶而復蘇. 世湖盡情號泣, 廣問藥餌, 割股和藥而進, 其病小愈. 事聞, 命旌門·復戶.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3월 22일(을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간원이 부모를 시해한 수원의 노범근을 의금부에서 추국할 것을 건의하다
대간이 홍처성의 일을 아뢰고, 헌부는 황여헌·한경기 등의 일을 아뢰었고, 간원은 안서의 일을 아뢰었다. (…) 또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수원(水原)에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자가 있다 합니다.** 이는 천지간 인륜(人倫)의 큰 변괴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원은 임금이 있는 서울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인데도 이런 큰 변괴가 있었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도(本道)로 하여금 추국(推鞫)하도록 할 수만도 없고, 서울과의 거리 또한 가까운 관원을 보내어 추국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잡아다 조옥(詔獄)에서 추국하여 전형(典刑)을 명백히 바루게 하소서. 대저 외방에서는 이와 같은 큰 변괴에 대해 그 실정을 얻어내지 못할까 저어하여 장(杖)으로 다그치다 보면 죄수가 죽는 수도 있고, 감시를 삼가지 않아 죄수가 도망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청합니다.” 【노범근(盧凡根)이 자기 아들 선종(善宗)·조카 치종(致宗)과 함께 자기 부모를 때려 죽였다】
하니, 답하기를, **“수원 사람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丙申/臺諫啓洪處誠事. 憲府啓黃汝獻·韓景琦等事. 諫院啓安悎事, (…) 又啓: “今聞, 水原境內, 有毆殺其父母者. 天地間人倫大變, 安有如此之事? 水原, 畿甸王化至近之地, 有此大變, 不勝驚愕. 今不可只令本道推鞫, 而距京亦邇, 又不可遣官推鞫, 請拿鞫詔獄, 明正典刑. 大抵, 外方於如此大變, 恐不得情, 而致殞杖下, 或不謹直守, 致令逃躲, 故敢請.” 【盧凡根,

與其子善宗·姪子致宗, 殺其父母】答曰: "水原人事, 如啓. 餘不允."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5일(병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부모를 시해한 수원의 노범근을 삼성 교좌하여 추국할 것을 지시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사관(史官)을 보낸 대신(大臣)들에게 의논(議論)하게 하기를 '어제 간관(諫官)이 「**수원(水原)의 부모를 때려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 곳이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잡아다 조옥(詔獄)에서 추문하게 하자.**」 했으므로 이미 조옥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했다. 근래 인심과 풍속이 날로 투박해져 가는데도 그 이유를 몰라 늘 마음이 편치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자까지 생겼으니 인륜의 큰 변괴치고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없다. 추국(推鞫)해 보면 대역죄(大逆罪)가 있을지도 모른다. 대저 임금과 대신이 교화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발생한 것이니 이 일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아직 아뢰지 않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점에 대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임금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나누어 파견한다는 것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 교화를 선양시키게 하려는 것이다. 감사에 임명된 자가 각기 자기의 직임을 잘 수행한다면 이런 변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니 감사도 스스로 살펴야 한다. 오늘 경연(經筵)에서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이는 대악죄(大惡罪)이니 삼성 교좌(三省交坐)해서 추국하자.」 했다. 누가 범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의당 삼성 교좌 해야겠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범한 바가 이미 본부(本府)의 추국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삼성 교좌 해야겠는지 자세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고 하라."

하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수원** 사람이 자기 부모를 때려죽인 일은 신 등도 어제 간원이 아뢴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 사관을 보내어 하문(下問)하신 분부를 받드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으면서 계달(啓達)하기가 미안하여 와서 아룁니다만, 이와 같은 변괴는 고금에 드문 일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효(孝)로 다스리는 일에 대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위에서 교화를 밝히지 못한 소치가 아닙니다. 신 등이 직임을 잘 수행하여 상의 뜻을 선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속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저 조정은 외방의 근본이고 조정의 근본은 중서(中書)에 있는 것입니다. 상께서 비록 교화의 열쇠를 잡고는 계시지만, 못난 신 등이 외람스럽게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성화(聖化)를 잘 선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악(大惡)의 변이 당세에 발생한 것입니다. 신 등은 직에 있기가 더욱 미안해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은 인륜의 큰 변괴이고 예전에도 드물던 것으로, 지극히 경악스럽다. 옛날의 제왕(帝王)은 이런 대악이 발생하면 반드시 교화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었다. 지금 대신들이 조정에 있으면서 어찌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내 의견은 혹 교화가 밝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하여 다시 성찰(省察)하게 하려고 말한 것이다. 사피하지 말라."

하매, 남곤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미 조옥(詔獄)을 시켜 잡아다 추문하게 했으며 그 실정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천지 간에 큰 변괴이니 삼성 교좌하여 추국하게 하소서. 그러면 도하(都下)의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서도 경동(驚動)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니 금부 당상이 아뢴 대로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傳于政院曰: “遣史官, 議于大臣曰: ‘昨日諫官以爲: 「水原地, 有毆殺父母者. 距京不遠, 請拿鞫詔獄.」 故已令詔獄拿來耳. 近來人心風俗, 日至薄惡, 未知其由, 常懷未安. 今則至有毆殺其父母者, 人倫大變, 莫此爲甚. 推鞫則自有大逆之罪矣. 大抵, 人君與大臣, 不明敎化, 致有如此之變. 此, 所宜留省之事也. 京畿監司時未啓聞, 必未及知也. 人君不能獨治, 分遣監司者, 欲以承流宣化也. 爲監司者, 各盡其職, 則庶無如此之變也, 監司亦當自省也. 今日經筵, 禁府堂上言: ‘此爲大惡, 請三省交坐而推.’ 云. 若不知某人之所犯, 則宜三省交坐矣. 此人則所犯, 已露於本府之推, 亦可三省交坐耶? 其詳議以啓.” 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清·右議政(柳鈞)〔權鈞〕啓曰: “水原人毆殺父母事, 臣等昨見諫院所啓, 始知之. 今朝伏聞遣史官下問之敎, 不勝驚懼. 但在家啓達未安, 故來啓. 如此變怪之事, 古今所稀. 今自上於孝理之事, 無不盡心. 此非自上不明敎化之所致, 臣等不能供職, 奉揚上意故風俗至此. 大抵, 朝廷, 外方之根本, 而朝廷之根本, 在於中書. 自上雖操敎化之柄, 如臣等冒居相位, 不能宣揚聖化, 如此大惡之變, 乃現於當代, 臣等在職尤未安, 敢辭.” 傳曰: “子弑父母, 人倫大變, 古所稀罕, 至爲驚愕. 在古帝王, 有如此大惡, 則必以敎化不明, 歸責於己. 今之大臣, 其在朝廷, 何有不職之事乎? 然予意, 恐或敎化不明, 而然也, 欲更加省察, 而言之耳, 其勿辭避.” 南袞等啓曰: “旣令詔獄拿推, 則其得情不難. 然此天地間大變也, 令三省交坐而推之, 則都下之人, 皆知朝廷驚動之意. 依禁府堂上之啓, 無妨.” 傳曰: “可.”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16일(정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삼공이 노범근의 부모 시해 사건으로 인해 수원의 읍호를 강등시킬 것을 건의하다

삼공(三公)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노범근(盧凡根)은 천하의 대악(大惡)으로 나라의 경우에는 난신(亂臣)이고 가정의 경우에는 적자(賊字)입니다. 따라서 난신과 적자는 처벌하는 율문(律文)이 같습니다. 율문에는 처자를 정속(定屬)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强盜)의 처자를 정속시키는 법도 율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으레 모두 정속시키고 있으니 이 사람의 처자도 강도 처자의 예에 따라 관(官)에 정속시켜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멀리 변방으로 옮겨 그들과는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못을 만드는 것은 옛 서적에 환히 드러나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일은 옛 서적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난 해 낙안(樂安)·밀양(密陽) 등 지방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도 모두 읍호를 강등시켰었으니, 지금도 강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수원은 경기 지방의 큰 고을입니다.** 중국 사신이 나오거나 나라에 큰 일이 있게 되면 이 부(府)에서 일을 담당해야 하니 경솔하게 강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악한 대죄(大罪)를 널리 보이는 뜻에 있어서는 강등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三公議啓曰: “凡根, 天下之大惡. 在國則爲亂臣; 在家則爲賊子. 凡亂臣·賊子, 同一律也. 於律文, 雖無妻子定屬之法, 凡强盜妻子定屬之法, 亦不在於律, 而我國例皆定屬. 此人妻子, 亦依强盜妻子之例, 定屬於官, 無妨, 或遠徙于邊, 以示不與同國之意何如? 破家·瀦宅, 顯著於古籍, 今亦爲之. 降邑號之事, 雖不著於前書, 往歲樂安·密陽等地, 亦有如此人, 而皆降邑號, 今不可不降也. 但水原, 畿甸之大邑. 或有天使之行; 或國有大事, 則此府可以擔當, 似不可輕易爲之. 然若示罪大惡極之意, 則不可不降.” 從之.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21일(임인) 5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 사람이 부모 죽인 일로 팔도 감사에게 백성의 교화에 힘쓸 것을 지시하다

팔도 감사(八道監司)에게 글을 내렸다. "감사는 임금의 덕화를 선양하는 지위이니, 의당 민이(民彝)를 펴고 예속(禮俗)을 도탑게 하여 온 도내(道內)가 모두 효제(孝悌)의 행실과 장유(長幼)의 질서를 알게 해야 한다. 근래 감사에 임명된 자들은 거의 문서만을 급무로 여길 뿐 근본 임무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화가 쇠퇴해지고 풍속이 퇴폐되어, 심지어는 천도(天道)가 무너지고 인륜이 말살되고 있다. **수원 사람 노범근이 자기 아들 선종(善宗)과 함께 어느 날 밤 모의해서 자기 부모를 때려죽였으니 천지 간에 이보다 더 심한 대악(大惡)이 없다.** 그러므로 이달 18일에 율문에 의거 아울러 능지 처사(凌遲處死)시켜 사방(四方)에 전시(傳示)하는 바이니 경(卿)은 궁벽한 시골까지 두루 알려 경구(警懼)하는 바가 있게 하라. 또 향음주례(鄕飮酒禮)는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고 인효(人孝)와 경양(敬讓)은 난폭의 싹을 없애는 것이다. 전에 이미 이를 거행하도록 신칙(申飭)했었지만 곧 폐이(廢弛)되었으니, 경 또한 예문(禮文)을 자세히 고증해서 수시로 거행함으로써 존비(尊卑)와 장유(長幼)의 질서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 백성을 교화시키고 순후한 풍속을 이루도록 하라."

○下書于八道監司曰: 監司居承宣之地, 所當敷民彝·敦禮俗, 使一道, 皆知孝悌之行; 長幼之序. 而近來, 任此責者, 類以簿書爲急, 而不究其本源. 以此, 敎化陵夷; 風俗頹靡, 甚至於悖亂天常; 滅絶人紀. 有水原人盧凡根, 與其子善宗同謀, 一夜撲殺其父母, 天地間大惡, 莫此爲甚. 肆於本月十八日, 竝依律陵遲處死, 傳示四方, 卿其令窮村僻巷, 無不周知, 有所警懼. 且鄕飮酒之禮, 乃尊高年·尙有德, 仁孝, 敬讓, 無暴亂之萌者也. 前已令申飭擧行, 而旋又廢弛, 卿亦詳考禮文, 以時行, 使知尊卑·長幼之不可亂, 以化民成俗.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21일(임인) 7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의 노범근 등이 조부모를 죽인 일을 삼성 교좌로 추국할 것을 지시하다

전교하였다. "**수원(水原) 정병(正兵) 노치종(盧致宗)은 숙부 노범근(盧凡根)과 공모해서 조부모(祖父母)를 죽였다**. 본부(本府)의 추안(推案)을 빙열(憑閱)해서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추국(推鞫)할 일로 의금부에 말하라."

○乙巳/傳曰: "水原正兵盧致宗, 與其叔父盧凡根同謀, 殺其祖父母. 憑閱本府推案, 三省交坐推鞫事, 言于義禁府."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24일(을사)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시강관 임권이 아들이 부모를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수원 부사를 파직시킬 것을 청하다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 사람이 아들로서 부모를 죽이고 손자로서 조부모를 죽였으니 이는 인륜의 큰 변괴로 온 나라가 경악할 일입니다**. 즉각 형전(刑典)을 시행해서 사방에 돌려 보여야 합니다. 전에는 이런 큰 변괴가 아니라도 반드시 읍호(邑號)를 강등시켜 현(縣)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군(郡)으로 강등시키고 백성도 다른 데로 떼어붙이지 않았는가 하면, 김창(金瑲)도 그대로 유임(留任)시켰습니다. 대저 교화의 근본은 조정에 있는 것으로 김창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극악한 큰 변이 자신의 치하(治下)에서 발생했으니 어떻게 뻔뻔스럽게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일을 헤아려 보건대 파출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이조(吏曹)에서 수원은 큰 고을이고 또 이 사람이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시킨 것이다. 읍호를 강등시키는 것은 현이나 군이나 뭐가 다른가?**"
하매, 전경(典經) 허항(許沆)이 아뢰기를, "대저 경내(境內)에 도적(盜賊)이 발생해도 반드시 읍재(邑宰)를 죄주는 법인데, 하물며 인륜의 큰 변이 자기의 치하에서 발생했는데야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찌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壬子朔/御夕講. 侍講官任權曰: (…) 且曰水原人以子而殺父母; 以孫而殺祖父母, 人倫大變, 國家驚愕. 卽示典刑, 至於傳示四方. 但前者, 雖不至如此大變, 必降邑號爲縣(監), 而今乃只降爲郡, 民亦不割屬, 仍任金珦, 大抵, 敎化之本, 在於朝廷. 雖非金珦之所能爲, 如此極惡大變, 出於治下, 安敢靦然在職? 揆諸往事, 罷黜亦當." 上曰: "大臣及吏曹, 以水原爲大邑, 此人可當, 故仍任之耳. 降號則縣與郡何異?" 典經許沆曰: "大抵, 境內雖盜賊竊發, 必罪其邑倅. 況人倫大變出於治下, 豈無其責? 仍任則未便."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일(임자)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정언 송인수가 수원의 풍속이 사나워 아전이 수령을 모함한다고 하였다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송인수(宋麟壽)가 아뢰기를, "(…) 요즈음 듣건대, **수원(水原)의 풍속이 사나와서 아전[人吏]인 자가 제 원[主宰]을 무함하여 그 수령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였다고 정소하는데,** 전 군수(郡守) 한석호(韓碩豪)도 정소당하였다 하니 이러한 풍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보건대, 수령이 과연 어질면 본디 간사한 아전에게 견제받지 않겠으나, 남행(南行)이나 명망이 없는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견제받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풍속이 나날이 이렇게 되어 가니, 어떻게 하면 이 폐습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아뢴 바가 지당하다. 감사 수령이 극진히 추신(推訊)하여 아뢰야 할 것이다."
○御朝講. 正言宋麟壽曰: "(…) 近聞水原風俗强悍. 爲人吏者, 誣陷其主宰. 其守令雖不殺人, 以殺人訴之. 前郡守韓碩豪, 亦被呈訴云. 豈有如此之風俗乎? 以此見之, 爲守令者, 果賢良也, 則固不受制於奸吏; 如南行及無名望之人, 則其不爲畏刼受制者幾希. 以此風俗日至於如此. 何如則可以祛此弊習也?" 上曰: "所啓至當. 監司守令當極推訊以啓."
<중종실록 64권, 중종 24년 1월 11일(무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본남편을 죽은 수원의 은정이 변명하고 있으니 형신하여 자백을 받도록 하다
(…) 삼공 및 좌찬성 김극핍(金克愊)·좌참찬 조원기(趙元紀)·우참찬 한효원(韓效元) 등이 의옥(疑獄)에 관한 공사(公事)를 여쭙기를, "(…) **수원(水原) 죄수 은정(銀丁)이 본남편 물금(勿金)을 살해한 사건은, 형신을 받으면서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간부(姦夫)가 본남편을 살해하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아비도 이미 복초(服招)했습니다. 형조의 공사(公事)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조의 계목(啓目)은 다음과 같다.

“양녀(良女) 은정이 제 아비 혁손(革孫)과 간통한 일 및 본남편 물금을 살해한 일로 1백 5차례나 형신을 받았는데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손은 물금을 살해한 정상과 제 딸과 간통한 절차에 대해 낱낱이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정은 장(杖)을 참으면서 은휘(隱諱)하고 있다고 하니, 더 형신하여 실정을 자백받을 것으로 이문(移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 은정에 대한 일은, 형조의 공사대로 하는 것이 지당하겠기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하였다.

○ (…) 三公及左贊成金克愊·左參贊趙元紀·右參贊韓效元等, 以疑獄公事取稟曰: “(…)水原囚銀丁, 本夫勿金殺害事, 雖受刑發明, 大抵奸(夫)〔婦〕殺害本夫, 則自當受罪, 而且其父, 曾已服招, 依刑曹公事何如?” 【刑曹啓目曰: “良女銀丁, 其父革孫相奸事及殺害本夫勿金事, 受刑百五次發明, 而革孫則勿金殺害情狀, 其女相奸節次, 一一納段. 銀丁則忍杖隱諱, 加刑得情事, 移文何如?”】傳曰: “(…) 銀丁事, 以刑曹公事爲當, 故依允. (…)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7월 8일(신축)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의 노범근 사건처럼 진위에서 성금의 일이 발생하여 논의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진위 죄수 성금의 일은, 경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들이 추안(推案)을 가져다 보았습니다. 당시의 사간(事干)들이 승복하지 않아 일을 귀결시킬 수 없었으므로, 경차관을 보내어 추국(推鞫)하게 한 것은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금과 온 집안 사람이 모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옥바라지를 할 사람이 없으니, 옥중(獄中)에서 죽는 폐단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수원군(水原郡)에서는 전에도 이런 일【수원부(水原府)에, 전에 부인(府人) 노범근(盧凡根)이 자기 아들 선종(善宗)과 동모(同謀)하여 부모를 타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府)라는 호칭을 군(郡)으로 강등시킨 일이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적을 없애기 위하여 고의로 치사(致死)시킬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는 것과 경차관을 보내어 추국하는 것의 폐단이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경기는 먼 도(道)와는 다르니 사간을 잡아오기도 용이합니다. 잡아다가 추국케 하소서. 만약 범죄한 사실이 분명하면 당연히 통쾌하게 치죄해야 할 것이요, 분명하지 않지만 끝내 밝힐 수 있는 일이라면 속히 결단하여 소방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일은 과연 인륜의 큰 변괴여서 경솔하게 조처할 수가 없겠다. 대신들이 중대하게 여겨 아뢴 것은 지당하다. 금부를 시켜 잡아다가 추국케 하라. 근래 아비를 죽인 자식이 있는가 하면 딸을 간음한 아비도 있었다. 이는 인륜의 큰 변괴로 실은 임금이 교화를 밝히지 못한 소치인 것이다. 상하가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야 할 것은 물론이요 모름지기 상세히 추국하여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오윤산(吳潤山)의 일【자기 딸 금이(今伊)와 간통하였다】에 대해서 대신과 의논하려 했었으나 유사(有司)가 바야흐로 추고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지 못하였다. 이 두 가지 일은 지극히 중대하여, 전적으로 금부에만 위임시켜 추문할 수는 없다. 초사(招辭)에 연관된 사람이 많으면 그 폐단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니, 내 생각에는 삼성 교좌(三省交坐)하여 속히 엄하게 추문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다시 삼공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己酉/三公啓曰: “振威囚成今, 在畿甸至近之處, 有如此駭愕之事, 故臣等取其推案而見之, 當時事干不服, 不能歸一, 發遣敬差官推鞫至當. 但成今及一家之人, 皆被囚, 未能養獄, 不無

死於獄中之弊. 水原郡, 前亦有如此之事, 【水原府, 前以府人盧凡根, 與其子善宗同謀, 打殺父母, 降號爲郡】欲滅其迹, 不無故爲死之事. 其拿來推鞫之弊, 與敬差官推之之弊, 豈有異乎? 京畿則非如遠道, 其事干拿來, 亦爲容易, 請拿來推鞫. 若所犯的實, 則所當痛快治罪, 如其不實, 而終能發明, 則亦當速決而放之." 傳曰: "此事果是人倫大變, 不可輕易而爲之. 大臣以爲重大而啓之, 至爲當矣. 其令禁府拿推. 近來子殺其父者有之, 父奸其女者有之, 此乃人倫大變. 實由於人君敎化不明而然也. 上下所當責己, 亦須詳悉推鞫, 以治其罪可也. 且吳閏山事, 【奸其女今伊】曾欲議于大臣, 以有司時方推考, 故不爲議之也. 此二事, 至爲重大, 不可專委禁府而推之. 辭連人等若蔓延, 則其弊亦爲不小. 予意三省交坐, 而急速嚴推何如? 更議于三公以啓."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7월 16일(기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아비를 죽인 수원의 노범근 사건처럼 교동의 호세장 등의 죄상을 동일하게 처리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 세상의 악 중에 아비를 죽인 죄보다도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는 법에서도 극률(極律)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번 밀양의 박군효(朴君孝)와 수원의 노범근(盧凡根)이 아비를 죽인 죄로 그들이 살던 집을 헐고 집처를 연못으로 만들고**, 그들의 처자를 노비로 삼았으며 그들이 살던 읍호를 강등시켰습니다. 이제 교동(喬桐)의 호세장(扈世長)과 원주(原州)의 유석(劉石)은 박군효 등과 죄상이 같으므로 법을 적용하는 것도 조목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호세장과 유석을 박군효 등과 같이 집을 헐고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며 처자를 노비로 삼고 읍호를 강등하여 악을 다스리는 법을 엄히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 호세장과 유석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라."

○乙未/諫院啓曰: "(…) 天下之惡, 莫大於弑父. 誅討之法, 亦無所不用其極. 前者密陽朴君孝·水原盧凡根, 亦以弑父之罪, 破家潴宅, 妻子定屬, 降其邑號. 今喬桐扈世長·原州劉石, 與朴君孝等, 罪惡無異, 其用法, 不可異科. 扈世長·劉石, 請依朴君孝等, 破家潴宅, 妻子定屬, 降其邑號, 以嚴治惡之法." 答曰: "尹鉉被論, 遞差. 扈世長·劉石事, 議于大臣."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7월 6일(을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과 이천 등지의 백성에게 경창의 곡식제급을 호조와 진휼청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민전의 말을 들으니, 백성의 곤궁하고 굶주리는 형상이 지극히 애처롭다. 수령들이, 공채(公債)가 있더라도 밀보리가 익기 전까지 구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하니, 하루 사이에도 죽는 백성이 많을 것이다. 호조가 저축된 나라 곡식을 아껴서 제급(題給)하려 하는 것은 계책으로서는 옳겠으나, 백성이 굶어 죽는 때에 나라 곡식을 아껴서 쌓아두었다가 어디에 쓸 것인가. 국가의 큰 근심으로는 백성이 굶주리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수원(水原)과 이천(利川) 등과 같이 더욱 심하게 농사를 그르친 곳에 두 번으로 나누어 경창의 곡식을 제급하라고 호조와 진휼청에 말하라.**"

○傳于政院曰: "今聞閔荃之言, 百姓窮餓之狀, 至爲哀慘. 守令雖有公債, 而欲爲救活於兩麥未成熟之前, 故不爲分給云. 一日之間, 民死亦多矣. 戶曹欲儲國穀, 撙節題給, 計則是矣, 然當百姓餓死之日, 吝儲國穀, 用之於何? 國家殷憂, 莫重於民之飢餓. 如水原·利川等尤甚失農處, 分二次, 題給京倉事, 言于戶曹及賑恤廳."

<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4월 7일(정사)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지방 추고 경차관 정언각이 수원의 이수손 사건을 조사하고 장계를 올리다

경기 지방의 추고 경차관(推考敬差官) 정언각(鄭彦慤)의 장계에, "**수원(水原)의 죄수 이수손(李守孫)의 종 잉질손(芿叱孫)과 용인(龍仁)의 죄수 여종 막덕(莫德) 등의 공초에, 이수손의 아내 김씨가 그 아들 균(均)·돈(墩)과 공모하여 이수손을 살해한 일을 일일이 승복했고**, 안성(安城)에 살다가 죽은 동지(同知) 유운(柳雲)의 아내인 이수손의 딸도 흉모에 참여하였다고 하므로 이씨도 법에 의하여 항쇄(項瑣)를 채워 양지현(陽智縣)으로 옮겨 수감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이 서장을 보니 이름 있는 재상의 아내도 아비를 시해하는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니 매우 경악스럽다. 외부에 두고 추국할 수 없으니 조옥(詔獄)에 잡아다 수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삼공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丙辰/京畿推考敬差官鄭彦慤狀啓: 水原囚李守孫奴芿叱孫·龍仁囚婢莫德等招內, 守孫妻金氏, 與其子均·墩同謀, 殺害守孫事, 一一承服, 而守孫女子安城居卒同知柳雲妻李氏, 亦與凶謀云. 故李氏依法項(瑣)〔鎖〕, 移囚于陽智縣云. 傳曰: "見此書狀, 有名宰相之妻, 亦與於殺父之謀, 至爲駭愕. 不可在外方推之, 拿囚于詔獄何如? 其議三公以啓."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3월 12일(병진)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감사 이윤경이 고양과 파주가 종자가 부족하니 수원의 곡식을 보내려 하다

경기 감사 이윤경(李潤慶)에게 전교하기를, "지난번 하서【구황(救荒)에 대한 일이다】에서 다 말했지만, 지난 겨울 극심한 추위로 양맥(兩麥)이 얼어 죽어서 구황이 매우 급하니 여러 고을에 신칙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경이 살펴본 곳 가운데 비가 알맞게 내렸는데도 파종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각별히 재촉해서 제때에 파종하게 하라."

하였다. 이윤경이 아뢰기를,

"파종은 거의 끝났습니다. **고양(高陽)·파주(坡州)는 종자가 부족한데 수원(水原)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므로 이를 옮겨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알아보니 숫자만 헛되이 기록해 놓았을 뿐 실제 곡식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간략한대로나마 고양·파주로 옮겨다 주었습니다. 신이 경내를 순시해 보니 가을보리가 얼어 죽었기 때문에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신에게 '봄보리는 익을 희망이 있으나 봄보리를 다 먹은 후면 민간에 양식이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런 사실을 아뢰어 경창(京倉)에서 환자곡을 받으려 하였었으나 봄보리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을 알았다. 경창에 대한 일은 봄보리가 성숙된 다음에 보아가면서 풀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京畿監司李潤慶曰: "頃者下書【救荒事】 盡言矣, 前冬極寒, 兩麥凍死, 救荒甚急. 申勅列邑, 措置可也. 卿之所歷見處, 如有雨水適中而未付種者, 另加催促, 及時付種可也." 李潤慶啓曰: "付種幾畢矣. 高陽·坡州, 種子不足, 而聞水原穀多, 故欲移給矣, 更聞之, 則虛張其數, 無實穀, 故從略移給高陽·坡州矣. 臣巡視境內, 秋麰凍死, 故到處百姓等, 言于臣曰: '春麰雖有成熟之望, 而盡食春麰之後, 則民間絶食' 云. 臣欲啓達受京倉, 而春麰時未成熟,

故未敢啓稟." 傳曰: "啓意知道. 京倉事, 待春麰成熟, 而發之可也."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4월 18일(신축)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순심을 마치고 돌아온 경기 감사 이몽량에게 백성들의 사정을 묻다

경기 감사 이몽량(李夢亮)이 순심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와 숙배하니, 전교하기를, "열읍 백성들의 사정이 어떠하더냐?"

하였다. 아뢰기를, "신이 안산(安山)·남양(南陽)·수원(水原)·진위(振威)·양성(陽城)·양지(陽智) 등지를 순심하니, 금년에는 해변이 한층 더 심하게 실농(失農)하였고, 안산·남양·수원 등지의 백성은 장차 정처없이 떠돌게까지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나올 날이 박두하여 더욱 염려됩니다. 궤군(櫃軍)의 역사에는 이전부터 기전(畿甸)의 백성들을 차출했었는데, 기전의 기근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으로는 청홍도의 가까운 고을 중 약간 풍년이 든 지역에서도 궤군을 차출하여 그 역사를 돕게 한다면 기내의 백성들이 조금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들과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京畿監司李夢亮, 畢巡入京肅拜, 傳曰: "列邑民事何如?" 啓曰: "臣於安山·南陽·水原·振威·陽城·陽智等處巡審, 則今年海邊, 尤甚失農, 安山·南陽·水原等處, 百姓將至流離. 華使出來迫近, 尤爲可慮. 櫃軍之役, 自前差出畿甸之民, 而畿甸之飢饉如此, 計不知所出. 臣意於淸洪近邑稍稔之地, 亦令差出櫃軍, 以助其役, 則畿內之民, 庶幾得蒙一分之惠矣. 請與大臣, 商確以定何如?" 傳曰: "當與大臣議定."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11월 19일(무진)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우의정 심통원이 강릉 대도호부를 강호하지 않기를 건의하다

우의정 심통원(沈通源)이 의논드리기를, "주부(州府)의 호를 강등시키는 데 대해 신이 고사(古事)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본 것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光州)의 백성이 판관(判官)을 사살하였기 때문에 광주를 광산현(光山縣)으로 강호시켰고, 수원(水原)과 배천(白川) 백성이 자기 아비를 시해했기 때문에 수원은 군(郡)으로 강등시켰고 배천은 현(縣)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충주(忠州) 사람이 자기 아비를 시해하자 주(州)를 낮추어 예성군(藥城郡)으로 만들었다가 얼마 안 되어 복구시켰고, 또 난역(亂逆) 때문에 낮추어 유신현(維新縣)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부터 국가에 관계되거나 부모를 살해한 경우가 아닌데도 강호시킨 예(例)를 신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는 일체이기 때문에 의모(義母)나 친모(親母)나 간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복(五服)의 제도를 상고하여 보면 아비를 위해서는 참최복(斬衰服)을 입고 어미를 위해서는 자최복(齊衰服)을 입어 강쇄(降殺)하게 되어 있으니, 의의(擬議)할 적에 차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저 주부의 강호는 사체가 중대한 것이어서 강릉(江陵) 한 부(府)는 거론할 것도 못됩니다. 만일 강릉 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를 개혁한다면 강원도라는 구호(舊號)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응당 원춘도(原春道)나 원양도(原襄道)나 강릉도라고 개칭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새 관인(官印)을 주조하여 행용(行用)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찌 변경하는데 대한

폐단이 없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시임(時任) 부사(府使)와 판관(判官)·찰방(察訪)은 잘 교화시키지 못하여 이런 강상의 대변을 초래케 했다는 것으로 파출시키고, 유향소(留鄕所)도 모두 풍속을 잘 정화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체직시키고, 정범(正犯) 홍봉량(洪奉良)의 집을 헐어 못을 만듦으로써 이미 죽은 뒤에도 더 주벌(誅罰)을 가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의모에게는 여문(閭門)에 정표(旌表)함으로써 절의(節義)의 풍조를 심어 만세에 명시한다면, 강호시키지 않는다 해도 창선징악(彰善懲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상이 매우 자세하게 논변하였으니 그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癸酉/右議政沈通源議: "州府降號, 臣未知古事, 以耳目所及而言之, 光州之民, 射中判官, 降爲光山縣; 水原·白川之民, 殺其父, 降水原爲郡, 降白川爲縣; 忠州之人殺其父, 降州爲藥城郡, 未幾復舊, 又以亂逆, 降爲維新縣. 自古如非係關國家, 戕殺父親, 則降號之例, 臣未之聞也. 或謂父母一體, 而義母·親母無間云. 然考之五服之制, 爲父斬衰, 爲母齊衰, 自有降殺, 則擬議之際, 不可無差等也. 大抵州府降削, 事體重大, 江陵一府, 不足計也. 若革江陵大都護府, 則江原一道, 不可仍存舊號, 應改稱原春·原襄道, 及江陵, 皆鑄新印而行用之, 其間豈無更變之弊哉? 臣之意, 將時任府使·判官·察訪, 以不能敎化, 致有綱常大變, 而罷黜之, 留鄕所, 亦皆以不能正風俗, 而駁遞之, 正犯洪奉良, 破家鑿潴, 益加旣死之誅, 其義母, 旌門表閭, 以樹節義之風, 昭示萬世, 則雖不降號, 亦可以彰善癉惡矣." 傳曰: "右相獻議, 論卞頗詳. 依議施行."
<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5월 14일(계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조강에 김우옹이 수원의 어미 살해 사건을 아뢰다
조강이 있었다. (…) 인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에 어미를 죽인 자가 있습니다. 교화가 이토록 밝지 못하니, 임금은 통렬히 자책해야 하는 것이요, 심상하게 여겨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인하여 주정공(邾定公)의 일을 거론하여 아뢰기를, "지금 아래로 인사(人事)를 살펴보고 위로 천시(天時)를 보면 변괴(變怪)가 날마자 이르는데도 인심이 게을러서 태연히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가 하면, 전하와 대신도 근심이 낯빛에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 신이 듣건대, 중종 때에는 변이(變異)가 있으면 대신을 불러 대내(大內)에 들어오게 하여 재변을 그치게 할 방도를 친히 하문하셨다 하니, 여기에서 임금과 신하가 놀라서 서로 경계하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
○庚午/朝講. (…) 因言水原有弑母者, 敎化不明至此, 人主當痛自刻責, 不可以適然而忽之也. 因擧邾定公云云, 方今下察人事, 上觀天時, 變怪日至, 而人心玩愒, 恬不之怪, 殿下與大臣, 亦未見憂形於色云云. 臣聞 中廟時, 有變異, 則召大臣入內, 親問弭災之道. 此見君臣動色相戒之意, 今時則不復有此矣." (…)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2월 24일(경오)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주강에서 김우옹 등이 수원에서 어미를 살해한 일을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벼슬을 임명할 때는 오직 현명함과 재능을 가지고 한다.' 한 대문에서 '이러므로 군자를 임용하는 것이다.' 까지 진강하였다. 진강이 끝나자, 김우옹이 신응시와 함께 아뢰기를, "**수원(水原) 백성이 어미를 시해한 일은 중대한 강상의 변입니다. 원을 파**

직하고 혁파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당 태종이 '요순 같은 성인들도 오히려 그 아들을 감화시키지 못했다.' 고 말했으니, 수령이 어떻게 집집마다 봉해줄 만하도록 백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죄를 서로 덮어 버려서 도리어 폐단이 생길 것이다." 하였다. (…)
○晝講. 自任官惟賢才, 止所以任君子也. 講訖, 宇顒與辛應時啓曰: "水原民弑母, 綱常之變甚矣. 請罷其守·革其邑." 上曰: "不然. 唐太宗有言, 堯·舜之聖, 尙不能化其子, 守令安能敎其民, 而比屋可封乎? 若如是, 則爭相掩覆, 反有弊矣." (…)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1월 27일(계묘)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조강 후에 수원의 어미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읍호 강등 논의가 있다
조강이 끝난 다음에 정원이 경연관이 아뢴, 수원(水原)의 어미를 죽이고 아비를 구타한 변을 들어 읍호(邑號)를 강등하거나 수령을 파직하자고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와 같은 변은 전에도 효유만 했으니 그럴 수 없다."
하였다. 또 우상 노수신(盧守愼)이 정월달 녹을 받지 않았음을 진달하니, 상이 주게 하였다.
○丁巳/朝講後, 政院以經筵官所啓水原有殺母歐父之變, 請降邑號, 或罷守令. 上答曰: "如此之變, 前亦(諭)[有]之, 不可爲也." 又陳右相盧守愼正月不受祿, 上命給之.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2월 12일(정사)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정원이 수원에 편모가 살고 있는 이대원의 가족 상황을 아뢰다
상이 이대원(李大源)이 국사로 죽었기에 그의 절의(節義)를 장려하려고 그의 부모가 있는지와 아들의 나이는 많은가를 물었는데, 정원(政院)이 그의 편모가 수원부에 살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대답하니, 전교하였다.
"국가가 일반 노인에게도 매달 주육(酒肉)을 보내는데, 그 자식이 국사로 죽었으니 내 마땅히 그 어미를 봉양할 터이다. 해사(該司)를 시켜 매달 주육을 보내주고, 여생을 마칠 때까지 봄·가을에는 쌀과 콩을 보내 주도록 하라. 대원의 집에 쌀 20석을 내려주라."
○癸酉/上以李大源死於國事, 當奬其節, 問其父母在乎, 其子年長乎? 政院對以其偏母居于水原府, 子年數歲矣. 傳曰: "國家於尋常老人, 月致酒肉, 其子死於王事, 予當養其母. 令該司, 月致酒肉, 春秋賜米太終其身. 大源家, 賜米二十石."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4월 14일(계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지평 이경전이 수원의 죄수 막동의 일로써 아뢰다
지평 이경전(李慶全)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수원부]의 죄수 막동(莫同)은 죄범이 극히 놀라우므로 쉽게 석방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사한 백성이 중국 군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여염에 난동을 부려 중국 군사에게 누를 끼쳤으므로 중국 장수도 증오하는 바이고, 더구나 수금된 지 10여 일이 지난 뒤에야 석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 혹시 이는 중간에서 조작한 것으로 필시 모두가 부총병(副摠兵)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 어찌 알

겠습니까. 이런 자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무리가 더한층 기탄하는 바가 없어 앞으로의 후환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접반사에게 다시 말을 잘 꾸며 회자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간사한 백성이 중국군에 투속해 여염에 피해를 끼치고 부녀를 간음하는데도 유사(有司)가 금하지 못하였다. 막동은 **수원**(水原)의 관노(官奴)로 이영(李寧)의 군중에 섞여 많은 폐단을 끼쳤으므로 헌부가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영이 체문(帖文)을 보내 석방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뢴 것이다.
○持平李慶全來啓曰: "本府囚人莫同, 罪犯極爲痛駭, 不可輕易論釋. 我國奸民, 假爲天兵之形, 作亂閭閻, 致累天兵, 亦唐將之所惡也. 況被囚浹旬之後, 始有此請, 亦安知中間所做, 未必盡出於副摠之本意乎? 此而不治, 如此之輩, 益無所忌憚, 前頭之患, 有不可言. 請令接伴使, 更爲措辭回咨." 答曰: "依啓." 時我國奸民, 投屬唐兵, 擾害閭閻, 奸淫婦女, 有司不能禁. 莫同以水原官奴, 溷於李寧軍中, 多所作弊, 憲府將欲究治, 寧送帖請釋, 故啓之.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2월 14일(갑자)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관찰사 윤방이 흉년에 따른 진휼을 건의하다

〈경기 관찰사 윤방(尹昉)이 치계하기를, "현재는 봄갈이가 시급할 때인데 도내(道內)의 쇠잔한 백성들은 비축해 둔 곡식이 조금도 없어서 종자 마련의 대책이 없고 각 관청의 문서는 한결같이 서둘러대니 호소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뜰에 가득합니다. 창고에 저축한 원곡(元穀)은 본래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이미 다 나누어 주었고, 진휼청에서 수송하는 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며 달리 변통하고 전용(轉用)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시일을 넘겨 파종할 절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금년의 풍년은 또 가망이 없으니 몹시 염려됩니다.
창고 곡식을 기록한 치부책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강화(江華)와 수원 산성(水原山城)과 죽산 산성(竹山山城)에 저축된 바가 조금 있습니다. 이는 모두 조정에서 따로 두어 비상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니, 뜻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대명(大命)이 위태롭고 일이 매우 절박한 처지에 있으니, 부득이 강화는 근방의 몇 관청이, **죽산과 수원은 산성에 소속된 관청이 약간씩 내어서 나누어 주어 종자로 사용하게 하고 죽산 산성처럼 종자가 없는 데는 비록 쌀[大米]이라도 승두(升斗)로 나누어 주어 종자와 교환할 밑천으로 삼게 하고 가을이 된 뒤에 받아낸 곳에 도로 납입하도록 하여 조정이 저축해 놓은 뜻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급히 지휘하게 하소서." 하니,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庚戌三月二十日丙申(京畿觀察使尹昉馳啓曰: "目今春耕方急之日, 道內殘民, 家無升斗之儲, 種子辦出, 百計無策, 各官文報, 一樣告急, 民之呈訴號悶者, 逐日盈庭. 倉儲元穀, 原數甚少, 已盡分給, 賑恤廳移運船隻, 尙無消息, 他無推移轉用之路. 今若蹉過日時, 未及播種之節, 則今歲西成, 又無所望, 極爲悶慮. 取考倉穀置簿, 則江華及**水原**山城·竹山山城, 稍有所儲. 此皆朝家別措, 以爲不時之需, 其意有在. 大命近止, 事在燃眉之急, 不得已江華則傍近數官, 竹山·**水原**則山城所屬官略出分給, 以爲種子之用, 如竹山山城無種租處, 則雖是大米, 升斗分給, 使爲換租之資, 秋成還納於受出處, 以毋虧朝家積貯之意, 恐爲便當. 令備邊司急急指揮." 啓下備邊司.)
<광해군일기 26권, 광해군 2년 3월 20일(병신) 1번째기사>(중초본)

사회/윤리·풍속

수원의 유망인들의 전역을 감해 주는 문제를 논의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시백(李時白)이 상소하여 본부의 유망인(流亡人)의 전역(田役)을 감해 주기를 청하고, 조총(鳥銃)·화약 등 물건을 내려주어 조련용으로 쓰게 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해조에 내렸다. 호조가 회계하기를, "**수원 고을은 지역이 매우 넓고 인물 또한 많으니, 해마다 더 기경(起耕)하는 숫자가 어찌 6백 결(結)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새로 기경한 곳을 찾아내어 진전(陳田)의 수를 보충한다면 얻은 만큼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도모하지는 않고 오직 감해주기만을 힘쓰고 있으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새로 기경한 곳을 찾아내어 진결(陳結)을 충당하도록 한 다음에 그의 상소대로 탕척해 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水原府使李時白上疏, 請減本府流亡人田役, 且乞賜鳥銃火藥等物, 以爲操練之用事, 下該曹. 戶曹回啓曰: "水原爲邑, 幅員甚廣, 人物亦衆, 逐年加起之數, 豈止六百結而已哉? 搜括新起, 以充陳田之數, 則所得可補所失, 不此之圖, 惟務剋減, 極爲未便. 請令括新起·充陳結, 然後依其疏, 始行蕩滌." 上從之.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1월 6일(을묘)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 등의 기민들이 강도와 남한에서 옮겨오 곡식을 받기 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아침에 이익현(李益賢) 등의 상소 사연을 보았더니, 민생의 기곤(飢困)이 이미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 마음이 타는 듯하여 잠시도 편치 못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해서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 날 정태화가 청대할 때에, 익현의 상소는 비록 매우 참월하지만 끝내 구활하는 일이 없으면 성상의 체득한 인정(仁政)에 흠결이 있을까 두려우니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구제케 함으로써 백성의 바람에 위로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상이 이런 하교를 하게 된 것이다.

이때 수원(水原)·금천(衿川)·김포(金浦) 등의 기민(飢民)들이 비국(備局)에 와서 호소하여, 강도(江都)·남한(南漢)에서 옮겨온 곡식을 받기를 원하였다. 비국이 강도·남한 두 곳의 쌀 5천 석을 내어 경기 감사로 하여금 각읍에 나누어 진휼케 하기를 청하였다. 익현 등이 올라온 것은 미처 나누어 진휼하기 전이기 때문에 호조가 내려가 받아 먹게 하도록 청하였고, 상소한 80여 명에게 아울러 돌아갈 식량 1두씩을 지급하였다.

○上, 下敎政院曰: "朝觀李益賢等疏辭, 則民生飢困, 已至十分地頭. 予心如灼, 食息靡寧. 其令該曹, 參酌救急." 蓋當日鄭太和請對時, 以爲益賢之疏, 雖甚〔猥〕越, 終無救活之事, 則恐有歉於聖上由己之仁, 宜令該曹, 參酌賙賑, 以慰民望也, 於是, 上有是敎. 時水原·衿川·金浦等邑, 飢民來訴於備局, 願受江都·南漢移轉之穀. 備局請出兩處米五千石, 使京畿監司分賑各邑. 而益賢等上來, 在於未及分賑之前, 故戶曹請令下去受食, 陳疏者八十餘人, 竝給回糧一斗.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4월 24일(계묘) 4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대사헌 박장원이 술만 먹고 일을 하지 않는 수원부사 박경지의 파직을 청하다

(…) 이때에 이르러 대사헌 박장원 등이 아뢰기를, (…) 하고,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박경지(朴敬祉)는 부임한 이후로 행정을 부하에게 맡기고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

으며, 또 작년 전세(田稅)를 금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봉입(捧入)하기를 청한 본도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상께서 '봉입을 독촉하지 말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라.' 는 분부를 내리셨는데도, 경지는 통보가 내려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앞질러 농사철에 굶주린 백성을 독촉하여 받아들이고서 급기야 배에 실어 서울의 창고로 옮기다가 배가 전복되자 이미 거둔 쌀을 장차 다시 거두려 하니 온 경내에 원망이 자자하다 합니다.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니 박경지를 파직하소서." 하니, 따랐다.

○(…) 至是, 大司憲朴長遠等啓曰: (…) 又啓曰: "水原府使朴敬祉到任之後, 政委下吏, 醒日常少, 且上年田稅, 因本道監司待秋收捧之請, 自上有姑勿督捧以紓民力之敎, 而敬祉不待回下, 徑先督納於農時阻飢之民, 及其船運覆沒, 已徵之米, 又將再徵, 闔境怨咨. 聽聞可駭, 請罷職." 上從之.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8월 10일(계해)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고기잡이하다 익사한 수원 백성을 위로하는 은전을 거행하게 하다

수원(水原)의 바닷가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남녀(男女) 60여 명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익사(溺死)하였으므로, 위로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丁卯/水原沿海居民男女六十餘人, 入海漁採, 遭風溺死, 命擧恤典.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2월 25일(정묘)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윤지선의 의견에 따라 구휼에 소홀히 하는 수원부사 이언기 등을 추고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 윤지선이 말하기를, "경기는 백성의 곤궁이 막심한데, 수령(守令) 중에는 혹 조곡(糶穀)을 막아두고 진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누구인지 물었다. 윤지선이 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언기(李彦紀)와 양주 목사(楊州牧使) 김성적(金盛迪)입니다." 하니, 임금이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각별히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

○庚子/引見大臣·備局諸臣. (…) 趾善言: "畿甸民窮莫甚, 而守令或有閉糶不賑者." 上問誰也, 趾善曰: "水原府使李彦紀·楊州牧使金盛迪." 上命從重推考, 另加申飭. (…)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2월 14일(경자)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 부사 김보택의 흉황 대책에 대한 상소문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보택(金普澤)이 상소하여 본부의 흉황(凶荒)을 진달하며 급재(給災)·분재(分災) 및 면전(綿田)의 급재를 청하고, 또 청하기를, "공명첩(空名帖) 수백 장을 얻어 전매(轉賣)하여 곡물 모으는 데 보태려고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2필(疋)의 신역(身役)은 비록 견감은 허락하였으나 1필(疋)의 신역(身役)은 일찍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의 백성들은 한 번 변통한 후부터 원래 2필을 바치는 자가 없었으니, 혹은 절반(折半)이거나 혹은 3분의 1로 작량(酌量)하여 견감하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경내(境內) 및 가까운 고을 소재 각 아문(衙門)의 둔곡(屯穀)을 진자(賑資)로 가져다 쓰고 있으니, 비국(備局)의 무명베 4, 50 동(同)을 빌어서 각 아문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진청미(賑廳米) 1천 석(石)을 팔도록 허락하고, 본부에서 힘껏 값을 마련해 진자(賑資)에 보태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품처하게 하였다.
○水原府使金普澤, 上疏陳本府凶荒, 請給分災及綿田災, 又請得空名帖數百張, 爲轉賣聚穀之助, 又言: 二疋身役, 雖許蠲減, 一疋身役, 未曾擧論. 本府民人, 一自變通之後, 元無納二疋者, 或半折或三分其一, 而酌量蠲減, 決不可已也. 境內及近邑所在各衙門屯穀, 取用於賑資, 而貸得備局木四五十同, 充報各衙門. 又請許賣賑廳米千石, 而自本府竭力備價, 取補賑資, 上命廟堂稟處.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8월 8일(계미)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특진관 윤취상이 수원 지역의 진휼책에 대해 논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윤취상(尹就商)이 청하기를, **“관서의 환곡(還穀)을 옮겨서 수원의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수원 군병(軍兵)의 신역(身役) 6두미(斗米)도 또한 1두를 감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환곡을 옮기는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수찬(修撰) 황귀하(黃龜河)가 청하기를, “각 고을의 받아들이지 못한 옛 환곡(還穀)은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또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御晝講. 特進官尹就商, 請移關西還穀, 賙賑水原飢民, 又請水原軍兵身役六斗米, 亦減一斗, 上許之, 移穀事, 令廟堂稟處. 修撰黃龜河, 請停捧各邑舊還穀未捧者, 又命廟堂稟處.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9월 3일(정미)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여러 신하들과 연해 지방의 재해 문제·호포와 구전의 법·권설의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 및 비국(備局)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 임금이 한림(翰林)이 곧장 퇴출(退出)하고 행공(行公)하지 않는다 하여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고하게 했는데도 끝내 명을 받들지 않자, 별 겸춘추(別兼春秋)를 차출하여 신천(新薦)을 보완하라고 명하고, **또 수원(水原)에서 재해를 입었다 하여 본부(本府)의 시재(試才)를 명년 1월·2월 사이로 물려서 행하라고 명했다.**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호포(戶布)·구전(口錢)의 법을 민진후(閔鎭厚)에게 그 대총(大總)을 마련하게 하였으나 지금 갑자기 시행하기가 어렵고, 결포(結布)도 역시 편리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하자, (…)
○甲戌/引見大臣及備局有司堂上. (…) 上以翰林徑出, 不爲行公, 禁推, 而終不承命, 命差出別兼春秋, 完新薦. 又以水原被災, 本府試才, 命退行於明年正·二月間. 宗泰曰: “戶布·口錢之法, 使閔鎭厚磨鍊其大總, 而今難遽行, 而結布亦多難便.” (…)
<숙종실록 56권, 숙종 41년 10월 12일(갑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집의 안상휘가 남한과 수원의 백성이 흉년을 당했으니 시재하라는 명을 정지하도록 청하다

집의 안상휘(安相徽)가 상소하기를, **“남한(南漢)과 수원(水原) 두 부(府)의 백성들이 이런 흉년을 당하여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으니,** 의당 시재(試才)하라는 명령을 정지하여 공사(公私)의 낭비되는 폐단을 돌보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執義安相徽上疏言: 南漢及水原兩府之民, 當此歉歲, 不遑他事, 宜寢試才之命, 以恤公私耗費之弊. 不從.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0월 11일(무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장령 이지회가 수원에서 한 과부가 살인하였으니 수령을 신칙할 것을 청하다

장령 이지회(李之晦)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또 논하기를, **"수원에 어떤 과부가 집안 아저씨와 화목하지 못하다가 그 아저씨의 노복의 아내에게 성을 내어 손으로 때려 죽이고는 그 흔적을 감추었는데,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명확히 조사하여 옥안(獄案)을 만들고 지방관을 파직하게 함으로써 그의 살피지 못한 잘못을 신칙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직언을 구하는 하교에 응하여 올린 상소에 진달한 3개 조항은 오늘날 병폐에 대한 좋은 약제이다. 감히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엊그제 간하는 신하가 문답식으로 말을 하여 나의 금주령을 어지럽혔으니, 그를 어리석다고 한다면 가하지마는 곧다고 일컫는다면 지나친 것이다. 상소 끝에 덧붙여 진술한 것은 풍화(風化)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조치를 내리겠다." 하고, 이어서 수찬 이석재(李碩載)에게 사실을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掌令李之晦上疏, 略曰: (…) 又論: "水原地, 有一寡婦, 不睦於其同堂之叔, 移怒於其奴妻, 手自撲殺, 仍掩其跡, 傳說狼藉, 宜令道臣, 明査成獄, 罷其地方官, 以飭其不察之失也." 批曰: "應旨陳章, 所陳三條, 爲今藥石. 敢不自勉? 頃者諫臣, 設爲問答, 亂我邦禁, 許以愚則可矣, 稱以直則過也. 疏末附陳, 關係風化, 當有以處分也." 仍命修撰李碩載按覈之.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9월 15일(갑자)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호서·영남·관동 4도의 진휼을 마치다

경기(京畿)·호서(湖西)·영남(嶺南)·관동(關東) 4도(道)의 진제(賑濟)를 정월부터 시작하여 설시(設施)하다가 이에 이르러 진휼(賑恤)을 마쳤다. **【경기의 광주(廣州)·수원(水原)·여주(驪州)·남양(南陽)·죽산(竹山)·이천(利川)·음죽(陰竹) 등의 고을과 화량진(花梁鎭)은 기민(饑民)의 총수가 6만 4천 24구(口)이고 진곡(賑穀)이 4천 2백 25석이었고**, 호서(湖西)의 대흥(大興)·한산(韓山)·예산(禮山)·덕산(德山)·당진(唐津)·태안(泰安)·천안(天安)·임천(林川)·서산(瑞山)·은진(恩津)·직산(稷山)·석성(石城)·서천(舒川)·신창(新昌)·해미(海美)·평택(平澤)·온양(溫陽)·면천(沔川)·아산(牙山)·충주(忠州)·서원(西原)·홍주(洪州)·음성(陰城) 등의 고을과 성환(成歡)·율봉(栗峰) 등의 역(驛)과 마량(馬梁)·안흥(安興)·평신(平薪)·서천포(舒川浦)·소근(所斤) 등의 진(鎭)은 기민이 2만 9천 5백 31구이고 진곡이 2만 3천 3백 97석이었고, 영남(嶺南)의 공진(公賑)은 지례(知禮)·비안(比安)·하동(河東)·금산(金山)·개령(開寧)·예천(醴泉)·용궁(龍宮)·안동(安東)·대구(大邱) 등의 고을은 구급(救急)하였고, 상주(尙州)·성주(星州)·인동(仁同)·선산(善山)·경주(慶州)·진주(晉州)·곤양(昆陽)·영천(永川)·삼가(三嘉)·예안(禮安)·거창(居昌)·칠곡(漆谷)·초계(草溪) 등의 고을은 기민 총수가 1만 3천 2백 83구이고 진곡이 9천 5백 27석이었고, 관동(關東)의 인제(麟蹄)·고성(高城) 두 고을은 기민 총수가 7백 84구이고 진곡이 1백 석이었다】

○京畿·湖西·嶺南·關東四道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京畿廣州·水原·驪州·南陽·竹山·利川·陰竹等邑, 花渠鎭摠饑民六萬四千二十四口, 賑穀四千二百二十五石湖西大興·韓山·禮山·德山·唐津·泰安·天安·林川·瑞山·恩津·稷山·石城·舒川·新昌·海美·平澤·溫陽·沔川·牙山·忠州·西原·洪川·陰城等邑, 成歡·栗峯等驛, 馬梁·安興·平薪·舒川浦·所斤等鎭饑民二萬九千七百三十一口, 賑穀二萬三千三百九十七石. 嶺南公賑知禮·比安·河東·金山·開寧·醴泉·龍宮·安東·大邱等邑, 救急尙州·星州·仁同·善山·慶州·晋州·昆陽·永川·三嘉·禮安·居昌·漆谷·草溪等邑, 摠饑民一萬三千二百八十三口, 賑穀九千五百二十七石. 關東麟蹄·高城二邑, 總饑民七百八十四口, 賑穀百石】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5월 5일(갑자)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진휼에 대한 논공 행상을 행하다

경기·호서·영남에 진휼청을 설치하였다. 1월부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끝마쳤다.**【경기의 관청이 진휼한 곳은, 광주(廣州), 여주(驪州), 파주(坡州), 수원(水原), 부평(富平), 인천(仁川), 남양(南陽), 풍덕(豊德), 통진(通津), 고양(高陽), 안산(安山), 김포(金浦), 교하(交河), 양천(陽川), 금천(衿川), 과천(果川), 음죽(陰竹), 양주(楊州), 장단(長湍), 죽산(竹山), 안성(安城), 진위(振威), 용인(龍仁), 이천(利川), 양성(陽城), 양지(陽智), 포천(抱川) 등의 고을과, 화량(花梁), 덕포(德浦), 덕적(德積), 주문(注文), 장봉(長峰) 등의 진(鎭)이었다.** 총 굶주린 백성은 55만 52명이었고, 진휼로 들어간 곡물은 2만 5천 2백 석 영(零)이었다. (…)

○京畿·湖西·嶺南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京畿公賑, 廣州·驪州·坡州·水原·富平·仁川·南陽·豐德·通津·高陽·安山·(金淵)〔金浦〕·交河·陽川·衿川·果川·陰竹·楊州·長湍·竹山·安城·振威·龍仁·利川·陽城·陽智·抱川等邑, 花梁·德浦·德積·注文·長峯等鎭. 總饑民五十五萬五十二口, 賑穀二萬五千二百石零. (…)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5월 23일(계축)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의 진휼을 마치다

경기에 진휼(賑恤)을 베풀었는데, 정월에서 시작하여 이 때에 이르러서 진휼을 마쳤다.**【공진(公賑)으로, 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豊德)·통진(通津)·남양(南陽)·죽산(竹山)·인천(仁川)·부평(富平)·고양(高陽)·김포(金浦)·교하(交河)·양천(陽川)·광주(廣州)·양주(楊州)·수원(水原)·용인(龍仁)·양지(陽智)·과천(果川) 등의 고을과, 덕포(德浦)·화량(花梁)·주문(注文)·덕적(德積)·장봉(長峯) 등의 진(鎭)에, 총 기민(飢民) 34만 3천 8백 38구(口)이며**, 진곡(賑穀) 3만 6백 32석 영이었다. 강화(江華)는 계묘년 12월부터 진휼을 설행하여 이해 5월에 진휼을 마쳤는데, 총 기민은 2만 9천 2백 35구(口)에, 진곡은 7백 95석 영이었다】

○京畿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公賑, 坡州·長湍·豊德·通津·南陽·竹山·仁川·富平·高陽·金浦·交河·陽川·廣州·楊州·水原·庇仁·陽智·果川等邑, 德浦·花梁·注文·德續·長峯等鎭, 總饑民三十四萬三千八百三十八口, 賑穀三萬六百三十二石零. 江華府自癸卯十二月設賑. 是年五月畢賑. 總饑民二萬九千二百三十五口, 賑穀七百九十五石零】
<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 4월 20일(갑진)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사직 강유가 유언비어에 동요된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상소하다

사직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일전의 허황(虛謊)한 설은 참으로 하나의 변괴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고의로 선창(先唱)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선동하기를 좋아하는데 비록 이번의 일로 말하더라도 하루 사이에 남양(南陽)·수원(水原)·금천(衿川)·과천(果川)·인천(仁川)·부평(富平)이 대부분 소요(騷擾)하여 심지어 목주(木主)를 묻고 닭과 개를 잡아 남부 여대(男負女戴)하여 산야에 가득차게 가리어 경계를 넘어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도(道)를 넘어서 깊은 골짜기로 향하기도 하여 연해(沿海)의 각 고을이 거의 텅 비어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향한 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처 그것이 허황한 말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틀림없는 말로 여겼을 것이며, 다른 도의 사람들 역시 반드시 소요하여 바람이 불면 풀이 움직이는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효유(曉諭)하는 조치가 있게 된 연후에야 인심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크게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수원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본주(本州)는 5천(千)의 병마(兵馬)가 되는데 평민들이 피해서 가는 때에 군병들도 반드시 그 가운데 들어 있었을 것이니, 설령 뒷날 강토에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군사를 징발(徵發)하겠습니까? 이것 역시 지금에 이르러서 마땅히 정식(定式)이 있어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연해(沿海)의 백성들이 대부분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고 하니, 이들은 반드시 충청도의 네 군(郡)과 강원도의 아홉 고을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이 두 도(道)와 영남 지방은 서로 가까우니, 세 도(道)에서 반드시 소란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 도에 행회(行會)하여 그것이 허황(虛謊)된 말이었음을 밝히고 만일 흘러 들어간 백성들이 있으면 낱낱이 다시 돌려 보내게 해야 합니다. 군병 가운데 도망해 간 자에 대해서는 군율(軍律)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일체로 엄중히 신칙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미리 정지(定志)가 있게 해야 합니다. 허황된 말을 먼저 창도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장본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갑자기 조사해 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천천히 염탐(廉探)하여 극률(極律)로 감죄(勘罪)하면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근심은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저 경기(京畿) 서남쪽 연해(沿海)의 고을은 만일 불행한 때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신이 남양(南陽)을 다스릴 때에 망령되이 한 통의 상소를 진달하였습니다. 지금도 칠실(漆室) 근심을 금할 수 없어 감히 이처럼 논열(論列)하는 것이니, 삼가 원하옵건대 그 어리석음을 살펴 진퇴(進退)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일전의 일은 이렇게 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듣고 보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세 도(道)에 효유하는 일은 도리어 소란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요동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선창(先唱)한 자에 대해서는 잘못 전해진 것이 다시 잘못 전해져서 선후를 분간하기 어려운 만큼 비록 조사해 내려해도 한갓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 걸려 들게 할뿐이니 이는 매우 불가(不可)하다. 그대가 나라 일을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으로 이처럼 지위를 벗어나서 말을 진달하니 아주 칭찬할 만하다." 하였다.

日前虛謊之說, 誠一變怪也. 是必有故爲先倡者矣. 我國之人, 好相煽動, 雖以今番事言之, 一日之內, 南·水·衿·果·仁·富, 擧皆騷動, 至於埋其木主, 殺其鷄犬, 男負女戴, 漫山蔽野, 越境而入深山, 越道而向深峽, 沿海各邑, 幾乎虛無人矣. 若其向深峽者, 必未及知其虛謊, 丁寧爲說, 他道之人, 亦必騷擾, 不無風吹草動之慮. 及今有曉諭之擧, 然後可以鎭安人心矣. 又

有大可憂者. 雖以水原一州言之, 本州爲五千兵馬, 而當其平民避去之時, 軍兵亦必入於其中, 設令後有疆域之虞, 從何調發乎? 此亦及今宜有定式. 臣聞沿海之人, 多以深峽爲歸云, 是必向忠淸道四郡·江原道九邑. 此兩道, 與嶺南相近, 則三道必有騷屑. 行會三道, 明其爲虛謊之說, 如有人民流入者, 一一還送. 至於軍兵避去者, 從以軍律之意, 一體嚴飭, 使民人, 豫有定志. 至於先倡虛謊之說者, 必有其人. 此雖猝難覈出, 而徐徐廉探, 勘以極律, 則此後可無如今之患矣. 大抵京畿西南沿海之邑, 如當不幸之時, 則最先可憂之地, 故臣之待罪南陽也, 妄陳一疏. 今不勝漆室之憂, 敢此論列, 伏乞察其愚, 而進退焉. 批曰: "日前事, 猶不料至此, 聞極駭歎. 三道曉諭事, 反有繹騷之慮, 勿擾爲上策. 先倡者事, 以訛傳訛, 先後難分, 雖欲査探, 徒令人人疑畏, 無辜誤罹, 此則甚不可矣. 爾以憂愛之意, 陳此出位之言, 殊可尙也."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4월 25일(임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영남·호남·호서·관동·관북 여섯 도의 진휼을 마치다

경기(京畿)·영남(嶺南)·호남(湖南)·호서(湖西)·관동(關東)·관북(關北) 여섯 도(道)의 설진(說賑)을 정월(正月)부터 베풀기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진휼을 마쳤다.【**경기. 광주(廣州)·수원(水原)·통진(通津)·풍덕(豊德)·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고양(高陽)·교하(交河)·과천(果川) 등의 고을과 덕포(德浦)·덕적(德積) 등의 진(鎭)의 총 기민(饑民)은 17만 8천 9백 39구(口)이고, 진곡(賑穀)은 1만 3천 4백 44석(石) 영(零)이며**, 강화부(江華府)의 사진(私賑)은 총 기민이 4천 2백 32구이고, 진곡은 1백 86석 영이며, 전(錢)이 6백 24냥 영이다. (…)】(…)

○己丑/京畿·嶺南·湖南·湖西·關東·關北, 六道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京畿, 廣州·水原·通津·豐德·仁川·富平·金浦·高陽·交河·果川等邑·德浦·德積等鎭, 總饑民十七萬八千九百三十九口, 賑穀一萬三千四百四十四石零. 江華府私賑, 總饑民四千二百三十二口, 賑穀一百八十六石零·錢六百二十四兩零. (…)】(…)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5월 23일(기축)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부 부로들에게 유시하다

수원부(水原府)의 부로(父老)들에게 유시(諭示)하였다. "현륭원에 참배하고 돌아온 뒤에도 그 생각이 잊혀지지 않고 또렷하다. 게다가 새 고을에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살림을 꾸려줄 일로 계속 마음이 쓰인다. 고을의 숙소(宿所)에서 촛불을 가져오라 하여 명령을 써서 내려 보냈으니 묘당의 신하들은 필시 대책을 강구해놓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빈청 연석에서는 마땅히 조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밖에도 제때에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 임금의 말은 신용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식량은 넉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첫째는 10년 동안 급복(給復)한다는 것이 유명 무실(有名無實)한 것이 되었고 둘째는 올봄 보릿고개의 양식에 대한 약속이 전혀 알맹이가 없는 것이 되었다.

애초에 급복해주라는 명령은, 바로 토지에 대한 고정적인 조세를 면제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세(土地稅)는 토지의 주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유난히 혜택을 입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이 혜택을 입지 못한다. 이 때문에 급복(給復)의 명목만 있을 뿐 급복의 실속이 없는 것이다. 새 고을에 사는 백성들은 태반이 군교나 아전, 하인이나 종 같은 부류들로서, 이들은 본디 부역이 없는 사람들이라 면제해 주려 하

여도 해줄 부역이 없다. 이것은 백성들을 속이는 것에 가까우니, 더욱이 너무도 불성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독성(禿城)**에 진(鎭)을 설치할 때 별도로 복호전(復戶田) 몇백 결(結)을 떼주었는데, 능복(陵復)·역복(驛復) 등의 규정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에 힘을 입고 있다. 한 성(城)의 이해(利害) 관계는 한 성에 그치는 것인데도 성조(聖祖)의 처분을 아직도 단호히 실행하고 있다. 더구나 본부(本府)는 바로 나의 팔다리인 셈이고 고을이 서울 부근의 큰 관방(關防)이 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수원의 새 고을에 사는 민호(民戶)에 대하여, 10년 동안 조세를 면제하는 토지 5백 결을 주어서, 임금의 말을 미덥게 하려는 뜻을 보이라.**

식량을 넉넉하게 해주는 일이 비록 신의롭게 하는 일 다음에 있지만 백성들이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는 식량 문제를 어찌 무관심하게 볼 수 있겠는가. 새 고을의 백성들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사를 왔으니 어느 겨를에 가을보리를 심었겠는가.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지붕을 이고 담을 쌓는 일에 바삐 애를 쓰니, 봄갈이 때 파종하지 못한 것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른바 보릿고개의 양식에 대한 약속이 전혀 알맹이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술년이 다시 돌아온 지금 좋은 상서(祥瑞)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자나깨나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행여 하늘의 음덕을 받아 팔도에 풍년이 들었을 때, 유독 이 새 고을의 백성들만 봄에는 먹을거리가 바닥나고 여름에는 농사를 못지어, 다 함께 하지 못한다는 탄식이 나오게 되면, 내가 오히려 밥을 대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겠으며, 또 먹은들 목에 넘어가겠는가. 경기(京畿)와 인접한 호서(湖西)의 넉넉한 고을에는 창고에 남겨둔 밀[牟穀]이 있을 것이니 새 고을의 민호를 계산하여 한 호에 서너 포(包)씩 나누어주되 환곡을 나눠주는 예에 따르고 가을에 다시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해주려는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나는 본부를 마치 팔다리처럼 소중히 여긴다.' 는 것을 글제로 내걸어 선비들을 시험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외면상 관방(關防)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선침(先寢)을 이곳에 모신 뒤로부터 이 고을의 이 백성이 집안 사람이나 부자간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백성들이 즐겁게 살면 나 역시 즐겁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주(安住)하면 나 역시 편하게 지낼 것이다. 백성들은 아주 어리석은 것 같지만 또한 더없이 신령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지성이면 신령도 감동시킨다고 하였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이 열 줄의 윤음(綸音)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거듭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조치가 선대 무덤을 위하고 나아가 백성들에게까지 미쳐 나가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하라."

○丙寅/諭**水原**府父老曰: "拜園歸來, 餘懷耿耿. 重以新治之聚民營産, 關念不已. 縣齋宿次, 呼燭宣綸, 廟堂之臣必已講究擬待, 賓筵當有措處, 而外此二件事, 有趁卽拮据者, 蓋王言不可不信, 民食不可不裕. 一曰十年給復之有名無實也, 二曰今春麥糧之無麪不托也. 原初給復之命, 卽謂土瓜常賦, 而我國土稅, 田主當之, 有田則偏蒙, 無土者未霑, 此所以有給復之名, 而無給復之實也. 新治居民, 太半是若校·若吏·若隷·若奴之屬, 此屬本係無役, 欲除無可除, 是幾於欺民, 尤豈非不誠之甚乎? 昔在**禿城**之設鎭也, 別劃復戶田幾百結, 如陵復·驛復之規, 至于今居民永賴. 一城之利害, 止於一城, 而聖祖處分, 尙且斷然行之. 況本府卽吾股肱, 郡爲畿輔大關防乎. **水原**新治民戶, 限十年給五百結, 以示信王言之意. 足食雖居信下, 重玆民天, 亦豈恝然? 新治之民, 挈搬在去歲秋冬間, 何暇耕秋麥? 迨此歲翻, 又矻矻於結茅築堵, 春種之未播, 勢亦所使, 此所謂無麪之不托也. 際値庚歲之重回, 上瑞之祝, 寤寐如結. 倘賴天庥, 使八路告豐, 獨此新治民庶, 春而牖食, 夏而廢農, 擧懷不咸之歎, 則予尙可當飯甘食, 食亦下咽乎? 畿

內·湖西隣近有裕邑留庫牟穀, 支計新治民戶, 戶俵數包, 用還分例, 秋勿更徵, 以副裕民食之望. 予視本府, 如視股肱, 揭題試士, 此猶指外面關防而言. 自奉先寢是鄕, 是民何異於家人父子? 民之樂生予亦樂, 民之安業予亦安. 民雖至愚, 亦自至神, 故曰至誠感神. 令地方官, 將此敷示十行, 申諭民衆, 俾知此擧之爲先寢, 推以及民."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5일(병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사직 신기경이 수원 민가의 기근 구제법 등 시무책에 대해 상소하다

사직 신기경(愼基慶)이 상소하기를, "(…) **수원(水原)의 민가를 보살펴주는 정사로서는 본부에 보관중인 전세(田稅)를 적절히 헤아려 발매하되 기근 구제법처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재물을 낭비하고 곡식을 축내는 것은 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경의 말이 과연 좋다. 너무 지나친 것을 금하는 것은 해당 관원이 있다. 재해를 당한 전결(田結)에 관한 일은 내분(內分)·외분(外分)을 막론하고 이미 모두 방백에게 맡겼으니, 이제 무슨 특별히 분부할 것이 있겠는가. **수원**의 새 고을에 유호(儒戶)·장호(匠戶)·노비호(奴婢戶) 등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아주는 예에 의해 돌보아 주자는 문제는 이미 10년 동안의 부역을 면제하고 또 생업을 보조하는 재물을 나누어주었다. 이 뒤로 그들이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주는 것은 해당 부사가 어떻게 여러모로 잘 요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수어청·총융청 두 영문의 일은 갑자기 묘당에서 품의하여 처리할 일이 아니다. 둔전세(屯田稅)의 폐단은 방금 특별히 칙교를 내린 일이 있다. 각도에 환곡이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찌 경의 말을 듣고서야 알겠는가. 지금 백성을 위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데서 덜어내 작은 데를 보태주는 정사가 아직도 일신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한층 더 유의하고자 한다.(…)" 하였다.

○司直愼基慶上疏曰: (…) **水原**民戶勞來之政, 留置本府田稅, 量宜發賣, 略倣賑飢法. (…) 批曰: "糜財銷穀, 莫甚於酒, 卿言果好. 禁其太過, 卽有司存焉. 災結事, 無論內分外分, 旣皆付之於方伯, 今何別有知委? **水原**新治儒戶·匠戶·奴婢戶等新接之類, 依發賣例周給事, 已給十年之復, 更畫助業之財. 此後接濟, 在該府使周章料度之如何. 守摠兩營事, 非猝乍間廟堂稟處之事. 屯稅之弊, 才有別下飭敎矣. 各道還穀之多寡不均事, 豈待卿言而知之? 卽目下爲民救弊之指先屈者. 然而裒益之政, 姑未見一新, 而有刮目之效, 更欲十分留意矣.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9월 19일(신묘)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의 경계인 사근현에서 아쉬움을 달래고, 노역한 백성의 세금을 면하다

어가가 **사근현(沙斤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쉴 때에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가슴이 막히는 병이 있어 궁궐을 나올 때에 꽤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배알하는 예를 마치고 나니 사모하는 마음이 다소 풀리어 가슴 막히는 증세도 따라서 조금 가라앉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 지역은 바로 수원의 경계이다.** 말에서 내려 머무르며 경들을 불러 보는 것은 대저 나의 행차를 지연시키려는 뜻이다."

하고, 인하여 그 지역을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命名)하였다. 노량진에 이르러 망해정(望

海亭)에 나아가 금군(禁軍)의 기마병이 먼저 강을 건너가 북쪽 기슭 양편에 배열하여 서라고 명하고, 이어서 선전관에게 명하여 신전(信箭)을 가지고 여러 군사들을 지휘하여 차례로 다리를 건너게 하니, 대오(隊伍)가 정숙하여 감히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뒤지거나 앞서는 자가 없었다. 근신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전일 선창(船艙)을 설치할 때에는 걸핏하면 수만 금을 허비했었는데, 배다리[舟橋]를 설치한 뒤로는 수백 금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대단하게 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원행(園幸)의 연로(輦路)에 있는 각읍의 농부와 민가에 특별히 금년 가을 환자 모곡을 면제해주라 명하고는 전교하기를, "행차시 1백 리나 되는 연로(輦路)가 숫돌과 같이 평평하고 화살과 같이 곧아서 길닦는 공력을 허비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농부들이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겨울과 봄의 큰 눈이 내린 뒤였음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방관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駕至沙斤峴, 下馬少憩, 謂侍臣曰: "予素有腳氣, 出宮時頗覺作苦, 今幸展拜禮成, 孺慕少伸, 腳氣亦隨而稍降. 今當回鑾, 予懷如何? 此地卽水原境也. 下馬駐蹕, 召見卿等, 此蓋遲遲吾行之意也." 仍命其地曰遲遲臺. 至露梁津, 御望海亭, 命禁軍馬兵先渡, 北岸兩旁排立, 仍命宣傳官, 持信箭指揮諸軍, 以次渡橋, 隊伍整肅, 無敢參差後先. 顧謂近臣曰: "在前船艙動費屢萬金, 自設舟橋, 不過數百金, 豈非大段省費乎?" 命園幸輦路各邑田夫民戶, 特除今年秋糴耗, 敎曰: "幸行輦路, 百里如砥如矢, 下費除治之功, 專由田夫之效勞. 況冬春大雪之餘乎? 令地方官, 曉諭民人."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6일(병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 · 광주 · 금천 · 과천의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내리다

수원 · 광주 · 금천 · 과천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내렸다.【수원의 굶주린 백성은 1천 1백 40명이고, 금천의 굶주린 백성은 1백 46명이고, 과천의 굶주린 백성은 3백 60명이고, 광주의 굶주린 백성은 1백 명이었다】

○賜水原 · 廣州 · 衿川 · 果川飢民米.【水原飢民一千一百四十, 衿川飢民一百四十六, 果川飢民三百六十, 廣州飢民一百】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부 등지의 임자년 묵 환곡을 탕감하다

기한을 물려주었던 광주(廣州) · 남양(南陽) · 안성(安城) · 안산(安山) · 용인(龍仁) · 진위(振威) · 시흥(始興) · 과천(果川) 등의 고을과 수원부(水原府)의 임자년 묵 환곡을 탕감하였다.

전교하기를,

"경기의 여덟 고을에서 나무를 심는 일로 해마다 백성들을 부렸는데 수령에게는 수고에 보답하는 일을 대략 베풀었으나 백성들은 동일하게 보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소중한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부렸으니 당연히 감사하게 여기는 뜻을 보여주는 정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올해 조금 풍년이 들었다 하여 작년에 기한을 물려준 환곡을 독촉하여 받아들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시기에 은혜를 베풀면 실정에 맞는 정사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8개 고을의 임자년 묵 환곡으로 민간에 있는 것들을 특별히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라." 하고, **또 수원부에도 광주 등지의 고을에 적용한 예에 따라 하도록 명하였다.**

○戊寅/蠲廣州·南陽·安城·安山·龍仁·振威·始興·果川等邑, 水原府壬子條停退還穀. 敎曰: "畿內八邑之以植木年年役民, 而守令略施酬勞之擧, 小民未蒙一視之惠. 爲所重, 旣役民, 當有示意之政. 今年以稍熟, 昨年停退, 聞欲督捧, 趁今施惠, 可謂實政. 八邑壬子條還穀在民間者, 特令勿捧." 又命水原府, 亦依廣州等邑例.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0월 18일(무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사민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기민에게 죽을 먹여주다

신풍루(新豊樓)에 거둥하여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눠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먹여주었다.【수원부의 사민 5백 39구(口)에게 미곡 1백 98석(石) 10두(斗)를 주고, 진휼(賑恤) 대상인 백성 4천 8백 13구에게 미곡 1백 69석 9두(斗) 7승(升)과 소금 12석 12두 9승 9합(合)과 죽을 쑬 미곡 9석 9두 2승과 미역 9백 25립(立)과 간장 1석 12두 7승 4합을 주었다】
○丙申/御新豊樓, 賜四民米·饘飢民粥.【水原府四民五百三十九口, 米一百九十八石十斗, 賑民四千八百十三口, 米一百六十九石九斗七升·鹽十二石十二斗九升九合·粥米九石九斗二升·甘藿九百二十五立·艮醬一石十二斗七升四合】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화성부의 사민 및 기아자들에게 쌀과 돈을 주다

화성부(華城府)의 사민(四民) 및 의지할 곳 없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대궐에서 내린 쌀과 돈을 주었다.
○抄華城府四民及飢民無依者, 給內下米錢.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15일(정묘)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사민과 기민에게 줄 양식 충당에 쓸 5천 냥을 화성에 내려 보내도록 하교하다

하교하였다. "화성(華城) 행궁(行宮)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사민(四民)에게 쌀을 내려주고 기민(饑民)에게 양식을 지급하기로 한 일은 자궁(慈宮)의 뜻을 몸받아 자궁의 은덕을 알게 끔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정리소(整理所)의 경비를 가지고 이 비용에 충당하면 번거롭게 되지야 않겠지만, 이 비용까지 떼어서 준다는 것은 본래의 의도에 벗어나는 일이니, 대내(大內)에서 내린 돈 5천 냥(兩)을 화성부에 내려보내 넉넉하게 주고 먹이도록 하라."
○壬申/敎曰: "華城行宮進饌時, 四民賜米, 饑民給糧之擧, 出於仰體慈意, 俾知慈恩也. 整理所需, 雖不煩費於經用, 就此劃給, 亦非本意. 內下錢五千兩, 下送于華城府, 以爲優饋厚飼之地."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20일(임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제도의 묵은 환곡을 탕감해 주다

제도(諸道)의 묵은 환곡(還穀)을 탕감해 주었다.【수원부(水原府) 2천 6백 33석(石), 강화부(江華府) 2천 9백 45석, 개성부(開城府) 2백 81석, 경기 7천 6백 71석, 평안도 11만 9천

2백 석, 함경도 15만 4천 9백 8석, 경상도 9만 9천 2백 56석, 전라도 2천 6백 96석, 강원도 5만 6천 1백 89석, 충청도 4만 2천 8백 7석, 황해도 7천 8백 36석】
○戊申/蕩減諸道舊還.【水原府二千六百三十三石, 江華府二千九百四十五石, 開城府二百八十一石, 京畿七千六百七十一石, 平安道十一萬九千二百石, 咸鏡道十五萬四千九百八石, 慶尙道九萬九千二百五十六石, 全羅道二千六百九十六石, 江原道五萬六千一百八十九石, 忠淸道四萬二千八百七石, 黃海道七千八百三十六石】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6월 29일(무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수원(水原)에서 진휼을 1월부터 실시하여 이때에 와서 끝마쳤다.【기민 5만 2천 7백 4 구에게 곡물 3천 3백 99석을 나누어 주었다】
○水原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飢民五萬二千七百四口, 賑穀三千三百九十九石零】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7월 5일(갑인)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화성부에서 환곡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다
화성부(華城府)에서 환곡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였다.
○壬子/停華城糴穀.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11월 11일(임자)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화성의 백성들에게 모곡을 면제해 주도록 하다
하교하였다. "본부에서 원침을 받듦으로부터 나 소자(小子)는 부여잡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비통함을 안고서도 날마다 몸소 가서 쇄소(灑掃)를 점검하여 신혼(晨昏)의 정성을 펴는 것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직 이 부(府)의 백성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길이 재수(宰樹)를 바라보며 함께 원침을 수호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 부를 제향(帝鄕) 같이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곳 백성들을 친구 대우하듯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사는 빈부(貧富)간에 똑같이 시행하기 어렵고, 백성에게 호역(戶役)을 면제해주는 것은 고금이 각각 그 사의(事宜)가 다른지라, 오직 조적(糶糴)의 모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인화(人和)의 계책을 삼노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화성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을 아울러 정리곡이라 일컫고 인하여 그 모곡을 면제해주되, 이곳이 유사(留司)로 승격이 된 이후로 백성들이 곡식이 많이 출납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수령들로 하여금 거두고 낼 때 이 뜻을 알아서 하게 할 것이다."
○敎曰: "自奉園寢於本府, 予小子抱莫攀靡逮之慟, 而不能日日躬檢灑掃, 以展晨昏之誠. 惟府之群黎百姓居是地, 長瞻宰樹, 共護珠丘, 予安得不視是府如視帝鄕, 待是民如待故人? 然減租之政, 貧富難以竝施, 賜復於民, 古今各異, 其宜惟糶糴之除耗, 爲人和之策. 自今華城還餉, 竝稱整理穀, 仍除耗穀, 而陞爲留司以後, 民以穀多爲苦, 令守令, 知此意斂散."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3일(정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정처 석방 문제로 신하들과 차대하다

차대하였다. (…) 심환지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날 강력하게 쟁론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서울 집에 들어와 거처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분명하게 전교를 반포했고, 또 그 죄명을 완전히 용서하였습니다.” 하였다. 검교 제학 정민시(鄭民始), 원임 직제학 서용보(徐龍輔)·정대용(鄭大容), 직제학 이만수(李晩秀), 원임 직각 남공철(南公轍)·김조순(金祖淳), 검교 직각 심상규(沈象奎), 승지 이서구(李書九)·이면긍(李勉兢)·김계락(金啓洛)·정상우(鄭尙愚)·유한녕(兪漢寧), **수원 유수 서유린(徐有隣),** 상호군 홍양호(洪良浩), 대호군 이병정(李秉鼎)·서매수(徐邁修)가 번갈아가며 내린 명을 도로 거둘 것을 강력하게 청하였다. 그리고 이조 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정치달 처의 흉악한 음모가 바야흐로 극도에 달했을 때에 오직 우리 자성(慈聖)께서 간악한 기미를 밝게 살피시고 전하를 지성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만약 정치달 처를 용서하여 석방한다면 자성께서 보호하신 공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 煥之曰: “臣等前日未能力爭之罪, 無以自贖. 而其時則京第之入處, 猶在於有無疑似之間. 今則旣已明頒傳敎, 又且全宥其罪名矣.” 檢校提學鄭民始·原任直提學徐龍輔·鄭大容·直提學李晩秀·原任直閣南公轍·金祖淳·檢校直閣沈象奎·承旨李書九·李勉兢·金啓洛·鄭尙愚·兪漢寧·**水原**留守徐有隣·上護軍洪良浩·大護軍李秉鼎·徐邁修, 迭奏力請還收成命. (…)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3월 7일(을축)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부의 공화에 대한 포흠을 진 사람들을 모두 탕감시켜 주게 하다

수원부(水原府)의 공화(公貨)에 대한 포흠(逋欠)을 진 사람들을 모두 탕감(蕩減)시켜 주라고 명하였는데, 유수(留守) 조진관(趙鎭寬)의 청을 따른 것이다.

○命**水原**府公貨負逋人, 竝蕩減, 因留守趙鎭寬請之也.

<순조실록 8권, 순조 6년 2월 19일(정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암행 어사 홍의영이 수원 유수 이집두 등 각 고을 수령의 실정을 아뢰다

경기 암행 어사 홍의영(洪儀泳)이 서계(書啓)하여, (…) **또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집두(李集斗)**에 대해 논하기를, “『서경(書敬)』 이훈(伊訓)의 상품 십건(三風十愆)을 대체로 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악(妓樂)은 더러 폐지하는 때가 없이 행궁(行宮)의 엄숙하고 깨끗한 곳에서 시끄럽게 하고, 사후(射帿)는 어디나 불가(不可)한데도 선조(先朝) 때 봉식(封植)한 나무를 베어냈으며, 별효청(別驍廳)을 폐하여 교방(敎坊)을 만들자 거듭 살아 남는 구신(舊臣)들이 한탄하며 상심(傷心)함이 되었고, 도회시(都會試)에서 외람되게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을 선발하여 사림(士林)의 추담(醜談)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총애하는 기생이 정사(政事)에 간여하여 아문(牙門)의 기율(紀律)이 전도되었고 간사한 비장(裨將)이 재산과 뇌물을 제멋대로 농간을 부려 영고(營庫)의 저축이 판탕(板蕩)되었으며, 성안에 신사(神祠)를 관명(官名)으로 창설함은 이미 저절로 의리가 없는데도 전패(殿牌) 앞에서 사은(謝恩)하였으니, 대저 무슨 거조가 이렇게 경솔하고 외람되기만 합니까? 경내의 백성들이 우박으로 인한 재해를 호소함이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두(狀頭)인 백

성에게 결곤(決棍)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근심을 나누는 체면이겠습니까?" 하였는데, (…)
○京畿暗行御史洪儀泳書啓, (…) 又論水原留守李集斗曰: 經『訓』之三風十愆, 蓋無所不犯. 妓樂之無時或廢, 而嘈雜於行宮肅淸之地, 射帿之何處不可, 而芟刈乎先朝封植之樹, 別驍廳之廢爲敎坊, 重爲遺老之咨傷. 都會試之濫選常賤, 難免士林之醜談. 寵妓干與政事, 而牙門之紀律顚倒, 奸裨亶弄財賄, 而營庫之儲蓄板蕩, 城神祠之創設官名, 旣自無義. 而謝恩於殿牌之前, 夫何擧措之屑越? 境內民之呼訴雹災, 寧不盡傷? 而決棍其狀頭之民, 是豈分憂之體面哉? (…)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12월 17일(무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비국에서 진자를 구획하는 문제를 계청하다

비국(備局)에서 진자를 구획하는 것 때문에 계청(啓請)하기를, "호남(湖南)에는 쌀과 각곡(各穀) 12만 5천 석과 공명첩(空名帖) 1천 장을, 호서(湖西)에는 쌀과 각곡 4만 1천 5백 석과 공명첩 7백 장을, 경기(京畿)는 쌀과 각곡 4만 2천 4백 석과 공명첩 9백 장을, **화성(華城)에는 쌀과 각곡 1만 2백 석과 공명첩 2백 장을 획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북관(北關)의 곡식 7만 석을 영남(嶺南)으로 옮기고, 영남의 곡식 5만 석을 호남으로 옮겨서 획급하여 환곡(還穀)에 보태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어 호남의 진자에 2만 석을 더 획급하게 하였는데, 흉황이 더욱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丁丑/備局以賑資區劃啓: "請湖南米各穀十二萬五千石·空名帖一千張, 湖西米各穀四萬一千五百石·空名帖七百張, 京畿米各穀四萬二千四百石·空名帖九百張, 華城米各穀一萬二百石·空名帖二百張許劃." 又［曰］: "請北關穀七萬石, 移轉嶺南, 而嶺南穀五萬石, 移劃湖南, 使之添還." 從之. 仍命湖南賑資加劃二萬石, 以歉荒尤甚也.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1809) 11월 21일(정축)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광주·경기·삼남의 진휼을 마쳤다고 아뢰다

수원(水原)·광주(廣州)·경기(京畿)·삼남(三南)의 진휼을 마쳤다고 아뢰었다.【수원(水原)의 기민(飢民)은 14만 1천 1백 75구(口)이었는데, 분진(分賑)한 각곡(各穀)은 1만 4백 33석이었고, 내하전(內下錢) 별순(別巡) 기민은 2만 7백 87구이었는데, 쌀은 5백 99석, 전(錢)은 2천 7백 9냥이었으며, 광주(廣州)의 기민은 4만 5천 3백 12구이었는데, 분진한 쌀은 1천 3백 90석 14두이었고, 경기(京畿)와 여주(驪州) 등 26읍진의 기민은 38만 7천 8백 89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3만 3천 4백 72석 9두(斗)이었으며, 호서(湖西)의 평택(平澤) 등 50읍진과 역(驛)의 기민은 1백 31만 1천 9백 59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10만 5천 3백 24석 8두이었고, 호남(湖南) 전주(全州) 등 90읍진과 역의 기민은 4백 76만 4천 4백 57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25만 2천 1백 45석이었으며, 영남(嶺南)의 경주(慶州) 등 71읍진과 역의 기민은 1백 72만 9천 6백 60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13만 6천 8백 9석 6두이었다】
○水原·廣州·京畿·三南, 以畢賑啓.【水原飢民十四萬一千一百七十五口, 分賑各穀一萬四百三十三石, 內下錢別巡飢民二萬七百八十七口, 米五百九十九石, 錢二千七百九兩. 廣州飢民四萬五千三百十二口, 分賑米一千三百九十石十四斗. 京畿·驪州等二十六邑鎭飢民三十八萬七千八百八十九口, 分賑各穀三萬三千四百七十二石九斗. 湖西平澤等五十邑鎭驛飢民一百三十一萬一千九百五十九口, 分賑各穀十萬五千三百二十四石八斗. 湖南全州等九十邑鎭驛飢民四百七十六萬四千四百五十七口, 分賑各穀二十五萬二千一百四十五石. 嶺南慶州等七十一邑鎭·驛飢民

一百七十二萬九千六百六十口, 分賑各穀十三萬六千八百九石六斗】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 5월 27일(경진)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제도와 삼도에 입은 당년의 재해지 8만 331결의 세금을 면제하다

제도(諸道)와 삼도(三都)에 입은 당년의 재해지 8만 3백 31결의 세금을 면제해 주라고 명하였다.【경기(京畿)는 4천 2백 79결, 수원(水原)은 6백 결, 광주(廣州)는 1백 27결, 강화(江華)는 63결, 공충도(公忠道)는 1만 3천 결, 전라도(全羅道)는 4만 3천 5백 31결, 경상도(慶尙道)는 1만 4천 4백 27결, 황해도(黃海道)는 3천 결, 강원도(江原道)는 2백 89결, 평안도(平安道)는 1천 15결이다. ○호남 대동(大同) 정퇴조(停退條) 가운데서 더욱 심한 열 고을은 3두(斗)를 감하고, 결전(結錢)은 명년 봄까지 정퇴하고, 신환(新還) 분수(分數)는 정퇴하고, 군미포(軍米布) 분수(分數)도 정퇴하였다】

○辛亥/命給諸道三都當年災, 八萬三百三十一結.【京畿四千二百七十九結, 水原六百結, 廣州一百二十七結, 江華六十三結, 公忠道一萬三千結, 全羅道四萬三千五百三十一結, 慶尙道一萬四千四百二十七結, 黃海道三千結, 江原道二百八十九結, 平安道一千十五結. 湖南大同停退條中尤甚十邑減三斗, 結錢限明春停退, 新還分數停退, 軍米布分數停退】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 10월 30일(신해)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예조에서 각 식년 경외의 충·효·열의 문서를 보고하다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의 경외(京外)의 충·효·열의 문서'를 정부(政府)에 보고했는데, 등급을 나누어 초계(抄啓)하였다. (…) 효자 증직질(孝子贈職秩)【서울 사는 고 지사(知事) 황운하(黃運河)·고 학생 유해균(柳海均)·고 남학 교수(南學敎授) 현계정(玄啓楨)·고 학생 이혼(李混)·고 감역(監役) 김정주(金鼎柱)·고 학생 심사정(沈師定)·고 사인 홍병오(洪秉五)·고 서윤(庶尹) 홍계서(洪啓瑞)·고 동지(同知) 이사룡(李思龍), 수원부(水原府) 고 참봉(參奉) 윤형로(尹衡老), 양주(楊州) 고 학생 이삼석(李三錫), 장단(長湍) 고 사인 한광세(韓光世), 양천(陽川) 고 통덕랑 김숭제(金嵩濟), 부여(扶餘) 고 사인 최사백(崔賜百), 영동(永同) 고 사인 최복원(崔復源), 목천(木川) 고 정랑(正郞) 조명(趙銘), 공주(公州) 고 사인 윤박(尹搏), 서원(西原) 고 사인 송상휘(宋尙輝)·홍귀서(洪龜瑞), 진천(鎭川) 고 통덕랑 정도(鄭棹), 전주(全州) 고 사인 조대수(趙大壽)·이진운(李鎭運), 영암(靈巖) 고 직장(直長) 신사준(愼師浚), 장수(長水) 고 동지 김성보(金聖輔), 능주(綾州) 고 사인 박헌가(朴獻可), 고부(古阜) 고 사인 송수현(宋守賢), 금구(金溝) 고 사인 송정모(宋廷模), 지례(知禮) 고 사인 이수호(李遂浩), 함창(咸昌) 고 사인 조수구(趙守球), 고성(固城) 고 사인 백봉래(白鳳來), 영월(寧越) 고 사인 엄계태(嚴啓泰), 강릉(江陵) 고 사인 신갑동(辛甲東)·고 생원 최현민(崔顯珉), 성천(成川) 고 현감 나홍점(羅弘漸), 강서(江西) 고 학생 한태형(韓泰亨), 상원(祥原) 고 학생 방덕일(方德一), 중화(中和) 고 학생 한창대(韓昌岱), 용강(龍岡) 고 사인 김진수(金震秀), 삼화(三和) 고 사인 김처겸(金處謙)이다】

○禮曹, 以各式年京外忠孝烈狀報政府, 分等抄啓: (…) 孝子贈職秩.【京居故知事黃運河, 故學生柳海均, 故南學敎授玄啓禎, 故學生李混, 故監［役］金鼎柱, 故學生沈師定, 故士人洪秉五, 故庶尹洪啓瑞, 故同知李思龍, 水原府故參奉尹衡老, 楊州故學生李三錫, 長湍故士人韓光世, 陽川故通德郞金嵩濟, 扶餘故士人崔賜百, 永同故士人崔復源, 木川故正郞趙銘, 公州故士

人尹搏, 西原故士人宋尙輝·洪龜瑞, 鎭川故通德郎鄭棹, 全州故士人趙大壽·李鎭運, 靈巖故直長愼師浚, 長水故同知金聖輔, 綾州故士人朴獻可, 古阜故士人宋宇賢, 金溝故士人宋廷模, 知禮故士人李遂浩, 咸昌故士人趙守球, 固城故士人白鳳來, 寧越故士人嚴啓泰, 江陵故士人辛甲東, 故生員崔顯珉, 成川故縣監羅弘漸, 江西故學生韓泰亨, 祥原故學生方德一, 中和故學生韓昌〈岱〉, 龍岡故士人金震秀, 三和故士人金處謙】
<순조실록 15권, 순조 12년 3월 13일(을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제도(道) 및 도(都)의 재해를 입은 결에 대해 급재하다

제도(諸道)·제도(諸都)의 당년에 재해를 입은 11만 3백 77결(結)에 대해 급재(給災)하였다.【경기 4천 2백 64결, **수원 5백 결**, 광주 83결, 강화 6백 5결, 호서 1만 9천 8백 45결, 호남 4만 94결, 영남 2만 4천 68결, 해서 1만 60결, 관동 2백 84결, 관서 1만 5백 74결이다】

○給諸道諸都當年災, 十一萬三百七十七結.【京畿四千二百六十四結, **水原**五百結, 廣州八十三結, 江華六百五結, 湖西一萬九千八百四十五結, 湖南四萬九十四結, 嶺南二萬四千六十八結, 海西一萬六十結, 關東二百八十四結, 關西一萬五百七十四結】
<순조실록 16권, 순조 12년 10월 30일(기사) 6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예조에서 경외에서 의정부에 장보한 충신·효자·열녀에 대해 분등하여 초계하다

예조에서 각각 식년마다 경외에서 의정부에 장보(狀報)한 충신·효자·열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등(分等)하여 초계(抄啓)하였다. (…) 효자 정려질(孝子旌閭秩)【서울의 고 부사 심양지(沈養之)·고 서윤(庶尹) 정지덕(丁志德)·고 양인 지도영(池道榮)·고 부정(副正) 신영(申瑛)·고 도정 황운조(黃運祚)·증 교관 이복운(李復運)·고 학생 한광익(韓光益)·고 동몽 신근수(愼根秀), **수원부의 고 정언 최도문(崔道文)**·고 진사 최수복(崔受復), 적성(積城)의 서인 이후손(李厚孫), 진잠(鎭岑)의 고 사인 유동혁(柳東爀), 전주의 고 사인 조대수(趙大壽), 연안(延安)의 고 관노 이창매(李昌梅), 안변(安邊)의 고 학생 유인청(柳仁淸), 함흥(咸興)의 고 학생 주흠렬(朱欽烈)이다】

(…) 열녀 정려질(烈女旌閭秩)【(…)**수원부의 고 하리 나계술(羅繼述)의 처 박성(朴姓)**·고 기패관(旗牌官) 박규연(朴奎淵)의 처 유성(兪姓), 시흥(始興)의 고 학생 유최인(柳最寅)의 처 김씨(金氏), 영평(永平)의 고 학생 김학례(金學禮)의 처 성씨(成氏), 양천(陽川)의 고 사인 권유(權攸)의 처 정씨(丁氏)(…)】 (…)효자 증직질(孝子贈職秩)【서울에 사는 고 통덕랑 김의집(金義集)과 고 학생 윤항동(尹恒東)·이희귀(李羲龜)·남숙(南鏽), **수원부의 고 사인 김성렬(金星烈),** 개성부의 고 사인 한도혁(韓道奕)·우득룡(禹得龍), 부평(富平)의 고 위솔 남연(南淵), (…)】

○禮曹, 以各式年京外忠·孝·烈狀報政府, 分等抄啓. (…) 孝子旌閭秩.【京居故府使沈養之, 故庶尹丁志德, 故良人池道榮, 故副正申瑛, 故都正黃運祚, 贈敎官李復運, 故學生韓光益, 故童蒙愼根秀, **水原**府故正言崔道文, 故進士崔受復, 積城庶人李厚孫, 鎭岑故士人柳東爀, 全州故士人趙大壽, 延安故官奴李昌梅, 安邊故學生柳仁淸, 咸興故學生朱欽烈】(…) 烈女旌閭秩.【(…)**水原**府故下吏羅繼述妻朴姓, 故旗牌官朴奎淵妻兪姓, 始興故學生柳最寅妻金氏, 永平故學生金學禮妻成氏, 陽川故士人權攸妻丁氏, (…)】 (…) 孝子贈職秩.【京居故通德郎金義集,

故學生尹恒東 · 李羲龜 · 南鏞, 水原府故士人金星烈, 開城府故士人韓道奕 · 禹得龍, 富平故衛率南淵, (…)】
<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 9월 5일(임진)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여러 도와 도의 재해에 대해 급재하다

여러 도(道)와 도(都)의 당년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7백 77결을 급재(給災)하였다.【경기가 1만 2천 결, 호서가 3만 3천 5백 결, 호남이 6만 7천 9백 79결, 영남이 7만 1천 결, 해서가 3천 4백 결, 관동이 6백 결, 관서가 3천 3백 62결, **수원이 2천 4백 결,** 광주(廣州)가 6백 12결, 강화가 9백24결이다】

○給諸道諸都, 當年災十九萬五千七百七十七結.【京畿一萬二千結, 湖西三萬三千五百結, 湖南六萬七千九百七十九結, 嶺南七萬一千結, 海西三千四百結, 關東六百結, 關西三千三百六十二結, 水原二千四百結, 廣州六百十二結, 江華九百二十四結】
<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 10월 30일(정해)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견휼하다

견휼(蠲恤)【**삼남 · 경기 · 수원의 신환(新還) 분수(分數)는 정퇴하고**, 양남의 우심한 고을의 포보(砲保)는 3분의 1을 대전(代錢)하고, 각종 신군포(身軍布)의 분수를 대전하고, 영남의 조세(漕稅)로 15읍의 보미(保米)를 대전하였다】

○蠲恤.【三南京畿水原新還分數停退, 兩南尤甚邑, 砲保三分一代錢, 各樣身軍布分數代錢, 嶺南漕稅十五邑, 保米代錢,】
<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 10월 30일(정해)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진자하다

진자(賑資)【경기는 공명첩 1천 2백 장과 양서의 각종 곡물 2만 7천 석 · 본도의 절미 6천 석, 광주는 절미 1천 8백 석, 강화는 호동고목(戶東庫木) 2백 90동, 해서는 각종 곡물 2천 석, **수원은 공명첩 3백 장과 각종 곡물 7천 석 · 쌀 2백 석**, 호서는 공명첩 1천 장과 해서의 곡물 2만 석 · 각종 절미 2만 8천 석, 호남은 공명첩 1천 장과 호조와 선혜청의 돈 7만 냥 · 본도의 각종 곡물 4만 석, 영남은 정번전(停番錢) 6만 냥과 본도 및 동북 · 양서의 각종 곡식 15만 석과 쌀 4천 석, 관동은 공명첩 2백 장과 각종 곡물 7천 4백 80석, 북관은 절미 4천 9백 석 영(零)과 병영 월과미(兵營月課米)이다】

○賑資.【京畿空名帖一千二百張, 兩西各穀二萬七千石, 本道折米六千石, 慶州折米一千八百石, 江華戶東庫木二百九十同, 海西各穀二千石, 水原空名帖三百張, 各穀七千石, 米二百石, 湖西空名帖一千張, 海西穀二萬石, 各樣折米二萬八千石, 湖南空名帖一千張, 戶曹惠廳錢七萬兩, 本道各穀四萬石, 嶺南停番錢六萬兩, 本道及東北兩西各穀十五萬石, 米四千石, 關東空名帖二百張, 各穀七千四百八十石, 北關折米四千九百石零及兵營月課米】
<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 10월 30일(정해) 4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환상곡과 저치미의 폐단에 대해 김이재의 상소

(…) 환은미(換銀米) 이하 세 가지 곡물은 그 본곡에서 잘라 쓴 분량을 비교하자면, 비록 반드시 10년 내에 다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점차 축이 나서 필경엔 이 곡물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광주(廣州) 소관(所管)의 곡물 가운데 관서와 호서에 있는 것이 본래 1만 1천여 석이 되는데, 기사년 이후 연달아 정봉(停捧)과 재감(災減)을 당하여 모조(耗條)까지 감축됨으로써 원곡을 잘라 쓴 것이 2천 89석이니, 이 때문에 모조가 부족했던 병자년에 급대한 것이 4백 6석이었습니다. **화성(華城) 소관의 곡물 가운데 양서(兩西)와 양남(兩南)에 있는 것도 본래 3만 1천여 석이었는데**, 각년의 정미봉(停未捧)과 임신년에 양남에 있는 곡물로 왜학(倭學)의 무삼가(貿蔘價)를 급대함으로써 결축(缺縮)된 것이 1만 9천 2백 석이나 되고 모조의 부족도 1천 9백여 석이나 되니, 비록 연전에 떼어 준 호남의 가분모(加分耗) 5백 석을 제한다 하더라도 여타로 급대한 것이 오히려 1천 4백여 석이나 됩니다. 이 급한 1천 8백 석의 두 곡물로써 지금의 수용으로 삼아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떼어 주기 때문에 아직은 원곡을 다시 잘라 쓸 일을 면하고 있으나, 기실은 해마다 변통하여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곡물이 이 때문에 잘리어 바닥이 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와 같은 결축처럼, 곳에 따라 보전(補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루 다 셀 수 없습니다. 또 호조의 원회(元會) 및 원회처럼 통용되는 곡물과 진휼청의 상진(常賑) 및 상진처럼 통용되는 곡물을 방출하고 유치하며 취모(取耗)하는 것을 각각 그 규례에 따르되, 차차 회록(會錄)에 보태어 매년 시재(時在)의 실수(實數)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도(各道)의 소용을 10년을 소급(遡及)하여 다(多)·중(中)·소(小) 3등급으로 나누고 절충하여 매년 지출의 대솔(大率)로 삼으면, 경기(京畿)의 원회(元會)와 별회(別會)의 시재 실수 중에서 가하(加下) 3천 4백 50여 석을 제하면 1만 1천 3백여 석이 되는데, 지출의 대솔이 1천 4백여 석이 되니 원곡을 잘라 쓴 것이 이미 7백여 석이 됩니다. 상진(常賑)의 시재 실수 중에서 가하(加下) 5천 7백여 석을 제하면 1만 7천 8백 30여 석이 되는데 지출의 대율은 3천여 석이니 7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됩니다. 호서(湖西)의 원회와 별회의 제곡(諸穀)은 시재 실수가 1만 1천 3백여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1천 9백여 석이 되니 9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됩니다. 상진의 시재 실수는 1만 5천 1백 70여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9천 6백여 석이니, 명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됩니다. 호남(湖南)의 원회 시재 실수는 4천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1천 8백여 석이고 가하(加下)가 2만 7백여 석이니, 원곡이 다한 지 이미 오래 되며, 상진(常賑)의 시재 실수는 10만 5천 9백 80여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1만 5천여 석이니, 9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됩니다. 영남(嶺南)의 원회 시재 실수는 6만 4천 7백여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6천 6백여 석이니 10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되며, 상진은 시재 실수가 8만 7천 1백여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1만 2천 7백여 석이니, 8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됩니다. 해서(海西)의 원회와 군향의 시재 실수 중에서 가하(加下) 2천 6백여 석을 제하면 2천 4백여 석이 되는데 지출의 대솔이 1천여 석이니, 명년 뒤에는 원곡이 다하게 되며, 상진의 시재 실수 중에서 가하(加下) 1천 5백 30석을 제하면 1만 2천 8백 20여 석이 되는데, 지출의 대솔은 2천 1백여 석이 되니, 7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됩니다. 관동(關東)의 원회와 별회의 시재 실수는 2만 3천 2백여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1천 7백여 석이니, 원곡을 잘라 쓴 것이 이미 7백여 석이고, 상진의 시재 실수가 3천 70여 석인데 지출의 대솔이 2천 6백여 석이니, 명년 내에 원곡이 다하게 됩니다. 관서(關西)와 관북(關北) 양도(兩道)의 원회와 상진의 현재 있는 숫자와 용하(用下)는 사실 걸맞지 않은 바가 있지만, 수세미(收稅米)를 해마다 회록하고 작년 겨울에 각양 곡물과 더불어 구획·첨보(添補)하여 통틀어 함께 용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전의 지급을 겨우 충당할 수 있었으

나, 혹 항구적이 아닌 용도(用途)가 있기 때문에 그곳 역시 원곡을 잘라 써야 할 걱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辛酉/行護軍金履載疏曰: (…) 自換銀米以下三穀, 以其本穀, 較其所割, 雖未必盡於十年之內, 而漸次耗縮, 畢竟至於無此穀而後已矣. 且廣州所管穀之在關西湖西者, 本爲一萬一千餘石, 而己巳以後, 連値停減, 耗條減縮, 割用本穀者, 爲二千八十九石, 由是而耗不足之丙子給代, 爲四百六石矣. 華城所管穀之在兩西兩南者, 本爲三萬一千餘石, 而各年停未捧及壬申兩南穀之以倭學貿蔘價給代, 而劃出缺縮, 爲一萬九千二百石, 耗不足爲一千九百餘石, 雖除年前劃給之湖南加分耗五百石, 其餘給代者, 猶爲一千四百餘石矣. 此兩穀給代之一千八百石, 爲其目下之用, 隨報隨劃, 故姑免元穀之復割, 其實則逐年辦給, 將見他穀之由此而割盡矣. 此外似此缺縮, 不可不隨處苴補者, 指不勝僂. 且又戶曹之元會與元會通用之穀, 賑廳之常賑與常賑通用之穀, 其分留取耗, 各遵其式, 而次次添錄, 爲每年見在之實數, 各道所用, 溯以十年, 分以多中少三等而折衷之, 爲每年用下之大率, 則京畿之元會與別會見在實數中, 除加下三千四百五十餘石, 則爲一萬一千三百餘石, 而用下大率爲一千四百餘石, 則割取元穀, 已爲七百餘石矣. 常賑見在實數中, 除加下五千七十餘石, 則爲一萬七千八百三十餘石, 而用下大率爲三千餘石, 則七年之內, 元穀盡矣. 湖西之元會與別會諸穀, 見在實數, 爲一萬一千三百餘石, 而用下大率爲一千九百餘石, 則九年之內, 元穀盡矣. 常賑見在實數, 爲一萬五千一百七十餘石, 而用下大率爲九千六百餘石, 則明年之內, 元穀盡矣. 湖南之元會見在實數, 爲四千石, 用下大率爲一千八百餘石, 而加下爲二萬七百餘石, 則元穀之盡已久矣. 常賑見在實穀, 爲十萬五千九百八十餘石, 而用下大率爲一萬五千餘石, 則九年之內, 元穀盡矣. 嶺南之元會見在實數, 爲六萬四千七百餘石, 而用下大率爲六千六百餘石, 則十年之內, 元穀盡矣. 常賑見在實數, 爲八萬七千一百餘石, 而用下大率爲一萬二千七百餘石, 則八年之內, 元穀盡矣. 海西之元會與軍餉見在實數中, 除加下二千六百餘石, 則爲二千四百餘石, 而用下大率爲一千餘石, 則明年之後, 元穀盡矣. 常賑見在實數中, 除加下一千五百三十石, 則爲一萬二千八百二十餘石, 而用下大率爲二千一百餘石, 則七年之內, 元穀盡矣. 關東之元會與別會見在實數, 爲二萬三千二百餘石, 而用下大率爲一千七百餘石, 則割犯元穀, 已爲七百餘石矣. 常賑見在實數, 爲三千七十餘石, 而用下大率爲二千六百餘石, 則明年之內, 元穀盡矣. 至於關西關北兩道之元會常賑見在與用下, 固不相當, 而有收稅米之年年會錄, 與昨年冬各穀之區劃添補, 而通同用下者, 故僅得目前之支給, 然或有不恒之用, 亦難免割縮之患矣. (…)

<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1817) 5월 18일(신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부의 산대전을 탕감해 주다

수원부의 산대전(散貸錢) 1만 8천 냥을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대신이 유수의 상소로 인하여 시행하자고 청한 것이다.

○命蕩水原府散貸錢一萬八千兩, 大臣因留守之疏, 請施也.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 6월 25일(계묘) 4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제도에 당년 재결을 주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당년 재결(災結) 7만 6천 8백 63결(結)을 주었다.【경기 1만 3천 39결, 호서 2만 9천 6백 93결, 호남 2만 9백 38결, 영남 2천 9백결, 해서 4천 9백결, 관

동 4백결, 관서 1천 1백 7결, **수원 2천 1백결,** 광주 6백 11결, 강화 8백 54결, 개성 3백 20결이다】
○癸未/給諸道諸都當年災七萬六千八百六十三結.【京畿一萬三千三十九結, 湖西二萬九千六百九十三結, 湖南二萬九百三十八結, 嶺南二千九百結, 海西四千九百結, 關東四百結, 關西一千一百七結, 水原二千一百結, 廣州六百十一結, 江華八百五十四結, 開城三百二十結】
<순조실록 27권, 순조 25년 10월 30일(계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전국의 10여 만결을 급재(級災)하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당년 재해 10만 6천 6백 52결(結)을 급재(給災)하였다.【경기에 2천 4백 40결, 호서에 2만 1천 9백 41결, 호남에 3만 9천 3백 22결, 영남에 3만 6천 6백 65결, 해서에 2천 9백 결, 관동에 50결, 관서에 9백 41결, **수원에 6백 27결**, 광주에 1백 49결, 강화에 2백 97결, 개성에 3백 20결이었다】
○給諸道諸都當年災十萬六千六百五十二結.【京畿三千四百四十結, 湖西二萬一千九百四十一結, 湖南三萬九千三百二十二結, 嶺南三萬六千六百六十五結, 海西二千九百結, 關東五十結, 關西九百四十一結, 水原六百二十七結, 廣州一百四十九結, 江華二百九十七結, 開城三百二十結】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 10월 30일(병신)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효행과 열행을 한 유생들에게 포상하기를 예조에서 복계하다

예조에서 여러 도(道)의 유생(儒生)의 상언(上言)으로써 복계(覆啓)하였는데, (…) **수원(水原)의 사인 신사하(辛師夏)·최정린(崔廷麟)·장용현(張龍見)**과 충주(忠州)의 사인 권국화(權國華)와 서원(西原)의 통덕랑 박세미(朴世美)와 부여(扶餘)의 통덕랑 유한승(兪漢昇)과 황간(黃澗)의 생원(生員) 남치형(南致亨)과 광주의 사인 임일기(任日箕)와 통천(通川)의 사인 조상린(趙相藺)과 평택(平澤)의 사인 장준(張濬)과 서산(瑞山)의 사인 최만징(崔萬澄)에 대해서는 효행(孝行)으로써 아울러 증직(贈職)하였다.(…)
○甲子/禮曹以諸道儒生上言覆啓, (…) 水原士人辛師夏·崔廷麟·張龍見, 忠州士人權國華, 西原通德郎朴世美, 扶餘通德郎兪漢昇, 黃澗生員南致亨, 廣州士人任日箕, 通川士人趙相藺, 平澤士人張濬, 瑞山士人崔萬澄, 以孝行, 幷贈職.(…)
<순조실록 32권, 순조 31년 7월 14일(갑자)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예조에서 각 식년에 충·효·열에 대해 장계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하여 초계하다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에 서울과 외방에서 충(忠)·효(孝)·열(烈)에 대해 장계(狀啓)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分等)하여 초계(抄啓)하였다. 효자 정려질(孝子旌閭秩)【서울에 사는 고(故) 봉사(奉事) 김재건(金載健)·고 학생(學生) 윤자영(尹滋榮), **수원부의 고 가선(嘉善) 최일황(崔一晃)**이다.(…)】 (…) 열녀 정려질(烈女旌閭秩)【서울에 사는 고 통덕랑(通德郎) 허주(許澍)의 처 유씨(柳氏)와 고 급제 신필조(申弼朝)의 처 이씨·고 사인 이인형(李寅衡)의 처 임씨(林氏)·고 학생 유창(柳昶)의 처 이씨·고 학생 채동수(蔡東秀)의 처 권씨·고 보덕(輔德) 이경삼(李敬參)의 처 신씨(申氏)·고 학생 김이휴(金履休)의 처 이

씨 · 고 진사 이종구(李鍾九)의 처 남씨, 수원부의 고 사인 송낙수(宋洛秀)의 처 정씨(鄭氏), (…)】 (…)
○禮曹, 以各式年京外忠 · 孝 · 烈狀報政府分等抄啓. 孝子旌閭秩.【京居故奉事金載健, 故學生尹滋榮, 水原府故嘉崔一晃, (…)】(…) 孝婦旌閭秩【京居故校理李允謙妻趙氏, 春川故士人林壽崗妻金氏, 海州故士人吳載顯妻李氏】烈女旌閭秩【京居故通德郎許澍妻柳氏, 故及第申弼朝妻李氏, 故士人李寅衡妻林氏, 故學生柳昶妻李氏, 故學生蔡東秀妻權氏, 故輔德李敬參妻申氏, 故學生金履休妻李氏, 故進士李鍾九妻南氏, 水原府故士人宋洛秀妻鄭氏(…)】(…)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4월 13일(기축)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진자
진자(賑資)【경기는 절미(折米) 2만 8천 3백 석, 공명첩(空名帖) 8백 장, 내탕은(內帑銀) 1천 냥, 백반 5백 근, 단목 2천 근이다. 해서는 절미 1만 1천 석, 돈 3만 냥, 공명첩 4백 장, 내탕은 5백 냥, 단목 1천 근, 백반 3백 근이다. 호서는 절미 1만 석, 공명첩 8백 장, 내탕은 6백 냥, 단목 1천 근, 백반 3백 근과 어조(正朝)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이다. 송도는 절미 1천 석, 공명첩 1백 장, 내탕은 1백 냥, 단목 2백 근, 백반 50근이다. 수원은 절미 1천 5백 석, 콩[太] 3백 석, 돈 2천 냥, 공명첩 1백 50장, 내탕은 1백 냥, 단목 2백 근, 백반 50근이다. 광주는 절미 2천 6백 석, 공명첩 1백 50장, 내탕은 1백 냥, 단목 2백 근, 백반 50근이다. 강화는 절미 3천 2백 석 영(零), 공명첩 2백 장, 내탕은 1백 냥, 단목 2백 근, 백반 50근이다】
○賑資.【京畿折米二萬八千三百石, 空名帖八百張, 內帑銀一千兩, 白礬五百斤, 丹木二千斤. 海西折米一萬一千石, 錢三萬兩, 空名帖四百張, 內帑銀五百兩, 丹木一千斤, 白礬三百斤. 湖西折米一萬石, 空名帖八百張, 內帑銀六百兩, 丹木一千斤, 白礬三百斤, 正朝方物物膳. 松都折米一千石, 空名帖一百張, 內帑銀一百兩, 丹木二百斤, 白礬五十斤. 水原折米一千五百石, 太三百石, 錢二千兩, 空名帖一百五十張, 內帑銀一百兩, 丹木二百斤, 白礬五十斤. 廣州折米二千六百石, 空名帖一百五十張, 內帑銀一百兩, 丹木二百斤, 白礬五十斤. 江華折米三千二百石零, 空名帖二百張, 內帑銀一百兩, 丹木二百斤, 白礬五十斤】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10월 30일(임신) 4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 해서 · 호서와 광주 · 강화 · 수원 · 송도에서 진휼하는 일을 끝마치다
경기(京畿) · 해서(海西) · 호서(湖西)와 광주(廣州) · 강화(江華) · 수원(水原) · 송도(松都)에서 진휼하는 일을 끝마쳤다.【경기(京畿)는 양주(楊州) 등 30개의 읍진(邑鎭)의 굶주리는 백성이 82만 7천 8백 37명인데 진곡(賑穀) 5만 5천 3백 57석(石)이요, 호서(湖西)에는 공주(公州) 등 62개의 읍진의 굶주리는 백성이 86만 4천 2백 15명인데 진곡 6만 4천 2백 15석이며, 광주(廣州)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16만 6천 1백 87명인데 진곡 4천 9백 96석이요, 강화(江華)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11만 6천 9백 10명인데 진곡 4천 2백 42석이며, **수원(水原)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13만 1천 2백 11명인데 진곡 4천 7백 56석이요**, 송도(松都)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7만 2백 58명인데 진곡 1천 9백 96석이며, 해서(海西)에는 42개 읍진의 굶주리는 백성이 48만 2천 2백 74명인데 진곡 2만 4천 7백 71석이었다】 각 도의 진휼을 보태어 준 사람[補賑人]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으니, 혹은 수령(守令)으로 임명하고, 혹은

중군(中軍)과 변장(邊將)으로 임명하였으며, 혹은 경직(京職)의 6품 벼슬과 첫벼슬에 임명된 사람이 심히 많았다.
○京畿·海西·湖西·廣州·江華·水原·松都畢賑.【京畿楊州等三十邑鎭, 饑民八十二萬七千八百三十七口, 賑穀五萬五千三百五十七石. 湖西公州等六十二邑鎭, 饑民八十六萬四千二百十五口. 賑穀六萬四千二百十五石. 廣州饑民十六萬六千一百八十七口, 賑穀四千九百九十六石. 江華饑民十一萬六千九百十口, 賑穀四千二百四十二石. 水原饑民十三萬一千二百十一口, 賑穀四千七百五十六石. 松都饑民七萬二百五十八口, 賑穀一千九百九十六石, 海西四十二邑鎭, 饑民四十八萬二千二百七十四口, 賑穀二萬四千七百七十一石】各道補賑人等施賞有差, 或差守令, 或差中軍邊將, 或差京職六品及初仕者甚多.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5월 29일(기해)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목사·현감·군수의 실정과 선정에 대해 암행 어사 이시원이 서계하다

경기 암행 어사 이시원(李是遠)이 서계하여, (…) **수원(水原) 전 중군(中軍) 신명원(申命源)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輕重)을 나누어 감처(勘處)하게 하였다. 또 마전 군수(麻田郡守) 홍시모(洪蓍謨), 양천 현령(陽川縣令) 김진교(金晉敎)의 잘 다스린 실상을 말하니, 모두 승서(陞敍)하게 하였다. (…) 이희준은 배천군(白川郡)에 귀양보냈고, 신위는 평산부(平山府)에 귀양 보냈으며, 이정신은 고신(告身)을 빼앗았다. **또 수원 전 유수 서준보(徐俊輔),** 광주 전 유수 이석규(李錫奎)·박기수(朴綺壽), 강화 전 유수 홍명주(洪命周), 개성 전 유수 신재식(申在植) 등이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을 논하니**, 서준보·이석규·홍명주는 모두 견책하여 파면시키고, 박기수·신재식은 문비(問備)하게 하였다. (…)
○京畿暗行御史李是遠書啓, (…) 水原前中軍申命源等不治狀, 竝令分輕重勘處. 又言麻田郡守洪蓍謨·陽川縣令金晋敎善治狀, 竝陞敍. (…) 義準配白川郡, 緯配平山府, 鼎臣奪告身. 又論水原前留守徐俊輔·廣州前留守李錫奎·朴綺壽·江華前留守洪命周·開城前留守申在植等不察之失, 俊輔·錫奎·命周, 竝譴罷, 綺壽·在植問備. (…)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10월 2일(기해)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제도·여러 도시의 당년 급재가 7만 9천 2백 4결이다

제도(諸道)·제도(諸都)의 당년 급재(給災)가 7만 9천 2백 4결(結)이었다.【경기(京畿)가 9천 7백 45결이고, 호서(湖西)가 2만 2천 결이며, 호남(湖南)이 2만 4천 4백 결이고, 영남(嶺南)이 1만 5천 결이며, 해서(海西)가 4천 1백 81결이고, 관동(關東)이 1백 99결이며, 관서(關西)가 9백 15결이고, **수원(水原)이 1천 80결이며**, 광주(廣州)가 4백 96결이고, 강화(江華)가 8백 68결이며, 개성(開城)이 3백 20결이었다】
○丙寅/給諸道諸都, 當年災七萬九千二百四結.【京畿九千七百四〔十五〕結, 湖西二萬二千結, 湖南二萬四千四百結, 嶺南一萬五千結, 海西四千一百八十一結, 關東二百九十九結, 關西九百十五結, 水原一千八十結, 廣州四百九十六結, 江華八百六十八結, 開城三百二十結】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10월 29일(병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영남·호서·경기와 네 도시에 진휼을 끝마치다

영남(嶺南), 호서(湖西), 경기(京畿) 및 4도(都)에 진휼(賑恤)을 끝마쳤다.【영남(嶺南)의 상주(尙州) 등 36읍·역(邑驛)의 기민(飢民) 51만 9천 6백 94구(口)에 진곡(賑穀)은 4만 4천 7백 46석(石)이며, 호서(湖西)의 대흥(大興) 등 65읍·진·역(驛)의 기민 68만 1천 4백 5구(口)에 진곡이 4만 4천 5백 94석이요, 경기(京畿)의 양주(楊州) 등 30읍·진의 기민 29만 4천 4백 32구에 진곡은 2만 4천 7백 82석이며, 광주(廣州)의 기민 8만 4천 7백 22주에 진곡은 6천 6백 62석이요, 강화(江華)의 기민 5만 5천 6백 39구에 진곡은 3천 2백 9석이며 **수원(水原)의 기민 1만 9천 72구에 진곡은 1천 1백 22석이요**, 개성(開城)의 기민 7만 2백 58구에 진곡은 4천 9백 90석이었다】

○戊午/嶺南湖西京畿及四都畢賑.【嶺南尙州等三十六邑驛, 飢民五十一萬九千六百九十四口, 賑穀四萬四千七百四十六石, 湖西大興等六十五邑鎭驛, 飢民六十八萬一千四百五口, 賑穀四萬四千五百九十四石, 京畿楊州等三十邑鎭, 飢民二十九萬四千四百三十二口, 賑穀二萬四千七百八十二石, 廣州飢民八萬四千七百二十二口, 賑穀六千六百六十二石, 江華飢民五萬五千六百三十九口, 賑穀三千三百九石, 水原飢民一萬九千七十二口, 賑穀一千一百二十二石, 開城飢民七萬二百五十八口, 賑穀四千九百九十石】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 6월 24일(무오)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부에 휼전을 주다

수원부(水原府)의 표류되고 붕괴된 가옥에 휼전(恤典)을 주었다.

○給水原府漂壓戶, 恤典.

<철종실록 2권, 철종 1년 7월 13일(계묘)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부에 휼전을 내리다

수원부(水原府)의 무너진 집에 휼전을 내렸다.

○丙子/給水原府頹壓戶恤典.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8월 22일(병자)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부에 휼전을 내리다

수원부(水原府)의 표퇴(漂頹)한 민호에 휼전(恤典)을 주었다.

○乙亥/給水原府漂頹戶, 恤典.

<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윤7월 8일(을해)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양천, 수원 등 고을의 표호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을 베풀다

양천(陽川)·수원(水原)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압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給陽川·水原等邑漂戶壓死人恤典.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7월 19일(신사)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대왕대비가 재해를 당한 화성부에 수성고의 돈 3,000냥을 보내주라고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어제 기호(畿湖)와 양남(兩南)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나의 뜻을 보이는 조처가 있었지만 **화성(華城)도 집중적으로 수해를 당한 곳 중의 하나이다**. 실농(失農)한 저 가엾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굶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자나깨나 있을 수가 없다. **본부(本府) 수성고(修城庫)**의 돈 3,000냥(兩)을 특별히 이획(移劃)해서 재해를 당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구휼하여 한 명의 남자나 한 명의 여인도 뿔뿔이 흩어져 유리(遊離)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敎曰: “昨於畿·湖兩南, 略有示意之擧, 而華城之偏被懷襄, 又其一也. 哀彼失農之民, 將何以無飢無寒乎? 念之惻怛, 寤寐靡弛. 本府修城庫錢三千兩, 特許移劃, 量其被災淺深分等賙恤, 俾一夫一婦, 毋或有蕩析流離之患.”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1865) 10월 19일(경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백살이 된 노인들에게 가자하도록 명하다

백 세가 된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가평(加平)의 이시진(李時鎭), 해주(海州)의 이회귀(李會龜)와 강문환(姜文煥), 순천(順天)의 김경팔(金敬八), 함흥(咸興)의 문경(文璟), **수원(水原)의 황종문(黃鍾文)이다】**

三十日. 命百歲老人加資.【加平李時鎭·海州李會龜·姜文煥, 順天金敬八·咸興文璟·水原黃鍾文】.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1월 30일(계사)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진자에 보태도록 돈을 바친 이취영과 김기윤을 6품직에 등용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진자(賑資)를 보충한 사람은 서흥(瑞興)에 사는 진사(進士) 이취영(李就榮)으로 낸 돈이 2만 냥(兩)이고**, 광주(廣州)에서 진자를 보충한 사람은 안변(安邊)에 사는 유학(幼學) 김기윤(金器胤)으로 낸 돈은 1만 냥이라고 두 유수영(留守營)에서 모두 수계(修啓)하여 부(府)에 보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의기(義氣)를 내어 진자에 보탤 것을 자원한 것은 매우 가상하니, 이전의 규례대로 이취영(李就榮)에게는 우선 가설한 6품직에 붙여두었다가 수령 자리가 나게 되면 차송(差送)하고, 김기윤(金器胤)은 6품직을 가설(加設)하여 조용(調用)함으로써 조정에서 격려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六日. 議政府啓: “水原補賑人瑞興居進士李就榮, 納錢二萬兩; 廣州補賑人安邊居幼學金器胤, 納錢一萬兩, 自兩留營, 俱有修啓報府者矣. 兩人之出義願補, 極庸嘉尙. 依已例李就榮先付加設六品職, 守令待窠差送, 金器胤六品職加設調用, 以示朝家激奬之意何如?” 允之.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2월 26일(임자)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의정부에서 각 도 암행어사의 별단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헌영(李穩永)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내(道內)의 원 대장에 올라 있는 토지 4만 6,450여

결(結)외에 강물에 무너져나가 자갈땅이 된 토지와 공한지를 개간한 토지를 간사한 아전(衙前)들이 오로지 은폐하기만을 일삼아 잔약한 백성들은 토지가 없는데 조세를 물게 되니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총 결수를 파악하도록 특별히 명하는 일입니다. 다시 측량하는 것과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영읍(營邑)에서 편리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상의하여, 나라의 세납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펼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광주부(廣州府)의 북방면(北坊面)과 월곡면(月谷面) 두 면(面)의 환곡(還穀)도 성곶면(聲串面)의 규례에 따라 전과 같이 수원창(水原倉)에서 조적(糶糴)하는 일입니다.** 한 면은 편리하고 두 면은 고통스러우니 똑같이 돌보아주는 정사가 아닙니다. 종전대로 조적하도록 허락한다는 뜻으로 해당 수신(守臣)에게 분부해야 할 것입니다.

1. 경기(京畿) 고을의 수령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곧바로 잘못된 전례가 되었으니, 다른 도(道)의 수재(守宰)의 예에 의하여 나라의 일이나 실지 사고 외에는 말미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도의 규례대로 시행하여 감히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정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각 역참(驛站)들이 피폐하게 된 것은 무뢰배(無賴輩)들이 위토(位土)를 강제로 빼앗아 서울 집에서 말을 기르고 있기 때문이니, 마위전(馬位田)을 함부로 차지한 자들을 특별히 조사하여 본래의 집들에게 되돌려주고, 지나치게 짐을 싣거나 함부로 말을 타며 위토를 매매한 자들을 조사하여 엄하게 죄를 주고, 그 사실을 덮어둔 우승(郵丞)도 논하여 처벌하는 일입니다. 역참의 폐단이 극도에 달한 것은 진실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진술한 대로 본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고치는 성과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가평(加平)의 유학(幼學) 김평묵(金平默)과 수원(水原)의 유학(幼學) 이용구(李容耉)의 재주와 행의(行儀) 및 수원의 고(故) 학생(學生) 최성익(崔聖益)과 광주(廣州)의 고(故) 학생 심문주(沈文舟)의 효행을 표창하여 장려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十九日. 議政府啓: “卽見京畿暗行御史李辻永別單, 則‘其一, 道內元帳付, 四萬六千四百五十餘結外, 浦落泥生閒土起墾, 奸吏專事隱匿, 殘民無土責稅, 特令改量執總事也. 改量與査陳, 自營邑爛商便否, 使公賦無縮, 而民隱有紓. 其一, 廣州府北坊·月谷二面還穀, 亦依聲串面例, 如前糶糴於水原倉事也. 一面便易, 兩面偏苦, 有非一視之政. 許令依前糶糴之意, 分付該守臣處. 其一, 畿邑曠官, 便成謬例, 依他道守宰例, 公役·實故外, 勿許給由事也. 依他道例施行, 毋敢擅離事, 著爲定式. 其一, 各驛凋敗, 由無賴輩勒奪位土, 喂馬京第, 馬位之橫占者, 別般査得, 還給原戶, 濫把·濫騎, 位土賣買者, 査實嚴繩, 掩置之郵丞, 亦爲論勘事也. 驛弊之到劇, 固非今斯今. 依繡衣臚陳, 行關本道, 俾有改觀之效. 其一, 加平幼學金平默·水原幼學李容耉才行及水原故學生崔聖益·廣州故學生沈文舟孝行, 褒奬事也. 此令該曹稟處. (…)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7월 19일(정묘)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수원 등 고을의 표호, 퇴호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을 베풀다

수원(水原), 금산(錦山), 선천(宣川) 등 고을에서 표호(漂戶), 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十三日. 給水原·錦山·宣川等邑漂頹戶及壓死人恤典.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7월 13일(을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의정부에서 경략사 어윤중의 장계와 수원 유수 홍우창의 보고를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략사(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강계부(江界府)에서 호조(戶曹)에 2근(斤)짜리 인삼을 바치던 것을 종전대로 다시 시행한 후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한탄이 없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판부(判付)에서는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폐해가 미친다고 하여 종전에 중지시켰던 적이 있었으나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복구하게 되었던 것은 더없이 중요하게 쓰이는 물건을 중지시켜 놓고는 실제로 계속 변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한다면 원칙으로 놓고 볼 때 대단히 송구하고 딱하게 되는 만큼 한꺼번에 면제해 줄 수는 없으니 종전의 수량대로 봉진(奉進)하도록 하소서. 그러나 이처럼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심하는 전하의 마음을 우러러 체득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돌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영과 고을에서 좋은 쪽으로 조치를 취하되 높은 값으로 사들일 것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홍우창(洪祐昌)의 보고를 보니**, '무주(茂朱)에 사는 진사(進士) 김두태(金斗泰)가 돈 6,000냥을 바쳐 구휼 사업에 보태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시골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의연금(義捐金)을 냈으니 마땅히 표창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府)가 혹심한 흉년을 당하여 구휼 사업이 방대하므로 저축되어 있는 환곡(還穀)으로는 제대로 구제할 수 없었는데, 이런 때 의연금을 내어 진휼을 도왔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마땅히 나라에서 격려하고 표창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당한 초사(初仕) 자리를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經略使魚允中狀啓, 則'江界府戶曹納二斤蔘, 復舊施行之後, 民情不無齎苑之歎'爲辭. 而判付有令廟堂稟處之命矣. 以此種之貽弊於土民, 間嘗停貢, 而不幾年, 又爲復舊者, 莫重所需, 實有難繼之故也. 今若依狀請施行, 揆以事體, 極爲悚悶, 有未可遽許蠲除, 依前重數, 以爲封進. 而幽隱旣如是, 則仰體憂勤之聖念, 合施別般存恤. 營邑從長措劃, 以厚價貿取事, 分付何如?" 允之. 又啓: "卽見水原留守洪祐昌所報, 則'茂朱居進士金斗泰納錢六千兩, 願補賑資. 以遐鄕之人, 有此出義, 宜施賞奬之典'爲辭矣. 該府, 酷被歉苑, 賑政旁午, 以若所儲還穀牽補不得之際, 有此出義捐助, 誠甚嘉尙, 合施朝家激奬之典. 相當初仕窠加設, 單付之意. 分付銓曹何如?" 允之.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4월 6일(병진) 4번째기사>

4. 문화(文化)

(1) 사상

문화/사상

자복사를 지정하였는데 수원은 창성사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명찰(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지난 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사사(寺社)에 주지(住持)를 차하(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한다면, 거의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 **자은종(慈恩宗)**에 승령(僧嶺)의 관음사(觀音寺)·양주(楊州)의 신혈사(神穴寺)·개령(開寧)의 사자사(獅子寺)·양근(楊根)의 백암사(白巖寺)·남포(藍浦)의 성주사(聖住寺)·임주(林州)의 보광사(普光寺)·의령(宜寧)의 웅인사(熊仁寺)·하동(河東)의 양경사(陽景寺)·능성(綾城)의 공림사(公林寺)·봉주(鳳州)의 성불사(成佛寺)·여흥(驪興)의 신이사(神異寺)·김해(金海)의 감로사(甘露寺)·선주(善州)의 원흥사(原興寺)·함양(咸陽)의 엄천사(嚴川寺)·**수원(水原)의 창성사(彰聖寺)**·진주(晉州)의 법륜사(法輪寺)·광주(光州)의 진국사(鎭國寺)이고, (…)

○議政府請以名刹, 代諸州資福, 從之. 啓曰: "去年寺社革去之時, 自三韓以來大伽藍, 反在汰去之例, 亡廢寺社, 差下住持者, 容或有之. 僧徒豈無怨咨之心? 若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庶使僧徒得居止之處." 於是, 諸州資福寺, 皆代以名刹. (…) 慈恩宗: 僧嶺觀音寺, 楊州神穴寺, 開寧獅子寺, 楊根白巖寺, 藍浦聖住寺, 林州普光寺, 宜寧熊仁寺, 河東陽景寺, 綾城公林寺, 鳳州成佛寺, 驪興神異寺, 金海甘露寺, 善州原興寺, 咸陽嚴川寺, 水原彰聖寺, 晋州法輪寺, 光州鎭國寺.(…)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일(신사) 2번째기사>

문화/사상

정원이 보우를 죽이기를 청하는 성균관 진사 성자심 등의 소를 입계하다

정원이 성균관 진사 성자심(成子深) 등의 소를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은 전일에 다 말하였다. 이제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정원은 이러한 나의 뜻을 유생들에게 전유(傳諭)하라." 하였다. 또 함흥 문회당(文會堂) 유생 문한(文翰)·**수원 유생 어계함(魚季瑊)**·여주 유생 박원량(朴元亮)·임피 유생 이종룡(李從龍) **등의 소를 입계했는데, 모두 보우(普雨)를 죽이라고 청하는 것들이었다.** 전교하기를, "보우는 이미 그 죄가 정해졌다. 이제 추가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한 뜻으로 유생들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政院以成館〔成均館〕均進士成子深等疏入啓. 傳曰: "予意盡諭于前日, 今復有何言乎? 不允." 政院以此意, 傳諭儒生. 又以咸興文會堂儒生文翰·水原儒生魚季瑊·驪州儒生朴元亮·臨陂儒生李從龍等疏入啓, 皆請誅普雨也. 傳曰: "普雨已定其罪, 今不可追論. 以此意諭于儒生."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0월 14일(정축) 3번째기사>

문화/사상

생원 이익량이 수원의 송시열의 서원에 은액을 선사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생원(生員) 이익량(李翊良) 등이 상소(上疏)하여, **수원(水原) 땅에 새로 세운 송시열(宋時烈)의 서원(書院)에 은액(恩額)을 선사(宣賜)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해조(該曹)에 내렸는데, 해조에서 이를 허락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生員李翊良等上疏, 請於水原地宋時烈新建書院, 宣賜恩額, 上下該曹, 該曹請許之, 上可之.

<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 7월 13일(계유) 4번째기사>

문화/사상

송시열과 윤증의 절연에 대해 송시열을 옹호한 관학 유생 이시정 등의 상소문

관학 유생(館學儒生) 이시정(李蓍定) 등 1백여 인이 상소(上疏)하였다. (…) 이른바 목천(木川)의 일이라는 것에도 그런대로 곡절이 있습니다. 사인(士人) 허황(許璜)은 곧 승지(承旨) 신(臣) 허윤(許玧)의 사촌 아우로서 양성(陽城)에서 살면서 이제까지 살아있는데, 최석문 등이 '경향(京鄕)에 없는 사람이어서 힘껏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아들 허굑(許涸) 등이 올라와서 상소하였는데, 후사(喉司)에서 저지당하였으나 이미 중외(中外)에 자자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소(疏)에 대략 이르기를, '신의 아비 허황이 온양(溫陽)에서 살 때에 일이 있어 목천에 갔다가 사인 윤채(尹寀)의 집에 들렀더니, 이산(尼山)의 원유(院儒)가 통문(通文)한 것이 마침 당도하였는데, 곧 이산 서원(尼山書院)에 윤선거를 배향(配享)하는 일이었고, 죽 벌여 적은 각 고을 가운데에서 목천 아래에 「강도의 포로를 어떻게 함께 배향할 수 있겠는가? [江都俘虜豈合享祀]」라는 여덟 자가 있었습니다. **신유년 봄 선정(先正)이 수원(水原)에 와서 머무를 때에 신의 아비가 뵈러 가서 우연히 통문 가운데 목천 아래에 있던 여덟 자를 언급하였더니**, 선정이 말하기를, 「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면 목천의 풍습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였고, 선정이 돌아갈 때에는 신의 아비가 덕평(德坪)까지 따라갔더니, 이상(李翔)도 전의(全義)에서 와서 선정을 맞이하였는데, 소문을 신의 아비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최석문 등이 이른바 윤증이 선정의 본원을 의심한 까닭이라는 것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이처럼 허망합니다." 하고, (…)

○乙亥/館學儒生李蓍定等百餘人上疏. (…) 所謂木川事, 儘有委折. 士人許璜, 卽承旨臣玧之堂弟也. 居在陽城, 至今生存, 而錫文等以爲: "京鄕所無, 窮索不得" 云, 其子涸等上來陳疏, 見阻喉司, 而旣已騰播於中外矣. 其疏略曰: "臣父璜, 居在溫陽時, 因事到木川, 歷過士人尹寀家, 尼山院儒通文適到, 乃尼山書院尹宣擧配享事, 而列錄各邑中, 木川下, 有江都俘虜豈合享祀八字. 辛酉春, 先正來住水原, 臣父往拜, 偶以通文中木川下八字提及, 則先正曰: '果如君言, 則木川風習, 誠可寒心.' 逮夫先正還歸之時, 臣父隨到德坪, 則李翔亦自全義, 來迎先正, 仍以所聞於臣父者言之" 云. 錫文等所謂拯所以疑先正本源者, 二也, 而二者之虛罔, 若是.(…)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윤3월 15일(을해) 1번째기사>

문화/사상

사헌부에서 심공을 삭거 삭판하고 통제사 김중기를 파직하라고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일에 계달(啓達)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수원(水原)에 귀장(歸葬)하자,** 고(故) 참의(參議) 심수량(沈壽亮)은

가서 장례(葬禮)에 참여하고 소반(素飯)만 먹으며 복(服)을 입고는 문인(門人)으로 자처(自處)하였는데, 그 아들 심공(沈珙)은 근년에 한 통의 소장(疏章)에서 윤선거(尹宣擧) 부자(父子)를 편들어 온갖 말로 어질다고 칭찬하면서 현혹시키는 계책을 썼으니, 청컨대, 삭거사판(削去仕版)하소서. 통제사(統制使) 김중기(金重器)는 망령되고 패악한 성품으로 간활(奸猾)한 술책을 써서 본직(本職)을 제수(除授)받자 거만하게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동래부(東萊府)의 대상(大商)과 결탁하여 심복(心腹)을 삼고는 수천 금의 재화(財貨)를 내주어 식리(殖利)한 것이 셀 수가 없는데, 간 곳이 분명하지 않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세자가 다만 이우겸(李宇謙)의 일만 따랐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당시의 여러 장수들이 김중기(金重器)와 윤취상(尹就商)이 가장 교만하고 탐욕이 많아서 법에 어긋난다고 계문(啓聞)하였는데, 김중기(金重器)는 통곤(統閫)의 지위에 나아간 후 교만하고 외람됨이 더욱 심해져서 기탄(忌憚)하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대간(臺諫)이 사실에 의거하여 탄핵(彈劾)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여 따르지 않으니, 시론(時論)이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
○戊辰/憲府申前達. 又言: "先正臣宋時烈之歸葬水原也, 故參議沈壽亮往會其葬, 食素行服, 自處以門人, 而其子珙, 頃年一疏, 右袒尹宣擧父子, 極口稱賢, 欲售瑩惑之計. 請削去仕版. 統制使金重器, 以妄悖之性, 挾奸猾之術, 及授本職, 偃然乘轎, 萊府大商, 結爲腹心, 出給累千財貨, 殖利無算, 去處不明. 請罷職不敍." 世子只從李宇謙事.
【史臣曰: "當時諸將, 重器與尹就商, 最以驕貪不法聞, 而重器之出莅統閫也, 驕濫益甚, 無所忌憚. 臺劾據實, 而終不允從, 時論恨之."】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4월 26일(무진) 1번째기사>

문화/사상

경기 유학 한익진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 등의 복권을 청하다

경기(京畿)의 유학 한익진(韓翊震)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시열의 무덤이 수원(水原) 근방에 있어 장보(章甫)들이 사당을 세우고 편액(扁額)을 청하자 숙종께서 즉시 매곡 서원(梅谷書院)이란 이름을 내렸는데,** 한 번 윤선거가 성조(聖祖)를 무함하여 성고(聖考)께 죄를 얻으면서부터 그 사원(祠院)을 철거하라 명하시어 그 무리가 원망을 송시열에게 돌렸고, 윤성시(尹聖時)가 몰래 향사했다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갑자기 도봉(道峰)의 향사를 없앴습니다. 이진유(李眞儒)는 겹쳐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고 가탁(假托)하여 여러 서원의 편액(扁額)을 모조리 철거했습니다.
당초에 이진유는 숙종의 성명(成命)에 의하여 계사년 이후에 겹쳐 설치한 서원은 모두 철거하기를 청해 윤허를 받았는데, 그 사목(事目)을 반포하기에 미쳐서는 송시열의 서원은 계사년 이전에 사액(賜額)한 것도 모조리 철거하는 가운데 넣었으니, 남의 신하로서 농락하고 변환(變幻)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때에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선조(先祖)에서 사액한 것은 환수(還收)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였는데, 그 대신들도 어찌 윤선거와 윤증의 사당(私黨)이 아니었다면 그 말이 오히려 이와 같았겠습니까? 원하건대, 도봉 서원의 향사를 회복하고, 본원(本院)의 편액을 걸도록 하시며, 그 나머지 같은 때 철거한 원액(院額)도 한결같이 모두 다시 내리며, 윤선거·윤증의 선정(先正)이란 칭호를 금하여 여러 흉적들이 정인(正人)을 해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 모두 이미 처분하였다고 비답을 하였다.

○京畿幼學韓翊震等上疏，略曰：**先正臣宋時烈，衣履之藏，在水原傍近，章甫建祠請額，肅廟卽賜梅谷書院之號**．一自尹宣擧，以誣聖祖得罪聖考，命撤其祠院，其徒歸怨時烈，聖時僞造潛享之說，而遽撤道峰之享，眞儒假托疊設之禁，而盡去諸院之額．當初眞儒，以依肅廟成命，癸巳以後，書院疊設者，請皆撤去蒙允，而及其頒布事目，則時烈書院之賜額於癸巳前者，竝在撤去中．爲人臣子，簸弄變幻若是，則何事不可忍也? 其時，大臣以爲：“先朝所賜之額，則不可還收.” 彼大臣，亦豈非宣擧·拯私黨，而其言猶如是．願復道峰之享，揭本院之額，其餘同時所撤之院額，一併復宣，而禁宣擧·拯先正之稱，治群凶毒正之罪．(…) 皆批以已處分．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11일(경술) 8번째기사>

문화/사상
좌의정 김상로가 송시열 묘을 수원에서 청주로 이장한다고 아뢰다
왕세자가 덕성합(德成閤)에 앉아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김상로가 또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묘(墓)가 경기(京畿) 수원(水原)에 있는데, 듣자니 택조(宅兆)가 불길(不吉)하다 하여 호서(湖西)의 청주(淸州)로 이장(移葬)한다 합니다.**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현인(賢人)으로서 사체(事體)가 매우 다르니, 단지 대신(大臣)들의 천장(遷葬)하는 예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담여군(擔擧軍)과 조묘군(造墓軍) 및 장사(葬事)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양읍(兩邑)으로 하여금 후하게 고조(顧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己巳/王世子坐德成閤, 行次對．(…) 尙魯又言：“先正臣宋時烈墓, 在京畿**水原**, 聞以宅兆不吉, 移葬於湖西淸州．從祀文廟之賢, 事體迥別, 不可只循大臣遷葬之例．擔擧·造墓軍及葬祭需, 宜令兩邑, 從厚顧助.” 從之.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8월 10일(기사) 1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부의 향교를 낙성하다
수원부의 향교(鄕校)를 낙성하였다.
○**水原**府鄕校成.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9월 13일(병신) 2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에 있다는 공자의 묘우 주변 지형을 그려오게 하다
전교하였다. “**공자(孔子)의 후손 중에 우리나라로 건너온 자가 수원(水原)의 중규면(中逵面) 구정촌(九井村)에 살았는데, 그곳에는 성인의 묘우(廟宇)가 있다**. 고 대사헌 공서린(孔瑞麟)이 그 중에 가장 벼슬이 높고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 후손들은 지금 용인(龍仁)에 있는 도헌(都憲)의 무덤 아래로 이사하여 살고 있다. 이번에 수용(收用) 때문에 생각이 나서 반당(泮堂)에 물어보고 고주(考奏)하게 하였더니 과연 사실이 그러하였다. **묘지(廟址)와 가대(家垈)도 아직 수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로(故老)들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다 하니**, 어째서 이렇게 늦게야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각별히 편비를 보내서 그곳의 형지(形址)를 도면으로 그려 올리게 하라.”
○戊戌/敎曰: “孔聖後裔之東來者, 居于**水原**之中逵面九井村, 有聖人之廟焉, 卽故大司憲孔瑞麟, 最其中宦高名聞之人也．其後孫徙居龍仁都憲墓下．今番因收用思之, 問于泮堂, 使之考奏

矣, 事實果然, 而廟址·家垈, 尙今宛在於水原地, 爲故老所指點, 何覺之晩也? 令道臣, 別遣褊裨, 圖上形址."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9월 2일(무술) 1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에 살고 있는 경기전 참봉 공윤동을 소견하다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 공윤동(孔允東)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희 공씨(孔氏)가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후 대대로 **수원**에 살고 있는데 묘지(廟址)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단행(壇杏)이 교목(喬木)이 된 것은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너희는 성인의 후손이니 만일 스스로 힘써 시례(詩禮)로써 칭송을 받는다면 세도(世道)의 다행일 것이다. **수원에 살고 있는 공씨는 몇 집이며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는 것은 몇 파(派)나 되는가?**"

하니, 윤동이 아뢰기를, "**수원에 살고 있는 자들은 30여 집인데, 중간에 용인으로 많이 옮겨 갔으며 영남에는 공씨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자니, 수원에 공자(孔子)의 영정(影幀)을 봉안한 사당이 있어 선조(先朝)께서 사액(賜額)하신 일이 있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중규면(中逵面) 구정촌(九井村)이 우리나라로 건너온 후 맨 처음 살았던 마을이니 영당(影堂)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召見慶基殿參奉孔允東. 上曰: "自爾孔之東來, 世居水原, 墓址宛在, 壇杏成喬, 誠非偶然. 以聖人後裔, 若能自勉以詩禮見稱, 則世道之幸也. 孔姓之居水原者幾家, 散在他處者幾泒耶?" 允東曰: "居水原者三十餘家, 而間多流寓於龍仁, 至於嶺南, 則孔姓者甚多矣." 上曰: "聞水原有孔聖影幀奉安之室, 有先朝賜額. 予意則中逵面九井村, 旣是東來初居之鄕, 則影堂之移設於此處好矣."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9월 5일(신축) 2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의 궐리사란 사우에 편액을 내리고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다

전교하였다. "**공씨(孔氏)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맨 먼저 수원(水原)에 정착한 사실이 읍지에 실려 있는데 일전에 도신으로 하여금 그곳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여 그 그림에서 찾아보니 궐리사(闕里祠)란 사우(祠宇)도 있고 은행나무도 심어져 있으며 대대로 눌러 사는 후손들도 있었다.** 또 궐리(闕里)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는 새로 지은 영당(影堂)이 있다고 하였다. 문헌공(文獻公)의 시호를 내린 뒤로도 조정이 공씨 집안을 우대하는 일에 있어 보통 예와는 달리해야 할 것이니 도백으로 하여금 궐리 옛터에다 집 한 채를 세워 내각에 있는 성상(聖像)을 모시게 하고 영당에 모셨던 진영(眞影)도 모셔다가 함께 봉안하고서 이름을 궐리사라 하라. 사우의 편액은 써서 내리겠다. 봄·가을로 지방 수령에게 향(香)과 축(祝)을 내려 제사를 모시게 하고 제사에 쓰이는 제수들은 대략 이성(尼城) 궐리사(闕里祠)의 예대로 시행하되 한사코 정갈하고 간략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나면 이른바 새로 세웠다는 영당은 고을 유생들이 사사로이 세운 것에 불과하고 또 간직했던 영정마저도 함께 봉안하였으니 재목이며 돌들도 당연히 이곳에다 옮겨 세워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사사로이 제향을 드릴 일이겠는가. 서원 지키는 재생(齋生)에 있어서도 그 마을에 대대로 살아온 공씨를 시키도록 하고 다른 유생은 감히 섞이지 못하게 하여 시비거리가 없도록 하라. 이 전교를 써서 강당에다 게시하라."

○敎曰: “孔氏之東來, 首居於水原地, 載在邑乘. 日前令道臣圖上形便, 見之有闕里之祠焉, 有銀杏之樹焉, 有世居之裔焉. 又於距闕里數十里地, 有新建影堂云. 文獻公宣謚之後, 朝家崇報於孔族者, 宜有拔例之擧. 令道伯就其闕里舊址, 建一屋子, 妥安聖像在內閣之本, 而影堂本奉來同藏, 號曰闕里祠. 祠扁當書下. 春秋降香祝於地方官行祀, 祀品略施尼城闕里祠例, 務從精約. 如是之後, 所謂新建之影堂, 不過邑儒私設者, 且況藏本同奉, 則材石亦當移彼建此, 豈敢私享乎? 至於守院之齋生, 以世居是里之孔氏爲之, 他儒則無敢混處, 俾禁爭端. 以此傳敎, 書揭講堂.”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0월 3일(무진) 2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의 향사 의식에 대해 비답하다
예조가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의 향사 의식에 대해 여쭈니, 비답하기를, “제품(祭品)은 보(簠)·궤(簋)·변(籩)·두(豆)를 각각 하나씩 하고 술잔을 셋으로 하며, 폐백은 없고 축문은 있게 하라. 축문과 향(香)은 봄가을로 내려보내고, 공씨(孔氏)로서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항렬이 높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 번 술잔을 드리게 하고, 또 그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축문을 읽게 하며, 또 몇 사람으로 집사(執事)를 삼도록 하라.
향과 축문을 조정에서 내려주는 경우 일반 다른 제사와는 색다른 점이 있어 유생으로서는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하나 이는 그렇지 않다. 지방 고을의 이와 비슷한 제사 의식에서 그 고을 양반이 대신 행사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공자 사당에 공씨가 술잔을 드리는 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아울러 사당을 지키거나 사당 일을 맡아보는 유생도 공씨 성을 가지고 대대로 사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해마다 올리는 향사를 봄 가을의 마지막 달 상정일(上丁日)에 설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以水原闕里祠享祀儀式稟旨. 批曰: “祭品則簠簋籩豆各一, 爵三, 而無幣有祝. 祝與香, 春秋下送, 令孔氏世居中行尊者一人, 獻三爵, 又其中一人讀祝, 又數人爲執事. 雖以降香祝, 事體自別, 儒生不可主祀云, 而此則不然. 外邑似此祭儀, 鄕班猶或替行. 況孔廟以孔氏奠獻, 有何不可乎? 幷與守儒·任生, 如非孔姓世居者, 切勿擧論.” 禮曹又啓: “每年享祀, 請以春秋季朔上丁日設行.” 允之.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7월 24일(을묘) 2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의 의례 규정을 정하다
승지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의 축문(祝文)에 수결을 두는 것으로 해조에서 초기(草記)로 윤허를 받았습니다**. 축문에 대신 수결하는 일은 그 사체가 중대하고 시골에 사는 유학(幼學)이 제향을 대행하는 일도 지극히 외람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성(尼城)의 궐리사에서 행하는 예와 똑같이 향촉(香燭)과 제품(祭品)은 그 고을에서 마련하여 보내고 향실(香室)에서 대신 수결하는 그 조항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예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성의 궐리사는 선비들이 사적으로 제사 모시는 곳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찍이 선왕조 신

해년에 본현의 공자 영정(影幀)을 향교에 봉안하라는 전교가 있었다가 곧바로 고 유신(儒臣) 박필주(朴弼周) 상소에 의하여 각도의 공자 영정을 모두 예전대로 봉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애당초 조정 지시에 의하여 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궐리사 창건에 있어서는 사체가 이와는 같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읍지(邑誌)에 근거할 만한 바가 있다 하여 특별히 그 곳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도록 명하고 이어 내각(內閣)에 모셔졌던 성상(聖像)을 그곳으로 옮겨 그곳 영당(影堂)에 모셨던 영정과 함께 봉안하게 하였으며, 그때 전교에서는 궐리사의 편액(扁額)을 써서 내려보내고 봄·가을 제향에 향과 축문을 지방관에게 내려보내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유생들이 사적으로 세운 사당과 비교하여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수결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사(三聖祠)와 역대 시조의 사당에는 모두 대신 수결을 두어 왔으니 궐리사도 그렇게 마련하여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시골 사는 유학이 왕명을 받들어 제향을 대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외람된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번 예조 초기에 대해 내린 비답에 대략 이르시기를 '향과 축문을 내리는 경우 사체가 자별하므로 유생이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방 고을의 그와 같은 제사에 향반(鄕班)이 혹 대행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공자 사당에 공씨가 술잔을 드리게 하는 것이 뭐가 불가하겠는가.' 하시면서 이어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게 하였는데 대신들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저 전후 내리신 전교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두 말 모두 일리가 있다. 공씨가 공자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니 벼슬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은 없다. 다만 축식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그럴 법도 하다. 지방관이나 판관(判官)이 초헌(初獻)을 드리고 공씨가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드리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라." 하였다.

○承旨徐邁修啓言: "**水原**闕里祠祝文, 以有押, 自該曹草記允下矣, 祝式代押, 事體重大, 鄕居幼學之替行, 極涉猥越. 臣意一依尼城闕里祠例, 香燭祭品, 自官備送, 香室代押一款, 置之宜矣." 命禮曹稟處. 禮曹啓言: "尼城闕里祠, 則不過士子輩私自虔奉之所, 故曾在先朝辛亥, 有本縣影幀奉安于鄕校之敎, 而旋因故儒臣朴弼周之疏, 諸道孔聖影幀, 竝命仍奉. 此可見其初不關由於朝廷也. 至於**水原**闕里祠之創建, 事體與此不侔. 自朝家旣以邑乘之可徵, 特命圖上其形便, 仍使移奉內閣所安之聖像, 與影堂本同藏. 伊時傳敎, 亦以書下闕里祠扁, 春秋降香祝於地方官爲敎, 豈可比論於儒生輩私設之祠? 代押事體, 非不重大, 而如三聖祠·歷代始祖廟, 皆有代押, 則闕里祠之依此磨鍊, 似無不可. 至若鄕居幼學之奉命替行, 果不無猥越之嫌, 而向於臣曹草記批旨, 略曰: '雖以降香祝, 事體自別, 儒生不可主祀云, 而此則不然. 外邑似此祭儀, 鄕班猶或替行. 況孔廟以孔氏奠獻, 有何不可乎?' 仍命收議大臣, 而亦無異辭. 臣意則只依前後所下傳敎, 擧行爲宜." 敎曰: "兩說皆通, 而孔氏之主祀貴矣, 不係於有官無職. 但祝式之持難, 亦或然矣. 地方官·判官初獻, 孔氏亞終獻, 以此著爲式."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9월 2일(임진) 2번째기사>

문화/사상

첨지 권유의 상소

(…) 악역(惡逆)에 대해서는 천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분개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소융(小戎)의 부녀자도 오히려 수치를 씻는 용기를 알았고 무의(無衣)의 시인도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의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 겉으로는 성토(聲討)하

는 척하면서도 여우처럼 꼬리를 흔드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안으로는 실제로 상투적인 수법을 답습하면서 거세게 몰아부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은 말하기를 '누구는 관직이 너무도 분수에 넘치기 때문에 성상께서 마음속으로 좋게 여기지 않고 계시는데 그 죄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누구는 권세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성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데 형벌을 받으면 역적죄가 적용될 것이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누구는 말로 의논하기를 좋아하고 계속 명망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성상께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문득 제거해 버리려 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악역(惡逆)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선창(先倡)하면 모두가 화답하면서 심지어는 경성(京城)의 거마(車馬)를 항서(巷誓)에 올리기까지 하고 궁궐의 관원들을 시역(弑逆)할 인간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익환(吳翼煥)이 말한 바 '장차 취하려 하면서 우선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한 것인데, 오익환은 단지 이를 문자로 표현한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돌려가며 서로 일러주고 경계하면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말하는 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반면 이를 비밀로 하는 자는 여전히 영예와 총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익환이 성상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무슨 수로 얻어 듣고 그만 이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도 귀가 있으니 귀로 들을 때 맹랑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사이에 점점 잘못된 유언비어에 오염된 나머지 스스로 써서 바치게까지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로 돌려가며 일러주고 경계한 저자들이야말로 익환이 그렇게 행동한 근저(根柢)가 되지 않는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습속이 괴상하게 변한 것이 이와 같고 조정의 형정(刑政)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그 죄가 그야말로 위로 하늘에까지 통했다고 할 것인데, 사문(私門)에 대한 법을 걸어놓고 금조(禁條)를 설치하기를 소 터럭과 누에고치 실처럼 세밀하게 해 놓아도 제 몸 보전하기에 능하고 처세술에 달통한 사람들이라서 모두가 샛길로 통하고 구멍을 뚫으면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흡사 거수(渠率)가 단(壇)에 오르자 군교(軍校)가 일제히 발방(發放)을 듣는 것처럼 되는가 하면 여정(閭井)의 일반 서민들까지도 온통 그 모양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 대략적인 것만 거론해서 말해 본다 하더라도 '뇌물은 숨겨 놓아야 하니 상께서 아시면 염증을 낼 것이다.' 하고, '갔다왔다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하니 상께서 들으시면 꺼리실 것이다.' 하고, '피차 간에 친하게 지내는 것을 드러내어서는 안 되니 상께서 아시면 필시 싫어하실 것이다.' 하고, '동배(同輩)끼리 잔치를 열고 즐기는 것을 꾀해서는 안되니 상께서 들으시면 필시 미워하실 것이다.' 하고, '경상비를 축냈는데도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하고, '정령(政令)이 전도(顚倒)되었는데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고, '장영(壯營)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하고, **'화성(華城)을 경영하는 일에 대해 감히 입을 놀리지 못하고 있다**.' 는 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밤이 이슥하도록 등불을 들고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데 눈을 깜빡여 말을 하고 손짓을 하여 그치게 하면서 하나의 그럴 듯한 묘결(妙訣)을 만들어내고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얕은 곳에서 깊은 데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

○(…) 惡逆者天下之所共憤也. 故『小戎』之婦女, 猶知湔羞之勇; 『無衣』之詩人, 亦解同仇之義. 今也則不然, 外若聲討, 而逞狐媚之態; 內實傳襲, 而斷鷸逐之念. 或曰: "某也官太侈也, 故聖心不怡, 而其罪至於死." 或曰: "某也勢所歸也, 故聖心見忤, 而其辟至於逆.," 或曰: "某也好言議養名望, 故聖心不能無疑, 而輒欲除而去之." 其實非惡逆也, 一人先倡, 萬口和應, 春明車馬, 至登巷誓, 靑瑣冠珮, 如視戕斧. 此吳翼煥所謂將取姑與, 而翼煥特言之於文字,

此輩則轉相告戒而祕之. 故言之者在乎人鬼之關, 而秘之者榮寵自如. 彼翼煥從何以得聞聖心之如此, 乃爲此說耶? 渠亦有耳, 耳之及聞, 非不孟浪, 一聞再聞, 漸染訛誤, 至於自書以納, 則彼轉相告戒者, 豈非翼煥之根柢乎? 以習俗而變怪如此, 以朝廷而刑政如此, 此其罪, 固已上通于天, 而懸法私門, 設爲禁條, 細如牛毛, 密如蠶絲, 人之工於謀身, 而善於涉世者, 皆從旁蹊曲逕, 鑽刺出沒, 殆若渠率升壇, 而軍校齊聽發放. 至於閭井匹庶, 泯然一色, 雖擧其大綱而言之曰: "苞苴當匿也, 上徹則厭之." 曰: "往還當廢也, 上聞則忌之." 曰: "彼此之親習, 不可露也, 上知則必厭之." 曰: "朋儕之燕遊, 不可謀也, 上聽則必惡之." 曰: "經用之耗損, 而不敢言也." 曰: "政令之顚倒, 而不敢道也," 曰: "壯營設施之不敢張口也." 曰: "華城經始之不敢游嘴也." 遂至夜闌提燈, 行止閃忽, 眴目而語, 搖手而止, 便成一副當妙訣, 自近及遠, 由淺入深. (…)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1월 11일(갑오) 1번째기사>

문화/사상
우화관에서 선비를 시취하고 낙남헌에서 무관을 시취하다
우화관(于華觀)에서 선비를 시취(試取)하고 낙남헌(洛南軒)에서 무관을 시취하였다. 이어 친림(親臨)한 자리에서 급제자를 발표하였는데, 문인 중에서는 최지성(崔之聖) 등 5인을 뽑고 무인 중에서는 김관(金寬) 등 56인을 뽑았다.
○試士于于華觀, 試武于洛南軒。 仍臨軒唱第, 文取崔之聖等五人, 武取金寬等五十六人。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1일(계사) 2번째기사>

문화/사상
화성의 석채 때, 반열에 참여했던 유생들을 시상토록 하다
좌의정 채제공에게 명하여 화성의 석채(釋菜) 때 반열에 참여했던 유생들을 시취(試取)하고 차등있게 시상하도록 하였다.
○己亥/命左議政蔡濟恭, 試取華城釋菜時, 參班儒生, 施賞有差.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5일(기해) 1번째기사>

문화/사상
개성부·수원부·광주부 등에 별여제를 설행하라고 명하다
개성부(開城府)·수원부(水原府)·광주부(廣州府) 등에 별여제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는데, 모두 유수들의 장계로 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命開城·水原·廣州等府別厲祭設行, 幷從留守狀請也.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7월 26일(무술) 2번째기사>

문화/사상
심상규가 이병영의 복식 개혁에 반대하여 전례에 따르기를 건의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지평 이병영(李秉瑩)이 상소로 인하여 청한, 복식(服飾)을 개혁하여 번다한 조문을 삭제하자는 건을 가지고 원임 대신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토론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의 의복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철릭[帖裏]입니다. 그것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연이어 꿰매어 만든 것으로 소매가 팔꿈치를 돌릴 수 있는데, 대개 심의(深衣)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뜻이 있기 때문에 융복(戎

服)이라고 이릅니다. 옛날에는 모포(帽袍) 속에 입었기 때문에 또 첩리(帖裏)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다 도포(道袍)를 입으면 조회에 나아갈 수 있고, 도포를 벗으면 군대에 나아갈 수 있으니, 편안할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간소(簡素)하고도 편리한 것은 고제(古制)가 그러합니다. 선조(先朝) 계축년 하교(下敎)를 상고해 보면, 입(笠)과 철릭을 함흥(咸興)의 본궁(本宮)에 받들어 모셔 융복의 버릴 수 없다는 증거를 삼았으니, 이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수(衣袖)의 옛것은 겨우 팔을 돌릴 만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넓고 드리워져 끌고 다니게 되었으며, 옛날의 입첨(笠簷)은 겨우 어깨를 덮을 만하던 것이 지금은 또 넓어서 반좌(盤坐)를 지나쳤으니, 족히 미관(美觀)이라고 할 것이 없고 사용하기에도 적당치 않으므로 개탄스럽고 의아스럽습니다. 그 넓은 것은 모두 사치와 허비에 속하는 것이니, 지금 정말 구제(舊制)를 준행하고 이미 익숙해진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폐단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융복이 있는데다가 또 군복이 있으니, 군(軍)과 융(戎)이 무엇이 다르기에 복장이 이렇게 다릅니까? 이것이 사치와 허비가 되는 것이므로 그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할 경우 군복의 사치와 허비는 융복보다 여러 곱절이 될 뿐만이 아니니, 차라리 군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또 갑자기 의논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대개 군복은 개주(介胄)의 속옷이니 융복의 모포(帽袍)의 속옷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각영(各營)의 군졸(軍卒)은 모두 군복을 착용하고 각사(各司)의 조례(皁隷)는 모두 철릭을 착용하니, 곧 각각 그 장령(將領)과 관원(官員)의 상복(常服)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것입니다. 장신(將臣)과 직책을 가진 무변(武弁)의 공복(公服) 아래에 지금도 모두 군복을 입는데, 문관(文官)과 음관(蔭官)은 철릭이 지금은 창의(氅衣)로 변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이미 변한 것을 다시 변경시켜 도리어 번폐(煩弊)스러움을 자아낼 필요가 없겠지마는, 구법(舊法)이 아직 존속되고 있는데, 또 무엇 때문에 폐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군복도 갑자기 없애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선조(先朝)께서 화성(華城)에 거둥하실 때는 군복을 참용(參用)하셨으니,** 성의(聖意)의 재결(裁決)하시는 데에 어찌 권도(權度)가 없으시겠습니까? 다만 표기(標旗)와 내호가(內扈駕)의 여러 신하들은 군복(軍服) 차림으로 수행하였고, 각관(各官)은 모두 융복으로 한결같이 다른 거둥 때와 같이 했습니다. 신(臣)의 우천(愚淺)한 생각에는 이 뒤에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에 거둥하실 때에도 마땅히 능원(陵園) 거둥의 의절을 써야 하겠습니다. 대개 참용은 영구(永久)한 제도가 아니요, 상의(常儀)는 옛 전례(典禮)를 따르는 것이 귀중한 바이니, 일찍부터 마음에 잊지 않던 바이므로, 감히 이렇게 사단으로 인하여 아울러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둥의 의절에 관계되어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원임 대신, 예조 당상, 관각 당상(館閣堂上) 및 여러 비국 당상에게 하문하시어 지당(至當)한 데에 돌아가도록 힘쓰시면 그지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입(笠)에다 반드시 붉은 말갈기 털을 맺어서 만든 것은, 비용이 많은 것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꾸미는 일이 쓸데없이 번거롭고 더욱이 바람을 받기에 괴로우니, 이로써 미관(美觀)을 삼는다는 것은 어이없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입은 말갈기를 쓰지 말고 꾸미는 것도 작우(雀羽)·방우(傍羽)·영우(嶺羽)와 같은 형식도 또한 버려야 합니다. 능행(陵行)의 의주(儀註)에 파재(罷齋)하고 환궁(還宮)할 때에 비록 삽우(揷羽)의 조문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예절(禮節)에 족히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 성내(城內)의 전좌(殿坐)는 모두 재일(齋日)이 아니요, 묘궁(廟宮)에 향알(享謁)하고 환궁할 때에 비록 이미 파재하였더라도 시위(侍衛)들은 삽우하지 아니했는데, 어찌 교외(郊外)에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삽우의 한 절차는 의주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을까 합니다. 다만 호랑이 수염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시위로서 융복한 자는 전립(戰笠)에 반드시

꽂았고 또 객사(客使)가 왔을 때 일찍이 모두 이러한 장식을 한 것을 보았는데, 지금 갑자기 제거한다면 혹 그전의 의절보다 생략한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존속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밖에 전에 아뢴 근일에 조정의 의절로 강구(講究)한 중에 변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들을 특별히 일통(一通)의 절목(節目)을 만들어 계하(啓下)하여 준행(遵行)할 자료로 삼게 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국가(國家)가 안전을 유지하여 세도(世道)를 편케 하고 민지(民志)를 하나로 하는 것은 '의리를 밝힌다[明義理]'는 세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故) 중신(重臣) 조득영(趙得永)의 병인년 상소는 지조가 엄정(嚴正)하고 수립(樹立)이 탁월하여 혼자 소장(消長)의 기미를 예견하고 힘써 충역(忠逆)의 구분을 분변함으로써, 우리 선왕(先王)의 정미(精微)한 의리를 밝히고 우리 전하의 계술(繼述)한 의리를 밝히어 효연(曉然)히 일세(一世)에 드러나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서로 면려(勉勵)하여 잠시도 소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잊지 않은 것을 가상히 여기고 천명한 것을 지키는 도리는 또한 이 중신을 포상하는 것뿐입니다. 또 그가 만년(晩年)에 자정(自靖)한 것도 족히 풍교(風敎)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고이조 판서 조득영의 시호를 빨리 의논할 것을 명하여 이전(彝典)을 밝힘이 마땅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혹 특별한 하교로 인한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내린 예(例)가 있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甲子/次對. 左議政沈象奎啓言: "頃因前持平李秉瑩上疏, 其所請服飾之另行更張, 刪去繁文者, 往復停當于原任大臣矣. 我東衣章, 其制之最古者, 帖裏是已. 上衣下裳, 連綴成之, 袂可回肘, 蓋有深衣卽戎之義焉, 故謂之戎服. 而古則服之於帽袍之裏, 故又謂之帖裏, 加袍以趨朝, 去袍而卽戎, 安不忘危, 簡而且便, 古制爲然. 若稽先朝癸丑下敎, 以笠與帖裏之藏奉於咸興本宮, 爲戎服不可祛之證, 此無容更議. 而若其衣袖之舊僅回肘者, 今幾闊垂曳步矣, 笠簷之舊纔覆肩者, 今且廣過盤坐矣, 無足爲美觀, 而不適於便用, 誠可慨訝. 其闊其廣, 皆屬侈費. 今誠遵舊制, 而無循已習之俗. 斯可以祛其弊矣. 若以旣有戎服, 而又有軍服軍戎何別, 而服有此異? 此爲侈費, 宜去其一云爾, 則軍服之侈費, 不啻倍蓰於戎服, 此寧可祛. 而第亦有不可遽議者, 蓋軍服, 卽介胄之裏衣, 如戎服之爲帽袍之裏衣也. 各營軍卒, 皆着軍服, 各司皂隷, 皆着帖裏, 卽各從其將領官員之所常服而然也. 將臣與有職武弁公服之下, 今亦皆着軍服, 而文蔭官則帖裏, 今變爲氅衣. 今雖不必更變其已變者, 反滋煩弊, 而其舊法之尙存者, 又何可廢之乎? 然則軍服亦不可輒除也. 第伏念先朝惟**華城**幸行, 參用軍服, 聖意所裁, 豈無權度? 而亦只標旗, 以內扈駕諸臣, 具軍服陪從, 各官則皆戎服, 一如他幸行時. 臣之愚淺, 竊以爲今後健陵·顯隆園幸行時, 亦當用陵園幸行常儀. 蓋以參用, 非爲永制常儀, 所貴率由也, 嘗所耿耿, 敢此因端竝陳. 而係是動駕儀節, 事極重大, 下詢原任大臣禮堂館閣堂上及諸備堂, 務爲至當之歸, 不勝幸望. 至如笠之必以紫鬃結造者, 不但患其費多, 飾之繁冗, 尤苦受風, 以此爲美, 無謂莫甚. 笠不用鬃結, 飾亦去其彌文, 如雀羽·傍羽·嶺羽. 陵幸儀註罷齋還宮時, 雖有揷羽之文, 此未足有關禮節. 城內殿座, 皆非齋日, 廟宮享謁還宮, 雖已罷齋侍衛, 亦未嘗揷羽, 則何獨於郊外, 必如此哉? 然則揷羽一節, 不爲磨鍊於儀註, 恐無不可. 但虎鬚不知用自何時, 而侍衛之戎服者, 笠必揷之, 且客使之來, 曾皆見此飾, 而今忽除去, 則無或視以簡省於前儀乎? 以此以彼, 存之爲可. 外此前奏所云, 近日朝儀之所講究, 合當變通釐正者, 另成一通節目, 以爲啓下遵行之地."

從之. 又啓言: "自古國家所以維持全安, 靖世道而壹民志者, 不過曰'明義理' 三字而已. 有若故重臣趙得永丙寅一疏, 秉執嚴正, 樹立卓絶, 獨炳消長之幾, 力辨忠逆之分, 以明我先王精微之義理, 以明我殿下繼述之義理, 得以曉然著明於一世, 此正君臣上下交相勉勵, 不容暫忽者

也. 然則爲今日嘉乃不忘, 保守闡明之道, 亦惟褒嘉此重臣. 而且其晩年自靖, 亦足以有裨風敎. 臣謂故吏曹判書趙得永, 亟命議謚, 以昭彝典爲宜. 在前如此之人, 或有因特敎不待謚狀之例矣." 從之.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4월 29일(갑자) 1번째기사>

문화/사상

전국의 서원, 향현사, 생사당에 소속되어 있는 결총과 보액을 보고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각읍(各邑)에 있는 서원(書院), 향사(鄕祠), 생사당(生祠堂) 및 그에 소속된 결총(結總)과 보액(保額)에 대해 자세히 등문(登聞)하라고 자전의 하교를 행회(行會)한 지 지금 두어 달이 지났다. **그런데 강화(江華), 수원(水原), 광주(廣州)는 이미 계문(啓聞)하였지만 그 나머지는 아직도 움직임이 없으니,** 거행에 있어 지극히 지체하고 소홀히 한 것이다. 각 해당 도신과 유수(留守)를 엄하게 추고하고, 속히 계문(啓聞)하라고 묘당(廟堂)에서 다시 관문을 보내 신칙하라." 하였다.

敎曰: "各邑所在書院·鄕祠·生祠及所屬結總額, 消詳登聞事, 慈敎行會, 今至數朔. 江華·水原·廣州, 雖已啓聞, 其餘尙無動靜. 其在擧行, 稽忽極矣. 各該道臣及留守, 竝從重推考, 斯速啓聞事, 自廟堂更爲關飭."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6월 7일(병자) 4번째기사>

문화/사상

공충 감사 민치상이 수원 여웅암 앞바다에 정박한 이양선의 동정을 보고하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이, '덕산군(德山郡)에서 변고를 일으킨 비적 무리들이 19일 밀물 때에 구만포(九萬浦)에서 떠났는데, 배 안에 우리나라 옷차림을 한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사류(邪類)가 기회를 타서 따라간 것입니다. 이 배는 천안읍(天安邑) 동리의 전포(前浦)에 정박하였다가 이날 해시(亥時)에 본군 하평리(下坪里)의 후포(後浦)로 옮겨가서 정박하였는데, 이 포(浦)는 4, 5호(戶)에 불과한 외딴 마을입니다. 저놈들 10여 명이 밤을 타서 난입하여 약간의 집물(什物)을 강탈하여 갔는데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20일 진시(辰時)에 곧바로 홍주(洪州) 행담도(行擔島)로 가서 큰 배와 함께 정박하였으며 썰물 때에는 **수원(水原) 여웅암(汝雄巖)의 바다 밖으로 물러가서 정박하였고**, 21일 오후에는 남양(南陽) 연흥해(**延興海**)를 향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곧장 경기(京畿) 연해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반드시 해서(海西)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관찰사와 해서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미리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이 서양 배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서 여덟 고을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비록 어리둥절한 것 같지만 단지 이것은 하나의 배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公忠監司閔致庠以"德山郡作變之匪類, 十九日朝水, 自九萬浦行船, 而船中有我國衣冠者二名, 必是邪類乘時隨去. 留泊天安邑洞前浦, 當日亥時, 移泊本郡下坪里後浦, 而浦戶不過四五之孤村也. 彼漢十餘名, 乘夜攔入, 奪去若干什物, 初無傷人等事. 二十日辰時, 直向洪州行擔島, 與大船會泊. 夕水, 退泊于水原汝雄巖外洋. 二十一日午後, 向往南陽延興海云. 若不直入京畿, 必向海西, 故文移于京畿·海西觀察使處, 使之先事預防. 蓋此洋舶, 東西閃忽, 八邑報牒, 雖若疑眩, 只是一船而已"啓.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4월 23일(신축) 3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유수의 보고에 따라 예수교 도당인 손경로, 김양길을 효수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경하(李景夏)의 보고를 보니, '자복한 예수교 도당들에 대해서 지금 다 처결(處決)하였습니다**. 그런데 손경로(孫京老)라고 하는 자는 지난번 양선(洋船)이 **구만포(九萬浦)**에 와서 정박하고 있을 때에 먼저 환호하며 소리 질렀고 그 이양선(異樣船)에 올라가서 오랑캐들의 모자를 쓰고 춤을 춘 사실에 대하여 자복하였습니다. 김양길(金良吉)은 적들이 육지에 내려 물 긷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때에 물그릇을 받아서 대신 길어주면서 흉악한 적들에게 아첨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두 응당 당율(當律)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염화신(廉和信)은 본래 농민으로서 김양길이 그들을 대신하여 물을 길어주고 돈 받는 것을 보자 몸을 날려 한바탕 때려주고 배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서양 오랑캐 놈들이 노해서 눈을 부릅뜨고 쇳덩이를 던졌으나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에서 발로된 의분에 대하여 마땅히 격려의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은 죄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조금이라도 흉악한 적과 연계되었거나 흉악한 적들에게 화응(和應)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용서 없이 죽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배에 올라가 춤을 추고 물을 길어주어 갈증을 면하게 해주었으니 그 심보나 행위는 모두 천지 간에 용납될 수 없으며 잠시라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죄인 손경로, 김양길을 공충 수영(公忠水營)에 압송해 많은 군민(軍民)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염화신이 발휘한 의분심에 대해서는 지기(志氣)가 가상하니 **수원** 유수영에서 되도록 후하게 시상(施賞)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붙잡지 못한 놈들은 기찰하여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九日. 議政府啓: "卽見水原留守李景夏所報, 則'邪徒輸款者, 今皆決處. 而所謂孫京老, 向日萬浦洋船來泊時, 先爲呼聲, 登彼異船, 著蠻帽蹈舞之狀, 渠旣自服. 金良吉, 賊醜下陸, 要尋汲水處而彷徨, 則請瓢代汲, 自媚凶賊. 竝宜有當律. 廉和信本以農民, 見良吉之代汲受錢, 飛身揪打一場, 亂攘船中. 諸醜怒目睢盱, 擲以塊鐵, 幸不見中. 其所忠憤, 合有示意'爲辭矣. 卽毋論罪犯之就淺·就深, 苟或綢繆於凶賊, 和應於凶賊, 此已是殺之無赦. 況登船跳舞, 汲水救渴, 其心·其跡, 均爲覆載之所不容, 晷刻之所難貸. 罪人孫京老·金良吉, 押送公忠水營, 大會軍民, 梟首警衆; 至於廉和信義憤所激, 志氣可尙, 令華營從厚施賞; 未捉諸漢, 跟捕之意, 分付何如?" 允之.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5월 29일(을사) 1번째기사>

문화/사상

이유원이 수원유수로 있을 때 만동묘의 현판이 올라왔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하교하기를, "만동묘의 현판 글씨는 과연 지나치게 크다. 일찍이 황단(皇壇)에 전배할 때 받들어 보았는데, 혹시 탑본(搨本)이 있는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현판이 올라올 때 신이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있으면서 거행하였는데, 제도가 대단히 컸습니다.**" 하였다. (…)

二十日. 次對. (…) 敎曰: "萬東廟額字, 果極絶大. 曾於皇壇展拜時奉玩矣. 或有搨本乎?"

裕元曰: "懸板上來時, 臣曾以水原留守擧行, 而制度甚大矣." (…)

<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3월 20일(임술) 1번째기사>

문화/사상

차대에서 수원 용주사의 설치에 대해 논의하다

차대를 행하였다. (…) 이최응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용주사(龍珠寺)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체(事體)가 다른 곳과는 달라서 지금 내수사(內需司)에서 보고하여 보수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미 시행해 온 규례대로 공명첩(空名帖)을 300장 정도만 만들어 주어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十五日. 次對. (…) 最應曰: "**水原**龍珠寺設置, 事體與他有異. 而今自內需司, 報請修補矣. 依已施之例, 空名帖限三百張成給, 以便始役何如?" 允之.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11월 15일(갑신) 1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의 제사를 복구하도록 김태식 등이 상소하다

경기(京畿) 유학(幼學) 김태식(金泰植) 등이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의 제사를 다시 복구할 것을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철거한 이상 다시 세우는 것은 사체(事體)로 볼 때 온당치 못하다." 하였다.

京畿幼學金泰植等疏, 請**水原**闕里祠復享. 批曰: "旣撤更建, 乃事體之不當然也."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2월 4일(경술) 2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의 제향을 복구하기를 정최수 등이 상소하다

경기(京畿) 유생 정최수(鄭最秀) 등이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의 제향(祭享)을 복구시키기를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날의 비답에서 말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아뢸 필요 없다." 하였다.

十三日. 京畿儒生鄭最秀等疏, 請**水原**闕里祠復享. 批曰: "已諭於前日之批, 不必更煩."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2월 13일(기미) 1번째기사>

문화/사상

노성과 수원의 궐리사에 제향하도록 김병숙 등이 상소하다

지방의 유생 김병숙(金炳肅) 등이 노성(魯城)과 **수원에 있는 궐리사(闕里祠)**에 제향할 것을 상소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이전에 내린 비답에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상소를 올리지 말고 물러가서 학업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方外儒生金炳肅等疏, 請魯城·**水原**闕里祠復享. 批曰: "已有前批, 更勿煩疏. 退修學業."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4월 7일(신해) 4번째기사>

문화/사상

노성과 수원의 궐리사에 치제하도록 강영전 등이 상소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강영전(姜永典) 등이 상소하여, '**노성(魯城)과 수원(水原)의 궐리사(闕里祠)에 다시 제향하도록 해 주소서**.' 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조정에서 성인을 흠모하고 어진 이를 높이는 것이 어찌 유림(儒林)에게 미치지 못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철거하였다가 다시 세우는 것은 한갓 경솔한 일일 뿐이니, 다시 번거롭게 상소하지 말라. 잘 알았으니 물러가라."

하였다.
館學儒生姜永典等疏, 請魯城·水原闕里祠復享. 批曰: "朝家之慕聖尊賢, 何嘗不及於儒林而然乎? 撤而復建, 徒涉屑越. 更勿煩疏, 知悉退去."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4월 12일(병진) 4번째기사>

문화/사상
수원과 노성 궐리사에 다시 치제하도록 박형동 등이 상소하다
전 장령(掌令) 박형동(朴衡東)과 방외 유생(方外儒生) 김기홍(金基洪) 등이 각각 상소하여, **'수원(水原)과 노성(魯城) 궐리사(闕里祠)에 다시 제사를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하니,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前掌令朴衡東, 及方外儒生金基洪等各陳疏, 請水原·魯城闕里祠復享. 竝賜批不許.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5월 2일(병자) 2번째기사>

문화/사상
노성과 수원의 궐리사에 복향할 것을 김순희 등이 상소하다
유학(幼學) 김순희(金舜熙) 등이 상소하여 **노성(魯城) 수원 궐리사(水原闕里祠)에 복향(復享)**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幼學金淳喜等疏, 請魯城·水原闕里祠復享. 賜批不許.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윤5월 1일(갑진) 5번째기사>

문화/사상
신기선이 수원 궐리사의 공자 영정을 수원 향교로 이안하였으니 제향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신기선(申箕善)을 소견(召見)하였다. (…) 신기선이 아뢰기를, "신이 본원(本院)의 일을 가지고 염치를 무릅쓰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원(水原)에 옛날에 궐리사(闕里祠)**가 있었는데, 정묘조(正廟祖)에 지은 것으로서 공자(孔子)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하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경오년(1870)에 서원(書院)을 철훼(撤毁)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현들과 선유(先儒)들의 사당이 지나치게 중첩되었기 때문에 재감(裁減)하려고 한 것이었고 애초에 선성(先聖)의 영당(影堂)까지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때의 수령(守令)이 그냥 모두 철훼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셨던 영정을 수원 향교(水原鄕校)에 이안(移安)한 것도 조령(朝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생(儒生)들과 선성의 후예들이 사당 자리에 두어 칸짜리 집을 중건(重建)하고 영정을 도로 모시자고 청하는 것은 사사로운 정성을 발휘한 데 지나지 않을 뿐이고 애초에 나라의 사전(祀典)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전전 장례원 경(前前掌禮院卿) 이승순(李承純)은 해당 관찰사(觀察使)의 보고에 대해 지령을 내려 허락하였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썽이 생겨서 지령을 환수(還收)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충주(忠州)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주자(朱子)의 영당이었는데 역시 경오년(1870)에 철훼하였다가 계사년(1893) 경에 이르러 유생들이 사당을 중건하고 공주 향교(公州鄕校)에 이안했던 영정을 도로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의 감사(監司)도 인정하여 허락하고 조가(朝家)에서도 애초에 금지한다는 영(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규례로 하여 다른 유생들도 성의를 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교가 침체하고 있는 이때에 선성(先聖)을 함께 제사 지내는 일을 혹시라도 막는다면 아마도 사체에 흠이 갈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운곡 서원의 이전 규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二十七日. 召見掌禮院卿申箕善. (…) 申箕善曰: "臣以本院事, 有冒昧伏達者矣. 水原舊有闕里祠, 乃正廟朝時, 創建者也, 奉安夫子影幀, 春秋享祀. 而庚午書院毁撤之命, 只爲本國先賢·先儒院祠之濫觴重疊者, 而欲裁減也. 初非竝及於先聖影堂, 而其時守土之臣, 仍爲竝撤, 所奉影幀, 移安於水原鄕校者, 亦非有朝令而然也. 今者儒生及先聖後裔, 重建數間屋於祠址, 而請還奉影幀者, 不過私伸其誠而已. 初非有關於國家祀典, 故前前掌禮卿臣李承純, 指許於該觀察使報告矣. 仄伏聞以此有雌黃之說, 將還收指令云. 臣意則恐不然. 忠州雲谷書院是朱子影堂, 而亦撤於庚午, 至癸巳年分, 儒生等重建祠宇, 而影幀之移奉公州鄕校者, 還奉妥享. 其時監司, 亦爲認許, 朝家初無禁止之令. 則似當以此爲例, 而任他儒生之自伸其誠也. 今當宗敎寢微之時, 妥享先聖之擧, 倘有沮礙, 則恐欠事體矣." 上曰: "詳探雲谷書院往例可也."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0월 27일(양력) 1번째기사>

⑵ 과학

문화/과학

수원부 남쪽 경내에서 죽주까지 우박이 내리다

수원부(水原府) 남쪽 경내에서 죽주(竹州)에 이르기까지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새알만 하였다.

○丙午/自水原府南境至竹州, 雨雹大如鳥卵.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27일(병오) 1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 임내의 용성 사람들이 벼락을 맞다

또 수원(水原) 임내(任內)의 용성(龍城)에 거주하는 재인(才人) 김두언(金豆彦)과 그의 처자(妻子) 네 명이 벼락을 맞고, 그 집에 화재가 났다.

○又震水原任內龍城住才人金豆彦及妻子四人, 其家災.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6월 28일(계사) 4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에서 남자 장정 한 사람이 벼락맞아 죽다

수원에서 남자 장정 한 사람이 벼락맞아 죽었다.

○水原男丁一人震死.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3일(무인) 3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부 평택현에 황충이 발생하다

수원부 평택현(平澤縣)에 황충(蝗蟲)이 발생하였다.

○水原府平澤縣蝗.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5일(무술) 2번째기사>

문화/과학

지부평현사 이사맹에게 수원 금음촌의 못이 온천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전지하다

지부평현사(知富平縣事) 이사맹(李師孟)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안산군(安山郡) 사람 견수(堅壽)가 아뢰기를, **'수원(水原) 임내(任內)인 금음촌(今音村)에 작은 못이 있는데, 그 물이 솟아나면서 거품을 이룹니다.' 고 하니, 아마도 온천(溫泉)인가 싶다.** 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찾아보라." 하였다.

○傳旨知富平縣事李師孟曰: 安山郡人堅壽啓: "水原任內今音村有小澤, 其水湧出成泡." 疑是溫水, 爾率此人尋訪.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15일(신미) 2번째기사>

문화/과학

통진과 수원에 물기가 솟아나니 초수인지 확인하러 사람을 보내다

판승문원사 이사맹이 아뢰기를, "신이 전자에 부평에 부임하여 온수(溫水)를 찾을 때에,

통진과 수원 같은 곳에서 물기가 솟아나는 데가 있었는데, 초수(椒水)가 아닌가 합니다." 하니, 즉시 사맹과 대호군 박강(朴薑)을 보내어 다시 찾게 하였다.
○判承文院事李師孟啓: "臣前者赴任富平, 尋覓溫水之時, 通津·水原等處, 有水湧出, 疑亦椒水." 卽遣師孟及大護軍朴薑, 更尋之.
<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 5월 13일(임술) 3번째기사>

문화/과학
가뭄으로 초수에 거둥하는 것을 정지하겠다고 말하다
전일에는 도성(都城) 안의 사람들은 쌀이 되[升]가 차지 않으면 매매(賣買)하지 않았는데, 3월로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볏곡이 마르고, 또 동풍(東風)이 달을 이어 불어서 비록 수원(水原)에서는 벼이삭이 나온 곳도 있으나, 거의 다 결실(結實)하지 않으며, 바다 연변의 각 고을에는 한재가 더욱 심하니, 도성 안의 사람들은 비록 쌀이 되에 차지 않더라도 다 서로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근심하여 승정원에 말하기를, "가뭄이 이와 같고 동풍이 또 부니, 만약 오늘 비가 오지 아니하면 나는 초수(椒水)에 가는 일을 정지하겠다. 거둥하는 일 때문에 민간을 동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거둥하실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어찌 동요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태안(泰安) 등지의 한재가 더욱 심하여 쌀 한 말[斗]로 소금 21두(斗)를 살 수 있고, 대맥(大麥) 한 말로는 소금 17두를 살 수 있는 형편이어서, 감사나 수령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 합니다."하였다.
○前此, 都人米不盈升, 則皆不得售. 自三月至此不雨, 禾穀枯槁, 又東風連月, 雖有水原, 發穗處, 率皆不實. 沿海各郡, 旱荒尤甚, 都人雖不盈升, 皆相換易. 上軫慮謂承政院曰: "旱暵若此, 而東風又吹, 若今日不雨, 則予停椒水之行. 無乃以行幸之故而民間搖動乎?" 承旨等啓: "行幸之日, 時當未定, 民豈有搖動者乎? 但有人來言: '泰安等處, 旱災爲甚, 米一斗得鹽二十一斗, 大麥一斗得鹽十七斗. 監司守令無可奈何, 而爲之垂泣而已.'"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8일(을해) 2번째기사>

문화/과학
중 설잠이 수원 북쪽에 온정이 있다 하여, 조득림에게 가서 보게 하다
중[僧] 설잠(雪岑)이 수원(水原)의 북쪽 벌판에 온정(溫井)이 있다고 하니, 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에게 명하여 설잠을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다.
○有僧雪岑, 告水原北平有溫井, 命巴山君趙得琳, 率雪岑往視之.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2월 15일(병오) 4번째기사>

문화/과학
서울과 충청도 및 경상도 고을에 지진이 일다
서울과 충청도 충주·제천·정산(定山)·진천(鎭川)·청안(淸安)·아산·괴산(槐山)·결성(結城)·태안(泰安)·이산(尼山)·회인(懷仁)·면천(沔川)·임천(林川)·직산(稷山)·보령(保寧)·보은·공주·연산·진잠(鎭岑)·회덕(懷德)·문의(文義)·천안·홍주(洪州)·예산·덕산(德山)·음성(陰城)·남포(藍浦)·신창(新昌)·청주·연기(燕岐)·평택·서산·청풍(淸風)·당진·옥천(沃川)·해미(海美)·전의·목천(木川)·청산(靑山), 경상도 금산(金

山)·개령·인동(仁同)·용궁(龍宮)·예천(醴泉), 경기의 광주·과천·양근(楊根)·지평(砥平)·여주·이천·양지(陽智)·용인·음죽(陰竹)·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수원·진위(振威)·양성(陽城)·안성·양천(陽川)·인천·부평·금포·통진(通津)·강화·파주·양주·포천·영평(永平), 전라도 익산(益山)·용안(龍安)·함열(咸悅)에 지진이 있었다.**

○丁巳/京師及忠淸道忠州·堤川·定山·鎭川·淸安·牙山·槐山·結城·泰安·尼山·懷仁·沔川·林川·稷山·保寧·報恩·公州·連山·鎭岑·懷德·文義·天安·洪州·禮山·德山·陰城·藍浦·新昌·淸州·燕岐·平澤·瑞山·淸風·唐津·沃川·海美·全義·木川·靑山, 慶尙道金山·開寧·仁同·龍宮·醴泉, 京畿廣州·果川·楊根·砥平·驪州·利川·陽智·龍仁·陰竹·衿川·安山·南陽·水原·振威·陽城·安城·陽川·仁川·富平·金浦·通津·江華·坡州·楊州·抱川·永平, 全羅道益山·龍安·咸悅地震.

<연산군일기 50권, 연산군 9년 8월 23일(정사)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인천·이천·용인·양성에 지진이 일다

경기의 수원(水原)·인천(仁川)·이천(利川)·용인(龍仁)·양성(陽城)에 지진이 있었다.

○京畿水原·仁川·利川·龍仁·陽城地震.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정축) 1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마전·적성·금천 등지에 큰 비가 내려 벼를 해치다

경기의 수원·마전(麻田)·적성(積城)·금천(衿川) 고을 등지에 큰 비가 내려 벼를 해쳤다.

○京畿水原·麻田·積城·衿川等邑, 大雨害稼.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19일(신사)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양주 등 여러 고을에 눈이 많이 내리다

경기의 수원·양주(楊州) 등 스물세 고을에 내린 눈이 두어 치 가량이나 쌓여 산과 들이 온통 흰 색이었다가 이튿날에야 녹았다.

○京畿水原·楊州等二十三邑下雪, 深可一二寸, 山野盡白, 至翌日乃消.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9월 18일(기유) 7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 등에 서리가 내리다

경기 수원(水原)에 서리가 내리고, 전라도 화순현(和順縣)에 우박이 내리고, 진원현(珍原縣)·임실현(任實縣)·장수현(長水縣)에 서리가 내렸다.

○京畿 水原隕霜; 全羅道 和順縣雨雹, 珍原·任實·長水縣下霜.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3일(경오) 4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의 민가에 닭이 세 발 달린 병아리를 깠는데 3일 만에 죽다

경기 수원(水原)의 민가에 닭이 세 발 달린 병아리를 깠는데 3일 만에 죽었다.

○京畿　水原民家, 有雞生雛三足, 三日而斃.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4일(신미)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도 일대에 황충이 생기다

경기(京畿)의 수원(水原)·양주(楊州)·과천(果川) 등의 고을에 황충이 생겼다.

○京畿水原·楊州·果川等邑, 蝗.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병자) 6번째기사>

문화/과학

전국 각지에 우박이 떨어지다

전라도의 남원(南原)·금산(錦山), 경상도의 고령(高靈)·비안(比安)·대구(大邱)·인동(仁同)·양산(梁山)·청하(淸河)·신녕(新寧)·청송(靑松)·풍기(豊基)·영천(榮川)·의성(義城), **경기도(京畿道)의 수원(水原)·죽산(竹山)·양성(陽城)·음죽(陰竹)·진위(振威)에 우박이 내렸다.** 풍기에 떨어진 우박은 혹 오리알이나 돌멩이만큼씩 했다. 잠시 후 그쳤지만, 채마(菜麻)와 서속(黍粟)이 모두 상했다. 다른 고을은 곡식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

○全羅道南原·錦山,　慶尙道高靈·比安·大丘·仁同·梁山·淸河·新寧·靑松·豐基·榮川·義城, 京畿水原·竹山·陽城·陰竹·振威雨雹, 豐基則或如鳧卵; 或如石塊, 移時而止, 菜麻黍粟, 皆損傷, 他邑則禾穀不甚損傷.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윤4월 4일(갑진) 3번째기사>

문화/과학

전국 각지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京畿)의 양주(楊州)·부평(富平)·이천(利川)·양지(陽智)·양천(陽川)·적성(積城)·포천(抱川)·가평(加平)·김포(金浦)·용인(龍仁)·안성(安城)·**수원(水原)·**풍덕(豊德)·장단(長湍)·양근(楊根)·여주(驪州)·고양(高陽)·교동(喬桐)·통진(通津)과 평안도의 영변(寧邊)·덕천(德川)·맹산(孟山)·운산(雲山)과 황해도의 연안(延安)·곡산(谷山)·배천(白川)·신계(新溪)와 강원도의 원주(原州)·금성(金城)에 우박이 내렸다.

○京畿楊州·富平·利川·陽智·陽川·積城·抱川·加平·金浦·龍仁·安城·水原·豐德·長湍·楊根·驪州·高陽·喬桐·通津, 平安道寧邊·德川·孟山·雲山, 黃海道延安·谷山·白川·新溪, 江原道原州·金城雨雹.”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윤4월 24일(갑자)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 양성(陽成)·수원(水原)·여주(驪州)에 우박이 내렸다.

○京畿陽城·水原·驪州雨雹.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4월 7일(신축)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 등지에 곡식 해치는 벌레가 있다

경기 수원(水原)에 화곡(禾穀)을 해치는 벌레가 있고, 장단(長湍)에 봄보리와 화곡을 해치는 작은 벌레가 있고, 강화(江華)에 검은 바탕에 붉은 주둥이를 한 삼잎과 밀보리를 먹는 벌레가 있는데 비가 내리면 없어지고, 부평(富平)에도 조잎을 먹는 벌레가 있었다.

○京畿水原有蟲害禾穀, 長湍有小蟲害春麰及禾穀, 江華有蟲黑質赤觜, 食麻葉及麰麥, 下雨則息. 富平亦有蟲食粟葉.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5월 22일(병술)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에 천둥하며 우박이 내리고 양성에서 천둥하다

경기 수원(水原)에 천둥하며 우박이 내리고, 양성(陽城)에서 천둥하였다.

○京畿水原雷雨雹, 陽城雷.

<중종실록 51권, 중종 19년 9월 13일(갑술)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진위 등지에 폭풍우로 인한 곡식 피해가 발생하다

경기 수원(水原)·진위(振威)·양성(陽城)에 폭풍우가 몰아쳐 곡식의 피해가 있었다. 고양(高陽) 등 7고을에는 황충이 발생하였다.

○京畿水原·振威·陽城暴風雨, 害禾穀, 高陽等七邑蝗.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1일(임신) 4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군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도 수원군(水原郡)에 우박이 내렸다.

○京畿水原郡雨雹.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3일(기묘)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고양 등에 벌레가 발생하여 곡식에 해를 주다

경기 수원(水原)·고양(高陽) 등 고을과 강원도의 간성(杆城)·양양(襄陽)·통천(通川)·흡곡(歙谷) 등처에 두 잠 잔 누에만한 벌레가 발생하여 곡식에 해를 입혔다.

○京畿水原·高陽等郡, 江原道杆城·襄陽·通川·歙谷等處蟲. 大如二眠蠶, 損食禾穀.

<중종실록 70권, 중종 26년 5월 30일(계축)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 양주(楊州)·지평(砥平)·적성(積城)·풍덕(豊德)·**수원(水原)**·진위(振威)·양지(陽智)·음죽(陰竹), 충청도보령(保寧)·당진(唐津)·면천(沔川)·태안(泰安), 강원도정선(旌善)·금성(金城)·금화(金化)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京畿楊州·砥平·積城·豐德·水原·振威·陽智·陰竹·忠淸道保寧·康津·沔川·奉安·江原道旌善·金城·金化等官, 雨雹.(…)

<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3월 12일(을묘)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 등 세 고을에 충해가 일어 곡식이 간혹 손상되다

경기의 수원(水原) 등 세 고을에 충해(蟲害)가 일어 곡식이 간혹 손상되었다.

○京畿水原等三邑蟲, 禾穀或有損傷.

<중종실록 88권, 중종 33년 9월 11일(신사) 2번째기사>

문화/과학

황해도·평안도·함경도·강원도·경상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비가 오다

황해도 우봉(牛峯)·토산(兎山)과 경기 파주(坡州)·광주(廣州)·양주(楊州)·연천(漣川)·가평(加平)·삭녕(朔寧)·장단(長湍)·마전(麻田)·인천(仁川)·고양(高陽)·강화(江華)·통진(通津)·양천(陽川)·죽산(竹山)·진위(振威)·금천(衿川)·적성(積城)·부평(富平)·이천(利川)·수원(水原)·안성(安城)·영평(永平)·포천(抱川)·음죽(陰竹)·김포(金浦)·교하(交河)와 충청도 직산(稷山)·홍주(洪州)·진천(鎭川)·면천(沔川)·평택(平澤)·충주(忠州)에 지진이 일어났다.(…)

○黃海道牛峯·兎山·京畿坡州·廣州·楊州·漣川·加平·朔寧·長湍·麻田·仁川·高陽·江華·通津·陽川·竹山·振威·衿川·積城·富平·利川·水原·安城·永平·抱川·陰竹·金浦·交河·忠淸道稷山·洪州·鎭川·沔川·平澤·忠州地震.(…)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5월 23일(무인)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 등지에 천둥이 치다

청홍도 공주(公州) 등 세 고을에 천둥이 쳤고, 전라도 익산(益山) 등 세 고을에도 천둥이 쳤으며, 경기의 파주(坡州)·남양(南陽)·수원(水原)·교하(交河)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고 천둥이 쳤다.

○淸洪道公州等三官, 雷動, 全羅道益山等三官, 雷動, 京畿坡州·南陽·水原·交河, 雨雹交下, 雷動.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11월 10일(신축) 3번째기사>

문화/과학

서울에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다

서울에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경기 파주(坡州)·수원(水原)·양천(陽川)·통진(通津)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황해도 곡산(谷山)에 눈이 3촌(寸)이 내렸다. 해주(海州)에는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렸고, 은율(殷栗)·신천(信川)·평산(平山)·문화(文化)에는 천둥이 쳤고, 옹진(甕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고, 배천(白川)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고, 강음(江陰)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고, 연안(延安)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새알만하였다. 안악(安岳)에는 눈이 내렸고, 봉산(鳳山)·토산(兎山)에는 눈이 내리고 천둥이 쳤고, 우봉(牛峯)에는 천둥이 치고 눈이 내리고 큰 비가 와서 내와 도랑의 물이 불어 넘쳤다. 전라도 남원(南原)의 봉수군(烽燧軍)인 김세견(金世堅)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담양(潭陽)에는 크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쳤다.

○京城, 大雨電動. 京畿坡州·水原·陽川·通津, 雷動雨雹. 黃海道谷山, 下雪深三寸. 海州, 雨雹下雪, 殷栗·信川·平山·文化·雷動, 瓮津, 風雨電雹, 白川, 雷動雨雹, 江陰, 雷雹, 延安, 雷動雨雹, 大如鳥卵. 安岳, 雨雪, 鳳山·兎山, 雨雪雷動, 牛峯, 雷動下雪大雨, 川渠漲溢. 全羅道南原, 烽燧軍金世堅雷震死. 潭陽, 大風雨雷動.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9월 13일(무진)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에 비바람이 치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

경기 수원(水原)에 비바람이 크게 치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 만하고 작은 것은 개암만하였다. 화곡·콩·메밀 등이 손상되었다.
○京畿水原, 風雨大作, 雨雹交下, 大如鳥卵, 小如榛子, 禾穀·太豆·蕎麥, 損傷.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9월 19일(기사)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

경기 수원(水原)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하였다.
○京畿水原, 雨雹交下, 大如鳥卵, 小如太豆.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3월 28일(경자)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평안도 성천에 눈이 내리다

경기의 **수원(水原)**·이천(利川)·안산(安山)·양근(楊根)·안성(安城)·연천(漣川)·지평(砥平)·죽산(竹山)·양지(陽智)·양성(陽城)·적성(積城)에 **우박이 내렸고**, 충청도의 청주(淸州)·회덕(懷德)과 황해도의 해주(海州)에 우박이 내렸다. 평안도의 성천(成川)에 눈이 내렸는데 4~5촌(寸)이나 쌓여 하루를 지나도 녹지 않았다. 전라도의 창평(昌平)에 우박이 내렸고, 평안도의 정주(定州)에 서리가 내렸다.
○京畿水原·利川·安山·楊根·安城·漣川·砥平·竹山·陽智·陽城·積城, 雨雹. 忠淸道淸州·懷德·黃海道海州, 雨雹. 平安道成川, 下雪, 雪深四五寸, 經日不消. 全羅道昌平, 雨雹. 平安道定州, 下霜.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4월 5일(병인)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감사가 진위·수원 등지에 우박이 내려 보리와 밀에 손상을 입혔다고 보고하다

경기 감사의 서장에,
"진위(振威)·**수원(水原) 등지에 지난 윤 3월 16일 밤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작은 것은 밤알만하고 큰 것은 계란만하였으므로 보리와 밀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에 내렸다.
○京畿監司書狀: "振威·水原等官, 閏三月十六日夜, 雨雹交下, 小如黃栗, 大如雞卵, 兩麥損傷事." 下禮曹.
<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4월 4일(기해) 4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부사 박이장이 수원에 유성이 떨어졌다고 보고하다

경기 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치계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박이장(朴而章)의【영남 사람으로 몸가짐이 바르고 재주와 학문이 있어 당시 사류에게 촉망을 받았다】 첩정에 '이번 2월 24일 술시(戌時)에 크기가 횃불만한 유성(流星)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을 향하여 땅에 떨어졌는데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나다가 한참 후에 그쳤다.' 하였습니다. 비상한 변입니다."

하였는데, 예조에 계하하였다.

○京畿觀察使南以信馳啓曰: "水原府使朴而章【嶺南人也. 所守頗正, 有才有學, 取重於一時士類】牒呈, 今二月二十四日戌時, 有流星大如炬火, 自東方指西方落地, 時有聲如雷震, 良久而止.' 變異非常事." 啓下禮曹.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27일(병신) 8번째기사>

문화/과학

충청 감사 유근이 수원의 사노가 키우던 강아지가 기형 강아지를 낳았다고 보고하다

충청 감사 유근(柳根)이 장계하기를, "아산 현감(牙山縣監) 정묵(鄭默)의 첩정(牒呈)에 '수원(水原)에 사는 사노(私奴) 세복(世福)이 본현(本縣)을 지날 즈음에 데리고 다니던 암캐가 새끼 두 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앞다리가 둘이고 뒷다리가 넷이며 뒷구멍이 둘이었다.'라고 하기에 가져와서 살펴보았더니, 앞다리가 둘이고 뒷다리가 넷인데 다리 하나는 허리 위에 붙었고 뒷구멍도 둘이니 변괴가 비상하다 하겠습니다."하였는데, 예조에 계하하였다.

○忠淸監司柳根狀啓, "牙山縣監鄭默牒呈內, 水原居私奴世福, 經過本縣之際, 所率雌狗, 産子二口, 一口, 前足二, 後足四, 後穴二云, 取來看審, 則前足二, 後足四, 而一足付於腰上, 後穴二. 變怪非常事." 啓下禮曹.

<선조실록 170권, 건조 37년 1월 24일(을해) 3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 부사 이경준이 남쪽 하늘 끝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는 이변을 보고하다

경기 감사 이정귀(李廷龜)가 치계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경준(李慶濬)의 첩정(牒呈)에 '이달 22일 초경(初更) 때 남쪽 하늘끝에 적기(赤氣) 한 줄기가 있었는데 그 광채가 불길 같고 모양은 필단(疋緞)같았다. 하늘을 건너지르기도 하고 반쯤에 걸쳐 있기도 하였다. 조금 후에 또 하나의 줄기가 일어났는데 그 모양은 처음 것과 같았고, 3경에 사라졌다. 그 광채가 비치는 곳은 밝기가 희미한 달빛과 같았다.' 하였는데, 비상한 이변입니다."

○京畿監司李廷龜馳啓: "水原府使李慶濬牒呈內: '今月二十二日初更時, 天上南末, 有赤氣一道, 光如火焰; 狀如匹練, 或經天·或半天. 俄而又有一道繼起, 其狀如初, 三更乃滅, 而焰光所燭之處, 明若微月之色, 變異非常事."

<선조실록 194권, 선조 38년 12월 29일(기사) 4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수원에 지진이 있었다.
○辛亥正月二十日辛酉**水原**地震.
<광해군일기 37권, 광해군 3년 1월 20일(신유) 1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수원에 지진이 있었다.
○丁卯**水原**地震.
<광해군일기 37권, 광해군 3년 1월 26일(정묘) 1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수원에 지진이 있었다.
○辛酉/**水原**地震.
<광해군일기 37권, 광해군 3년 1월 20일(신유) 1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에 지진이 일어나다
수원에 지진이 있었다.
○丁卯/**水原**地震.
<광해군일기 37권, 광해군 3년 1월 26일(정묘)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지역의 수원 등지에 해일이 일어났다
경기 지역의 수원(水原)·남양(南陽)·교동(喬桐) 등지에 해일(海溢)이 일어나고, 인천(仁川)·진위(振威)·이천(利川) 등지에는 풍재(風災)가 발생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으며, 광주(廣州)에는 황충(蝗虫)이 온 들판을 덮었다.
○辛丑/京畿**水原**·南陽·喬桐等地海溢. 仁川·振威·利川等地有風災害穀. 廣州蝗蟲遍野.
<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7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 지역에서 기형의 송아지가 태어나다
수원 지역에서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하나의 몸통에 머리·입·귀·눈이 둘이었다.
○庚戌/**水原**地雌牛生子, 一身兩頭·兩口·兩耳·兩目.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2월 29일(경술)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도 여러 고을이 장마 피해를 입다
경기의 광주(廣州)·**수원(水原)**·부평(富平)·안성(安城)·양천(陽川)·양성(陽城)·금천(衿川)·과천(果川) 등의 고을에 **장마**가 개지 않아 벼가 손상되었다.
○戊寅/京畿廣州·**水原**·富平·安城·陽川·陽城·衿川·果川等邑, 霖雨不霽, 禾穀枯損.

<인조실록 39권, 인조 17년 7월 23일(무인) 1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인천·남양·안산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다

수원(水原)·인천(仁川)·남양(南陽)·안산(安山) 등지에 해일이 있었다.

○**水原**·仁川·南陽·安山等地, 海溢.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7월 21일(을사)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다

경기 수원(水原) 등지의 일곱 고을에 7월 17일 해일이 있었다.

○京圻**水原**等七邑, 七月十七日海溢.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8월 1일(신유) 6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양주와 수원에 비와 된서리가 내리다

경기 양주(楊州) 등 네 고을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산꼭대기에는 눈이 내려 눈 깊이가 두세 치였다. **수원(水原) 등 스무 고을**에 된서리가 잇따라 내리고 찬 바람이 날마다 불어서 우거져 가는 밀보리가 다 상하였다.

○京畿楊州等四邑小雨, 山頂下雪, 雪深二三寸. **水原**等二十邑, 嚴霜連降, 淒風日吹, 向茂牟麥皆損.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3월 11일(임술)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에 지진이 나다

경기의 수원 등 고을에서 지진이 있었다.

○乙亥/京畿**水原**等邑地震.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5월 25일(을해)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의 수원 등 열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戊申/京畿**水原**等十邑雨雹.

<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5월 3일(무신)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지방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경기 여주(驪州) 등의 고을에 천둥과 번개가 쳤고, **수원부(水原府)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京畿驪州等邑, 雷電, **水原**府, 雷動雨雹.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11월 20일(을유) 2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인천·남양·안산 등지에 해일이 일다

수원(水原)·인천(仁川)·남양(南陽)·안산(安山) 등지에 해일이 있었다.

○水原·仁川·南陽·安山等地海溢.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7월 21일(을사)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 일대에 해일이 일다

경기의 수원 등 7읍에 7월 17일 해일이 있었다.

○京畿水原等七邑, 七月十七日海溢.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8월 1일(신유) 7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 등에 된서리의 피해가 발생하다

경기 양주(楊州) 등 네 고을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산꼭대기에는 눈이 내려 눈 깊이가 두세 치였다. **수원(水原) 등 스무 고을에 된서리가 잇따라 내리고 서풍이 날마다 불어서 밀보리가 모두 손상되었다.**

○京畿楊州等四邑小雨, 山頂下雪, 雪深二三寸. 水原等二十邑嚴霜連降, 西風日吹, 牟麥皆損.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2년 3월 11일(임술)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 등에 지진이 발생하다

경기도 수원(水原) 등 고을에서 지진이 있었다.

○乙亥/京畿水原等邑地震.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5월 25일(을해)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의 수원 등 열 고을에 우박이 쏟아지다

경기의 수원 등 열 고을에 우박이 쏟아졌다.

○戊申/京畿水原等十邑雨雹.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5월 3일(무신)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여주 등 고을에 천둥 번개가 치다

경기 여주(驪州) 등 고을에 천둥 번개가 쳤다. **수원부(水原府)**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졌다.

○京畿驪州等邑雷電. 水原府雷動, 雨雹.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11월 20일(을유) 2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과 음죽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수원(水原)**·음죽(陰竹)에서 이달 17일과 18일에 지진(地震)이 일어났었다고 계문(啓聞)하였다.

○癸卯/京畿觀察使以水原·陰竹, 本月十七八日地震, 啓聞.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6월 22일(계묘) 1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 등 고을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와 우박이 쏟아져 곡식이 피해 입다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장계(狀啓)하기를, "**수원(水原) 등 아홉 고을에 천둥과 번개가 크게 일어나고 비와 우박이 번갈아 쏟아져서 큰 것은 밤톨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여 곡식들이 가장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였다.

○京畿監司狀啓, 水原等九邑, 雷電大作, 雨雹交下, 大者如栗, 小如鳥卯, 各穀最被傷損.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9월 13일(갑오)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부의 촌가에서 암퇘지가 기형 새끼를 낳다

경기 수원부(水原府)의 촌가에서 암퇘지가 머리 하나에 입이 셋이고 이마 위에 부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이 뒤에 수원에 또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고 발이 여섯이고 꼬리가 둘인 괴이한 돼지가 있었다.

○京畿水原府村家, 牝猪産雛, 一頭三口, 額上有觜. 是後水原又有猪異, 一頭二身, 八足兩尾.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4월 19일(경진)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부에서 몸뚱이 하나에 다리가 셋인 병아리를 낳다

경기(京畿) 수원부(水原府)에서 닭이 병아리를 낳았는데, 몸뚱이 하나에 다리가 셋이었다.

○京圻水原府鷄産雛, 一身三足.

<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7월 19일(무진)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부에서 지진이 있었다

경기(京畿) 수원부(水原府)에서 지진(地震)이 있었다.

○京畿水原府地震.

<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8월 18일(정유)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 등의 고을에 천둥이 치다

경기 수원 등 고을에 천둥하였다.

○京畿水原等邑雷.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11월 1일(을사) 3번째기사>

문화/과학

강화·개성 및 평안도 일대에 지진이 일어나다

강화(江華)·개성(開城)과 평안도(平安道)의 평양(平壤) 등 20고을 및 경기의 수원·안성과 황해도의 해주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 뒤에 팔도에서 모두 장문(狀聞)하였다.

○壬申/江華·開城·平安道平壤等二十邑, 京畿**水原**·安城, 黃海道海州等地, 地震. 此後八道, 竝狀聞.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1월 30일(임신)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도 수원에 조수가 넘치다

경기의 수원(水原)에는 조수(潮水)가 넘치고, 연천(漣川) 징파도(澄波渡)에는 밤중에 물이 닥쳐 10여 집이 침수(浸水)되었으며, 부평(富平) 등 고을에는 충재(蟲災)가 번졌다. 안성(安城) 땅에는 운석이 떨어져 돌로 변했는데, 북을 치고 쇠방울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북쪽 하늘이 울리더니, 한 밭 가운데 갑자기 검은 돌이 떨어져 세 조각으로 깨어졌다.

○甲辰/京畿**水原**, 潮水泛溢, 漣川澄波渡, 夜半水至, 滀十餘家, 富平等邑蟲災, 安城地星隕化石. 自北方天動, 有擊鼓鳴鑼之聲, 一田中忽墜黑石, 碎分三片.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7월 5일(갑진)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수원에서 해일이 일어나다

경기(京畿) 수원(水原) 땅에 해일(海溢)이 일어났고 교동(喬桐)에는 이충(泥蟲)이 크게 발생하였다.

○京畿**水原**地海溢, 喬桐泥蟲熾發.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7월 23일(임술) 2번째기사>

문화/과학

원주와 수원 등에서 천둥하다

충청도 공주(公州) 등 여섯 고을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일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으며, **강원도 원주(原州)와 경기 수원(水原) 등 열 고을에서 천둥하였다.**

○忠淸道公州等六邑, 雷聲大作, 雨雹交下. 江原道原州·京畿**水原**等十邑, 雷動.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1월 2일(무오) 2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에 해일이 일다

경기(京畿) **수원**(**水原**)에 해일(海溢)이 있었다.

○丁巳/京畿**水原**, 海溢.

<영조실록 7권, 영조 1년 7월 22일(정사) 1번째기사>

문화/과학

여기가 치성하여 진주·흥양·수원 등에서 사람이 많이 죽다

이때 여기(癘氣)가 점점 치성하여 진주(晉州) 등 31읍은 사망이 2천 9백 20명이요, 흥양(興陽) 등 13읍은 사망이 4백 13명이며, **수원(水原)·남양(南陽) 등 읍은 지난 겨울 이후 사망**

이 5백 80명이었다.
○時, 癘氣漸熾, 晋州等三十一邑, 死亡二千九百二十名·興陽等十三邑, 死亡四百十三名, 水原南陽等邑, 昨冬以後死亡, 五百八十名.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 2월 3일(경술) 2번째기사>

문화/과학
측우기와 주척을 수원부에 하사하다
측우기(測雨器)와 주척(周尺)을 수원부에 하사하였다.
○戊申/賜測雨器及周尺于水原府.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7월 17일(무신) 1번째기사>

문화/과학
불볕더위로 화성 쌓기를 정지하라 전교하다
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기우제를 지내는 일로 급히 아뢰니, 전교하기를, "성을 쌓는 일도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많은 사람을 부려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근일의 불볕더위는 감히 여기에 부연시킬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옛사람들의 오행(五行)에 부연시키는 말을 보건대 '많은 사람을 부려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성읍(城邑)을 일으키면 양기(陽氣)가 성하기 때문에 가물이 든다.' 고 하니, 또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괴롭히는 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이런 가물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비록 볕을 가린 곳이거나 탁 트인 곳에서 일을 하는 인부일지라도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부역을 정지시켜 비가 오거나 서늘한 기운이 생기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水原府留守趙心泰, 以祈雨祭設行, 馳啓, 敎曰: "城役固非不急之務, 其爲勤衆勞民則一也. 近日之恒暘, 非敢傅會於是, 而嘗見古人傅會五行之說, 勤衆勞民以起城邑, 陽氣盛故旱爲應. 亦安知不由於不能節勞佚, 致此旱耶? 雖匹夫之入處庇蔽軒敞之所者, 從願姑停, 以待得雨或生涼."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 7월 11일(병신) 3번째기사>

문화/과학
벼와 묘목을 손상시키는 벌레를 제거하기를 당부하다
전교하였다. "벌레가 벼와 묘목(墓木)을 손상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잡아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사(經史)에서 상고해보면 옛부터 그러하였으니, 『주관(周官)』의 서씨(庶氏)·전씨(翦氏)의 직(職)이 모두 이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벼줄기를 갉아먹는 것은 명(螟)이고 잎을 갉아먹는 것은 등(螣)이며, 뿌리를 갉아먹는 것은 모(蟊)이고, 마디를 갉아먹는 것은 적(賊)이다. 그리하여 못된 벌레를 불태워달라.[秉畀炎火]는 것은 전조(田祖)의 신령께 비는 말이고, 구덩이를 파고 태워서 묻는 것은 당(唐)나라 때 요숭(姚崇)에게서 비롯되었는데, 역대에 이를 인습하여 마침내 성헌(成憲)으로 만들고 모두 민력(民力)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자양(紫陽)의 훈계에도 이르기를 '어찌 사람들을 부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다만 견식이 있는 사람은 이해(利害)의 실상을 잘 파악하여 자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안일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서 스스로 원망하지 않을 뿐이다.
근자에 원침(園寢)의 뽕나무·가래나무에도 충해(蟲害)가 있어, 나무를 심은 10읍의 수령들

로 하여금 관속들을 거느리고 벌레를 제거하게 해서 잠시 수고로움이 길이 안일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을 부쳤다. 그러나 관속들도 백성인지라 그들이 뜨거운 볕에서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니, 자못 침식할 마음도 잊게 된다. 이에 구양수(歐陽脩)의 시에 '관전 스무 냥으로 한 말씩을 사들이니, 잠시 동안에 산더미같이 쌓이누나.[官錢二十買一斗頃刻露積如京坻]'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특별히 벌레를 사들이는 방식을 창안하고 나니, 어쩌면 일은 절반만 하고도 공은 갑절이나 얻을 수가 있을 듯하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도 스스로 편치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벌레는 이미 벌이나 누에와 같은 공이 없는데다 해독은 모기나 등에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꿈틀거리는 생물이니, 성인이 벌레에 대해서 그의 공도 기록하고 그의 해독도 명시한 뜻을 준수하여 의당 잡아 제거해야 할 것이나, 그 제거하는 즈음에도 방편적인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의당 생물 살리는 덕을 그 사이에 병행하도록 해야 하니 해독이 되는 것도 그 종류에 따라 각각 크고 작은 다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몰아서 늪으로 내친 것은 또한 불질러 태워버린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더구나 '잡아서 불태워달라.[秉畀炎火]'는 싯귀는 그냥 의탁하는 말일 뿐이고, 불태워 묻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 상고와 후세의 구별을 또한 족히 볼 수가 있다.

일찍이 듣건대, 벌레가 날아서 바다에 들어가면 어하(魚蝦)로 변화한다고 하였고, 복파(伏波)가 무릉(武陵)을 다스릴 때의 밝은 징험도 아직까지 전하고 있으므로, 여러날을 조용히 연구한 끝에 법령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다. 앞으로는 벌레를 주워서 **구포(鷗浦)와 해구포(海口浦)**에 던져버리도록 하라. 그곳은 나무 심은 곳과 멀지 않아서 20리 거리밖에 되지 않으므로, 벌레를 사는 데 있어서는 인력(人力)을 줄일 수 있고, 벌레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고사를 본받는 일이니, 의리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수신(守臣)을 소견하고 이 뜻을 하유하라. **그리고 또 여강(驪江)의 능수(陵樹)에도 충해가 있다고 하니, 벌레를 사는 일과 바다에 던지는 일을 각각 일체 화성(華城)에 새로 반포한 식령(式令)에 의거해서 하면 결코 추호도 안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어서 도백의 장계를 보니, 벌레를 다 주워내기는 아직 묘연한 실정인데, 이때에 백성을 부리는 것은 농정(農政)에 방해가 될 것이라, 걱정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에 당장 촛불을 밝히도록 하여 이 내용을 써서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해도(該道)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디든지 모두 이것을 예로 삼을 일로 예조와 한성부에 분부하라.

○敎曰: "蟲損嘉禾宰樹, 安得不捕, 而除之攸之? 經史自昔伊然, 『周官』庶(民)〔氏〕, 剪氏之職, 皆爲是而設耳. 食苗者螟, 食葉者螣, 食根者蟊, 食節者賊. 秉畀炎火, 祝于田祖之神, 掘坑焚瘞, 始於唐時姚崇, 歷代因之, 遂爲成憲, 皆用民力. 紫陽之訓有云, '豈能不役人, 徒而坐致成功?' 但有見識人, 見得利害之實, 知其勞我者, 乃所以逸我, 自不怨耳. 近者園寢桑梓, 有蟲損之害, 使植木十邑守宰, 率官隷捕除之, 以寓暫勞永逸之意. 而官隷亦民也, 念其烈陽使役, 殆忘寢食. 乃引(歐陽脩)〔歐陽修〕詩: '官錢二十買一斗, 頃刻露積如京坻.' 之句, 特創買蟲之式, 幸得事半而功倍. 於予心猶有不自安者, 是蟲也, 旣蔑蜂蠆之功, 較甚蚊蝱之毒. 然且卽蠢動之生物也, 遵聖人錄其功明其毒之義, 固可捕而除之, 除之之際, 亦應有方便之方. 宜令曰生之德, 竝行於其間, 莫曰爲害隨其爲物, 而有巨細之各異. 驅而放菹, 勝於烈而焚之. 況秉畀之詠, 託辭也, 焚瘞之擧, 實事也, 邃古後世之別, 亦足可觀. 嘗聞蟲飛入海, 化爲魚蝦, (化)〔伏〕波之治武陵, 明驗尙傳, 多日潛究, 決意著令. 此後拾投鷗淵海口浦之, 距植木所不遠, 而近爲二十里, 買蟲省人力, 投海述古事, 於義有何害乎? 召見守臣, 面諭此意. 而又於驪江陵樹, 亦云蟲損, 買蟲與投水, 各一依**華城**新頒式令用之, 而決知其毫無不可. 續見道伯之狀, 畢拾姑杳然, 比時役民, 有妨農政, 不勝耿耿. 呼燭書下, 卽令廟堂, 知委該道. 而今後餘皆以

爲例事, 分付禮曹·漢城府."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4월 25일(기미) 2번째기사>

문화/과학

화성부에 미곡대신 메밀을 심도록 하다

비가 내리자 특별히 화성부(華城府)에 하유하기를, "농사란 천시(天時)를 준수하고 토의(土宜)를 관찰하고 인력(人力)을 다해야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어야만 풍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곡식 중에는 네 철[四節]을 지나서 먹는 것이 있고, 세 철을 지나서 먹는 것도 있고, 두 철을 지나서 먹는 것도 있으며, 또는 평야 지대에 알맞고 산간 지대에는 알맞지 않은 것이 있고, 산간 지대에 알맞고 비습한 지대에는 알맞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시기의 조만과 토질의 건조하고 비습함에 따라 서로 알맞은 곡식이 한두 종자가 아니니, 종자를 잘 불리어 싹틔우고 잘 가꾸어 여물게 하는 것이나 땅을 묵히어 잡초만 무성하게 하는 것이 모두 사람이 힘을 다하고 안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비록 『농정전서(農政全書)』를 읽지 않았으나, 모든 일은 분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메밀[木麥]이 대신 파종하기에 가장 알맞으니, 그것은 맨 나중에 심고 맨 먼저 익기 때문이다. 또 맨 뒤에 심고 맨 먼저 익는 것을 올벼라 하는데, 이것은 빈풍(豳風)의 시(詩)에서 읊었으니, 주공(周公)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대체로 이른바 대신 파종한다는 것은 곧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로 인하여 절서가 이미 지났는데 들에는 심지 못한 모가 많으나 밭에는 뿌릴 만한 종자가 없을 경우에 오만 곡식 중에서 반드시 뒤에 심고 먼저 익는 것을 가져다가 대신 파종하여 백성들의 식량을 유족하게 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 그런데 결실 때까지의 전후 기간이 충분히 서리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수[不托]도 만들 수 있고 조호(雕胡)의 맛과 영양을 당할 만도 하여, 흉년의 기근을 구제하는 공이 서쪽 지방의 토란이나 남쪽 지방의 고구마보다 월등히 나은 것은 오직 메밀이므로, 내가 이 때문에 혹 모를 심지 못하고 철을 넘긴 때를 만나면 반드시 이 메밀을 대신 파종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어제 묘당의 초기(草記)를 보니, 메밀 외에도 파종하기에 알맞은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콩을 심으면 가꾸기 쉬운 것이 메밀에 다음 가기는 하나, 토질(土質)과 농삿일이 삼남(三南)·경기(京畿)·호서(湖西) 지역이 서로 같지 않고, 절후(節候) 또한 비슷하면서도 각기 달라서 이모작(二毛作)의 시기를 놓치면 모내기를 제때에 못하는 것과 일반이다. 그러니 그루갈이에 쓰이는 곡종을 대용갈이에 사용해서 제도(諸道)가 모두 그 곡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진실로 기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기장은 비록 비습한 땅에서 잘되기는 하나, 파종에서 수확 때까지가 1백일 안팎이 드는데 한로절(寒露節)이 8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고 보면, 미처 익지 못하여 마치 채권(債券)만 보류하고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늦기장 종자의 경우는 귀하기가 마치 황금 같아서 창고에도 매매되는 것이 없고 민간에도 간수해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서 이를 구해다가 전국에 보급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메밀을 대신 파종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경기 지방의 수령과 백성들로서 불편함을 말하는 자들은 매양 '수전(水田)은 비습하여 비가 많이 오면 종자가 녹아버릴 것이다.' 고 한다. 그러나 조정에서 파종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이런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높고 건조하여 모내기를 못한 곳을 말하였고, 또는 구롱(邱隴)·천맥(阡陌) 등 세금도 안 내는 불모지에다 호미와 쟁기로 갈아 일구는 법을 쓰도록 하였던 것이니, 땅이 비습하여 종자가 녹아버리는 걱정은 애당초 논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메밀 종자를 산간 고을로부터 연안의 군읍으

로 이송하는데 있어서는, 동풍만 순조로이 불어주면 다리가 없이도 절로 이송될 것이니, 참으로 하늘만이 아는 일이 발설되었다고 이를 만하다. 더구나 또 고을에서 종자를 지급하고 세금을 견면해주며 모든 간편하고 편의한 계책을 힘이 닿는데까지 다 베풀어주고도, 수확의 많고 적고 남고 부족함을 막론하고 일체 백성들에게 맡겨서 한알한알을 모두 백성들이 자신의 배채우는 데에만 마음을 쓰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울음을 웃음으로 돌리고 흉년을 풍년으로 돌리어 인공(人功)으로 천지조화를 빼앗는 일대 관건이 되고, 또한 백성이 부유해지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가난하겠느냐고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밖에도 미처 말로 열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로움이 이루 다 꼽을 수도 없건만, 백성들은 워낙 어리석어서 함께 일의 시작을 꾀할 수가 없다. 경기 지방의 풍속은 또 농삿일에 게을러서, 한때의 논을 깊이 가는 일을 기피하여 장래에 반드시 거두게 될 그만한 수확을 내버리곤 한다. 그리하여 해마다 당연히 해야 할 농공업(農工業)도 오히려 부지런히 할 뜻이 없는 실정이니, 지금 대신 파종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며 눈을 흘기고 앞으로 나가려다가도 머뭇거리곤 하는 것은 다만 그 형세가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러나 농관(農官)이 된 자로서는 계책을 내서 그들의 게으름을 채찍질하여 일깨우는 것이 바로 그 직무인데, 도리어 백성들에게 부화 뇌동하여 시끄러이 떠들어대면서, 백성들을 농사에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는 방도에 전혀 어두워 이를 따르기 어려운 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명령이 나갔으면 그대로 행할 뿐이요 도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인데, 조정의 명령이 반하된 지 이미 오래이니, 묘당에서는 의당 동책(董責)하는 일을 굳게 지켜 수시로 고찰을 가해서, 만일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먼저 방백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령과 백성들이 절로 의당 분주히 농사에 임하여, 들에는 개간 안된 땅이 없고 땅에는 노는 밭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경』 대고(大誥)에 이르기를 '내 어찌 나의 밭일을 끝맺지 않으리오.' 하였으니, 이미 시작만 해놓고 끝맺기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농부가 밭을 갈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거나 씨를 뿌리기만 하고 김매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시기로 보아도 적절하고 곡식으로 보아도 알맞은데, 무엇이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고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왕기(王畿) 지역은 전국의 표준이니, 먼저 기읍(畿邑) 중에서 의논이 엇갈린 곳에서부터 정력을 오로지 들여 명령을 독실히 믿고 받들어 준행하여야만 호남·영남 지방까지도 보고 느끼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내기를 하지 않고도 곡식이 있게 되고, 가을에는 곡식을 수확하여도 세금이 없는데다, 도량(稻粱)의 좋은 맛을 섞어 전죽(饘粥)의 재료로 대신 쓰게 한다면, 그 광박한 이익이 만세의 법식도 될 수 있으리니, 어찌 1년 동안의 기근 구제하는 재료에만 그칠 뿐이겠는가.

옛날에 아 대부(阿大夫)를 삶아 죽인 것은 그가 탐오해서만이 아니라, 즉 전야(田野)를 개간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으니, 지금 조정의 명령이 내려갔는 데에도 감히 전야를 개간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고 일체 묵은 대로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은 자의 경우는, 그 죄가 아 대부에게 시행했던 형벌을 피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옛날에 주 부자(朱夫子)가 남강(南康)을 다스릴 적에는 날마다 산간 지역에 농사일을 경영하느라 거마와 보졸(步卒)이 성자현(星子縣) 같은 궁벽한 작은 고을까지 들어갔었다. 그런데 지금의 수령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감히 관아에 가만히 드러누워서 임금과 근심을 나누는 의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화성은 탕목읍(湯沐邑)이요 또 왕기(王畿)에서 표준이 되는 곳이니, 먼저 본부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비록 손바닥 발바닥만한 땅이라도 제때에 다 파종을 해서 기읍(畿邑)의 선도(先導)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丁酉/雨. 別諭華城府曰: “農者律天時相土宜盡人力, 三者無失然後, 可獲有秋. 穀有經四節而食者, 經三節而食者, 經二節而食者, 又有宜於野而不宜於山者, 宜於山而不宜於水者. 時之早晩, 土之原隰, 百穀不一其種, 而苞栗汙菜, 係乎人力之盡不盡焉耳. 予雖未讀『農政全書』, 而百千萬事, 不出於分數. 木麥之最宜代播, 以其後種而先熟也. 後種先熟曰(穆)穋, 已自『豳詩』著詠, 周公豈欺我哉? 夫所謂代播云者, 水旱爲災, 節序過愆, 野多未移之秧, 田乏可降之種, 則乃於百穀之中, 必取後種先熟者, 代而播之, 俾裕民食之謂. 而其間首尾, 優免霜信, 可以爲不托, 可以當雕胡, 其療飢救荒之功, 頓勝於西之蹲鴟, 南之甘藷, 惟木麥爲良, 此予所以或値秧節之衍期, 必勸木麥之代播者也. 昨見廟堂草記, 以木麥外, 亦多宜播之穀爲言. 種菽之易爲力, 次於木麥, 而土性田功, 不竝以南·畿·湖, 節候雖似各異, 根耕之過期, 與移秧一般. 以用於根耕者, 用於代播, 而諸路之一齊食實, 固未可必. 稷雖就濕之性, 播之距(獲)穫, 費却百日內外, 而寒露入節隔在八十餘日, 則未及成熟, 如執左契. 至於晩稷之種, 其貴如金, 倉無糴糴, 村無蓋藏, 將覓來何處, 可以泒及乎? 今於木麥代播之令, 畿內守令民人之言不便者, 輒云 ‘水田沮洳, 雨洽則當消融.’ 朝家之所勸播者, 非此之謂也, 亶在於高燥未移之處, 而又於邱隴阡陌不稅不毛之地, 俾用鋤農耒耕之法, 則沮洳消融之患, 初非可論. 木麥種子之自巖邑移沿郡也, 東風送帆, 無脛而至, 可謂天公會事發. 況又官給其種, 公蠲其稅, 諸凡易簡便當之策, 靡所不用其極, 無論所收之多少贏縮, 一切委之於民人, 粒粒皆我充腸, 飽腹之惟意, 則此豈非回咷爲笑, 反歎如稔, 以人功奪造化之一大關捩, 而亦足謂之藏富於民, 君孰與不足乎? 外此不言所利之美利, 指不勝(摟)〔僂〕, 而下民蚩蚩, 不可與之謀始. 畿之俗, 且懶於農, 作避一時深耕之苦, 捨將來必食之功. 年年應爲之農工, 猶忽服勤之意, 則惟今代播之令, 却顧而睥睨, 將進而趑趄, 特其勢耳. 身爲田畯之官者, 出謀發慮, 策懶警惰, 乃職之宜, 而反爲隨衆雷同, 梦梦聒聒, 專昧克敏之方, 認作難從之事, 抑何故也? 令出惟行, 不惟反朝令之頒下久矣, 廟堂但當堅守董責, 時加考察, 如其不率令者, 先從方伯而糾之. 正之則守令與民人, 自當奔走趨事, 野無曠土, 土無閒畝. 『書』曰 ‘曷敢不終’, 朕畝旣始之, 便不圖終, 顧何異於農夫之耕而不播, 播而不耘乎? 以時則可, 以穀則宜, 何苦而不勸, 何憚而不爲? 王畿, 四方之標準, 先從畿邑之議論携異處, 專精費力, 篤信奉行, 可使湖·嶺, 觀感影從. 秧不移而有粟, 秋則熟而無稅, 和以稻粱之味, 替作饘粥之需, 則博哉之利, 可爲萬歲法程, 奚但止於一年救荒之資而已哉? 烹阿非但貪也, 卽田野不闢, 則朝令之下, 跡不緣畝, 而一任其荒穢不治者, 顧其罪欲逭阿大夫已施之典得乎? 昔朱夫子之知南康也, 日日勞農, 山間車徒, 至及於星子之小縣僻壤. 則今之長吏, 是何人, 乃敢偃臥鈐閣, 太不識分憂之義, 寧不痛惋? 華城, 湯沐邑也, 又爲標準於王畿, 先自本府, 悉心對颺, 雖側趾盈掌之地, 及時播厥, 俾爲畿邑之倡.”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6월 5일(정유) 1번째기사>

⑶ 지리·경관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우리 태조(太祖) 3년 갑술에【곧 홍무 27년】도읍을 한양부에 정하게 되매, 그 이듬해 을해에 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는 새 서울[新都]에 가는 길이 멀므로 도로 서해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광주(廣州)·수원부(水原府)·양근군(楊根郡)·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녕(川寧)·지평현(砥平縣)을 갖다 이에 붙이고, 광주·수원의 관할인 군(郡)·현(縣)을 갈라서 좌도(左道)로 하고**, 양주·부평·철원·연안의 관할인 군·현을 우도(右道)로 하고, 7년[戊寅]에 또 충청도(忠淸道)의 진위현(振威縣)을 떼어서 좌도에 붙이었다가, 태종(太宗) 2년 임오에【곧 홍무 35년】두 도(道)를 합하여 경기 좌·우도라 하고, 성관찰사(省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3년 계사에【곧 명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영락(永樂) 11년】사방길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연안(延安)·배주(白州)·우봉·강음·토산을 도로 풍해도(豐海道)에, 이천(伊川)을 도로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부(驪興府)·안성군(安城郡)·양지(陽知)·양성(陽城)·음죽현(陰竹縣)과 강원도의 가평현(加平縣)을 떼어다가 이에 붙이고,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지 않고 **다만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라 일컫고 사(司)를 수원(水原)에 두었다**. 동쪽은 강원도 춘천(春川)과 원주(原州)에 이르고, 서쪽은 황해도 강음(江陰)과 배천(白川)에 이르며, 남쪽은 충청도 죽산(竹山)과 직산(稷山)에 이르고, 북쪽은 황해도의 토산(兎山)과 강원도 이천(伊川)에 이르러서, 동서가 2백 64리요, 남북이 3백 64리가 된다.(…)

◈ 京畿: (…) 及我太祖三年甲戌, 【卽洪武二十七年】 定都漢陽府. 明年乙亥, 以平州·遂安·谷州·載寧·瑞興·新恩·俠溪去新都道遠, 還屬西海道, 將楊廣道廣州·水原府·楊根郡·雙阜·龍駒·處仁·利川·川寧·砥平縣來屬. 分廣州·水原所領郡縣爲左道, 楊州·富平·鐵原·延安所領郡縣爲右道. 戊寅, 又割忠淸道振威縣, 屬左道. 太宗二年壬午, 【卽洪武三十五年】 合兩道, 號京畿左右道省, 觀察使首領官各一人. 十三年癸巳, 【卽大明太宗文皇帝永樂十一年】 酌四方道途遠邇, 以延安·白州·牛峯·江陰·兎山, 還屬豐海道; 伊川還屬江原道. 割忠淸道驪興府·安城郡·陽知·陽城·陰竹縣, 江原道加平縣來屬, 不分左右道, 只稱京畿都觀察使. 置司水原, 東至江原道春川·原州, 西至黃海道江陰·白川, 南至忠淸道竹山·稷山, 北至黃海道兎山, 江原道伊川, 東西二百六十四里, 南北三百六十四里.(…)

<세종실록 지리지 / 경기>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광주목

⊙ 광주목(廣州牧)

(…) 검단산(黔丹山)【주(州) 동쪽에 있으니, 고을 사람들이 진산(鎭山)이라고 일컫는다】 도미진(渡迷津)【주(州) 동북쪽에 있으며, 나룻배가 있다】 그 서쪽을 진촌진(津村津)이라 하며,【주(州) 북쪽에 있으니, 나루머리[津頭]에 수참(水站)을 두었고, 참선(站船)이 15척이다】 또 그 서쪽에 광진도(廣津渡)가 있다.【도승(渡丞)이 있어서 〈사람의〉 드나드는 것을 조사하는데, 좌도 수참 전운 판관(左道水站轉運判官)이 겸하여 조운(漕運)을 관장한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양근(楊根) 용진(龍津)에 이르기 30리, 서쪽으로 과천(果川)을 지나서 **수원(水原) 경계의 성곶이[聲串]에 이르기 85리**, 남쪽으로 이천(利川)의 양지(陽知)

에 이르기 45리, 북쪽으로 양주(楊州)에 이르기 11리요, 동서(東西)가 1백 15리, 남북(南北)이 56리이다.(…)

⊙ 廣州: (…) 黔丹山 · 【在州東, 州人稱爲鎭山】 渡迷津. 【在州東北, 有渡船】 其西曰津村津, 【在州北, 津頭置水站, 站船十五艘】 又其西有廣津渡. 【有渡丞譏察出入, 以左道水站轉運判官兼之, 專掌漕運】 四境, 東距楊根 · 龍津三十里, 西過果川 · 水原界至聲串八十五里, 南距利川 · 陽知四十五里, 北距楊州十一里, 東西一百十五里, 南北五十六里. (…)

<세종실록 지리지 / 경기 / 광주목>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광주목 / 여흥 도호부

◎ 여흥 도호부(驪興都護府)

부사(府使) 1인, 【대개 각 부사(府使)는 모두 삼품관(三品官)으로 삼고, 사품(四品)은 부사(副使)라 일컫는다】 유학 교수관(儒學敎授官) 1인.

본래 고구려의 골내근현(骨乃斤縣)인데, 신라가 황효(黃驍)로 고쳐서 소천군(泝川郡)의 【소천(泝川)은 곧 지금의 천녕(川寧)】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황려(黃驪)로 고쳐서, 현종(顯宗) 무오에 원주(原州)의 임내(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또는 황리현(黃利縣)이라고도 한다】 충렬왕(忠烈王) 31년 을사에 【곧 원(元)나라 성종(成宗) 대덕(大德) 9년】 황비(皇妣) 순경 왕후(順敬王后) 김씨(金氏)의 고향이라 하여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하여 지군사(知郡事)를 두고, 명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홍무(洪武) 21년 무진에 위주(僞主) 신우(辛禑)를 이 고을에 옮기고 황려부(黃驪府)로 승격시켰다가,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에 【곧 홍무 22년】 다시 여흥군으로 강등시켰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원년 신사에 중궁 정비(中宮靜妃)의 내향으로써 여흥부로 승격시켜 음죽현(陰竹縣)의 북촌(北村) 어서이처(於西伊處)를 떼어 주고, 13년 계사에 도호부(都護府)로 고치었다. 【곧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영락(永樂) 11년이다. 옛부터 이르기를 계림(鷄林)과 평양(平壤) 등을 유수부(留守府)라 하고, **수원(水原)과 여흥 등의 부(府)를 단부(單府)라 해서, 명칭이 서로 혼동되므로, 단부를 고쳐 도호부로 하여 구별되게 하였다**】 (…)

◎ 驪興: 都護府使一人, 【凡各府使, 皆以三品官爲之, 四品則稱副使】 儒學敎授官一人. 本高句麗骨乃斤縣, 新羅改名黃驍, 爲泝川郡領縣. 【泝川, 卽今川寧】 高麗改爲黃驪. 顯宗戊午, 屬原州任內, 後置監務. 【一云黃利縣】 忠烈王三十一年乙巳, 【卽元成宗大德九年】 以皇妣順敬王后金氏內鄕, 陞爲驪興郡, 置知郡事. 至大明太祖高皇帝洪武二十一年戊辰, 遷僞主辛禑于郡, 陞爲黃驪府, 恭讓王元年己巳, 【卽洪武二十二年】 復降爲驪興郡. 本朝太宗元年辛巳, 以中宮靜妃內鄕, 陞爲驪興府, 割陰竹縣北村於西伊處以與之. 十三年癸巳, 改爲都護府. 【卽太宗文皇帝永樂十一年也. 先是, 俗號鷄林 · 平壤等爲留守府, 水原 · 驪興等府, 爲單府, 名稱相混, 故改單府爲都護府以別之】 (…)

<세종실록 지리지 / 경기 / 광주목 / 여흥 도호부>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양주 도호부

⊙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한(韓) · 조(趙) · 민(閔) · 신(申)이요, 내성(來姓)이 5이니, 함(咸)【양근(楊根)에서 왔다】 · 박(朴)【춘천(春川)에서 왔다】 · 홍(洪)【남양

(南陽)에서 왔다】 · 최(崔)【수원(水原)에서 왔다】 · 부(夫)【과천(果川)에서 왔다】요, 망성(亡姓)이 2이니, 정(鄭)·예(艾)이다. 견주(見州)의 토성(土姓)이 7이니, 이(李)·김(金)·송(宋)·신(申)·백(白)·윤(尹)·피(皮)요, 사천현(沙川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경(耿)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임(任)·송(宋)·허(許)이다. 풍양현(豐壤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조(趙)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강(姜)·윤(尹)·유(劉)이다. 인물(人物)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한산군(漢山君) 충정공(忠靖公) 조인옥(趙仁沃)이다. 【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태조 묘정(太祖廟庭)에 배향되었다】 (…)

⊙ 楊州: (…) 本府土姓四, 韓·趙·閔·申. 來姓五, 咸【楊根來】 朴【春川來】·洪【南陽來】·崔【水原來】·夫.【果川來】 亡姓二, 鄭·艾. 見州土姓七, 李·金·宋·申·白·尹·皮. 沙川縣土姓一, 耿. 亡姓四, 李·任·宋·許.豐壤縣土姓一, 趙. 亡姓四, 李·姜·尹·劉. 人物, 中樞院使漢山君 忠靖公 趙仁沃. 【以本朝開國功臣, 配享太祖廟庭】 (…)

<세종실록 지리지 / 경기 / 양주 도호부>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인데, 신라가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가 남정(南征)할 때, 고을 사람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 2백여 사람이 귀순(歸順)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수주(水州)**로 승격시켰으며,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 8년 을사【곧 송나라 진종(眞宗) 경덕(景德) 2년】에 이를 파하고, 현종(顯宗) 9년 무오에 다시 지수주사(知水州事)로 삼았다. 충경왕(忠敬王) 12년 신미【곧 원나라 세조(世祖) 지원(至元) 8년】에 몽고 군사가 대부도(**大部島**)에 침입하여 백성을 노략질하니, 섬 사람들이 분함을 못 이겨 몽고 군사를 죽이고 반(叛)하매, 주관(州官)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평정하였으므로, 그 공으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그 뒤에 또 목(牧)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忠宣王) 2년 경술에【곧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3년】 모든 목(牧)을 없앰에 따라 **수원부(水原府)**로 강등시켰다. 공민왕(恭愍王) 11년 임인에【곧 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22년】 홍건적(紅巾賊)이 선봉(先鋒)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매, 양광도(楊廣道)의 주군(州郡) 가운데서 **수원**이 맨먼저 항복하여 〈적을〉 맞아들였으므로, 적의 형세가 더욱 퍼졌기 때문에, 군(郡)으로 강등시켰는데, 고을 사람들이 재상 김용(金鏞)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얼마 안 되어 다시 부(府)로 되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가 되었다.【별호는 한남(漢南)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혹은 수성(隋城)이라고도 한다】 속현(屬縣)이 5이니, **쌍부(雙阜)**【옛날의 육포(六浦)임】·**영신(永新)**【혹은 영풍(永豐)이라고도 함】·**정송(貞松)**【옛날의 **송산 부곡(松山部曲)**임】·**용성(龍城)**【본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차성(車城)**으로 고쳐서 **당은군(唐恩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위의 4현은 현종(顯宗) 9년에 모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였다】·**광덕(廣德)**이다.【현종 9년 〈고을을〉 분속(分屬)시켰을 때에는 이 이름이 없다】 향(鄕)이 3이니, **공이(工二)·주석(柱石)·분촌(盆村)**이요, 부곡(部曲)이 4이니, **육내미(陸內彌)·포내미(浦內彌)·사량(沙梁)·쟁흘(爭忽)**이요, 처(處)가 5이니, **사정(奢井)·금물촌(今勿村)·유제(楡梯)·양간(楊干)**【본래 인천(仁川)에 속하였는데, 태종(太宗) 무술에 내속(來屬)되었다】·**심곡(深谷)**이며, 장(莊)이 3이니, **오타(五朶)·종덕(宗**

德)·신영(新永)이다.【처음에 양성(陽城)에 속하였는데, 태조(太祖) 7년 무인에 〈지형이〉 개의 이빨처럼 어긋나게 들어왔으므로 내속(來屬)시켰다. 위의 향(鄕)·부곡(部曲)·처(處)·장(莊)은 다만 옛 이름만 있으므로, 모두 본부에 붙여서 직촌(直村)으로 삼았다】 사방 경계[四景]는 동쪽으로 용인(龍仁)에 이르기 17리, 서쪽으로 쌍부(雙阜) 바라곶이[八羅串]에 이르기 55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平澤縣)의 유지두(酉只頭)에 이르기 65리, 북쪽으로 과천(果川)에 이르기 21리이다.

호수(戶數)가 1천 8백 42호, 인구가 4천 9백 26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백 97명, 선군(船軍)이 4백 5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최(崔)·김(金)·이(李)·서(徐)요, 서울에서 온 성[京來姓]이 1이니, 백(白)이요, 촌락성(村落姓)이 1이니, 하(河)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백(白)·최(崔)·이(李)·방(方)이다. 쌍부(雙阜)의 토성(土姓)이 2이니, 서(徐)·심(沈)이요, 망성(亡姓)이 3이니, 송(宋)·이(李)·신(愼)이며, 영신(永新)의 토성(土姓)이 1이니, 김(金)이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최(崔)·오(吳)·황(黃)이다. 정송(貞松)의 토성(土姓)이 1이니, 김(金)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이(李)·최(崔)이며, 속성(續姓)이 1이니, 윤(尹)이다. 용성(龍城)의 토성(土姓)이 2이니, 차(車)·송(宋)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임(任)·장(張)이며, 속성(續姓)이 1이니, 김(金)이다. 광덕(廣德)의 속성(續姓)이 1이니, 박(朴)이요, 공이(工二)의 토성(土姓)이 1이니, 송(宋)이며, 망성(亡姓)이 1이니, 공(公)이다. 주석(柱石)의 망성(亡姓)이 4이니, 송(宋)·김(金)·최(崔)·차(車)요, 분촌(盆村)의 토성(土姓)이 1이니, 백(白)이며, 망성(亡姓)이 1이니, 전(田)이다. 내미(內彌)의 토성이 1이니, 이(李)요, 망성이 1이니, 백(白)이며, 속성이 1이니, 이(李)이다. 망사량(亡沙梁)의 토성이 1이니, 견(堅)이요, 망성이 2이니, 주(周)·김(金)이며, 쟁홀(爭忽)의 토성이 1이니, 이(李)요, 망성이 1이니, 김(金)이며, 속성이 1이니, 박(朴)이다. 사정(奢井)의 속성(續姓)이 1이니, 도(都)요, 금물촌(今勿村)의 토성(土姓)이 1이니, 여(呂)이며, 망성(亡姓)이 1이니, 이(李)이다. 유제(楡梯)의 속성(續姓)이 1이니, 차(車)요, 양간(楊干)의 속성(續姓)이 2이니, 박(朴)·김(金)이며, 심곡(深谷)의 망성(亡姓)이 1이니, 차(車)이다. 오타(五朶)의 망성(亡姓)이 1이니, 여(呂)요, 속성(續姓)이 1이니, 김(金)이며, 종덕(宗德)의 토성(土姓)이 1이니, 유(柳)요, 속성(續姓)이 3이니, 서(徐)·이(李)·차(車)이며, 신영(新永)의 속성(續姓)이 1이니, 유(柳)이다. 인물(人物)은 한림 학사 국자 좨주(翰林學士國子祭酒) 최누백(崔婁伯)이다.【고려 인종(仁宗) 때 사람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간전(墾田)이 1만 9천 1백 54결(結)이다.【논이 조금 적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참깨·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芝草)이며, 약재(藥材)는 사자발쑥·연밥·속서근풀[黃芩]이다. 염소(鹽所)가 6이요, 어량(魚梁)이 2이다.【하나는 쌍부(雙阜)에 있고, 하나는 용성(龍城) 유지두(酉只頭)에 있다. 주로 송어[蘇魚]가 나며, 또는 숭어[首魚]·민어·참치[眞魚]·농어[鱸魚]·뱅어[白魚]·상어[沙魚]·쌀새우[白蝦]·중새우·큰새우·굴[石花]·낙지·모시조개[黃蛤]가 난다】 읍토성(邑土城)【둘레가 2백 70보(步)요, 안에 우물 2개가 있다】 역(驛)이 2이니, 장족(長足)·동화(同化)요, 목장이 2이니, 양야곶이[陽也串]와【부(府) 서쪽 30리에 있다. 토장(土場)의 둘레가 15리인데, 나라의 말 75필을 놓아 먹인다】 홍원곶이[洪原串]이며,【용성현(龍城縣) 서쪽에 있는데, 소를 놓아 먹인다】 봉화가 1곳이니, 흥천산(興天山)이다.【부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양성(陽城) 홰대기곶이[槐台吉串]에 응하고, 서쪽으로 남양(南陽)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관할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남양(南陽)이요, 군(郡)이 2이니, 안산(安山)과 안성(安城)이며, 현(縣)이 4이니, 진위(振威)·용인(龍仁)·양성(陽城)·양지(陽智)이다.

⊙ 水原: 都護府, 本高句麗買忽郡, 新羅改爲水城郡. 高麗太祖南征, 郡人金七·崔承珪等二百餘人, 歸順効力, 以功陞爲水州. 成宗十四年乙未, 置團練使, 穆宗八年乙巳, 【卽宋眞宗景德二年】 罷之, 顯宗九年戊午, 復爲知水州事. 忠敬王十二年辛未, 【卽元 世祖至元八年】 蒙古兵入大部島, 侵掠居民, 島人怨憤, 殺蒙古兵以叛, 州官安悅率兵討平之, 以功陞爲都護府, 後又陞爲牧. 忠宣王二年庚戌, 【卽元武宗至大三年】 汰諸牧, 降爲水原府. 恭愍王十一年壬寅, 【卽元順帝至正二十二年】 以紅頭賊, 遣先鋒招降, 楊廣道州郡, 水原最先迎逢, 致賊勢益張, 降爲郡. 郡人重賂宰臣金鏞, 未幾復爲府,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都護府. 【別號漢南, 淳化所定, 一號隋城】 屬縣五, 雙阜·【右六浦】永新·【一號永豐】貞松·【右松山部曲】龍城·【本高句麗上忽縣, 新羅景德王, 改爲車城, 爲唐恩郡領縣. 高麗時, 改今名. 右四縣, 顯宗戊午, 皆屬水州任內】 廣德. 【顯宗戊午分屬時, 無此名】 鄕三, 工二·柱石·盆村. 部曲四, 陸內彌·淵內彌·沙梁·爭忽. 處五, 奢井·令勿村·楡梯·楊干·【本屬仁川, 太宗戊戌, 來屬】 梁谷. 莊三, 五朶·宗德·新永. 【初屬陽城, 太祖七年戊寅, 以犬牙相入來屬. 右鄕部曲處莊, 但有舊名, 皆屬本府爲直村】 四境, 東距龍仁十七里, 西距雙阜·八羅串五十五里, 南距忠淸道平澤縣 西只頭六十五里, 北距果川二十一里. 戶一千八百四十二, 口四千九百二十六. 軍丁, 侍衛軍一百九十七, 船軍四百五. 本府土姓四, 崔·金·李·徐·京; 來姓一, 白; 村落姓一, 河; 亡姓四, 白·崔·李·方. 雙阜土姓二, 徐·沈; 妄姓三, 宋·李·愼. 永新土姓一, 金; 亡姓四,李·崔·吳·黃. 貞松土姓一, 金; 亡姓二, 李·崔; 續姓一, 尹. 龍城土姓二, 車·宋; 亡姓二, 任·張; 續姓一, 金. 廣德續姓一, 朴. 工二土姓一, 宋; 亡姓一, 公. 柱石亡姓四, 宋·金·崔·車. 盆村土姓一, 白; 亡姓一, 田. 內彌土姓一, 李; 亡姓一, 白; 續姓一, 李. 亡沙梁土姓一, 堅; 亡姓二, 周·金. 爭忽土姓一, 李; 亡姓一, 金; 續姓一, 朴. 奢井續姓一, 都. 今勿村土姓一, 呂; 亡姓一, 李. 楡梯續姓一, 車. 楊干續姓二, 朴·金. 深谷亡姓一, 車. 五朶亡姓一, 呂; 續姓一, 金. 宗德土姓一, 柳; 續姓三, 徐·李·車. 新永續姓一, 柳. 人勿, 翰林學士國子祭酒崔婁伯, 高麗·仁宗特人. 厥土肥堉相半, 懇田〔墾田〕一萬九千一百五十四結. 【水田差少】 土宜五穀, 粟·小豆·芝麻·桑·麻. 土貢, 芝草. 藥材, 獅子足艾·蓮子·黃芩. 鹽所六. 魚梁二. 【一在雙阜, 一在龍城酉只頭, 主産蘇魚. 又産首魚·民魚·眞魚·鱸魚·白魚·沙魚·白蝦·大蝦·土花·石花·落地·黃蛤】 邑土城. 【周回二百七十步, 內有井二】 驛二, 長足·同化. 牧場二, 陽也串【在府西三十里, 土場周回十五里, 放國馬七十五匹】洪原串. 【在龍城縣西, 放牛】 烽火一處, 興天山. 【在府西, 南準陽城槐台吉串, 西準南陽念佛山】 所領都護府一, 南陽; 郡二安山·安城; 縣四, 振威·龍仁·陽城·陽智.

<세종실록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남양 도호부

◎ 남양 도호부(南陽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당성현(唐城縣)인데, 신라가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옛이름[唐城]으로 복구하여, 현종(顯宗) 무오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뒤에 인주(仁州)에 옮겨 붙였으며, 명종(明宗) 2년 임진에【곧 송나라 효종(孝宗) 건도(乾道) 8년】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렬왕(忠烈王) 16년 경인에 고을 사람 홍다구(洪茶丘)가 원나라

에 벼슬하여 정동행성 우승(征東行省右丞)이 되었으므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되고, 뒤에 또 강녕 도호부(江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34년 무신에 또 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충선왕 2년 경술에 모든 목(牧)을 없앰에 따라 남양부(**南陽府**)로 강등되어,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1이니, 재양(載陽)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수원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화지량(花之梁)에 이르기 30리, 남쪽으로 수원(水原) 임내(任內) 쌍부(雙阜)에 이르기 20리, 북쪽으로 안산(安山)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戶數)가 4백 87호, 인구가 7백 78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2명, 선군(船軍)이 1백 45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6이니, 홍(洪)·송(宋)·방(房)·박(朴)·최(崔)·서(徐)요, 망성(亡姓)이 1이니, 오(吳)이다. 재양(載陽)의 토성이 4이니, 손(孫)·윤(尹)·신(辛)·우(祐)요, 내성(來姓)이 1이니, 서(徐)이며,【안산(安山)에서 왔다】속성(續姓)이 1이니, 전(田)이다. 인물(人物)은 첨의중찬(僉議中贊) 경흥군(慶興君) 충정공(忠正公) 홍자번(洪子藩)·첨의중찬 광정공(匡定公) 홍문계(洪文系)【모두 충렬왕(忠烈王) 때 사람이다】·첨의정승(僉議政丞) 남양후(南陽侯) 문정공(文正公) 홍언박(洪彦博)이다.【공민왕(恭愍王) 때 사람이다. 당(唐)에서 재주 있는 젊은이 8인을 보내어 고려에 가서 가르치게 하였는데, 홍(洪)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자손이 대대로 삼한(三韓)에서 귀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사는 곳을 당성(唐城)이라 하였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바다가 가까와서 기후[風氣]가 일찍 더워지고, 간전(墾田)이 4천 3백 48결(結)이다.【논이 8분의 3이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수수·팥·참깨·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이며, 약재(藥材)는 사자발쑥【가장 좋은 것이다】·백부자(白附子)·연밥이요, 염소(鹽所)가 44이다. 경석(磬石)이 부(府) 동쪽 사나사(舍郡寺[舍那寺])의 서쪽 산에서 난다.【빛이 푸르고 흰 것이 섞이고 문채가 있다. 금상(今上) 9년 정미에 캐서 경쇠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음률에 맞았다】어량(魚梁)이 2이다.【주로 민어·송어가 나고, 또 숭어·상어·참치·가물치[加大魚]·조기[石首魚]·큰새우·중새우·곤쟁이[紫蝦]·모시조개[黃蛤]·대합조개[生蛤]·미네굴[土花]·굴[石花]·낙지(落地)가 난다】

역(驛)이 1이니, 해문(海門)이요, 관방(關防)이 2이니, 영종포(永宗浦)와【부 남쪽에 있으니,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한다】화지량(花之梁)이며,【부 서쪽에 있으니, 우도수군 첨절제사(右道水軍僉節制使)가 수어한다】봉화(烽火)가 2곳이니, 염불산(念佛山)과【부 서쪽에 있다. **동쪽으로 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본부(本府) 해운산(海雲山)에 응한다】해운산(海雲山)이다.【부 북쪽에 있다. 안산(安山) 무고리(無古里)에 응한다】선감미도(**仙甘**彌島)【화지량(花之梁) 서쪽 수로(水路) 2리에 있으니, 둘레가 5리이며, 소를 놓아 먹인다】대부도(**大部島**)【화지량 서쪽 2리에 있다. 길이 30리요, 너비가 15리이니, 좌도 선군영(左道船軍營) 밭이 1백여 결(結)이 있으며, 나라의 말 4백 18필을 놓아 먹이는데, 염부(鹽夫) 4호가 살면서 돌보게 한다】소우도(小牛島)【대부도 서쪽 5리에 있으니, 둘레 15리이며, 염부(鹽夫) 2호가 있다】영흥도(**靈興島**)【소우도 서쪽 7리에 있다. 길이 25리, 너비 15리이며, 염부(鹽夫) 5호가 있다】소홀도(**召忽島**)【영흥도 서쪽 30리에 있다. 예전에는 소물도(**召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20리이나, 밭이나 사는 사람이 없다】덕적도(**德積島**)【소홀도 남쪽 60리에 있다. 예전에는 인물도(仁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15리인데, 나라의 말 2백 57필을 놓아 먹인다】우음도(亏音島)【부 북쪽 수로(水路) 2리에 있다. 둘레 13리이며, 밭 5결이 있는데, 부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농사를 짓는다】새곶이[土也串]【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 南陽: 都護府, 本高句麗唐城縣, 新羅改爲唐恩郡, 高麗復古名. 顯宗戊午, 屬水州任內, 後移屬仁州. 明宗二年壬辰,【卽宋孝宗乾道八年】 始置監務. 忠烈王十六年庚寅, 以縣人洪茶丘任元爲征東行省右丞, 陞爲知益州事, 後又陞爲江寧都護府, 三十四年戊申, 又陞爲益州牧. 忠宣王二年庚戌, 汰諸牧, 降爲**南陽府**,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都護府, 屬縣一, 載陽. 四境, 東距水原十五里, 西距花之梁三十里, 南距水原任內雙阜二十里, 北距安山十里. 戶四百八十七, 口七百七十八. 軍丁, 侍衛軍二, 船軍一百四十五. 本府土姓六, 洪·宋·房·朴·崔·徐; 亡姓一, 吳. 載陽土姓四, 孫·尹·辛·祐; 來姓一, 徐; 【安山來】 續姓一, 田. 人物, 僉議中贊慶興君忠正公 洪子藩·僉議中贊匡定公洪文系·【皆忠烈王時人】 僉議政丞南陽侯文正公洪彦博. 【恭愍王時人, 唐遣才子八人, 往敎高麗, 洪其一也. 子孫世貴於三韓, 名所居曰唐城】 厥土肥堉相半, 近海風氣早暖, 墾田四千三百四十八結. 【水田居八分之三】土宜五穀, 粟·唐黍·小豆·芝麻·桑·麻. 土貢, 芝草. 藥材, 獅子足艾·【最良】 白附子·蓮子. 鹽所四十四. 磬石産府東舍郡寺[舍那寺]西山. 【色雜, 靑白有文彩. 今上九年丁未, 採之, 作磬, 聲中音律】 魚梁二, 【主産民魚·蘇魚. 又産首魚·沙魚·眞魚·加大魚·石首魚·大蝦·中蝦·紫蝦·黃蛤·生蛤·土花·石花·落地】 驛一, 海門. 關防二, 永宗浦·【在府南, 水軍萬戶守禦】 花之梁. 【在府西, 右道水軍僉節制使守禦】 烽火二處, 念佛山·【在府西, 東準水原興天山, 北準本府海雲山】海雲山. 【在府北, 北準安山無古里】**仙甘**彌島·【在花之梁西, 水路二里, 周回五里, 牛隻入放】**大部島**·【在花之島西二里, 長三十里, 廣十五里. 有左道船軍營田百餘結, 放國馬四百十八匹, 鹽夫四戶入居看養】小牛島·【在**大部島**西五里, 周回十五里, 有鹽夫二戶】**靈興島**·【在小牛島西七里, 長二十五里, 廣十五里. 有鹽夫五戶】**召忽島**【在**靈興島**西三十里, 古稱**召物島**, 周回二十里, 無田地居人】**德積島**·【在**召忽島**南六十里, 古稱仁物島, 周回十五里, 放國馬二百五十七匹】亏音島·【在府北水路三里, 周回十三里. 有旱田五結, 府人來往耕穫】 土也串.【國馬入放】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안산군

◎ 안산군(安山郡)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인데, 신라가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안산군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그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 문종(文宗)이 탄생한 땅이므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으며,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진산(鎭山)은 취암(鷲岩)이다.【군(郡)의 동쪽에 있으니, 동쪽은 과천(果川), 북쪽은 금천(衿川), 남쪽은 광주(廣州)의 지경이 된다】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금천(衿川)에 이르기 1리,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30리, 남쪽으로 광주(廣州) 소리곶이[聲串]에 이르기 11리, 북쪽으로 부평(富平)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가 3백 단(單) 2호, 인구가 5백 88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명, 선군(船軍)이 1백 15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김(金)·안(安)·방(方)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임(林)이다.

땅은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민속(民俗)이 어염(魚鹽)으로써 생계를 삼는다. 간

전(墾田)은 2천 2백 89결(結)이다.【논이 9분의 3이 된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메밀·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이며, 약재(藥材)는 연밥이다. 염소(鹽所)가 5요, 어량(魚梁)이 5이다.【주로 송어가 나며, 또는 민어·숭어·조기·농어·참치·홍어·큰새우·중새우·모시조개[黃蛤]·미네굴[土花]·굴·낙지가 난다】

역(驛)이 1이니, 석곡(石谷)이요, 관방(關防)이 1이니, 사곶이[沙串]이며,【군(郡) 서남쪽 30리에 있으니, 일명(一名) 초지(草芝)라고도 하며,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한다】봉화가 2곳이니, 옷애[吾叱哀]와【군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무응고리(無應古里)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仁川) 성산(城山)에 응한다】무응고리(無應古里)이다.【군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남양(南陽) 해운산(海雲山)에 응한다】

◎ 安山郡: 本高句麗獐項口縣, 新羅改爲獐口郡, 高麗改爲安山郡. 顯宗戊午, 屬水州任內, 後置監務. 忠烈王三十四年戊申, 以文宗誕生之地, 陞爲知郡事, 本朝因之. 鎭山曰鷲岩【在郡東, 東爲果川, 北爲衿川, 南爲廣州境】 四境, 東距矜川一里, 西距大海三十里, 南距廣州 聲 串十一里, 北距富平十里. 戶三百單二, 口五百八十八. 軍丁, 侍衛軍丁一, 船軍一百十五. 土姓三, 金·安·方; 亡姓一, 林. 厥土肥堉相半, 民俗以魚鹽爲生, 墾田二千二百八十九結. 【水田居九分之三】 土宜五穀, 粟·小豆·蕎麥·麻. 土貢, 芝草. 藥材, 蓮子. 鹽所五, 魚梁五.【主産蘇魚, 又産民魚·首魚·石首魚·鱸魚·眞魚·洪魚·大蝦·中蝦·黃蛤·土花·石花·落地】 驛一, 石谷. 關防一, 沙串. 【在郡西南三十里, 一名草芝, 有水軍萬戶守禦】 烽火二處, 吾叱哀·【在郡西, 南準無應古里, 北準仁川城山】無應古里. 【在郡西, 南準南陽海雲山】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안성군

◎ 안성군(安城郡)

본래 고구려의 내혜홀(柰兮忽)인데, 신라가 백성군(白城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안성현(安城縣)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뒤에 천안부(天安府)로 옮겨 붙이었으며, 명종(明宗) 2년 임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공민왕(恭愍王) 10년 신축에 홍건적(紅巾賊)이 송도(松都)에 침입하여, 임금이 남쪽으로 순행하니, 적이 선봉(先鋒)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권하매, 양광도(楊廣道)의 주군(州郡)이 감히 그 선봉을 꺾지 못하였는데, 오직 안성 사람들이 거짓 항복하여 음식을 차려 놓고 적군을 먹이다가, 그 취(醉)한 틈을 타서 괴수(魁首) 6인을 베이니, 적군이 이로 말미암아 감히 남하(南下)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인에 그 공으로써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켜, <u>수원(水原)</u> 임내(任內)인 양량(陽良)·감미탄(甘彌呑)·마전(馬田)·신곡(薪谷)의 4부곡(部曲)을 떼어 주고, 공정왕(恭靖王) 원년 기묘에 양량을 떼어 양지현(陽智縣)을 설치하고, 나머지 3부곡은 지금 없애어 직촌(直村)을 삼았다.

청룡산(靑龍山)【군 남쪽에 있다. 서쪽 봉우리에 단(壇)이 있고, 단 아래에 세 우물이 있는데, 가뭄을 만나면, 우물을 깨끗이 하고, 비를 빌면 자못 영험이 있다】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충청도 죽산(竹山)에 이르기 13리, 서쪽으로 양성(陽城)에 이르기 15리, 남쪽으로 충청도 직산(稷山)에 이르기 24리, 북쪽으로 양지(陽智)에 이르기 12리이다.

호수(戶數)가 4백 24호, 인구가 1천 7백 63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92명, 선군(船軍)이 1백 29명이다.

토성(土姓)이 6이니, 이(李)·김(金)·조(趙)·설(薛)·장(張)·경(敬)이요, 감미탄(甘彌

呑)의 성이 1이니, 유(柳)이다.
땅은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5천 4백 36결(結)이다.【논이 조금 적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잡곡(雜穀), 뽕나무·삼[麻]·대추요, 토공(土貢)은 모과·감·느타리[眞茸]·지초요, 약재(藥材)는 낙석(洛石)·연밥·삿갓나물[皂休]이다.
역(驛)이 1이니, 강부(康富)요,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군 동쪽 대문리(大門里)에 있다】
◎ 安城郡: 本高句麗泰亏忽, 新羅改爲白城郡, 高麗改爲安城縣. 顯宗戊午, 屬水州任內, 後移屬天安府. 明宗二年壬辰, 始置監務. 恭愍王十年辛丑, 紅賊入松都, 王南巡, 賊遣先鋒, 招降楊廣道州郡, 所至莫敢挫其鋒, 唯安城人佯爲降附, 設享犒之, 乘其醉斬魁首六人, 賊由是不敢南下. 壬寅, 以功陞爲知郡事, 割水原任內陽良·甘彌呑·馬田·薪谷四部曲以與之. 恭靖王元年己卯, 析陽良, 置陽智縣, 餘三部曲, 今亡爲直村. 靑龍山. 【在郡南, 西峯有壇, 壇下有三井, 遇旱修井禱雨, 頗應】 四境, 東距忠淸道 竹山十三里, 西距陽城十五里, 南距忠淸道 稷山二十四里, 北距陽智十二里. 戶四百二十四, 口一千七百六十三. 軍丁, 侍衛軍九十二, 船軍一百二十九. 土姓六, 李·金·趙·薛·張·敬. 甘彌呑姓一, 柳. 厥土堉, 墾田五千四百三十六結. 【水田差少】 土宜五穀雜穀, 桑麻·棗. 土貢, 木瓜·柿·眞茸·芝草. 藥材, 洛石·蓮子·皂休. 驛一, 康富. 陶器所一. 【在郡東大門里】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진위현
◎ 진위현(振威縣)
영(令) 1인.
본래 고구려의 부산현(釜山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수성군(水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가 〈또한〉 그대로 따라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명종(明宗) 임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뒤에 영(令)으로 승격시켰다.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송장(松莊)은 예전에 **수원부(水原府)**에 속하였었는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본현(本縣)에〉 내속(來屬)시키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성(陽城)에 이르기 4리, 서쪽으로 **수원(水原) 바안내[所內川]**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수원 임내(任內) 영신현(永新縣)**에 이르기 7리, 북쪽으로 **수원 송족(松足)**에 이르기 6리이다.
호수(戶數)가 2백 21호, 인구가 5백 35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0명, 선군(船軍)이 51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김(金)·최(崔)요, 망성(亡姓)이 2이니, 유(柳)·송(宋)이며, 속성(續性)이 1이니, 조(趙)요,【직산(稷山)에서 왔다】송장의 토성이 1이니, 유(柳)이다.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2천 8백 41결(結)이다.【논과 밭이 반반이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메밀·녹두·참깨·뽕나무·삼[麻]이요, 약재(藥材)는 황금(黃芩)이다.
역(驛)이 1이니, 청호(菁好)이다.**【본래 수원(水原)에 속하였는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땅이 가깝다 하여 본현에 내속시켰다】**
◎ 振威縣: 令一人. 本高句麗釜山縣, 新羅改今名, 爲水城郡領縣, 至高麗, 因屬水州任內. 明宗壬辰, 始置, 後陞爲令, 本朝因之. 松庄, 舊屬水原府, 今上六年甲辰, 來屬. 四境, 東距陽城四里, 西距水原所內川七里, 南距水原任內永新縣七里, 北距水原松足六里. 戶二百二十一,

口五百三十五. 軍丁, 侍衛軍十, 船軍五十一. 土姓三, 李·金·崔; 亡姓二, 柳·宋; 續姓一, 趙. 【稷山來】松庄一, 柳. 厥土埴, 墾田二千八百四十一結. 【水旱田相半】 土宜五穀, 粟·小豆·蕎麥·菉豆·芝麻. 藥材, 黃芩. 驛一, 菁好. 【本屬水原, 今上六年甲辰, 以地比來屬】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용인현

◎ 용인현(龍仁縣)

용구현(龍駒縣)은 본래 고구려의 구성현(駒城縣)인데, 신라가 거서(巨黍)로 고쳐서 한주(漢州)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가 용구현(龍駒縣)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다시 광주(廣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명종(明宗) 임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뒤에 현령(縣令)으로 승격시켰다. 처인현(處仁縣)은 본래 **수원(水原)**에 소속시켜 부곡(部曲)을 삼았었는데, 현종 무오에 이미 이 이름이 있었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정축에 비로소 현령을 두었고, 태종(太宗) 계사에 2현(縣)을 합하여 용인(龍仁)이라 하였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지(陽智)에 이르기 25리, 서쪽으로 **수원**에 이르기 13리, 남쪽으로 양성(陽城)에 이르기 50리, 북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5리이다.

호수(戶數)가 4백 57호, 인구가 1천 1백 68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66명, 선군(船軍)이 76명이다.

용구의 토성(土姓)이 5이니, 진(秦)·이(李)·송(宋)·용(龍)·엄(嚴)이요, 처인의 토성이 6이니, 이(李)·서(徐)·지(池)·섭(葉)·김(金)·강(康)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간전(墾田)이 5천 9백 88결(結)이다.【논이 8분의 3이 좀 넘는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이요, 토공(土貢)은 싸리버섯[鳥足茸]·지초(芝草)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옛 처인(處仁) 가마골[窯山洞里]에 있는데, 하품(下品)이다】도기소(陶器所)가 1이다.【옛 처인 달바위[甘岩里]에 있으니, 하품이다】

보개산 석성(寶蓋山石城)【현(縣) 동쪽에 있다. 높고 험하며, 둘레가 9백 42보(步)이다. 안에 작은 우물이 있는데, 가뭄을 만나면 말라 버린다】역(驛)이 2이니, 구흥(駒興)과【본 이름은 용흥(龍興)인데, 정승(政丞) 하윤(河崙)이 지나다가 이르기를, "용흥은 참역(站驛)의 이름으로는 맞지 아니하다." 하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금령(金嶺)이요, 봉화가 1곳이니, 석성(石城)이다.【현 동쪽에 있다. 동쪽으로 죽산(竹山) 건지산(巾之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광주(廣州) 천천산(穿川山)에 응한다】

◎ 龍仁縣: 龍駒縣, 本高句麗駒城縣, 新羅改名巨黍, 爲漢州領縣, 高麗改爲龍駒縣, 顯宗戊午, 仍屬廣州任內. 明宗壬辰, 始置監務, 後陞爲令. 處仁縣, 本屬水原爲部曲, 顯宗戊午, 已有此名. 本朝太祖丁丑, 始置令. 太宗癸巳, 併二縣號龍仁. 四境, 東距陽智二十五里, 西距水原十三里, 南距陽城五十里, 北距廣州十五里. 戶四百五十七, 口一千一百六十八. 軍丁, 侍衛軍六十六, 船軍七十六. 龍駒土姓五, 秦·李·宋·龍·嚴. 處仁土姓六, 李·徐·池·葉·金·康. 厥土肥埴相半, 墾田五千九百八十八結. 【水田居八分之三强】 土宜五穀, 粟·小豆. 土貢, 鳥足茸·芝草. 磁器所一, 【在古處仁窯山洞里, 下品】 陶器所一. 【在古處仁甘岩里, 下品】 寶盖山石城. 【在縣東, 高險, 周回九百四十二步, 內有小井, 遇旱則渴】 驛二, 駒興·【本名龍興, 政丞河崙過之曰: "龍興, 非所以名站驛也." 乃改今名】 金嶺. 烽火一處, 石城. 【在縣東, 東準竹山之山, 北準廣州穿川山】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양성현

◎ 양성현(陽城縣)

본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인데, 신라가 적성(赤城)으로 고쳐서 백성군(白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가 양성현으로 고쳐, 현종(顯宗) 무오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명종(明宗) 5년 을미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본조(本朝) 태종(太宗)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안성(安城)에 이르기 9리, 서쪽으로 진위(振威)에 이르기 11리, 남쪽으로는 충청도 직산(稷山)에 이르기 30리, 북쪽으로 용인(龍仁)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戶數)가 4백 25호, 인구가 1천 2백 10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76명, 선군(船軍)이 68명이다.

토성(土城)이 4이니, 하(河)·유(柳)·이(李)·갈(葛)이요, 망성(亡姓)이 3이니, 임(任)·강(康)·송(宋)이다.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4천 7백 42결(結)이다.【논이 좀 적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팥·메밀·참깨·삼[麻]·뽕나무요, 토공(土貢)은 물고기젓·민어·건숭어[乾水魚]·지초(芝草)요, 약재(藥材)는 황금(黃芩)이다. 염소(鹽所)가 1이다.

역(驛)이 1이니, 가천(加川)이요, 목장이 1이다.【현 서쪽 괴태기곶이[槐台吉串]에 있으니, <u>수원(水原)</u> 남쪽 지경으로 쑥 들어갔고, 둘레가 7리이다. 금상(今上) 11년 기유에 비로소 전구서(典廐署)의 소를 놓아 먹이는데, 수초(水草)가 넉넉하고 좋다】봉화가 1곳이니, 괴태기곶이[槐台吉串]이다.【남쪽으로 면천(沔川) 명해산(明海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u>수원 흥천산(興天山)</u>에 응한다】

◎ 陽城縣: 本高句麗　　沙伏忽, 新羅改名赤城, 爲白城郡領縣, 高麗改爲陽城縣. 顯宗戊午, 屬水州任內, 明宗五年乙未, 始置監務. 本朝太宗癸巳, 例改爲縣監. 四境, 東距安城九里, 西距振威十一里, 南距忠淸道　　稷山三十里, 北距龍仁十里. 戶四百二十五, 口一千二百十. 軍丁, 侍衛軍七十六, 船軍六十八. 土姓四, 河·柳·李·葛; 亡姓三, 任·唐·宋. 厥土埴, 墾田四千七百四十二結. 【水田差少】 土宜五穀, 粟·小豆·蕎麥·芝麻·桑·麻. 土貢, 魚醢·民魚·乾水魚·芝草. 藥材, 黃芩. 鹽所一. 驛一, 加川. 牧場一. 【在縣西槐台吉串, 斗入水原南境, 周回七里. 今上十一年己酉, 始放典廐署牛隻, 水草饒美】 烽火一處, 槐台吉串. 【南準沔川明海山, 北準水原興天山】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양지현

◎ 양지현(陽智縣)

본래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 부곡(陽良村部曲)인데, 본조(本朝) 공정왕(恭靖王) 원년 기묘에 양지현으로 고쳐서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고,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쳐서, 현치(縣治)를 광주(廣州)의 임내(任內)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기었는데, 땅이 좁으므로, 광주의 임내(任內)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부곡(部曲)을 떼어서 이에 붙였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이천(利川)에 이르기 8리, 서쪽으로 용인(龍仁)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양성(陽城)에 이르기 35리, 북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가 3백 46호, 인구가 6백 단(單) 9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37명, 선군

(船軍)이 68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안(安)·박(朴)·유(柳)이고, 고안(高安)의 성(姓)이 1이니, 문(文)이며, 망성(亡姓)이 3이니, 박(朴)·이(李)·김(金)이다. 추계(秋溪)의 토성이 1이니, 안(安)이요, 망성이 2이니, 이(李)·지(池)이다. 간전(墾田)이 2천 68결(結)이요,【논이 좀 적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팥·뽕나무·삼[麻]이며, 토공(土貢)은 지초요, 약재(藥材)는 낙석(洛石)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현 남쪽 함항(檻項)에 있다】도기소(陶器所)가 1이다.【현 동쪽 신림리(新林里)에 있으니, 모두 하품(下品)이다】
◎ 陽智縣: 本水州屬陽良村部曲, 本朝恭靖王元年己卯, 改爲陽智縣, 始置監務.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縣監, 移縣治于廣州任內秋溪鄕, 以地窄, 割廣州任內高安·大谷·木岳·蹄村四部曲以屬之. 四境, 東距利川八里, 西距龍仁十里, 南距陽城三十五里, 北距廣州十里. 戶三百四十六, 口六百單九. 軍丁, 侍衛軍三十七, 船軍六十八. 土姓三, 安·朴·柳. 高安姓一, 文; 亡姓三, 朴·李·金. 秋溪土姓一, 安; 亡姓二, 李·池. 墾田二千六十八結. 【水田差少】 土宜五穀, 小豆·桑·麻. 土貢, 芝草. 藥材, 洛石. 磁器所一, 【在縣南檻項】 陶器所一. 【在縣東新林里, 皆下品】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충청도 / 청주목 / 평택현
◎ 평택현(平澤縣)
고려 때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직산(稷山)에 이르기 6리, 서쪽으로 직산에 이르기 8리, 남쪽으로 아산(牙山)에 이르기 10리, 북쪽으로 수원(水原)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가 1백 79호요, 인구가 7백 4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8명이요, 진군(鎭軍)이 3이요, 선군이 78명이다.
토성(土姓)이 4이니, 이(李)·임(林)·박(朴)·전(田)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손(孫)·전(全)이요, 촌성(村姓)이 1이니, 박(朴)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2천 2백 34결이요,【논이 5분의 3에 좀 넘는다】토의(土宜)는 벼·피·콩·보리·밀이다. 토공(土貢)은 족제비털[黃毛]이요, 약재(藥材)는 속서근풀[黃芩]이다.
역(驛)이 1이니, 화천(花川)이다.
◎ 平澤縣: 高麗時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縣監. 四境, 東距稷山六里, 西距稷山八里, 南距牙山十里, 北距水原十里. 戶一百七十九, 口七百四. 軍丁, 侍衛軍八, 鎭軍三, 船軍七十八. 土姓四, 李·林·朴·田; 亡姓二, 孫·全; 村姓一, 朴. 厥土肥堉相半, 風氣寒. 墾田二千二百三十四結. 【水田五分之三强】 土宜, 稻·稷·菽·牟麥. 土貢, 黃毛. 藥材, 黃芩. 驛一, 花川.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평안도 / 안주목
⊙ 안주목(安州牧)
사(使) 1인. 영변도 중익 병마(寧邊道中翼兵馬)를 겸한다. 판관(判官) 1인. 역시 중익 병마(中翼兵馬)를 겸한다.

본래 고려의 팽원군(彭原郡)인데, 태조(太祖) 14년 신묘에【당(唐)나라 장흥(長興) 2년】안북부(安北府)를 두고, 성종(成宗) 2년 계미에【송(宋)나라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영주안북 대도호부(寧州安北大都護府)로 고쳤으며, 현종(顯宗) 9년 무오【송나라 천희(天禧) 2년】에 안북 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로 고쳤다. 공민왕(恭愍王) 18년 기유에 안주 만호부(安州萬戶府)를 두고, 좌용(左勇)·우용(右勇)·좌맹(左猛)·우맹(右猛)·전용(前勇)·후용(後勇)·전맹(前猛)·후맹(後猛)의 8군(軍)에 각기 상·부천호(上副千戶)를 두었다가, 뒤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목(牧)으로 삼았다. 별호(別號)는 안릉(安陵)이다.【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속현(屬縣)이 1이니, 안융(安戎)이다.

가을두산(加乙頭山)【주(州) 동쪽에 있는데, 주인(州人)들이 진산(鎭山)으로 삼고 있다】대천(大川)은 청천강(淸川江)이다.【주성(州城) 북쪽을 둘러 있다. 예전에는 살수(薩水)라 일컬었으니, 곧 고구려 을지 문덕(乙支文德)이 수(隋)나라 장수 우문술(宇文述)·우중문(于仲文) 등 9 장군을 패퇴시킨 땅이다. 조준(趙浚)이 일찍이 시(詩)를 짓기를, "살수가 출렁출렁 푸른 하늘에 잠겼는데, 수병(隋兵) 백만이 고기가 되었구나. 지금도 아직 어초부(漁樵夫)의 이야기로 남아 있으나, 한갓 나그네의 웃음거리도 되지 못하네." 하였다】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개천(价川)에 이르기 25리, 서쪽으로 안융(安戎)에 이르기 37리, 남쪽으로 숙천(肅川)에 이르기 25리, 북쪽으로 박천(博川)에 이르기 2리이다.

호수가 2천 6백 90호, 인구가 8천 5백 67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백 50명, 익군(翼軍)이 4백 77명, 선군(船軍)이 1백 94명, 수성군(守城軍)이 61명이다.

입진성(入鎭姓)이 34이니, 오(吳)·최(崔)·김(金)【해주(海州)】·김(金)【교하(交河)】·강(康)【정주(靜州)】·서(徐)【성주(星州)】·김(金)·지(池)【수주(水州)】·서(徐)【봉성(峯城)】·문(文)【장연(長淵)】·박(朴)【교동(交同)】·노(魯)【진강(鎭江)】·장(張)【부령(扶寧)】·김(金)【수원(水原)】·송(宋)【용성(龍城)】·김(金)【안산(安山)】·김(金)【장사(長沙)】·이(李)【철야(鐵冶)】·한(韓)【재령(載寧)】·김(金)【광양(光陽)】·김(金)【온수(溫水)】·강(康)【남원(南原)】·견(甄)·문(文)【전주(全州)】·김(金)·방(方)·임(林)·최(崔)【풍주(豊州)】·오(吳)【해주(海州)】·송(宋)【송림(松林)】·민(閔)【동주(凍州)】·강(康)【등주(登州)】·이(李)【수안(遂安)】·강(康)【배주(白州)】이며, 안융현(安戎縣)의 입진성(入鎭城)이 2이니, 최(崔)·김(金)이다.

땅이 많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1만 2천 9백 80결이다.【논이 6분의 1이 넘는다】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삼·닥나무·왕골·배·밤이요, 토공(土貢)은 옻·지초·표범가죽·여우가죽·삵가죽이며, 약재(藥材)는 과남풀[龍膽]·검산풀뿌리[續斷]이다. 염소(鹽所)가 1이다.【가마[盆]가 11인데, 모두 주(州) 서쪽에 있다】

읍석성(邑石城)【둘레가 3천 3백 75보(步)이다】백상루(百祥樓)가 성(城) 가운데에 있다.【북쪽으로 청천강(淸川江)에 임한다. 누(樓)에 고려 충숙왕(忠肅王)의 어제시(御製詩)가 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청천강 위 백상루에 삼라만경(森羅萬景) 벌여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렵고, 풀은 멀리 긴 둑에 한 줄로 푸르렀다. 하늘로 뻗은 멧부리 천으로 줄지었고, 비단병풍 속을 나르는 외로운 따오기, 옥거울 속에 뜬 한 점의 작은 배라. 속세에 선경(仙境)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았더니, 밀성(密城)에서 오늘 영주(瀛州)를 보는구나." 하였다】

관(館)이 1이니, 안흥(安興)이다.【읍성(邑城) 안에 있다】봉화가 5곳이니, 성황당(城隍堂)【서쪽으로 청산(靑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박천(博川) 독산(禿山)에 응한다】·청산(靑山)【남쪽으로 소산(所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노근강(老斤江)에 응하고, 북쪽으로 정주(定州) 칠악산(漆岳山)에 응한다】·소산(所山)【동쪽으로 오두산(烏頭山)에 응한다】·오두산(烏

頭山)【남쪽으로 숙천(肅川) 통령산(通寧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노근강에 응한다】·노근강입소(老斤江立所)【남쪽으로 숙천(肅川) 여을외(餘乙外)에 응하고, 북쪽으로 정주(定州) 미륵당(彌勒堂)에 응한다】이다. 관방(關防)은 노근강이다.【안융현(安戎縣)에 있는데, 영변도 수군 첨절제사(寧邊道水軍僉節制使)가 비어한다】

관할[所領]은 도호부(都護府)가 2이니, 성천(成川)·숙천(肅川)이요, 군(郡)이 4이니, 자산(慈山)·순천(順川)·개천(价川)·덕천(德川)이요, 현(縣)이 4이니, 영유(永柔)·맹산(孟山)·은산(殷山)·양덕(陽德)이다.

⊙ 安州: 牧使一人, 兼寧邊道中翼兵馬; 判官一人, 亦兼中翼兵馬. 本高麗彭原郡, 太祖十四年辛卯,【唐長興二年】置安北府. 成宗二年癸未,【宋太平興國八年】改寧州·安北大都護府. 顯宗九年戊午,【宋天禧二年】改安北大都護府. 恭愍王十八年己酉, 置安州萬戶府·左勇右勇左猛右猛前勇後勇前猛後猛八軍, 各置上副千戶, 後改今名爲牧, 別號安陵.【淳化所定】屬縣一, 安加. 乙頭山.【在州東, 州人以爲鎭山】大川, 淸川江.【環州城北, 古稱薩水, 卽高麗乙支文德, 敗隋將宇文述·于仲文等九將軍之地. 趙浚嘗題詩云: "薩水湯湯漾碧虛, 隋兵百萬化爲魚. 至今留得漁樵話, 不滿征夫一笑餘."】四境, 東距价川二十五里, 西距安戎三十七里, 南距肅川二十五里, 北距博川二里. 戶二千六百九十, 口八千五百六十七. 軍丁, 侍衛軍一百五十, 翼軍四百七十七, 船軍一百九十四, 守城軍六十一. 入鎭姓三十四, 吳·崔·金·【海州】　　金·【交河】康·【靜州】徐·【星州】金·池·【水州】徐·【峯城】文·【長淵】朴·【交同】魯·【鎭江】張·【扶寧】金·【水原】宋·【龍城】金·【安山】金·【長沙】李·【鐵冶】韓·【載寧】金·【光陽】金·【溫水】康.【南原】甄·文·【全州】金·方·林·崔·【豐州】吳·【海州】宋·【松林】閔·【凍州】康·【登州】李·【遂安】康·【白州】安戎縣入鎭姓二, 崔·金. 厥土多埴, 墾田一萬二千九百八十結.【水田六分之一强】土宜五穀, 桑·麻·楮·莞·梨·栗. 土貢, 漆·芝草·豹·狐狸皮. 藥材, 龍膽·續斷. 鹽所一.【盆十一, 皆在州西】邑石城.【周回三千三百七十五步】百祥樓在城中.【北臨淸川江. 樓有高麗忠肅王禦製詩曰: "淸川江上百祥樓, 萬景森羅未易收. 草遠長堤靑一面, 天低列岫碧千頭. 錦屛影裏飛孤鶩, 玉鏡光中點小舟. 未信人間仙境在, 密城今日見瀛州."】館一, 安興.【在邑城內】烽火五處, 城隍堂【西準靑山, 北準博川禿山】靑山·【南準所山, 西準老斤江, 北準定州漆岳山】　　所山·【東準烏頭山】烏頭山·【南準肅川通寧山,西準老斤江】老斤江立所.【南準肅川餘乙外, 北準定州彌勒堂】關防, 老斤江.【在安戎縣, 寧邊道水軍僉節制使備禦】所領都護府二, 成川·肅川. 郡四, 慈山·順川·价川·德川. 縣四, 永柔·孟山·殷山·陽德.

문화/지리·경관

지리지 / 평안도 / 의주목 / 용천군

◎ 용천군(龍川郡) : (…)　진성(入鎭姓)이 6이니, 최(崔)【전주(全州)】·석(石)【충주(忠州)】·강(康)【영광(靈光)】·서(徐)【안산(安山)】·변(邊)【광주(廣州)】·여(呂)【곡성(谷城)】이며, 용주 이언(龍州伊彦)의 입진성(入鎭姓)이 8이니, 염(廉)【용담(龍潭)】·오(吳)·최(崔)【해주(海州)】·한(韓)【장사(長沙)】·안(安)【수원(水原)】·조(趙)【임주(林州)】·오(吳)【덕안(德安)】·장(張)【장연(長淵)】이다.(…)

◎ 龍川郡: (…)入鎭姓六, 崔【全州】·石【忠州】·康【靈光】·徐【安山】·邊【廣州】·呂【谷城】龍州伊彦入鎭姓八,廉【龍潭】·吳·崔【海州】·韓【長沙】·安【水原】·趙【林州】·吳【德安】·張【長淵】(…)

5. 화성(華城)

⑴ 시설

화성/시설

이문원에 보관한 공자의 영정을 화성 궐리사로 옮기다

이문원에 보관되었던 공자의 진본(眞本)을 **화성의 궐리사(闕里祠)**에 옮겨 모셨다.

○移奉摛文院藏奔孔聖眞本于**華城**闕里祠.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6월 24일(을유) 6번째기사>

화성/시설

화성의 성곽과 궁실, 장용영 둔전에 대한 어사의 장계를 가상하게 여기다

상이 경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화성과 관계되는 일에는 참으로 내가 온 정성을 다 쏟았다**. 성곽과 궁실을 보기에 웅장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대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는 자가 혹 지나치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절목에서 조치를 하는 여러 가지도 또한 어찌 모두가 아주 잘 되었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참으로 소견이 있다면 본대로 다 말하는 것을 탓할 게 뭐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즐겨 듣고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임장원(任長源)과 같은 자도 모두 너그럽게 받아들여 용서한 뒤에야 내가 석년(昔年)에 아름다움을 돌리는 일이나 경들이 내게 아름다움을 돌리는 일이 모두가 여기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는 문호를 활짝 열어 사람마다 말을 다하게 할 수 있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어사의 계문에 화성의 폐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숨김없이 거론한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장영(壯營)을 설치한 일은 옛 제도를 본받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근래에는 처음으로 보는 일이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였다. 상호군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들을 만약 참으로 공평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신들이 어찌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만, 매양 평탄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장원의 상소는 그 속뜻이 어찌 일을 가지고 일을 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따름이겠습니까. 어사의 논계는 들은 대로 폐단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에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설령 그 말이 일을 가지고 일을 논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더라도 또한 해로울게 뭐가 있겠는가. 예전에 궁방(宮房)이 폐단이 될 당시에 바른말할 책임을 맡은 신하들이 궁방에 대해 언급하기를 매양 어렵게 여겼었다. 오늘날의 **장영**이 바로 이 일과 같다. 고 참판 이광덕(李匡德)이 일찍이 전라 감사로 있을 때에 **건지산(乾止山)**을 떼어 주는 문제로 계문하여 쟁집한 적이 있었는데, 건지산은 도신이 수호하는 지역과 관계가 있었다. 오늘날의 **장영**이야 또한 어찌 감히 이러한 곳까지 의논이 미칠 수가 있겠는가. 궁방이 지녔던 권세를 대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는데, 정민시가 아뢰기를,

"이전에 산골 고을의 폐단은 오로지 궁방이 지역을 떼어받는 일에 있었는데, 어느 곳이든 가릴 것 없이 신청을 하면 반드시 떼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영은 한번 둔전을 설치하려고 했다가는 곧바로 또 내놓아야 하니, 어찌 궁방과 견주어 논할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사가 논계한 별단 가운데의 여섯 조항에 대해서는, 유사 당상이 한 본을 해당 유수에게 베껴 보내고 그대로 속히 올라오게 한 다음, 대신들이 본사에 모여 서로 의논해서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上, 謂筵臣曰: “事關華城, 固予所盡誠處. 而城郭宮室之不得不壯其觀瞻, 蓋亦有意存焉. 然而見之者, 或以爲過, 旣非異事. 至於節目間措置之諸節, 亦安能保其盡善? 則苟有所見, 何害其隨事盡言乎? 語到此事, 必樂聞而虛受. 如任長源者, 亦皆優容假借, 然後予所以歸美於昔年, 卿等所以歸美于予者, 亶在於此. 洞開不諱之門, 俾得人人盡言, 豈不好哉? 今此繡啓之於華城弊端, 歷擧無隱者, 甚可嘉也. 至於壯營設置, 固出於倣古制, 而亦是近俗所創見之事, 人之云云, 亦無足怪矣.” 上護軍鄭民始曰: “此等處, 若果平心說去, 則臣等豈不樂聞, 而每以不平坦之心, 架作不成說之說. 如任長源之疏, 其旨意, 豈止就事論事而已乎? 至於繡啓, 不過隨聞說弊. 此等之言, 顧何傷乎?” 上曰: “假使其言, 不止於就事論事, 亦何妨也? 昔在宮房爲弊之時, 言事之臣, 每以語及宮房爲難事. 今之壯營, 正如是矣. 故參判李匡德, 曾爲完伯時, 以乾止山折受事, 有所啓聞爭執, 而乾止係是道臣守護之地. 則今之壯營, 亦何敢議到於此等處乎? 宮房之有勢, 蓋可想見矣.” 民始曰: “在前峽邑之弊, 專由於宮房之折受, 而無論某處, 有請必得. 至於壯營, 則一欲設屯, 輒又見失, 何可與宮房同日而論乎?” 上曰: “繡啓別單中六條, 有司堂上, 謄送一本於該留守, 仍令催促上來後, 大臣會于本司, 相議稟處.”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1799) 5월 9일(병인) 3번째기사>

화성/시설

좌의정 이시수 등이 화성의 화령전 기지를 살피고 보고하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예조 판서 한용귀(韓用龜)·관상감 제조 이서구(李書九)·**화성 유수 이만수(李晩秀) 등이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화성(華城)의 화령전(華寧殿) 기지(基址)를 간심(看審)하였는데**, **강무당(講武堂)**에서 남쪽으로 77보, **낙남헌(洛南軒)**에서 북쪽으로 79보가 되는 유좌 묘향(酉坐卯向)이 길지(吉地)라 하여 도형(圖形)을 그려서 바쳤다.

○左議政李時秀·禮曹判書韓用龜·觀象監提調李書九·華城留守李晩秀等率相地官看審華城華寧殿基, 以講武堂南七十七步, 洛南軒北七十九步酉坐卯向爲吉, 圖形以上.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1801) 1월 29일(병오) 5번째기사>

⑵ 행궁

화성/행궁

현륭원에 배알하려고, 화성 교귀정을 지나 행궁에 이르러 밤을 지내다

장차 현륭원(顯隆園)에 배알하려고 어가가 화성(華城) 교귀정(交龜亭)에 이르러 우의정 윤시동에게 이르기를,

"관개(灌溉)하는 이익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 못을 파면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앞들판에서 수확한 것이 이미 1천 곡(斛)이 되었다."

하고는, 인하여 정자[亭]를 '영화(迎華)'로, 야(野)를 '관길(觀吉)'로, 평(坪)을 '대유(大有)'로, 도랑[渠]을 '만석(萬石)'으로 각각 명명하고 비석을 세워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행궁(行宮)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丁卯/將謁顯隆園, 駕至華城交龜亭, 謂右議政尹耆東曰: "灌溉之利, 不已博乎? 自鑿斯池也, 未過一年, 前坪所收, 已爲千斛." 仍賜亭名曰迎華, 野曰觀吉, 坪曰大有; 渠曰萬石, 命伐石以識之. 至行宮經宿.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0일(정묘) 1번째기사>

화성/행궁

성을 순행하고 행궁에 돌아오다

상이 성을 순행하였다. 화양루(華陽樓) 북쪽에서 시작하여 화서루(華西樓)를 지나 공심돈(空心墩)에 이르러 각신(閣臣)과 승지에게 이르기를,

"공심돈은 우리 동국(東國)의 성제(城制)에서는 처음 있는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마음껏 구경하라."

하였다. 장안문(長安門)을 지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 이르러 조그만 과녁을 설치하고 임금이 화살 삼순(三巡)을 쏘아 삼시(三矢)를 맞힌 뒤 각신(閣臣)과 장신(將臣)에게 짝지어 활을 쏘라고 명하였다.

상이 정자 아래에서 백성들이 꽉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을 보고 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명하여 그중에 활을 잘 쏘는 자를 뽑아서 활쏘기를 시험하게 한 다음 1등을 한 1인에게 바로 전시(殿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풍악을 내려서 보내었다. 여러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고 임금이 칠언 소시(七言小詩)를 지은 뒤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광주 유수(廣州留守) 서유린(徐有隣)에게 이르기를, "고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말하기를, '훈련 도감에서 경기 지방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훈국의 군사 1만 명 중 5천 명은 서울에서 조련하고 5천 명은 둔전에 나가 경작하게 하여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하는 의의를 살려야 한다.' 고 하였는데, 그 취지가 매우 좋았으나 중지되어 실행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장용영(壯勇營)에 대하여 이 제도를 대략 모방해 경기의 고을에 향군(鄕軍)을 설치하여 일영 오사(一營五司)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대개 서로 빙 둘러싸고 수레바퀴와 덧방이 서로 도와주는 것과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던 것이다. 원소(園所)에 행차할 때 본부(本府)의 5개 초군(哨軍)만으로 돌아가며 어가를 따르게 할 경우 항오(行伍)가 단약(單弱)하고 군용(軍容)이 미비하다. **그래서 수어청의 출진(出鎭)하는 군제를 바로잡아 고칠 때 여정(餘丁) 8백여 인이 남기에 연(輦)이 지나가는 광주(廣州)·시흥·과천 및 화성의 속읍(屬邑)인 용인(龍仁)·안산(安山) 등지의 길에 6개 초(哨)를 설치**

하였다가 어가가 지나갈 때 징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어청의 소관으로 선혜청에 떼어 놔둔 쌀 1천 석과 돈 3천 냥을 본영(本營)에 갈라 주어 상번(上番)하는 군인의 급료에 쓰게 하고, 이어서 향군이 있는 각 고을에 둔전을 설치하여 그 세입(稅入)으로 군인들이 왕래할 때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으로 삼으려 하였다. 먼저 산 토지에서의 소출이 군수(軍需)로 들어가는 비용에 맞먹는가?"
하니, 유린이 대답하기를,
"광주 둔전의 수입은 부족할 염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더 사들여야만 수입과 쓰임이 비로소 같게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영(本營)에 향군(鄕軍)을 설치한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최초에 양근(楊根)·가평(加平)·지평(砥平)에 먼저 2개의 초(哨)를 내었는데, 이는 둔전이 군인들의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다. 파주(坡州)에 또 1개의 초를 내었는데 양근 등 세 고을의 예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토지가 너무 적고 군인들도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는 자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자는 스스로 지을 수 없다. 이것은 벌써 세 고을의 예와는 좀 달라진 것이다. 그 뒤 또 양주(楊州)에 1개의 초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모든 일은 대뜸 세력이 있는 백성들에게 동요되고 만다. 양주에는 서울의 사대부 토지가 많아서 사들이기로 결정하여 값을 치르기도 전에 반드시 먼저 소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부득이 우선 늦추면서 차츰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경기 감영의 무조(貿租)할 것 중에서 약간의 돈을 떼어내어 경기 고을의 환모(還耗)를 바꾸어서 1개 초군(哨軍)을 먹일 방도로 삼았다. 그 뒤 고양(高陽)에 또 1개의 초를 두고 총융청의 법외(法外)의 보군(保軍)을 참작해 감한 뒤 거두어들인 신전(身錢)의 여분으로 먹일 방도를 삼았으며, 그 뒤 또 **수원**에 5개의 초를 설치하고 3만 냥의 공화(公貨)를 나누어주어 해도(該道)의 좁쌀 1만 석을 사들여서 모곡을 취하여 먹이도록 하였다.
대체로 양주·고양·**수원**의 군대를 먹이는 데에 쓰이는 군수(軍需)의 조달 방법은 그 명분이 나의 본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최초에 양근 등의 고을에 설치하였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공사간(公私間)의 용도를 모곡으로 시작하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쥐나 새가 축낸 모곡을 관장(官長)이 주관하는 것도 이미 매우 구차한 일인데 하물며 나라이겠는가. 이것을 한번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대에 올랐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성제(城制)가 고루(固陋)하여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본래부터 치첩(雉堞)의 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정승 김종서(金宗瑞)가 쌓은 종성(鍾城)의 성제가 유일하게 중국의 제도를 대충 모방하였는데, 그 형상이 규형(圭形) 같고 안이 상당히 넓고 위는 처마를 얹은 듯하여 내려다보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이 역시 치첩의 제도만은 못하다. 대개 옛날의 성 제도는 치첩으로 첫째를 삼았을 것인데, 우리 나라의 성은 전체가 둥글어서 모서리가 없다. 그래서 성 위에 담벼락처럼 죽 둘러서서 지켜야만 비로소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새로 쌓은 성은 처음으로 치첩의 제도를 도입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따로 모서리를 만들어 성 전체를 싸안았으므로, 매 치첩에 두서너 사람만 세우더라도 좌우를 살피기에 편리하여 적의 동태를 엿보기 쉽고, 밑에서 쳐다보면 도리어 치첩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분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제야 우리 나라도 성의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초루(譙樓)나 돈대(墩臺) 등속은 가끔 엉뚱한 모양만 낸 것 같아서 실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유수(留守)와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이 다투어 논란하던 것으로 결국 도청의 주장에 따

라 시행하게 되었지만 나의 본뜻은 아니다." 하였다.
각건대(角巾臺) 앞길을 거쳐서 **창룡문(蒼龍門)**의 곡성(曲城) 밖으로 나가 남수문(南水門)의 초돈(譙墩) 윗길을 지나 팔달문(八達門)에 이르러서 문루(門樓)에 올라 쉬고는 **서장대(西將臺)**에 이르러 대 뒷쪽의 소랑(小廊)에 들러서 신하들에게 식사를 베풀었다.
밤에는 장대(將臺)에 올라 연거(演炬)를 관람하였다. 선전관이 꿇어 엎드려서 아뢰고 나서 신포(信炮) 세 발을 터뜨리고 횃불 세 개를 붙여서 올리자 대 위에서 네 개의 횃불을 올리면서 모든 성가퀴에서 일제히 횃불을 올렸다. 호포(號炮)를 한 방 터뜨리고 천아성(天鵝聲)을 불고는 횃불을 점호하며 납함(吶喊)하기를 세 차례 하였다. 그리고는 지금(止金)으로 일호(一號)를 장(掌)하고 이호를 장한 뒤 연거가 끝났다.
행궁에 돌아와서 하교하기를, "**화성 서장대에서 오늘 밤 훈련은 생략하고 연거(演炬)별로 호령만 실시하였지만 응접(應接)함이 격식에 맞고 구율(轂率)에 차착(差錯)이 없었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이 성의 정군(丁軍)으로 단속이 잘 된 입방군(入防軍)과는 더욱 다르다. 그런데도 이처럼 잘 익숙히 훈련되었으니, 장수에 적임자를 얻은 효과를 보게 되어 매우 가상하나 이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이다. 그리고 조련이 있기 전에 새 성을 두루 둘러보았는데 공로가 크고 많다. 어찌 말을 달려 전쟁한 공로에 뒤지겠는가. **화성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특별히 전지와 백성을 떼어준다.** 성첩이 완성되었으므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게 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戶戶富實 人人和樂]'의 여덟 글자이다. 잘살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강구하여 마련하는 중이다.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또한 사람을 화락하게 하는 한 방법이니,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당년의 군향곡(軍餉穀)과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耗穀)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토록 하라." 하였다.
○上巡城. 自華陽樓北, 巡歷華西樓, 至空心墩, 謂閣臣承旨曰: "空心墩, 卽我東城制之初有者. 諸臣可縱觀之." 歷長安門至訪花隨柳亭, 設小的, 御射三巡, 獲三矢, 命閣臣將臣耦射. 上, 見亭下民庶環擁瞻旄, 命**水原府留守**趙心泰, 選其能射者試射, 取居魁一人, 許赴殿試, 賜樂出送. 宣醞于諸臣, 御製七言小詩, 命諸臣賡進. 謂廣州留守徐有隣曰: "故相柳成龍謂: '訓鍊都監, 宜開屯於京畿地方, 而訓局軍萬名中五千名, 在京操鍊, 五千名赴屯耕作, 以爲兵農相寓之義.' 其意甚好, 而寢不行, 誠可惜也. 予於壯勇營, 略倣此規, 設置鄕軍於畿邑, 爲一營五司之制, 蓋出於環連拱抱輔車相須之意也. 園幸時, 只以本府五哨軍, 輪回隨駕, 則行伍單弱, 軍容未備. 守禦廳出鎭軍制釐正時, 有餘丁八百餘名, 故設六哨於輦路所經廣州·始興·果川及**華城**屬邑龍仁·安山等地, 駕過時使之徵發陪扈. 仍以守廳所管惠廳除留米一千石, 錢二千兩, 劃屬本營, 以爲上番軍支放之需, 仍設置屯田於鄕軍所在之各邑, 以其稅入, 爲其軍來往時糧饌及服色之費矣. 先買土地, 所出果與軍需容入, 相當乎?" 有隣曰: "廣州屯田所(需)〔收〕, 有不足之慮, 如干加買, 然後所收與容入, 始可相當矣." 上曰: "本營鄕軍之設施, 意義有在. 最初楊根·加平·砥平, 先出二哨, 而此則屯田在於渠輩門前, 故足爲兵農相寓. 坡州又出一哨, 欲用楊根等三邑之例, 則土地甚少, 且軍人散在各處, 近者雖自治田, 遠者不能自作. 此則已稍異於三邑之例矣. 其後又置楊州一哨. 而我國凡事, 輒爲大民所撓. 楊州則多有京華士夫之土地, 決買給價之前, 必先紛撓, 不得已姑徐之, 以爲漸次經始之計. 而就畿營貿租條中, 劃出若干錢, 貿取畿邑還耗, 以爲一哨軍接濟之道. 其後又置高陽一哨, 以摠戎廳法外保軍量減後, 所收之身錢餘者, 爲接濟之道, 其後又置水原五哨, 劃給三萬兩公貨, 貿取該道小米萬石取耗, 而使之接濟. 大抵楊州·高陽·水原軍接濟之需, 其名色非但非予之本意, 亦不及於最初楊根等邑設施之規, 容俟來頭, 不可不釐正. 而凡公私需用之必着手於耗穀者, 大非好道理.

雀鼠之耗, 官長之主管, 已極苟且, 況朝家乎? 此不可不一番釐正矣." 詣東將臺, 御臺. 上, 謂諸臣曰: "我國城制固陋, 勿論京外, 元無雉堞之制. 獨故相金宗瑞所築鍾城城制, 略倣華制, 其形如圭, 內頗空闊, 上如加簷, 便於頫視. 而猶不如雉之爲制. 蓋古之城制, 當以雉堞爲第一, 而我國之城, 則全體周圓, 無模稜. 故埤堄堞堞, 環立守之, 然後始可禦賊. 而今此新城, 創爲雉制, 計以步數, 別成廉角, 環包體城, 每雉雖立數三人, 便於左右望, 而易以覘賊, 自下視之, 亦不分守堞人之多少. 今而後, 我國始可曰有城制. 但譙樓墩臺之屬, 往往有近於奇巧, 不適實用. 此則留守與都廳李儒敬爭難, 畢境都廳之說得行, 非予之本意也." 由角巾臺前路, 出蒼龍門曲城外, 歷南水門譙墩上路, 至八達門, 御門樓暫憩, 至西將臺, 御臺後小廊, 宣飯于諸臣. 夜御將臺, 觀演炬. 宣傳官跪啓稟, 放信炮三聲, 擧起火三枝, 臺上燃四炬, 各埤一時燃炬. 擧號炮一聲, 吹天鵝聲, 點炬吶喊, 共三次. 止金掌一號, 掌二號演炬畢. 還行宮, 敎曰: "華城西將臺, 今日夜操, 爲其省略, 只行演炬別號令, 而應接若式, 轂率不差. 況此類皆是城丁軍, 尤異於入防軍. 團束其能如是, 鍊熟可見, 將得其人之效, 雖甚可嘉, 猶屬餘事. 且於操前, 遍觀新城, 勞多功鉅. 豈讓汗馬? 華城留守趙心泰, 特賜田民. 城堞旣完, 目今第一義, 卽戶戶富實, 人人和樂八箇字. 富之之術, 方與廟堂諸臣講磨. 而蠲惠之方, 亦屬人和中一事, 城內外居民, 當年餉與還, 特竝除耗, 以副渠輩望幸之情."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1월 29일(경오) 2번째기사>

화성/행궁

현륭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올리고 저녁에는 화성 행궁에 머물다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올렸다. 상이 원사(園司) 조용진(趙用鎭)에게 이르기를, "능원(陵園)의 제도에 더러 왼쪽을 비워 놓고 동봉(同封)하지 않는 일도 있으나, 나는 남다른 정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후일에 상례(常例)를 따르지 않으려고 회격(灰隔)은 만석(蔓石)까지만 하고 복부형(覆釜形) 이상은 당초에 석회를 쓰지 않아서 왼쪽은 곧 전지(全地)이다. 그런데 난간석(闌干石)이 더러 작은 틈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용진이 아뢰기를, "석물(石物)은 오른쪽에 힘을 썼기 때문에 왼쪽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난간석이나 병풍석 등에 대하여 선조(先朝)의 금령(禁令)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최고의 제도를 쓰려다 보니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어 지경 안에 심은 나무를 두루 돌아보고 성황산(城隍山) 밑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여러 신하들에게 식사를 하게 했다. 저녁에는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
○辛未/詣顯隆園, 酌獻禮. 上, 謂園司趙用鎭曰: "陵園之制, 雖或虛左, 未嘗同封, 而予則情理有所自別. 故爲日後, 欲不用常例, 灰隔只限蔓石, 覆釜形以上, 初不用石灰, 左邊卽是全地. 而闌干石或有微隙, 何也?" 用鎭曰: "石物, 用力於右邊, 故左邊亦不得不然." 上曰: "闌干屛風等石, 雖有先朝禁令, 而以予無不用極之意, 不得遵守矣." 仍周審局內植木, 至城隍山下, 設帟幕, 宣飯于諸臣. 夕次華城行宮.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1월 30일(신미) 1번째기사>

화성/행궁

비변사가 올린 삼포 절목에 관해 논의하다

(…) "삼포(蔘包)의 절목에 대한 일을 일전에 빈대(賓對)에서 하문하려고 하였다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다. 대저 삼이 귀해지면 은을 사용하고 은이 귀해지면 삼을 사용하는 것이 명분도 올바르고 일도 편리하니 진실로 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또 몰래 월경하는 폐

단은 이미 통렬하게 금지하기 어려우니 그 이권(利權)을 아래로 일임하여 기강이 엄격해지지 않는 것보다는, 진실로 그 무역하는 길을 열어 재화를 통제하는 권한이 조정에서부터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는 또 변금(邊禁)을 거듭 엄격히 하는 데 일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역설배(譯舌輩)의 이해는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한다. 생각건대, 그 절목 가운데 홍삼·조삼 및 방외의 15인에게 계(契)를 만들게 한다는 등의 말은 체면상 구애됨이 있다. **화성(華城)에서 차자로 중지하도록 청한 뜻과는 서로 반대가 될 뿐만이 아니다. 화성은 새로 설치한 아문(衙門)이며 겸하여 소중한 행궁(行宮)이 있다**. 1백 리나 되는 넓은 들판에 단지 하나의 큰 성첩(城堞)만 쌓고서 그 가운데를 텅 비게 한다면 어찌 후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한때 임시 편의의 계책을 쓰는 것은 이 성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러나 여러 도의 조세(租稅)를 옮겨다 쌓고 군현의 호걸들을 옮겨다 살게 하며 사방의 장용(壯勇)을 선발하여 채운다면 바로 내상(內相) 육지(陸贄)가 이른바 '지금의 관중(關中)이 바로 옛날의 방기 천리(邦畿千里)이다.' 고 한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관중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이 성이겠는가. 그런데 저쪽에 대해서는 경이 상도(常道)를 지키도록 논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경이 곧 말을 뒤집으니, 이것이 그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하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까닭이다. **화성의 편의를 위한 임시 방편도 오히려 그것이 권리(權利)에 가까울까 염려해서 계(契)를 만드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익을 오로지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더구나 당당하게 교린(交隣)하며 통화(通貨)하는 행정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은 저들에게 성신(誠信)을 보이고 변상(邊上)에 기강(紀綱)을 세우는 것이니, 삼(蔘)이 천하면 삼을 사용하고 은(銀)이 천하면 은을 사용할 따름이다. (…)

○(…) "蔘包節目事, 欲爲下詢於日前賓對而未果矣. 大抵蔘貴則用銀, 銀貴則用蔘, 名正事便, 固無難行. 且潛越之弊, 旣難痛禁, 則與其一任利權之下移, 紀綱之不嚴, 固不若開其貿易之路, 使制貨之權, 出自朝廷? 亦或爲申嚴邊禁之一助. 譯舌輩利害, 猶屬餘事. 第其節目中紅蔘·造蔘及方外十五人作契等語, 有礙事面. 與**華城**蔘帽事, 卿箚請寢之意, 不啻相反. **華城**, 以新設衙門, 兼有行宮所重. 百里曠野, 只築一大城堞, 而枵然空其中, 則豈不爲後人之笑乎? 一時權宜之策, 在此城, 則有不可顧. 轉諸路租稅以委之, 徙郡縣豪傑以處之, 選四方壯勇以實之, 卽陸內相所謂: '今之關中, 卽古之邦畿千里也.' 關中猶然, 況此城乎? 然而在彼卿守經論, 在此卿乃反說, 此所以究其說而不得者. 爲**華城**便宜之權道, 猶慮其近於權利, 而不許作契, 勿令專利, 況於堂堂交隣通貨之政, 所貴示誠信於彼中, 立紀綱於邊上, 而蔘賤則用蔘, 銀賤則用銀而已. (…)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6월 25일(갑오)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의 행궁에 갔다가 몸이 편찮아지다

대가가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갔다. 상이 편찮으시자, 대신·각신·약원 등이 안부를 물으며 유여택(維與宅)에 입시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조종(祖宗)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신다면 어찌 예절에 구애되어 성체 보호하시는 도리를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재전(齋殿)인데 성상의 행차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원소(園所)만 바라보시어도 성상의 사모하시는 마음을 이미 풀으셨을 것인데, 어찌 꼭 재소(齋所)까지 나아가시어 몸소 작헌(酌獻)의 예를 행하신 다음에야 정성을 폈다고 이르겠습니까. 내일 있을 전배(殿拜)를 우선 정지하시고, 성상의 기후가 쾌차하시기를 기다려서 곧바로 환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년 이 행차 때마다 일찍이 한 번이라도 무병하게 왕래한 적이 있었던가. 사세가 그러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몸이 불편하다 하여 번번이 물려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원침(園寢)을 참배하는 것에 관계되는 일인데, 어찌 감히 일호라도 겉치레로 할 수 있겠는가. 병이 만일 억지로 하기 어렵다면 곧바로 환궁하는 것도 안될 것이 없겠지만 만일 억지로라고 할 만하다면 기왕 이곳에 와놓고 감히 몸소 전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배의 날짜를 우선 물려 정하라.” 하였다.

○乙未朔/駕詣**華城**行宮. 上候未寧, 大臣·閣臣·藥院承候, 入侍于維與宅. 左議政蔡濟恭曰: “聖上, 以陟降之心爲心, 則豈可拘於禮節, 不思所以保嗇之道乎? 此地便是齋殿, 鑾蹕戾止, 瞻望珠丘, 聖慕已伸, 何必駕詣齋所, 躬行酌獻, 然後謂之展誠乎? 明日展拜, 姑爲停止, 待聖候復常, 直爲回鑾好矣.” 上曰: “每年此行, 何嘗有無病往來之時乎? 事勢不能不然, 何可以氣不平, 番番退行也? 事關拜園, 何敢一毫或涉於文具? 如難强, 直爲回鑾, 無所不可, 如可强, 旣到此地, 敢不躬展? 日字姑爲退定.”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1일(을미)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의 백성들에 대한 전세 감면을 의논하다

유사(有司) 제신(諸臣)을 행궁에서 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침(園寢)을 받들어 모셔온 지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부(府)와 이곳 백성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베풀지 못한 것이 어찌 나의 본의이겠는가. 성지(城池)가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결국 민심이 절로 성(城)을 이루는 것만은 못한 것이니, 민심이 튼튼해진 다음에야 공호(拱護)를 오로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주(楊州)·고양(高陽) 등 능침 모신 곳들에 대하여 열성조에서 전세(田稅) 감면의 혜택을 내려주신 것이 또한 오늘날에 내가 우러러 계승해야 할 한 가지 일이다. 그런데 모곡을 면제해주는 한 가지 일은 생각해온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껏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을 설치할 때에 이것을 **화성**에 붙여서 모곡을 면제해주고자 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각도에 나누어주고 말았었다. 그런데 정리곡을 설치한 것이 비록 자혜(慈惠)를 널리 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3백여 주군(州郡)에 포치(布置)해 두고 보면, 이것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즈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런 명색(名色)을 가지고 일호라도 폐단을 끼치는 단서가 있게 되면 이는 대단히 나의 본의가 아니다. 애당초 정리곡이라 이름하였고 보면 다시는 모곡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내가 처음에 이를 설치한 뜻이다. 그러니 이제 이 곡식을 서로 전환(轉換)시켜 본부(本府)의 곡식 이름을 정리곡으로 고쳐서 인하여 그 모곡을 면제해 주어서, **화성 한 부(府)로 하여금 영원토록 모곡의 명색이 없도록 한다면 화성의 백성들에게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제신 중에 혹자는 ‘모곡 전체를 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지출을 계속 대기가 어려우니 의당 모곡의 절반만 감해야 한다.’고 말하여,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

○召見有司諸臣于行宮. 上曰: “陪奉園寢, 今爲十年, 尙無惠澤之及於是府是民者, 此豈本意也哉? 城池雖完, 終不若衆心之成城, 民心固然後, 拱護可專. 楊州·高陽等陪奉陵寢處, 列聖朝蠲除田稅之惠澤, 亦是今日之仰述之一端. 除耗一事, 入量者已久, 尙未能斷而行之. 乙卯整理穀設置時, 欲爲屬之**華城**, 仍欲除耗而因諸議不一, 不得已分給各道. 本事雖出廣慈惠之意, 布置三百州郡, 斂散之際, 不無弊端, 因此名色而有一毫貽弊之端, 則大非予本意. 名以整理穀,

則不復取耗者, 乃予設置之初意也. 乃以此穀, 互相轉換, 本府穀名, 改以整理, 仍除其耗, 使華城一府, 永無耗穀名色, 則在華民爲莫大之惠矣." 諸臣或言 '當減全耗', 或言 '支放難繼, 當減半耗', 議不一.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2일(병신) 2번째기사>

화성/행궁

현륭원에 나아가 친제를 행하다

상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므로, 현륭원에 나아가 친제(親祭)를 행하고 현륭원 위를 봉심한 다음, **화성의 행궁에 돌아와 머물렀다.**

○戊戌/上候漸復, 詣顯隆園, 行親祭, 奉審園上, 還次華城行宮.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4일(무술) 1번째기사>

화성/행궁

헌납 임장원이 국가 인륜 도덕의 형성과 임금이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해 상소하다

헌납 임장원(任長源)이 상소하기를, "신이 어리석으나마 나름대로 생각건대, 흉년도 걱정할 것이 못되고 재이(災異)도 신경쓸 일이 못되며 오직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타락한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하겠는데, 왜냐하면 본원(本原)이 일단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일들이야 알만하기 때문입니다.

대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보편적 정서라 할 것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 못한 채 혼동하고 있고, 음(陰)을 억누르고 양(陽)을 북돋우는 것이 군자가 행해야 할 정론이라 할 것인데 이 시대의 선비들은 음양을 구별하지 못한 채 뒤섞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의(節義)라는 한 조목이 세상으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어 있고 풍천(風泉)이라는 두 글자를 어디에서고 들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간혹 하나나 반 개쯤 이러한 경계에 어렴풋이 방물한 것이 나오기라도 하면 번번이 무리를 지어 배척하고 떼거지로 떠들면서 광망(狂妄)하고 기괴한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大勢)에 압도당하여 모두들 바람에 쓸리듯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을 때는 교언 영색(巧言令色)으로 의표(儀表)를 삼고 조정에 서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규구(規矩)로 삼고 있는데도 온 세상이 모두 그러하여 어떻게 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는 것이라곤 이욕(利慾)이요 바라는 것은 요행뿐으로서 평소 역린(逆鱗)을 건드리며 용안(龍顔)을 범하는 신하가 이미 없게 되었으니, 뒷날 절의에 몸바쳐 죽는 인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 5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봄에 역마(驛馬)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그때 길에서 본 소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치고 어느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역부(驛夫)는 피곤하고 고달픈 기색이 역력하였고 관예(官隷)에게서는 간악한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가도 드물어 아주 적었고 10에 7, 8은 도망가거나 이사를 하였는데 천 마리의 메추라기와 백 마리의 고니떼들이 이동하듯 그 나그네 행색이 처량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성대(聖代)의 온화한 기상이 못되는 것으로서 반쯤은 쇠세(衰世)의 쓸쓸한 기색이 엿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華城)에 접어들면서는 황홀하게도 천하의 위대한 경관(景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산천이 빛을 다투고 초목이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었으며 으리으리한 누대(樓臺)와 장엄한 성곽(城郭)도 귀신이 역사(役事)를 하지 않았으면 하늘이 만들어 준 것만 같았는데,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아랫사람의 재물을 축내지도 않고서 천고(千古)에 뛰어나게 웅대한 규모를 과시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모하는 우리 성상의 인충(仁衷)한 덕성에서 우러나와 만들어진 것이고 보면, 온갖 꽃 만발한 봄 동산이 모두 화공(化工)의 원유(園囿)요 일만 강에 비친 달도 태극(太極)의 권점(圈點) 아닌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천하를 위하여 그 일을 검박(儉朴)하게 하지 않는다.' 는 말로만 그칠 성격의 것이 아니니, 성민의 효심이 훌륭하다 하겠는데, 그래서 효를 행하는 의리에 대해서는 도(道)를 아는 자와만 비로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귀신들이 꽉 차게 늘어 서 있는데 어찌 감히 아첨을 하겠으며 어찌 감히 과장되게 찬사를 늘어놓겠습니까.

신이 그날 아침에 본성(本城)에 들어갔다가 낮에 **장안문(長安門)**을 나와서는 세 걸음 걷다가 뒤돌아 보고 다섯 걸음에 고삐를 돌리면서 꿈틀꿈틀 기어가듯 차마 떠나지를 못하다가 밤에 **지지대(遲遲臺)** 아래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방 벽을 빙빙 돌며 배회하면서 한편으로는 흠앙하고 한편으로는 탄식을 하는 동안 잇따라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셨으니, 슬프게 한 일도 없는데 괜히 슬퍼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날의 일을 두고 말한 것인 듯싶습니다.

무릇 천하에 지극히 드문 일을 보게 되면 의리(義理)의 소이연(所以然)을 따져보게 마련인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신이 그날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홀연히 두려운 생각이 저절로 들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것이 매우 성대한 일이긴 하나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순(舜)임금을 창오(蒼梧)에 장사지냄에 코끼리가 밭을 갈고 농부는 하던 일을 바꾸지 않았으며, 우(禹)임금을 회계(會稽)에 장사지냄에 새들이 김을 매고 시장에서는 계속 장사가 진행되었다. **지금 이 화성에 장사지낸 것을 보건대 장사지낸 자도 성인이요 그 대상이 된 자도 성인인데 성인의 장사는 귀신이 옹호해 주는 법이다.** 따라서 도성의 영역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초목이 무성한 대로 놔두면 될 뿐이니 열성(列聖)의 선침(仙寢)도 이를 헤아려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생각건대 이 20리 밖 본주(本州)의 행정 소재지에 제도를 웅장하게 하여 공사를 벌인 것이 도대체 상징물을 설치하여 융숭하게 하는 인정(人情)과 예문(禮文) 상에 또한 무슨 보탬이 된다 하겠는가. 일단 영왕(寧王)의 유지(遺志)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주 성왕(周成王)의 낙읍(洛邑)에 견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태상(太上)이 어떤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보면 한 고조(漢高祖)의 신풍(新豊)의 예를 원용(援用)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듯 백성이 궁하고 재정이 고갈된 때를 당하여 이처럼 해를 넘기며 나라를 동요시키는 일을 하다니 이것은 어쩌면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하였습니다. (…)

○丁巳/獻納任長源上疏曰: "臣愚竊以爲, 歉荒猶不足憂, 災異猶不足恤, 惟此人心之陷溺, 最爲今日之一大患, 何則, 本原旣亡, 餘事可知. 夫好善惡惡, 恒物之大情, 而今世之人, 混淪乎善惡之分, 抑陰扶陽, 君子之正論, 而今世之士, 汨董於陰陽之辨. 是以節義一款, 爲世所諱, 風泉二字, 無處可聞, 間或有一半箇之依俙彷彿於此等界上, 則輒群排而衆咻之, 看作狂妄奇怪底物事. 大勢所壓, 靡然從風, 以之居鄕則巧令爲儀表, 以之立朝則緘默爲規矩, 擧世滔滔, 莫之可救. 所知者利慾, 所望者僥倖, 平居旣無批鱗犯顔之臣, 他日寧有伏節死義之士? 此乃臣五年在家所得. 而自孟春乘馹後, 若言其在途之見. 則凡所觸目, 無非新眄. 驛夫不勝其疲弊之狀, 官隷未掩其奸惡之形. 閭里稀踈, 七亡八徙, 行旅淒涼, 千鶉百鵠, 摠非聖代雍和之像, 半是衰世蕭索之氣. 行到**華城**, 怳然天下之大觀, 山川照輝, 草木馨香, 樓臺之盛, 城郭之壯, 如非鬼役, 似是天造, 力不煩民, 財不損下, 而宏規遠模, 迥出千古, 此皆自我聖上仁衷孝思中做得出來者, 則百花之春, 均是化工之囿, 萬川之月, 無非太極之圈也. 是不但曰 '不以天下, 儉其事

而已’. 大哉! 聖人之孝乎, 其所以爲孝之義, 始可與知道者道矣. 天地鬼神, 昭布森列, 其敢諂乎, 其敢溢美乎? 臣於是日, 朝入本城, 午出長安門, 三步回頭, 五步回轡, 連蜷不忍行, 夜宿遲遲臺下, 繞壁徊徨, 且欽且欷, 繼之以感淚之沾臆, 倘所謂未施哀而哀之者, 政謂伊日事. 凡人之情, 見天下之至罕, 則必求義理之所以然. 臣於終夜不寐之中, 忽自瞿瞿然, 心語曰: ‘此甚盛矣, 無乃過乎? 舜葬蒼梧, 象爲之耕, 而農不易畝, 禹葬會稽, 鳥爲之耘, 而市不易肆. 今此**華城**之葬, 葬之者聖, 葬者亦聖, 聖人之葬, 鬼擁神護. 雖在禁標幅圓之外, 亦只蒼然蔚然而已矣, 列聖山寢, 可推而知. 則惟此二十里外, 本州治之, 宏其制壯其度, 抑亦何所補於象設致隆之情文乎? 旣非寧王遺志之所在, 則未可比擬於周成之洛邑, 又非太上土思之所寓, 則不宜援引於漢高之新豐. (…)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8월 26일(정사) 1번째기사>

화성/행궁

비변사가 아뢴 장용위 외영 5읍 군병의 절목

비변사가 장용위(壯勇衛) 외영(外營) 5읍(邑) 군병의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화성(華城)에 외영(外營)을 설치한 목적은 선침(仙寢)을 호위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옛날부터 군읍(郡邑)을 장악하고 사마(士馬)로 호위하게 했었다는 것을 상고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漢)나라 때를 보건대 태상황(太上皇) 능(陵)의 경우는 읍(邑)을 설치하고 만년(萬年)이라 하였으며, 고조(高祖) 장릉(長陵)의 경우는 읍이 1만 호를 넘었고, 무제(武帝) 무릉(茂陵)의 경우는 읍이 1만 5천 호였으며, 선제(宣帝) 두릉(杜陵)의 경우는 읍이 5만 호였는데, 이는 바로 삼보(三輔)에 명하여 5읍을 함께 호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병위(兵衛)의 명칭을 부여했으니, 가령 수릉정부(壽陵亭部)니 영릉정부(永陵亭部)니 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뒤 당(唐)나라 태종(太宗) 소릉(昭陵)의 경우는 운(雲)·함(咸) 2읍을 분할하여 예천(醴泉)이라는 현(縣)을 만들었었습니다. 봉양(鳳陽)의 운세가 성대해지는데 이르러서는 마침내 황릉위(皇陵衛)와 조릉위(祖陵衛)를 설치, 막강한 권한을 총괄하는 관원을 두고 존엄성을 보여주려 그 지역을 봉(封)하는 한편 군용(軍容)을 웅장하게 하면서, 왕의 기업을 공고히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렇게 화성(華城)에 성곽을 두르고 우리 주구(珠邱)를 모시게 된 것 역시 성상의 사모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것인 동시에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귀의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보통의 관방(關防)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행궁(行宮)을 설치하고 성벽도 높이 쌓은 터에 원수(元帥)의 위세로 누르지 않고 열군(列郡)이 호위토록 하지 않는다면, 절제(節制)하는 것이 그저 한 경내(境內)에만 그치고 말아 체모가 오히려 삼도(三都)보다도 못하게 될 것이니, 울타리 역할을 하며 상호 부조하게 하는 뜻이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성을 승격시켜 유수(留守)를 두고서 외영(外營)을 관할하게 하는 동시에 사방에 위치한 5읍도 차례로 화성에 소속시켜 마치 뭇 별들이 북극성으로 향하듯 수레 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여들듯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제(軍制)는, 친군위(親軍衛) 얼마와 입방군(入防軍) 몇 초(哨)를 두고 내영(內營)의 기병(騎兵) 얼마와 보병(步兵) 몇 초를 합해 5천 병마(兵馬)를 마련함으로써 외도감(外都監)이라는 옛 칭호에 썩 걸맞게 하였고, 이와 함께 본부(本府) 및 5읍의 군관(軍官)·향보(餉保)·속오(束伍) 등을 성정(城丁)·주대(駐隊)·유병(遊兵)·난후군(攔後軍)으로 삼아 파수(派守)하며 책응(策應)하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외영부터 초(哨)·사(司)의 호칭을 없애고 위(衛)·부(部)의 규례를 본받게 하면서 한 고을에서부터 정

전법(井田法)을 시험해 보려는 뜻을 부침으로써 군졸을 이루 다 쓸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견휼(蠲恤)은, 천사(遷徙)하는 자들에게 11년 동안 급복(給復)해 주고 환향(還餉)의 모곡(耗穀)을 영원히 감해 주도록 하였으니 집집마다 음식을 대주어 먹여 주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보(軍保)가 불균등하게 미곡을 납부하는 데 따른 고통과, 잘못된 규정을 답습하여 아약(兒弱)까지 군정으로 뽑는 폐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본부(本府)의 거의 1만에 가까운 원액(原額)이 6두(斗)와 4두씩 납부하던 것을 1인당 1두씩 모두 감해 주고, 별무사(別武士) 1천 명 가운데 아별무사(兒別武士)로 불리우던 자들은 전액 감해 주었는가 하면, 5개 속읍(屬邑)의 군보(軍保)로서 경사(京師)에 분속(分屬)되어 군정으로 뽑히는 시달림을 받고 그 동안 계속 주구(誅求)의 대상이 되어 온 자들의 소속을 모조리 이쪽으로 옮겨 오게끔 하고, 이와 함께 납포군(納布軍)과 속오군(束伍軍) 도합 1천의 액수(額數)를 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그 여파가 미쳐 혜택이 피부에까지 속속들이 스며들고 민심이 이에 따라 굳건하게 형성된 결과 높은 산의 송백(松栢)처럼 겹겹으로 호위하게 되었음은 물론 사방에서 모여들고 만대(萬代)토록 귀의하며 우러러보게 되었으니, 이는 비단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이 상응하고 다섯 속읍이 친밀해져서 성벽이 빛을 발하고 형세가 공고해진 효과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겠는데, 참으로 바다와 하늘에 비길 만큼 변함이 없고 웅대한 대성인의 효성과 계책이 없었던들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축년 이후로 제반 사례(事例)가 상세히 갖추어져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규모나 혜택의 범위로 볼 때 지금이 최고조에 이르른 만큼 한 건(件)의 문자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주사(籌司)에 모여 외영에 관한 전후의 사실을 분류해 정리하는 한편, 입방(入防)·성수(城守)·조련(操鍊) 등의 사항을 절목(節目)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를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영구히 준행(遵行)할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 동방의 군제(軍制)는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의 창설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당(唐)·송(宋)의 부병(府兵) 및 금상(禁廂)의 제도와 역사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삼군(三軍)이 변하여 오위(五衛)로 되면서 부(部)와 통(統)의 편제를 정해 정(井)마다 군정(軍丁)을 선발하는 법을 만들고 민(民)과 병(兵)을 총괄해 농사도 동시에 짓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급기야 군문(軍門)을 신설하고 영사(營司)를 두게 되면서는 위(衛)의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마다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통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외영(外營)은 평소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훈국(訓局)의 예를 본따 사초(司哨)의 편제를 두었으며 정강(精强)한 사마(士馬)에 절제(節制) 또한 엄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점차 폐단이 늘어나 허오(虛伍)가 많이 생기는 등 융정(戎政)이 어설프게 되어 다시 옛날의 규모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키던 초기에 군제(軍制)를 강구하여 정하면서 성상께서 먼저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시어, 보군(步軍) 26초(哨) 가운데 반절은 정병(正兵)으로 뽑아 행궁(行宮)에 입방(入防)케 하고 반절은 보군(步軍)으로 강등시킨 뒤 그들에게 미곡을 거두어 지방(支放)케 함으로써, 정예 위주로 해야 한다는 뜻과 호보법(戶保法) 모두가 어긋남이 없이 병행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때 시설했던 대략입니다.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 등 5읍의 군병을 차례로 이속(移屬)시키는 한편, 5읍의 속오군 가운데 정장(精壯)한 자들을 추려내 12초(哨)를

더 늘린 다음 앞의 13초와 합쳐 25초의 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1영(營) 5사(司)의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또 본부 및 속읍의 민병(民兵)으로 성을 지키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서로 분속(分屬)되게 함으로써 옛날 위(衛)의 법제에 자연히 맞게끔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司)·초(哨)를 바꾸어 위(衛)·부(部)로 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영(營)을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의 5위(衛)로 나누어 통칭 장락(長樂)이라 하는 한편, 위는 5부를 관할하고 부는 3통(統)을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수성(守城)과 관련된 군제(軍制)를 보건대, 각각 신지(信地) 내의 성문 이름을 가지고 위(衛)의 명칭을 삼아, **동쪽은 창룡위(蒼龍衛) 남쪽은 팔달위(八達衛) 서쪽은 화서위(華西衛) 북쪽은 장안위(長安衛)**라고 하였으며, 위(衛)에서 부(部)로 나뉘어지고 부는 통(統)을 관할하며 통은 타장(垜長)과 타부(垜夫)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또 통구유병(通衢遊兵)을 중앙에 위치시켜 신풍위(新豊衛)라고 칭한 뒤 이것 역시 장락(長樂) 5위(衛)에 분속(分屬)되게 하여 그 절제(節制)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영과 외영의 군총(軍摠)을 합산하면 족히 5천이나 되는데 안과 밖에서 서로 응하고 형세가 상호 연결되어 겹겹으로 호위하며 급할 때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 이대로 변통시키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맞겠습니다.

1. 장락 전위(長樂前衛). 정병(正兵)은,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長樂隊)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管下)의 5부장(部將)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城丁)은, **남성(南城)의 팔달위(八達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팔달대(八達隊) 1천 1백 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진위(振威)의 팔달대 7백 20명에 대해서는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2백 45명과 진위의 팔달대 2백 65명을 정문(正門) 및 남쪽 암문(暗門)·서남쪽 암문·각루(角樓)·수문(水門)·치성(雉城)·적대(敵臺)·봉돈(烽墩)·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3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39명으로 통장(統長) 12명과 타장(垜長) 27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5백 83명입니다.

1. **장락 좌위(長樂左衛)**. 정병은, 용인(龍仁)에 있는 장락대 3백 81명과 진위에 있는 장락대 2백 5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동성(東城)의 창룡위(蒼龍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동쪽 경내에 있는 창룡대(蒼龍隊) 7백 36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 2부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용인의 창룡대 1천 96명에 대해서는 중부(中部)가 3백 76명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40명과 용인의 창룡대 1백 50명을 정문 및 포루(砲樓)·포루(舖樓)·치성(雉城)·노대(弩臺)·공심돈(空心墩) 등 7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39명으로 통장 12명과 타장 27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1백 84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2백 71명입니다.

1. **장락 중위(長樂中衛)**. 정병은, 본부의 물가 각면(各面)에 있는 장락대 3백 89명과 용인의 장락대 1백 23명과 진위의 장락대 1백 23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유병(遊兵)은, **신풍위(新豊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용인의 신풍대(新豊隊) 2백 75명과 안산(安山)의 신풍대 2백 50명과 시흥(始興)의 신풍대 2백 13명과 진위의 신풍대 1백 70명과 과천(果川)의 신풍대 52명 등 도합 9백

60명을 네 곳 성(城)의 통구부장(通衢部將) 8인이 각각 1백 2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과천의 신풍대 56명으로 위장·부장의 표하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1천 16명입니다.

1. 장락 우위(長樂右衛). 정병은,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3백 61명과 안산의 장락대 2백 7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서성(西城)의 화서위(華西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화서대(華西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안산의 화서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3백 20명을 정문 및 각루·암문·치성·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공심돈 등 11 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52명으로 통장 16명과 타장 36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5명과 본부의 화서대 1백 69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3백 93명입니다.

1. **장락 후위(長樂後衛)**. 정병은,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2백 66명과 시흥의 장락대 1백 69명과 과천의 장락대 2백 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북성(北城)의 **장안위(長安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長安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 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과천의 장안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 2백 24명과 과천의 장안대 1백 66명을 정문 및 수문(水門)·각루(角樓)·암문(暗門)·적대(敵臺)·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0개 지역에 증강 파견합니다. 본부의 장안대 52명으로 통장(統長) 16명과 타장(垜長) 36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4백 63명입니다.

1. 장락 5위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3·대정(隊正) 9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대를 호령하게 합니다. 속5위(屬五衛)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20·타장 45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타장을 호령하고 타장은 타부(垜夫)를 호령하게 합니다. 이렇듯 상호 통제받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계별로 호령이 전달되게 합니다.

1. 내영과 외영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만큼 군제(軍制)의 규모 역시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장락대를 25부로 마련했는데, 5부가 아직껏 바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융정(戎政)을 중히 하는 뜻이 못될 듯싶습니다. 5읍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정군(正軍)은 원래 상번(上番)하며 연습해 오던 자들이고, 병부(兵部) 소관의 상번하는 기병(騎兵)들도 모두 근착(根着)이 있는 양정(良丁)들입니다. 따라서 한결같이 5읍의 실수(實數)에 입각하여 그 자보(資保)중에서 정장(精壯)한 자를 뽑아낸 뒤 장락대의 아직 채우지 못한 5부에 그들을 편성시킨다면, 군보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야 할 포목을 내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고 위대(衛隊)의 입장에서는 정예롭게 되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정예로워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실로 사의에 맞겠습니다. 그리고 장락 5위가 일단 각각 5부씩으로 편성되고나면 입방(入防)하는 군사의 숫자를 더 마련하여 골고루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할 것이니, 첫해에는 3부 다음해에는 2부의 군사를 원래 입방하도록 계획된 숫자에 덧붙여 줌으로써 그들을 분배해 더 포치(布置)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입방(入防)하는 군병들이 휴번(休番) 중일 때에는 그들에게 미곡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각영(各營)의 규례라 하더라도 특별히 분부하신 데 따라 그렇게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여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1. 장락 5위가 행궁(行宮)을 호위할 때에는 전(前)·좌(左)·우(右)·후(後)의 위(衛)로 하여금 서로 이어 외곽을 호위하게 하고 중위(中衛)로 하여금 4위의 안에 있게 하면서 겹겹으로 둘러 호위하게 해야 할 것이며, 진(陣)을 벌일 때에는 4위가 외루(外壘)가 되고 중위가 자벽(子壁)이 되어 임기 응변하면서 한결같이 지휘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행(幸行)할 때의 척후(斥堠)와 복병(伏兵) 등의 일은 속읍(屬邑)에 있는 **신풍대(新豊隊)**를 차출하여 활용하고 장락대는 거론치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를 처음 정비한 것이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킨 뒤의 일인데 구차하게 채워넣은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얼마나 정밀하게 뽑았는지 모를 일이니, 지금 군제(軍制)를 대대적으로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옛날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잔열(殘劣)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류들을 차츰 대체시킴으로써 군용(軍容)을 씩씩하게 만들고, 추후로 정비하는 군사들도 반드시 근착(根着)이 있는 양정(良丁)들을 각별히 뽑아 호적에 편입시켜 두어야 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의 복색(服色)은 일체 계축년에 계하(啓下)받은 절목(節目)에 따라 전건(戰巾)과 푸르고 좁은 소매 옷에 호의(號衣)를 착용하는 것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장락대는 본부나 속읍 그리고 신군(新軍)이나 구군(舊軍)을 막론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경계에 따라 생선 비늘 형식으로 대오를 편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는 내영(內營) 좌사(左司) 향군(鄕軍)의 예에 따라 월과(月課)를 정해 행하되 삭수(朔數)에 대한 규정은 일체 내영의 정식(定式)대로 시행하게 하고, 입방(入防)할 차례가 된 편대(編隊)에 대해서는 과시(課試)를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아병(牙兵)은, 각읍에 남아 있는 속오군(束伍軍)을 3부(部)로 나누되 부마다 1백 20명씩 편성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도합 4백 10명으로 마련해서 정비해 둡니다. 부장(部將)은 장교(將校) 중에서 차출하고, 아병의 장(將)은 수장교(首將校)를 일찍이 거친 사람 중에서 이력(履歷)이 있는 자를 차출하여 속읍이 외사(外使)를 거느리며 난후(攔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매년 수가(隨駕)할 때 난후 아병(攔後牙兵)을 전원 출동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일체 차례대로 돌려가며 습진(習陣)에 참여하는 예에 따르게 하되, 조발(調發)하는 부(部)의 수에 대해서는 별단(別單)으로 품지(稟旨)하겠습니다.
1. 지금 5위의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장락 5위의 위장과 부장을 군함 체아(軍銜遞兒)에 부치는 것은 위부(衛部)의 구제(舊制)가 아니니, 위장과 부장을 차출할 때 외영(外營)에서 의망(擬望)한 다음 병조에 이첩(移牒)하게 함으로써 개정시(開政時)에 차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15개월을 임기로 하고 참상(參上)·참하(參下)의 부장은 임기 만료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한결같이 이번에 연석(筵席)에서 품달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상과 참하의 정원을 또 정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상은 정원을 13인으로 하되, 그중 5 인은 본부(本府)의 선천(宣薦) 당하(堂下) 조관(朝官) 3인과 부수천(部守薦) 당하 조관 2인을 차출하고, 4인은 속읍(屬邑)의 선부수(宣部守) 세 곳에 추천된 당하 조관을 돌려가며 차출하고, 2인은 내영(內營) 액외(額外)의 **장용위(壯勇衛)** 전함(前銜)을 가진 자 1인과 지

구교련관(知彀敎鍊官) 중에서 1인을 차출하여 요령(遙領)케 하고, 2인은 외영(外營)의 지구교련관 1인과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 1인을 차출하여 업무를 겸대(兼帶)케 해야 하겠습니다. 참하는 정원을 12인으로 하되, 8인은 본부의 선천 출신(出身) 5인과 부수천 출신 3인을 차출하고, 2인을 속읍의 선천 출신 1인과 부수천 출신 1인을 차출하되 군사가 많은 속읍부터 시작하여 차차 분배해서 교대해 나가고, 2인은 내영 액외의 장용위 출신 1인과 장교(將校) 중 유천 출신(有薦出身) 1인을 차출하여 요령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영의 요령자(遙領者)는, 보통 때는 중앙에서 지방 업무를 보게 하더라도 입방(入防)이나 습조(習操)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내 군사를 인솔하며 거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부장(部將) 25인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하고, 참상(參上)·참하(參下)의 정원을 확정한 다음 내영·외영 및 속읍에서 다과(多寡)에 따라 융통성있게 차출하기로 한 이상 근무일수[久勤]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상은 근무일수와 관련, 임기 만료 기한을 설정해놓지 않도록 하였으나 삭수(朔數)를 계산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도 애매하기 그지없는 일이니, 만 30개월이 된 뒤에는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 한 자리나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로 천전(遷轉)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시임(時任) 초관(哨官)으로 있다가 그대로 차출된 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근무했던 일수도 합쳐서 계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군기시나 훈련원에 간차(間次)로 차출되는 경우이니 군기시 자리로 갈 차례가 된 자가 아직 천전되지 않았을 때에는 훈련원에 천전시키지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하의 경우는, 이미 내영과 두 번의 간도목(間都目)에서 돌려가며 하기로 하였으니, 초사(初仕)한 자가 천전하는 한 자리 및 원래부터 내영에 소속되어 있던 초관(哨官)이 천전하는 한 자리를 그 근무일수에 따라 마련하여 차례로 조용(調用)토록 일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읍에서 근무하는 자와 내영에서 요령(遙領)하는 자들의 경우는, 공역(公役)과 사무(事務)의 고되고 바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내에 붙박혀 있으면서 성 아래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 근무일수에 따라 천전할 때에 역시 느리고 빠르게 하는 등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에서 집을 지으며 붙박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근무일수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서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속읍 근무자 및 내영에서 요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상이나 참하를 막론하고 모두 3 차(次)를 넘긴 뒤에야 근무일수 규정에 따른 천전을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본부에서 집짓는 공사를 보건대, 조관(朝官)·출신(出身)·한량(閑良)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불성실하여 갖가지로 허위가 난무하고 있으니, 이들 부류에 대해서는 혹 일찍이 초관(哨官) 자리를 불법 점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즉시 적발해내어 그 동안의 근무일수를 깎아버리고 6차를 경과한 다음에야 근무일수를 계산해 천전하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주객(主客)에 차이를 두는 동시에 뒷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영과 외영에서 겸대(兼帶)하고 있는 지구 교련관(知彀敎鍊官)이나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 중에서 차출된 자들에 대해서는 각 청사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단지 체아직(遞兒職)으로만 승부(陞付)해 주는 것을 허락하고 영(營)에서의 근무일수는 따지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용병(用兵)하는 법은 음양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경(經)·위(緯)·기(奇)·정(正)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衛)의 제도를 폐지하고 순전히 척법(戚法)을 사용하면서부터 편중되는 폐단이 생겨났으므로 병가(兵家)가 이를 병통으로 여겨 왔습니다. 대개『기효신서

(紀效新書)』에 실린 내용을 보건대 음양 빈모(牝牡)의 뜻을 밝히면서 장단(長短)을 동시에 이루는 법을 부치긴 하였으나, 결국은 표리(表裏)가 서로 연결되고 대소(大小)를 서로 포괄하며 방원(方圓)을 나누고 합쳐 각각 온당하게 되도록 하면서 5와 10이 중앙에 거한 상태에서 경(經)·위(緯)의 위치가 정해지는 위(衛)의 제도보다는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위(衛)와 부(部)에서 전적으로 척법(戚法)을 숭상하는 것은 혹 상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뿐더러 전대(戰隊)·주대(駐隊)·정군(正軍)·유군(遊軍)의 제도에 얽매이는 결과가 될 것이니, 통일된 홀기(笏記)를 만들어내어 척법과 동시에 익히게 함으로써 이름에 맞는 실효를 얻게 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1. 위(衛)의 제도가 소중한 것은, 첫째 통(統)을 만들어 대오 편성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둘째 농사를 병행하여 군량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이점(利點)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한기 때에 5번(番)으로 나누어 입방(入防)시키는 것은 결국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만 양산해내어 절제(節制)를 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성 내외에서 1부(部)의 군사를 단속한 다음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은 번(番)을 나누어 영하(營下)에 입방시키면서 둔전(屯田)의 농사를 짓게 하고 경작하는 여가에 대략 진퇴(進退)하는 법을 익히게 했다가 본격적으로 입방시킬 때가 오면 몇 명씩 각부(各部)에 나누어 파견함으로써 1명을 가르쳐 10명을 교습시키는 방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 내영(內營)에서 일단 중군(中軍)을 두지 않고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중군의 임무를 아울러 행하게 했고 보면 이 예를 준용(遵用)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이미 위(衛)의 제도를 복구해놓고나서 또 영사(營司)의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이름에 맞게 실효를 거두게 하는 뜻이 결국 못되니, 대략 위의 제도를 모방하여 따로 외군(外軍)의 총제(摠制)를 둠으로써 위의 뜻을 받들어 군무(軍務)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관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군을 두지 않는 내영의 제도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외사(外使)가 친군위(親軍衛)의 별장에게 수시로 전령(傳令)하여 겸행(兼行)케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위(長樂衛)의 각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친군위의 별장 및 좌·중·우의 장관(將官)을 전직 군함(軍銜)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도를 같이해야 하는 도리가 못될 듯싶습니다. 따라서 삼가 국조(國朝)의 구례(舊例)에 따라, 별장은 녹관(祿官)으로 마련하여 실직으로 확정하고 서울과 지방을 따질 것 없이 아장(亞將) 이하 병사(兵使) 이상 중에 평소 성망(聲望)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 의망(擬望)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장을 일단 실직으로 하고 또 총제(摠制)의 임무를 겸행케 한다면 별장의 차출을 내영이나 외영에서 독단적으로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외사(外使)가 의망하는 격식을 갖춘 뒤 병조 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정당한 의망이 되게 함으로써 체면이 중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중·우의 장관 역시 금군(禁軍)의 장관의 예에 따라 실직으로 임명하되, 좌열(左列)·중열(中列)·우열(右列) 장관이라는 이름을 일번(一番)·이번(二番)·삼번(三番)의 장관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또 별장과 번장(番將)은 모두 정사(政事)를 행할 때 차출하되, 혹시 시급히 거행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금군 장관의 예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차출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임무를 수행해 왔던 본부(本府)의 중군(中軍)과 **독성(禿城)의 수장(守將)**은 모두 감하(減下)시키되, 독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독성 별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따로 차견(差遣)해야 하겠습니다.

1. 내영의 선기대(善騎隊)를 이미 3 초(哨)로 마련한 이상 외영도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친군위(親軍衛)에서 1백 인을 더 뽑아 1 번(番) 2 번 3 번의 제도에 맞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5 읍(邑)을 이미 이속(移屬)시킨 이상 당연히 5 읍으로 하여금 분배(分排)

하고 골라 정하게 함으로써 무사들을 위로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5 읍에서 모두 뽑아서 채울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0인은 그 읍의 규모에 따라 출신(出身)·한량(閑良) 가운데 선부수(宣部守)로 천거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 채워 넣고 나머지 40인은 본부의 사람들을 차출한 뒤 마필(馬匹)을 나눠주고 일체 절목(節目)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대(馬隊)는 전적으로 활 쏘는 기예를 중시하는데, 계축년에 절목을 마련할 때 취재(取才)하는 한 조목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정말 소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뒤로는 새로 차견할 때 반드시 시취(試取)하여 입속(入屬)케 하되, 취재에 관한 절목은 외영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마련해 내어 아뢴 다음 준행(遵行)케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할 때 외사(外使)는 군마(軍馬)를 총령(摠領)하는 만큼 응접하며 성가퀴에 올라가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우니 본부(本府)의 판관(判官)을 관성장(管城將)으로 차정(差定)해야 하겠습니다.

1. **창룡 위장(蒼龍衛將)**으로 용인 현령(龍仁縣令)을 임명하고 **팔달 위장(八達衛將)**으로 진위 현령(振威縣令)을 임명하고 **화서 위장(華西衛將)**으로 안산 군수(安山郡守)를 임명하는 것은 모두 전에 마련한 대로 차하(差下)하고, 시흥(始興)과 과천(果川)은 군사의 숫자가 현격히 다르니 과천 현감을 **장안 위장(長安衛將)**으로 바꿔 임명하고 시흥 현령은 협수 위장(協守衛將)으로 옮겨 정하여 용도(甬道)에 속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는, 위장은 본부 경내의 당상(堂上) 내·외장(內外將) 및 조관(朝官) 역임자를 차출하고 부장은 당하(堂下) 조관이나 출신(出身) 중에서 차출하며, 속위(屬衛)의 각 부장은 본부나 속읍 할 것 없이 일체 군사가 있는 읍에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위장 관하(管下)의 부장과 통장(統長)을 차출할 때 본부와 속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뒤섞어서 하게 되면, 그 대상자들이 평소 길러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호령을 발할 즈음에 서로 어긋나고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이는 절제(節制)하는 도리가 못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장 이하가 소속된 위(衛)의 지휘에 따라 군무(軍務)에 관계된 일체의 관유(關由)를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군율(軍律)이 엄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城)의 위장(衛將)을 일단 용인·진위·안산·과천 등 네 고을의 수령으로 정했고 보면 부장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례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인데, 각성(各城)의 신지(信地) 별로 하되 가령 본부군(本府軍)을 마련한 곳에는 본부 경내의 당하 조관이나 출신(出身)으로서 선부수천(宣部守薦)을 받은 자를 차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평상시 각리(各里)에 정해 두었던 통장 중에서 풍력(風力)이 있어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 차출하고, 타장(垜長)은 통(統) 안에서 군관을 수행하는 자 중 조금 사무를 처리할 줄 아는 자를 차출하여 각각 타부(垜夫)를 이끌게 함으로써 신지(信地)에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장내(墻內) 및 중포사(中舖舍)의 장관(將官)과 각처 돈대(墩臺)의 장관은 장교 중에 이력(履歷)이 있고 감당할 만한 자를 특별히 골라 차정(差定)하고, 속읍의 부장 이하를 차출하는 규정도 이상의 예에 따라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성 위장의 신지는 동·서·남·북의 정문(正門)에 위치하는데, 파수(派守)하는 법을 보면 그 정문으로부터 똑같이 분할한 뒤에 장령(將領)이 그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영(本營)의 성제(城制)가 이미 사면(四面)의 방성(方城)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 각문(各門)의 사이가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곧바르기도 하여 거리에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각읍(各邑) 군사의 숫자도 많고 적은 차이가 있어 자연 구애받는 점이 많으니, 전문(前門)에서부터 똑같이 분할해 나가 후문(後門)에 이르는 식으로 해서 머리와 꼬리가 합쳐

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팔달위(八達衛)**의 경우 위장은 문에 있고, 우(右)·후(後) 2 부(部)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暗門)의 서쪽 제 2 첩(堞)에 이르게 하고, 전(前)·좌(左)·중(中) 3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烽墩) 북쪽 제 5 첩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창룡위(蒼龍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 북쪽 제 6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암문의 동쪽 제 9 첩에 이르게 합니다. 장안위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동쪽 암문의 동쪽 제 8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제 1 첩에 이르게 합니다. **화서위(華西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우 4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의 서쪽 제 3 첩에 이르게 하고, 후(後) 1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모서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의 경우는, 위장의 신지는 십자통구(十字通衢)에 위치하게 하고, 각 방면마다 2 부씩 배치하여 4 성(城)에 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본성(本城)은 둘레가 4천 6백 보(步)이니 5보당 1 첩(堞)을 마련하면 9백 20 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밑의 바깥 둘레에 비해 여첩(女堞) 안의 둘레는 36보쯤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9백 13 타(垜)를 보(步)로 계산해 마련해서 배치된 군사에게 나누어 줄 경우, 4 위(衛)의 신지(信地)는 각각 보(步)로 계산하면 1천 1백 40보가 되고 첩(堞)으로 계산하면 2백 28 첩씩이 되는데, 나머지 1 첩은 동성(東城)에 덧붙여주고, 타부는 1 타당 8명씩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1. 4 성(城)에 증원하여 파견하는 군사는, 남문과 북문에 각 1백 명, 동문과 서문에 각 70명, 상·하의 수문(水門)에 각 60명, 네 곳의 각루(角樓)에 각 50명, 남쪽 암문(暗門)과 서남쪽 암문에 각 60명, 내포사(內舖舍)·중포사(中舖舍) 및 동·서·북 암문과 봉돈(烽墩)에 각 40명, 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弩臺)·적대(敵臺)·치성(雉城)·공심돈(空心墩) 등 27 처(處)에 각 20명씩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 각위(各衛)의 각부(各部)·통장(統長)·타장(垜長)·타부(垜夫) 및 신풍위(新豊衛)의 신풍대(新豊隊)와 협수위(協守衛)의 협수대(協守隊), 그리고 여기에 주대(駐隊)의 책응병(策應兵) 및 각처에 소속된 표하(標下)·화부(火夫)와 증원 파견된 자까지 모두 합해 마련된 총 병력 수는 1만 1천 7백 28명입니다. 이밖에 대오를 편성하고 남은 군사가 본부(本府)에 1천 6백 19명이 있는데, 이것은 성외(城外) 각처 돈대(墩臺) 및 복로(伏路)·당보(塘報) 할 것 없이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 배정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읍의 보속(保屬) 및 옮겨 오고 옮겨 가는 부류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수령을 신칙해서 더욱 치밀하게 단속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체 실수(實數) 그대로 여정(餘丁)이라고 이름 붙여 역시 통안(統案)에 기록해놓게 함으로써 중간에 새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멀리 척후(斥堠)하고 봉화(烽火)에 관한 일을 근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병가(兵家)의 요법(要法)입니다. 본성(本城) 주위의 형세를 보건대, 동성(東城) 밖에는 인가가 드물고 산등성이가 가로 걸쳐져 있는데 **광교(光敎) 계곡**이나 백운(白雲)의 지름길 등은 관심을 쏟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영화 찰방(迎華察訪)**이 북성(北城)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된 신지(信地)가 없으니 그를 척후장(斥堠將)을 차정(差定)한 뒤 본역(本驛)에서 편성한 1 부(部)의 군사를 거느리고 **용연(龍淵) 위 약암(藥巖) 돈대(墩臺)**를 막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암(門巖)에서 애현(艾峴) 아래 사이에 있는 다섯 곳의 돈대에도 50명

의 군사에 장관(將官)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되 일체 척후장의 지휘를 받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면서 임기 응변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팔달위(八達衛) 서쪽으로는 평야가 광막하게 펼쳐지면서 샛길이 이리저리 엇갈려 있는데, 숙지산(孰知山) 돈대와 고양동(高陽洞) 둔사(屯舍) 뒤 언덕의 돈대는 요해지(要害地)로서 모두 관방(關防)에 합당하니, 남쪽 수구(水口) 및 귀산(龜山)의 돈대와 아울러 동돈(東墩)의 예에 따라 장졸(將卒)을 배치하여 경계하게 함으로써 서성(西城)의 노대(弩臺)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서둔(西屯)의 제언(堤堰)에 물을 모아 둠으로써 북둔(北屯)의 수전(水田)에 물을 댐은 물론 만석거(萬石渠)에 통하게 하고, 요로(要路)를 차단하면서 수택(水澤)이 전면과 좌측에 있게 하는 뜻을 부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위(衛)의 제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統)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옛날 위의 제도를 보면 5인을 오(伍)로 하고 5 오(伍)를 대(隊)로 하고 5 대(隊)를 여(旅)로 하여 거기에 통장(統長) 1인을 두었으며, 호법(戶法)을 보면 5 가(家)를 비(比)로 하고 1백 가를 이(里)로 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하고 참작하여 5 가(家)마다 각각 통수(統首)를 정하고 1백 가마다 대통장(大統長)을 둔 뒤 통의 모든 일을 일체 관장하게 하는 등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 제도를 거듭 밝힌 뒤에야 군정(軍丁)을 뽑을 때 수괄(搜括)하느라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어지고 단속할 때 생선 비늘처럼 대오가 편성되는 효과를 보게 됨은 물론 병(兵)을 농(農) 속에 숨기면서 평소 통령(統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이번에 계하(啓下) 받을 절목(節目)들은 사체(事體)가 자별한데 지금 논열(論列)한 것은 단지 그 대체적인 것만 거론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 자질구레한 조목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와 속읍의 수령들이 위제(衛制)나 통법(統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모두 적합하게 되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중도에 폐지되지 않고 오래도록 준행(遵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령 면(面)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식으로 집을 헤아리고 이(里)를 나누어서 통안(統案)을 작성한 뒤, 그 통안에 입각하여 모면(某面) 모리(某里)는 모성(某城)에 소속시키고 어느 집 어느 장정은 어느 첩(堞)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부나 속읍을 막론하고 대소 군민(軍民)들로 하여금 모두 각각 자기들의 구역을 알고 있게 하여 그때에 가서 뒤죽박죽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城內) 및 성외(城外) 부근의 인호(人戶)는 성정(城丁)의 총수(總數)에 포함시키지 말고, 각항(各項)의 표하(標下)·교졸(校卒)·이노(吏奴) 외에는 사부(士夫)·군민(軍民)·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따로 장부를 작성한 뒤 늘 단속을 하고 있다가 경보가 울리는 즉시 성으로 올라가 각자 담당 구역을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垜)를 계산해서 나누어 지키게 하되 그 숫자가 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첩(雉堞)·초포(譙砲)·노대(弩臺) 등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담당 구역으로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성(各城)의 담당 구역은 한결같이 해읍(該邑) 군정(軍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되, 본부(本府) 군정과 고르게 나눠 마련할 즈음에 위부(衛部)마다 숫자에 비해 서로들 길고 짧게 되는 등 불균등한 폐단이 있게 될지도 모르니, 본부군이나 속읍군 할 것 없이 각성의 위장(衛將)이 각부(各部)의 군사 숫자를 전·좌·중·우·후로 나누고 여기에 표하군(標下軍) 및 화부(火夫)까지 합쳐 총 병력 수를 도안(都案)으로 작성한 뒤 하나는 외영(外營)에 올려 보내고 하나는 성소(城所)로 올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단속하는 것은 지방의 각통(各統)에서 전담하여 거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주대(駐隊) 책응병(策應兵) 4 부(部)는 1 부마다 1백 명씩으로 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구성하며, 이 장수 및 부장은 다른 위장이나 부장의 예에 따라 차출하고, 장수의 칭호는 책응장(策應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성의 각면마다 세 곳의 복병(伏兵)과 세 곳의 당보수(塘報手)를 두되, 복병을 설치한 곳마다 1 장(將) 5 졸(卒)로 하여 합계 60명으로 하고, 당보수는 2명씩 배치하여 합계 24명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1. 화부(火夫)는 통(統)마다 각각 5명씩 배정하여 각타마다 등불을 매달고 횃불을 태우고 밥을 짓는 등의 일을 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포사(鋪舍)를 장내(墻內)와 성 위에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행궁(行宮)을 호위하기 위해서이고, 돈대(墩臺)를 산 위와 평야에 나누어 설치한 것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내(內)·외(外)의 포사 여섯 곳에 대해 근일마련한 규정에 따라 각각 2명의 군졸을 배치해서 분담 경비하게 하고, 돈대의 경우도 가령 용연(龍淵)·문암(門巖)·애현(艾峴)·귀산(龜山)·숙지(孰知)·고양(高陽) 등 여섯 곳에 대해서는 각기 장교 1인과 군졸 2인을 배정하여 늘 경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에 필요한 기계(器械)는, 1타마다 현등(懸燈) 1잔(盞)·방(梆) 1구(口)·조총(鳥銃) 1문(門)이나 쾌창(快槍) 1지(枝)【적으면 2타에 1문을 설치한다】·단창(短槍)이나 참마도(斬馬刀) 1파(把)·크고 작은 돌멩이 1백 괴(塊)씩을 나누어 주되 도(刀)·부(斧)·곤(棍)·궁(弓)·시(矢)는 화부(火夫)가 맡게 하고, 5 타마다 낭기(狼機) 1위(位)【적으면 10타마다 1위를 설치한다】·수항(水缸) 1구(口)를 다 두고, 성문 아래마다 대장군포(大將軍砲) 1위(位)나 2위를 설치하고, 10타마다 무게 2백 근(斤)이나 1백 50근짜리 대석(大石) 3괴(塊)를 놔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속위(屬衛)에 있어서는 위장(衛將) 1인마다 각각 차관(差官)·장교(將校) 2인을 두고, 표하(標下)로는 곤장수(棍杖手)·주장수(朱杖手)·영기수(令旗手)·순시수(巡視手)·문기수(門旗手)·나팔수(喇叭手)·대각수(大角手)·대포수(大砲手)·호적수(號笛手)·등롱수(燈籠手)·장막수(帳幕手)·서기(書記)를 각 2명씩 두고, 인기수(認旗手)·고수(鼓手)·정수(鉦手)·나수(鑼手)·별파진(別破陣)을 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장(部將)은 한 사람당 각각 차관·장교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인기수·곤장수·나수·대포수·고수·장막수·서기를 각각 1명씩을 두며, 통장(統長)은 기수(旗手)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용도(甬道) 협수장(協守將)과 신풍 위장(新豊衛將)은 각각 차관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영기수·순시수·곤장수·문기수·나팔수·호적수를 각각 2명씩 두고 인기수·고수·나수·정수·대각수·대포수·별파진·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부장은 표하를 속위의 부장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 각기 대포수 1명을 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척후장(斥堠將)·책응장(策應將)·아병장(牙兵將)은 표하를 협수장의 예에 따라 마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시흥(始興)의 군사 4백 73명 가운데 3백 40명은 용도(甬道)의 68첩(堞)에 1첩당 5명씩 나누어 주되, 좌·우 부장(部將)을 차출하여 1백 70명씩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부마다 각각 4명의 통장(統長)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제(節制)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장(垜長)은 12명, 화부(火夫)는 40명, 협수장(協守將)의 표하(標下)는 52명, 부장의 표하는 12명, 통장의 기수(旗手)는 8명으로 마련하고, 부장을 차출하는 규정과 통장을 단속하는 법은 다른 속읍(屬邑)의 예에 따라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에서 조련할 때 조련하러 오는 수성군(守城軍)들에 대하여 그 도리(道里)의 원근과 날짜[日子]의 다과(多寡)에 따라 신포(身布)를 감해 줌으로써 양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외영(外營) 군보(軍保)의 경우 명색(名色)이 엄청나게 많아 갖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종 군관(軍官)을 제번 군관(除番軍官)이라고 명칭하고 각종 군보를 향보(餉保)로 명칭하는 등, 그 명호(名號)를 통일함으로써 군정(軍丁)을 뽑아 포목을 거둘 즈음에 혹시라도 뒤섞이는 폐단이 있지 않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本府)나 속읍(屬邑)을 막론하고 군관은 소속된 5 위(衛)의 이름에 따라 각각 모위(某衛)의 군관이라 하고, 군보의 경우 역시 군관의 예에 따라 모대(某隊)의 군보라고 이름을 붙이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전부터 군관이 상탈(喪頉)을 당했을 경우에는 으레 현탈(懸頉)하여 혹시라도 침징(侵徵)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사고를 당한 날짜를 통안(統案) 가운데에 상세히 주(註)로 달아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의 간사한 행동을 막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본부의 군보 외에 또 **독성(禿城)**의 군보가 있는데 각자 나뉘어 소속된 명색(名色)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본영(本營) 근처에 살고 있는 자가 군명(軍名)에 따라 독성에 부쳐지기도 하고 독성 근처에 살고 있는 자 역시 반대의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 형편이고 보면, 지금 와서 통(統) 단위로 편성할 즈음에 방해될 소지가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경내(境內)의 군보에 대해 일단 그 명호(名號)를 통일하기로 한다면, 그 명수(名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느 면(面) 어느 이(里)는 본성(本城)에 부치고 어느 면 어느 이는 독성에 부친다고 하는 식으로 각각 안책(案冊)을 작성하여 예전처럼 혼잡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에 있는 **신풍대(新豊隊)** 및 아병(牙兵)은 원래 속오(束伍) 정군(正軍) 가운데에서 단속된 자들이니 군사훈련을 행하지 않는 해에는 관문(官門)에 집결시켜 점검을 행하도록 하고, 4성(城) 각위(各衛) 소속의 **팔달대(八達隊)·창룡대(蒼龍隊)·장안대(長安隊)·화서대(華西隊)**는 이미 통(統) 단위로 편성되었으니 각기 그 부근의 편리한 장소에 집결시켜 통별로 점검하게 하되, 반드시 수령 자신이 직접 거행하여 소홀해지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1. 남한 산성(南漢山城)에서 대조(大操)를 행할 때 5 영(營)의 군병으로 하여금 낮에는 장조(場操)를 하고 밤에는 성조(城操)를 익히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공수(攻守)의 작전 모두에 통하는 훌륭한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수성(守城) 군졸들을 모두 장조에 참여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합조(合操)를 하는 해에는 동면(東面)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1 면의 군사씩 돌려가며 참여하도록 하고, 면조(面操)를 하는 해에는 그대로 참여케 해야 하겠습니다.

1. 주대 책응병(駐隊策應兵) 및 신풍대(新豊隊)는 훈련에 참가하는 정군(正軍)과 다름이 없으니 각별히 건장한 자들을 뽑아 단속해 둔 뒤 장조(場操)를 행할 때 으레 모두들 참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조(城操) 때에는 타단위로 헤아려 나누어 지키기 때문에 오방색(五方色)의 호의(號衣)를 입히지 않아도 별로 구애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장조를 행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니 정군과 똑같이 호의를 착용하고 기계(器械)를 소지하게 하되, 당해(當該) 성장(城將) 및 신풍 위장(新豊衛將)이 각각 나누어 거느리면서 정군의 후미와 연결하여 바짝 붙어 주둔시킴으로써 호령을 곧바로 이어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 향무사(鄕武士)의 경우는 수첩 군관(守堞軍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경내(境內)의 출신(出身)들의 경우는, 선부수 삼천(宣部守三薦)을 따질 것 없이 별군관(別軍官)으로 들어가 소속된 약간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천(無薦) 출신들과 함께 소속된 곳이 없으며, 전함(前銜) 장교의 경우는 이른바 그 청사에서 기록해 둔 자들인

데도 대부분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남(嶺南)의 좌·우열(左右列) 출신들을 대오로 편성한 법에 비추어 볼 때 크나큰 궐전(闕典)이라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출신들 및 전함 인원들을 모두 모아들여 문안(文案)에 기록함으로써 추후 변통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 승도(僧徒)가 어쩌면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 성정(城丁)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주사(龍珠寺)**에 이미 총섭(摠攝)을 두어 승도를 단속하게 하고 외영(外營)에 소속시켜 가끔 포 쏘는 법을 시험하게 하고 있고 보면, 이들은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승졸(僧卒)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니, 부근에서 **독성(禿城)**을 협수(協守)케 하면서 타를 헤아려 증원 파견할 수 있는 소지를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성(本城) 북쪽 **광교동(光敎洞)** 입구에도 작은 사찰을 세웠는데 모든 일이 초창기라서 엉성하고 승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승도를 모집하여 분위기가 이루어진 뒤에는 용주사의 경우와 똑같이 절목을 마련하여 부근 돈대(墩臺)에 증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독성 산성(禿城山城)**은 선침(仙寢)과 근접해 있고 본성과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외곽에서 호위해야 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에 소속된 각종 군관과 군보(軍保)가 2천 1백 23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본성의 첩수(堞數)를 헤아리고 배치할 군정(軍丁)을 마련해서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작성한 다음 추후에 아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절목은 크게 시설(施設)하는 것과 관계되는 만큼 전일에 비해 규모가 웅장한데, 소소한 사항들은 계축년의 절목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군정(軍政)을 서로들 교환하면서,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고질적인 폐단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부와 다섯 속읍에서 이미 통법(統法)을 정해 옛 제도를 다시 밝힌 상황에서, 군정을 각자 서로들 관할(管轄)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들을 출동시켜 쓸 때에도 통(統) 안에 현재 있는 인호(人戶)를 다른 읍으로 옮겨 소속시키기도 하고 다른 읍에 산재해 있는 대오를 거꾸로 붙이어 녹안(錄案)하고 있으니, 이는 실상에 입각해서 행하는 정사가 결코 못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토착인(土著人)을 기준으로 단안을 내려 일체 통 단위로 편성된 호수(戶數)로만 시행하되, 본부와 5 읍 사이에만은 서로들 교환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본부는 탕목읍(湯沐邑)이니 군제(軍制)도 중요하지만 인화(人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 별무사(兒別武士)를 둔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약(兒弱)으로 충정(充定)한다는 자체가 벌써 조금(朝禁)에 걸리는 일이고 본부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대로 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명(命)을 기다려 1천 명을 감액(減額)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미군(納米軍)의 경우 양정(良丁) 6두(斗) 사정(私丁) 3두로 하는 것이 본디 제로(諸路)에서 두루 행하는 규례인데, 본부의 경우는 보미(保米)가 6두·5두·4두·3두 등으로 각각 달라 균일하게 해야 하는 제도의 뜻에 이미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변통시키는 때에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기에 6두를 납부하던 7천 4백 79명과 4두를 납부하던 5백 78명에 대해 삼가 하교대로 준행하여 모두 1두씩 특별히 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부 안에 단지 5두와 3두의 두 가지 명색(名色)만 있게 함으로써 균일하게 되도록 하긴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 각종 보미(保米)야말로 지방(支放)하는 수요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불가불 급대(給代)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해 준 숫자가 미곡으로 7백 37석 2두이니, 기읍(畿邑)에 있는 강도미(江都米) 3천 석과 칙수미(勅需米) 5천 석에 대한 모조(耗條) 도합 8백 석을 매년 떼 주어 외영에 보내게 함으로써 수요에

충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이번에 액수(額數)를 감하고 두수(斗數)를 감해 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대체로 영(營)으로 승격된 뒤로 군정(軍丁)의 신미(身米)가 예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은전을 베푸심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승격되고나서 더 내게 된 신미는 9백 석인데, 아별무사 1천 명의 액수를 감한 데 따른 미곡 2백 석 및 6두와 4두를 납부하던 군정 8천 57명을 대상으로 각각 1두씩 감해 준 미곡 5백 37석을 합치면 미곡 7백 37석이 되니, 이를 더 내게 된 숫자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1백 60여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승격된 뒤로 광주(廣州)의 송동(松洞)과 일용(日用) 2 개 면(面)이 본부로 이속(移屬)됨에 따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토지가 더 넓어지고 인민(人民)이 더 늘어났는데, 2 개 면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과 인민이 납부하는 것을 1백여 석 부족한 숫자와 비교해 헤아려 보면 몇 배 정도만 될 뿐이 아니니, 이로부터 군정에게 여유가 생기고 요역이 수월해져 1 부(府)의 군민(軍民)이 모두들 성대한 은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1. 속읍이 본부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곳에 있는 군정(軍丁)을 지금 이미 외영으로 전속(專屬)시켰으니 이 뒤로는 똑같이 너그럽게 보살피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 읍에 있는 속오군(束伍軍) 5백 10명과 납포군(納布軍) 4백 90명 등 도합 1천 명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減額)하도록 명하고, 또 4 읍의 여정(餘丁)과 군보(軍保) 2백 28명에 대해서도 모두 각읍에 환급토록 한 것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만약 골고루 배정해 널리 베풀 경우 지금 이후로는 인족(隣族)의 피해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고 노약자들은 면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러한 뜻을 다섯 속읍에 알린 뒤 반드시 직접 거행하게 함으로써 대소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특별히 혜택을 베푸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양정(良丁)과 사정(私丁)은 그 역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징납(徵納)하는 것이 현격하게 틀리는데도 근래 제로(諸路)에서 첨액(簽額)하는 정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뒤섞어 시행하고 있는 등 간악한 폐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소속된 5 읍의 성정(城丁)과 향보(餉保)를 보더라도 양정과 사정이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에 올라가 첩(堞)을 지킬 때에야 물론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만 각자 본읍(本邑)에서는 양(良)·사(私) 두 글자를 일일이 그 첨안(簽案)의 각 이름 아래에 기록해 둔 뒤 포목을 거두는 등의 절목을 시행할 때 일체 법례(法例)에 따라 하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고, 궐원(闕員)이 생겨 대리자로 충정(充定)할 때에도 반드시 이름별로 자세히 조사한 뒤 예전대로 기록해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명이라도 서로 뒤섞이게 한 것이 점검할 때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수령을 중하게 논핵(論劾)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해 거듭 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의 군보(軍保)와 장보(匠保)를 통칭 향보(餉保)라 하여 모두 외영에 소속시킨 만큼 도리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면서 힘을 느슨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良)·사(私) 군정(軍丁)이 각각 1냥(兩)·2냥씩 내는 것은 가감(加減)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서 변통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후전(後錢)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부터 각사(各司)에서 거두어 들일 때 제멋대로 조종하면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등 일정하지가 않아 군민이 그 폐단에 시달려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데 합쳐 소속시킨 초기에 일정한 규정을 두어 너그럽게 보살피는 뜻을 보여 주어야 마땅하니, 2냥을 납부하던 것은 2전(錢)으로 마련하고 1냥 납부하던 것은 1전으로 마련하여 거두어 들이도록

절목에 기록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逃)·노(老)·고(故)의 부표채(付標債)야말로 지필(紙筆) 비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아무렇게나 징수하여 많게는 3, 4냥을 받기도 하고 최소한 1, 2냥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 법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정(良丁) 5전 사정(私丁) 3전으로 규정을 정해 다시 밝히고, 고대(故代) 할 때에는 연전의 조령(朝令)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게 과조(科條)를 엄히 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에 있는 각사(各司)·각군문(各軍門)의 군보(軍保)가 내는 것을 모두 화성(華城)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갖가지로 주구(誅求)하는 폐단을 제거하였는데, 화성에서 경각사(京各司)로 이송하는 것 역시 이미 폐단이 많고 또 일의 체면에도 관계되니, 경각사에서 받아 들이는 미포(米布)는 급대(給代)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돈으로 환산하여 5천 5백 12냥인데, 이에 대해서는 균역청(均役廳)의 2천 7백 56냥과 병조의 겸 사금 군록(仕禁軍祿)·마태가(馬太價) 및 관서(關西)의 소미가(小米價) 등 도합 2천 7백 56냥을 합쳐서 급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사·각군문의 각종 군오(軍伍)·장보(匠保)가 내는 전(錢)·미(米)·포(布)는 많고 적은 것을 따질 것 없이 특별 분부를 통해 일체 급대토록 하였는데, 각종 군보가 내는 돈 5천 3백 60냥과 외영에서 거두어 들이던 것 모두를 외영에 소속시켜 별도로 저장해 두게 함으로써 불시의 수요에 대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備邊司以壯勇外營五邑軍兵節目啓: "**華城**之設外營, 爲拱護仙寢也, 掌以郡邑, 衛以士馬, 自昔伊然, 可按而知. 漢太上皇陵, 置邑曰萬年, 高祖長陵之邑戶過一萬, 武帝茂陵之邑爲一萬五千戶, 宣帝杜陵之邑爲五萬戶, 乃命三輔, 共衛五邑. 而兵衛之稱, 則如壽陵亭部·永陵亭部是也. 唐太宗昭陵, 分雲·咸二邑, 而爲醴泉之縣. 及至鳳陽基運之盛, 遂設皇陵衛·祖陵衛, 建官以總其權, 封地以表其尊, 于以壯軍容而鞏王基. 則今此因華爲城, 奉我珠邱, 聖心之所瞻慕, 民情之所依歸, 有非尋常關防之比. 旣置行宮, 又築崇墉, 不以元帥而鎭之, 列郡而衛之, 則節制只在於一境, 體貌反遜於三都, 烏在其屛翰輔車之義也哉? 於是陞爲留守, 仍管外營, 而四面五邑, 次第移屬, 如星之拱, 如輻之湊. 軍制則置親軍衛幾人, 入防軍幾哨, 合于內營之騎幾人步幾哨五千兵馬, 允叶于外都監之舊稱, 而仍以本府暨五邑軍官·餉保·束伍之類, 作爲城丁·駐隊·遊兵·攔後之軍, 俾專派守策應之責. 而先從外營去哨·司之號, 效衛·部之規, 以寓井田試一鄕之意, 而卒不可勝用矣. 蠲恤則遷徙賜復爲十一年, 還餉減耗, 彌億萬世, 無異於家授餐戶饋漿. 而特軫軍保納米不齊之苦, 兒弱襲謬之弊, 本府之近萬原額納六斗四斗者, 併人減一斗, 一千別武士之以兒稱號者, 全減其數, 五屬邑軍保之分隷京師, 被擾於簽括, 積困於誅求者, 併令移屬, 而仍減納布軍束伍軍合千額. 自近及遠, 均洽遍暨, 惠澤到底, 浹肌衆心, 從而成城, 喬山松栢, 拱護增重, 而四方爲之會同, 萬代爲之瞻仰, 非但內外營之相須, 五屬邑之疏附, 壁壘輝光, 體勢鞏固而已矣, 苟非大聖人達孝宏謨, 準于海而極乎天, 其孰能與於此哉? 癸丑以來, 諸般事例, 非不詳備, 而設施之鉅, 惠澤之廣, 於今爲最, 不可無一通文字. 大臣諸臣, 奉承聖敎, 會于籌司, 彙輯外營前後事實, 仍與入防·城守·操鍊等項, 撰出節目, 條例于左, 以爲永久遵行之地. 一, 我東軍制, 始創義興之三軍, 唐·宋之府兵禁廂, 千古同規. 而三軍變爲五衛, 定部統而作選井之法, 摠民兵而成寓農之規, 逮夫設軍門置營司, 而衛法廢焉. 此古今之異, 而隨時制宜者也. 蓋此外營, 素稱畿輔重鎭, 而司哨制置, 取倣訓局, 士馬精强, 節制整肅矣. 弊瘼漸滋, 虛伍居多, 戎政之踈虞, 非復舊日規模. 乃於癸丑陞營之初, 講定軍制, 而聖念先軫于此, 以步軍二十六哨, 半抄正兵而入防行宮, 半降保軍而收米支放, 貴精之義, 戶保之法, 併行而不悖, 此其設施之大槪. 而龍仁·振威·安山·始興·果川五邑軍兵, 次第移屬,

仍抄五邑束伍之精壯，增置十二哨，併前十三哨而準二十五哨，以成一營五司．又以本府及屬邑民兵，創爲守城之制，互相分隸，自合於古之衛法，此所以改司・哨而定衛・部者也．以一營分前・左・中・右・後五衛，而通稱長樂衛，管五部，部領三統．守城軍制，各以信地門號爲衛名，東曰蒼龍衛，南曰八達衛，西曰華西衛，北曰長安衛，衛而分部，部而管統，統而率垜長・垜夫．又以通衢遊兵居中，而稱新豐衛，併爲分屬於長樂五衛，俾受節制．今則內營外營軍摠，合而計之，恰爲五千，表裏相須，形勢相連，拱護增重，緩急有恃，依此變通，實合事宜．一，長樂前衛正兵，則本府南境所在長樂隊六百三十五名屬焉，而管下五部將，各領一百二十七名．城丁則南城八達衛隸焉，而本府南境所在八達隊一千一百四名，前・左・中三部，各領三百六十八名，振威八達隊七百二十名，右後(一)〔二〕部各領三百六十名．本府八達隊二百四十五名，振威八達隊二百六十五名，正門及南暗門・西南暗門・角樓・水門・雉城・敵臺・烽墩・砲樓・舖樓等十二處加泓．本府八達隊三十九名，統長十二名，垜長二十七名，振威八達隊二十六名，統長八名，垜長十八名磨鍊，振威八達隊一百八十四名，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合軍二千五百八十三名．一，長樂左衛正兵，則龍仁所在長樂隊三百八十一名，振威所在長樂隊二百五十四名，共六百三十五名屬焉，而管下五部將，各領一百二十七名．城丁則東城蒼龍衛隸焉，而本府東境所在蒼龍隊七百三十六名，前・左二部各領三百六十八名，龍仁蒼龍隊一千九十六名，中部領三百七十六名，右・後二部各領三百六十名．本府蒼龍隊四十名，龍仁蒼龍隊一百五十名，正門及砲樓・舖樓・雉城・弩臺・空心墩等七處加泓．本府蒼龍隊二十六名，統長八名，垜長十八名，龍仁蒼龍隊三十九名，統長十二名，垜長二十七名磨鍊，龍仁蒼龍隊一百八十四名，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合軍二千二百七十一名．一，長樂中衛正兵，則本府水上各面所在長樂隊三百八十九名，龍仁長樂隊一百二十三名，振威長樂隊一百二十三名，共六百三十五名屬焉，而管下五部將，各領一百二十七名．遊兵新豐衛隸焉，而龍仁新豐隊二百七十五名，安山新豐隊二百五十名，始興新豊隊二百十三名，振威新豐隊一百七十名，果川新豐隊五十二名，合九百六十名，四城通衢部將八員，各領一百二十名．果川新豐隊五十六名，衛將・部將標下磨鍊．合軍一千十六名．一，長樂右衛正兵，則本府西境所在長樂隊三百六十一名，安山長樂隊二百七十四名，共六百三十五名屬焉，而管下五部將，各領一百二十七名．城丁則西城華西衛隸焉，而本府西境所在華西隊一千四百六十四名，前・左・中三部，各領三百六十八名，右部領三百六十名，後部則領安山華西隊三百六十名．本府華西隊三百二十名，正門及角樓・暗門・雉城・砲樓・舖樓・弩臺・空心墩等十一處加泓．本府華西隊五十二名，統長十六名，垜長三十六名，安山華西隊十三名，統長四名，垜長九名磨鍊，安山華西隊十五名，本府華西隊一百六十九名，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合軍二千三百九十三名．一，長樂後衛正兵，則本府西北境所在長樂隊二百六十六名，始興長樂隊一百六十九名，果川長樂隊二百名，共六百三十五名屬焉，而管下五部將，各領一百二十七名．城丁則北城長安衛隸焉，而本府西北境所在長安隊一千四百六十四名，前・左・中三部，各領三百六十八名，右部領三百六十名，後部則領果川長安隊三百六十名．本府西北境所在長安隊二百二十四名，果川長安隊一百六十六名，正門及水門・角樓・暗門・敵臺・砲數・舖樓等十處加泓．本府長安五十二名，統長十六名，垜長三十六名，果川長安隊十三名，統長四名，垜長九名磨鍊，果川長安隊一百八十四名，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合軍二千四百六十三名．一，長樂五衛，每衛一衛將・五部將・三統長・九隊正，衛以令部，部以令統，統以令隊．屬五衛，每衛一衛將・五部將・二十統長・四十五垜長，衛以令部，部以令統，統以令垜長，垜長令垜夫．互相統攝，挨次承接．一，內營外營，表裏一體，軍制規模，宜無異同，故長樂隊以二十五部磨鍊，而五部之未卽團束者，恐非重戎政之義．五邑所在禁・御兩營正軍，自是上番鍊習者，兵部所管上番騎兵，亦皆有根着良丁．一從五邑實

數，就其資保中抄出精壯，使之編伍於長樂隊未充之五部，則軍保無無布，而有布之弊，衛隊不期壯而自壯，依此施行，實合事宜．長樂五衛，旣準各五部之制，則入防軍數，當爲加數磨鍊，俾均休息，初年三部，翌年二部，添付元入防，以爲分數加排之地．一，軍兵之入防者，休番時收米，雖是各營之例，因特敎不爲磨鍊，以示優恤之意．一，長樂五衛，扈衛行宮時，前・左・右・後衛，相連環衛，而中衛則四衛之內，重層環衛，列陣則四衛爲外疊，中衛爲子壁，而臨機應變，一聽調度．一，幸行時斥堠伏兵，以屬邑所左新豐隊出用，長樂隊勿爲擧論．一，長樂隊初頭團束，在於癸丑陞營之後，而或多苟充，未知其十分精抄，當此軍制大更張之時，不可因循置之．殘劣不合之類，次次換定，以壯軍容，追團束軍，亦必以有根着良丁，各別抄擇編戶之意，嚴立科條．一，長樂隊服色，一依癸丑啓下節目，戰巾靑狹袖着號衣磨鍊．一，長樂隊，毋論本府屬邑新軍舊軍從其所居之界，魚鱗作隊．一，長樂隊，依內營左司鄕軍例，定行月課，而朔數規矩，一遵內營定式施行，入防當次之隊，勿爲課試．一，牙兵以各邑束伍餘在，分作三部，每部一百二十名式，竝標下五十名，而合四百十名磨鍊團束．而部將則將校中差出，將則以曾經首將校中有履歷者差出，領率屬之外使攔後．一，每年隨駕時，攔後牙兵，有難全數出用，一從次第輪回參陣，而調發部數，別單稟旨．一，今之五衛將・部將，旣是實職，則長樂五衛衛將・部將之爲軍銜者，有非衛部舊制，衛將・部將差出時，自外營擬望，移牒兵曹，以爲開政時差出之地．而衛將以十五朔箇滿，參上・參下部將勿定瓜限事，一依今番筵稟定式施行．參上・參下，不可不定窠數．參上十三窠內，五窠，本府宣薦堂下朝官三員，部守薦堂下朝官二員差出，四窠屬邑宣部守三薦堂下朝官，輪回差出，二窠內營額外壯勇衛前銜差出一員，知敦敎鍊官中差出，遙領二窠，外營知敦敎鍊官中及親軍衛正領中各一員差出兼帶．參下十二窠內，八窠，本府宣薦出身五員，部守薦出身三員差出，二窠屬邑宣薦出身一員，部守薦出身一員差出，而自軍多屬邑爲始，次次分排輪回，二窠內，營額外壯勇衛出身一員，及將校中有薦出身一員差出遙領．而內營之遙領者，常時則雖遙領而入防及習操時，竝爲下去，以爲領軍擧行之地．一，部將二十五員，旣爲實職，而參上・參下，定其窠數，內外營及屬邑，從多寡通融差出，則久勤一款，當爲磨鍊．參上久勤則雖不定其箇滿，不計朔數，太無界限，滿三十朔後，始許遷轉於軍器寺主簿一窠及訓鍊主簿，自時任哨官仍差者，竝計前仕．而此是軍器寺訓鍊院間次差出者，軍器寺窠當次者未遷轉之前，勿爲遷轉於訓鍊院之意，定式施行．參下則旣有與內營，間二都目，輪回初仕一窠及原定內營哨官，遷轉一窠，從其久勤，次第調用事，一體定式．而屬邑窠及內營遙領者，公役之間歇，事務之閑漫，不可比論於境內土着城底築室者之勞苦，則其於久勤遷轉之際，亦當有遲速緊慢之別．本府之築室土着者，一從久勤，次第施行，屬邑窠及內營遙領者，毋論參上・參下，竝越三次，許其久勤遷轉．而近來本府築室，毋論朝官・出身・閑良，太欠誠實，虛僞多端，此等之類，曾或有冒占哨官者，劃卽摘發，削其前仕，越六次許計久勤，以爲別主客杜後弊之地．內外營知敦敎鍊官之兼帶親軍衛正領中差出者，各有其廳久勤，只許遞兒職陞付，久勤則勿論．

一，用兵之法，毋出乎陰陽五行，而經・緯・奇・正是也．一自廢衛制而純用戚法，弊在偏重，兵家病之．蓋『新書』所載，明其陰陽牝牡之義，以寓長短兼濟之法，而終不若衛制之表裏相連，大小相包，分合方圓，各適其宜，而經緯定位，五十居中者．今以衛・部，專尙戚法，則或近於支吾，拘泥戰隊・駐隊・正軍・遊軍之制，成出一統笏記，與戚法兼加肄習，以爲循名責實，毋或偏廢之地．一，衛制之所貴，一則作統，便於選伍，一則寓農，利於裕兵．農隙之分五番入防，終近於鋤耰棘矜，節制未易．今於城內外，團束一部軍，自二月至九月而八朔，則分番入防於營下，使之作農於屯田，而耕耘之暇，略習進退，原入防時，幾名式分泒於各部，以爲敎一成十之地．一，內營旣不置中軍，而以別將兼行中軍之任，則當遵用是例，而旣復衛制之後，又行營司之規，終非循名責實之義，略倣衛制，別置外軍摠制，以爲承接軍務之任．而若備其官，有違於

內營，不置中軍之制，外使以親軍衛別將，隨時傳令，使之兼行．一，長樂各衛將・部將，旣是實職，則親軍衛別將及左・中・右將，以軍銜施行者，恐非同其制之道．謹依國朝舊制，別將以祿官磨鍊，定爲實職，而毋論京外，以亞將以下兵使以上素有聲望人，別擇擬望．而別將旣爲實職，且兼行摠制之任，則其所差，出於內於外，不可獨專，外使備望，同議於兵曹判書，以爲停當排擬，俾重體面之地．左・中・右將，亦依禁軍將例，以實職施行，而左列・中列・右列將，以一番・二番・三番將改號．別將・番將，俱於開政時差出，而或有時急擧行之事，依禁軍將例，口傳差出．前帶之本府中軍禿城守將，竝令減下，禿城不可無守城之人，以禿城別將稱號，別爲差遣．一，內營善騎隊，旣以三哨磨鍊，則外營不可異同，親軍衛加選一百人，以準一番・二番・三番之制．而五邑旣令移屬，則當令五邑，分排擇定，以爲慰悅武士之道，而五邑充選，有未可必．六十人隨其邑之大小，以出身・閑良之可合宣部守薦者，另擇抄塡，其餘四十人，以本府人差出，分授馬匹，一依節目施行．馬隊專尙射技，而癸丑節目中取才一款，不爲擧論者，終涉陳漏．此後則新差之類，必令試取入屬，而取才節目，令外營參量磨鍊，成出修啓，以爲遵行之地．一，守城時外使摠領軍馬，有難專意於應接登陴之役，以本府判官，差定管城將．一，蒼龍衛將龍仁縣令，八達衛將振威縣令，華西衛將安山郡守，竝依前差下，始興・果川，軍數懸殊，以果川縣監換差長安衛將，始興縣令移定協守衛將，屬之甬道．而新豐衛衛將，則本府境內堂上內外將，已行朝官，部將堂下朝官，或出身差出，而屬衛各部將，無論本府屬邑，一從軍在邑差出．各衛將管下部將・統長，參互本府屬邑所居之人而差出，則所用非所養，發號放令，或致齟齬扞格，恐非節制之道．此則部將以下，隨其所管衛，凡係軍務一切關由，毋敢違越，以嚴師律．一，四城衛將，旣以龍・振・安・果四邑守令原定，則部將以下，宜有一定之例，各城信地，本府軍磨鍊處，以本府境內堂下朝官或出身宣部守有薦者差下．統長，以各里常時定置統長中，擇其有風力可堪者差出，垜長則以統內軍官隨行中稍解事務者差出，使之各領垜夫，以爲從信地登城之地．墻內及中舖舍將各處墩臺將將校中，有履歷可堪者，另擇差定，屬邑部將以下差出之規，亦依右例施行．一，各城衛將，信地在於東・西・南・北正門，汛守之法，當自門平分，將領居其中．而本營城制，旣非四面方城，則各門相距，迂直懸殊，且各邑軍數，多寡不一，自多掣礙，則不可不自前門平分，至于後門，以寓合頭合尾之法．八達衛將(左)〔在〕門，右後二部，擺向右，止于西南暗門，西第二堞前・左・中三部，擺向左，止于烽墩北第五堞．蒼龍衛將在門，前・左・中三部，擺向右，止于烽墩，北第六堞，右・後二部，擺向左，止于北暗門東第九堞．長安衛將在門，前・左・中三部，擺向右，止于東暗門東第八堞，右・後二部，擺向左，止于北舖樓東第一堞．華西衛將在門，前・左・中・右四部，擺向左，止于四南暗門西第三堞，後一部，擺向右，止于北舖樓東隅．新豐衛將，信地在十字通衢，每面各二部式擺列，以應四城．一，本城週回爲四千六百步，以每五步一堞磨鍊，則當爲九百二十堞，而城身之外週，女堞之內匝，不無三十六步贏縮者．故以九百十三垜，計步磨鍊，排丁分授，則四衛信地，以步則一千一百四十步，以堞則二百二十八堞，而餘一堞附之東城，而垜夫以每垜八名磨鍊．一，四城加汛軍，則南北門各一百名，東西門各七十名，上下水門各六十名，四角樓各五十名，南暗門西南暗門各六十名，內舖舍・中舖舍及東・西・北・暗門烽墩各四十名，砲樓・舖樓・弩臺・敵臺・雉城・空心墩各二十七處，各二十名磨鍊．一，四城各衛各部・統長・垜長・垜夫，新豐衛新豐隊，協守衛協守隊，竝駐隊策應兵及各其所管標下・火夫加汛而磨鍊，都數爲一萬一千七百二十八名．此外作隊餘軍，本府一千六百十九名，此則無論城外各處墩臺及伏路・塘報，臨時排定．至於各邑保屬及移來移去之類，令外使申飭守令，詳加爬櫛．一從實數，名以餘丁，而亦載之統案，俾無從中(道)遺漏．一，遠斥堠謹烽火，卽兵家要法．本城形便，東城之外，人家尠少，山脊橫亘，而光敎深谷白雲捷徑，在所當慮．迎華察訪，設置北城之外，姑無衿着信地，差定斥堠將，使之領

率本驛作隊軍一部，扼守於龍淵上藥巖墩臺．而自門巖至艾峴下五處墩臺，亦以五十名軍，置將領守，而一聽節制於斥堠將，俾得以臨急報警，隨機應變．八達以西，平野曠漠，間路交錯，而孰知山墩臺，高陽洞屯舍後岡墩臺處在要害，俱合關防，竝南水口・龜山墩臺，而依東墩例，置將卒守警，以爲連梯於西城弩臺．又貯水於西屯堤堰，以爲連北屯水田，而通萬石渠，遮截要路，以寓前左水澤之義．一，要行衛制，當先統法．古之衛法，五人爲伍，五伍爲隊，五隊爲旅，而置一統長，戶法則五家爲比，百家爲里，於斯兩者，折衷參互，五家各定統首，百家置大統長，統內凡事，一切句管，專責委任．申明舊制，然後簽丁無搜括騷擾之弊，團束有魚鱗作隊之效，可使兵隱於農，而統領有素．一，今此啓一節目，事體自別，而但其論列，擧其大體而已．外此細瑣條件，外使與屬邑守令，衛制統法，多般講究，毫分縷析，鑿鑿中窾，然後可以永久遵行，無至廢墜．假令每面內從某至某，計家分里，以成統案，以其統案，某面某里，屬之某城，幾家幾丁，屬之某堞．毋論本府屬邑，使大小軍民，咸各知其信地，俾不至臨時紛錯，而以爲緩急得力之地．一，城內及城外附近人戶，勿入於城丁都數之中，除各項標下・校卒・吏奴外，毋論士夫・軍民・男女・老少，別成案冊，常加約束，聞警登城，各守信地．而計垜分守，數不相當，以雉堞・譙砲・弩臺等處，作爲信地．一，各城信地，一從該邑軍丁之多寡，而與本府軍丁，分排磨鍊之際，每衛部數，或有彼此長短不齊之弊，毋論本府軍屬邑軍，每城衛將，以各部軍數，分其前・左・中・右・後，併標下軍及火夫，而都計數爻，成出都案，一上外營，一上城所．而常時團束，則以地方各統，專責擧行．一，駐隊策應兵四部，每部一百名，併標下五十名磨鍊，而將及部將，依他衛將・部將例差出，將則以策應將稱號．四城每面，以三伏三塘磨鍊，而每伏一將五卒，合軍六十名，每塘二名，合軍二十四名．一，火夫，每統各定五名，俾管每垜懸燈燃炬炊飯等事．一，舖舍之設置於墻內及城上，專爲拱護行宮，墩臺之分設於山上及平野，亦係緩急報警．雖在常時，內外舖舍六處，依近日定式，各置二卒，分排汛守，墩臺，如龍淵・門巖・艾峴・龜山・孰知・高陽等六墩，各定一將二卒，以爲常加警守之地．一，守城器械，則每一垜，懸燈一盞・梆一口・鳥銃一門，或快槍一枝，【少則(一)〔二〕垜一門】短槍或斬馬刀一把，大小石子一百塊式分授，而刀・(釜)〔斧〕・棍・弓・矢，火夫次知，每五垜，置狼機一位，【少則十垜一位】水缸一口，每城門下置大將軍一位或二位，每十垜，置大石重二百斤或一百五十斤者三塊．一，屬衛，每衛各差官・將校二員，標下則棍杖手・朱杖手・令旗手・巡視手・門旗手・喇叭手・大角手・大砲手・號笛手・燈籠手・帳幕手・書記各二名，認旗手・鼓手・鉦手・鑼手・別破陣各一名．每部將各差官・將校一員，標下則認旗手・棍杖手・鑼手・大砲手・皷手・帳幕手・書記各一名，統長旗手各一名．甬道協守將新豐衛將，各差官一員，標下則令旗手・巡視手・棍杖手・門旗手・喇叭手・號笛手各二名，認旗手・皷手・鑼手・鉦手・大角手・大砲手・別破陣・書記各一名，部將標下，依屬衛部將例磨鍊，而各減大砲手一名．斥堠將・策應將・牙兵將，標下依協守將例磨鍊．一，始興軍四百七十三名內，三百四十名，甬道六十八堞，每堞五名式分授，而差出左・右部將，分領一百七十名，每部各定四統長，以爲挨次節制之地．垜長十二名，火夫四十名，協守將標下五十二名，部將標下十二名，統將旗手八名磨鍊，部將差出之規，統長團束之法，依他屬邑例施行．一，城操時，守城軍之赴操者，從其道里遠近日字多寡，減其身布，俾助糧資．一，外營軍保名色浩汗，受弊多端．從今以後，各樣軍官，竝稱除番軍官，各樣軍保，竝稱餉保，俾一其名號，簽丁收布之際，毋或有雜亂之弊．而毋論本府屬邑軍官，隨其所屬五衛之號，各稱某衛軍官，軍保則亦依軍官例，以某隊作名．而從前軍官中喪頉者，依例懸頉，毋或侵徵，各其名下遭故，日月消詳，懸註於統案中，以防面里任輩奸僞．一，本府軍保之外，又有禿城軍保，各自分屬，名色甚多．而但散在各處之故，本營近處居生者，隨軍兵付之禿城，禿城近處居生者亦如之，則及今作統之際，不無掣礙之端．一境軍保，旣已一其名號，則從

其名數多寡，幾面幾里，付之本城，幾面幾里，付之禿城，各成案冊，俾無如前混雜之弊．一，五邑所在新豐隊及牙兵，自是束伍正軍中團束者，不爲行操之年，官門聚點，四城各衛所屬八達隊・蒼龍隊・長安隊・華西隊，旣已作統，各從附近，從便聚會，以爲統點之地，而守令必親執擧行，俾無踈虞之弊．一，南漢大操時，五營軍兵之晝行場操，夜習城操，此爲攻守通用之良法．而許多守城軍卒，有難竝赴場操，合操之年，自東面爲始，只以一面軍輪參，面操之年，使之仍參．一，駐隊策應兵及新豐隊，與參操正軍無異，各別抄壯團束，場操時依例竝參．而城操時則計垜分守，故雖無方色號衣，別無掣礙，而場操時則與正軍一體着號衣持器械，當該城將及新豐衛將，各各分領，相連札駐於正軍尾局，以爲承接號令之地．一，鄕武士則名以守堞軍官，雖已成廳，至於境內出身，毋論宣部守三薦，若干入屬於別軍官之外，竝與無薦出身，俱無所屬處，前銜將校，則所謂自其廳錄置者，踈漏居多．以嶺南左・右列出身作隊之法觀之，大是闕典，自今爲始，出身及前銜人員，一竝收聚錄案，以爲追後區處之地．一，僧徒之得力於守城，或有勝於城丁．龍珠寺旣置摠攝，團束僧徒，付之外營，間試砲放，此與南・北漢僧卒無異，從附近使之協守於禿城，以爲計垜加泒之地．本城北光敎洞口，亦設小刹，而凡百草創，僧徒零星，待其募得成就之後，一體磨鍊，加泒於附近墩臺．一，禿城山城，密邇仙寢，掎角本城，則拱護之責，不輕而重．且有各樣軍官軍保之屬於城者，爲二千一百二十三名，此則使外使，計本城堞數，排丁磨鍊，成出守城節目，追後修啓．一，今此節目，係是大設施，比之前日規模宏偉，小小條件，以癸丑節目所載參互施行．一，軍丁之互相去來，不以時居施行者，大是痼弊．今則本府與五屬邑，旣定統法，申明舊制，則稱以軍丁之各相管轄，及其出用之時，統內見存之戶，移隷他邑，他邑散在之伍，反付錄案，終非核實之政．從今以後，斷以土著，一從作統戶數施行，而本府與五邑，則許其互相去來．一，本府，湯沐邑也，軍制雖重，人和爲貴．兒別武士其來已久，而兒弱充定旣係朝禁，則況於本府尤不容仍置，故一千名待命減額．納米軍之良六斗私三斗，自是諸路通行之規，而本府保米之六・五・四・三斗之差殊，旣失齊一之制．見今大變通之際，宜有優恤之典，六斗納者，七千四百七十九名，四斗納者，五百七十八名，謹遵下敎，竝爲特減一斗．使本府之內，只有五斗三斗兩名色，以爲均平之地，而各樣保米，旣係支放之需，則不可不給代．而特減之數，爲米七百三十七石二斗，以畿邑所在江都米三千石，勅需米五千石耗條合八百石，每年劃送外營，以爲需用之道．一，今此減額減斗之命，槪以陞營後軍丁身米之比前有加，特推優卹之恩，俾爲樂趨之地．陞營後加出之身米爲九百石，而兒別武士一千名，減額米二百石及六斗四斗軍八千五十七名，各減一斗，米五百三十七石零，合米爲七百三十七石零，比諸加出之數，不足爲一百六十餘石．而陞營後廣州之松洞・日用二面，移屬本府，土地之加廣，人民之益繁，比前懸殊，以二面土地之所出，人民之所納，較量於百餘石不足之數，則不啻倍蓰，自此軍丁有裕，徭役輕歇，一府軍民，咸被盛澤．一，屬邑雖與本府差間，所在軍丁，今旣專屬外營之後，宜有一體優恤，拔例軫念之擧．五邑所在束伍軍五百十名，納布軍四百九十名，合一千名，特命減額，又以四邑餘丁保二百二十八名，幷令還給各邑，以此額數，其若均排普施，則從今以後，貧殘無隣族之苦，老弱有蠲免之喜，以此意知委五屬邑，必親執擧行，使大小軍民，俾知朝家曠蕩之惠澤．一，良丁私丁役名各異，徵納懸殊，而近來諸路簽額之政，率多混淆，奸弊漸滋．五邑新屬城丁餉保之中，亦多有良私相雜之弊，登城守堞之際，雖不必區別，而各自本邑良私二字，一一懸錄於各其簽案名下，收布等節，一從法例，毋敢違越，有闕塡代之時，亦必逐名詳查，依前懸錄．如有一名之相混，現發於查點，則當該守令，論以重勘事，申嚴定式．一，五邑軍保匠保，通稱餉保，併屬外營，其在軫恤之道，宜寬其力．而良私軍之一兩・二兩，係是加減不得者，有難低仰，而但其後錢，從前各司收捧之際，惟意操縱，多寡不一，爲軍民之苦弊久矣．趁此合屬之初，宜有一定之規，以示優恤之意，二兩納則二錢，一兩納則一錢，磨鍊收捧之意，載之節

目, 俾不敢違越. 且逃·老·故〔付〕標債, 卽不過紙筆所費, 而徵斂無節, 多或爲三四兩, 少不下一二兩者, 有乖法意. 此亦以良五錢私三錢, 申明定式, 而故代則依年前朝令, 毋得徵捧事, 嚴立科條. 一, 五邑所在各司·各軍門軍保所納, 倂納華城, 以除奔走誅求之弊, 而自華城移送京各司, 旣多弊端, 亦關事面, 京司所捧米布, 當爲給代之數, 以錢爲五千五百十二兩, 以均廳錢二千七百五十六兩, 兵曹兼仕禁軍祿馬太價及關西小米價合二千七百五十六兩, 倂爲給代. 一, 各司各軍門諸色軍伍·匠保所納錢·米·布, 勿論多寡, 因特敎一倂給代, 諸色保錢合五千三百六十兩, 自外營收捧者, 倂屬之外營, 別爲貯置, 以備不時之需."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10월 19일(기유) 5번째기사>

화성/행궁

헌륭원에 가서 제례를 한 후 화성 행궁에 돌아와 머물다

행차가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가 그대로 현륭원으로 가서 몸소 제례를 행한 다음 화성 행궁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駕次華城行宮, 仍詣顯隆園, 行親祭, 還次華城行宮.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1799) 8월 20일(병오) 2번째기사>

화성/행궁

대신들이 현륭원에서 재실로 돌아갈 것을 주청하다

현륭원에 가서 두루 돌아보고는 상이 엎드려 땅을 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메어 울먹이므로, 대신과 각신이 번갈아 재실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상이 흐느끼며 이르기를, "금년의 경례가 나에게 있어 그 얼마나 큰일인가. 경사를 당하여 선대를 추모하는 중에 크나큰 아픔이 북받쳐 올라서 그러는데, 어찌 차마 나더러 진정을 하란 말인가."
하고, 인하여 또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계속 내리면서 몹시 목메어 흐느꼈다. 그러자 정민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경사를 만나 추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신들 또한 어찌 모르겠으며, 전하의 지극한 효성으로 또한 어찌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반열에 있던 여러 시위하는 신하들이 허겁지겁 원릉으로 올라왔다. 화성 유수(華城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경사를 고하는 오늘을 당하였으니, 성대히 하늘을 오르내리는 선왕의 영혼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만일 하늘을 오르내리는 선왕의 마음을 전하의 마음으로 삼으신다면 어찌 상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또 흐느끼며 이르기를, "어느 해, 어느 날인들 추모하지 않았으랴마는, 금년의 경우는 나의 심정이 더욱 다른 바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억제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손으로 땅을 쳤다. 이때 대신과 각신은 좌우에서 상을 부축하였고, 약방 제조는 차를 올리며 마시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심기가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야 차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이러한 즈음에는 가슴속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니, 바라건대 조금 드소서." 하였으나, 상이 또 뿌리치고 들지 않으므로, 심환지 등이 아뢰기를, "아침 기후가 차갑고 땅 기운도 매우 냉한지라, 신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신들 또한 성상의 끝없는 추모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날째 수고로이 거둥하시어 계속 잠까지 이루지 못하시는 이 즈음에 또 이렇게 하시다가는 성상의 몸에 반드시 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속의 격한 기운이 만일 다시 더치

기라도 한다면 어찌 천만번 민박(悶迫)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정민시는 아뢰기를,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인 규례를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신들이 또 죽을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어 심환지와 이시수가 상의 좌우로 나누어 서서 겨드랑이를 부축하여 일어나기를 번갈아 계속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금 쉬었다가 곧 내려가겠다." 하였다.
조금 뒤에 상이 목메어 흐느끼며 이르기를, "내가 아무리 완악하고 잔인한들 오늘조차 어찌 차마 내려가겠는가." 하니, 심환지 등이 울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하십니까. 마음 졸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할 겨를도 없거니와, 유독 선왕의 영혼께 걱정 끼쳐드림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상이 또 손으로 땅을 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속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내리자, 심환지 등이 또 울면서 부액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혼자 일어서겠다." 하고, 일어나 겨우 한두 발자국을 가서는 또 울며 엎드려 흐느꼈는데, 그 후로도 이러기를 또 수차 되풀이하였다. 그러자 이시수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겠다고 하교하셨지만, 이 자리에서는 추모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 더욱 마음을 억제하시기 어려우니, 삼가 바라건대 잠시 재실로 돌아가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또 한참 지나서야 상이 비로소 일어났다. 그러자 제신들이 또 앞으로 나아가 상을 부액하고 내려온 다음 작은 가마를 타고 재실로 돌아왔다.
○庚午/詣園上周審, 上, 俯伏叩地, 不覺失聲, 大臣閣臣, 迭請還齋室. 上, 嗚咽曰: "今年慶禮, 在予爲何等大事也? 遇事興慕之中, 有至痛之在中者, 將何忍使予按抑乎?" 仍又連下不忍聞之敎, 而掩抑不能成聲. 鄭民始曰: "聖心之遇慶興慕, 臣等亦豈不仰認, 而以殿下達孝, 何不能抑情乎?" 侍衛諸臣之在班者, 皆顚倒上來. 華城留守徐有隣曰: "當此告慶之日, 洋洋陟降, 亦必悅豫. 殿下若以陟降之心爲心, 則何可疚懷乎?" 上, 又嗚咽曰: "何年非追慕, 何日非追慕, 而今年則予之情事, 尤有自別, 予何以自抑乎?" 仍以手叩地. 大臣閣臣, 左右扶持, 藥房提調請進茶飮, 上曰: "予氣少定然後, 可進茶飮矣." 李時秀曰: "如是之際, 膈氣必難定, 伏乞暫爲進御焉." 上, 又却而不御, 沈煥之等曰: "朝候旣寒, 地氣又甚冷, 臣等之心, 誠不勝萬萬罔措矣." 時秀曰: "臣等亦豈不知聖慕之無窮? 而多日勞動, 連爲失睡之際, 又如此, 玉候必致愆和. 膈氣若復添劇, 則豈不萬萬悶迫乎?" 民始曰: "到此地頭, 常例有不暇顧, 臣等又將犯死罪矣." 煥之·時秀分詣左右, 請扶腋以起, 迭請不已, 上曰: "少休則當下去矣." 少頃, 上又嗚咽失聲曰: "予雖頑忍, 今日又何忍下去乎?" 煥之等泣奏曰: "殿下何爲此不忍聞之敎也? 臣等之焦迫罔措, 固不暇言, 而獨不念陟降之貽憂乎?" 上, 又以手叩地, 涕淚汍瀾, 連下不忍聞之敎, 煥之等又泣請扶腋, 上曰: "予當起立矣." 行纔一二步, 又泣伏嗚咽, 如是者又數回. 時秀曰: "殿下雖少休爲敎, 而卽地興慕, 尤難抑情, 伏願暫還齋室焉." 如是者又有頃, 上, 始起. 諸臣又進前扶腋以下, 乘小轎, 還御齋室.
<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1800) 1월 17일(경오) 1번째기사>

화성/행궁

현륭원 봉안각에 있던 선왕의 어진을 화성 행궁으로 옮기다

현륭원(顯隆園) 봉안각(奉安閣)에 있는 선조(先朝)의 어진(御眞)을 **화성(華城) 행궁(行宮)**으로 옮겨 봉안하도록 명하였다. 봉안각이 신릉(新陵)으로 봉표(封標)한 곳과 너무 가깝다는 것으로 대신(大臣)이 옮겨 봉안할 것을 청한 것이었다.
○丁未/命顯隆園奉安閣先朝御眞, 移奉於華城行宮, 以奉安閣, 於新陵封標處太近, 大臣請移奉

也.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7월 27일(정미) 1번째기사>

화성/행궁

초우제와 재우제에 관해 예조 판서 이만수가 건의하다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초우제(初虞祭)는 장차 화성 행궁(華城行宮)에서 지내고 재우제(再虞祭)는 반우(返虞) 한 뒤에 혼전(魂殿)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초7일은 곧 동지일(冬至日)이고 동지 제향(冬至祭享) 또한 삼헌(三獻)을 갖추게 되어 있어 사체가 우제(虞祭)와 간격이 없습니다. 만일 초7일 새벽에 동지제를 지내고 당일 반우한 뒤에 또 재우제를 지낸다면 하루에 대제(大祭)를 두 번 지내게 되어 일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또 동지제와 재우제를 화성 행궁에서 겸하여 행하게 되면 반우한 뒤 삼우(三虞) 전에는 단지 아침 저녁 궤전(饋奠)만 행하게 될 것이니 반우하는 예절에 있어 흠결이 나는 탄식이 있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나누어 지내거나 겸하여 지내거나 모두 구애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막중한 예절(禮節)에 관계되니, 청컨대 대신(大臣)과 외방에 있는 유신(儒臣)들에게 문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대신들이 모두 겸하여 지내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判書李晩秀啓言: "初虞祭, 將行於華城行宮, 再虞祭, 返虞後將行於魂殿. 而初七日, 卽冬至日也, 冬至祭享, 亦具三獻, 事體無間於虞祭. 若於初七日曉頭, 行冬至祭, 當日返虞後, 又行再虞祭, 則一日之內, 再行大祭, 事極未安. 又若以冬至祭·再虞祭, 兼行於華城行宮, 則返虞後三虞前, 只行朝夕饋奠, 其在返虞之禮, 恐有欠缺之歎. 分行兼行, 俱是掣肘, 而係是莫重禮節, 請問議大臣及在外儒臣." 大臣皆以兼行爲宜, 從之.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8월 25일(을해) 2번째기사>

화성/행궁

대왕 대비가 화성 행궁에 어진을 옮기는 문제에 관해 하교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화성(華城) 행궁(行宮)에 어진(御眞)을 옮겨 봉안(奉安)하는 것은 내년 봄에 마땅히 따로 전각(殿閣)을 건립하기를 기다려 봉안함으로써 매사에 절제하여 줄이고 검소 간략하게 한 성의(聖意)를 우러러 본받도록 하라.** 제향(祭享)은 탄일(誕日)과 납일(臘日)에 설행하되 외별고(外別庫)에서 거행하게 하고 제기(祭器)와 제물(祭物)은 남전(南殿)의 예(例)에 의거하여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大王大妃敎曰: "華城行宮移奉御眞, 待明春當別建殿閣奉安, 而仰體每事節省儉約之聖意. 祭享則以誕日及臘日設行, 而自外別庫擧行, 祭器與祭物, 依南殿例施行, 以留守判官, 兼爲殿官."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9월 3일(임오) 2번째기사>

화성/행궁

영가가 화성의 행궁 숙소에 머무르다

영가가 화성(華城)의 행궁 숙소에 이르러 머물렀다.

○壬午/靈駕次華城行宮宿所.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11월 4일(임오) 1번째기사>

화성/행궁

영가가 화성 행궁에 머물러 초우제를 지내다

영가(靈駕)가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머물러 초우제(初虞祭)를 지냈다. 저녁에 시흥(始興)의 행궁에 머물렀다.

○靈駕次**華城**行宮, 行初虞祭. 夕次始興行宮.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11월 6일(갑신) 2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지지대에 사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게 하다

화성(華城)의 지지대(遲遲臺)에다 사적(事蹟)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이는 곧 대행조(大行朝)에서 원(園)에 행행할 때 항상 주필(駐蹕)하던 곳인데, 암행 어사 신현(申絢)이 별단(別單)으로 청한 것을 따른 것이다.

○命立石紀蹟于**華城**遲遲臺. 卽大行朝園幸時, 常所駐蹕處, 從暗行御史申絢別單所請也.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11월 13일(신묘) 2번째기사>

화성/행궁

선왕의 어진 1본을 주합루에 봉안하고 1본은 화성 행궁에 보내다

선조(先朝)의 어진(御眞) 1본(本)을 주합루(宙合樓)에 봉안(奉安)하고, **1본(本)은 화성(華城) 행궁(行宮)으로 받들고 가도록 명하였다.**【때가 되매 시임(時任)·원임(原任) 각신(閣臣)과 표제관(標題官)·서사관(書寫官)이 들어와 서향각(書香閣) 앞뜰로 나아가 행례(行禮)하였다. 행례가 끝난 다음 올라가 각내(閣內)로 나아가 궤(櫃)를 받들어 내려 보자기를 풀고 어진(御眞) 대소(大小) 2본(本)을 받들어 폈는데 대본(大本)은 신해년(1791)에 도사(圖寫)한 것이고 소본(小本)은 병진년(1796)에 도사한 것이다. 시임·원임 각신과 서사관이 한 복판에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어진 대본에다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 대왕(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춘추(春秋) 40세 어진으로, 즉조(卽阼) 15년 신해년 가을에 도사(圖寫)했다.'는 내용의 한자(漢字)를 썼으며, 어진(御眞) 소본(小本)에는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 대왕의 춘추 45세 때의 어진으로, 즉조 20년 병진년 봄에 도사했다.'는 내용의 한자 29자를 썼다. 서사(書寫)를 끝내고 나서 어진을 도로 받들어서 보자기에 말아 궤에 넣고 나서 탑(榻)에 봉안하였다. 시임·원임 각신이 주합루(宙合樓) 앞뜰에 나아가 행례하고 나서 각신 1원(員)이 올라가 각(閣)을 열고 내려와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니, 시임·원임 각신들이 도로 서향각(書香閣)으로 나아가 산선(繖扇)으로 시위(侍衛)하고 진열(陳列)하기를 의식(儀式)대로 하였다. 각신이 올라가 각내(閣內)로 나아가서 소본(小本) 어진이 들어 있는 궤를 받들고 정계(正階)를 경유하여 나아와서 주합루에 이르러 정계를 경유하여 누(樓)로 올라가 탑(榻) 위에 봉안(奉安)하고 휘장을 내리고 문을 닫았다. 시임·원임 각신들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곧이어 서향각으로 나아갔다. 대축이 올라가 각내(閣內)로 나아가 대본 어진이 든 궤를 받들고 나아와 여(轝)에 봉안한 다음 영숙문(永肅門)으로 나아왔다. 대축이 어진이 들어 있는 궤를 받들어 여에서 내려와 연(輦)에 올려놓고 나서 장위(仗衛)의 진설을 상의(常儀)와 같게 하고 돈화문(敦化門)으로 나아와 출발하였다】 임금이 돈화문(敦化門) 밖에 나아가 지송(祗送)하였다.

○甲寅/先朝御眞一本, 奉安于宙合樓, 一木奉詣于**華城**行宮.【時至, 時·原任閣臣及標題·書寫官入, 就書香閣前庭, 行禮. 訖, 陞詣閣內, 奉櫃開袱, 展奉御眞大·小二本, 大本辛亥圖寫

也, 小本丙辰圖寫也. 時·原任閣臣及書寫官, 當中北向跪, 御眞大本, 書以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春秋四十歲眞, 卽阼十五年辛亥秋圖寫' 二十八字, 御眞小本, 書以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春秋四十五歲眞, 卽阼二十年丙辰春圖寫' 二十九字. 書寫訖, 還奉御眞, 捲袱闔櫃, 奉安于榻上. 時·原任閣臣, 就宙合樓前庭, 行禮訖. 閣臣一員陞詣開閣, 降復位, 時·原任閣臣, 還詣書香閣, 幟扇侍衛, 陳列如儀. 閣臣陞詣閣內, 奉御眞小本櫝, 由正階, 出至宙合樓, 由正階陞樓, 奉安于榻上, 降帳闔門. 時·原任閣臣, 降復位, 還詣書香閣. 大祝陞詣閣內, 奉御眞大本櫃出, 奉安於輦, 出永肅門. 大祝奉御眞櫃, 降輦陞輦, 陳仗衛如常儀, 出敦化門, 進發】 上詣敦化門外, 祇送.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12월 6일(갑인)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성역의궤』를 간인하라고 명하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간인(刊印)하라고 명하였는데,** 사복시 정(司僕寺正) 홍원섭(洪元燮)이 당초 성역(城役)을 할 때에 주관하여 간검(看檢)하였던 까닭으로 간인을 감독하게 하였다.
○命刊印『**華城**城』『役儀軌』. 以司僕正洪元燮, 當初城役時, 主管看檢, 使之監印.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1801) 7월 28일(임인) 4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성역의궤를 반포하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반포하였다. 선조(先朝) 때 일찍이 정리한 여러 신하들에게 **화성**의 성역을 마무리한 전후의 제도 의식을 순서에 따라 저술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상세하게 갖추어 기록하여 의궤를 모아 완성하니, 무릇 9편(編)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간인(刊印)하여 반포하였는데, 감인(監印)한 각신(閣臣) 이하에게 상을 베풀고 찬집(纂輯)한 낭관(郎官) 홍원섭(洪元燮)에게는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자급을 더하였다.
○頒『**華城**城役儀軌』. 先朝嘗命整理諸臣, 撰次**華城**始末制度儀式, 繼悉備載, 彙成『儀軌』, 凡九編. 至是印頒焉, 監印閣臣以下施賞, 纂輯郎洪元燮, 加通政.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1801) 9월 18일(임진) 2번째기사>

화성/행궁
건릉과 현륭원에 전알하고 제사지내다. 화성**의 행궁에서 김문순에게 부로들을 부르도록 명하다**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히 제사를 지냈다. **돌아오는 길에는 화성의 행궁에 머물렀다.** 능(陵)의 동구에 이르러 유수(留守) 김문순(金文淳)에게 경내(境內)의 부로(父老)를 인솔하고 입시(入侍)하라 명하였다.
○乙酉/詣健陵·顯隆園, 展謁親祭. 還次**華城**行宮. 至陵洞口, 命留守金文淳, 率境內父老入侍.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1804) 8월 29일(을유)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의 화령전에 전배하고, 저녁에는 행궁에서 유숙하다

화성(華城)에 가서 화령전(華寧殿)에 전배(殿拜)하고, 저녁에는 행궁(行宮)에서 유숙하였다.
○己酉/詣華城, 展拜于華寧殿, 夕次行宮.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1810) 8월 27일(기유) 1번째기사>

화성/행궁
상여가 화서의 행궁 숙소에 머물다
상여가 화성(華城)의 행궁 숙소에 머물렀다.
○壬午/靈駕次華城行宮宿所.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1816) 3월 2일(임오)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에 행행하여 저녁에는 행궁에서 유숙하다
화성(華城)에 행행(行幸)하여 저녁에는 행궁(行宮)에서 유숙하였다.
○庚子/幸華城, 夕次于行宮.
<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1817) 2월 26일(경자)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서 밤을 지내다
화성의 행궁에 나아가 밤을 지냈다.
○庚子/詣華城行宮經宿.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1821) 2월 19일(경자)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의 행궁에 나아가 유숙하다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유숙(留宿)하였다.
○乙未/詣華城行宮, 經宿.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1822) 2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화성/행궁
건릉과 현륭원에 나아가 배알하고 친히 제사를 지내고 화성 행궁으로 돌아오다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배알하고 친히 제사를 지낸 뒤에 화성 행궁으로 돌아왔다.
○丙申/詣健陵·顯隆園展謁, 親祭還次華城行宮.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1822) 2월 20일(병신)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서 유숙하는데 왕세자도 따라 나가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가 유숙(留宿)하였는데, 왕세자도 따라 나아갔다.
○甲戌/詣華城行宮經宿, 王世子隨詣.
<순조실록 28권, 순조 26년(1826) 2월 22일(갑술)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서 자다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경숙(經宿)하였는데, 왕세자가 따라갔다.

○壬辰/詣華城行宮經宿, 王世子隨詣.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2월 22일(임진)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 나아가다

임금이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갔다.

○上詣華城行宮.

<헌종실록 10권, 헌종 9년(1843) 3월 15일(무오) 2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의 행궁에서 밤을 지내다

임금이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밤을 지냈다.

○丙午/上詣華城行宮經宿.

<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1846) 2월 20일(병오)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 나아가 유숙하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가 유숙(留宿)하였다.

○丙午/詣華城行宮經宿.

<철종실록 4권, 철종 3년(1852) 2월 25일(병오)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의 행궁에 나아가 하룻밤 유숙하다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나아갔는데, 인하여 하룻밤 유숙(留宿)하였다.

○庚辰/詣華城行宮, 仍經宿.

<철종실록 12권, 철종 11년(1860) 3월 16일(경진)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 나아가 재숙하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十三日. 詣華城行宮, 齋宿.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1868) 3월 13일(신유)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서 환궁하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서 환궁(還宮)하였다.

十六日. 自華城行宮還宮.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1868) 3월 16일(갑자)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 나아가 경숙하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가 경숙하였다.

十二日. 詣**華城**行宮, 經宿.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3월 12일(무인) 1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서 경숙하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서 경숙하였다.

經宿于**華城**行宮.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3월 14일(경진) 3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 나아가 어제시를 내리고 대신들에게 화답시를 지어 바치라고 하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아가 소대(召對)를 행할 때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오늘 소대에 신들까지 불러주시어 성대한 거조를 보게 되니,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행궁에서 소대를 행하시니 학문에 독실한 성대한 거조에 대해 우러러보게 됩니다. 열성조(列聖朝)께서 동가(動駕)할 때에 홍문관(弘文館) 관리들이 배종(陪從)한 것은 곧 소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 다만 행궁에서 뿐만 아니라 비록 길가에 있는 임시 처소에서도 소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대한 거조는 실로 열성조의 아름다운 뜻을 이어받는 것이니, 신은 찬송(攢頌)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강론이 끝나자 어제시(御製詩)를 내렸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정조(正祖) 임금께서 지은 현판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대신(大臣), 승지(承旨), 사신(史臣), 각신(閣臣), 유신(儒臣)들은 화답하여 올리라. 어제 승후관(承候官)에게 이미 화답해 올리라고 명한 바가 있다." 하였다.

승지 이유승(李裕承)이 어제시를 받들어 이유원에게 전하니, 받들고 다 읽은 뒤에 아뢰기를, " '은하수가 하늘을 따라 돈다.[雲漢昭回]' 한 것은 실정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한없이 우러러 칭송합니다."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화답한 시는 언제쯤 바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환궁(還宮)하기 전에 다 바치면 된다." 하였다.

御**華城**行宮, 召對. 時原任大臣同爲入侍. 判府事李裕元曰: "今日召對, 至召臣等獲覩盛擧, 下情榮耀矣." 領議政金炳學曰: "行宮召對, 仰見勤學之盛. 而列聖朝動駕時, 玉堂陪從, 卽爲召對, 而非特行宮, 雖在路次, 亦有召對之時. 今日盛擧, 實爲繼述之美, 臣不勝攢頌萬萬." 講訖, 下御製詩. 敎曰: "此敬次正廟板上韻也. 大臣·承史·閣臣·儒臣賡進. 昨於承候官, 已有所賡進之命矣." 承旨李裕承奉御製, 傳于裕元, 敬奉讀訖, 奏曰: "雲漢昭回, 情實俱備, 萬萬欽頌矣." 炳學曰: "賡進何時進呈乎?" 敎曰: "回鑾前, 畢進可也."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3월 15일(신사) 2번째기사>

화성/행궁

화성 행궁에서 경숙하다

수원행궁(水原行宮) 에 경숙하였다.

經宿于**華城**行宮.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3월 15일(신사) 4번째기사>

⑶ 원행

화성/원행

사근의 행궁에서 점심을 들고 화성의 행궁에 머물렀는데 비온 것을 기뻐하다

사근(肆勤)의 행궁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화성(華城)의 행궁에 머물렀다. 이날 비가 왔는데, 험한 길이 나오기만 하면 상이 번번이 말에서 내려 자궁(慈宮)의 가마 앞으로 나아가 안부를 묻곤 하면서 옷이 비에 젖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 저녁 때 유여택(維與宅)의 집에 머물렀는데, 시신(侍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오늘 온 비에 군병들의 옷이 젖은 것은 민망한 일이다마는, 이번의 행차야말로 지극히 성대한 거조이고 이 예(禮)야말로 크나큰 의절(儀節)이니, 일마다 완전히 원만하게 되기만을 구할 필요는 없다. 잠깐 비가 왔다가 바로 개면서 앞길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으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더구나 농삿일이 시작될 즈음에 토지를 적셔 주었으니 어찌 농부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壬辰/晝停于肆覲行宮, 駕次華城行宮. 是日雨, 凡遇路險處, 上輒下馬, 進慈宮駕轎前問候, 不覺御衣之沾濕. 夕次維與宅, 顧謂侍臣曰: "今日之雨, 軍兵沾濕雖悶, 此行至盛擧也, 是禮大儀節也, 事事不必求十分圓滿. 乍雨旋晴, 以淸蹕路, 庸何傷乎? 況田事將始, 畦塍霑潤, 豈非農夫之慶耶?"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0일(임진) 1번째기사>

화성/원행

화성의 성묘를 참배하고 사서 삼경 및 노비를 내려주다

화성(華城)의 성묘(聖廟)를 참배하고 새로 간행한 사서(四書) 삼경(三經) 및 노비를 내려주었다.

○癸巳/謁華城聖廟, 賜新印四書三經及臧獲.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1일(계사) 1번째기사>

화성/원행

현륭원에 참배하고 성조와 야조를 살펴본 뒤 화성의 축성공사에 대해 하교하다

상이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참배하는 예식을 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성 서쪽의 장대(將臺)에 올라 성조(城操)와 야조(夜操)를 살펴보았다. 어제(御製)로 오언(五言)의 4운(韻) 율시(律詩)를 내리고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화성의 축성 공사를 착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국가의 재정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는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후에 또한 당분간은 서서히 하면서 재물을 모은 뒤에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도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서 중도에 맞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남쪽과 북쪽의 성루(城樓) 및 수각(水閣)·장대(將臺) 등을 보건대 날아갈 듯 아름답고 깍아지른 듯 가파르게 잘 쌓았으니, 어찌 삼보(三輔)의 중요한 요새지만 될 뿐이겠는가.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고 공사를 감독한 여러 사람들의 성명을 나열해 써서 만년토록 역사 속에 기억되도록 하라." 하였다.

○甲午/上陪惠慶宮, 詣顯隆園, 行展拜禮, 還御華城西將臺, 閱城操·夜操. 下御製五言四韻律, 命諸臣賡進. 敎曰: "華城城役之決意築斯, 其費不煩於經用, 昨冬以後之亦欲姑徐, 而鳩

財復始者, 皆自以爲秤錘中出來, 而今行見南北城樓·水閣·將臺等處, 翬飛輪奐, 雉譙崢嶸, 豈特三輔關防之重? 稍待事功之告竣, 竪碑記其實, 列書董功諸人姓名, 以爲萬年不朽之資."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2일(갑오) 1번째기사>

화성/원행

전교하여 군에 충정된 자의 요역을 돈으로 대신 받고 환곡을 면제해 주다

전교하였다. "이 해가 무슨 해이며 오늘이 무슨 날인가. 원(園)에 배알하고 나니 사모하는 마음을 펼 곳이 없다. 어버이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도리야 어찌 백성들을 품어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사랑하는 정사에 병(兵)과 민(民)에 응당 차이가 있을 수 없거니와, 이번 행차에서 군용(軍容)을 보건대, 입방(入防)하는 보군(步軍)의 훈련 동작이 익숙하여 내영(內營)의 단련된 군병과 다름이 없으므로, 정예함을 귀히 여기는 분명한 증험을 더욱 알 수가 있었다. 26초(哨)를 13초로 만들어 도태된 자를 모두 보미군(保米軍)에 충정하였는데, 부세가 번거롭고 요역이 고되니 실로 불쌍하다. 게다가 바치는 쌀이 새로 증가된 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여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는 것을 정식으로 삼게 하라. 본부의 면리(面里)의 가장 오래된 환곡은 신해년과 임자년 두 해의 것이라 하니, 역시 수신으로 하여금 징수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원(園) 밑에 사는 백성과 성안에 사는 호구는 원을 보호하는 장벽과 같으므로 인화(人和)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니, 이들에게는 당년조의 환모(還耗)를 특별히 제해 주어라. **작년에 자전(慈殿)의 행차가 화성에 오실 때에 시흥·과천·광주 세 고을을 거치게 되었는데,** 주정(晝停)의 이수(里數)가 조금 먼 곳에는 그 사이에 소찬(小饌)을 올리고 행전(行殿)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전께서 민폐를 진념하신 마음을 따른 것인데, 행차가 멈춘 곳에 백성들이 모두 대(臺)를 쌓아 표시했으니 민정(民精)이 감동된 것이다. 그들을 불러서 바치지 못한 누적된 포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 보아라. 말 곡식이나 되 곡식 정도가 혜택이 되기에는 부족하나, 그래도 모른 체하고 지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도신과 수신은 연교(筵敎)에 의해서 독촉하지 말도록 분부하라."

○敎曰: "是年何年, 今日何日? 拜園餘慕, 無處可伸. 親心爲心之道, 豈有過於懷保與字恤? 況一視之政, 兵民無間, 而今行見軍容, 入防步軍坐作進退之閑熟, 無異於內營團鍊之兵, 益知貴精之明證, 而卄六哨爲十三哨, 汰者皆充保米軍, 賦煩役苦, 實所矜閔. 且係新增納米者乎? 分付守臣, 以錢代捧, 以爲式. 本府面里最久條舊還餉, 爲辛亥·壬子兩年云, 亦令守臣勿徵. 園底之民·城內之戶, 控護也·保障也, 人和爲先, 此類當年還耗, 特爲除給. 昨年慈駕來臨華城也, 路出始·果·廣三邑, 以晝停里數之稍間, 間進小饍, 不設行殿, 卽順慈心之軫民弊, 而駐駕之處, 民皆築臺以表之, 民情可感. 招問渠等, 以未納之積逋幾許. 斗斗升升, 不足爲惠, 而尙有勝於默然看過, 道·守臣依筵敎勿督事分付."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1일(무진) 2번째기사>

화성/원행

현륭원을 전알하기 위해 용양봉저정·시흥을 거쳐 화성 행궁에 유숙하다

상이 현륭원(顯隆園)을 전알하기 위하여 어가(御駕)가 숭례문(崇禮門) 밖에 이르렀을 때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수직관(守直官)을 변장(邊將)으로 파견할 것을 명하였다.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 이르러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여 시흥(始興)의 주정소(晝停所)에 머물렀다가 저녁에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유숙하였다.**

○庚午/上, 將謁顯隆園, 駕發至崇禮門外, 歷臨關王廟, 命守直官邊將差送. 至龍驤鳳翥亭少駐, 還發晝停于始興, 夕次**華城**行宮.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1월 29일(경오) 1번째기사>

화성/원행

화성 행궁을 떠나 장안문·영화역·지지대 등을 거쳐 창덕궁에 돌아오다

상이 **화성 행궁**을 떠나 장안문 안에 이르러 성 안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위로하였다. **영화역(迎華驛)** 앞길에 이르러 찰방 이오진(李五鎭)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우관(郵館)이 완공되고 민호(民戶)가 즐비하니 너의 힘이다."

하고, 이어 수령으로 제수할 것을 명하였다. **지지대(遲遲臺)**에 이르러 잠깐 머물렀다가 **사근 행궁(肆覲行宮)**과 안양 역참을 지나 시흥 행궁의 주정소(晝停所)에 들러 경기 관찰사 이면응(李冕膺)과 지방관 김사희(金思羲)를 불러 보았다.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에 이르러 주교사(舟橋司) 당상 정민시(鄭民始)를 불러 보고 주교사에 소속된 장교와 이속(吏屬)·선인(船人) 등에게 상을 내렸다. 저녁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上, 自**華城**行宮進發, 至長安門內, 招城內父老慰諭之. 到迎華驛前路, 召見察訪李五鎭謂曰: "郵館已成, 民戶櫛比, 爾之力也." 仍命守令除授. 至遲遲臺少駐, 歷肆覲行宮, 安養撥所, 晝停于始興行宮, 召見京畿觀察使李冕膺·地方官金思羲. 至龍驤鳳翥亭, 召見舟橋司堂上鄭民始, 命舟橋屬校吏船人等施賞. 夕還昌德宮.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2월 1일(임신) 2번째기사>

화성/원행

김진욱을 월곶첨사로 삼았다가 독성 첨사로 바꾸다

병조 판서 이득신(李得臣)과 강화부 유수 김이익(金履翼)을 파직하였다. **이보다 앞서 상이 화성에서 돌아오다가 주교(舟橋)에 이르러 감관(監官) 김진욱(金鎭郁)으로 월곶 첨사(月串僉使)를 삼았다가 곧바로 독성 첨사(禿城僉使)와 서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이익이 치계하여 아뢰기를, "월곶은 곧 조세선(漕稅船)을 호송하는 도차원(都差員)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첨사 박종수(朴宗秀)가 섬의 표식을 잘 관리하고 물길을 잘 아니, 그대로 두소서." 하였다.

병조가 종수를 그대로 유임하고 진욱은 다른 진(鎭)에 옮겨 제수하기를 계청하니, 하교하기를, "박종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섬의 표식을 잘 관리하고 물길을 잘 알기로는 필시 오랫동안 강가에 살면서 물에 익숙한 사람보다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주교를 주관하는 일이 어찌 세선(稅船)의 길을 인도하는 일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잘하면서 저 일은 어떻게 못한단 말인가. 수신(守臣)이 갑자기 유임을 청하는 것도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인데 경이 도리어 이런 잘못을 본받고 있으니, 이것이 요즘의 사(私)가 승(勝)한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는가. 정말 나라의 체통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해당 수신과 판서를 파직하라." 하였다.

○罷兵曹判書李得臣·江華府留守金履翼職. 先是, 上自**華城**, 還至舟橋, 以監官金鎭郁爲月串僉使, 旋命與**禿城**僉使相換. 履翼馳啓言: "月串, 卽漕稅船護送都差員. 而時僉使朴宗秀, 善飭嶼標, 能諳水路, 請仍置." 兵曹啓請宗秀仍任, 鎭郁移除他鎭, 敎曰: "朴宗秀, 雖不知何許人, 而嶼標之善飭, 水路之能諳, 必不若江居多年, 慣知水性之人. 況舟橋擧行, 豈比於稅船之指路? 則此豈善爲彼豈不能乎? 守臣之忽請仍任, 固甚駭然, 而卿乃反效, 尤此非近來私勝中

一事? 而獨不畏國體乎? 該守臣及判堂罷職."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2월 22일(계사) 4번째기사>

화성/원행

김포 군수와 과천 현감을 불러 고을의 폐단을 묻고, 화성으로 출발하다

김포 군수(金浦郡守) 홍대협(洪大協)과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이유(金履裕)를 불러 보고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고통을 물어보았다. 홍대협이 아뢰기를,

"본군의 민호(民戶)는 1천여 호에 지나지 않는데 군액(軍額)은 1천 7백여 명이니,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도록 명하였다. 김이유가 아뢰기를,

"개울이 되어버린 옛날 재결(災結) 13결(結)이 영재(永災)에 들어가지 않아서 해마다 생판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화성(華城)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김포 행궁에서 출발하였다.** 수찬 한치응(韓致應)이 도중에 차자를 올리기를,

"어제의 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바로 환송(還送)한 것은 만 사람이 눈으로 본 바라고 확답하셨으므로 신들이 감히 믿지 않을 수 없어 모두 즉시 물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서 들으니 분위기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밤부터 새벽까지 또한 한 사람도 돌려보낸 일에 대해 들어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교외의 황벽(荒僻)한 처소에서 홀로 역적 놈과 안온히 밤을 지냈는데, 대신·각신(閣臣)·삼사·시위(侍衛)의 신하는 태연히 사처(私處)에 물러가 거처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신하의 분의(分義)가 쓸어낸 듯 다 없어졌습니다. 신들의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으니, 처분을 내려 신들의 불충(不忠)한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여러 신하들이 대면을 청하며 합문(閤門)에 엎드려 있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니, 어서 삼사의 소청대로 전형(典刑)을 분명히 바루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어가가 능곡리(能谷里)에 이르러 머물러서 조금 쉬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대신이 옥당(玉堂)의 차자의 말과 관련하여 감히 반차(班次)에 태연히 있지 못하겠다 하여 산반(散班)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가를 수행하는 대신은 오직 한 사람뿐인데, 이처럼 의리를 내세워 피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였다.

낮에 부평(富平) 행궁에서 쉴 때 지방관 윤광석(尹光碩)을 불러 보고 조금 뒤에 출발하여 안산(安山)의 행궁으로 향하려 하면서 하교하기를, "숙원(淑媛) 조씨(趙氏)의 묘소가 화유귀주(和柔貴主)의 무덤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예전 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어찌 슬픈 감회를 견딜 수 있겠는가. 어가가 지나갈 때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여천위(驪川尉) 민자방(閔子芳)은 선릉(宣陵)의 의빈(儀賓)으로서 그 묘소가 어가(御駕)가 지나는 길 옆에 있고, 영신군(永新君)과 함원군(咸原君)은 모두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후예로 그 묘소가 바라다 보이니, 또한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고 영의정 문간공(文簡公) 이천보(李天輔)가 수립한 우뚝한 공로를 내가 어찌 차마 잊겠는가. 지금 그 묘소가 있는 고을을 지나가니, 헌걸차게 조정에 출사하던 의용(儀容)을 마치 엄숙하게 앞에서 보는 것만 같다. 어가를 멈춰 출발을 늦추고 치유(致侑)의 제문(祭文)을 부르는 대로 쓰게 하여 그 손자인 대교(待敎) 이존수(李存秀)를 보내 유제(侑祭)하도록 하라. 고(故) 중신(重臣) 이문원(李文源)은 바로 훌륭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조정에서 벼슬할 적에 시속을 따르지 않았고 지위가 정경(正卿)에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시호(諡號)가 내려지지 않았으니, 곧

본가로 하여금 속히 시장(諡狀)을 지어 홍문관으로 이송(移送)하도록 하라."
○壬子/召見金浦郡守洪大協·果川縣監金履裕, 詢邑弊民瘼. 大協奏: "本郡民戶, 不過千餘, 而軍額一千七百餘名, 宜亟釐正." 上, 命與道臣相議稟處. 履裕奏: "成川舊災十三結, 未入永災, 年年白徵." 上命蕩減. 上, 將詣**華城**, 由金浦行宮進發. 修撰韓致應, 路中進箚曰: "昨日之事, 尙何言哉? 殿下以卽已還送, 萬目所覩質言矣, 臣等不敢不信, 竝卽退去. 而退而聞之, 則曾無影響, 自夜至曉, 亦無一人聞知其還送之擧, 此何事也? 郊次蕘僻之地, 乃獨與逆竪, 穩處經夜, 而大臣·閣臣·三司·侍衛之臣, 晏然退處私次, 今日臣分, 掃地盡矣. 臣等之罪, 死有餘罪, 乞賜處分, 以靖臣等不忠之罪. 萬目所未睹之前, 卽無非群下請對伏閤之日, 亟依三司所請, 明正典刑." 不允. 駕至能谷里, 駐蹕少憩. 承旨奏: "大臣以玉堂箚語, 不敢晏然於班次, 以散班作行." 上曰: "隨駕大臣, 只有一人, 而如是引義, 誠慨然矣." 晝停于富平行宮, 召見地方官尹光碩, 少選, 進發, 將向安山行宮, 敎曰: "淑媛趙氏之墓, 與和柔貴主墳山相近, 撫念疇昔, 豈勝愴感? 駕過時遣內侍致祭. 驪川尉閔子芳, 以宣陵儀賓, 墓在鑾路之傍, 永新君·咸原君, 俱以孝寧之後, 其松楸入望, 亦遣官致祭. 故領議政文簡公李天輔, 樹立之卓犖, 予何忍忘之? 今過其邱墓之鄕, 頎然羽儀之容, 若肅在前. 駐駕遲發, 呼寫致侑之文, 遣其孫待敎李存秀侑祭. 故重臣李文源, 乃父之子. 其立朝不隨俗, 位躋正卿, 尙未易名, 卽令本家, 速撰諡狀, 移送弘文館."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1797) 8월 16일(임자) 1번째기사>

화성/원행
어가를 수행한 장신에게 군병을 위로하게 하고, 선부들의 노역을 풀어주다
어가를 수행한 장신(將臣)에게 명하여 군병을 위로하게 하였다. **화성 행궁을 출발하여 지지대(遲遲臺)에 이르러서 조금 쉬고, 다시 출발하여 시흥 행궁에서 주정(晝停)하였다.** 도중에 용양(龍驤) 봉자정(鳳翥亭)에 들러 하교하기를,
"연로(輦路)가 지나가게 되는 길을 손꼽아 보니 슬픔과 감회가 더욱 간절하다. 육신사(六臣祠)·사충사(四忠祠)·노강서원(鷺江書院)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교(舟橋)에 이르러 주교 당상(舟橋堂上)에게 이르기를,
"선부(船夫)가 1년에 두 차례나 부역을 당하니 노고가 매우 심하다. 오늘 즉시 풀어 보내어 생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乙卯/命隨駕將臣, 勞問軍兵. 自**華城**行宮進發, 至遲遲臺少憩, 還發晝停于始興行宮. 歷臨龍驤鳳翥亭, 敎曰: "輦路過前, 指點咨嗟, 曠感采切. 六臣·四忠祠·鷺江書院, 遣承旨致祭." 至舟橋, 謂舟橋堂上曰: "船夫一年再役, 勞苦甚矣. 卽日解送, 俾勿失業."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1797) 8월 19일(을묘) 1번째기사>

화성/원행
수원 등의 유생이 응제한 시문을 보고 시상하고 군졸의 활쏘기 시험을 보다
수원(水原) 등 10개 읍의 유생(儒生)이 응제한 시문을 상이 직접 살펴보고 점수를 매겨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상이 화성(華城)으로부터 돌아와서 시(詩)·부(賦)·논(論)·명(銘)·송(頌)·찬(贊)의 제목 30통을 내리고, 행차가 지나간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그 제목을 가지고 가서 시취(試取)하게 하되, 한 고을마다 3통씩 제목을 내걸고서 시권(詩券)을 거두어 올리게 하였다. 이때에 와서 친히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등차를 매겼는데 각 문체(文體)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 가운데 생원·진사는 대과(大科)의 회시(會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유학은 감시(監試)의 회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나머지 사람에게는 『어정오륜행실(御定五倫行實)』·『사기영선(史記英選)』·『육주약선(陸奏約選)』·『규장전운(奎章全韻)』 등의 책을 하사하였다. 또 **수원** 유수·광주 유수(廣州留守) 및 남양(南陽) 등 8개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장교와 군졸에게 활쏘기와 포쏘기를 시험보여 4발을 명중시킨 사람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3발 이상 명중시킨 사람은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나머지는 미곡을 하사하게 하였다.

○御考水原等十邑儒生應製, 施賞有差. 上, 還自**華城**, 下詩·賦·論·銘·頌·贊題三十道, 命輦路邑守令, 賫往試取, 每一邑揭題三道, 收券以進. 至是親考第次, 各體居首者, 生進許赴大科會試, 幼學許赴監試會試, 餘賜『御定五倫行實』·『史記英選』·『陸奏約選』·『奎章全韻』等書. 又命水原·廣州留守及南陽等八邑守令, 試校卒射放, 四中直赴殿試, 三中以上直赴會試, 餘賜米斗.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1797) 9월 12일(무인) 2번째기사>

화성/원행

박기복이 상언한 그의 6대조 박승종 부자의 관작 회복 여부를 논의하다

상이 화성(華城)에서 돌아왔다. 직산(稷山) 사람 박기복(朴基復)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6대조인 신(臣) 박승종(朴承宗)이 의리를 지킨 바름과 절조를 온전히 한 아름다움은 모두 근거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폐모(廢母)를 주장할 적에 신의 할아버지가 보호하는 일을 당신의 소임으로 삼자 이첨이 뭇 흉인들을 사주하여 온갖 방법으로 헐뜯고 없는 일을 꾸며내었습니다. 윤유겸(尹惟謙)·박시준(朴時俊) 두 사람의 소에서 살펴보면, 신의 할아버지가 무옥(誣獄)에 참여하지 않고 폐모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초상 때에는 부고(訃告)할 것을 주장하였고,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이 귀양살이 할 적에 속전(贖錢)을 납입하기를 원하였으며, 이식(李植)과 조직(趙濯)이 국문을 받을 적에 의금부의 직을 맡아 온전히 살려준 바가 많았으며 이귀(李貴)와 이서(李曙)가 무함(誣陷)을 받을 적에 힘을 다해 문서를 마감 정리하였고, 백대형(白大珩)이 경운궁(慶運宮)에 함부로 뛰어들었을 적에 달려가서 몰아냄으로써 다행히도 예측할 수 없는 화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훈신(勳臣) 김류(金瑬)·이귀(李貴) 등 여러 사람이 말한 것이 모두 공사(公私)의 실기(實紀)에 있습니다. (…)

○上, 自**華城**還. 稷山人朴基復上言曰: "臣六代祖臣承宗, 秉義之正, 全節之美, 俱有可據. 當賊臣李爾瞻之主張廢母也, 臣祖以保護爲己任, 爾瞻嗾群凶, 詆訐百端. 觀於尹惟謙·朴時俊兩疏, 臣祖不參誣獄, 不與廢論之實, 可知也. 延興金悌男之喪, 主告訃之議, 完平李元翼之謫, 有納贖之願, 李植·趙濯之就鞫, 職掌金吾, 多所全活, 李貴·李曙之被誣, 宣力勘簿, 當白大珩之攔入(慶熙宮)〔慶運宮〕也, 奔赴驅逐, 幸(際)〔除〕不測之禍. 東陽尉申翊聖·勳臣金瑬·李貴諸人之語, 皆在公私實紀矣.(…)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1797) 9월 25일(신묘) 3번째기사>

화성/원행

정리곡을 돈으로 나눠주고 쌀로 받아들이는 등의 폐단을 논의하다

우참찬 심환지가 아뢰기를, "정리(整理)의 명칭은 능행(陵幸) 때에 호조 판서를 정리사(整

理使)로 삼은 전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어버이를 사랑하는 성효(聖孝)로 지난번 천만 년에 한 번 만나는 경사를 당하여 자궁(慈宮)의 법가(法駕)를 받들고 화성(華城)에 나아가서 만세를 축수하는 성전(盛典)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때 위로는 내부(內府) 공억(供億)의 비용에서부터 아래로 종관(從官) 군마(軍馬)의 노자와 양식의 자본에 이르기까지 대농(大農)의 경용(經用)과 영읍(營邑)의 공급을 번거롭게 쓰지 않고 성지(聖智)를 묵묵히 운용하여 별도로 구획(區劃)하셨으니, 이것이 정리 제신(整理諸臣)이 받들어 거행하게 된 까닭입니다.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이해 이날을 당하여 이 땅에서 이 예를 행하였다. 백성은 내 적자인데 이미 집집마다 소고기와 술을 주어 사람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게 하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에 어찌 서운하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정리소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제도(諸道)에 나누어주어 한 냥의 돈으로 피곡(皮穀) 한 포(包)를 바꾸어 만들어 그 명년부터 봄에 흩어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혹 종자의 밑천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농사철의 양식으로 삼게 하기도 함으로써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자를 끼쳐주어 유구히 전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궁의 은혜를 널리 베풀려는 성상의 효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계속 여유가 있게 하는 은력을 남겨둠으로써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근본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어리석고 미천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한알 한알의 곡식이 모두 은혜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마다 같이 경하(慶賀)하게 하려는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알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을 설치하게 된 까닭입니다. (…)
○右參贊沈煥之啓言: "整理之名, 昉於陵幸時, 戶曹判書爲整理使之例. 而以殿下愛日之聖孝, 頃當萬千年一遇之慶會, 奉慈駕而詣**華城**, 誕擧呼嵩之盛典. 上自內府供億之費, 下至從官軍馬盤纏糗糧之資, 不煩大農之經用, 營邑之供給, 而默運聖智, 別爲區劃, 此所以整理諸臣之奉, 而擧行者也. 聖敎若曰: '當是年是日, 行是地是禮. 而民吾赤子, 旣無以家給牛酒, 人皆醉飽, 則於予心豈不欿然乎?' 遂以整理用餘錢, 分送諸道, 俾以一兩之錢, 作爲皮穀一包, 自其明年, 春散秋斂. 或爲種資, 或爲農糧, 貽我嘉種, 傳之悠久, 出自聖孝, 覃以慈惠, 留有餘不盡之澤, 爲用敷厥庶之本. 則雖愚夫愚婦之微, 亦當知其粒粒皆恩, 人人同慶之盛德至善, 此卽乙卯整理穀之所以建置者也. 若營邑之臣, 一任舞弄之奸, 不思對揚之方, 則是眞無人心者. 況於再昨年以湖西擧行之駭然, 至登籌啓, 仰煩飭敎, 則瞻聆所及, 庶皆警動知懼. 而今聞南中諸邑, 尙或〔有〕以錢分給, 勒捧正米之處, 錢分數十文, 米捧七八斗, 謂之整理穀. 其外諸道春散數十葉, 秋斂三四倍, 錢還成習, 看作利竇, 民間傳說, 聽聞駭惑. 以聖上均視遐邇, 廣布慈德之至誠苦心, 閟而不行, 反爲貽弊民間之端, 思之及此, 寧不痛惋? 請令廟堂, 嚴覈摘發." 批曰: "整理穀之設施, 乙卯奉觴上壽之餘, 出於廣慈惠覃慈恩之至誠苦心, 而必以皮穀泒分, 兼寓春種一粒, 秋收萬顆, 生生不窮於千永垂之義. 設有不良無恥之吏, 寧忍萌計於賭利? 而錢分米捧之駭惡, 姑無論, 敢於此剝割, 敢於此聚斂者, 其罪不可但以贓汚論. 事旣發覺, 若不嚴法重繩, 則何以謝小民乎? 亦豈可使此布德之擧, 一任其相反乎? 今日來此而聞此者, 可見乾道之孔昭. 按道者不飭之罪, 從當隨現, 分等勘處. 先從各其管下列邑, 犯科之人, 一一摘發狀聞. 一有不謹, 致或現發於按廉之行, 則其道伯, 爲先拿致王府, 臨門親問, 以示爲所重之意. 爲先嚴明分付."
右議政李秉模曰: "整理穀設置, 非爲整理之需用也, 非爲穀簿之滋息也. 一以廣慈惠, 一以均慈慶, 將使大小民人飽以德而志其喜, 以寓億萬斯年之祝也. 爲長吏者, 苟有一分人心, 百事雖或慢忽, 至於此穀, 孰敢不精其捧, 準其給? 而今聞重臣所奏, 精捧準給, 姑舍是, 散錢數錢, 斂米八斗云. 雖是他穀, 此等不法之事, 曾所罕聞, 況在此穀? 敢以穀名之所重, 反作憑藉之欛柄, 遂使淪肌之惠, 任渠剝膚之手, 比諸諸般贓汚, 不啻萬倍. 此不摘發, 施以典刑, 其可曰國有法乎? 且其摘發之道, 異於穀簿之幻弄. 散錢自當有受去之民, 納米亦必有定給之數, 雖欲掩

護, 有不可得. 亟令道臣, 星火按査, 爲先今年所犯者, 指名登聞, 以爲施法之地, 不察之道臣, 亦爲嚴勘, 斷不可已矣." 上曰: "此穀之當初設置, 亦一投醪之義也. 取朱夫子社倉之義, 使之春散秋斂, 輪回面里, 則庶可俾吾民, 覃被慈覆之恩, 故所以有整理穀之名. 而設施未久, 奸弊如此, 此豈不痛歎矣乎? 重臣所奏, 甚得體, 不負所知矣." 遂賜煥之豹皮一令.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1797) 10월 7일(임인) 3번째기사>

화성/원행

정병을 뽑아 행차 수행자 외에는 모두 행궁에 머물도록 전교하다

사근평(肆覲坪) 행궁에서 잠깐 머물러 쉬면서 전교하기를, "**밥을 먹기 전에 화성(華城)에 도착할 수 있다면 참배하는 것을 어찌 내일로 미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장용영(壯勇營)**을 내영과 외영으로 설치한 것은 그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병을 뽑아 행차를 수행시키고 나머지는 다 행궁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한다면 또한 매우 편리하겠다. 오늘 그냥 원소(園所)로 가서 참배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궁궐로 돌아가는 것도 내일에 있게 될 것이니, 이런 뜻을 도성에 남아 있는 대신으로 하여금 알고 있도록 하라." 하였다.
○丙午/晝停于肆覲坪行宮, 敎曰: "飯前可到**華城**, 則豈可遲待來日乎? 且壯勇內外營之設置, 卽爲所重. 若令抄精隨駕, 餘皆仍留行宮, 亦甚便好. 今日仍行園所展謁. 若此則還宮, 亦當在明日, 此意亦令留都大臣知悉."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1799) 8월 20일(병오) 1번째기사>

화성/원행

어가가 화성 행궁을 출발하여 환궁하다

어가가 **화성의 행궁(行宮)**을 출발하여 시흥의 행궁에서 주정(晝停)을 한 다음 환궁하였다.
○辛未/駕發**華城**行宮, 晝停于始興行宮, 還宮.
<정조실록 53권, 24년(1800) 1월 18일(신미) 1번째기사>

화성/원행

능행 때 화성의 마군·보군을 영에 머물게 하던 규례를 그만두도록 하다

능행(陵幸) 때에 화성(華城)의 마군(馬軍)·보군(步軍)을 영(營)에 머물게 하던 규례는 이제부터 그만두도록 명하였다. 해당 수신(守臣)이 영에 머물도록 정식(定式)한 것은 본래 외영(外營) 때의 규제(規制)이니, 외영을 철파(撤罷)한 후 여러 도(都)와 예(例)가 다르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품지(稟旨)하기를 계청(啓請)하였는데, 비국에서 복계(覆啓)하여 그만두도록 청하였던 것이다.
○命陵幸時**華城**馬·步軍留營之規, 自今置之. 該守臣, 以留營定式, 本是外營時規制, 則外營撤罷之後, 不宜與諸都異例, 啓請稟旨, 備局覆啓, 請置之也.
<순조실록 5권, 순조 3년(1803) 8월 11일(계유) 2번째기사>

화성/원행

시흥현 행궁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에는 화성 행궁에 머물다

화성(華城)에 행행(行幸)하였다. 시흥현(始興縣)의 행궁(行宮)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에는 화성 행궁에 머물렀다.
○甲申/幸**華城**, 晝停于始興縣行宮, 夕次**華城**行宮.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1804) 8월 28일(갑신) 1번째기사>

화성/원행

화성에 거둥하다

화성(華城)에 거둥하였다. 시흥(始興)의 행궁(行宮)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에 화성의 행궁에 행차하였다.

○丁酉/幸華城, 晝停于始興行宮, 夕次華城行宮.

<순조실록 8권, 순조 6년(1806) 2월 19일(정유) 1번째기사>

화성/원행

화성에 행행하다

화성(華城)에 행행(行幸)하여 시흥(始興)의 행궁(行宮)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 때는 화성의 행궁에서 머물렀다.

○丙申/幸華城, 晝停于始興行宮, 夕次華城行宮.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1807) 8월 27일(병신) 1번째기사>

화성/원행

화성의 거둥 날짜를 8월 27일로 정하게 하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각신(閣臣) 및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 보았다. 화성(華城)의 거둥 날짜를 다음달 27일로 물려 정하라고 명하였다.

○戊辰/召見時·原任大臣·閣臣及藥院諸臣. 命華城幸行, 退定於來月二十七日.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1810) 7월 16일(무진) 1번째기사>

화성/원행

화성 거둥의 일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화성(華城)에 거둥할 때에 모든 일은 모두 선왕께서 능침을 행차하실 때의 정해진 규례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강으로는 정해진 규례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묘당으로 하여금 문비랑(文備郞) 두세 사람을 각별히 골라 차출하여, 영읍(營邑)에서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에 배정하여 마련하게 한 음식물과 정해진 규정 이외에 이를 빙자하여 요구하는 폐단을 몰래 규찰하게 하라. 그리하여 폐단이 발각되었을 경우 액속(掖屬)과 외사(外司)의 관장(官長)을 막론하고 초기(草記)하여 중하게 죄를 감정하고, 하리(下吏)는 바로 형벌을 주고 귀양 보낸 뒤에 초기해서 올리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乙未/敎曰: "華城動駕時, 凡事皆當恪遵先朝園幸時定例. 而以今日紀綱, 難保其不踰定例, 令廟堂, 文備郞二三人, 各別擇差, 使之潛行糾察營邑, 分辦各營各司飯果與科外憑藉誅求之(弊)〔弊〕. 若有現捉, 則勿論掖屬外司官長, 草記重勘, 下屬直爲刑配後草記事, 分付."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1821) 2월 14일(을미) 1번째기사>

화성/원행

영가가 화성의 능소에 나아가다

영가가 화성(華城)의 능소(陵所)에 나아갔다.

○戊午/靈駕詣**華城**陵所.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1821) 9월 11일(무오) 1번째기사>

⑷ 제언

화성/제언

화성에 만년제를 완성하다

만년제(萬年堤)를 완성하였다. 만년제는 현륭원(顯隆園)의 동구(洞口)에 있다. 상이 연신에게 이르기를, "**이번 화성(華城)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몇 일 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다.** 원침(園寢)의 수구(水口)에 이 방죽물을 저장해두면 현륭원 밑의 백성들 토지에 이것으로 물을 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마치 저 장안문(長安門) 밖에 만석거(萬石渠)를 만들고 여의동(如意峒)을 쌓고 대유둔(大有屯)을 설치한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을 쌓고 대유둔을 설치할 당시에는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누차에 걸쳐 권유 신칙하고 내탕전(內帑錢) 수만 금을 내려서 결심하고 시행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백성들이 도리어 주위가 광활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백성들과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도 있으나 일의 시작을 함께 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나 지극히 신명한 것이 또한 백성들이니, 뒤에 의당 나의 고심을 알 것이다." 하였다.

○萬年堤成. 萬年堤在顯隆園洞口. 上, 謂筵臣曰: "今番**華城**萬年堤役, 可謂不費一民之力, 而不日告完, 誠大幸也. 園寢水口, 貯此堤水, 園底民田, 以此灌溉, 與長安門外, 開萬石渠, 築如意峒, 設大有屯一般意. 而萬石築峒設屯時, 民皆不肯, 屢勤勸飭, 下內帑錢數萬金, 決意爲之, 到今民人, 反以週遭不能廣闊怨之, 可與樂成, 不可與謀始, 有如此. 然至神者, 亦小民也, 後當知予苦心."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4월 27일(신유) 4번째기사>

Ⅱ. 남양(南陽)

1. 정치(政治)

⑴ 왕실

정치/왕실
상왕이 금주와 남양에 나가 매사냥을 하다
상왕(上王)이 금주(衿州)·남양(南陽)에 거둥하여 매 사냥[放鷹]을 하다가 이에 돌아왔다.
○乙未/上王幸衿州·南陽放鷹, 乃還.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 청시종묘의(請謚宗廟儀)
기일(期日) 전에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를 모아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호(諡號)를 의논하여【육조(六曹)·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의 2품 이상의 관원이 함께 의논한다.】계문(啓聞)하고, 삼가 명령에 의거하여 공조가 책(冊)과 보(寶)를 제조한다.**【책간(冊簡)은 남양(南陽)의 청옥(靑玉)을 사용하는데, 길이는 9촌 7푼, 너비는 1촌, 2푼, 두께는 6푼이다. 책간(冊簡)의 수효는 글의 많고 적은 데 따른다. 책보(冊寶)는 주석으로써 주조(鑄造)하고 황금(黃金)을 입히는데, 사방은 3촌 5푼, 두께는 8푼, 높이는 1촌 5푼이다. 모두 예기척(禮器尺)을 사용한다.】**시호(諡號)를 청하기 전 3일에 영의정(領議政) 이하의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이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여 정침(正寢)에서 지내고, 1일 동안을 치재(致齋)하여 본사(本司)에서 지낸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전기(前期) 1일에 본사(本司)에서 재숙(齋宿)한다. 전기(前期) 2일에 공조 판서는 책(冊)과 보(寶)를 각각 채여(綵輿)에 안치(安置)하고【책(冊)과 보(寶)가 모두 안(案)이 있다.】대궐에 나아가면, 승지(承旨)가 전해 받들어 들어간다.【내상(內喪)이면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책(冊)과 보(寶)를 만드는 것은 모두 같은데, 다만 보(寶)는 두께가 7푼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 請謚宗廟儀
前期, 奉常寺集謚報禮曹, 禮曹傳報議政府, 議謚 【六曹集賢殿春秋館二品以上同議】 啓聞, 敬依令, 工曹製冊及寶. 【冊簡用南陽靑玉, 長九寸七分, 廣一寸二分, 厚六分. 簡數, 隨文之多少. 冊寶鑄以錫, 鍍黃金, 方三寸五分, 厚八分. 龜高一寸五分, 竝用造禮器尺】 前請謚三日, 領議政以下行事執事官, 散齊二日, 宿於正寢; 致齊一日, 宿於本司. 宗親及文武百官, 前一日, 齊宿本司. 前二日, 工曹判書以冊寶各安於綵輿 【冊寶皆有案 】 詣闕, 承旨傳捧以入. 【內喪議謚製冊及寶竝同, 唯寶厚七分爲異】 (…)
<오례 / 흉례 의식 / 청시종묘의>

정치/왕실
빈전 도감 제조 정인지 등이 염습에 사용할 면복을 결정할 것을 주청하다
빈전 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 정인지(鄭麟趾)·허후(許詡)·정척(鄭陟) 등이 아뢰기를, "면복(冕服)을 염습(斂襲)에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태종(太宗)

때에는 대렴(大斂)에 사용하였는데, 지금 면복(冕服)은 다만 황제가 보내 준 1벌[件]과 대행왕(大行王)께서 이를 본떠서 명하여 제조한 1벌만 있을 뿐입니다. 황제가 보내 준 옷은 진실로 염습(斂襲)에 사용할 수가 없으며, 본국(本國)에서 제조한 면복도 대행왕께서 이를 만세(萬世)에 전하려고 하신 것이므로 염습(斂襲)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 등이 다시 생각해 보건대, 옛날 제도의 면복(冕服)에는 산(山)·용(龍)·화충(華蟲)·종이(宗彝)·화(火)를 상의(上衣)에 그리고, 조(藻)·분미(粉米)·보(黼)와 불(黻)은 치마[裳]에 수놓았는데, 지금 별도로 면복(冕服)을 제조하려면 의식대로 하되, 패(佩)는 약옥(藥玉)을 사용하고 규(圭)는 남양옥(南陽玉)을 사용하여 외재궁(外梓宮)에 안치(安置)한다면 제조도 쉬울 것이며, 고제(古制)에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 등의 말이 옳다. 본국에서 제조한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

○丁未/殯殿都監提調鄭麟趾·許詡·鄭陟等啓曰: "冕服用於斂襲, 古之制也, 是故太宗時, 用於大斂. 今冕服, 但有欽賜一件, 及大行王模樣命造一件而已. 欽賜之服, 固不用於斂, 而本國所製之服, 大行王欲傳之萬世, 故不得用於斂襲. 臣等更思之, 古制冕服, 山·龍·華蟲·宗彝·火繪於衣, 藻·粉米·黼·黻, 繡於裳. 今別作冕服如儀, 佩用藥玉, 圭用南陽玉, 安於外梓宮, 則製造易, 而於古制得矣." 上曰: "卿等之言是矣. 以本國所製之服, 用之何如?" (…)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3일(정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안평 대군이 남양에 있는 권손의 무덤을 옮기고 자신의 부인을 장사지내기를 청하다

권손(權遜)의 무덤이 경기(京畿)의 남양(南陽)에 있는데, 이용(李瑢)이 이를 옮기고 그 부인을 장사지내기를 계청(啓請)하였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나라에서 쓰는 것이 아니면 남의 분묘(墳墓)를 옮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에 광평 대군(廣平大君)과 평원 대군(平原大君)을 장사지낼 때 남의 분묘(墳墓)를 쓰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모두 못하였는데, 이제 남의 무덤을 파고 장사지내는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權遜墓在京畿南陽, 瑢啓請遷之, 葬其夫人. 下議政府議之, 議啓曰: "若非國用, 則不宜遷人墳墓. 昔世宗朝, 葬廣平·平原大君之時, 欲用人墳墓, 卒皆不果. 今發人塚墓而葬之, 實爲不可." 從之.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8일(계해) 2번째기사>

정치/왕실

병이 위독한 남양의 모친을 만나게 해달라는 수릉관 윤사로의 요청에 동생을 대신보내다

수릉관(守陵官)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가 승정원에 글을 올리어 아뢰기를, "모친이 부친의 임소(任所)인 남양(南陽)에서 병이 위독하니, 청컨대 서로 만나 보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수릉(守陵)의 임무는 가볍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는 것이 불가합니다. 마땅히 의약(醫藥)을 주어서 그 아우 사유(師有) 등으로 하여금 가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守陵官鈴川尉尹師路奉書于承政院, 以啓曰: "母在父任所南陽, 病劇, 請相見." 令議于政

府. 政府啓: “守陵之任, 非輕, 固不可往. 宜賜醫藥, 令其弟師有等往視.” 從之.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29일(경진) 2번째기사>

정치/왕실
익현군 이관이 남양에 갔다가 낙마하다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璉)이 남양(南陽)에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므로,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과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가서 구료(救療)하게 하였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계양군과 익현군을 곡진(曲盡)하게 지대(支待)하고, 또 익현군이 있는 처소(處所)에 음식물을 계속하여 대주어라.” 하였다.
○丁亥/翼峴君璉往**南陽**墮馬. 命桂陽君璔及內醫往救之. 諭京畿觀察使曰: “桂陽君及翼峴君曲盡支待, 且於翼峴君處, 續給食物.”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3일(정해) 1번째기사>

정치/왕실
내의 김길호를 남양에 보내어 익현군 이관의 병을 문안하게 하다
내의(內醫) 김길호(金吉浩)를 남양(南陽)에 보내어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璉)의 병(病)을 문안(問安)하도록 명하였다.
○甲午/命遣內醫金吉浩于**南陽**, 問翼峴君璉疾.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1월 10일(갑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한명회가 남양으로 장인을 근친하려고 하직하다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남양(南陽)**에 가서 장인[妻父]인 중추원 부사 민대생(閔大生)을 근친(覲親)하려고 하직하니,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유시하여 민대생의 집에 잔치를 내려 주게 하였다.
○庚子/上黨府院君韓明澮覲妻父中樞院副使閔大生于**南陽**辭, 諭京畿觀察使, 賜宴于大生家.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6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왕실
한명회의 처부인 한성부윤 민대생이 남양부에 살다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봉조청(奉朝請) 한 **민대생(閔大生)이 남양부(南陽府)에 살고 있으므로**, 임금이 일찍이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위연(慰宴)하게 하였는데, 민대생이 예궐(詣闕)하여 사은(謝恩)하였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술을 내려 주며, 내녀(內女)로 하여금 원손(元孫)을 안고 나와 민대생에게 보이니, 〈민대생은〉 곧 원손(元孫)의 외구(外舅) 한명회(韓明澮)의 처부(妻父)이다.
○漢城府尹奉朝請閔大生居**南陽府**, 上嘗令京畿觀察使慰宴, 大生詣闕謝恩. 上與中宮御思政殿引見, 賜酒, 令內女抱元孫出視, 大生, 卽元孫外舅韓明澮之妻父也.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2일(신사) 2번째기사>

정치/왕실
난신 남이의 남양의 전지를 봉보 부인 김씨에게 내려 주다

명하여 난신(亂臣) **남이(南怡)의 남양(南陽)의 전지(田地)**를 봉보 부인(奉保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려 주었다.
○命賜亂臣南怡**南陽**田于奉保夫人金氏.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26일(신사) 3번째기사>

정치/왕실
성종의 정치를 하는 도에 관한 책을 관에 넣지 말게 하다
승지 김응기가 아뢰기를, "세종조의 어압 도서(御押圖書)는 모두 상아(象牙)로 만들었는데 현궁(玄宮)에 넣고, 그 밖에 옥이나 은으로 만든 것은 상의원(尙衣院)에 남겨 두었으니, 아마 은과 옥은 현궁에 넣지 않는 것인 듯 생각됩니다. 대행왕의 위정이덕 도서(爲政以德圖書)는 은으로 만든 것인데 현궁에 넣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은과 옥을 현궁에 넣지 않는다면, 지금 지문(誌文)·애책(哀冊)·시책(謚冊)은 무슨 물건에 써서 어느 곳에 두겠는가?" 하매, 응기와 윤필상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지문·애책은 남양산(南陽産) 옥에다 써서 광중(壙中)에 들이고, 시책·시보(謚寶)도 남양옥에 써서 종묘에 간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은과 옥을 현궁(玄宮)에 넣지 않는다면 상아(象牙)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평시에 쓰시던 물건이 아닌 것은 추후로 만들어[追造] 넣을 수 없습니다. 또 축첩(祝帖)·은압(銀押)은 보각(寶閣)에 간직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위정이덕(爲政以德) 도서는 현궁에 넣지 말고 축첩·은압은 당분간 안에 두게 하라." 하였다.
○辛丑/承旨金應箕啓: "世宗朝御押圖書, 皆造以象牙, 納諸玄宮. 其他或玉或銀, 留在尙衣院, 意其以銀玉, 不納玄宮也. 大行王爲政以德, 圖書用銀, 納諸玄宮乎?" 傳曰: "銀玉不納玄宮, 則今誌文·哀冊·謚冊, 書於何物, 置於何處?" 應箕與尹弼商等議啓: "**誌文·哀冊, 書於南陽産玉**, 納于壙中. **謚冊·謚寶, 亦書於南陽玉**, 藏諸宗廟." 傳曰: "銀玉不納玄宮, 則造以象牙何如?" 僉啓: "非平時服御之物, 不可追造納之. 且祝帖·銀押, 藏諸寶閣乎?" 傳曰: "爲政以德, 圖書其不納於玄宮, 祝帖·銀押, 姑留於內."
<연산군일기 2권, 연산 1년 1월 17일(신축) 1번째기사>

정치/왕실
남양의 종이 된 내관 서수진을 곧 석방하여 올려 보내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남양(南陽)의 종이 된 내관 서수진(徐壽眞)을 곧 석방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甲申/傳曰: "**南陽**爲奴內官徐壽眞, 卽放上送."
<연산군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7일(갑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특진관 이손 등이 남양에 사는 내수사 종이 평인과 싸운 일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납시었다. 검토관(檢討官) 안처성(安處誠)이 아뢰기를, "『서경(書經)』 전편은 명덕(明德)과 경덕(敬德)을 위주한 것이니, 이것이 흠명(欽明)이 책 첫머리의 제일의(第一義)가 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런 말들을 깊이 체득하여 자신을 반성한다면 국가

의 치세(治世)는 쉽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손(李蓀)은 아뢰기를,

“지금 좌우에서 아뢴 흠명(欽明)에 관한 말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대개 명덕(明德)하는 공부는 ‘공경 경(敬)’ 한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의 흠명과 순(舜)임금의 신휘(愼徽)와 우(禹)임금의 지승(祗承)과 탕(湯)임금의 성경(聖敬)과 문왕(文王)의 경지(敬止)와 무왕(武王)의 단서(丹書)가 모두 이 때문인 것입니다. 후세의 임금이 모두 경덕(敬德)으로 근본을 삼는다면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정치는 바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군신 상하와 서정(庶政) 만사가 모두 그 도를 잃을 것이니, 근일 폐조(廢朝) 때의 일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누가 경덕으로써 고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몸은 참형을 당하고 화가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니, 말을 하려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명(聖明)하신 전하께서 위에 계시니, 신의 말이 아니라도 물론 공경하고 조심하실 것입니다. 들으니, 근일 흰 병풍을 홍문관(弘文館)에 내리시면서 법되고 경계될 만한 말을 쓰게 하시어 좌우에서 보고 살필 자료를 삼으셨다 하니, 성상의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요전(堯典)·순전(舜典)의 요긴함만이야 하겠습니까? 신은 여러 조정을 섬겨서 듣고 본 것이 또한 많습니다. 위에 있는 이가 공경하고 조심하여 아랫사람들을 어거하지 않으면 외척의 무리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원경 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여러 형제와 소헌 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의 부친이 참람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보전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실상 태종·세종께서 처음부터 엄하고 공경하게 대우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근일 들으니, **내수사(內需司) 종으로 남양(南陽)에 거주하는 자가 평인(平人)과 싸웠는데**, 곧 그 고을 아전을 명하여 잡아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이 처음에 듣고 깜짝 놀라며 폐조 때의 일이 이로부터 다시 일어나지나 않을까 의심하였는데 다행히도 대사령으로 인하여 용서되었다 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폐해가 또한 구원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장령(掌令) 김언평(金彦平)은 아뢰기를,

“이손의 아뢴 것은 모두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인군의 정치는 진실로 ‘경(敬)’ 한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유념하소서. 또 최수준(崔秀俊)의 죄는, 이미 대사령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마음가짐이 매우 간교하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어떤가?’ 하니, 영사(領事) 신준(申浚)이, “과연 대간의 말한 바와 같습니다. 대사령이 있기는 하였지만 죄는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이르기를, ‘이미 용서를 받았고 또 체직(遞職)을 하였으니, 죄주는 것이 불가하다.’ 하였다.

○丁亥/御朝講. 檢討官安處誠曰: “『書』之一篇, 以明德敬德爲主, 此所以欽明, 爲開卷第一義也. 若深體如是等語, 反之於身, 則國家之治, 可立以待.” 特進官李蓀曰: “今左右所啓, 欽明之說甚善. 蓋以明德功夫, 在於敬之一字. 故堯之欽明, 舜之愼徽, 禹之祗承, 湯之聖敬, 文之敬止, 武之丹書, 皆以此也. 後世人主, 皆以敬德爲本, 則二帝三王之治, 可指日而致. 若不愼厥德, 則君臣上下, 庶政萬事, 皆失其道, 近日廢朝之事, 可鑑矣. 當是時, 孰不欲告之以敬德, 言出於口, 戮及其身, 禍延子孫, 雖欲言之, 不可得也. 今則聖明在上, 不待臣言, 而當敬之愼之也. 伏聞近日下素屛于弘文館, 命書可法可戒之辭, 爲左右觀省之資, 聖上之意, 可謂至矣. 然豈如堯·舜典之爲要乎? 臣歷事累朝, 聞見亦多. 爲上者, 若不敬愼以御其下, 則如戚里之輩, 將無以制矣. 昔元敬王后閔氏諸兄弟, 昭憲王后沈氏之父, 以褻僭不謹, 竟未保全, 此

實由於太宗·世宗初不以嚴敬待之也. 近日聞內需司奴居南陽者, 與平人相鬪, 而其官人吏, 卽命拿來. 臣初聞之, 不覺驚動, 疑廢朝之事, 將自此復起也, 幸以赦見原. 若於此類, 不以嚴敬處之, 其弊亦將難救矣." 掌令金彦平曰: "李蓀所啓, 皆當於理. 人主之治, 誠不過於敬之一字, 請留念焉. 且崔秀俊之罪, 雖已經赦, 其用心甚爲奸巧, 不可赦也." 上顧問左右曰: "何如?" 領事申浚曰: "果如臺諫所言. 則雖經赦, 治罪亦當." 上曰: "旣已蒙宥, 而又遞職, 不可罪也."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2월 13일(정해) 1번째기사>

정치/왕실

홍언필이 김안로를 비판하고 죄를 얻어 남양에 있다고 경연에 참석하여 부끄럽다고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대신과 좌우에게 말하고자 한 지가 오래이다. 이번에 김안로 등의 간사한 행위는 상하가 이미 알고도 미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공론이 마침 일어나서 그 죄를 결정하였으니, 종사의 복이다. 다만 김안로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어 가까운 척리(戚里)부터 제거하고 많은 사림을 모함하고자 하여 큰 변이 날 뻔하였는데, 그 죄가 결정되고서는 시골 구석의 백성까지도 기뻐하며 경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 죄를 정한 것은 곧 척리를 귀양보내자고 거론한 다음에 있었으므로 내 마음에 미안하다. 시골의 백성들이야 공론이 일어난 것임을 어떻게 알겠는가. 척리를 귀양보내자고 한 것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니, 영사 홍언필이 아뢰기를, "김안로 등의 간사한 행위는 근고(近古)에 없던 것으로, 조정의 위아래 사람이 누가 미워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공론이 저절로 일어났고 대간이 한 번 거론하자 성상께서도 즉시 따라 주셨습니다. 예로부터 소인의 정상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비록 알았더라도 지체 없이 제거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깨달은 즉시 제거하였으니, 이는 아주 잘한 것입니다. 상하와 사방에서 다같이 환하게 아는 것인데, 누가 척리의 일로 해서 거기에다 의심을 갖겠습니까. 다만, 간사한 사람의 정상은 성상께서 환히 알고 계셨어도, 조정에 심복이 될 만한 가까운 신하가 분발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 간사함을 극력 밝혀 낸 자가 없으므로, 성상으로 하여금 여러 날을 애태우다가 다시 미안한 생각이 들도록 한 것입니다. 신은 못난 제 자식의 구설(口舌)로 인하여 【홍언필의 아들 홍섬(洪暹)이 허항과 시사(時事)에 저촉되는 말을 하였는데, 허항이 즉시 아뢰기를 마치 고변(告變)하는 것처럼 하여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당하고 나중에 남쪽으로 귀양갔으며, 허항은 후한 상을 받았다】 죄를 얻고 외방에 있다가 **【홍언필도 연좌되어 도성문(都城門) 밖으로 쫓겨나 남양(南陽)에 있었다】** 오늘에야 경악(經幄)에 입시할 수 있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辛丑/御朝講. 上曰: "予欲言於大臣與左右久矣. 今者安老等奸狀, 上下已知, 而未及治之, 公論適發, 以定其罪, 宗社之福也. 但安老構成虛事, 先去至戚, 欲多陷士林, 大變將出矣. 及其定罪也, 雖閭閻小民, 無不歡慶, 然其定罪, 乃在戚里論竄之後, 則於予心未安也. 閭巷小民, 何知公論之發也? 無乃以戚里之故, 而事發云爾耶?" 領事洪彦弼曰: "安老等奸狀, 近古所無. 朝廷上下, 孰不憤疾? 公論自激, 臺諫一論, 上亦旋從. 自古小人之情, 知之爲難, 雖知而快去尤難也. 今者覺悟, 旋卽除去, 是可貴也. 上下四方, 所共洞照, 誰肯以戚里之故, 而置疑於其間也? 但奸人情狀, 自上灼見, 而朝廷無腹心親臣, 奮不顧身, 力辨其邪者, 故致上焦思日久, 更思未安. 臣以不肖子口舌, 【彦弼子暹, 與許沆, 語觸時事, 沆卽啓之, 如告變之例. 受刑訊累次, 乃謫南方, 沆亦受厚賞】得罪在外, 【彦弼坐黜門外, 居南陽】今日乃得入侍經幄, 慙赧無

已.(…)”(…)
<중종실록 86권, 중종 32년 11월 26일(신축) 1번째기사>

정치/왕실

좌승지 이덕열에게 숙빈 윤씨는 남양에서 음식을 제급하라고 명하다

좌승지 이덕열(李德悅)에게 전교하였다. “혜빈(惠嬪) 정씨(鄭氏)는 광주(廣州)에서, **숙빈(淑嬪) 윤씨(尹氏)는 남양(南陽)에서,** 숙의(淑儀) 이씨(李氏)·신씨(愼氏)는 연안(延安)에서 음식물을 제급(題給)하여 줄 것을 감사에게 유지(有旨)를 내리도록 하라.”

○傳于左承旨李德悅曰: “惠嬪鄭氏, 廣州; 淑嬪尹氏, **南陽**; 淑儀李氏·愼氏, 延安; 食物題給事, 監司處, 有旨.”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26일(무술) 2번째기사>

정치/왕실

사간원이 남양부사 김장생은 수령으로서 명성과 경력이 없으니 승진이 불가하다고 하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내전이 황해도에 임시 머물렀을 때 지방관이 공급을 잘한 자그마한 공로는 있으나 이는 다만 신하로서의 직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만약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중가(重加)를 내린다면 조정이 덕있는 자에게 주는 벼슬이 가치가 없고 남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성천(成川)은 왕자(王子)가 머무른 곳입니다. 사체가 수안(遂安)과는 차이가 있는데 모두 똑같이 상을 주니 물정이 더욱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성천 부사(成川府使) 정구(鄭逑)와 수안 군수(遂安郡守) 유대경(兪大儆)의 가자를 아울러 개정하라 명하소서. 문음(門蔭)으로 목사나 부사에 임명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기(才器)가 뛰어나고 오랜 경력을 쌓은 자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김장생(金長生)과 부평 부사(富平府使) 이유(李綏)는 전일 수령이 되었을 때 별다른 명성이 없었고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별안간 3품의 직책에 승진시키니 매우 외람됩니다. 빨리 체차하소서.”

○司諫院啓曰: “內殿權住海西, 守土之官, 自有供給之微勞, 而此特臣子之職分. 若以酬勞之故, 而賞之以重加, 則朝家命德之器, 不幾於輕且濫乎? 況成川, 王子所住之邑. 事體與遂安有間, 而渾施一體之賞, 物情尤以爲未便. 請成川府使鄭逑, 遂安郡守兪大儆加資, 幷命改正. 門蔭之於牧·府使之任, 非才器卓異, 踐歷最久者, 不足以當之. **南陽府使**金長生, 富平府使李綏, 前爲守令, 別無聲稱, 其所履歷亦淺, 而驟陞三品之職, 猥濫極矣. 請亟命遞差.”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3일(을축) 2번째기사>

정치/왕실

총호사 이헌국이 남양의 홍섬 묘 및 남양 객사 등지를 간심할 것을 건의하다

총호사 이헌국이 아뢰기를, “신이 오늘 먼저 숙배하고 내일 이른 새벽에 인산하는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다만 이국주(李國柱)와 이우민(李友閔)의 무덤에 모두 물기가 있었다고 하나 정혈(正穴)은 오는 2일 개금정(開金井)을 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아래의 묘에 모두 물기가 있었고 돌이 매우 단단하다고 하니 그대로 국장을 모시기에는 매우 미안합니다 정혈을 파본 다음 만일 어떤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더욱 처리하기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날짜는 점점 늦어지고 일은 더욱 어려워지니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양주(楊州)의 윤은보(尹殷輔)네 묘산을 이미 간심하였는데 조금은 국장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하루길 거리의 사묘(私墓)들은 두루 답사하였으나 대부분 흉허물이 많아 내

버렸습니다. **전날 상지관(相地官)들이 서계한 중에 있던 남양(南陽)의 홍섬(洪暹)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 찰방(南察訪)의 묘와 남양 객사(南陽客舍)의 뒷산과 지금 상소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두수네 묘산에 미리 해당 관리를 보내어 속히 간심하도록 할 것을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되 남양은 간심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庚子/摠護使李憲國啓曰: "臣今日, 先肅拜, 明日早曉, 出去因山處, 但李國柱及友閔墳, 皆有水氣云. 正穴則來初二日, 開金井後, 可知矣, 然其上下舊墳, 水氣石氣如此, 仍用國葬, 極爲未安, 正穴穿壙後, 如有故, 則尤爲難處. 日字漸延, 事勢尤難, 不勝悶慮. 楊州尹殷輔墓山, 則已爲看審, 而稍合國用云. 其餘一日程私墓, 則無不遍踏, 皆多凶咎而棄之. 前日相地官等書啓中, 南陽洪暹及名不知南察訪墓及南陽客舍後等處, 與今之疏中所稱尹斗壽墓山, 請預遣該官, 急急看審事來啓." 答曰: "依啓. 南陽則勿爲."
〔宣宗昭敬大王實錄卷之第一百三十〕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30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왕실
사헌부가 궁방 차사를 사칭한 김서옥이 남양에서 폐단을 부렸으니 추핵하자고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궁방 차사(宮房差使)라고 칭하는 김서옥(金瑞玉)이라는 자가 남양부(南陽府)에 내려가서 민간의 소와 물건을 약탈하며 끝없이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므로 이문(移文)하여 잡아와서 추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서옥이 현납(現納)한 소위 패자(牌子)라는 것 두 장의 끝에 순화궁방(順和宮房)이라는 네 글자가 씌어 있긴 하나 서압(署押)이 없는 것으로, 위조해서 사칭하여 폐단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사(府使) 조응문(趙應文)은 진위(眞僞)를 가리지 않고 허실을 살피지도 못한채 한 장의 위조한 종이에 겁을 먹고 봉행하기에만 겨를이 없어 죄없는 백성들에게 박탈을 가하고 10여 마리의 소를 독촉해 거두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시고, 김서옥이라는 자는 해조로 하여금 끝까지 추핵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憲府啓曰: "宮房差使稱云, 金瑞玉其名者, 下去南陽府, 掠奪民間牛隻物貨, 作弊無窮云, 故移文捉來推鞫, 則瑞玉現納, 所謂牌子二張末端, 書順和君房四字, 而無署押僞造, 冒稱作弊之事, 而府使趙應文, 不辨眞僞, 不覈虛實, 怵於一紙僞造, 唯恐奉行之不暇, 刻剝無辜之民, 督徵十餘頭牛隻, 事甚駭愕.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金瑞玉稱名人, 令該曹, 窮推定罪." 答曰: "依啓."
<선조실록 167권, 선조 36년 10월 7일(기축) 2번째기사>

정치/왕실
남양 부사 윤계가 시폐를 진달하고 원손을 외가에서 기르면 안 된다고 아뢰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棨)가 상소하여 시폐를 조목별로 진달했다. 그리고 원손(元孫)을 외가에 내다 기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극론하니, 상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예조 판서 강석기(姜碩期)가 차자를 올리기를,
"원손을 신의 집에 나와 우거하게 하는 것이 비록 성상께서 원손을 보호하려는 지극한 뜻이오나 사리를 헤아려 보면 크게 온당치 못한 바가 있기에 신은 자나깨나 늘 편안치 못하게 지내 왔습니다. 윤계의 상소를 보니, 말의 뜻이 정성스럽고 솔직하여 신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내다 기르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고 보부(保傅)의 교훈을 극진히 하시어 만세의 규범으로 삼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계의 말은 지나치게 염려한 데서 나온 듯하니 두렵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南陽府使**尹棨上疏, 條陳時弊, 且盛論元孫之出養於外家爲未安, 上優批答之. 於是, 禮曹判書姜碩期上箚曰:元孫之出寓臣家, 雖是聖上欲其保護之至意, 揆諸事理, 大有所未妥, 臣常寤寐靡寧矣. 伏見尹棨之疏, 辭意切直, 臣不勝瞿然. 伏乞還收出養之命, 克盡保傅之訓, 以爲萬世之範.

答曰: “尹棨之言, 似涉過慮, 勿以爲懼.”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1636) 6월 7일(경진) 2번째기사>

정치/왕실

윤강 등이 산을 살피고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니 차례를 매겨 들여오라 하다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응시가 아뢰기를, “신들이 이번에 살펴본 곳이 장단(長湍)의 김영렬(金英烈), 교하(交河)의 윤반(尹磻), 광주(廣州)의 정난종(鄭蘭宗), **남양(南陽)의 홍언필(洪彦弼)·홍기영(洪耆英)**, 광주(廣州)의 이증(李增) 등의 묘산(墓山)과 양재역(良才驛) 뒷산, 한강 북변의 산, 왕십리 해동촌(海東村) 그리고 이충작(李忠綽)의 묘산과 정토(淨土) 근처 등지로서 그 모두를 지관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상론하게 하였으며, 이원진·윤선도도 각기 품평을 가하여 별단으로 써서 올리고, 그 중에서 조금 좋다고 생각되는 네 곳은 그림으로 그려서 올립니다.”

하니, 상이 윤강에게 하교하기를, “그림으로 올라온 산 네 곳 중에서 제일 쓸 만한 곳부터 차례를 매겨 들여오라.” 하자, 윤강이 답하기를, “**수원의 호장(戶長) 집 뒷산**이 용혈(龍穴) 사수(砂水)가 진선 진미하여 그야말로 천재 일우의 곳으로 다른 산과는 단연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반의 묘소 등 네 곳은 결코 크게 쓸 곳이 못되는데, 상의 하교에 따라 여러 지관으로 하여금 차례를 매기라고 하였더니, 교하 윤씨의 산이 가장 낫고 **남양이 그 다음이며** 광주 정씨의 산이 또 그 다음이고 한강 북변이 네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禮曹判書尹絳·觀象監提調李應蓍啓以: “臣等今所看審處. 長湍·金英烈·交河尹磻·廣州鄭蘭宗·**南陽**洪彦弼·洪耆英·廣州李增等墓山及良才驛後山·漢江北邊山. 徃十里海東村·李忠綽墓山淨土近處, 竝令地官, 一一詳論, 李元鎭·尹善道亦各評品, 別單書入, 而其中稍優四處, 圖刑以進云.” 上下敎于尹絳曰: “四處山圖中合用者, 等第以入.” 尹絳對以: “水原戶長家後山龍穴砂水, 盡善盡美, 此實千載一遇之地, 斷不可比論於他山 尹磻等四處山, 決不合於大用, 而因上敎, 使諸地官等第, 則交河尹山最勝, **南陽**次之, 廣州鄭山又次之, 漢北山居第四云.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1659) 6월 15일(갑진) 3번째기사>

정치/왕실

대신 및 비국 제신을 인견하여 온천 행행시의 호위·의장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이 침을 맞은 뒤에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둥하실 날짜를 이미 잡았는데, 충청도 군병(軍兵)은 반드시 먼저 표신(標信)을 보내야 징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미리 여쭈어 처리하라고 하였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장관(將官)과 금군장(禁軍將) 등이 궐내(闕內)에 입번(入番)하는 일

은 모두 작년의 예에 따라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밖의 모든 일도 다 작년에 거행한 대로 따라서 하라." 하였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마병(馬兵)은 양전(兩殿)의 중간에서 호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만, 금군(禁軍)의 수가 1천 명이므로 어수선한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자, 공조 판서 이완이 아뢰기를, "행군(行軍)하는 규정에는 마병(馬兵)이 당연히 보병(步兵)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외방의 군사로 하여금 길 왼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거가(車駕)가 통과하고 난 뒤에 그대로 후대(後隊)가 되도록 하면 편리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좌상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지난달의 거센 바람은 실로 근고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화변(禍變)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거둥이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일이기는 하나, 항상 경척(警惕)하시고 조금도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완에게 이르기를, "천총(千摠) 1인으로 하여금 도감군(都監軍)을 거느리고 작문(作門)의 안에서 호위하게 하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호각을 부는 임무도 겸하게 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구인기(具仁壁)가 총융사로서 뒤에 쳐졌다가 수원에 남아 있게 되는데 도신(道臣)도 수원에 남아 있으면 수원이 반드시 곡물을 잇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인기로 하여금 도성 안으로 도로 들어가서 도성을 통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남양(南陽)·안성(安城)·양성(陽城) 등의 고을을 왕래하면서 머무르게 하고**, 인기는 산성(山城)에 머물면서 산성의 곡식을 가져다 먹게 하여 본부(本府)에 폐해가 없게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이 아뢰기를, "자전께서 궁(宮)을 나가실 때 연(輦)을 타실 것입니다만, 강을 건넌 뒤에도 연을 타실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빈 연(輦)을 가지고 가 대령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박장원이 아뢰기를, "앞에서 인도하는 고취(鼓吹)도 배열은 하되 연주하지 않아야 되는데, 강어귀에 이르러 그만두도록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악(軍樂)은 성안에서 거행할 수 없으나, 고취는 연(輦)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上受鍼後,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兵曹判書洪重普曰: "溫幸旣已擇日, 忠淸道軍兵, 必先送標信後, 可以徵發." 上令政院, 預爲稟處. 重普曰: "將官禁軍將等闕內人番, 一依上年例乎?" 上曰: "可. 此外凡事, 皆依上年例." 重普曰: "馬兵則命扈衛於兩殿之間, 而禁軍之數一千也, 似有紛沓之弊." 工曹判書李浣曰: "行師之規, 則馬兵當在步兵前. 令外方軍, 結陣道左, 待車駕過後, 仍作後隊, 則似便." 上曰: "可." 左相洪命夏曰: "去月大風, 實是近古所無. 禍變遲速, 雖未可知, 而必有其應. 今此擧動, 雖出不獲已, 宜常加警惕, 不容少懈." 上謂浣曰: "使千摠一人, 領都監軍, 扈衛於作門之內, 兼爲開閉門吹." 命夏曰: "具仁壁以摠戎使落後, 當留於水原, 道臣亦留於水原, 則水原必難支. 宜令仁壁, 還入都中, 節制京圻." 上曰: "監司則往來留駐於**南陽**·安城·陽城等邑, 仁壁則留鎭山城, 取食山城穀, 以除本府之弊." 禮曹判書朴長遠曰: "慈殿出宮時, 當乘輦, 而渡江之後, 亦乘輦乎?" 上曰: "空輦宜待令而去." 長遠曰: "前導鼓吹, 亦當陳而不作, 到江頭而止乎?" 上曰: "軍樂不可作於城內, 而鼓吹, 則當作於輦前矣."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1666) 3월 13일(계사) 2번째기사>

정치/왕실

예조 판서 윤강이 간심한 산의 도형을 그려 올리다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응시가 아뢰기를, "신들이 지금 간심한 바, **남양(南陽)의 옛 고을 터**, 장단(長湍)의 김영렬(金英烈), 교하(交河)의 윤반(尹磻), 광주(廣州)의 정난종(鄭蘭宗)·이증(李增), **남양의 홍언필(洪彦弼)·홍기영(洪耆英) 등의 묘산** 및 양재역(良才驛) 뒷산, 한강(漢江)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산, 왕십리 해동촌(往十里海東村) 이충작(李忠綽) 묘산 정토 근처를 모두 지관(地官)으로 하여금 일일이 상론하게 하고 이원진(李元鎭)·윤선도(尹善道) 역시 산자리를 평가하게 하여, 그 중 좀 우수한 네 곳을 그림을 그려서 올립니다." 하니, 상이 윤강에게 명하여 네 곳 산 도형 중 쓰기에 합당한 것을 등차를 매겨서 들이라 하였다.

이에 윤강이 답하기를, "수원(水原) 산은 용혈(龍穴)과 사수(砂水)가 진선진미하니 이는 실로 천재 일우의 길지로서 결코 다른 산에 비교할 수 없으나, 네 곳의 산은 결코 대용(大用)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여러 지관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니, 교하 윤씨의 산이 가장 좋고, **남양 홍씨의 산이 다음이고**, 광주 정씨의 산이 그 다음이고, 한강 북쪽 산이 네 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禮曹判書尹絳·觀象監提調李應蓍啓: "以臣等今所看審處**南陽**古郡基·長湍金英烈·交河尹磻·廣州鄭蘭宗·李增·**南陽**洪彦弼·洪耆英等墓山, 及良才驛後山·漢江北邊山·徃十里海東村李忠綽墓山·淨土近處. 竝令地官, 一一詳論, 李元鎭·尹善道, 亦爲評品, 其中稍優四處, 圖形以進矣." 上命絳四處山圖中合用者, 等第以入, 絳對以水原之山, 龍·穴·砂·水, 盡善盡美. 此實千載一遇之地, 斷不可比論於他山. 四處山決不合於大用, 而因上敎, 使諸地官等第, 則交河尹山最勝, **南陽**洪山次之, 廣州鄭山又次之, 漢北山居第四云.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1659) 6월 15일(갑진) 3번째기사>

정치/왕실

대신들과 온천 거둥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다

상이 침을 맞은 뒤에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둥하실 날짜를 이미 잡았는데, 충청도 군병(軍兵)은 반드시 먼저 표신(標信)을 보내야 징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미리 여쭈어 처리하라고 하였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장관(將官)과 금군장(禁軍將) 등이 궐내에 입번하는 일은 모두 작년의 예에 따라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밖의 모든 일도 다 작년에 거행한 대로 따라서 하라." 하였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마병(馬兵)은 양전(兩殿)의 중간에서 호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만, 금군(禁軍)의 수가 1천 명이므로 어수선한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자, 공조 판서 이완이 아뢰기를,

"행군하는 규정에는 마병이 당연히 보병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외방의 군사로 하여금 길 왼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거가(車駕)가 통과하고 난 뒤에 그대로 후대(後隊)가 되도록 하면 편리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지난달의 거센 바람은 실로 근고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화변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거둥이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일이기는 하나, 항상 경계하시고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완에게 이르기를, "천총 1인으로 하여금 도감군을 거느리고 작문(作門)의 안에서 호위하게 하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호각을 부는 임무도 겸하게 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구인기가 총융사로서 뒤에 쳐졌다가 수원에 남아 있게 되는데 도신도 수원에 남아 있으면 수원이 반드시 곡물을 잇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인기로 하여금 도성 안으로 도로 들어가서 경기를 통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남양(南陽)·안성(安城)·양성(陽城) 등의 고을을 왕래하면서 머무르게 하고**, 인기는 산성에 머물면서 산성의 곡식을 가져다 먹게 하여 본부(本府)에 폐해가 없게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박장원이 아뢰기를, “자전께서 궁(宮)을 나가실 때 연(輦)을 타실 것입니다만, 강을 건넌 뒤에도 연을 타실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전께서 비록 교자를 탄다고 하더라도 빈 연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上受鍼後, 引見大臣及備局諸臣兵曹判書洪重普曰: “溫幸旣已擇日, 忠淸道軍兵, 必先送標信後, 可以徵發.” 上令政院, 預爲稟處. 重普曰: “將官·禁軍將等闕內入番, 一依上年例乎?” 上曰: “可. 此外凡事, 皆依上年例.” 重普曰: “馬兵則命扈衛於兩殿之間, 而禁軍之數一千也, 似有紛沓之弊.” 工曹判書李浣曰: “行師之規, 則馬兵當在步兵前. 令外方軍, 結陣道左, 待車駕過後, 仍作後隊, 則似便.” 上曰: “可.” 左相洪命夏曰: “去月大風, 實是近古所無. 禍變遲速, 雖未可知, 而必有其應. 今此擧動, 雖出不獲已, 宜常加警惕, 不容少懈.” 上謂浣曰: “使千摠一人, 領都監軍扈衛於作門之內, 兼爲開閉門吹.” 命夏曰: “具仁垕以摠戎使落後, 當留於水原, 道臣亦留於水原, 則水原必難支. 宜令仁垕還入都中, 節制京畿.” 上曰: “監司則往來留駐於**南陽**·安城·陽城等邑, 仁垕則留鎭山城, 取食山城穀, 以除本府之弊.” 禮曹判書朴長遠曰: “慈殿出宮時, 當乘輦, 而渡江之後, 亦乘輦乎?” 上曰: “慈殿雖乘駕轎, 空輦亦宜從行.”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7년(1666) 3월 13일(계사) 2번째기사>

정치/왕실

예장 도감에서 길흉에 관한 의장에 관해 아뢴 내용

예장 도감(禮葬都監)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도감(都監)의 모든 일은 실록(實錄)과 을유년의 의궤(儀軌)를 참고하여 거행하는데, 그 가운데 시책(謚冊) 이하 여덟 가지를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세자께서 휘람(徽覽)하시는 데에 대비할까 합니다. 또 한두 가지 품지하여 결재할 단서가 있으면 마땅히 하령(下令)이 있기를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길흉(吉凶)의 의장(儀仗)·복완(服玩)·명기(明器)에 이르러서는 실록과 을유년·신사년의 의궤 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도감에서 그 숫자를 마음대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별단(別單)을 만들어 열거하여 기록하고 주석을 달아서 바치니,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하고 참작하여 정하여서 분부하시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단에 열거하여 기록한 것은 이러합니다.

시책(謚冊)【애책(哀冊)도 같습니다. 실록과 등본(謄本) 가운데에는 시책과 애책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대나무[竹]를 사용하거나 옥(玉)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을유년의 의궤에서는 대나무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시인(謚印)【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시인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은·옥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을유년의 의궤에 처음에 은을 사용하여 주조하도록 정탈(定奪)하였지만 뒤에 내상(內上)의 인이라는 것으로 옥으로 새겼기 때문에 남양(南陽)의 옥을 사용하도록 고쳤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또 시인(謚印)의 척도(尺度)에 대해서는 을유년의 의궤에서는 사방이 3촌 5푼이고 두께가 7푼이고 귀부(龜趺)의 높이가 1촌 5푼이었습니다만, 병자년

가례(嘉禮) 때의 의궤를 가져다가 상고하니, 옥인(玉印)은 사방이 3촌 6푼이고 두께가 8푼 5리이고 귀부의 높이가 2촌 1푼이었습니다. 이번의 시인은 길이·너비·높이·두께를 가례 때의 옥인과 같게 하면 생시(生時)를 상징하는 뜻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여 감히 마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조처해야 할는지를 감히 품지합니다】 증옥(贈玉)【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증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궤에는 증옥은 단천(端川)의 심청옥(深靑玉)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증백(贈帛)【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증백으로 검정색 6필과 분홍색 4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궤에는 증백은 검은 대단(大緞) 6필과 붉은 대단(大緞) 4필을 사용하였고 각각 길이가 18척이었으며 척수(尺數)는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삽선(翣扇)【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보삽(黼翣) 2부, 불삽(黻翣) 2부, 화삽(畫翣) 2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을유년 의궤에서도 이와 같았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신사년 의궤에서도 행상(行喪)에 삽선 6부가 있었는데, 첫번째 습의(習儀)할 때를 비롯해 산릉(山陵)에까지 배열하여 두었다가 하현궁(下玄宮)한 뒤에는 불에 태워버렸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만장(輓章)【실록과 등본 가운데에는 발인 반차(發靷班次)에서 만사 30장을 좌우에 나누어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을유년 의궤에는 80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만장의 많고 적은 숫자를 어떻게 정해야 할는지 감히 품지합니다】 우주(虞主)【을유년 의궤에는 예조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우주(虞主)는 뽕나무를 사용하고 연주(練主)는 밤나무를 사용할는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우주에 바로 밤나무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우주의 법식은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였습니다. 또 종묘의 제도에 의하여 분면(粉面)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먹으로 쓴 글씨 위에 칠을 사용하여 장식을 더하였는데,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지석(誌石)【을유년 의궤에는 지석이 2편이었는데 길이가 4척 2촌 4푼이고 너비가 2척 9촌 5푼이고 두께가 5촌 9푼으로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하였으니, 지금도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길흉에 관한 의장(儀仗) 따위의 일은 예조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여 참작해서 정하자는 한 가지 조문은 계달한 대로 하도록 하라. 그 나머지 일은 대조(大朝)께 품지하였더니, 말씀하시기를, ‘**세자빈을 책봉(冊封)할 때에 책문(冊文)은 대나무를 사용하였고 글자를 쓰는 데에는 금을 사용하였고 인(印)은 옥을 사용하였는데 옥은 으레 남양(南陽)의 옥을 채용하였으니**, 지금 이 시책(諡冊)에서도 대나무를 사용하고 금으로 글자를 쓰도록 하라. 애책(哀冊)도 대나무를 사용하고, 시인(諡印)은 옥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국휼(國恤) 때에 애책(哀冊)은 붉은 글자를 썼는데 지금은 푸른 글자를 쓰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 만장(輓章)은 실록과 등본(謄本)에 의해 30장으로 정하고 시인(諡印)의 척도(尺度)는 가례(嘉禮) 때의 옥친(玉印)과 같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이밖에 여러가지 조문은 계달한 내용에 의하여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교(下敎)하셨으니, 이에 의거 거행하도록 하라.”(…)

○丙申/禮葬都監言: “今此都監凡事, 參考實錄及乙酉儀軌擧行, 而其中諡冊以下八條, 條列于後, 以備徽覽. 且有一二稟裁之端, 當待下令擧行. 至於吉凶儀仗·服玩·明器, 則實錄及乙酉·辛巳儀軌中, 有無多少, 互相不同, 自都監有難擅定其數, 故竝爲別單列錄, 懸注以入. 請令禮曹稟旨, 酌定分付, 以爲擧行之地. 其別單列錄. 諡冊·【哀冊同. 實錄·謄本中有諡·哀冊, 而不言用竹用玉, 乙酉儀軌用竹, 今亦當遵用】諡印·【實錄·謄本中, 有諡印而不言用金·銀·玉. 乙酉儀軌, 初以用銀, 鑄成定奪, 後以內上之印, 乃是玉刻, 故改用南陽玉, 今亦當遵用. 且諡印尺度, 乙酉儀軌, 則方三寸五分, 厚七分, 龜高一寸五分, 而取考丙子嘉禮時儀

軌, 則玉印方三寸六分, 厚八分五釐, 龜高二寸一分. 今此謚印, 長·廣·高·厚, 倣嘉禮時印, 似合於象生時之義, 而事體重大, 不敢擅便, 何以爲之? 敢稟】贈玉·【實錄·謄本中, 有贈玉, 乙酉儀軌贈玉用瑞川深靑玉, 今當遵用】贈帛·【實錄·謄本中, 有贈帛, 玄六·纁四, 乙酉儀軌贈帛用黑大段六疋·紅大段四疋, 各長十八尺, 尺數用造禮器尺, 今亦當遵用】翣扇·【實錄·謄本中, 用黼翣二·黻翣二·畫翣二, 乙酉儀軌同, 今亦當遵用. 辛巳儀軌, 又有行喪翣扇六部, 初度習儀爲始, 排列詣山陵, 下玄宮後燒火, 今亦當遵用】輓章·【實錄·謄本中, 發靷班次挽詞三十, 左右分立, 乙酉儀軌用八十張. 今則輓章多少, 何以爲定? 敢稟】虞主.【乙酉儀軌, 因禮曹啓辭, 虞主用桑, 練主用栗與否, 議于大臣, 以虞主直用栗木爲定, 而主式則一依『家禮』. 且依宗廟制, 不設粉面墨書, 上用柒加飾, 今亦當以此遵用】誌石.【乙酉儀軌, 誌石二片, 長四尺二寸四分, 廣二尺九寸五分, 厚五寸九分, 用造禮器尺, 今亦當遵用】令曰: "吉凶儀仗等事, 令禮曹稟旨, 酌定一款, 依達. 他餘事, 稟于大朝, 則冊世子嬪時, 冊用竹, 塡字用金, 印用玉, 玉則例採南陽玉, 今此謚冊用竹塡金. 哀冊亦用竹, 謚印用玉無疑, 而國恤時哀冊, 以朱塡字, 今則塡靑似疑. 輓章依實錄·謄本, 定以三十, 謚印尺度, 倣嘉禮時印亦宜. 此外諸條, 依達辭爲之可也, 爲敎, 以此擧行."(…)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1718) 2월 17일(병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임금이 재전에 5일 동안 머물다가 신해일에 하직하고 이튿날 환궁하다

임금이 재전(齋殿)에 무릇 5일 동안 머물렀다. 계능(啓陵)할 때의 의절(儀節)에 대해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친히 검찰(檢察)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이 모두 지극하고 애모(哀慕)가 망극하였으며, 민폐를 진휼(軫恤)함에 있어서도 덕의(德意)가 애연(藹然)하니, 보는 여러 신하들이 감동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신해일(辛亥日)이 되어 임금이 빈전을 하직하고 어가(御駕)가 고양(高陽)을 경유하여 환궁(還宮)하였는데, 부수찬 황정(黃晸)을 보내 연로(沿路)의 민폐를 염찰(廉察)하게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사친(私親)의 묘소에 참배하려고 하였으나 평일에 조심하신 뜻을 인식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고, 환관(宦官)을 보내 대신 추모(追慕)의 감회를 펼치게 하였으며, 어가(御駕)를 멈추고 눈물을 한참 동안 머금었다. 경기 감사 정형익(鄭亨益) 등을 소견(召見)하여 특은(特恩)으로 경기 백성의 대동 신포(大同身布)로서 응당 납부해야 할 것 중 3분의 1을 감해 줄 것을 명하고, 어가를 따르는 군병(軍兵) 중에서 들에서 비바람을 맞은 자들에게 죽을 나누어 먹였으며, 새 능에 길을 닦느라 백성의 전답이 잘려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는 지부(地部)에 명하여 그 값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이튿날 임자일에 환궁하였다. 경기 어사 황정(黃晸)이 복명(復命)하여 '파주 목사(坡州牧師) 이굉(李浤)은 위맹(威猛)이 조금 부족하고, 고양 군수(高陽郡守) 홍진유(洪晉猷)는 종핵(綜核)이 여유가 있고, 교하 군수(交河郡守) 홍중주(洪重疇)는 치성(治聲)이 있다.' 고 상주(上奏)하였다. **또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언상(李彦祥)이 이끌고 온 군관(軍官)들이 양식을 지급하지 않아서 촌려(村閭)에서 걸식(乞食)한 상황을 아뢰니**, 임금이 다만 이언상을 잡아다 문초할 것을 명하였다.

○上留齋殿, 凡五日. 啓陵時儀節, 事無大小, 靡不親撿, 情文備至, 哀慕靡極, 至於軫恤民瘼, 德意藹然, 群臣觀者, 莫不感動. 及辛亥, 上辭殯殿, 駕還高陽, 遣副修撰黃晸, 廉察沿路民弊. 以歸路欲謁私親墓, 而體平日小心之意, 未果行也, 遣宦官, 替伸追慕之懷, 駐駕含涕者久之. 召見京畿監司鄭亨益等, 以特恩, 命減畿民大同身布應納者三分一, 饋粥于隨駕軍兵之暴露沾濕者, 新陵治道之割入民田者, 命地部, 給其直. 翌日壬子, 還宮. 京畿御史黃晸復命, 以坡州牧

使李浤之稍欠威猛, 高陽郡守洪晋猷之綜核有餘, 交河郡守洪重疇之有治聲, 仰奏. 又奏南陽府使李彦祥之領來軍官, 不給糧, 乞食村閭之狀, 上只命拿問彦祥.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1731) 8월 19일(기유) 3번째기사>

정치/왕실

소대를 행하다. 『대학연의』를 강하면서 예악을 논하다

소대를 행하였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가의(賈誼)는 의지가 경예(輕銳)하고 재주가 소략(疎略)하여 동중서(董仲舒)가 삼대(三代)의 기상을 지닌 것만 못하다." 하자, 검토관 이성효(李性孝)가 아뢰기를,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가의와 동중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세상에는 독서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 있다 하더라도 문득 이학(理學)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찌 이학을 일컬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예악(禮樂)은 사람의 한 몸에 근본하는 것으로서, 종고(鍾鼓)와 옥백(玉帛)은 곧 그 의절(儀節)인 것이다. 세종조[英廟朝]에 해주(海州)에서 거서(秬黍)가 나고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이 나와 성조(聖朝)의 명신(名臣)이 찬연하게 제작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 일찍이 음악이 없지 않았었다. 다만 지금은 성률(聲律)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곡조가 매우 번촉(煩促)해졌으니, 여민락(與民樂) 1장(章)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두 대궐에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오례의(五禮儀)』가 있지만, 누가 잘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다만 통례원(通禮院)의 관리가 억견(臆見)으로 그때그때 변통해 가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조정에 있는 선비들이 문호(門戶)를 분할하여 서로 다투며 다시는 서로 스승으로 본받는 화기(和氣)가 없으므로, 예악을 아는 선비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날마다 경연을 열어 유신과 친근하게 토론하는 즈음에 성학(聖學)이 특출하여 조언을 바라는 뜻이 애연(藹然)했으나 경연에 있는 신하들이 이를 받들어 담당해 계발(啓發)해 갈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甲申/行召對, 講『大學衍義』. 上曰: "賈誼志銳才踈, 終不如董仲舒有三代氣像也." 檢討官李性孝曰: "誠如聖敎. 賈·董尙矣, 今世絶無讀書者. 故或有之, 輒名之曰理學, 古豈有理學之稱乎?" 上曰: "禮樂本於一身, 鍾鼓·玉帛乃其儀節也. 英廟朝海州産秬黍, 南陽出磬石, 聖朝名臣制作粲然. 我國未嘗無樂, 而但今無解聲律者, 故曲調甚煩促. 『與民樂』一章, 昔則足以上下兩闕矣, 今也半不及焉. 以禮言之, 則我朝之有『五禮儀』, 孰有能知而行者乎? 只一通禮院吏, 以其臆見, 臨時處變, 寧不寒心? 在朝之士, 分門割戶, 戈戟相尋, 無復有師師之和氣, 故禮樂不出矣." 是時上日開經筵, 親近儒臣討論之際, 聖學卓越, 求助之意藹然, 而經筵之臣, 無足承當啓發, 識者恨之.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 10월 5일(갑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호조 판서 김상복이 왕세손의 옥대에 관하여 아뢰다

호조 판서 김상복(金相福)이 말하기를, "왕세손의 옥대(玉帶)는 검소함을 따라 수정(水晶)을 쓰는데 지금 재상가(宰相家)에서 수정으로 도서(圖署)를 만든 자가 많아 많이 얻지 못할 근심은 없으니 멀리 경주(慶州)에서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의 집 도서를 모두 빼앗아 쓰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정

대(正帶)는 금번 동지사(冬至使)가 마땅히 얻어오게 될 것이고 가례대(嘉禮帶)는 남양옥(南陽玉)을 쓰려고 하는데, 후일의 옥을 채취하는 폐단을 열어놓을까 두렵다. 대내에 옛날 보관한 것이 있으니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하였다. 임금이 왕세손 가례(嘉禮)의 일로 전지(傳旨)를 쓰라고 명하고, 그 끝에 말하기를, "육례(六禮)에 친림(親臨)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나 금년에는 정전(正殿)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헌함(軒檻)에 임하여 초례(醮禮)에 보내는 데에 이르러서는 정월에 있으니 내가 장차 친림(親臨)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초사(醮辭)에 '경(敬)으로써 삼가 거느리라.'고 되어 있는데 국례(國禮)에 '엄한 것으로써 삼가 거느리라.'는 것으로써 고쳤으니, 엄(嚴)자의 뜻이 실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戶曹判書金相福曰: "王世孫玉帶, 從儉用水晶, 而今宰相家, 以水晶作圖署者多, 不患不多得, 不必遠求慶州也." 上曰: "人家圖署盡奪, 而用之甚非宜. 正帶今冬至使當得來, 而嘉禮帶, 欲用南陽玉, 恐啓後日採玉之弊, 自內有所舊藏, 不必新造也." 上以王世孫嘉禮事, 命書傳旨, 其末端有曰: "六禮非不欲親臨, 而今年不欲御正殿. 至於臨軒醮送, 在於正月, 予將親臨." 又曰: "醮辭有勖率以敬, 而國禮改以勖率以嚴, 嚴字之義, 實有深意."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1761) 10월 25일(경인) 2번째기사>

정치/왕실

경기 암행어사 박제관이 전 남양부사 등에게 차등 있게 포상할 것을 건의하다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박제관(朴齊寬)을 소견(召見)하였다. 올린 서계(書啓)에, "개성부 전 유수(開城府前留守) 이승보(李承輔),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승로(李承老), 인천 부사(仁川府使) 조운섭(趙雲涉), 이천 부사(利川府使) 장익(張瀷), 가평 군수(加平郡守) 김진(金瑨), 파주 전 목사(坡州前牧使) 조희풍(趙羲豐), **남양 전 부사(南陽前府使) 정태호(鄭泰好)**, 통진 부사(通津府使) 신재지(愼哉芝), 지평 전 현감(砥平前縣監) 유치도(兪致道), 음죽 전 현감(陰竹前縣監) 김순근(金恂根), 영화 찰방(迎華察訪) 박연용(朴演鏞) 등에게는 죄를 주고, 양주 목사(楊州牧使) 임한수(林翰洙), 지평 현감(砥平縣監) 정기석(鄭箕錫)에게는 새서(璽書)와 표리(表裏)를 주며, 양근 전 군수(楊根前郡守) 박효헌(朴孝憲), 고양 전 군수(高陽前郡守) 민태호(閔台鎬),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익현(金翼鉉), 파주 목사 유환(柳晥), 교동 부사(喬桐府使) 이근영(李根永), 김포 군수(金浦郡守) 윤영하(尹永夏), 고양 전전 군수(高陽前前郡守) 고석현(高奭鉉) 등에게는 차등 있게 포상(褒賞)하소서." 하였다.

召見京畿暗行御史朴齊寬. 進書啓: "罪開城府前留守李承輔·安城郡守李承老·仁川府使趙雲涉·利川府使張瀷·加平郡守金瑨·坡州前牧使趙羲豐·南陽前府使鄭泰好·通津府使愼哉芝·砥平前縣監兪致道·陰竹前縣監金恂根·迎華察訪朴演鏞等. 楊州牧使林翰洙·砥平縣監鄭箕錫, 賜璽書·表裏. 楊根前郡守朴孝憲·高陽前郡守閔台鎬·驪州牧使金翼鉉·坡州牧使柳晥·喬桐府使李根永·金浦郡守尹永夏·高陽前前郡守高奭鉉等, 褒賞有差."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1867) 9월 17일(정묘) 2번째기사>

⑵ 행정

정치/행정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양광도·강릉 교주도·서해도를 개칭하다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左右道)로 고치자고 청하니, 장단(長湍)·파평(坡平)·현주(見州)·사천(沙川)·포주(抱州)·풍양(豊壤)·서원(瑞原)·행주(幸州)·심악(深岳)·한양(漢陽)·부원(富原)·과주(果州)·철원(鐵原)·영평(永平)·승령(僧嶺)·삭녕(朔寧)·적성(赤城)·임강(臨江)·마전(麻田)·송림(松林)·연주(漣州)·고봉(高峯)·교하(交河)·금주(衿州)·양천(陽川)·**남양**(**南陽**)·안산(安山)·인주(仁州)·토산(兎山)·안협(安峽)을 좌도에, 개성(開城)·강음(江陰)·해풍(海豊)·배주(白州)·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재령(載寧)·강화(江華)·진강(鎭江)·하음(河陰)·교동(喬桐)·서흥(瑞興)·우봉(牛峯)·신은(新恩)·협계(俠溪)·수안(遂安)·곡주(谷州)·부평(富平)·동성(童城)·통진(通津)·수안(守安)·김포(金浦)·덕수(德水)를 우도에 소속시키고서,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로, 강릉 교주도(江陵交州道)를 강원도로 고치고, 서해도(西海道)를 풍해도(豊海道)로 고치었다.

○辛卯/都評議使司請以京畿州縣殘盛廣狹, 改定左右道. 長湍·坡平·見州·沙川·抱州·豐壤·瑞原·幸州·深岳·漢陽·富原·果州·鐵原·永平·僧嶺·朔寧·赤城·臨江·麻田·松林·漣州·高峯·交河·衿州·陽川·**南陽**·安山·仁州·兎山·安峽屬左道, 開城·江陰·海豐·白州·延安府·平州·載寧·江華·鎭江·河陰·喬桐·瑞興·牛峯·新恩·俠溪·遂安·谷州·富平·童城·通津·守安·金浦·德水屬右道. 改楊廣道爲忠淸道, 江陵·交州道爲江原道, 西海道爲豐海道.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3일(신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종무 등을 조전 절제사에 임명하다.

면성군(沔城君) 한규(韓珪)로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동서강(東西江) 등처의 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를 삼고,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으로 부평(富平)·안산(安山) 등처 조전 절제사를,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로 남양(南陽)·수원(水原) 등처 조전 절제사를**, 마성군(麻城君) 서익(徐益)으로 풍해도 조전 절제사(豐海道助戰節制使)를, 상호군(上護軍) 곽승우(郭承祐)로 풍해도 조전 첨절제사(助戰僉節制使)를 삼았다.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가 잘못 보고하기를 왜선(倭船) 14척이 도내(道內)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형적이 나타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 변보(邊報)가 다시 이르렀는데, 풍해도에 형적이 나타난 선척(船隻)은 왜구(倭寇)가 아니고 본국(本國)의 선척(船隻)이 표류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조연과 서익 등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戊辰/以沔城君韓珪爲開城留後司東·西江等處助戰節制使, 漢平君趙涓爲富平·安山等處助戰節制使, 長川君李從茂**南陽**·水原等處助戰節制使, 麻城君徐益豐海道助戰節制使, 上護軍郭承祐豐海道助戰僉節制使. 以豐海道都觀察使錯報倭船十四隻, 至道內, 海中形見也. 旣而, 邊報再至, 豐海道形見船隻, 非倭寇, 乃本國船隻漂散者, 乃命趙涓·徐益等還.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0일(무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손실이 맞지 않아 남양 부사 박기 등을 파직시키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기(朴耆) · 수원 부사(水原府使) 허반석(許盤石)을 파직하였다. 경차관(敬差官)이 손(損) · 실(實)이 맞지 않는다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선공감정(繕工監正) 유순도(庾順道)가 지안성군사(知安城郡事)로 있을 때에 또한 손 · 실이 맞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파직하였다.

○罷**南陽府使**朴耆 · 水原府使許盤石職, 以敬差官啓損實不中也. 繕工監正庾順道爲知安城郡事時, 亦不中損實, 故併罷之.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9일(경인) 4번째기사>

정치/행정

상왕이 안변 도호부사 이중배와 남양 부사 김맹성의 자리를 바꾸게 하다

상왕이 안변 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 이중배(李仲培)가, 노모(老母)가 있어 멀리 떠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남양 부사(南陽府使) 김맹성(金孟誠)과 더불어 자리를 바꾸게 하였다.**

○上王以安邊都護府使李仲培有老母, 與**南陽府使**金孟誠換差.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11일(을묘) 2번째기사>

정치/행정

유현을 판남양도회부사로 삼았다.

(…) **유현(兪顯)으로 판남양도회부사(判南陽都會府事)를 삼았다.** 이보다 먼저 박은이 병이 위중하니, 두 임금께서 김익정(金益精)을 보내어 이원에게 묻기를, "좌의정이 병이 위중하니, 누가 이를 대신 할 만한가." 라고 하니, 이원이 찬성 조연을 천거하였다. (…)

○(…) 兪顯判**南陽**都會府事. 先是, 朴訔病篤, 兩上遣金益精, 問於李原曰: "左議政疾篤, 誰可以代之?" 原薦贊成趙涓, (…)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7일(병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유현으로 판남양도호부사를 삼다

유현(兪顯)으로 판남양도호부사(判南陽都護府事)를 삼았다.

○以兪顯判**南陽**都護府事.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9일(경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의 경석을 얻은 전 식의 서하와 학생 이호에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다

전 식의(食醫) 서하(徐賀)와 학생(學生) 이호(李皓)에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였으니, 그들은 **남양**(**南陽**)의 경석(磬石)을 얻었기 때문에 상준 것이었다.

○命授前食醫徐賀 · 學生李皓職, 賞其得**南陽**磬石也.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7월 27일(계축) 3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도호부사 장수 등이 하직을 고하다

제주 목사 김인(金裀) · **남양 도호부사 장수(張脩) ·** 박천 군사(博川郡事) 신홍생(辛鴻生) ·

순천 군사 김자귀(金自龜)·화순 현감 정극종(鄭克從) 등이 하직을 고하니, 불러들여 보고 수·홍생·자귀 등에게 이르기를, "경기·평안 두 도는 근래에 사신을 접대하는 일로 심히 피폐(疲弊)하였으니 가서 그들을 위안하라."
하고, 인에게 이르기를, "제주는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도와 같지 아니하니, 가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하라."하고, 극종에게 이르기를, "전라도는 근래에 풍년이 들어 다른 도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모두 와서 얻어 먹으니, 가서 구휼하기에 부지런히 하라."하였다.
○濟州牧使金裕·南陽都護府使張脩·博川郡事辛鴻生·順川郡事金自龜·和順縣監鄭克從等辭, 引見, 謂脩·鴻生·自龜等曰: "京畿·平安兩道, 近因支待使臣, 民甚疲弊, 其往撫之." 謂裕曰: "濟州僻在海外, 不與他道同, 往勤乃職." 謂克從曰: "全羅道近來豐稔, 他道流移之民, 率皆就食, 往勤撫綏."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10일(임인) 4번째기사>

정치/행정

예조에서 악·해·독·산천의 단묘와 신패의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여러 도의 순심 별감(巡審別監)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악(嶽)·해(海)·독(瀆)·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패(神牌)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경기. 나라에서 행하는 임진현의 덕진(德津)은 중사(中祀)이고, 단의 위판(位版)은 덕진지신(德津之神)이라고 쓰며, 위의 위판을 간직하여 두는 실(室)은 교지에 의하여, 단유(壇壝)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조성하되, 신주(神廚)·고방(庫房)·재실(齋室)을 아울러 조성할 것. 마전현(麻田縣)의 고려 시조 이하 4위는 중사이고, 사우(祠宇)는, 태조 신성 대왕(太祖神聖大王)은 남향이며, 현종 원문 대왕(顯宗元文大王)은 동쪽에 있고, 문종 대왕은 서쪽에 있으며, 충경왕(忠敬王)은 동쪽에 있고, 면장(面帳)과 좌자함(座子函)의 칠은 그 도로 하여금 개조할 것. 임강현(臨江縣)의 오관산(五冠山)은 소사(小祀)이고, 단의 위판은 오관산지신(五冠山之神)이라 쓰며, 적성현(積城縣)의 감악산(紺嶽山)은 소사이고, 사묘(祠廟)의 위판은 감악산지신(紺嶽山之神)이라 쓰며, 양주부(楊州府)의 양진(楊津)은 소사이고, 단의 위판은 양진지신(楊津之神)이라 써서, 소재관(所在官)이 제사지내게 할 것. 해풍군(海豐郡)의 백마산(白馬山)은 단의 위판에 백마 호국지신(白馬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임강현의 용호산(龍虎山)은 사묘에 위판이 없고, 다만 쇠로 부어 만든 승상(僧像)만이 있는데, 다른 예에 의하여 위판을 배설(排設)할 것. 인천군의 자연도(紫燕島)·수심도(水深島)·용류도(龍流島)·고도(孤島), 【이상은 같은 군(郡)의 땅이다.】 송가도(松家島)·장봉도(長峰島)·검대도(黔對島), 【이상은 강화의 땅이다.】 **소홀도(召忽島)·영흥도(靈興島)·독우도(犢牛島), 【이상은 남양의 땅이다.】** 용매도(龍媒島), 【연안의 땅이다.】 구음도(苟陰島)·어울도(馭鬱島)·미정도(彌正島)·마전도(麻田島)·구상도(構桑島)·대인도(大忍島), 【이상은 여러 도에 있는 것으로서 소재처를 알 수 없다.】 상항의 여러 섬들은 원도(猿島)의 단에서 이끌어 청하여 치제(致祭)하였는데, 위의 여러 섬에 있는 것으로서 타관에 있는 것은 각각 소재관에 보내어 사전에 고쳐 기록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섬은 도태(淘汰)하여 버릴 것. 강화부의 마리산(摩利山)은 단의 위판에 마리산 산천지신(摩利山山川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산천' 두 글자는 삭제할 것. 가평현(加平縣)의 화악산(華岳山)은 단이 현내(縣內)의 평지에 있어, 이끌어 청하여 제사지내고 있고, 위판은 화악 호국지신(華岳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산기슭에 단을 설치하고, 또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禮曹據諸道巡審別監啓本, 詳定嶽·海·瀆·山川壇廟及神牌制度: 京畿: 國行: 臨津縣德津, 中祀, 壇位版, 書德津之神. 右位版藏室, 則依敎壇壝內近北, 隨地之宜, 幷神廚庫房·齋室造成. 麻田縣高麗始祖以下四位, 中祀, 祠宇, 太祖神聖大王, 南向, 顯宗元文大王在東, 文宗大王在西, 忠敬王在東. 面帳·座子函漆, 令其道改造. 臨江縣五冠山, 小祀, 壇位版, 書五冠山之神. 積城縣紺嶽山, 小祀, 祠廟位版, 書紺嶽山之神. 楊州府楊津, 小祀, 壇位版, 書楊津之神, 所在官行祭. 海豐郡白馬山壇位版, 書白馬護國之神, 請削護國二字. 臨江縣龍虎山祠廟無位版, 只有鑄鐵僧像, 依他排設位版. 仁川郡紫燕島·水深島·龍流島·孤島·【已上, 同郡地】松家島·長峯島·黔對島·【已上, 江華地】召忽島·靈興島·犢牛島·【已上, 南陽地】龍媒島·【延安地】苟陰島·馭鸞島·彌正島·麻田島·構桑島·大忍島【已上諸道, 不知所在處】 上項諸島, 於猿島壇, 引請致祭. 右諸島之在於他官者, 各送所在官祀典改錄, 汰其不知所在之島. 江華府摩利山壇位版, 書摩利山山川之神, 請削山川二字. 加平縣華岳山壇在縣內平地, 引請行祭, 位版書華嶽護國之神, 請於山麓設壇, 且削護國二字.(…)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3일(계묘) 2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종서의 형 김종흥을 남양 도호부사로 옮기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가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부치기를,
“이미 장성한 자식이 없고, 아내가 또 본래 질병이 있어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고, 또 어린 자식이 많아서 형(兄) 종흥(宗興)이 실상 신의 가사(家事)를 보살펴 주고 있는데, 지금 황주 목사(黃州牧使)를 제수하였으니 마음에 실로 근심스럽습니다. 서울 근처의 수령으로 바꾸어 제수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므로, 명하여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로 옮겼다.
○咸吉道都節度使金宗瑞以書寄承政院曰:旣無壯子, 妻又素纏疾病, 未知死生, 且多有弱息. 兄宗興實幹臣之家事, 今拜黃州牧使, 心實悶焉, 乞於京都隣近守令換授.命移南陽都護府使.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7월 21일(정묘) 3번째기사>

정치/행정
노호가 미곡 2천여석을 포흠하고도 남양부사가 되다
남지(南智)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겸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김효성(金孝誠)으로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안지(安止)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조부(趙傅)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이화(李樺)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조극관(趙克寬)과 이인화(李仁和)로 아울러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곽운(郭暉)으로 행 첨지돈녕부사(行僉知敦寧府事)를, 박중림(朴仲林)으로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조수산(趙壽山)과 김흔지(金佷之)·유응부(兪應孚)로 아울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노호(盧皓)로 수 사헌 집의(守司憲執義)를, 김순(金淳)으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조혜(趙惠)로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겸 판광주목사(判廣州牧事)를, 권극화(權克和)로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 겸 판청주목사(判淸州牧事)를, 민공(閔恭)으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겸 상주 목사(尙州牧使)를, 신자근(申自謹)으로 황해도 도관찰사(黃海道都觀察使) 겸 판해주목사(判海州牧事)를, 신기(愼幾)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겸 원주 목사(原州牧使)를, 한확(韓確)으로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성승(成勝)으로 경상도(慶尙道) 우도 처치사(右道處置使)를 삼았는데, 감사(監司)가 목사(牧使)

를 겸하고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절제사(節制使)를 겸하는 것이 이때에 시작되었다. **노호(盧皓)가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어 국고(國庫)의 미곡 2천여 석을 포흠(逋欠)내고도**, 권귀(權貴)한 사람을 잘 섬기어 집의(執義)로 발탁 제수되니, 이때의 의논이 이를 더럽게 여기었다.

○乙酉朔/以南智判中樞院事·兼判兵曹事, 金孝誠爲工曹判書, 安止藝文館大提學, 趙傅同知敦寧府事, 李樺同知中樞院事, 趙克寬·李仁和竝中樞院副使, 郭恂行僉知敦寧府事, 朴仲林工曹參議, 趙壽山·金侃之·兪應孚竝僉知中樞院事, 盧皓守司憲執義, 金淳守司憲掌令, 趙惠京畿都觀察使·兼判廣州牧事, 權克和忠淸道都觀察使·兼判淸州牧事, 閔恭慶尙道觀察使·兼尙州牧使, 申自謹黃海道都觀察使·兼判海州牧事, 愼幾江原道觀察使·兼原州牧使, 韓確平安道都觀察使·兼兵馬都制節使, 成勝慶尙道右道處置使. 監司兼牧, 平安監司兼節制使始此. 盧皓爲**南陽府使**, 欠國庫米穀二千餘石, 又善事權貴, 擢拜執義, 時論鄙之.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1일(을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 경기(京畿)

(…) 경기(京畿)를 갈라 좌·우도(左右道)로 하여,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현을 좌도(左道)로,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을 우도(右道)로 하고, 또 경기(京畿)를 더 넓혀서 양광도(楊廣道)의 한양(漢陽)·**남양부(南陽府)**·인주(仁州)·안산군(安山郡)·교하(交河)·양천(陽川)·금천(衿川)·과주(果州)·포주(抱州)·서원(瑞原)·고봉현(高峯縣)과 교주도(交州道)의 철원부(鐵原府)·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으로써 좌도(左道)에 붙이고, 양광도의 부평(富平)·강화부(江華府)·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현(通津縣)과 서해도(西海道)의 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배주(白州)·곡주(谷州)·수안군(遂安郡)·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현(俠溪縣)으로써 우도(右道)에 붙이고, 각기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두고 수령관(首領官)으로써 돕게 하다가, (…) **좌도 수군 첨절제사영(左道水軍僉節制使營)은 남양부(南陽府) 서쪽 화지량(花之梁)에 있고,**【항상 중대선(中大船) 3척과 쾌선(快船) 10척, 무군선(無軍船) 13척을 거느리고 강화(江華)를 수어(守禦)하는데, 장번 수군(長番水軍)이 69명이요, 각관(各官)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1천 5백 97명이다. 대개 배 1척에 각기 땔나무와 물을 실어 나르는 삼판소선(三板小船)이 있으며, 그 무군선은 만일 경급(警急)한 일이 있으면 영선군(領船軍)을 모두 징발하여 태우는 것이니, 뒤의 것도 모두 이와 같다.】**영종포 만호(永宗浦萬戶)는 남양부(南陽府)의 서쪽에 있고,**【중대선(中大船) 3척, 맹선(孟船) 1척, 무군선(無軍船) 3척이요, 각관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5백 10명이다.】초지량 만호(草芝梁萬戶)는 안산(安山) 서남쪽 모래곶이[沙串]에 있고,【중대선 5척, 무군선 4척이요, 장번 수군(長番水軍)이 8명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6백 15명이다.】제물량 만호(濟物梁萬戶)는 인천군(仁川郡) 서쪽 성창포(城倉浦)에 있다.【병선(兵船) 4척, 무군선 4척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5백 10명이다.】 (…)

◈ 京畿: 都觀察黜陟使一人, 首領官一人, 醫學敎諭檢律各一人. 【他道放此】 本高句麗之地, 高麗成宗十四年乙未,【卽宋太宗至道元年】 陞開州爲開城府, 管赤縣六, 畿縣七. 【古史但錄縣數, 不列縣名, 其詳不可得考】 顯宗九年戊午,【卽宋眞宗大中祥符十一年】 罷開城府, 以開城縣令管貞州·德水·江陰三縣, 長湍縣令管松林·臨津·免山·臨江·積城·坡平·麻田七縣, 直隸尙書都省, 謂之京畿. 文宗十六年壬寅,【卽宋仁宗嘉祐七年】 復陞開城縣爲府, 都省

所掌十一縣，皆屬焉，又割西海道平州任內牛峯郡以(肄)〔隸〕之．其後復置開城縣，令屬開城府．【年代未詳】恭讓王二年庚午，【卽大明　　太祖高皇帝洪武二十三年】 始分京畿爲左右道，以長湍·臨江·免山·臨津·松林·麻田·積城·坡平縣爲左道，開城·江陰·海豐·德水·牛峯爲右道．又增廣京畿，以楊廣道　漢陽·南陽府·仁州·安山郡·交河·陽川·衿川·果州·抱州·瑞原·高峯縣，交州道鐵原府·永平·伊川·安峽·漣州·朔寧縣屬左道；以楊廣道　富平·江華府·喬桐·金浦·通津縣，西海道延安府·平州·白州·谷州·遂安郡·載寧·瑞興·新恩·俠溪縣屬右道；各置都觀察黜陟使，以首領官佐之．(…) 左道水軍僉節制使營，在南陽府西花之梁．【常領中大船三隻·快船十隻·無軍船十三隻，守禦江華．長番水軍六十九名，各官左右領船軍摠一千五百九十七名．凡船一隻，各有柴水三板小船，其無軍船，如有警急，欲悉發下領船軍乘駕也．後皆倣此】永宗浦萬戶，泊南陽府西．【中大船三隻，孟船一隻，無軍船三隻．各官左右領船軍，摠五百十名】草芝梁萬戶，泊安山西南沙串．【中大船五隻，無軍船四隻，長番水軍八名．各官左右領船軍，摠六百十五名】濟物梁萬戶，泊仁川郡西城倉浦．【兵船四隻，無軍船四隻．各官左右領船軍，摠五百十名】(…)
<지리지 / 경기>

정치/행정
⊙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한(韓)·조(趙)·민(閔)·신(申)이요, 내성(來姓)이 5이니, 함(咸)【양근(楊根)에서 왔다】·박(朴)【춘천(春川)에서 왔다】·홍(洪)【남양(南陽)에서 왔다】·최(崔)【수원(水原)에서 왔다】·부(夫)【과천(果川)에서 왔다】요, 망성(亡姓)이 2이니, 정(鄭)·예(艾)이다. 견주(見州)의 토성(土姓)이 7이니, 이(李)·김(金)·송(宋)·신(申)·백(白)·윤(尹)·피(皮)요, 사천현(沙川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경(耿)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임(任)·송(宋)·허(許)이다. 풍양현(豐壤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조(趙)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강(姜)·윤(尹)·유(劉)이다. 인물(人物)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한산군(漢山君) 충정공(忠靖公) 조인옥(趙仁沃)이다. 【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태조 묘정(太祖廟庭)에 배향되었다】 (…)
⊙ 楊州: (…) 本府土姓四, 韓·趙·閔·申. 來姓五, 咸【楊根來】 朴【春川來】·洪【南陽來】·崔　　【水原來】·夫.【果川來】 亡姓二, 鄭·艾. 見州土姓七, 李·金·宋·申·白·尹·皮. 沙川縣土姓一, 耿. 亡姓四, 李·任·宋·許.豐壤縣土姓一, 趙. 亡姓四, 李·姜·尹·劉. 人物, 中樞院使漢山君忠靖公趙仁沃.【以本朝開國功臣, 配享太祖廟庭】 (…)
<지리지 / 경기 / 양주 도호부>

정치/행정
⊙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
(…) 읍토성(邑土城)【둘레가 2백 70보(步)요, 안에 우물 2개가 있다】역(驛)이 2이니, 장족(長足)·동화(同化)요, 목장이 2이니, 양야곶이[陽也串]와【부(府) 서쪽 30리에 있다. 토장(土場)의 둘레가 15리인데, 나라의 말 75필을 놓아 먹인다】홍원곶이[洪原串]이며,【용성현(龍城縣) 서쪽에 있는데, 소를 놓아 먹인다】봉화가 1곳이니, 흥천산(興天山)이다.【부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양성(陽城) 홰대기곶이[槐台吉串]에 응하고, 서쪽으로 남양(南陽)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

관할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남양(南陽)**이요, 군(郡)이 2이니, 안산(安山)과 안성(安城)이며, 현(縣)이 4이니, 진위(振威)·용인(龍仁)·양성(陽城)·양지(陽智)이다.

⊙ 水原: (…) 邑土城. 【周回二百七十步, 內有井二】 驛二, 長足·同化. 牧場二, **陽也串** 【在府西三十里, 土場周回十五里, 放國馬七十五匹】洪原串. 【在龍城縣西, 放牛】 烽火一處, 興天山. 【在府西, 南準陽城槐台吉串, 西準**南陽**念佛山】 所領都護府一, **南陽**; 郡二安山·安城; 縣四, 振威·龍仁·陽城·陽智.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정치/행정

◎ 남양 도호부(南陽都護府)

본래 고구려의 당성현(唐城縣)인데, 신라가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옛이름[唐城]으로 복구하여, 현종(顯宗) 무오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뒤에 인주(仁州)에 옮겨 붙였으며, 명종(明宗) 2년 임진에【곧 송나라 효종(孝宗) 건도(乾道) 8년】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렬왕(忠烈王) 16년 경인에 고을 사람 홍다구(洪茶丘)가 원나라에 벼슬하여 정동행성 우승(征東行省右丞)이 되었으므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되고, 뒤에 또 강녕 도호부(江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34년 무신에 또 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충선왕 2년 경술에 모든 목(牧)을 없앰에 따라 **남양부(南陽府)**로 강등되어,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1이니, 재양(載陽)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수원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화지량(花之梁)에 이르기 30리, 남쪽으로 수원(水原) 임내(任內) 쌍부(雙阜)에 이르기 20리, 북쪽으로 안산(安山)에 이르기 10리이다.

호수(戶數)가 4백 87호, 인구가 7백 78명이요,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2명, 선군(船軍)이 1백 45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6이니, 홍(洪)·송(宋)·방(房)·박(朴)·최(崔)·서(徐)요, 망성(亡姓)이 1이니, 오(吳)이다. 재양(載陽)의 토성이 4이니, 손(孫)·윤(尹)·신(辛)·우(祐)요, 내성(來姓)이 1이니, 서(徐)이며,【안산(安山)에서 왔다】속성(續姓)이 1이니, 전(田)이다. 인물(人物)은 첨의중찬(僉議中贊) 경흥군(慶興君) 충정공(忠正公) 홍자번(洪子藩)·첨의중찬 광정공(匡定公) 홍문계(洪文系)【모두 충렬왕(忠烈王) 때 사람이다】·첨의정승(僉議政丞) **남양후(南陽侯) 문정공(文正公) 홍언박(洪彦博)**이다.【공민왕(恭愍王) 때 사람이다. 당(唐)에서 재주 있는 젊은이 8인을 보내어 고려에 가서 가르치게 하였는데, 홍(洪)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자손이 대대로 삼한(三韓)에서 귀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사는 곳을 당성(唐城)이라 하였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되며, 바다가 가까와서 기후[風氣]가 일찍 더워지고, 간전(墾田)이 4천 3백 48결(結)이다.【논이 8분의 3이다】토의(土宜)는 오곡(五穀)과 조·수수·팥·참깨·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지초이며, 약재(藥材)는 사자발쑥【가장 좋은 것이다】·백부자(白附子)·연밥이요, 염소(鹽所)가 44이다. 경석(磬石)이 부(府) 동쪽 사나사(舍郡寺[舍那寺])의 서쪽 산에서 난다.【빛이 푸르고 흰 것이 섞이고 문채가 있다. 금상(今上) 9년 정미에 캐서 경쇠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음률에 맞았다】어량(魚梁)이 2이다.【주로 민어·송어가 나고, 또 숭어·상어·참치·가물치[加大魚]·조기[石首魚]·큰새우·중새우·곤쟁이[紫蝦]·모시조개[黃蛤]·대합조개[生蛤]·미네굴[土花]·굴[石花]·

낙지(落地)가 난다】
역(驛)이 1이니, 해문(海門)이요, 관방(關防)이 2이니, 영종포(永宗浦)와【부 남쪽에 있으니,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한다】 화지량(花之梁)이며,【부 서쪽에 있으니, 우도 수군 첨절제사(右道水軍僉節制使)가 수어한다】봉화(烽火)가 2곳이니, 염불산(念佛山)과【부 서쪽에 있다. 동쪽으로 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본부(本府) 해운산(海雲山)에 응한다】해운산(海雲山)이다.【부 북쪽에 있다. 안산(安山) 무고리(無古里)에 응한다】선감미도(仙甘彌島)【화지량(花之梁) 서쪽 수로(水路) 2리에 있으니, 둘레가 5리이며, 소를 놓아 먹인다】대부도(大部島)【화지량 서쪽 2리에 있다. 길이 30리요, 너비가 15리이니, 좌도 선군영(左道船軍營) 밭이 1백여 결(結)이 있으며, 나라의 말 4백 18필을 놓아 먹이는데, 염부(鹽夫) 4호가 살면서 돌보게 한다】소우도(小牛島)【대부도 서쪽 5리에 있으니, 둘레 15리이며, 염부(鹽夫) 2호가 있다】영흥도(靈興島)【소우도 서쪽 7리에 있다. 길이 25리, 너비 15리이며, 염부(鹽夫) 5호가 있다】소홀도(召忽島)【영흥도 서쪽 30리에 있다. 예전에는 소물도(召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20리이나, 밭이나 사는 사람이 없다】덕적도(德積島)【소홀도 남쪽 60리에 있다. 예전에는 인물도(仁物島)라 하였으며, 둘레가 15리인데, 나라의 말 2백 57필을 놓아 먹인다】우음도(亏音島)【부 북쪽 수로(水路) 2리에 있다. 둘레 13리이며, 밭 5결이 있는데, 부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농사를 짓는다】새곶이[土也串]【나라의 말을 놓아 먹인다】

◎ **南陽**: 都護府, 本高句麗唐城縣, 新羅改爲唐恩郡, 高麗復古名. 顯宗戊午, 屬水州任內, 後移屬仁州. 明宗二年壬辰,【卽宋孝宗乾道八年】 始置監務. 忠烈王十六年庚寅, 以縣人洪茶丘任元爲征東行省右丞, 陞爲知益州事, 後又陞爲江寧都護府, 三十四年戊申, 又陞爲益州牧. 忠宣王二年庚戌, 汰諸牧, 降爲**南陽府**,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都護府, 屬縣一, 載陽. 四境, 東距水原十五里, 西距花之梁三十里, 南距水原任內雙阜二十里, 北距安山十里. 戶四百八十七, 口七百七十八. 軍丁, 侍衛軍二, 船軍一百四十五. 本府土姓六, 洪·宋·房·朴·崔·徐; 亡姓一, 吳. 載陽土姓四, 孫·尹·辛·祐; 來姓一, 徐; 【安山來】 續姓一, 田. 人物, 僉議中贊慶興君忠正公 洪子蕃·僉議中贊匡定公洪文系·【皆忠烈王時人】 僉議政丞南陽侯文正公洪彦博. 【恭愍王時人, 唐遣才子八人, 往敎高麗, 洪其一也. 子孫世貴於三韓, 名所居曰唐城】 厥土肥堉相半, 近海風氣早暖, 墾田四千三百四十八結. 【水田居八分之三】 土宜五穀, 粟·唐黍·小豆·芝麻·桑·麻. 土貢, 芝草. 藥材, 獅子足艾·【最良】 白附子·蓮子. 鹽所四十四. 磬石産府東舍郡寺[舍那寺]西山. 【色雜, 靑白有文彩. 今上九年丁未, 採之, 作磬, 聲中音律】 魚梁二, 【主産民魚·蘇魚. 又産首魚·沙魚·眞魚·加大魚·石首魚·大蝦·中蝦·紫蝦·黃蛤·生蛤·土花·石花·落地】 驛一, 海門. 關防二, 永宗浦·【在府南, 水軍萬戶守禦】 花之梁. 【在府西, 右道水軍僉節制使守禦】 烽火二處, 念佛山·【在府西, 東準水原興天山, 北準本府海雲山】海雲山. 【在府北, 北準安山無古里】仙甘彌島·【在花之梁西, 水路二里, 周回五里, 牛隻入放】大部島·【在花之島西二里, 長三十里, 廣十五里. 有左道船軍營田百餘結, 放國馬四百十八匹, 鹽夫四戶入居看養】 小牛島·【在大部島西五里, 周回十五里, 有鹽夫二戶】靈興島·【在小牛島西七里, 長二十五里, 廣十五里. 有鹽夫五戶】召忽島【在靈興島西三十里, 古稱召物島, 周回二十里, 無田地居人】德積島·【在召忽島南六十里, 古稱仁物島, 周回十五里, 放國馬二百五十七匹】亏音島·【在府北水路三里, 周回十三里. 有旱田五結, 府人來往耕穫】土也串. 【國馬入放】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남양 도호부>

정치/행정

◎ 안산군(安山郡)

(…) 역(驛)이 1이니, 석곡(石谷)이요, 관방(關防)이 1이니, 사곶이[沙串]이며, 【군(郡) 서남쪽 30리에 있으니, 일명(一名) 초지(草芝)라고도 하며,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한다】 봉화가 2곳이니, 옷애[吾叱哀]와 【군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무응고리(無應古里)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仁川) 성산(城山)에 응한다】 무응고리(無應古里)이다. 【군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남양(南陽) 해운산(海雲山)에 응한다】

◎ 安山郡: (…) 驛一, 石谷. 關防一, 沙串. 【在郡西南三十里, 一名草芝, 有水軍萬戶守禦】 烽火二處, 吾叱哀 · 【在郡西, 南準無應古里, 北準仁川城山】 無應古里. 【在郡西, 南準南陽海雲山】

<지리지 / 경기 / 수원 도호부 / 안산군>

정치/행정

◎ 인천군(仁川郡)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현(買召忽縣)인데, 【또는 미추홀(彌趨忽), 또는 경원매소(慶原買召)라 한다】 신라에서 소성(邵城)으로 고쳐서 율진군(栗津郡)5010) 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현종(顯宗) 무오에 수주(樹州)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 황비(皇妣) 인예 왕후(仁睿王后) 이씨(李氏)의 내향(內鄕)이라 하여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하였고, 인종(仁宗) 때 황비(皇妣) 순덕 왕후(順德王后) 이씨(李氏)의 내향(內鄕)으로써 지인주사(知仁州事)로 승격하였다가, 공양왕(恭讓王) 3년 신미에 경원부(慶源府)로 승격하였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원년 임신에 옛이름 인주(仁州)로 복구하였다가, 태종(太宗)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인천군(仁川郡)으로 고쳤다.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주몽(朱蒙)의 두 아들, 큰 아들 비류(沸流)와 둘째 아들 온조(溫祚)가 북부여(北扶餘)로부터 10인의 신하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많이 좇았다. 드디어 한산(漢山) 부아악(負兒岳)에 올라가서 살 만한 땅을 바라보매, 비류가 바닷가에 살기를 원하니, 열 신하가 간(諫)하기를, '오직 이 한남(漢南)의 땅이 북쪽으로 한수(漢水)를 띠고, 동쪽으로 높은 산악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기름진 땅이 열리고, 서쪽으로 큰 바다가 막혀서, 천험(天險)의 지리(地理)로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비류가 듣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갈라 가지고 미추홀로 돌아가고, 온조는 열 신하를 거느리고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였다. 오랜 만에 비류가,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히 살지 못하고 돌아와서, 위례성의 도읍이 안정되고 인민들이 안락한 것을 보고, 마침내 부끄러워서 죽으니, 그 신하와 백성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하였다】 부곡(部曲)이 1이니, 이포(梨浦)이다. 【안산(安山) 지경을 지나서 남양(南陽) 지경에 있는데, 오직 4호(戶)가 있다】 (…)

◎ 仁川郡: 本高句麗買召忽縣, 【一云彌趨忽, 一云慶原買召】 新羅改名邵城,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戊午, 屬樹州任內. 至肅宗時, 以皇妣仁睿王后李氏內鄕, 陞爲慶源郡. 仁宗時, 以皇妣順德王后李氏內鄕, 陞爲知仁州事. 恭讓王三年辛未, 陞爲慶源府, 本朝太祖元年壬申, 復舊號爲仁州, 太宗癸巳, 例改爲仁川郡. 【三國史云: "朱蒙二子長沸流, 次溫祚. 自北扶餘率十臣南行, 百姓多從之. 遂登漢山負兒岳,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海濱, 十臣諫曰: '唯北漢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嶽, 南望沃澤, 西阻大海, 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此,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趨忽; 溫祚率十臣都慰禮成. 久之, 沸流以彌趨忽土濕水鹹, 不得安居, 歸

見慰禮都邑晁定, 人民帖安, 遂慙愧而死. 其臣民, 皆歸於慰禮都】 部曲一, 梨浦.【越安山境在南陽界, 只有四戶】(…)
<지리지 / 경기 / 부평 도호부 / 인천군 >

정치/행정

⊙ 장흥 도호부(長興都護府)

(…) 토성(土姓)이 5이니, 조(曺)·오(吳)·혜(嵇)·임(任)·정(丁)이요, 내접성(來接姓)이 3이니, 이(李)【덕은(德恩)】·송(宋)【염주(鹽州)】·최(崔)【탐진(耽津)】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최(崔)이다.【화순(和順)에서 왔다】회령(會寧)의 성이 5이니 마(馬)·형(邢)·이(李)·주(周)·성(成)이요, 내접성(來接姓)이 1이니, 백(白)【직산(稷山)】이다. 장택(長澤)의 성이 4이니, 임(林)·고(高)·윤(尹)·오(吳)요, 내접성(來接姓)이 1이니, 선(宣)【보성(寶城)】이다. 수령(遂寧)의 성이 4이니, 위(魏)·박(朴)·조(曺)·함(咸)이요, 두원(荳原)의 성이 5이니, 오(吳)·허(許)·유(庾)·신(申)·종(鐘)이요, 내접성(來接姓)이 3이니, 노(盧)【서경(西京)】·박(朴)【보성】·**이(李)【남양(南陽)】**이다. 인물(人物)은 수 태사 중서령(守太師中書令) 문충공(文忠公) 임원후(任元厚)이다.(…)

⊙ 長興: (…) 土姓五, 曺·吳·嵇·任·丁; 來接姓三, 李·【德恩】宋·【鹽州】崔;【耽津】亡姓一, 崔.【和順來】會寧姓五, 馬·邢·李·周·成; 來接姓一, 白.【稷山】長澤姓四, 林·高·尹·吳; 來接姓一, 宣.【寶城】遂寧姓四, 魏·朴·曺·咸. 荳原姓五, 吳·許·庾·申·鍾; 來接姓三, 盧·【西京】朴·【寶城】李.【南陽】人物, 守太師中書令文忠公 任 元厚.(…)
<지리지 / 전라도 / 장흥 도호부>

정치/행정

경연에서 주·군의 합병에 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임금이 경연관(經筵官)에게 이르기를, "주·군(州郡)의 합병에 대하여 각기 그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성삼문(成三問)이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비록 창졸간에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작은 읍부터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였고, 시강관(侍講官) 송처관(宋處寬)은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사실상 소요(騷擾)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견아 상입(犬牙相入)한 곳을 분할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나,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지는 못할 것이니, 우선 작은 현(縣)을 합병하여 그 편리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저께는 모두 이르기를, 견아 상입(犬牙相入)한 곳을 크게 분할(分割)하여 바로잡는 것은 불가하다고들 하였는데, 광주(廣州)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멀리 남양(南陽)의 지경(地境)까지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를 잘라서 다른 고을에 주면, 해산물(海産物)을 얻기가 어려워서 안된다는 것이다." 하였다.

송처관이 아뢰기를, "그 진상(進上)하는 것이 해산물이면 옮겨 정하는 것도 가하며, 저들이 평상시에 사객(使客)의 지공(支供)은 본래 토산(土産)이 있고, 더욱이 산간 고을도 또한 많은데, 하필이면 해산물의 유무(有無)를 가지고 헤아리겠습니까?"

하고, 좌사간(左司諫) 신전(愼詮)·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는 아뢰기를, "인리(人吏)·관노비(官奴婢) 등이 새로이 옮겨서 실업(失業)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안중후가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여 정사를 보시는 처음에 소요가 있어서는 마땅히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집정(執政)하는 처음일수록 더욱 경장(更張)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의논이 분운(紛紜)하고 옛 그대로 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정지할 뿐이다.” 하였다.

○甲戌/御經筵, 上謂經筵官曰: “州郡合幷, 各言其志.” 參贊官成三問曰: “州郡合幷, 雖未卒行, 請自小邑試之.” 侍講官宋處寬曰: “州郡合幷, 實爲騷擾. 但犬牙相入, 不可不割正, 然未可一時竝擧, 姑合小縣, 以試便否.” 上曰: “昨日皆云犬牙不可大正, 以廣州言之, 其地遠入南陽之境, 若割而與他, 則海産難得, 未可也.” 處寬曰: “若進上海産, 則移定亦可, 彼常時使客支供, 自有土産, 況山郡亦多, 何必計海産有無?” 左司諫愼詮·持平安重厚曰: “人吏官奴婢等, 新徙失業, 不可不慮.” 重厚又曰: “殿下卽政之初, 不宜騷擾.” 上曰: “卽政之初, 尤當更張. 但議論紛紜, 請仍舊者多, 故停之耳.”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3일(갑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사간원이 남양부사 윤잠이 얼마 되지 않아 경직에 제수한 것을 비판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 권함(權琎)은 일주년(一周年)이 반도 되지 않았는데도 사사로운 일로써 서울에 올라오더니 즉시 경직(京職)에 제수(除授)되었으며,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잠(尹岑)은 제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경직(京職)으로 고쳐 제수되었습니다.** 무릇 외임(外任)으로 정사(呈辭)한 사람은 6년이 되도록 서용(敍用)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와 같으니, 일주년(一周年) 육기(六期)의 법이 아마 이로부터 무너질 듯합니다. 또 지금 새로 설치한 제도(諸道) 절제사(節制使)의 도사(都事)는, 근래에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잇달아 해마다 흉년이 들고, 경상도(慶尙道)가 더욱 심하므로 사자(使者)를 보내어 진휼(賑恤)해야 하는데, 만약 도사(都事)를 보내어 별도로 한 관원을 정한다면 지대(支待)와 공급(供給)에 아마 또 폐해가 발생할 듯하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서 보내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권함(權琎)의 아내는 나의 척속(戚屬)인데, 내가 그 병이 난 것을 들었고, 윤잠(尹岑)은 그 아우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이 병으로 고생하니, 이런 까닭으로 모두 경직을 제수했던 것이다. 지금 설치한 제도(諸道) 영진(營鎭)의 도사(都事)는 방진(方鎭)의 주수(主戍)로 하여금 체모(體貌)가 존엄(尊嚴)하게끔 한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어찌 올 가을을 기다리겠는가?” 하였다.

○甲子朔/司諫院啓曰: “黃海道都事權琎, 周年未半, 以私事上京, 旋除京職, 南陽府使尹岑, 除授未幾, 改除京職. 凡外任呈辭者, 有六年不敍之法, 今乃如此, 周年六期之法, 恐自此壞矣. 且今新設諸道節制使都事, 近因水旱相仍, 連年不登, 慶尙道尤甚, 遣使賑恤, 若都事別立一官, 則支待供給恐又生弊. 請待秋而遣.” 傳曰: “琎妻予之戚屬, 予聞其病, 岑其弟坡平君巖病苦, 以故皆除京職. 今設諸道營鎭都事, 欲令方鎭主戍, 體貌尊嚴耳, 不可廢也. 如不得已, 則何待來秋?”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일(갑자) 1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 도호부사로 가는 박이를 인견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어서 영응 대군(永

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조혜(趙惠)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 박이(朴离)가 하직하니,**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수령(守令)의 도리는 형벌(刑罰)을 신중히 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만약 죄가 있는 사람을 징벌(懲罰)하지 않는다면 일이 차차 해이(解弛)해짐이 많을 것이니, 용서하고 처벌하는 것을 모름지기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戊辰/御思政殿受常參, 視事. 仍召永膺大君琰·桂陽君璔·鈴川府院君尹師路·左議政姜孟卿·領中樞院事李季甸·判中樞院事趙惠設酌. **南陽都護府使**朴离辭, 引見曰: "守令之道, 不過愼刑罰而已. 若有罪者不懲, 則事多陵夷, 宥之罪之, 須愼用之."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7일(무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명나라 사신의 지대는 강옥과 김보의 예에 따르고 윤자운으로 주관케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지금 오는 명나라 사신의 지대(支待)는 한결같이 강옥(姜玉)과 김보(金輔)의 예(例)에 따라, 사섬시 정(司贍寺正) 최영린(崔永潾)과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 김신몽(金信蒙)·성균 사성(成均司成) 고태정(高台鼎)·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 이숙(李塾)·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노호신(盧好愼)·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임사홍(任士洪)**·전 남양 부사(南陽府使) 김적(金磧)**·호조 정랑(戶曹正郎) 김초(金軺)·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김춘경(金春卿)·전 호군(護軍) 신지(申沚)·전 천녕 현감(川寧縣監) 윤탄(尹坦)을 분예빈시(分禮賓寺)로 삼고 낭청(郎廳)을 가정(加定)하였으며, 또 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을 원접사(遠接使)로 삼고, 이윤인(李尹仁)을 도사 선위사(都司宣慰使)로 삼았으며, 또 선위사로 호조 참판(戶曹參判) 정난종(鄭蘭宗)을 의주(義州)에, 행 호군(行護軍) 이교연(李皎然)을 안주(安州)에, 좌참찬(左參贊) 유수(柳洙)를 평양(平壤)에, 공조 참판(工曹參判) 성윤문(成允文)을 황주(黃州)에,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을 개성부(開城府)에 보내고, 별도로 선위사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을 평안도에 보내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정효상(鄭孝常)을 개성부에 보내라."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윤자운이 근래에 자주 〈원접사로〉 왕래하여 또한 노고(勞苦)가 많았으나, 이런 대사(大事)는 윤자운이 아니면 불가하다." 하였다.

○傳于承政院曰: "今來明使支待, 一依姜玉·金輔例, 以司贍寺正崔永潾·禮賓寺副正金信蒙·成均司成高台鼎·通禮院相禮李塾·司宰監副正盧好愼·奉常寺僉正任士洪·前**南陽府使**金磧·戶曹正郎金軺·成均館直講金春卿·前護軍申沚·前川寧縣監尹坦爲分禮賓寺, 加定郎廳, 又以茂松君尹子雲爲遠接使, 李尹仁都司宣慰使, 又遣宣慰使戶曹參判鄭蘭宗于義州, 行護軍李皎然于安州, 左參贊柳洙于平壤, 工曹參判成允文于黃州, 左贊成金國光于開城府, 別遣宣慰使左承旨李克增于平安道, 同副承旨鄭孝常于開城府." 上曰: "子雲近來數數往來, 亦甚勞苦, 然此大事, 非子雲不可."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1일(병진) 5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도호부사 민효남 등 4인은 체임할 때 준직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수원 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김사원(金嗣源)·**남양도호부사**

(南陽都護府使) 민효남(閔孝男)·부평 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 김원윤(金元潤)·강화 도호부사(江華都護府使) 신윤종(申允宗)은 체임(遞任)할 때에 준직(准職)하고, 안산 군수(安山郡守) 홍긍(洪矜)·고양 군수(高陽郡守) 박숙무(朴叔楙)·양천 현령(陽川縣令) 박준(朴儁)·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인문(金仁門)·통진 현감(通津縣監) 안요경(安堯卿)·금천 현감(衿川縣監) 안근(安謹)·김포 현감(金浦縣監) 한숙륜(韓叔倫)·교동 현감(喬桐縣監) 김수(金洙)·교하 현감(交河縣監) 하맹순(河孟詢)은 체임할 때에 우등(優等)으로 옮기게 하라."

하였으니, 진휼사(賑恤使) 한명회(韓明澮)의 계달로써 이 명을 내린 것이다.

○傳旨吏曹曰: "水原都護府使金嗣源·南陽都護府使閔孝男·富平都護府使金元潤·江華都護府使申允宗, 遞任時準職, 安山郡守洪矜·高陽郡守朴叔楙·陽川縣令朴儁·果川縣監金仁門·通津縣監安堯卿·衿川縣監安謹·金浦縣監韓叔倫·喬桐縣監金洙·交河縣監河孟詢, 遞任時, 優等遷轉." 以賑恤使韓明澮之啓, 有是命.

<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26일(갑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조민이 사도시 정으로서 남양부사가 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연정렬은 당초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서 중(中)에 있었으므로 낮추어 별제(別提)를 제수하였었는데, 지금 부사(府使)로 올렸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군수는 종4품이고 별제는 6품이고 부사는 종3품이니, 가령 연정렬이 군수로 있을 때에 10고(十考)에 모두 상(上)을 받고 경관(京官)의 실직(實職)으로 구임(久任)하고서 개만(箇滿)하였다면 그 승천(陞遷)된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중(二中)이었으므로 견책하여 6품의 녹(祿)이 없는 관직에 제수하였는데, 겨우 20개월이 차자 3품의 관직에 뛰어올려 요행(僥倖)의 문이 크게 열렸으니, 권장하고 징계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연정렬이 자급(資級)이 적당하여 제수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신 등은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부사는 3품의 직질(職秩)이므로, 으레 3품의 벼슬을 지낸 자에게 제수하는 것입니다. **근일에 조민(趙岷)이 사도시 정(司導寺正)으로서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고,** 유양(柳壤)은 예빈시 정(禮賓寺正)으로서 담양 부사(潭陽府使)가 되었거니와, 별제로서 연정렬처럼 뛰어올려 제수된 자가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연정렬은 별로 현능(賢能)함도 없이 공신의 후예로서 서반(西班)의 음직(蔭職)에 보임(補任)되어, 처음에 찰방(察訪)이 되었다가 두 번째 옮겨서 군수가 되고 세 번째 옮겨서 부사가 되었으니, 비록 특은(特恩)으로 초탁(超擢)된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일은 없었습니다. 연정렬은 이조 참판(吏曹參判) 윤계겸(尹繼謙)의 이성(異姓) 사촌 누이[堂妹]의 남편입니다. 윤계겸으로 인연하여 차서를 넘어서 제수되었으므로 세론(世論)이 놀라와하니 빌건대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箚子, 略曰:延井冽, 初以沃川郡守居中, 降授別提, 而今陞府使. 臣等謂, 郡守從四品, 別提六品, 府使從三品也, 假使井冽爲郡守時, 十考皆上, 爲京官實職, 而久任箇滿, 其得陞遷宜矣. 今以二中, 責授六品無祿之官, 纔滿二十朔, 超陞三品職, 僥倖之門大開, 勸懲之意安在? 若以井冽資級相當, 而授之無妨, 則臣等尤知其不可也. 蓋府使三品秩也, 例以經三品職者授之. 近日趙岷以司(導)［導］寺正爲南陽府使, 柳壤以禮賓寺正爲潭陽府使, 未聞以別提超授如井冽者也. 且井冽別無賢能, 以功臣之裔, 補西班蔭職, 初爲察訪, 再遷郡守,

三轉爲府使, 雖特恩超擢者, 未有如此之亟. 井冽乃吏曹參判尹繼謙異姓堂妹之夫也. 夤緣繼謙, 越次而授, 物論駭愕, 乞命改正.不聽.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사예 최한량이 강등되어 남양교수에 서용되었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유조(兪慥)와 박처륜(朴處綸) 등은 일찍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서 모여서 술을 마셨으므로, 국법에는 마땅히 외방(外方)에 서용(敍用)될 것이지만 특별히 용서를 받아 서반(西班)에 서용(敍用)되었는데, 이번의 정사에 유조(兪慥)는 예조 정랑(禮曹正郞)에 임명되고, 박처륜(朴處綸)은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죄가 같았던 최한량(崔漢良)은 사예(司藝)로써 강등되어 남양 교수(南陽敎授)에 서용(敍用)되었는데도**, 유조와 박처륜은 겨우 3개월이 지나자마자 모두가 승진 서용(敍用)되었으니, 그것은 최한량(崔漢良)과는 은혜와 형벌이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회수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를 내리기를,"죄가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니, 한때의 허물로써 어찌 장래를 버릴 수가 있겠으며, 최한량(崔漢良)을 승진시키는 것도 또한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司憲府大司憲尹繼謙等上箚子曰: 兪慥·朴處綸等, 曾以冒禁會飮, 法當外敍, 特蒙恩貸敍西, 今政兪慥拜禮曹正郞, 朴處綸拜司諫院正言. 其初同罪崔漢良, 以司藝降敍南陽敎授, 而慥及處綸纔過三朔皆得陞敍, 其與漢良恩罰懸殊. 伏望亟收成命. 御書曰: 罪在赦前, 一時之過, 何棄將來? 漢良之陞, 亦何難也?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7일(임신) 3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 부사를 비난한 익명서의 겉봉에 쓰인 귀동을 찾도록 경기 감사에게 하서하다

어떤 사람이 익명(匿名)으로 고장(告狀)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채신보(蔡申保)는 나이 늙고 우둔(愚鈍)하여 관아(官衙)에 드러누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피봉(皮封)에 붙인 이름은 아마 귀동(貴同)인 듯하다. 그를 추문(推問)하라."
하고, 마침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손순효(孫舜孝)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그 도내의 남양부(南陽府)의 인리(人吏)가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혹은 부채(負債)를 징수(徵收)하는 일에서나 혹은 송사(訟事)를 이기지 못하였거나, 무릇 일로 인하여 관가에 유감이 있는 자들 가운데 '귀동'이라 이름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고(相考)하여, 있으면 사람을 뽑아 압송(押送)하라." 하였다.
○有人匿名告狀曰: "南陽府使蔡申保, 年老愚鈍, 臥衙不出." 傳曰: "皮封着名, 疑是貴同也. 其推問之." 遂下書京畿觀察使孫舜孝曰: "道內南陽府人吏, 居民中, 或徵債, 或訟事不勝, 凡因事有憾於官家者內, 名貴同人有無相考, 有則差人押送."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0일(무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의정부의 보고에 따라 담양 부사 남계당 등을 승서하고 채신보 등을 파출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담양 부사(潭陽府使) 남계당(南季堂)·대구 부사(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부평 부사(富平府使) 민효남(閔孝男)은 근면하고 근신하게 공무를 봉행하여 다스린 공효(功效)가 있습니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채신보(蔡申保)는 태만하여 일을 보살피지 않고,** 공주 목사(公州牧使) 이숙생(李叔生)은 깨끗하고 바르지 않아서 백성을 다스리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남계당·임수창·민효남은 승서(陞敍)하되 자궁(資窮)하지 않은 자는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채신보·이숙생은 파출(罷黜)하라고 명하였다.
○議政府啓: “潭陽府使南季堂·大丘府使林壽昌·富平府使閔孝男, 勤謹奉公, 有治效. **南陽府使**蔡申保, 懶慢不治事. 公州牧使李叔生, 無廉介, 不宜臨民.” 命季堂·壽昌·孝男陞敍, 未資窮者, 則加一資. 申保·叔生罷黜.
<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24일(경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부사 채신보는 조행이 있고 학정이 없는데 홀로 견벌받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육(李陸)이 치계(馳啓)하기를, “서감원(徐坎元)의 공사(供辭)에 이르기를, ‘채수(蔡壽)와 권경우(權景祐)는 역시 언사(言事)로써 파직을 당하였는데, 오래 복직되지 아니하였으나, 말한 바가 국가에 관계되었고, 또 채수는 이성 사촌(異姓四寸)이기 때문에 처음 추핵(推劾)할 때에는 바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전 대구 부사(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은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공무에 몸을 바친 사실이 없고 또 다스린 공이 없는데 지나치게 승진되었으며, **남양 부사(南陽府使) 채신보(蔡申保)는 비록 병으로 인하여 게으름이 있었으나 조행(操行)이 있고 학정(虐政)이 없었는데**, 홀로 견벌(譴罰)을 받았으므로, 묘당(廟堂)에서 올려 주거나 내치거나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수창은 지주(地主)이고 채신보는 삼촌숙(三寸叔)이기 때문에 처음 추핵할 때에 말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서감원(徐坎元)이 처음에는 숨기다가 이제는 사실을 토로(吐露)하여 앞뒤에 말을 변하였으니, 그 마음의 간사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다. 채신보(蔡申保)는 서감원의 삼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적해 말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추핵한 뒤에야 사실을 토로하였다. 채수(蔡壽)는 서감원과 부동(符同)함이 없지 아니하니, 엄하게 추핵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다. 삼공(三公)은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陰陽)을 조화(調和)하는 것인데, 서감원은 삼공들이 올리고 내치는 것을 비난하였으니, 더욱 옳지 못하다. 형문(刑問)하여 끝까지 추핵하게 하라.”
하고, 또 서감원의 추안(推案)을 오늘 의논하는 재상(宰相)에게 보이니, 재상들이 모두 아뢰기를, “이제 초사(招辭)를 보건대, 서감원이 진실로 간사함을 품었고 곧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궁하게 추핵하여 죄를 주면 언로(言路)에 방해로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형방 승지(刑房承旨) 안침(安琛)에게 이르기를, “서감원(徐坎元)의 일을 의정부와 재상들이 모두 추핵(推劾)하지 아니하려고 하는가? 대저 옛 신하는 임금에게 말을 올리는 데에 반드시 과격하고 간절하여 임금에게 들어주기를 바라고, 어진 임금도 과격하고 간절함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채택하여 받아들였는데, 지금 서감원의 진술한 말은 과격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간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서감원이 권경우(權景祐)와 채수(蔡壽)의 말한 바를 국가에 관계된다고 하면서,

애초에 이름을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그 옳은 뜻이겠는가? 또 그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대구 부사(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은 다스려진 공이 없는데 올려 쓰고, **남양 부사(南陽府使) 채신보(蔡申保)는 비록 병으로 인하여 일을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나 조행(操行)이 있고 학정(虐政)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더욱 간사하다. 채신보가 만약 병이 없이 일을 다스리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돌아감이 있기 때문에 서감원이 병을 칭탁해 말한 것이다. 이는 진실로 곧지 못함이 심하다. 무릇 사람이 비록 소인(小人)의 심술(心術)이 있을지라도 아직 행사(行事)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렵다. (…) 나는 생각하기를, 임수창과 채신보를 올리고 내친 것은 삼공(三公)의 논의가 지공무사(至公無私)에서 나왔으니, 사람들이 장차 권계(勸戒)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지금 서감원은 삼공이 올리고 내친 처사가 잘못이라고 하여, 이름은 진언(陳言)이라고 하면서 몰래 간사함을 품고 사사로움을 구하니, 이는 실로 무상한 소인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 서감원이 헐뜯음이 이와 같으면 삼공은 마땅히 혐의를 끌어서 잘못 천거(薦擧)한 것을 사죄할 것인데, 이제 도리어 서감원은 정사를 말한 자라고 하여 추핵하지 말게 하려고 하니, 나는 정승들의 말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만약 서감원을 옳다고 하면 삼공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정승과 육조(六曹) 당상관(堂上官)이 모두 여기 모였으니, 다시 물어서 계달하라." 하였다.(…)

○慶尙道觀察使李陸馳啓曰: "徐坎元供云: '蔡壽·權景祐, 亦以言事見罷, 久不復職, 然所言係關國家. 且壽則異姓四寸, 故初推時, 不直招. 前大丘府使林壽昌, 則無勤謹奉公之實, 又無治效, 而過蒙超陞. **南陽府使**蔡申保, 則雖因病懶慢, 有操行, 無虐政, 而獨蒙譴罰, 故以謂: '廟堂陞黜不公.' 壽昌地主, 申保三寸叔, 故初推時, 未得言之." 傳于承政院曰: "坎元, 初則隱諱, 今則吐實, 前後變辭, 其心術奸詐莫甚. 申保, 於坎元三寸, 故初不指說, 而更推後吐實. 蔡壽不無與坎元符同, 不可不窮推得情. 且三公, 論道經邦, 燮理陰陽. 坎元以三公陞黜爲非, 尤爲不可. 其令刑問窮推." 且以坎元推案, 示今日議得宰相, 宰相等僉啓曰: "今觀招辭, 坎元實懷詐不直, 然今若窮推罪之, 則其於言路, 恐有妨也." 上御宣政殿, 謂刑房承旨安琛曰: "徐坎元事, 政府及宰相等, 皆欲勿推乎? 大抵古之人臣, 進言於君, 必須激切剴直, 以冀人主之聽; 賢君亦不以激切剴直爲憚, 而必須採納. 今坎元陳言, 則非出於激切, 出於奸詐. 坎元以權景祐·蔡壽所言, 關係國家, 初不現名開說, 此豈其情乎? 且其招辭云: '大丘府使林壽昌, 無治效而陞敍; **南陽府使**蔡申保, 雖因病不治事, 有操行, 無虐政,' 此言尤奸詐. 申保若無病, 而不治事, 罪有所歸, 故坎元以病托說耳. 此實不直之甚也. 凡人雖有小人心術, 然於行事, 未及發現, 則得之尤難. (…) 予意 '壽昌·申保之陞黜, 三公之論, 出於至公無私, 而人將有勸戒之心矣.' 今坎元以三公陞黜爲非, 名爲陳言, 而陰懷奸詐, 以濟其私, 此實無狀小人也. 予意 '今坎元詆毁如是, 則三公固當引嫌, 以謝謬薦之責,' 今反以坎元爲言事者, 欲令勿推, 予未知政丞等所言也. 若以坎元爲是, 則三公將不免其責矣. 今政丞及六曹堂上, 皆會于此, 更問以啓." (…)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24일(무인) 3번째기사>

정치/행정

도승지 이세우가 대부도에 갔다가 남양으로 돌아오는 등 직무 태만을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파(尹坡)가 와서 아뢰기를, "유자광(柳子光)을 지금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제수하였습니다. 유자광은 본래 얼산(孼産)이고 이미 큰 죄를 범하여 훈적(勳籍)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는데, 비록 공이 컸기 때문에 용서하고 거두어 썼으나 군(君)을

봉한 것으로 족한 것이지, 경조(京兆)의 장(長)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또 **대부도(大部島)는 다만 사흘 노정(路程)**밖에 안되는데,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가서 살펴볼 때에 돌아가서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러 머물면서 자고 놀고 하느라고 6일을 경과하고서야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이미 마땅하지 못한데, 요즈음 양찬(梁瓚)의 불법(不法)한 일을 하문(下問)할 때에 사실을 숨기고 바로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자못 신자(臣子)의 도리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비록 서얼(庶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도총관(都摠管)에 임명되었었고 또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전대(專對)하였었으니, 그 재기(才氣)를 보건대,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 이세우의 일은 알고 있다." 하였다.

이세우가 아뢰기를, "신은 정성근(鄭誠謹)과 사귄 정이 매우 두터운데, 사명을 받들고 대마도(對馬島)로 들어갈 때에 신이 말로 작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처음 생각으로는 길에서 말로 작별을 하려고 하여 **초2일에 남양(南陽)에 갔고 이튿날 대부도에 갔다가 그 이튿날 남양으로 돌아왔는데, 날이 아직 저물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원은 남양에서 거리가 30리 길이며 또 한강(漢江)의 직로(直路)이기 때문에 정성근을 만나 보려는 마음에 국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이날 수원에 이르렀는데, 정성근이 이미 광주(廣州)로 향하였으니 형편이 필시 서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머물렀던 것입니다. 신에게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그 문 앞으로 세 번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아니한 이가 있었다. 명(命)을 받들고 가는 데에는 진실로 마땅히 빨리 돌아와야 할 것인데, 길이 아무리 매우 가깝다 하더라도 남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양찬(梁瓚)의 일은 내가 두 번이나 물었는데도 그대가 어찌하여 바로 아뢰지 아니하는가? 대죄(待罪)하라." 하였다.

윤파(尹坡)가 또 아뢰기를, "유자광에게 이제 한성 판윤을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장차 육조(六曹)나 의정부(議政府)에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육조나 의정부에 임명하지 아니하는 것은 군상(君上)의 일이니, 밑에 있는 자가 마땅히 의논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司憲府持平尹坡來啓曰: "柳子光今除漢城判尹, 子光本孼産, 旣犯大罪, 削名勳籍, 雖以功大特原而收用, 封君足矣, 不可長於京兆. 請改正. 且大部島只三日之程, 而都承旨李世佑往審時, 枉到水原府留宿遊衍, 經六日乃還, 已爲不當矣. 近日梁瓚不法事下問時, 匿情不以直啓, 殊無臣子之義." 傳曰: "子光雖庶孼, 旣任都摠管, 又專對上國. 觀其材氣, 可堪此任. 世佑事, 知道." 世佑啓曰: "臣與鄭誠謹交情不淺, 奉命歸于對馬島, 臣未得話別, 臣初心欲於路上話別. 初二日往南陽, 翌日往大部島, 翌日還到南陽, 則日未暮, 水原距南陽纔三十里程, 又是漢江直路, 故, 欲見誠謹, 不料國法. 是日到水原, 則誠謹已向廣州, 勢必相違, 故留一日, 臣實有罪." 傳曰: "古有三過其門而不入者, 奉命而行, 固當速還. 道雖甚邇, 其可枉行乎? 梁瓚事, 予再問之, 爾何不直啓歟? 其待罪." 尹坡又啓曰: "子光今授漢城判尹, 則必將任於六曹·政府矣." 傳曰: "六曹·政府任與不任, 是君上事也, 非在下者之所當論也."

<성종실록 204권, 성종 18년 6월 9일(정축) 3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의 대부도를 다녀와 수원부사의 과실을 잘못 말한 이세우를 파직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세우(李世佑)가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를 살펴본 뒤에 길을 돌아 수원부(水原府)에 가서 머물며** 부사(府使) 양찬(梁瓚)의 용렬(庸劣)한 과실을

눈으로 보고서도 두세 번 하문(下問)할 때에는 길에서 전해 들었다고 대답하여 천총(天聰)을 속인 죄는 율(律)이 '대제상서 사불이실(對制上書詐不以實)'에 해당하니,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으로 하고, 『대전(大典)』에 의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파직(罷職)만 하라고 하였다.

○庚辰/司憲府啓: "李世佑, 南陽大部島看審後, 枉道經宿水原府, 目覩府使梁瓚庸劣過失, 而再三下問時, 以路次傳聞, 欺罔天聰罪, 律該對制上書詐不以實者, 杖一百·徒三年. 依『大典』盡奪告身." 御書: "只罷職."

<성종실록 204권, 성종 18년 6월 12일(경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지평 권자후가 안우삼가 남양부사에서 선공감 정으로의 승진이 부당함을 주장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권자후(權子厚)가 와서 아뢰기를, "**선공감 정(繕工監正) 안우삼(安友參)은 전에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임명되었을 적에 전최(殿最)에서 중등(中等)을 맞아 평천(平遷) 된 자인데**, 겨우 두어 달을 지나서 선공감 정으로 올려 주었으니, 옳지 못할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이조(吏曹)에 묻겠다." 하였다.

○司憲府持平權子厚來啓曰: "繕工監正安友參前任南陽府使, 以殿最中等平遷者也. 纔經數月, 陞授正, 恐不可." 傳曰: "當問吏曹."

<성종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11일(기사) 2번째기사>

정치/행정

전한 성세명이 경기도 광주·남양·과천 등지의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전한(典翰) 성세명(成世明)이 경기(京畿)에서 돌아와서 광주(廣州)·**남양(南陽)**·과천(果川)·금천(衿川)·교하(交河)·음죽(陰竹)·풍덕(豐德)·고양(高陽)·지평(砥平)·양성(陽城)·양지(陽智)·진위(振威)·김포(金浦)·장단(長湍)·마전(麻田)·양근(楊根)·삭녕(朔寧) 17고을의 불법(不法)한 일을 아뢰니, 사헌부에 회부하기를 명하였다.

○典翰成世明回自京畿, 以廣州·南陽·果川·衿川·交河·陰竹·豐德·高陽·砥平·陽城·陽智·振威·金浦·長湍·麻田·陽根［楊根］·朔寧十七邑不法事啓之, 命下司憲府.

<성종실록 235권, 성종 20년 12월 17일(경자) 2번째기사>

정치/행정

경기 관찰사 이세좌의 보고에 따라 전 남양부사 박처륜 등에게 가자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부평 부사(富平府使) 김성동(金誠童)은 행정을 청렴 간략하게 하고, 가혹함과 각박함을 숭상하지 않았으며, **전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처륜(朴處綸)은 그 행정이 청렴 간략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또 생도(生徒)를 많이 모아 교양(敎養)에도 효과가 있어,**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평 현감(砥平縣監) 고형산(高荊山)은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며 그 폐단을 제거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에 의하여 가자(加資)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다른 예(例)에 의하여 가자(加資)한다면 김성동(金誠童)은 응당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제수하여야 하고, 박처륜(朴處綸)은 통정 대부(通

政大夫)를 제수하여야 하며, 고형산(高荊山)은 승훈랑(承訓郞)을 제수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己卯/京畿觀察使李世佐啓曰: "富平府使金誠童, 爲政淸簡, 不尙苛刻. 前南陽府使朴處綸, 非但爲政淸簡, 莅民不煩, 又多聚生徒, 敎養有效, 遺愛在人. 砥平縣監高荊山, 勤恤民隱, 務要除弊." 傳曰: "依例加資可也." 都承旨金應箕啓曰: "今若依他例加資, 則金誠童應授嘉善, 朴處綸應授通政, 高荊山應授承訓." 傳曰: "可."
<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20일(기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대사헌 구치곤 등이 관직 제수를 신중히 할 것 등을 아뢰다

대사헌 구치곤(丘致崐)·집의 유빈(柳濱)·장령 이자건(李自健)·지평 강숙돌(姜叔突) 등이 아뢰기를, (…) 구치곤 등이 다시 아뢰기를, "(…) 강선(姜善)을 상호군(上護軍)으로 삼고 내려 제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군직(軍職)은 올리고 내리고 하여야 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항상 한 직책을 가지고 있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관작은 그 사람의 사사로운 물건이지 조정의 공기(公器)가 아닌 것입니다. 세종조에서 관작을 아껴 한 자(資), 한 급이라도 범람하게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작이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저기 저 사람들 3백 명이나 적불(赤芾)을 입었네.[彼其之子三百赤芾]'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돈피가 부족하여 개 꼬리로 잇는다.[彼不足狗尾續]'고 하였는데 이것은 관작이 범람함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통정 당상(通政堂上)이 90여 명이요, 가선(嘉善) 이상에서 1품까지가 역시 거의 90여 명이 됩니다. 통정 당상은 반당(伴倘)이 세 사람인데 3품에서 1품 이상이 2백 명인즉 반당이 6백 여명에 이르니 군액(軍額)에도 역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거(李琚)를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하여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삼고, **이전(李詮)을 통정 대부로 하여 남양(南陽)부사를 삼았습니다. 남양과 순천을 어찌 당상관이 된 후에야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 임명하는 날 당상관으로 승품시킨다면, 가령 그 고을을 다스려서 알릴 만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무엇으로 상을 줄 것입니까? 전하께서 즉위하던 초기에 당상에 승진한 자가 22인인데 지금 또 두 사람을 올린다면 24인이나 됩니다. 아무리 큰 군공(軍功)이 있더라도 무엇이 이것에 더하겠습니까. 반드시 고치기를 청합니다. (…)
○大司憲丘致崐·執義柳濱·掌令李自健·持平姜叔突等啓: (…) 致崐等更啓: "(…) 以姜善爲上護軍, 令勿降授. 大抵軍職當陞降, 不可以一人常帶一職. 若此則官爵爲己私物, 而非朝廷公器也. 世宗朝愛惜官爵, 一資一級亦不濫施, 故人知官爵之爲貴. 古云: '彼其之子, 三百赤芾.' 又云. '貂不足狗尾續.' 此言官爵之濫也. 今通政堂上九十餘人, 嘉善以上至于一品, 亦幾九十餘人. 通政堂上伴倘三人, 而自三品至于一品, 等而上之, 則二百員伴倘, 至於六百餘人, 其於軍額, 亦不有關乎? 今者又以李琚爲通政順天府使, 李詮爲通政南陽府使, 南陽·順天豈堂上然後可治? 初拜之日陞堂上, 假令治邑有聲績, 將何以賞? 殿下卽位之初, 陞堂上者二十二人, 而今又陞二人則凡二十四人, 雖大軍功, 何以加此? 請須改之. (…)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4일(병오) 3번째기사>

정치/행정

지평 강숙돌이 남양 등지는 당상관에 승진시킨 뒤에 제수하는 곳이 아니라고 아뢰다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 다시 아뢰기를,

“한 사람만 추천하라는 전지는 결코 거행할 수 없습니다. 또 대간이 지금 이조에서 천거함이 잘못됨을 논란하는데, 이조에서 외람하게 전지를 받았으니, 이것은 대간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린 명을 거두시어 권세를 농락하는 폐단을 방지하십시오. 또 안해·서산보는 꼭 개정하여야 합니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2월에 우레가 소리를 내고, 8월에 우레가 비로소 소리를 거둔다.’고 하였으니 9월에서 정월까지의 사이에 뇌성 번개가 있는 것은 재변이라고 할 만합니다. 신이 이전(李詮) 등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南陽)·순천(順天)·밀양(密陽)을 어찌 반드시 당상관에 승진시킨 후에야만 제수하느냐는 것입니다.** 김효강은 죄가 중한데 태형으로 속바치게 하였으니 형벌이 잘 안된 것입니다. 천변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데에 관계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상벌을 조심하고 엄정히 하시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해야 합니다. 또 인군이 잘못하는 일과 조정의 득실에 대하여 위엄에 항거하면서 극간(極諫)하는 것은 대간뿐입니다. 삼대 이전에는 따로 관원을 두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들어 간하는 풍습은 일찍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천자는 잘못을 간하는 신하[爭臣] 일곱 사람만 있으면 도가 없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는 잘못을 간하는 신하 다섯 사람만 있으면 도가 없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간하는 신하가 국가에 관계 있음이 이런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는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대간(臺諫)의 직책을 두게 된 것입니다. 대저 대간이라는 것은 인군을 과실이 없는 데에 있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 스스로 이기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습니까. 또 경연에는 영사(領事)·지사(知事)·특진관(特進官)·대간이 함께 들어가서 시강한다면 진실로 구비된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는 할 수 없더라도, 다만 승지와 경연관·사관들이 입시하여도 역시 어진 사대부를 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폐하지 말고 납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연에 관한 일은 알았다.”하고, 나머지는 다 좇지 않았다.
○癸亥/持平姜叔突啓: (…) 更啓曰: “獨擬傳旨, 決不可行也. 臺諫方論吏曹注擬失當, 而吏曹冒承傳旨, 是不有臺諫也. 請收成命, 以防弄權之弊. 且安該·徐山甫不可不改正. 『禮記』月令, 二月雷乃發聲, 八月雷始收聲, 則自九月至正月, 有雷電則謂之災變可也. 臣非以李詮等爲不可用也, **南陽**·順天·密陽豈必陞堂上, 然後授之哉? 金孝江罪重而贖笞, 刑罰失中. 天變之作, 不可謂不由乎此. 殿下當愼賞必罰, 克謹天戒可也. 且人君過擧, 朝廷得失, 抗威極諫者, 獨臺諫耳. 三代以前, 雖不設官, 規諫之風未嘗無之. 故曰: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諫臣之有關於人國如此. 至於後世, 人心不古, 始設臺諫之職, 夫臺諫欲使人君, 納於無過之地耳, 安有以自勝爲心哉? 且於經筵, 領事·知事·特進官·臺諫竝入侍講, 則固爲備矣. 雖不能如此, 只令承旨·經筵官·史官等入侍, 亦可謂接賢士大夫, 而學問進益則可矣. 請勿廢御之.” 傳曰: “經筵事知道. 餘皆不從.”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1일(계해) 1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 부사 이세준에게 가자하다
전교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세준(李世俊)에게 가자(加資)하라.”**
하였는데, 이세준은 이극균(李克均)의 아들이었다.
○傳曰: “**南陽府使**李世俊, 加資.” 世俊, 克均之子也.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5일(임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부사 이세준 등의 일에 대하여 전교하다

빈청(賓廳)에 전교하기를, "이세준의 일에 대한 대간의 말은 분명히 바르지 못하다. 만약 과연 병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세준이 남양 군수로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조에서 또한 당연히 아뢰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만 승진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를 말하는 것뿐이다. 임사홍의 일은 지금 군자와 소인을 분간할 때가 아니다. 성종 때에 이미 그 죄를 확정지었으면서도 오히려 관직을 주었다. 그리고 모든 적출(嫡出)의 맏아들은 현명하고 우매함을 묻지 않고 모두 뒤를 이어받아야 하니, 지금 실직을 준 것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김치원은 이미 사면을 지났으므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할 처지에 있으며, 동평관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다투어 고지기가 되려고 하므로 그 계책이 반드시 어떤 일로 인하여 범죄를 세상에 알려서 쫓아낸 뒤에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기를 생각한다. 그리하여 치원의 한 것을 들추어내어 기어코 죄를 받도록 한 것이다. 장례원(掌隷院) 관원들도 또한 장례원의 종[奴]으로써 대신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어찌 알수가 있겠는가? 이조에서 대간을 의망(擬望)할 적에 반드시 그 적임자를 가려서 제수하는 것이지만, 용모는 공순하면서도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또한 어찌 알겠는가. 대간 중에서 한 가지 일을 의논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아뢸 수 없다고 하고 불초한 사람은 아뢰어야 한다고 하면, 현명한 사람이 또한 불초한 사람에게 견제되어 억지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근일에 대간이 자주 바뀌었으므로 처음 언관(言官)이 된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의(銳意)에서 이 일도 아뢰어야 하고 저 일도 또한 아뢰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침에 한 가지 주장을 아뢰고 저녁에 한 가지 일을 아뢰어 부산하게 그냥두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대간을 오래 재임하게 하여, 일의 대체를 생각하고 그때그때의 급한 일을 살피게 하면, 현명한 사람은 더욱 힘써서 반드시 지선(至善)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요, 불초한 사람도 생각을 바꾸어 장차 허물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천성은 비록 고칠 수 없지만 현명한 사람과 함께 오래 있으면 개과 천선의 도리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유순(柳洵)은 아뢰기를,

"이세준의 병은 신도 또한 일찍이 들었으며, 지금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영천 군수가 되었을 때에도 또한 일찍이 병으로 사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됨이 강직하고 명민(明敏)하므로 비록 날마다 사무를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군내(郡內)에 치적이 많아 선정(善政)을 했다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傳于賓廳曰: "李世俊事, 臺諫之言, 分明不直. 若果病不治事, 則世俊爲南陽已久, 吏曹亦當啓之. 此特以陞授之故, 言之耳. 士洪事, 非於此時, 分君子·小人也. 成宗朝已定其罪, 猶授之以職. 凡嫡長, 不問賢愚, 皆當承襲. 今之實封, 有何不可? 致元已經赦宥, 在所不治. 東平館, 謀利之地, 故人爭欲爲庫直, 其計以爲, 必因事聲罪去之後, 可得代之, 故攻發其所爲, 期於得罪也. 掌隷院官員, 亦安知其不欲以院奴代之耶? 吏曹注擬臺諫, 必得其人, 而授之, 然有貌恭, 而心不然者, 又安知其中之所存耶? 臺中議一事, 賢者以爲不可啓, 而不肖者以爲當啓, 則賢者亦將牽制於不肖者, 而黽勉從之. 近日, 臺諫數遞, 故初爲言官, 不深計度, 銳意以爲, 此事可啓, 而彼事亦可啓也, 朝進一說; 暮啓一事, 紛紜不置. 今後臺諫, 令久任, 使之度事體·審時務, 則賢者益勵, 必期於至善之域; 不肖者易慮, 將造於無過之地, 其天姓雖不可改, 然與賢者久處, 則不無遷善之理矣." 柳洵啓: "世俊之病, 臣亦曾聞之. 非但今時然也, 前爲榮川郡守時, 亦嘗病不(受)〔坐〕衙. 然其爲人剛明, 故雖不逐日治事, 郡中以治, 多有政聲."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30일(정묘) 3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상을 남양부사로 차정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김세용(金世用)을 가산 군수(嘉山郡守)로 차정하고, **훈련원 습독관(訓鍊院習讀官) 조상(趙鏘)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차정하라.**” 하였다.

○傳曰: “司譯院判官金世用其差嘉山郡守, 訓鍊院習讀官趙鏘其差**南陽府使**.”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14일(갑오) 3번째기사>

정치/행정

홍문관 직제학 김준손 등이 내수사 혁파에 대한 차자를 올리다

홍문관 직제학 김준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화는 드러난 데에서 일어나지 않고 은미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명철한 이는 은미한 데를 조심하는 것이니 은미하다고 하여 소홀히 하면 끝내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폐조의 일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인데, 반정하신 뒤에 옛것을 고쳐 새롭게 하시면서도 내수사의 폐단은 아직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전자에 남양 사람 이속(吏屬)을 잡아다 국문토록 명하셨고,** 얼마 있다가 홍북간(洪北間)의 일이 있었으며, 이제 또 사사로운 송사를 추문하도록 명하시니, 이는 모두 신정(新政)의 커다란 누입니다. 폐조 초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고, 다스리는 도에 뜻을 집중하시므로 안팎에서 발돋움하고 다스리는 덕화를 바라는데, 근일의 실책이 대부분 내수사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일이 비록 미미하나 그 조짐은 벌써 드러났으니, 이는 신 등이 적이 통탄하는 일입니다.

내수사는 곧 전하의 사사 부고(府庫)이며, 내수사 사람은 곧 사사로운 사람[私人]인만큼 무릇 일이 있으면 거기를 인연하여 임금에게 알려지게 될 것은 사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근일의 일이 더러 그렇게 된 것인데, 전하께서는 이를 막지 않으시고 오직 하고 싶은 대로 두시니, 다음 일은 반드시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온 나라 사람이 일찍이 폐조의 일을 보았기에 진실로 오늘날 일에 의심이 없을 수 없는데, 전하께서 하시는 바가 또한 이러하니, 의심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弘文館直提學金駿孫等上箚曰: 禍之作, 不于著而于其微, 故明者愼之於微, 微而忽之, 終至於不可爲矣. 廢朝之事, 殿下所親覩, 反正之後, 革舊鼎新, 而內需司之弊, 尙且因循. 殿下前者命拿鞫**南陽**人吏, 旣而有洪北間事, 今又命問私訟, 此皆新政之大累, 廢朝初年, 亦未聞有此等事也. 殿下春秋方富, 銳意治道, 中外翹跂, 相望治化, 而近日過擧, 多因內需, 其事雖微, 其兆已著, 此臣等所以扼腕而竊嘆者也. 內需司, 卽殿下之私府, 而其人卽私人也. 凡有事, 因緣轉達, 勢所必至, 近日之事, 或出於此, 殿下不爲之防, 而唯所欲爲, 則繼此者, 必將無厭. 一國之人嘗見廢朝之事, 固不能無疑於今日, 而殿下所爲又如是, 所以益其疑也. (…) 不允.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7월 6일(정미) 3번째기사>

정치/행정

구윤신이 장단은 규피하고 남양은 절실히 바란다

헌부가 아뢰기를, “장령(掌令) 이겸(李謙)은 자신에게는 흠이 없으나 물론(物論)이 혼잡하다 합니다. 대간은 타관(他官)의 예와 달라서 이겸이 재직할 수 없습니다. 헌납(獻納) 권인행(權仁杏)도 흠이 없으나 오늘 서경(署經) 때에 의논이 귀일하지 않았습니다. 구윤신(具允

愼)은, 장단(長湍)은 잔폐(殘弊)하다 하여 규피(窺避)하고 **남양(南陽)은 절실히 바랐으므로** 그 규피한 정상이 명백하니 파직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새 장단 부사 김수경(金壽卿)은 크게 물론이 있으므로 백성을 가까이 다스릴 수 없으니 빨리 가소서."
하니, 이겸·권인행의 일은 아뢴 대로 윤허하고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았다.
○癸卯/憲府啓曰: "掌令李謙, 身無痕咎, 而物論以爲混雜. 臺諫非他官例, 謙不可在職; 獻納權仁杏, 亦無痕咎, 而今日署經時, 議論不一; 具允愼 長湍, 則以殘弊窺避, 南陽則切求之, 其窺避之狀明白. 請罷, 以懲後人. 長湍新府使金壽卿, 大有物論, 不可臨民, 請亟遞."
李謙·權仁杏事, 依允, 餘皆不允.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7월 17일(계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남양부사 이운의 탐독을 들어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운(李耘)은 인물됨이 사비 무상(邪鄙無狀)하고 이르는 곳마다 탐독(貪黷)하여 공론(公論)에서 버림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근래에 수령(守令)이 되어서도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됨】**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탐독이 더욱 심하였으니, 군직(軍職)을 맡기는 것도 지나친 일인데 이제 육조(六曹)에 들어오니 여론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속히 체직하소서. 이와 같은 사람을 전조(銓曹)에 주의(注擬)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또 예조 참의(禮曹參議) 윤형(尹衡)은 본디 물망이 없으면서 공조 참의가 된 것만도 족합니다. 예조는 공조와 또 달라서 지극히 온당치 못하니 속히 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근래에 이운이 과연 육조에 쓰일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나 다만 요즈음 당상관(堂上官)될 만한 인물이 부족하니 꼭 체직할 것은 없다. 윤형은 예조가 전례(典禮)를 맡은 곳이기는 하나 일을 의논할 때에는 다른 당상(堂上)도 있으니 역시 꼭 체직할 것은 없다."
○憲府啓曰: "工曹參議李耘, 人物邪鄙無狀, 到處貪黷, 爲公論所棄久矣. 近爲守令, 【爲南陽府使】尙不懲艾, 貪黷尤甚, 得爲軍職, 亦爲濫矣. 今入六曹, 物論驚怪, 請速遞之. 以如此之人, 注擬銓曹, 至爲非矣. 且禮曹參議尹衡, 素無物望, 爲工曹參議亦足矣. 禮曹, 非工曹之比, 至爲未便. 請速遞." 傳曰: "近來李耘, 果不用於六曹, 自上亦非不知, 但近來堂上官人物乏少, 不必遞也. 尹衡則禮曹雖典禮之地, 議事之時, 亦有他堂上, 亦不必遞也."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 2월 23일(임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삼공이 치민과 구황을 잘못한 남양부사 정요년 등의 추고를 청하자 파직시키다
지난번에 헌부에서 문폐사(問弊使) 김개(金鎧)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파주 목사(坡州牧使) 안위(安瑋),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요년(鄭堯年)**, 인천 부사(仁川府使) 신광록(申匡祿), 이천 부사(利川府使) 남순민(南舜民)을 치민(治民)과 구황(救荒)을 잘못했다 하여 파직하기를 청하였었다. 사인(舍人) 정유길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백성 한사람의 호소로 인하여 갑자기 그 수령을 파직한다면 반드시 뒷폐단이 있게 됩니다. 더구나 기전(畿甸)의 흑심한 흉년은 근고(近古)에 없던 일이며 수령을 보내고 맞는 폐단이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추고하게 되면 그 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니 아직은 파직하지 말고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문폐사를 파견한 것은 백성들의 폐단을 알고자 해서이다. 이미 이것으로 아뢰었는데 만일 채용하지 않는다면 왜 기어코 문폐사를 파견하였겠느냐?” 하였다.

○頃者, 憲府因問弊(事)〔使〕, 金鎧書啓, 以坡州牧使安瑋·南陽府使鄭堯年·仁川府使申匡祿·利川府使南舜民, 不能治民救荒, 請罷矣. 舍人鄭惟吉, 以三公意啓曰: “以一民之訴, 遽罷其守令, 則必有後弊. 況畿甸凶荒, 近古所無, 迎送之弊, 曷有紀極? 推之則其罪自著, 姑勿罷推之何如?” 答曰: “遣問弊使者, 欲知其民瘼也. 旣以是啓之而若不用, 則何必遣問弊使也?”

<명종실록 5권, 명종 2년 6월 7일(병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임구령을 남양도호부로 제수하다

유잠(柳潛)을 홍문관 수찬으로, 한지원(韓智源)을 부수찬으로, **임구령(林九齡)을 행 남양도호부사(行南陽都護府使)로,** 황헌(黃憲)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이원우(李元祐)를 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以柳潛爲弘文館修撰, 韓智元爲副修撰, **林九齡爲行南陽都護府使**, 黃憲爲知中樞府事, 李元佑爲行僉知中樞府事.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10월 5일(임자) 5번째기사>

정치/행정

배사하는 남양 부사 임구령을 인견하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임구령(林九齡)이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일렀다. “근래에 흉년이 매우 심해서 백성들이 소생하지 못하고 있다. 깊이 불쌍하게 여겨 마음을 다해 구활(救活)하라.”

○**南陽府使**林九齡拜辭, 上引見曰: “近來凶荒太甚, 民不聊生. 深用愍惻, 爾其盡心救活.”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 10월 13일(경신) 2번째기사>

정치/행정

도내 충효인과 절부에 대한 경기 감사 남세건의 보고

경기 감사 남세건(南世健)의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충효인(忠孝人) 및 절부(節婦) 등을 포장(褒奬)할 일을 해조(該曹)에 말하라.” 【*서장은 다음과 같다. “**남양(南陽) 사람 종실(宗室) 단천령(端川令)의 아내 유씨(柳氏)**는 남편이 악질(惡疾)을 앓자 다리의 살을 베어 남편의 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별시위(別侍衛) 최준회(崔俊淮)는 아비가 악질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 먹였습니다. 교동(喬桐) 사람 내금위(內禁衛) 조효달(曺孝達)의 아내 박씨(朴氏)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 다만 구복(口服)만 봉양할 뿐 아니라 순하게 받들어 어김이 없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자 부처(夫妻)가 장제(葬祭)의 의식에 예를 다하였습니다. 조효달은 시묘(侍墓) 3년을 하는 동안 한번도 집에 오지 않았는데, 마침 역질이 크게 번져 효달이 병으로 누우니 박씨는 제사를 폐하게 될까 염려하여 울부짖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몸소 밥을 지어 제청(祭廳)에 나아가 곡전(哭奠)을 하였고, 가묘(家廟)에 삭망(朔望)이면 반드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효달이 외출했을 때 사당(祠堂)에 화재가 나니 박씨가 달려들어가 먼저 신주(神主)를 안고 나와 다른 곳에 안치(安置)하였는데, 불도 곧 꺼졌습니다.”】

○下京畿監司南世健書狀于政院曰: “忠孝人及節婦等褒奬事, 言于該曹.” 【南陽人宗室端川令妻柳氏, 夫有惡疾, 割股肉以療夫疾. 別侍衛崔俊淮, 父得惡疾, 斷指和藥以進. 喬桐人內禁衛曺孝達妻朴氏, 事舅及姑, 非徒養口腹, 承順無違, 舅歿夫妻葬祭盡禮. 孝達廬墓三年, 一不到家, 適瘟疫大熾, 孝達病臥, 朴氏慮至廢祭, 號泣不已, 自家炊飯, 詣祭廳哭奠, 家廟朔望必祭. 孝達出外時, 祠堂失火, 朴氏突入, 先抱神主而出, 安於別處, 火亦尋滅】
<명종실록 8권, 명종 3년 10월 10일(신해) 3번째기사>

정치/행정

이택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심광언(沈光彦)을 호조 참판으로, 진복창(陳復昌)을 공조 참판으로, 구수담(具壽聃)을 경상도 관찰사로, 원계검(元繼儉)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유지선(柳智善)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세장(李世璋)을 좌승지로, 이윤경(李潤慶)을 우승지로, 민기(閔箕)를 좌부승지로, 박충원(朴忠元)을 우부승지로, 정유길(鄭惟吉)을 동부승지로, 홍담(洪曇)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윤옥(尹玉)을 전한으로, 우상(禹鏛)을 응교로, 심봉원(沈逢源)을 성균관 사예로, 송찬(宋贊)을 홍문관 부응교로, 한지원(韓智源)을 교리로, 기대항(奇大恒)을 수찬으로, 임내신(任霓臣)과 심전(沈銓)을 부수찬으로, 김귀영(金貴榮)을 박사로, 유순선(柳順善)을 저작(著作)으로, **이택(李澤)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채세영(蔡世英)을 용양위 상호군(龍驤衛上護軍)으로 삼았다.

○以沈光彦爲戶曹參判, 陳復昌爲工曹參判, 具壽聃爲慶尙道觀察使, 元繼儉爲弘文館副提學, 柳智善爲承政院都承旨, 李世璋爲左承旨, 李潤慶爲右承旨, 閔箕爲左副承旨, 朴忠元爲右副承旨, 鄭惟吉爲同副承旨, 洪曇爲弘文館直提學, 尹玉爲典翰, 禹鏛爲應敎, 沈逢源爲成均館司藝, 宋賛爲弘文館副應敎, 韓智源爲校理, 奇大恒爲修撰, 任霓臣·沈銓爲副修撰, 金貴榮爲博士, 柳順善爲著作, 李澤爲南陽府使, 蔡世英爲龍驤衛上護軍.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4월 29일(계해) 3번째기사>

정치/행정

윤옥을 남양도호부사에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이조 판서로, **윤옥(尹玉)을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로 삼았다**.【윤옥은 성품이 사납고 괴팍하였다. 이기(李芑)의 주구(走狗)가 되어 사류(士類)를 모함하여 일망 타진(一網打盡)하였다. 그는 마음씨와 행동이 지극히 형편없는 자로서 갑자기 당상관에 오르자 더욱 교만하였다. **그런 사람을 도호로 맞은 남양(南陽)의 백성들이 유독 무슨 죄인가】**

○以安玹爲崇政大夫吏曹判書, 尹玉爲南陽都護府使,【玉性狠愎. 爲李芑鷹犬, 謀陷士類, 一網打盡. 處心行事, 極爲無狀, 驟陞堂上, 驕傲尤甚. 南陽之民, 獨何罪焉?】
<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윤3월 15일(신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순심을 마치고 돌아온 경기 감사 이몽량에게 백성들의 사정을 묻다

경기 감사 이몽량(李夢亮)이 순심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와 숙배하니, 전교하기를, “열읍 백성들의 사정이 어떠하더냐?” 하였다. 아뢰기를, “**신이 안산(安山)·남양(南陽)·수원(水原)·진위(振威)·양성(陽城)·양지(陽智) 등지를 순심하니,** 금년에는 해변이 한층 더 심하

게 실농(失農)하였고, 안산·남양·수원 등지의 백성은 장차 정처없이 떠돌게까지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나올 날이 박두하여 더욱 염려됩니다. 궤군(櫃軍)의 역사에는 이전부터 기전(畿甸)의 백성들을 차출했었는데, 기전의 기근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으로는 청홍도의 가까운 고을 중 약간 풍년이 든 지역에서도 궤군을 차출하여 그 역사를 돕게 한다면 기내의 백성들이 조금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들과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京畿監司李夢亮, 畢巡入京肅拜, 傳曰: "列邑民事何如?" 啓曰: "臣於安山·南陽·水原·振威·陽城·陽智等處巡審, 則今年海邊, 尤甚失農, 安山·南陽·水原等處, 百姓將至流離. 華使出來迫近, 尤爲可慮. 櫃軍之役, 自前差出畿甸之民, 而畿甸之飢饉如此, 計不知所出. 臣意於淸洪近邑稍稔之地, 亦令差出櫃軍, 以助其役, 則畿內之民, 庶幾得蒙一分之惠矣. 請與大臣, 商確以定何如?" 傳曰: "當與大臣議定."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11월 19일(무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권응창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강욱(姜昱)을 장례원 판결사로, 신사헌(愼思獻)을 성균관 사예로, 송하(宋賀)를 시강원 필선으로, 이인(李訒)을 문학으로, 임윤(任尹)【음흉하고 간사하며 비루하고 인색하다】을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최응룡(崔應龍)【자품은 순후(淳厚)하지만 지조를 지키지 못하였다】을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권응창(權應昌)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辛酉/以姜昱爲掌隷院判決事, 愼思獻爲成均館司藝, 宋賀爲侍講院弼善, 李訒爲文學, 任尹【險詭不遜, 且多鄙吝】爲黃州牧使, 崔應龍【質實淳厚, 但不能守靜】爲義州牧使, 權應昌爲**南陽府使**.

<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10월 5일(신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량이 남양의 외직에 보임되다

(…) ○전에 판결사(判決事)가 되었을 때, 그 아우 이양(李樑)이 소송하는 사람들의 종을 많이 받고서 그릇 판결하도록 하였으나, 집은 고집을 부리며 따르지 않았으므로, **양이 전장(銓長)이 되어 남양(南陽)의 외직(外職)으로 보임(補任)하였으니 이는 칭찬할 만하다】**을 장례원 판결사로, 김경원(金慶元)을 홍문관 부교리로, 김명원(金命元)을 수찬으로 삼았다.

○(…) 前爲判決事時, 其弟樑, 多受訟者之臧獲, 使之枉決, 楫也牢執不從, 樑銓長, 出補**南陽**. 此則可稱】爲掌隷院判決事, 金慶元爲弘文館副校理, 金命元爲修撰.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2월 1일(갑진) 3번째기사>

정치/행정

박충원·이양원·박소립·이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충원(朴忠元)을 형조 판서로, 이양원(李陽元)을 형조 참판으로, 박소립(朴素立)을 도승지로, 이담(李湛)을 좌승지로, 유중영(柳仲郢)을 우부승지로, 정유일(鄭惟一)을 직제학으로, 이창(李昌)을 군기정(軍器正)으로, 우성전(禹性傳)을 부수찬으로, **민충원(閔忠元)을 남양 부사로 삼았다.**

○辛亥/以朴忠元爲刑曹判書, 李陽元爲刑曹參判, 朴素立爲都承旨, 李湛爲左承旨, 柳仲郢爲右副承旨, 鄭惟一爲直提學, 李昌爲軍器正, 禹性傳爲副修撰, 閔忠元爲南陽府使.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11월 29일(신해) 1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부사 민충원을 장령에 제수하다

구봉령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이해수(李海壽)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남양 부사(南陽府使) 민충원(閔忠元)을 장령으로,** 윤승길(尹承吉)을 지평으로, 정원상(鄭元祥)을 충청 수사(忠淸水使)로 삼았다.

○丙辰/以具鳳齡爲副提學, 李海壽爲同副承旨, 以南陽府使閔忠元爲掌令, 尹承吉爲持平, 鄭元祥爲忠淸水使.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9일(병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장령 민충원이 남양에서 부름을 받고 돌아 오다

장령 민충원(閔忠元)이 남양(南陽)에서 부름을 받고 돌아왔다.

○掌令閔忠元, 自南陽召還.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8월 16일(계해) 3번째기사>

정치/행정

헌부가 남양부사 유몽룡이 술에 빠져 직무를 다스리지 않으니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우부승지(右副承旨) 황정식은 인물이 범용하고 명론(名論)이 평소 가벼우니, 체직하소서. **남양 부사(南陽府使) 유몽룡(柳夢龍)은 술에 빠져 직무를 다스리지 않으니,** 파직하소서."

○甲申/司憲府啓曰: "右副承旨黃廷式, 人物凡庸, 名論素輕, 請遞. 南陽府使柳夢龍, 沈酒不治, 請罷職."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29일(갑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가 남양부사 김호침이 기복한 사람으로 탐학을 일삼으니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난리가 발생한 이래 관작(官爵)이 매우 외람되었으므로 식견있는 사람들이 그윽이 한탄해 온 지 오래입니다. (…) **남양 부사(南陽府使) 김호침(金好忱)은 기복(起復)한 사람으로**, 스스로 벼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알고는 멋대로 탐학을 부려 재물을 긁어 모아 윗사람을 섬기는 자본으로 삼는가 하면, 백성의 결세(結稅)와 부역은 오로지 아랫사람들의 손에 맡긴 채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승지를 개정하는 일은 간원에 답한 것과 같다."
하였다. 양사(兩司)가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司憲府啓曰: "國家自喪亂以來, 官爵太濫, 有識之竊歎久矣. (…) 南陽府使金好忱, 以起(服)〔復〕之人, 自知在官不久, 恣行貪虐, 侵魚割剝, 以爲善事之資. 民結賦役, 專委下輩之手, 漫不省爲何事. 請命罷職." 答曰: "竝依啓. 承旨改正事, 答院同." 兩司累啓, 不允.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18일(무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유성룡이 경기도에서 보리를 파종한 곳이 통진과 남양이라고 아뢰다

(…)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에 물어보았는데 호조에서는 알지도 못하니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전(畿甸)에 보리를 심은 곳이 있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통진(通津)·남양(南陽)은 많이 경종(耕種)하였으나 고양(高陽)·양주(楊州)·파주(坡州) 사이는 한 군데도 경종한 곳이 없습니다.”**

하고, 박충간(朴忠侃)이 아뢰기를,

“부평 부사(富平府使) 기훈(奇勳)이 학정(虐政)을 많이 하므로 백성들이 살 수 없어 경종(耕種)할 생각도 않는다 합니다.”

하고, 최흥원(崔興源)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는 종자를 육운(陸運)인데도 불구하고 운반하여 갔는데, 황해도는 통진(通津)에서 조운(漕運)하면 한 번의 조수로 운반할 수 있는데도 계속 운반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책임이 방백(方伯)에게 있긴 하지만 어찌하여 조정에서는 조처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최흥원이 아뢰기를, “한식(寒食)이 이미 가까와 경종 철이 늦어졌으니 보리 종자를 아무리 독촉하여 운반하더라도 제때에 미칠 수 없습니다. 수령이 잘 다스리는 곳에는 흩어진 백성이 소생하는 법인데 장단 부사(長湍府使) 한덕원(韓德遠)은 흩어진 백성을 제대로 안집(安集)시켰다 합니다.”

하고, 정곤수(鄭崑壽)가 아뢰기를, “봉산 군수(鳳山郡守)를 만포 첨사(滿浦僉使)로 옮겨 제수하였는데 백성이 이 군수를 잃는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어진 수령을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 만약 김종득(金宗得)이 아니면 봉산은 필시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산(稷山)이 안정된 것은 모두 박의(朴宜)의 공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였다. 초경(初更)에 파하고 나갔다.

○(…) 柳成龍曰: “臣問于戶曹, 則戶曹不知, 至爲非矣.” 上曰: “畿甸有種麥之處乎?” 柳成龍曰: 通津·南陽多耕, 高陽·楊州·坡州之間, 無一處耕種.” 朴忠侃曰: “富平府使奇勳, 多行虐政, 民不聊生, 無意耕種云.” 崔興源曰: “平安監司陸運種子, 而亦能移運, 黃海道則漕運於通津, 可以一潮得達, 而不爲繼運矣.” 上曰: “責在方伯, 朝廷何不處置?” 崔興源曰: “寒食已近, 耕種節晩, 牟種今雖督運, 無及矣. 守令善治者, 流民蘇息. 長湍府使韓德遠, 能安集流民云.” 鄭崑壽曰: 鳳山郡守移授滿浦僉使, 民失此守, 則無以爲生.” 上曰: “然.” (沈壽喜)〔沈喜壽〕曰: “賢守令遷動甚重. 若非金宗得, 鳳山必不支, 稷山之保合, 皆稱朴宜之功也.” 初更罷黜.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을묘) 3번째기사>

정치/행정

사간원이 훈련도감 낭천으로 남양을 왕래한 신현을 도태시키라고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용천 군수(龍川郡守) 남유(南瑜)는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하여 누차 중한 논박을 입었으므로 물론이 오래 갈수록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본읍은 바로 서쪽 지방에서 큰 고을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다시 목민관으로 삼을 수 없으니, 체차시키소서. 회령 판관(會寧判官) 이눌(李訥)은 인물이 용렬하여 중요한 지방에 합당

치 않으니, 체차시키소서. 사과(司果) 신현(申晛)은 유생 때 부터 처신이 비루하여 사람들이 모두 타매(唾罵)하였는데, **훈련 도감 낭청(訓鍊都監郎廳)이 되자 폐단을 여러 가지로 끼쳤고 남양(南陽) 땅을 왕래함에 이르러서는 마음대로 도감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극도로 범람한 짓을 하였으니,** 도태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司諫院啓曰: "龍川郡守南瑜, 前爲守令時, 多行汎濫之事, 累被重駁, 物論久而愈憤. 本邑, 乃西方巨邑, 如此之人, 今不可復爲臨民之官. 請命遞差. 會寧判官李訥, 人物庸劣, 不合關防重地. 請命遞差. 司果申晛, 自儒冠時, 行已鄙汚, 人皆唾罵. 及爲訓鍊都監郎廳, 貽弊多端, 至於往來**南陽地**, 擅率都監下人, 極爲汎濫. 請命汰去." 上從之.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23일(병인) 4번째기사>

정치/행정

노직이 체찰사는 남양과 안산을 향했다가 입성했다고 하다

묘시(卯時)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느 고을을 순찰하고 돌아왔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신이 도체찰사와 광주(廣州)·용진·양주(楊州)·여주·파사성을 지나 신은 먼저 이천(利川)·죽산·안성·양성(陽城)으로 향했다가 수원의 습진처(習陣處)로 모였고 체찰사는 여주로부터 양지(陽智)·용인·진위(振威)를 경유했는데 신은 수군의 일 때문에 먼저 경성으로 돌아오고, **체찰사는 그대로 남양(南陽)·안산(安山)으로 향했다가 입성(入城)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찰(體察)에게 무슨 병이 생겼는가?" (…)

○丙戌/卯正, 上御別殿.(…) 上曰: "卿巡到何邑而回耶?" 盧稷曰: "臣與都體察使, 歷廣州·龍津·楊州·驪州·婆娑城, 臣先向利川·竹山·安城·陽城, 會于水原習陣處, 體察自驪州, 經陽智·龍仁·振威, 而臣先以舟師事回京, 體察仍向**南陽**·安山而入城." 上曰: "體察作何病耶?" 盧稷曰: "感寒矣." 上曰: "**南陽**間有海防處, 如何?" (…)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흡을 남양 부사로 삼다

이흡(李洽)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김현도(金玄度)를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윤경(尹暻) 부평 부사(富平府使)로【덕산(德山)에 낙향해 있을 때 재산 증식을 일삼아 백성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향곡을 무단(武斷)하니, 사대부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삼았다.

○以李洽爲**南陽府使**, 金玄度爲海州牧使, 尹暻爲富平府使.【(洛)〔落〕在德山, 以殖貨爲事, 橫占民財, 武斷鄕曲, 縉紳(衙)〔衙〕之】

<선조실록 112권, 선조 32년 윤4월 15일(계사) 3번째기사>

정치/행정

박응인을 남양부사로 삼다

(…) 박응인(朴應仁)을 남양 부사로, 이수(李綏)를 고부 군수로, 민여임(閔汝任)을 함종 현령으로 삼았다.

○(…) 朴應仁爲**南陽府使**, 李綏爲古阜郡守, 閔汝任爲咸從縣令.

<선조실록 117권, 선조 32년 9월 20일(병인) 3번째기사>

정치/행정

박효생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조수익(趙守翼)을 겸 시강원 문학으로, 홍서봉(洪瑞鳳)을 겸 시강원 사서로, 최철견(崔鐵堅)을 승정원 승지로, **박효생(朴孝生)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以趙守翼, 兼侍講院文學, 以洪瑞鳳, 兼侍講院司書, 以崔鐵堅, 爲承政院承旨, 以朴孝生, 爲南陽府使.

<선조실록 128권, 선조 33년 8월 8일(무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응문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김명원(金命元)을 의정부 좌의정으로, 윤승훈(尹承勳)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유근(柳根)을 예조 판서로, 한응인(韓應寅)을 병조 판서로, 성영(成泳)을 한성부 판윤으로, 정사호(鄭賜湖)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송영구(宋英耉)를 사간원 사간으로, 【성품이 본래 고집스러워 처사가 잘못되고 망령되었다】 홍준(洪遵)을 시강원 필선으로, 홍경신(洪慶臣)을 성균관 직강으로, 신지제(申之悌)를 예조 좌랑으로, 이욱(李稶)을 병조 좌랑으로, **조응문(趙應文)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有政, 以金命元爲議政府左議政, 尹承勳爲議政府右議政, 柳根爲禮曹判書, 韓應寅爲兵曹判書, 成泳爲漢城府判尹, 鄭賜湖爲司憲府大司憲, 宋英耉爲司諫院司諫, 【性本固滯, 處事顚妄】 洪遵爲侍講院弼善, 洪慶臣爲成均館直講, 申之悌爲禮曹佐郎, 李稶爲兵曹佐郎, 趙應文爲南陽府使.

<선조실록 137권, 선조 34년 5월 16일(계축) 10번째기사>

정치/행정

안창을 특지로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정탁(鄭琢)을 영중추부사로, 구사맹(具思孟)을 판중추부사로, 민중남(閔中男)을 우부승지로, 윤유기(尹唯幾)를 병조 참지로, 문여(文勵)를 사헌부 집의로, 임연(任兗)을 주서(注書)로, 이기철(李基卨)을 군자감 부정(軍資監副正)으로, 【기설은 고상한 행실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 6품에 탁배(擢拜)되어 여러 고을 수령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어미마저 세상을 뜬 뒤로는 여러 차례 군수·부사에 전임되었으나 일체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서도 나아가지 않고 강촌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벼슬하도록 권하여도 본래의 뜻을 변하려고 하지 않았다】 안창(安昶)을 통천 군수(通川郡守)로 삼았다. 【안창의 아들을 신성군(信城君)의 사위로 삼으려 하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특지로 회양 부사(淮陽府使)를 삼았고, **겨우 두어 달 만에 다시 특지로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옮겨 제수하였다】**

○有政. 鄭琢爲領中樞府事, 具思孟爲判中樞府事, 閔中男爲右副承旨, 尹唯幾爲兵曹參知, 文勵爲司憲府執義, 任兗爲注書, 李基卨爲軍資監副正, 【基卨, 以行高, 聞于一世, 卓拜六品, 歷仕郡守. 早喪嚴父, 惟奉老母, 自其母 卒後, 累遷郡守·府使, 皆不就, 至是, 亦不就, 密寄江村, 儕友勸之仕, 而不欲變其志也】 安昶爲通川郡守. 【昶之子, 將爲信城女壻, 故未幾, 特爲淮陽府使, 僅數月, 又以特旨, 移拜南陽】

<선조실록 162권, 선조 36년 5월 7일(임술) 2번째기사>

정치/행정

회양 부사 안창의 성혼날이 가까왔으니 가까운 남양으로 제수하라고 명하다

비망기를 내렸다. “회양 부사(淮陽府使) 안창(安昶)은 성혼(成婚)할 날이 멀지 않으니, 가까운 남양(南陽)으로 옮겨 제수하고, 그 후임자를 차출하라.” 【왕자군(王子君)인 신성군(信城君)의 딸이 장차 안창의 며느리가 될 것이므로, 이 명이 있었다. 제배(除拜)는 국가의 큰 권한이고 신성군은 한낱 대부(大夫)의 집인데, 어찌 대부의 집을 위하여 사사로이 국가의 벼슬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안창이 태연히 명을 받은 것은 말할 가치도 없지만, 대성(臺省)이 임금의 비정(秕政)에 대해 한 마디도 간(諫)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으로 하여금 날로 더욱 자용(自用)하는 잘못이 있게 만들었으니, 세도(世道)는 말할 만한 것이 없다 하겠다】

○備忘記曰: “淮陽府使安昶, 成婚之期不遠, 近道南陽移授, 其代差出.” 【王子君信城君之女, 將爲昶之子婦, 故有是命. 夫除拜, 國家之大柄也, 信城, 一大夫之家也. 豈可爲大夫之家私, 紊國家之官爵乎? 昶之晏然拜命, 不足道也, 臺省無一言諫上之疵政, 馴致君德自用之日甚, 世道無可言者矣】

<선조실록 167권, 선조 36년 10월 11일(계사) 2번째기사>

정치/행정

안창을 남양 부사로 삼다

이경함(李慶涵)을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안창(安昶)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유시회(柳時會)를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삼았다.

○以李慶涵爲星州牧使, 安昶爲南陽府使, 柳時會爲淮陽府使.

<선조실록 167권, 선조 36년 10월 11일(계사) 3번째기사>

정치/행정

간원에서 남양 부사 안창을 탄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안창(安昶)은 정사를 하리(下吏)에게 맡겼으므로 호령이 전도되었고 게다가 화기 도감(火器都監)에서 분정(分定)한 물건을 민간에서 남징(濫徵)함으로써 온 경내가 원망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諫院啓曰: “南陽府使安昶, 政委下吏, 號令顚倒, 加以火器都監分定之物, 濫徵於民間, 闔境怨咨, 請命罷職. (…)” 答曰: “依啓.”

<선조실록 192권, 선조 38년 10월 25일(병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정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송언신(宋言愼)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정창연(鄭昌衍)을 지중추부사로, 윤방(尹昉)을 병조참판으로, 신흠(申欽)을 승정원 도승지로, 홍창세(洪昌世)를 충청 수사로, 조수준(趙守準)을 봉상시 정으로, 채경선(蔡慶先)을 홍문관 수찬으로, 박안현(朴顔賢)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기협(奇協)을 홍문관 박사로, 조정(趙挺)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정섭(鄭燮)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허적(許磩)을 영천 군수(永川郡守)로, 원유남(元裕男)을 창성 부사(昌城府使)로, 윤조원(尹調元)을 예조 좌랑으로, 정조(鄭造)를 호조 좌랑으로 삼았다.

○以宋言愼爲議政府左參贊, 鄭昌衍爲知中樞府事, 尹昉爲兵曹參判, 申欽爲承政院都承旨, 洪昌世爲忠淸水使, 趙守準爲奉常寺正, 蔡慶先爲弘文館修撰, 朴顔賢爲弘文館副修撰, 奇恊爲弘文館博士, 趙挺爲南陽府使, 鄭燮爲楊州牧使, 許楠爲永川郡守, 元裕男爲昌城府使, 尹調元爲禮曹佐郎, 鄭造爲戶曹佐郎.
<선조실록 192권, 선조 38년 10월 28일(기사) 3번째기사>

정치/행정

헌부에서 남양부사 조정 등 관기를 데려다가 거느린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대략 신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판윤 윤방(尹昉), 좌윤 한덕원(韓德遠), 우윤 남근(南瑾), 행 호군 정광적(鄭光績), 경상 감사 유영순(柳永詢), 형조 참판 남이신(南以信), **남양 부사(南陽府使) 조정(趙挺)**, 우승지 이선복(李善復), 행 호군 유간(柳澗), 행 대호군 이병(李覽), 행 부호군 최렴(崔濂), 행 사과 이경린(李景麟), 행 부사과 김협(金協), 행 부호군 김시헌(金時獻), 전 부사 정문부(鄭文孚), 전 현감 윤의신(尹宜臣), 사간 이호의(李好義), 전적 이경기(李慶禥), 사성 이정험(李廷馦), 전 군수 이유연(李幼淵), 전 목사 황낙(黃洛), 전 군수 이빈(李穦)·임취정(任就正), 전 정랑 백대형(白大珩), 옥천 군수(沃川郡守) 유덕신(柳德新), 귀후 별제(歸厚別提) 이철광(李哲光), 송라 찰방(松羅察訪) 이박(李博), 양림도정(楊林都正) 이형윤(李亨胤), 석양 정 이정(石陽正李霆), 단성 부수(丹城副守) 이진(李鎭)은 모두 재상·벼슬아치·종실의 사람으로 서북 지방의 관기를 법을 어기고 데려다가 거느리니, 매우 그릅니다. 모두 먼저 파직시킨 다음 추고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임해군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憲府啓曰: "(…) 姑以臣等所聞者言之, 判尹尹昉·左尹韓德遠·右尹南瑾·行護軍鄭光績·慶尙監司柳永詢·刑曹參判南以信·**南陽府使**趙挺·右承旨李善復·行護軍柳澗·行大護軍李覽·行副護軍崔濂·行司果李景麟·行副司果金礼·行副護軍金時獻·前府使鄭文孚·前縣監尹宜臣·司諫李好義·典籍李慶禥·司成李廷馦·前郡守李幼淵·前牧使黃洛·前郡守李穦·任就正·前正郎白大珩·沃川郡守柳德新·歸厚別提李哲光·松羅察訪李博·楊林都正亨胤·石陽正霆·丹城副守鐵［鎭］, 俱以宰相·朝官·宗室之人, 西北官物, 冒法率畜, 極爲無謂. 請竝命先罷後推. (…)" 答曰: "臨海君不允. 竝推考."
<선조실록 202권, 선조 39년 8월 27일(계해) 2번째기사>

정치/행정

간원에서 남양부사 조정 등 관기를 데려다가 거느린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임해군 이진을 파직하는 일로 누차 상께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민망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사가에서 사람을 구타하고 노비와 재물을 빼앗으며, 나라의 정당한 공물을 약탈하고 사리에 어긋난 빚을 징수하며, 종을 놓아 못된 일을 하도록 하는 등 법을 무시하고 비리를 자행하므로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공론이 날로 격심해집니다. 파직하소서.
양계의 관기를 내지(內地)로 데려올 수 없는 것은 조종조에서 법을 세운 뜻이 엄격한데도 근래에 나라의 법이 해이해져 유식한 사대부들이 법을 무시하고 데려다가 거느리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거듭 밝혀 쇄환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원적(原籍)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지못했으니, 물정이 오래 전부터 미편해 하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해당된 사

람을 들어 말하면, 좌찬성 유근(柳根), 판윤 윤방, 형조 참판 남이신, 행 호군 정광적, 우윤 남근, 경상 감사 유영순, **남양 부사 조정**, 전 부사 정문부, 우승지 이선복, 행 사정 이경린, 행 부호군 유간, 양림 도정 이형윤, 석양 정 이정, 덕신 정 이난수(德信正李鸞壽), 단성 부수 이진, 문신 겸 선전관 이유연(李幼淵), 옥천 군수 유덕신, 전 군수 이빈, 풍기 군수(豊基郡守) 홍익준(洪翼俊), 전적 이경기, 전 정랑 백대형 등은 양계의 관기를 마음대로 데려다가 거느렸습니다. 그 중에 유근과 단성 부수 이진은 사비(私婢)나 양녀(良女)를 거느렸으며, 양림 도정 이형윤은 품관(品官)의 딸을 아내로 삼아 데리고 왔으니, 이들이 관기는 아니지만 국법을 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소서.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은 해사로 하여금 일일이 쇄환하게 하고 이밖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와 사서인(士庶人)이 몰래 데려다 사는 경우도 이뿐이 아닐 것이니, 빠짐없이 적발하여 쇄환하고 해당하는 율에 과죄(科罪)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해군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諫院啓曰: "臣等將臨海君珒論罷事, 累瀆天聽, 兪音尙閟, 臣等不勝悶鬱焉. 私門打傷, 橫奪民財, 攘刼惟正之供, 侵徵違, 理之債, 縱奴肆暴, 蔑法恣淫, 擧國人心, 莫不憤鬱, 公論日以益激, 請命罷職. 兩界官物, 不得率來內地, 祖宗朝立法之意, 至嚴且重. 近來邦憲解弛, 有識士大夫, 冒法率畜者甚多. 國家雖申明刷還, 而未聞盡還原籍, 物情之未便久矣. 姑擧其現出於所聞者言之, 左贊成柳根·判尹尹昉·刑曹參判南以信·行護軍鄭光績·右尹南瑾·慶尙監司柳永詢·**南陽府使**趙挺·前府使鄭文孚·右承旨李善復·行司正李景麟·行副護軍柳澗·楊林都正亨胤·石陽正霆·德信正鸞壽·丹城副守鎭·文臣兼宣傳官李幼淵·沃川郡守柳德新·前郡守李馥·豐基郡守洪翼俊·典籍李慶禧·前正郎白大珩等, 兩界人物, 皆任意率畜. 而其中柳根與鎭, 或畜私婢; 或畜良女, 亨胤, 品官女子, 作妻率來, 此則雖非官物, 其犯法則一也. 請竝命先罷後推, 其所率人物, 令該司一一刷還. 此外未及聞見者及士庶之潛爲率居者, 必不止此, 亦令無遺摘發刷還, 各當律科罪施行." 答曰: "臨海君不允. 竝推考."
<선조실록 202권, 선조 39년 8월 27일(계해) 3번째기사>

정치/행정
조명욱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임성지(任性之)를 헌납으로, 이홍엽(李弘燁)을 부교리로, 안응형(安應亨)을 황해 감사로, 〈**조명욱(曺明勗)을 남양 부사로**,〉 정준(鄭遵)을 사서로, 오여온(吳汝穩)을 겸사서로, 최관(崔瓘)을 분병조 참판으로, 유몽인(柳夢寅)을 동지성균으로 삼았다.
○以任性之爲獻納, 李弘燁爲副校理, 安應亨爲黃海監司, (曺明勗爲**南陽府使**,) 鄭遵爲司書, (吳汝穩)［吳汝穩］爲兼司書, 崔瓘爲分兵曹參判, 柳夢寅爲同知成均.
<광해군일기 94권, 광해 7년(1615) 윤8월 29일(계유) 5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김지남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 **김지남(金止男)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 金止男爲**南陽府使**.(…)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 10년(1618) 6월 8일(을축) 12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정광성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 정광성(鄭廣成)을 남양 부사(南陽府使) 삼았다.(…)

○(…)鄭廣成(爲)南陽府使(…)

<광해군일기 163권, 광해 13년(1621) 3월 27일(기사) 1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특별히 허임을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허임(許任)을 특별히 제수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허임은 악공 허억봉(許億逢)의 아들인데, 난리 때에 사사로이 덕을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

○壬戌四月初六日辛未有政. 特除許任爲南陽府使【任, 伶工億逢之子也. 有私恩於亂離時, 有是命】(…)

<광해군일기 176권, 광해 14년(1622) 4월 6일(신미) 1번째기사>

정치/행정

공청 감사 정문익이 남양의 노모를 뵙게 해 줄 것을 청하다

공청 감사 정문익(鄭文翼)이 상소하여 노모를 뵙게 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문익에게는 남양(南陽)에 80여 세 된 노모가 있었는데, 이곳은 바로 공청도로 가는 길 중에 돌아가는 길목이었다. 왕명을 받든 신하는 곧바로 가는 길을 놔두고 사사로이 어미를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요청했던 것인데, 상은 답하기를 "경은 원대로 문안하여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다. 문익이 박난영(朴蘭英)과 더불어 오랑캐에게 갔다 온 뒤로 상이 이같이 각별하게 대우하였다.

○公淸監司鄭文翼上疏, 請見老母, 上從之. 文翼有母, 年八十餘, 在南陽地, 此卽往公淸之枉道也. 秉鉞之臣, 不得捨直路, 而私見其母, 故乃敢祈請, 答曰: "卿其依願歸覲, 以慰倚閭之望." 自文翼與朴蘭英往來虜中, 上之眷遇如此.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1628) 11월 16일(계유) 3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부사 윤지를 좌부승지에 제수하다

강석기(姜碩期)를 도승지로, 이소한(李昭漢)을 부응교로, 신천익(愼天翊)을 수찬으로,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지(尹墀)를 좌부승지로 삼았다.

○以姜碩期爲都承旨, 李昭漢爲副應敎, 愼天翊爲修撰, 南陽府使尹墀爲左副承旨.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1630) 8월 1일(무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윤계를 남양부사에 제수하다

(…) 윤계(尹棨)를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 尹棨爲南陽府使.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1636) 2월 9일(갑신) 3번째기사>

정치/행정

문책을 당했던 남양부사 신경진을 춘천 부사에 추천한 죄를 추고하게 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춘천(春川)은 인구가 많고 지역도 넓은데다가 또 방어사(防禦使)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된 부사(府使) 신경진(申景珍)은 일찍이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있으면서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문책을 당한 사람입니다.** 본국이 정조(政曹)에 신칙하여 특별히 잘 고르도록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처럼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주의(注擬)하여 임명했으니, 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여 깨우치고 채찍질하는 터전으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備局啓曰: "春川物衆地大, 且兼防禦使, 而新授府使申景珍, 曾宰**南陽**, 以不治見敗. 本局之申飭政曹, 另加精擇, 非至一再, 而擬任匪人, 乃至於此, 請該曹堂上·郎廳推考, 以爲警策之地." 上從之.

<인조실록 39권, 인조 17년(1639) 7월 7일(임술) 2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 현감 심구를 직접 불러 유시하고 임지로 보내다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 이만(李曼)과 **남양 현감(南陽縣監) 심구(沈玖)**가 임지로 떠나면서 하직 인사를 드리니 직접 불러보고 유시하여 보냈다.

○江華府留守李曼·**南陽縣監**沈玖辭朝, 面諭以遣之.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1651) 7월 25일(경자) 4번째기사>

정치/행정

헌납 홍주삼 등이 특명으로 남양부사에서 파주 목사로 제수된 의관 정후계의 체차를 청하다

헌납 홍주삼(洪柱三) 등이 아뢰기를, "근래 의관(醫官)들까지 읍재(邑宰)로 뒤섞어 제수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청명한 조정의 일대 폐정(弊政)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후계(鄭後啓)를 처음에 특명으로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했다가 곧바로 정청(政廳)이 아룀에 따라 파주 목사(坡州牧使)로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주(州)라 하든 부(府)라 하든 그 경중은 실로 같은 것이고 그의 자급(資級)이 걸맞지 않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로 옮겨 제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체(政體)로 헤아려 보건대 훼손되는 점이 큽니다. 그리고 1품(品)의 자급을 수령으로 차임하는 규정이 일찍이 있지 않았는데 격외로 창시하는 것은 실로 뒤 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獻納洪柱三等啓曰: "近者醫官之混授邑宰, 誠是淸朝之一大弊政也. 今此鄭後啓初有特除**南陽**之命, 旋因政廳之啓, 換授坡州牧使. 州府之號, 輕重實同, 資級不稱, 彼此無間, 則旣知不當於府使, 而何可移授牧使乎? 揆以政體, 虧損大矣. 且以一品資級, 曾未有差除守令之規, 格外創始, 實關後弊. 請改差." 上不從.

<현종실록 7권, 현종 5년(1664) 1월 12일(을해) 2번째기사>

정치/행정

동지성균관사 김좌명과 유생들을 진정시킬 방법에 대해 의논하다

동지성균관사 김좌명(金佐明)이 문묘에 나아가 분향하고 돌아와서 면대를 청하니, 상이 희정당에서 인견하였다. (…) 태화가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정(李晶)은 파주 목사(坡州牧使)로 있다가 남양으로 옮겨 제수되었는데, 파주에서의 임기가 만료될 시기에 남양으로 옮겨 제수되었기 때문에 전 벼슬 기간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머지않아 체직되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남양의 백성들이 매우 근심한다고 하니 그대로 재임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좌명이 아뢰기를, "햇수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자연 속히 체직될 것이니, 햇수를 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바로 전부터 잘 다스리는 수령은 3년을 한정한 것이니, 재임시켜야 할 것이다." 하였다.
○壬戌朔/同知成均館事金佐明, 詣文廟焚香, 還請對, 上引見於熙政堂, (…) 太和曰: "南陽府使李晶, 以坡州牧使, 移拜南陽, 而坡州瓜限將滿, 移拜南陽, 故通計前仕, 則近當遞還. 南陽之民, 深以爲悶云, 仍任似宜." 佐明曰: "不限年, 則自當速遞, 宜限年." 上曰: "此乃自前善治者, 限三年仍任可也."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1664) 5월 1일(임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영의정 정태화가 남양 현감 민시중의 상소에 따라 군관 송후경 등의 증직 및 복호를 청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남양 현감(南陽縣監) 민시중(閔蓍重)이 상소 끝에 언급하기를 '병자년 난리에 부사 윤계(尹棨)가 오랑캐를 꾸짖다가 죽자, 당시 수하에 있던 병사와 장교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으나 오직 군관(軍官) 송후경(宋後璟)과 현리(縣吏) 김택(金澤)·홍인언(洪仁彦)·홍신(洪信), 관노(官奴) 명길(命吉) 등 및 그의 가노(家奴) 1인이 끝까지 서로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중 후경은 난도질을 당하고도 목숨이 끊기지 않아 지금 생존해 있으니 마땅히 국가에서 포장하는 뜻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절의가 가상합니다. 민시중의 상소에 따라 증직·복호 등의 일을 해조로 하여금 아뢰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좌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송후경은 해조로 하여금 수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에게 적당한 벼슬을 제수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兪瑒)의 상소에 '본부의 속오군은 누차 증가시켜서 현재 6천여 명이나 되지만 그중에는 노약자나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도 많으니, 만일 수를 줄이고 가려 뽑는다면 정예병(精銳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6천 명 중에 2천 명을 감하여 노약자는 모두 면제해 주고 정예하고 건장한 자만을 뽑아 내도록 하되 마군(馬軍)은 10초(哨)로 한정하고 보군(步軍)은 30초로 한정하여 이후부터는 해마다 자리가 비게 될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다시는 한 사람이라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巳時, 上引見大臣·備局諸臣. 領相鄭太和曰: "南陽縣監閔蓍重疏本末端有云: '當丙子之亂, 府使尹棨罵賊而死, 當時手下兵校, 無不散潰, 獨軍官宋後璟·縣吏金澤·洪仁彦·洪信, 官奴命吉等及其家奴一人, 終始相守, 以身殉之. 其中後璟, 亂斫之中, 喉息未絶, 至今生存, 宜示褒奬之意' 云, 此人等節義可尙. 依蓍重疏, 贈職復戶等事, 令該曹稟處何如." 上從之. 左相洪命夏曰: "後璟則令該曹收用似宜矣." 上曰: "相當職除授, 以爲激勸之地." 太和曰: "水原府使兪瑒疏言: '本府束伍, 累次增加, 至於六千餘人, 而其中老弱逃故亦多, 若減數抄

擇, 則可爲精鍊’ 云, 將若之何?” 上曰: “六千人內, 減二千, 盡除老弱, 抄出精壯, 而馬軍, 則限十哨, 步軍, 則限三十哨, 而此後, 則每年只隨闕充定而已, 更無得加一人·減一人.”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1666) 11월 6일(임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특별히 의관 정후계를 남양부사에 제수하는 것에 대한 논의
도목 대정을 실시하였다. (…) **상이 의관 정후계(鄭後啓)를 특별히 제수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수령은 백성을 친애하는 관직이므로 국조(國朝)의 고사(古事)에 의관 잡류에게 맡긴 경우가 전혀 없었다. 인조 때 유후성(柳後聖)이 사족(士族)으로 국의(國醫)가 되어 처음으로 기읍(畿邑)의 수령이 되어 6, 7읍을 역임하였고, 그뒤 정후계·윤후익(尹後益)·이동형(李東馨)·권유(權愉)·최유태(崔惟泰)·최성임(崔聖任)·김만직(金萬直)과 같은 자들이 모두 금중(禁中)에 거처하면서 환시와 서로 결탁하여 무시로 출입하며 아첨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궁중의 상가(賞加)가 한계와 절도가 없이 기읍을 두루 거쳐 혹은 3, 4읍에 이르렀으니 혼잡이 극심하다 하겠다.
이조가 아뢰기를, “**남양(南陽)은 기보(畿輔)의 요충지입니다.** 또 겸영장(兼營將)을 정후계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후계의 관질은 숭품(崇品)인데 수령에 제배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듣지 않다가 그뒤에 정원이 아룀으로 인하여 파주(坡州)로 바꾸어 차임하였다. 대간도 논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했다.
○爲都目大政. 以李一相爲大司憲, 李端相爲司諫, 姜鎬爲掌令, 李世長爲檢閱, 李慶果爲持平, 趙世煥爲正言, 李慶億爲副提學, 閔維重爲副應敎, 兪棨爲吏曹參判, 洪處亮爲大司諫, 洪柱三爲獻納, 鄭載嵩爲正言, 李斗鎭爲忠淸兵使. 上特除醫官鄭後啓爲南陽府使. 守令爲親民之官, 國朝故事, 絶無以醫官雜流處之者. 仁祖時, 柳後聖以士族爲國醫, 始爲畿邑守令, 歷六七邑, 其後如〈鄭〉後啓·尹後益·李東馨·權愉·崔惟泰·崔聖任·金萬直等, 皆昵處禁中, 交結宦寺, 出入無時, 便佞取倖. 中批賞加, 無有限節, 歷踐畿邑, 或至三四, 混雜極矣. 吏曹以爲; “南陽畿輔重地. 且兼營將, 不可授後啓. 且後啓秩是崇品, 除拜守令, 曾所未有.” 上不聽, 其後因政院啓, 換差坡州. 臺諫亦論執, 而未得請.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1664) 1월 9일(임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정태화가 남양부사 이정의 잉임을 청하다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김좌명(金佐明)이 문묘에 분향(焚香)을 하고 돌아와서 대궐에 나아와 면대를 청하니, 상이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 태화가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정(李晶)은 파주 목사(坡州牧使)를 하다가 남양에 옮겨져 제수되었는데, 파주 목사로서의 재임 기간을 남양 부사의 임기에 합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체직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치를 잘하여 남양의 백성들이 그가 떠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고 하니, 잉임시키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잉임을 시키려면 연한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3년을 연한으로 하여 잉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朔日壬戌/同知成均館事金佐明, 文廟焚香後, 還詣闕請對, 上引見於熙政堂. (…) 太和曰: “南陽府使李晶, 以坡州牧使, 移拜南陽, 而坡州瓜限, 通計於南陽, 故近當遞還. 而南陽之民,

以其善治. 故深惜其去云, 仍任似當矣." 佐明曰: "若仍任則不可不限年矣." 上曰: "限三年仍任." (…)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1664) 5월 1일(임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주인을 살해한 노비들을 복주하고 남양을 현으로 강등하다

주인을 살해한 얼용(孼龍)·생남(生男)·덕비(德非) 등이 복주되었다.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 하여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회(李檜)와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지익(李之翼)을 파직하였으며**, **남양은 강등(降等)하여 현(縣)으로 삼고**, 광주는 능침이 있는 곳이라 하여 강등하지 않았다.

○弑主罪人孼龍·生男·德非等伏誅. 以罪人等時居, 罷廣州府尹李檜·南陽府使李之翼, 南陽降爲縣, 廣州以陵寢所在, 不降.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1665) 5월 17일(임인) 4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부를 현으로 강등하다

남양부(南陽府)를 현(縣)으로 강등하고 청양현(靑陽縣)을 혁파하였는데, 10년이 차서 모두 복구시켰다.

○戊辰/南陽府降爲縣, 靑陽縣革罷滿十年, 竝復舊.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5년(1674) 1월 3일(무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부사로 있었던 박태순이 물의 때문에 체직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박태순(朴泰淳)이 물의(物議) 때문에 패초(牌招)를 어기고 체직(遞職)되어 취리(就理)하였다. 박태순은 바로 **박태보(朴泰輔)의 종형(從兄)**이다. 기사년에 박태보가 상장(上章)하던 날 박태순이 새로 홍천 현감(洪川縣監)이 되어 미처 사폐(辭陛)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또한 따라서 참여하였다. 그런데 박태보가 장형(杖刑)을 당하여 죽게 되자, 일을 같이했던 다른 여러 사람들은 모두 벼슬을 버렸으나, 유독 **박태순**만은 의기양양하게 홍천읍(洪川邑)에 부임하였다. 뒤에는 또 장희재(張希載)를 아첨하여 섬겼고, 그가 정권을 잡자, 여러 소인들이 누차 제수한 벼슬을 모두 사양하지 않았으며, **춘방(春坊)의 벼슬에까지 임명되었다. 최후에는 외직으로 나가서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는데, 장희재가 총융사(摠戎使)로서 순찰하는 길에 남양부에 들르니**, 박태순이 동헌(東軒)【바로 수재(守宰)가 사무를 보는 곳이다】에서 맞아들이며 사도(使道)【바로 관하(管下)에서 주장(主將)을 지칭하는 호칭이다】라 칭하며 섬기기를 매우 공손히 하였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중에 서로 깊은 정이 곡진하니 장희재의 장교(將校)들까지도 모두 침뱉으며 비루하게 여기었다. 갑술년 초기에 이르러 승지(承旨)로 발탁하자,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정에 만일 격탁 양청(激濁揚淸)의 조처가 있었다면, 이동욱(李東郁)·박태순(朴泰淳)·오도일(吳道一)·유성운(柳成運)·이사상(李師尙)과 같이 권흉(權兇)을 붙좇아 이익이나 탐하며 염치없이 군 자들은 반드시 삭직(削職)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남구만(南九萬)의 무리가 말하기를, "여태까지 주상(主上)께서 비록 큰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하들이 벼슬하지 않을 의리는 없으니, 군(郡)·읍(邑)에서 벼슬살이한 사

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드디어 한결같은 뜻으로 부호(扶護)하니 사론(士論)이 모두 모두 몹시 분개하였다. 대사간 신양(申攘)이 비로소 이 일을 언급하였으나 역시 그 이름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였는데, 박태순이 신양과 같이 시원(試院)에 들어갔다가 신양에게 묻기를,

"영공(令公)의 상소 가운데 있는 '실각 분추(失脚奔趨)' 라는 말이 나를 지적해서 한 말이라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니, 신양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시험(試驗)을 마친 후에 박태순이 부득이 인입(引入)했는데, 이때에 와서 패초(牌招)를 어긴 일로써 체직(遞職)되었다.(…)

○右副承旨朴泰淳, 以物議違牌, 遞職就理. 泰淳卽朴泰輔之從兄也. 當己巳泰輔上章之日, 泰淳新爲洪川縣監, 未及辭陛, 亦隨參焉. 及泰輔杖死, 同事諸人, 無不棄官, 而獨泰淳揚揚赴邑. 後又諂事希載, 及當路, 群奸屢除官, 皆不辭, 至拜春坊官. 最後出爲南陽府使, 希載以摠戎使, 巡過南陽, 泰淳邀入於東軒, 【卽守宰視事之所也】 稱以使道, 【卽管下稱主將之號也】 事之甚恭, 笑語繾綣, 希載將校, 亦皆唾鄙之. 及甲戌初, 擢拜承宣, 論者咸曰: "朝廷如有激揚之擧, 則如李東郁·朴泰淳·吳道一·柳成運·李師尙之趨附權兇, 嗜利無恥者, 必在鋤削之中." 九萬輩以爲: "向來主上, 雖有大過擧, 臣子無不仕之義, 則翺翔郡邑者, 有何罪耶?" 遂一意扶護, 士論咸痛慨之. 大司諫申攘, 始及此事, 而亦不著其名, 泰淳與攘, 同入試院, 問攘曰: "令之疏中失脚奔趨者, 指我而發云, 然耶?" 攘曰: "然矣." 罷試之後, 泰淳不得已引入, 至是違牌遞職.(…)

<숙종실록 28권, 숙종 21년(1695) 5월 11일(임신) 3번째기사>

정치/행정

경기 암행 어사 이정응의 서계에 따라 전 남양부사 윤식을 파직하다

경기 암행 어사(京畿暗行御史) 이정응(李挺膺)이 복명(復命)하니, 분부하기를, "파주 목사(坡州牧使) 정내주(鄭來周)와 음죽 현감(陰竹縣監) 강일규(姜一珪)는 모두 치적(治績)이 칭찬할 만하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잉임(仍任)시키고 이미 체차(遞差)된 사람은 특별히 3품 수령(守令)에 임명하라. 양근 군수(楊根郡守) 심세준(沈世俊)과 **남양(南陽)의 전(前) 부사(府使) 윤식(尹植)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잡아다가 핵문(覈問)하여 죄를 정하고 그들의 천주(薦主)도 파직시키라." 하였는데, 이정응(李挺膺)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이 명(命)이 있었다.

○京畿暗行御史李挺膺復命. 敎曰: "坡州牧使鄭來周·陰竹縣監姜一珪, 治績俱可嘉, 在任者特爲加資仍任, 已遞者, 特除三品守令. 楊根郡守沈世俊·南陽前府使尹植, 先罷其職, 拿覈勘律, 其薦主, 亦罷其職." 因李挺膺之書啓, 有是命.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1725) 5월 11일(무신) 8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가 헌납 채응복을 체차할 것과 남양 부사 정우주를 파직할 것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지평 이응(李膺)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또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우주(鄭宇柱)는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풍문(風聞)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대개 채응복이 대사간 황선(黃璿)에게 논박되게 되자, 상소하여 도리어 정우주가 능(陵)에 행행(幸行) 때를 당해 횃불을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의 돈을 거두었다고 꾸짖었기 때

문이었다.
○憲府【持平李膺】申前啓, 不允. (…) 又啓請南陽府使鄭宇柱, 罷職不敍, 上答曰: "風聞不可盡信." 蓋膺福被論於大司諫黃璿上疏, 反詈宇柱, 當陵幸時, 爲植炬, 收斂民錢故也.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2월 9일(병인) 4번째기사>

정치/행정
응교 이흡을 파견하여 남양·교하 두 고을을 염찰하게 하다
특별히 응교 이흡(李潝)을 파견하여 **남양(南陽)·교하(交河) 두 고을을 염찰(廉察)하게 하였다.**
○特遣應敎李潝, 廉察南陽·交河兩邑.
<영조실록 32권, 영조 8년(1732) 12월 10일(계해) 6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남양부사로 재직했던 신덕하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에서【장령(掌令) 이광식(李光湜)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신덕하(申德夏)는 겉으로는 아첨하고 속으로는 탐욕이 많아서 오로지 침탈(侵奪)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일에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나가 있을 적에는 백성들의 비방이 길에 가득했었고** 상(喪)을 당하여 해직(解職)되어 돌아올 때에는 마군(馬軍)과 말 50여 필(匹)을 조발(調發)하여 미전(米錢)과 어염(魚鹽)을 실어날랐으므로 온 경내(境內)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침뱉고 비루하게 여기고 있으니, 융곤(戎閫)의 직임에 둘 수 없습니다. 신덕하는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
○憲府【掌令李光湜】申前啓, 不允. 又啓言: "慶尙右兵使申德夏外佞內貪, 專事掊克. 曾守南陽, 民謗載路, 及其遭艱解歸也, 調發馬軍馬五十餘匹, 駄載米錢魚鹽, 一境至今唾鄙, 不可置之戎閫之任. 德夏宜罷職不敍." (…) 依啓. (…)
<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1734) 1월 28일(을사) 4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재로가 남양의 유생이 상소한 박세희의 서원에 편액을 철거하지 말 것 등을 말하다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가 병 때문에 면직을 청하였다. 대개 수상(首相) 이광좌(李光佐)와 혐의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 때문에도 고심한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남양(南陽)의 유생(儒生)들이 상소하여 아뢴 박세희(朴世熹)의 서원(書院)은 이미 거듭 설치한 것이 아니니,** 이미 내린 편액(扁額)을 철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左議政金在魯以病乞免, 蓋以與首相李光佐有嫌也. 上曰: "用卿亦苦心, 其勿辭." 在魯言: "南陽儒疏所陳朴世熹書院, 旣非疊設, 不當撤已賜之額." 從之. 在魯又言: "故遺逸趙昱·趙晟, 皆先正趙光祖門人, 學行甚高, 皆入『東國名臣錄』, 宜加褒贈." 上命贈三品職. 在魯又請壬寅誣獄反案曰: "臣非以龍澤·天紀輩爲是也, 只欲去逆案也." 上曰: "李台重則必欲崇奬此輩, 若使故判書金鎭圭在者, 豈有如龍澤者出也? 予亦有權衡, 天下事每忙後錯了, 徐當更議也."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5월 12일(신해) 2번째기사>

정치/행정

어사 이이장이 남양 등을 암행하고 돌아와서 민간의 역질로 사망한 상황을 고하다

경기 어사(京畿御史) 이이장(李彝章)이 김포(金浦)와 남양(南陽)에 암행(暗行)하고 돌아와서 민간(民間)에서 역질(疫疾)로 사망한 상황을 말하니, 임금이 이를 민망히 여기고는 제도(諸道)에 하교하여 조세와 포적(逋糴)을 면제하게 하고 전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지태(尹志泰)와 전 김포 군수(金浦郡守) 이광진(李光進)은 모두 잡아다가 처리하게 하였다.

○京畿御史李彝章暗行金浦·南陽還言民間疾疫死亡之狀, 上悶之, 下敎諸道, 免稅逋糴, 前南陽府使尹志泰·前金浦郡守李光進竝拿處.

<영조실록 70권, 영조 25년(1749) 12월 13일(정해) 5번째기사>

정치/행정

박연이 만든 경쇠의 옥은 남양의 것이다

이조 판서 원경하(元景夏)가 아뢰기를, (…) "영묘조는 우리나라의 제일 으뜸가는 문명(文明)의 기회였기 때문에 도덕과 문장의 선비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예악(禮樂)을 만들고 정비하는 시대라서 백공(百工)의 비상한 기능을 가진 자로 박연(朴堧) 같은 이들도 시대에 응하여 태어났으며 경쇠[磬]를 만드는 옥이나 율(律)을 만드는 기장[黍]이 역시 시대에 응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양(南陽)의 옥과 해주(海州)의 기장도 그때에 나온 것들이다."** 하였다. 원경하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박연은 가슴과 배를 두드리며 음률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들었다." 하였다. (…)

○癸丑/吏曹判書元景夏奏曰: (…) "英廟朝, 乃我朝一元文明之會, 故不但道德·文章之士輩出, 制作禮樂之時, 技藝百工之超常者如朴堧之徒, 應時而出, 造磬之玉·造律之黍, 亦應時而生矣." 上曰: "南陽之玉·海州之黍, 亦其時所生也." 景夏曰: "然矣. 至於朴堧, 則叩胸腹以叶樂律云矣." 上曰: "予亦聞之." (…)

<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1750) 1월 9일(계축) 1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 어사 강필리가 백성들이 먹는 해홍채를 바치다

남양 어사(南陽御史) 강필리가 백성들이 먹는 해홍채(海紅菜)를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것을 먹고 산다니 매우 측은하다." 하고, 봉(封)하여 정원에 두라고 명하였다. 남양 부사 김치귀(金致龜)를 잡아 오도록 명하였는데, 어사의 아룀으로 인한 것이니, 기우제(祈雨祭) 때에 재실(齋室)에서 사사로이 간음(奸淫)했으며, 악형(惡刑)을 가하여 백성들이 많이 이산(離散)한 때문이었다.

○南陽御史姜必履, 進民人所食海紅菜, 上曰: "食此爲生, 甚可惻也." 命封置政院. 命拿致南陽府使金致龜, 因御史所陳, 以其祈雨時, 私奸齋室, 民多離散, 施以惡刑故也.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1762) 7월 14일(갑술) 5번째기사>

정치/행정

영의정 홍봉한이 남양의 예처럼 장단이 영장을 겸하게 하자고 청하다

영의정 홍봉한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 지금 별도로 조치할 것 없이 장단의 옛 영을 파주로 옮겨 설치한 다음 수성장(守城將)을 겸하게 하고 임진과 장산 두 진의 별장을 수성 양 별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상시에는 두 진관(鎭管)을 본주에 예속시키고 유사시에는 본 고을의 수령이 두 진으로 나가 지키면서 강의 동쪽 여러 고을들의 군사를 소집하여 빙 둘러 지키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헛점의 대비가 적절히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견고하게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영구히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오른쪽 여덟 고을을 둘로 나누어서 고양(高陽)·교하(交河)·적성(積城)의 군사는 파주에 예속시키고, 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의 군사는 장단에 예속시키며, **장단은 남양(南陽)의 예처럼 영장(營將)을 겸하게 하고**, 파주는 수원의 규례처럼 이력을 높여주면 군사의 제도가 더욱 갖추어지고 방어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니, 그 나머지 설치할 것들은 편리에 따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 대장 구선행(具善行)과 총융사 구선복(具善復)은 모두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계획이 신과 강론을 거치지 않고도 같았으니, 신의 이 말은 신 혼자만의 견해일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순(下詢)하시고 재량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領議政洪鳳漢上箚, 略曰: "(…) 今不必別爲措置, 使長湍舊營, 移設坡州, 仍兼守城將, 以臨津·長山兩鎭別將, 爲守城兩別將. 平時則兩鎭營屬於本州, 有事則本倅進守於兩鎭, 仍爲招集江以東列邑之軍, 以爲羅絡環守之圖, 則衣袂 之備可謂得宜, 而苞桑之謨, 可以永賴也. 且以畿右八邑, 分而爲二, 高陽·交河·積城之軍, 屬於坡州, 朔寧·麻田·漣川之軍, 屬於長湍, 長湍則仍兼營將如**南陽**之例, 坡州則尊其履歷如水原之規, 軍制益備, 關防益鞏. 其餘制置, 可以從便拮据也. 訓鍊大將具善行, 摠戎使具善復, 俱以主管之人, 其所商度, 與臣不講而同, 臣之此言, 非臣之獨見也. 惟願下詢而裁處焉." (…)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1764) 10월 13일(신묘) 2번째기사>

정치/행정

경기 어사 임득호가 진휼의 일로 남양부사 이방일 등을 포창하다

경기 어사 임득호(林得浩)가 들어와서 진정(賑政)을 삼가지 않은 일로 통진 부사(通津府使) 강백능(姜百能)과 장단 부사(長湍府使) 구세온(具世溫)을 탄핵하여 아뢰었다. 그리고 포창(褒彰)하도록 아뢴 사람으로는 부평 부사(富平府使) 윤심위(尹心緯)가 첫째이고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방일(李邦一)이 그 다음이었다.**

○京畿御史林得浩入來, 以賑政不謹, 劾奏通津府使姜百能·長湍府使具世溫. 褒啓則富平府使尹心緯爲首, **南陽府使**李邦一次之.

<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1773) 2월 3일(임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어사 이덕사가 남양 부사 박규수의 탐오한 정상을 계문하니, 유배하다

어사 이덕사(李德師)가,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규수(朴奎壽)의 탐오(貪汚)한 정상을 계문(啓聞)하였다.** 이날 저녁에 임금이 광통교(廣通橋)에 나아가 군대의 위세를 크게 벌려놓고, 박규수를 회시(回示)하여 백성에게 원망을 산 데 대하여 사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양은 서울로부터 1백여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이 깊도록 잡아오지 못하였다.** 신민(臣民)들이 모두 밤이 깊어가는데 거둥하는 것이 어렵다고 빨리 환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마침내 박규수가 도착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조율(照律)하게 하고 드디어 3천 리 밖에

유배시켰다.
○乙未/御史李德師, 啓聞**南陽府使**朴奎壽貪墨狀. 是夕上御廣通橋, 大張軍威, 將回示奎壽, 以謝民怨. 而**南陽**距京百餘里, 夜深未及拿來, 臣民等皆以侵夜勞動, 亟請還宮, 上從之. 及奎壽來, 命金吾照律, 遂流三千里.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1775) 10월 21일(을미) 1번째기사>

정치/행정
무신의 서용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당하(堂下) 무신(武臣)의 적체됨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족히 화기(和氣)를 해치기에 족하다. 근년 여름과 겨울 대정(大政)때 문득 경첨(經僉) 이하는 차례대로 옮겨 서용하라는 일을 칙유(飭諭)로 거듭 신칙했는데, 전조(銓曹)에서 일찍이 마음을 써서 적체된 것을 소통시키지 않으니, 전조의 일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저 수령은 변장(邊將)과 달라서 먼저 그 사람의 능력 여부를 보아서 하여 반드시 오래된 차례에 따를 것이 없는데, 전조에서는 이로써 입을 놀려댄다. 그 무리들이 이 고항(枯項)에 앉아서 조정의 본의를 빠뜨리어 시행되지 않게 하니,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구근(久勤)의 사례(事例)에는 판관·주부·수문장·부장이 있는데, 매 도목(都目)에서 각 1인씩을 융통하여 천전(遷轉)시키고 무겸(武兼)은 2인을 천전시킨다고 말하는데 이는 변장의 조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래에는 변장과 아울러서 처음부터 숫자에 맞추어 식례(式例)대로 천전시키지 않아 그 무리들의 침체됨이, **양주 파총(楊州把摠)이나 남양 초관(南陽哨官)만도 못하니 되겠는가**? 또 더군다나 그 무리들은 모두 먼 지방의 가난하여 스스로 떨치지 못하는 무리여서 말[斗]의 녹(菉)을 받고자 오래 고생하면서 벼슬을 구했고, 입사(入仕)한 후에도 장복(章服)을 갖추고 면신(免新)하느라 이미 밑천을 기울여 파산하게 되었는데, 마침내는 소득이 한번 불러본 것뿐이니 바라던 바가 아니다. 수위(守衛)하면서 여러 차례 진달하였는데, 이런데도 그 누가 기꺼이 활을 잡아 무예를 닦겠는가? 이제 변장의 자리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건대, 지금에 이르러서 유시하지 않으면 때가 늦게 될까 두렵다. 이번 변장의 현과(見窠)에는 훈련 판관(訓鍊判官)·훈련 주부(訓鍊主簿)·무겸 선전관(武兼宣傳官)·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 자원함에 따라서 의망해 들이라. 앞으로의 도정(都政)에서는 좋은 곳의 자리에는 내삼청(內三廳)및 각영(各營)의 장교(將校) 등을 섞어서 수용(收用)하라." 하였다.
○敎曰: "堂下武臣, 積薪不知爲幾許, 足以干和. 近年夏冬大政, 輒以經僉以下, 次次遷敍事, 飭諭申複, 而銓曹未嘗着意疏滯, 銓曹事誠慨然. 大抵守令, 異於邊將, 先觀其人能否, 未必徒循久次, 銓曹以此藉口, 渠輩坐此枯項, 致使朝家本意, 閟而不施, 可勝歎哉? 久勤事例, 有曰判·主·守·部每都目, 通融各一人遷轉, 武兼二人遷轉云云, 此指邊將調用也. 近來竝與邊將, 而初不準數, 如式遷轉, 渠輩之沈屈, 反不如楊州把摠·**南陽**哨官可乎? 且渠輩俱是遐外貧不自振之類也, 要沾斗祿, 積苦求仕, 及其入仕之後, 備厥章服, 圖得免新, 業已傾資破産, 而畢竟所得一麾, 非所望. 竝與乘障而累陳, 若此而孰肯操弓業武也哉? 今因邊將多窠, 思之及今不諭, 恐致後時, 今番邊將見窠, 以訓鍊判官·主簿武兼宣傳官·部將·守門將, 最久勤人, 從自願擬入. 來頭都政善地窠, 與內三廳及各營將校等, 參錯收用."
<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1784) 4월 21일(을사) 3번째기사>

정치/행정

경기 암행 어사 박제문이 전 남양부사 이승운 등의 다스리지 못한 일에 대해 서계를 올리다

경기 암행 어사 박제문(朴齊聞)이 서계(書啓)를 올려, 장단 전 부사(長湍前府使) 백홍진(白泓鎭), **남양 전 부사(南陽前府使) 이승운(李乘運),** 진위 전 현령 송계근(宋啓根), 연천 현감(漣川縣監) 서유은(徐有殷), 인천 부사(仁川府使) 이현수(李顯綏), 안성 군수(安城郡守) 임희계(任希季), 양천 전 현감(陽川前縣監) 이도명(李度明), 풍덕 부사(豐德府使) 이길회(李吉會), 양천 현감(陽川縣監) 송우연(宋友淵), 포천 전 현감(抱川前縣監) 권용만(權用萬), 교동 전 부사(喬桐前府使) 이복연(李復淵)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또 지평 현감(砥平縣監) 조기복(趙基復), 가평 군수(加平郡守) 남진화(南進和), 고양 군수(高陽郡守) 정연시(鄭淵始)는 치적이 있다고 논하니, 모두 승서(陞敍)의 은전을 시행하게 하였다. 또 별단(別單)에 각 고을의 저치미(儲置米)를 가하(加下)한 것이 그대로 환곡(還穀)의 포흠(逋欠)이 된 폐단과,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향곡(餉穀)에 보인(保人)을 세우는 규례와, 각역(各驛)이 조잔한 실정과, 강도(江都)의 방어가 허술한 염려 등을 개진하였는데,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己未/京畿暗行御史朴齊聞進書啓: "論長湍前府使白泓鎭, **南陽**前府使李乘運, 振威前縣令宋啓根, 漣川縣監徐有殷, 仁川府使李顯綏, 安城郡守任希季, 陽川前縣監李度明, 豐德府使李吉會, 陽川縣監宋友淵, 抱川前縣監權用萬, 喬桐前府使李復淵不治狀, 幷令從輕重勘處, 又論砥平縣監趙基復, 加平郡守南進和, 高陽郡守鄭淵始有治績, 幷施陞敍之典. 別［單］陳各邑儲置加下, 仍作還逋之(弊)［弊］, 北漢餉穀懸保之例, 各驛凋弊之狀, 江都保障虛踈之患, 幷令廟堂. 從長採施.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1822) 6월 17일(기미) 1번째기사>

정치/행정

경기 암행 어사 홍영규의 서계에 따라 전 남양부사 최홍덕 등에게 죄를 주다

경기 암행 어사(京畿暗行御史) 홍영규(洪永圭)를 희정당(熙政堂)에서 불러 보고, 진위 현령(振威縣令) 박장암(朴長馣)·전(前) 양주 목사(楊州牧使) 민영훈(閔永勳)·전 파주 목사(坡州牧使) 민석(閔晳)·**전 남양 부사(南陽府使) 최홍덕(崔弘德)**·전후의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현대(李玄大)·김진연(金晋淵)·부평 부사(富平府使) 조석현(曹錫玄)·음죽 현감(陰竹縣監) 이양조(李亮祚)·인천 부사(仁川府使) 이형원(李衡遠)·전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용재(李容在)·전 양성 현감(陽城縣監) 박내형(朴來亨)**·남양 부사(南陽府使) 최한익(崔漢翼)** 등에게 차등 있게 죄를 주었는데, 어사의 서계(書啓)에 인한 것이었다.

○己丑/召見京畿暗行御史洪永圭于熙政堂, 罪振威縣令朴長馣, 楊州前牧使閔永勳, 坡州前牧使閔晳, **南陽**前府使崔弘德, 長湍前後府使李玄大·金晋淵, 富平府使曺錫玄, 陰竹縣監李亮祚, 仁川府使李衡遠, 安城前郡守李容在, 陽城前縣監朴來亨, **南陽府使**崔漢翼等有差, 因御史書啓也.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1839) 6월 25일(기축) 1번째기사>

정치/행정

진주 목사 김기순을 남양 부사로 임명하라고 명하다

이조(吏曹)에서,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기현(金箕絢)이 신병이 있어 파출(罷黜)을 계청합니다.' 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수령의 전후의 치적은 전한(前漢) 시대의 어진 관

리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터인데, 30년 동안 다스리면서 공로가 이미 많다. 이렇듯 어진 관리에게 나의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고, 또 까닭 없이 한 자리에 오래 둘 수도 없으니,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와 서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吏曹以晉州牧使金箕絢身病, 啓請罷黜. 敎曰: "此倅之前後治績, 雖西漢之循良, 亦無過此. 而三十年爲治, 其所效勞, 亦旣多矣. 如此良吏, 不可無示意, 又不可使無故淹滯. 特爲加資, 南陽府使相換."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1864) 10월 22일(기축) 5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 파주, 장단의 별효사 도시를 선천과 부천된 한량에게도 응시하도록 하다

총융청(總戎廳)에서 아뢰기를, "**본청에 속한 남양(南陽)·파주(坡州)·장단(長湍)의 별효사(別驍士) 도시(都試)는 오로지 부장으로** 천거〔部薦〕한 한량(閑良)에게만 응시시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바람에 선천(宣薦)된 한량들이 울분을 품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마침내 해당 고을이 논보(論報)하는 일까지도 있게 되었으니 조정에서 강무(講武)하는 본의와 매우 어긋납니다.

이제부터 세 진영의 별효사 도시를 선천과 부천된 한량에게 보이도록 구례(舊例)를 회복시켜 통용해서 응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만약 혹 불법으로 응시하는 폐단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의당 과거장에서 작간을 부린 율로 시행할 것이며 마땅히 해당 수령(守令)도 계파(啓罷)한다는 내용으로 정식(定式)을 삼아서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總戎廳啓: "本廳屬南陽·坡州·長湍別驍士都試, 專以部薦閑良應試, 爲四十年之久. 宣薦閑良之齎鬱稱冤, 甚多. 至有該邑論報之擧, 殊欠朝家講武之本意. 自今爲始, 三鎭營別驍士都試, 以宣部薦閑良, 復舊例通用應試. 而原居人外, 若或冒赴之弊, 有所現發, 當施以科場作奸之律, 該守令啓罷之意, 請定式施行." 允之.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1868) 7월 6일(신사) 2번째기사>

정치/행정

대부도를 남양부에 소속시키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에 대해 환곡(還穀)을 탕감한 후에 배분받은 결전(結錢) 중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환곡을 만들어 원래의 환자곡(還子穀) 총량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별비환(別備還)과 사창환(社倉還)의 창설로 인해 폐단이 많아질 것을 걱정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계품(啓稟)하여 다시 원래의 환자곡에 보충하여 넣지 말고 배분받은 결전의 나머지 몫은 해마다 호조(戶曹)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도(本道)는 은결(隱結)에서 감영(監營)과 고을의 공용(公用)에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 수량이 1만 3,000여냥(兩)이나 됩니다. 그 사이 호조에서 관문(關文)을 보내어 조세를 받는다면 급대(給代)할 방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해도(該道)의 형편을 보면 실로 달리 변통할 길이 없으니 배분 받을 결전 가운데 쓰고 남은 몫을 호조에 납부하던 것을 영구히 획급(劃給)하여 모곡(耗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는 바다 길목의 요충지로써 거기에 살고 있는 백**

성들은 오직 가축을 방목하는 일만 알뿐, 방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 진영(陣營)을 설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진영을 설치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크게 다르고 또 부근의 섬들을 이속시킨 다음에는 서로 장애를 받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연혁(沿革)의 편리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꺼릴 것은 없습니다. 이 섬의 진장(鎭將)을 감하(減下)하고 해도(該道)를 본부에 소속시키고 옹진(甕津)과 태안(泰安)의 규례대로 바람세기에 따라 부사(府使)가 옮겨가 머물러 있도록 하되, 관사(官舍)는 그전 것을 그대로 쓰고 기계(器械)를 수리하는 문제는 본부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에 설치한 포병(砲兵) 100명(名)을 옮겨다 쓰게 하되 바닷가 길목을 지키는 것을 성을 지키는 것으로 대신 쳐주고, 장수와 군사들에게 지방(支放)할 비용은 목관(牧官)이 비축하고 있는 관곡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대부도에 소속된 여러 섬들도 해부(該府)에 이속시키고 여러 섬들에 있는 각 진영의 군수(軍需)는 이전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수령은 목관을 겸하게 하여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차임하되 각별히 신중하게 선발하여 요망(瞭望)을 엄격하게 하고 해안 방어도 튼튼히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진을 설치하여 부사가 옮겨가 주재하게 될 동안 해안을 튼튼히 할 계책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

二十日.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湖西蕩還後, 就排結錢中, 隨贏作還, 俾充原耀之總矣. 間因別備還社倉還·之創設, 爲念滋蔓之弊, 自臣府啓稟, '更勿添耀, 排結錢餘條, 使之歲納于度支.' 而本道有隱結之爲營邑公用者, 其數爲一萬三千餘兩. 間自戶曹發關出稅, 則其給代之方, 不得不措劃乃已. 而該道事勢, 實無他變通之道. 就排結錢用餘條之納于戶曹者, 永爲劃給, 以爲排用之地, 恐好." 允之. 又曰: "**南陽大阜島**, 以海門要衝去處, 居民輩, 惟知牧場之事, 全昧備禦之方. 故向有所設鎭之擧·而第念建置糜費, 與始料大相不同. 且近島移屬之後, 不無掣礙之端, 則便否沿革之際, 未可以銷刻爲嫌. 鎭將減下, 該島因屬本府, 依甕津·泰安例, 隨其風高風和, 府使移駐, 而官舍仍舊貫修葺, 器械自本府措劃. 本府所設砲兵一百名, 使之移用, 防守隘口, 以代城池, 將卒支放之資, 就牧官廩況中磨鍊. **大阜島**所屬諸島, 亦爲移屬該府, 諸島中各鎭軍需, 依前還給. 而本倅兼管牧官, 文武交差, 各別愼擇, 俾爲謹瞭望重海防何如?" 敎曰: "設鎭移駐間, 俾圖固圉之策可也." (…)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1871) 7월 20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경기 암행어사 이건창의 서계대로 전 남양부사 윤웅렬 등을 표창하다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건창(李建昌)을 소견(召見)하고, **서계(書啓)로 인하여 남양 전 부사(南陽前府使) 윤웅렬(尹雄烈),** 음죽 현감(陰竹縣監) 이민성(李敏性), 삭녕 전 군수(前朔前寧郡守) 이장혁(李章赫), 지평 전 현감(砥平前縣監) 신석완(申錫完) 등에게 죄를 주고, 덕포 전 첨사(前德浦僉使) 최봉선(崔鳳善), 덕진 만호(德津萬戶) 이학준(李學浚)은 표창하여 승급시켰다.

初二日. 召見京畿暗行御史李建昌. 因書啓, 罪**南陽**前府使尹雄烈·陰竹縣監李敏性·朔寧前郡守李章赫·砥平前縣監申錫完等. 德浦前僉使崔鳳善·德津萬戶李學浚, 袞施陞敍.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1883) 5월 2일(신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파주, 남양, 장단의 세 진의 관제를 개정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총융청(摠戎廳)을 혁파(革罷)하고 이미 친군 우영(親軍右營)에 이속(移屬)시켰습니다. 파주 목사(坡州牧使)를 겸 파주진병마첨절제사(兼坡州鎭兵馬僉節制使) 경기병마 우방어사(京畿兵馬右防禦使) 친군우영 중영장(親軍右營中營將)으로,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남양진 병마첨절제사(南陽鎭兵馬僉節制使) 친군우영 전영장토포사(親軍右營前營將討捕使)로**, 장단 부사(長湍府使)를 겸 장단진 병마첨절제사(兼長湍鎭兵馬僉節制使) 친군우영 후영장토포사(親軍右營後營將討捕使)로 하비(下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兵曹啓: "總戎廳革罷, 旣移屬親軍右營矣. 坡州牧使, 以兼坡州鎭兵馬僉節制使京畿兵馬右防禦使親軍右營中營將; **南陽府使**, 以**南陽**鎭兵馬僉節制使親軍右營前營將討捕使; 長湍府使, 以兼長湍鎭兵馬僉節制使親軍右營後營將討捕使, 下批何如?" 允之.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12월 11일(을해) 2번째기사>

정치/행정

의정부에서 남양과 안산의 공도회 규례를 정하는 일을 품처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해연도총제사(海沿都總制使) 민응식(閔應植)의 장계(狀啓)를 보니, '**남양(南陽)과 안산(安山)을 지금 본영(本營)에 붙였으나 아직 시험에 응시하는 규례가 정해진 것이 없어 많은 선비들이 일제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부(本府)에서 보는 공도회(公都會)의 시(詩), 부(賦), 강(講) 시험에서 각각 한 명씩 더 선발하여 두 고을 유생(儒生)들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례를 정하는 일을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남양과 안산은 비록 총제영(總制營)에 속하기는 하였지만 두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일제히 호소하여 강화영(江華營)에 시험에 응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규(科規)와 관계되는 것이니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문(壯聞)에 대해서는 실로 변통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번 계사년(1893)부터 제술(製述)에서 2과(窠), 강경(講經)에서 1과를 청한 대로 규례로 정하여 시험을 쳐서 선발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十七日. 議政府啓: "卽見海沿都總制使閔應植狀啓, 則以爲: '**南陽**·安山, 今付本營而赴試, 姑無定規, 多士齊訴. 就本府公都會, 增選詩賦講各一窠, 使兩邑儒生赴試著式事, 請令廟堂稟處' 矣. **南陽**·安山, 雖屬於總制營, 兩邑多士之齊訴, 願赴於沁營者, 事係科規, 殊涉難愼. 而今此狀聞, 亶有通變, 自今癸巳年爲始, 製述二窠, 講經一窠, 依所請著式試選事, 分付何如?"(…)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11월 17일(신미) 1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부를 기영에 환속시켜 관할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총제영(總制營)을 지금 이미 혁파하였으니, **남양부(南陽府)를 기영(畿營)에 환속시켜 관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總制營今旣革罷, **南陽府**還屬畿營, 使之管轄何如?" 允之.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1894) 6월 27일(임신) 4번째기사>

정치/행정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지방 제도(地方制度)〉 (…) 한성부(漢城府)【한성군(漢城郡), 양주군(楊州郡),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抱川郡), 영평군(永平郡), 가평군(加平郡), 연천군(漣川郡), 고양군(高陽郡), 파주군(坡州郡), 교하군(交河郡)이다】 인천부(仁川府)【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이다】 (…)

二十六日. 詔曰: (…) 地方制度: (…) 漢城府 【漢城郡・楊州郡・廣州郡・積城郡・抱川郡・永平郡・加平郡・連川郡・高陽郡・坡州郡・交河郡】. 仁川府【仁川郡・金浦郡・富平郡・陽川郡・始興郡・安山郡・果川郡・水原郡・**南陽**郡・江華郡・尙桐郡・通津郡】.(…)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 5월 26일(병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남양군수 장호진 등에게 훈 4등을 하사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 **남양 군수(南陽郡守) 장호진(張浩鎭)과 회계원 출납 과장(會計院出納課長) 오인선(吳仁善),** 육군 참장(陸軍參將) 김명선(金明善)은 다 지난해에 수고가 있었으니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二十三日. 詔曰: "(…) **南陽**郡守張浩鎭・會計院出納課長吳仁善・陸軍參將金明善, 俱有往年效勞, 竝特敍勳四等, 各賜太極章."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9월 23일(양력) 1번째기사>

정치/행정

황태자 가례에 수고한 남양군수 방한덕 등에게 가자하다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와 관련하여 진하(陳賀)할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 (…) **남양 군수(南陽郡守) 방한덕(方漢德),** 부위(副尉) 이주완(李柱浣)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皇太子嘉禮陳賀時各差備以下, (…) **南陽**郡守方漢德・副尉李柱浣, 竝加資.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1907) 1월 27일(양력) 3번째기사>

⑶ 사법

정치/사법

형조에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지 아니한 남양 부사 송목의 치죄를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송목(宋穆)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지 아니하여 부종(浮腫)이 남에 이르게 하였으되**, 감고(監考) 오천수(吳千守)·정자의(丁自義) 등이 즉시 관가에 고하지 않았으니, 천수와 자의는 율이 장(杖) 1백에 해당하고, 목(穆)은 90에 해당합니다."

하니, 각각 2등을 감하되 속장(贖杖)에 처하지는 말라고 명하였다.

○刑曹啓: "**南陽府使**宋穆不賑飢民, 以致浮殍, 監考吳千守·丁自義等, 不卽告官. 千守·自義律該杖一百; 穆九十." 命各減二等, 勿贖杖之.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6월 15일(갑신) 2번째기사>

정치/사법

영접·전별에 모여서 술마시지 말라는 명을 어긴 전 남양부사 윤창 등을 처벌하다

처음에 장맛비가 열흘을 이어 내려서 볏곡이 손상하므로, 임금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이순몽(李順蒙)은 경상도 도절제사가 되고, 조종생(趙從生)은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행대호군(行大護軍) 박거비(朴去非)와 행 사직(行司直) 홍거안(洪居安)이 같이 거안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베풀고 순몽과 종생을 청하여 전별하는데, 또 거안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전 판서 박신(朴信)·참찬(參贊) 이맹균(李孟畇)·행(行) 첨지중추원사 민의생(閔義生)·이조 참의 권복(權復) 등이 와서 모였고, 판전농시사 김간(金艮)·**전 남양 부사 윤창(尹敞)**, 거비의 아우 부사정 거소(去踈)도 와서 참예하였다. 권복은 이때 관습 도감 부제조로 있었는데 기생과 광대들을 불러서 풍악을 잡혔더니, 사헌부에서 듣고 장령(掌令) 허후(許詡)로 하여금 아뢰기를,

"영접과 전별에 모여서 술마시는 것을 금함은 이미 시행하는 법령이 있고, 또 이제 장맛비가 재앙이 되어 진념하옵시는 때에, 대신들이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고 마시니, 신이 탄핵하고자 하오나, 소문만 듣고 탄핵한다는 책망이 있을까 하여 감히 드러내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안다."

하매, 물러가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이미 여럿이 모여 술 마시지 말하는 금령이 있고, 또 술을 경계하라는 전교가 내렸사온데, 이제 재해를 만나 진념하시는 때를 당하여 대소 신료들이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즈음에, 박신·이맹균·민의생 등은 대신으로서 지극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공연하게 잔치에 참예하였고, 이순몽과 조종생 등은 지방을 맡아 직책이 가볍지 아니하온데, 위임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그리 긴요하지도 않은 사유로써 번거롭게 계달(啓達)하고 달이 지나도록 머물면서 풍악을 울리고 전별의 술을 마셨으며, 권복·김간·윤창·박거소 등은 조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바가 없이 연회에 참예하여 술을 마셨고, 박거비·홍거안 등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손을 불러 모았사오니, 모두 다 부당하옵니다. 법률을 상고하여 거안·간·창·거소 등은 모두 형장 90에 처하고, 신·맹균·의생·순몽·종생·복·거비 등은 법률을 상고하여 죄를 과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교지를 받들어 순몽·맹균·종생·의생·복 등의 벼슬을 파면시키고, 간과 거소는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 벼슬만 파면하고, 거비도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첩만 거

두었다. 거안은 형장 70에 처하고, 신과 창은 전함(前銜)이기 때문에 논하지 아니하였다. 순몽은 영양군(永陽君) 이등(李膺)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음(蔭)으로 벼슬이 동지총제에 이르고, 기해년 대마도 정벌 때에 전공(戰功)이 있어서 자헌(資憲)에 오르고, 지난해에 파저강 토벌에서도 노획한 바가 많아서 판중추(判中樞)에 올랐다. 위인이 광음(狂淫)하고 방탕하여, 일찍이 경상도에 가서 어머니 무덤에 성묘하고 돌아오다가 상주(尙州)의 기생을 데리고 문경현(聞慶縣) 초점(草岾)에 이르러 기생과 같이 냇물에서 목욕하고, 나무 그늘 밑에 끌고 들어가서 크게 외치기를, "기생과 행음(行淫)한다." 하고 곧 행음하였으니, 광탕(狂蕩)함이 이와 같았다.

○初, 霖雨連旬, 禾稼損傷, 上憂慮. 時李順蒙爲慶尙道都節制使, 趙從生爲全羅道都觀察使, 行大護軍朴去非·行司直洪居安, 同設宴於居安第, 請致順蒙·從生餞之. 又請居安同里前判書朴信·參贊李孟畇·行僉知中樞院事閔義生·吏曹參議權復等來會. 判典農寺事金艮·前**南陽府使**尹敞·去非弟副司正去疎等, 亦來參. 權復時爲慣習都監副提調, 招妓及伶人作樂. 司憲府聞之, 使掌令許詡啓曰: "禁迎餞會飮, 旣有著令, 且今霖雨爲災軫慮之時, 大臣動樂宴飮. 臣等欲劾之, 恐有風聞之責, 未敢發擧." 上曰: "予已知之矣." 退而劾啓曰: "旣有群飮之禁, 又下戒酒之敎. 今當遇災軫慮之時, 大小臣僚所當恐懼修省之際也. 朴信·李孟畇·閔義生等, 以大臣不體至意, 不遵邦憲, 公然參宴. 李順蒙·趙從生等, 典司方面, 所繫非輕, 不體委任之意, 以不緊之故, 煩瀆啓達, 過朔淹留, 動樂飮餞. 權復·金艮·尹敞·朴去疎等, 無所疑畏, 參會宴飮. 朴去非·洪居安等, 不畏邦憲, 共備酒饌, 招集賓客, 竝皆不當. 按律, 居安·艮·敞·去疎, 竝杖九十; 信·孟畇·義生·順蒙·從生·復·去非, 請按律科罪." 奉敎, 罷順蒙·孟畇·從生·義生·復等之職. 艮·去疎, 以功臣之子, 亦罷其職, 去非亦以功臣之子, 只收職牒. 居安杖七十. 信·敞以前銜勿論. 順蒙, 永陽君膺之子也. 以父蔭官, 至同知摠制, 己亥, 征對馬島有戰功, 陞資憲, 前年征討婆猪江, 多所執獲, 陞判中樞. 爲人狂淫浮蕩, 嘗往慶尙道, 拜掃母墳, 回還携尙州妓, 行至聞慶縣草岾, 與妓浴于川, 携入樹蔭下, 大呼曰: "與妓行淫." 卽淫之, 狂蕩如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5일(기유) 5번째기사>

정치/사법

겸사복 한봉운 등을 광주와 남양 등지에 보내 호랑이를 바치게 하다

겸사복(兼司僕) 한봉운(韓奉運) 등을 보내어 **광주(廣州)와 남양(南陽) 등지에서 호랑이를 잡게 하였다.**

○遣兼司僕韓奉運等捕虎于廣州·**南陽**等處.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2월 24일(무신) 2번째기사>

정치/사법

경기 관찰사에게 남양 수인 최옥천 등을 서울로 압송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수원 수인(水原囚人) 최경지(崔敬之), 진위 수인(振威囚人) 최경손(崔敬孫), 용인 수인(龍仁囚人) 최유림(崔有霖), **남양 수인(南陽囚人) 최옥천(崔玉泉)**·이무작(李無作), 안산 수인(安山囚人) 북간(北間) 등은 환궁(還宮)을 기다린 뒤에 사람을 임명해서 서울에 압송(押送)하게 하라." 하고, 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안철손(安哲孫)에게 치서하기를,

“공주 수인(公州囚人) 백정(白丁) 불단(佛丹) 등 6명은 사람을 임명해서 행재소(行在所)에 압송(押送)하게 하라.” 하였다.
○癸亥/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觀察使李季專曰: “水原囚人崔敬之·振威囚人崔敬孫·龍仁囚人崔有霖·南陽囚人崔玉泉·李無作·安山囚人北間等, 待還宮後, 差人押送于京.” 又馳書忠淸道觀察使安哲孫曰: “公州囚人白丁佛丹等六名, 差人押送行在所.”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3월 3일(계해) 1번째기사>

정치/사법

남양부에 갇힌 강도범 정귀선의 말에 따라 백정 연수를 국문하게 하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박치(朴穉)가 와서 아뢰기를, **“정귀선(鄭貴善)이란 자가 강도질을 하다가 당류(黨類)와 같이 남양부(南陽府)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본조(本曹)에 잡혀 와서 고(告)하기를, ‘내가 비밀히 여쭐 일이 있으니, 청컨대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하게 하여 주소서.’ 하므로, 당상관(堂上官)이 그의 말과 같이 하고 그에게 물으니, 정귀선이 말하기를, **‘남양에 같이 갇힌 적인(賊人) 연수(延壽)가 부도(不道)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갇힌 이석타내(李石他乃)·갑사(甲士) 박약운(朴若雲)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옥졸(獄卒)이 함께 들었으며, 내가 서울로 올라 오던 날에 위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서울에 도착하면 이 말을 마땅히 고(告)하여야 할 터이니, 너희가 마땅히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반드시 정귀선이 자기의 죄를 면해 보려는 음모(陰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상에 관계되는 말이므로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연수 등을 잡아 와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庚辰/刑曹正郞朴穉來啓曰: “有鄭貴善者, 以强盜同黨, 囚南陽府, 今被本曹拿來告曰: ‘吾有密白事, 請屛人言之.’ 堂上如其言問之, 貴善言曰: ‘南陽同囚賊人延壽, 發不道言. 吾與同囚李石他乃·甲士朴若雲·名不知獄卒共聽, 吾於上來日, 與右人等質之曰: 「到京, 當告此言, 汝當爲證.」’ 臣等以爲, 此必貴善規免己罪之謀. 然屬上之言, 不可置之, 故敢啓.” 命拿致延壽等鞫之.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7월 9일(경진) 1번째기사>

정치/사법

남양의 관도역 박임경을 방면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여 **남양(南陽)의 관도역(官徒役) 박임경(朴臨卿)**을 방면(放免)하게 하였다.
○傳旨司憲府, 放南陽官徒役朴臨卿.
<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9월 4일(계묘) 4번째기사>

정치/사법

형조에서 떼지어 우마를 훔친 남양의 백정 종남 등의 죄를 아뢰니 사형을 명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함안(咸安)의 죄수 종 백철(白哲)은 백정(白丁) 막산(莫山) 등 3인과 더불어 남효인(南孝仁) 등의 집에서 우마(牛馬)를 도둑질하였는데, 수교(受敎)에 의하여 3인 이상 떼를 지어 도둑질하면 우두머리 된 자는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안산(安山)의 죄수 백정 박검동(朴檢同)·박정(朴貞), **남양(南陽)의 죄수**

백정 종남(從南)·조산(趙山), 수원(水原)의 죄수 백정 오득부(吳得夫)·김말동(金末同)·서맹우(徐孟雨)는 진숙량(陳叔良) 집에 들어가 강도질하였으니, 죄가 율(律)에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는데, 수교(受敎)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咸安囚奴白哲與白丁莫山等三人, 盜南孝仁等家牛馬罪, 依受敎, 三人以上成群爲盜, 爲首者絞待時. 安山囚白丁朴檢同·朴貞·**南陽**囚白丁從南·趙山·水原囚白丁吳得夫·金末同·徐孟雨, 劫陳叔良家强盜罪, 律該斬不待時, 依受敎, 妻子永屬所居邑奴婢." 皆從之.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22일(기유) 4번째기사>

정치/사법
형조에서 남양의 사노 매읍산 등의 강도죄는 율이 참부대시에 해당된다고 아뢰다
형조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전주(全州)의 죄수 백정(白丁) 소고산(小高山)과 **남양(南陽)의 죄수 사노(私奴) 매읍산(每邑山)의 강도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全州囚白丁小高山·**南陽**囚私奴每邑山强盜罪, 律該斬不待時." 從之.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29일(무신) 4번째기사>

정치/사법
대사헌 윤계겸 등이 남양, 부평, 평택에서 전지를 강탈한 김수온의 안률을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김수온은 본래 사물에 어두운 선비로서 성명(聖明)을 만나 좌리 공신(佐理功臣)에 책훈(策勳)되고, 지위가 최고의 품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일찍이 만족을 모르고서 탐득(貪得)할 마음을 품고 널리 전원(田園)을 점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양(南陽)에는, '공한(空閒)의 땅이다.' 일컫고**, 부평(富平)에는, '금전(禁田)의 대가이다.' 일컫고, 평택(平澤)에는, '절수(折受)이다.' 칭탁(稱託)을 하면서 주민들의 전지(田地)를 강탈하여 화리(花利)까지 하는데도 그를 논죄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야 되겠습니까? 또 의금부(義禁府)에서 교지를 받들어 추국(推鞫)하는데, 김수온이 바로 승복(承服)하지 않고 온갖 말로 기만하면서 그의 간악함을 엄폐(掩蔽)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엄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안율 저죄(按律抵罪)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憲府大司憲尹繼謙等上箚子曰: 金守溫本以迂儒, 遭遇聖明, 策勳佐理, 位至極品, 曾不知足, 乃懷貪得, 廣占田園. 於**南陽**則稱空閒之地, 於富平則稱禁田之價, 於平澤則托以折受而强奪民田, 以及花利, 其可置之而不論乎? 且禁府奉敎推鞫, 而守溫不卽承服, 語多詐妄, 欲掩其惡, 而卒不可掩. 請按律抵罪. 不聽.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신유) 4번째기사>

정치/사법
윤계겸 등이 황효원 부자 및 김수온의 처벌을 논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상소를 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황효원이 조그마한 공로를 믿고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분격하여 대간(臺諫)에게 욕을 보여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없었으며, 국문하도록 명하기에 이르러서도 뉘우칠 줄을 모르고 궤변하고 거짓을 꾸며 더욱 마구 오만을 부렸으며, 황준경은 그 아비가 하는 짓을 익히 보고서 송정(訟庭)에 나아갈 즈음에 사납게 분을 내고서 드디어 나장(羅將)을 구타하여 법사(法司)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강을 떨치지 못하고 예법이 무너진 것인데 용서하여 징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수온은 한낱 썩은 선비로 본래부터 좋은 명망도 없었는데, 한갓 문필(文筆)만 가지고 작위(爵位)를 도둑질하였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면 겸허하고 안정되어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실로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불교를 믿어 우매하게 현혹되어, 선비로서 중의 행동을 하며 국속(國俗)을 변란(變亂)하기까지 하였고, **지금은 남양(南陽)의 전지(田地)를 제멋대로 점거하면서, '이것은 한광(閑曠)한 땅이다.' 하고 부평(富平)의 전지를 차지하고서**, '이것은 나의 절수(折受)한 땅이다.' 하고, 평택(平澤) 주민의 전지를 약탈하여 경작하면서, '이것은 공릉(恭陵)의 금전(禁田)의 대가이다.' 하니, 그의 간교하고 탐욕스러움은 실로 송희헌(宋希獻)과 같은 부류입니다. 청컨대 황효원 부자의 죄를 법대로 논하고, 김수온의 직사(職事)를 파면하여 먼 변방으로 내쫓아 기강(紀綱)을 진작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산군(永山君)과 상산군(商山君)의 일을 들어줄 수 없고, 황준경은 고신(告身)을 회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掌令) 박효원(朴孝元)이 김씨의 적첩 분변을 의논한 것을 보여 주기를 청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들과 같이 의논한 것은 널리 의견을 받아들이려 한 것인데, 대간(臺諫)이 곧 보기를 청하니,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늘 의의(擬議)할 일이 있으면 곧 보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박효원이 대답하기를, "이미 의논을 모았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이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司憲府大司憲尹繼謙等上疏, 略曰: 黃孝源恃其微勞, 奮其私怒, 折辱臺諫, 無所畏忌. 及其命鞫, 尙不知悔, 詭言誣飾, 益肆橫勃. 俊卿習見其父所爲, 就訟之際, 悍然發忿, 遂毆羅將, 陵蔑法司. 是紀綱不振而禮法毁矣, 其可容貸而不治乎? 金守溫以一竪儒, 素無令望, 徒持文墨, 盜竊名字. 視其貌, 則若虛靜而無欲, 察其心, 則實貪嗇而懷利. 至於沈淫釋氏, 幻惑愚蒙, 儒名僧行, 變亂國俗. 今乃冒占**南陽**之田, 而曰, '此閒曠之地也', 據執富平之田, 而曰: "此吾折受之田也", 奪耕平澤民田, 曰: "此恭陵禁田之價也", 其奸詐貪墨, 實宋希獻之流也. 請孝源父子論罪如法, 罷守溫職事, 迸諸四裔, 以振紀綱. 傳曰: "永山·商山固不可聽, 俊卿可收告身." 掌令朴孝元請見金氏嫡妾之議, 都承旨玄碩圭啓曰: "殿下與大臣議者, 欲其廣採納也, 臺諫輒請見之, 臣未知其可." 傳曰: "每有擬議, 輒求見何也?" 孝元對曰: "旣已收議, 當用衆論, 故臣欲見之耳." 不許.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3일(갑자) 2번째기사>

정치/사법

김하라는 자가 남양부에 소송을 제기하다

이 앞서 이름이 귀동(貴同)이란 자가 익명서(匿名書)를 내어 **남양 부사(南陽府使) 채신보(蔡申保)를 제소(提訴)하였으므**로, 즉시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귀동(貴同)을 찾아내어 계달

(啓達)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김하(金河)라는 자가 남양부(南陽府)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의 서울 집[京家]에 이름이 귀동(貴同)이란 종[奴]이 있습니다." 하니, 즉시 귀동을 잡아오라고 명하고, 이어서 익명서(匿名書)와 감사(監司)의 계본(啓本)을 형조에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前此有名貴同者, 投匿名書, 訴南陽府使蔡申保, 卽命京畿監司, 根尋貴同以啓, 至是觀察使孫舜孝啓曰: "有金河者, 訟于南陽府, 其京家有奴名貴同者也." 卽命拿致貴同, 仍下匿名書及監司啓本于刑曹, 以鞫之.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7일(을사) 2번째기사>

정치/사법
대사헌 채수가 남양 백성들이 탐오하다고 하는 홍백연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채수(蔡壽)와 장령(掌令) 허황(許荿)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관리는 본부의 함문(緘問)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신 등이 송영(宋瑛)을 논계(論啓)하였는데, 송영이 그대로 벼슬에 있으니, 신 등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편치 못한 것이 무슨 일인가? 송영이 배우(俳優)인가, 도둑인가? 다만 난신(亂臣)에 연좌되긴 하였으나, 이미 벼슬길을 열어주어 일찍이 청현(淸顯)을 지냈으니, 무엇이 편치 못한가?" 하였다.
채수 등이 아뢰기를, "송영이 벼슬길에 통한 것도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나칩니다. 지금 또 청현직(淸顯職)을 제수하시니, 신 등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영을 어찌 〈난신에〉 연좌된 까닭으로 인하여 끝내 쓰지 못할 것인가?" 하였다.
채수 등이 아뢰기를, "대저 벼슬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마음을 같이한 연후에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논박하고서 그와 더불어 임무를 같이하는 것은 예전에 없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자가 마침내는 죽음을 같이하는 친한 사이가 된 자도 있었다. 임금이 이미 동관(同官)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어찌 다시 말하는 것인가? 또 홍백연(洪伯涓)의 일은 어디서 들었는가?"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남양(南陽)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탐오(貪汚)하다.' 고 하는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어찌 이런 소문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홍백연의 일을 어찌 전해들은 말로써 사실을 삼을 수 있겠는가? 송영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司憲府大司憲蔡壽·掌令許荿來啓曰: "本府官吏受本府緘問, 則雖小事亦遞. 今臣等論啓宋瑛, 而瑛猶在職, 臣等意未安." 傳曰: "所未安者何事? 瑛俳優歟? 盜賊歟? 只以亂臣緣坐, 而已通仕路, 曾經淸顯, 何以未安耶?" 蔡壽等曰: "瑛通仕路, 上恩已過. 今又除淸顯, 臣等深以爲未安." 傳曰: "瑛豈以緣坐, 而終不用乎?" 蔡壽等曰: "大抵居官, 必同心, 然後可以共事. 論駁其人, 又與之同任, 古所無也." 傳曰: "古人有相仇隙者, 終或爲刎頸之交. 人主旣命爲同官, 何更言耶? 且洪伯涓事, 聞於何處?" 蔡壽曰: "南陽之民皆言其貪汚, 若無其實, 則何以有此聲聞乎?" 傳曰: "伯涓事, 豈可以傳聞取實哉? 宋瑛事, 其勿復言.
<성종실록 143권, 성종 13년 7월 1일(무진) 4번째기사>

정치/사법
장령 송영이 남양에 갈 때 아내가 홍석보를 찾아간 일로 사퇴를 청하다

장령(掌令) 송영(宋瑛)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처(妻)가 홍석보(洪碩輔)와 비록 8촌의 먼 친족이긴 하나 어려서 이한(里閑)이 같아서 통가(通家)의 우호(友好)가 있었습니다. **신이 이 달 초7일 명을 받들어 남양(南陽)으로 향하였는데, 처가 그 틈을 타서 홍석보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이 가장(家長)으로서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석보는 그대의 처가 찾아온 날이 이 달 초라고 하던데, 그대의 말과 서로 어긋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송영이 대답하기를, “신의 처가 왕래한 날은 바로 이 달 보름날이었습니다. 그 날 홍석보가 밤이 깊어서 집으로 돌아와 신의 처에게 말하기를, ‘옛 동료가 아들의 초례(醮禮)를 치른 뒤에 나를 맞아 술을 마셨기 때문에 통행금지를 위반하면서 돌아왔다.’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증거가 될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석보가 망언(妄言)을 하였을 뿐이다. 그대에게 어찌 죄가 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송영이 또 아뢰기를, “신이 탄핵을 입은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한갓 국론(國論)에 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필(史筆)을 더럽힐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掌令宋瑛來啓曰: “臣妻與洪碩輔, 雖八寸踈族, 少同里閈, 有通家之好. 臣本月初七日, 承命向**南陽**, 臣妻乘閒, 往碩輔家, 然孰謂臣不知乎? 臣以家長不能檢, 請待罪.” 傳曰: “洪碩輔云: ‘爾妻之來, 在本月之初’, 爾言相違, 何也?” 瑛啓曰: “臣妻往來之日, 乃本月十五日也. 其日碩輔夜深還家, 謂臣妻曰: ‘舊同僚醮子後, 邀予飮之, 故犯夜而還’, 此亦可驗也.” 傳曰: “碩輔妄言耳, 爾豈有罪? 其勿待罪.” 瑛又啓曰: “臣被劾至此, 非待未滿國論, 亦恐汚穢史筆. 請辭.” 傳曰: “勿辭.”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8일(무자) 3번째기사>

정치/사법
장령 이종윤 등이 남양에 간 사이 아내에게 청탁하게 한 송영의 추국을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종윤(李從允)·정언(正言)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친문(親問)하실 때 손순효(孫舜孝)는 말을 회피하고 숨기는 것이 많아서 윤은로(尹殷老)의 말과는 크게 서로 달랐습니다. 송영(宋瑛)이 바야흐로 탄핵되어 논박을 당하고 처(妻)를 보내어 청탁(請託)한 것은 사풍(士風)을 오염(汚染)시킨 것이니 천컨대 아울러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증거가 없는 일이라서 추문(推問)하기가 어렵다. 다만 윤은로는 듣기를 자세하게 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와서 아뢰었는데, 윤은로도 어찌하여 송영과 원수가 되어 말을 지어내어 그를 모함하려 하는가? 손순효는 말이 정밀하지 못하고 윤은로는 말을 듣고도 자세히 살피지를 않았으며, 홍석보는 송영의 처가 청탁한 것이 옳지 못한 줄을 알면서도 곧 논핵(論劾)하지 않고 사사로이 송순효에게 말하였으니, 이것은 다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울러 파직한 것이다. 만일 그 일을 끝까지 캐려 한다면 장차 형장(刑杖)을 써서 신문하겠는가? **또 송영의 말에 그의 처가 홍석보의 집에 갔을 때는 남양(南陽)에 사명(使命)을 띠고 나간 뒤였다고 하니**,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송영은 과연 죄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이 아뢰기를, “홍석보는 얘기하기를, ‘이 달 초였다.’고 하니, 송영이 말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추문(推問)하여 말이 일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석보를 승정원(承政院)에 초치(招致)하여 물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御經筵. 講訖, 掌令李從允·正言成世明啓曰: “親問之時, 孫舜孝, 言多避諱, 與尹殷老言, 大不相同. 宋瑛方被彈論, 遣妻干請, 汚染士風. 請竝推鞫.” 上曰: “此皆無證, 難以推勘. 但殷老聽之不詳, 率爾來啓耳. 殷老亦豈與瑛讎怨, 造言陷之哉? 舜孝, 言之不精, 殷老聽之不察, 碩輔知瑛妻干請之不可, 而亦不卽論劾, 私語舜孝, 此皆不可. 故竝罷之. 若欲窮竟其事, 將用刑杖以訊乎? 且宋瑛言: ‘妻往碩輔家, 在南陽出使之後.’ 信如其言, 則瑛果無罪矣.” 世明啓曰: “碩輔, 則以爲在今月之初, 與瑛所言不同. 請推問歸一.” 上曰: “召致碩輔于承政院, 問之可也.” (…)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9일(기축) 2번째기사>

정치/사법

수령들의 선악에 따라 포상하거나 징벌한 내용을 전국에 알리도록 전지하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나라의 사유(四維)에는 염치(廉恥)가 그 두 가지를 차지하는데, 선비 된 자가 염치가 없다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다. 옛날 훌륭하게 다스려진 시대에 조정에서는 예양(禮讓)의 풍속을 숭상하고 군현(郡縣)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관리가 없었는데, 숙계(叔季)에 이르러서 사람의 마음이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강상(綱常)이 해이해지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며 사유가 무너져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염치의 도리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즉위하면서부터 과거의 궤도(軌道)를 살피고 복철(覆轍)을 연구하여 권징(勸懲)의 방법을 여러 번 계칙(戒飭)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문병(門屛)의 막힘이 만 리나 먼 것 같은데 여러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모두 살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수령(守令)들의 탐욕스러움과 청렴함은 백성들의 이해에 관계되므로, 얼마 전 의정부에 자문하여 아는 대로 정별(旌別)하여 알리게 하였더니, 오리(汚吏)인 공주 목사(公州牧使) 이숙생(李叔生), **용리(慵吏)인 남양 부사(南陽府使) 채신보(蔡申保)를 적발하여 쫓아냈었고**, 염리(廉吏)인 담양 부사(潭陽府使) 남계당(南季堂)·대구 부사(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부평 부사(富平府使) 민효남(閔孝男)을 찾아내어 승진시켰다. 지금 강릉 부사(江陵府使) 구치홍(具致洪)은 만기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공탕(公帑)의 물건만 긁어모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웃 고을의 물품까지도 색출하여 바리바리 싣고 왔으니, 그 탐욕스러움이 막심하였다. 그런데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들은 백성의 고형을 거두어 구치홍을 대접해 보냈다 하니, 이 또한 뇌물을 주고 받는 무리이므로 아울러서 죄(罪)를 과하고 파직시켰다. 나의 이번 처사에는 어찌 밉고 사랑함이 개재되었는가? 부득이하여서 했을 따름이니, 이러한 뜻으로써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傳旨議政府曰: “國之四維, 廉·恥居其二, 爲士而無廉恥, 其餘不足觀也已. 古昔盛治之世, 朝廷崇禮讓之風, 郡縣無貪黷之吏. 逮于叔季, 人心不古, 綱紀解弛, 貨賂公行, 陵夷至於國非其國, 良由廉恥道喪也. 予自卽祚, 鑑前軌, 而究覆轍·勸懲之方, 屢形戒飭. 然而門屛之阻, 有同萬里, 布列庶位者, 安得人人而察之? 念惟守令貪·廉, 關生民之利害, 故乃者咨于政府, 令以所知旌別以聞. 遂得汚吏公州牧使李叔生·慵吏南陽府使蔡申保黜之; 得廉吏潭陽府使南季堂·大丘府使林壽昌·富平府使閔孝男陞之. 今江陵府使具致洪, 秩滿而遷也, 非惟包挈公帑之物, 至又需索隣邑, 駄載而來, 其貪莫甚. 守令·萬戶等, 收儲民膏, 饋遺致洪, 玆亦包苴之徒, 故竝科罪罷職. 予之此擧, 豈有憎愛於其間? 蓋不得已爾. 其以此意曉諭中外.”
<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3일(기축) 3번째기사>

정치/사법

포도 대장 양찬이 잡지 못한 도적을 잡고자 남양에 갇힌 죄인 이상좌의 석방을 아뢰다

포도장(捕盜將) 양찬(楊瓚)이 와서 아뢰기를, "이상좌(李上佐)라는 자가 있는데, 본래 도둑이었으므로 능히 강도(强盜)가 있는 곳을 알 것입니다. **지금 이상좌가 남양(南陽)에 갇혀 있으니 석방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양찬이 잡지 못한 도적을 잡고자 하여 이미 가둔 도적을 석방하기를 청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捕盜將梁瓚來啓曰: "有李上佐者, 本盜也, 能知强盜在處, 今上佐被囚于**南陽**, 請釋而率行." 瓚欲捕未獲之盜而請釋已囚之賊, 人皆笑之.

<성종실록 269권, 성종 23년 9월 29일(정유) 5번째기사>

정치/사법

윤필상 등이 남양부의 홍유손이 시문이 능하다고 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유자광의 말에 의하면 '외방의 생원·진사(生員進士)들이 사마소(司馬所)라 자칭한다.' 하옵니다." 하니, 자광이 급히 나서며 '내가 아뢰겠다.' 하고, 드디어 아뢰기를, "남원(南原)과 함양(咸陽)은 모두 신의 본관(本貫)이므로 신이 친히 보았습니다. 생원과 진사들이 별도로 한 장소를 만들어서 사마소라 이름하고, 사사로 서로 모이어 여럿이 술을 마시면서 빗나간 의논을 하고, 서민이나 서리가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문득 매질을 합니다. 유향(留鄕)의 품관(品官)들이 거개 늙고 열등하기 때문에 온 고을 인리(人吏)들이 유향소(留鄕所)를 멸시하고 도리어 사마소에 아부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온데, 수령된 자들이 비단 능히 금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노비(奴婢)를 지급하며 식리(殖利)하는 곡식과 물화(物貨)를 맡기니, 국가에서 설립한 유향소 이외에 또 이 무리들이 사사로 세운 한 장소가 있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하고, 필상은 아뢰기를, "칠국(七國)의 처사(處士)와 동한(東漢)의 당인(黨人)과 조송(趙宋)의 낙당(洛黨) 촉당(蜀黨)과 근일 김종직의 간당(姦黨)이 모두 떼로 모여서 빗나간 의논을 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오니, 이러한 풍조는 통렬히 개혁해야 하옵니다. 청컨대 팔도 감사에게 유서(諭書)를 내리시어 소위 사마소(司馬所)라는 것은 일제히 혁파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그리고 자광이 필상더러 이르기를, "홍유손(洪裕孫)의 일도 역시 아뢰어야 한다." 하니, 필상이 아뢰기를, "**남양부(南陽府) 공생(貢生)인 홍유손이란 자가 있는데, 시문(詩文)이 능하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심히 괴이하여 나이 젊은 6, 7명과 당(黨)을 만들어서 아무개는 정자(程子)고 아무개는 주자라 자칭하며, 이따금 강가의 인가에 모이어 소요건(逍遙巾)을 쓰고 서로 더불어 떼지어 술마시며, 비방을 하옵니다. 일찍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제술은 아니하고, 종일 술에 취해서 희어(戱語)를 쓰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오래 도성 아래 있으면 반드시 후생을 그르치고 말 것이오니, 청컨대 잡아내서 먼 지방으로 내치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외간의 이러한 일을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경 등의 이 계(啓)는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는 바이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명하여 유손을 잡아 포박하였다.

○尹弼商啓: "柳子光云: '外方生員· 進士, 自稱司馬所.'" 子光遽曰: "吾當啓之." 遂啓曰: "南原·咸陽皆臣本貫, 故臣親見之. 生員·進士別立一所, 名曰: '司馬.' 私相聚集, 群飮橫議. 於人吏少有不愜, 輒鞭撻. 留鄕品官多是老劣, 故一邑人吏, 蔑視留鄕所, 反附司馬

所, 其弊不貲. 爲守令者, 非徒不能禁之, 反給奴婢, 以典其所殖穀貨. 國家所設留鄕之外, 又有此輩私立一所, 甚不可." 弼商啓: "七國之處士, 東漢之黨人, 趙宋洛·蜀黨, 近日金宗直姦黨, 皆成於群聚橫議, 如此之風, 所宜痛革. 請下書八道監司, 凡所謂司馬所, 一切革罷." 子光謂弼商曰: "洪裕孫事, 亦可啓也." 弼商啓: "**南陽府有貢生洪裕孫者, 能詩文**, 然行己甚怪. 與年少六·七輩爲黨, 自稱某也程, 某也朱, 時會江上人家, 着逍遙巾, 相與群飮誹謗. 嘗赴試, 不肯製述, 終日沈酣, 或書戱語而出. 此輩久在都下, 必詿誤後生, 請尋捕, 屛諸遐方." 傳曰: "外間如此事, 予何得聞? 卿等此啓, 予甚嘉之." 遂命義禁府尋捕裕孫.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0일(계유) 2번째기사>

정치/사법

박처륜이 남양부사로 있을 때 홍유손을 미워해 향리 부역에 복원시켰다

유자광은 아뢰기를, "남효온(南孝溫)은 헌명(軒名)이 추강(秋江)하므로, 김종직이 그 기안(氣岸)을 허여하였으며 시에 능하다고 칭찬도 하였습니다. 효온은 종직의 당으로 일찍이 시(詩)를 지었는데, 안생이 죽으니 지음이 없어지고
홍자(洪子)가 시골에서 부역을 하니 우리 도가 궁하도다.
대유(大猷)는 있지만 추향(趨向)에 고달프니
이 심회를 농서공(隴西公)에게나 이야기하리
하였습니다. 이른바 '안생'은 그 동류 안응세(安應世)이고, '홍자'는 곧 홍유손입니다. **박처륜(朴處綸)이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있을 적에, 세상을 경히 여기고 큰 소리하는 유손을 미워하여 향리(鄕吏)의 부역(夫役)을 복원시켰는데**, '우리 도가 궁하다.'고 한 것은 유손을 공자(孔子)에 비한 것이오며, '대유(大猷)'는 김굉필(金宏弼)의 자(字)로 굉필이 처음에는 효온(孝溫) 등과 동지였으나 마침내 과거에 응시하였기 때문에 추향에 고달프다 이른 것이오며, '농서공(隴西公)'은 이윤종(李允宗)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상의 사람들이 결탁하여 당원(黨援)이 되어 고담(高淡)·궤설(詭設)을 일삼이 선비의 기풍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유손(裕孫)의 헌명(軒名)은 헌헌헌(軒軒軒)이온데, 반드시 헌(軒)의 이름을 지어준 자가 있을 것이오며, 또 유손이 그 동지들을 허여하여 죽림 칠현(竹林七賢)이라 이름하였으니, 대개 진(晉)나라 완함(阮咸) 등의 일을 사모한 것입니다. 쇠세(衰世)의 일을 본받아서 다시 성명(聖明)의 세상에 행하려드니, 청컨대 국문하란 자가 있어 그 무리를 허여하여 십철(十哲)이라 부르고, 그 무리들은 응정을 추앙하여 부자(夫子)라고 부르고 있사오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헌헌헌과 농서공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하자, 자광(子光)이 아뢰기를, "농서공(隴西公)이란 것은 옛날에 이릉(李陵)과 이백(李白)이 농서에서 살았기 때문에 후세 사람이 이씨(李氏)를 통칭해서 농서라 이릅니다." 하였다.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홍유손은 아무개 아무개와 더불어 죽림 칠현(竹林七賢)이라 호칭하고 방랑하여 기탄이 없는 행동을 하므로 사연(辭緣)이 남효온(南孝溫)의 시(詩)에 미쳤다.
'안생(安生)이 죽으니 지음(知音)이 적어지고
홍자(洪子)가 고을의 부역을 하니 우리 도가 궁하도다.
대유(大猷)는 있지만 추향에 고달프니
이 심정을 농서공에게나 이야기하리.'
라고 시를 지은 본뜻과 헌명(軒名)을 헌헌헌이라 한 이유를 아울러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己卯/柳子光啓: “南孝溫軒名秋江, 金宗直許與氣岸以能詩稱之. 孝溫, 宗直之黨, 嘗作詩云: ‘安生已逝知音少, 洪子役鄕吾道窮. 縱有大猷趨向苦, 心懷說與隴西公.’ 所謂安生, 其類安應世, 洪子卽洪裕孫也. 朴處綸爲**南陽府使**時, 疾裕孫輕世高談, 復鄕吏之役. 謂之吾道窮者, 以裕孫比孔子也. 大猷, 金宏弼字也. 宏弼初與孝溫等同志, 而竟赴科擧, 故云趨向苦. 隴西公指李允宗也. 右人等結爲黨援, 高談詭說, 傷毁士習. 裕孫軒名曰軒軒軒. 必有名軒者. 且裕孫與其同志者號曰竹林七賢, 蓋慕晋室阮咸等事也. 效衰世之事, 復行於聖明之世, 請鞫之, 以懲其罪. 又有姜應貞者, 與其徒號爲十哲. 其類推應貞曰夫子, 請竝鞫之.” 傳曰: “可. 所謂軒軒軒·隴西公者, 何義也?” 子光曰: “隴西公者, 昔李陵·李白居隴西, 故後人稱李姓通謂之隴西.” 傳旨義禁府曰: “洪裕孫與某某人, 竹林七賢稱號, 放浪無忌辭緣及南孝溫詩, ‘安生已逝知音少, 洪子役鄕吾道窮. 縱有大猷趨向苦, 心懷說與隴西公.’ 作詩意趣及命軒名軒軒軒者竝鞫之.”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8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정치/사법

홍문관 부제학 이세인 등이 정사를 공정하게 하고 사사로운 청탁을 막도록 건의하다

홍문관 부제학 이세인(李世仁) 등이 차자 올리기를,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서제(書題)의 사사로운 송사 때문에 내수사에 명하여 국문하도록 하셨다 하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편파됨이 없고 당이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당이 없고 편파됨이 없으면 왕도가 평이(平易)하다.’[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 하였고, 송 태조(宋太祖)는 중문(中門)을 활짝 열어 놓고 말하기를, ‘바로 내 마음과 같도다. 조금이라도 사곡(邪曲)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보리라.’ 하였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만사의 근본인데 어찌 편당되고 사곡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근일에 하신 일이 사정에서 나온 것이 많으시니, 신 등은 전하께서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내수사 노자(奴子) 때문에 의금부에 명하여 **남양(南陽)의 향리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셨는데** 사(赦)로 인하여 곧 방면되었으니, 일이 비록 전파되지는 않았으나 전하의 실수는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 뒤에 홍북간(洪北間)의 일은 크게 듣기에 놀랍다가 전하께서 조정의 논의를 좇아 고치시므로, 나라 사람이 모두 전하께서 잘못을 듣자 곧 고치신다고 칭송하였는데,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전자에 잘못을 고치신 것은 억지로 애써 한 것이지 성심(誠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고치기를 성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비록 고쳤으나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 경우에 따라 다시 발(發)하게 되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이래서 전하께서 다시 이런 잘못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일반 정사와 여러 가지 일은 각각 맡은 관청이 있으므로 임금은 공평하고 밝은 데 입각하여 듣고 처리하실 뿐인 것인데, 더구나 지극히 미천한 사람들이고 송사 또한 사사로운 일이거늘, 어떻게 대내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까? 임금의 거처하는 좌우에는 환관과 궁첩(宮妾)들만이 있어 한가하고 편안한 사이에 사사로이 친밀하여 조금이라도 엄격하지 못함이 있으면 사이를 타고 틈을 엿보아 다투어 그 술책을 써 자기네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니, 폐조의 일이 거울삼을 만합니다.

이 무리들이 폐조 때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여 다시 전하에게 시험한 것이니, 오늘날이 어떤 시기인 줄이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왕법(王法)을 멸시하고 하늘의 위엄을 만홀히 여김이 심합니다. 전하께서 통렬히 다스려야 하는데, 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욕구를 이루어 주었으니, 신 등은 전하의 실수가 더욱 드러나고 사사로 청탁하는 길을 다 막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정사하시기를 공정하게 하고 사정을 쓰지 않으며, 간언(諫言)을 따르기를 실지로 하고 외양으로 하지 않으며, 실수를 고치기를 성심으로 하고 구차하게 하지 않으시되, 이 무리들을 유사(有司)에게 넘겨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대내(大內) 다스림을 엄하게 하고 사사로운 청탁을 막는 단서를 보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차자를 보니, **남양 향리(鄕吏)의 일을 말하였는데, 이는 내수사의 노비로 남양에 사는 자가 위에 고하였기 때문에 금부에 내려 추문하게 한 것이니**, 이는 이 일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장명은 성종의 보모인데, 장명과 관계없는 사람이 장명의 재산을 다투기 때문에 마침 내수사에 추문하도록 했을 뿐이다." 하였다.
○弘文館副提學李世仁等上箚曰: 臣等伏聞, 爲書題私訟, 命內需司鞫之, 不勝駭愕. 『洪範』曰: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宋太祖洞開中門曰: "正如我心. 少有邪曲, 人皆見之." 人主之心, 萬事之本, 豈可有所偏黨邪曲耶? 殿下近日之擧, 多出於私, 臣等未知殿下之意所在也. 頃者以內需奴子之故, 命義禁府, 拿鞫南陽鄕吏, 因赦卽放, 事雖未播, 而殿下之失已著矣. 其後洪北間事, 大駭聽聞, 殿下從廷論改之, 一國之人, 皆稱殿下聞過卽改, 豈意今者又有此事耶? 是殿下前者改過, 出於勉强, 非誠心也. 改過不以誠, 則其事雖改, 其心猶存, 隨遇而發, 不自覺悟, 此殿下所以復有此失也. 夫庶政萬務, 各有攸司, 人主執公處明, 聽裁而已, 況至賤至微之人, 而所訟又其私事, 何以得達於內間乎? 人主居處左右, 惟宦寺·宮妾, 燕閑私昵, 少有不嚴, 投間覷隙, 爭售其術, 以濟其私, 廢朝之事, 可以鑑矣. 此輩猶踵廢朝之習, 復試於殿下, 不知以今日, 爲何如時耶? 其蔑王法·慢天威甚矣. 殿下所當痛治, 非徒不罪, 反遂其欲, 臣等恐殿下之失益著, 而私謁之路, 難可盡防. 伏願殿下, 先正其心, 出政以公, 而不以私; 從諫以實, 而不以貌; 改過以誠, 而勿以苟, 將此輩付之攸司, 明正其罪, 以示嚴內治·杜私謁之端. 傳曰: "今見箚字, 言南陽鄕吏之事, 是則以內需奴居南陽者上言, 故下禁府推之, 是不干此事也. 長命, 成宗保母也, 有不干長命之人, 爭長命家財, 故偶以內需司推之耳."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7월 2일(계묘) 2번째기사>

정치/사법

홍문관 직제학 김준손 등이 내수사 혁파를 건의하다

홍문관 직제학 김준손(金駿孫) 등이 차자 올리기를, "신 등이, 서제(書題)의 사사로운 송사를 가지고 내수사에서 추문하게 함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일로, 우러러 천청(天聽)을 더럽혔는데,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대비께서 이미 그 일을 알고 묻도록 하시므로 내수사에서 추문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한 나라를 위하여 공도(公道)를 지켜셔야 하니, 대비께서 비록 물음이 계시더라도 그 일이 공사(公事)라면 전하께서는 공공연히 조정에 물으셔야 하고, 사사로이 정을 두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서제는 사인(私人)인 데다 송사하는 바도 사사로운 일이고 내수사 또한 사사로운 곳인데, 전하께서 사인의 사사로운 일을 사사로운 곳에서 사사로이 물으시니, 이는 한 나라를 사사로이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1년도 못되는데, 그 잘못하신 일이 대부분 내수사에서 나왔습니다. **전자에 남양 사람을 추문한 일을 전하께서는 비록 전교하시기를**, '그들이 상언(上言)하였

기 때문이다.' 하셨으나, 역시 예대로 해당 관청에 붙이셔야지 어째서 반드시 금부입니까? 내수사의 폐해가 극심하니 전하께서 통렬히 끊으시더라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까 두려운데, 더구나 또한 그대로 따르심이겠습니까? 한 번은 그 상언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금부에 내리셨고, 한 번은 그 송사로 인하여 곧 사사로이 추문하도록 하여, 그 중하고도 특이하게 여김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하시면서 사정을 쓰지 않았다 하시니, 신 등도 의심이 없을 수 없는데 더구나 조정 밖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정사를 새로 시작하셨으니, 마땅히 쌓인 큰 폐단들을 제거해야 될 것이 내수사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성종 대왕께서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한 번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시고 폐조가 있게 되었으니, 이는 신 등의 슬퍼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폐조의 남은 습관이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 전하께서는 이 폐단 없애기를 마땅히 불에 타는 사람을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 겨를 없이 하셔야 할 것인데 도리어 이러하시니, 신 등은 금일의 사세가 다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논하는 것도 이 점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공론을 시원스럽게 따르시어, 빨리 내수사를 혁파하여 쌓인 폐단을 없애고 뒤에 올 화를 막으시며, 또한 전하께서는 공정하게 하고 사사로이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홍문관의 차자에 비답할 때에, 서제(書題)가 관계되지 않은 일을 어찌하여 분석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이제 홍문관의 차자를 보면 서제의 일을 또한 언급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다. 정원에서 이를 해명함이 좋겠다."
하니, 정원에서 위의 하교대로 홍문관에 말하였다.
○弘文館直提學金駿孫等上箚曰: 臣等將書題私訟, 不宜令內需司推問事, 仰瀆天聽, 而殿下敎之曰: "大妃嘗知其事, 令問之, 故命內需司問之." 臣等以爲: '殿下爲一國守公道, 大妃雖有問, 其事公, 則殿下當公問于朝, 不宜有所私也.' 書題私人也, 而所訟私事也, 內需事又私地, 殿下私問私人之私事於私地, 是一國以私也. 殿下卽位未一年, 其所過擧, 多由內需司. 前者南陽人推問事, 殿下雖敎曰: '因其上言.' 亦宜例付該司, 何必禁府也? 內需之弊極矣, 殿下雖痛絶之, 猶懼難勝, 況又因循乎? 一則聽其上言, 遽下禁府, 一則因其訟事, 乃命私問, 示其重且異之也. 如是而曰不爲私, 臣等亦不能無疑, 況外庭之人乎? 殿下旣新厥政, 當祛積弊之鉅者, 莫甚於內需司. 成宗大王欲革之, 而卒未能, 一轉而有廢朝, 此臣等之所以於邑也. 廢朝餘習, 在今猶然, 殿下祛之者, 當如救焚拯溺之不暇, 而反若是, 臣等未知今日之勢, 復何如也. 臺諫論之者, 亦爲此懼, 伏願殿下夬從公論, 亟革內需, 以祛積弊, 以杜後禍, 又示殿下以公不以私之意. 不允. 仍傳于政院曰: "前者弘文館箚字答之之時, 書題不干事, 何不分釋言之乎? 今見弘文館箚字, 書題事亦及之, 甚不可. 政院其解說之可也." 院以上敎, 言于弘文館.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7월 4일(을사) 3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가 남양부사 윤임과 그의 장인 화량첨사 이보를 같은 역내에 제수한 문제를 논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전 승지들의 일은 시비가 분명하여 그 잘못이 심한데, 어제 하문하셨을 때에 그대로 아뢰지 않고 말을 꾸며 스스로 변명하였으니, 갈기만 하여서는 안됩니다. 파직하소서.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임(尹任)의 아내의 아비 이보(李俌)는 화량 첨사(花粱僉使)가 되었는데, 화량은 남양 지경 안에 있으므로,** 구서(舅壻)가 한 고을 안에서 성(城)을 맡기도 하고 병권(兵權)을 맡기도 하니, 사체(事體)가 온편치 못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가소서. 또 승지의 일로 시관(試官)을 추고하나, 이제 승지를 이미 갈았는데 추

고를 끝내야 합니까? 이현령(李玄齡) 등이 문과(文科)의 지동관(枝同官)·사동관(査同官)으로서 시권(試券)을 들어 거자(擧子)에게 보인 일은, 추고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으므로 나오게 하기를 청하기도 하고 형추(刑推)하기를 청하기도 하였는데, 조율(照律)시키셨습니다. 그 초사(招辭)를 보면 함께 한 일이 아닌데도 같게 죄를 입게 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아직 조율하지 말고 나오게 하여 면질(面質)하여 적발해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임·이보는 구서로서 과연 한 고을에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부사가 상관이니 아래에 있는 자를 갈도록 하라. 이현령 등이 같게 죄를 입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공사(公事)를 도로 들이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戊午/憲府啓曰: "前承旨等事, 是非判然, 其失甚矣. 昨日下問, 不以直啓, 飾辭自明, 不可只遞, 請罷職. 柳泓, 請勿敍. 南陽府使尹任妻父李俌, 爲花梁僉使, 而花梁在南陽境內. 舅壻於一邑之內, 或典城, 或典兵, 事體未便, 請遞其一. 且以承旨事, 推試官. 今已遞承旨, 其畢推乎? 李玄齡等以文科枝·查同官, 擧試券, 示擧子事, 推考不服, 故或請進來, 或請刑推, 而令照律. 見其招辭, 非所共爲, 而等蒙未便, 請姑勿照律, 進來面質, 摘發治罪." 傳曰: "尹任·李俌以舅壻, 果不可同一邑, 然府使爲上官, 則遞在下者可也. 李玄齡等蒙未便, 其公事還入可也. 餘不允."
<중종실록 52권, 중종 19년 10월 27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사법
헌부에서 죄인 옥복의 귀양길을 지체시킨 청원군 한경록의 추국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벼슬이 높고 상을 가까이 모시는 자는 아랫 백성이 모두 그를 우러러보며 감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군(淸原君) 한경록(韓景祿)【총애와 세력을 믿고 방탕하게 술마시고 어색에 음탕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은 1품 부마(駙馬)로서 왕실의 지친(至親)이 되는데 지조를 지키고 공경하며 삼가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방탕하게 주색에 빠지는 것만을 일삼아 전에 여러번 죄를 견책당하였는데도 조금도 징계하여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죄인 옥복이 배소로 도로 출발해야 하는데도 그와 더불어 도하(都下)에서 여러날 머물렀고 또 같이 **남양(南陽)을 왕복하면서 임의로 머물러두고 보내지 않은 것이 지금 벌써 한 달포가 되었습니다.** 그 방자함이 이 지경에 이른지라 원근의 보고 듣는 자가 모두 놀라니 조정의 기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부에 내려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남양부사 이집(李楫)**【청원군 집과 혼인하여 음탕한 짓을 마음대로 하면서 당(黨)을 맺었다】도 아울러 추문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을 보니 지극히 놀랍다. 그러나 1품의 부마이고 또 공신(功臣)에도 참여하였는데 금부에 내리는 것은 지나친 것 같으니 먼저 파직하고 그 뒤에 추국할 것이며 이집은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오랫 동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丙辰/憲府啓曰: "近來紀綱鮮弛, 人不畏法, 豈不寒心? 在貴近之地者, 下民之所具瞻, 而從化者也. 淸原君韓景祿,【怙寵恃勢, 縱酒淫色, 無所不至】以一品駙馬, 爲王室至親, 非但不以操持敬忌爲心, 惟以放蕩沈湎爲事, 前者累被罪譴, 而少無懲艾. 頃日罪人玉福之還發配所, 敢與之留連都下, 又與之往還南陽, 擅留不遣, 今已閱月. 縱恣無狀, 至於此極, 遠近見聞, 莫不駭愕. 朝廷之紀綱何在? 請下禁府, 推鞫治罪. 南陽府使李楫,【與淸原君爲婚, 縱淫爲黨】請竝推治." 答曰: "觀此啓意, 極爲駭愕. 然以一品駙馬, 又參功臣, 下禁府似過. 先罷後推, 李楫推考." 久啓不允.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6월 10일(병진) 1번째기사>

정치/사법

소금을 굽기 위해 남양의 백성이 덕물도에서 땔감을 채취하다 도적에게 습격을 당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변방의 장수를 잘못 선택하는 일이 많아, 적을 방어할 계책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책을 구차히 회피할 줄만 알아서 비록 도적을 만나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도 그 자취를 숨기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자가 흔히 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지난 2월 초에 남양(南陽)에 거주하는 60여 인이 소금을 굽기 위하여 덕물도(德物島)에 가서 땔감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중국인인지 왜인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도적들이 불의에 습격하여 배를 빼앗고 섬 안에 버려둔 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는 배를 만나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 살해되지 않은 것만도 큰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 정형국(鄭亨國)은 도적들을 즉시 추포(追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공갈하여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금부로 하여금 추국하여 그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甲戌/諫院啓曰: "近來邊將, 多不得人, 不思備禦之策, 惟知罪責之苟避, 雖有逢賊被擄之事, 亦必謀匿其跡, 不以實聞者, 比比有之, 至爲寒心. 頃在二月之初, **南陽居人六十餘名, 因煮鹽取薪於德物島**, 而唐·倭未辨之賊, 掩其不意, 至於奪其船, 而投置其人於島中. 其人等偶逢過去之船, 僅得生還. 其不被殺害者, 幸也. 其時水使鄭亨國, 非徒不卽追捕, 恐喝傳播之人, 使不得發言, 極爲駭愕. 請命禁府推鞫, 以定其罪." 答曰: "如啓."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3월 19일(갑술) 1번째기사>

정치/사법

경기 감사가 관아의 공궤를 지나치게 한 남양 부사 정윤희의 파직을 청하다

경기 감사가 서장을 올리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윤희(丁允禧)는 관아의 공궤(供饋)가 매우 번잡하니 파직할 것으로 입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윤희는 시종에서 출발하여 나아가 한 부중을 맡고 있으니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자식같이 사랑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아에서의 공궤를 번거롭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다만 정윤희에게는 노모가 있고 또 지금 한창 농사철이라서 바꾼다면 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범한 죄는 탐오(貪汚)와는 차이가 있으니 경이 글을 보내어 힐책해서 그로 하여금 공궤를 간략하게 하고 스스로를 삼가서 마음을 다해 백성을 어루만지는 공효를 세우도록 회유하라." 하였다.

○丁丑/京畿監司書狀: **南陽府使**丁允禧, 衙供甚煩, 請罷事. 入啓, 傳曰: "丁允禧發自侍從, 出宰百里, 宜竭其心, 子愛小民, 以爲報國之地, 而乃煩其衙供, 使民不堪, 罪在不赦. 但允禧有老母, 且時方農月, 改易有弊. 其所犯, 與貪汚有間, 卿宜移書責之, 使之簡約自愼, 盡心撫民, 以自效事回諭."

<선조실록 12권, 선조 11년 5월 27일(정축) 1번째기사>

정치/사법

간원이 남양의 수령으로 관고의 물품을 수송해간 경기 수사 김오 등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기 수사(水使) 김오(金鋘)는 남양(南陽)에서 체임(遞任)되어 갈 때**

관고(官庫)의 물품을 공공연히 수송하여 갔으니 파직하고, 경상도 수우후(水虞候) 송익수(宋益壽)는 성질이 패려하고 주사(酒邪)가 있으니 파직하고,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 고현(高賢)은 도주(道主)를 능멸하였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庚戌/司諫院啓: "京畿水使金鋘, 以南陽移除遞去之時, 官庫之物, 公然輸去, 請罷, 慶尙水虞候宋益壽, 悖戾酗酒, 請罷, 司僕主簿高賢, 凌蔑道主, 請罷." 依啓.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7일(경술) 1번째기사>

정치/사법
간원이 공조 판서 박충간이 남양에 성묘가는 것을 청했다고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공조 판서 박충간(朴忠侃)이 남양(南陽)에 있는 조부의 산소에 성묘를 가겠다고 청한 것은 법을 무시한 상소입니다**.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한 짓을 하는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법을 집행하는 뜻은 지극하다. 그러나 인정이 지극한 바에는 간혹 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파직까지는 불가하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司諫院啓: "工曹判書朴忠侃, 以祖墳在南陽, 請拜掃, 冒法上疏. 恃功驕恣之漸, 不可長也. 請罷職." 答曰: "執法之意至矣. 但情之所至, 法有時而不行. 不可至罷. 不允."
<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9월 27일(기축) 4번째기사>

정치/사법
사간원이 남양에서 충청도의 진공미선을 억류한 박충간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 **상산군(商山君) 박충간(朴忠侃)**은 앞서 임진(臨津)의 진중(陣中)에 있을 때에 이미 군사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여 어지럽힌 죄가 있고 임진탄(臨津灘)에서 패배한 뒤에는 안변(安邊)으로 도망쳐 들어가 운량(運糧)이라고 거짓 칭하면서 쌀을 싣고 난을 피하였으며, **갑자기 남양(南陽)에 나타나서는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진공미선(進供米船)을 억류하였습니다.** 전후 거짓 문서를 꾸며 군량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혹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대로 시용(施用)한 적이 없습니다. 또 국법을 아랑곳 하지 않고 고을을 버린 죄를 범한 아들을 사사로이 종사관(從事官)이라 칭하면서 데리고 다녔으며, 조정에서 이미 결장(決杖)하여 종군(從軍)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버젓이 데리고 왔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박충간은 훈신(勳臣)이어서 따를 수 없고 조인득은 지금 중임(重任)을 맞고 있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 하였다.
○乙亥/司諫院啓曰: "(…) 商山君朴忠侃, 前在臨津軍中, 旣有驚亂軍心之罪. 及其津灘潰散之後, 遁入安邊, 假名運糧, 載米避亂, 旋到南陽, 勒留忠淸進供米船. 前後虛張文簿, 以助糧爲誘, 而了無施用之實. 且不顧國法, 乃以棄邑犯罪之子, 私稱從事官帶行, 朝廷旣有決杖從軍之命, 又復偃然率來, 請命先罷後推. (…)" 答曰: "依啓. 朴忠侃勳臣, 不可從, (…)"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8일(을해) 1번째기사>

정치/사법
사간원이 침박만 일삼는 남양 부사 전현룡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전현룡(田見龍)은 본래 탐욕스럽고 방종한 사람으로 일찍이 역임하는 데마다** 오로지 침박(侵剝)만을 일삼다가 드러나게 물론(物論)을 받았

었습니다. 기보(畿輔)는 판탕된 곳이어서 결코 이런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전현룡은 체차하고 이응호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司諫院啓曰: "南陽府使田見龍, 本以貪縱之人, 曾所履歷, 專事剝割, 顯被物論. 畿輔板蕩之地, 決不可付諸此人之手. 請命罷職. (…)" 答曰: "田見龍遞差, 李應虎衣啓.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2일(임인) 2번째기사>

정치/사법
사간원이 노쇠한 남양 부사 윤인함의 체차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는 수령에게 백성의 휴척(休戚)이 매인 것이 여느 때에 비해 더욱 급박하니, 수령을 신중하게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인함(尹仁涵)은 성질이 본래 느린데다가 나이도 노쇠하니 목민관에 합당치 못합니다.** 체차시키소서. (…)" 하니, 상이 따랐다.
○司諫院啓曰: "當此蕩敗之餘, 守令之係生民休戚者, 視平時尤急, 不可不愼擇. 南陽府使尹仁涵, 性本弛緩, 年且衰耗, 不合臨民之官. 請命遞差. (…)" 上從之.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4일(정사) 3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헌관 예차에 뽑혔음에도 멋대로 남양 집으로 간 박충간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산군(商山君) 박충간(朴忠侃)**이 지난번에 종묘 하향 대제(宗廟夏享大祭)의 헌관 예차(獻官預差)에 뽑혀 서계(誓戒)를 받은 후 청재(淸齋)로 들어가지 않고 멋대로 **남양(南陽) 땅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재열(宰列)에 있는 몸으로 말미도 받지 않았으며, 또 제관(祭官)에 차임된 몸으로 멋대로 나갔으니 기탄없이 방자하여 국법을 무시한 죄가 큽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박충간을 추고하라." 하였다.
○司憲府啓曰: "商山君朴忠侃, 頃差宗廟夏享大祭獻官預差, 受誓戒之後, 不入淸齋, 偃然下歸南陽地鄕家. 身居宰列, 不爲受由, 以差祭之官, 任意出去, 其縱恣無忌, 不有邦憲之罪大矣. 請命罷職." 答曰: "朴忠侃推考."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2일(무술) 2번째기사>

정치/사법
지평 남탁이 잘못된 처사와 형벌을 남용한 남양 부사 한회의 파직을 청하다
지평 남탁(南晫)이 와서 아뢰기를, "부평 부사(富平府使) 이여온(李汝溫)은 그의 이력에 있어 뚜렷한 성적이 없었고, **남양 부사(南陽府使) 한회(韓懷)는 도임한 뒤에 처사가 전도되고 형벌이 지나쳐 크게 인심을 잃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持平南晫來啓曰: "富平府使李汝溫, 曾所履歷, 別無表表聲績, 南陽府使崔禧, 年衰才劣, 請命遞差. 廣州牧使韓懷, 到任之後, 處事顚倒, 刑罰過中, 大失人心, 請命罷職." 答曰: "依啓."
<선조실록 112권, 선조 32년 윤4월 5일(계미) 2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남양 부사 이세온을 공곡의 착복 등을 이유로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세온(李世溫)은 전에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있을 적에 중국군이 지나가면서 쇄마(刷馬)를 내어달라고 요구하자** 중국군의 수행 통사(通事)가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어 틈을 타서 그를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 즉사시킨 뒤에, 처음에는 수금하여 형추하는 것처럼 감사에게 보고하였고 이어 중병으로 관청에 출보(出保)되었다고 보고했다가 곧바로 물고(物故)하였다고 보고했으니, 매우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해서(海西)의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에는 공가(公家)에서 곡물을 사들일 남포(藍布)의 값을 관가의 힘으로 마련하여 수를 충당시켜 놓고 그 남포는 공공연하게 자기가 차지하여 연안(延安)의 인가(人家)에 옮겨 놓았는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보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 정상이 너무도 놀라우니 이런 사람을 다시 수령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壬申/司憲府啓曰: "南陽府使李世溫, 前爲原州牧使時, 有唐兵過去, 責出刷馬, 怒其跟行通事, 不爲止之, 乘間捉致, 杖之卽斃後, 始以囚禁刑推樣, 報監司, 旋以病重出保官廳報之, 又卽報以物故, 極爲無狀, 而且爲海西守令時, 公家貿穀藍布價, 則官力措備, 充數其藍布, 公然入己, 移置於延安人家, 過客莫不見之, 其情狀, 亦爲駭愕. 如此之人, 不可復爲守令, 請命罷職不敍." 答曰: "依啓."
<선조실록 128권, 선조 33년 8월 2일(임신) 1번째기사>

정치/사법

우부승지 한찬남이 대죄하면서 남양에서 윤공의 전지를 빼앗는 일 등을 한 박이서를 비판하다

우부승지 한찬남이 아뢰기를, "신은 **박이서**에 대해서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미워하여 그와 함께 반열에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유영경의 심복이 되고 유영경의 졸개가 되었기 때문으로, 그의 흉악스런 상황은 말하자면 깁니다. 삼가 보건대, 요즈음에도 뉘우치지 않은 채 악한 짓을 하고 기세를 돋우며, 탐욕스럽고 방자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의 불룩한 늙은 배는 모두가 욕심 주머니로, 권엽을 지휘하여 백성들을 사역시키고 나라 땅을 함부로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5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괭이를 든 채 신음하였고 한 식경 길이나 되는 긴 제방이 용이 누운 듯 구불구불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남양(南陽)에서는 윤공(尹鞏)의 전지를 빼앗았고** 유지신(柳止信)이 경기 수사가 되었을 때에는 1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부려서 하루도 못되어 제방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공공의 내포(內浦)를 도모하여 차지한 것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백금 1천 냥을 내어 몇 구역에 걸쳐 있는 널따란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의 탐욕스럽고 교활한 정상은 온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고려 말기의 최충헌(崔忠獻)이나 최항(崔沆), 우리 조선의 김안로(金安老)나 윤원형(尹元衡)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짓을 하였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명(李溟)·김시언(金時言)·정복형(鄭復亨) 등 세 사람이 임금을 저버리고 역적을 비호한 죄는 위로 천지 귀신에게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이서는 장관의 말도 기다리지 않고 동료의 의논을 배척한 채 이에 감히 신리(伸理)하는 줄에 끼워 넣어 서계하였습니다. 아, 박이서가 이들 세 사람의 죄가 원통하다고 여긴다면 장차 임금을 어디에다 두려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가 마음대로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는 이루 다 주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을 서계한 것은 박이서요, 권엽을 지휘한 자도 박이서로, 박이서는 바로

죄수의 우두머리이고 역적의 괴수입니다. 권엽이 박이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5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동원해서 천석지기나 되는 넓은 땅에 제방을 쌓았겠으며, 박이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을 봉한 채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제방을 쌓은 죄를 논하자면 박이서를 먼저 논하고 권엽을 다음으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엽은 박가(朴家) 집안의 지휘하에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 어찌 입에 올릴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분노가 골수에 차 있는 터에 헌부의 계사를 보니 먼저 박이서의 정곡을 정확히 공격하였는바 참으로 바른 논의였습니다. 이에 신은 어제 글을 보내기를 '귀부(貴府)의 계사는 근본을 다스리는 뜻을 아주 깊이 얻었는바, 감복하고 감복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간원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간원이 박이서의 죄를 느슨하게 다스렸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신이 우연히 언급한 말로 인하여 간신(諫臣)이 인피하게 되었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땅에 엎드려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乙卯七月二十二日丁卯, 右副承旨韓纘男啓曰: "臣於朴彝敍, 嘗惡其爲人, 恥與爲列. 以其腹心於永慶也, 爪牙於永慶也, 鬼蜮之狀, 言之長矣. 竊觀近日, 爲惡不悛, 張其氣勢, 貪婪縱恣, 罔有紀極. 彭亨老腹, 都是欲囊, 指揮權曄, 驅役王民, 冒據國土. 五萬丁壯, 荷鋤嗷嗷, 一息長堤, 臥龍隱隱. 加以南陽, 奪尹鞏之田, 柳止信爲京畿水使時, 使役千夫, 不日堤成. 其餘公洪內浦之經營奪占者, 亦不可盡紀, 捐千兩之白金, 買數區之甲第. 貪猾之狀, 一國皆知, 雖麗季之崔忠獻·崔沆·我國之安老·元衡, 未聞有如此之事也. 況李溟·金時言·鄭復亨等三人, 負君護逆之罪, 上通天地鬼神. 而彝敍不待長官之言, 排斥同僚之議, 乃敢書啓於伸理之列. 噫! 彝敍以三人之罪爲冤, 則其將置君父於何地也? 其專擅無法無君之罪, 可勝誅哉? 然則書啓三人者彝敍也, 指揮權曄者彝敍也, 彝敍乃罪之魁賊之首也. 曄非彝敍, 何以動五萬之衆, 築千石之地乎? 曄非彝敍, 則何至今箝人之口舌而安享至此也? 臣之愚意以爲'論築堤之罪, 則先彝敍而次權曄可也.' 曄則朴家鈴下蒼頭也, 何足掛於齒牙間乎? 臣憤氣塡骨, 及見憲府啓辭, 首攻彝敍大頭腦, 眞正論也. 臣於昨日抵書曰: '獨貴府啓辭, 深得治本之意, 敬服敬服' 云云. 非語侵於諫院也, 非以諫院緩治彝敍之罪也. 緣臣偶及之語, 致令諫臣引避, 臣罪大矣. 伏地惶恐待罪." 答曰: "勿待罪."

<광해군일기 92권, 광해 7년(1615) 7월 22일(정묘) 1번째기사>

정치/사법

양사에서 전 참판 박이서의 징계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전 참판 박이서(朴彝敍)는 본디 비루한 사람으로 유영경(柳永慶)의 심복이 되었는데도 요행히 죄를 면하였으며, 그의 기세를 믿고는 탐욕스럽기 그지없었으며, 염치를 돌아보지 않아 이끗만을 좇았습니다. 전 군수 권엽(權曄)은 그의 아들 박노(朴𡩠)의 장인입니다. 권엽이 재령 군수(載寧郡守)로 있을 때 군내에 둘레가 30 리가 되는 노전(蘆田)이 있었는데, 박이서가 권엽으로 하여금 온 군의 전결(田結)을 다 기울여서 5만 명이나 되는 민력을 동원하도록 하여 혹독하게 부려 원망을 쌓으면서 마구 개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는데 〈한 해의 소출이 무려 수천 석이나 됩니다.〉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금지(禁地)를 경작하였는바, 임금을 깔보고 방자하게 군 죄가 여기에 이르러 큽니다. 사사로이 백성을 동원한 것이 10명만 되어도 오히려 죄를 받는데, 더구나 5만여 명이나 되는 데이겠습니까. 함부로 나라의 전지를 경작한 것은 비록 적은 것을 경작하였더라도 용서함이 없는 법인데, 더구나 3백여 석을 씨부릴 만한 전

지인 데이겠습니까.
그리고 **수십 석을 씨부릴 만한 넓이의 첨지 윤공(尹鞏)의 남양(南陽)에 있는 언답(堰畓)을 빼앗아**, 그의 사돈인 유지신(柳止信)이 경기 수사로 있을 때 수군 수천 명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아 전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 그의 아들 박노가 가서 그 역사를 감독하였는데 얼마 안 걸려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 역사를 시작할 때 윤공이 자제를 보내어 문권(文券)을 보여주며 저지시키자 또다시 욕설을 퍼부으며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는 공공연히 갈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윤공은 그의 기세가 두려워서 몇 년 동안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다가 어제서야 이런 곡절로 헌부에 정장(呈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박이서가 그의 기세를 돋우어 방자하게 다른 사람의 전지를 빼앗은 정상은 비록 김안로(金安老)나 윤원형(尹元衡)의 간사함으로도 이보다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금부의 죄인을 서계할 때에는 공론을 무시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혼자서 담당하여 감히 이명(李溟)·김시언(金時言)·정복형(鄭復亨) 등을 임의로 서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임금을 저버리고 역적을 비호한 역적들로 녹안(錄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 차례 대사면을 거쳤어도 오히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법을 중히 여기고 역적을 엄하게 토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이서는 감히 원통하다고 지적하면서 심리(審理)하는 가운데다 태연히 서계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박이서가 만약 이 세 사람이 원통하다고 여겼다면 앞으로 임금을 어느 곳에다가 놓으려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는 역적 의(議)의 옥사를 헛된 일로 여겨 뒷날 뒤엎을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일망타진할 화를 일으키려 한 것이니, 마음 씀씀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죄악이 이와 같이 분명한데 어떻게 자세한 사실 조사를 기다린 후에 처치하겠습니까. 속히 잡아다가 국문하여 율에 의거해 죄를 정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府院合啓曰: "前參判朴彝敍, 本以麤鄙之人, 爲永慶爪牙腹心, 幸而網漏, 恃其氣勢, 貪婪無厭, 不顧廉恥, 惟利是急. 前郡守權曄, 其子舍之妻父也. 曄爲載寧郡守時, 郡地有蘆田, 周回可三十里之地, 彝敍使曄傾一邑之田結, 動五萬之民力, 剝膚推髓, 築怨灌血, 肆然耕墾, 作爲己物.(一歲之入, 無慮數千.) 不有邦憲, 擅耕禁地, 其無君縱恣之罪, 至此大矣. 私發民丁, 至於十名, 猶有其罪, 況多至於五萬餘名乎? 擅耕國田, 雖少罔赦, 況三百餘石落種之地乎? 且奪僉知尹鞏南陽之堰(畓)數十石落種之地, 其査頓柳止信, 爲京畿水使時, 發水軍數千名, 築堰爲畓. 其子朴舍, 往董其役, 不日成之. 而當其始役也, 尹鞏送子弟, 示以文券止之, 則又加詬辱, 使不得接足, 仍作己物, 公然耕食. 尹鞏畏其氣勢, 不敢出言者, 有年矣. 昨日以此曲折, 呈狀于憲府矣. 以此觀之, 則彝敍之張其氣勢, 奪人田畓縱恣之狀, 雖安老·元衡之奸, 未有甚於此也. 況今者禁府罪人書啓之時, 不有公論, 攘臂獨當, 敢以李溟·金時言·鄭復亨等, 任意書啓. 此人等皆以負君護逆之賊, 昭載錄案, 累經大赦, 猶未參宥, 所以重國法而嚴討逆也. 彝敍乃敢指以爲冤, 偃然書啓於審理之中, 略無忌憚. 彝敍若以此三人爲冤, 則將欲置君父於何地也? 其以逆議之獄爲虛事而爲他日翻轉之機, 媒將來網打之禍, 其心所在, 有不可測也. 渠之罪惡, 昭著如此, 豈待覈實, 然後處置耶? 請亟命拿鞫, 依律定罪." 答曰: "勿爲煩論."
<광해군일기 93권, 광해 7년(1615) 8월 5일(기묘) 3번째기사>

정치/사법

역변을 고한 죄인 문경천의 공초 내용

문경천이란 자는 자칭 경주 교생(校生)이라 하였는데, 당초 포도청에 붙잡혀 전옥(典獄)에 수감되어 있다가 스스로 죄가 커서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살아날 계책으로 마침내

역변을 고한 것이었다. 그의 공초에 이르기를, “계축년 9월에 도감(都監)에서 판매하는 면포를 받아 은을 사가지고 올라와 주인(主人) 집에다 두었는데 도둑을 맞는 바람에 노비를 팔아 겨우 갚았습니다. 알성시(謁聖試)를 보기 위하여 모화관(慕華館)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영조문(迎詔門) 근처에서 말달리기를 하곤 하였는데, 이름을 모르는 5, 6인이 말을 사겠다고 하면서 장흥동(長興洞)에 사는 김입신(金立信)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말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고 술을 사주면서 성명을 묻기에 대답해 주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길에서 윤기(尹錡)라는 자를 만났는데, 동대문 안 제2교(第二橋) 가의 주인(主人)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전일 김입신 집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그 집에 있었는데, 또 술을 사서 서로 마시면서 글씨를 써놓은 종이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맹세하는 말이었는데 종이 끝에 각기 성(姓) 자를 써놓았고, 그 중에 3인은 이미 서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윤기가 답하기를 ‘네가 서명을 하면 말해주겠다.’고 하여, 서명을 하였는데, 그래도 말해주지 않다가 황혼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려는 일을 너도 하겠느냐?’고 묻기에 ‘너희가 하는 일은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윤기가 ‘나와 정호의(鄭好義)는 충청도에서 군사를 모으고, 김입신(金立信)·황난수(黃蘭秀)는 황해도에서 군사를 모으고, 너는 경상도 사람이니 김경남(金慶男)과 경상도로 가야 한다.’고 하기에 ‘말한 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변(告變)을 하려던 참에 예천에 사는 충찬위(忠贊衛) 이사음(李嗣音)이 빚을 받기 위해 대장(大將)에게 부탁하여 저를 가두었으므로 마침내 전옥 참봉(典獄參奉)에게 고변을 하였습니다. 얼마후 김경남이 언문(諺文)으로 쓴 36명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은밀히 말하기를 ‘나는 글을 모르니 네가 진서(眞書)로 쓰라. 이는 바로 전년에 역모를 할 적에 모집한 군사의 수효인데, 이 문서는 지난해부터 만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옥관으로 하여금 김경남을 잡아 가두게 하고는 포도청 군관 2인이 마침 그 곳에 있기에 윤기·김입신·정호의·황난수의 성명과 거주지를 말해 주어 체포하여 가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홍준(金弘俊)이라는 자가 마침 왔는데 김경남이 같은 당이라고 하여 옥관을 시켜 수금하게 하였습니다. **당초 같이 모의한 6인 중에 최시망(崔時望)은 추노(推奴)의 일에 관련되어 남양(南陽)에 갇혀 있고**, 김우립(金友立)은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30여 인은 각기 그 무리가 있는데 괴수는 전 양구 현감(楊口縣監) 이정남(李庭男)입니다. 태묘(太廟)에 부묘할 때에 군대를 모아 반역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김경남과 대질심문을 해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文擎天者, 自稱慶州校生, 初爲捕盜廳所捉, 囚於典獄. 自知罪大難免, 爲死中求生之計, 遂上變告. 其供辭曰: “癸丑年九月, 受都監興販綿布, 貿銀上來, 接置于主人家, 見失於偸兒, 放賣奴婢, 僅得償納. 以謁聖觀光, 習射于慕華館, 馳馬於迎詔門近處. 有名不知五六人, 托稱買馬, 率往于長興洞居金立信家, 更不言買馬之事, 沽酒饋之, 問以姓名, 不言而還. 翌日路上逢尹錡稱名者, 引往於東大門內第二橋邊主人家, 則昨日金立信家聚會人, 皆在其家. 又爲沽酒相飮, 出紙筆, 書以示之, 皆盟誓之言. 紙末書各人姓字, 其中三人, 已着署矣. 問曰: “此何事也?” 尹錡答曰: ‘汝着署則當言之.’ 着署而亦不言, 至黃昏始言曰: ‘吾等所爲之事, 汝亦爲之乎?’ 答曰: ‘當依汝等所爲.’ 尹錡曰: ‘吾及鄭好義則聚軍于忠淸道, 金立信·黃蘭秀聚軍于黃海道, 汝則慶尙道人也, 當與金慶男, 往慶尙道.’ 答曰: ‘當如所言.’ 方欲告變之際, 醴泉居忠贊衛李嗣音, 以徵債事, 囑于大將囚我, 遂告于典獄參奉. 少頃, 金慶男持諺書三十六名都目而來, 密言曰: ‘吾則不解文, 汝以眞書書之. 此乃前年逆謀聚軍之數也, 此書自

前年爲之者也.’ 遂令獄官囚慶男, 捕盜軍官二人適在其處, 遂言尹錡·金立信·鄭好義·黃蘭秀姓名·居住, 使之捕捉囚之. 金弘俊稱名人, 適然來到, 金慶男亦自謂同黨, 令獄官囚之. 當初同謀六人中, 崔時望以推奴事, 被囚於南陽, 金友立時在京中. 都目中三十餘人, 各有其黨, 魁首則前楊口縣監李庭男也. 欲於祔太廟時, 聚軍謀逆. 與金慶男面質, 則可知虛實也.”
<광해군일기 94권, 광해 7년(1615) 윤8월 2일(병오) 6번째기사>

정치/사법

사간원이 반정을 관망하면서 남양의 의병을 구속한 경기 수사 이시언의 체차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경기 수사(京畿水使) 이시언(李時言)은 성품이 본래 간사하고 교활한데다가 탐욕스럽기까지 합니다. 임해군(臨海君)의 옥사 때 자신이 혼자 앞장서서 담당하였습니다. **의거할 때 군대를 정비하여 변을 관망하면서 남양(南陽)의 의병을 구속하였으니**, 그 의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잡아다 국문하소서.” 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하였다. 그 뒤에 양사가 합계하여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시언이 의병을 구속한 일은 곧 그의 직분상 해야 할 것이었으니, 죄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임해군의 옥사를 독자적으로 담당했다 하니, 파직하라.” 하였다. (…)

○丁未/諫院啓曰: (…) 又啓曰: “京畿水使李時言, 性本奸猾, 加以貪黷, 臨海之獄, 挺身獨當. 擧義之日, 厲兵觀變, 拘縶南陽之義旅, 其心所在, 有不可測. 請拿鞫.” 上曰: “遞差.” 其後, 兩司合啓以請. 上曰: “李時言拘縶義旅之事, 乃職分內所當爲者, 無可罪之事, 而臨海之獄, 獨自擔當云, 罷職.” (…)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1623) 3월 17일(정미) 1번째기사>

정치/사법

남양부사 이명한의 첩보에 경평군이 종을 풀어 소를 훔치는 등의 소란을 일으키다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이 내계(來啓)하여, 김반(金槃)의 침노와 모욕을 무겁게 입었으므로 감히 와서 대죄한다고 하니, 집의 김반이 이 문제로 인피하기를, “**지난날 본부가 남양 부사 이명한(李明漢)의 첩보를 받으니 ‘경평군이 종을 풀어 소를 훔쳤기에 그 종을 잡아 가두었는데 탈옥하여 달아났다**. 부리(府吏)에게 화풀이하여 무수히 곤장으로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보를 동료에게 회람시키고 그 궁노를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들리기를 경평군이 친히 부리의 집에 가서 그 부리 및 처자를 잡아 말채찍으로 몸소 매우 친 다음 집안에 구치하였다고 하니, 이는 실로 근고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그의 계사를 보니 신의 성명을 들어 마치 신이 남의 사주를 받은 듯이 진술했습니다. 신의 용렬로 인하여 법부의 체면이 이 지경으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그뒤 관무재(觀武才)를 하기 위해 모화관에 거둥했는데, 늑이 상에게 하소연하기를, “김반·홍서봉(洪瑞鳳)·이명한(李明漢)이 신을 너무나 심히 무고하여 노복을 가두고 치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가련히 살펴 주소서.” 하자, 상이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였다. 양사가 모두 늑을 파직시키도록 청하였는데, 여러번 아뢴 뒤에야 따랐다.

○慶平君玏, 來啓以爲: “重被金槃之侵辱, 敢來待罪.” 執義金槃以此引避曰: “頃日, 本府因南陽府使李明漢牒報以爲: ‘慶平君縱奴竊牛, 及其捕囚, 脫獄而走, 移怒府吏,棍打無數’云. 以其文報, 通示同僚, 囚其宮奴. 卽聞慶平君, 親往府吏家, 獲其吏及妻子, 以馬鞭, 手自緊打, 拘置宮內, 此實近古所未有之事. 今見其啓辭, 擧臣姓名, 若以臣爲聽人陰囑者然. 緣臣

庸懦, 致令法府風采, 墜落至此, 請命遞斥." 答曰: "勿辭." 其後, 因慕華館觀武才 擧動, 功訴於上曰: "金槃·洪瑞鳳·李明漢, 誣臣太甚, 囚治奴僕, 非止一再, 請垂矜憐." 上亦優容之. 兩司竝請罷職, 累啓而後, 從之.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1628) 10월 9일(병신) 2번째기사>

정치/사법

경천감 조인섭 등을 역적으로 무고한 죄인 박천건을 처형시키다

무고(誣告)한 죄인 박천건(朴天建)을 사형에 처하였다. 천건이 도둑으로 홍주 병사(洪州兵使) 송영망(宋英望)에게 잡혔는데, 그를 문초하니, 천건이 말하기를, "나는 도둑이 아니라, 장차 고변(告變)할 일이 있습니다. 경천감(慶川監) 조인섭(趙麟躡)이 일찍이 그의 일족인 조정회(趙廷檜), 정회의 아들 조서익(趙瑞翼), 안산인(安山人) 조정한(趙廷翰), 종실 영안감(永安監), 영안감의 아들 이세민(李世敏), 인천인(仁川人) 김선명(金善鳴)과 함께 모여 나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운이 병자년에 다한다. **남양인(南陽人) 조량(趙亮)에게 물으니, 그 역시 병자년이 길하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영망이 이를 아뢰니, 드디어 인섭 등을 나포해 오도록 명하였다. (…)

○丁酉/誣告罪人朴天建伏誅. 天建以偸盜, 見捕於洪州兵使宋英望. 按問之, 天建曰: "我非偸盜, 將有告變之事矣. 慶川監麟躡, 曾與其族人趙廷檜·廷檜之子瑞翼·安山人趙廷翰·宗室永安監·永安之子世敏·仁川人金善鳴相會, 謂我曰: "國運盡於丙子. 問於**南陽**人趙亮, 則亮亦以丙子爲吉' 云." 英望以此啓聞, 遂命拿麟躡等來. (…)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1635) 10월 20일(정유) 1번째기사>

정치/사법

양사가 합계하여 남양에 갔다가 호종에 늦은 조익 등의 국문을 청하다

양사가 합계(合啓)하기를, "군주가 아무리 갑작스럽게 피난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신하된 입장에서는 의리상 말고삐를 잡고 수행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호종(扈從)할 때 뒤떨어진 사람을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낱낱이 조사하게 한 뒤,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 및 일찍이 시종(侍從)을 거친 사람으로 집이 하루 거리에 있는 자는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문관·무관·음관(蔭官)으로 현재 직명(職名)을 가지고 있는 자는 파직시켜 서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심지어 행 호군 심지원(沈之源)은 강도의 성이 함락되던 날 상놈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성을 넘어 도망하여 구차스럽게 살기를 탐하였으며, 전 직강 이일상(李一相)은 대가(大駕)를 호종하여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도로 나와 끝내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물정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전 판서 조익(趙翼)은 종백(宗伯)인 중신(重臣)으로서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가는 직임에 임명되었는데도 공공연히 뒤에 떨어져 남양(南陽)으로 갔다가 맨 뒤에야 뒤따라 강화에 들어갔으며,** 적이 나루에 가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으니, 난리를 당하여 나라를 저버린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전 정랑 최시우(崔時雨)는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가는 관원으로서 강도가 함락되었을 때 앞질러 먼저 도망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루거리에 집이 있었던 자는 파직만 하라." 하였다.

○兩司合啓曰: "去邠之擧, 雖出倉卒, 爲人臣子者, 義當執羈靮以從. 今番扈從落後人, 令吏·兵曹一一查覈, 在宰列者及曾經侍從人, 家在一日程者, 請竝削奪官爵, 文·武·蔭時帶職

名者, 罷職不敍. 至於行護軍沈之源, 江都城陷之日, 變着常漢之服, 踰城逃走, 苟且偸生; 前直講李一相, 扈駕入城, 翌日還出, 終不更入, 物情莫不駭異. 請竝削奪官爵, 門外黜送. 前判書趙翼, 以宗伯重臣, 差宗廟陪往之任, 公然落後, 迤往南陽, 最後追入江華, 聞敵逼津, 乘船逃去. 臨亂負國之罪, 不可不治. 前正郎崔時遇, 以宗廟陪往之官, 江都被陷之日, 徑先逃去, 請竝拿鞫定罪." 答曰: "依啓. 家在一日程者, 只罷其職."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1637) 2월 20일(경인) 4번째기사>

정치/사법

청나라에 세자의 귀환을 요청했던 정조 부사 이경헌과 서장관 신익전을 유배보내다

정조(正朝)의 부사(副使) 이경헌(李景憲)과 서장관 신익전(申翊全)을 의금부에서 붙잡아 신문토록 하였는데, **곤장을 쳐서 남양(南陽)·양주(楊州) 등으로 정배하게 하였다**. 이는 이경헌 등이 상의 분부를 따르지 않고 세자를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함으로써 원손(元孫)을 심양으로 들여보내는 일이 생겼으므로 상이 이렇게 명한 것이다. 헌부와 간원이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戊子/拿正朝副使李景憲·書狀官申翊全于義禁府, 決杖, 定配於南陽·楊州等地. 上以李景憲等不遵上旨, 請還世子, 致令元孫有入瀋之擧, 故有是命. 憲府·諫院啓請還收, 上不從.
<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1640) 윤1월 6일(무자) 1번째기사>

정치/사법

간원이 상원 군수 안광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과 남양 부사 이상형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상원 군수(祥原郡守) 안광립(安光立)은 병자년의 난리 때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관하(管下)로 토산(兎山)의 전투에 임하여 버젓이 도주하였는데도 형장(刑章)을 면했으므로 지금까지도 그 말을 듣는 자는 모두 깊이 개탄합니다. 아무리 과거사라 하더라도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상형(李尙馨)은 오직 제몸을 살찌게 하는 것만 일삼아 온 경내가 원망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諫院啓曰: "祥原郡守安光立於丙子之亂, 以都元帥金自點管下, 當兎山之戰, 公然逃走, 得免刑章, 至今聞者莫不痛惋. 事雖旣往, 罪在罔赦, 請削去仕版. 南陽府使李尙馨, 專事肥己, 闔境怨咨, 請罷職." 從之.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1642) 7월 28일(병신) 2번째기사>

정치/사법

대사헌 홍무적이 자신의 차자에 대한 승정원의 공척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홍무적이 아뢰기를, "승정원의 신하가 본부(本府)의 차자 내용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소를 올려 공척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고금에 없는 일입니다. 고작 이경증을 탄핵하는 공론을 저지하기 위해 먼저 대간을 공척한 것이 이렇게까지 극도에 달했으니, 그 마음의 소재를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아뢸 적에는 너무 박절함을 혐의하여 다 진술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를 비호해 주는 사람의 충격(衝激)을 받았으니, 듣고 본 것 가운데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 대강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경증은 이시표(李時彪)에게서 문 밖의 채소밭을 받고 그에게 사옹원 참봉을 제수하였고, **홍우익(洪宇翼)에게서 남양(南陽)의 감나무밭을 받고 그에게 벽동 군수(碧潼郡守)를 제수하**

였으며, 납속인(納粟人) 황덕구(黃德耉)에게서 면포를 받고 송라 찰방(松羅察訪)을 제수하였는데, 이것 이외의 모든 탐욕스럽고 비루한 정상들을 말하자면 입을 더럽히게 되므로, 다 논할 수 없습니다.

신이 이경증과는 서로 친후한 정의가 있으나, 차마 임금을 속일 수 없어 이 탄핵이 있었던 것인데, 그를 비호하는 사람의 배척이 이렇게까지 극도에 이를 줄을 어찌 헤아렸겠습니까. 이미 성상의 엄한 교지를 받았는데, 또 승정원의 공척이 있으니, 결코 직에 있기 어렵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장령 임선백도 이 일로 인피하였다. 간원이 처치하기를, "대간이 일을 논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는 것이니, 차자를 올려 죄를 열거하는 것이 무슨 손상될 게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논하는 데는 각기 자기 소견에 따르는 것이니, 측근의 신하가 소를 올린 것이 무슨 혐의될 게 있겠습니까. 대사헌 홍무적과 장령 임선백을 모두 출사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大司憲洪茂績啓曰: "銀臺之臣, 以本府箚子未安之意, 至於陳疏攻斥, 此古今所無之事也. 不過欲沮李景曾彈劾之公議, 先斥臺諫, 至於此極, 其心所在, 斷可知矣. 臣於前啓, 嫌其太迫切, 不能盡陳, 今爲容護人所激, 不得不以聞見之詳的者, 又陳其概. 景曾受門外菜田於李時彪, 而除爲司饔參奉; 受**南陽**柿田於洪宇翼, 而除爲碧潼郡守; 受綿布於納粟人黃德耉, 而除爲松羅察訪. 此外貪鄙之狀, 言之汚口, 不可殫論. 臣與景曾, 有相厚之義, 而不忍欺君, 有此彈論, 豈料爲容護人所斥, 至此極也? 旣被聖上之嚴旨, 又有銀臺之攻斥, 決難在職. 請遞臣職." 答曰: "勿辭." 掌令任善伯亦以此引避. 諫院處置曰: "臺諫論事, 不一其道, 上箚論列, 庸何傷乎? 論人之罪, 各從所見, 近臣陳疏, 有何可嫌? 請大司憲洪茂績·掌令任善伯竝命出仕." 上從之.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11월 11일(을미) 2번째기사>

정치/사법

양천 이원귀의 옥사를 신속히 판결하지 못하자 해당 감사 및 송관을 도배하라 하다

예전에 양천(陽川) 사람 이원귀(李元龜)의 아내 양씨(梁氏)가 원귀에게 소박당하여 이로 인해 물에 빠져 죽자, 양씨의 오빠가 본현에 고소하기를 '원귀가 그의 아내를 쳐죽여 시체를 강에 던져 버렸다.' 하였다. 송관(訟官)이 오래도록 판결을 못하자, 경기 감사 윤순지(尹順之)가 부평 부사 이홍연(李弘淵)과 **남양 부사 윤겸(尹謙)**으로 하여금 함께 그 옥사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끝내 그 진상을 캐내지 못하였다. 순지가 그 사실을 조정에 알리니, 서울 감옥으로 잡아 올려 조사하도록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감사 및 송관이 사사로움을 끼고 오래도록 옥사를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잡아 가두어 엄중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형추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대신들에게 물어라." 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이 모두 아뢰기를,

"송관 등이 중대한 옥사를 느리게 처리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다만, 『예기』에 이르기를 '형벌이 대부(大夫)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형추를 적용하기까지 한다면 대단히 과중할 성싶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들의 뜻을 마지못해 따라 비록 형추는 집행하지 않더라도 무겁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윤순지·이홍연·윤겸은 모두 도배(徒配)하고, 양천 현감 심광사(沈光泗)와 인천 부사 이석망(李碩望)은 검시관(檢屍官)으로서 상세히 검사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도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壬寅/初, 陽川人李元龜妻梁氏, 見踈於元龜, 仍赴水死. 梁氏之兄訴于本縣以爲: “元龜撲殺之, 投屍於江.” 訟官久不能決, 京畿監司尹順之, 使富平府使李弘淵·**南陽府使**尹璉, 同按其獄, 而終不得實狀. 順之聞于朝, 命拿致京獄覈之, 仍下敎曰: “監司及訟官挾私, 久不斷獄, 不可不竝拿囚重究. 刑推當否, 問于大臣.” 諸大臣皆以爲: “訟官等緩治重獄, 誠有罪矣. 但『禮』云: ‘刑不上大夫.’ 至於用刑, 極涉過重.” 下敎曰: “勉從大臣之意, 雖不施刑, 不可不從重施罰. 尹順之·李弘淵·尹璉竝徒配, 陽川縣監沈光泗·仁川府使李碩望以檢屍官, 不能詳檢, 亦令徒配.

<효종실록 12권, 효종 5년(1654) 1월 11일(임인) 1번째기사>

정치/사법

대사간 조한영이 상소하여 민유중의 일로 사직하기를 청하다

대사간 조한영이 상소하기를, “신이 전일 인혐한 내용은 대체(大體)를 유지시키기를 힘쓴 것으로 떠들썩하게 연소배들과 쟁변(爭辯)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언자(言者)들이 따라서 없는 내용을 날조하여 낭자하게 무함하고 비난함에 따라 진상이 드디어 숨겨져 버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명(聖明)께서 아직도 통촉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갈래를 찾아 아뢰겠으니 조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처음 이 직(職)에 제배되고 나서 다음날 본원(本院)에서 상회례(相會禮)를 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여주 목사(驪州牧使) 권훈(權勛)이 남양(南陽)을 역임했을 때 자못 삼가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고 연한도 이미 찼으니 전례에 의거하여 체직시켜야 된다고 언급하였더니**, 민유중(閔維重)이 말하기를 ‘그도 연한 때문에 해조(該曹)에 정문(呈文)하려 했으나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렇다면 우선 자처(自處)하기를 기다릴 것이요, 곧바로 논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뒤 유중이 입시(入侍)했을 적에 ‘권훈은 일찍이 수령을 역임하면서 드러난 치적이 있으나 연한이 이미 지났으니 체차시키소서.’ 했습니다. 치적과 삼가지 못했다는 것은 서로 틀린 것이지만, 전례에 의거하여 체직을 청한 것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와 석상(席上)에서 서로 의논했었으니 전연 통의(通議)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신이 그때 즉시 인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의견은 하나의 하찮은 일 때문에 시끄러운 단서를 야기시켜 바야흐로 자라나는 예기(銳氣)를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大司諫曺漢英上疏曰: 臣之前日引嫌之辭, 務在大體, 不欲呶呶與年少輩爭辨, 而到今言者, 隨而捏造, 誣詆狼藉, 眞狀遂隱. 伏想聖明, 猶有所未燭, 玆敢冒死索言, 冀蒙少垂察焉. 臣初拜是職, 翌日行相會禮, 本院席上, 言及驪州牧使權勛曾爲**南陽**, 頗有不謹之誚, 且年限已滿, 據例當遞, 則閔維重曰: “渠以年限, 將呈該曹, 而未及云.” 臣答以 “然則姑待自處, 不必徑論矣.” 厥後維重入侍, 以 “權勛曾經守令, 素著治績, 而年限已過, 請遞.” 治績與不謹相左, 而據例請遞則一也. 旣與之相議席上, 則且與全然不通有異, 故臣於其時, 不卽引避. 抑臣之意, 不欲因一微事, 惹起鬧端, 摧折方長之銳氣也. (…)

<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1659) 4월 19일(기유) 2번째기사>

정치/사법

정태화가 효리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조 때 남양부사의 일화를 소개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 태화가 아뢰기를, “국가는 마땅히 효리(孝理)를 숭상해야만 합니다. 옛날 선조조에서 어느 한 무인이 집이 원주(原州)

인데, 연이어 육진의 고을원을 역임하고 갈리어 돌아온 후 또 변방 고을원에 임명되자 그가 상소하여 자기 노모를 뵙겠다고 빌었습니다. **이에 선조께서는 그를 측은히 여겨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특별 제수하여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만약 효로 다스린다면 사람들이 어찌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

○乙未/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 太和曰: "國家當以孝理爲尙. 昔在宣祖朝, 有一武人, 家在原州, 連爲六鎭倅, 遞歸之後, 又除邊倅, 其人上疏乞往見老母. 宣廟憫然, 特除**南陽府使**, 榮養其母, 其人不勝感泣. 若以孝爲理, 則人豈無報效之心乎?" (…)

<현종실록 8권, 현종 5년(1664) 4월 3일(을미) 1번째기사>

정치/사법

남양부사 정석 등 경기 수령들에게 치적에 따른 상벌을 시행하다

수원 부사 이정기(李廷夔), 이천 부사(利川府使) 이휘조(李徽祚), 양성 현감(陽城縣監) 윤전(尹塼), 죽산 부사(竹山府使) 김익후(金益厚), 안산 현감(安山縣監) 최효건(崔孝騫), 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지원(李志遠), 진위 현령(振威縣令) 성희주(成熙胄)는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중에 따라 죄를 받았으며,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명담(李命聃),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석(鄭晳)은 옷 안감과 겉감을 하사받았는데**, 경기 좌도 어사 신후재(申厚載)의 서계 때문이었다.

○水原府使李廷夔·利川府使李徽祚·陽城縣監尹塼·竹山府使金益厚·安山縣監崔孝騫·陽智縣監李志遠·振威縣令成熙胄, 以不治, 輕重抵罪, 安城郡守李命聃·**南陽府使**鄭晳, 賜表裏, 以京畿左道御史申厚載書啓也.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1664) 11월 28일(을묘) 5번째기사>

정치/사법

사복시 관원의 하인들이 점마할 때 목장의 목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다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기내(畿內)에서 점마(點馬)하였는데, 거느린 하인들이 각 목장(牧場)의 목자(牧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먼저 수기(手記)를 받아 독촉을 심히 하니, 목자들이 가산(家産)을 전당(典當)하면서 연달아 경중(京中)에 실어다 두게 되어 원성이 여염마을에 가득찼다. 영상(領相) 서종태(徐宗泰)가 마침 그런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 형조(刑曹)로 하여금 사복시의 하인과 목자로 돈을 싣고 서울에 들어온 자를 수금(囚禁)하여 추문(推問)해 취복(取服)케 하였는데, **남양(南陽)의 목자 수기는 5백 냥(兩)이고**, **수원(水原) 목자의 수기는 4백 50냥**이었다. 비국에서 계청하기를,

"서리(書吏)·이마(理馬) 등을 2차 엄형(嚴刑)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전물(錢物)은 낱낱이 목자들에게 돌려보내며, 해당 사복 정(司僕正) 홍호인(洪好人)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律)이 도배(島配)에 그치니,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별양(別樣)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의계(議啓)하라." 하였다.

비국에서 다시 청하기를, "유사(有司)에게 당부하여 다시 엄핵(嚴覈)을 더해 확실함을 얻어 법에 의해 논단(論斷)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는데 얼마후 사유(赦宥)를 만나 방송(放送)되고 말았다.

○丙辰/司僕寺官員, 點馬于畿內, 所率下人, 索賂於各牧場牧子輩. 先受手記, 督迫甚急, 牧子輩典當家産, 陸續輸置于京中, 怨號遍於閭里. 領相徐宗泰適聞之大駭, 令刑曹, 囚禁司僕下人

及牧子之載錢入京者, 推問取服. 南陽牧子手記五百兩, 水原手記則四百五十兩. 備局啓請書吏·理馬等, 嚴刑二次, 絶島定配, 錢物一一推還於牧子, 當該司僕正洪好人罷職. 上以爲律止島配, 寧有此理? 不可不別樣處斷, 更爲議啓. 備局更請付之有司, 更加嚴覈究得, 依法論斷, 許之, 未幾遇赦見放.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1711) 12월 2일(병진) 1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연수를 독촉하여 징수한 남양부사 이석근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새로 아뢰기를, "(…) 또 논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석근(李碩根)은 연수(輦輸)를 독촉하여 징수한 일이 있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이섭(李燮)은 일찍이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때에 비쇄(鄙鎖)하고 징렴(徵斂)한다는 비방이 있었으니, 청컨대 도태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이석근과 이섭의 일은 다시 더 자세하게 살펴서 처결하라고 비답하였다.

○憲府申前啓, 不允. 又新啓: "(…) 又論南陽府使李碩根, 輦輸徵督之事, 請罷職. 漢城參軍李燮曾以司饔奉事, 有鄙瑣徵斂之誚, 請汰去." 上允之. 李碩根·李燮事, 更加詳察處之, 爲批.
<숙종실록 52권, 숙종 38년(1712) 10월 24일(갑술) 2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남양 부사 유술이 영광에 있을 때 침탈을 일삼았으니 개차를 청하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고, 또 논핵(論劾)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復使) 유술(柳述)은 전에 영광(靈光)에 있을 때에 침탈하는 정사를 일삼았고**, 이어서 남원을 맡아서는 더럽고 잗달다는 비방을 많이 받았으며, 술에 취하여 직무를 폐기하여 아전이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풍덕 부사(豐德復使) 서몽량(徐夢良)은 호읍(湖邑)에 제수되어서는 관곡(官穀)을 함부로 썼으며, 해현(海縣)을 맡아서는 횡렴(橫斂)을 자못 일삼으니, 가는 곳마다 일을 그르쳐서 사람들의 많은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또 두 사람은 다 수의(繡衣)의 서계(書啓) 가운데에 들었는데, 범한 것을 벌여 적은 것이 보통과 다르니, 모두 개차(改差)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憲府申前啓. 又(勅)［劾］南陽府使柳述, 曾在靈光, 專事剝割之政, 繼任南原, 厚招鄙瑣之謗, 酗酒廢務, 吏緣爲奸. 豐德府使徐夢良, 湖邑之除, 濫費官穀, 海縣之莅, 頗事橫斂, 到處僨敗, 人多譏笑. 且兩人俱入於繡衣書啓中, 臚列所犯, 不比尋常, 請竝改差, 上不從.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1717) 5월 5일(무오) 2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관아을 자주 비워 송사를 적체시킨 남양 부사 홍원익을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장령(堂令) 김담(金壇)이다】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고 또 논핵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홍원익(洪元益)은 관아(官衙)에 앉아 있는 일이 거의 없어 송사가 적체되어 있고** 또 경내의 사인(士人)과 인척을 맺고 대소 정사를 모두 그의 말만 따르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우승지 이교악(李喬岳)은 전번에 군직(軍職)을 띠고 나라의 연

제(練祭)의 반열(班列)에 따라와서 숙취(宿醉)가 덜 깨어 차서(次序)도 모르고 갈팡질팡 하였으니, 청컨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하니, 임금이 다만 이교악의 일만 따랐다. 조정 반열이 엄숙치 못하여 전연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해학(諧謔)과 훤화(喧譁)로 여러 사람의 듣고 보는 데에 해괴한 바가 있었으며, 이교악의 경우는 본래 주정(酒酲)이 있어 사람들의 말이 많았으므로 대신(臺臣)이 마지못해서 논계(論啓)한 것인데도 죄가 문비(問備)에 그치니, 여론이 해괴하게 여겼다.
○憲府【掌令金壇】申前啓, 又論: "南陽府使洪元益, 坐衙甚稀, 牒訴阻滯, 且與境內士人結姻, 大小政令, 皆從其言, 請罷職. 右承旨李喬岳, 向以軍銜, 追到國練之班, 宿醒未解, 失次顚倒, 請從重推考." 上只從李喬岳事. 朝班不嚴, 全無儀貌, 諧謔·喧譁, 有駭觀瞻. 至於喬岳, 素酗酒, 人言狼藉. 臺臣不得已論啓, 而罪止問備, 物議駭之.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1721) 윤6월 7일(병인) 2번째기사>

정치/사법
능행이 있자 횃불 명목으로 가호에 돈을 거둔 의금부 죄인 이철징 등을 놓아주다
의금부 죄인 이철징(李鐵徵)·정우주(鄭宇柱)·장한상(張漢相) 등을 놓아주었다. 사신은 말한다. "이철징은 앞서 창성(昌城)에 있을 적에 마침 도사(都事)가 전토(田土)를 점검하려 가는 길을 만나 그와 서로 겨루다가, 사람 둘을 시켜 칼을 가지고 위협하게 했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잡혀 왔고, **정우주는 남양(南陽)에 있을 적에 마침 능(陵)에의 행행(幸行)**함을 만나게 되자 횃불 세우는 것을 핑계로 가호(家戶)마다 돈을 거두었다가 대관(臺官)에게 논박을 받아 잡혀 갇히게 되었고, 장한상 등은 경덕궁(慶德宮)의 내관(內官)으로서 실화(失火)한 일을 아뢰지 않았었다. 제인(諸人)들이 걸린 죄는 모두 가벼운 것이 아닌데도 사전(赦典)에 따라 갑자기 놓이게 되었으니, 옛사람의 말에 '사(赦)란 소인들의 요행인 것이라.' 고 한 것이 진실로 헛된 말이 아니다."
○放禁府罪人李鐵徵·鄭宇柱·張漢相等. 【史臣曰: 鐵徵, 前在昌城, 適當都事檢田之行, 與之相較, 使兩客, 持刀威脅, 事發被拿. 宇柱, 在南陽, 適直陵幸, 稱以植炬, 逐戶收錢, 爲臺官所論, 至於被囚. 漢相等, 以慶德宮內官, 失火不奏. 諸人所坐, 皆不輕, 而因赦遽釋, 古人曰: '赦者小人之幸.' 信不虛也."】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3월 20일(정미) 6번째기사>

정치/사법
세미에 물을 섞은 남양 등의 선인들을 귀양보내다
세미(稅米)에 물을 섞는 짓을 거듭 엄중하게 금단하도록 하였다. 세미에 물을 섞는 죄는 곧 일률(一律)에 해당되는 것인데, 법이 오래 되자 해이해져 범하는 자가 매우 많았었다. **이에 이르러 남양(南陽)과 이천(利川)의 선인(船人)들이 물을 섞은 일이 발각되어 장차 일률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임금이 삼령 오신(三令五申)의 뜻을 들어, 그 선인들은 사형을 감하여 섬에 귀양 보내고, 선혜청 낭관(宣惠廳郎官) 박필진(朴弼震)은 잘 살피지 못했으므로 도배(徒配)하는 율에 처하고, 만일에 다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대로 효수(梟首)한다는 뜻으로 행하는 조항에 써내어 중외(中外)에 반시(頒示)하도록 하였다.
○申嚴稅米和水之禁. 稅米加水, 乃一律也, 而法久而弛, 犯者甚多. 至是, 南陽·利川船人, 和水事覺, 將用一律, 上以三令五申之意, 船人則減死島配, 宣惠郎朴弼震, 以其不能覺察, 施以徒配之典, 如有復犯者, 依律梟首之意, 書出擧條, 頒示中外.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윤3월 10일(정묘) 3번째기사>

정치/사법

사로도순무사 오명항이 수어청에서 남양 방영의 정병을 보내 적을 막자고 하다

사로 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이 장계하기를, "적당이 용인(龍仁) 산골짜기에 출몰하고 있어 바야흐로 총융사(摠戎使)로 하여금 정포(精砲) 1천을 내게 하고, 허정(許鼎)을 천총(千摠)으로 차출하여 이들을 거느리고 용인읍 밑으로 가서 주둔하여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였는데, 바로 또 보고하기를, "총융사가 군사를 나누어 보내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니, **청컨대 수어청(守禦廳)으로 하여금 혹 남양(南陽) 방영(防營)에서 정병을 뽑아 보내어 적을 막게 하소서**." 하니, 회유(回諭)하여 기율(紀律)이 총융사에게 행해지지 않음을 책망하였다. 또 김중기(金重器)에게 유시하여 순무사의 명령에 의하여 군사를 보내 용인을 지키게 하였다. 오명항이 또 치계하기를, "경성의 수위(守衛)가 고단하고 미약하니, 청컨대 안산(安山)·양천(陽川)·금천(衿川)·과천(果川) 네 고을 군사로 하여금 노량진(露梁津) 사장(沙場)으로 건너오게 하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성안 사람들의 집을 적간(摘奸)하여 수상한 사람의 인접(引接)을 금하게 하고, 아울러 각처의 나루터를 철거하여 각 나루의 배를 한두 곳에 모아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한 수상한 사람이 금위영 초관(哨官) 김옥(金沃)을 만나기를 요구하므로 그 주머니 속의 글을 수색해 보았더니, 의심스런 말이 많았습니다. 엄하게 곤장(棍杖)을 쳐 물었더니, 적진(賊陣)에서 온 자로서 적의 상황을 매우 자세히 말하므로 즉시 참(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패(牌)를 조사해 보니 바로 김옥의 종제(從弟) 김윤(金潤)이었는데 김옥은 그때 박찬신(朴纘新)의 군중에 있었기 때문에 붙잡아 묶어 두었습니다."

하였다. 오명항이 장차 김옥을 참하려고 하자 종사관 박문수(朴文秀)가 김옥이 역적을 따른 형적이 드러난 것이 없다 하여 죽이지 말고 스스로 공을 세워 죽음을 면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총융사 김중기(金重器)가 장계로 병사(兵事)를 논하고, 또 말하기를,

"한 경내의 백성들이 모두 항오(行伍)에 편입되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형적을 나타내는 적이 있더라도 경병(京兵)이 족히 격파할 수 있으니, 본부의 군사는 번(番)을 나누어 왕래하면서 농사 일을 폐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묘당에서 방략(方略)이 합당함을 잃었다는 이유로 회유(回諭)하여 책망했다.

○四路都巡撫使吳命恒狀啓言: "賊黨出沒龍仁山谷間, 方令摠戎使發精砲一千, 差許鼎千摠, 領赴龍仁邑底, 箚住以待." 旋又報摠戎使, 不許分兵以送, 請令守禦廳, 或南陽防營抄遣精兵, 遮賊. 回諭以紀律不行於摠使, 責之. 且諭重器, 使依巡撫令, 送兵守龍仁. 命恒又馳啓言: "京城守衛單弱, 請令安山·陽川·衿川·果川四邑兵, 渡露梁津沙場, 使漢城府, 摘奸城內人家, 禁無接殊常人, 竝撤各處津渡, 聚各津船於一二處." 又言: "有一殊常人, 求見禁衛哨官金沃, 搜見其囊中書, 語多可疑. 嚴棍盤問, 則自賊陣, 來言賊狀甚悉, 卽斬之. 仍考其牌, 卽金沃從弟潤沃, 方在朴纘新軍中, 故執縛以置." 命恒將斬沃, 從事朴文秀, 以沃之從逆, 無顯狀, 請勿殺, 使自効得免死. 摠戎使金重器狀啓論兵事, 又言: "一境民人, 盡編行伍, 作農無人. 設有形見之賊, 京兵足以蹴破, 本府軍兵, 使之分番往來, 不廢農務." 廟堂以方略失宜, 回諭責之.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1728) 3월 20일(경오) 8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박필몽 무리를 도운 남양 부사 김홍석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장령 이경석(李慶錫)이다】 앞서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김홍석(金弘錫)은 음험하고 포악하며 교활하고 편벽된 사람으로**, 신축년과 임인년에 김일경(金一鏡)과 박필몽(朴弼夢)의 무리가 용사(用事)하던 날에 당하여 현저하게 그들의 기세를 도와주었고, 그들의 괴패(乖悖)하고 참독(慘毒)한 논에 있어서는 팔뚝을 걷어붙이며 가담하지 않은 일이 없었으니, 아주 변방에 멀리 귀양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홍봉상(洪鳳祥)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憲府【掌令李慶錫】申前啓, 不允. 又啓: "南陽府使金弘錫陰暴詖僻, 當辛壬鏡·夢輩用事之日, 顯助氣勢, 乖悖慘毒之論, 無不攘臂擔當, 請極邊遠竄." 不允. 鳳祥事, 停啓.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1729) 10월 22일(계해) 3번째기사>

정치/사법

누차 소명을 어긴 좌윤 유척기를 남양 부사에 보임시키다

특지(特旨)로 좌윤(左尹) 유척기(兪拓基)를 출척(黜斥)시켜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보임시키게 하였다. 누차 소명(召命)을 어기고 사진(仕進)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特旨黜左尹兪拓基斥補南陽府使. 以屢違召, 不肯仕也.

<영조실록 32권, 영조 8년(1732) 12월 13일(병인) 2번째기사>

정치/사법

이조 판서 김재로가 남양부사 유척기가 외직에 오래 나간 이들에 대해 건의하다

이조 판서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유척기(兪拓基)는 외직(外職)에 보임한 지가 이미 3년이 되었으니**, 마땅히 다른 관직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게 하였다. (…)

○吏曹判書金在魯言, 南陽府使兪拓基外補已三年, 宜遷他職, 上可之. (…)

<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1734) 1월 20일(정유) 7번째기사>

정치/사법

사간원에서 남양에서 체직될 때 군마를 징발하여 장오 물품을 옮긴 신덕하의 추고를 청하다

(…) 사간원에서【정언(正言) 조상명(趙尙命)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계사(啓辭) 가운데 경상 병사(慶尙兵使) 신덕하(申德夏)에 대한 것은 그가 남양(南陽)에서 체직(遞職)되어 돌아올 적에 군마(軍馬)를 조발(調發)하여 그의 장오(贓汚) 물품들을 실어날랐으니**, 그 죄는 파직을 청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마땅히 잡아다 추문하여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諫院【正言趙尙命】申前啓, 不允. 又啓言: "府啓中, 慶尙兵使申德夏自南陽遞歸也, 調發軍馬, 載其贓汚之物, 其罪不可請罷而止, 宜拿問定罪." 從之.

<영조실록 37권, 영조 10년(1734) 2월 14일(경신) 3번째기사>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홍주 영장 성윤혁 등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니 체포하다

사헌부【장령 임경관(任鏡觀)이다】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홍주(洪州)의 영장(營將) 성윤혁(成胤爀)은 일찍이 자산(慈山)에 부임했을 적에 읍기(邑妓)에게 고혹되어 거짓으로 속문(贖文)을 만들었으며, 북도(北道)의 고을에 임명되어서는 짐바리가 잇따랐었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키소서. **남양 부사(南陽府使) 유세복(柳世復)은 결미(結米)의 숫자를 더 가산하여 외람되게 징수하였고,** 시시(柴柿)를 독납(督納)하게 하고서는 점퇴(點退)하였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나처(羅處)하라고 명하였다.

○丙子/憲府【掌令任鏡觀】 申前啓, 不允. 又啓: "洪州營將成胤赫曾任慈山, 蠱惑邑妓, 僞成贖文, 及授北邑, 駄載絡繹, 請削版. 南陽府使柳世復結米加數, 濫徵柴柿, 督納點退, 請罷職." 幷命拿處.

<영조실록 42권, 영조 12년(1736) 12월 17일(병자) 1번째기사>

정치/사법

집의 윤득징이 재결을 속이고 무녀를 첩으로 삼은 남양부사 한배규 등의 파직을 청하다

집의 윤득징(尹得徵)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기랑(騎郎)이 결곤(決棍)을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은 성덕(聖德)을 손상한 것인데, 남위로(南渭老)가 납언(納言)에 비의(備擬)된 것은 공론에 어그러지니, 전관(銓官)을 책벌해야 하겠습니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한배규(韓配奎)는 재결(災結)을 속여 보고하고 무녀를 첩으로 거느렸으며**, 맹산 현감(孟山縣監) 전만추(田萬秋)는 읍기(邑妓)에게 현혹되어 늙은 사람을 장살(杖殺)하였으니, 파직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執義尹得徵上疏, 言: 騎郎決棍之太濫, 有歉聖德. 南渭老備擬納言, 有拂公議, 銓官宜責罰. 南陽府使韓配奎瞞報災結, 率畜巫女. 孟山縣監田萬秋蠱惑邑妓, 杖殺老人, 宜罷. 竝不從.

<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1739) 6월 20일(을미) 3번째기사>

정치/사법

비국에서 전 남양군수 정호제를 결장을 면제하고 유배하도록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속대전』에, '무릇 결장(決杖) 대상자는 시종(侍從)이라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결장하되, 겸방어사는 곧 2품관이므로 그 관직만 파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왕 때 광주 부윤(廣州府尹)이 무슨 일로 결장을 받게 된 것을 대신이 당(唐)나라의 고사 및 형벌이 상대부에게는 가해지지 않는다는 의리를 내세워 다른 벌로 고쳐서 내릴 것을 청하니, 윤허되었고, 당저조(當宁朝)에 들어와서도 전 풍덕 부사(豐德付使) 이여적(李汝迪)과 전 영해 부사(寧海府使) 한이조(韓頤朝)가 다 같이 2품관을 거친 관계로 결장을 면제하고 파직만 하라는 명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경주 부윤(慶州府尹) 정홍제(鄭弘濟)가 전임 남양 군수(南陽郡守) 때의 일로 인하여 결장의 율로 감죄되었으나,** 이미 2품의 실직을 거쳤으므로, 결장을 면제하고 속전(贖錢)을 받은 다음 유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朔癸亥/備邊司啓言: "『續大典』, '凡應決杖者, 雖侍從勿揀, 兼防禦使係是二品, 只罷其職' 云. 先朝廣州府尹坐事當杖, 大臣引唐朝舊事及刑不上大夫之義, 請改施他罰而允下, 當宁朝前豐德府使李汝迪·前寧海府使韓頤朝皆以曾經二品, 有除杖罷職之命矣. 卽今前慶州府尹鄭弘濟, 以前任南陽事, 勘杖徒之律, 旣經二品實職, 除杖收贖發配宜矣." 上可之.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1746) 10월 1일(계해) 1번째기사>

정치/사법

어사 이이장이 남양부사는 흔히 문지와 인망이 있는 자를 차견하는 관례를 말하다

어사(御史) 이이장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목자(牧子)가 그릇되게 양역(良役)에 이름이 들어 있거나 양민(良民)을 목자에 투속(投屬)하는 것은 법으로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도, 목관(牧官)과 부사(府使)가 언제나 서로 다툽니다. 목관은 사복시(司僕寺)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있으면 도제조(都提調)가 매양 계달하여 부사를 파직시키곤 하는데, 선생안(先生案)을 취하여 상고한즉 이 때문에 파직에 걸린 자가 열 명에 두세 명이나 됩니다. 목자에 투속하는 일이 날로 늘어나서 목관과 부사로 하여금 호적을 상고하여 조사해보니, 목자로 거짓 일컫는 자가 75호나 되었습니다. **남양(南陽)은 흔히 문지(門地)와 인망(人望)이 있는 자로 차견(差遣)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을진대,** 하물며 피잔(疲殘)한 수령(守令)이야 어찌 뜻밖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비록 서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시(本寺)에서 바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고 다만 핵실(覈實)을 청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에서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였다.

○戊子/御史李彝章白上曰: "牧子之誤簽良役, 良民之投屬牧子, 法禁甚嚴, 牧官與府使每每相爭. 牧官屬於司僕寺, 故有報則都提調每啓罷府使, 取考先生案, 則以此坐罷者十居二三. 而投屬日滋, 使牧官及府使考籍查出, 則冒稱牧子者爲七十五戶. 南陽多以地望差遣猶如此, 況 疲殘守令安得不橫罹? 此後雖有相爭, 本寺使不得直罷, 只請覈實宜矣." 上命備局稟處.

<영조실록 70권, 영조 25년(1749) 12월 14일(무자) 1번째기사>

정치/사법

집의 이창유가 상서하여 송도의 금지에 해이한 남양부사 유세덕 등의 파직을 청하다

집의 이창유(李昌儒)가 상서(上書)하기를, "(…) **남양 부사(南陽府使) 유세덕(柳世德)은 송도(松屠)를 금함이 해이하고**, 여산 부사(礪山府使) 김상기(金相箕)는 형장(刑杖)을 외람되게 시행하고, 신천 군수(信川郡守) 조영증(趙榮曾)은 서현(西縣)에 비방이 쌓이고, 보성 군수(寶城郡守) 정승채(鄭承菜)는 외람되게 가권(家眷)을 인솔하고, 청도 군수(淸道郡守) 박사형(朴師衡)은 질병이 있고 또 교(轎)를 탔으며, 음성 현감(陰城縣監) 정석장(鄭錫長)은 혼미하여 일을 살피지 못했으니, 모두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 하니, 동궁(東宮)이 답하기를, "첫번째 건(件)의 일은 지나치다. 두번째, 세번째 건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영장과 수령의 일은 먼 외방의 풍문(風聞)을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태거하는 것과 중추하는 일도 또한 지나치다." 하였다.

○己丑/執義李昌儒上書言: (…) 南陽府使柳世德之禁弛松屠, 礪山府使金相箕之濫施刑杖, 信川郡守趙榮曾之積謗西縣, 寶城郡守鄭承菜之濫率家眷, 淸道郡守朴師衡之病且乘轎, 陰城縣監鄭錫長之昏不省事, 幷宜罷職. (…) 東宮答曰: "一件事過矣, 二三件事依施. 營將·守令事, 遠外風聞, 何可盡信? 汰去重推事, 亦過矣."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1751) 2월 21일(기축) 1번째기사>

정치/사법

지평 안치택이 어호와 염한에게 비싼 값으로 강제 징수한 남양부사 유세덕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지평 안치택(安致宅)이다】에서 전달을 거듭 상달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상달하기를, "채제공(蔡濟恭)은 법에 종사하는 신하인데 길 한복판에서 방가(方哥) 성(姓)을 가진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니, 모든 조신(朝紳)들이 누군들 놀라고 분개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전 집의 이훈(李塤)이 단지 채제공의 감죄(勘罪)만을 청하고 방가(方哥)를 징계하여 다스릴 것을 청하지 않았으니, 그가 방가의 처지를 위한 것은 부지런하였지만, 유독 대각(臺閣)이 날로 경시되고 기강이 더욱 무너지는 것은 생각지 않는 것입니까? 그가 조정을 욕되게 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훈을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시고, 방가는 엄중히 조사하여 중죄(重罪)로 다스리소서. 호조 좌랑 이보순(李普淳)은 비루하고 잔달은 것이 버릇이 되어 모든 물품을 무역할 적에 오로지 하인들에게 맡겨 비싼 값에 경솔히 사들였으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 **남양 부사(南陽府使) 유세덕(柳世德)은 어호(漁戶)와 염한(鹽漢)에게 싼값으로 미리 지급하고서** 그보다 열 배 비싼 값으로 강제 징수하여 자기집에 실어 보냈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이보순(李普淳)의 일은 상달한 대로 시행하라." 하고, 박문수 · 윤득재 · 이훈 · 방가(方哥) · 이언섭 · 유세덕의 일은 따르지 않았다.

○憲府【持平安致宅】申前達, 不從. 又達曰: 蔡濟恭以法從之臣, 爲中路方姓人所毆打, 凡在朝紳孰不駭忿, 而前執義李塤只請濟恭之勘罪, 不請方哥之懲治, 其爲方哥地則勤矣, 獨不念臺閣日輕紀綱益頹乎? 其辱朝廷莫甚於此, 請李塤罷職不敍, 方哥嚴査重治. 戶曹佐郎李普淳鄙瑣成習, 凡物貿易, 專委傔從, 重價輕貿, 請汰去. **南陽府使**柳世德, 預給廉價於漁戶 · 鹽漢, 勒捧十倍之直, 馱送私第, 請罷職. (…) 答曰; "李普淳事依施." 朴文秀 · 尹得載 · 李塤 · 方哥 · 李彦燮 · 柳世德事, 不從.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1751) 윤5월 10일(을해) 2번째기사>

정치/사법

금주령을 어긴 포도 대장 정여직을 남양으로 귀양보내다

이날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임어하여 오부(五部)의 백성들을 모아 놓고 폐막(弊瘼)에 대해 순문(詢問)하였고 금주령(禁酒令)을 엄중하게 신칙하였다. **포도 대장 정여직(鄭汝稷)을 남양(南陽)으로 귀양보내고 형조와 한성부의 여러 당상(堂上)들을 파직시켰다.** 이때 술을 금하는 법령이 엄중하여 이를 범한 사람은 모두 무거운 죄를 받았다. 전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홍보(崔弘輔)의 기첩(妓妾)이 금주령을 범한 것 때문에 부관(部官)에게 태형(笞刑)을 받았는데, 그 기첩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홑이불로 얼굴을 덮고 스스로 도랑물에 빠져 죽었다.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연석(筵席)에서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금령이 해이한 탓이고 또 유사(有司)가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두 죄주었다. 또 술과 여색(女色)은 모두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는 것인데 최홍보의 첩은 기류(妓類)로서 방금(邦禁)을 범하였으니, 의당 『예기(禮記)』의 음성(淫聲)과 난색(亂色)은 이목(耳目)에 접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모방하여 도하(都下)의 사대부 가운데 기첩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원적(原籍)으로 쇄환(刷還)시킨 다음 그 수효를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是日上臨興化門, 集五部民詢弊瘼, 申嚴禁酒之令. 竄捕盜大將鄭汝稷于**南陽**, 罷刑曹漢城府諸堂. 時禁釀令嚴, 犯者俱抵重辟. 前長城府使崔弘輔妓妾, 以犯釀爲部官所笞, 其女恥之, 以被蒙面, 自投溝水死. 左議政洪鳳漢筵白之, 上以禁令弛而有司匿不聞, 竝罪之. 又以酒與色, 俱能惑人, 弘輔之妾, 以妓類犯邦禁, 宜倣『禮記』淫聲亂色不留聰明之意, 凡都下士夫之畜妓妾

者, 非有子者, 竝令刷還原籍, 擧數以聞.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1763) 6월 20일(병오) 2번째기사>

정치/사법
역적의 수각을 중로에서 잃어버리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신대현을 남양부에 정배하다
신대현(申大顯)을 남양부(南陽府)에 정배하였다. 신대현은 교동 부사(喬桐府使)로서 역적의 수각(手脚)을 중로(中路)에서 잃어버렸는데, 치대(置對)할 때 말을 꾸며 발명(發明)하였으므로 엄한 형신을 가한 다음 감죄(勘罪)하여 정배한 것이었다.
○配申大顯于南陽府. 大顯以喬桐府使, 逆賊手脚, 中路見失, 置對游辭發明, 嚴刑勘配.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1776) 10월 13일(신해) 5번째기사>

정치/사법
이조판서 이연상이 잘 다스리지 못한 남양 부사 이의로 등을 파직하라고 하다
주강(晝講)을 행하고 겸하여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이득제 등이 공초(供招)를 다 바치니, 이득제는 고신(告身)을 빼앗고, 신대겸은 방면하였다. 이조 판서 이연상(李衍祥)이 아뢰기를,
"청양(靑陽) 현감 이명우(李命瑀), 괴산(槐山) 군수 성광묵(成光默), **남양(南陽) 부사 이의로(李宜老)는 모두 잘 다스리지 못한 데에 관계되니,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잡아다 추국하소서**. 황간(黃澗)의 전 현감 이운영(李運永), 서천(舒川)의 전 군수 유지양(柳知養), 음성(陰城)의 전 현감 홍약호(洪若浩), 영동(永同)의 전 현감 윤창주(尹昌柱), 부여(扶餘)의 전 현감 신대권(申大權), 파주(坡州)의 전 목사 이장한(李章漢), 보은 현감 권제응(權濟應), 인천 부사 윤심위(尹心緯), 전 부사 김근행(金謹行), 청안 현감 이면기(李勉基), 태안 군수 박유(朴瑬), 전의 현감 이득원(李得源)은 불법한 죄를 졌으니, 잡아다 처리하소서. 홍주 목사 민태혁(閔台爀), 대흥 군수(大興郡守) 박화원(朴華源), 율봉 찰방(栗峰察訪) 백사근(白師謹)은 청컨대 모두 파직하소서. 임천 군수 이의강(李義綱)은 청컨대 승서(陞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러 수령들을 잡아다 추문하여 등급을 나누어 감죄(勘罪)하였다.
○壬申/行晝講, 兼行次對. (…) 李得濟等, 旣納供. 得濟奪告身, 大謙放. 吏曹判書李衍祥啓言: "靑陽縣監李命瑀·槐山郡守成光默·南陽府使李宜老, 俱係不治, 先罷後拿. 黃澗前縣監李運永·舒川前郡守柳知養·陰城前縣監洪若浩·永同前縣監尹昌柱·扶餘前縣監申大權·坡州前牧使李章漢·報恩縣監權濟應·仁川府使尹心緯·前府使金謹行·淸安縣監李勉基·泰安郡守朴瑬·全義縣監李得源, 不法之罪拿處. 洪州牧使閔台爀·大興郡守朴華源·栗峯察訪白師謹, 請幷罷職. 林川郡守李義綱, 請陞敍." 從之. 拿問諸倅, 分等勘罪.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1781) 2월 29일(임신) 1번째기사>

정치/사법
남양의 왕희걸의 벼슬을 허위라고 한 이인묵을 문초하게 하다
남양(南陽) 출신(出身) 왕수(王脩)가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7대조 왕희걸(王希傑)이 중종조에서 문과에 합격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로 사인·검상·직제학의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신이 신묘년 무과에 합격하였을 때에 선전관의 추천에서 저지당하였는데, 그때 선전관 이인묵(李仁默)이 '왕희걸이 홍문관 정자로서 사인·검상의 벼슬을 한 것은 허위

라.’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사로 하여금 상고해내어 바로잡도록 해주소서.” 하였다.
병조에서 복계하여 아뢰기를, “왕희걸은 가정(嘉靖) 계묘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한림·사인을 거쳤다고 『국조방목(國朝榜目)』에 기록되어 있으나, 남상(南床)의 직제학을 거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등영록(登瀛錄)』이 중간에 산실되어서 상고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림에 추천된 것은 『한원제명록(翰苑題名錄)』을 상고해 보니, 명종 을사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인묵이 본말을 모르고 곧장 허위라는 말로 어려움없이 뒤집어 씌웠는데, 지금 밝혀졌으니, 시원스럽게 씻었다고 하겠다. 이인묵이 망령된 말만 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 문초하게 하라.” 하였다.
○南陽出身王脩上言: “七代祖希傑, 登 中廟朝文科, 以弘文正字, 歷職舍·檢·直學. 而臣占辛卯武科, 見枳宣薦. 其時宣傳官李仁默, 以希傑之弘正·舍檢, 歸之僞爵. 乞令攸司考出卞正.” 兵曹覆啓言: “王希傑, 以嘉靖癸卯文科, 經翰林·舍人, 載於『國朝榜目』. 至於南床直提學踐歷與否, 以『登瀛錄』之中間散佚, 不得考出, 而翰林被薦, 考諸『翰苑題名錄』, 則云在明宗乙巳矣.” 敎曰: “李仁默不識顚末, 直以僞爵等說, 無難勒加. 今旣卞覈, 可以快雪, 而仁默不可但以駭妄言, 令該府拿問.”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1786) 9월 27일(정유) 7번째기사>

정치/사법

전 남양 부사 구담을 녹도진으로 귀양보내고 전 경기 관찰사 서정수를 파직시키다

구담(具紞)을 녹도진(鹿島鎭)으로 귀양보내고 전 경기 관찰사 서정수(徐鼎修)를 파직시켰다. 관찰사 서용보(徐龍輔)가 치계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구담이 재해 입은 토지의 조세를 농간질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착복한 것이 1천 1백 50냥이고,** 환곡을 농간질하여 훔쳐 먹은 것이 4백 70여 섬이며, 관아에서 매달 배정하는 쌀을 대동미(大同米)로 구분하여 내어주고 높은 값으로 돈을 받고 모자라는 대동미 수량은 외창(外倉)의 환곡으로 부정하게 채워넣었습니다. 개인 산의 소나무를 수없이 베어 가졌고 경 내의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돈과 재물을 강제로 징수하였으며 심지어 각 관청의 관속들까지도 터무니없는 징수를 당하였습니다. 그가 범한 여러 가지가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진노하여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오게 하고 바로 그날 밤에 개좌(開坐)하여 엄하게 형장을 가하면서 신문하게 하니, 담이 낱낱이 사실대로 자복하였다. 판부하기를,
“저도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정도는 알 것이다. 아무리 이해가 걸려있다지만 도대체 무슨 심보로 1백 리의 길을 가는데 90 리가 절반이라는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겨우 수령 한 자리를 얻자마자 욕심이 꽉차서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탐욕을 부려 못하는 짓이 없었단 말인가. 모든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행정이라면 한 가지 일이라도 빠질세라 살을 갉아내고 골수를 쪼개며 백성들 머릿수를 따져 혹독하게 긁어들였으니 양자(揚子)가 이른바, 이리가 뿔이 나고 날개까지 달렸다고 한 것이 바로 그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탐관오리를 경기 지방에 두고서 아직까지 나라 법이 가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탐오한 관리를 징계하는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재해 농지의 조세를 농간질하여 서슴없이 한 입에 삼킴으로 해서 차마 굶어 누렇게 뜬 백성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세금을 대신 무는 고통을 받도록 하여 무고한 백성들이 하늘에 호소하도록 하였으니 하늘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있으니 속이기 어려운 것이 이치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그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러나 그가 범한 가지가지가 모두 이쪽에서 옮기어 저쪽을 채우고, 서쪽을 부숴 동쪽을 보

충하는 식으로 그의 꾀가 지극히 교활하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만일 법조문에 비추어 죄를 판정한다면 당연히 법을 어기고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감독자 자신이 도둑질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데, 일단 준(準) 자가 붙으면 곤장을 쳐서 귀양 보내는 것이 예이니 그렇게 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겠는가. 현재 탐오의 풍속이 날로 성하여지는 이때에 만일 엄한 법으로 무겁게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후인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금지시킬 것인가. 고신(拷訊)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 다시 엄형을 가하고 자기 자신에 한하여 사형을 감하고 멀고 험악한 낙도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그가 유용한 물건들은 도백으로 하여금 낱낱이 변상시키도록 하고, 훔쳐 먹은 재해 전지의 조세는 즉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되 혹간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계산하여 내주기도 하라. 그리고 탐오한 관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백성들이 그처럼 곤욕을 받았으니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오랫동안 도백으로 있으면서 바로 그 사실을 아뢰지 않은 전전 도신 서정수(徐鼎修)에게도 파직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配具紈于鹿島鎭, 罷前京畿觀察使徐鼎修職. 觀察使徐龍輔馳啓言: "南陽府使具紈, 幻弄災結, 執錢染指之數, 爲一千一百五十兩, 還穀偸弄爲四百七十餘石. 官廳排朔米, 以大同出秩, 高價捧錢, 而大同不足之數, 則以外倉還穀, 那移充數. 私山松木, 無數斫取, 境內富民, 勒徵錢貨, 以至各廳官屬, 皆不免白歛. 所犯諸條, 俱係不法." 上震怒, 命義禁府拿來, 卽其夜開坐, 嚴刑究問, 紈一一輸款. 判曰: "渠亦人耳, 亦知如此則生, 不如此則死之利害關頭. 抑何心術, 罔念行百里半九十里之戒, 纔得一麾, 意慾滿足, 大貪小饕, 無所不犯, 凡所以厲民虐民之政, 如恐一事之或漏, 剝膚椎髓, 頭會箕歛? 揚子所謂狼獸之角而翼者, 渠之謂也. 如許貪吏, 置之近畿, 尙逭王章者, 豈可曰有懲貪之典乎? 況偸弄災結, 無難都吞, 忍使頷頤饑民, 替受白徵之苦, 無辜籲天, 天可欺乎? 今日之就拿被訊, 難誣者理也. 一言而蔽之曰, 渠之罪罔赦. 然各項所犯, 無非移此而充彼, 破西而補東, 其計至黠, 其竇不一. 若令考律定罪, 則當爲枉法贓, 而準監守自盜矣. 旣下準字, 則例爲杖流, 豈非失之太輕乎? 以今貪風日熾之時, 若不嚴法重繩, 何以懲後戢他? 待拷訊限滿, 更加嚴刑, 遠惡絶島, 限己身滅死定配, 那移假貸之物, 令道伯一一徵出, 偸用災結, 亦卽還給於民間, 或以當納者計給. 貪吏莫察, 民之受困若此, 誰當執其咎乎? 許久在任, 不卽論奏, 前前道臣徐鼎修, 施以罷職之典."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1793) 11월 29일(무오) 3번째기사>

정치/사법

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에게 별도로 내린 유시. 여러 어사와 사관의 결과 보고

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摘奸史官)에게 별도로 유시하기를, 【광주(廣州)·죽산(竹山)·양성(陽城)의 어사는 박윤수(朴崙壽)이고,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豊德)의 어사는 홍낙유(洪樂游)이고,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의 어사는 정내백(鄭來百)이고, 적성(積城)·마전(麻田)·연천(漣川)·삭녕(朔寧)의 어사는 정약용(丁若鏞)이고, 양천(陽川)·김포(金浦)·부평(富平)·통진(通津)·교하(交河)의 어사는 채홍원(蔡弘遠)이고, 영평(永平)·포천(抱川)의 어사는 정이수(鄭履綏)이고, **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인천(仁川)의 어사는 유사모(柳師模)이고**, 과천(果川)·용인(龍仁)·진위(振威)의 어사는 이조원(李肇源)이고, 양지(陽智)·안성(安城)의 어사는 정동관(鄭東觀)이고, 양근(楊根)·가평(加平)의 어사는 정만석(鄭晩錫)이고, 교동(喬桐)·강화(江華)의 적간 사관(摘奸史官)은 조석중(曺錫中)이고, 양주(楊州)·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서준보(徐俊輔)와 구득로(具得魯)이고, 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정문시(鄭

文始)이고, 지평(砥平)의 적간 사관은 이면승(李勉昇)이다】 (…)
○庚子/別諭京畿各邑暗行御史·摘奸史官【廣州·竹山·陽城御史朴崙壽, 高陽·坡州·長湍·豊德, 御史洪樂游, 利川·驪州·陰竹御史鄭來百, 積城·麻田·漣川·朔寧御史丁若鏞, 陽川·金浦·富平·通津·交河御史蔡弘遠, 永平·抱川御史鄭履綏, 衿川·安山·南陽·仁川御史柳師模, 果川·龍仁·振威·李肇源, 陽智·安城御史鄭東觀, 楊根·加平御史鄭晩錫, 喬桐·江華摘奸史官曺錫中, 楊州·廣州摘奸史官徐俊輔·具得魯, 衿川·水原·廣州摘奸史官鄭文始, 砥平摘奸史官李勉昇】(…)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1794) 11월 16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사법

비국에서 아뢰어 토적 발생 지역의 관리들을 개차케 하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영변 부사(寧邊府使) 오연상(吳淵常)은 지금 이미 내천(內遷)되었으니, 그 대신으로 전전(前前) 부사(府使)였던 신홍주(申鴻周)를 유임하게 하고, 정주 목사(定州牧使)의 대신으로 전 승지 서춘보(徐春輔)를 임명하도록 하며, 자산 부사(慈山府使) 신재명(申在明)은 휴가를 받아 상경하고는 병을 핑계대고 즉시 임지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니 잡아다 추문하고 엄중히 감죄(勘罪)하며, **그 대신 남양 부사(南陽府使) 김처한(金處漢)을 이차(移差)하게 하고**, 선천 부사(宣川府使) 김희(金燨), 개천 군수(价川郡守) 유상필(柳相弼)·박천 군수(博川郡守) 이운식(李運植)을 아울러 임명하고, 모두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備局啓言: "寧邊府使吳淵常, 今已內遷, 其代以前前府使申鴻周仍任, 定州牧使之代, 以前承旨徐春輔差下, 慈山府使申在明受由上京, 稱病不卽還官, 拿問嚴勘, 其代以南陽府使金處漢移差, 宣川府使金燨, 价川郡守柳相弼, 博川郡守李運植, 竝差下, 皆令給馬下送." 允之.
<순조실록 14권, 순조 11년(1811) 12월 23일(정묘) 6번째기사>

정치/사법

추국 죄인 정우문과 한광우를 정법하다

추국 죄인(推鞫罪人) 정우문(鄭友文)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역적 박종일(朴鍾一)에게 투신하여 달갑게 조아(爪牙)가 되었고, 역적 이진채(李振采)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종일을 진채에게 부탁하며 쓸만하다고 하였고, 종일에게 진채를 천거하며 신술(神術)이 있다고 하는 등, 두 역적의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에 화응(和應)하지 않음이 없었고 참섭(參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쌓아둔 양식을 군사에게 먹인다.'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포(排布)를 듣기를 원하였고, '장신가(將臣家)에 화약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그 설시(設施)를 알았으며, '누차 거사 날짜를 어기자 기일을 어겼다.'고 책망했고, 섬의 죄수의 사람됨을 알려 하자 그가 잘 살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길거리의 흉언과 참위(讖緯)의 허탄(虛誕)한 말에 이르러서는 난만하게 한 가지로 귀일합니다."
하고, 죄인 한광우(韓光友)의 결안에 이르기를,
"흉악함이 이진채와 같은 자를 아비나 스승처럼 섬겼고, 박종일·정우문과 당우(黨友)의 관계를 맺어 이인(李裀)의 아들을 만나보고자 이진채를 따라 함께 전동(典洞)으로 갔으며, **군량을 실어 오고자 하여 쌀 주인을 찾아 남양(南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리의 흉언을 예사롭게 들었으니 진신가(搢紳家)를 화공(火攻)한다는 것과 같이 난만한데로 함께 돌아 갔습

니다."
하며, 모두 역모에 동참하였음을 지만하였으므로, 정법(正法)하였다.
○庚子/推鞫罪人友文結案, "投身於一賊, 甘作爪牙, 許心於振逆, 結爲兄弟, 托鍾一於振采, 謂之可用, 薦振采於鍾一, 稱有神術, 兩賊之〔凶〕謀逆節, 無不和應, 無不參涉. '峙糧餉師,' 則願聞其排布, '埋藥將家' 則預知其設施, '屢違擧事之日字,' 則責以愆期, 欲知島囚之爲人則, 證其善生. 至於街市〔凶〕言, 讖緯誕說, 綢繆謀議, 爛漫同歸." 罪人光友結案, 〔凶〕如振采, 事以父師, 鍾一·友文, 結爲黨友, 要見祁子, 隨振采而同往典洞, 欲輸軍糧, 訪米主而下去**南陽**. 街市間匈言, 聽若尋常, 搢紳家火攻, 同歸爛漫." 竝以謀逆同參遲晩, 正法.
<순조실록 15권, 순조 12년(1812) 3월 28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사법
양사에서 박종일·이진채의 전형을 합계하다
양사에서【사간 남혜관, 장령 이유수이다】 합계하기를, (…) 또 아뢰기를, "역적 정우문(鄭友文)의 내력은 본디 비미(卑微)하고 성품 또한 간특하였는데, 박종일에게 투신(投身)하여 기꺼이 조아(爪牙)가 되었으며, 이진채에게 마음을 주어 형제를 맺었습니다. 박종일을 이진채에게 부탁하면서 '쓸만하다.'라 하고, 이진채를 박종일에게 추천하면서는 '신술(神術)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적 한광우는 본래 시골의 천얼(賤孼)로서 흉도(凶徒)의 사사(死士)로 의탁하여 이진채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정우문을 형처럼 섬겼습니다. 심적(沁賊)을 만나 보기 위해서는 전동(典洞)으로 따라갔으며, **군량을 운반하고자 해서는 남양(南陽)으로 옮아갔는데,** 여러 흉적의 사주(使嗾)가 되어 모두 앞장서서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역적 인의 아들이 잘 살 것이라고 언질을 주었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었으며, 장신(將臣)의 집을 불로 공격하려고 했으니 무슨 일을 꾸미려 했겠습니까? 점사(店舍)에서 긴밀하게 엮은 말을 윤치후(尹致後)가 정녕하게 화응하였고, 남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김연수(金延壽)가 난만하게 수작하였으니, 이와 같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 이미 충분히 여러 역적의 확증과 단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월 13일의 흉언에 있어서는 곧 이는 우주(宇宙)에까지 뻗칠 정도로 있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던 극악한 역절(逆節)로서, 참여해서 듣고 화응(和應)하지 않았음이 없었으니,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신만 죽이는 죄에 그치어 너무 가볍게 한 데 실수하여 왕법(王法)이 엄하지 못하다고 여정(輿情)이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역적 정우문·한광우에게 노륙(孥戮)의 법을 더 시행하고 윤치후와 김연수에게는 모두 노적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아! 이영순(李永純)은, 서적(西賊)의 경보(警報)가 있던 날을 당하여 일찍이 녹사(錄仕)의 혜택을 입고 향리에 가 있던 자들도 모두 성안에 들어와서 분문(奔問)하는 정성을 바쳤는데, 그는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으면서 황급히 시골로 내려가 일이 마치 기미를 안 듯하였으니, 자취가 수상하였습니다. 하물며 박종일을 매부로 삼고 윤치후로 사우(死友)를 삼아서 손바닥에다 글자를 썼다는 말이 후일 초사에서 나왔으며, 날짜를 지정해서 왕래했다는 말을 한 하인이 증명하였으니, 치밀한 자취가 명약 관화합니다. 이원박(李元樸)은 자신이 시골에 살면서 몰래 서울과 통하였는데, 박종일과는 절친한 벗으로 참위(讖緯)의 요탄(妖誕)한 글을 만날 때마다 문답하였고, 윤치후는 생질(甥姪)로 흉패하고 부도(不道)한 말을 난만하게 전해 퍼뜨렸으니, 실정(實情)을 알고 고발하지 않은 형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朴永喆)은 박종일의 조카이며, 윤치후의 남매(娚妹)입니다. 처음에 응당 좌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발배(發配)하였다가 곧 국초(鞫招)로 인

해서 붙잡혀 왔으니, 가지 위에 생긴 가지와 씨앗 밑에 생겨 난 씨앗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국문하여 다스림을 끝내지 아니하고, 모두 작처(酌處)를 더하게 되어, 옥체(獄體)가 허술하여 여러 사람들의 분노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영순, 이원박, 박영철 등은 다시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해서 기필코 실정을 알아내어 쾌히 전형(典刑)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兩司【司諫南惠寬, 掌令李儒修】合啓: (…) 又啓言: "逆賊友文, 跡本卑微, 性又奸慝, 投身於鍾一, 甘作爪牙, 許心於振采, 結爲兄弟. 託鍾一於振采, 則謂以可用, 薦振采於鍾一, 則稱有神術. 逆賊光友, 本以鄕曲賊孽, 托爲凶徒死士, 父事振采, 兄事友文, 要見沁賊則隨往典洞, 欲輸軍糧則轉到南陽, 凡爲群凶之指使. 率皆挺身而樂赴. 逆裋子質言善生, 其意何在, 將臣家將欲火攻, 所營何事? 店舍綢繆之言, 致後丁寧和應, 南中兵火之說, 延壽爛漫酬酢, 卽此數段, 已足爲諸賊之眞贓斷案. 至於正月十三日匈言, 卽是窮宙亘宇, 所未有所未聞之極逆情節, 而無不參聞, 無不參和, 則罪止誅身, 失之太輕, 王章不嚴, 輿情未洩. 請逆賊友文, 光友, 加施孥戮之典, 致後, 延壽, 幷施孥籍之典. 噫! 李永純當西賊有警之日, 曾沾祿仕之在鄕者, 莫不入處城闉, 以效奔問之誠, 而渠以侍從之列, 蒼黃下鄕, 事若知機, 跡涉殊常. 況以鍾一爲妹夫, 致後爲死友, 掌中書字之語, 出於後招, 指日往來之說, 證以一僉, 則綢繆之跡, 明若觀火. 李元樸身居下鄕, 密通京華, 鍾一切友也, 而讖緯妖誕之書, 逢輒問答, 致後, 甥姪也, 而凶悖不道之說, 爛漫傳說, 則知情之律, 在所難逭. 永喆, 鍾一之侄子也, 致後之娚妹也. 始以應坐而發配, 旋因鞫招而就拿, 則枝上之枝, 種下之種, 可以畢究, 而鞫治未竟, 竝加酌處, 獄體踈虞, 輿憤轉激. 請李永純, 李元樸, 永喆等, 更爲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幷批不允.
<순조실록 16권, 순조 12년(1812) 8월 8일(무신) 2번째기사>

정치/사법

별감을 때린 죄인 최석기를 혐의가 없다고 놓아주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 별감(別監)을 구타한 죄인 최석기(崔錫基) 등에 대해 조사하여 올린 초기(草記)로 아뢰기를, "죄인 최석기를 별감 박진홍(朴鎭弘)과 대질(對質)시켜 공초(供招)를 받으니, 최석기가 공초하기를, '윤(閏)10월 18일에 양철평(梁鐵坪)에 사는 손원명(孫原明)의 집에서 묵고 20일에 떠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별감이 구타를 당한 것은 2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결국 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별감 김보인(金寶仁)은 24일에 우포도청(右捕盜廳)의 다리 옆에서 최석기를 본 일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박진홍도 25일 다리 옆에서 본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일에 시골로 내려간 사람을 갑자기 다리 옆에서 만났다고 한 것은 극히 놀랍고 미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손원명과 붙잡은 포교(捕校) 등에게 따져 물었는데, 손원명은 그가 20일에 시골로 내려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포교 신순길(申順吉)과 최봉환(崔鳳煥) 등은 남양(南陽)에 내려가서 최석기가 시골로 내려온 날짜를 물어보니 20일에 시골로 내려간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초를 참작하여 보면, 김보인과 박진홍의 공초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핵문(覈問)하니, 김보인은 과연 보지 못하였으며, 그 수본(手本)에 잘못이 있다며 매우 황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승전(承傳)으로 사문(査問)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엄중한데 여러 사람들의 공초가 일치될 때, 김보인의 헷갈리는 공술은 극히 놀랍고 통분한 일입니다. 최석기는 다시 엄히 가두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지은 여러 놈들은 이전에 이미 처분하였는데, 이제 사실을 조사한 초기를 보니 최석기는 어떤 죄명(罪名)도 없으니 즉시 방송(放送)하라. 무고한 김보인은

원지 정배(遠地定配)하고, 박진홍도 정배하라. 사알(司謁)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과치(科治)하게 하라. 이 일로 인하여 하교할 것이 있다. 매번 이러한 일들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는 우려가 없지 않으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승정원(承政院)에서는 법사(法司)와 포도청에 거듭 신칙하여 무고한 백성들이 억울해서 한탄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十一日. 訓鍊都監以毆打別監罪人崔錫基等查實草記啓: "罪人崔錫基與別監朴鎭弘, 對質取招, 則崔錫基所供, '果於閏十月十八日宿於梁鐵坪居孫原明家, 二十日發行下鄕, 別監被打在於二十四日'云, 則果無所犯云矣. 別監金寶仁以爲, '二十四日逢見崔錫基於右捕廳橋邊', 朴鎭弘亦爲'二十五日逢見於橋邊'云, 二十日下鄕之漢, 忽於橋邊相見云者, 極爲駭惑. 屢度盤問於孫原明及所捉捕校等處, 則原明以爲, '二十日下鄕眞的'云, 捕校申順吉·崔鳳煥等以爲, '下去南陽, 問錫基下鄕之日, 則二十日下鄕的實'云. 參以諸招, 寶仁·鎭弘之所供, 自歸鑿空. 更爲覈問, 則寶仁以爲, '果未相見, 而有此手本之做錯, 萬萬惶恐'云矣. 承傳查問, 事體嚴重, 衆招歸一之際, 金寶仁眩亂之招, 極爲駭痛. 崔錫基更爲嚴囚, 恭俟處分." 敎曰: "干犯諸漢, 向已處分. 而今見查實草記, 則崔錫基旣爲脫空, 卽爲放送. 誣言之金寶仁, 遠地定配, 朴鎭弘定配. 雖以司謁言之, 難免不審之失, 令攸司從重科治. 因此而有所下敎者矣. 每以此等事, 不無橫罹之慮, 以此意政院申飭於法司與捕廳, 使無告之民, 無冤鬱之歎可也."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11월 11일(임인) 1번째기사>

정치/사법

경기 감사가 시장에서 관장을 모욕한 서유원을 남양부사에게 형신하게 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양성(陽城)의 전 오위장(前五衛將) 서유원(徐有源)이 시장을 횡행하면서 관장(官長)을 모욕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무단(武斷) 행동을 금칙(禁飭)하라는 그동안의 조령(朝令)이 얼마나 엄격하였는데 이들은 끝내 그만둘 줄을 모르고 관장을 모욕하고, 또 무고(無告)한 힘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 그 죄상을 따져보면 너무나 통악(痛惡)스럽다. **서유원은 사적(仕籍)에서 영원히 지워버린 뒤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하여금 해읍(該邑)의 시장에서 개좌(開坐)하여**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악지 정배(遠惡地定配)하게 하되, 물간사전(勿揀赦前)하라." 하였다.

京畿監司朴永輔以"陽城前五衛將徐有源, 橫行場市, 詬辱官長"啓. 敎曰: "武斷禁飭之前後朝令, 何等截嚴? 而此輩終不知戢, 凌蔑官長, 又使無告殘氓, 莫能支保者, 究其罪狀, 萬萬痛惡. 徐有源, 永刊仕籍後, 令**南陽府使**, 開坐於該邑市場, 嚴刑一次, 遠惡地定配, 勿揀赦前."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11월 19일(경술) 2번째기사>

정치/사법

의정부에서 남양에 민란이 일어난 원인과 지방관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기백(畿伯)이 올린 장계(狀啓)의 등본(謄本)을 보니, **남양부(南陽府)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또 일어났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소요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어찌 전에 없던 이런 변고가 생기겠습니까? 난민(亂民)들로 말하자면 설사 원한을 품은 사단이 있더라도 어찌 하소할 길이 없어서 관장을 끌어내어 묶고 인장(印章)과 부신(符信)을 억지로 빼앗는단 말입니까? 분수를 범하고 기강을 범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통분하기 짝이 없으니 응당 크게

징계해야 하고 도(道)에서 조사만 하고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태용(李泰容)을 안핵사(按覈使)로 차하하여 즉시 내려보내어 소요를 일으킨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여러 범인들은 수종(首從)을 구분하여 등문(登聞)하게 하여 품핵(稟覈)한 다음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議政府啓: "卽見畿伯狀啓謄本, 則南陽府民擾, 又作矣. 雖未知緣何起擾, 而爲守宰者, 苟無所失, 安有此無前之變乎? 以亂民輩言之, 設有抱冤之端, 豈無控訴之道, 而曳縛官長, 勒奪印符? 犯分干紀, 莫此爲甚, 痛惋之極. 合有大懲創, 不可只令道査而止. 吏曹參議李泰容, 按覈使差下, 卽速下送, 起擾根因, 築底盤覈, 諸犯分首從登聞, 以爲稟覈酌處之地何如?" 允之. (…)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1894) 6월 28일(계유) 3번째기사>

정치/사법

탐오죄를 지은 전 남양부사 임치재를 처벌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탐장(貪贓)하는 일이 이미 많았는데 처사가 합당하지 못하니, 남의 비난이 없더라도 유독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 사람의 이런 소문을 들으니 지극히 통탄스럽다. 해가 지나도록 마감짓지 않은 것에는 원래 참작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전전 충청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에게는 호남 바닷가에 귀양 보내는 형벌을 적용하고, **전 남양부사(前南陽府使) 임치재(任穉宰)는 형구를 채워서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라.**" 하였다.

敎曰: "犯贓旣夥, 處事乖當, 藉無人言, 獨不自愧於心乎? 以此人得此聲, 極爲痛歎. 經歲未勘, 自有斟量. 前前忠淸監司趙秉式, 施以湖沿投畀之典; 前南陽府使任穉宰, 具格拿來, 南間囚."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7월 15일(기축) 2번째기사>

정치/사법

의정부에서 남양부 민란의 주모자인 정인식과 이군옥 등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남양부 안핵사(南陽府按覈使) 이태용(李泰容)의 계(啓)를 보니** 본래 계하한 여러 범인들에 대하여 주범과 종범(從犯)을 나열하고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근래에 수령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풍속이 매우 완악해져서 지방 고을의 소요가 가끔 들려오기는 하지만 경기 지방에 이처럼 심하게 본분을 무시하고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줄이야 어찌 짐작했겠습니까?

정인식(鄭寅植)은 몰래 윤통(輪通)을 돌리는 것을 사람들의 분노를 격발시켰는데 일을 주선하고 호응한 자취를 감출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전에 음관(蔭官)을 지냈는데 은신시키고 대죄(待罪)하지 않아서 중죄 문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게 했으니 지극히 통분합니다. 감사(監司)로 하여금 감영 뜰에 잡아다가 엄하게 심문하여 사실을 밝혀낸 다음 빨리 보고하고서 다시 품처하게 하소서.

이군옥(李君玉)은 자기 아버지가 뇌형(牢刑)을 받은 것에 대하여 깊은 원한을 품고 기꺼이 난동을 부린 무리들의 선봉이 되어서 수령을 결박해서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죄가 실로 주범에 해당되며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니 남양진(南陽鎭)에 군사와 백성을 많이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고시켜야 합니다.**

최원영(崔元寧)이 논의를 내어 무리를 모은 것과 황익재(黃益才)가 수령의 인(印)을 빼앗고 부신(符信)을 찾아 낸 것에 대해서는 차율(次律)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모두 도망쳤으니 꼭 체포하여 사실을 알아낸 다음 엄한 형장(刑杖)을 두 차례 치고 원악지(遠惡地)에 귀양 보내며 그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경중을 가려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사(前府使) 임치재(任穉宰)는 제멋대로 강제로 징수한 것만도 벌써 법도에 어긋나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형장을 가혹하게 쳤으니 또 얼마나 지나친 일입니까? 드디어 인장(印章)과 부신(符信)을 잃어버리고 차꼬와 수갑까지 차는 수모까지 당했으니 이는 이전에 없던 변고니 조정에 치욕을 끼친 것이 이보다 심한 일이 없습니다. 의금부에서 잡아다가 심문하고 엄하게 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염세(鹽稅)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으며 환곡(還穀)의 총량을 온전하게 만든 안핵사(按覈使)의 조치는 타당하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도록 도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南陽府按覈使李泰容啓本啓下者, 則'臚列諸犯首從, 請令廟堂稟處'矣. 挽近吏治不臧, 民俗多頑, 外邑之擾, 往往入聞, 而豈意畿甸之內, 乃有此蔑分·干紀之甚者乎? 鄭寅植陰助輪通, 激成衆怒, 綢繆和應, 莫掩其跡, 而曾經蔭官, 隱身不待, 以致重案之未備, 極爲駭惋. 令道臣拿致營庭, 嚴覈得情, 斯速登聞, 更爲稟處. 李君玉深憾乃父之牢刑, 甘作亂黨之前茅, 毆縛命吏, 無所不至. 罪實先犯, 亦旣承款. 令南陽鎭大會軍民, 梟首警衆. 崔元寧之發論聚衆·黃益才之奪印搜符, 合施次律, 而俱爲在逃. 期於捉得覈實後, 嚴刑二次, 遠惡地定配. 其餘諸罪人, 竝令分輕重酌處. 前府使任穉宰, 恣意徵斂, 已屬無藝, 縱酒酷杖, 又何過度? 至於失印符, 被桎梏, 尤係無前之變, 貽辱朝列, 莫此爲甚. 令王府拿問嚴勘. 鹽稅之捄弊·還穀之完總, 覈使措處得宜. 竝依此施行事, 分付道臣何如?" 允之.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7월 15일(기축) 5번째기사>

정치/사법

탐오한 전 남양부사 임치재를 사거리에서 형신하고 정배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탐오하는 관리를 내쫓고 포악한 관리를 징계하는 것은 항상 엄격히 해야하지만, 지금처럼 경장(更張)하는 초기에는 더욱 전 규례를 거듭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전 남양 부사(前南陽府使) 임치재(任穉宰)를 의금사 지사(義禁司知事)로 하여금 네거리에서 개좌(開坐)하고서**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악도(遠惡島)에 정배(定配)하되 당일로 압송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黜貪懲虐, 何時不嚴, 而迨此更張之初, 尤宜申明舊典. 前南陽府使任穉宰, 令義禁司知事, 通衢開坐, 嚴刑一次, 施以遠惡島定配, 當日押送."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7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⑷ 군사

정치/군사
왜적이 남양부의 자연도·삼목도의 염장을 노략하다
왜적이 남양부(南陽府) 변경을 침노하고, 자연도(紫燕島)·삼목도(三木島)의 염장(鹽場)을 노략하였다.
○倭侵南陽府邊境, 掠紫燕·三木島鹽場.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3월 11일(경자) 3번째기사>

정치/군사
왜선 4척이 남양의 선좌도에 쳐들어와 약탈하다
왜선(倭船) 4척이 남양(南陽)의 선좌도(仙佐島)에 입구(入寇)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다.
○倭船四隻寇南陽仙佐島, 掠人物而歸.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27일(경진) 2번째기사>

정치/군사
왜적이 남양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다
왜적이 남양(南陽)을 침입하여 병선(兵船)을 빼앗고, 인물(人物)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癸丑/倭寇南陽, 奪兵船, 殺掠人物.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2일(계축) 1번째기사>

정치/군사
왜적이 남양부 염장에 침입하고, 자총도를 노략질하다
왜적이 남양부(南陽府) 염장(鹽場)에 침구(侵寇)하고, 또 자총도(紫葱島)를 노략질하여 9인을 죽이고 1인을 사로잡아 갔다.
○壬子/倭寇南陽府鹽場, 又掠紫葱島, 殺九人, 虜一人而去.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일(임자) 1번째기사>

정치/군사
상당 부원군 한명회를 강화와 남양에 보내 포구의 방어 설비를 검사토록 하다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를 강화(江華)와 남양(南陽) 등지에 보내어 여러 포(浦)의 방어(防禦)의 설비를 낱낱이 검사하도록 하였다.
○遣上黨府院君韓明澮于江華·南陽等處, 點檢諸浦防禦之具.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4일(을사) 5번째기사>

정치/군사
남양부사 박처륜이 제생을 잘 가르쳤다는 내용
(…) 특진관(特進官)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비록 학교(學校)를 중히 여기고 있으나, 지방의 유생(儒生)들은 학문에 뜻을 두는 자가 적으니, 청컨대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모든 고을을 순행하며 경서(經書)를 강(講)하고 겸하여 제술(製述)을 시험

하여 만약 뛰어난 자가 있으면 갖추어서 기록하여 계문(啓聞)케 한 뒤에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파견해 복시(覆試)하여 그 진위(眞僞)를 시험케 하고, 과연 특이한 재예(才藝)가 있다면 그 소재지의 수령(守令)과 교관(敎官)이 상전(賞典)을 논하여 권면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좌우에 물었다.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따로 조관(朝官)을 보낸다면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칙(李則)은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의 유생은 혹 학문에 뜻을 둔 자가 있으나, 충청도(忠淸道)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 관원을 파견하여 고시(考試)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김여석은 말하기를, "강원도 강릉은 사람들이 학문을 좋아하고, 등과(登科)한 자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고, 송영은 말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처륜(朴處綸)이 제생(諸生)을 잘 가르쳐서 성취하게 하였으니**, 신은 비록 조정 관원은 보내지 않더라도 글을 내리시어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권장토록 하는 것이 편의(便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려 책을 강(講)하고 글을 제술(製述)하게 하여, 그 우등(優等)에 뽑힌 자는 시권(試券)도 아울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特進官宋瑛啓曰: "國家雖重學校, 然外方儒生志學者少. 請令諸道監司, 巡行諸邑, 講經書兼試製述, 若爲異等者, 則錄啓聞後, 遣弘文館員覆試, 以驗眞僞, 果有異才, 所在守令·敎官, 論賞以勸之." 上問左右. 克培對曰: "別遣朝官, 似有弊." 特進官李則曰: "全羅道儒生或有志學者, 忠淸道則絶無. 然遣朝官考試, 不可也." 礪石曰: "江原道江陵人皆好學, 登科者比比有之." 瑛曰: "**南陽府使**朴處綸, 能訓誨諸生, 以至成就. 臣意雖不遣朝官, 下書諭監司, 使之勸奬爲便." 上曰: "其下書諸道觀察使, 使之講書製述, 其優等者幷試券以啓."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1일(임진) 2번째기사>

정치/군사

왜선이 향해 가는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선전관을 보내 수토하고 포획케 하다

좌상·우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장언량(張彦良)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왜노(倭奴)가 이미 충청도·전라도 등지로 갔다 하니 생포만 하지 못할 뿐아니라 20여 일 동안이나 해상에 머물러 서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가면서 해로(海路)의 평탄하고 험함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그들을 본토(本土)로 살려 보낸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급히 선전관(宣傳官)을 황해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에 보내어 조방장(助防將)·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을 하유하여, 왜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든 섬을 수색 토벌해서 아울러 협공하여 본토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좌상·우상을 인견(引見)하니,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중림의 초사(招辭)는 자못 이치가 그럴싸한 데가 있기 때문에 초유(招諭)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척이 와서 인물(人物)을 많이 살해하였는데, 끝내 살려서 보낸다면 어찌 국가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왜선이 향해 가는 곳에 하서(下書)하여 습격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토격하면 기회를 잃을까 염려되니, 모든 섬의 의심스러운 곳을 빠짐없이 수토(搜討)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후망(候望)하는 일을 전혀 주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천(仁川)에 나타나 남양(南陽)을 지나갔는데도 끝내 이를 알지 못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봉화(烽火)를 주의하지 않은 것은 과연 권균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참으로 조공차 가던 자라면 생포하여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사체에 매우 온당하지만, 지금은 형세가 그럴 수 없다. 빨리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어 수토하여 포획하라." 하였다.

○傳于左右相曰: "今觀張彦良書狀之辭, 倭奴已去于忠淸·全羅等道, 非徒不能生擒, 淹留二十餘日, 自西向南, 海路夷險, 莫不知之, 生還本土, 則必有後患. 爲今之計, 莫如急遣宣傳官于黃海·京畿·忠淸·全羅四道, 諭助防將·兵·水使等, 令不待倭船現形, 搜討諸島, 竝擧挾擊, 無使逃還可也." 御思政殿, 引見左右相. 李惟淸曰: "中林招辭則頗似有理, 故使之招諭矣. 然以一隻船, 多殺害人物, 而竟能生還, 則豈謂國家有人乎? 更下書于倭船所向處, 使之掩擊可也." 上曰: "隨其現形而討之, 則恐失機會. 諸島可疑處, 無遺搜討何如?" 惟淸曰: "上敎至當." 權鈞曰: "候望專不謹, 故現形仁川, 歷過**南陽**, 而了不能知是甚不可." 惟淸曰: "烽火之不謹, 果如鈞所啓." 上曰: "若實朝貢者, 則生擒送還, 於事體甚當, 今則勢不可也. 其速分遣宣傳官于京畿·忠淸·全羅等道, 搜討捕獲."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3일(임자) 3번째기사>

정치/군사

사헌부가 왜선이 거쳐간 황해도 첨사·만호를 잡아다 추고할 것을 아뢰다

헌부(憲府)가 성세신(成世臣)·한영(韓永)·허위(許渭)의 일을 아뢰기를, "근래에 한재(旱災)가 막심합니다. 전에는 아무리 조그마한 한재를 만나도 반드시 피전 감선(避殿減膳)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비록 헛된 문식(文飾)인 듯하지만 마땅히 천의(天意)에 대응하는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청컨대 빨리 피전하시어 다시 더 수성(修省)하소서. 각도의 역승(驛丞)을 차송(差送)할 곳에 찰방(察訪)을 환차(還差)할 일은, 경상도의 네 곳에는 이미 찰방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도는 역리(驛吏)에게 편의(便宜) 여부를 물어서 하라고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승이 찰방만 못하다는 것은 조정이 모두 이미 아는 사실인데, 지금 만일 역리에게 물었을 때 역승이 더 편의하게 여기는 역리가 있다 해도 그 말에 따라 역승을 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조정에서 처치하되 경상도의 예에 의거해서 모두 찰방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선이 요즘 황해도에서부터 경기도 남양(南陽)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들이 거쳐간 각포(各浦)의 첨사(僉使)·만호(萬戶)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포획하지 못했으니**, 이는 오로지 인재를 택차(擇差)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청컨대 이들을 조옥(詔獄)에 잡아들여 추고해서 과죄(科罪)하고, 합당한 사람을 정밀히 선택하여 급속히 차견(差遣)하소서. 만일 저 왜인들을 본국으로 살아서 돌아가게 한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니 의당 미리 조처를 해야 합니다. 황해도의 첨사·만호를 추고할 일은 이미 본부(本府)에 하달하였으므로, 이미 행이(行移)하여 추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군기(軍機)의 중대한 일을 다만 행이하여 추고한다면 너무 가벼울 듯하여 또한 모두 잡아다가 추고해야 합니다."

하고, 간원(諫院)이 시강원(侍講院)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성세신(成世臣)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피전(避殿)할 일은 진실로 빨리 하여야 하나, 대신이 의논하기를 '일본 사신이 지금 와 있으니 그들을 접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만일 피전을 하면서 또 사신을 접견하기 위하여 문득 복전(復殿)한다면 한갓 사체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진실로써 천의(天意)에 응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므로 아직껏 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대간은 모두가 새로 제수된 사람들이어서 반드시 이 뜻을 모를 것이다. 찰방에 대한 일은 과연 조관(朝官)으로 차견(差遣)한다면 혹 전정(前程)이 애석(愛惜)함은 있겠으나 작폐(作弊)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역승을 설립하는 뜻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또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편의 여부를 역리(驛吏)에게 물으려는 것이지, 오로지 역승을 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일은 마땅히 정부(政府)와 이조(吏曹)에 물어서 처리해야 한다. 황해도·경기도 각포의 첨사·만호 등은 시방 방어를 하고 있으므로, 방어를 끝낸 뒤에 추고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憲府啓成世臣·韓永·許渭事, 又啓曰: "近來, 旱災太甚. 前者雖遇小災, 必避殿·減膳, 而今則迨不爲之. 其事雖似虛文, 當示應天之誠, 請亟避殿, 更加修省. 各道驛丞差送處, 還差察訪事, 慶尙道四處則旣設察訪, 而他道則訪問便否於驛吏而後, 爲之之事, 已啓下矣. 然驛丞之不如察訪, 朝廷皆已知之. 今若訪問於驛吏, 有以丞爲便者, 不可以其言, 置驛丞也. 在朝廷處置, 依慶尙道例, 皆設察訪. 且倭船, 近自黃海至于京畿**南陽**. 其所經歷之處, 請皆拿致于詔獄, 推考科罪, 精擇可當之人, 急速差遣. 若使彼倭生還本土, 則必有後患, 當預爲措置. 黃海僉使·萬戶推考事, 下于本府, 故旣已行移推之矣. 然軍機重事, 只令行移, 推考似乎, 輕歇亦皆拿推." 諫院啓侍講院事, 傳曰: "成世臣等事不允. 避殿事, 固當速爲, 大臣之議以爲, 日本使臣今已出來, 不可不接待. 今若避殿, 而又因接見使臣, 遽卽復殿, 非徒不宜於事體, 亦非應天以實也云, 故迨不爲之耳. 今臺諫皆是新除, 必不聞此意也. 察訪事, 果以朝官差遣, 則或有愛惜前程, 不甚作弊矣. 但驛丞設立之意, 必有其由, 而又『大典』所載之事, 故欲問便否於驛吏者, 不欲專廢驛丞也. 此事當問政府與吏曹, 而處之. 黃海·京畿各浦僉使·萬戶等時方防禦, 故已令罷防後, 推考耳."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4일(계축) 2번째기사>

정치/군사

서해에 출몰한 왜인에 대한 논의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이 아뢰기를, (…) 비망기(備忘記)로 남곤 등에게 하문(下問)하기를, "어제 윤희인(尹希仁)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충청도의 수사(水使)·군관(軍官) 등이 왜선 1척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왜인 1명은 익사하고 왜인 9명은 화살을 맞고 서해(西海)로 패주(敗走)했다 하니, **이는 곧 남양(南陽)에 나타났던 왜인이 분명하다**. 황해도·경기도 같은 경우는 방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혹 포획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충청도는 장사(將士)와 병선(兵船)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수사가 타도에 가 있고 친히 독전(督戰) 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미편(未便)한 일이다. 병조(兵曹)는 의당 공사(公事)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왜선 1척이 황해도에서 충청도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포획하지 못했으니 통분하기 그지없다. 연변(沿邊)의 진장(鎭將)들을 비록 일시에 역치(易置)할 수는 없겠으나, 방비를 끝낸 후에 의당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왜변(倭變)이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을 응징해서 백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 옳으니 그 가운데 아주 심한 자를 잡아들여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남곤 등이 의계하기를,

"이 왜선 1척이 삼도(三道)를 횡행하는데도 한 사람도 그들을 포획하지 못하였고, 아무리 '화살을 맞은 자가 몇 명이다.' 하였지만 그 말도 꼭 믿을 수 없으니 '통분하다.'는 상교(上敎)가 지당하십니다. 변장(邊將)을 의당 벌을 주어야 하나, 다만 지금 만일 모조리 체

직한다면 신인(新人)과 구인(舊人)이 서로 송영(送迎)하는 동안에 방비의 모든 일이 더욱 허술하게 될 것이고, 또 소란스러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상교대로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자를 잡아다가 추문하여 벌을 주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누가 가장 심한 자인지 분별하지 못할까 염려입니다." 하였다.

○丁巳/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清·右議政權鈞啓曰: (…) 又以備忘記, 下問于南袞等曰: "昨觀尹希仁狀啓, 忠淸水使, 軍官等逢一倭船相戰, 一倭溺死, 九倭逢箭敗走西海, 此乃南陽之倭明矣. 如黃海·京畿則防備不實, 故或不能捕獲也, 忠淸則將士·兵船俱在, 而水使歸在他島, 不親督戰, 至爲未便, 兵曹自當爲公事矣. 一隻倭船, 自黃海至於忠淸, 無一人捕獲者, 痛憤莫甚. 沿邊鎭將雖不可一時易置, 罷防後所當更議, 然今方有倭變, 懲一警百可也, 其中尤甚者, 拿致·改差何如?" 南袞等議啓曰: "此倭一船橫歷三道, 無一人捕獲者. 雖云逢箭者幾人, 其言不可的信, 上敎痛憤之言, 至當. 邊將所當罪之, 但今若盡遞, 則新舊送迎之間, 防備諸事, 尤至於虛疎, 且有紛擾之弊, 依上敎, 摘出其中太甚者, 拿推罪之, 以懲其餘允當, 但恐不能分別某爲太甚者也."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8일(정사) 1번째기사>

정치/군사

대신과 비변사가 교동에서 남양까지의 바다에서 전선을 시험할 것을 아뢰는 내용

대신과 비변사가 함께 의계(議啓)하기를, "경강(京江)의 전선(戰船)은 이미 수리를 마쳤고 기계(器械)도 모두 갖춰 장치하였는데, 지난번 제천정(濟川亭)에 친림하여 이미 시험하였습니다. 다만 강과 바다의 운행이 같지 않으니, 만일 바다에서 시험하지 않으면, 배의 빠르고 늦은 속도와 해로(海路)의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사부(射夫)와 격군(格軍)도 모두 새로 모집하여 본디부터 해로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어서 뒷날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배를 부리게 되면 해로의 형세에 어두울 것이니, 적선을 만나도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남치근(南致勤)이 지금 주사 대장(舟師大將)이 되었으나 적들이 왕래하는 경기의 바다와 섬의 요해처를 알지 못할 것이니, 미리 알아 두어서 조치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치근을 시켜 전선 7~8척을 거느리고 이달 20일 사이에 기계를 꾸려 떠나게 하여 **교동(喬桐)·강화(江華)·부평(富平)·인천(仁川)·남양(南陽)의 해로와 여러 섬들을 지나면서 살피게 하고,** 순사할 적에 경유하는 수영(水營) 및 전선을 보유하고 있는 각관의 수령과 각포(各浦)의 첨사(僉使)·만호(萬戶) 등이 각기 전선을 거느리고 길을 가리켜 주면서 함께 행하여 운용을 시험해서 진장(鎭將) 및 군졸들에게 수전(水戰)을 익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己卯/大臣·備邊司同議啓曰: "京江戰船, 今已畢修, 裝器械, 亦盡備設, 而頃者親臨濟川亭, 旣已試之矣. 但江海運行不同, 若不試於海中, 則船之便疾遲鈍及海路難易, 勢不得測度, 而射夫格軍, 亦皆新募, 本非慣習海路者. 他日有急, 卒遠行船, 則暗於海路形勢, 雖遇賊船, 制勝爲難. 且南致勤, 今雖爲舟師大將, 京畿海島賊路要害, 未曾見知, 不可不使預知措置矣. 請令南致勤, 領戰船七八隻, 今月二十日間, 裝束發行, 歷審喬桐·江華·富平·仁川·南陽海路諸島, 而巡海之時, 所經水營及有戰船各官守令·各浦僉使·萬戶等, 各領戰船, 指路竝行, 以試運用, 使鎭將及軍卒等, 習知水戰何如?" 傳曰: "如啓."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5월 8일(기묘) 1번째기사>

정치/군사

비변사가 남양, 교동 등으로 도망한 사람들 중에서 건장한 장정을 모집하자고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강(京江)의 배들이 피난을 나와 외양(外洋)에 모여 있는 것이 무려 수백여 척에 이릅니다. 지금 그들의 소원을 묻는다면 그들의 처자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일일 것이니 그들 중에서 장정을 모집하여 우리의 군사들과 협력하여 방어에 진력하도록 하시고, **또 경성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 지금 강화(江華)·인천·남양(南陽)·교동(喬桐) 등처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 이들을 모집한다면 건장한 병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유 어사(撫諭御史) 윤승훈(尹承勳)을 급히 파견하여 편리한 대로 조처하도록 하시고 또 남병(南兵)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가서 행조(行朝)의 소식을 직접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여 경성을 수복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備邊司啓曰: "京江船, 避亂來聚外洋者, 無慮數百餘隻. 今若問其所願, 區處其妻子, 使得存接, 而募其丁壯, 與諸軍盡力防禦, 且京邑奔竄之人, 多入江華·仁川·南陽·喬桐等處, 召集則可得壯軍云. 撫諭御史尹承勳急速發遣, 隨便措畫, 且令馳到南兵所會處, 面傳行朝消息, 使之刻期收復京城." 上從之.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29일(무자) 7번째기사>

정치/군사

남양 등지에 왜적의 노략질이 일어났다는 내용

상이 평양에 행행하였다. 신시에 대동관에 행행하여 이 제독을 접견하였다. (…)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천자의 분명하신 명을 받은 만큼 삼군(三軍)의 진퇴가 대인의 손에 있는데 경략이 어찌 대인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소방은 오로지 대인만 바라볼 뿐이오."

하니, 제독이 홍순언(洪純彦)에게, "당신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중국에 드나들었으면서 천조의 일을 알지 못하겠소? 무관은 남에게 제재를 받아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략에게 군사를 재촉하여 진격시키라고 청하였는데, 경략이 '강화한다면 조선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고 하였소. 지금 국왕과 여러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청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매우 감동되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지금 경기 포정사(京畿布政使) 성영(成泳)의 서장에, **남양(南陽)·인천(仁川)·안산(安山)·금천(衿川) 등지 및 강원도 춘천(春川) 일대에 왜적이 멋대로 노략질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적정을 알 수가 있을 것이오." 하였다.

○己卯/上幸平壤. 申時, 上幸大同館, 接見李提督.(…) 上曰: "大人受天子明命, 三軍進退, 在大人之手, 經略亦豈不從大人之言乎? 小邦, 專仰大人而已." 提督謂洪純彦曰: "爾自吾父時, 出入中國, 爾不知天朝事耶? 武官受制於人, 而不能自擅, 故累請於經略, 催兵進勦, 而經略以爲 '講和, 則朝鮮可以無憂' 云. 今觀國王群臣涕泣以請, 心甚感動." 上曰: "今觀京畿布政司成泳書狀, 南陽·仁川·安山·衿川等地及江原道春川境上, 倭賊恣意剽掠, 少無忌憚, 以此見之, 賊情其可知矣." (…)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4일(기묘) 1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좌도 감사 성영이 왜적 강화를 논의하고 오는 심 유격을 만났다고 아뢰다

경기좌도 관찰사 겸 순찰사 성영(成泳)이 아뢰었다. "**신이 이달 16일 남양(南陽)에 있다가**

명장이 배를 타고 경강(京江) 근처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응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즉시 단기(單騎)로 달려가 양천(陽川)에 도착하여 이른 아침에 작은 배를 타고 물건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심 유격(沈遊擊)이 판옥선(板屋船)을 타고 돛을 펼친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신이 배안에서 통사를 시켜 말을 전하기를 '대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배알을 하고자 하였으나 뱃길이 너무 바빠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 명장이 곧바로 뱃머리에 나와 섰습니다.

신이 즉시 배사하기를, '우리나라 인민이 황제의 위덕을 의지해 다시 살아났다.' 하니, 명장이 답하기를 '지금 왜장과 강화를 직접 약속하였는데, 4월 8일까지 군사를 거두어 가기로 하였으니 부디 수군들로써 강구(江口)를 차단하지 말라.'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명을 듣겠다. 다만 사방을 지켜야 하니 달려가 뵙지는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명장이 답하기를 '뒷날 다시 만나자.' 하며, 읍하고 파하였는데, 대개 명장의 말씨도 간곡하고 희색이 만면하였는데 강화를 결정한 것을 만족히 여기는 듯하였습니다. 신이 당초 주찬(酒饌)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명장이 길을 너무 서둘러서 각기 배 안에서 겨우 말을 전하였을 뿐 동행을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달을 서로 버티기만 하고 군사를 출동시킬 시기에 대해서는 들리는 바가 없습니다. 서울 이북은 명병의 위세가 미치어 적이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으나 한강 이남은 적의 형세가 매우 극성하여 과천(果川)·용인(龍仁)·양지(陽智)·죽산(竹山) 일로는 본시 적의 소굴로서 논할 것도 없거니와, **진위(振威)·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금천(衿川)·인천(仁川) 일대는 왜적들의 온 부대가 나와 날마다 분탕질을 하고 더러는 밤을 타고 습격하여 살아 남은 백성들이 흉적의 창칼밑에 다 죽어갈 형편입니다.** 신이 용렬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한 지방을 지키며 적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방황하자니 눈물만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京畿左道觀察使兼巡察使成泳啓曰: "臣本月十六日, 在**南陽地**, 傳聞天將乘船, 到京江近處云, 臣不可不接應, 故卽以單騎馳到陽川境, 十六日早朝, 得小船泝流而上, 則沈遊擊乘板屋舡, 張帆而下. 臣於舟中, 令通事傳語曰: '聞大將來臨, 思欲拜謁, 舟行忙遽, 未遂下情.' 云云, 則天將卽出立於船頭. 臣卽拜謝曰: '我國人民, 仗皇威而再生.' 天將答曰: '今與倭將, 面約講和, 而以四月初八日爲限, 令收兵而去, 須勿以舟師, 把截江口.' 云云. 臣答曰: '謹聞命矣. 但謹守四方, 未得追謁.' 天將答以 '待後更見.' 作揖而罷, 大概, 天將辭意懃懇, 喜色滿顔, 若以定和爲自得者然. 臣當初欲設酒饌, 而天將行色甚遽, 各在舟中, 謹得傳語, 故未得請行矣. 第持重累月, 師期無聞. 京城以北, 則天兵聲威所及, 賊不敢近, 而漢水以南, 賊勢尤甚熾盛, 如果川·龍仁·陽智·竹山一路, 則素是賊窟, 已矣不論, 至於振威·水原·**南陽**·安山·衿川·仁川之間, 倭賊擧陣出來, 逐日焚蕩, 或乘夜掩襲, 孑遺之民, 勢將盡陷於兇鋒之下. 臣猥以庸劣, 叨守一方, 彷徨賊藪, 痛泣莫措."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4일(기묘) 2번째기사>

정치/군사

비변사가 석 상서가 윤근수에게 보낸 첩중의 일을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심 유격의【유경(惟敬)】 접반관 유동립(柳東立)이 등서하여 보낸, 석 상서(石尙書)가 윤근수(尹根壽)에게 보낸 첩중(帖中)의 일은, 속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일인데 **윤근수는 논박을 입은 후 남양(南陽)에 물러가 있다 합니다.** 급히 치유(馳諭)하여 신속히 올라오게 하는 것이 의당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

이 아뢴 대로 하라고 일렀다.
○備邊司啓曰: “臣等伏見沈遊擊【惟敬】接伴官柳東立所謄送尹根壽處石尙書帖內事意, 則當有從速議處之事, 而尹根壽被論之後, 退在南陽地云. 星夜馳諭, 使之急急上來宜當, 敢稟.” 上曰: “依啓.”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7일(기유) 3번째기사>

정치/군사
훈련도감에서 염초 굽는 방법을 남양 등지에 전수하자고 건의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바다 흙으로 염초(焰硝)를 구워내는 일을 도감에서 매번 중국 사람들과 시도해 보려 하였으나 아직 실효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천(舒川)의 군보(軍保) 임몽(林夢)이 염초를 구워내는 일을 여러 가지 꾀를 내 시험하여 성공을 거두고서 도감으로 찾아와 말하기를 ‘어떤 곳에 가서 구워보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즉시 감관(監官) 조효남(趙孝南)을 시켜 남양(南陽) 지역의 바닷가로 데리고 가 굽도록 하였더니 5일 사이에 바다 흙으로 구운 염초 1근과 함토(醎土) 2분(分), 바다 흙 1분을 합하여 구운 염초 3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제들을 합쳐 시험삼아 쏘아 보았더니 성능이 뛰어나 쓸 만하였으므로 두 가지 약제를 각기 담아 올립니다. 필요한 바다 흙은 반드시 사람과 말들이 밟고 다닌 염전(鹽田)에서 취하고 바닷가의 숲이 많은 지역을 찾아서 많은 양을 구워낸다면 힘도 덜고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우선 임몽으로 하여금 염초를 굽는 각소(各所)에서 기술을 익히는 장인(匠人) 중에 그 방법을 대강 터득한 자를 뽑아 거느리고 **다시 남양 등지로 가서 그 굽는 방법을 모두 전수케 한 다음 논상하여 권장한 후에**, 충청 어사(忠淸御史) 이시발(李時發)에게 내려보내어 남포(藍浦) 등지의 소금을 구워내는 곳 중 숲이 있는 지역에서 많은 양을 굽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서쪽으로 피난갔을 때에 바다 흙으로 염초를 굽는다는 말을 익히 듣고 내심 기뻐하며 만일 이 방법만 얻게 되면 무궁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 여겼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전(承傳)을 내려 ‘이 방법을 터득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높은 벼슬을 주어 포상을 내리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한 사람도 터득한 사람이 없고 중국 사람에게도 여러 차례 물었으나 그 방법을 얻지 못하여 마음에 늘 탄식해 왔는데 뜻밖에 오늘날 이처럼 능히 이뤄냈으니 축하할 만한 일이다. 다만 그에 드는 힘이 얼마나 어려운지와 얼마만큼의 염초가 얻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의당 조예가 있는 낭청(郞廳)을 보내 임몽과 다른 염초장(焰硝匠)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남양 지방으로 가,** 눈 앞에서 직접 구워내게 해서 허실을 자세히 알게 된 뒤 크게 논상하겠다.” 하였다.
○訓鍊都監啓曰: “海土煮(消)〔硝〕事, 都監每欲與唐人試之, 而未見成效. 有舒川軍保林夢, 凡焰(焇)〔硝〕煮取之事, 多般出計, 試驗得效, 而來告于都監, 願往某處煮造. 卽令監官趙孝南, 帶往南陽地海邊煮取, 則五日之內, 得海土所煮焰(焇)〔硝〕一斤·醎土二分·海土一分, 合煮焰(焇)〔硝〕三斤以來. 合劑試放, 精猛可用, 故兩色藥各封進. 所取海土, 必於鹽場人馬踏行處取之. 如就海邊多木之地, 多數煮取, 則可以省力而得大利. 姑令林夢, 擇率焰(焇)〔硝〕各所傳習匠人之稍知其方者, 更往南陽等地, 盡傳其煮取之法, 然後論賞勸奬, 下送于忠淸御史李時發處, 使於藍浦等處煮鹽有木之地, 大擧煮取, 何如?” 上曰: “予在西方時, 熟聞以海土, 煉成焰(焇)〔硝〕, 心喜, 以爲若得此法, 利無窮也. 遂下承傳, 有能傳此法者, 陞授重職以賞之. 厥後無一人傳習, 又累問於唐人, 而未得其術, 心常歎之. 不圖今日, 能成如此,

可賀也. 第未知其用力之難易, 得(焟)〔硝〕之多寡. 宜遣有識郎廳, 率林夢及他焰(焟)〔硝〕匠數人, 更往**南陽地**, 眼前煮取, 審驗虛實後, 大爲論賞."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25일(정유) 7번째기사>

정치/군사

유성룡의 경기 산성 수축 및 수군 강화책을 시행하도록 비변사가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영의정 유성룡의 차자(箚子)에서 논한 바를 보건대, '경기(京畿) 좌·우·중(左右中) 삼로(三路)의 각처에 있는 산성(山城)을 수축하고 경영(經營)해서 점차 완성하여 서울 방어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실로 오늘의 급무(急務)이다. **또 경기의 수영(水營)이 남양(南陽)에 있어서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므로 위급한 일이 닥치면 제때에 전진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수사(水使)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가 높아지기 전에 강화(江華)·덕포(德浦) 등지로 가서 교동(喬桐)과 강화의 수로군(水路軍)을 모두 주사(舟師)에 소속시켜 농한기(農閑期)에 수전(水戰)을 연습시켰다가 유사시에는 그들을 거느리고 책응하게 하며, 수영에 소속된 여주(驪州)·지평(砥平) 등 먼 고을의 수군(水軍)은 제번(除番)시켜 파사성(婆娑城)에 소속되게 하여 상류(上流) 쪽을 방비하게 하는 것이 피차에 편리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자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궁벽한 곳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적을 제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백성들을 수고롭혀 가며 수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충청·전라·경상도 등에 진관(鎭管) 속오법(束伍法)을 거듭 밝혀 영(營)을 세워 조련(操鍊)시키고 서로 형세를 연결하여 협력해서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이 곧 보장(保障)의 대계(大計)이니, 당도(當道)의 도체찰사(都體察使)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헤아려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 "伏見領議政柳成龍箚中所論, 京畿左·右·中三路, 各處山城, 修築經營, 漸次就成, 爲捍衛京城之計, 固是今日之急務. 且京畿水營在**南陽**, 距京頗遠, 緩急恐難及期前進. 令水使限風高前, 進住江華·德浦等處, 以喬桐·江華水陸軍, 盡屬舟師, 農隙教閱水戰, 有事則領率策應, 而營屬驪州·砥平等遠邑水軍則除番, 姑屬于婆娑城, 以防上流, 彼此便益. 令該曹依箚辭施行. 山城之深僻, 不合於控扼者, 勿令勞民修築爲當. 忠淸·全羅·慶尙等道, 申明鎭管束伍之法, 置營操練, 使形勢相連, 爲合力必守之規, 乃保障之大計. 令當道都體察使, 商量便否, 處之宜當." 傳曰: "依啓."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9일(기해) 3번째기사>

정치/군사

동부승지 조찬한이 시급히 주사를 보완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동부승지 조찬한(趙纘韓)이 아뢰기를, "강도(江都)의 고을은 지역이 사방 백 리이고 사면이 물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류에 있어서 서울과 짝이 되어 사방에 적의 충돌을 막으면서 팔방을 제압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금성 탕지(金城湯池)로서 만세에 망하지 않을 훌륭한 땅입니다. 비록 넓은 천하와 큰 해내의 방지(方誌)를 총괄하여 논한다 해도 형세의 기특함이 이것에 방불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고을은 〈한양(漢陽)과의 거리가 백 리인데다〉 포구와 항구 밖에 끼어 있고 반양(泮洋)의 좌편에 솟아 있어서 사면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 형승지(形勝地)이니, 진실로 판옥선(板屋船) 30척으로 각기 병선 몇 척만 거느리고 네 부대로 나누어 요해처를 가로막고

지킨다면 비록 3오(三吳)의 백만 전함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신이 말한 것에 따라 양남의 좌우 수영에 통보하여 다음달 20일 전까지 배정된 수의 판옥선을 거느리고 포구에 도착하게 한다면 그 정돈된 격군(格軍)으로 30척에 사용할 사람을 조달하여 〈혹 주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강도에서 위험을 구제하고 적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비록 천하에 비교하더라도 이보다 더 훌륭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년 이래로 뭇 논의가 결정되지 않아 혹은 나주(羅州)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안동(安東)을 말하기도 하여 어느 의논을 따라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부찰사가 한 번 순시하고도 결정하지 못하고 체찰사가 두 번째 순시하고도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상신이 세 번째 순시하면서 그림까지 그려 왔는데도 아직 완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요좌(遼左)를 잃게 된다면 산해관(山海關) 밖은 중국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번에 적이 요양(遼陽)을 함락하는 기간은 열흘이나 보름밖에 안 걸릴 것이지만 격군을 정돈하고 전선을 징집하려면 수십 일이나 소요될 것이니, 그 위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인심은 이처럼 헤아릴 수 없고 국사는 이처럼 형편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깊이 구중궁궐에 계시면서 신료들을 드물게 접촉하시니 어떻게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2백 년 동안 태평을 누린 나머지 갑자기 임진란을 만났는데 선왕께서 의주로 피난하실 때 이미 민심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기강의 해이가 임진란 전보다 백배나 되고 인정과 세태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강도가 비록 가깝다고는 하나 만약 서쪽의 급보를 기다려 어가를 옮기려고 한다면 천 리를 가는 어려움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세가 얼마나 위태로운데 편안히 세월이나 보내며 염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진실로 노적(奴賊)이 오로지 중국만 공략하고 우리 동방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강도의 형승지에 어가를 옮길 필요도 없고 격군도 재촉하여 모집할 것도 없고 전선도 재촉하여 정박시킬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서쪽 적이 만에 하나라도 몇 개월 뒤에 근심거리가 된다고 할 경우 〈주사(舟師)를 범범하게 여기지 말고〉 비국으로 하여금 문무 중에 일을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잘 선택한 다음 대장을 더 설치하여 격군과 전선 등의 일을 맡기어 한 달 사이에 완성시키라고 책임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노적이 국경을 침범하는 다급함이 없더라도 궁인과 환관을 미리 보내어 마치 행궁(行宮)처럼 만들어 놓으면 후일 행차할 때 인심이 놀라지 않아 새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적이 멀리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오직 하루를 급히 여겨 한 달 내에 강도의 역사를 완공하여 온 나라가 귀의할 수 있는 요새지로 삼으소서. 그러면 위급에 임하여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물러나 지키면 필승의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팔도를 견제하거나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모두 그 길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연안(延安)·안서(安西)·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通津)·남양(南陽)·인천(仁川) 등 고을의 수령을 각기 계려가 있는 훌륭한 사람을 얻어야만 서로 보거(輔車)의 모양이 되고 의지하여 오공(蜈蚣)처럼 형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적군이 국경에 다가오기도 전에 구구하게 옮겨 보호하는 계책을 말씀드린 것은 신도 너무 이른 계책인 줄 알고 남들도 겁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신이 지난 번 장만의 장계를 보니 '장마가 지기 전에는 적이 반드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하였으나〉 신은 혼자 그렇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만일 노적이 병법을 안다면 반드시 이때에 요동을 침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략이 이미 체직되었으나 아직

신임이 교대되지 않았으며 패전 후 아직 병력을 보충하는 일이 없었으니, 노추(奴酋)가 병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만약 뜻을 이루게 되면 흉모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로 피난하는 일이 과연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일찍 조처하지 않을 경우 군신이 자책하고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주사를 보완하는 급함이 영건하는 것보다 더 급하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속히 비국에 내려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우소서. 신이 해방(該房)에 있으면서 변방의 소식이 매우 급한 것을 목격하고 밤이면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기에 무릅쓰고 우러러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급히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己未六月二十九日庚辰同副承旨趙纘韓啓曰: "江都爲邑, 地方百里, (而)四面面水. 最居上游而與京輦作配, 四絶賊衝而控制八方, 此實天府金湯, 萬世不亡之右地也. 雖以天下之廣·海內之大, 摠究方誌, (而論之形勢之奇,) 未有彷彿于此者. 惟此江邑, 距漢陽百里, 而介浦巷之外, 峙泮洋之左, 爲四面拒敵之形勝. 誠以板屋船三十隻, 各領兵船若干, 分作四翼, 截拒其要害而守之, 則雖以三吳百萬之戰艦, 亦將無如之何. (果如)依相臣所言, 飛報(于)兩南左右水營, 趁開月念前, (以其)分(一)定(數領)板屋, 准到浦口, 則以其(整頓)格軍, 可調三十艘之用(者, 或可周旋. 以)臣竊(所)揣江都之濟危禦敵, 非特我國之第一, 雖校諸天下, 莫之與京. 而自數年群議未定, 或稱羅州, 或稱安東, (而)莫適所從. 副察使一巡而未決, 體察使再巡而未決, 及至相臣三巡(圖畫), 尙未完事. 萬一遼左失守, 則自關以外, 非中國之有也, 今者敵擧遼陽(之日), 只在旬望(之內). 而整格軍·徵戰船, 遠在數十日之外, (則)其爲危迫, 當如何哉? 況人心之如是不測, 國事之如是無形, 殿下深居九重(之內), 罕接臣僚(相接), 則何從而盡知(之乎)? 二百年昇平之餘, 猝遇壬辰之亂, (而)先王西狩之日, 已知民心之罔測. 況今紀綱之委靡, 百倍於壬辰(之前), 而人情物態, 已到於無可奈何(者乎)? 江都雖近, 若待西報而移御, 則亦無異致千里之難矣. 今日之勢, 豈不岌岌而恬愓玩愒, 莫之爲念? 苟或奴賊專事上國, 不以我東爲有無, 則江都之勝, 不足移御也, 格軍不足催括也, 戰船不足催泊也. 如以西賊爲萬有一憂於數月之前, 則(勿以舟師爲泛泛, 而)使備局極擇文武中解事一員, 加設大將, 委以格軍·戰船等事, 責成於旬月之間. 雖無奴賊犯境之急, 宮人宦官, 或先預往, 若如行宮, 則他日行幸之際, 人心不驚, 庶無鳥散之患. 伏願殿下勿以賊遠而狃安, 惟以一日爲急, 旬月之內, 完畢江都之役, 以爲擧國依歸保障之地. 則臨急而無何走之嘆, 退守而有必勝之利. 以之控引八道·通使中國, 皆得其路. 而必須延安·安西·喬桐·金浦·通津·南陽·仁川之邑, 各得(其)賢宰(有計慮者), 然後替爲輔車之形, 而倚作蜈蚣之勢也. 敵未壓境而(區區)獻(計於)移保之策(者), 臣亦知太早計, 而人將以爲怯也. 第臣頃見張晩以啓, 云: '潦水之前, 賊必不動', (人皆以爲然, 而)臣獨以爲不然. (若使奴賊知兵, 必於此時犯遼.) 何者? 經略旣遞, (而)新不代舊, 喪師之後, 尙無添戍(之擧), 使奴酋苟知兵者, 必及此時而勿失. 賊若得志, 則兇謀(之)所在, 何其量哉? 江都移避(之擧), 果保其無此事乎? 若然而(尙)不早爲之所, 則君臣嘖嘖, 噬臍莫及. 臣之愚意, 舟師繕完(之)急, (急)於營建(者此)也. 伏願亟下備局, 刻期規劃. 臣待罪該房, 目見邊報孔棘, 夜不能接目, 冒昧仰瀆." 傳曰: "令備邊司急急議處."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 11년(1619) 6월 29일(경진) 1번째기사>

정치/군사
남양부사 이명한의 첩보에 따라 경기 감사 남이웅이 수군의 변통을 청하다

경기 감사 남이웅(南以雄)이 치계하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명한(李明漢)의 첩보에 의하면** '경내(境內)의 군민(軍民)들이 이미 수군(水軍)의 번차(番次)를 변통한다는 말을 듣고, 또 수사(水使)의 행문(行文)을 보고는 각자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대체로 정군(正軍)은 양반(兩班)의 자손도 면할 수 없으나, 수군(水軍)은 대대로 세습하는 직임으로서 지극한 천역(賤役)인데 일반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장차 도망하고 흩어질 형세이다.' 고 하였습니다. 크게 군정(軍情)에 관계되니, 속히 묘당으로 하여금 변통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에 내렸다.
○京畿監司南以雄馳啓曰: "南陽府使李明漢牒報以爲: '境內軍民, 旣聞水軍番次變通之言, 又見水使行文, 各自疑懼. 蓋正軍則兩班子枝, 亦不得免, 水軍則世傳其任, 至賤之役, 視同一般, 以此冤呼, 勢將逃散' 云. 係干大段軍情, 亟令廟堂變通." 事下備局.
<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1627) 11월 13일(병자) 3번째기사>

정치/군사
동부승지 이성신이 남양 등지의 군사를 강화부에 배속시켜 수전을 익히게 하자고 하다
동부승지 이성신(李省身)이 상소하기를, "오늘날 남쪽 변방의 일이 우려할 만합니다. 군사에 관한 일은 미리 강구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한가하게 노니는 양반으로 60세 이하인 자에게 각각 면포 2필씩 징수하여 군사들의 의복과 식량으로 공급하소서. **남양(南陽)·안산(安山)·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교하(交河)·풍덕(豊德)·배천(白川)·연안(延安) 등지의 군사들을 모두 강화부에다** 배속시켜 수전(水戰)을 익히게 하고, 군율을 닦아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소에 한 말은 유념하여 채택해 시행하겠다." 하였다.
○壬午/同副承旨李省身上疏曰: 目今南邊可虞, 治兵之策, 不可不預講. 兩班閑遊者, 六十歲以下, 各徵綿布二匹, 供軍衣食. 南陽·安山·仁川·富平·金浦·通津·交河·豐德·白川·延安等地之軍, 悉屬江華府, 俾習水戰, 修明軍律, 以肅頹綱. 答曰: "疏辭當體念而採施焉."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1638) 1월 18일(임오) 1번째기사>

정치/군사
전 예조 판서 조익의 탄핵을 변론한 병조 판서 이시백의 상소문
이에 앞서 전 예조 판서 조익(趙翼)이 탄핵을 당했을 때에,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이 상소하여 변론하였는데, 그 대략에, "임금을 잊고 국가를 저버리는 것은 막심한 죄악이니, 보통사람에게 억지로 덮어씌우는 것도 못하는 바인데 더구나 조익에게 씌우겠습니까. 신이 그의 일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 밝히겠습니다.
당초 서울을 떠날 때 강도(江都)로 계획을 정하고 노인은 먼저 들어가라는 전교가 있었는데, 조익의 아비 조영중(趙瑩中)은 나이 80이었으나 또한 호종(扈從)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익이 그의 아들 조진양(趙進陽)으로 하여금 그 아비를 모시고 먼저 들어가게 하였고, 조익은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과 종묘 사직의 신주를 호종하려고 하였습니다. 숙녕전(肅寧殿)을 모시고 가는 것은 예조 참판 여이징(呂爾徵)으로 정하였는데, 예조 관리가 고하기를 '참판은 숙녕전을 모시고 먼저 갔으나, 종묘의 신주는 아직까지 모시고 나오지 못했다.' 고 하자, 대신들이 놀라서 '판서는 빨리 가라.' 고 하므로 도착해 보니, 막 모시고 나왔습니다. 조익이 '종묘 신주를 모시고 가는데 예관(禮官)이 없을 수 없으니, 마땅히 참

판을 쫓아 따라가서 물러와 호종(扈從)케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로(中路)에 이르러 그의 아들을 만났는데 발이 아파 걷지 못하여 그의 늙은 아비와 서로 헤어져 있었습니다. 조익이 달려서 양천(陽川)에 이르러 종묘의 신주가 이미 숙녕전과 한 곳에 모셔진 것을 보고는 즉시 그 아비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 임금의 소식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대저 그가 나갈 때에 선발대는 이미 출동했는데 별안간 남문(南門)으로 회가(回駕)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며 다만 적의 침입이 다소 누그러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비로소 임금께서 남한 산성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80세인 늙은 아비를 잃어, 허둥지둥하는 때에 자식의 지극한 심정은 다른 것을 생각치 못하고 다만 그 아비를 찾은 다음 행재소(行在所)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 등 세 고을 사이에서 분주히 찾아 며칠 후에 비로소 그 아비가 있는 곳을 알았는데, 행재소는 이미 멀리 떨어져 들어가 모실 길이 없었으니, 그 낭패가 어떠하였겠습니까.
강도(江都)는 하늘이 만든 요새지로서 사람들이 모두 피난지(避亂地)로 여기고 있으니, 조익이 그때에 만약 자신만 살기를 도모했다면 어찌 그대로 강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만 임금이 위급하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군사를 모집하여 적과 싸우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경기 중군(中軍) 진영의 1천여 군사가 그 진영의 장수를 잃고 중로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군사를 사용하려고 달려가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棨)를 보고 그와 함께 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심지원(沈之源)·김상(金尙)·이시직(李時稷)·윤명은(尹鳴殷) 등도 또한 모두 모였는데, 분부하고 배치할 때에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명령을 전달하여 그 군사를 부르자, 이에 다시 군사를 모집하여 수백 명을 얻어 즉시 곧장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위태로운 것을 알았지만 그의 지성을 보고 감히 만류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의 군대가 갑자기 이르러 윤계는 죽고 모집한 군사는 모두 흩어져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일을 같이한 사람들과 강화도로 들어갈 것을 정하였습니다.
아, 그 늙은 아비를 잃었을 때에 어느 곳에서나 죽을 뜻이 있었으니, 정상을 헤아려 보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성상의 전교에 정상이 용서할 만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하는 자들이 ‘위급한 시기에 전하를 버리고 바다로 도망쳤다.’고 하니 그 너무나 가혹합니다.
조익은 집안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상경(上卿)에 올랐으나 서울에 두서너 칸의 집도 없어 임시 집을 빌어서 살았고 봉급으로 먹고 살았으며, 피난할 때 집에는 말 한 마리도 없어서 부녀(婦女)들이 걸어갔습니다. 멀리 피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신에게 부탁하여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겨우 성 밑에 도착하자 적을 만나 도망쳐 바다 섬으로 들어갔고, 조익은 여러 사람들과 분주히 군사를 모집하느라 그 가족과 각각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 어느 겨를에 돌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자들이 ‘식량을 모으고 배를 빼앗아 오직 자신만 편하게 지내려는 대책을 장만하였다.’ 하고, 또 그 말을 바꾸어 말하기를 ‘**화량 첨사(花梁僉使)의 배를 빼앗고 남양(南陽)에 옮겨 쌓아둔 곡식을 방출했다**.’고 하니, 어쩌면 그리 모함이 심합니까. 의병을 일으켰던 일이 실패한 후에 화량의 배로 피난하는 남녀 수만 명을 건네주었고, 강화도로 들어갈 때 타고 간 것은 공무로 인하여 들어가는 배였습니다. 윤계(尹棨)를 장사지낼 때 의논해서 향소(鄕所)로 하여금 약간의 관청 곡식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런 따위의 일로 모함하는 자료를 삼는단 말입니까.

강도(江都)가 함락되던 날에 이르러서는 갑곶(甲串)의 파수(把手) 보는 곳에 나아가 강 언덕에 홀로 서 있었는데, 대포(大砲)가 쏟아지는 곳인데다가 적의 군대는 이미 강을 건넜고 우리의 여러 군사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곁에 두 아들이 있다가 울면서 적의 칼날을 피하자고 청하니 그 아들을 꾸짖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자, 두 아들이 급히 껴안고 이행진(李行進)과 함께 떠밀며 절벽을 굴러내려와 물속에 빠졌습니다. 마침 어떤 역사(力士)가 물가에 매어 놓았던 조그마한 배 1척을 끌고 내려와 껴안아 싣고 탈출하였으니, 조익은 실로 죽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겼는데 다만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자취를 겨우 성에 비쳤다가 일이 급해지자 먼저 달아났다.'고 말하니, 망극한 말이 이와 같습니다.

전후 사적의 증거가 명백하고 여러 증인이 모두 있으니,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전하께서 조익을 어찌 임금을 잊고 국가를 저버리며 교묘하게 살기를 도모하는 사람으로 보셨겠습니까. 천품이 순수하고 정직하며 학문이 심오하여 중후한 덕과 지극한 행실은 충분히 한 세상의 사표(師表)가 될 만한데, 미워하는 자에게 모함을 당한 것이 이토록 극심하니, 신은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평생 지기지우(知己之友)로서 만약 혼가(婚家)라는 조그마한 혐의에 구애되어 끝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로 전하를 저버리고 아래로 훌륭한 벗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원컨대 신의 상소를 내려 공경들에게 물어보소서. 신의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빨리 신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상소가 들어갔으나, 답하지 않았다.

○先是, 前禮曹判書趙翼之被論也, 兵曹判書李時白上疏申辨, 其略曰: 忘君負國, 何等罪惡, 勒加凡人, 尙所不忍, 況於趙翼乎? 臣請以所聞於諸人之所目見者, 明之. 當初去邠, 定計江都, 而有老人先往之敎, 翼之父瑩中, 年垂八十, 亦願扈從. 翼令其子進陽, 奉其父先行, 翼則與備局諸臣, 將爲扈行廟社主. 肅寧殿陪行, 則以禮曹參判呂爾徵爲定, 曹吏告: "參判奉肅寧殿先行, 宗廟神主尙未奉出." 大臣驚駭曰: "判書速往." 至則纔奉出矣. 翼以爲: "廟主之行, 不可無禮官, 當追及, 參判退而扈從." 行到中路逢其子, 足痛不能行, 與其老父相失. 翼馳到陽川, 見廟主已奉肅寧殿一處, 仍尋覓其父而不得. 又未聞大駕聲息, 蓋其出去時前隊已動, 倉卒南門回駕, 非意所及, 只謂敵報稍緩而然. 其明日始聞大駕入南漢, 而八十老父失之, 奔播顚倒之際, 人子至情, 不容他計, 只欲求得其父, 而後赴行在. 晝夜呼泣, 奔覓於陽·金·通三邑之間, 數日後, 始聞其父所在, 而行在已隔絶, 無路入衛矣, 其狼狽罔極, 爲如何哉? 江都天塹, 人皆恃之. 以爲避亂之地, 翼於其時, 若爲身謀, 則豈不仍入江都, 而只以君父危急, 奮不顧身, 自分一死, 悲痛涕泣, 爲募兵赴敵之計. 聞京畿中營千餘兵, 失其營將, 屯於中路, 欲用此兵, 馳見南陽府使尹棨, 與之定計. 沈之源·金尙·李時稷·尹鳴殷等, 亦皆來會, 分付布置之際, 都巡察使傳令召其軍, 乃復募兵得數百人, 直欲徑進, 諸人皆知必危, 見其至誠, 不敢止之. 敵兵猝至, 尹棨死焉, 募兵皆散, 更無可爲, 始與同事諸人, 定入江都. 噫! 當其老父相失之時, 自有所在致死之義, 揆之情事, 將何所處? 聖敎所謂, 情有可恕者此也. 言者乃曰: "棄殿下於危急之時, 遵海而逃." 其亦慘矣. 翼家甚貧, 雖早歲登科, 致身上卿, 京中無數間屋, 僑屋而居, 待祿而食. 奔播之時, 家無匹馬, 婦女徒步, 勢難遠避, 托之於臣, 使入南漢. 纔到城下, 遇敵奔避, 轉入海島, 翼則與諸人, 奔走募兵, 與其家屬, 各處異地, 何暇顧護, 而言者乃曰: "聚糧攘船, 唯自爲安頓之具." 又變其說曰: "奪花梁僉使之船, 發南陽移儲之穀." 何其誣也? 義兵事敗之後, 以花梁舡隻, 濟涉避亂士女數萬人, 入江都所乘, 乃因公入去之船也. 尹棨治喪, 議令鄕所, 除用若干官穀, 乃以此等事, 爲搆捏之資乎? 至於江都陷敗之日, 出往甲串把守之處, 獨立江岸大砲雷飛之地, 敵兵已渡, 諸軍散盡. 傍有二子, 泣請避鋒, 顧叱其子, 坐而不動. 二子急抱持, 與李行進, 同推轉下斷岸入水中, 適有力士曳下一小船掛浦邊者, 挾載而得

脫, 則翼實以死自分, 而特其身未死耳. 今乃謂之 "迹纔及城, 事急先走." 言之罔極, 有如是也. 前後事迹, 證左昭然, 諸人具在, 非可誣也. 噫! 殿下視翼, 豈忘君負國, 巧生謀計人歟? 天資醇正, 學問淵深, 厚德至行, 足爲一代師表. 乃爲所忤者擠陷, 至於此極, 臣竊痛焉. 臣以平生知己之友, 若拘婚家小嫌, 終不爲一言, 則是上負殿下, 下負良友也. 願下臣疏, 咨之公卿, 臣言若誣, 亟治臣罪. 疏入, 不報.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1638) 12월 30일(무오) 2번째기사>

정치/군사

청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승지 이경의의 상소

승지 이경의(李景義)가 상소하기를, "(…)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강도를 근본으로 삼고 덕물(德物)의 여러 섬과 남양(南陽)의 대부(大富), 인천(仁川)의 자양(紫陽)을【 모두 섬 이름임】 좌우 울타리로 삼으며,** 해서(海西)는 연안(延安)·해주(海州)를 대진(大鎭)으로 삼아 백령도(白翎島)에 이르고, 호서는 수영(水營)·서산(瑞山)·태안(泰安)을 우익(羽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안변(安邊)·난지(蘭池)·원산(圓山) 등의 섬 및 서천포(舒川浦)와 고군산(古君山) 제도를 열둔(列屯)하는 곳으로 삼으며, 부안(扶安)·변산(邊山)에 또 대진(大鎭)을 설치하고 여기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영암(靈巖)·나주(羅州)에 이르러 끝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형세를 헤아리고 그 토지를 살펴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았던 유민을 모집하여 바닷물로 소금을 제조하기도 하고 둔전(屯田)에 여러 곡식을 심기도 하고 어전(魚箭)을 쳐서 고기를 잡기도 하면서, 그 먹는 것을 공동으로 하고 그 판매도 공동으로 하게 합니다. 이리하여 1년이 지나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어 기꺼이 이익을 추구할 것이니, 그런 뒤에 모인 민정(民丁)을 계산하여 격군을 헤아려 배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장사를 하다가 변고가 있으면 강도(江都)로 달려가 구원하게 합니다. 이리하여 해도(海島) 사이에 한 줄기 판도(版圖)를 설치하되, 대략 중국이 연해를 방어하던 제도처럼 한다면, 탐라(耽羅) 위쪽이 원근의 문호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앞뒤로 구원할 수 있어서, 서남의 도적은 근심거리가 못 될 것이니, 이는 아주 완전한 방법입니다. (…)

○壬申/承旨李景義上疏曰: (…) 臣愚以爲, 江都爲本根之地, 德物諸島, **南陽**大富, 仁川紫陽【皆島名】 爲左右藩籬; 海西則以延安·海州爲大鎭, 以至於白翎; 湖西則以水營·瑞泰爲羽翼. 安邊·蘭池·圓山等島及舒川浦·古君山爲列屯之所; 扶安·邊山, 又設大鎭, 自此迤南, 傳靈·羅而止焉. 度其形勢, 相其土地, 募其流民, 漁採爲業者, 或煮海爲鹽, 或屯種雜穀, 或結箭爲漁, 共分其食, 同其販賣. 一年之後, 知其生理, 則民多注集, 樂於趨利, 然後計其所聚民丁, 量格造舡, 常時興販, 廢擧有變, 赴難江都. 海島之間, 爲置一帶版圖, 略如中朝海防之制, 則耽羅以上, 足爲遠近門戶, 而輔車相依, 首尾互救, 西南寇盜, 非所當憂, 此萬全之道也. (…)

<인조실록 39권, 인조 17년(1639) 7월 17일(임신) 1번째기사>

경제/군사

서필원이 영장을 남양에서 인천으로 옮기려는 것에 대한 논의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 허적이 또 아뢰기를, "**서필원이 남양(南陽) 영장(營將)을 인천(仁川)으로 반드시 옮기려 하는데, 또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형세를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

○丁酉/上御養心閤, 引見大臣及備局堂上. (…) 積又曰: "必遠必移南陽營將於仁川, 亦未知如何也." 上曰: "察其形勢而爲之可也." (…)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1년(1670) 10월 13일(정유) 1번째기사>

정치/군사

총융사 서필원이 통진과 남양의 두 병영을 인천과 부평으로 옮기자고 청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초복을 마치지 못했던 것을 끝마쳤다. 총융사 서필원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병영(兵營)을 옮길 일로 우러러 품의했었습니다. 경기의 고을에 나가서 지형(地形)을 살펴 보았더니, 인천(仁川) 소래산(蘇來山) 아래가 교장(敎場)을 설치할 만하였는데, 들으니 인평위(寅平尉)와 해숭위(海嵩尉)의 둔장(屯庄)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본영에서 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평(富平)에 또 병영을 설치할 만한 묵혀둔 지역이 있었습니다. **통진(通津)과 남양(南陽) 두 병영을 이 두 지역으로 옮겨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서필원에게 이르기를, "자연도(紫燕島)에 가보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가서 보니, 그 지역은 둘레가 70 리이고 땅이 기름졌으며 사방이 험난하여, 강도(江都)보다 나았습니다." 하니, 상이 뒷날 도형을 그려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庚寅/上御熙政堂, 畢初覆之未畢者. 摠戎使徐必遠曰: "臣曾以移營事仰稟矣. 往見地形於畿邑, 則仁川蘇來山下, 可設敎場, 而聞寅平尉·海嵩尉屯庄在焉, 自本營可以換買. 富平又有陳荒處, 可設營之地, 通津·南陽兩營, 可移設於此兩地矣." 上謂必遠曰: "見紫燕島乎?" 對曰: "臣往見, 則其地周回七十里, 土地膏沃, 四面險阻, 勝於江都矣." 上命後日圖形以入.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1년(1670) 12월 7일(경인) 1번째기사>

정치/군사

광주 유수 이항이 양주 및 남양의 군사를 남한성에 옮기자고 청하다

영의정 권대운(權大運)과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처음에 광주 유수(廣州留守) 이항(李沆)이 양주(楊州)의 군사 3천 명을 남한성(南漢城)에 환속(還屬)할 것을 청하니, 김덕원이 말하기를, "양주(楊州)는 본디 총융청(總戎廳)에 소속되었는데, 효종조(孝宗朝)에 비로소 남한성에 소속되었습니다. 성상 정묘년 사이에 김수흥(金壽興)이 일찍이 광주 부윤(廣州府尹)과 총융사(總戎使)를 지냈으므로 이해(利害)를 진달하자, 총융청에 속하기를 허락하고, **남양(南陽) 군사를 남한성에 옮겨 붙였는데,** 이 일은 변통(變通)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널리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권대운 등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양주는 남한성과 가깝고 군사가 많으나, **남양은 남한성과 멀고 군사가 적으니, 양주를 잃고 남양을 얻으면 남한성의 형세는 더욱 고단할 것입니다**. 청컨대 양주를 도로 남한성에 붙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이사명(李師命)과 구일(具鎰)이 망녕되게 계획한 것이다. 다시 바꾸게 하라." 하였다.

김덕원이 말하기를, "양주를 도로 남한성에 붙이면 총융청이 또한 군문(軍門)의 체제를 이룰 수 없으니, 강화(江華) 진무영(鎭撫營)에 소속된 안산(安山)·금천(衿川)·양천(陽川) 세 고을 군사를 주어서 **남양** 군사의 부족한 수를 보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돈을 만든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니, 나라 안에서 유통되어야만 바야흐로 통화(通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먼 지방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백성

이 포(布)를 바치는 경우 3분의 1을 계산하여 돈으로 대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이 또 말하기를, “남한성에 이미 시재(試才)하였으니, 강화에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옛 법이 있으니, 어사(御史)를 보내어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領議政權大運·右議政金德遠請對, 上引見. 初, 廣州留守李沆, 請: “以楊州兵三千, 還屬南漢城.” 德遠言: “楊州本屬摠戎廳. 孝宗朝, 始屬南漢. 在上丁卯年間, 金壽興以曾經廣州府尹摠戎使之故, 陳白利害, 許屬于摠戎廳, 以南陽兵, 移屬于南漢, 此事係於變通. 宜博詢而處之.” 至是, 大運等白上曰: “楊州近南漢而兵多, 南陽遠南漢而兵少, 失楊州而得南陽, 南漢之勢益單. 請以楊州, 還屬南漢. 上曰: “此李師命·具鎰之所妄畫也. 其更易之.” 德遠言: “楊州還屬于南漢, 則摠戎廳亦無以成軍門之體. 宜以江華鎭撫營所屬安山·衿川·陽川三邑兵與之, 以補南陽兵不足之數.” 上可之. 大運言: “鑄錢久矣. 流行國中, 方爲貨也. 而今不及於遠方, 宜使民人納布者, 計三之一而以錢代之.” 上從之. 大運又言: “南漢旣試才, 江都亦宜同之.” 上曰: “此固有舊式, 其遣御史行之.”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1689) 9월 7일(경자) 2번째기사>

정치/군사

권만적이 고국 강병의 계책으로 진달하다

남양 출신(南陽出身)인 권만적(權萬敵)이 소(疏)를 올려 고국 강병(固國强兵)의 계책을 진달(陳達)하였으니, 그 첫째에 말하기를, “각도(各道)의 각읍(各邑)에서는 모두 경내(境內)의 산이 높은 험새(險塞)의 곳에 미리 축성(築城)하여서, 변경(邊警)이 급할 것 같으면 대소(大小)의 여민(黎民)이 모두 그 성으로 들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된다면 청야(淸野)의 법이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 둘째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전선(戰船)은 그 크기가 산과 같아서 역풍(逆風)을 만나면 발동(發動)되지 못하고 바람이 없으면 가지 못하며, 다만 순풍(順風)을 만나 돛을 올린 뒤에야 비로소 발동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 그 높고 웅장하며 넓고도 큰 규모(規模)를 버리고 모두 경쾌(輕快)한 작은 배를 만든다면 임의(任意)로 행동할 수 있고, 가볍고 빠르기가 나는 듯할 것입니다.” 하고,

그 세째에 말하기를, “베[布]를 꿰내어 큰 전대를 만들어서 검은 빛깔로 물들이고, 또 큰 대를 가늘게 쪼개어 끊어서 한 묶음을 취하고 나머지는 그 중간을 구부려 그 두 끝을 접(接)하여서 이것 세 낱을 검은 주머니 속에 넣어 상·중·하의 세 곳에 펴면 그 머리가 촉롱(燭籠)의 모양이 되는데 1장(丈) 남짓의 장창(長槍)으로 그 안을 버티면 가볍고 또 속이 비어서 운행(運行)이 지극히 쉽고, 총알이 능히 뚫고 들어가기 못하며 화살촉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는 병세(兵勢)를 크게 돕는 것이 되고, 하나는 경묘(輕妙)함이 되며, 방패와 단병(短兵)이 교접(交接)하였을 때에는 그 베 자루를 버리고 창(槍)으로 쓴다면 세 가지를 겸하여 얻게 됩니다.” 하고,

그 네째에 말하기를, “소와 말 가죽을 재단(裁斷)하여 많은 옻칠[漆]을 하여 갑주(甲冑)를 만든다면 화살촉과 총알이 모두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래 이 물건은 경허(輕虛)하여 무겁지 않아서 사졸(士卒)의 입는 것이 이것보다도 좋은 것은 없으며, 마련하는 방도가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외방(外方)의 병졸이 몸을 가리우는 갑주가 없고 다만 한 벌의 전복(戰服)을 입을 뿐이니, 화살과 총알이 비오듯 할 때에 병졸이 모두 죽어서 남음이 없다면, 그 장령(將領)된 자만이 살아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그 다섯째에는, “악비(岳飛)가 만든 배외갑(背嵬甲)과 마찰도(麻札刀)를 쓸 것을 청합니다.” 하였으니, 임금이 살펴보지 않았다.

○南陽出身權萬敵疏陳固國强兵之策. 其一曰:各道各邑, 皆於境內山高險塞之處, 預爲築城, 邊警若急, 則大小黎民, 皆入於其城, 莫不爲敢死之卒, 而淸野之法自爾成矣. 其二曰:我國戰船, 其大如山, 遇風不得發, 無風不得行, 但得順風擧帆而後, 始得發動. 今若去其高壯廣大之規, 皆作輕快小船, 則可以任意行動, 輕捷如飛矣. 其三曰:縫布爲大帒, 染以黑色, 又細剖大竹, 斷取一把, 餘屈其中, 接其兩端, 以此三隻, 納張於黑帒內上中下三處, 則其頭如燭籠狀也, 以一丈餘長槍, 支撐其裏, 則其輕其虛, 運行至易, 銃丸不能突入, 矢鏃亦不能入矣, 一則爲大助兵勢, 一則爲輕妙, 干楯短兵交接之時, 去其布而以槍用之, 則三者得兼矣. 其四曰:以牛馬皮裁截多漆, 作爲甲冑, 則矢鏃銃丸, 皆不得穿入. 元來此物, 輕虛不重, 士卒所着, 莫此爲良, 措備之路, 亦甚不難. 卽今外方兵卒, 頓無掩身之甲冑, 而只着一戰服而已, 弓箭銃丸, 雨下之際, 兵卒斃盡無遺, 則其將領者, 獨生何爲乎? 其五: 請用岳飛所製背嵬甲·麻札刀. 上不省.

<숙종실록 29권, 숙종 21년(1695) 7월 18일(무인) 4번째기사>

정치/군사

병자 호란 때 죽은 남양부사 윤계에게 정경을 가증하고 증시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진규(金鎭圭)가 아뢰기를, “일찍이 선조(宣祖) 때에 교리(校理) 윤섬(尹暹)은 이일(李鎰)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상주(尙州)에서 순절(殉節)하여 조정에서 정표(旌表)하고 증시(贈諡)하는 은전(恩典)을 실시하였으며, 그의 손자 윤집(尹集)은 척화신(斥和臣)으로서 심양(瀋陽)에 가 대의(大義)를 굳게 지키다가 죽었으므로 조정에서 특별히 중시하였으며, **윤집의 형 윤계(尹棨)는 병자년 겨울에 남양(南陽)을 지키면서 군사를 일으켜 근왕(勤王)하기를 도모하다가,** 군사가 무너지자 붙잡혔으나 굽히지 않고 꾸짖으니, 오랑캐가 노하여 죽였는데, 심지어 그 혀까지 잘랐습니다. 그래서 효종(孝宗)께서 하교(下敎)해서 안고경(顔杲卿)에 비하면서 명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증직하고 또 정표하였습니다. 윤계가 수립(樹立)한 것이 그의 할아비와 아우에게 뒤지지 않는데도 유독 시호(諡號)의 은전만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正卿)을 가증(加贈)하고 또 증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필선(弼善) 윤전(尹烇)은 분사(分司)의 직책으로서 강도(江都)에 들어갔었는데, 성이 함락되자 적을 꾸짖다가 살해당해 김상용(金尙容)의 사당에 배식(配食) 되었습니다. 윤전과 함께 배향된 이시직(李時稷)·송시영(宋時榮)은 모두 정2품을 가증(加贈)하여 시호를 내렸는데, 윤전은 단지 도승지(都承旨)를 증직하여 시호가 없습니다. 같은 예(例)로 순절하여 함께 배향된 사람인데도 숭장(崇奬)한 것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윤전에게도 정경(正卿)을 가증하여 시호를 내린다면 포충(褒忠)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 하니, 해조에서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대신이 연중(筵中)에서 아뢰자,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丙寅/御晝講. 參贊官金鎭圭曰: “曾在宣祖朝, 校理尹暹, 以李鎰從事官, 殉節於尙州, 朝家施以旌表贈諡之典. 其孫集, 以斥和臣, 往瀋陽秉義而死, 朝家特爲贈諡, 而集之兄棨則丙子冬, 守南陽, 謀擧兵勤王, 軍潰被執, 憤罵不屈, 虜怒而殺之, 至斷其舌. 故孝廟下敎, 比之顔杲卿, 命贈吏曹參判, 又爲旌表. 棨之所樹立, 不下於其祖及弟, 而易名之典, 獨不及焉. 今若加贈正卿, 而仍又贈諡, 似爲合宜. 且弼善尹烇, 以分司入江都, 及城陷, 罵賊被害, 配食於金尙容之祠. 與烇同享之李時稷·宋時榮, 皆加贈正二品賜諡, 而烇只贈都承旨而無諡. 以一體殉節同享

之人, 而所以崇奬者, 不宜異同, 烃亦加贈正卿而賜謚, 則似合於褒忠之道." 上曰: "竝令該曹稟處." 該曹請議大臣. 大臣白于筵中而許施.
<숙종실록 36권, 숙종 28년(1702) 6월 16일(병인) 1번째기사>

정치/군사

축성의 잘못에 관한 남양 유학 김만강의 상소에 경솔하다고 답하다

남양(南陽) 유학(幼學) 김만강(金萬剛)이 상소하여 축성하는 것은 잘못된 계책이라고 극구 진달하면서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층대 누각을 짓던 일에 비유하기에 이르렀으며, 또 군병(軍兵)의 쌓인 폐단을 언급하였는데, 말이 매우 절실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시국을 근심하여 진언하는 정성을 내가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국가의 대계를 감히 장왕의 층대를 이끌어 비유하니, 자못 망령되고 경솔하다." 하였다.

○南陽幼學金萬剛上疏, 極陳築城之非計, 至比於楚莊層臺之築, 且及軍兵積弊, 言頗切實. 答曰: "憂時進言之誠, 予用嘉尙, 而國家大計, 乃敢引層臺而喩之, 殊妄率矣."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1704) 11월 11일(정미) 2번째기사>

정치/군사

서해 연안 고을의 무비를 신칙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이조 판서(吏曹判書) 최석항이 청대(請對)하였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외의(外議)가 혹 말하기를, '성지(城池)의 수축(修築)을 곧바로 청하면, 저들이 반드시 약조(約條)를 증거로 끌어대어 기꺼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애초에 청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성신(誠信)이 귀한 것인즉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可)할 것이다.' 하여,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니, 김창집이 말하기를, "전에도 또한 고하여 청하지 않고도 계속 수보(修補)한 경우가 있었으니, 지금 또한 이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최석항은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병자년의 약조에 의거하여 굳이 막는다면, 도리어 처음부터 이자(移咨)하지 않는 것만 낫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기(提起)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서종태가 자문(咨文) 가운데에서 적정(賊情)을 탐문(探問)하는 일절(一節)을 품주(稟奏)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의 말은 족히 믿을 것이 없으니, 탐문(探問)하는 것이 긴요하지 않은 듯하다." 하니, 김창집이 말하기를, "이미 성지(城池)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 탐문하는 일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자문(咨文)은 자연 그만두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서종태가 남양(南陽)·인천(仁川) 등 연해(沿海) 고을의 수재(守宰)를 내직(內職)에 이배(移拜)하고** 아울러 재간(才幹)과 지략(智略)이 있는 무신(武臣)을 차송(差送)하여 무비(武備)를 신칙(申飭)하기를 청하니, 옳게 여겼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순무(巡撫)하는 행차 때에 해로(海路)의 요충(要衝)에 대한 편의(便宜)를 자세히 살펴보고, 혹은 성첩(城堞)을 수축하거나 혹은 돈대(墩臺)를 수축하거나 하여, 미리 방비하는 바탕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江都)는 바로 국가의 인후(咽喉)이므로, 더욱 증수(增修)해야 마땅하고, 교동(喬桐)·영종(永宗)은 바로 강도의 순치(脣齒)이므로, 또한 군사를 보내어 설비(設備)해야 합니다. **남양(南陽)·인천(仁川) 등의 여러 고을**

은 비록 연해의 땅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재(守宰)의 수하(手下)에 한 명도 거느린 군사가 없으므로, 비록 재간과 지략이 있는 이를 차송(差送)하더라도 무략(武略)을 쓸 바탕이 없으니, 세 진(鎭)에 중점(重點)을 두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방(海防)은 하나로 믿을 만한 곳이 없으니, 비록 무사할 때에 있어서도 반드시 미리 방수(防守)를 더해야만 거의 창황(蒼黃)한 가운데 전패(顚沛)되는 근심을 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간우(艱虞)함이 눈앞에 가득하니, 무릇 수비(守備)에 관계된 계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묘당(廟堂)에서도 마땅히 오늘 한 가지 일을 다스리고, 내일도 한 가지 일을 다스려 항상 게을리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을 듯하니, 유의(留意)하여 다스림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이 간우(艱虞)한 날을 당하여 기구 대신(耆舊大臣)들이 모두 밖에 있으니, 마땅히 별달리 돈유하여 부르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서종태가 또 전(前) 판서(判書) 최규서(崔奎瑞)를 부를 것을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일은 진실로 알 수가 없다. 처음에 목욕(沐浴)을 청하고는 물러가더니, 노모(老母)가 있다고 칭탁하였으며, 탈상(脫喪)한 후에 또한 올라오지 않았으니, 그 진퇴(進退)가 진실로 의의(意義)가 없다. 그 사람의 일은 진실로 알 수가 없다." 하고, 마침내 불러오는 것을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甲申/左議政徐宗泰·右議政金昌集·吏曹判書崔錫恒, 請對. 宗泰曰: "外議或以爲: '直請城地修築, 則彼必援引約條, 不肯聽從, 初不如不請.' 或以爲: '誠信爲貴, 以實言之可也.' 未知何以決定也." 昌集曰: "前亦有不爲告請, 而續續修補者. 今亦依此爲之, 恐或無妨." 錫恒曰: "彼若據丙子約條而牢塞, 則反不如初不移咨之爲愈." 上曰: "勿爲提及可也." 宗泰又以咨文中探問賊情一節稟奏, 上曰: "彼言有不足信, 探問終似不緊矣." 昌集曰: "旣不言城池事, 又不及探問事, 咨文自當已之也." 上曰: "已之." 宗泰請**南陽**·仁川等沿海邑守宰, 移拜內職, 竝以有幹略武臣差送, 以飭武備, 可之. 錫恒曰: "巡撫之行, 審察便宜於海路要衝, 或修城堞, 或築墩臺, 以爲預防之地, 而江都, 乃國家咽候, 尤宜增修, 喬桐·永宗, 乃江都之脣齒, 亦當添兵設備. **南陽**·仁川等數邑, 雖曰邊海之地, 爲守宰者, 手下無一領兵, 雖以有幹略者差送, 用武無地, 不如托重三鎭之爲得也." 上曰: "海防無一可恃處, 雖在乂安之時, 必須預加防守, 庶免蒼黃顚沛之患. 矧今艱虞溢目, 凡係守備之策, 不容少援. 廟堂亦宜今日爲一事, 明日爲一事, 常不弛心, 則似有可恃, 留意爲之可也." 宗泰曰: "當此艱虞之日, 耆舊大臣, 皆在外, 宜更有別樣敦召之擧." 上從之. 宗泰又請竝召前判書崔奎瑞, 上曰: "其人之事, 誠不可知. 初請沐浴, 終作退遯, 托以有老母, 而免喪後亦不上來, 其進退實無義意. 其人之事, 誠不可知矣." 終不許召來.

<숙종실록 49권, 숙종 36년(1710) 10월 23일(갑신) 1번째기사>

정치/군사

기내 수군의 신포 한 필을 줄이고 대포를 받은 자를 수조에 나아가게 하다

기내 수군(畿內水軍)의 신포(身布) 한 필(匹)을 줄이고 대포(代布)를 받은 자를 수조(水操)에 나아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풍덕(豊德)의 수군으로서 상언(上言)한 자가 말하기를, '경기 수군은 병보(並保)가 없는데도 세 필이나 거두고, 이미 베[布]를 바치고서도 또 수조에 가는 것은 억울합니다.' 하였으므로, 수영(水營)에 물으라고 명하였는데, 수영에서 말하기를, '**남양(南陽) 등 세 고을은 수군의 병보를 거의 다 보충하였으나**, 풍덕 등 열 네 고을은 수령(守令)이 사목(事目)을 준수하지 않아서 전혀 정하여 주지 않으니, 원군

(元軍)만이 세 필의 베[布]를 바치므로 억울하다고 말하게 되고, 수조에 나아갈 때에 번갈아 가지 못하므로 또한 치우친 고통이 됩니다.'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회계(回啓)하여 '베 한 필을 줄이고 수조 때에는 영진(營鎭)의 관하(管下)에서 대포를 받아먹은 자를 영속(領屬)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청하고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윤허하였다.

○命減畿內水軍身布一疋, 以受代者赴水操. 先是, 豐德水軍, 有上言者言:"京畿水軍無竝保, 而徵三疋. 旣納布, 而又赴水操爲冤." 命問於水營, 水營以爲: "南陽等三邑水軍, 竝保幾盡充補, 而豐德等十四邑守令, 不遵事目, 全不定給, 元軍獨納三疋之布, 以致稱冤, 赴操時不得輪回, 亦爲偏苦." 兵曹回啓, 請減布一疋, 水操時則以營鎭管下, 受食代布者, 領付爲便, 備局覆奏, 許之.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1716) 6월 1일(기축) 3번째기사>

정치/군사

각진의 귀농시킬 군사를 뽑아 권농케 하다

각진(各鎭)의 귀농(歸農)시킬 군사를 뽑으라고 명하고, 임금이 교문(敎文)을 입으로 부르기를,

"호남의 소추(小醜)들이 차례로 죽었으니, 지금 농사를 권면하는 정사(政事)를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병화(兵火)를 모른 지 오래이고, 또 해마다 기근이 든 나머지 징소(徵召)한 지 여러 날이 되어 노천(露天) 아래에서 병으로 상하는 것 역시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황해 감사(黃海監司)가 영솔한 군사 및 장단 방어사(長湍防禦使)가 영솔한 마병(馬兵)·보병(步兵)과 송도(松都)의 마병으로 출정(出征)한 이외의 1초(哨)는 아울러 먼저 파하여 보내도록 하라. 기백(畿伯)이 영솔한 금천(衿川)·과천(果川)·양성(陽城)·안성(安城) 네 고을의 군사 및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거느린 군사와 춘천 방어사(春川防禦使)가 거느린 마군(馬軍)·보군(步軍)은 아울러 절반을 파하여 보내도록 하라. 남한 순무사(南漢巡撫使)가 영솔한 각 고을의 군관(軍官)·군병(軍兵) 및 수원 총융사(水原摠戎使)가 영솔한 마병·보병은 우선 10초로 윤번(輪番)하게 하고 긴요하지 않은 잡색(雜色)은 파하여 보내도록 하라. **허정(許鼎)이 영솔한 남양(南陽)의 군사는 그 가운데서 정병(精兵) 5초를 한정해서 뽑아 남겨 거느리고,** 그 나머지는 파해 보내되 남겨 둔 5초는 도순무의 절제를 받도록 하라. 계원장(繼援將) 박동추(朴東樞)가 영솔한 어영(御營)의 향군(鄕軍)과 송도의 마병과 잡색(雜色) 표하(標下)의 무리들 역시 도순무의 절제를 받도록 하라. 도순무가 영솔한 향군은 우선 그대로 두고, 파해 보내는 무리는 부자(父子)·형제(兄弟)가 함께 군중에 있는 자, 솔정(率丁)이 없고 단신(單身)인 자, 병들고 약한 자를 구별하여 먼저 파해 보내도록 하라."하였다.

○命抄各鎭兵歸農, 上口呼敎文曰: "湖南小醜, 次第就戮, 今則勸農之政, 不可小緩. 而況生民之不知兵久矣, 且當連歲荐飢之, 餘徵召多日, 暴露病傷, 亦不可不念. 黃海監司所領軍兵及長湍防禦使所領馬·步兵, 與松都馬兵, 出征外一哨, 竝先罷遣. 畿伯所領衿·果·陽·安四邑兵及楊牧所領軍兵與春川防禦使所領馬·步軍, 竝折半罷遣. 南漢巡撫使所領各邑軍官·軍兵及水原摠戎使所領馬·步兵, 姑以十哨輪番, 不緊雜色罷遣. 許鼎所領南陽軍, 擇其精兵, 限五哨留率, 其餘罷遣, 而所留五哨, 聽都巡撫節制. 繼援將朴東樞所領御營鄕軍·松都馬兵與雜色標下之類, 亦聽都巡撫節制. 都巡撫所領鄕軍, 竝姑仍存, 罷遣之類, 以父子兄弟俱在軍中者, 無率丁單身疲癃老弱區別, 先爲罷遣."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1728) 3월 26일(병자) 12번째기사>

정치/군사

사직 강유가 경기 연해의 후망군 파견·남양에 성 쌓기 등을 건의하다

사직(司直)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접때 헛된 놀람이 있고 나서는 경기 연해(沿海)에 후망군(候望軍)을 더 두어 경급(警急)을 알리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남양(南陽)에는 마땅히 성을 쌓고 강창(江倉)의 곡물을 성안으로 날라 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에서 가까운 너덧 고을에는 돈대를 쌓고 곡물을 저축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그 가운데에도 어찌 채택하여 시행할 말이 없겠는가? 묘당(廟堂)을 시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癸亥/司直姜游上疏言:向日虛驚以後, 當於畿沿, 加設候望軍, 以爲報警之地. 南陽宜築城, 江倉輸入城內. 近城四五邑, 請築塢儲穀. 批曰: "有懷必陳, 予甚嘉之. 其中亦豈無採施之語? 許令廟堂稟處."

<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1787) 8월 28일(계해) 1번째기사>

정치/군사

총융청의 오영(五營) 제도를 개정하고 관성장의 호칭을 별아병 천총이라 하다

총융청(摠戎廳)의 오영(五營) 제도를 개정하고 관성장(管城將)의 호칭을 별아병 천총(別牙兵千摠)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관직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그 일의 중대성으로 보거나 수도 방위의 요새지인 점으로 보거나 꼭 바로잡아야 할 일이기에 일전에 우선 별중영(別中營)으로 당분간 부르기로 하교했었다. 총융청 영제(營制)에 있어서도 일정한 명칭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수어청(守禦廳) 예에 따라 삼영(三營) 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성소는 그대로 별도의 한 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묘당이 병판(兵判) 또는 총융사(摠戎使)를 지냈던 사람들과 상의하여 의견을 모아 초기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때 와서 비국이 아뢰기를,

"신이 병조 판서와 일찍이 총융사를 지낸 여러 장수들과 상의하였더니 모두들, 수원은 지금 총융사에 통속되어 있지 않으니 **총융청의 영은 의당 수어청의 전영·중영·후영 제도를 모방하여 남양(南陽)의 전영과 장단(長湍)의 후영은 예전대로 호칭하고** 파주(坡州)의 우영을 중영으로 호칭을 바꾸어 삼영 제도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어청의 군제(軍制)를 보면 좌별장·우별장이 각기 아병(牙兵)을 거느리고 임시로 오영 군제로 호칭되고 있는데 총융청에도 이미 좌아병 천총·우아병 천총이 있으니 그 역시 수어청의 좌·우별장 예에 따라 임시로 오영으로 호칭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성장을 중부 천총(中部千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단지 오영 호칭을 갖추자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수어청 예를 따라 좌·우아병 천총을 두고 오영으로 부른다면, 관성소를 별도의 1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딸린 군대래야 아병 5초(哨)와 승군(僧軍) 3백여 명에 불과하여 군인 총 숫자가 천 명도 차지 못하므로 그 자체 1개 영이 될 수도 없으니 앞서 말한 중부 천총을 별아병 천총으로 고치고 옛날대로 관성소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들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변통은 군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바꾼 것에 불과한데 수어청 제도가 이미 근거가 되고 있고 장수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改定摠戎廳五營之制, 號管城將爲別牙兵千摠. 先是, 敎曰: "水原府使官制釐正, 爲所重, 爲保障, 在所不已, 而日前先以別中營, 姑爲權稱下敎矣. 至於摠廳營制, 不可無一定之稱號, 依守禦廳例, 當爲三營之制, 而管城所亦當別作一營乎? 令廟堂與兵判·摠帥曾經人相議, 指一草記." 至是, 備局啓言: "臣與兵判及曾經摠使諸將臣商議, 則皆以爲: '水原今不統屬於摠帥, 則摠營宜倣守廳前中後之制, 南陽之前營·長湍之後營, 仍前稱號, 坡州之右營, 改稱中營, 以備三營之制. 且考守廳軍制, 則左右別將各率牙兵, 權稱五營之制, 而摠廳旣有左·右牙兵千摠, 此亦依守廳左右別將例, 權稱五營. 至於管城將之以中部千摠稱號者, 槪由於只備五營之稱矣. 今以左右牙兵千摠, 依守廳例, 稱以五營, 則管城所不必別設一營. 且其所領, 不過牙兵五哨·僧軍三百餘名. 軍摠不滿千數, 則無以成一營之制, 前所稱中部千摠, 改以別牙兵千摠, 依前管城似好.' 云. 蓋此變通, 旣非軍制沿革, 不過營號改稱. 守廳之制, 旣有可據, 將臣之議, 亦無參差, 請依此施行." 允之.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1792) 12월 15일(기묘) 4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 좌방영을 남양의 독성으로 옮기고 도포사와 방어사를 겸하게 하다

명하여 경기 좌방영(京畿左防營)을 남양(南陽)의 독성(禿城)으로 옮겨 설치하고, 중군이 겸하던 토포사(討捕使)도 새로 설치한 곳의 방어사가 예겸하도록 하였다. 수원을 승격시켜 유수부로 삼은 뒤에 상이 방어사와 토포사를 어느 고을로 옮겨야겠는가를 묘당에 물은 결과 묘당이 남양에 옮겨 설치하라고 청하자, 그대로 따른 것이다.

○命京畿左防營, 移設於南陽禿城, 中軍所兼討捕使, 亦令新設防禦使例兼. 水原陞爲留府後,上以防禦使討捕使之當移何邑, 詢于廟堂, 廟堂請移設于南陽, 從之.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1월 16일(경술) 2번째기사>

정치/군사

총융청의 부의 사에 각각 4초씩 두도록 편제를 정하다

총융청의 부(部)의 사(司)에 각각 4초(哨)씩 두도록 편제를 정하였다. 총융사(摠戎使)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본청의 전영(前營)인 남양(南陽)의 속오군(束伍軍) 20초(哨)는 본래 좌·우 부(部)의 좌·우 사(司)에 각각 5초씩 배정하는 것으로 규례를 삼았는데, 그 속에는 안산(安山)의 4초도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산군의 속오군을 화성(華城)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됨에 따라 1사(司)의 경우도 5초로 편성되어 있다가 4초가 감축되고나니 단지 1초만 남게 되어 군제(軍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16초를 융통해서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남양의 속오군 10초 가운데 8초는 좌부(左部)의 좌사(左司)와 우사(右司)에 소속시키고, 남은 2초와 과천(果川)의 2초는 우부(右部)의 좌사에 소속시키고, 시흥(始興)의 3초와 양천(陽川)의 1초는 우사에 소속시킴으로써 2부 4사에 각각 4초씩 배정하는 군제로 만드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定摠戎廳部·司各四哨之制. 摠戎使徐龍輔啓言: "本廳前營南陽束伍二十哨, 本以左右部·左右司各五哨爲例, 而安山四哨, 亦入其中. 今於本郡束伍, 移屬華城之後, 一司五哨之內, 減此四哨, 只存一哨者, 不成軍制. 就其餘存十六哨之中, 通融磨鍊, 南陽束伍十哨內, 八哨屬之左部, 左右司餘二哨及果川二哨, 屬之右部, 左司始興三哨及陽川一哨, 屬之右司, 以爲二部四司, 各四哨之制, 恐合事宜." 允之.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6월 7일(병술) 2번째기사>

정치/군사

장사랑 신신이 군무에 대한 8조목을 상소하다

장사랑(將仕郞) 신신(愼信)이 상소하여 군무(軍務)에 대한 8 조목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1. 도성에 성가퀴를 쌓을 것, 2. 서남지역의 **【남양(南陽)과 인천(仁川) 등지이다】** 허술한 곳을 방비할 것, 3. 군영이나 변진에 고역(雇役)을 시키는 것을 금할 것, 4. 군읍(郡邑)에 적을 방어할 방법을 강구할 것, 5. 강변의 창고를 내지(內地)로 옮길 것, 6. 산성에 돌을 준비할 것, 7. 군사제도를 복구할 것, 8. 장정을 보충할 것 등이었다. 이에 비답을 내려 묘당으로 하여금 계품하여 처리하도록 허락하였다.

○將仕郞愼信, 上疏陳戎務八條. 一曰, 都城之築雉. 二曰, 西南【南陽·仁川等地】之防虛. 三曰, 營鎭之禁雇役. 四曰, 郡邑之講捍禦. 五曰, 江倉之內移. 六曰, 山城之備石. 七曰, 軍制之復舊. 八曰, 丁壯之補額. 下批許令廟堂稟處.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4월 24일(기해) 2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 감사 유치선이 이양선 7척이 서해쪽으로 물러갔다고 보고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남양부(南陽府)의 서쪽 여제면(如堤面) 제부도(濟扶島)의 파수장(把守將)의 수본(手本)에, 「서양 배 7척이 이달 15일 신시(申時)에 서해쪽으로 물러갔는데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十六日. 京畿監司兪致善以"南陽府西如堤面濟扶島把守將手本, 則'洋船七隻, 今月十五日申時, 退去西海, 不知所向.' 云"啓.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1866) 10월 16일(신축) 1번째기사>

정치/군사

총융사 이규철이 남양부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장교의 천전에 대해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총융사(總戎使) 이규철(李圭徹)이 아뢰기를, "**방금 본청에 속한 전 영장(營將)인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유붕(朴有鵬)이 보고한 것을 받으니**, '본부 장교의 구근과(久勤窠) 한 자리는 천전(遷轉)시키기 위해 둔 지가 몇 백 년이나 되었는데, 두 번 지나간 경술년(1790, 1850)에 본부의 자리를 죽산부(竹山府)에 이속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본부에서 도목(都目) 때마다 천전하던 것을 죽산부와 번갈아 하게 되었으나, 사일(仕日)이 만료된 장교들이 늘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시 본부에 소속시켰다가 또 을축년(1865)에 중간에 변경한 예를 끌어다가 죽산부와 번갈아 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죽산부가 옛날에 없다 이제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더라도 본부에서는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대로 회복시켜서 시행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次對. (…) 總戎使李圭徹曰: "卽接本廳屬前營將南陽府使朴有鵬所報, 則以爲: '本府將校之久勤一窠遷轉, 爲幾百年, 而粵在二去庚戌, 本府久勤一窠, 移屬於竹山府. 而以此, 本府每都目遷轉者, 與竹山府間次報仕, 諸校恒所齎鬱.' 中間還屬本府, 又於乙丑, 援其中變之例, 與竹山府間次之意, 定式. 則竹山府之昔無今有, 雖曰幸矣, 在本府, 豈不冤抑乎? 請使之復舊施

行.” 允之.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1868) 1월 25일(갑술) 2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 감사 이의익이 영종 앞바다에 이양선이 정박하였다고 보고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의익(李宜翼)이, ‘**방금 인천(仁川), 남양(南陽), 부평(富平), 안산(安山) 등 고을의 첩보(牒報)를 보니**, 「세 돛 짜리 이양선(異樣船) 1척이 남쪽으로부터 와서 잠깐 사이에 팔미도(八尾島)를 지나 영종(永宗)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구만포(九萬浦)에서 온 것이다】
二十二日. 京畿監司李宜翼以“卽見仁川·**南陽**·富平·安山等邑牒報, 則‘三帆異樣船一隻, 自南而來, 霎時間, 過八尾島, 留碇于永宗前洋’”啓.【自九萬浦來者】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1868) 4월 22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군사
공충 감사 민치상이 이양선의 동정을 보고하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이, ‘덕산군(德山郡)에서 변고를 일으킨 비적 무리들이 19일 밀물 때에 구만포(九萬浦)에서 떠났는데, 배 안에 우리나라 옷차림을 한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사류(邪類)가 기회를 타서 따라간 것입니다. 이 배는 천안읍(天安邑) 동리의 전포(前浦)에 정박하였다가 이날 해시(亥時)에 본군 하평리(下坪里)의 후포(後浦)로 옮겨가서 정박하였는데, 이 포(浦)는 4, 5호(戶)에 불과한 외딴 마을입니다. 저놈들 10여 명이 밤을 타서 난입하여 약간의 집물(什物)을 강탈하여 갔는데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20일 진시(辰時)에 곧바로 홍주(洪州) 행담도(行擔島)로 가서 큰 배와 함께 정박하였으며 썰물 때에는 수원(水原) 여웅암(汝雄巖)의 바다 밖으로 물러가서 정박하였고, **21일 오후에는 남양(南陽) 연흥해(延興海)를 향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곧장 경기(京畿) 연해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반드시 해서(海西)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관찰사와 해서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미리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이 서양 배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서 여덟 고을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비록 어리둥절한 것 같지만 단지 이것은 하나의 배입니다.’라고 아뢰었다.
公忠監司閔致庠以“德山郡作變之匪類, 十九日朝水, 自九萬浦行船, 而船中有我國衣冠者二名, 必是邪類乘時隨去. 留泊天安邑洞前浦, 當日亥時, 移泊本郡下坪里後浦, 而浦戶不過四五之孤村也. 彼漢十餘名, 乘夜攔入, 奪去若干什物, 初無傷人等事. 二十日辰時, 直向洪州行擔島, 與大船會泊. 夕水, 退泊于水原汝雄巖外洋. 二十一日午後, 向往**南陽延興海**云. 若不直入京畿, 必向海西, 故文移于京畿·海西觀察使處, 使之先事預防. 蓋此洋舶, 東西閃忽, 八邑報牒, 雖若疑眩, 只是一船而已”啓.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1868) 4월 23일(신축) 3번째기사>

정치/군사
김병학이 오진영의 경기 영장의 직함을 감하하자고 청하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 및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김병학이 (…) 또 아뢰기를, “각도(各道)에 5개 진영(鎭營)을 두는 것이 바로 1영(營) 5사(司)의 제도입니다. 경기(京畿)에서는 이천(利川)을 전영장(前營將)으로, **남양(南陽)을 좌영장(左營將)으로**, 양주(楊

州)를 중영장(中營將)으로, 장단(長湍)을 우영장(右營將)으로, 죽산(竹山)을 후영장(後營將)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5영입니다. 그 후에 이천, 양주, 죽산은 수어청(守禦廳)에 이속(移屬)하고, **남양**과 장단은 총융청(總戎廳)에 이속하였으니 기영(畿營)에서는 관장하는 직책이 없이 빈 명칭만 띠고 있으니, 실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상 5개 고을에서 경기 영장(京畿營將)의 직함을 모두 감하(減下)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藥院入診及次對. (…) 炳學曰: (…) 又曰: "各道之置五鎭營, 卽一營五司之制也. 京畿則利川爲前營將, **南陽**爲左營將, 楊州爲中營將, 長湍爲右營將, 竹山爲後營將, 是爲五營矣. 其後利川·楊州·竹山移屬守禦廳, **南陽**·長湍移屬總戎廳, 則在畿營無所職掌, 虛帶名號, 實涉無謂. 以上五邑京畿營將之銜, 竝減下, 恐好." 允之.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윤10월 10일(임신) 2번째기사>

정치/군사

영종 방어사는 이양선이 남양의 연흥도 앞바다에 정박했음을 보고하다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가, '오늘 미시(未時)에 이양선(異樣船)이 닻을 올리고 곧바로 **팔미도(八尾島) 동남쪽 남양(南陽) 경계의 연흥도(延興島) 앞나루 방향으로 내려갔는데**, 먼지 바람에 가려 어느 곳에 정박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初七日. 永宗防禦使以"今日未時, 異樣船擧碇, 直下于八尾島東南邊**南陽**境延興島前津, 爲風埃所蔽, 未知其泊於何處"啓.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1871) 4월 7일(병인) 1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 감사 박영보가 이양선의 상황과 서양인의 모습을 보고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방금 남양 부사(南陽府使) 신철구(申轍求)의 첩보(牒報)를 받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화량 첨사(花粱僉使)와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막 바다 가운데에 들어서자 세찬 바람이 크게 일어서 도무지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제부도(**濟扶島**)로 물러나와 정박하였는데, 양선(洋船)의 종선(從船) 3척(隻)이 떠오기에 손을 흔들어 불렀더니 배는 과연 잠깐 멎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왔다고 써서 보였더니 그들 서너 사람은 배에서 육지로 뛰어내렸습니다. 글을 써서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또 「어느 달 어느 날에 우리나라 지역에 왔으며, 배는 몇 척인가?」라고 물어보니, 그들은 서양글자를 써서 보여주었는데 모두 글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무엇을 그리고 또 손을 들어 큰 배가 있는 곳을 가리켰는데 함께 가서 문답을 하자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鉛盒) 1개(箇)와 소도(小刀) 1병(柄), 건병(乾餠) 1탁(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환급(還給)하였더니 빵 주머니는 받지 않고 그냥 큰 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모양은 눈이 움푹하고 콧마루는 높으며 눈썹과 머리털은 누르스름하였고 옷은 모두 검은 색깔로 확실히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내일 다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京畿監司朴永輔以"卽接**南陽府使**申轍求牒報, 問情次, 今日與**花粱僉使**同船離發, 纔到中流, 獰風大起, 萬無前進. 故不得已退泊於**濟扶島**, 則洋舶從船三隻浮來, 故揮手招之, 船果暫住矣. 書示'問情次來此'之五字, 則彼人三四, 跳船下陸. 書問'爾們何國人·緣何事來此耶?' 彼

笑而點頭. 又問‘何月何日, 來到敝境, 而來船幾隻耶?’ 云, 則彼書示洋書字, 皆不識字樣, 彼以指畫掌, 又擧手指大船所在處, 有若同往問答樣. 而又出給鉛盒一箇·小刀一柄·乾餠一橐. 故竝爲還給, 則餠橐不受, 仍向大船而去. 而彼人形容, 則目深準高·眉髮焦黃·衣服俱黑, 的是洋人. 旣不詳問, 則待明日更欲問情”啓.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1871) 4월 8일(정묘) 3번째기사>

정치/군사

이양선에서 남양부로 편지를 보내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오늘 사시(巳時)에 조수(潮水)를 이용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와 화량 첨사(花梁僉使)가 같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으나**, 양선(洋船)이 있는 곳까지 채 가지도 전에 어제처럼 사나운 바람이 불어 할 수 없이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

양선의 종선(從船) 3척(隻)이 바람을 무릅쓰고 와서 정박하므로 급히 가서 보니 서양사람 3명(名)이 뛰어내렸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얼굴 생김새나 말씨가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하고 글로 써서 물었더니, 그들은 「글을 모르므로 글로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고는 한 통의 편지를 주고는 이어, 「혹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므로 없다고 대답하니, 그들은, 「장사하러 여기에 왔으니 사람을 죽이는 사단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배는 몇 척이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5척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또, 「어느 날에 돌아가느냐?」고 물으니, 그는, 「며칠 내에 북쪽으로 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돼지, 닭, 계란, 물고기를 살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다시 물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뿌리치고 배를 돌려 가버렸습니다.(…)

京畿監司朴永輔以“今日巳時潮站, 南陽府使與花梁僉使, 騎船出海, 未及洋船處, 獰風依如昨日, 不得已還泊矣. 彼從船三隻, 冒風來泊, 故急往, 則洋人三名跳下, 其中一人形容語音, 眞是我國人. 書問‘爾們以何國人·緣何事來此耶?’, 彼曰: ‘不識字, 未能筆答.’, 給一封書, 仍曰: ‘或有解漢語者乎?’ 答以無乎, 則彼曰: ‘興販來此, 竝無殺害之端.’ 又問‘船是幾隻?’, 彼曰‘五隻’又問‘何日還去乎?’ 彼曰: ‘日間向北.’ 又曰: ‘猪·鷄·鷄卵·魚鱗可貿乎?’ 答曰: ‘無.’ 又欲更問, 則彼拂袖回棹而去.(…)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1871) 4월 9일(무진) 3번째기사>

정치/군사

남양부 앞바다에 이양선이 정박한 이유를 알기 위해 통역관을 보내기로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이 근해에서 머물고 있은 지 벌써 여러 날이 됩니다. 어제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장계(狀啓)를 보니,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가서 사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배가 무슨 일로 와서 정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곡절을 상세히 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사역원(司譯院)에서 일에 밝은 역관(譯官)을 몇 사람 선정하여 하직 인사는 그만두게 하고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異樣船之逗留內洋, 已有日矣. 昨見畿營狀啓, 則‘南陽府使行將問情’云. 未知何國船之因何事來泊, 而此不可不詳問委折. 解事譯官, 令該院擇定幾人, 除下直下送何如?”

允之.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1871) 4월 10일(기사) 2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의 남양부 등 4개 군에 포군을 두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남양부(南陽府)에 별포군(別砲軍) 100명(名),** 장단부(長湍府)에 별포무사(別砲武士) 200명, 고양군(高陽郡)에 포수(砲手) 70명, 가평군(加平郡)에 포군(砲軍) 20명, 양천현(陽川縣)에 포수(砲手) 43명, 문경현(聞慶縣)에 포군 50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三軍府以"**南陽府**別砲軍一百名, 長湍府別砲武士二百名, 高陽郡砲手七十名, 加平郡砲軍二十名, 陽川縣砲軍四十三名, 聞慶縣砲軍五十名, 設置"啓.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1871) 4월 17일(병자) 2번째기사>

정치/군사
해안방어의 요충지인 강화도의 중요성에 대해 의논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강화도·영종도와 마주서 있고,** 또 팔미도(八尾島)·월미도(月尾島)와 서로 뒤섞여있으므로 방어 요충지로써 실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말을 기르는 고장으로써 적에 대한 방어에는 전혀 어둡기 때문에 비적들이 출몰(出沒)할 때 방비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목(牧)을 진(鎭)으로 고치고 진에서 목장 일을 겸해서 보게 하며, 군사에 관한 일을 단속하고 말에 관한 정사도 맡아보게 한다면, 두 가지 일이 모두 어그러짐이 없이 행해져서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대부도 첨사(大阜島僉使)**로 하비(下批)하고 중군(中軍)의 이력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남양 감목관(南陽監牧官)은 혁파(革罷)하고**, 첨사(僉使)가 겸해서 관할하도록 하되, 시임 감목관은 교체시켜 중앙 벼슬에 임명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중군(中軍) 정몽량(鄭夢良)은 평안도 사람입니다. 신미년(1811)의 난리 때, 구성 수방장(龜城守防將)으로서 군칙(軍則)과 그 일당 4명을 체포하여 죄인을 압송하는 수레에 실어서 서울에 올려 보냄으로써 나라의 법을 시원스럽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로를 평가할 때 중군 위장(衛將) 등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무오년(1858)에 신미년 군공을 세운 자들은 논상(論賞)할 때에도 누락되는 한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신미년으로부터 60년이 되었으니 특별히 품계(品階)를 더하고 포증(褒贈)하여 조정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次對. (…) 又曰: "**南陽大阜島**, 與沁都永宗相峙, 又與八尾·月尾相錯, 關防要衝, 實係緊重. 而以其牧馬之地, 全昧禦賊之方, 匪類出沒之際, 疎虞莫甚. 今若以牧變鎭, 以鎭兼牧, 團束軍制, 操飭馬政, 則竝行不悖, 一擧兩得. 於此設鎭, 而鎭將, 以**大阜島僉使**下批, 中軍履歷施行. **南陽監牧官**革罷, 仍作僉使之兼管, 而時牧官遞付京職事, 分付銓曹何如?" 允之. 又曰: "故中軍鄭夢良, 關西人也. 辛未之警, 以龜城守防將, 掩捕君則及其黨四人, 檻上京師, 快施王章. 其後酬勞, 不過爲中軍衛將等職. 而去戊午年, 辛未軍功論賞時, 亦未免見漏之歎矣. 今當甲紀之復回, 特爲加階褒贈, 以示朝家之意何如?" 允之.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1871) 5월 25일(갑인) 2번째기사>

정치/군사

남양부, 자여도, 운봉현 등에 포군을 두다

삼군부(三軍府)에서, '**남양부(南陽府)에 별포사(別砲士) 200명**, 자여도(自如道)에 포수(砲手) 40명, 운봉현(雲峯縣)에 화포군(火砲軍) 20명, 임피현(臨陂縣)에 화포군 50명, 평산부(平山府)에 포군 6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十九日. 三軍府以"南陽府別砲士二百名·自如道砲手四十名·雲峰縣火砲軍二十名·臨陂縣火砲軍五十名·平山府砲軍六十名, 設置"啓.

<고종실록 9권, 9년(1872) 9월 19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군사

강화 유수가 일본 군함 맹춘호가 남쪽바다에 정박하는 사유를 따졌다고 보고하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병식(趙秉式)이, '일본국 군함 '맹춘호(孟春號)'가 바다의 수심을 측량하기 위하여 강화부(江華府) 남쪽 바다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함장은 해군 소좌(海軍少佐) 가사마 고오슌［笠間廣盾］이며, 판관(判官) 박제근(朴齊近)과 군관(軍官) 고영주(高永周)가 함께 그 배에 들어가서 사유를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문정사연(問情辭緣)에, "묻기를,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동래부(東萊府)에서 전해온 보고를 들어보니, 「일본국의 배가 지난 달 27, 28일 사이에 우리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귀 선박은 과연 일본국의 배인가? 이 추운 겨울에 멀리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일행은 무사하며, 또 땔나무와 식량이 모자랄 근심은 없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선박은 대일본 제국의 군함 '맹춘호'이고, 함장은 해군 소좌 가사마 고오슌이다. 우리나라에서 특명 전권 변리 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인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를 파견하여 장차 귀국의 경성(京城)에 갈 것이기 때문에 군함들이 **남양만(南陽灣)의 당진포(唐津浦)**에 모이기 위하여 먼저 이 배를 보내어 뱃길을 측량하게 한 것이다. 일행은 모두 편안하나, 다만 음료수가 부족할 뿐이다. 땔나무와 식량은 실로 부족할 걱정이 없다. 그러나 후의(厚意)에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初四日. 江華留守趙秉式以"日本國軍艦孟春號, 爲測海深, 來泊本府南洋. 艦長海軍少佐笠間廣盾也. 判官朴齊近與軍官高永周, 入船問情." 啓. 問情辭緣: "問: '向聞我國萊府傳報, 則日本國船, 去月二十七八日間, 將向弊境云矣. 貴船果是日本國船耶? 當此嚴冬, 遠涉大洋, 一行平穩, 而亦無柴糧匱笠之患耶?' 答: '我船是大日本帝國軍艦孟春艦, 而艦長卽海軍少佐笠間廣盾也. 因我國派出特命全權辨理大臣黑田淸隆, 將去貴京城, 會艦于**南陽灣唐津浦**, 而先使該艦, 測量水路矣. 一行則俱爲泰平, 所乏者只是飮水而已. 柴糧實無不足之患. 然厚意則感謝'云. (…)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1876) 1월 4일(병신) 1번째기사>

정치/군사

일본 선박이 수원의 고온포에 정박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가 아뢰기를, "이달 11일에 이양선(異樣船) 한 척이 고온포(古溫浦) 앞바다에 와서 본부(本府)의 판관(判官)을 시켜 달려가서 사유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온포(古溫浦)의 척후장교 이두현(李斗鉉)과 서리(胥吏) 홍재남(洪在南)의 급보에 보니, '이달 11일 해질녘에 그들의 종선(從船) 1척이 고온포에 와서 정박하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 배인가를 물었더니 일본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 통사(東萊通事) 한 명이 해당 부(府)에서 발생한 뱃길을 알려주는 공문을 내보이면서 그들 13명과 함께 일제히 뭍에 올라 이 곳 지명을 어느 고을 소속, 인구와 호수는 얼마인가, 경성(京城) 및 수원(水原)과의 이수(里數)는 몇 리인가를 묻고, **또 서울과 남양(南陽) 경계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귀국과 맺은 조약(條約)이 있으므로 개항지의 수심을 재러 왔다고 말하면서 내일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배를 인솔하여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다시 그들 배로 돌아가 타고서 범선 두 척이 정박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래 통사(東萊通事)의 성명은 박기종(朴琪淙)이며 공사(公事)의 수원(隨員) 5명 가운데서 2명의 성명은 외무(外務) 9등 소속의 스미나가 다쓰야스［住永辰妥］와 통변(通辯) 다케다 쿠니타로［武田邦太郎］라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水原留守金炳地以“今月十一日, 異樣船一隻, 來碇于古溫浦前洋, 使本府判官, 馳進問情. 而卽接古溫浦瞭望將校李斗鉉書吏洪在南馳告內, ‘今月十一日黃昏, 彼從船一隻, 來泊于本浦, 故問何處船隻, 則答云‘日本’國人. 而其中東萊通事一人, 出示該府指路公文, 與彼人十三名, 一齊下陸, 問此處地名及何邑所屬, 人口戶數, 與去京城及水原里數爲幾許里. 又問京城及**南陽地**界, 向何去了云. 而又稱前有貴國約條, 故開港測水次來到, 而懇請明日指路. 故方欲將船指路計料, 彼人還乘其船, 旋入于二帆船留碇處. 而東萊府通事姓名朴琪淙, 彼公事隨員五人中二人姓名, 外務九等屬住永辰妥, 通辯武田邦太郎.’ 云.” 啓.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1877) 10월 13일(갑오) 2번째기사>

정치/군사
강화부에 영장과 초관 및 별초사를 더 두도록 하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이, ‘신영(新營)의 병정은 훈련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전에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올해 정월에 대창(擡鎗) 50개를 남양(南陽) 마산포(馬山浦)에서 실어오고 건장한 장정 100명을 뽑아 대창(擡鎗)을 쓰는 법을 훈련시켰는데**, 초관(哨官)과 초장(哨長)을 두어 영솔하게 하고 원래 있던 병정들과 똑같이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무사 가운데서 건장한 사람 1,000명을 더 뽑아 별초사(別抄士)라고 이름을 붙이고 8개 초(哨)로 나누어 영장(領將) 4명과 초관(哨官) 8명을 두어 영솔하게 하였습니다. 요식을 주고 번(番)을 나누어 기술을 연마하고 총쏘는 법을 연습하여 족히 후방 부대의 성세(聲勢)를 떨치기에 충분하도록 하였으며, 정실(精實)하기에 힘써서 관방(關防)에 대비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江華留守金允植以“新營兵丁設置操練之由, 前已馳啓矣. 本年正月, 擡鎗五十桿, 自**南陽馬山浦**輸來, 選精壯一百名, 練習擡鎗之法, 置哨官哨長以領之, 與元在兵丁, 一體操練. 退去武士中, 加抄壯健一千名, 名之曰別抄士, 分爲八哨, 置領將四人·哨官八人, 以領之給料分番, 練技習放, 足爲後距聲勢, 務臻精實, 以備關防”啓.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4월 3일(정미) 3번째기사>

정치/군사
중국 제독 주광전이 병대를 거느리고 귀환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이, ‘**중국 제독(提督) 주광전(朱光前)이 병대(兵隊)를 거느리고 오늘 남양(南陽)을 떠나 귀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京畿監司金弘集以“中國提督朱光前率兵隊, 今日離發**南陽**歸還”啓.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5월 22일(병신) 3번째기사>

정치/군사

해안을 방어하는 일에 관하여 민영목이 상소하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영목(閔泳穆)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체로 해안을 방어하는 법은 바다를 차단하여야 하는 만큼 전적으로 수군(水軍)을 의지해야 하는데, 지금 관할하는 것은 단지 육군(陸軍)뿐이니 아주 허술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에게 해방(海防)의 통제를 따르게 한 뒤에야 바다와 육지의 방비가 바야흐로 모두 완비된다고 봅니다.

교동(喬桐)은 외딴 섬에 위치해 있어서 통어사(統禦使)의 명칭은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데다가 또 해방영(海防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체제가 서로 모순됩니다. 수군 절제사가 때에 따라 바꾼 전례가 한 번만이 아닌 만큼, 참작하여 변통하는 것이 때와 형편에 알맞을 것입니다.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영흥도(靈興島)와 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여 있어서 선박들이 왕래하는 요충지이고,** 둘레에 있는 아홉 섬의 1,000호에 가까운 백성들은 물길에 익숙합니다. 요해처에 대(臺)를 만들고 포(礮)를 안치하면 영흥도, 덕적도와 함께 앞뒤에서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 별장(別將)을 두되 신의 아문(衙門)에서 추천하여 차명하고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청과 아전·군졸은 아직도 목관(牧官) 때 설치해 둔 것이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만큼 번거롭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병비(兵備)가 거의 완전할 것입니다.

연안 고을의 포군(礮軍)은 원래 정원이 1,870명이지만 군사 훈련을 견딜 만한 사람은 겨우 3분의 2이고, 그 밖에는 불때고 심부름하는 무리인데 또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영방(營房)을 설치하고 계기(械器)를 수집하며 조련하는 방도를 차례로 거행하되, 총리아문(總理衙門)의 포아병(礮牙兵), 수어영(守禦營)의 별파진(別破陣), 진무영(鎭撫營)의 새로 조련하는 군병은 원래 각각 지급하여 교습하는 것이 이미 제도로 된 만큼 이제 변동하여 소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때때로 조련하고 신칙하는 것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경기(京畿) 연안의 한 방면의 수로는 서쪽으로 풍덕(豐德)을 경유하고 남쪽으로 통진(通津)을 경유하며 육로는 인천(仁川)의 제물포항(濟物浦港)과 **남양(南陽)의 마산포(馬山浦)**를 경유하는 것이 모두 서울로 가는 직통길입니다. 해구 방어는 강화영에 넘겨 전적으로 육지 수비를 담당케 할 것입니다. **해방영이 현재 부평(富平)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풍덕과 남양에 응당 두 갈래의 방어지대를 설치하여 호응하고 연락하게 해야겠는데**, 군병이 나뉘어져 세력이 약해지는 것은 병법에서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면 두 곳에 따로 본토의 용사(勇士)로 각각 2, 3대(隊)로 묶어 식견과 사려가 있고 군사 일에 익숙한 사람을 선발해서 오래도록 해읍(該邑)을 맡게 하여 편리할 대로 훈련을 시키도록 해야 위급할 때에 효력을 얻기 쉬울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병이 전부(田賦)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병을 양성하는 비용이 없었으나 후세에는 바뀌어 장정(長征)을 하므로 운반하여 공급하는 일이 모두 고을 수령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일의 형편이 그러하니 연안을 방어하는 병사와 장리(將吏)가 대략 2,000인인데, 사목(事目)에서 확정한 포군의 군량이 800여 섬이고 사창(社倉) 모곡(耗穀)이 6,000냥이어서 한 달도 지탱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빨리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병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군량은 원래 나오는 근본이 있어야 늘 이어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국가의 과세를 계산해서 세액(歲額)을 획부(劃付)하여 군량을 넉

넉히 보장하소서. 군병이 먹을 것이 넉넉하게 되는 것은 오직 위에서 명령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량을 넉넉하게 하는 데에는 둔전(屯田)만한 것이 없는데 둔전은 반드시 놀고 있는 땅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인천, 남양, 장봉(長峯) 등지에 있는 목장은 말떼가 거의 없는데,** 토지는 모두 비옥하고 넓어서 개간할 만합니다. 목장을 옮기거나 없애고 그 땅에 둔전을 경영하도록 허락하는 동시에, 소속된 토지의 총 결수(結數)도 다같이 이부(移付)하고, 급하지 않은 자금은 덜어내어 실용한다면 진실로 양쪽으로 이익이 되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영과 진 사이에 군량과 자금이 설사 대준다 하더라도 기계와 의장(衣裝) 운송하는 비용을 일 년 동안 계산하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재물을 늘리는 방도가 없으면 문득 군용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로세, 염전, 선박세 세 가지 세금을 이전에 떼어 주심을 받았으나 징수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각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을 떼 주고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잉여를 취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있으나 망정결(望定結)이 다른 도(道)에 있는 것이 아직도 많으니 일체 다 경기(京畿)에 소속시키고 전후의 잉여금의 수효를 통계내어 정식에 있어서 공적 비용 외에 다 해방(海防)에 주는 것으로 해마다 상례를 삼는다면, 경상비용을 더 허비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저축한 것으로 경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재물을 손상하지 않는 데에는 이보다 편리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진술한 것은 다 시급하고 절실한 사정에 관계되니 묘당(廟堂)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목은 바로 방어하는 일에 절박하고 시급한 것들이다.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十四日. 判敦寧閔泳穆疏略: 大凡防海之制, 遮截水面, 專仗舟師. 而今之所轄, 只是陸軍, 殊涉疎虞. 臣謂沿界水軍, 許聽海防節制然后, 水陸之備, 方爲俱完. 喬桐處在孤島, 統禦之稱, 徒名無實. 且於海防爲屬, 體制相礙, 其水軍節制, 隨時沿革, 往例非一, 參酌變通, 恐於機宜爲妥. **南陽**之**大阜島**, 介於**靈興**·**德積**爲輪舶往來之衝, 環九島近千戶民, 慣於行水. 就要害, 設臺安礮與**靈興**·**德積**, 成猗角之勢, 另爲一鎭, 置別將, 自臣衙門辟差, 專聽節制. 廨宇吏卒, 尙有牧官時所置, 可以仍用, 無煩支調, 而兵備庶全. 沿邑礮軍, 原額一千八百七十, 可堪操兵者, 僅三分之二, 其餘伙夫厮徒, 亦不可闕也. 建置營房, 蒐集械器, 組練之方, 次第而擧. 而總理之礮牙兵·守禦之別破陣·鎭撫之新練兵, 自各支給敎習, 已有成制. 今不必變動致擾, 惟以時操飭, 實合便宜. 畿沿一面, 水程則西由豐德·南由通津; 陸路則仁川之濟物港·**南陽**之**馬山浦**, 皆距京直路, 海口控扼, 可付沁營, 專當陸地守備. 海防現住富平, 其豐德·**南陽**, 宜更有兩枝柒隘, 呼應聯絡, 而兵分勢弱, 兵家所忌也. 無已則就二處, 另團土勇, 各二三隊, 擇有識慮·習兵事者, 久任該邑, 方便訓鍊, 易於緩急得力. 古者兵出於賦, 故無養兵之費. 後世變爲長征, 轉輸供給. 悉資縣官, 事勢則然, 沿防兵士將吏, 大略二千人, 以事目所劃, 礮糧八百餘石, 社耗六千兩, 支不得一月, 衆情疑貳, 亟宜定制. 言兵者, 皆曰: “餉源其出有本, 卽可常繼.” 乞勅所司, 計量國課, 劃付歲額, 優當軍寶. 兵旣足食, 惟上所令矣. 且贍餉, 莫如屯田, 而屯田必須閒地. 今仁川·**南陽**·長峯等地牧場, 馬群幾空, 土皆沃衍, 可墾牧場. 或移或罷, 許於其地, 營屯所屬結總, 亦竝移付. 捐不急資, 實用, 洵可爲兩益之政. 而營陣之間, 餉資雖給, 器械衣裝輜重之費, 歲計不些. 如不生財有道, 輒致軍用觖乏, 漁監船三稅, 前蒙劃付. 而征收不敷, 各宮免稅, 自畿營取剩, 曾有其例, 而望定結之在外道者, 尙多. 一併屬之京畿, 通計前後剩數, 定式公用外, 悉劃海防, 歲以爲常, 經用無所加費, 儲胥可以資給, 不害民, 不

傷財, 莫如此便也. 凡此所陳, 俱係急切事情, 許令廟堂詳覆施行.
批曰: "所陳諸條, 乃防務之切急者也. 令廟堂稟處."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4월 14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군사

해방 아문의 군무를 개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 연해를 총관하는 해방 사무(海防事務) 민영목(閔泳穆)이 상소하여 진술한 방어 관계의 여러 조목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상소를 가져다 보니, 첫째는,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水軍)은 해방영(海防營)에게 지휘를 받도록 허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안의 요충지는 오로지 수군(水軍)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문(衙門)에서 관할하는 것은 수천 명도 못 되는 육군(陸軍)일 뿐이니,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을 모두 통괄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분부하소서.

둘째는,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 교동(喬桐)의 통어사(統禦使)를 때에 따라 변혁한 전례가 한 번만이 아니므로 참작해서 변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통어사의 명칭은 있지만 군사 편제나 군량과 군수 물자가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종전에도 변혁한 것이 또한 여러 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해방영에 소속되어 있으니, 응당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와 통어사의 직함을 감하(減下)하고 해당 부사가 방어사의 자격으로 시행하게 해 주소서. **셋째는,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에 대(臺)를 설치하고 포(礮)를 안치하되 따로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 별장(別將)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섬은 영흥도(**靈興島**)와 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어 있어서 실로 해문(海門)의 요충지입니다. 진영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필경 깊이 재량한 것이겠지만 별장 한 자리는 해당 아문에서 자벽(自辟)하여 차송(差送)해야 합니다.

넷째는, 연안 고을의 포군(礮軍)과 총리 아문(總理衙門)의 포아병(礮牙兵), 수어영(守禦營)의 별파진(別破陣), 진무영(鎭撫營)의 새로 훈련된 군병들은 때때로 조련하고 신칙하여 유사시에 징발하여 조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안 고을에 있는 포군의 무기를 정비하고 기예를 연습시키며 세 영(營)의 군병들을 조련하고 신칙하여 징발하고 조달하는 문제를 아울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다섯째는, 풍덕(豐德)과 남양(南陽) 두 곳에 따로 용사(勇士)를 묶어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요해처에 별도 본토의 병사를 뽑아서 조련시키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고을의 수령(守令)을 가려서 차임하고 오래 맡긴 다음에야 효과를 아뢸 수 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조(銓曹)에 신칙하소서.

여섯째는,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국가의 과세를 헤아려 세액(歲額)을 획부(劃付)하는 일이었습니다. 군병이 있으면 군량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이는 사세로 보아 당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일의 관건인데 돈과 곡식을 맡고 있는 관청에서 세입과 세출이 아직 넉넉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으니, 추이(推移)하여 획급해 주는 것은 거론하여 의논하기 곤란합니다.

일곱째는, 인천(仁川), 남양(南陽), 장봉(長峯) 등지의 목장을 옮기거나 없애고 그곳에 둔전(屯田)을 경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땅에서 실용을 거두도록 하자고 상소에서 진달한 말은 스스로 짐작하고 헤아린 것이 있으니, 옮길 만하고 없앨 만한 목장을 경시(冏寺)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여덟째는, 다른 도에 있는 망정결(望定結)을 모두 경기에 소속시키고 규정된 공적 비용 외

에 모든 해방영(海防營)에 떼 주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정한 군미의 액수 외에 기계와 장비, 물자를 운반하는 비용이 필경 많을 것이니, 각도(各道)에 있는 망정결을 모두 경기에 보내고 이미 궁결(宮結)에 있는 것은 없애며, 정식에 있는 공적 비용에서 나머지를 계산해서 해당 아문에 소속시켜 비용을 보충하도록 하되, 이것은 토지의 정사에 관련된 것이니 호조(戶曹)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알리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춘천(春川)에 포(砲)를 설치하는 비용을 본도(本道)의 환모(還耗)에서 돈 1만 냥을 이제 획부(劃付)해야 하는데, 이 돈은 이미 감영(監營)의 지방(支放)에 관계되므로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충획(充劃)할 것인지 방법을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보니, '환안(還案) 중에서 수수쌀〔唐米〕과 귀리〔耳年〕 및 전미(田米)와 태조(太祖)를 합하면 4만 3,871석 남짓인데, 당장에는 별로 쓸 데가 없어 단지 장리를 놓아 총량만 늘리게 되니 백성들의 곤궁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수쌀 1,000석과 귀리 1만 석을 덜어내어 춘천에 획부한 것에 도로 충당해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획부한 조항으로 청한 대로 덜어내어 채워주고 그 대신 나머지 수량은 값을 계산하여 도신(道臣)이 충분히 방도를 상의할 것이며, 춘천부에 포를 설치하는 비용 1만 냥을 과세로 조처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二十一日. 議政府啓: 總管畿沿海防事務閔泳穆, 疏陳防務諸條, 令廟堂稟處事命下矣. 取見其疏本, 則其一, '沿界水軍, 許聽海防節制'事也. 海沿重地, 專藉舟師. 而現今衙門所管, 不滿數千之陸軍而已. 則揆以綢繆之義, 安得不疎虞乎? 沿界水軍, 竝許統轄事分付. 其一, '喬桐統禦之稱, 徒名無實, 隨時沿革, 濫例非一, 參酌通變'事也. 縱有統禦之號, 兵制餉需, 全不成樣, 從前沿革, 亦旣屢矣. 且今屬於海防, 則宜合通變. 水軍節度統禦之銜減下, 該府使以防禦窠施行. 其一, '**南陽大阜島**設臺安礮, 另爲一鎭, 置別將'事也. 此島, 介在**靈興**·**德積**之間, 實爲海門之要衝矣. 設鎭之論, 必有深裁. 而然別將一窠, 令該衙門, 自辟差送. 其一, '沿邑礮軍, 及總理之礮牙兵·守禦之別破陣·鎭撫之新練兵, 以時操飭, 臨時徵調'事也. 沿邑礮軍之繕械鍊藝, 三營兵伍之操飭徵調, 竝許施. 其一, '豐德·**南陽**二處, 另團土勇訓鍊'事也. 水陸要害之處, 別選土兵, 團束組練, 係是不可已者. 而兩邑守令, 擇差久任然後, 乃可奏效. 以此另飭銓曹. 其一, '乞飭所司, 計量國課, 劃付歲額'事也. 有其兵則餉不可缺, 事勢良然, 此是第一關捩也. 而金穀所司之地, 歲入歲下, 尙患不敷, 則推移措劃, 難以擧議. 其一, '仁川·**南陽**·長峯等地牧場, 或移或罷許其地, 營屯田'事也. 就其閒地, 收其實用, 疏中所陳, 自有斟量, 其可移與可罷之牧場, 令冏寺稟處. 其一, '望定結之在外道者, 竝屬京畿, 定式公用外, 悉劃海防'事也. 原定餉額外, 器裝輜重, 其費必多. 各道望定結, 竝送京畿已在宮結, 而除却定式, 公用計取, 餘剩屬之該衙門, 俾爲補用. 而係是結政也, 令度支發關知委, 施行何如? 又啓"春川設砲之需, 以'本道還耗錢一萬兩, 今爲劃付, 而此錢, 旣係監營支放, 不可不給代. 故某樣充劃之方, 使之論報矣. 卽見其報, 則還案中, 唐米·耳牟及田米·太·租, 合爲四萬三千八百七十一石零. 而目前別無需用, 只是長耗添總, 民困轉甚. 就唐米一千石·耳牟一萬石除出, 還充春川所劃'爲辭矣. 劃付條, 依所請除充, 其代餘數, 則計價, 道臣爛商方便, 春川府砲料一萬兩, 課歲措處事, 分付何如?" 竝允之.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4월 21일(을축) 1번째기사>

정치/군사
해방 총관의 병부를 만들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병조(兵曹)의 계목(啓目)으로 인하여 총관기연해방사무(總管畿沿海防事務總管)가 패용할 병부를 본 승정원(承政院)에서 만들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병부를 지금 이미 새로 만들었으니 총관기연해방사무 민영목(閔泳穆)을 즉시 패초(牌招)하여 전해 주고, **전 총융청(前摠戎廳)에 소속되었던 남양(南陽), 파주(坡州), 장단(長湍), 삭녕(朔寧), 마전(麻田), 고양(高陽), 교하(交河), 양천(陽川), 적성(積城), 연천(漣川) 등 고을의 속오군(束伍軍)을 해방아문(海防衙門)에 이속(移屬)한 뒤**에 10개 고을의 병부 왼쪽을 총융청(摠戎廳)에서 지금 와서 바쳤으니, 똑같이 전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二日. 承政院啓: "因兵曹啓目, 總管畿沿海防事務所佩兵符, 令本院造給事, 命下矣. 兵符今旣新造, 總管畿沿海防事務閔泳穆, 卽爲牌招傳授. 前總戎廳所屬**南陽**·坡州·長湍·朔寧·麻田·高陽·交河·陽川·積城·連川等邑束伍軍, 移屬海防衙門後, 十邑兵符左隻, 自該廳, 今方來納矣, 一體傳授何如?" 允之.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9월 2일(계묘) 1번째기사>

정치/군사

경기의 군비를 원조한 이현준과 남예원을 표창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기내(畿內) 안의 몇 개 고을의 결세(結稅)를 상정(詳定)한 것은 참으로 할 수 없어서 시행한 것이었으며, 작년 가을에 도로 본색(本色)으로 바치게 한 것은 토지세가 법의(法意)로 볼 때 중요할 뿐 아니라 경비를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와서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도신(道臣)이 장계와 계문으로 계속해서 간곡하게 청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마련해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죽산(竹山)·양지(陽智)·여주(驪州)·포천(抱川) 등 네 고을의 세납(稅納)은 이미 시행한 예를 따라 모두 갑신년(1884)부터 3년을 기한으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게 하고, 풍덕(豐德)·삭녕(朔寧)은 전번에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 하였지만 두 고을의 세납 역시 시행한 예에 따라 상정가로 대납하게 하되, 풍덕은 기한이 아직 2년 남아 있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고, 삭녕은 기한이 작년인 갑신년이니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시종 혜택을 베풀어주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남양(南陽) 한 고을로 말하면 해마다 책응(責應)이 아주 많은 만큼 특별히 생각해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조에 한하여 군포(軍布)를 탕감하고 대동(大同)을 상정가로 대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남양의 책응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잘 알고 있다**.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을 특별히 1년 더 허락하여 백성들을 돌보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부호군(副護軍) 이현준(李賢濬)과 전 감역(前監役) 남예원(南禮元)은 많은 재물을 내어 자원해서 군수(軍需)를 도왔으니, 그 성의가 매우 가상합니다. 보답하고 표창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수령(守令)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調用)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三日. 議政府啓: "畿內幾邑之結稅詳定, 亶由於萬不獲已之政. 而昨秋更以還責本色者, 不但壤賦法意之攸重, 爲其支調之極難而然. 則到今事體, 固不當低昻, 而該道臣以報·以啓, 申懇不已. 其民情勢之無柰措辦, 自可推知. 竹山·陽智·驪州·抱川四邑稅納, 依已施之例, 竝甲申爲始, 限三年詳代. 豐德·朔寧, 向雖有啓稟行會, 兩邑稅納, 亦依已例詳代. 而豐德之

限, 尙餘兩載, 不須更論. 朔寧則限滿止在甲申, 又展二年, 庸示終始之惠. 且南陽一邑, 課歲策應, 極其浩繁, 合有別般軫念. 軍布之蕩減·大同之詳代, 竝只以今年條施行事, 分付何如?" 允之. 仍敎曰: "南陽之策應浩繁, 朝家之稔悉者也. 詳代特加一年, 以示恤民之意." 又啓: "副護軍李賢濬·前監役南禮元, 辦出夥財, 願助軍需, 其誠其意, 極庸嘉尙, 不容無酬奬之典. 竝守令隨窠調用事, 分付銓曹何如?" 允之.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3월 23일(임술) 1번째기사>

정치/군사
대부도의 첨사를 그 섬의 감목관을 겸임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지금 해방아문(海防衙門)에 소속되어 있는데, 목장과 관계되어 있으니 내버려두는 것은 근심스런 일입니다. 해도(該島)의 첨사(僉使)를 겸 감목관(兼監牧官)으로 하비(下批)하라고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六日. 議政府啓: "南陽大阜島, 今屬於海防衙門. 而係是牧場, 抛置可悶. 該島僉使以兼監牧官下批之意, 分付該曹何如?" 允之.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4월 26일(갑오) 1번째기사>

정치/군사
통어영을 남양부에 이설하고 연해 총제사로 부르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방어하는 제도는 마땅히 때의 적절함을 따르고 지형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하는데, 제도(諸道)에는 비록 육군(陸軍)이 설치되어 있지만 연해(沿海)의 요충지들은 소홀하기가 너무도 심하다.
충청 병영(忠淸兵營)의 모든 규제(規制)는 모두 옛날 규례를 회복하고, 통어영(統禦營)을 남양부(南陽府)로 이설(移設)하여 연해 총제사(沿海總制使)라 칭하도록 하라. 제도를 정하고 이끌어 갈 방도는 새로 제수된 총제사(總制使)로 하여금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게 한 다음 절목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호위청(扈衛廳)의 체제는 본래 특별하니, 관계된 모든 사무를 대장(大將)이 이미 총괄하면서도 또 부장(副將)을 두어 관섭(管攝)하도록 하는 것은 고례(古例)가 바로 그렇고, 금군(禁軍)에 좌우 별장(左右別將)을 둔 것도 취하여 모방할 만하다. 부장 1원(員)은 일찍이 장신(將臣)을 지낸 사람으로 차임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다스리도록 하고, 별장(別將)은 좌별장(左別將), 우별장(右別將)이라고 칭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敎曰: "防禦之制, 惟當隨時之宜·因地之便, 而諸道雖有陸軍之設置, 沿海之要衝, 疎虞莫甚. 忠淸兵營之凡所規制, 竝復舊例. 統禦營移設於南陽府, 稱之以海沿總制, 使制置接濟之方, 令新除總制, 使就議總理大臣, 成節目以入." 又敎曰: "扈衛廳之體制, 自有別焉. 凡係事務, 大將旣總之, 而又有副將之管攝, 古例卽然. 禁旅之有左右別將, 亦可以取倣. 副將一員, 曾經將臣人差除, 俾治戎務. 別將以左右別將稱號事, 著爲定式."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1월 26일(경술) 2번째기사>

정치/군사
내무부에서 남양부사 관하의 대부도를 총제영에 소속시켰으므로 대임을 임명할 것을 아뢰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친군 경리청(親軍經理廳)의 초기(草記)를 보니, ‘**본청에 속한 전 영장(前營將) 남양 부사(南陽府使)와 그 관하(管下)인 대부도(大阜島)를 총제영(總制營)에 소속시켰으니** 대임(代任)을 임명하는 일은 내무부(內務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여, 윤허하였습니다.

관하(管下)의 읍(邑)과 진(鎭)을 지금 이미 다른 영(營)에 옮겨 붙였으니, 응당 궐원이 나는 대로 대임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되는 것은 경기(京畿) 내의 각 고을은 모두 원래 속한 관할이 있는데 저곳을 혁파하여 이곳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군제(軍制)는 중요한 바이니,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때에 따라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청(該廳)에서 관할하는 파주(坡州)와 장단(長湍)은 좌영장(左營將)과 우영장(右營將)이 시행하게 하고, 전영장(前營將), 중영장(中營將), 후영장(後營將)은 우선 감하(減下)하며, **전에 남양부(南陽府) 관하에 있던 양천(陽川)을 이제부터 파주에 옮겨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內務府啓: “卽見親軍經理廳草記, 則‘本廳屬前營將**南陽府使**及管下**大阜島**, 革屬總制營, 則差代之擧, 令內務府稟處’事, 允下矣. 管下邑鎭, 今旣移付他營, 宜其隨闕差代. 而第念畿內各邑, 皆有原屬管轄, 則革彼移此, 必多難便. 軍制所重, 雖涉疎虞, 亦不可不因時通變. 該廳所管坡州·長湍, 以左右營將施行; 前中後營將, 姑爲減下; 曾前**南陽**管下陽川, 從今移屬於坡州何如?” 允之.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2월 27일(경진) 3번째기사>

정치/군사

의정부에서 총제영에 소속된 인천, 부평, 김포, 양성에 주관하는 군영의 필요성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경직(李耕稙)의 보고를 보니, ‘**남양(南陽)을 지금 총제영(總制營)에 이속(移屬)하였습니다.** 해읍(該邑) 소속 인천(仁川), 부평(富平), 김포(金浦), 양성(陽城) 등 네 고을에 있는 군대에 주진(主鎭)을 두어야 할 것이나 군정(軍政)에 관계된 일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제와 관계되는 만큼 응당 소속이 있어야 할 것이니 **남양 대신 인천부(仁川府)로 주진을 정하여 관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李耕稙所報, 則‘**南陽**, 今旣移屬總制營, 該邑所屬仁川·富平·金浦·陽城等四邑旅帥隊, 正宜有主鎭之所, 係關軍政, 不敢擅便’爲辭矣. 此係軍制, 合有歸屬, **南陽**之代, 以仁川府爲定, 請使之管轄何如?” 允之.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6월 10일(경신) 2번째기사>

정치/군사

연해 지방 포대 설치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7호, 〈연해 지방 포대 설치에 관한 안건〔沿海地方砲臺設置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경기의 인천(仁川) 해안,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 강화(江華) 해안, 충청남도의 당진(唐津) 송도(松島), 보령(保寧)의 전 수영(水營), 태안(泰安) 안흥도(安興島), 전라북도의 옥구(沃溝), 고군산(古羣山), 부안(扶安), 변산(邊山), 전라남도의 해남(海南), 진도(珍島), 완도(莞島), 여수(麗水) 각 해안, 돌산(突山), 거문도(巨文島), 지도(智島), 고하도(孤下島), 경상북도의 연일(延日) 해안, 경상남도의 진해(鎭海), 거제(巨濟), 남해(南海), 진남(鎭南)의 각 해안, 창원(昌原)의 마산포(**馬山浦**), 동래(東萊)

의 절영도(絶影島), 울산(蔚山) 해안, 황해도의 풍천(豐川), 옹진(瓮津), 해주(海州) 각 해안, 평안북도의 의주(義州), 압록강안, 강원도의 통천(通川) 해안, 함경남도의 영흥(永興), 정평(定平), 홍원(洪原) 해안, 함경북도의 경흥(慶興), 웅기(雄基)이다】

八日. 勅令第七號, 沿海地方砲臺設置件, 裁可頒布.【京畿仁川海岸·南陽大阜島·江華海岸, 忠淸南道唐津·松島·保寧前水營·泰安安興島全羅北道沃溝·古群山·扶安·邊山, 全羅南道海南·珍島·莞島·麗水各海岸·突山·巨文島·智島·孤下島·慶尙北道延日海岸, 慶尙南道鎭海·巨濟·南海·鎭南各海岸·昌原·馬山浦·東萊·絶影島·蔚山海岸, 黃海道豐川·甕津·海州各海岸, 平安北道義州鴨綠江岸, 江原道通川海岸, 咸鏡南道永興·延平·洪原海岸, 咸鏡北道慶興·雄基】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1901) 3월 8일(양력) 1번째기사>

⑸ 인물

정치/인물

남양백 홍영통이 임금의 탄일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다

남양백(南陽伯) 홍영통(洪永通)이 말 위에서 떨어져 돌아갔다. 영통은 남양(南陽) 사람으로 증 문하 시중(門下侍中) 홍승연(洪承演)의 아들이며,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 홍자번(洪子藩)의 증손이다. 문음(門蔭)으로 출신하여 공민왕 때에 판소부시사(判少府寺事)를 지냈고, 나가서 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되었다. 뒤에 신돈(辛旽)이 중으로 있을 때의 구은(舊恩)으로 감찰 대부(監察大夫)가 되었다가, 곧 밀직 부사(密直副使)로 옮겼고, 이춘부(李春富)·김난(金蘭)으로 더불어 돈의 심복이 되었다. 돈이 사감(私憾)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므로, 영통이 연업지설(緣業之說)로 언제나 설득하여 못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렸었다. 돈이 패하게 되자 춘부 등은 다 주살(誅殺) 당했으나 영통은 죽기를 면하고 외방으로 유배갔다가, 우왕이 즉위하자 왕과 인척 관계이므로 여러 관직을 거쳐 좌시중(左侍中)에 이르렀다. 천성이 순박하고 조심스러워 상례(常例)를 좇아 계책을 세워 건의하는 바가 없었다. **국초에 이르러 기구(耆舊)라 하여 남양백(南陽伯)에 봉해지고 여러 번 우악한 접대를 받았다.** 임금의 탄일 잔치에 나갔다가 만취되어 돌아오다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 임금이 애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시호를 안민(安愍)이라 하였는데, 아들이 없다.

○**南陽**伯洪永通墜馬而卒. 永通, **南陽**人, 贈門下侍中承演之子, 都僉議中贊子蕃曾孫. 以門蔭出身, 仕恭愍朝, 歷仕官至判少府寺事, 出爲安東府使. 辛旽以僧時舊恩, 爲監察大夫, 尋遷密直副使. 與李春富·金蘭, 爲旽腹心. 旽以私憾, 多殺戮人, 永通以緣業之說, 每誘而止之, 多所全活. 旽敗, 春富等皆伏誅, 永通得免死流外. 及辛禑立, 以姻屬, 積官至左侍中. 性醇謹, 務於循常, 無所建白. 至國初, 以耆舊封**南陽**伯, 屢蒙優接. 及上誕日, 赴宴沈醉, 將還, 馬驚墜而卒. 上嗟悼, 遣人致祭, 命攸司葬以禮, 賜謚安愍. 無子.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1일(신축) 2번째기사>

정치/인물

정도전의 졸기

정도전의 자(字)는 종지(宗之), 호(號)는 삼봉(三峰)이며, 본관(本貫)은 안동(安東) 봉화(奉化)이니, 형부 상서(刑部尙書) 정운경(鄭云敬)의 아들이다. (…) 갑자년에 하성절사(賀聖節使) 정몽주(鄭夢周)가 그를 천거하여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 경사(京師)에 갔다가 돌아와서 성균 사성(成均司成)에 임명되었다. **정묘년에 외직(外職)을 자원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道傳字宗之, 號三峯, 安東奉化人, 刑部尙書云敬之子. (…) 甲子, 賀聖節使鄭夢周, 擧爲書狀官赴京, 還拜成均司成. 丁卯, 乞郡爲**南陽府使**.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기사) 2번째기사>

정치/인물

남양군 홍길민의 졸기

남양군(南陽君) 홍길민(洪吉旼)이 죽었다. 길민(吉旼)은 검교 중추원 부사(檢校中樞院副使) 홍보현(洪普賢)의 아들인데, 홍무(洪武) 병진년에 전법 정랑(典法正郞)으로 과거에 올랐다.

(…) 길민은 대대로 귀현(貴顯)하고 거부(鉅富)여서 노비가 천여 명이나 되었으나, 성품이 단정하고 밝아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 아들이 하나 있으니 홍여방(洪汝方)이다.
○庚子/南陽君洪吉旼卒. 吉旼, 檢校中樞院副使普賢之子. 洪武丙辰, 以典法正郎登第. (…) 吉旼家世貴顯鉅富, 奴婢千餘人, 然性端亮, 不事奢麗. 一子汝方.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2월 15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인물
남양군 홍서의 졸기
남양군(南陽君) 홍서(洪恕)가 졸하였다. 부음을 듣고 3일간 조시(朝市)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서는 고려의 재상 홍사범(洪師範)의 아들이니, 무재(武才)가 있었다. 시호를 강양(康襄)이라 하니, 시법(諡法)에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악(樂)을 좋아함을 강(康)이라 하고, 전쟁에 공로가 있는 것을 양(襄)이라 한다.
○南陽君洪恕卒. 訃聞, 命停朝市三日. 恕, 高麗宰相師範子, 有武才. 諡康襄. 諡法, 溫柔好樂曰康, 甲胄有勞曰襄.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0월 21일(정유) 6번째기사>

정치/인물
이조 판서 홍여방 졸기
이조 판서 홍여방(洪汝方)이 죽었다. 여방의 자는 자원(子圓)이며 남양 사람이었다. 젊어서 과거에 합격하여 예문 검열(藝文檢閱)에 보직되어서 온천에 호종(扈從)하였는데, 권력 있는 자의 하인이 세력을 믿고 횡포하고 방자하여 꼴과 집을 노략질해 감으로, 사헌 장령(司憲掌令) 박고(朴翱)가 공문을 풍해도 안렴사(豐海道按廉使) 김분(金汾)에게 보내어 노략해 간 자의 성명을 검문하라 하였으나, 분(汾)이 세력을 두려워하여 두어두고 보고하지 아니하므로, 고(翱)가 분(汾)의 종리(從吏)를 잡아다가 때리며 신문하였다. (…)
○吏曹判書洪汝方卒. 汝方字子圓, 南陽人. 少登第, 補藝文檢閱. 扈從溫泉時, 有權貴僕隷恃勢橫恣, 掠取芻藁, 司憲掌令朴翱移牒豐海道按廉金汾, 劾問掠取者姓名. 汾畏勢, 寢不報, 翱捕汾從吏, 榜搥訊問.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13일(갑자) 2번째기사>

정치/인물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홍달손에게 하교하다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 가선 대부(嘉善大夫) 병조 참판(兵曹參判) 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에게 하교하기를,
○敎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嘉善大夫兵曹參判南陽君洪達孫曰: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1월 24일(경오) 11번째기사>

정치/인물
전 중추원 사 전흥의 졸기
전 중추원 사(中樞院事) 전흥(田興)이 졸(卒)하였다. **전흥(田興)은 남양(南陽) 사람인데,** 이서(吏胥)로서 태종(太宗)을 잠저(潛邸) 때부터 섬겼으며, 즉위(卽位)함에 미쳐서는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기록되었다. (…)
○前中樞院事田興卒. 興, 南陽人, 以吏胥事太宗于潛邸, 及卽位, 錄原從功臣. (…)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4월 24일(정사) 4번째기사>

정치/인물

예조에서 궁핍하여 시집을 못가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에서 사는 이계유(李季裕)·**남양(南陽)에 사는 박신(朴愼)**과 통진(通津)에 사는 선처공(宣處恭)은 딸이 장년(壯年)이 되었으나 집안이 궁핍하여 시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자장(資裝)을 지급하여서 제때에 시집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廣州住李季裕·南陽住朴愼·通津住宣處恭, 女子年壯, 貧乏未嫁. 請給資裝, 以時婚嫁." 從之.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2월 27일(경오) 2번째기사>

정치/인물

남양 부원군 홍달손의 졸기

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이 졸(卒)하였다. 조회를 정지하고 조제(弔祭)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예(例)와 같이 하였다. **홍달손은 남양(南陽) 사람 인데,** 증 영중추원사(贈領中樞院事) 홍치(洪治)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궁마(弓馬)를 업(業)으로 하여 내금위(內禁衛)에 선보(選補)되고, 누차 역임(歷任)하여 의주도 수군 첨절제사(義州道水軍僉節制使)에 이르렀다가 경태(景泰) 계유년에 무과에 급제해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올려 제수되었고, 그 해 겨울에 순장(巡將)으로서 그 군사를 거느리고 세조(世祖)를 따라서 정난(靖難) 에 큰 공이 있었으므로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의 호(號)를 받고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제수되었다. 갑술년에 참판(參判)에 오르고, 품계(品階)는 가선 대부(嘉善大夫)이며, **남양군(南陽君)에 봉(封)해졌다**. 세조가 즉위하게 되자 추충 경절 좌익 공신(推忠勁節佐翼功臣)에 봉해졌다. 병자년에 자헌 대부(資憲大夫)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뛰어올려 제수되고, 여러 관직을 거치어서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에 이르렀다.** 성화(成化) 정해년에 대광 보국(大匡輔國)을 더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에 제수되었다. **무자년에 다시 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에 봉해졌으나**,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였으니, 나이 58세이다. 시호(諡號)를 안무(安武)라고 하였으니, 화합함을 좋아해서 다투지 않는 것을 안(安)이라 하고, 화란(禍亂)을 이기어 평정한 것을 무(武)라 한다.(…)
○南陽府院君洪達孫卒, 輟朝, 弔祭禮葬如例. 達孫, 南陽人, 贈領中樞院事治之子也. 少業弓馬, 選補內禁衛, 累歷, 至義州道水軍僉節制使. 景泰癸酉, 中武科, 陞拜僉知中樞院事, 其冬以巡將, 領其卒, 從世祖, 靖難有大功, 賜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之號, 拜兵曹參議. 甲戌, 陞參判, 階嘉善, 封南陽君. 及世祖卽位, 策推忠勁節佐翼功臣. 丙子, 超拜資憲兵曹判書, 累官至輔國崇祿南陽府院君. 成化丁亥, 加大匡輔國, 尋拜議政府左議政; 戊子, 復授南陽府院君. 至是卒, 年五十八. 諡安武: 好和不爭, 安; 克定禍亂, 武. (…)
<성종실록 24권, 성종 3년 11월 25일(정사) 3번째기사>

정치/인물

당성군 홍순로의 졸기

당성군(唐城君) 홍순로(洪純老)가 졸(卒)하였다. 조제(弔祭)하고 예장(禮葬)하기를 전례(前例)와 같이 하였다. **홍순로(洪純老)는 남양인(南陽人)으로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약(洪約)의 얼자(孼子)이었다.** (…)

○唐城君洪純老卒. 弔祭·禮葬如例. 純老, **南陽**人, 判中樞院事約之孼子也. (…)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20일(갑술) 2번째기사>

정치/인물

좌의정 홍응의 졸기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이 졸(卒)하였는데, 철조(輟朝)·조재(弔祭)·예장(禮葬)을 예(例)와 같이 하였다. 홍응의 자(字)는 홍응지(洪應之)이고, **관향(貫鄕)은 남양(南陽)이니**, 고려(高麗)시중(侍中) 홍자번(洪子藩)의 후예(後裔)이며, 한성부 윤(漢城府尹) 홍심(洪深)의 아들이다. (…) 아들은 홍상(洪常)인데, 명숙 공주(明淑公主)에게 장가들었다.(…)

○左議政洪應卒. 輟朝, 弔祭禮葬如例. 應, 字應之, **南陽**人, 高麗侍中子藩之後, 漢城府尹深之子. (…) 子常尙明淑公主.(…)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갑진) 7번째기사>

정치/인물

대간·사헌부가 박겸인·박지겸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수경(朴守經)은 본래 성질이 부드럽고 나약한 데다가 지금은 술병[酒病]이 들어 정신이 거칠고 혼란하므로**, 문서를 봉폐(封閉)하여 답인(踏印)하는 일을 혼미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수경(朴守經)·양윤(梁閏)·민정은 체차(遞差)하고 김정미(金貞美)는 맞추어 제수하는 것이 좋으며,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臺諫啓曰: "(…) **南陽府使**朴守經, 本性柔懦, 今有酒病, 精神荒亂, 封閉踏印之事, 迷而不知. (…)" 傳曰: "朴守經·梁閏·閔精遞差, 金貞美降授, 可也. 餘不允."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윤9월 9일(무진) 6번째기사>

정치/인물

영의정 홍언필의 졸기

영의정 홍언필이 졸(卒)하였다.【언필은 인품이 겸손하고 청렴하여 일상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였다. 부자(父子)가 함께 숭반(崇班)에 있는 것에 대하여 항상 성하면 쇠하고 차면 기운다는 경계(警戒)를 의식하였다. 그의 아들 홍섬(洪暹)도 의관을 검소하게 하였고 감히 초헌(軺軒)을 타지 않았으니 모두가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지난 정유년에 권간(權奸)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어 **남양(南陽)에 가 있었을 때는 날마다 더욱 조심하고 자숙(自肅)하여 두문 불출(杜門不出)하였다**. 그러나 정승으로 세 조정[三朝]을 섬기는 동안 한 번의 건의(建議)도 없었고 논의할 적에는 '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면 다른 정승의 말을 좇을 뿐, 두려워 하면서 자리 보존에만 급급하였으니 '어디다 쓰겠는가.' 하는 비난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언필(彦弼)은 옛사람의 글을 많이 읽고 천성 또한 청근(淸謹)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항상 화(禍)를 두려워하여 바른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

니, 나라가 혼란한 때에 동량(棟樑) 구실을 할 재목이 아님을 알겠다】
○領議政洪彦弼卒.【爲人謙謹廉簡, 自奉甚薄. 常以父子俱在崇班, 有盛滿之戒. 其子暹亦儉素其衣冠, 不敢乘軒, 蓋父之敎也. 往在丁酉, 見忤權奸, 罷居南陽, 日益畏飭, 杜門不出. 然爲相三朝, 無一建白, 論議之際, 不曰上敎至當, 則必從他相之言, 惴惴焉猶恐不得保身, 焉用之誚, 惡得免乎? 彦弼多讀古人之書, 性亦淸謹. 然心常畏禍, 口不發危言, 狂風暴雨, 方知非棟樑之材也】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1월 28일(기해) 3번째기사>

2. 경제(經濟)

⑴ 재정

경제/재정

경기 감사가 남양에서 생산된 서속을 바치다

경기 감사가 남양(南陽)에서 생산된 서속을 바쳤는데, 한 줄기에 세 이삭, 혹은 두 이삭이나 되었다.

○丙子/京畿監司進南陽産粟, 一莖三穗或二穗.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8월 19일(병자) 1번째기사>

경제/재정

의정부에서 전제를 고쳐 상정하는데 남양 등은 소로로 정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田制)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 와 같이 기록합니다. (…) 1. 공수 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중·소로(小路)로 나누어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의 대로(大路)는 30결, 중로(中路)는 25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의 대로는 25결, 중로는 15결, 소로는 10결을 절급(折給)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은 모두 다 혁파(革罷)하여 없앨 것. 함길도(咸吉道)·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하고 6도(道)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을 대·중·소로 나누는데, 전주(全州) (…) 은 중로(中路)로 하고, 남양(南陽)·강화(江華)·여흥(驪興)·이천(利川)·순천(順天)·연안(延安)·삼척(三陟)·양양(襄陽)·철원(鐵原)·영해(寧海)·순흥(順興)·장흥(長興)·풍덕(豐德)·안산(安山)·인천(仁川)·안성(安城)·삭녕(朔寧)·양근(楊根)·임천(林川)·청풍(淸風)·태안(泰安)·한산(韓山)·서천(舒川)·면천(沔川)·서산(瑞山)·익산(益山)·진도(珍島)·금산(錦山)·진산(珍山)·김제(金堤)·곡산(谷山)·안악(安岳)·수안(遂安)·풍천(豐川)·배천(白川)·평해(平海)·통천(通川)·정선(旌善)·고성(高城)·간성(杆城)·영월(寧越)·평창(平昌)·함양(咸陽)·초계(草溪)·예천(醴泉)·흥해(興海)·청송(靑松)·곤양(昆陽)·보성(寶城)·낙안(樂安)·영광(靈光)·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장단(長湍)·지평(砥平)·적성(積城)·연천(漣川)·천녕(川寧)·교동(喬桐)·임진(臨津)·교하(交河)·임강(臨江)·마전(麻田)·음죽(陰竹)·양성(陽城)·가평(加平)·통진(通津)·홍산(鴻山)·제천(堤川)·평택(平澤)·회인(懷仁)·정산(定山)·청양(靑陽)·청안(淸安)·회덕(懷德)·진잠(鎭岑)·부여(扶餘)·석성(石城)·비인(庇仁)·남포(藍浦)·결성(結城)·보령(保寧)·당진(唐津)·영춘(永春)·보은(報恩)·청산(靑山)·목천(木川)·용담(龍潭)·연산(連山)·임피(臨陂)·만경(萬頃)·능성(綾城)·광양(光陽)·용안(龍安)·함열(咸悅)·부안(扶安)·함평(咸平)·옥과(玉果)·고산(高山)·옥구(沃溝)·흥덕(興德)·고창(高敞)·무장(茂長)·무안(務安)·구례(求禮)·곡성(谷城)·운봉(雲峰)·장수(長水)·진안(鎭安)·무주(茂朱)·동복(同福)·화순(和順)·흥양(興陽)·신은(新恩)·옹진(甕津)·문화(文化)·우봉(牛峰)·장련(長連)·신천(信川)·송화(松禾)·장연(長淵)·강령(康翎)·강음(江陰)·토산(兎山)·은율(殷栗)·울진(蔚珍)·흡곡(歙谷)·이천(伊川)·평강(平康)·홍천(洪川)·횡성(橫城)·양구(楊口)·인제(麟蹄)·안협(安峽)·영덕(盈德)·고성(固城)·거제(巨濟)·남해(南海)·거창(居昌)·의령(宜寧)·하양(河陽)·용궁(龍宮)·봉화(奉化)·청하(淸河)·칠원(漆原)·진해(鎭海)·

하동(河東)·인동(仁同)·진보(眞寶)·지례(知禮)·안음(安陰)·현풍(玄風)·산음(山陰)·단성(丹城)·비안(比安)·예안(禮安)·영일(迎日)·장기(長鬐)·창녕(昌寧)·사천(泗川)·기장(機張)·대흥(大興)·낭천(狼川)·덕산(德山)·아산(牙山)은 소로(小路)로 할 것.(…)
○乙酉/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一, 公須位田, 今分大中小路, 留守府大都護府牧官, 大路則三十結, 中路二十五結. 都護府知官, 大路二十五結, 中路二十結, 小路十五結. 縣官, 大路二十結, 中路十五結, 小路十結折給. 各官任內公須位田, 竝皆革除, 除咸吉·平安道外六道州府郡縣, 分爲大中小路. 全州(…)爲中路. 南陽·江華·驪興·利川·順天·延安·三陟·襄陽·鐵原·寧海·順興·長興·豐德·安山·仁川·安城·朔寧·楊根·林川·淸風·泰安·韓山·舒川·沔川·瑞山·益山·珍島·錦山·珍山·金堤·谷山·安岳·遂安·豐川·白川·平海·通川·旌善·高城·杆城·寧越·平昌·咸陽·草溪·(醴川)〔醴泉〕·興海·靑松·昆陽·寶城·樂安·靈光·富平·陽川·金浦·長湍·砥平·積城·漣川·川寧·(喬相)〔喬桐〕·臨津·交河·臨江·麻田·陰竹·陽城·加平·通津·鴻山·提川·平澤·懷仁·定山·靑陽·淸安·懷德·鎭岑·扶餘·石城·庇仁·藍浦·結城·保寧·唐津·永春·報恩·靑山·木川·龍潭·連山·臨陂·萬頃·綾城·光陽·龍安·咸悅·扶安·咸平·玉果·高山·沃溝·興德·(高敞)〔高敞〕·茂長·務安·求禮·谷城·雲峯·長水·鎭安·茂朱·同福·和順·興陽·新恩·瓮津·文化·牛峯·長連·信川·松禾·長淵·康翎·江陰·兎山·殷栗·蔚珍·歙谷·伊川·平康·洪川·橫城·楊口·麟蹄·安峽·盈德·固城·巨濟·南海·居昌·宜寧·河陽·龍宮·奉化·淸河·漆原·鎭海·河東·仁同·眞寶·知禮·安陰·玄風·山陰·丹城·比安·禮安·迎日·長鬐·昌寧·泗川·(機長)〔機張〕·大興·狼川·德山·牙山爲小路.(…)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3일(을유) 1번째기사>

경제/재정

농사가 잘되지 못한 경기지방에 전교하다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경기(京畿)의 교동(喬桐)·강화(江華)·통진(通津)·김포(金浦)·양천(陽川)·부평(富平) 등의 고을은 농사가 매우 잘 되지 못하였고, **인천(仁川)·안산(安山)·남양(南陽)·고양(高陽)·교하(交河)·금천(衿川) 등의 고을은 다음인데,** 위의 여러 고을의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직전(職田)과 사사전(寺社田)의 세(稅)는 아직 상납(上納)하지 말고, 모두 피곡(皮穀)으로 주창(州倉)에 받아들여서 명년 종자(種子)로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戶曹曰: "京畿喬桐·江華·通津·金浦·陽川·富平等邑, 農事甚不稔, 仁川·安山·南陽·高陽·交河·衿川等邑次之, 上項諸邑之功臣·別賜·職田·寺社田稅, 姑勿上納, 竝以皮穀納州倉, 以備明年之種."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9일(경인) 7번째기사>

경제/재정

호조에 전교하여 남양 등의 별창에 저장된 구황 소금으로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경기 각 고을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 4천 5백 52섬과 남양(南陽)·강화(江華)·인천(仁川)·교동(喬桐) 등 고을 별창(別倉)의 구황(救荒) 소금 3백 석을 백성들에게 내주어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戶曹曰: "京畿各官軍資倉陳黃豆四千五百五十二碩及南陽·江華·仁川喬桐等官別倉救

荒鹽三百碩, 給民賑救."
<연산군일기 49권, 연산 9년 4월 4일(경자) 4번째기사>

경제/재정

주강에서 시독관 김시진이 남양의 폐단을 말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일(無逸)을 강하였다. (…) **시독관 김시진(金始振)이 남양(南陽)의 폐단을 말하면서 아뢰기를,** "패선(敗船)된 데에서 건져낸 쌀을 다시 징수하는 것은 전거가 없는 것입니다. 사복시(司僕寺)의 제원(諸員)이 궐액(闕額)된 것을 보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섬에서 산 사슴을 찾아서 바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아울러 유사(有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辛丑/上御晝講, 講『書傳』「無逸」. (…) 侍讀官金始振言南陽之弊以爲: 敗舡拯米, 改徵無據; 司僕諸員, 闕額難補; 島中生鹿, 覓納未易." 上竝令有司稟處.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1653) 2월 4일(신축) 1번째기사>

경제/재정

경상 감사 이상진이 폐해 10조를 계문하면서 남양의 목장를 언급하다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이 본도의 폐해를 10개 조로 계문(啓聞)하였는데, 그 내용에, "(…) **다섯째, 남양(南陽)과 금성(錦城)에 목장(牧場)을 신설한 뒤로 관둔(官屯)과 민전(民田)이 그 속에 뒤섞여 들어갔으니, 변통하여 백성의 폐해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절도(絶島)에 정배(定配)된 죄인의 숫자가 매우 많아 주객(主客) 모두 고통을 받고 있으니, 먼저 경죄(輕罪)를 이배(移配)시키고 지금 이후로는 그곳에 정배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慶尙監司李尙眞以本道弊瘼十條啓聞, "(…) 其五, 南陽·錦城牧場新設之後, 官屯民田, 混入其中, 宜有變通, 以除民瘼. (…)" 上從之.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1663) 10월 8일(임인) 3번째기사>

경제/재정

영상 정태화가 남양의 신역과 수원의 속오군에 대해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남양 현감(南陽縣監) 민시중(閔蓍重)의 상소에 '양민의 신역이 매우 중하여 견디어내지 못한다.** 지금 호적이 새로 완성된 기회를 이용하여 상중하 세 등급으로 호구를 나누어 호마다 베를 내게 함으로써 경비를 충당하게 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 참판 유계가 올린 상소의 뜻과 대략 같으며, 옛 정승 김육도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신이 좌상 홍명하와 상의했더니, '호적이 막 완성되었는데 또 호구에 대한 베를 받아들인다면 필시 백성의 원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그 법은 좋기는 하지만 경솔하게 변통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명년 가을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민시중의 상소 끝에 '**부사 윤계(尹棨)**가 병자년의 난리에 순절하자 휘하의 병사와 장교들이 모두 무너져 흩어졌으나, 군관 송후경(宋後璟), 고을의 아전 김택(金澤)·홍언인(洪彦仁)·홍신(洪信), 관노(官奴) 명길(命吉)과 그의 집종 한 명이 끝까지 지키다가 순절하였고, 후경만 난도질을 당할 때 목숨이 끊기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포

상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의가 가상하니 증직·복호 등의 일을 해조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송후경은 해조로 하여금 수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에게 적당한 벼슬을 제수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兪瑒)**의 상소에 ‘본부의 속오군은 누차 증가시켜서 현재 6천여 명이나 되지만 그 중에는 노약자나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도 많으니, 만일 수를 줄이고 가려 뽑는다면 정예병(精銳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부(府)에 병력이 6천 명을 초과하였으니 너무 많지 않은가. 병력은 정예롭게 만들어야지 숫자만 많이 늘리는 법이 아니니, 노약자는 모두 면제해 주고 정예하고 건장한 자만을 뽑아내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군(馬軍)은 10초(哨)로 한정하고 보군(步軍)은 30초로 한정하되, 영구히 확정된 액수로 삼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相鄭太和曰: “南陽縣監閔蓍重陳疏以爲: ‘良民身役甚重, 不能保存. 今因戶籍新成, 分上中下三等之戶, 戶各出布, 以爲經用.’ 云. 此與故參判兪棨疏意略同, 故相金堉亦爲此說. 而臣與左相洪命夏相議, 則以爲戶籍纔成, 又收戶布, 則必有民怨云矣. 諸臣皆言: ‘法非不善, 而不可率爾變通.’” 上命待明秋更議. 太和曰: “蓍重疏末言: ‘府使尹棨, 死節於丙子之亂, 手下兵校, 無不潰散, 而軍官宋後璟·縣吏金澤·洪彦仁·洪信·官奴命吉及其家奴一人, 終始相守以身殉焉, 獨後璟喉息未絶於亂斫時, 至今生存, 宜示褒奬之意.’ 云. 此人等, 節義可尙, 贈職復戶等事, 請令該曹稟處.” 上從之. 洪命夏曰: “後璟則令該曹收用似宜矣.” 上曰: “相當職除授, 以爲激勸之地.” 太和曰: “水原府使兪瑒疏言: ‘本府束伍, 逐年加增, 至於六千餘人, 而其中多老弱逃故, 若減額抄擇, 則可得精鍊.’ 云矣.” 上曰: “一府之兵, 至過六千, 不已多乎? 兵務精不務多, 其除老弱留精壯者. 馬兵十哨·步兵三十哨, 永爲定額, 無得加減.”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1666) 11월 6일(임오) 2번째기사>

경제/재정
좌의정 권대운이 폐단이 된 남양의 대부도 등의 사슴 진상의 혁파를 아뢰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 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와 인천(仁川)의 자연도(紫燕島)에서는 옛날에 사슴을 사냥하여 진상(進上)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의 거주가 점점 성(盛)하여 사슴이 거의 절종(絶種)되다시피 하여 비싼 값으로 무역하여다 납부하므로 실로 고질된 폐단이 되었으니, 청컨대 금년을 한하여 권도로 감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영구히 혁파하게 하였다.
○引見大臣·備局諸臣. (…) 右議政權大運以南陽大阜島·仁川紫燕島, 舊有臘鹿進上之規, 而卽今人居漸盛, 鹿幾絶種, 重價貿納, 實爲痼弊, 請限今年權減. 上命永罷之.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10월 3일(경오) 2번째기사>

경제/재정
남양 부사 홍호인이 해일에 따른 전결의 급재를 상소하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홍호인(洪好人)이 상소하기를, “본부(本府)에 해일(海溢)이 더욱 심

하여 연사(年事)가 흉년이 들었으니, 원컨대 전결(田結)에 급재(給災)하여 주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금년 봄 진구(賑救)를 설시할 적에 옮겨온 각처의 미곡(米穀)을 모두 본부(本府)에 봉납(捧納) 유치(留置)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절서(節序)가 늦은 뒤에 계속적으로 급재(給災)하는 것은 반드시 모람(冒濫)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단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미곡만 봉납하여 본부(本府)에 유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南陽府使洪好人上疏言, 本府海溢滋甚, 年事失稔, 乞加給災結. 又請今春設賑時, 移轉各處米穀, 竝捧留本府, 備局覆奏以爲, 節晩後續續給災, 必有冒濫之弊, 只許南漢米捧留本府.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1717) 10월 7일(정해) 2번째기사>

경제/재정

남양 부사 최종주가 고을의 폐단과 강도 이전미에 관한 포흠 등에 대해 상소하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최종주(崔宗周)가 상소하여 고을의 폐단을 진달하였고, 잇달아 강도(江都) 이전미(移轉米)에 관한 임자조(壬子條)의 옛 포흠을 우선 정퇴(停退)하여 장차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백성을 무마하고 보호하기를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도록 비답하였다.
○南陽府使崔宗周上疏陳邑弊, 仍請江都移轉米壬子舊逋, 姑爲停退, 使將散四之民, 得以懷保焉, 批令廟堂稟處.
<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1734) 12월 10일(신해) 4번째기사>

경제/재정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양역, 노비, 전정 등을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경기 심리사(京畿審理使) 조명리(趙明履)의 별단(別單)을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명리가 지난번 양역(良役)의 일을 진달한 바가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결역(結役)의 일 역시 청묘법(靑苗法)의 해(害)로 돌아갈까 염려된다. 호포(戶布)는 대동(大同)의 역(役)인데, 추판(秋判)은 심지어 고려(高麗) 말기 쇠퇴할 때의 일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심하게 배척한 논의인 것이다. 고려는 공민왕(恭愍王) 때에 이르러 쇠퇴하였는데 어찌 호포를 말미암아서였겠는가? 지금 첫째의 의(義)는 수령(守令)을 가리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3백 60주에 만약 모두 제 사람을 얻는다면 민력(民力)이 저절로 펴지게 될 것이다." 하니, 형조 판서 이종성이 말하기를, "비록 좋은 법과 정책이라 하더라도 먼저 위에서 기강이 선 연후에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좌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장횡거(張橫渠)의 정전(井田) 제도가 매우 좋습니다. 만약 산골 고을 몇 곳에 인재(人才)를 가려 보내 먼저 시험하면 이웃 고을들이 다투어 그 법(法)을 취해 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역(良役)·결역(結役)중 어느 것이 나은가?" 하니, 송인명이 말하기를, "결포법(結布法)이 가장 근고(近古)에 시행한 것인데 다만 호부(豪富)한 집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심리사(審理使)가 진달한 각 폐단 가운데에서 이천(利川) 등 열 고을의 진전(陳田)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장 심하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 양전(量田)을 행한다는 뜻을 미리 엄히 신칙해야 합니다. 조선(漕船)이 강으로 내려갈 때 양근(楊根)·여주(驪州)의 연안(沿岸) 백성들이 여울을 파는 역(役) 때문에 농사를 폐하기에 이르니, 참선(站船)에 참가해 싣는 일을 마땅히 신금(申禁)해야 합니다. 양성(陽

城)과 파주(坡州) 등 네 고을은 노비(奴婢)가 매우 적어 사객(使客)을 접대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다른 고을의 사노비(寺奴婢)를 적당히 헤아려 획급해 주어야 합니다. 양정(良丁)이 헐한 역(役)에 투속(投屬)하는 폐단이 가장 심하니, 지평(砥平)의 수어둔아병보(守禦屯牙兵保) 및 충순위(忠順衛)에 멋대로 소속된 자는 당초 사천 환정(私賤換定)의 영(令)에 의해 모두 조사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순천(順天)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실은 배가 남양(南陽)에 이르러 파선하여 감색(監色)과 사격(沙格) 등 13명이 8개월 동안 엄히 갇혀 있는데** 옥바라지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연한이 차지 않았으나 별도로 심리사를 보낸 것이 이미 흠휼(欽恤)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원적지(原籍地)인 교하(交河)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미(拯米)의 구포흠(舊逋欠) 가운데 가장 오래된 1년 조(條)를 역시 마땅히 탕감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宋寅明以京畿審理使趙明履別單進, 上曰: "趙明履頃以良役事有所陳, 而予意則結役事, 亦恐同歸於靑苗之害矣. 戶布則大同之役, 而秋判至以麗末衰季事爲言, 此甚斥之論也. 麗以恭愍而衰, 豈由戶布乎? 卽今第一義無如擇守令, 三百六十州若皆得人, 則民力自可紓矣." 刑曹判書李宗城曰: "雖美法良政, 自上先立紀綱, 然後可行矣." 左議政宋寅明曰: "張橫渠井田之制甚好. 若於峽邑數三處, 擇送人才而先試之, 隣邑爭來取法, 則自可不令而行矣." 上曰: "良役·結役, 優劣何如?" 寅明曰: "結布法最爲近古, 但豪富之家不願矣." 又曰: "審理使所陳各弊中, 利川等十邑陳田徵稅爲尤甚, 請待秋行量之意, 預先嚴飭. 漕船下江時, 楊根·驪州沿民, 以掘灘之役, 至於廢農, 站船添載, 宜加申禁. 陽城·坡州等四邑奴婢甚少, 無以接待使客, 宜以他邑寺奴婢, 參量劃給. 良丁之投屬歇役, 爲弊最甚, 砥平守禦屯牙兵保及忠順衛冒屬者, 依當初私賤換定之令, 竝宜査正. 順天稅·大同所載船, 至南陽敗船, 監色·沙格等十三名, 八朔嚴囚, 養獄無人. 雖未準年限, 別遣審理, 旣出欽恤之意, 宜還送原籍官交河. 拯米舊逋最久一年條, 亦宜蕩滅." 竝允之. (…)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1745) 4월 5일(정미) 3번째기사>

경제/재정

영의정 홍봉한이 남양 백성의 진휼에 관하여 아뢰다

영의정 홍봉한이 경기 감사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영진곡(營賑穀) 7백 석을 갈라 주어 **남양(南陽)의 굶주린 백성을 진구하자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領議政洪鳳漢, 因京畿監司狀聞, 劃給營賑穀七百石, 以濟南陽之飢民, 從之.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1월 26일(경신) 2번째기사>

경제/재정

알성 때를 대비하여 성균관에 면포를 주고, 남양·고양의 칠전을 혁파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호조의 면포(綿布) 50필과 병조의 면포 50필, 마포(麻浦) 1백 필을 성균관에 주라고 명하였으니, 알성(謁聖) 때 선비들을 먹일 밑천이었다. **남양(南陽)·고양(高陽)의 칠전(漆田)을 혁파하라고 명하였는데**, 경기 감사 홍계희의 진달한 바로 인해서였다.

○上引見大臣備堂. 命給戶曹綿布五十疋, 兵曹綿布五十疋, 麻布一百疋于成均館, 爲謁聖時餉士之需也. 命革罷南陽·高陽漆田, 因京畿監司洪啓禧所陳也.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1762) 2월 11일(을해) 3번째기사>

경제/재정

의정부에서 포흠한 경창 주인 김성운을 처벌하기를 건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경기 감사(京畿監司) 한정교(韓正敎)가 낱낱이 보고하기를, '**남양(南陽)**의 기미년(1859) 대동미(大同米) 233석(石)을 경창(京倉)의 주인(主人) 김성운(金聖運)이 받아갔는데, 181석은 지금까지 바치지 않고 몇 년을 끌어오고 있으며 겨우 받아들인 것이 돈 1,086냥(兩)이니 특별히 대전(代錢)하여 상납(上納)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공곡(公穀)을 돈으로 대납(代納)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규례이기는 하나 근래에 한두 고을에 특별히 시행하도록 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수령(守令)이 그 수량을 징수하여 장만한 것도 간절하게 심력(心力)을 들인 점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시행하게 허락하소서. 이른바 경창 주인 김성운이 농간을 부려 빼앗은 것이 6년이나 오래되었으니 단연코 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비록 대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바친 것이 있으니 군문(軍門)에 넘겨 조리를 돌린 다음에 형조(刑曹)로 하여금 죽지 않을 만큼 엄히 형신(刑訊)하여 절도(絶島)에 종신토록 충군(充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頃者, 前畿伯韓正敎枚報, '南陽己未大同米二百三十三石, 京倉主人金聖運受去, 而一百八十一石, 尙今不納. 拖至幾年, 僅僅所捧, 爲一千八十六兩, 則特許代錢上納' 爲辭矣. 公穀之以錢代納, 謬例也. 而不但近有一二邑特施而已, 前倅之徵辦此數, 亦不無煞費心力處, 特爲許施. 所謂京倉主人金聖運, 偸弄乾沒, 至爲六年之久, 斷當以法從事. 而雖曰代錢旣有所納, 出付軍門回示後, 令秋曹限死嚴刑, 絶島限己身充軍何如?" 允之.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1864) 5월 22일(신유) 7번째기사>

경제/재정

의정부에서 나라 곡식을 마음대로 유용한 윤영관의 처벌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재응(趙在應)이 남양 부사(南陽府使) 성이호(成彝鎬)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어서 지적한 것을 보니**, '본군(本郡)에서 신유년(1861) 조의 대동미(大同米) 277석(石) 남짓을 임술년(1862) 9월에 서강(西江)에 사는 윤영관(尹永寬)에게 내주었는데 겨우 36석만을 바치고 그 나머지의 쌀 241석 남짓은 4년째 끌어오면서 바치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에 거둔 돈은 겨우 1,440여 냥(兩) 밖에 안 됩니다. 달리 받아낼 방도가 없으니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할 것을 허락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윤가(尹哥)의 형편이 이미 본색(本色)을 기준대로 바칠 방도가 없으니 설사 하는 수 없이 김성운(金聖運)의 전례를 적용하여 대전(代錢)하여 바치도록 특별히 허락한다 하더라도 군문(軍門)에 넘겨 조리를 돌린 뒤에 형조(刑曹)로 이송(移送)하여 두 차례 엄히 형신(刑訊)을 한 다음 원악도(遠惡島)에 그 자신에 한하여 충군(充軍)해야 할 것입니다. 공곡(公穀)을 내어주는 일은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소비해버렸으니 그 당시의 수령(守令)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죄를 바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공곡을 마음대로 유용한 자에게 대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공납(公納)을 잃지 않으려는 뜻이다. 그러나 선주(船主)란 사람이 백성들에게서 법대로 다 받았는데 끝내 상정가

로 마감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으니, 어디에 그런 법이 있단 말인가? 이제 형배(刑配)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형정(刑政)이다. 김성운은 이미 조율(照律)하였으나 이제 또 윤영관까지 군사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위의 두 놈은 단연 일률(一律)에 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더 엄히 처리하여 들이라." 하였다.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趙在應枚擧南陽府使成彝鎬牒呈, 以爲: '本郡辛酉條大同米二百七十七石零, 壬戌九月, 出給西江居尹永寬矣. 只以三十六石上納, 而餘米二百四十一石零, 拖至四年, 尙今未納, 其間所捧錢, 僅爲一千四百四十餘兩. 而無他責納之道, 特許詳定代捧'爲辭矣. 尹漢事勢, 旣無本色準納之道, 雖不得已用金聖運例, 許令代錢捧納, 而出付軍門回示後, 移送秋曹, 嚴刑二次, 遠惡島限己身充軍. 公穀出給, 何等審愼? 而致此消融, 其時守令, 令該府拿問正罪何如?" 敎曰: "公穀之恣意犯用者, 許其代錢, 卽不失公納之意也. 然名以船主, 準捧於民, 而畢竟詳定磨勘, 看作能事, 寧有如許法令? 今此刑配, 大失刑政, 金聖運雖已照律, 今又尹永寬則不可以充軍而止. 右項兩漢之置之一律, 斷不可已也, 更加嚴處以入."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1864) 9월 5일(계묘) 3번째기사>

경제/재정

의정부에서 공가를 예전처럼 순미로 지급할 것을 아뢰자 윤허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의 보고를 보니, '이천부(利川府)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포구 창고가 여주(驪州) 길천면(吉川面) 양 화진(楊花津)에 있는데 전세미(田稅米) 366석(石)을 그 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 창고 아래의 민가에서 우연히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불이 창고 건물에까지 미치는 바람에 세미(稅米) 가운데 123석만 겨우 건졌고 243석은 남김없이 타버렸습니다. 지금 만약 본색(本色)으로 바치도록 다그친다면 형편상 장차 백성에게 결세를 징수할 터이고 가난한 백성들의 힘으로는 다시 마련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타버린 쌀 243석은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토록 허락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잔읍(殘邑)에서 거듭 마련한다는 것은 과연 실행할 수 없는 정사이니,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인(貢人)들에게 폐막에 대한 소회(所懷)를 하문하시고 본부에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소회를 가져다 보니, 첫째, 봉상시(奉常寺)의 공인들은 말하기를, '공물의 석수(石數)가 1만 3,000석인데 병인년(1866)에 소용에 따라 감합(勘合)한 이후로 매년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금 형편으로는 책응(責應)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병인년 이전의 규례에 의하여 지출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거둥하시는 길에 폐막을 묻는 것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려는 거룩한 뜻에서 특별히 나온 것이니, 각별히 바로잡아 구제하는 은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공가(貢價)를 옛 규례대로 지급해서 공인들을 지탱하고 보존하도록 해 주라고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분부하소서.

둘째, 제용감(濟用監)의 공인들은 말하기를, '각 항목의 진배(進排)할 물종이 너무 많은데, 남은 물건과 더 쓴 물건을 계산해 맞출 수 없으므로 해마다 빚을 져서 형세상 지탱하고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공인이 관장하는 물종은 매년 더 쓴 물건이 있고 남는 물건이 있는데, 더 쓴 물건과 남는 물건을 계산해 맞추지 못한다면 빚만 자꾸 늘어나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그런 바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는 물건과 더 쓴 물건을 서로 계산해 맞추는 것은 옛 규례에 비추어 시행하게 하소서.

셋째, 염계(鹽契)의 공인들은 말하기를, '공가(貢價)는 본래 순미(純米)로만 받았는데, 대

전(代錢)으로 지불하는 것이 그만 근래의 규례 물가는 2배나 5배가량 올라 쓸데없는 비용이 더욱 많아져서 점점 거덜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기(近畿)의 소금 생산지인 남양(南陽)·인천(仁川)·안산(安山) 등지에 약간의 세금을 거두어 비용에 보충해 쓰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잔약한 공인들의 공물입니다. 그들이 받는 것으로 공급에 수용한다는 것은 시행할 수 없는 일이며, 소금을 생산하는 읍에서 세금을 거두어 보충해 쓰는 것은 구차한 정사입니다. 거행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니 공가를 구례에 의하여 순미로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펴는 방도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二十一日. 議政府啓: "卽見京畿監司金輔鉉所報, 則'利川府捧稅浦倉, 在於驪州吉川面楊花津, 而田稅米三百六十六石, 積置該倉矣. 倉底民家偶然失火, 延及倉舍, 稅米中一百二十三石, 僅得救出, 二百四十三石燒燼無餘. 今若以本色責納, 則勢將還徵結民, 而窮蔀事力, 末由更辦. 被燒米二百四十三石, 特許詳定代納'爲辭矣. 殘邑重辦, 果是行不得之政. 請依所報施行." 允之. 又啓: "貢人詢瘼所懷, 啓下本府矣. 取見其所懷, 則: 一, 奉常寺貢人等以爲: '貢物石數一萬三千石, 而自丙寅隨用勘合以後, 每年無利太多. 以今事勢, 責應無路. 特依丙寅以前例上下事也.' 蹕路詢瘼, 特出於矜恤之聖意, 則合有別般矯捄之澤. 該貢貢價, 依舊例上下, 以爲支保事, 分付戶惠廳. 一, 濟用監貢人等以爲: '各項物種, 進排浩多, 遺在加用, 不得相計, 年年負債, 勢難支保事也.' 該貢所管物種, 每年有加用者, 有遺在者. 而其用其在, 不得相計, 則債負之太多, 勢所必致. 自今遺在加用, 互相通計, 照舊規施行. 一, 鹽契貢人等以爲: '受價, 本以純米. 而代錢上下, 便成近例. 物價倍蓰, 浮費尤多, 轉致蕩敗. 就近畿鹽産邑**南陽**·仁川·安山等地, 從略收稅, 以爲補用事也.' 此是至殘之貢也. 以其所受, 應其所供, 行不得者. 而産鹽邑之收稅補用, 苟且之政也. 不當擧議, 貢價依舊以純米上下, 俾爲一分紓力之道何如?" 竝允之.

<고종실록 17권, 고종 17년(1880) 7월 21일(정해) 1번째기사>

경제/재정

선혜청에서 조세를 돈으로 대납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뢰다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정식 조세 제도의 법의(法意)가 얼마나 엄격하고 중대합니까? 요즘 경기(京畿)의 몇 개 고을에서 햇수를 한정하여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게 하여 줄 것을 청한 것이 물론 백성들을 돌봐주는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현재 경비가 궁색한 것도 딱한 문제입니다. **여주(驪州)와 남양(南陽)을 제외하고**, 그밖에 대전(代錢)하도록 허락한 각 고을에 대하여 모두 다 시가(時價)로 대전하게 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묘당(廟堂)에 가서 의논하라." 하였다.

宣惠廳啓: "正賦法意, 何等嚴重? 而近來畿甸幾邑之限年請代, 雖出於恤民, 目下經費之窘絀, 亦涉可悶. 驪州·**南陽**外許代各邑, 竝令以時價代納, 以爲一分牽補之地何如?" 敎曰: "就議廟堂."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4월 6일(갑술) 3번째기사>

경제/재정

선혜청 당상 어윤중에게 견삭의 형전을 시행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과 관련하여, 죽산(竹山) 등 7개 고을의 조세에 대하여 햇수를 한정하여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게 하는 내용으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혜청(宣惠廳)에서 올린 초기(草記)를 보니, **여주(驪州)와 남양(南陽)을 제외하고** 그 밖의 대전(代錢)하도록 허락한 각 고을에 대하여 모두 다 시가(時價)로 바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데 대하여 누군들 우려하고 딱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곤궁한 백성들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참작하고 헤아린 것이 어찌 조세를 맡아보는 관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선혜청에서 직접 구별할 것을 청하고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하였으니, 사체를 어그러뜨리고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해당 당상(堂上官) 어윤중(魚允中)에 대하여 견삭(譴削)의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頃因畿伯狀請, 竹山等七邑結稅, 限年詳代之意, 覆啓蒙允. 而卽見惠廳草記, '驪州·南陽外許代各邑, 竝以時價代納'爲辭矣. 國計艱絀, 孰不憂悶? 然而軫念窮蔀, 亦由不容不已者. 則廟堂斟量, 豈下於掌賦之臣而該廳之直請區別, 擅自存拔? 事體乖損, 莫此爲甚. 該堂上魚允中, 施以譴削之典何如?" 允之.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4월 6일(갑술) 4번째기사>

경제/재정

해연총제영에서 재정 확보의 방법에 대해 아뢰다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내무부(內務府)에 계하(啓下)한 절목(節目)으로 인하여 전에 통어영(統禦營)에서 관할하던 각 관방(官房)의 면세결(免稅結)을 본영(本營)에 이부(移付)하여 군수(軍需)에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남양(南陽)과 옛 안산(安山)의 부세(賦稅)가 면제된 것 이외의 실결(實結)은 충청도(忠淸道) 각읍(各邑)에 소재한 면세결 중에서 바꾸어 획급(劃給)하여 편의대로 남는 것을 취해 수용(需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海沿總制營啓: "頃因內務府啓下節目, 前統禦營所管各官房免稅結, 移付臣營, 以補軍需矣. 南陽及舊安山免賦稅外實結, 以忠淸道各邑所在免稅結中換劃, 以便取剩需用何如?" 允之.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10월 1일(기유) 5번째기사>

경제/재정

선혜청 당상 민영준이 총제영의 군량 확보에 안산의 면세전을 획급 문제를 아뢰다

응제(應製)를 시취(試取)하는 데 입시(入侍)했을 때에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官)인 민영준(閔泳駿)이 아뢰기를, "숙묘조(肅廟朝) 계사년(1713)에 북한 산성(北漢山城)을 설치한 후에 평창(平倉)을 창의문(彰義門) 밖에 그대로 두고서 곡식을 저장하고 백성을 모집한 것은 경성(京城)과 매우 가까운 곳이며 구석진 산골짜기에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京畿) 11읍(邑)의 대동미(大同米)를 해당 수령(守令)들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스스로 가져다 바치면, 본청(本廳)에서는 묵은 곡식을 쓰고 햇곡식을 저축하여 위급한 때의 수요에 대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제영(總制營)에서 남양(南陽)과 옛 안산(安山)의 부세(賦稅)가 면제된 것 외의 실결(實結)을 충청도(忠淸道) 각읍에 소재한 면세결(免稅結) 중에서 바꾸어 쓰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산(安山)은 바로 스스로 가져다 바치는 고을인데, 이제 면세결을 모두 획급한다면 조세를 받는 데에 축이 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창고를 설치한 것은 일의 체모가 각별하니 이 읍에 획급한 면세결을 만약 스스로 바치는 고을 이외의 고을로 이획(移劃)한다면 본

청에는 예전대로 저축이 있게 될 것이고, 해영(該營)은 이자를 취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되어 사의(事宜)에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應製試取入侍時, 宣惠堂上閔泳駿奏曰: "肅廟朝癸巳北漢山城制置後, 仍置平倉于彰義門外, 儲穀募民者, 以京城密邇之地, 有山谷荒僻之慮. 畿甸十一邑大同米, 該守令領民自納, 而自本廳, 用舊苗苗新, 以爲緩急需用之備者. 而今自總制營, 以南陽及舊安山免賦稅外實結以忠淸道各邑所在免稅結中換用事, 有所草記而蒙允矣. 安山卽自納之邑也, 今以免稅結沒劃, 則捧賦見縮, 勢所必至. 當初設倉, 事體自別, 此邑所劃免稅結, 若令移劃於自納以外之邑, 則本廳有儲蓄之依舊, 該營無取剩之掣礙, 甚合事宜. 以此變通何如?" 允之.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10월 12일(경신) 2번째기사>

경제/재정

남양부사 임치재가 바람으로 손실된 재결의 획하를 요청하다

(…) 또 아뢰기를, "지금 해연도총제사(海沿都總制使) 민응식(閔應植)의 장계(狀啓)를 보니, **남양 부사(南陽府使) 임치재(任穉宰)의 첩보(牒報)를 일일이 들면서 '바람으로 손실된 재결(災結) 3결(結) 30부(負)에 대해 수량대로 획하(劃下)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바닷가 지방에서 바람으로 재해를 남달리 많이 받는데 영세한 백성들에게서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은 실로 가련한 일이니 특별히 획하하여 조정의 고마운 뜻을 보이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二十八日. (…) 又啓: "卽見海沿都總制使閔應植狀啓, 則枚擧南陽府使任穉宰牒報, '風損災三結三十負, 準數劃下' 爲辭矣. 濱海之地, 偏受風災, 殘民冤徵, 實係矜恤, 特爲劃下, 以示朝家德意事行會何如?" 允之. (…)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12월 28일(병자) 1번째기사>

⑵ 상업

경제/상업

경리 도감이 중국과 무쇠를 매매하면서 생긴 문제로 아뢰다

경리 도감이【접반사 심희수】아뢰기를, "중국의 상인들이 양호(兩湖)의 무쇠를 노략하는 폐단이 몹시 가증스럽습니다. 경리 역시 법규를 만들어 금지하며 이에 대한 담당관을 설치하여 가차없이 다스렸습니다. **그중 조유경(趙惟卿) 등 몇 명이 강화(江華)·남양(南陽) 등지에서 민간의 무쇠를 모아 공정한 값으로 무역해 왔으니**, 이는 처음부터 탈취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없어 실어가지 못하고 강변에 버려두게 되었고, 궁한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받은 원가를 다 써서 본주(本主)에게 배상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경리가 우리 나라에서 금지하라고 요구한 자문을 허락하였다가, 곧 유경 등의 호소로 인해 동지(同知) 한초명(韓初命)에게 지시를 내려 재차 조사하여 다시 우리 나라에 자문을 보내게 하였으니, 그간 사세로 보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변사는 군량을 운반하는 일의 시급함과 조선(漕船)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리에 맞게 거절의 회자(回咨)를 보내고 돌아가는 사선(沙船)으로 하여금 양곡을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유경 등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날마다 한 동지에게 호소하였는데 동지는 이미 그들의 뇌물을 받고도 종시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유감의 뜻을 많이 품고 이 기고(李旗鼓)에게 다시 이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이 기고가 늘 신 희수에게 말하기를 '조운하여 강에 이르렀다가 빈 배로 돌아가는데 무슨 부족한 걱정이 있어 그대 나라에서는 감히 핑계대는 말로 거절하여 천조의 객상(客商)이 은만 허비하고 빈 손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무슨 경우인가. 이미 원가도 배상하지 못하고 또 배를 허락해 주지도 않으니 억울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무겁고 부패한 사선이 멀리 해구(海口)에 떠 있으니 어찌 무쇠를 싣고 경사(京師)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비록 처음에 기대한 16척의 숫자에는 차지 못하더라도 7, 8척만 허락해 보내주면 충분히 싣고 갈 수 있다. 이는 곧 만 노야(萬老爺)의 뜻이다.' 고 하기에, 신이 앞서 이 뜻으로 비변사에 말하였고 비변사 역시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계(防啓)되어 갑자기 다시 개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신으로 하여금 사실을 갖추어 계품하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일은 매우 난처합니다. 민간이 받아 쓴 원가를 관가에서 징수해 줄 수도 없고, 객상 등이 스스로 징수하도록 허락하면 그 분함을 품고 억압하여 원가 이외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는데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장차 이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자(原咨)에 이른바, 선가(船價)를 호조에 바친다는 것은 진실로 실행할 수 없거니와, 만약 편리에 따라 선처하여 선인(船人)이 운임을 받고 실어가도록 허락하면 양편이 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국 상인의 모리배를 어찌 일체 같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장관(將官)이 지금 철수에 임해 일일이 모두 불평하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중한 일입니다. 다시 해조로 하여금 잘 상의하여 후회가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經理都監【接伴使沈喜壽】啓曰: "唐商人等, 搶掠兩湖水鐵之弊, 好生可惡. 經理亦設法禁止, 至於設官不之饒, 其中趙惟卿等若干人, 於江華·南陽等地, 貿取民間水鐵, 兩平交易而來, 初非强搶之比, 而無船不能載去, 棄置江邊, 窮民盡用原價, 勢難賠還本主. 當初經理, 雖准許我國禁止之咨, 而旋因惟卿等訴悶, 批下韓同知再查, 致令更爲移咨於我國. 其間事勢, 不容不勉副, 而備邊司以運糧方急, 漕船不足之意, 據理搪塞回咨, 許令撤去沙船載運. 趙惟卿等不勝

怨憤，逐日告訴於韓同知，同知旣受其賂，而終不得施行，多有憾恨之意，轉囑於李旗鼓．旗鼓常言於臣喜壽曰：‘漕運到江，空還之船，有何不足之患，而爾國乃敢游辭搪塞，以致天朝客商，虛費銀子，空手以歸? 此何事體? 旣不使賠價，又不肯許船，冤抑莫甚．質重腐敗之沙船，遠在海口，豈堪載鐵回京? 雖未滿當初所望十六船之數，而若許送七八隻，則可以運去．此乃萬老爺之意’ 云，臣頃以此意，言于備邊司，則備邊司亦以爲然．而旣已防啓，似難遽爾更改，令臣具由啓稟云．大抵此事極難處．民間原價，旣不得自官家徵給，若許客商等自徵，則其乘憤抑勒，數外濫取，何所不至? 孑遺之民，將無以應之，誠非細慮．原咨所謂納船價於戶曹者，固不可行，而若隨便善處，許令船人，受價粧載而去，則似爲兩便．唐商牟利之徒，豈能繩之以一切之法哉? 諸將官今當撤去， 事事皆有不平之意， 而此是最重之事也． 更令該曹， 商確得宜， 俾無後悔何如?” 傳曰：“依啓．”

<선조실록 117권, 선조 32년 9월 9일(을묘) 4번째기사>

(3) 교통

경제/교통

강화부 목장의 거주민을 남양, 금천, 통진 등지의 혁파된 목자으로 이주시키다

한성부 윤 김소(金素)와 대호군 고득종(高得宗)이 계하기를, "강화부 경내에 목장으로 적당한 곳은 남진강(南鎭江)에서부터 대청포(大靑浦)까지 1만 1천 6백 자[尺]이고, 서쪽으로는 건동을포(巾冬乙浦)까지 5천 8백 자이온대,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땅을 합쳐서 한 목장을 만들면 주위가 60리 가량이오니, 비록 만 마리의 말을 먹일지라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합니다. 또 강화를 제주에 비하면, 제주는 기후가 따뜻하여 풀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도 마르지 아니하오나, 강화는 겨울에는 눈이 많고 풀이 마르므로, 모름지기 마른 풀을 예비해서 한 겨울에 먹여서 길러야만 여위고 죽은 걱정을 면할 것입니다."
하므로, 병조에 내려 위논하기를 명하니, 병조에서 의논하여 계하기를,
"소와 말은 원래 들짐승이므로, 사철 놓아 먹여도 번식할 수 있으나, 목장을 만들 만한 곳이 없어서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므로, 곡초를 수합하고 먹이는 콩을 허비하게 되니, 여러 해 동안의 폐단을 어찌 다 말하리까. 청하건대 아뢴 바에 의하여 각 고을에 분담시켜서 담을 쌓아 목장을 만들고는, 각 고을에 나눠서 기르는 말을 그 안에다 모아서 먹이고, 각 포구(浦口)에 당한 영선군(領船軍)으로 하여금 풀을 베어 말려서 목장 안에 쌓아 두었다가 겨울에 먹일 준비를 하면, 가히 오랫동안 나눠서 기르는 폐를 없앨 것이오니 가장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그 목장 안에 거주하는 백성 3백 38호는 금천(衿川)·개성·남양·통진 등의 목장을 혁파(革罷)한 땅에 자원대로 이주하기를 허락하며**, 그들의 전토(田土)에 담을 쌓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漢城府尹金素·大護軍高得宗啓: "江華府境內牧場可當之處, 自南鎭江至大靑浦一萬一千六百尺, 西至巾冬乙浦五千八百尺, 其間閑曠之地, 合爲一場, 則周回可六十里, 雖放萬馬, 水草俱足. 且以江華比之濟州, 濟州風氣溫暖, 草木經冬不枯, 江華冬月雪深草枯, 須預備茭草, 隆冬養飼, 然後可免瘦損之患." 命下兵曹議之. 兵曹議啓: "牛馬元是野獸, 四時放牧, 可以蕃息, 但無可作場處耳. 分養各官, 收合穀草, 虛費料豆, 積年之弊, 可勝言乎? 請依所啓, 令各官分受, 築垣作場, 將各官分養馬, 合牧於其中, 使各浦當領船軍, 刈取茭草, 積之場內, 以備冬月喂養, 則可以除積年分養之弊, 最爲便益. 其場內居民三百三十八戶, 於衿川·開城·**南陽**·通津等革罷牧場之地, 許從自願移居, 其田四面, 願築墻仍留者聽." 從之.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계묘) 7번째기사>

경제/교통

최윤덕과 문귀를 강화·남양의 여러 섬에 보내어 목장의 말을 점고 검열하게 하다

판부사 최윤덕(崔閏德)을 강화(江華)의 여러 섬에, 동지돈녕부사 문귀(文貴)를 **남양**(**南陽**)의 여러 섬에 보내어 목장의 말들을 점고 검열(點考檢閱)하게 하였다.
○遣判府事崔閏德于江華諸島, 同知敦寧府事文貴于**南陽**諸島, 點閱牧場馬.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1428) 4월 24일(병자) 4번째기사>

경제/교통

감목관을 혁파하고 각 목장을 그 지방 수령으로 겸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의 도련포 목장(都連浦牧場)은 함흥 소윤(咸興少尹)으로, 말응

도 목장(末應島牧場)은 영흥 판관(永興判官)으로, 두언태 목장(豆彦台牧場)은 지단천군사(知端川郡事)로, 마랑이도 목장(馬郎耳島牧場)은 홍원 현감(洪原縣監)으로, 반상사눌도 목장(反上四訥島牧場)은 용진 현령(龍津縣令)으로, 충청도의 대산곶 목장(大山串牧場)은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로, 흥양곶 목장(興陽串牧場)은 결성 현감(結成縣監)으로, 원산도 목장(元山島牧場)은 고만 만호(高蠻萬戶)로, 개야소도목장(開也召島牧場)은 서천포 만호(舒川浦萬戶)로, 난지도 목장(難智島牧場)은 당진포 만호(**唐津浦**萬戶)로, 전라도의 지도 목장(智島牧場)은 함평 현감(咸平縣監)으로, 도양곶 목장(道陽串牧場)은 지고흥현사(知高興縣事)로, 임치도 목장(臨淄島牧場)은 우도 도만호(右道都萬戶)로, 장산도 목장(長山島牧場)은 주량도만호(周梁都萬戶)로, 자은도 목장(慈恩島牧場)은 다경포 만호(多慶浦萬戶)로, 경상도의 오해항 목장(吾海項牧場)과 석을포 목장(石乙浦牧場)은 지동래현사(知東萊縣事)로, 가조음도 목장(加助音島牧場)은 지거제현사(知巨濟縣事)로, 경기도의 자연도(紫燕島)·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목장은 지인천군사(知仁川郡事)로, **대부도(大阜島)·여흥도(呂興島) 목장은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 덕적도(**德積島**)·사야곶(士也串)·이작도(伊作島)·소홀도(**召忽島**) 목장은 좌도 첨절제사(左道僉節制使)로, 매도(**煤島**)·장봉도(**長峯島**)·위도(位島) 목장은 정포 만호(井浦萬戶)로, 주문도(注文島)·보음도(甫音島) 목장은 우도 첨절제사(右道僉節制使)로 겸해 임명하고, 감목관(監牧官)은 모두 혁파(革罷)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啓: "咸吉道都連浦牧場以咸興少尹· 末應島牧場以永興判官·豆彦台牧場以知端川郡事·馬郎耳島牧場以洪原縣監·反上四訥島牧場以龍津縣令, 忠淸道大山串牧場以知瑞山郡事, 興陽串牧場以結城縣監, 元山島牧場以高蠻萬戶·開也召島牧場以舒川浦萬戶·難智島牧場以**唐津浦**萬戶, 全羅道智島牧場以咸平縣監·道陽串牧場以知高興縣事·臨淄島牧場以右道都萬戶·長山島牧場以周梁都萬戶·慈恩島牧場以多慶浦萬戶, 慶尙道吾海項牧場及石乙浦牧場以東萊縣事·加助音島牧場以巨濟縣事, 京畿紫燕島·龍流島·無衣島牧場以知仁川郡事·**大阜島**·呂興島牧場以**南陽都護府使**·**德積島**·士也串·伊作島·**召忽島**牧場以左道僉節制使·**煤島**·**長峯島**·位島牧場以井浦萬戶·注文島·甫音島牧場以右道僉節制使兼差, 竝革監牧官何如?" 從之.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5일(무오) 2번째기사>

경제/교통

남양에서 침몰한 조운선으로 피해입은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다

경기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이 4월 초1일에 큰 바람이 불어 전라도 조운선(漕運船) 6척이 교동(喬桐)에서 파손되고, **충청도 조운선 2척이 남양(南陽)에서 파선되었는데,** 배를 압령한 사람이 옷과 식량을 잃어서 혹 기한(飢寒)으로 인하여 죽을까 염려되니, 옷과 양식을 알맞게 주고 그 깨어진 배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여 주어 처소를 잃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고, 또 충청도 감사에게 이르기를, "전라도 조운선 1척이 안흥량(安興梁)에 이르러 깨어져서 전선이 복몰(覆沒)하여 배를 압령하는 사람이 옷과 양식을 다 잃었으니, 기한(飢寒)으로 고생할까 염려되니 옷과 양식을 알맞게 주어 처소를 잃지 않도록 호송하라." 하였다.

○辛酉/諭京畿監司: "今四月初一日, 大風, 全羅道漕運船六艘敗於喬桐, 忠淸道漕運船二艘敗於**南陽**, 押船人失其衣糧, 恐或至飢寒而死, 衣糧隨宜題給. 其破船可修葺者, 修葺而給之, 不至失所." 又諭忠淸道監司曰: "全羅道漕運船一艘, 至安興梁觸石而敗, 全船覆沒, 押船人盡失衣糧, 恐至飢寒, 衣糧隨宜題給, 不至失所護送."

<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4월 6일(신유) 1번째기사>

경제/교통

강원도 수원의 양야곶이 목장을 남양 부사로 감목관을 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도 수원(水原)의 양야곶이[陽也串] 목장(牧場)이 남양(南陽)에 가까우니, 청컨대 이제부터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하여금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소서**."

하고, 또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교지(敎旨)를 내리시기를, '제도(諸道)의 효자(孝子)를 경기(京畿) 3인, 경상도가 8인, 전라도 6인, 모두 17인을 서용(敍用)하라.' 하셨으나, 동서반(東西班)에 결원[窠闕]이 없으니, 청컨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고, 원래 벼슬이 있는 자는 가자(加資)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啓: "京畿水原**陽也串**牧場, 近於**南陽**, 請自今令**南陽府使**兼監牧官." 又據吏曹呈啓: "曾降敎旨, '諸道孝子, 京畿三人·慶尙道八人·全羅道六人, 凡十七人敍用.' 然東西班無窠闕, 請授散官職, 元有職者加資." 竝從之.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3일(정묘) 2번째기사>

경제/교통

병조에서 수원의 목장의 관리에 대해 건의하다

병조(兵曹)에서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는 이미 경내(境內)의 목장(牧場) 여섯 곳을 관할하는데**, 지금 또 수원(水原) 양야곶이[陽也串]의 목장을 겸하니, 수원부(水原府)에서 양야곶이는 다른 읍의 소관(所管)이라 하여 건초(乾草)를 베는 등의 일을 반드시 주의하여 검찰(檢察)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수원 부사에게 겸하여 관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寅/兵曹據司僕寺提調狀啓: "**南陽府使**已管境內牧場六處, 而今又兼水原**陽也串**牧場, 水原府以**陽也串**他邑所管, 如刈芟草等事, 必不用意檢察. 請以水原府使兼管." 從之.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2월 18일(경인) 1번째기사>

경제/교통

병조에서 각도(各島)에 국마를 방목케 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兵曹)에서 사복시(司僕寺)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장흥(長興)의 조역도(助役島)는 말 3백여 필을 방목(放牧)할 만하고, 진도(珍島)의 가아도(加兒島)는 3백여 필, 흥양(興陽)의 녹도(鹿島)는 20여 필, 이매도(伊每島)는 1백여 필, 경상도 하동(河東)의 갈도(葛島)는 15필, 거제(巨濟)의 조음도(助音島)는 80여 필, 평안도 수천(隨川)의 내장지도(內獐只島)는 50여 필, 외장지도(外獐只島)는 70여 필, 정주(定州)의 애도(艾島)는 70여 필, 철산(鐵山)의 저지도(楮只島)는 20여 필, 선천(宣川)의 접도(蝶島)는 30여 필, 탄지도(炭只島)는 1백여 필, 대화도(大和島)는 1백 20여 필, 함길도 문천(文川)의 거도(柜島)는 1백여 필, 덕원(德源)의 연도(連島)는 50여 필, 안변(安邊)의 예도(禮島)는 30여 필, 충청도 보령(保寧)의 동비도(冬非島)는 50여 필, 경기 강화(江華)의 모도(茅島), **남양(南陽)의 말근도(末斤島)는 50여 필을 방목 할 수 있는데, 헛되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자원에 따라 국마(國馬) 암수를 주어 방목하게 하고, 각기 수호하여 3년 뒤에 암말 10필마다 어린 숫말[雄馬] 한 필을 세공(歲貢)으로 바쳐서 국용(國用)을 삼게 할 것이며, 이 밖의 작

은 여러 섬에 스스로 점령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어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司僕寺牒呈啓: “全羅道長興助役島可放馬三百餘匹, 珍島加兒島三百餘匹, 興陽鹿島二十餘匹, 伊每島百餘匹. 慶尙道河東葛島十五匹, 巨濟助音島八十餘匹. 平安道隨川內獐只島五十餘匹, 外獐只島七十餘匹. 定州艾島七十餘匹, 鐵山楮只島二十餘匹. 宣川蝶島三十餘匹, 炭只島百餘匹, 大和島百二十餘匹. 咸吉道文川柜島百餘匹, 德源連島五十餘匹, 安邊禮島三十餘匹. 忠淸道保寧冬非島五十餘匹. 京畿江華茅島·南陽末斤島五十餘匹, 不可虛棄. 請從自願, 給國馬雌雄放之. 各自守護, 三年後, 每雌馬十匹, 令歲貢, 兒雄馬一匹, 以爲國用. 此外又於小小諸島, 欲自占者聽.” 從之.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2월 21일(계사) 3번째기사>

경제/교통

사복시 제조 윤호 등이 강화 보음도를 경작하지 말기를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윤호(尹壕) 등이 와서 아뢰기를,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는 땅은 넓고 말[馬]이 적으니 비록 둔전(屯田)을 두더라도 진실로 목장(牧場)에 방해될 것이 없지만**, 강화(江華)의 보음도(甫音島)와 같은 곳은 큰 바다 가운데의 절도(絶島)인데다가 경작할 만한 땅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호조(戶曹)에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목장을 개간하게 될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마정(馬政)이 실패할 듯하니, 청컨대 경작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僕寺提調尹壕等來啓曰: “南陽大部島則地廣馬少, 雖置屯田, 固無害於牧場. 若江華甫音島則大海中絶島也, 可耕之地不甚多, 而戶曹請許民耕作. 臣等以謂牧場開墾之漸自此始, 而馬政虧矣. 請勿許耕.” 不聽.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5일(갑오) 4번째기사>

경제/교통

승정원이 의관에게 급마하는 것이 전례가 없음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의관(醫官)에게 급마(給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일 손사균(孫士鈞)은 어의(御醫)로서 먼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속히 갔다 돌아와야 했기에 다만 미안하다는 뜻만을 진달했던 것입니다. 유지번(柳之蕃)【의관이다】은 하룻길이고 당일 갔다 돌아올 수 있는데도 이제 또 급마하신다면 격례(格例)가 이루어질까 염려되어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양(南陽)이 비록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요즘의 어의들은 옛날과는 자못 달라서 내시(內侍)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급여를 명했던 것인데**,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급마는 상명(上命)에서 나오는 것이니 비록 예(例)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군명(君命)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예가 될 수 있겠는가. 아뢴 내용이 마땅하니 주지 말라. 근래 신하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정원이 경솔히 잡언(雜言)을 아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였다.【상(上)에게 심양(心恙)이 있어서 진언(進言)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아뢰는 일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답이 이러한 것이 많았다. 며칠 뒤 헌부가 차자를 올려 그 불가함을 말했지만 상은 위유(慰諭)했을 따름이었다】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드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己酉/政院啓曰: “醫官給馬, 無前例, 而前日孫士鈞, 以御醫不可久留於遠地, 當速往還, 故

只達未安之意矣. 柳之蕃【醫官】, 則一日之程, 可指日往來. 此又給馬, 則恐成格例. 敢稟." 傳曰: "南陽雖近地, 今之御醫, 比古頗殊, 與內侍無異, 故特命給馬, 出於予之妄料. 而凡給馬皆出於上命, 雖曰有例, 若無君命, 則不得給也. 然則豈至於成例乎? 啓意亦當, 勿給可也. 近來臣不畏君, 政院輕啓雜言, 非矣." 【上有心恙, 不喜進言. 凡啓事者, 稍有違拂, 答之多如此. 後數日, 憲府上箚, 言其不可. 上慰諭之而已】政院啓曰: "今承傳敎, 不勝惶恐." 傳曰: "知道."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윤10월 22일(기유) 1번째기사>

경제/교통

사복시가 마정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여 차출한 감목관 명단

사복시가 마정(馬政)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병조와 같이 논의하여 특별히 감목관(監牧官)을 차출하여 그에게 감목하는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하여 그 번식의 다과(多寡)를 관찰하여 출척(黜陟)하게 하였다. 그리고 따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입계(入啓)하면서 우선은 마필(馬匹)이 많은 곳에 먼저 시험토록 했다. 문무관(文武官)과 문음(門蔭)을 막론하고 가려 차임하고, 파산인(罷散人)은 무록 군직(無祿軍職)을 주고, 긴요하지 않은 경직(京職)은 그대로 띠고 부임하게 하였는데, 인천(仁川)의 이성남(李誠男), 남양(南陽)의 이몽상(李夢祥), 강화(江華)의 민건(閔健), 수원(水原)의 장언년(張彦年), 홍주(洪州)의 노극제(魯克濟), 강령(康翎)의 정흡(丁翕), 장기(長鬐)의 김경눌(金景訥), 동래(東萊)의 도원량(都元亮), 거제(巨濟)의 조명(趙銘), 진주(晉州)의 안희(安熹), 순천(順川)의 이응시(李應時), 흥양(興陽)의 조사겸(趙思謙), 해남(海南)의 조영규(趙英珪), 여주(驪州)의 최시망(崔時望), 영광(靈光)의 최희열(崔希說), 단천(端川)의 이응호(李應虎), 철산(鐵山)의 강의봉(康儀鳳)이다.

○庚辰/司僕寺, 以馬政虛踈, 與兵曹同議, 別出監牧官, 使之專掌監牧, 限三年觀其孳息多少, 而黜陟之. 別爲事目入啓, 姑於馬匹多在處先試. 勿論文武官及門蔭擇差, 罷散人, 則付無祿軍職, 不緊京職, 則仍帶赴任, 仁川 李誠男, 南陽李夢祥, 江華閔健, 水原張彦年, 洪州魯克濟, 康翎丁翕, 長鬐金景訥, 東萊都元亮, 巨濟趙銘, 晋州安熹, 順天李應時, 興陽趙思謙, 海南趙英珪, 羅州崔時望, 靈光崔希說, 端川李應虎, 鐵山康儀鳳.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2월 21일(경진) 1번째기사>

경제/교통

준마를 제주도에서 사들여 남양 대부도에서 번식시키게 하다

사복시(司僕寺)의 말[言]에 의하여 준마(駿馬) 68필을 제주(濟州)에서 사들여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에서 번식시켰다.

○朔乙巳/因司僕寺言, 貿駿馬六十八疋于濟州, 孳息于南陽大阜島.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10월 1일(을사) 1번째기사>

⑷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옛 성현들의 예를 들어 백성들이 부지런히 농사에 힘쓸 것을 하교하다

하교(下敎)하기를,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인데, 농사(農事)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왕자(王者)의 정치에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오직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천명에 관계되는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勞苦)를 복무(服務)하게 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誠心)으로 지도하여 거느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써서 농사에 종사하여 그 생생지락(生生之樂)을 완수(完遂)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 옛날 신농씨(神農氏) 같은 이는 처음으로 쟁기와 보습[耒]을 만들어서 천하를 이롭게 하였고, 소호씨(少昊氏)는 구호(九扈)에게 명령하여 농사를 맡게 하였다. 이것은 고대(古代)의 성군(聖君)이 하늘의 뜻을 이어 지극히 바른 도(道)를 세워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천명을 수행한 것이다. 요(堯)임금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령하여 공경하여 백성에게 농사짓는 때를 주게 하였으며, 순(舜)임금은 십이목(十二牧)에게 의논하기를, '먹는 것은 오직 농사의 때를 지키는 데에 있다.' 고 하였다. 하후씨(夏后氏)는 구혁(溝洫)에 진력(盡力)하였고, 상(商)나라의 조상은 세민(細民)의 의지하는 바를 알았었다. 주(周)나라에 이르러서는 농사로써 나라를 개척하였으니 『시경(詩經)』의 빈풍편(豳風篇)의 시에서나,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의 저작에 있어서 농사의 힘들고 어려움을 정성껏 마음에 지니지 않은 것이 없어서 깊이 다스리고 오래도록 편안한 왕업(王業)을 이루었다. 훌륭하게도 한(漢)나라의 문제(文帝)는 자주 조서(詔書)를 내려서 해마다 나무 심기를 권하고 조세를 감하며 농경지를 주니, 나라 안이 은성하고 부유하였으며, 당(唐)나라의 고조(高祖)는 목재(牧宰)에게 조서를 내려 힘써서 간이하고 고요한 행정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농시(農時)를 잃지 않게 하였고, 태종(太宗)은 매양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영위(營爲)하는 데에는 농사때를 잃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된다.' 하였으니, 그가 쌀 한 말에 3전(錢)하는 실적(實績)을 이루게 한 것이 어찌 그 인유(因由)한 바가 없었겠는가. 송(宋)나라의 제도에는 권농사(勸農司)를 두고, 연말에 그 성적에 따라 상벌(賞罰)을 시행하였으며, 또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매년 술을 준비해 가지고 들에 나가서 부로(父老)들을 맞이하여 보고 농사에 힘을 다하라는 뜻을 타이르게 한 것은, 아마 또한 여기에 보는 바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크게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천운(天運)에 순응하여 나라의 터전을 열으시매, 제일 먼저 전제(田制)를 바로잡아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 내어 농사의 이(利)를 누리게 하였으니, 그 농사를 권장하신 조목이 법령에 갖추어 있다. 태종(太宗)이 왕업을 계승하시어 더욱 씨 뿌리고 수확하는 일을 더욱 힘쓰셨다. 특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심고 가꾸는 방법에 어두운 것을 염려하셔서 유신(儒臣)에게 명령하여 우리나라의 말로 농서(農書)를 번역하게 하여 중앙과 지방에 널리 반포하시고 후세에 전하였다. 과덕(寡德)한 내가 왕업을 계승하여서는 밤낮으로 겁내고 두려워하노니, 우러러 전대(前代) 때에 이러하였음을 생각하고 오직 조종(祖宗)을 법으로 한다. 돌아보건대, 농무(農務)는 마땅히 백성에게 가까운 관리에게 책임을 맡겨야 하는 것이므로, 그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임명하고 친히 격려하고 효유하였다. 또 차례로 주현(州縣)에 물어서 그 땅에서 이미 시험한 결과를 모아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만들어 농민들로 하여금 훤히 쉽게 알도록 하기에 힘썼으며, 혹이나 농사에 이(利)로울 만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여 거론(擧論)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 힘을 다하고 땅에는 버려 둔 이(利)가 없게

되기를 기대하였는데, 백성들에게는 저축할 여유가 없어서 한번 흉년이 들면 문득 굶주린 얼굴들을 하니, 이것이 어찌 아전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들어 힘써 종사하지 않음이 적기 때문이겠는가. 내가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일찍이 옛날의 어진 수령들을 살펴보건대, 한편에서 이(利)로운 일을 일으켰을 때에 백성이 실지의 혜택을 받은 것은, 부지런히 노력(勞力)하여 이루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龔遂)가 발해(渤海)의 수령이 되어서 농사짓고 누에 치는 일을 힘써 권장하였는데, 백성들이 도검(刀劍)을 차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소와 송아지를 사게 하였으며, 봄에는 밭에 나가 일하기를 권하고 겨울에는 곡식들을 거두어 모으게 하니, 백성들이 다 부유하고 충실하게 되었다. **소신신(召信臣)은 남양(南陽)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 백성을 위하여 이(利)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여 몸소 경농(耕農)을 권장(勸奬)하느라고 들에 나다니면서 편안히 앉아 있는 때가 적었다.** 가다가 물이나 샘을 보면 도량을 만들어 관개(灌溉)를 넓히니, 백성들이 그 이(利)를 얻어서 농사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임연(任延)이 구진(九眞)의 수령이 되니, 그곳의 풍속은 사냥을 생업(生業)으로 하고 소를 부려 농경(農耕)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번번이 곤핍(困乏)하게 되므로, 이에 농기구(農機具)를 주조(鑄造)하여 개간(開墾)을 가르치고, 해마다 개간을 넓히니 백성들이 자족자급(自足自給)하게 되었다. 신찬(辛纂)은 하남(河南)의 수령이 되어서 농상(農桑)을 독려하고 권장하되, 친히 스스로 살펴보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포백(布帛)과 물화(物貨)를 주어 돕고, 게으른 자에게는 죄를 주었으며, 주문공(朱文公)은 남강(南康)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 게시문(揭示文)을 인쇄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였는데, 〈그 게시문에는〉 갈아 엎고, 시비(施肥)하고 씨를 뿌리며, 제초(除草)하는 절차에서부터 삼과 콩을 심는 법과 제방과 못을 수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술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순순(諄諄)히 타이르며, 때로는 친히 들을 순시(巡視)하고 가르친 대로 하지 않은 자는 처벌하였다. 모든 이런 일들이 어찌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없이 번거롭고 소요(騷擾)함을 좋아서 하였겠는가. 대체로 보통 사람들의 심정은 그것을 거느리면 스스로 힘쓰고, 놓아 두면 게을러지는 것이다. 선철(先哲)이 말하였기를, '일명(一命)의 벼슬을 받는 선비라도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두면, 남에게 반드시 구제함이 있다.' 고 하였다. 하물며 지금의 감사와 수령의 책임을 맡는 자는 다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잡고 있어서 한 지방의 기쁨과 슬픔이 그 한 몸에 달려 있음이겠는가. 만약 성심으로 어루만지고 불쌍히 여긴다면 어찌 옛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겠는가. 대체로 말해서, 농가(農家)의 일이란 것은 농사의 시기를 일찍 시작한 자는 수확도 또한 이르고, 힘을 많이 들인 자는 수확도 또한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농정(農政)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오직 그 적절한 시기를 어기지 않고, 그 농사에 바칠 힘을 빼앗지 않는 데에 있을 뿐이다. 온갖 곡식은 심고 씨뿌리는 것이 각각 그 때가 있는 것이니, 적어도 때를 한번 잃어버리면 해가 다하도록 다시는 따라갈 수 없다. 백성의 몸은 이미 하나이니 힘을 둘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을 빼앗는 일이 관(官)에 있다면 어찌 농사에 힘쓰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인사(人事)를 이미 다하였다면, 비록 천운(天運)이 동반(同伴)되지 않더라도 또한 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윤(伊尹)의 구전제도(區田制度)와 조과(趙過)의 대전제도(代田制度)가 바로 그것이다. 근일에 경험한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정사년에 후원(後苑)에 농사짓는 것을 시험하여 사람의 힘을 더 할수 없이 다 하였더니 과연 가뭄을 만나도 한재(旱災)를 일으키지 않고 벼가 매우 잘되었었다. 이것은 우연히 천재를 만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전(傳)에 말하기를, '백성의 살아가는 길은 부지런한 데 있고, 부지런하면 빈핍(貧乏)하지 않는다.' 고 하였으며, 『서경(書經)』에는 말하기를, '게으른 농부가 스스로 편안하여 힘

써 수고로움을 짓지 아니하고 밭이랑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피와 기장을 가리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비로소 차라리 근로(勤勞)에 지나칠지언정, 태타(怠惰)한 데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백성이 부지런히 힘쓰고자 하더라도, 관에서 권하고 시킴이 성실하지 아니하면 그 힘을 발휘할 곳이 없을 것이다. 또 망종(芒種)이라는 절후(節候)는 사람의 힘이 넉넉하지 못하여 비록 다 일찍 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만약 이 때만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을에 곡식이 성숙할 가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특히 망종이라는 절후를 한정으로 하여 늦어서 실농하기 보다는 이 때를 잃지 말고 파종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 때를 가다려서 파종(播種)하는 시기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농서(農書)에서도 또한 대개 일찍 파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수령들은 예전의 상습(常習)에 익숙하여져서 비록 파종 때를 당하고도 스스로 말하기를, ‘망종(芒種)이 아직 멀다.’고 하고는, 모든 농지(農地)에 관계되는 소송 사건을 즉시 처결(處決)하지 아니하며, 종곡(種穀)과 양곡(糧穀)의 진대(賑貸) 등의 사무를 항상 빨리 처리하지 아니하여 번번이 시기를 늦추어 버리곤 한다. 혹은 수령이 비록 감사에게 보고하여도, 감사는 호조에 이첩(移牒)하고, 호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며, 의정부에서는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해야 하므로, 전전해서 서로 문서(文書)를 왕복하고 있는 동안에 망종(芒種)은 이미 지나가고 만다. 어떤 이는 농경의 적절한 시의(時宜)를 알지 못하고 한갓 권과(勸課)한다는 이름 얻기만 꾀하여 너무 일찍 심기를 독려하기 때문에, 종묘(種苗)가 살지 못하여 도리어 농사를 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참으로 절후(節候)의 이르고 늦은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계획이 어설퍼서 일이 시기를 잃게 하는 자도 또한 있다. 이래서야 어찌 근심을 나누어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도리일 수 있겠는가. 누구든 나와 함께 착한 정치를 같이 하려는 자들은 나의 위임한 뜻을 본받고, 조종(祖宗)의 백성에게 두텁게 하신 법을 준수(遵守)하며, 전현(前賢)들의 농사를 권과(勸課)한 규범(規範)을 보고, 널리 그 지방의 풍토(風土)에 마땅한 것을 물으며, 농서(農書)를 참고하여 시기에 앞서서 미리 조치하되, 너무 이르게도 말고 너무 늦게도 하지 말라. 더구나 다른 부역을 일으켜서 그들의 농사 시기를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니, 각각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힘쓰도록 인도하라. 밭에 일하여 농사를 힘써서, 우러러 어버이를 섬기고, 굽어 자녀를 길러서 나의 백성의 생명이 장수(長壽)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면, 거의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며, 예의를 지켜 서로 겸양(謙讓)하는 풍속이 일어나서, 시대는 평화하고 해마다 풍년은 들어 함께 태평시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農者, 衣食之源, 而王政之所先也. 惟其關生民之大命, 是以服天下之至勞. 不有上之人誠心迪率, 安能使民勤力趨本, 以遂其生生之樂耶? 若古神農, 始爲耒耜, 以利天下; 少昊命九扈, 以掌農事, 此聖神所以繼天立極而爲億兆立命者也. 堯命羲·和, 敬授人時; 舜咨十二牧, 食哉惟時; 夏后氏盡力乎溝洫; 商宗知小人之依; 至于周家, 以農事開國. 『豳風』之詩·『無逸』之作, 無非拳拳於稼穡之艱難, 以成長治久安之業, 其盛矣哉? 漢文帝數下詔書, 歲勸種樹, 減租賜農, 海內殷富; 唐高祖詔牧宰, 務從簡靜, 使不失時. 太宗每謂群臣曰: “營衣食, 不失時爲本.” 其致斗米三錢之效, 豈無所由! 宋制置勸農司, 歲終賞罰, 又令州縣每歲載酒出郊, 延見父老, 諭以竭力耕田之意, 蓋亦有見於此歟? 洪惟我太祖應運開基, 首正田制, 拯民塗炭, 俾享耕鑿之利, 其勸課之條, 具在令甲. 太宗繼述, 益勤播獲之功, 特慮愚民昧於樹藝之宜, 命儒臣, 以方言譯農書, 廣布中外, 以傳于後. 寡予承緖, 夙夜兢惕, 仰惟前代時若, 惟祖宗是憲, 顧以農務, 當責近民之官, 是用愼簡, 親加勉諭. 且令逮訪州縣因地已試之驗,

輯爲『農事直說』, 務使田野之民曉然易知, 儻可以利於農者, 靡不悉心究擧, 期於人盡其力, 地無遺利, 而民無蓄積之餘, 歲一不登, 輒有飢色, 是吏奉吾敎不力, 而從事焉尙寡也, 予甚慮焉. 嘗觀古之賢守, 能興利一方, 而民受實惠者, 莫不以勤勞而成. 龔遂爲渤海, 務勸農桑, 民有帶持刀劍者, 使買牛犢, 春勸趨田, 冬課收斂, 民皆富實. 召信臣爲 **南陽**, 好爲民興利, 躬勸耕農, 出入阡陌, 稀有安居, 行視水泉, 開通溝瀆, 以廣灌溉, 民得其利, 莫不力田. 任延爲九眞, 其俗以射獵爲業, 不知牛耕, 每致困乏, 乃令鑄作田器, 敎之墾闢, 歲歲開廣, 百姓充給. 辛篆爲河內, 督勸農桑, 親自檢視, 勤者資以帛物, 惰者加罪. 朱文公之爲南康也, 印榜勸民, 自犂翻糞種芟草之節, 以至種麻豆修陂塘之事, 莫不開具, 諄諄曉諭, 時親巡野, 罰不如敎. 凡此豈無自而好爲煩擾哉? 蓋常人之情, 率之則自力, 縱之則惰窳耳. 先哲有言: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矧今任監司守令之責者, 皆操可致之柄, 一方休戚, 係于一身, 若心誠撫恤, 何古人之不可及哉? 大抵田家之事, 趨時早者, 所得亦早; 用力多者, 所收亦多, 故農政所重, 惟在不違其時, 不奪其力而已. 百穀種蒔, 各有其時, 時苟一違, 終歲莫追. 民旣一身, 力不可分, 奪之在官, 豈可責之力田? 苟人事旣盡, 則雖天運之不齊, 亦可禦也. 若伊尹之區田, 趙過之代田是已. 以近日所驗言之, 歲丁巳, 於後苑試治田極人力, 果遇旱不能爲災, 禾頗稔熟. 是則偶爾天災, 其以人力而可救也審矣. 『傳』曰: "民生在勤, 勤則不匱." 『書』曰: "惰農自安, 不愍作勞, 不服田畝, 越其罔有黍稷." 乃知寧過於勤勞, 不可失之怠惰也. 第民欲勤力, 勸課不實, 則無所施其力矣. 且云芒種者, 人力不贍, 雖不能皆早, 若及此時, 則猶有秋成之望, 故特限節候, 以示與其晩而失業, 不若及此時之爲愈也, 非謂必待此播種之期也. 『農書』亦云: "大率欲早." 今之守令, 狃於故常, 雖當播種之時, 自謂芒種猶遠, 凡干土田訴訟, 未卽處決, 穀種口糧賑貸等事, 常不汲汲, 每失稽緩. 雖或守令申報監司, 監司移牒戶曹, 以報政府, 政府具由以啓, 轉相往復之際, 芒種已過. 或不識耕稼之宜, 徒務勸謀之名, 督種太早, 苗不得生, 反以害農者有之. 或未能眞知氣節之早晩, 自計疎虞, 以失事機者, 亦有之, 豈分憂字民之義乎? 凡與我共聖者, 其體予委任之意, 遵祖宗厚民之典, 視前賢課農之規, 廣詢風土所宜, 參以『農書』所載, 預期措置, 毋太早毋太晩, 尤不可興務以奪其時, 各盡乃心, 導民務本, 服田力穡, 仰事俯育, 以壽我民命, 以固我邦本, 庶幾家給人足, 蔚興禮讓之風; 時和歲豐, 共享熙皞之樂.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25일(임인)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의염색이 경기도 남양 등의 자염의 생산량에 대해 보고하다

의염색(義鹽色)에서 아뢰기를, "지금 각도(各道)의 경차관(敬差官)이 자염(煮鹽)을 시험했는데, 강원도 삼척(三陟)에는 철분(鐵盆) 9개에 사역한 선군(船軍) 60명이 40일 동안에 소금을 구워 만든 것이 1백 70석(石)인데, 화매(和賣)하여 얻은 베[布]가 73필, 잡곡(雜穀)이 32석이고, 남은 소금이 20석이며, **경기도 남양(南陽)에는 토분(土盆) 13개에 사역한 선군 1백 40명이 18일 동안에 소금을 구워 만든 것이 6백 44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布]가 2백 48필, 잡곡이 31석, 경구(耕區)의 소값[牛價]으로 지불한 소금이 34석이고, 남은 소금이 79석이며, 황해도 옹진(甕津)에는 토분 4개에 사역한 선군 30명이 28일 동안에 소금을 구워 만든 것이 3백 59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布]가 67필, 소값으로 지불한 소금이 6석이고, 남은 소금이 5석이며, 경상도 동래(東萊)에는 토분 12개에 사역한 선군 1백 20명이 11일 동안에, 또 토분 19개에 사역한 선군 1백 9명이 15일 동안에 소금을 구워 만든 것이 6백 16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가 10필이고, 남은 소금이 5백 97석이며, 충청도 태안(泰安)의 염정(鹽井)에는 토분 14개에 사역한 선군 2백 명이 48일 동안에 소금을 구워 만든 것이 1천 23

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가 1백 61필, 잡곡이 1백 48석이고, 남은 소금이 3백 95석이며, 전라도 흥양(興陽)에는 토분 10개에 사역한 선군 1백 명이 20일 동안에 소금을 구워 만든 것이 6백 81석인데, 화매하여 얻은 베가 1백 78필, 곡식이 1백 석, 소값으로 지불한 소금이 16석이고, 남은 소금이 1백 87석입니다." 하였다.
○義鹽色啓: "今各道敬差官試驗煮鹽, 江原道三陟鐵盆九所, 役船軍六十名, 四十日煮鹽一百七十石, 和賣得布七十三匹, 雜穀三十二石, 餘鹽二十石. 京畿南陽土盆十三所, 役船軍一百四十名, 十八日煮鹽六百四十四石, 和賣得布二百四十八匹, 雜穀三十一石, 耕區牛價鹽三十四石, 餘鹽七十九石. 黃海道甕津土盆四所, 役船軍三十名, 二十八日煮鹽三百五十九石, 和賣得布六十七匹, 牛價鹽六石, 餘鹽五石. 慶尙道東萊土盆十二所, 役船軍一百二十名, 十四日; 又土盆十九所, 役船軍一百九名, 十五日煮鹽六百十六石, 和賣得布十匹, 餘鹽五百九十七石. 忠淸道泰安鹽井土盆十四所, 役船軍二百名, 四十八日煮鹽一千二十三石, 和賣得布一百六十一匹, 雜穀一百四十八石, 餘鹽三百九十五石. 全羅道興陽土盆十所, 役艘軍一百名, 二十日煮鹽六百八十一石, 和賣得布一百七十八匹·穀一百石, 牛價鹽十六石, 餘鹽一百八十七石."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15일(계미)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의빈 임광재에게 남양의 신지곶이에 있는 전지를 내려주다
의빈(儀賓) 임광재(任光載)에게 남양(南陽)의 신지곶이[申知串] 해택(海澤) 안의 묵은 전지(田地)를 내려 주었다.
○賜儀賓任光載, 南陽申知串海澤內陳田.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3일(정축) 4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경기도 관찰사 성건이 남양 대부도 등을 개간할 것을 아뢰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이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와 강화(江華) 보음도(甫音島)의 지형을 그려서 올리며 아뢰기를, "대부도 가운데는 토지의 품질이 기름져서 곡식 2백여 석을 심을 만하고, 또 해택(海澤)이 있어서 2백여 석을 심을 만하니, 마땅히 경계를 쌓아서 목장의 말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화량(花梁) 당령 선군(當領船軍)**의 반(半)을 나누어서 갈고 가꾸도록 하소서. 보음도도 땅이 기름져서 5, 6백 석을 심을 만하니, 청컨대 목장을 다른 섬으로 옮기고 월곶[月串]이 당령 선군의 반을 나누어서 갈고 가꾸도록 하여 국용(國用)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성건의 말을 사복시(司僕寺)에 자세히 유시(諭示)하여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丁卯/京畿觀察使成健, **圖上南陽大部島·江華甫音島地形**以啓曰: "**大部島**中土品膏腴, 可種二百餘碩; 又有海澤, 可種二百餘碩. 宜築界限, 使牧場馬不得闌入. 分**花梁**當領船軍之半, 使立耕治. 甫音島亦膏腴, 可種五六百碩, 請移其牧場于他島, 分月串當領船軍之半耕治, 以補國用何如?" 傳于承政院曰: "其以健言, 詳諭司僕寺議啓."
<성종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6일(정묘)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특진관 김승경이 호조 당상 등이 대부도 등지의 둔전 개간 여부를 살피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部島), 강화(江華)의 보음도(甫音島) 등지에 둔전(屯田)**을 두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단지 사복시 정(司僕寺正) 강귀손(姜龜孫)만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같은 연혁(沿革)의 중대한 일은 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호조 당상(戶曹堂上)·경기 감사(京畿監司)와 더불어 일시에 살펴서 정하도록 하소서. 더구나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저축을 넓히는 것은 이익이 매우 크니, 이제 마땅히 여러 도(道)에 두루 유시(諭示)하여 만약 노는 땅으로서 경작할 만한 곳이 있거든 다시 대신(大臣)을 보내어 살펴보게 해야 합니다. 만일 적당하면 목장(牧場)은 물론하고 둔전을 설치하여 군수(軍需)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급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己丑/御經筵. 講訖, 特進官金升卿啓曰: "南陽大阜島·江華甫音島等處置屯田便否, 但遣司僕寺正姜龜孫審視. 如此沿革重事, 不可獨遣, 請司僕寺提調·戶曹堂上與京畿監司一時審定. 況設屯田·廣儲蓄, 利益甚大, 今宜遍諭諸道, 若有閑曠宜耕之地, 更遣大臣視之. 如其便也, 勿論牧場, 置屯田以裕軍需, 誠急務也." 上曰: "可."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9일(기축)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호조 판서 이덕량 등이 남양의 대부도 등에 둔전을 두는 방법을 아뢰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성건(成健) 등이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와 강화(江華) 보음도(甫音島)의 둔전(屯田) 배치 형태를 그려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이 땅은 모두 경작하기에 적당합니다만 보음도는 월곶이[月串]의 선군(船軍)으로서는 다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목장(牧場)을 옮기어 백성이 스스로 경작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대부도는 겨우 2백여 석(碩)을 심을 정도이니, 목장을 옮기지 말고 화량(花梁) 수군(水軍)으로써 혹은 토장(土場)을 쌓고 혹은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判書李德良·京畿觀察使成健等圖上南陽大部島·江華甫音島置屯田形勢, 仍啓曰: "此地皆宜耕墾. 但甫音島非月串船軍所能盡耕, 須移牧場, 許民自耕. 大部島僅可種二百餘碩, 勿移牧場, 以花梁水軍, 或築土場, 或設木柵, 耕治何如?" 從之.

<성종실록 201권, 성종 18년 3월 4일(갑진)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대사헌 김자정 등이 남양 대부도 목장에 있는 소전의 개간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자정(金自貞)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지난번에 대부도(大部島)의 목장 안에 있는 소전(召田) 등지가 논[畓]을 만들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개간하여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그 논갈이하는 소는 영흥(靈興)·선감(仙甘)·대부(大部) 등 세 목장 목자(牧子)의 사축(私畜)을 쓰고, 그 인부(人夫)는 화량(花梁)·영종(永宗) 두 포(浦)의 수군(水軍)을 쓰라고 명하시고, 인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화량 절제사(花梁節制使)에게 감농(監農)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신 등이 온당치 못한 사유를 대강 들어 두세 번 계달하였는데 이를 호조(戶曹)에 하문(下問)하시니, 호조에서 아뢰기를, '기계가 이미 완비되었으므로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은 들으니, 예전의 천자(天子)·제후(諸侯)가 종묘(宗廟)의 자성(粢盛)을 위하여 적전(籍田)을 둘 뿐이고, 그 나머지 토지

는 백성이 모두 받는다고 합니다. 그 둔전(屯田)이니 영전(營田)이니 하는 것은 다만 후세의 변장(邊將)이 이익을 말하고 사공(私功)을 요구하는 술책이지 선왕(先王)이 국가를 생각하여 들을 경리(經理)하고 토지에 인하여 조세(租稅)를 제정한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경(四境) 안이 왕토(王土)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사사로이 정휴(町畦)를 만들어 국둔전(國屯田)이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 십배가 아니면 할 것이 못됩니다. 지금 세 목장의 거민(居民)이 을사년의 참혹한 흉년을 겪고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집집마다 가축을 잡아먹으며 조석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병오년 1년은 비록 조금 수확을 하였으나 공채(公債)·사채(私債)의 빚을 갚기 위해 우마(牛馬)를 다 팔아서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년 농사에 만일을 기대하고, 차라리 먹을 것을 못먹으면서도 콩과 꼴을 꾸어다가 그 소를 기르는 형편인데, 지금 만일 그것을 빼앗아다가 둔전을 개간하게 하면 백성의 근심과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에 어그러지는 것은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한갓 이재(理財)만을 힘쓰고, 백성의 농사 시기를 빼앗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며 반성을 하기는 커녕 앞서 한 말의 잘못된 것을 문식(文飾)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수군(水軍)을 설치한 것은 바다 도적을 막자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심으로 주즙(舟楫)을 다스려 수전(水戰)에 예속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근년에 이 무리들을 모두 몰아다가 토목(土木)에 역사시키고 지금 또 둔전에 역사시키니, 다만 두 포(浦)의 군사가 휴양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변군(邊軍)도 맥이 풀리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군국(軍國)의 원대한 계책이겠습니까? 감농관(監農官)도 해마다 세 철 동안 군사를 영솔하면서 권과(勸課)를 빙자하여 침요(侵擾)하며 폐해를 끼치는 것이 또한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어찌 구구한 둔전에 있다 하겠습니까? 농사 시기를 빼앗지 말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힘쓸 수 있게 하여 모두 남은 곡식이 있게 되면 자연히 국고가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낭비하면서 말하기를, '국가의 용도가 부족하니, 마땅히 둔전을 두어야 한다.' 고 한다면 취렴(聚斂)의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국군(國君)의 부력(富力)을 물으면 말[馬]을 셈해서 대답하였으니, 지금 이 목장은 선왕(先王)께서 규획(規畫)하신 것인데, 어찌 침노하여 개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땅이 비옥하여 땅에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면 마땅히 백성이 스스로 경작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조세(租稅)를 거둘 뿐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大司憲金自貞等上箚子曰: 頃者, 以**大部島**場內召田等處, 合作水田, 命開墾置屯田; 其耕治之牛, 用**靈興**·**仙甘**·**大部**等三場牧子私畜; 其人奚, 用**花梁**·永宗二浦水軍; 仍責**南陽府使**·**花梁節制使**監農. 臣等略將不便事由, 再三啓達, 下問戶曹; 戶曹啓以器械已完, 不宜中止. 臣等聞古者天子諸侯爲宗廟粢盛, 置籍田而已, 自餘土地,則民皆受之. 其曰屯田·營田者, 特後世邊將言利邀功之術, 非先王體國經野因地制賦之法也. 然則四境之內, 莫非王土, 豈可私爲町畦, 至以國屯田爲名乎? 大抵利於民不十倍, 則不當爲. 今三牧場居民, 經乙巳旱荒之慘, 饑饉之極, 不堪自存, 家家殺烹頭畜, 以延朝夕之命. 丙午一年雖稍收穫, 於公私負債之償, 盡賣牛馬, 所餘者無幾. 猶冀萬一於今歲力農, 寧自廢食, 而稱貸芻豆, 以養其牛. 今若奪之, 使墾屯田, 則民之愁怨, 可勝言哉? 其悖於事理, 不待智者而後知之. 戶曹徒務理財, 不慮民時之奪, 執迷不回,以文前言之失, 甚不可. 且水軍之設, 所以禦海寇也. 當專治舟楫, 俾隷水戰. 近年盡驅此輩, 役於土木, 今又役於屯田, 則非徒二浦之軍, 不得休養, 所在邊軍, 莫不解體, 是豈軍國經遠之謀乎? 監農官每歲三時領軍, 憑依勸課, 侵擾作弊, 亦必不貲. 生財之道, 豈區區屯田云乎哉? 不奪其時, 使百姓力農, 皆有餘粟, 則自然府庫充牣矣. 其不量入爲出, 冗費百端,

曰: “國用不裕, 當置屯田者” 不免爲掊克之歸矣. 古人問國君之富, 數馬以對. 則今此牧場, 先王所規畫, 豈可侵墾? 儻曰, 沃饒不可使地有遺利, 則固當聽民自耕, 以收租稅而已. 不聽.
<성종실록 201권, 성종 18년 3월 15일(을묘) 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승정원에 도승지가 남양 대부의 둔전을 살펴보고 아뢰라고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남양(南陽) 대부(大部)의 둔전(屯田)을 헌부(憲府)에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재상도 역시 그르게 여기는 자가 있었으나 호조에서 농기구를 준비하고 소를 세내어 이미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중지할 수가 없다. 도승지(都承旨)가 가서 살피보고 아뢰라.” 하였다.

○傳于承政院曰: “南陽大部屯田, 憲府以爲不可, 而宰相亦或有非之者. 然戶曹備器傭牛, 業已始役, 不可中止. 都承旨其往審以啓.”
<성종실록 201권, 성종 18년 3월 21일(신유) 4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사복시가 사신에게 준 말에 대해 건의하다

정원이 사복시의 뜻으로 아뢰기를, “천사에게 줄 말은, 당초에 천사가 가지고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빛깔이 좋은 것만 보고 발걸음의 빠름과 둔함은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천사의 말이 ‘이 말은 매우 좋으니 타고 다니다가 도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둔한 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대동총(大同驄)과 남양총(南陽驄)은 빛깔이 같으니 이 말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政院以司僕寺意啓曰: “天使贈給馬, 初以爲天使不持歸, 故但取其色好, 而不取其步之疾鈍矣. 今日天使云: ‘此馬甚良, 近當騎行而還送矣.’ 然則不可以鈍馬給之. 大同驄·南陽驄, 色同, 請以此馬, 改爲贈給.” 傳曰: “如啓.”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 3월 11일(경인) 13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사은사가 진상할 말을 엄선하라는 전교

전교하였다. “사은사가 진상할 말 중에 내구(內廐)의 남양총(南陽驄) 10필을 자문(咨文) 첫머리에 기재하고, 나머지 말들도 엄선하도록 하라. 만약 이전처럼 숫자만을 채운다면 해당 관원을 잡아다 국문할 것이다. 또한 양마(良馬)도 거세(去勢)하면 도리어 상(傷)할 염려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거세하거나 코를 뚫을 필요가 없음을 태복시 제조(太僕寺提調)에게 이르라.”

○癸亥/傳曰: “謝恩使進獻馬, 以內廐南陽驄等馬十匹, 首書於咨文, 餘馬亦極擇. 如前苟充, 則色員當拿鞫. 且良馬作騸, 恐反致傷, 今後不必作騸鼻割事, 言于大僕提調.”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0일(계해)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평의지 등이 바친 공작을 남양 해도로 놓아주도록 하다

평의지 등이 공작(孔雀) 1쌍과 조총 수삼 정을 바쳤는데, 공작은 남양(南陽) 해도(海島)로 놓아보내도록 하고 조총은 군기시(軍器寺)에 간직하도록 명하였다. 우리나라가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義智等獻孔雀一雙·鳥銃數件, 命放孔雀于南陽海島, 藏鳥銃于軍器寺. 我國之有鳥銃, 始此.
<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1일(병오)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일본에서 보내온 공작을 남양의 섬에 놓아주다

일본국(日本國)에서 공작(孔雀) 한 쌍을 보내왔는데 상이 객사(客使)가 돌아간 뒤 제주(濟州)에 놓아 주도록 하자 예조가 아뢰기를, "제주까지 수송하자면 폐해가 있으니 남양(南陽)의 절도(絶島) 중에 수목이 울창한 곳에 놓아 주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日本國送孔雀一雙, 上敎待客使回還, 放之濟州, 禮曹啓: "以濟州輸送有弊, 請於南陽絶島鬱密處放之." 依啓.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갑오)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남양 부사 조정이 전결수가 증가하여 부역이 과중해진 폐단에 대해 올린 상소

남양 부사(南陽府使) 조정(趙挺)이 상소하였다. "삼가 아룁니다. 신은 을사년 겨울에 특별히 천은을 입어 본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이에 부임 초에 먼저 병폐되는 사항을 물었더니, 대소 신민들이 모두 동헌 뜰에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지극히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결(田結)이 불어난 일보다 더한 것은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가엾은 생각이 들어 자세히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본부(本府)가 명색은 큰 고을이나 지방의 넓이가 몇 식(息)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서남쪽은 해변으로 토질이 기름지지 않으며, 동북쪽은 산이 많아 지질이 더욱 척박하다. 그래서 지난 임자년 사이에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땅이 개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전결로 말하면 3천여 결에 지나지 않았고, 그 등수로 말하면 5~6등급이 거의 과반수나 되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뒤로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답은 묵은 채 버려져 온 경내에 개간된 수라야 전성기에 비하면 10분의 2~3도 채 차지 못한다. 지난번 양전(量田) 할 때에 부사 안창(安昶)이 직접 구안(舊案)을 갖고 현지를 돌아보면서 참조하였는데, 규획이 근거가 있고 고하(高下)가 틀림이 없었으므로 조사 확인하여 전적(田籍)을 만드니, 다시 빠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어사(御史) 홍서봉(洪瑞鳳)은 여러 고을이 분탕된 나머지 그 전제(田制)를 마음대로 올리고 낮춰 취하는 것을 익히 보아온 까닭에 본부에도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미 작성된 전적을 고쳐 4백여 결을 추가해 넣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엄명(嚴命)에 눌려 감히 어기지 못하고 허둥대는 사이에 미처 일일이 수정하지 못한 채 다만 첨가된 전결의 수를 성책(成冊)의 말단에 써 넣었다. 그렇다면 잘못된 그 문서는 해조에 알릴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해조에서는 또한 봉납(捧納)한 뒤에 다시 살피지 않아 잘못된 대로 답습하며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으니 너무도 원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대저 상규(常規)로 말하자면, 어느 백성의 전결은 얼마이고 등급은 어떻게 되며 1면(面)의 총수는 얼마이고 사방의 총계는 얼마인지 두루 계산하여 피차 다름이 없게 한 뒤에야 비로소 양전을 한 정안(正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본부에서 성책한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측량한 원전(元田)의 통계는 1천 7백 34결(結) 47부(負) 2속(束)이었는데, 모두 합한 숫자는 2천 1백 63결 48부 4속이나 되었으니, 이는 어사가 강제로 과다하게 배정한 숫자로

서 본부에서 마감지을 적에 사실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해조가 봉납할 때에 문안을 가지고 힐문하여 실질대로 고치게 하였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의 호소가 어찌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나서부터 목이 메어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나 만기(萬機)에 저촉될까 두려워 감히 아뢰지 못하고 감사에게 정보(呈報)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며 해조에 이첩(移牒)하였는데, 해조에서는 막연히 아무런 가부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럭저럭 아무 일도 한 일 없이 목민관이란 직위만 차지하고 부끄럽게 세월만 보낸 지가 이미 1년이 지났으니, 이는 신의 죄인 동시에 신의 분수라 하겠습니다.

최근 본도의 문이(文移)를 통하여 해조의 계사를 보건대, 그 내용에 '연전에 양전(量田)할 때 사실대로 안된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경기의 남양·강화(江華)는 대부분 구안(舊案)대로 하였는데,** 인근 고을과는 토질이 서로 균일한 편인데도 결부(結負)의 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하였습니다. 아, 해조 역시 전결이 고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주상께 아뢰기까지 하였고 보면, 두 고을의 결부에 대한 경중 관계는 신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명(聖明)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저 남양과 강화의 부역이 무거운 이유는 전결의 문안을 옛날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데**, 오늘날 강제로 배정한 전결이 또 그전의 문안 외에 더 덧붙여지고 있으니, 백성들의 부역의 과중함이 오히려 강화보다 심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른바 지붕 위에 지붕을 짓고 평상 위에 평상을 올려 놓은 격이니,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거짓이 아니라고 여기신다면, **시험삼아 유사(有司)로 하여금 양전한 문안을 가져다 상고하게 하여 이른바 남양에서 성책한 것을 통계내어 보게 하소서.** 그러면 그 총계와 모두 합산한 수가 같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신이 진달한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뒤에 이를 빨리 개정하여 실제로 측량한 수만 남겨두고 명목없이 첨가된 전결을 삭제해 주소서. 그렇게 되면, 일부(一府)의 백성들이 반드시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성상의 교화에 고무될 것이며,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도 저절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못난 신만의 다행이 되겠습니까.

아, 백성들의 생활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감영(監營)에서 쇄마(刷馬)를 조발(調發)하는 것은 오히려 지난날의 배나 되고 태복시(太僕寺)에서 곡초(穀草)를 배정하는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으며, 인족(隣族)의 침해는 연한(年限)을 계산하지도 않고, 어세(魚稅)의 징수가 또한 민호(民戶)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진언할 만한 병폐가 한두 가지 뿐만이 아닙니다만, 절박하게 근심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시종 거듭 아뢰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명께서 곡진히 보살피시어 백성들의 소망을 따라 주신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丁酉/**南陽府使**趙挺上疏曰: 伏以, 臣於乙巳冬, 特蒙天恩, 除授本職. 乃於赴任之初, 首訪弊瘼, 大小臣民, 咸造在庭, 皆以爲: "民等之至冤極痛, 莫過於加結一事也." 臣惻然動念, 詳問其由則乃曰: "本府名雖巨邑, 地方之廣, 未滿數息. 加以西南濱海, 而土脈不膏; 東北多山, 而地品尤薄. 故往在壬子年間, 民非不聚也; 地非不闢也, 而言其田結, 則不過三千有餘; 語其等數, 則五六殆過半焉. 經亂以後, 人民散亡; 田野拋荒, 擧闔境開墾之數, 比之於全盛, 則猶未滿十之二三矣. 頃於量田之日, 前府使安昶, 手執舊案, 參以目見, 規畫有據, 高下不差, 查勘成籍, 更無餘蘊. 而其時御史洪瑞鳳, 熟見列邑焚蕩之餘, 取其田制隨意低昻, 慮其本府亦有是弊, 俾改已成之籍, 添入四百餘結. 本府怯於威令, 莫敢違拒, 倉皇之際, 未及一一修正, 而

只以加結之數，添書於成冊末端，則其文書之差謬，不可使聞於該曹．而該曹於捧納之後，亦不復致察，承謬襲訛，猶爲行用，斯豈非冤痛之甚者乎? 大抵自常規言之，某民之田結幾許・等數幾許・一面之摠數幾許・四面之都合幾許，通融叩算，使無彼此之相違然後，方可謂量田之正案也．今此本府成冊則不然，通計打量之元田，只是一千七百三十四結四十七負二束，而都合之數，至於二千一百六十三結四十八負四束，此其御史之勒定過多，而本府之磨勘失實者也．若使該曹，當其捧納之時，執案而詰之，從實而改之，則愚民之呼籲，豈至於今日而未已乎?" 臣自聞此言，食不下咽，而干冒萬幾，惶懼不敢，呈報於監司，則監司難於擅斷，移牒於該曹，則該曹邈無可否．循循默默，尸居字牧，日日以愧，已經一年，此，臣之罪，亦臣之分也．近因本道文移，得見該曹啓辭，有曰: "年前量田，多不以實．如京畿之**南陽**・江華，率仍舊案，而傍邑土品，彼此相均，結負之數，多寡懸殊." 噫! 該曹亦知田結之不均，而至於上聞，則兩邑結負之輕重，不待臣言，而聖明固已洞燭矣．夫**南陽**・江華之役重者，徒以田案之仍舊也．而今此勒定之田結，又出於仍舊之外，則其民役之重，反有甚於江華．眞所謂屋上加屋；床上疊床，民安得遂其生乎? 殿下如以臣言爲不誣，試令有司，取考量田文案，通算其所謂**南陽**成冊，則其都摠之不同，必有如臣之所陳矣．旣知其誤，斯速改正，只存打量之實數，刪去無名之加結，則一府之民，必將鼓舞如傷之化，流亡自底於還集矣，是豈愚臣之所獨幸哉? 嗚呼! 民之爲生，誠可哀也．監營刷馬之調發，猶倍於前日；太僕穀草之分定，無異於平時．隣族之侵，不計其年限；魚稅之徵，亦及於民戶．可陳之弊，非止居於一二，而切迫之憂，惟在於此．故不避煩猥，終始眷眷焉．伏願聖明，曲加矜察，從民所欲，不勝幸甚．
<선조실록 208권, 선조 40년 2월 4일(정유) 1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사복시에서 남양, 장봉, 인천 등 세 목장의 농경지를 해당 아문에 획부하다

사복시(司僕寺)에서, '경기(京畿) 연해의 해방영(海防營) 둔전(屯田) 에 대한 일은 의정부(議政府)의 회계(回啓)로 인하여 **남양(南陽), 장봉(長峯), 인천(仁川) 세 곳에 있는 목장 개간지를 해당 아문(衙門)에 획부(劃付)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司僕寺以"畿沿海防屯田事, 因政府回啓, **南陽**・長峯・仁川三處牧場起墾之地, 劃付該衙門之意"啓.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5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경제/농수산업

의정부에서 남양 등지의 목장을 태복시에 획부하였으니 목관을 감하하자고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통어사(統禦使)를 감하(減下)한 뒤에 경기(京畿) 연해의 수군이 이미 해방 아문(海防衙門)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서(海西)와 호서(湖西)의 수군을 일체 지휘하게 하고, 덕적(**德積**), 덕포(德浦), 주문(注文), 영흥(**靈興**)의 전최(殿最)는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구관(句管)하게 하고, **남양(南陽), 장봉(長峯), 인천(仁川) 목장을 이미 태복시(太僕寺)에서 복계(覆啓)하여 해당 아문에 획부(劃付)하였으니**, 목관(牧官)을 모두 감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 又啓: "統禦使減下後, 畿沿水軍, 已屬海防衙門矣．海西・湖西水軍, 使之一體節制; **德積**・德浦・注文・**靈興**殿最, 令畿營句管; **南陽**・長峯・仁川牧場旣自太僕覆啓, 劃付於該衙門, 牧官竝減下何如?" 竝允之.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윤5월 3일(병오) 2번째기사>

⑸ 광공업

경제/광공업

감조관을 파견하여 남양의 옥돌을 채취해 오게 할 것을 존숭 도감이 아뢰다

존숭 도감(尊崇都監)이 아뢰기를, "**옥보(玉寶)와 옥책(玉冊)을 넣을 옥돌이 남양(南陽) 땅에서 나니**, 전례에 따라 도감의 감조관(監造官)을 특별히 파견하여 본 고을의 수령의 입회하에 채취해 오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尊崇都監啓曰: "玉寶·玉冊所入玉石, 出於**南陽地**, 依前例都監監造官別遣, 本官守令眼同採來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 54권, 광해 4년 6월 14일(정축) 2번째기사>(중초본)

경제/광공업

감조관을 파견하여 남양의 옥돌을 채취해 오게 할 것을 존숭 도감이 아뢰다

존숭 도감(尊崇都監)이 아뢰기를, "**옥보(玉寶)와 옥책(玉冊)을 넣을 옥돌이 남양(南陽) 땅에서 나니**, 전례에 따라 도감의 감조관(監造官)을 특별히 파견하여 본 고을의 수령의 입회하에 채취해 오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尊崇都監啓曰: "玉寶·玉冊所入玉石, 出於**南陽地**, 依前例都監監造官別遣, 本官守令眼同採來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 54권, 광해 4년(1612) 6월 14일(정축) 2번째기사>(정초본)

경제/광공업

예조 판서 이세좌 등이 남양에서 경석이 산출되었다고 아뢰다

예조 판서 이세좌(李世佐)와 참의(參議) 최진(崔璡)이 아뢰기를, "전일에 천사(天使) 정동(鄭同)이 왔을 때 신이 도승지(都承旨)로 있었는데, 문안차 그들의 관소(館所)에 가니 두목(頭目) 한 사람이 나팔을 잘 불기에 신이 그 곡조(曲調)의 이름을 물이니 '교지(交趾)에서 쓰이는 해청나천아곡(海靑拏天鵝曲)이다.' 하므로 신이 곧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傳受)하여 익히도록 아뢰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옛적에 석경(石磬)이 없어서 와전(瓦磚)을 대신 썼는데,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해주(海州)에서 거서(秬黍)가 산출되고 남양(南陽)에서 경석(磬石)이 산출되었으므로 비로소 황종(黃鍾)의 음률(音律)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 후에 세종이 박연(朴堧)에게 물으시기를 '중국의 음악이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내려준 음악과 같은가?' 하니, 박연이 '같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해외(海外)의 나라로 인정하여 반드시 음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완성되지 않은 악기를 우리 나라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음률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항상 이 일을 염려하여 음률을 이해하는 영인(伶人)으로 하여금 북경(北京)에 가서 전수하여 익히도록 아뢰고자 했지마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나라 사람이 북경에 조현(朝見)할 적엔 모든 조회(朝會)나 사연(賜宴)에 쓰이는 음악에 캄캄하여 무슨 곡조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문사(奏聞使)와 정조사(正朝使) 등이 가는 편에 태감(太監) 김보(金輔)에게 당악(唐樂)을 전수해 익히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김보는 우리 나라를 후하게 대우하여 내년에 사신으로 나올 때에 반드시 음악을 잘 하는 영인을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니,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傳受)해 익히게 하면 또한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통례원(通禮院)에서는 여창(臚唱)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겸인의(兼引儀)로 삼는데, 지금 이 직책을 겸무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불필요한 관원이므로 한갓 녹봉만 소비할 뿐이니 어찌 조정(朝廷)에서 관원을 설치한 뜻이 있겠습니까? 본조(本曹)와 이조가 함께 의논하여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서용(敍用)하면 쓸데 없는 인원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禮曹判書李世佐·參議崔璡啓: "前者天使鄭同之來, 臣爲都承旨, 以問安詣館所, 有頭目一人善吹喇叭. 臣問其曲名則曰: '交趾所用『海靑拏天鵝』之曲也.' 臣卽啓, 令本國人傳習. 我國舊無石磬, 以瓦磚爲之. 至世宗朝産秬黍於海州, 出磬石於南陽, 始爲黃鍾之律而用之. 後世宗問朴堧曰: '中朝之樂, 與本國欽賜之樂同歟?' 堧曰: '不同也.' 然則中朝人以我國爲海外之國, 必不能曉解音律, 以不成之器, 欽賜本朝, 以故音律不同也. 臣每慮此事, 欲使解音伶人赴京傳習, 欲啓而未果也. 況我國人朝京師, 凡朝會·賜宴所用之樂, 嘗不知爲何曲也. 今因奏聞·正朝等使之行, 語太監金輔, 以傳習唐樂之事, 則輔待我國厚, 明年奉使出來之時, 必帶善音伶人而來, 使我國人傳習, 則不亦便乎? 通禮院擇其能臚唱者, 以爲兼引儀, 今兼是職者, 率皆冗員, 徒費祿食而已, 豈朝廷設員之意乎? 請令本曹與吏曹, 同議取才置簿, 隨干敍用, 庶無冗員." 傳曰: "依所啓."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6일(을미) 2번째기사>

3. 사회(社會)

⑴ 가족

사회/가족

백 세 이상의 노인들의 혜양 여부를 보고토록 제도 감사에게 유시하다

여러 도의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선덕(宣德) 10년에 교지(敎旨)하기를, ‘백 세 된 노인에게는 쌀 10석을 주고, 또 감사로 하여금 연달아 술과 고기를 주게 하라.’ 하였는데, 이 법을 준행(遵行)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갖추 상고하여 아뢰라. **남양(南陽)의 장인려(張仁呂)는 백 2세이고**, 강화(江華)의 이수(李守)의 아내 이씨(李氏), 용인(龍仁)의 정부개(鄭夫介), 온양(溫陽)의 김길(金吉), 여산(礪山)의 양의금(良衣金), 나주(羅州)의 이원(李原), 제주(濟州)의 석주(石柱)의 아내 소근차니(召斤次泥) 등은 모두 다 백 세이며 남포(藍浦)의 최택(崔澤)의 아내 김씨(金氏)는 백 8세, 합천(陜川)의 박씨(朴氏)는 백 3세인데, 이들 늙은이는 상항(上項)의 입법(立法)에 의하여 혜양(惠養)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아울러 상고해 아뢰라. 이뿐만 아니라, 기타의 나이가 백 세 된 사람에게도 이 법에 의하여 존휼(存恤)하라.” 하였다.

○諭諸道監司: “宣德十年, 敎百歲老人, 歲給米十石, 又令監司連給酒肉, 此法遵行與否, 備考以啓. **南陽**張仁呂百二歲, 江華李守妻李氏·龍仁鄭夫介·溫陽金吉·礪山良衣金·羅州李原·濟州石柱妻召斤次泥, 竝皆百歲. 籃浦崔澤妻金氏百八歲, 陜川朴氏百三歲. (比)［此］等老, 依上項立法惠養與否, 竝考以聞. 非特此也, 其他年滿百歲者, 亦依此法存恤.

<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11월 28일(경술) 2번째기사>

⑵ 향촌

사회/향촌

윤집·오달제가 하직 인사를 할 때 윤집이 아들 셋이 남양에 있다고 하다

최명길(崔鳴吉)·이영달(李英達)을 파견하여 국서(國書)를 가지고 오랑캐 진영에 보내고, 화친을 배척한 신하인 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를 잡아 보내었다. 윤집 등이 하직 인사를 하자,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들의 식견이 얕다고 하지만 그 원래의 의도를 살펴 보면 본래 나라를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오열(嗚咽)하였다. (…) 윤집이 아뢰기를, **"신은 아들 셋이 있는데, 모두 남양(南陽)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부사(府使)가 적을 만나 몰락하였다고 하니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오달제가 아뢰기를, "신은 단지 70세 된 노모가 있고 아직 자녀는 없으며 임신 중인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참혹하고 참혹하다." 하였다. (…)

○己巳/遣崔鳴吉·李英達, 齎國書, 送虜營, 執送斥和臣尹集·吳達濟. 集等辭朝, 上引見曰: "爾等識見雖淺, 原其情事, 本非誤國, 而今日竟至於此, 古今天下, 寧有是事?" 仍泣下嗚咽. (…) 集曰: "臣有三子, 俱往南陽. 今聞, 府使遇賊淪沒云, 不能知其死生矣." 達濟曰: "臣只有七十老母, 而時無子女, 只有腹中兒矣." 上曰: "慘矣·慘矣." (…)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1637) 1월 29일(기사) 1번째기사>

⑶ 윤리·풍속

사회/윤리·풍속

계모 곽씨와 재산 싸움을 한 박저생이 자살하다

박저생(朴抵生)이 자살하였다. 박저생은 고 전서(故典書) 박침의 아들이다. 병술년 여름에 계모 곽씨(郭氏)와 더불어 가산(家産)을 다투다가 헌부(憲府)에 송사하니, 곽씨가 말하기를,

"박저생은 전에 아비의 비첩(婢妾) 파독(波獨)을 간음했습니다."

하였다. 박저생의 아우 박강생(朴剛生)이 이때에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이 되어 어두운 새벽에 나아가 청하여 이로써 증좌(證佐)를 비록 갖추었으나, 옥사가 오래도록 결정되지 아니하니 밖의 의논이 모두 헌부를 허물하였다. 임금이 듣고 그들을 비린(鄙吝)하게 여겨, 그 해 7월에 사헌부에 명하여 전등(前等)의 대원(臺員)이 사송(詞訟)을 계류(稽留)한 죄를 핵실하게 하여, 전 대사헌(大司憲) 허응(許應)을 연산(連山)으로, 집의(執義) 이맹균(李孟畇)을 원주(原州)로, 장령 이명덕(李明德)을 곡산(谷山)으로, 지평 허항(許恒)을 진주(鎭州)로 유배시켰다. 이에 장령 김질(金咥), 지평 이승직(李繩直)이 곽씨의 작첩(爵牒)을 거두고, 박저생과 파독도 한 곳으로 불러서 빙문(憑問)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질 등도 또 박강생의 연고 때문에 박저생을 편들어 곽씨를 엄하게 고문하니, 듣는 사람들이 분개[憤嘆]하였다. 곽씨의 아들 박눌생(朴訥生)이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니, 임금이 곽씨를 석방하도록 명하고 김질·이승직 등을 견책하고 일을 보지 말게 하고는, **인하여 김질은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나가게 되고**, 이승직은 지의주사(知宜州事)로 삼았다. 대사헌 한상경(韓尙敬) 등이 아뢰었다.

"김질 등은 곽씨를 엄하게 고문하였으니 공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곽씨의 죄는 비록 실지의 율(律)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이죄(二罪) 이하에 해당되며, 유령(宥令)이 이미 공포되었음에도 일찍이 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사정(私情)을 두고 행하였으니, 이목(耳目)의 관리[官]와 법을 받드는 뜻이 아닙니다." 곧 김질·이승직의 직임을 파면하였다.

○朴抵生自殺. 抵生, 故典書忱之子也. 丙戌夏, 與繼母郭爭家産, 訟于憲府, 郭言抵生嘗奸父妾婢波獨. 抵生弟剛生時爲議政府檢詳, 昏曉造請, 以是證佐雖具, 獄久不決, 外議皆咎憲府. 上聞而鄙之, 其年七月, 命司憲府劾前等臺員稽留詞訟之罪, 流前大司憲許應于連山, 執義李孟畇于原州, 掌令李明德于谷山, 持平許恒于鎭州. 於是, 掌令金咥·持平李繩直, 請收郭氏爵牒, 與抵生·波獨一處憑問, 從之. 咥等亦以剛生之故右抵生, 痛拷郭氏, 聞者憤嘆. 郭氏子訥生撾申聞鼓訟冤, 上命釋郭氏, (遣)［譴］責咥·繩直等勿視事, 尋出咥爲**南陽府使**, 繩直知宜州事. 大司憲韓尙敬等啓曰: "咥等痛栲郭氏, 已爲不公. 況郭氏之罪雖實, 據律當在二罪以下. 宥令已布, 曾不之顧, 挾私而行, 非耳目之官奉法之意也." 乃罷咥·繩直職.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1일(임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예조판서 신상이 남양에 옥공을 보내 석경 만드는 일을 마무리하게 하라고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 신상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는 농사 시기이므로 석경(石磬) 만드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입추(立秋)가 되었으니 옥공(玉工)을 남양(南陽)에 보내어 만들기를 마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석경(石磬)을 보니 돌의 품질이 가장 좋으므로 경쇠[磬]도 또한 중국 경쇠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조정(朝廷)에서 내린 경쇠는 갖추었는가 갖추지 않았는가.” 하였다.

신상이 대답하기를, “다만 2가(架)가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와경(瓦磬)으로 대신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옥공(玉工)을 보내어 만들기를 마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壬申/視事. (…) 申商又啓曰: “前以農時, 命停造石磬, 今已立秋, 乞送玉工於南陽, 畢造.” 上曰: “予見其石磬, 石品最好, 磬亦不下唐磬. 朝廷所賜之磬備乎否?” 商對曰: “只有二架, 其餘皆以瓦磬代之.” 上曰: “然則送工畢造可矣.”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7일(임신)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남양 등지의 흉년과 같이 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

전 영동 현감(永同縣監) 곽순(郭珣)이 글을 올리기를, (…)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이를 추문(推問)하게 하니, 사헌부에서 곽순이 제 마음대로 환자[還上]를 준 죄를 탄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황자후(黃子厚)·진준(陳遵)·성달생(成達生)도 또한 이 일로써 죄를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생각하여 보니, **혹시 남양(南陽)·죽산(竹山) 등지의 흉년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급히 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반드시 전하여 보고한다면 늦어서 일이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비록 먼저 나누어 주고 후에 아뢰었더라도 옳을 것이다.” 하였다.

○前永同縣監郭珣上言曰: (…) 上令司憲府推之. 憲府劾啓郭珣擅給還上之罪, 上曰: “曩者黃子厚·陳遵·成達生, 亦以此事受罪, 其後更思, 倘有如南陽·竹山等處之凶荒, 不可不急救, 若必傳報, 緩不及事, 雖先發後聞可矣.”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7일(경인)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어을우동의 음행 행적으로 남양 경저에서 정을 통하다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 어느 날 계집종이 오종년을 맞이하여 오니, 어을우동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다. 또 일찍이 미복(微服)을 하고 방산수(方山守) 난(瀾)의 집 앞을 지나다가, 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정호(情好)가 매우 두터워서 난이 자기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또 단옷날[端午日]에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都城) 서쪽에서 그네뛰는 놀이를 구경하는데, 수산수(守山守) 기(驥)가 보고 좋아하여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뉘 집의 여자냐?” 하였더니, 계집종이 대답하기를, “내금위(內禁衛)의 첩(妾)입니다.” 하여, **마침내 남양(南陽) 경저(京邸)로 맞아들여 정(情)을 통했다**. 전의감(典醫監)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이 종[奴]을 파는 일로 인해 어을우동의 집에 이르러서 값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어을우동이 박강창을 나와서 보고 꼬리를 쳐서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어을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팔뚝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

○絞於乙宇同. (…) 一日, 女邀從年而至, 於乙宇同迎入與奸. 又嘗以微服, 過方山守瀾家前, 瀾邀入奸焉, 情好甚篤, 請瀾刻名於己臂涅之. 又端午日, 靚粧出游, 翫鞦韆戲于城西, 守山守驥, 見而悅之, 問其女奴曰: “誰家女也?” 女奴答曰: “內禁衛妾也.” 遂邀致南陽京邸通焉.

典醫監生徒朴强昌, 因賣奴, 到於乙宇同家, 請面議奴直, 於乙宇同, 出見强昌挑之, 迎入奸焉, 於乙宇同, 最愛之, 又涅名於臂. (…)
<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18일(갑자) 5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남양의 유생 정소가 단지하여 어미의 병을 고치니 물건을 내려 주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남양(南陽)에 사는 유생(儒生) 정소(鄭韶)는 그 어미가 병이 났을 때를 당하여 손가락을 끊어 약과 합해서 바쳤더니**, 어미의 병이 관연 다 나았다고 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물건을 내려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京畿南陽居儒生鄭韶, 値母有疾, 斷指和藥以進, 母病果愈. 請依『大典』賜物." 從之.
<성종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25일(갑진)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 관찰사 김수동이 구휼 대책 등을 아뢰다

경기 관찰사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京畿)의 각 고을은 모두 실농(失農)을 해서 봄에는 적지(赤地)에 종자를 뿌리지 못했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 흘러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근(飢饉)이 겹쳐 이를 뿐 아니라, 명년에는 반드시 종자가 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군량(軍糧)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피곡(皮穀) 으로 거두어들여서 종자를 지급하도록 계청했는데, 윤허하시므로 신이 각 고을의 종자와 전결(田結)의 수효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효는 많고 곡식의 수량은 부족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혜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만약 전량(全量)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안하므로, 다만 재해(災害)가 가장 심한 고을만 골라서 아뢰옵니다. 수원(水原)·안산(安山)·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과 같은 고을은 재해가 가장 심하고, 파주(坡州)·장단(長湍)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고을은 네 갈래 길의 요충지(要衝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입거(入居)하는 백성들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백성들의 재력(財力)이 갑절이나 곤궁하게 된 데다가, 명년에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더욱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적은 각 고을들은 금년의 공물(貢物)과 조세를 경창(京倉)으로 올리지 말고 주창(州倉)에 바치게 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고, 명년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지난 을묘년에 파선된 남양(南陽)의 조세는 지금 당연히 경창으로 징수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京畿觀察使金壽童啓: "今年京畿各官皆失農. 春則赤地千里, 種不入土; 夏則大水漂流, 堤堰潰決. 非徒飢饉荐臻, 明年種子必無一粒. 臣前啓請軍儲所需, 竝以皮穀收之, 以給種子, 命許之. 故臣磨鍊各官種子及田結之數, 田結數多, 穀數不足, 雖盡給之, 種子太半不足, 何以處之? 京畿根本之地, 理宜優恤, 然一道貢稅, 若全數不納, 則於心未安, 只抄其災傷尤甚郡縣以啓. 若水原·安山·富平·金浦·通津則災傷尤甚, 坡州·長湍則不至甚焉. 然此二郡介於四途之衝, 今年入居之民, 皆輻輳於此, 民力倍困, 明年天使之來, 則又有甚焉. 上項各官今年貢稅,

請勿上京, 納於州倉, 以除轉運之弊, 以給明年之種. 去乙卯年敗船南陽漕稅, 今當徵納京倉, 請納州倉, 以給他縣種子." 從之. (…)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3일(임신)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조강에서 홍숙이 여역이 경기 남양 등지에도 있다고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 지사 홍숙(洪淑)은 아뢰기를, "여역은 단지 충청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듣건대 경기 남양(南陽) 등지에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 흉년이 든 해에는 여역 때문만이 아니고 굶주림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반드시 많은 법입니다**. 연전에 평안도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모두 실농한 민중들이고, 지금 충청도의 여역도 실농한 고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굶주림 때문에 죽어도 여역으로 죽었다 하므로 이웃 마을이나 친척들이 전염될까 꺼려 구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죽게 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단지 여역으로만 구호하지 말고 각별히 돌보는 계책을 조치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야흐로 봄이어서 온역(瘟疫)이 없는 데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망자가 과연 모두 여역만은 아닐 것이니, 잘 구호하여 돌본다면 많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하였다.

○乙丑/御朝講. (…) 知事洪淑曰: "癘疫, 非但忠淸道也, 聞, 京畿南陽等處, 亦或有之. 凶歉之年, 非但癘疫, 因飢饉而死者, 必多. 年前, 平安道病死者, 皆失農之民, 而今忠淸道癘疫, 亦發於失農之官, 雖因飢死, 而名之癘疫, 故隣里親戚, 憚於傳染, 莫肯救護. 以此, 不無致死, 請毋徒以癘疫救之, 而賑恤之策, 各別措置." 上曰: "方春瘟疫, 無處不然而然, 其多死者, 果非盡癘疫也, 善爲救恤, 則庶不至多死矣."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2월 12일(을축)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양연이 진휼책과 실농의 문제에 대해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이 진휼(賑恤)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굶주린 많은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6도【경기·충청·황해·강원·전라·경상】가 극심한 흉작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도가 더욱 심하여 구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도는 본래 전라도와는 달리 곡식이 적은데다 상·하(上下)의 도에 실농한 곳이 매우 많아 조정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지방도 한강 이남의 15개 이상의 고을【**과천(果川)·이천(利川)·안산(安山)·인천(仁川)·양성(陽城)·음죽(陰竹)·안성(安城)·광주(廣州)·수원(水原)·용인(龍仁)·양지(陽智)·진위(振威)·남양(南陽)·여주(驪州)·부평(富平)**】이 경상도처럼 실농이 매우 심하고 충청도가 그 다음입니다. 황해도 연해(沿海)의 각 고을은 실농이 그다지 심하진 않고 산간 고을은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니 그 다음입니다. 경상·충청·황해도는 내년 봄에 경관(京官)을 보내어 직접 구황(救荒)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경관을 보내면 폐단은 있지만 경관이 내려가게 되면 조정의 의논과 성상의 염려하심을 모두 직접 알게 되어 구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계획을 세워 공문을 보내 이첩하지만 각도의 관찰사 중에 진심으로 받들어 시행하는 자가 없으며 혹 있더라도 받들어 시행하는 수령이 없습니다.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시종이나 대간 중에서 부지런하고 일에 능숙하며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보내 간단하게 구제할 물자를 가지고 민간에 출입하면서 굶주린 백성이 있으면 먹여서 구제하게 해야 수령

도 두려워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글로만 공문을 보내 이첩하여 먼 지방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

○辛亥/御朝講. (…) 知事梁淵曰: “臣任賑恤之責, 措置之事, 計無所爲. 可行節目, 已啓下矣, 然不可以此賑救許多飢民. 今年六道,【京畿·忠淸·黃海·江原·全羅·慶尙】凶荒已極, 其中慶尙道尤甚, 賑救最難. 此道穀本不多, 非全羅道之比, 上下道失農處甚多. 朝廷不另加措置, 則救活難矣. 京畿漢江以南十五餘官,【果川·利川·安山·仁川·陽城·陰竹·安城·廣州·水原·龍仁·陽智·竹山·振威·南陽·驪州·富平】失農尤甚, 與慶尙道無異也, 忠淸道其次也. 黃海道沿海各官, 不甚失農, 山郡方食田穀, 乃其次也. 慶尙·忠淸·黃海等道, 明春須委送京官, 親爲救荒爲當. 別遣京官, 弊則有之, 然京官若下去, 則朝議聖念, 皆所親知, 其於救荒, 庶可能也. 朝廷之上, 雖有所規畫行移, 各道觀察使, 盡心奉行者, 未之聞也. 雖或有之, 守令無有奉行者. 雖有弊, 擇侍從·臺諫有諳練勤事, 且無病者而送之, 出入民間, 簡略便易. 持救活之物, 如有飢民, 飼而救之然後, 守令亦有所畏懼矣.(…)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29일(신해)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광주의 사인 이오가 기강과 공도가 바루어지는 길에 대해 아뢰다

광주(廣州)의 사인(士人) 이오(李晤)가 유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 반정(反正)하신 초기에 포흠(逋欠)을 말끔히 씻어 주어 신유년 이전의 것은 면제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객관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른바 포흠이라는 것은 백성이 납부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찍이 탐관 오리들이 전액을 백성에게 징수한 뒤 권세가에 아첨하여 자기 한 몸 살찌울 자본으로 삼고는 공가(公家)에 바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간혹 납부하지 못한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후임 수령들이 계속 그 문제로 백성에게 위협하여 징수하고 있으니, 면제해 준다는 이름만 있을 뿐 백성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근래 복호(復戶)되고 면역(免役)되는 경우가 반을 차지하니, 권귀의 사패(賜牌)와 도감(都監)의 포수(砲手) 및 둔전(屯田)과 수령의 아록(衙祿) 및 둔전 등이 이것이고, **게다가 토호(土豪)가 무단(武斷)하여 부역에 예속되지 않는 무리들도 많아 하남(河南)과 남양(南陽)에는 물어 볼 수조차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저 부역의 책임이 있는 자는 오로지 무고한 궁민(窮民)들뿐입니다. 그러니, 전하가 하교하신 대로 ‘부역이 균등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 신 역시 감히 그렇지 않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 답하기를, “숨기지 않고 할 말을 다한 그대의 정성을 아름답게 여긴다. 아뢴 일은 내가 가슴에 새기고 채택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丁未/廣州士人李晤, 應旨上疏曰: (…) 反正之初, 蕩滌逋欠, 辛酉以上, 悉令蠲免, 而夷考其實, 則所謂逋欠, 非民不納, 曾是貪官汚吏, 盡徵於民, 以爲媚竈·肥己之資, 而不納於公家者也. 雖或間有不納之民, 而繼爲守令者, 因以脅徵於民, 是雖有蠲免之名, 而民不蒙其澤矣. 況近來復戶·免役者居半, 權貴之賜牌也, 都監之砲手及屯田也, 守令之衙祿及屯田也. 加之以多土豪武斷, 不隸役之輩, 有河南·南陽不可問之處, 而所責賦者, 唯是無辜之窮民, 殿下所敎賦役不均, 臣亦不敢謂之不然也. (…) 答曰: “嘉爾盡言不諱之誠. 所陳之事, 予當體念採施焉.”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1628) 8월 19일(정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강도의 사민들이 순절자에 대한 사당을 세우다

강도의 사민(士民)들이 병자년에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이상길(李尙吉)·심현(沈誢)·이시직(李時稷)·송시영(宋時榮)·구원일(具元一) 및 **남양 부사(南陽府使) 윤계(尹棨) 등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냈는데,** 윤계는 강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참여된 것이다.

○江都士民, 以丙子死節人金尙容·李尙吉·沈誢·李時稷·宋時榮·具元一及南陽府使尹棨等, 立祠祀之. 棨以久居江都, 故亦與焉.

<인조실록 41권, 인조 18년(1640) 8월 13일(임술)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영상 정태화가 선조가 효리로 다스린 사례로 한 무인을 남양부사에 제수된 일화를 소개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 태화가 아뢰기를, "국가는 효리(孝理)로 다스려야 합니다. 선조조(宣祖朝) 때 집이 원주(原州)인 한 무인이 있었는데, 연거푸 육진(六鎭)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체직되어 돌아온 뒤 다시 변방의 수령에 제수되자, 그 사람이 상소하여 집에 가 노모를 뵙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선조께서 이를 가엾게 여겨 특별히 남양 부사(南陽府使)에 제수하여 어미를 봉양하게 하니,** 그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하니, 상이 문규를 체직시킬 것을 허락하였다.

○乙未/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相鄭太和曰: (…) "國家以孝理爲治. 宣祖朝, 有一武人, 家在原州, 連爲六鎭倅. 遞歸之後, 又除邊倅, 其人上疏, 乞往見老母. 宣祖愍然, 特除南陽府使, 使養其母, 其人感泣矣." 上許遞文奎.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1664) 4월 3일(을미)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남양 부사 정내주가 그곳 재해민들에게 진휼청의 쌀을 주고 돈으로 갚기를 청하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내주(鄭來周)가 상소하여 본고을의 재해를 입은 백성들의 황급한 정상을 진달하고 진휼청의 쌀 8백 곡을 사서 요리하여 진휼에 보충하게 하되 진휼청에서 발매(發賣)하는 규례에 의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갚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南陽府使鄭來周上疏, 陳本邑被災民情遑急之狀, 請買賑廳米八百斛, 許令料理補賑, 作錢還報, 依賑廳發賣之例, 批曰: "令備局稟處."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1743) 10월 8일(정사)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좌의정 조현명이 흉작 해일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진휼에 관한 차자를 올리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금년에 국내의 농사 형편은 대개 흉년이 들었고, 연해(沿海)의 고을은 해일이 몹시 참혹하게 일어서 바닷물이 넘쳐서 적지(赤地)가 되었습니다. 만약 홍수·가뭄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남은 이삭이라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한 톨의 낟알도 거두어들일 것이 없는데 그들로 하여금 속미(粟米)·마사(麻絲)를 내게 한다면 장차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아! 고혈(膏血)은 오히려 빼앗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혈도 또한 다하였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금년 비총(比摠)이외에 따로 해일에 의한 재앙의 명목으로 지급하되, 그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은 고을의 정공(正供) 및 신미포(身米布)를 백성에게 내게 하는 것을

특별히 견감시켜 주어 약간이라도 안보(安保)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상평법(常平法)은 곡가(穀價)를 공평하게 하여 백성이 먹는 것을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진청(京賑廳)의 곡물을 보건대, 거의 7, 8만 석에 이르는데,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나가는 것이 없어서 대체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3만 석을 한도로 획출(劃出)하여 2만 석은 충청도에 지급하고, 1만 석은 경기도에 지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추위에 얼지 않게 해야 하며, 배를 마련해 실어 날라 연읍(沿邑)에 나누어 보내어 봄에 진휼(賑恤)할 때까지 한정해서 값을 감하여 발매하게 해서 백성의 위급함을 구제하고, 그 본전(本錢)은 가을 쌀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본청에 다시 쌓아 두어 훗날 불시에 쓸 것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유사(有司)가 진휼하는 비용에 대해 그 힘을 논하나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하는 혜택이 두루 미치지 못하고, 묘당(廟堂)에서 진정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을 논하나 불에 타는 듯한 위급을 구제하는 일은 항상 느슨하니, 선왕께서 백성을 다친 사람을 보듯이 하는 인정(仁政)에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항상 대명(大明)의 인종 황제(仁宗皇帝)가 탁지(度支)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말게 하라는 가르침에 유의하소서.

진휼은 백급(白給)하는 것이 진실로 좋습니다. 그러나 주자(朱子)가 절동(浙東)을 진휼하고, 부필(富弼)이 청주(靑州)를 진휼하였을 때 모두 죽을 마련했었습니다. 두 현인이 어찌 백급하는 것이 죽보다 나음을 알지 못했겠습니까마는, 백급은 잇대어 주기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죽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래에 각도에서 진휼을 베풀 때 오로지 백급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간위(奸僞)가 날로 늘어나고 비용은 절제가 없습니다. 만약 거듭 흉년을 만나게 되면 국력이 장차 고갈되고 말 것이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급이 부족하면 설식(設食)·설찬(設饌)하고, 심한 경우 간혹 소를 잡아 먹이는 것은 명예를 구하고 상(賞)을 기대하는 습관이니, 마땅히 선조(先朝) 병진년(丙辰年)의 예에 의거해서 엄중하게 금지시키고, 2월 30일 이전에는 죽을 마련하고 3월 초하루 이후부터는 급량(給糧)하는 것을 기록하여 법령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에 마땅히 하교하겠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충청 감사 이창의(李昌誼)가 해일로 계문(啓聞)하였는데, **이때 기내(畿內)의 통진(通津)·남양(南陽) 등 연해의 여러 곳에 해일로 입은 피해가 더욱 심했으므로**, 조현명이 차자에서 언급한 것이었다.

○左議政趙顯命上箚, 略曰: 今年國內農形, 大抵失稔, 沿海邑海溢孔慘, 鹹水所及, 一色皆赭. 非若水·旱, 猶有餘莖滯穗, 可以得食, 民無一粒之收, 而使之出粟米·麻絲, 則將安所取辦哉? 嗚呼! 膏血猶可浚, 今膏血且盡矣, 寧不哀哉? 臣謂今年比摠外別給海溢災名, 其被災特甚里面正供及身米布出於民者, 特許蠲減, 爲一半分安保之地. 常平之法, 所以平穀價而裕民食也. 見今京賑廳穀物, 幾至七八萬石, 有入無出, 率歸陳腐. 臣謂限三萬石劃出, 二萬石給忠淸道, 一萬石給京畿道, 使之趁未凍, 具舟楫載運分送沿邑, 限春賑減價發賣, 以救民急, 其本錢待秋作米, 還積本廳, 以爲他日不時之費宜矣. 有司恤費之論力, 而若保之澤未普, 廟堂鎭定之論勝, 而救焚之擧常緩, 恐有歉於先王視如傷之仁. 伏願聖明, 常以大明仁宗皇帝勿令度支知之之敎, 存心焉. 賑恤白給固善矣. 而朱子浙東之賑, 富弼靑州之賑, 皆設粥. 兩賢豈不知白給之優於粥, 而白給則難繼, 故不得已以粥也. 近來各道設賑, 專以白給爲主, 故奸僞日滋, 而費用無節. 若値荐饑, 則國力將竭矣, 寧不可憂哉? 白給之不足, 設食·設饌, 甚或屠牛而饗之, 其沽名要賞之習, 謂宜痛禁依先朝丙辰例, 二月三十日以前設粥, 三月初一日以後給糧, 著爲令. 批曰: "所陳者, 當下敎矣." 先是, 忠淸監司李昌誼, 以海溢啓聞, 時畿內通津·南陽等沿海諸處,

被海溢尤甚, 故顯命劄及之.
<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1747) 9월 20일(정미) 3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경기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경기에서 진휼을 1월부터 실시하여 이때에 와서 끝마쳤다.【교동(喬桐)·**남양**(**南陽**)·부평(富平)·인천(仁川)·통진(通津)·풍덕(豊德)·안산(安山)·김포(金浦)·교하(交河)·양성(陽城) 등 고을과 영종(永宗)·화양(**花梁**)·덕포(德浦)·주문(注文)·덕적(**德積**)·장봉(長峯) 등 진(鎭)을 대상으로 총 기민 14만 8천 4백 90구에게 곡물 1만 2천 3백 30석을 나누어 주었다】

○京畿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喬桐·**南陽**·富平·仁川·通津·豐德·安山·金浦·交河·陽城等邑, 永宗·**花梁**·德浦·注文·**德積**·長峯等鎭, 摠飢民十四萬八千四百九十口, 賑穀一萬二千三百三十石】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 7월 5일(갑인)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예조에서 각 식년에 충·효·열에 대해 정부에 보고한 남양의 열녀 명단

예조에서 각 식년(式年)에 서울과 외방에서 충(忠)·효(孝)·열(烈)에 대해 장계(狀啓)로 정부에 보고한 것을 분등(分等)하여 초계(抄啓)하였다. (…) 열녀 정려질(烈女旌閭秩)【(…) **남양(南陽)의 고 사인 윤유무(尹惟懋)의 처 홍씨**, 안산(安山)의 고 사인 이애영(李昳永)의 처 유씨(柳氏), (…)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1832) 4월 13일(기축) 2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양주, 남양 등 고을의 재난을 당한 사람과 집에 대해 휼전을 베풀다

양주(楊州)·남양(南陽)·양근(楊根)·안산(安山)·홍천(洪川)·춘천 등 고을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初八日. 給楊州·**南陽**·楊根·安山·洪川·春川等邑漂頹戶及溘死人恤典.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1865) 8월 8일(경자) 1번째기사>

사회/윤리·풍속

고을들을 구제하도록 당부하고 여주 목사와 남양 부사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진강(進講)을 마쳤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경연(經筵) 석상에서 듣자니 경기(京畿)의 7, 8개 고을 등지의 백성들이 모두 굶주려 부황이 들었다고 하였다. 운현궁(雲峴宮)에서 진대(賑貸)할 것을 내려 보낸 것이 있는데 그간 구휼되었는가?" 하니, 강관(講官)인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박영보(朴永輔)가 아뢰기를, "올해 경기도의 농사는 서북쪽이 흉년인데 근서(近西) 7, 8개 고을은 더욱 황폐하여 현재 구휼할 길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차에 지난번 운현궁에서 특별히 전(錢) 1만 5,000냥(兩)을 내려 진휼 자금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곡식을 바꾸어 지난해 말부터 급한 것을 먼저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후에 백성들을 돌보는 방도는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잘 구제하여 기필코 백성을 안주하게 할 터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박영보가 아뢰기를, “당장에 백성들을 구휼하는 큰 요체는 재해를 구제하고 환곡(還穀)을 내주는 두 가지 정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휼을 설행하는 곳은 7, 8개 고을이지만, 급재(給災)는 지차(之次)의 몇 개 고을까지 아울러 미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3,000결(結)을 획하(劃下)해 준다면 어느 정도 분표(分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곡을 내주는 정사도 처분이 있은 뒤에야 재해를 당한 백성들이 죽거나 유리걸식하는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3,000결이면 구제할 수 있겠는가? 묘당에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도내(道內)에서 정사를 잘하는 수령(守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니, 박영보가 아뢰기를, “정사를 잘하는 수령 중에서 안성 군수(安城郡守) 정기석(鄭箕錫)과 교하 군수(交河郡守) 조용하(趙龍夏)는 이미 금년 봄에 별천(別薦)으로 입계(入啓)하였으며, **그 후에 치적이 좋은 사람으로서는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순조(鄭順朝),**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인응(李寅應), 지평 현감(砥平縣監) 이정하(李貞夏), 포천 현감(抱川縣監) 임태준(任泰準)입니다. 이 네 수령은 다 요즘 치적이 특출한 자들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네 수령의 치적은 네 고을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바로 조정에도 매우 다행한 일이다. **여주 목사 이인응과 남양 부사 정순조는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지평 현감 이정하와 포천 현감 임태준은 승품(陞品)시켜 천전(遷轉)하되, 구애받지 말고 조용(調用)하라.” 하였다.

二十四日. 進講. 訖, 敎曰: “向於筵中, 聞畿甸七八邑等地, 民皆顚頷云. 自雲峴宮, 有所賑貸之下給者, 間爲賙恤否?” 講官京畿觀察使朴永輔曰: “今年畿內穡事, 西北告歉, 而近西七八邑, 尤爲赤地, 方以賑救無策爲憂悶. 向自雲峴宮特下錢一萬五千兩, 俾爲賑資, 以此換穀, 當先自歲前救急而爲始矣.” 敎曰: “伊後恤民之道, 就議廟堂, 善爲救濟, 期於安堵之地可也.” 永輔曰: “目下恤民之大要, 惟在災纔兩政. 而設賑惟在於七八邑, 給災則不可不竝及於之次幾邑. 若蒙三千結劃下, 庶可略略分俵. 至於纔政, 亦蒙處分, 然後災民可以無死亡流離之患矣.” 敎曰: “爲三千結, 則可以救濟乎? 就議廟堂可也.” 又敎曰: “道內善治守令爲幾人乎?” 永輔曰: “善治守令中, 安城郡守鄭箕錫·交河郡守趙龍夏, 已於今春, 別薦入啓. 而其後有治績者, **南陽府使**鄭順朝·驪州牧使李寅應·砥平縣監李貞夏·抱川縣監任泰準. 此四倅, 皆近日善治之尤著者也.” 敎曰: “四倅之治績, 非特四邑之幸, 卽朝廷之幸甚. 驪州牧使李寅應·**南陽府使**鄭順朝, 特爲加資; 砥平縣監李貞夏·抱川縣監任泰準, 陞品遷轉, 無礙調用.”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10월 24일(병진) 1번째기사>

4. 문화(文化)

(1) 사상

문화/사상

태상왕이 남양의 관화사를 혁파하여 그 전민을 흥덕사에 소속시켰다는 내용.

태상왕(太上王)이 새 전각(殿閣)을 희사하여 절[寺]을 만들고 도승통(都僧統) 설오(雪悟)로 주지(住持)를 삼으니, 임금이 절의 이름을 흥덕(興德)이라 내려 주고 화엄종(華嚴宗)에 붙였으며, 전지(田地) 2백 결(結)과 노비(奴婢) 50구(口)를 주고, **종(宗)의 소속 액수(額數) 안의 남양(南陽) 관화사(貫華寺)를 혁파(革罷)하여 그 전민(田民)을 옮겨 주었다.**

○己卯/太上王捨新殿爲寺, 以都僧統雪悟爲住持. 上賜名興德, 屬華嚴宗, 賜田二百結·奴婢五十口. 革宗屬額內南陽貫華寺, 移其田民給之.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4일(기묘) 1번째기사>

문화/사상

여러 고을의 복을 빌던 절을 명찰을 대신 지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명찰(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지난 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사사(寺社)에 주지(住持)를 차하(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山水) 좋은 곳의 대가람(大伽藍)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한다면, 거의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조계종(曹溪宗)에 (…) **남양(南陽)**의 홍법사(弘法寺) (…) 이고, 천태종(天台宗)에 (…) 용구(龍駒)의 서봉사(瑞峰寺)이고, (…) 성석린(成石璘)이 본래 부처에게 아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었는데, 식자(識者)들이 비난하였다.

○議政府請以名刹, 代諸州資福, 從之. 啓曰: "去年寺社革去之時, 自三韓以來大伽藍, 反在汰去之例, 亡廢寺社, 差下住持者, 容或有之. 僧徒豈無怨咨之心? 若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庶使僧徒得居止之處." 於是, 諸州資福寺, 皆代以名刹. 曹溪宗: (…) 南陽弘法寺, (…) 天台宗: (…) 龍駒瑞峰寺. (…) 成石璘素佞佛, 故有是請, 識者譏之.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일(신사) 2번째기사>

문화/사상

호조가 남양 사나사에서 전국의 대종과 동주로 주전할 수 있도록 청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남양(南陽) 사나사(舍那寺)에서 주전(鑄錢)할 동(銅)을 각도의 혁파하여 없앤 절과 각 종(宗)에서 혁파하여 없어진 사찰의 대종(大鍾)과 동주(銅柱)를 부수어서 계속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啓: "南陽舍那寺鑄錢銅, 請令各道, 將破亡寺及各宗革寺大鍾銅柱破取, 連續輸送." 從之.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16일(임진) 3번째기사>

문화/사상

남양 현감 민시중이 사우를 창건하여 길재·김종직·제갈 무후 등을 배향하다

송준길이 인동(仁同)의 길재(吉再), 밀양(密陽)의 김종직(金宗直), 김포(金浦)의 제갈 무후(諸葛武侯)의 사우(祠宇)의 일을 진달하고 모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민시중(閔蓍重)이 남양 현감으로 있을 때 사우를 창건하고 제갈 무후와 호 문정공(胡文定公)을 함께 배향하였으니**, 대체로 주자(朱子)가 와룡강(臥龍岡)에 사우를 세운 뜻을 취한 것이다. 부사 윤계(尹棨)가 정축년의 난리에 사절하였다고 배향하여 사액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인동과 밀양 역시 일찍이 사액을 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이때 일체로 시행하였다.

○宋浚吉以仁同吉再·密陽金宗直·金浦趙憲書院及**南陽**諸葛武侯祠宇事陳達, 請竝賜額, 上從之. 閔蓍重爲**南陽縣監**時, 創建祠宇, 以諸葛武侯·胡文定公同享, 蓋取朱子臥龍岡立祀之意. 又以府使尹棨, 節死丁丑之難, 配享而請額, 朝廷不許. 仁同·密陽書院, 曾亦請額, 而不得, 至是一體施行.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1669) 3월 11일(갑진) 2번째기사>

문화/사상

좌참찬 송준길이 남양에 제갈량의 사우에 사액을 청하다.

(…) 송준길이 또, 인동(仁同)의 길재(吉再), 밀양(密陽)의 김종직(金宗直), 김포(金浦)의 조헌(趙憲) 등의 서원과 **남양(南陽)의 제갈무후(諸葛武侯)의 사우(祠宇)에 관한 일을 진달하고 모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처음에 민시중(閔蓍重)이 남양 현감으로 있을 때 사우를 창건하고 제갈무후와 호 문정공(胡文定公)을 함께 배향하였으니, 대체로 주자(朱子)가 와룡강(臥龍岡)에 사우를 세운 뜻을 취한 것이었으며, 그곳 부사 윤계(尹棨)가 정축년의 난리에 사절하였다고 배향하여 사액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인동과 밀양·김포의 서원들도 역시 일찍이 사액을 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이때 일체로 시행하였다.

(…) 浚吉又以仁同吉再·密陽金宗直·金浦趙憲書院及**南陽**諸葛武侯祠宇事陳達, 請竝賜額, 上從之. 初閔蓍重爲**南陽縣監**時, 創建祠宇, 以諸葛武侯·胡文定公同享, 蓋取朱子臥龍岡立祠之義, 又以府使尹棨, 節死丁丑之難, 配享而請額, 不許, 仁同·密陽·金浦書院, 亦曾請額而不得, 至是一體施行.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1669) 3월 11일(갑진) 1번째기사>

문화/사상

남양 안곡 서원의 은액(恩額) 철거를 철회토록 경기 유생 한덕봉 등이 상소하다

경기의 유생(儒生) 한덕봉(韓德鳳) 등이 상소하기를, "**남양(南陽)의 안곡 서원(安谷書院)은 현묘(顯廟) 무신년에 창건하여** 첨정(僉正) 박세훈(朴世薰)·승지(承旨) 박세희(朴世憙)·영상(領相) 홍섬(洪暹)을 아울러 향사(享祀)합니다. 경묘 신축년에 사액(賜額)하였는데 당저(當宁) 기유년에 조정의 명령으로 은액(恩額)을 철거하였으니, 유사(有司)의 신하에게 다시 하문하여 철거한 은액을 도로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다시 물어서 처치하겠다." 하였다.

○丙申/京畿儒生韓德鳳等上疏言: **南陽**安谷書院創建於顯廟戊申, 以僉正朴世薰·承旨朴世憙·

領相洪暹幷享. 景廟辛丑賜額, 而當宁己酉, 以朝令撤去恩額. 請更詢有司之臣, 還下已撤之額. 批曰: “當更問處之也.”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4월 26일(병신) 1번째기사>

⑵ 과학

문화/과학

김포·통진 등 연해 14고을에 해일이 일어 농사에 피해를 입히다

김포(金浦)·통진(通津)에서 남양(南陽)·수원(水原)과 연안(延安)·배주(白州) 등에 이르기까지 연해(沿海) 14고을에, 조수(潮水)가 창일하여 화곡을 손상시켰다.

○甲寅/自金浦·通津至南陽·水原及延安·白州等沿海十四州, 海潮漲溢, 損禾穀.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3일(갑인) 1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부에 지진이 일어나다

남양부(南陽府)에 지진(地震)이 일었다.

○癸巳/南陽府地震.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6월 28일(계사) 1번째기사>

문화/과학

평안도 숙천·경기도 남양 등지에 비가 왔다고 보고하다

평안도 숙천(肅川)과 경기도 남양(南陽)·안산(安山) 등 여덟 고을에 비가 왔다고 보고하였다. 이 때에 한참 가물었으므로 여러 도·군·현에 명령하여, "비가 오거든 물이 땅에 스며들어간 깊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급히 보고하라." 하였다.

○平安道肅川, 京畿南陽·安山等八邑報雨澤降. 時方旱, 命諸道郡縣有雨澤, 則入土深淺, 開具馳報.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13일(임자) 6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인 최구하가 거짓 온천을 신고하다

남양(南陽) 사람 전 녹사(錄事) 최구하(崔九河)가 대궐로 나아가 아뢰기를, "온천[溫水]이 본군 서쪽 21리 지점에 있습니다." 하니, 즉시 의복을 하사하고 사람을 시켜 구하와 함께 다시 살펴보게 한 바, 이는 허망한 말이었다. 〈그러나〉 죄주지 아니하였다.

○庚辰/南陽人前錄事崔九河詣闕告曰: "溫水在本郡西二里之地." 卽賜衣, 使人與九河更審, 乃虛言也, 不罪之.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27일(경진) 1번째기사>

문화/과학

제도 관찰사에게 물소를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에 물소[水牛]를 기르는데**, 사람을 받아서 상해(傷害)하였다고 한다. 이는 소가 성질이 사나와서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상시로 마음을 더하여 길들이지 아니하고, 혹은 들판에 놓아두어서 들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어 사람을 꺼리게 한 때문이다. 사람을 상해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죽여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 뒤로는 지키는 자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壬午/下書諸道觀察使曰: “今有水原·南陽畜養水牛, 抵觸傷害人, 非徒此牛性惡而然, 守者常時不加意擾習, 或放于原野, 與野獸無異, 以致忌人故也. 其傷害人者, 不得已殺之, 使不得蕃息, 是豈可乎? 今後令守者, 朝夕調習, 使之馴擾可也.”
<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임오) 1번째기사>

문화/과학

서울과 충청도 및 경상도 고을에 지진이 일다

서울과 충청도 충주·제천·정산(定山)·진천(鎭川)·청안(淸安)·아산·괴산(槐山)·결성(結城)·태안(泰安)·이산(尼山)·회인(懷仁)·면천(沔川)·임천(林川)·직산(稷山)·보령(保寧)·보은·공주·연산·진잠(鎭岑)·회덕(懷德)·문의(文義)·천안·홍주(洪州)·예산·덕산(德山)·음성(陰城)·남포(藍浦)·신창(新昌)·청주·연기(燕岐)·평택·서산·청풍(淸風)·당진·옥천(沃川)·해미(海美)·전의·목천(木川)·청산(靑山), 경상도 금산(金山)·개령·인동(仁同)·용궁(龍宮)·예천(醴泉), 경기의 광주·과천·양근(楊根)·지평(砥平)·여주·이천·양지(陽智)·용인·음죽(陰竹)·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수원·진위(振威)·양성(陽城)·안성·양천(陽川)·인천·부평·금포·통진(通津)·강화·파주·양주·포천·영평(永平), 전라도 익산(益山)·용안(龍安)·함렬(咸悅)에 지진이 있었다.

○丁巳/京師及忠淸道忠州·堤川·定山·鎭川·淸安·牙山·槐山·結城·泰安·尼山·懷仁·沔川·林川·稷山·保寧·報恩·公州·連山·鎭岑·懷德·文義·天安·洪州·禮山·德山·陰城·藍浦·新昌·淸州·燕岐·平澤·瑞山·淸風·唐津·沃川·海美·全義·木川·靑山, 慶尙道金山·開寧·仁同·龍宮·醴泉, 京畿廣州·果川·楊根·砥平·驪州·利川·陽智·龍仁·陰竹·衿川·安山·南陽·水原·振威·陽城·安城·陽川·仁川·富平·金浦·通津·江華·坡州·楊州·抱川·永平, 全羅道益山·龍安·咸悅地震.
<연산군일기 50권, 연산 9년 8월 23일(정사)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도의 남양·과천·금천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도(京畿道)의 남양(南陽)·과천(果川)·금천(衿川)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京畿南陽·果川·衿川等官雨雹.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7일(경인)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인천·남양 등에 지진이 있고, 충청도 대흥현의 민가에서 소가 기형의 새끼를 낳다

경기 인천(仁川)·남양(南陽)·강화(江華)·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금천(衿川)과 충청도 면천(沔川)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7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뒷다리의 큰 마디 아래에 두 다리가 더 났다.

○京畿仁川·南陽·江華·富平·陽川·金浦·衿川, 忠淸道沔川地震; 全羅道長水縣, 連七日隕霜; 忠淸道大興縣, 民家有牛生犢, 後脚大節之下, 又生二足.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8일(을축)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도 일대에 천둥, 경상도 일대에 지진이 있다

경기 **남양**(**南陽**)·인천(仁川)·안산(安山)·양근(楊根)·금천(衿川)에 천둥이 있고, 경상도 김해(金海)·영일(迎日)·밀양(密陽)·양산(梁山)·기장(機張)·동래(東萊)에 지진이 있었다.

○京畿**南陽**·仁川·安山·楊根·衿川雷動. 慶尙道金海·迎日·密陽·梁山·機張·東萊地震.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4일(경오)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남양부에 천둥이 있다

경기 남양부(南陽府)에 천둥이 있었다.

○京畿**南陽府**雷動.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8일(갑술)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와 황해도 일대에 지진이 있다

경기 남양(南陽), 황해도 문화(文化)·해주(海州)·강령(康翎)·신천(信川)에 지진이 있었다.

○京畿**南陽**, 黃海道文化·海州·康翎·信川地震.

<중종실록 54권, 중종 20년 5월 7일(을축)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관찰사 신상에게 남양 지역의 여역과 그 치료에 대해 하서하다

경기 관찰사 신상(申鏛)에게 하서(下書)하였다. "이번에 경(卿)이 계문(啓聞)한 것에 의해서 **남양(南陽) 지경 안에 여역(癘疫)이 전염하여 사망한 사람이 1백 7명이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매우 놀랐다.** 이 다음에는 죽은 사람들을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으로 구분하여 치계하라. 또한 지금 의원과 약품을 내려보내니 각가지로 조치하여 구료하라."

○乙酉/下書于京畿觀察使申鏛曰: 今因卿啓, 知**南陽**境內癘氣侵染, 死亡者百有七人, 予甚驚愕. 今後物故內, 良賤分辨馳啓. 且今下送醫員藥餌, 多般措置救活.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3월 2일(을유)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관찰사 신상이 남양의 여역의 피해 상황을 치계하다

경기 관찰사 신상(申鏛)이 치계(馳啓)하였다. **"남양(南陽)에서 여역(癘疫)으로 죽은 사람이 21명인데 현재는 퍼지지 않고, 다른 고을은 전염된 데가 없습니다."**

○辛亥/京畿觀察使申鏛馳啓曰: "**南陽**癘疫物故人二十一, 時未熾盛, 他無傳染之邑."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3월 28일(신해) 1번째기사>

문화/과학

햇무리가 지고 양이·관·이가 있고 충청도 지역에 지진이 있다

햇무리가 졌다. 양이(兩珥)·관(冠)·이(履)가 있었고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다. 지진이 발

생했다. 황해도 해주(海州)·연안(延安)·배천(白川) 등지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고 또 동남쪽에 흰 운기가 서로 연하여 해를 꿰었는데 모양은 둥근 무지개와 같았다. 양곁에 둥근 고리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태양만 했으며 홍자색(紅紫色) 빛깔이었다.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 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흔들렸고 창문이 모두 울렸다. **충청도 평택현(平澤縣) 및 경기 양주(楊州)·양천(陽川)·부평(富平)·남양(南陽)·진위(振威)·장단(長湍)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했다.**

○日暈, 兩珥, 冠履. 白虹貫日, 地震. 黃海道海州·延安·白川等官, 白虹貫日. 又於東南, 白氣相連貫日, 狀如圓虹, 兩傍有圓環, 其大如日, 紅紫色, 逾時乃消. 又地震, 屋宇搖動, 窓戶皆鳴. 忠淸道平澤縣, 及京畿楊州·陽川·富平·南陽·振威·長湍等邑, 地震.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1월 26일(신미) 4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도 광주·부평, 충청도 목천 등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 광주(廣州)·부평(富平)·남양(南陽)·인천(仁川)·안산(安山)·금천(衿川)과, 충청도 목천(木川)·청주(淸州)에 우박이 내렸다.

○京畿廣州·富平·南陽·仁川·安山·衿川, 忠淸道木川·淸州, 雨雹.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3월 13일(계미) 5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남양 등지에 천둥이 치고 부평·안산에 지진이 나다

경기의 남양(南陽)·진위(振威)·과천(果川) 등지에 천둥이 쳤고, 부평(富平)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안산(安山)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레소리와 같고 가옥이 흔들렸으며 뭇 꿩들이 놀라서 울기도 하였다.

○京畿南陽·振威·果川雷動, 富平地震. 安山地震如雷聲, 屋宇掀動, 群雉驚雊.

明宗大王實錄卷之第十二終

<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12월 30일(계미) 4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 등지에 천둥이 치다

청홍도 공주(公州) 등 세 고을에 천둥이 쳤고, 전라도 익산(益山) 등 세 고을에도 천둥이 쳤으며, **경기의 파주(坡州)·남양(南陽)·수원(水原)·교하(交河)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고 천둥이 쳤다.**

○淸洪道公州等三官, 雷動, 全羅道益山等三官, 雷動, 京畿坡州·南陽·水原·交河, 雨雹交下, 雷動.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11월 10일(신축) 3번째기사>

문화/과학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강원도 고성(高城)에 눈이 오고 우레가 쳤다. 황해도 재령(載寧)·연안(延安)·안악(安岳)·옹진(甕津)·송화(松禾)·풍천(豊川)·우봉(牛峯)·서흥(瑞興)에 천둥이 쳤다. **경기 남양(南陽)에 농부 한 사람과 밭갈던 소가 벼락맞아 죽었다**. 청홍

도 아산(牙山)·신창(新昌)·서산(瑞山)·천안(天安)·괴산(槐山)·유신(惟新) 등에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전라도 여산(礪山)·익산(益山)·고부(古阜)·운봉(雲峯)·장수(長水)에 천둥이 쳤다.
○京城地震. 江原道高城, 雨雪雷動. 黃海道載寧·延安·安岳·瓮津·松禾·豐川·牛峯·瑞興·雷動. 京畿南陽, 農人及耕牛各一, 雷震死. 淸洪道牙山·新昌·瑞山·天安·全義·槐山·惟新, 大雷雨. 全羅道礪山·益山古阜·雲峯·長水, 雷.
<명종실록 21권, 명종 11년 9월 29일(갑신) 4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에 큰비가 내리다
남양(南陽)에 큰비가 내렸는데 남자 한 명이 벼락을 맞았고, 통천(通川)에서는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벼락을 맞았다.
○南陽地, 大雨如注, 震一男. 通川地, 震一女一男.
<선조실록 163권, 선조 36년 6월 12일(정유) 2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지역에 해일과 풍재가 일어나고, 광주에는 황충이 뒤덮다
경기 지역의 수원(水原)·남양(南陽)·교동(喬桐) 등지에 해일(海溢)이 일어나고, 인천(仁川)·진위(振威)·이천(利川) 등지에는 풍재(風災)가 발생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으며, 광주(廣州)에는 황충(蝗虫)이 온 들판을 덮었다.
○辛丑/京畿水原·南陽·喬桐等地海溢. 仁川·振威·利川等地有風災害穀. 廣州蝗蟲遍野.
<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1629) 7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과 진위에 우박이 크게 내리다
남양(南陽)과 진위(振威) 두 고을에 우박이 크게 내렸다.
○辛亥/南陽·振威兩邑大雨雹.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1631) 10월 11일(신해)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강화 등 7개 고을에 번개 치고 우박이 내리다
경기 강화(江華)·광주(廣州)·남양(南陽) 등 7개 고을에 우레와 번개가 쳤고 우박이 내렸다.
○戊寅/京畿江華·廣州·南陽等七邑雷電, 雨雹.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1638) 9월 19일(무인) 1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에서 머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다
남양(南陽)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목은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乙巳/南陽有牛生犢, 一項兩頭.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1643) 1월 10일(을사) 1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에 우박이 내리다

남양(南陽)에 우박이 내렸는데 더러 비둘기 알이나 참새 알만하였다.

○南陽雨雹, 或如鳩卵雀卵.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1665) 4월 25일(신사) 5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인천·남양·안산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다

수원(水原)·인천(仁川)·남양(南陽)·안산(安山) 등지에 해일이 있었다.

○水原·仁川·南陽·安山等地, 海溢.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1665) 7월 21일(을사) 3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 등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 남양(南陽)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辛酉/京畿南陽等邑雨雹.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1671) 7월 12일(신유) 1번째기사>

문화/과학

남양에 우박이 내리다

남양(南陽)에 우박이 내렸는데 비둘기 알만하였다.

○南陽雨雹如鳩卵.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1665) 4월 25일(신사) 4번째기사>

문화/과학

수원·인천·남양·안산 등지에 해일이 일다

수원(水原)·인천(仁川)·남양(南陽)·안산(安山) 등지에 해일이 있었다.

○水原·仁川·南陽·安山等地海溢.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1665) 7월 21일(을사) 3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 남양 등에 우박이 내리다

경기도 남양(南陽)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辛酉/京畿南陽等邑雨雹.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1671) 7월 12일(신유) 1번째기사>

문화/과학

경기도 남양에서 닭의 암수가 변하고 괴상한 병아리가 나오다

경기(京畿) 남양(南陽)의 민가(民家)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수탉이 암탉으로 변했으며, 병아리는 날개가 넷이고 발이 넷이었다.

○京畿南陽民家, 雌雞化爲雄, 雄雞化爲雌, 雞雛四翼四足.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5월 15일(경인) 2번째기사>

문화/과학

여기가 치성하여 진주·흥양·수원 등에서 사람이 많이 죽다

이때 여기(癘氣)가 점점 치성하여 진주(晉州) 등 31읍은 사망이 2천 9백 20명이요, 흥양(興陽) 등 13읍은 사망이 4백 13명이며, **수원(水原)·남양(南陽) 등 읍은 지난 겨울 이후 사망이 5백 80명이었다.**

○時, 癘氣漸熾, 晋州等三十一邑, 死亡二千九百二十名·興陽等十三邑, 死亡四百十三名, 水原南陽等邑, 昨冬以後死亡, 五百八十名.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 2월 3일(경술) 2번째기사>

⑶ 예술

문화/예술

경기 남양에서 나는 돌로 석경을 만들어 시험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제향(祭享) 때 사용하는 악기 중에 석경(石磬)은 중국에서 보내 준 한 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와경(瓦磬)입니다. **지금 경기 남양(南陽)에서 나는 돌이 소리가 좋습니다.** 옥 다듬는 사람을 보내어 캐가지고 와서 옛 제도대로 만들어 시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祭享樂器內, 石磬只有朝廷所賜一架, 其餘皆瓦磬. 今京畿南陽所産石有聲, 請遣玉人採來, 依古體制造作試之.” 從之.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8월 26일(임진) 3번째기사>

문화/예술

악학 별좌 봉상 판관 박연이 석경을 새로 만들어 올리다

악학 별좌(樂學別坐) 봉상 판관(奉常判官) 박연(朴堧)이 1틀에 12개 달린 석경(石磬)을 새로 만들어 올렸다. 처음에 중국의 황종(黃鍾)의 경쇠로써 위주하였는데, 삼분(三分)으로 덜고 더하여 12율관(律管)을 만들고, **겸하여 옹진(甕津)에서 생산되는 검은 기장[秬黍]으로 교정(校正)하고 남양(南陽)에서 나는 돌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 소리와 가락이 잘 조화되는지라, 그것으로 종묘와 조회 때의 음악을 삼은 것이다.

○樂學別坐奉常判官朴堧, 進新製石磬一架十二枚. 初以中朝黃鍾之磬爲主, 三分損益, 作十二律管, 兼以甕津所産秬黍校正之, 取南陽石作之, 聲律乃諧, 遂作宗廟朝會之樂.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15일(임인) 2번째기사>

문화/예술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서한 조건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함께 의논한 봉상 판관(奉常判官) 박연(朴堧)이 상서(上書)한 조건(條件)을 아뢰었다. (…) 박연이 또 말하기를,

‘경석(磬石)을 얻기는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 나라에서 질로 경을 만든 것은 역시 부득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 소리는 건방(乾方)에 속하니 입동(立冬)의 소리요, 흙 소리는 곤방(坤方)에 속하니 입추(立秋)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질로써 돌을 대신하게 되니, 이는 곧 팔음(八音)의 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南陽)의 돌을 얻으니 그 소리가 매우 맑고 화평하여 당경(唐磬)보다 못하지 않사온즉,** 이는 곧 성조(聖朝)의 시절에 응하여 나온 물건으로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심(盡心)으로 쪼고 갈아서 크게 갖추어지기를 바라옵니다마는, 이를 갈고 다듬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오랜 시일이 걸려야만 비로소 갖추어지게 될 것이오니, 그것이 갖추어지기까지에는 반드시 전일에 쓰던 질로 만든 경을 쓰게 하소서. 이제 질경을 살펴보니, 음률에 맞는 것은 드물고, 또 소리가 아니 나는 것도 많고 수효도 역시 넉넉하지 못하오니, 반드시 음률에 가까운 것을 골라 남겨 두고, 나머지는 곧 갖추 만들게 하여 돌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시기 원하옵니다. 생(笙)이라는 악기는 간방(艮方)에 속한 소리인데, 그 제도는 길고 짧은 여러 피리가 가지런하지 않게 한 개의 바가지 속에 꽂혀 있어, 마치 봄볕에 모든 생물이 돋아나는 형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을 생(生)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생(笙)이라 부르고, 그것이

바가지를 몸으로 삼은 악기이기 때문에 이를 포(匏)라 부르게 되옵는데, 그것을 반드시 바가지[匏]로 만드는 것은, 박[匏]은 덩굴로서 땅에 있는 물건으로서 간방(艮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세에서 나무로 포(匏)를 대신하게 되니, 제작은 비록 정교(精巧)하오나 전혀 본 제도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팔음(八音) 중에서 나무 소리는 손방(巽方)에 속하는 소리이니 입하(立夏)의 음(音)이고, 포(匏)의 소리는 간방(艮方)에 속하니 입춘(立春)의 음(音)인데, 나무로 박[匏]을 대신한다면 이것이 손방(巽方)의 음이 되겠습니까, 간방(艮方)의 음(音)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일이오니, 본 제도에 의거하여 만들게 하되, 다만 생(笙)을 만드는 포(匏)는 쉽사리 구할 수 없사오니, 작량(酌量)하여 형상을 그려서 서울과 지방에 널리 구하여 가을에 이르러 갖다가 바치게 하고, 이를 골라서 쓰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이제 위의 말[說]들을 살펴보시고 꼭 따라주시되 반드시 포(匏)로 만들어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

○禮與儀禮詳定所議奉常判官朴堧上書條件以啓: (…) 堧又云: "磬石之得, 自古爲難, 我朝瓦磬, 亦不得已也. 然石聲則爲乾方立冬之音, 土聲則爲坤方立秋之音也. 以瓦代石, 殊失八音之制矣, 今得南陽之石, 聲甚淸和, 不下唐磬, 此乃聖朝應時之物, 非偶然也. 庶幾盡心磨琢, 期於大備, 然攻治未易, 必經久乃備, 其未備之際, 應以前日之瓦磬用之." 今詳瓦磬協音律者蓋少, 又多無聲者, 數亦未足, 宜擇近律者留之, 餘願卽令備造, 以待石磬之成." [堧又云]: "笙之爲器, 艮方之音. 其制則衆管參差, 植於一匏之中, 取春陽生物之象也. 以其有生物之義, 故謂之笙; 以其爲匏體之器, 故謂之匏. 其必以匏爲之者, 匏爲蔓生在地之物, 而艮之屬也. 後世以木代匏, 制雖精巧, 全失本制. 且八音之內, 木聲屬乎巽, 爲立夏之音也. 匏音屬乎艮, 爲立春之音也. 以木代匏, 則以爲巽音乎? 以爲艮音乎? 此不可之大者也. 願依本制爲之, 但制笙之匏, 未易卽求, 酌量圖形, 布求中外, 至秋輸納, 擇而用之." 今詳右等說, 宜從之, 匏則宜制造試驗.(…)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5번째기사>

문화/예술

『아악보』가 완성되고 정인지가 서를 달다

『아악보(雅樂譜)』가 완성되었다. 정인지(鄭麟趾)가 명령을 받들어 서(序)를 짓기를,

"음악은 성인(聖人)이 성정(性情)을 기르며, 신과 사람을 화(和)하게 하며,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며, 음양(陰陽)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는 태평한 지 40년을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아악(雅樂)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특별히 생각을 기울이시와 선덕(宣德) 경술년 가을에 경연(經筵)에서 채씨(蔡氏)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공부하시면서, 그 법도가 매우 정밀하며 높고 낮은 것이 질서가 있음에 감탄하시와 음률을 제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나, 다만 황종(黃鍾)을 급작히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신 등에게 명하시와 옛 음악을 수정하게 하였다. 신 등이 보면, 지금 봉상시(奉常寺)에 보존된 악기는 고려 예 종(睿宗) 때에 송(宋)나라 휘종(徽宗)이 준 편종(編鍾)과 공민왕(恭愍王) 때에 고황제(高皇帝)가 준 종(鍾)과 경(磬) 수십 개가 있으며, 우리 왕조에 이르러 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준 종과 경 수십 개가 있을 뿐이다. **이제 그 소리에 따라서 편종(編鍾)을 주조(鑄造)하고, 좋은 돌을 남양(南陽)에서 얻어 편경(編磬)을 만들어서, 악기가 모두 일신해졌다.** 또 그 소리에 의하여 동률(銅律)을 주조했는데, 그 율(律)이 약간 길어서, 서(黍)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 옛적의 자[尺]와 맞지 않는 듯하므로, 그 자는 쓰지 아니하고, 모든 악

기는 모두 적당하게 만들고 그 율관(律管)만을 남겨 두어 음정을 조화시키는 데 편리하게 할 뿐이었다. (…)" 하였다.

○雅樂譜成. 鄭麟趾奉敎序曰: 樂者, 聖人所以養性情·和神人·順天地·調陰陽之道也. 國家昇平垂四十年, 而雅樂尙有未備. 恭惟我主上殿下, 特留宸念, 宣德庚戌秋, 御經筵講蔡氏『律呂新書』, 歎其法度甚精·尊卑有序, 思欲製律, 第以黃鍾未易遽得, 重其事也, 乃命臣等, 釐正舊樂. 臣等竊觀今之奉常寺所存樂器者, 在高麗睿宗時, 宋徽宗所賜編鍾; 恭愍王時, 高皇帝賜與鍾磬, 共數十枚; 及我朝, 又有太宗文皇帝賜與鍾磬數十枚而已. 今因其聲, 以鑄編鍾, 得美石於南陽, 以造編磬, 樂器俱新. 又依其聲, 以鑄銅律, 而其律頗長, 容黍太多, 似不合於古尺, 故不用其尺, 而諸樂器皆從宜製作, 但留其律管, 以便調音而已耳.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12월 1일(정유) 5번째기사>

문화/예술

임금이 근정전에서 회례연을 베풀었는데, 처음으로 아악을 사용하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서 회례연(會禮宴)을 의식에 따라 베풀었는데, 처음으로 아악(雅樂)을 사용하였다. 처음 고려 예종(睿宗) 때에 송 휘종(宋徽宗)이 제악(祭樂)의 종(鍾)·경(磬) 각각 1가(架)와 금(琴)·슬(瑟)·생(笙)·우(竽)·화(和)·소(簫)·관(管) 등 악기 각각 2부(部)씩을 내려 주었는데, 제조가 매우 정밀하였다. 홍건적(紅巾賊)의 난리에 사람들이 수호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늙은 악공이 종·경 두 악기를 못속에 던져 넣었으므로 보존할 수 있었다. 명나라에 이르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와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종과 경을 주었으나 제조가 매우 거칠고 소리도 아름답지 못하여, 귀히 여길 만한 것은 오직 송조(宋朝)에서 내려 준 악기뿐이었다. 우리 나라 제악(祭樂)은 팔음(八音)을 갖추지 못하여, 공인들이 봉상시(奉常寺)에서 예전부터 간직해 오던 십이관보(十二管譜)만 배울 뿐이고 음률(音律)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다. 매양 제사 때를 당하면 경(磬)은 와경(瓦磬)을 쓰고, 종(鍾)도 어지러이 매어달아 그 수효를 갖추지 못하여, 외설(猥褻)하고 망령되게 만들었으나 습관이 되어 예사로 여겼다. 을사년 가을에 거서(柜黍)가 해주에서 나고, **병오년 봄에 경석(磬石)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되자,** 임금이 개연(慨然)히 예전 것을 개혁하여 새로 고칠 뜻을 두어 박연에게 편경(編磬)을 만들기를 명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음(音)에 맞는 악기가 없으므로, 연이 해주의 거서(秬黍)를 가지고 그 분촌(分寸)을 쌓아 고설(古說)에 의거하여 황종(黃鍾) 1관(管)을 만들어 불어 보니, 그 소리가 중국의 종(鍾)·경(磬)과 황종 및 당악(唐樂)의 필률(觱篥) 합자성(合字聲) 보다 약간 높기 때문으로 인하여 전현(前賢)의 논의를 상고하니, "토지가 기름지고 메마름이 있어 기장[黍]의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성음(聲音)의 높낮이가 시대마다 각각 다르다." 하였고, (…)

연이 즉시 살펴보고 아뢰기를,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 있으니 다 갈지[磨]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가서 이를 갈아 먹이 다 없어지자 소리가 곧 바르게 되었다. 경(磬)이 이룩되자 연(堧)에게 명하여 악(樂)을 제작하는 임무를 전장(專掌)하게 하였다. **병오년 가을부터 무신년 여름까지 남양(南陽)의 돌을 다듬어서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의 편경(編磬) 및 여러 제사에 통용하는 편경·등가 편경(登歌編磬)·특경(特磬) 등이 이룩되었는데 모두 5백 28매이다.** 임금이 또 연(堧)에게 명하기를, "내가 조회(朝會)의 아악(雅樂)을 창제(創制)하고자 하는데 입법(立法)과 창제가 예로부터 하기가 어렵다.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혹 저지하고,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혹 듣지 아니하며, 비록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하여졌

고, 국가가 무사(無事)하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이룩하라." 하였다. **이에 또 조회(朝會)의 악경(樂磬)을 남양에서 만들고, 조제(朝祭)의 악종(樂鍾)을 한강에서 만들었는데,** 연(堧)으로 하여금 일을 감독하게 하고, 또 대호군(大護軍) 남급(南汲)을 버금으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헌가(軒架) 아악(雅樂) 및 무동(舞童)의 기예(技藝)를 쓰고, 여악(女樂)을 쓰지 않으며, 이웃나라 사객(使客)의 연회에도 여악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이른다.

○上御勤政殿, 設會禮宴如儀, 始用雅樂. 初, 高麗睿宗時, 宋徽宗賜祭樂鍾磬各一架·琴瑟笙竽和簫管等器各二部, 制造精緻. 紅賊之亂, 人不能守, 賴有老樂工, 將鍾磬二器, 投池中得存. 逮至皇明, 太祖高皇帝·太宗文皇帝, 皆賜鍾磬, 然制造甚粗, 聲亦不美, 可貴者唯宋朝所賜之器耳. 我國祭樂, 八音未備, 工人只學奉常舊藏十二管譜, 而不知音律之爲何事也. 每當祭時, 磬用瓦磬, 鍾亦雜懸, 不具其數, 猥褻妄作, 習以爲常. 乙巳秋, 秬黍生於海州, 丙午春, 磬石産於**南陽**, 上慨然有革舊更新之志, 乃命朴堧造編磬. 但我國本無協音之器, 堧取海州秬黍, 積其分寸, 依古說制黃鍾一管吹之, 其聲差高於中國鍾磬黃鍾之音及唐樂觱篥合字聲, 故因考前賢之議曰: "地有肥磽, 黍有大小, 聲音高下, 代各不同." (…) 堧卽審視而啓曰: "限墨尙在. 未盡磨也." 退而磨之, 墨盡而聲乃正. 磬成之後, 命堧專掌制樂之任, 自丙午秋至戊申夏, 攻**南陽**之石, 宗廟永寧殿編磬及諸祀通用編磬·登歌編磬特磬成, 共五百二十八枚. 上又命堧曰: "予欲創制朝會雅樂, 立法創制, 自古爲難, 君所欲爲, 臣或沮之; 臣所欲爲, 君或不聽, 雖上下皆欲, 而時運不利. 今也我志先定, 國家無事, 宜盡心成之." 於是又造朝會樂磬於**南陽**, 鑄朝祭樂鍾於漢江, 令堧董役, 又以大護軍南汲貳其事. 至是, 始用軒架雅樂及舞童之伎, 不用女樂, 隣國使客之宴, 亦不用女樂云.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일(을묘) 3번째기사>

문화/예술

악기 조성청의 청에 따라 헌가에 쓰이는 석반(石磐)은 남양의 옥돌로 만들게 하다

악기 조성청(樂器造成廳)에서 아뢰기를, **"헌가(軒架)에 쓰이는 석반(石磐)은, 청컨대 신유년의 구례에 의하여 남양(南陽)의 옥돌을 캐서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 예조 판서 이종성(李宗城)의 주청에 따라 날씨가 추워서 백성들을 사역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여 정지시키고, 내년 봄까지 기다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樂器造成廳啓言: "軒架所用石磐, 請依辛酉年例, 採用**南陽**玉." 從之. 後因禮曹判書李宗城之奏, 以日寒難於役民, 命停之, 俾待明春.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1744) 11월 1일(갑술) 2번째기사>

문화/예술

공조 참판 김용겸을 승지로 삼고, 율려신서에 대해 묻다

특별히 공조 참판 김용겸(金用謙)을 승지로 삼아 편전(便殿)에서 소견하고, (…) 임금이 말하기를, "임방(任埅)은 나이가 경보다 많았지만, 숙묘조(肅廟朝)에 기사(耆社)에 들어 갔을 때 사람들이 지상의 신선이라고 일컬었었다. 이제 경을 승지에 제수한 것은 고문(顧問)하기 위해서이다.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보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양(南陽)에서 경(磬)이 나고 해주(海州)에서 서(黍)가 나니, 때에 응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민락(與民樂)은 세종조(世宗朝) 때 만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

○特除工曹參判金用謙爲承旨, 召見于便殿. (…) 上曰: “任堅之年, 多於卿, 而肅廟朝入耆社時, 人稱地上仙. 今以卿爲承旨者, 爲其顧問故耳. 『律呂新書』, 見之否?” 對曰: “見之矣.” 上曰: “南陽之出磬, 海州之生黍. 可謂應時. 而與民樂, 創於世宗朝乎?” 對曰: “然.” (…)
<정조실록 6권, 정조 2년(1778) 10월 30일(병술) 2번째기사>

문화/예술

김용겸과 서명응 등과 함께 석경에 대해 논의하다

융효문(隆孝門)에 나아가 장악원 제조 이중호(李重祜)·김용겸(金用謙), 판중추 서명응(徐命膺)을 소견하고, 악공(樂工)과 악생(樂生)에게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먼저 가금(歌琴)을 연주하게 하고, 종경(鐘磬)과 합주하게 하였는데, 합주가 끝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 “황종은 얇고 응종은 두꺼운가?”하니, 김용겸이 말하기를,
“황종은 두껍기 때문에 소리가 탁하고 응종은 가볍기 때문에 소리가 맑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석경(石磬)이 이 옥경(玉磬)과 같은가?”하니, 서명응이 말하기를, **“중국의 석경은 곧 천구(天球)이지만 우리 나라의 옥경은 성천(成川)·남양(南陽)의 옥(玉)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
○乙卯/御隆孝門, 召見掌樂提調李重祜·金用謙·判中樞徐命膺, 命樂工·樂生, 持樂器以入. 上命先奏歌琴, 合奏鍾磬, 合奏訖. 上曰: (…) 上曰: “黃鍾薄而應鍾厚乎?” 用謙曰: “黃鍾厚, 故聲濁, 應鍾輕, 故聲淸矣.” 上曰: “中原石磬, 與此玉磬同乎?” 命膺曰: “中原石磬, 卽是天球, 而我國玉磬, 則以成川·南陽玉爲之, 故不同矣.” (…)
<정조실록 6권, 정조 2년(1778) 11월 29일(을묘) 1번째기사>

연구진

연구책임	● 최성환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원	● 이동인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양지선 / 단국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	● 나영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 최문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최덕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이진걸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근대 수원 자료집

발 행 인 손 혁 재
발 행 일 2015년 3월 6일
발 행 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85686-32-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